서문

대한민국(“한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인도네시아”) 정부(이하 공동으로 “양 당사국”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당사국”이라 한다)는,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양국의 돈독한 우호관계, 그리고 양국 간의 긴밀한 경제 관계, 역내 공동 이익 및 유대관계를 강화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유무역지대가 양국의 영역에 확장되고 안정된 상품 및 서비스 시장과 투자에 유리한 환경을 창출하여 세계무역의 조화로운 발전과 확장에 기여할 것임을 확신하며,

경제성장을 증진하고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하기를 희망하고,

양국 간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장벽을 축소하거나 철폐할 것과 이 협정이 제공하는 보다 큰 사업 기회의 협력과 활용을 촉진할 것을 추구하며,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측가능하고, 투명하며, 일관된 사업환경을 증진시키고,

이 협정에 따라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목적에 기여하고 무역 및 투자를 증진하기 위하여 양국의 경제, 무역 및 투자 관계를 강화할 것을 결의하며,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과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그 밖의 다자, 지역 및 양자 협정상의 그들 각자의 권리 및 의무에 기초하고, 그리고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과 그 기본협정에 따른 그 밖의 관련 협정상의 약속에 기초하려는 양국의 희망을 재확인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장
일반 규정

제 1.1 조
일반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협정이란 이 협정을 말한다.

농업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 가의 「농업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반덤핑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 가의 「1994 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 6 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한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이란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과 그 기본협정 제 1.4 조제 1 항에 규정된 그 밖의 관련 협정을 말한다.

관세 당국이란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관세법 및 규정의 운영 및 집행을 담당하는 당국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기획재정부 또는 관세청, 그리고

나. 인도네시아의 경우, 재무부 산하 관세소비세총국

또는 그 각각의 승계기관

관세란 모든 관세, 수입세, 모든 형태의 추가세 또는 추가금을 포함하여 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부과금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어떠한 것도 포함하지 않는다.

가. 동종의,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또는 대체가능한 당사국의 상품에 대하여, 또는 그 상품으로부터 수입 상품의 전체 또는 부분이 제조되거나 생산된 상품에 대하여 1994 년도 GATT 제 3 조제 2 항에 합치되게 부과되는 내국세에 상당하는 부과금

나. 제 5 장(무역구제)에 합치되게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

다. 제공된 서비스의 비용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수입과 관련된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

라. 수입수량 제한 또는 관세율 할당의 운영에 관한 모든 입찰제도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서 수입품에 제공되거나 징수되는 할증금, 또는

마. 세계무역기구 농업에 관한 협정에 따라 한 모든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

관세법 및 규정이란 관세, 부과금 및 그 밖의 조세, 또는 금지, 제한 및 각 당사국 관세영역의 경계를 넘어 통제된 물품의 이동에 대한 그 밖의 유사한 통제와 관련된 상품의 수입, 수출, 통과 또는 환적에 관하여 양 당사국의 관세 당국이 운영하고 집행하는 법과 규정을 말한다.

통관절차란 당사국의 관세 당국이 통관관리의 대상이 되는 상품 및 운송수단에 적용하는 취급을 말한다.

관세평가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 가의 「1994 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 7 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일이란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달력상의 일을 말한다.

기업이란 모든 회사, 신탁, 파트너십, 단독소유기업, 합작투자, 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을 포함하여, 영리목적인지 여부와 민간이나 정부가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 가능한 법과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구성되거나 달리 조직된 모든 실체를 말한다.

기존의란 이 협정의 발효일에 유효한 것을 말한다.

GATS 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 나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말한다.

1994 년도 GATT 란 주해 및 보충규정을 포함하여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 가의 「1994 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말한다.

상품이란 모든 제품, 생산품, 물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란 당시 발효 중이며 수시로 개정되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및 그에 포함된 모든 법적 주석에 정의된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표기방법을 말한다.

공동위원회란 제 12.1 조(공동위원회의 설치)에 따라 설치된 공동위원회를 말한다.

법인이란 모든 회사, 신탁, 파트너십, 합작투자, 단독소유기업 또는 협회를 포함하여, 영리목적인지 여부와 민간이나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 가능한 법과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구성되거나 달리 조직된 모든 법적 실체를 말한다.

조치란 법, 규정, 규칙, 절차, 결정, 행정조치의 형태이거나 그 밖의 형태인지에 관계없이 당사국에 의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란 다음 조치를 말한다.

가. 중앙 또는 지방 정부와 당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그리고

나. 중앙 또는 지방 정부와 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비정부 기관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국민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개정되는 바에 따른 「국적법」상 의미에서 한국의 국민, 그리고

나. 인도네시아의 경우, 수시로 개정되는 「인도네시아법 제 12/2006 호」 또는 그 승계 법률에 정의된 인도네시아의 국민

원산지 상품이란 제 3 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에 따라 원산지 자격을 갖춘 생산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인이란 자연인, 법인 또는 기업을 말한다.

특혜관세대우란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부여된, 이 협정에 따라 적용 가능한 관세율에 반영된 관세 양허를 말한다.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 가의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 가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영역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한국 주권하의 육지, 해양 및 상공, 그리고 한국이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의 외측 한계에 인접하고 그 한계 밖에 있는 해저 및 하층토를 포함한 해양지역, 그리고

나. 인도네시아의 경우, 영토, 내수, 군도수역, 해저 및 하층토를 포함한 영해 및 영토와 영해 위의 상공뿐만 아니라 자국의 법에 정의되고 1982년 12월 10일 몬테고베이에서 채택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라 인도네시아가 주권,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 다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를 말한다.

세계무역기구란 세계무역기구를 말한다. 그리고

세계무역기구협정이란 1994 년 4 월 15 일에 채택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을 말한다.

제 1.2 조
자유무역지대의 창설

양 당사국은 1994 년도 GATT 제 24 조 및 GATS 제 5 조에 합치되게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한다.

제 1.3 조
목적

이 협정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가. 1994년도 GATT 제24조에 합치되게 양 당사국 간 상품무역의 실질적 자유화를 달성하는 것

나. GATS 제5조에 합치되게 양 당사국 간 서비스무역의 실질적 자유화를 달성하는 것

다.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투자 기회의 실질적 증대를 달성하는 것

라. 양 당사국 경제에서의 공정한 경쟁, 특히 양 당사국 간의 경제관계에 관련된 경쟁을 증진하는 것

마. 이 협정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이행과 활용을 증진하기 위한 협력과 역량 강화를 위한 틀을 수립하여 경쟁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 그리고

바. 양 당사국의 무역 관계에 통합되고 반영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목적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국제 무역을 발전시키는 것

제 1.4 조
다른 협정과의 관계

1. 양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및 한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기존의 협정상의 자국의 권리 및 의무를 재확인한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협정은 상품, 서비스, 투자 또는 인에 대하여 이 협정에 규정된 것보다 더 유리한 대우를 규정하는 양 당사국 간의 어떠한 국제법적 의무로부터 이탈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3.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이 협정과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그 밖의 다른 협정 간 불일치가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요청에 따라 서로 협의한다.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제2.1조
적용범위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은 양 당사국 간 상품 무역에 적용된다.

제1절
정의

제2.2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영사거래란 상업 송장, 원산지 증명서, 적하목록, 선적자 수출신고서, 또는 수입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그 밖의 모든 통관서류를 위한 영사 송장 또는 영사 비자를 취득할 목적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출될 한쪽 당사국의 상품이 수출 당사국 영역에 있는 수입 당사국 영사의 감독을 위하여 먼저 제출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말한다.

무관세란 관세가 없음을 말한다. 그리고

수입허가란 수입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하기 위한 사전조건으로서 신청서 또는 그 밖의 서류(통관목적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것 외의 것을 말한다)를 관련 행정기관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정적 절차를 말한다.

제2절
내국민 대우

제2.3조
내국민 대우

각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3조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3조의 규정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3절
관세 인하 또는 철폐

제2.4조
관세 인하 또는 철폐

1.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원산지 상품에 대한 기존의 관세를 인상하거나 새로운 관세를 채택하지 않는다.

2.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부속서 2-가의 자국 양허표에 따라 원산지 상품에 대한 자국의 관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하거나 철폐한다.

3.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부속서 2-가의 양국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의 인하 또는 철폐의 가속화를 검토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의 인하 또는 철폐를 가속화하기로 한 양 당사국의 합의는 자국의 적용 가능한 법적 절차에 따라 각 당사국에 의하여 승인되었을 때에 부속서 2-가의 양국 양허표에 따라 그 상품에 대하여 결정된 관세율 또는 단계별 양허유형을 대체한다.

4. 당사국은 원한다면 언제라도 부속서 2-가의 자국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의 인하

또는 철폐를 일방적으로 가속화할 수 있다. 그 당사국은 개정의 발효를 위하여 요구되는 국내 절차가 완료된 직후 다른 쪽 당사국에 외교공한을 통하여 통보한다.

5. 세계무역기구협정에 따라, 원산지 상품에 대한 한쪽 당사국의 최혜국 실행 관세율이 부속서 2-가의 그 당사국의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율보다 낮은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은 수입 당시 최혜국 실행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각 당사국은 최혜국 실행 관세율에 대한 개정사항을 인터넷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6.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다음을 할 수 있다.

가. 일방적인 인하 또는 철폐를 한 후에 부속서 2-가의 자국 양허표에 설정된 수준까지 관세를 인상하는 것, 또는

나.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기구에 의하여 승인된 대로 관세를 유지하거나 인상하는 것

제2.5조
관세 평가

양 당사국 간 교역되는 상품의 관세가격을 결정하는 목적상, 1994년도 GATT 제7조의 규정과 관세평가협정의 제1부 규정 및 부속서 1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한다.

제4절
특별 제도

제2.6조
상품의 일시 반입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그 상품의 사용으로 인한 통상적인 감가상각 및 손실을 제외한 어떠한 변화도 거치지 않고,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명시된 기간 내에 재수출될 의도로 자국의 관세영역으로 반입되는 상품인 경우, 그러한 상품이 관세 및 조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불을 조건부로 면제받고 관세영역으로 반입되는 것을 허용한다.

2. 각 당사국은, 관계인의 요청이 있고 자국의 관세 당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처음에 정해진 기간을 초과하여 제1항에 규정된 일시 반입의 기한을 연장한다.

3. 어떠한 당사국도 제1항에 규정된 상품의 일시 반입에 대하여 다음을 요구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가. 그 상품이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 또는 거주자에 의해서만 또는 그 개인적인 감독하에서만 그 인의 영업활동, 거래, 직업 또는 스포츠를 수행하는 데 사용될 것

나. 그 상품이 자국 영역에 있는 동안 판매되거나 임대되지 않을 것

다. 그 상품이 다른 경우라면 반입 또는 최종 수입 시에 부담하게 될 관세, 조세, 수수료 및 부과금을 초과하지 않는 액수로서 그 상품의 수출 시에 반환될 수 있는 담보 또는 보증을 수반할 것

라. 그 상품이 수입 및 수출될 때 식별이 가능할 것

마. 그 상품이 가호에 언급된 인의 출국 시 또는 그 당사국이 설정할 수 있는 일시 반입의 목적에 관련된 그 밖의 기간 내에 수출될 것. 다만, 연장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바. 그 상품이 의도된 사용을 위한 합리적인 수량을 초과하지 않게 반입될 것, 그리고

사. 그 상품이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그 당사국 영역에 달리 반입 가능할 것

4. 당사국이 제3항에 따라 부과하는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그 당사국은 그 상품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부담하게 될 관세 및 그 밖의 부과금에 자국의 법과 규정에 규정된 그 밖의 부과금 또는 벌금을 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각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일시 반입되었던 상품이 반입되었던 통관 항구 외의 다른 통관 항구를 통하여 재수출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제2.7조
상업적 가치가 없는 견본품의 무관세 반입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업적 가치가 없는 견본품에 대하여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원산지에 관계없이 무관세 반입을 허용한다.

제5절
비관세조치

제2.8조
비관세조치의 적용

1. 한쪽 당사국은 자국의 세계무역기구상의 권리 및 의무나 이 협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쪽 당사국 상품의 수입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을 목적지로 하는 상품의 수출에 대하여 어떠한 비관세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않는다.

2. 각 당사국은 제1항에 허용된 자국의 비관세조치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양 당사국 간의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물을 초래하기 위하여 또는 그러한 효과를 가지는 어떠한 그러한 조치도 준비, 채택 또는 적용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제2.9조
수량제한의 일반적 철폐

1.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세계무역기구협정의 관련 규정상의 자국의 권리 및 의무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쪽 당사국 상품의 수입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을 목적지로 하는 상품의 수출에 대하여, 쿼터, 수입이나 수출 허가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시행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관세, 조세 또는 그 밖의 부과금 외의 어떠한 금지 또는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않는다.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11조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2. 당사국이 1994년도 GATT 제11조제2항가호에 따른 수출 금지 또는 제한을 채택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가. 그러한 금지 또는 제한과 그 이유를 그 금지 또는 제한의 성격 및 예상되는 기간과 함께 다른 쪽 당사국에 알리거나, 그러한 금지 또는 제한을 공표한다. 그리고

나. 그러한 금지 또는 제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

제2.10조
비관세조치에 대한 기술적 협의

1. 한쪽 당사국은 자국의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조치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이하 “피요청당사국”이라 한다)에 기술적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은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그 조치 및 그 조치가 기술적 협의를 요청하는 당사국(이하 “요청당사국”이라 한다)과 피요청당사국 간의 무역에 어떻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우려사항을 분명하게 적시한다.

2. 그 조치가 다른 장의 적용을 받는 경우, 양 당사국 간에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장별 협의 메커니즘이 사용된다.

3. 제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피요청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요청 후 180일 내에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에 도달하기 위하여, 제1항에 언급된 서면 요청을 접수한 후 60일 내에 응답하고 기술적 협의를 개시한다. 기술적 협의는 양 당사국에 의하여 상호 합의된 수단을 통하여 수행될 수 있다.

4. 요청당사국은 긴급하거나 부패성 상품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제3항에 규정된 것보다 짧은 기간 내에 기술적 협의가 개최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를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5. 이 조에 따른 기술적 협의는 제10장(분쟁해결)과 세계무역기구협정에 따른 분쟁해결절차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저해하지 않는다.

제2.11조
수입허가

1. 각 당사국은 모든 자동 및 비자동 수입허가절차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이행되고,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의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협정」(이하 “수입허가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적용되도록 보장한다. 어떠한 당사국도 수입허가협정에 불합치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않는다.

2. 이 협정의 발효 후 신속하게, 각 당사국은 기존의 모든 수입허가절차를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한다. 그 통보는 수입허가협정 제5조제2항에 명시된 정보를 포함한다.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이 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당사국이 수입허가협정 제4조에 규정된 세계무역기구 수입허가위원회에 수입허가협정 제5조제2항에 명시된 정보와 함께 그 절차를 통보한 경우, 그리고

나. 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일 전에 세계무역기구 수입허가위원회에 제출한 수입허가협정 제7조제3항에 기술된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연례질의서에 대한 가장 최근의 답변에서, 그 절차에 대하여 연례질의서가 요청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3. 모든 새로운 또는 변경된 수입허가절차를 적용하기 전에, 당사국은 그 새로운 절차 또는 변경사항을 정부의 공식적인 인터넷 사이트에 공표한다. 가능한 한도에서, 그 당사국은 그 새로운 절차 또는 변경사항이 발효하기 최소 21일 전에 그렇게 한다.

4. 제2항에 따라 요구되는 그 통보는 그 수입허가절차가 이 협정에 합치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5. 어떠한 신청서도 신청서에 포함된 기본 자료를 변경시키지 않는 사소한 서류상의 오류로 거절되지 않는다. 사소한 서류상의 오류는 형식 오류(예를 들어, 여백의 넓이 또는 사용된 글꼴) 및 거짓 의도나 중대한 과실이 명백히 없는 철자 오류를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6. 각 당사국은 수입허가의 부여 또는 거부 시 자국의 허가당국에 의하여 적용되는 기준에 관한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모든 합리적인 질의에 대하여 가능한 한도에서 60일 내에 답변한다. 수입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 및 무역업자들이 수입허가의 부여 또는 할당의 근거를 알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공표한다.

7.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대한 수입허가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그리고 그 요청을 받은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신청 거부 이유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제2.12조
수입 및 수출과 관련된 수수료 및 형식

1. 각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입이나 수출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성격 여하를 불문한 모든 수수료 및 부과금(수입 또는 수출 관

세, 1994년도 GATT 제3조제2항에 합치되게 적용되는 내국세 또는 그 밖의 내국 부과금에 상당하는 부과금, 그리고 반덤핑 및 상계 관세 외의 것을 말한다)이 제공된 서비스의 대략적 비용으로 금액이 한정되도록, 그리고 이것이 국내 상품에 대한 간접적인 보호나 재정적 목적을 위한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한 과세가 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2. 각 당사국은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자국이 부과하는 수수료 및 부과금의 세부사항을 신속하게 공표하고 그러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3.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 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관련 수수료 및 부과금을 포함한 영사거래를 요구하지 않는다.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 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통관서류가 수입 당사국의 해외 대리인이나 수입 당사국을 대신하여 행동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인이나 기관에 의하여 보증, 인증되거나 달리 열람되거나 승인되도록 요구하지 않으며, 관련 수수료 또는 부과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제2.13조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1. 양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의 관련 결정과 국제표준, 지침 및 권고를 고려하여,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상의 서로에 대한 자국의 기존의 권리 및 의무를 재확인한다.

2. 양 당사국은 적절한 자원의 이용가능성을 조건으로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의 분야에서 기술협력과 의사소통을 장려한다.

3. 제10장(분쟁해결)은 이 절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에 대해서도 적용되지 않는다.

제2.14조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1. 양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상의 서로에 대한 자국의 기존의 권리 및 의무를 재확인한다.

2.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제도에 대한 상호이해를 제고하고 각 당사국의 시장에 대한 접근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을 강화한다. 양 당사국은 상호 결정된 조건에 대하여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바와 같이 특정 사안이나 분야에 적절한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관한 무역촉진 이니셔티브를 확인, 개발 및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제6절
제도 규정

제2.15조
상품무역위원회

1. 이 장 및 제5장(무역구제)의 효과적인 이행과 운영을 위하여, 제12.4조(위원회 및 부속기관)에 따라 설치되는 상품무역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이 장과 제5장(무역구제)의 이행과 운영을 검토 및 점검하고 적절한 경우 보고서와 권고사항을 작성하는 것

나. 이 협정상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 가속화와 적절한 경우 그 밖의 사안에 대한 협의를 거치는 것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 간 상품무역을 증진하는 것

다. 양 당사국 간 상품무역에 대한 장벽, 특히 비관세조치의 적용과 관련된 장벽을 다루고, 적절한 경우 공동위원회에서의 검토를 위하여 그러한 사안을 공동위원회로 회부하는 것

라. 시의적절하게 양 당사국의 관세양허표를 전환하고 전환된 관세양허표 및 연계표를 교환하는 것을 포함하여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개정을 반영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의 관세양허표를 최신화하기 위한 조치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다루는 것, 그리고

마. 합의에 따라 이 장과 제5장(무역구제)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을 논의하는 것

2. 위원회는 당사국 또는 공동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장과 제5장(무역구제)에서 발생하는 사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회합한다.

부속서 2-가
관세 인하 또는 철폐

일반 주해

1. 이 부속서의 당사국 양허표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단계별 양허유형이 제 2.4 조제 2 항에 따른 각 당사국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에 적용된다.

가. “E0”으로 표시된 세번으로 분류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완전히 철폐된다.

나. “E3”으로 표시된 세번으로 분류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3 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기준관세율부터 무관세까지 철폐되어, 이행 3 년차 1 월 1 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다. “E5”로 표시된 세번으로 분류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5 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기준관세율부터 무관세까지 철폐되어, 이행 5 년차 1 월 1 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라. “E7”로 표시된 세번으로 분류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7 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기준관세율부터 무관세까지 철폐되어, 이행 7 년차 1 월 1 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마. “E10”으로 표시된 세번으로 분류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10 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기준관세율부터 무관세까지 철폐되어, 이행 10 년차 1 월 1 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바. “E15”로 표시된 세번으로 분류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15 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기준관세율부터 무관세까지 철폐되어, 이행 15 년차 1 월 1 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사. “E20”으로 표시된 세번으로 분류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20 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기준관세율부터 무관세까지 철폐되어, 이행 20 년차 1 월 1 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그리고

아. “동결”(SS)로 표시된 세번으로 분류된 원산지 상품은 기준관세율을 유지한다.

2. “EX”로 표시된 세번으로 분류된 원산지 상품은 관세의 인하 또는 철폐의 모든 약속으로부터 배제된다.

3. 이 부속서의 당사국 양허표에 규정된 기준관세율은 2018 년 1 월 1 일에 유효한 각 당사국의 최혜국 실행 관세율과 2018 년 1 월 1 일에 유효한 한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상의 자국의 특혜 관세율 중 낮은 것을 반영한다.

4. 세번에 대한 각 관세 인하 단계에서의 과도적인 관세율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관세율 및 단계별 양허유형은 각 당사국 양허표에서 그 세번에 대하여 표시된다.

5. 과도적인 양허 단계별 관세율은 최소한 백분율의 가장 근접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되도록 그 아래는 버리거나, 또는 관세율이 통화단위로 표시되는 경우, 한국의 경우 최소한 가장 근접한 원 단위로 표시되도록 인도네시아의 경우 최소한 가장 근접한 인도네시아 루피아 단위로 표시되도록 그 아래는 버린다.

6. 이 부속서 및 당사국 양허표의 목적상, **이행 1 년차**란 제 13.4 조(발효)에서 규정된 대로 이 협정이 발효되는 연도를 말한다.

7. 이 부속서 및 당사국 양허표의 목적상, 이행 2 년차를 시작으로 매년 단계별 관세인하는 해당 연도의 1 월 1 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한국의 양허표에 대한 주해

1. 한국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이하 "HSK"라 한다)와의 관계: 이 양허표의 규정은 일반적으로 HSK 식으로 표현되며, 이 양허표의 규정에 대한 해석은 HSK 의 일반 주해, 부 주해 및 류 주해에 의하여 규율된다. 이 양허표의 규정이 이에 상응하는 HSK 의 규정과 일치하는 한도에서, 이 양허표의 규정은 이에 상응하는 HSK 의 규정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2. 양허단계: 부속서 2-가의 제 1 항에 열거된 단계별 양허유형에 추가하여, 이 양허표는 단계별 양허유형 RED 를 포함한다. "RED"로 표시된 세번으로 분류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매년 균등하게 기준관세율의 25 퍼센트가 10 년 내에 인하된다.

한국 양허표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0101211000	농가 사육용	0.0%	E0
0101219000	기타	0.0%	E0
0101291000	경주말	0.0%	E0
0101299000	기타	0.0%	E0
0101301000	번식용	0.0%	E0
0101309000	기타	0.0%	E0
0101900000	기타	0.0%	E0
0102211000	젖소	0.0%	E0
0102212000	육우(肉牛)	0.0%	E0
0102219000	기타	0.0%	E0
0102291000	젖소	0.0%	E0
0102292000	육우(肉牛)	32.0%	SS
0102299000	기타	0.0%	E0
0102310000	번식용	0.0%	E0
0102391000	젖소	0.0%	E0
0102392000	육우(肉牛)	32.0%	SS
0102399000	기타	0.0%	E0
0102901000	번식용	0.0%	E0
0102909010	젖소	0.0%	E0
0102909020	육우(肉牛)	32.0%	SS
0102909090	기타	0.0%	E0
0103100000	번식용	0.0%	E0
0103910000	중량이 50 킬로그램 미만인 것	0.0%	E0
0103920000	중량이 50 킬로그램 이상인 것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0104101000	번식용	0.0%	E0
0104109000	기타	0.0%	E0
0104201000	젖산양	0.0%	E0
0104209000	기타	0.0%	E0
0105111000	번식용	0.0%	E0
0105119000	기타	0.0%	E0
0105120000	칠면조	0.0%	E0
0105131000	번식용	0.0%	E0
0105139000	기타	0.0%	E0
0105140000	거위	0.0%	E0
0105150000	기니아새	0.0%	E0
0105941000	번식용	0.0%	E0
0105949000	기타	0.0%	E0
0105991010	번식용	0.0%	E0
0105991090	기타	0.0%	E0
0105992000	칠면조	0.0%	E0
0105999000	기타	0.0%	E0
0106110000	영장류	0.0%	E0
0106121000	고래 · 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바다소(바다소목의 포유동물)	0.0%	E0
0106122000	물개, 바다사자와 바다코끼리(기각아목의 포유동물)	0.0%	E0
0106130000	낙타와 그 밖의 낙타과의 동물[카멜리대(Camelidae)과]	0.0%	E0
0106141000	번식용	0.0%	E0
0106149000	기타	0.0%	E0
0106191000	개	0.0%	E0
0106193000	사슴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0106194000	곰	0.0%	E0
0106195010	번식용	0.0%	E0
0106195090	기타	0.0%	E0
0106196010	번식용	0.0%	E0
0106196090	기타	0.0%	E0
0106199000	기타	0.0%	E0
0106201000	뱀	0.0%	E0
0106202000	자라	5.0%	EX
0106203000	거북	0.0%	E0
0106209000	기타	0.0%	E0
0106310000	맹금류	0.0%	E0
0106320000	앵무류[패럿류(parrots)·패러키트류(parakeets)·금강앵무류·유황앵무류를 포함한다]	0.0%	E0
0106330000	타조와 에뮤(emus)[드로마이어스 노배홀란디애(Dromaius novaehollandiae)]	0.0%	E0
0106390000	기타	0.0%	E0
0106411000	꿀벌	0.0%	E0
0106419000	기타	0.0%	E0
0106490000	기타	0.0%	E0
0106901000	양서류	0.0%	E0
0106903010	갯지렁이	0.0%	E0
0106903020	실지렁이	0.0%	E0
0106903090	기타	0.0%	E0
0106909000	기타	0.0%	E0
02011000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32.0%	SS
0201201000	갈비	32.0%	EX
0201209000	기타	32.0%	EX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0201300000	뼈 없는 것	32.0%	EX
02021000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32.0%	SS
0202201000	갈비	40.0%	EX
0202209000	기타	40.0%	EX
0202300000	뼈 없는 것	40.0%	EX
02031100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18.0%	EX
0203120000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를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18.0%	EX
0203191000	삼겹살	22.5%	EX
0203199000	기타	22.5%	EX
02032100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20.0%	EX
0203220000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를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0.0%	EX
0203291000	삼겹살	25.0%	EX
0203299000	기타	25.0%	EX
0204100000	어린 면양의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02042100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0.0%	E0
0204220000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0.0%	E0
0204230000	뼈 없는 것	0.0%	E0
0204300000	어린 면양의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02044100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0.0%	E0
0204420000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0.0%	E0
0204430000	뼈 없는 것	0.0%	E0
0204501000	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	0.0%	E0
0204502000	냉동한 것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0205001000	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	0.0%	E0
0205002000	냉동한 것	0.0%	E0
0206100000	소의 것(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5.0%	SS
0206210000	혀	5.0%	SS
0206220000	간	5.0%	SS
0206291000	꼬리	14.4%	EX
0206292000	족	14.4%	EX
0206299000	기타	14.4%	EX
0206300000	돼지의 것(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14.4%	EX
0206410000	간	14.4%	EX
0206491000	족	14.4%	EX
0206499000	기타	14.4%	EX
0206800000	기타(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14.4%	E10
0206900000	기타(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14.4%	E10
0207111000	중량이 550 그램 이하인 것	14.4%	SS
0207119000	기타	14.4%	SS
0207121000	중량이 550 그램 이하인 것	16.0%	SS
0207129000	기타	16.0%	EX
0207131010	다리	18.0%	EX
0207131020	가슴	18.0%	EX
0207131030	날개	18.0%	EX
0207131090	기타	18.0%	EX
0207132010	간	18.0%	SS
0207132090	기타	27.0%	EX
0207141010	다리	20.0%	EX
0207141020	가슴	20.0%	EX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0207141030	날개	20.0%	EX
0207141090	기타	20.0%	EX
0207142010	간	5.0%	SS
0207142090	기타	5.0%	SS
0207240000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0207250000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0207261000	절단육	0.0%	E0
0207262010	간	0.0%	E0
0207262090	기타	0.0%	E0
0207271000	절단육	0.0%	E0
0207272010	간	0.0%	E0
0207272090	기타	0.0%	E0
0207410000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14.4%	SS
0207420000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14.4%	EX
0207430000	지방간(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0207441000	절단육	14.4%	SS
0207442010	간	0.0%	E0
0207442090	기타	0.0%	E0
0207451000	절단육	18.0%	EX
0207452010	간	0.0%	E0
0207452090	기타	0.0%	E0
0207510000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14.4%	EX
0207520000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14.4%	EX
0207530000	지방간(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0207541000	절단육	14.4%	EX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0207542010	간	0.0%	E0
0207542090	기타	0.0%	E0
0207551000	절단육	18.0%	EX
0207552010	간	0.0%	E0
0207552090	기타	0.0%	E0
0207601000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14.4%	EX
0207602000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14.4%	EX
0207603100	절단육	14.4%	EX
0207603210	간	0.0%	E0
0207603290	기타	0.0%	E0
0207604100	절단육	18.0%	EX
0207604210	간	0.0%	E0
0207604290	기타	0.0%	E0
0208100000	토끼의 것	0.0%	E0
0208300000	영장류의 것	0.0%	E0
0208401000	고래 · 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바다소(바다소목의 포유동물)의 것	0.0%	E0
0208402000	물개・바다사자・바다코끼리(기각아목의 포유동물)의 것	0.0%	E0
0208500000	파충류의 것(뱀과 거북을 포함한다)	0.0%	E0
0208600000	낙타와 그 밖의 낙타과[카멜리대(Camelidae)과]의 것	0.0%	E0
0208901000	사슴의 것	0.0%	E0
0208909010	해양동물의 것	0.0%	E0
0208909090	기타	0.0%	E0
0209100000	돼지의 것	0.0%	E0
0209900000	기타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0210110000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를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0.0%	EX
0210120000	복부살과 이를 절단한 것	24.0%	EX
0210190000	기타	20.0%	EX
0210201000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	5.0%	SS
0210209000	기타	0.0%	E0
0210910000	영장류의 것	0.0%	E0
0210921000	고래 · 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바다소(바다소목의 포유동물)의 것	0.0%	E0
0210922000	물개·바다사자·바다코끼리(기각아목의 포유동물)의 것	0.0%	E0
0210930000	파충류의 것(뱀과 거북을 포함한다)	0.0%	E0
0210991010	소의 것	0.0%	E0
0210991020	돼지의 것	5.0%	EX
0210991030	가금(家禽)류의 것	0.0%	E0
0210991090	기타	0.0%	E0
0210999010	면양과 산양의 것	0.0%	E0
0210999020	가금(家禽)류의 것	0.0%	E0
0210999090	기타	0.0%	E0
0301111000	비단잉어	0.0%	E0
0301119000	기타	5.0% / 8.0%	EX
0301190000	기타	5.0% / 8.0%	EX
0301911000	살모 트루타(Salmo trutta)·옹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옹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옹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옹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0301912000	옹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와 옹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0.0%	E0
0301921000	실뱀장어(한 마리당 0.3 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양식용으로 한정한다)	0.0%	E0
0301922000	새끼뱀장어(한 마리당 0.3 그램 초과 50 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양식용으로 한정한다)	5.0%	EX
0301929010	실뱀장어(양식용은 제외한다)	5.0%	E10
0301929090	기타	20.0%	EX
0301930000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종・카라시우스(Carassius)종・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시리누스(Cirrhinus)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라베오(Labeo)종・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렙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종]	0.0%	E0
0301941000	대서양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 (Thunnus thynnus)]	10.0%	E10
0301942000	태평양 참다랑어[터너스 오리엔탈리스(Thunnus orientalis)]	10.0%	E10
0301950000	남방 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Thunnus maccoyii)]	10.0%	E10
0301992000	방어	5.0%	EX
0301994010	치어(稚魚)(양식용으로 한정한다)	0.0%	E0
0301994090	기타	28% 또는 2,052 원/kg, 양자 중 고액(율)	EX
0301995000	붕장어	5.0%	E10
0301996000	갯장어	5.0%	E1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0301997000	먹장어	5.0%	EX
0301998000	넙치류	10.0%	EX
0301999010	능성어	10.0%	E10
0301999020	복어	10.0%	E10
0301999030	틸라피아	10.0%	E10
0301999040	볼락(적어를 포함한다)	10.0%	E10
0301999051	치어(稚魚)(양식용으로 한정한다)	0.0%	E0
0301999059	기타	28.0%	EX
0301999060	숭어	10.0%	E10
0301999070	미꾸라지	0.0%	E0
0301999080	메기	0.0%	E0
0301999091	노래미[헥사그라모스(Hexagrammos)종・아그라무스(Agrammus)종]	10.0%	E10
0301999092	붕어	0.0%	E0
0301999093	연어	0.0%	E0
0301999094	초어	0.0%	E0
0301999095	민어	10.0%	EX
0301999096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종・카라시우스(Carassius)종・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시리누스(Cirrhinus)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라베오(Labeo)종・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렙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종은 제외한다]	0.0%	E0
0301999099	기타	10.0%	E1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0302111000	살모 트루타(Salmo trutta)・옹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옹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옹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옹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	0.0%	E0
0302112000	옹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와 옹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0.0%	E0
0302130000	태평양 연어[옹코링쿠스 넬카(Oncorhynchus nerka)・옹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cha)・옹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옹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chawytscha)・옹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옹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옹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0.0%	E0
0302140000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와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0.0%	E0
0302190000	기타	0.0%	E0
0302210000	넙치[레인하드티우스 히포글러소이데스(Reinhardtius hippoglossoides)・히포글러서스 히포글러서스(Hippoglossus hippoglossus)・히포글러서스 스테노레피스(Hippoglossus stenolepis)]	16.0%	E10
0302220000	가자미[플루로넥테스 플라테사(Pleuronectes platessa)]	5.0%	E10
0302230000	서대[솔레아(Solea)종]	0.0%	E0
0302240000	터벗(turbots)[프세타 맥시마(Psetta maxima)]	5.0%	E10
0302290000	기타	5.0%	E10
0302310000	날개다랑어나 긴지느러미 다랑어[터너스 알라룽가(Thunnus alalunga)]	5.0%	E10
0302320000	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Thunnus albacares)]	5.0%	E1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0302330000	가다랑어・줄무늬 버니토	0.0%	E0
0302340000	눈다랑어[터너스 오베서스(Thunnus obesus)]	16.0%	E10
0302351000	대서양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 (Thunnus thynnus)]	0.0%	E0
0302352000	태평양 참다랑어[터너스 오리엔탈리스(Thunnus orientalis)]	5.0%	E10
0302360000	남방 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Thunnus maccoyii)]	0.0%	E0
0302390000	기타	5.0%	E10
0302410000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0.0%	E0
0302420000	멸치[엔그라울리스(Engraulis)종]	20.0%	E10
0302430000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Sardina pilchardus)・사르디노프스(Sardinops)종],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Sardinella)종], 브리스링(brisling)이나 스프랫(sprats)[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Sprattus sprattus)]	0.0%	E0
0302440000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Scomber scombrus)・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Scomber australasicus)・스콤버 자포니쿠스(Scomber japonicus)]	0.0%	E0
0302450000	전갱이[트라커러스(Trachurus)종]	0.0%	E0
0302460000	날쌔기[라키센트론 카나둠(Rachycentron canadum)]	20.0%	E10
0302470000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20.0%	E10
0302491000	삼치[스콤버로모러스(Scomberomorus)종]	20.0%	E10
0302492000	병어[팜푸스(Pampus)종]	20.0%	E10
0302493000	꽁치[콜로라비스 사이라(Cololabis saira)]	0.0%	E0
0302499000	기타	20.0%	EX
0302510000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가두스 오각(Gadus ogac)・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5.0%	EX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macrocephalus)]		
0302520000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Melanogrammus aeglefinus)]	0.0%	E0
0302530000	검정대구[폴라치우스 비렌스(Pollachius virens)]	0.0%	E0
0302540000	민대구[메루키우스(Merluccius)종・유르피키스(Urophycis)종]	20.0%	E10
0302550000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	0.0%	E0
0302560000	블루 화이팅스(blue whitings)[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포우타소우(Micromesistius poutassou)・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오스트랄리스(Micromesistius australis)]	20.0%	E10
0302590000	기타	0.0% / 20.0%	E10
0302710000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20.0%	E10
0302720000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20.0%	E10
0302730000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종・카라시우스(Carassius)종・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시리누스(Cirrhinus)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라베오(Labeo)종・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렙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종]	20.0%	EX
0302740000	뱀장어[앙귈라(Anguilla)종]	0.0%	E0
0302790000	기타	20.0%	E10
0302810000	곱상어와 그 밖의 상어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0302820000	가오리와 홍어[라지대(Rajidae)과]	20.0%	EX
0302830000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종]	20.0%	E10
0302840000	농어[디센트라르쿠스(Dicentrarchus)종]	20.0%	E10
0302850000	돔[스파리대(Sparidae)과]	20.0%	EX
0302891000	방어	5.0%	E10
0302892000	갈치	20.0%	EX
0302893000	붕장어	0.0%	E0
0302894000	갯장어	0.0%	E0
0302895000	학꽁치(Hyporhampus sajori)	0.0%	E0
0302896000	돔[스파리대(Sparidae)과는 제외한다]	20.0%	E10
0302899020	복어	20.0%	EX
0302899040	아귀	20.0%	E10
0302899090	기타	20.0%	EX
0302911000	간	0.0%	E0
0302912000	어란(魚卵)·어백(魚白)	0.0%	E0
0302920000	상어 지느러미	0.0%	E0
0302990000	기타	0.0% / 5.0% / 16.0% / 20.0%	EX
0303110000	소크아이 연어[홍연어(red salmon)][옹코링쿠스 넬카(Oncorhynchus nerka)]	0.0%	E0
0303120000	그 밖의 태평양 연어[옹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cha)·옹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옹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chawytscha)·옹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옹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옹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0.0%	E0
0303130000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와 다뉴브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0303140000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옹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옹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옹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옹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옹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옹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0.0%	E0
0303190000	기타	0.0%	E0
0303230000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10.0%	RED
0303240000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10.0%	EX
0303250000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종・카라시우스(Carassius)종・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시리누스(Cirrhinus)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라베오(Labeo)종・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렙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종]	10.0%	EX
0303260000	뱀장어[앙귈라(Anguilla)종]	0.0%	E0
0303290000	기타	10.0%	E10
0303310000	넙치[레인하드티우스 히포글러소이데스(Reinhardtius hippoglossoides)・히포글러서스 히포글러서스(Hippoglossus hippoglossus)・히포글러서스 스테노레피스(Hippoglossus stenolepis)]	5.0%	E10
0303320000	가자미[플루로넥테스 플라테사(Pleuronectes platessa)]	5.0%	E1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0303330000	서대[솔레아(Solea)종]	0.0%	E0
0303340000	터벗(turbots)[프세타 맥시마(Psetta maxima)]	5.0%	E10
0303390000	기타	5.0%	EX
0303410000	날개다랑어나 긴지느러미 다랑어[터너스 알라룽가(Thunnus alalunga)]	0.0%	E0
0303420000	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Thunnus albacares)]	5.0%	RED
0303430000	가다랑어・줄무늬 버니토	5.0%	RED
0303440000	눈다랑어[터너스 오베서스(Thunnus obesus)]	5.0%	E10
0303451000	대서양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Thunnus thynnus)]	0.0%	E0
0303452000	태평양 참다랑어[터너스 오리엔탈리스(Thunnus orientalis)]	5.0%	E10
0303460000	남방 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Thunnus maccoyii)]	0.0%	E0
0303490000	기타	5.0%	E10
0303510000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5.0%	E10
0303530000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Sardina pilchardus)・사르디노프스(Sardinops)종],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Sardinella)종], 브리스링(brisling)이나 스프랫(sprats)[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Sprattus sprattus)]	5.0%	E7
0303540000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Scomber scombrus)・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Scomber australasicus)・스콤버 자포니쿠스(Scomber japonicus)]	8.0%	EX
0303550000	전갱이[트라커러스(Trachurus)종]	10.0%	EX
0303560000	날쌔기[라키센트론 카나둠(Rachycentron canadum)]	10.0%	E10
0303570000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10.0%	RED
0303591000	삼치[스콤버로모러스(Scomberomorus)종]	10.0%	E10
0303592000	꽁치[콜로라비스 사이라(Cololabis saira)]	26.0%	EX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0303599000	기타	10.0%	RED
0303630000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가두스 오각(Gadus ogac)·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5.0%	EX
0303640000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Melanogrammus aeglefinus)]	0.0%	E0
0303650000	검정대구[폴라치우스 비렌스(Pollachius virens)]	0.0%	E0
0303660000	민대구[메루키우스(Merluccius)종·유르피키스(Urophycis)종]	0.0%	E0
0303670000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	22.0%	EX
0303680000	블루 화이팅스(blue whitings)[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포우타소우(Micromesistius poutassou)·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오스트랄리스(Micromesistius australis)]	10.0%	E10
0303691000	새꼬리민태	0.0%	E0
0303699000	기타	22.0%	E10
0303810000	곱상어와 그 밖의 상어	5.0%	EX
0303821000	가오리	5.0%	EX
0303822000	홍어	10.0%	E10
0303830000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종]	0.0%	E0
0303840000	농어[디센트라르쿠스(Dicentrarchus)종]	0.0%	E0
0303891000	은대구	0.0%	E0
0303892000	갈치	10.0%	EX
0303893010	옥돔[브랜치오스테거스 자포니커스(Branchiostegus Japonicus)]	5.0%	EX
0303893090	기타	10.0%	EX
0303894000	붕장어	0.0%	E0
0303895000	조기	10.0%	EX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0303896000	학꽁치(Hyporhampus sajori)	10.0%	EX
0303898000	복어	5.0%	E7
0303899010	보리멸	0.0%	E0
0303899020	홍살치	0.0%	E0
0303899030	달고기	0.0%	E0
0303899040	임연수어	0.0%	E0
0303899050	볼낙(적어를 포함한다)	5.0%	EX
0303899060	아귀	10.0%	E10
0303899070	먹장어(대서양 또는 태평양)	5.0%	E10
0303899080	밀크피쉬	0.0%	E0
0303899091	민어	10.0%	EX
0303899092	까나리	0.0%	E0
0303899093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종은 제외한다]	0.0%	E0
0303899099	기타	10.0%	EX
0303911000	간	0.0%	E0
0303912010	명란	0.0%	E0
0303912090	기타	0.0%	E0
0303920000	상어 지느러미	5.0%	EX
0303990000	기타	0.0% / 5.0% / 10.0%	EX
0304310000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0.0%	E0
0304320000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0.0%	E0
0304330000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0.0%	E0
0304390000	기타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0304410000	태평양 연어[옹코링쿠스 넬카(Oncorhynchus nerka)·옹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cha)·옹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옹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chawytscha)·옹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옹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옹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0.0%	E0
0304420000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옹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옹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옹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옹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옹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옹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0.0%	E0
0304431000	가자미	0.0%	E0
0304439000	기타	0.0%	E0
0304440000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가디대(Gadidae)과·마크로우리대(Macrouridae)과·멜라노니대(Melanonidae)과·메르루치대(Merluccidae)과·모리대(Moridae)과·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과의 어류	0.0%	E0
0304450000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0.0%	E0
0304460000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종]	0.0%	E0
0304470000	곱상어와 그 밖의 상어	0.0%	E0
0304481000	가오리	0.0%	E0
0304482000	홍어	0.0%	E0
0304491000	붕장어	0.0%	E0
0304492000	참다랑어	0.0%	E0
0304499000	기타	0.0%	E0
0304511000	연육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0304519000	기타	0.0%	E0
0304521000	연육	0.0%	E0
0304529000	기타	0.0%	E0
0304531000	연육	0.0%	E0
0304539000	기타	0.0%	E0
0304541000	연육	0.0%	E0
0304549000	기타	0.0%	E0
0304551000	연육	0.0%	E0
0304559000	기타	0.0%	E0
0304561000	연육	0.0%	E0
0304569000	기타	0.0%	E0
0304571010	연육	0.0%	E0
0304571090	기타	0.0%	E0
0304572010	연육	0.0%	E0
0304572090	기타	0.0%	E0
0304591010	연육	0.0%	E0
0304591090	기타	0.0%	E0
0304592010	연육	0.0%	E0
0304592090	기타	0.0%	E0
0304593010	연육	0.0%	E0
0304593090	기타	0.0%	E0
0304599010	연육	0.0%	E0
0304599090	기타	0.0%	E0
0304610000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0.0%	E0
0304620000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0304630000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0.0%	E0
0304690000	기타	0.0%	E0
0304710000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가두스 오각(Gadus ogac)·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0.0%	E0
0304720000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Melanogrammus aeglefinus)]	0.0%	E0
0304730000	검정대구[폴라치우스 비렌스(Pollachius virens)]	0.0%	E0
0304740000	민대구[메루키우스(Merluccius)종·유르피키스(Urophycis)종]	0.0%	E0
0304750000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	0.0%	E0
0304790000	기타	0.0%	E0
0304810000	태평양 연어[옹코링쿠스 넬카(Oncorhynchus nerka)·옹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cha)·옹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옹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chawytscha)·옹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옹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옹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0.0%	E0
0304820000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옹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옹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옹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옹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옹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옹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0.0%	E0
0304831000	가자미	0.0%	E0
0304839000	기타	0.0%	E0
0304840000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0304850000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종]	0.0%	E0
0304860000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0.0%	E0
0304871000	참다랑어	0.0%	E0
0304879000	기타	0.0%	E0
0304881000	곱상어, 그 밖의 상어	0.0%	E0
0304882000	가오리	0.0%	E0
0304883000	홍어	0.0%	E0
0304891000	붕장어의 것	0.0%	E0
0304892000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종은 제외한다]의 것	0.0%	E0
0304893000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은 제외한다]의 것	0.0%	E0
0304894000	쥐치의 것	0.0%	E0
0304899000	기타	0.0%	E0
0304911000	냉동 연육	0.0%	E0
0304919000	기타	0.0%	E0
0304921000	냉동 연육	0.0%	E0
0304929000	기타	0.0%	E0
0304931000	냉동 연육	0.0%	E0
0304939000	기타	0.0%	E0
0304941000	냉동 연육	0.0%	E0
0304949000	기타	0.0%	E0
0304951000	냉동 연육	0.0%	E0
0304959000	기타	0.0%	E0
0304961000	냉동 연육	0.0%	E0
0304969000	기타	0.0%	E0
0304971010	냉동 연육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0304971090	기타	0.0%	E0
0304972010	냉동 연육	0.0%	E0
0304972090	기타	0.0%	E0
0304991000	냉동 연육	0.0%	E0
0304999000	기타	0.0%	E0
0305100000	어류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0305201000	간	0.0%	E0
0305202000	건조한 어란(魚卵)과 어백(魚白)	5.0%	E10
0305203000	훈제한 어란(魚卵)과 어백(魚白)	0.0%	E0
0305204010	명태의 것	0.0%	E0
0305204020	조기의 것	0.0%	E0
0305204030	청어의 것	0.0%	E0
0305204090	기타	0.0%	E0
0305311000	건조한 것	0.0%	E0
0305312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0.0%	E0
0305321000	건조한 것	0.0%	E0
0305322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0.0%	E0
0305391000	건조한 것	0.0%	E0
0305392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0.0%	E0
0305410000	태평양 연어[옹코링쿠스 넬카(Oncorhynchus nerka)·옹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cha)·옹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옹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chawytscha)·옹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옹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옹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0.0%	E0
0305420000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harengus)・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0305430000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옹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옹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옹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옹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옹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옹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0.0%	EO
0305440000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종・카라시우스(Carassius)종・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시리누스(Cirrhinus)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라베오(Labeo)종・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렙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종], 뱀장어[앙귈라(Anguilla)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나(Channa)종]	0.0%	EO
0305491000	멸치	0.0%	EO
0305492000	명태	0.0%	EO
0305499000	기타	0.0%	EO
0305510000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가두스 오각(Gadus ogac)・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0.0%	EO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0305520000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종・카라시우스(Carassius)종・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시리누스(Cirrhinus)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라베오(Labeo)종・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렙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종], 뱀장어[앙귈라(Anguilla)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나(Channa)종]	0.0%	EO
0305530000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가두스 오각(Gadus ogac)・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이외의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가디대(Gadidae)과・마크로우리대(Macrouridae)과・멜라노니대(Melanonidae)과・메르루치대(Merlucciidae)과・모리대(Moridae)과・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과의 어류	0.0%	EO
0305541000	멸치[엔그라울리스(Engraulis)종]	16.0%	EX
0305549000	기타	0.0%	EO
0305593000	명태(북어)	0.0%	EO
0305594000	조기(굴비)	0.0%	EO
0305595000	복어	0.0%	EO
0305596000	갯장어	0.0%	EO
0305597000	까나리	0.0%	EO
0305598000	베도라치(실치)	0.0%	EO
0305599000	기타	0.0%	EO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0305610000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0.0%	E0
0305620000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가두스 오각(Gadus ogac)・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0.0%	E0
0305631000	멸치젓	5.0%	E10
0305639000	기타	0.0%	E0
0305640000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종・카라시우스(Carassius)종・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시리누스(Cirrhinus)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라베오(Labeo)종・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렙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종], 뱀장어[앙귈라(Anguilla)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나(Channa)종]	5.0%	E10
0305691000	연어	0.0%	E0
0305692000	송어	0.0%	E0
0305693000	갈치	0.0%	E0
0305694000	정어리	0.0%	E0
0305695000	고등어	0.0%	E0
0305696000	조기	5.0%	E10
0305697000	전갱이	0.0%	E0
0305698000	꽁치(학꽁치를 포함한다)	0.0%	E0
0305699000	기타	5.0%	E1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0305711000	훈제한 것	0.0%	E0
0305712000	건조한 것	0.0%	E0
0305713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5.0%	E10
0305721000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가두스 오각(Gadus ogac)·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의 것	0.0%	E0
0305729000	기타	0.0% / 5.0% / 16.0%	E10
0305790000	기타	0.0% / 5.0% / 16.0%	E10
0306111000	훈제한 것	0.0%	E0
0306119000	기타	5.0%	E10
0306121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0.0%	E0
0306121020	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	0.0%	E0
0306129000	기타	5.0%	E0
0306141011	밀폐용기에 넣은 것	0.0%	E0
0306141012	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	0.0%	E0
0306141090	기타	0.0%	E0
0306142010	훈제한 것	0.0%	E0
0306142090	기타	0.0%	E0
0306143010	훈제한 것	0.0%	E0
0306143090	기타	11.2%	EX
0306149010	훈제한 것	0.0%	E0
0306149090	기타	11.2%	EX
0306151000	훈제한 것	0.0%	E0
0306159000	기타	0.0%	E0
0306161010	훈제한 것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0306161090	기타	20.0%	EX
0306169010	훈제한 것	0.0%	E0
0306169090	기타	20.0%	EX
0306171010	훈제한 것	0.0%	E0
0306171090	기타	20.0%	EX
0306179010	훈제한 것	0.0%	E0
0306179090	기타	20.0%	EX
0306191000	훈제한 것	0.0%	E0
0306199000	기타	0.0%	E0
0306310000	닭새우류[팔리누루스(Palinurus)종・파누리루스(Panulirus)종・자수스(Jasus)종]	0.0%	E0
0306320000	바닷가재[호마루스(Homarus)종]	0.0%	E0
0306331000	꽃게	16.0%	E10
0306332000	대게	16.0%	E10
0306339000	기타	5.0%	EX
0306340000	노르웨이 바닷가재[네프로프스 노르베지쿠스(Nephrops norvegicus)]	0.0%	E0
0306350000	냉수성(冷水性) 새우류[판달러스(Pandalus)종・크란곤 크란곤(Crangon crangon)]	20.0%	EX
0306360000	그 밖의 새우류	20.0%	EX
0306390000	기타[식용에 적합한 것으로서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을 포함한다]	0.0%	E0
0306912000	건조한 것	0.0%	E0
0306913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0.0%	E0
0306914000	훈제한 것	0.0%	E0
0306922000	건조한 것	0.0%	E0
0306923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0306924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0.0%	E0
0306924020	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	0.0%	E0
0306932000	건조한 것	0.0%	E0
0306933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0.0%	E0
0306934011	밀폐용기에 넣은 것	0.0%	E0
0306934012	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	0.0%	E0
0306934090	기타	0.0%	E0
0306942000	건조한 것	0.0%	E0
0306943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0.0%	E0
0306944000	훈제한 것	0.0%	E0
0306951020	건조한 것	16.0%	E10
030695103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32.0%	E10
0306951040	훈제한 것	0.0%	E0
0306959020	건조한 것	16.0%	E10
030695903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32.0%	EX
0306959040	훈제한 것	0.0%	E0
0306992000	건조한 것	0.0%	E0
0306993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0.0%	E0
0306994000	훈제한 것	0.0%	E0
0307111010	종패용	0.0%	E0
0307111090	기타	0.0%	E0
0307119000	기타	0.0%	E0
0307120000	냉동한 것	0.0%	E0
0307192000	건조한 것	0.0%	E0
0307193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0.0%	E0
0307194000	훈제한 것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0307210000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5.0%	EX
0307220000	냉동한 것	0.0%	E0
0307292000	건조한 것	0.0%	E0
0307293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0.0%	E0
0307294000	훈제한 것	0.0%	E0
0307310000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0.0%	E0
0307320000	냉동한 것	0.0%	E0
0307392000	건조한 것	0.0%	E0
0307393000	훈제한 것	0.0%	E0
0307399000	기타	0.0%	E0
0307421010	세피아 오피시날리스(Sepia officinalis)·로시아 마크로소마(Rossia macrosoma)·세피올라(Sepiola)종	5.0%	E10
0307421090	기타	0.0%	E0
0307422010	옴마스트레페스(Ommastrephes)종·로리고(Loligo)종·노토토다루스(Nototodarus)종·세피오투디스(Sepioteuthis)종	8.0%	E10
0307422090	기타	0.0%	E0
0307431010	세피아 오피시날리스(Sepia officinalis)·로시아 마크로소마(Rossia macrosoma)·세피올라(Sepiola)종	8.0%	EX
0307431090	기타	5.0%	EX
0307432010	옴마스트레페스(Ommastrephes)종·로리고(Loligo)종·노토토다루스(Nototodarus)종·세피오투디스(Sepioteuthis)종	21.6%	EX
0307432090	기타	5.0%	EX
0307492010	갑오징어[세피아 오피시날리스(Sepia officinalis)·로시아 마크로소마(Rossia macrosoma)·세피올라(Sepiola)종]와 오징어[옴마스트레페스(Ommastrephes)종·로리고(Loligo)종·노토토다루스(Nototodarus)종·세피오투	8.0%	EX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디스(Sepioteuthis)종]		
0307492090	기타	5.0%	E10
0307493010	갑오징어[세피아 오피시날리스(Sepia officinalis)·로시아 마크로소마(Rossia macrosoma)·세피올라(Sepiola)종]와 오징어[옴마스트레페스(Ommastrephes)종·로리고(Loligo)종·노토토다루스(Nototodarus)종·세피오투디스(Sepioteuthis)종]	8.0%	EX
0307493090	기타	0.0%	E0
0307494010	갑오징어[세피아 오피시날리스(Sepia officinalis)·로시아 마크로소마(Rossia macrosoma)·세피올라(Sepiola)종]와 오징어[옴마스트레페스(Ommastrephes)종·로리고(Loligo)종·노토토다루스(Nototodarus)종·세피오투디스(Sepioteuthis)종]	0.0% / 16.0%	E10
0307494090	기타	0.0%	E0
0307511000	낙지	0.0%	E0
0307512000	주꾸미	0.0%	E0
0307519000	기타	0.0%	E0
0307521000	문어	0.0%	E0
0307522000	낙지	0.0%	E0
0307523000	쭈꾸미	0.0%	E0
0307529000	기타	0.0%	E0
0307592000	건조한 것	0.0%	E0
0307593000	훈제한 것	0.0%	E0
0307599000	기타	0.0%	E0
0307601000	훈제한 것	0.0%	E0
0307609000	기타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0307711010	치패(稚貝)	0.0%	E0
0307711090	기타	0.0%	E0
0307712010	종패용	0.0%	E0
0307712090	기타	5.0%	E10
0307713000	새조개	0.0%	E0
0307714000	바지락	5.0%	E10
0307715000	개조개	0.0%	E0
0307719000	기타	0.0%	E0
0307721000	새조개	0.0%	E0
0307722000	개량조개	0.0%	E0
0307723000	바지락	5.0%	E10
0307724000	피조개	5.0%	E10
0307725000	개조개	5.0%	E7
0307729000	기타	5.0%	RED
0307792010	개량조개	0.0%	E0
0307792020	바지락	0.0%	E0
0307792030	개조개	0.0%	E0
0307792090	기타	0.0%	E0
0307793010	개량조개	0.0%	E0
0307793020	바지락	5.0%	E10
0307793030	개조개	5.0%	E10
0307793090	기타	5.0%	E10
0307794011	밀폐용기에 넣은 것	0.0%	E0
0307794019	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	0.0%	E0
0307794090	기타	0.0%	E0
0307810000	살아있거나, 신선하거나 냉장한 전복[할리오티스(Haliotis)종]	16.0%	EX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0307820000	살아있거나, 신선하거나 냉장한 수정고둥류[스트롬버스(Strombus)종]	0.0%	E0
0307830000	냉동한 전복[할리오티스(Haliotis)종]	5.0%	E10
0307840000	냉동한 수정고둥류[스트롬버스(Strombus)종]	5.0%	E10
0307871000	건조한 것	0.0%	E0
0307872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5.0%	E10
0307873000	훈제한 것	0.0%	E0
0307881000	건조한 것	0.0%	E0
0307882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5.0%	E10
0307883000	훈제한 것	0.0%	E0
0307911000	소라	0.0%	E0
0307912010	종패용	0.0%	E0
0307912090	기타	0.0%	E0
0307913000	개아지살	0.0%	E0
0307914000	재첩	0.0%	E0
0307919000	기타	0.0%	E0
0307921000	개아지살	0.0%	E0
0307922000	소라	0.0%	E0
0307929000	기타	5.0%	EX
0307992100	개아지살	0.0%	E0
0307992900	기타	0.0%	E0
0307993100	소라	0.0%	E0
0307993900	기타	5.0%	E10
03079941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0.0%	E0
0307994120	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	0.0%	E0
0307994900	기타	0.0%	E0
0308110000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0308120000	냉동한 것	0.0%	E0
0308192000	건조한 것	0.0%	E0
0308193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0.0%	E0
0308194000	훈제한 것	0.0%	E0
0308210000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0.0%	E0
0308220000	냉동한 것	5.0%	E10
0308292000	건조한 것	0.0%	E0
0308293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0.0%	E0
0308294000	훈제한 것	0.0%	E0
0308301000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0.0%	E0
0308302000	냉동한 것	5.0%	E10
0308303000	건조한 것	0.0%	E0
0308304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0.0%	E0
0308305000	훈제한 것	0.0%	E0
0308901011	종묘(種苗)	0.0%	E0
0308901019	기타	0.0%	E0
0308901090	기타	0.0%	E0
0308902010	우렁쉥이(멍게)	0.0%	E0
0308902090	기타	5.0%	E10
0308903010	우렁쉥이(멍게)	0.0%	E0
0308903090	기타	0.0%	E0
0308904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0.0%	E0
0308905000	훈제한 것	0.0%	E0
0401100000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 분의 1 이하인 것	28.8%	EX
0401200000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 분의 1 초과 100 분의 6 이하인 것	28.8%	EX
0401401000	냉동크림	28.8%	EX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0401409000	기타	28.8%	EX
0401501000	냉동크림	28.8%	EX
0401509000	기타	28.8%	EX
0402101010	탈지(脫脂)분유	140.8%	EX
0402101090	기타	140.8%	EX
0402109000	기타	140.8%	EX
0402211000	전지분유	140.8%	EX
0402219000	기타	140.8%	EX
0402290000	기타	140.8%	EX
0402911000	무가당연유(無加糖煉乳)	71.2%	EX
0402919000	기타	71.2%	EX
0402991000	가당연유(加糖煉乳)	71.2%	EX
0402999000	기타	71.2%	EX
0403101000	액체 상태인 것	28.8%	EX
0403102000	냉동한 것	28.8%	EX
0403109000	기타	28.8%	EX
0403901000	버터밀크	71.2%	EX
0403902000	응고밀크와 응고크림	5.0%	E3
0403903000	케피어(kephir)	0.0%	E0
0403909000	그 밖의 발효되거나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	5.0%	E0
0404101011	사료용	5.0%	E15
0404101019	기타	5.0%	EX
0404101091	사료용	5.0%	E15
0404101099	기타	5.0%	EX
0404102111	사료용	5.0%	E15
0404102119	기타	5.0%	EX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0404102121	사료용	5.0%	E15
0404102129	기타	5.0%	EX
0404102131	사료용	5.0%	E15
0404102139	기타	5.0%	EX
0404102191	사료용	5.0%	E15
0404102199	기타	5.0%	EX
0404102910	사료용	5.0%	E15
0404102990	기타	5.0%	EX
0404901000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 분의 1.5 이하인 것	36.0%	EX
0404902000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 분의 1.5 를 초과하는 것	36.0%	EX
0405100000	버터	71.2%	EX
0405200000	데어리 스프레드(dairy spread)	0.0%	E0
0405900000	기타	71.2%	EX
0406101010	모차렐라 치즈(Mozzarella cheese)	36.0%	EX
0406101020	크림 치즈	36.0%	EX
0406101090	기타	36.0%	EX
0406102000	커드(curd)	5.0%	E3
0406200000	갈았거나 가루 모양으로 한 모든 종류의 치즈	28.8%	EX
0406300000	가공치즈(갈았거나 가루 모양의 것은 제외한다)	28.8%	EX
0406400000	블루바인 치즈(blue-veined cheese)와 페니실리움 로우크포티(Penicillium roqueforti)로 생산된 바인(vein)을 함유한 그 밖의 치즈	5.0%	E3
0406901000	체더 치즈(Cheddar cheese)	36.0%	EX
0406902000	하우다 치즈(Gouda cheese)	36.0%	EX
0406903000	카망베르 치즈(Camembert cheese)	36.0%	EX
0406904000	에멘탈 치즈(Emmental cheese)	36.0%	EX
0406909000	기타	36.0%	EX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0407110000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21.6%	EX
0407190000	기타	21.6%	EX
0407210000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5.0%	SS
0407290000	기타	5.0%	SS
0407900000	기타	5.0%	SS
0408110000	건조한 것	0.0%	E0
0408190000	기타	0.0%	E0
0408910000	건조한 것	5.0%	SS
0408991000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33.2%	EX
0408999000	기타	5.0%	SS
0409000000	천연꿀	194.4% 또는 1,491원/kg, 양자 중 고액(율)	EX
0410002000	칼새둥지	0.0%	E0
0410003000	로열젤리	0.0%	E0
0410009000	기타	0.0%	E0
0501000000	사람 머리카락(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세척이나 세정을 했는지에 상관없다)과 그 웨이스트(waste)	0.0%	E0
0502100000	돼지털·멧돼지털과 이들의 웨이스트(waste)	0.0%	E0
0502902000	염소털	0.0%	E0
0502909000	기타	0.0%	E0
0504001010	소의 것	0.0%	E0
0504001021	소시지 케이싱용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0504001029	기타	0.0%	E0
0504001031	소시지 케이싱용	0.0%	E0
0504001039	기타	0.0%	E0
0504001090	기타	0.0%	E0
0504002000	방광	0.0%	E0
0504003000	위	0.0%	E0
0505100000	솜털과 충전재용 깃털	0.0%	E0
0505901000	깃털 가루	0.0%	E0
0505909000	기타	0.0%	E0
0506100000	골소(骨素)와 뼈[산(酸)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0506901020	소의 것	0.0%	E0
0506901090	기타	0.0%	E0
0506902000	뼛가루	5.0%	E3
0506909000	기타	0.0%	E0
0507101000	상아	0.0%	E0
0507109000	기타	0.0%	E0
0507901110	전지(全枝)	16.0%	EX
0507901190	기타	16.0%	EX
0507901200	녹각	16.0%	EX
0507902010	귀갑(龜甲)과 귀판(龜板)	0.0%	E0
0507902020	고래수염과 그 털	0.0%	E0
0507902090	기타	0.0%	E0
0508001000	산호	0.0%	E0
0508002010	진주패각	0.0%	E0
0508002020	청패각(전복)	0.0%	E0
0508002030	첩패각과 지첩패각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0508002040	야광패각(소라)	0.0%	E0
0508002050	트로커스(Trocus) 패각	0.0%	E0
0508002060	아고야(Agoya) 패각	0.0%	E0
0508002070	민물패각[메가로나이아스네보사(Megalonaiasnervosa), 앰브레마프리카타(Amblemaplicata), 콰드루라 콰드루라(Quadrula quadrula)종]	0.0%	E0
0508002090	기타	0.0%	E0
0508009000	기타	0.0%	E0
0510001000	용연향(ambergris)	0.0%	E0
0510002000	해리향(castoreum)	0.0%	E0
0510003000	사향	0.0%	E0
0510004000	우황	0.0%	E0
0510005000	오령지	0.0%	E0
0510009010	췌장	0.0%	E0
0510009020	담즙	0.0%	E0
0510009030	합개(蛤蚧)	0.0%	E0
0510009090	기타	0.0%	E0
0511100000	소의 정액	0.0%	E0
0511911010	브라인 슈림프(brine shrimp) 알	0.0%	E0
0511911090	기타	0.0% / 8.0%	E0
0511912000	어류의 웨이스트(waste)	0.0% / 5.0%	E0
0511919000	기타	0.0% / 8.0%	E0
0511991000	동물의 피	0.0%	E0
0511992010	돼지의 정액	0.0%	E0
0511992090	기타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0511993010	소의 것	0.0%	E0
0511993020	돼지의 것	0.0%	E0
0511993090	기타	0.0%	E0
0511994000	동물의 건(腱)과 근(筋)	0.0%	E0
0511995011	정돈한 것	0.0%	E0
0511995019	기타	0.0%	E0
0511995020	말의 털의 웨이스트(waste)	0.0%	E0
0511996000	동물성의 해면	0.0%	E0
0511999010	잠종(蠶種)	0.0%	E0
0511999020	누에번데기	0.0%	E0
0511999030	동물의 사체(제3류 물품의 사체는 제외한다)	0.0%	E0
0511999040	원피의 페어링(paring)과 이와 유사한 웨이스트(waste)	0.0%	E0
0511999090	기타	0.0%	E0
0601101000	튤립의 것	0.0%	E0
0601102000	백합의 것	0.0%	E0
0601103000	달리아의 것	0.0%	E0
0601104000	히아신스의 것	0.0%	E0
0601105000	글라디올러스의 것	0.0%	E0
0601106000	아이리스의 것	0.0%	E0
0601107000	프리지어의 것	0.0%	E0
0601108000	수선화의 것	0.0%	E0
0601109000	기타	0.0%	E0
0601201000	튤립의 것	0.0%	E0
0601202000	백합의 것	0.0%	E0
0601203000	달리아의 것	0.0%	E0
0601204000	히아신스의 것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0601205000	글라디올러스의 것	0.0%	E0
0601206000	치커리와 치커리 뿌리	0.0%	E0
0601207000	아이리스의 것	0.0%	E0
0601208000	프리지어의 것	0.0%	E0
0601209010	수선화의 것	0.0%	E0
0601209090	기타	0.0%	E0
0602101000	과일나무의 것	0.0%	E0
0602109000	기타	5.0%	E10
0602201000	사과나무	0.0%	E0
0602202000	배나무	0.0%	E0
0602203000	복숭아나무	0.0%	E0
0602204000	포도나무	0.0%	E0
0602205000	감나무	0.0%	E0
0602206000	귤나무	0.0%	E0
0602207010	밤나무	0.0%	E0
0602207020	호두나무	0.0%	E0
0602207030	잣나무	0.0%	E0
0602209000	기타	0.0%	E0
0602300000	철쭉과 진달래속의 식물(접목했는지에 상관없다)	0.0%	E0
0602400000	장미(접목했는지에 상관없다)	0.0%	E0
0602901010	난초	0.0%	E0
0602901020	카네이션	0.0%	E0
0602901030	구즈마니아	0.0%	E0
0602901040	안개초	0.0%	E0
0602901050	국화	0.0%	E0
0602901060	선인장류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0602901090	기타	5.0%	EX
0602902011	분재용	0.0%	E0
0602902019	기타	0.0%	E0
0602902020	낙엽송	0.0%	E0
0602902030	삼나무	0.0%	E0
0602902040	편백	0.0%	E0
0602902050	리기테다	0.0%	E0
0602902061	분재용	0.0%	E0
0602902069	기타	0.0%	E0
0602902071	분재용	0.0%	E0
0602902079	기타	0.0%	E0
0602902081	분재용	0.0%	E0
0602902089	기타	0.0%	E0
0602902091	분재용	0.0%	E0
0602902099	기타	0.0%	E0
0602909010	목단	0.0%	E0
0602909020	동백	0.0%	E0
0602909030	뽕나무	0.0%	E0
0602909040	버섯의 종균(種菌)	0.0%	E0
0602909090	기타	5.0%	EX
0603110000	장미	20.0%	EX
0603120000	카네이션	20.0%	EX
0603131000	심비디움(Cymbidiums)	20.0%	EX
0603132000	팔레놉시스(Phalaenopsis)	5.0%	EX
0603139000	기타	5.0%	EX
0603140000	국화	20.0%	EX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0603150000	백합[릴리움(Lilium)종]	5.0%	EX
0603191000	튤립	0.0%	E0
0603192000	글라디올러스	0.0%	E0
0603194000	안개초	5.0%	EX
0603199000	기타	5.0%	EX
0603900000	기타	5.0%	EX
0604201000	이끼와 지의(地衣)	0.0%	E0
0604202010	은행잎	0.0%	E0
0604202090	기타	0.0%	E0
0604209000	기타	0.0%	E0
0604901000	이끼와 지의(地衣)	0.0%	E0
0604909000	기타	0.0%	E0
0701100000	종자용	243.2%	SS
0701900000	기타	243.2%	EX
0702000000	토마토(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5.0%	EX
0703101000	양파	135% 또는 180 원/kg, 양자 중 고액(율)	EX
0703102000	쪽파	0.0%	E0
0703201000	껍질을 깐 것	360% 또는 1,800 원/kg, 양자 중 고액(율)	EX
0703209000	기타	360% 또는 1,800 원/	EX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kg, 양자 중 고액(율)	
0703901000	리크(leek)	0.0%	E0
0703909000	기타	0.0%	E0
0704100000	꽃양배추와 결구(結球) 브로콜리(broccoli)	5.0%	EX
0704200000	방울다다기 양배추	5.0%	EX
0704901000	양배추	0.0%	E0
0704902000	배추	0.0%	E0
0704909000	기타	0.0%	E0
0705110000	결구(結球) 상추	0.0%	E0
0705190000	기타	0.0%	E0
0705210000	위트루프 치커리(Witloof chicory)[시코리엄 인티부스 변종 포리오섬(Cichorium intybus var. foliosum)]	0.0%	E0
0705290000	기타	0.0%	E0
0706101000	당근	0.0%	E0
0706102000	순무	0.0%	E0
0706901000	무	0.0%	E0
0706902000	고추냉이와 겨자무	0.0%	E0
0706903000	더덕	0.0%	E0
0706904000	도라지	0.0%	E0
0706909000	기타	0.0%	E0
0707000000	오이류(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0708100000	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0.0%	E0
0708200000	콩[비그나(Vigna)종・파세러스(Phaseolus)종)]	0.0%	E0
0708900000	그 밖의 채두류(菜豆類)	0.0%	E0
0709200000	아스파라거스(asparagus)	5.0%	EX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0709300000	가지(에그플랜트)	0.0%	E0
0709400000	셀러리(celery)[셀러리액(celeriac)은 제외한다]	0.0%	E0
0709517000	양송이 버섯	5.0%	EX
0709519000	기타	0.0%	E0
0709591000	송이버섯	0.0%	E0
0709592000	표고버섯	5.0%	SS
0709593000	영지버섯	0.0%	E0
0709594010	큰느타리버섯	0.0%	E0
0709594090	기타	0.0%	E0
0709595000	팽이버섯	0.0%	E0
0709596000	송로(松露)	0.0%	E0
0709599000	기타	0.0%	E0
0709601000	단고추(벨타입으로 한정한다)	270% 또는 6,210원/kg, 양자 중 고액(율)	EX
0709609000	기타	270% 또는 6,210원/kg, 양자 중 고액(율)	EX
0709700000	시금치류	0.0%	E0
0709910000	글로브 아티초크(globe artichoke)	0.0%	E0
0709920000	올리브	0.0%	E0
0709930000	호박류[쿠쿠르비타(Cucurbita)종]	5.0%	EX
0709991000	고사리	0.0%	E0
0709992000	고비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0709999000	기타	0.0% / 5.0%	RED
0710100000	감자	0.0%	E0
0710210000	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0.0%	E0
0710220000	콩[비그나(Vigna)종・파세러스(Phaseolus)종)]	0.0%	E0
0710290000	기타	0.0%	E0
0710300000	시금치류	0.0%	E0
0710400000	스위트콘	0.0%	E0
0710801000	양파	5.0%	EX
0710802000	마늘	27.0%	EX
0710803000	죽순	0.0%	E0
0710804000	당근	0.0%	E0
0710805000	고사리	0.0%	E0
0710806000	송이버섯	0.0%	E0
0710807000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	27.0%	EX
0710808010	취(참취, 개미취, 곰취, 미역취)	0.0%	E0
0710808020	고려엉겅퀴(곤드레)	0.0%	E0
0710809000	기타	0.0%	E0
0710900000	채소류의 혼합물	0.0%	E0
0711200000	올리브	0.0%	E0
0711400000	오이류	0.0%	E0
0711510000	아가리쿠스(Agaricus)속의 버섯	0.0%	E0
0711591000	송로(松露)	0.0%	E0
0711599000	기타	0.0%	E0
0711901000	마늘	360% 또는 1,800 원/kg, 양자	EX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중 고액(율)	
0711903000	죽순	0.0%	E0
0711904000	당근	0.0%	E0
0711905010	고사리	0.0%	E0
0711905020	고비	0.0%	E0
0711905091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	270% 또는 6,210 원/kg, 양자 중 고액(율)	EX
0711905099	기타	0.0%	E0
0711909000	채소류의 혼합물	0.0%	E0
0712200000	양파	135% 또는 180 원/kg, 양자 중 고액(율)	EX
0712311000	양송이버섯	0.0%	E0
0712319000	기타	0.0%	E0
0712320000	목이버섯[오리쿨라리아(Auricularia)종]	0.0%	E0
0712330000	젤리균류[트레멜라(Tremella)종]	0.0%	E0
0712391010	송이버섯	0.0%	E0
0712391020	표고버섯	5.0%	EX
0712391030	영지버섯	0.0%	E0
0712391040	느타리버섯	0.0%	E0
0712391050	팽이버섯	0.0%	E0
0712391090	기타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0712392000	송로(松露)	0.0%	E0
0712901000	마늘	360% 또는 1,800 원/kg, 양자 중 고액(율)	EX
0712902010	고사리	24% 또는 1,446 원/kg, 양자 중 고액(율)	EX
0712902020	무	0.0%	E0
0712902030	파	5.0%	EX
0712902040	당근	5.0%	EX
0712902050	호박	5.0%	E5
0712902060	양배추	0.0%	E0
0712902070	토란줄기	5.0%	EX
0712902080	고구마줄기	0.0%	E0
0712902091	스위트콘(종자용)	296.0%	EX
0712902092	스위트콘(기타)	296.0%	EX
0712902093	감자	0.0%	E0
0712902094	고비	0.0%	E0
0712902095	더덕	0.0%	E0
0712902096	취(참취, 개미취, 곰취, 미역취)	0.0%	E0
0712902097	고려엉겅퀴(곤드레)	0.0%	E0
0712902099	기타	0.0%	E0
0712909000	채소류의 혼합물	0.0%	E0
0713101000	종자용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0713102000	사료용	0.0%	E0
0713109000	기타	0.0%	E0
0713200000	이집트 콩[가반조스(garbanzos)]	0.0%	E0
0713311000	종자용	486.0%	EX
0713319000	기타	486.0%	EX
0713321000	종자용	336.6%	EX
0713329000	기타	336.6%	EX
0713331000	종자용	27.0%	EX
0713339000	기타	27.0%	EX
0713340000	밤바라콩[비그나 서브터라니아(Vigna subterranea)·보안드제이아 서브터라니아(Voandzeia subterranea)]	21.6%	E10
0713350000	동부콩[비그나 운구이쿨라타(Vigna unguiculata)]	21.6%	E10
0713390000	기타	21.6%	E10
0713400000	렌즈콩	5.0%	E10
0713500000	누에콩[비시아 파바 변종 메이저(Vicia faba var. major)]과 말먹이용 누에콩[비시아 파바 변종 에퀴나(Vicia faba var. equina)·비시아 파바 변종 마이너(Vicia faba var. minor)]	0.0%	E0
0713600000	비둘기콩[카자누스 카잔(Cajanus cajan)]	0.0%	E0
0713900000	기타	0.0%	E0
0714101000	신선한 것	887.4%	EX
0714102010	칩	887.4%	EX
0714102020	펠릿(pellet)	709.9%	EX
0714102090	기타	887.4%	EX
0714103000	냉장한 것	887.4%	EX
0714104000	냉동한 것	45.0%	EX
0714201000	신선한 것	308.0%	EX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0714202000	건조한 것	308.0%	EX
0714203000	냉장한 것	308.0%	EX
0714204000	냉동한 것	5.0%	EX
0714301000	냉동한 것	5.0%	E5
0714309000	기타	192.5%	SS
0714401000	냉동한 것	5.0%	E5
0714409000	기타	192.5%	EX
0714501000	냉동한 것	5.0%	E5
0714509000	기타	192.5%	SS
0714901010	냉동한 것	5.0%	E10
0714901090	기타	5.0%	E10
0714909010	냉동한 것	5.0%	E5
0714909090	기타	192.5%	EX
0801110000	말린 것	0.0%	E0
0801120000	내피[내과피(內果皮)]를 벗기지 않은 것	0.0%	E0
0801190000	기타	0.0%	E0
080121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0.0%	E0
0801220000	껍데기를 벗긴 것	0.0%	E0
080131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5.0%	E10
0801320000	껍데기를 벗긴 것	5.0%	E10
080211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0.0%	E0
0802120000	껍데기를 벗긴 것	0.0%	E0
080221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0.0%	E0
0802220000	껍데기를 벗긴 것	0.0%	E0
080231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36.0%	SS
0802320000	껍데기를 벗긴 것	24.0%	EX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080241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175.5% 또는 1,176 원/kg, 양자 중 고액(율)	SS
0802420000	껍데기를 벗긴 것	175.5% 또는 1,176 원/kg, 양자 중 고액(율)	SS
080251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0.0%	E0
0802520000	껍데기를 벗긴 것	0.0%	E0
080261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0.0%	E0
0802620000	껍데기를 벗긴 것	0.0%	E0
0802700000	콜라 너트(kola nut)[콜라(Cola)종]	0.0%	E0
0802800000	빈랑자(areca nut)	0.0%	E0
080290101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453.4% 또는 2,131 원/kg, 양자 중 고액(율)	EX
0802901020	껍데기를 벗긴 것	453.4% 또는 2,131 원/kg, 양자 중 고액(율)	EX
080290201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0.0%	E0
0802902020	껍데기를 벗긴 것	0.0%	E0
0802909000	기타	0.0%	E0
0803100000	플랜틴(plantain)	30.0%	E15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0803900000	기타	30.0%	EX
0804100000	대추야자	24.0%	E10
0804200000	무화과	0.0%	E0
0804300000	파인애플	30.0%	EX
0804400000	아보카도(avocado)	0.0%	E0
0804501000	구아바(guava)	24.0%	E10
0804502000	망고(mango)	24.0%	EX
0804503000	망고스틴(mangosteen)	24.0%	E10
0805100000	오렌지	50.0%	EX
0805211000	감귤	144.0%	EX
0805219000	기타	144.0%	EX
0805220000	클레멘타인(clementine)	144.0%	EX
0805290000	기타	144.0%	EX
0805400000	그레이프프루트(grapefruit)[포멜로(pomelos)를 포함한다]	0.0%	E0
0805501000	레몬[시트러스 리몬(Citrus limon)·시트러스 리머늄(Citrus limonum)]	5.0%	E10
0805502010	시트러스 오란티폴리아(Citrus aurantifolia)	0.0%	E0
0805502020	시트러스 라티폴리아(Citrus latifolia)	0.0%	E0
0805900000	기타	144.0%	EX
0806100000	신선한 것	36.0%	EX
0806200000	건조한 것	5.0%	EX
0807110000	수박	0.0%	E0
0807190000	기타	5.0%	EX
0807200000	포포(papaw)[파파야(papaya)]	24.0%	E10
0808100000	사과	45.0%	EX
0808300000	배	45.0%	EX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0808400000	마르멜로(quince)	0.0%	E0
0809100000	살구	0.0%	E0
0809210000	신 체리[프루너스 체라서스(Prunus cerasus)]	5.0%	E10
0809290000	기타	5.0%	EX
0809300000	복숭아[넥터린(nectarine)을 포함한다]	36.0%	SS
0809401000	자두	0.0%	E0
0809402000	슬로(sloe)	5.0%	E10
0810100000	초본류 딸기	5.0%	EX
0810200000	나무딸기・검은나무딸기・오디・로간베리(loganberry)	0.0%	E0
0810300000	흑색・백색・적색의 커런트(currant)와 구즈베리(gooseberry)	0.0%	E0
0810400000	크랜베리(cranberry)・빌베리(bilberry)와 그 밖의 박시니엄(Vaccinium)속의 과실	0.0%	E0
0810500000	키위프루트(kiwifruit)	5.0%	EX
0810600000	두리안(durian)	36.0%	E10
0810701000	단감	36.0%	SS
0810709000	기타	5.0%	SS
0810903000	대추	489.2% 또는 4,640 원/kg, 양자 중 고액(율)	E10
0810905000	매실	5.0%	EX
0810909000	기타	36.0%	
	- 살락카 (스네이크 프루트)	36.0%	E15
	- 기타	36.0%	EX
0811100000	초본류 딸기	5.0%	EX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0811200000	나무딸기, 검은나무딸기, 오디, 로간베리(loganberry), 흑색·백색·적색의 커런트(currant), 구즈베리(gooseberry)	0.0%	E0
0811901000	밤	24.0%	E20
0811902000	대추	24.0%	E10
0811903000	잣	24.0%	EX
0811909000	기타	24.0%	E20
0812100000	체리	5.0%	E10
0812901000	초본류 딸기	5.0%	EX
0812909000	기타	0.0%	E0
0813100000	살구	0.0%	E0
0813200000	프룬(prune)	0.0%	E0
0813300000	사과	36.0%	EX
0813401000	감	40.0%	E20
0813402000	대추	489.2% 또는 4,640 원/kg, 양자 중 고액(율)	E20
0813409000	기타	36.0%	E20
0813500000	이 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5.0%	EX
0814001000	감귤류의 껍질	5.0%	E10
0814002000	멜론(수박을 포함한다)의 껍질	0.0%	E0
0901110000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0.0%	E0
0901120000	카페인을 제거한 것	0.0%	E0
0901210000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0.0%	E0
0901220000	카페인을 제거한 것	0.0%	E0
0901901000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0901902000	커피를 함유한 커피 대용물	0.0%	E0
0902100000	녹차(발효하지 않은 것으로서 내용물의 무게가 3 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	513.6%	EX
0902200000	그 밖의 녹차(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13.6%	EX
0902300000	홍차(발효차)와 부분 발효차(내용물의 무게가 3 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0902400000	그 밖의 홍차(발효차)와 그 밖의 부분 발효차	0.0%	E0
0903000000	마테(maté)	0.0%	E0
090411000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0.0%	E0
0904120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0.0%	E0
0904210000	건조한 것(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270% 또는 6,210 원/kg, 양자 중 고액(율)	EX
0904220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270% 또는 6,210 원/kg, 양자 중 고액(율)	EX
090510000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0.0%	E0
0905200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0.0%	E0
0906110000	계피[신나모멈 제이나이쿰 블룸(Cinnamomum zeylanicum Blume)]	0.0%	E0
0906191000	계피[신나모멈 제이나이쿰 블룸(Cinnamomum zeylanicum Blume)을 제외한다]	0.0%	E0
0906192000	계피나무의 꽃	0.0%	E0
0906201000	계피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0906202000	계피나무의 꽃	0.0%	E0
090710000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0.0%	E0
0907200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0.0%	E0
090811000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0.0%	E0
0908120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0.0%	E0
090821000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0.0%	E0
0908220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0.0%	E0
090831000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0.0%	E0
0908320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0.0%	E0
090921000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0.0%	E0
0909220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0.0%	E0
090931000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0.0%	E0
0909320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0.0%	E0
0909611000	아니스(anise)나 대회향(大茴香)의 씨	0.0%	E0
0909612000	캐러웨이(caraway)의 씨	0.0%	E0
0909613000	회향(茴香)의 씨와 주니퍼(juniper)의 열매	0.0%	E0
0909621000	아니스(anise)나 대회향(大茴香)의 씨	0.0%	E0
0909622000	캐러웨이(caraway)의 씨	0.0%	E0
0909623000	회향(茴香)의 씨와 주니퍼(juniper)의 열매	0.0%	E0
0910111000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301.8% 또는 744 원/kg, 양자 중 고액(율)	EX
0910112000	건조한 것	301.8% 또는 744 원/kg, 양자 중	EX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고액(율)	
0910119000	기타	301.8% 또는 744 원/kg, 양자 중 고액(율)	EX
0910121000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301.8% 또는 744 원/kg, 양자 중 고액(율)	EX
0910122000	건조한 것	301.8% 또는 744 원/kg, 양자 중 고액(율)	EX
0910129000	기타	301.8% 또는 744 원/kg, 양자 중 고액(율)	EX
0910200000	사프란(saffron)	0.0%	E0
0910300000	심황[강황(薑黃)]	0.0%	E0
0910911000	카레	0.0%	E0
0910919000	기타	0.0%	E0
0910991000	타임과 월계수의 잎	0.0%	E0
0910999000	기타	0.0%	E0
1001110000	종자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1001190000	기타	0.0%	E0
1001911000	메슬린(meslin)	0.0%	E0
1001919000	기타	0.0%	E0
1001991010	메슬린(meslin)	0.0%	E0
1001991090	기타	0.0%	E0
1001992010	메슬린(meslin)	0.0%	E0
1001992090	기타	0.0%	E0
1001999010	메슬린(meslin)	0.0%	E0
1001999090	기타	0.0%	E0
1002100000	종자	0.0%	E0
1002900000	기타	0.0%	E0
1003101000	맥주보리	256.5%	SS
1003102000	겉보리	162% 또는 163 원/kg, 양자 중 고액(율)	SS
1003103000	쌀보리	149.8% 또는 180 원/kg, 양자 중 고액(율)	SS
1003109000	기타	149.8%	EX
1003901000	맥주보리	256.5%	EX
1003902000	겉보리	162% 또는 163 원/kg, 양자 중 고액(율)	EX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1003903000	쌀보리	149.8% 또는 180 원/kg , 양자 중 고액(율)	EX
1003909000	기타	149.8%	EX
1004100000	종자	0.0%	E0
1004900000	기타	0.0%	E0
1005100000	종자용	0.0%	E0
1005901000	사료용	0.0%	E0
1005902000	팝콘	315.0%	EX
1005909000	기타	164.0%	EX
1006100000	벼	513.0%	EX
1006201000	메현미	513.0%	EX
1006202000	찰현미	513.0%	EX
1006301000	멥쌀	513.0%	EX
1006302000	찹쌀	513.0%	EX
1006400000	쇄미(broken rice)	513.0%	EX
1007100000	종자	0.0%	E0
1007900000	기타	0.0%	E0
1008100000	메밀	204.8%	EX
1008211000	조	0.0%	E0
1008219000	기타	0.0%	E0
1008291000	조	0.0%	E0
1008299000	기타	0.0%	E0
1008300000	카나리시드(canary seed)	0.0%	E0
1008400000	포니오(Fonio)[디지타리아(Digitaria)종]	400.1%	EX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1008500000	퀴노아(quinoa)[체노포디움 퀴노아(Chenopodium quinoa)]	400.1%	EX
1008600000	라이밀(triticale)	400.1%	EX
1008900000	그 밖의 곡물	400.1%	EX
1101001000	밀가루	0.0%	E0
1101002000	메슬린(meslin) 가루	0.0%	E0
1102200000	옥수수가루	0.0%	E0
1102901000	보릿가루	130.0%	EX
1102902000	쌀가루	513.0%	EX
1102903000	호밀가루	0.0%	E0
1102909000	기타	400.1%	EX
1103110000	밀로 만든 것	5.0%	EX
1103130000	옥수수로 만든 것	130.3%	EX
1103191000	보리로 만든 것	130.0%	EX
1103192000	귀리로 만든 것	277.4%	EX
1103193000	쌀로 만든 것	513.0%	EX
1103199000	기타	400.1%	EX
1103201000	밀로 만든 것	5.0%	EX
1103202000	쌀로 만든 것	513.0%	EX
1103203000	보리로 만든 것	5.0%	EX
1103209000	기타	5.0%	EX
1104120000	귀리로 만든 것	277.4%	EX
1104191000	쌀로 만든 것	513.0%	EX
1104192000	보리로 만든 것	116.5%	EX
1104199000	기타	400.1%	EX
1104220000	귀리로 만든 것	277.4%	EX
1104230000	옥수수로 만든 것	133.6%	EX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1104291000	율무로 만든 것	400.1%	EX
1104292000	보리로 만든 것	63.0%	EX
1104299000	기타	400.1%	EX
1104301000	쌀로 만든 것	5.0%	E3
1104309000	기타	0.0%	E0
1105100000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	243.2%	EX
1105200000	플레이크(flake)・알갱이・펠릿(pellet)	243.2%	EX
1106100000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것(제 0713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1106201000	칡뿌리의 것	5.0%	E10
1106209000	기타	5.0%	E10
1106300000	제 8 류 물품의 것	5.0%	EX
1107100000	볶지 않은 것	134.5%	EX
1107201000	훈연(燻煙)한 것	134.5%	EX
1107209000	기타	0.0%	E0
1108110000	밀로 만든 것	40.7%	E15
1108121000	식품용	180.8%	EX
1108129000	기타	180.8%	EX
1108130000	감자로 만든 것	364.0%	EX
1108141000	식품용	455.0%	EX
1108149000	기타	455.0%	EX
1108191000	고구마로 만든 것	192.9%	EX
1108199000	기타	400.1%	EX
1108200000	이눌린(inulin)	400.1%	EX
1109000000	밀의 글루텐(gluten)(건조했는지에 상관없다)	0.0%	E0
1201101000	콩나물용	389.6% 또는 765 원/kg	SS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 양자 중 고액(율)	
1201109000	기타	389.6% 또는 765 원/kg , 양자 중 고액(율)	EX
1201901000	채유용과 탈지대두박(脫脂大豆粕)용	0.0%	E0
1201902000	사료용	389.6% 또는 765 원/kg , 양자 중 고액(율)	EX
1201903000	콩나물용	389.6% 또는 765 원/kg , 양자 중 고액(율)	EX
1201909000	기타	389.6% 또는 765 원/kg , 양자 중 고액(율)	EX
1202301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184.4%	EX
1202302000	껍데기를 벗긴 것(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84.4%	EX
120241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184.4%	EX
1202420000	껍데기를 벗긴 것(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84.4%	EX
1203000000	코프라(copra)	0.0%	E0
1204000000	아마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1205101000	사료작물 재배용 종자	0.0%	E0
1205109000	기타	0.0%	E0
1205901000	사료작물 재배용 종자	0.0%	E0
1205909000	기타	0.0%	E0
1206000000	해바라기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0.0%	E0
1207100000	팜너트(palm nut)와 핵(核)	0.0%	E0
1207210000	종자	0.0%	E0
1207291000	사료용	0.0%	E0
1207299000	기타	0.0%	E0
1207300000	피마자	0.0%	E0
1207400000	참깨	504% 또는 5,328 원/kg, 양자 중 고액(율)	EX
1207500000	겨자씨	0.0%	E0
1207600000	잇꽃[카르타무스 틴크토리우스(Carthamus tinctorius)] 종자	0.0%	E0
1207700000	멜론 종자	0.0%	E0
1207910000	양귀비씨	0.0%	E0
1207991000	들깨	5.0%	EX
1207992000	시어너트(shea nut)[캐리트너트(karite nut)]	0.0%	E0
1207999000	기타	0.0%	E0
1208100000	대두로 만든 것	0.0%	E0
1208900000	기타	0.0%	E0
1209100000	사탕무 종자	0.0%	E0
1209210000	루우산(lucerne)(알팔파) 종자	0.0%	E0
1209220000	클로버(clover)[트리폴리엄(Trifolium)종] 종자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1209230000	페스큐(fescue) 종자	0.0%	E0
1209240000	켄터키블루그래스(kentucky blue grass)[포아프래텐시스 엘(Poa pratensis L.)] 종자	0.0%	E0
1209250000	라이그래스(rye grass) 종자[로리엄 멀티플로럼 램(Lolium multiflorum Lam)·로리엄 페레네 엘(Lolium perenne L.)]	0.0%	E0
1209291000	루핀(lupine) 종자	0.0%	E0
1209292000	수단그래스(Sudan grass) 종자	0.0%	E0
1209293000	오차드그래스(orchard grass) 종자	0.0%	E0
1209294000	티모디그래스(timothy grass) 종자	0.0%	E0
1209299000	기타	0.0%	E0
1209300000	화초용 초본(草本)식물의 종자	0.0%	E0
1209911010	양파 종자	0.0%	E0
1209911090	기타	0.0%	E0
1209912000	무 종자	0.0%	E0
1209913000	고추·단고추류(Capsicum annuum)의 종자	0.0%	E0
1209914000	양배추 종자	0.0%	E0
1209915000	토마토 종자	0.0%	E0
1209919000	기타	0.0%	E0
1209991010	참나무	0.0%	E0
1209991090	기타	0.0%	E0
1209992000	과수목의 종자	0.0%	E0
1209993000	담배 종자	0.0%	E0
1209994000	잔디 종자	0.0%	E0
1209999000	기타	0.0%	E0
1210100000	홉(hop)[잘게 부순 것·가루 모양·펠릿(pellet) 모양은 제외한다]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1210201000	홉(hop)	0.0%	E0
1210202000	루플린(lupulin)	0.0%	E0
1211201110	산양삼(山養蔘)	178.2%	EX
1211201190	기타	178.2%	EX
1211201211	본삼	178.2%	EX
1211201219	기타	178.2%	EX
1211201291	본삼	178.2%	EX
1211201299	기타	178.2%	EX
1211201311	본삼	603.4%	EX
1211201319	기타	603.4%	EX
1211201391	본삼	603.4%	EX
1211201399	기타	603.4%	EX
1211202110	가루	0.0%	E0
1211202120	타브렛이나 캡슐	5.0%	EX
1211202190	기타	0.0%	E0
1211202210	가루	603.4%	EX
1211202220	타브렛이나 캡슐	603.4%	EX
1211202290	기타	603.4%	EX
1211203100	인삼잎과 줄기	603.4%	EX
1211203200	종자	603.4%	EX
1211209300	신선· 냉장하거나 건조한 것	603.4%	EX
1211209900	기타	36.0%	EX
1211301000	신선·냉장하거나 건조한 것	0.0%	E0
1211309000	기타	0.0%	E0
1211401000	신선· 냉장하거나 건조한 것	0.0%	E0
1211409000	기타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1211501000	신선·냉장하거나 건조한 것	0.0%	E0
1211509000	기타	0.0%	E0
1211901100	부자(附子)	0.0%	E0
1211901200	황련(黃連)	0.0%	E0
1211901300	원지(遠志)	0.0%	E0
1211901400	패모(貝母)	0.0%	E0
1211901500	두충(杜沖)	0.0%	E0
1211901600	감초	0.0%	E0
1211901700	사인(砂仁)	0.0%	E0
1211901800	산조인(酸棗仁)	0.0%	E0
1211901910	용안육(龍眼肉)	0.0%	E0
1211901920	산사자(山査子)	0.0%	E0
1211901930	연자육(蓮子肉)	0.0%	E0
1211901940	박하	0.0%	E0
1211901950	초피(椒皮)	0.0%	E0
1211901960	건조한 도라지	0.0%	E0
1211901970	구기자	0.0%	E0
1211901980	오미자	0.0%	E0
1211901991	사군자(使君子)	0.0%	E0
1211901992	백수오	0.0%	E0
1211901993	하수오	0.0%	E0
1211901999	기타	0.0%	E0
1211909010	식용에 적합한 것	36.0%	EX
1211909090	기타	0.0%	E0
1212211010	건조한 것	16.0%	E10
1212211020	냉장한 것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1212211030	냉동한 것	0.0%	E0
1212211090	기타	0.0%	E0
1212212010	건조한 것	16.0%	EX
1212212020	염장한 것	16.0%	EX
1212212030	냉장한 것	0.0%	E0
1212212040	냉동한 것	0.0%	E0
1212212090	기타	0.0%	E0
1212213010	건조한 것	16.0%	E10
1212213020	냉장한 것	0.0%	E0
1212213030	냉동한 것	0.0%	E0
1212213090	기타	0.0%	E0
1212214010	신선한 것	0.0%	E0
1212214020	냉장한 것	0.0%	E0
1212214030	냉동한 것	0.0%	E0
1212214090	기타	0.0%	E0
1212215010	염장한 것	16.0%	E10
1212215020	냉장한 것	0.0%	E0
1212215030	냉동한 것	0.0%	E0
1212215090	기타	16.0%	E10
1212216010	냉동한 것	0.0%	E0
1212216090	기타	0.0%	E0
1212217011	냉동한 것	0.0%	E0
1212217019	기타	0.0%	E0
1212217021	냉동한 것	0.0%	E0
1212217029	기타	0.0%	E0
1212217031	냉동한 것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1212217039	기타	0.0%	E0
1212218011	냉동한 것	0.0%	E0
1212218019	기타	0.0%	E0
1212218021	냉동한 것	0.0%	E0
1212218029	기타	0.0%	E0
1212218031	냉동한 것	0.0%	E0
1212218039	기타	0.0%	E0
1212219011	냉동한 것	0.0%	E0
1212219019	기타	0.0%	E0
1212219091	냉동한 것	0.0%	E0
1212219099	기타	16.0%	RED
1212291010	냉동한 것	0.0%	E0
1212291090	기타	0.0% / 16.0%	E10
1212292010	냉동한 것	0.0%	E0
1212292090	기타	0.0% / 16.0%	EX
1212293010	냉동한 것	0.0%	E0
1212293090	기타	0.0% / 16.0%	E10
1212294010	냉동한 것	0.0%	E0
1212294090	기타	0.0%	E0
1212295010	냉동한 것	0.0%	E0
1212295090	기타	0.0% / 16.0%	E10
1212296010	냉동한 것	0.0%	E0
1212296090	기타	0.0%	E0
1212297011	냉동한 것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1212297019	기타	0.0%	E0
1212297021	냉동한 것	0.0%	E0
1212297029	기타	0.0%	E0
1212297031	냉동한 것	0.0%	E0
1212297039	기타	0.0%	E0
1212298011	냉동한 것	0.0%	E0
1212298019	기타	0.0%	E0
1212298021	냉동한 것	0.0%	E0
1212298029	기타	0.0%	E0
1212298031	냉동한 것	0.0%	E0
1212298039	기타	0.0%	E0
1212299011	냉동한 것	0.0%	E0
1212299019	기타	0.0%	E0
1212299091	냉동한 것	0.0%	E0
1212299099	기타	16.0%	E10
1212910000	사탕무	0.0%	E0
1212920000	로커스트콩(locust bean)(캐롭)	0.0%	E0
1212930000	사탕수수	0.0%	E0
1212940000	치커리(chicory) 뿌리	0.0%	E0
1212992000	구약구(kuyaku) 뿌리	0.0%	E0
1212993000	꽃가루	0.0%	E0
1212996000	살구・복숭아[넥터린(nectarine)을 포함한다]・자두의 핵(核)	0.0%	E0
1212999000	기타	0.0%	E0
1213000000	곡물의 짚과 껍질[조제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수거나 압착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0.0%	E0
1214101000	사료용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1214109000	기타	0.0%	E0
1214901000	사료용 뿌리채소류	5.0%	EX
1214909011	사료용	0.0%	E0
1214909019	기타	0.0%	E0
1214909090	기타	5.0%	EX
1301200000	아라비아 검	0.0%	E0
1301901000	올레오레진(oleoresin)	0.0%	E0
1301902010	쉘락(shellac)	0.0%	E0
1301902090	기타	0.0%	E0
1301909000	기타	3.0%	E10
1302110000	아편	0.0%	E0
1302120000	감초로 만든 것	0.0%	E0
1302130000	홉(hop)으로 만든 것	0.0%	E0
1302140000	마황(麻黃)으로 만든 것	0.0%	E0
1302191110	인삼 추출물(extract)	5.0%	EX
1302191120	인삼 추출물(extract) 가루	0.0%	E0
1302191190	기타	0.0%	E0
1302191210	홍삼 추출물(extract)	603.4%	EX
1302191220	홍삼 추출물(extract) 가루	603.4%	EX
1302191290	기타	603.4%	EX
1302191900	기타	16.0%	EX
1302192000	캐슈너트 쉘액(cashew nut shell liquid)	0.0%	E0
1302193000	생칠(生漆)	0.0%	E0
1302199010	알로에 수액과 추출물(extract)	0.0%	E0
1302199020	콜라 추출물(extract)	0.0%	E0
1302199031	당귀(當歸) 추출물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1302199032	오미자(五味子) 추출물	0.0%	E0
1302199033	작약(芍藥) 추출물	0.0%	E0
1302199034	천궁(川芎) 추출물	0.0%	E0
1302199035	황기(黃芪) 추출물	0.0%	E0
1302199039	기타	0.0%	E0
1302199091	바닐라 올레오레진이나 바닐라 추출물(extract)	0.0%	E0
1302199099	기타	0.0%	E0
1302200000	펙틴질·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0.0%	E0
1302311000	실 한천	5.0%	E10
1302312000	가루 한천	5.0%	E10
1302319000	기타	5.0%	E0
1302320000	로커스트콩(locust bean)·로커스트콩(locust bean)의 씨나 구아(guar)의 씨로부터 얻은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	0.0%	E0
1302390000	기타	0.0%	E0
1401101000	맹종죽(孟宗竹)	5.0%	E10
1401102000	청환죽(青丸竹)	5.0%	E10
1401109000	기타	5.0%	E10
1401201000	쪼개거나 뽑아서 늘린 것	0.0%	E0
1401209000	기타	0.0%	E0
1401900000	기타	0.0%	E0
1404200000	면(綿) 린터(linter)	0.0%	E0
1404901000	조각용 종자·껍질·너트(예: 상아야자)	0.0%	E0
1404902010	닥나무나 꾸지나무(paper mulberry) 껍질	0.0%	E0
1404902090	기타	0.0%	E0
1404903010	떡갈잎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1404903020	청미래덩굴잎	0.0%	E0
1404903090	기타	0.0%	E0
1404904000	충전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식물성 재료[예: 케이폭(kapok)·식물성 헤어·거머리말][층상(層狀)으로 한 것인지 또는 지지물을 사용했는지에 상관없다]	0.0%	E0
1404905000	비나 브러시를 만드는 데 주로 사용되는 식물성 재료[예: 수수류·피아사바(piassava)·카우치그라스(couch-grass)·이스틸리(istle)](다발이나 꾸러미 상태인지에 상관없다)	0.0%	E0
1404906010	오배자(五倍子)	0.0%	E0
1404906020	아몬드 헐(almond hull)	0.0%	E0
1404906090	기타	0.0%	E0
1404909000	기타	0.0%	E0
1501101000	산가(酸價)가 1 이하인 것	0.0%	E0
1501109000	기타	0.0%	E0
1501200000	그 밖의 돼지의 지방	0.0%	E0
1501900000	기타	0.0%	E0
1502101010	산가(酸價)가 2 이하인 것	0.0%	E0
1502101090	기타	0.0%	E0
1502109000	기타	0.0%	E0
1502901000	소의 것	0.0%	E0
1502909000	기타	0.0%	E0
1503002000	라드유(lard oil)	0.0%	E0
1503009000	기타	0.0%	E0
1504101000	상어의 간유(肝油)와 그 분획물	0.0%	E0
1504109000	기타	0.0%	E0
1504200000	어류의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간유(肝油)는 제외한다]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1504301000	고래기름과 그 분획물	0.0%	E0
1504309000	기타	0.0%	E0
1505001000	가공하지 않은 울그리스(wool grease)	0.0%	E0
1505009000	기타	0.0%	E0
1506001000	우각유(neat's foot oil)와 그 분획물	0.0%	E0
1506009000	기타	0.0%	E0
1507101000	식품용	0.0%	E0
1507102000	바이오디젤 제조용	0.0%	E0
1507109000	기타	0.0%	E0
1507901010	식품용	5.0%	E5
1507901020	바이오디젤 제조용	5.0%	E5
1507901090	기타	5.0%	E5
1507909000	기타	5.0%	E5
1508100000	조유(粗油)	0.0%	E0
1508901000	정제유(精製油)	0.0%	E0
1508909000	기타	0.0%	E0
1509100000	버진(virgin)	0.0%	E0
1509900000	기타	0.0%	E0
1510000000	그 밖의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올리브에서 얻은 것으로서 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하고, 이들의 기름이나 그 분획물이 제 1509 호의 기름이나 그 분획물과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	0.0%	E0
1511100000	조유(粗油)	0.0%	E0
1511901000	팜 올레인(palm olein)	0.0%	E0
1511902000	팜 스테아린(palm stearin)	0.0%	E0
1511909000	기타	0.0%	E0
1512111000	해바라기씨유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1512112000	잇꽃유	0.0%	E0
1512191010	해바라기씨유	0.0%	E0
1512191020	잇꽃유	0.0%	E0
1512199010	해바라기씨유	0.0%	E0
1512199020	잇꽃유	0.0%	E0
1512210000	조유(粗油)[고시폴(gossypol)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0.0%	E0
1512291000	정제유(精製油)	0.0%	E0
1512299000	기타	0.0%	E0
1513110000	조유(粗油)	0.0%	E0
1513191000	정제유(精製油)	0.0%	E0
1513199000	기타	0.0%	E0
1513211000	팜핵유(palm kernel oil)	0.0%	E0
1513212000	바바수유(babassu oil)	0.0%	E0
1513291010	팜핵유(palm kernel oil)	0.0%	E0
1513291020	바바수유(babassu oil)	0.0%	E0
1513299000	기타	0.0%	E0
1514110000	조유(粗油)	0.0%	E0
1514191000	정제유(精製油)	5.0%	E5
1514199000	기타	5.0%	E0
1514911000	그 밖의 유채유(rape oil, colza oil)	0.0%	E0
1514912000	겨자유	0.0%	E0
1514991010	그 밖의 유채유(rape oil, colza oil)	5.0%	E5
1514991020	겨자유	5.0%	E5
1514999000	기타	5.0%	E5
1515110000	조유(粗油)	0.0%	E0
1515190000	기타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1515210000	조유(粗油)	0.0%	E0
1515290000	기타	0.0%	E0
1515300000	피마자유와 그 분획물	0.0%	E0
1515500000	참기름과 그 분획물	504% 또는 9,648 원/kg, 양자 중 고액(율)	EX
1515901000	들기름과 그 분획물	18.0%	EX
1515909010	쌀겨기름과 그 분획물	5.0%	E3
1515909020	동백유와 그 분획물	0.0%	E0
1515909030	호호바유(jojoba oil)와 그 분획물	0.0%	E0
1515909040	동유(tung oil)와 그 분획물	0.0%	E0
1515909090	기타	0.0%	E0
1516101000	우지(牛脂)와 그 분획물	0.0%	E0
1516102000	고래기름과 그 분획물	0.0%	E0
1516109000	기타	0.0%	E0
1516201010	땅콩기름과 그 분획물	5.0%	E5
1516201020	해바라기씨유와 그 분획물	0.0%	E0
1516201030	유채유(rape oil, colza oil)와 그 분획물	0.0%	E0
1516201040	들기름과 그 분획물	28.8%	EX
1516201050	참기름과 그 분획물	5.0%	EX
1516202010	야자[코프라(copra)]유와 그 분획물	0.0%	E0
1516202020	팜유와 그 분획물	0.0%	E0
1516202030	옥수수유와 그 분획물	0.0%	E0
1516202040	목화씨유와 그 분획물	0.0%	E0
1516202050	대두유와 그 분획물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1516202090	기타	5.0%	E5
1517100000	마가린(액상 마가린은 제외한다)	0.0%	E0
1517901000	이미테이션 라드	0.0%	E0
1517902000	쇼트닝	0.0%	E0
1517909000	기타	0.0%	E0
1518001000	탈수피마자유	0.0%	E0
1518002000	에폭시화(epoxidised)한 대두유	0.0%	E0
1518009010	사료용	0.0%	E0
1518009090	기타	0.0%	E0
1520000000	글리세롤(glycerol)(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리세롤 수(水), 글리세롤 폐액(廢液)	0.0%	E0
1521101000	카나버 왁스	0.0%	E0
1521102000	팜왁스	0.0%	E0
1521109000	기타	0.0%	E0
1521901000	경납(鯨蠟)	0.0%	E0
1521902000	밀랍(蜜蠟)	0.0%	E0
1521909000	기타	0.0%	E0
1522001000	데그라스(degras)	0.0%	E0
1522009000	기타	0.0%	E0
1601001000	소시지	14.4%	EX
1601009000	기타	24.0%	E10
1602100000	균질화한 조제품	24.0%	EX
160220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0.0%	E0
1602209000	기타	0.0%	E0
160231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0.0%	E0
1602319000	기타	0.0%	E0
1602321010	삼계탕	24.0%	EX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1602321090	기타	30.0%	EX
1602329000	기타	30.0%	EX
160239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4.0%	EX
1602399000	기타	24.0%	EX
160241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4.0%	EX
1602419000	기타	21.6%	EX
160242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4.0%	EX
1602429000	기타	21.6%	EX
160249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30.0%	EX
1602499000	기타	27.0%	EX
160250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57.6%	EX
1602509000	기타	57.6%	EX
160290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0.0%	E0
1602909000	기타	0.0%	E0
1603001000	육 추출물(extract)	24.0%	EX
1603002000	육즙	24.0%	E20
1603003000	어류의 추출물(extract)	0.0%	E0
1603004000	어류의 즙	0.0%	E0
1603009000	기타	0.0%	E0
160411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0.0%	E0
1604119000	기타	0.0%	E0
160412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0.0%	E0
1604129000	기타	0.0%	E0
160413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16.0%	E10
1604139000	기타	0.0%	E0
1604141011	기름에 담근 것	20.0%	EX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1604141012	삶은 것	20.0%	E10
1604141019	기타	20.0%	E10
1604141021	기름에 담근 것	20.0%	EX
1604141022	삶은 것	20.0%	E10
1604141029	기타	20.0%	E10
1604141031	기름에 담근 것	20.0%	EX
1604141032	삶은 것	20.0%	E10
1604141039	기타	20.0%	RED
1604149000	기타	20.0%	E10
160415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0.0%	E0
1604159000	기타	0.0%	E0
160416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0.0%	E0
1604169000	기타	0.0%	E0
160417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0.0%	E0
1604179000	기타	5.0%	EX
160418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0.0%	E0
1604189000	기타	5.0%	E7
1604191010	꽁치	0.0%	E0
1604191020	전갱이	0.0%	E0
1604191090	기타	0.0%	E0
1604199010	쥐치포	0.0%	E0
1604199090	기타	5.0%	EX
1604201000	생선 페이스트(paste)	0.0%	E0
1604202000	생선 마리네이드(marinade)	0.0%	E0
1604203000	생선소시지	0.0%	E0
1604204010	게맛의 것	5.0%	E7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1604204090	기타	5.0%	EX
1604209000	기타	5.0%	EX
1604310000	캐비아	0.0%	E0
1604320000	캐비아 대용물	0.0%	E0
1605101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0.0%	E0
1605101091	붉은대게살	0.0%	E0
1605101099	기타	0.0%	E0
1605109000	기타	0.0%	E0
1605211000	빵가루를 입힌 것	0.0%	E0
1605219000	기타	16.0%	EX
1605290000	기타	0.0%	E0
160530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0.0%	E0
1605309000	기타	0.0%	E0
160540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0.0%	E0
1605409000	기타	0.0%	E0
160551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0.0%	E0
1605519000	기타	5.0%	E10
160552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0.0%	E0
1605529000	기타	5.0%	E10
160553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0.0%	E0
1605539000	기타	0.0%	E0
1605541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0.0%	E0
1605541090	기타	5.0%	E7
1605542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0.0%	E0
1605542091	조미오징어	5.0% / 16.0%	EX
1605542099	기타	5.0%	RED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160555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0.0%	E0
1605559000	기타	5.0%	RED
1605561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0.0%	E0
1605561090	기타	5.0%	E10
1605562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0.0%	E0
1605562090	기타	5.0%	E10
1605569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0.0%	E0
1605569090	기타	5.0%	E10
160557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0.0%	E0
1605579000	기타	5.0%	E5
160558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0.0%	E0
1605589000	기타	5.0%	E10
1605591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0.0%	E0
1605591090	기타	0.0%	E0
1605592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0.0%	E0
1605592090	기타	5.0%	E10
1605599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0.0%	E0
1605599090	기타	5.0%	E5
160561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0.0%	E0
1605619000	기타	0.0%	E0
160562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0.0%	E0
1605629000	기타	5.0%	E10
160563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0.0%	E0
1605639000	기타	5.0%	E10
160569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0.0%	E0
1605699000	기타	5.0%	E7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1701121000	당도(糖度)가 98.5 도 이하인 것	0.0%	E0
1701122000	당도(糖度)가 98.5 도를 초과하는 것	0.0%	E0
1701130000	이 류의 소호주 제 2 호에 규정된 사탕수수당	3.0%	E0
1701141000	당도(糖度)가 98.5 도 이하인 것	3.0%	E0
1701142000	당도(糖度)가 98.5 도를 초과하는 것	3.0%	E10
1701910000	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가 첨가된 것	30.0%	EX
1701990000	기타	30.0%	EX
1702111000	유당(乳糖)	0.0%	E0
1702119000	유당(乳糖)시럽	0.0%	E0
1702191000	유당(乳糖)	0.0%	E0
1702199000	유당(乳糖)시럽	0.0%	E0
1702201000	단풍당	0.0%	E0
1702202000	단풍당시럽	0.0%	E0
1702301000	포도당	5.0%	E5
1702302000	포도당시럽	0.0%	E0
1702401000	포도당	5.0%	E3
1702402000	포도당시럽	0.0%	E0
1702500000	화학적으로 순수한 과당	0.0%	E0
1702601000	과당	5.0%	E5
1702602000	과당시럽	0.0%	E0
1702901000	인조꿀	194.4%	EX
1702902000	캐러멜당	5.0%	E5
1702903000	맥아당	5.0%	E3
1702909000	기타	5.0%	E5
1703101000	주정 제조용	0.0%	E0
1703109000	기타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1703901000	주정 제조용	0.0%	E0
1703909000	기타	0.0%	E0
1704100000	추잉껌(당을 도포하였는지에 상관없다)	0.0%	E0
1704901000	감초 추출물(과자로 만들어진 것은 제외한다)	0.0%	E0
1704902010	드롭스(drops)	0.0%	E0
1704902020	캐러멜	0.0%	E0
1704902090	기타	0.0%	E0
1704909000	기타	0.0%	E0
1801001000	생 것	0.0%	E0
1801002000	볶은 것	0.0%	E0
1802001000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	0.0%	E0
1802009000	기타	0.0%	E0
1803100000	탈지(脫脂)하지 않은 것	0.0%	E0
1803200000	전부나 일부를 탈지(脫脂)한 것	0.0%	E0
1804000000	코코아 버터, 지방과 기름	0.0%	E0
1805000000	코코아 가루(설탕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	0.0%	E0
1806100000	코코아 가루(설탕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1806201000	초콜릿과 초콜릿과자	0.0%	E0
1806209010	코코아 조제품(밀크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0 이상의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1806209090	기타	0.0%	E0
1806311000	초콜릿과 초콜릿과자	0.0%	E0
1806319000	기타	0.0%	E0
1806321000	초콜릿과 초콜릿과자	0.0%	E0
1806329000	기타	0.0%	E0
1806901000	초콜릿과 초콜릿과자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1806902111	조제 분유	0.0%	E0
1806902119	기타	0.0%	E0
1806902191	오트밀의 것	0.0%	E0
1806902199	기타	0.0%	E0
1806902210	보릿가루의 것	0.0%	E0
1806902290	기타	513.0%	EX
1806902910	맥아 추출물(extract)의 것	5.0%	E3
1806902920	제 0401 호부터 제 0404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	0.0%	E0
1806902991	오트밀의 것	0.0%	E0
1806902992	보릿가루의 것	0.0%	E0
1806902999	기타	513.0%	EX
1806903010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	0.0%	E0
1806903091	낟알 모양의 쌀	6.4%	E5
1806903099	기타	5.0%	E0
1806909010	코코아 조제품(밀크분의 함유량이 100 분의 50 이상의 것)	0.0%	E0
1806909090	기타	0.0%	E0
1901101010	조제 분유	28.8%	EX
1901101090	기타	32.0%	EX
1901109010	오트밀의 것	0.0%	E0
1901109090	기타	0.0%	E0
1901201000	쌀가루의 것	513.0%	EX
1901202000	보릿가루의 것	0.0%	E0
1901209000	기타	513.0%	EX
1901901000	맥아 추출물(extract)	24.0%	E10
1901902010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 분의 30 이하인 것	36.0%	EX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1901902020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 분의 30 을 초과하는 것	36.0%	EX
1901909010	오트밀	0.0%	E0
1901909091	쌀가루의 것	513.0%	EX
1901909092	보릿가루의 것	0.0%	E0
1901909099	기타	513.0%	EX
1902111000	스파게티	0.0%	E0
1902112000	마카로니	0.0%	E0
1902119000	기타	0.0%	E0
1902191000	국수	5.0%	E5
1902192000	당면	5.0%	E5
1902193000	냉면	0.0%	E0
1902199000	기타	0.0%	E0
1902200000	속을 채운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0%	E0
1902301010	라면	0.0%	E0
1902301090	기타	0.0%	E0
1902309000	기타	0.0%	E0
1902400000	쿠스쿠스(couscous)	0.0%	E0
1903001000	타피오카	0.0%	E0
1903009000	기타	0.0%	E0
1904101000	콘 플레이크(corn flake)	0.0%	E0
1904102000	콘 칩	0.0%	E0
1904103000	튀긴 쌀	0.0%	E0
1904109000	기타	5.0%	E5
1904201000	무슬리(Musli) 형태의 조제 식료품	5.0%	E0
1904209000	기타	5.0%	E5
1904300000	불거 밀(bulgur wheat)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1904901010	찌거나 삶은 쌀	40.0%	EX
1904901090	기타	8.0%	EX
1904909000	기타	5.0%	E10
1905100000	귀리빵	0.0%	E0
1905200000	생강과자(gingerbread)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0.0%	E0
1905310000	스위트 비스킷	0.0%	E0
1905320000	와플과 웨이퍼	0.0%	E0
1905400000	러스크(rusk)·토스트 빵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토스트 물품	0.0%	E0
1905901010	빵	0.0%	E0
1905901020	건빵	0.0%	E0
1905901030	파이와 케이크	0.0%	E0
1905901040	비스킷, 쿠키와 크래커	0.0%	E0
1905901050	쌀과자	5.0%	E5
1905901090	기타	0.0%	E0
1905909010	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	0.0%	E0
1905909020	라이스 페이퍼	5.0%	E3
1905909090	기타	0.0%	E0
2001100000	오이류	0.0%	E0
2001901000	과실과 견과류	24.0%	E10
2001909010	쪽파	0.0%	E0
2001909020	토마토	0.0%	E0
2001909030	꽃양배추	0.0%	E0
2001909040	스위트콘	5.0%	E5
2001909050	염교(rakkyo)	0.0%	E0
2001909060	마늘	24.0%	EX
2001909070	양파	24.0%	EX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2001909090	기타	15.0%	EX
2002100000	토마토의 전체나 조각	0.0%	E0
2002901000	토마토 페이스트(paste)(가용성 고형분이 100 분의 24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2002909000	기타	0.0%	E0
2003104000	양송이 버섯	0.0%	E0
2003109000	기타	0.0%	E0
2003901000	표고버섯	0.0%	E0
2003902000	송이버섯	0.0%	E0
2003903000	송로(松露)	0.0%	E0
2003909000	기타	0.0%	E0
2004100000	감자	5.0%	EX
2004901000	스위트콘	0.0%	E0
2004909000	기타	0.0%	E0
2005101000	유아용 퓨레콘(pureed corn)	0.0%	E0
2005109000	기타	0.0%	E0
2005201000	플레이크로 만든 감자크로켓	0.0%	E0
2005209000	기타	0.0%	E0
2005400000	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0.0%	E0
2005511000	녹두	0.0%	E0
2005512000	팥	0.0%	E0
2005519000	기타	0.0%	E0
2005591000	녹두	0.0%	E0
2005592000	팥	0.0%	E0
2005599000	기타	0.0%	E0
2005600000	아스파라거스(asparagus)	0.0%	E0
2005700000	올리브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2005800000	스위트콘[자메이스 변종 사카라타(Zea mays var. saccharata)]	5.0%	E10
2005910000	죽순	0.0%	E0
2005991000	김치	16.0%	EX
2005992000	사우어크라우트(sauerkraut)	0.0%	E0
2005994000	고려엉겅퀴(곤드레)	0.0%	E0
2005999000	기타	0.0%	E0
2006001000	마롱 글라세(marrons glacés)	24.0%	E20
2006002000	파인애플	24.0%	E10
2006003000	생강	15.0%	EX
2006004000	연 뿌리	0.0%	E0
2006005000	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0.0%	E0
2006006010	껍질을 제거한 콩	0.0%	E0
2006006090	기타	0.0%	E0
2006007000	아스파라거스(asparagus)	0.0%	E0
2006008000	올리브	0.0%	E0
2006009010	스위트콘[자메이스 변종 사카라타(Zea mays var. saccharata)]	0.0%	E0
2006009020	죽순	0.0%	E0
2006009030	그 밖의 채소	0.0%	E0
2006009090	기타	0.0%	E0
2007100000	균질화한 조제품	0.0%	E0
2007911000	잼·과실젤리와 마멀레이드(marmalade)	5.0%	E15
2007919000	기타	0.0%	E0
2007991000	잼·과실젤리와 마멀레이드(marmalade)	24.0%	EX
2007999000	기타	0.0%	E0
2008111000	피넛 버터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2008119000	기타	51.1%	EX
2008191000	밤	0.0%	E0
2008192000	코코넛	0.0%	E0
2008199000	기타	0.0%	E0
2008200000	파인애플	36.0%	E10
2008301000	유자	36.0%	EX
2008309000	기타	36.0%	EX
2008400000	배	36.0%	EX
2008500000	살구	5.0%	E20
2008600000	체리	5.0%	E15
2008701000	설탕을 첨가한 밀폐용기에 넣은 것	0.0%	E0
2008709000	기타	0.0%	E0
2008800000	초본류 딸기	5.0%	EX
2008910000	팜 하트(palm heart)	0.0%	E0
2008930000	크랜베리(cranberry)[바치니움 매크로카르폰(Vaccinium macrocarpon)·바치니움 옥시코코스(Vaccinium oxycoccos)·바치니움 비티스-이다에아(Vaccinium vitis-idaea)]	36.0%	E20
2008971010	설탕을 첨가한 밀폐용기에 넣은 것	40.0%	EX
2008971090	기타	36.0%	EX
2008972000	과실 샐러드	5.0%	EX
2008979000	기타	36.0%	EX
2008991000	포도	36.0%	EX
2008992000	사과	22.5%	EX
2008993000	팝콘	36.0%	E10
2008994000	소금에 절인 초피	36.0%	E10
2008999000	기타	36.0%	EX
2009110000	냉동한 것	27.0%	EX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2009120000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서 브릭스(Brix) 값이 20 을 초과하지 않은 것	5.0%	EX
2009190000	기타	27.0%	EX
2009210000	브릭스(Brix) 값이 20 을 초과하지 않은 것	0.0%	E0
2009290000	기타	0.0%	E0
2009311000	레몬주스	5.0%	E10
2009312000	라임주스	5.0%	E10
2009319000	기타	5.0%	EX
2009391000	레몬주스	0.0%	E0
2009392000	라임주스	5.0%	E10
2009399000	기타	5.0%	EX
2009410000	브릭스(Brix) 값이 20 을 초과하지 않은 것	40.0%	E10
2009490000	기타	5.0%	E10
2009500000	토마토주스	0.0%	E0
2009610000	브릭스(Brix) 값이 30 을 초과하지 않은 것	0.0%	E0
2009690000	기타	5.0%	EX
2009710000	브릭스(Brix) 값이 20 을 초과하지 않은 것	5.0%	EX
2009790000	기타	0.0%	E0
2009810000	크랜베리(cranberry)[바치니움 매크로카르폰(Vaccinium macrocarpon)·바치니움 옥시코코스(Vaccinium oxycoccos)·바치니움 비티스-이다에아(Vaccinium vitis-idaea)] 주스	40.0%	E20
2009891010	복숭아주스	40.0%	EX
2009891020	딸기주스	0.0%	E0
2009891090	기타	40.0%	EX
2009892000	채소 주스	0.0%	E0
2009901010	오렌지주스를 주요 재료로 만든 것	0.0%	E0
2009901020	사과주스를 주요 재료로 만든 것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2009901030	포도주스를 주요 재료로 만든 것	0.0%	E0
2009901090	기타	0.0%	E0
2009902000	채소로 만든 것	0.0%	E0
2009909000	기타	0.0%	E0
2101111000	인스턴트 커피	0.0%	E0
2101119000	기타	0.0%	E0
2101121000	인스턴트 커피의 조제품	0.0%	E0
2101129010	밀크・크림 또는 이들의 대용물을 함유한 것	0.0%	E0
2101129090	기타	0.0%	E0
2101201000	설탕・레몬이나 이들의 대용물을 함유한 것	5.0%	E5
2101209011	티백 포장의 것	20.0%	E20
2101209019	기타	20.0%	E15
2101209090	기타	20.0%	RED
2101301000	보리의 것	0.0%	E0
2101309000	기타	0.0%	E0
2102101000	양조효모	0.0%	E0
2102102000	증류효모	0.0%	E0
2102103000	제빵효모	0.0%	E0
2102104000	배양효모	0.0%	E0
2102109000	기타	0.0%	E0
2102201000	불활성 효모	0.0%	E0
2102202000	누룩	0.0%	E0
2102203010	둥글넓적한 모양의 것	0.0%	E0
2102203090	기타	0.0%	E0
2102204010	둥글넓적한 모양의 것	0.0%	E0
2102204090	기타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2102209000	기타	0.0%	E0
2102300000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	0.0%	E0
2103100000	간장	5.0%	E7
2103201000	토마토 케첩	0.0%	E0
2103202000	토마토 소스	0.0%	E0
2103301000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	0.0%	E0
2103302000	조제한 겨자	0.0%	E0
2103901010	된장	5.0%	E15
2103901020	춘장	5.0%	E5
2103901030	고추장	5.0%	E5
2103901090	기타	0.0%	E0
2103909010	마요네스	0.0%	E0
2103909020	인스턴트 카레	0.0%	E0
2103909030	혼합조미료	36.0%	EX
2103909040	메주	5.0%	EX
2103909090	기타	36.0%	EX
2104101000	육류로 만든 것	0.0%	E0
2104102000	어류로 만든 것	0.0%	E0
2104103000	채소로 만든 것	0.0%	E0
2104109000	기타	0.0%	E0
2104200000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	24.0%	E15
2105001010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	0.0%	E0
2105001090	기타	0.0%	E0
2105009010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	0.0%	E0
2105009090	기타	0.0%	E0
2106101000	두부	5.0%	E1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2106109020	단백질 농축물	0.0%	E0
2106109030	텍스처화한(textured) 단백질계 물질	0.0%	E0
2106901010	콜라 베이스	0.0%	E0
2106901020	과일향의 음료베이스	0.0%	E0
2106901090	기타	0.0%	E0
2106902000	당시럽[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2106903011	인삼차	0.0%	E0
2106903019	기타	0.0%	E0
2106903021	홍삼차	603.4%	EX
2106903029	기타	603.4%	EX
2106904010	김	5.0%	E10
2106904090	기타	0.0%	E0
2106909010	커피크리머	0.0%	E0
2106909021	버터 함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30 이하인 것	5.0%	E20
2106909022	버터 함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30 초과 100 분의 70 이하인 것	5.0%	E20
2106909023	버터 함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70 을 초과하는 것	5.0%	E20
2106909030	아이스크림 제조용 조제품	0.0%	E0
2106909040	자기소화효모(autolyzed yeast)와 그 밖의 효모 추출물(extract)	0.0%	E0
2106909050	향미(香味)용 조제품	5.0%	E5
2106909060	도토리 가루	0.0%	E0
2106909070	알로에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0.0%	E0
2106909080	음료 제조용 조제품[방향성(芳香性)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것은 제외하며,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 분의 0.5 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2106909091	로열젤리, 벌꿀조제품의 것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2106909099	기타	0.0%	E0
2201100000	광천수와 탄산수	0.0%	E0
2201901000	얼음과 눈	0.0%	E0
2201909000	기타	0.0%	E0
2202101000	색깔을 입힌 것	0.0%	E0
2202109000	기타	0.0%	E0
2202910000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맥주	0.0%	E0
2202991000	인삼음료	5.0%	E20
2202992000	과실주스 음료	5.0%	E5
2202993000	식혜	0.0%	E0
2202999000	기타	0.0%	E0
2203000000	맥주	15.0%	E5
2204100000	발포성(發泡性) 포도주	0.0%	E0
2204211000	붉은 포도주	0.0%	E0
2204212000	흰 포도주	0.0%	E0
2204219000	기타	0.0%	E0
2204221000	붉은 포도주	0.0%	E0
2204222000	흰 포도주	0.0%	E0
2204229000	기타	0.0%	E0
2204291000	붉은 포도주	0.0%	E0
2204292000	흰 포도주	0.0%	E0
2204299000	기타	0.0%	E0
2204300000	그 밖의 포도즙	0.0%	E0
2205100000	2 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0.0%	E0
2205900000	기타	0.0%	E0
2206001010	사과주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2206001020	배술	0.0%	E0
2206001090	기타	0.0%	E0
2206002010	청주	0.0%	E0
2206002020	약주	0.0%	E0
2206002030	탁주	0.0%	E0
2206002090	기타	5.0%	E5
2206009010	와인쿨러(제 2009 호나 제 2202 호의 물품을 첨가한 것으로 한정하며, 포도를 원료로 한 것을 포함한다)	0.0%	E0
2206009090	기타	0.0%	E0
2207101000	조주정(粗酒精)	5.0%	E5
2207109010	주류 제조용 발효주정	216.0%	EX
2207109090	기타	0.0%	E0
2207200000	변성 에틸알코올과 그 밖의 변성 주정(알코올의 용량은 상관없다)	8.0%	E5
2208201000	꼬냑	5.0%	E5
2208209000	기타	5.0%	E5
2208301000	스카치 위스키	5.0%	E5
2208302000	버본 위스키	0.0%	E0
2208303000	라이(rye) 위스키	0.0%	E0
2208309000	기타	5.0%	E5
2208400000	럼(rum)과 발효된 사탕수수제품을 증류하여 얻은 그 밖의 증류주	5.0%	E5
2208500000	진(gin)과 제네바(geneva)	5.0%	E5
2208600000	보드카	5.0%	E5
2208701000	인삼주	0.0%	E0
2208702000	오가피주	0.0%	E0
2208709000	기타	5.0%	E5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2208901000	브랜디류(소호 제 2208.20 호의 것은 제외한다)	5.0%	E5
2208904000	소주	0.0%	E0
2208906000	고량주	0.0%	E0
2208907000	데낄라	0.0%	E0
2208909000	기타	5.0%	E5
2209001000	양조식초	0.0%	E0
2209009000	기타	0.0%	E0
2301101000	육이나 설육(屑肉)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펠릿(pellet)	0.0%	E0
2301102000	수지박(greaves)	0.0%	E0
2301201000	어류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펠릿(pellet)	0.0%	E0
2301209000	기타	5.0%	E10
2302100000	옥수수에서 나온 것	0.0%	E0
2302300000	밀에서 나온 것	0.0%	E0
2302401000	쌀에서 나온 것	0.0%	E0
2302409000	기타	0.0%	E0
2302500000	채두류(菜豆類)에서 나온 것	0.0%	E0
2303100000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	0.0%	E0
2303200000	비트펄프(beet-pulp), 버개스(bagasse)와 그 밖의 설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웨이스트(waste)	0.0%	E0
2303301000	사료용	0.0%	E0
2303309000	기타	0.0%	E0
2304000000	대두유를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0.0%	E0
2305000000	땅콩기름을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0.0%	E0
2306100000	목화씨에서 나온 것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2306200000	아마씨에서 나온 것	0.0%	E0
2306300000	해바라기씨에서 나온 것	0.0%	E0
2306410000	저에루크산(low erucic acid) 유채(rape, colza)씨에서 나온 것	0.0%	E0
2306490000	기타	0.0%	E0
2306500000	야자나 코프라(copra)에서 나온 것	0.0%	E0
2306600000	팜 너트(palm nut)나 핵(核)에서 나온 것	0.0%	E0
2306901000	참깨에서 나온 것	0.0%	E0
2306902000	들깨에서 나온 것	0.0%	E0
2306903000	옥수수 씨눈에서 나온 것	0.0%	E0
2306909000	기타	0.0%	E0
2307000000	와인리스(wine lees)와 생주석(argol)	0.0%	E0
2308001000	도토리	0.0%	E0
2308002000	마로니에 열매	0.0%	E0
2308003000	목화씨 껍질	0.0%	E0
2308009000	기타	5.0%	EX
2309101000	개사료	0.0%	E0
2309102000	고양이 사료	0.0%	E0
2309901010	양돈용	0.0%	E0
2309901020	양계용	0.0%	E0
2309901030	어류용	0.0%	E0
2309901040	축우용	0.0%	E0
2309901091	대용유(代用乳)	0.0%	E0
2309901099	기타	0.0%	E0
2309902010	무기물 혹은 광물질(mineral)을 주로 한 것(미량 광물질을 주로 한 것은 제외한다)	40.4%	E15
2309902020	향미제(香味劑)를 주로 한 것	40.4%	E15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2309902091	1994.12.31 현재 수입자동승인 품목	0.0%	E0
2309902099	기타	40.4%	E15
2309903010	항생물질을 주로 한 것	0.0%	E0
2309903020	비타민을 주로 한 것	0.0%	E0
2309903030	미량 광물질(mineral)을 주로 한 것	0.0%	E0
2309903090	기타	0.0%	E0
2309909010	낚시용 떡밥	5.0%	E20
2309909090	기타	40.4%	E15
2401101000	황색종(種)	0.0%	E0
2401102000	버어리(burley)종(種)	0.0%	E0
2401103000	오리엔트종(種)	0.0%	E0
2401109000	기타	0.0%	E0
2401201000	황색종	0.0%	E0
2401202000	버어리(burley)종(種)	0.0%	E0
2401203000	오리엔트종(種)	0.0%	E0
2401209000	기타	0.0%	E0
2401301000	잎의 주맥(主脈)	0.0%	E0
2401302000	잎 부스러기	0.0%	E0
2401309000	기타	0.0%	E0
2402101000	시가(cigar)	0.0%	E0
2402102000	셔루트(cheroot)	0.0%	E0
2402103000	시가릴로(cigarillo)	0.0%	E0
2402201000	필터담배	0.0%	E0
2402209000	기타	0.0%	E0
2402900000	기타	0.0%	E0
2403110000	이 류의 소호주 제1호에 규정된 워터파이프(water pipe) 담배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2403191000	파이프 담배	0.0%	E0
2403199000	기타	0.0%	E0
2403911000	판상엽(板狀葉)	0.0%	E0
2403919000	기타	0.0%	E0
2403991000	씹는 담배	0.0%	E0
2403992000	코 담배	0.0%	E0
2403993000	담배의 추출물(extracts)과 에센스(essence)	0.0%	E0
2403994000	입안에 머금는 담배(예: 스누스)	0.0%	E0
2403999000	기타	0.0%	E0
2501001010	암염(岩鹽)	0.0%	E0
2501001020	천일염	0.0%	E0
2501009010	식염	0.0%	E0
2501009020	순염화나트륨	0.0%	E0
2501009090	기타	0.0%	E0
2502000000	황화철광[배소(焙燒)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2503000000	황[승화황(昇華黃)·침강황(沈降黃)·콜로이드황은 제외한다]	0.0%	E0
2504101000	인상(鱗狀)흑연	0.0%	E0
2504102000	토상(土狀)흑연	0.0%	E0
2504109000	기타	0.0%	E0
2504901000	인상(鱗狀)흑연	0.0%	E0
2504902000	토상(土狀)흑연	0.0%	E0
2504909000	기타	0.0%	E0
2505100000	규사	0.0%	E0
2505901010	점토사	0.0%	E0
2505901020	장석사(長石砂)	0.0%	E0
2505901090	기타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2505909000	기타	0.0%	E0
2506101000	불순물의 함유량이 100분의 0.06 미만인 것	0.0%	E0
2506102000	불순물의 함유량이 100분의 0.06 이상 100분의 0.1 이하인 것	0.0%	E0
2506103000	불순물의 함유량이 100분의 0.1을 초과하는 것	0.0%	E0
2506201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거칠게 다듬은 것	0.0%	E0
2506209000	기타	0.0%	E0
2507001010	하소(煆燒)하지 않은 것	0.0%	E0
2507001090	기타	0.0%	E0
2507002010	와목점토(蛙目粘土)	0.0%	E0
2507002020	목절점토(木節粘土)	0.0%	E0
2507002090	기타	0.0%	E0
2507009000	기타	0.0%	E0
2508100000	벤토나이트(bentonite)	0.0%	E0
2508300000	내화(耐火)점토	0.0%	E0
2508401000	산성백토	0.0%	E0
2508402000	탈색토(奪色土)와 표포토(漂布土)	0.0%	E0
2508409000	기타	0.0%	E0
2508501000	홍주석(紅柱石)	0.0%	E0
2508502000	남정석(藍晶石)	0.0%	E0
2508503000	규선석(硅線石)	0.0%	E0
2508600000	멀라이트(mullite)	0.0%	E0
2508701000	샤모트(chamotte)	0.0%	E0
2508702000	다이나스 어스(dinas earth)	0.0%	E0
2509000000	초크	0.0%	E0
2510101000	천연 인산칼슘	0.0%	E0
2510109000	기타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2510201000	천연 인산칼슘	0.0%	E0
2510202000	천연 인산알루미늄칼슘	0.0%	E0
2510209000	기타	0.0%	E0
2511100000	천연 황산바륨[중정석(重晶石)]	0.0%	E0
2511200000	천연 탄산바륨[독중석(毒重石)]	0.0%	E0
2512000000	규조토[예: 키절구어(kieselguhr)·트리폴리트(tripolite)·다이어토마이트(diatomite)]와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하소(煆燒)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겉보기 비중이 1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2513101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불규칙한 조각[잘게 부순 부석(빔스키)을 포함한다]	0.0%	E0
2513109000	기타	0.0%	E0
2513201010	금강사(金剛砂)	0.0%	E0
2513201020	천연 커런덤(corundum)	0.0%	E0
2513201030	천연 석류석	0.0%	E0
2513201090	기타	0.0%	E0
2513202010	금강사(金剛砂)	0.0%	E0
2513202020	천연 커런덤(corundum)	0.0%	E0
2513202030	천연 석류석	0.0%	E0
2513202090	기타	0.0%	E0
2514001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거칠게 다듬은 것	0.0%	E0
2514009000	기타	0.0%	E0
2515111000	대리석	0.0%	E0
2515112000	트래버틴(travertine)	0.0%	E0
2515121000	대리석	0.0%	E0
2515122000	트래버틴(travertine)	0.0%	E0
2515200000	에코신(ecaussine)과 그 밖의 석비(石碑)용·건축용 석회질의 암석과 설화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석고(alabaster)		
2516110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거칠게 다듬은 것	0.0%	E0
2516120000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	0.0%	E0
2516201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거칠게 다듬은 것	0.0%	E0
2516209000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	0.0%	E0
2516901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거칠게 다듬은 것	0.0%	E0
2516909000	기타	0.0%	E0
2517101000	자갈	0.0%	E0
2517102000	쇄석(碎石)	0.0%	E0
2517109000	기타	0.0%	E0
2517200000	슬래그(slag)·드로스(dross)나 이와 유사한 산업폐기물의 머캐덤(macadam)(소호 제 2517.10 호의 물품을 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0%	E0
2517300000	타르 머캐덤(tar macadam)	0.0%	E0
2517410000	대리석으로 만든 것	0.0%	E0
2517491000	현무암으로 만든 것	0.0%	E0
2517492000	화강암으로 만든 것	0.0%	E0
2517499000	기타	0.0%	E0
2518100000	하소(煆燒)하지 않거나 소결(燒結)하지 않은 백운석(白雲石)	0.0%	E0
2518200000	하소(煆燒)하거나 소결(燒結)한 백운석(白雲石)	0.0%	E0
2518300000	응결(凝結) 백운석(白雲石)	0.0%	E0
2519100000	천연 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	0.0%	E0
2519901000	용융(溶融)·소결(燒結)한 마그네시아	0.0%	E0
2519902000	천연 산화마그네슘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2519909000	기타	0.0%	E0
2520101000	석고	0.0%	E0
2520102000	무수(無水)석고	0.0%	E0
2520201000	치과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하소하거나 미세하게 분쇄한 것	0.0%	E0
2520209000	기타	0.0%	E0
2521001000	석회석	0.0%	E0
2521009000	기타	0.0%	E0
2522100000	생석회(生石灰)	0.0%	E0
2522200000	소석회(消石灰)	0.0%	E0
2522300000	수경성(水硬性) 석회	0.0%	E0
2523100000	시멘트 클링커(clinker)	5.0%	E0
2523210000	백색 시멘트(인위적으로 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0%	E0
2523290000	기타	5.0%	E3
2523300000	알루미나(aluminous) 시멘트	0.0%	E0
2523901000	슬래그(slag) 시멘트	5.0%	E0
2523909000	기타	0.0%	E0
2524100000	청(青)석면	0.0%	E0
2524901000	갈(褐)석면	0.0%	E0
2524902000	백(白)석면	0.0%	E0
2524909000	기타	0.0%	E0
2525100000	가공하지 않은 운모와 판(板) 모양의 운모나 쪼갠 운모	0.0%	E0
2525200000	운모 가루	0.0%	E0
2525300000	운모 웨이스트(waste)	0.0%	E0
2526101000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		
2526109000	기타	0.0%	E0
2526200000	부수거나 가루인 것	0.0%	E0
2528001000	천연 붕산나트륨과 그 정광(精鑛)[하소(煆燒)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0%	E0
2528002000	붕산칼슘	0.0%	E0
2528003000	염화붕산마그네슘	0.0%	E0
2528004000	천연 붕산	0.0%	E0
2528009000	기타	0.0%	E0
2529100000	장석(長石)	0.0%	E0
2529211000	가루	0.0%	E0
2529219000	기타	0.0%	E0
2529221000	가루	0.0%	E0
2529229000	기타	0.0%	E0
2529301000	백류석(白榴石)	0.0%	E0
2529302000	하석(霞石)	0.0%	E0
2529303000	하석 섬장암(霞石 閃長巖)	0.0%	E0
2530101000	질석(蛭石)	0.0%	E0
2530102000	진주암(眞珠巖)과 녹니석(綠泥石)	0.0%	E0
2530200000	키이저라이트, 에프소마이트(천연 황산마그네슘)	0.0%	E0
2530901000	천연 황화비소	0.0%	E0
2530902000	건전지 제조용에 적합한 연망간광	0.0%	E0
2530903000	스트론티아나이트(strontianite)	0.0%	E0
2530904000	주사(朱沙)	0.0%	E0
2530905000	납석(蠟石)	0.0%	E0
2530906000	불석(沸石)	0.0%	E0
2530907000	명반석(明礬石)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2530908000	규회석(硅灰石)	0.0%	E0
2530909010	도석(陶石)	0.0%	E0
2530909020	견운모(絹雲母)	0.0%	E0
2530909030	어스컬러(earth colour)	0.0%	E0
2530909040	천연의 운모상 산화철	0.0%	E0
2530909050	천연 빙정석(氷晶石)과 천연 치올라이트(chiolite)	0.0%	E0
2530909091	천연탄산칼슘	0.0%	E0
2530909099	기타	0.0%	E0
2601111000	적(赤)철광	0.0%	E0
2601112000	자(磁)철광	0.0%	E0
2601119000	기타	0.0%	E0
2601121000	적(赤)철광	0.0%	E0
2601122000	자(磁)철광	0.0%	E0
2601129000	기타	0.0%	E0
2601200000	배소(焙燒)한 황화철광	0.0%	E0
2602000000	망간광과 그 정광(精鑛)[건조 상태에서 측정한 망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 이상인 철망간광과 그 정광(精鑛)을 포함한다]	0.0%	E0
2603000000	구리광과 그 정광(精鑛)	0.0%	E0
2604000000	니켈광과 그 정광(精鑛)	0.0%	E0
2605000000	코발트광과 그 정광(精鑛)	0.0%	E0
2606000000	알루미늄광과 그 정광(精鑛)	0.0%	E0
2607000000	납광과 그 정광(精鑛)	0.0%	E0
2608000000	아연광과 그 정광(精鑛)	0.0%	E0
2609000000	주석광과 그 정광(精鑛)	0.0%	E0
2610000000	크로뮴광과 그 정광(精鑛)	0.0%	E0
2611001000	흑중석(wolframite)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2611002000	회중석(scheelite)	0.0%	E0
2611009000	기타	0.0%	E0
2612100000	우라늄광과 그 정광(精鑛)	0.0%	E0
2612200000	토륨광과 그 정광(精鑛)	0.0%	E0
2613100000	배소(焙燒)한 것	0.0%	E0
2613900000	기타	0.0%	E0
2614001000	금홍석(rutile)	0.0%	E0
2614009000	기타	0.0%	E0
2615100000	지르코늄광과 그 정광(精鑛)	0.0%	E0
2615901000	니오븀광과 그 정광(精鑛)	0.0%	E0
2615902000	탄탈륨광과 그 정광(精鑛)	0.0%	E0
2615903000	바나듐광과 그 정광(精鑛)	0.0%	E0
2616100000	은광과 그 정광(精鑛)	0.0%	E0
2616901000	금광과 그 정광(精鑛)	0.0%	E0
2616902000	백금광과 그 정광(精鑛)[백금족의 광과 그 정광(精鑛)을 포함한다]	0.0%	E0
2617100000	안티모니광과 그 정광(精鑛)	0.0%	E0
2617901000	수은광과 그 정광(精鑛)	0.0%	E0
2617902000	게르마늄광과 그 정광(精鑛)	0.0%	E0
2617904000	비스무트(bismuth)광과 그 정광(精鑛)	0.0%	E0
2617909000	기타	0.0%	E0
2618000000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알갱이 모양의 슬래그(slag)[슬래그 샌드(slag sand)]	0.0%	E0
2619001010	용광로 슬래그(slag)	0.0%	E0
2619001090	기타	0.0%	E0
2619002000	드로스(dross)	0.0%	E0
2619003000	스케일링(scaling)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2619009000	기타	0.0%	E0
2620110000	경(硬)아연 스펠터(spelter)	0.0%	E0
2620190000	기타	0.0%	E0
2620210000	유연(有鉛) 가솔린 슬러지(sludge)와 유연(有鉛) 안티녹(anti-knock) 화합물 슬러지(sludge)	0.0%	E0
2620290000	기타	0.0%	E0
2620300000	주로 구리를 함유하는 것	0.0%	E0
2620400000	주로 알루미늄을 함유하는 것	0.0%	E0
2620600000	비소, 수은, 탈륨이나 그 혼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비소나 이들 금속들의 채취용이나 그 화합물의 제조용	0.0%	E0
2620910000	안티모니, 베릴륨, 카드뮴, 크로뮴이나 그 혼합물을 포함하는 것	0.0%	E0
2620990000	기타	0.0%	E0
2621100000	생활폐기물의 소각으로 생기는 회(灰)와 잔재물	0.0%	E0
2621900000	기타	0.0%	E0
2701110000	무연탄	0.0%	E0
2701121000	강점결성 코크스용 탄	0.0%	E0
2701122000	그 밖의 코크스용 탄	0.0%	E0
2701129010	휘발성 물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22 미만인 것(건조하고 광물질이 없는 상태 기준에 의한다)	0.0%	E0
2701129090	기타	0.0%	E0
2701190000	그 밖의 석탄	0.0%	E0
2701201000	연탄	0.0%	E0
2701202000	조개탄(ovoid)	0.0%	E0
2701209000	기타	0.0%	E0
2702100000	갈탄(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으며 응결시킨 것은 제외한다)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2702200000	응결시킨 갈탄	0.0%	E0
2703001000	응결시키지 않은 것	0.0%	E0
2703002000	응결시킨 것	0.0%	E0
2704001010	석탄에서 제조한 것	0.0%	E0
2704001090	기타	0.0%	E0
2704002000	반성(半成) 코크스	0.0%	E0
2704003000	레토르트 카본(retort carbon)	0.0%	E0
2705000000	석탄가스・수성(水性)가스・발생로(發生爐)가스와 이와 유사한 가스(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는 제외한다)	0.0%	E0
2706001000	콜타르(coal tar)	0.0%	E0
2706009000	기타	0.0%	E0
2707100000	벤조올(벤젠)	0.0%	E0
2707200000	톨루올(톨루엔)	0.0%	E0
2707300000	크실롤(크실렌)	0.0%	E0
2707400000	나프탈렌	0.0%	E0
2707500000	그 밖의 방향족(芳香族) 탄화수소의 혼합물[섭씨 250 도에서 ISO 3405 방법으로 증류한 양이 전 용량의 100 분의 65 이상(손실분 포함)인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2707910000	크레오소트(creosote)유	0.0%	E0
2707991000	솔벤트 나프타(solvent naphtha)	0.0%	E0
2707992000	안트라센(anthracene)	0.0%	E0
2707993000	페놀(석탄산)	0.0%	E0
2707999000	기타	0.0%	E0
2708100000	피치(pitch)	0.0%	E0
2708200000	피치코크스(pitch cokes)	0.0%	E0
2709001010	섭씨 15 도에서 비중이 0.796 초과 0.841 이하인 것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2709001020	섭씨 15 도에서 비중이 0.841 초과 0.847 이하인 것	0.0%	E0
2709001030	섭씨 15 도에서 비중이 0.847 초과 0.855 이하인 것	0.0%	E0
2709001040	섭씨 15 도에서 비중이 0.855 초과 0.869 이하인 것	0.0%	E0
2709001050	섭씨 15 도에서 비중이 0.869 초과 0.885 이하인 것	0.0%	E0
2709001060	섭씨 15 도에서 비중이 0.885 초과 0.899 이하인 것	0.0%	E0
2709001070	섭씨 15 도에서 비중이 0.899 초과 0.904 이하인 것	0.0%	E0
2709001080	섭씨 15 도에서 비중이 0.904 초과 0.966 이하인 것	0.0%	E0
2709001090	기타	0.0%	E0
2709002000	역청유(瀝青油)	0.0%	E0
2710121000	자동차 휘발유	3.0%	E3
2710122000	항공 휘발유	0.0%	E0
2710123000	프로필렌테트라머(propylene tetramer)	0.0%	E0
2710124000	나프타	0.0%	E0
2710125000	엔지엘(NGL)	0.0%	E0
2710129000	기타	5.0%	E0
2710191010	제트 연료유	0.0%	E0
2710191090	기타	5.0%	E3
2710192010	등유	3.0%	E3
2710192020	제트 연료유	3.0%	E3
2710192030	노르말-파라핀(n-paraffin)	0.0%	E0
2710192090	기타	5.0%	E3
2710193000	경유	3.0%	E3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2710194010	경질(輕質)중유(벙커에이유)	3.0%	E0
2710194020	중유(벙커비유)	3.0%	E0
2710194030	벙커시유	3.0%	E0
2710194090	기타	5.0%	E0
2710195010	조유(粗油)	5.0%	E0
2710195020	윤활유 기유(基油)	5.0%	E3
2710196000	신전유(extender oil)	0.0%	E0
2710197110	항공기용 기관오일	0.0%	E0
2710197120	자동차용 기관오일	0.0%	E0
2710197130	선박용 기관오일	0.0%	E0
2710197210	실린더오일	0.0%	E0
2710197220	스핀들(spindle)오일	0.0%	E0
2710197230	기어오일	0.0%	E0
2710197240	터빈오일	0.0%	E0
2710197250	냉동기오일	0.0%	E0
2710197310	콤파운드오일	0.0%	E0
2710197320	유동파라핀	0.0%	E0
2710197330	자동변속기용 윤활유	0.0%	E0
2710197410	방청유(anti-corrosive oil)	0.0%	E0
2710197420	절삭유	0.0%	E0
2710197430	세척유	0.0%	E0
2710197440	주형이형유	0.0%	E0
2710197450	유압브레이크유	0.0%	E0
2710197510	프로세스유	0.0%	E0
2710197520	전기전열유	0.0%	E0
2710197530	열처리유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2710197540	열매체유	0.0%	E0
2710197900	기타	0.0%	E0
2710198010	알루미늄을 첨가한 것	0.0%	E0
2710198020	칼슘을 첨가한 것	0.0%	E0
2710198030	나트륨을 첨가한 것	0.0%	E0
2710198040	리튬을 첨가한 것	0.0%	E0
2710198090	기타	0.0%	E0
2710199000	기타	0.0%	E0
2710201010	자동차 휘발유	5.0%	E3
2710201020	항공 휘발유	0.0%	E0
2710201030	프로필렌테트라머(propylene tetramer)	0.0%	E0
2710201040	나프타	0.0%	E0
2710201050	엔지엘(NGL)	0.0%	E0
2710201090	기타	5.0%	E0
2710209110	제트 연료유	0.0%	E0
2710209190	기타	5.0%	E0
2710209210	등유	5.0%	E3
2710209220	제트 연료유	5.0%	E3
2710209230	노르말-파라핀(n-paraffin)	0.0%	E0
2710209290	기타	5.0%	E3
2710209300	경유	5.0%	E3
2710209410	경질(輕質)중유(벙커에이유)	5.0%	E0
2710209420	중유(벙커비유)	5.0%	E0
2710209430	벙커시유	5.0%	E0
2710209490	기타	5.0%	E0
2710209510	조유(粗油)	5.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2710209520	윤활유 기유(基油)	5.0%	E3
2710209600	신전유(extender oil)	0.0%	E0
2710209711	항공기용 기관오일	0.0%	E0
2710209712	자동차용 기관오일	0.0%	E0
2710209713	선박용 기관오일	0.0%	E0
2710209721	실린더오일	0.0%	E0
2710209722	스핀들(spindle)오일	0.0%	E0
2710209723	기어오일	0.0%	E0
2710209724	터빈오일	0.0%	E0
2710209725	냉동기오일	0.0%	E0
2710209731	콤파운드오일	0.0%	E0
2710209732	유동파라핀	0.0%	E0
2710209733	자동변속기용 윤활유	0.0%	E0
2710209741	방청유	0.0%	E0
2710209742	절삭유	0.0%	E0
2710209743	세척유	0.0%	E0
2710209744	주형이형유	0.0%	E0
2710209745	유압브레이크유	0.0%	E0
2710209751	프로세스유	0.0%	E0
2710209752	전기전열유	0.0%	E0
2710209753	열처리유	0.0%	E0
2710209754	열매체유	0.0%	E0
2710209790	기타	0.0%	E0
2710209810	알루미늄을 첨가한 것	0.0%	E0
2710209820	칼슘을 첨가한 것	0.0%	E0
2710209830	나트륨을 첨가한 것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2710209840	리튬을 첨가한 것	0.0%	E0
2710209890	기타	0.0%	E0
2710209900	기타	0.0%	E0
2710911010	자동차 휘발유·항공 휘발유·제트 연료유의 것	0.0%	E0
2710911020	나프타와 엔지엘(NGL)의 것	0.0%	E0
2710911090	기타	0.0%	E0
2710912010	등유와 제트 연료유의 것	0.0%	E0
2710912090	기타	0.0%	E0
2710913000	경유로 만든 것	0.0%	E0
2710914010	경질(輕質)중유(벙커에이유)·중유(벙커비유)·벙커시유의 것	0.0%	E0
2710914090	기타	0.0%	E0
2710915000	조유(粗油)·윤활유[신전유(extender oil)는 제외한다]·윤활유 기유(基油)의 것	0.0%	E0
2710919000	기타	0.0%	E0
2710991010	자동차 휘발유·항공 휘발유·제트 연료유의 것	0.0%	E0
2710991020	나프타와 엔지엘(NGL)의 것	0.0%	E0
2710991090	기타	0.0%	E0
2710992010	등유와 제트 연료유의 것	0.0%	E0
2710992090	기타	0.0%	E0
2710993000	경유로 만든 것	0.0%	E0
2710994010	경질(輕質)중유(벙커에이유)·중유(벙커비유)·벙커시유의 것	0.0%	E0
2710994090	기타	0.0%	E0
2710995000	조유(粗油)·윤활유[신전유(extender oil)는 제외한다]·윤활유 기유(基油)의 것	0.0%	E0
2710999000	기타	0.0%	E0
2711110000	천연가스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2711120000	프로판	0.0%	E0
2711130000	부탄	0.0%	E0
2711141000	에틸렌	0.0%	E0
2711142000	프로필렌	0.0%	E0
2711143000	부틸렌	0.0%	E0
2711144000	부타디엔	0.0%	E0
2711190000	기타	0.0%	E0
2711210000	천연가스	0.0%	E0
2711290000	기타	0.0%	E0
2712101000	바셀린	0.0%	E0
2712109000	기타	0.0%	E0
2712200000	파라핀왁스(기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75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2712901010	슬랙왁스와 스케일왁스	0.0%	E0
2712901020	마이크로크리스털린왁스	0.0%	E0
2712901090	기타	0.0%	E0
2712909010	몬탄왁스	0.0%	E0
2712909020	토탄왁스	0.0%	E0
2712909030	세레신왁스	0.0%	E0
2712909040	합성 파라핀왁스	0.0%	E0
2712909090	기타	0.0%	E0
2713110000	하소(煆燒)하지 않은 것	0.0%	E0
2713120000	하소(煆燒)한 것	0.0%	E0
2713200000	석유역청(瀝靑)	0.0%	E0
2713900000	그 밖의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잔재물	0.0%	E0
2714100000	역청질 혈암(瀝靑質 頁巖)·유모 혈암(油母 頁巖), 타르샌드(tar sand)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2714901000	천연의 역청(瀝青)과 아스팔트	0.0%	E0
2714902000	아스팔타이트	0.0%	E0
2714903000	아스팔트질의 암석	0.0%	E0
2715001000	컷백(cut-back)	0.0%	E0
2715002000	아스팔트·역청(瀝青)·피치(pitch)·타르의 에멀션(emulsion)이나 안정분산액	0.0%	E0
2715003000	매스틱(mastic)	0.0%	E0
2715009000	기타	0.0%	E0
2716000000	전기에너지	0.0%	E0
2801100000	염소	0.0%	E0
2801200000	요드	0.0%	E0
2801301000	플루오르	0.0%	E0
2801302000	브롬	0.0%	E0
2802001000	승화황(昇華黃)	0.0%	E0
2802002000	침강황(沈降黃)	0.0%	E0
2802003000	콜로이드황	0.0%	E0
2803001000	아세틸렌 블랙	0.0%	E0
2803009011	이차전지 제조용	0.0%	E0
2803009019	기타	0.0%	E0
2803009090	기타	0.0%	E0
2804100000	수소	0.0%	E0
2804210000	아르곤	0.0%	E0
2804291000	헬륨	0.0%	E0
2804292000	네온	0.0%	E0
2804293000	크립톤	0.0%	E0
2804294000	크세논	0.0%	E0
2804299000	기타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2804300000	질소	0.0%	E0
2804400000	산소	0.0%	E0
2804501000	붕소	0.0%	E0
2804502000	텔루르	0.0%	E0
2804611010	잉곳(ingot) 또는 브릭(brick)	0.0%	E0
2804611090	기타	0.0%	E0
2804619000	기타	0.0%	E0
2804690000	기타	0.0%	E0
2804701000	황린	0.0%	E0
2804709000	기타	0.0%	E0
2804800000	비소	0.0%	E0
2804900000	셀렌	0.0%	E0
2805110000	나트륨	0.0%	E0
2805120000	칼슘	0.0%	E0
2805190000	기타	0.0%	E0
2805301000	세륨그룹	0.0%	E0
2805302000	테르븀그룹	0.0%	E0
2805303000	에르븀그룹	0.0%	E0
2805304000	이트륨	0.0%	E0
2805305000	스칸듐	0.0%	E0
2805309000	기타	0.0%	E0
2805400000	수은	0.0%	E0
2806100000	염화수소(염산)	0.0%	E0
2806200000	클로로황산	0.0%	E0
2807001010	반도체 제조용	0.0%	E0
2807001090	기타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2807002000	발연황산	0.0%	E0
2808001010	반도체 제조용	0.0%	E0
2808001090	기타	0.0%	E0
2808002000	황질산	0.0%	E0
2809100000	오산화인	0.0%	E0
2809201010	반도체 제조용	0.0%	E0
2809201090	기타	0.0%	E0
2809202010	메타인산	0.0%	E0
2809202020	피로인산	0.0%	E0
2809202090	기타	0.0%	E0
2810001010	삼산화 이붕소	0.0%	E0
2810001090	기타	0.0%	E0
2810002000	오르토붕산	0.0%	E0
2810003000	메타붕산	0.0%	E0
2810009000	기타	0.0%	E0
2811111000	반도체 제조용	0.0%	E0
2811119000	기타	0.0%	E0
2811120000	시안화수소(시안화수소산)	0.0%	E0
2811191000	황화수소	0.0%	E0
2811192000	브롬화수소산	0.0%	E0
2811193000	술파민산	0.0%	E0
2811194000	과염소산	0.0%	E0
2811195000	염소산	0.0%	E0
2811196000	하이포아인산	0.0%	E0
2811197000	아인산	0.0%	E0
2811198000	비산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2811199000	기타	0.0%	E0
2811210000	이산화탄소	0.0%	E0
2811221000	화이트카본	0.0%	E0
2811229010	실리카겔	0.0%	E0
2811229090	기타	0.0%	E0
2811291000	일산화탄소	0.0%	E0
2811292000	아산화질소	0.0%	E0
2811293000	이산화질소	0.0%	E0
2811294000	삼산화비소	0.0%	E0
2811295000	오산화비소	0.0%	E0
2811299000	기타	0.0%	E0
2812110000	카보닐 디클로라이드(포스겐)	0.0%	E0
2812120000	포스포러스 옥시클로라이드	0.0%	E0
2812130000	포스포러스 트리클로라이드	0.0%	E0
2812140000	포스포러스 펜타클로라이드	0.0%	E0
2812150000	설퍼 모노클로라이드	0.0%	E0
2812160000	설퍼 디클로라이드	0.0%	E0
2812170000	티오닐 클로라이드	0.0%	E0
2812190000	기타	0.0%	E0
2812901000	삼플루오르붕소	0.0%	E0
2812902000	설퍼헥사플루오라이드	0.0%	E0
2812909000	기타	0.0%	E0
2813100000	이황화탄소	0.0%	E0
2813901020	오황화인	0.0%	E0
2813901090	기타	0.0%	E0
2813902010	오황화비소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2813902090	기타	0.0%	E0
2813903000	황화규소	0.0%	E0
2813909000	기타	0.0%	E0
2814100000	무수(無水)암모니아	0.0%	E0
2814200000	암모니아수	0.0%	E0
2815110000	고체	5.0%	E3
2815120000	수용액(소다액이나 액체 상태의 소다)	5.0%	E3
2815200000	수산화칼륨[가성(苛性)칼륨]	0.0%	E0
2815301000	과산화나트륨	0.0%	E0
2815302000	과산화칼륨	0.0%	E0
2816101000	수산화마그네슘	0.0%	E0
2816102000	과산화마그네슘	0.0%	E0
2816400000	스트론튬이나 바륨의 산화물, 수산화물, 과산화물	0.0%	E0
2817001000	산화아연	0.0%	E0
2817002000	과산화아연	0.0%	E0
2818101000	선별된 알갱이 모양	0.0%	E0
2818109000	기타	0.0%	E0
2818200000	산화알루미늄[인조 커런덤(corundum)은 제외한다]	0.0%	E0
2818301000	알루미나겔	0.0%	E0
2818309000	기타	0.0%	E0
2819100000	삼산화크로뮴	0.0%	E0
2819901010	산화제이크로뮴	0.0%	E0
2819901090	기타	0.0%	E0
2819902000	수산화크로뮴	0.0%	E0
2820100000	이산화망간	0.0%	E0
2820901000	일산화망간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2820902000	삼산화제이망간	0.0%	E0
2820909000	기타	0.0%	E0
2821101000	산화철	0.0%	E0
2821102000	수산화철	0.0%	E0
2821200000	어스컬러(earth colour)	0.0%	E0
2822001010	산화제이코발트	0.0%	E0
2822001091	이차전지 제조용	0.0%	E0
2822001099	기타	0.0%	E0
2822002010	수산화제일코발트	0.0%	E0
2822002090	기타	0.0%	E0
2823001000	아나타스형	0.0%	E0
2823009000	기타	0.0%	E0
2824100000	일산화납[리사지(litharge)·메시코트(massicot)]	0.0%	E0
2824901000	연단(鉛丹)과 오렌지납	0.0%	E0
2824909000	기타	0.0%	E0
2825101000	히드라진 히드레이트	0.0%	E0
2825109010	히드라진	0.0%	E0
2825109020	히드라진과 무기염	0.0%	E0
2825109030	히드록실아민	0.0%	E0
2825109041	히드록실 암모늄클로라이드(히드록실아민염산염)	0.0%	E0
2825109049	기타	0.0%	E0
2825201000	산화리튬	0.0%	E0
2825202000	수산화리튬	0.0%	E0
2825301000	오산화바나듐	0.0%	E0
2825309000	기타	0.0%	E0
2825401000	산화니켈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2825402000	수산화니켈	0.0%	E0
2825501000	산화구리	0.0%	E0
2825502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2825502090	기타	0.0%	E0
2825601000	산화게르마늄	0.0%	E0
2825602000	이산화지르코늄	0.0%	E0
2825701000	산화몰리브덴	0.0%	E0
2825702000	수산화몰리브덴	0.0%	E0
2825800000	산화안티모니	0.0%	E0
2825901010	산화칼슘	0.0%	E0
2825901020	산화텅스텐	0.0%	E0
2825901030	산화석	0.0%	E0
2825901090	기타	0.0%	E0
2825902010	수산화칼슘	0.0%	E0
2825902020	수산화망간	0.0%	E0
2825902030	수산화텅스텐	0.0%	E0
2825902040	수산화석	0.0%	E0
2825902090	기타	0.0%	E0
2825903010	과산화니켈	0.0%	E0
2825903090	기타	0.0%	E0
2825909000	기타	0.0%	E0
2826120000	플루오르화알루미늄	0.0%	E0
2826191000	플루오르화칼슘	0.0%	E0
2826193010	산성플루오르화칼륨	0.0%	E0
2826193090	기타	0.0%	E0
2826194000	플루오르화암모늄이나 플루오르화나트륨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2826195000	텅스텐 헥사플루오라이드(WF6)	0.0%	E0
2826199000	기타	0.0%	E0
2826300000	육플루오르화알루미늄산나트륨[인조 빙정석(氷晶石)]	0.0%	E0
2826901000	인조치올라이트	0.0%	E0
2826902000	플루오르화규산칼슘	0.0%	E0
2826903000	플루오르화붕산염	0.0%	E0
2826904000	플루오르화인산염	0.0%	E0
2826905000	플루오르화황산염	0.0%	E0
2826906000	플루오르화규산나트륨이나 플루오르화규산칼륨	0.0%	E0
2826909000	기타	0.0%	E0
2827100000	염화암모늄	0.0%	E0
2827200000	염화칼슘	0.0%	E0
2827310000	마그네슘 염화물	0.0%	E0
2827320000	알루미늄 염화물	0.0%	E0
2827350000	니켈 염화물	0.0%	E0
2827391000	구리 염화물	0.0%	E0
2827399000	기타	0.0%	E0
2827411000	산화염화구리	0.0%	E0
2827412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2827412090	기타	0.0%	E0
2827491000	산화염화물	0.0%	E0
2827492000	수산화염화물	0.0%	E0
2827511000	브롬화나트륨	0.0%	E0
2827512000	브롬화칼륨	0.0%	E0
2827591000	브롬화칼슘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2827599000	기타	0.0%	E0
2827601000	산화요드화물	0.0%	E0
2827609010	요드화칼륨	0.0%	E0
2827609090	기타	0.0%	E0
2828100000	상관습(商慣習)상의 하이포아염소산칼슘과 그 밖의 하이포아염소산칼슘	0.0%	E0
2828901010	하이포아염소산나트륨	0.0%	E0
2828901020	하이포아염소산칼륨	0.0%	E0
2828901090	기타	0.0%	E0
2828902010	아염소산나트륨	0.0%	E0
2828902020	아염소산알루미늄	0.0%	E0
2828902090	기타	0.0%	E0
2828903000	하이포아브롬산염	0.0%	E0
2829110000	염소산나트륨	0.0%	E0
2829191000	염소산칼륨	0.0%	E0
2829192000	염소산바륨	0.0%	E0
2829199000	기타	0.0%	E0
2829901010	과염소산나트륨	0.0%	E0
2829901020	과염소산암모늄	0.0%	E0
2829901090	기타	0.0%	E0
2829902010	브롬산염	0.0%	E0
2829902020	과브롬산염	0.0%	E0
2829902030	요오드산염	0.0%	E0
2829902040	과요오드산염	0.0%	E0
2830101000	황화수소나트륨	0.0%	E0
2830109000	기타	0.0%	E0
2830901000	황화물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2830902000	폴리황화물	0.0%	E0
2831101000	아이티온산나트륨	0.0%	E0
2831102000	술폭실산나트륨(포름알데히드 술폭실산나트륨)	0.0%	E0
2831901000	아이티온산염	0.0%	E0
2831902000	술폭실산염	0.0%	E0
2832101000	아황산수소나트륨	0.0%	E0
2832109000	기타	0.0%	E0
2832201000	아황산암모늄	0.0%	E0
2832202000	아황산칼륨	0.0%	E0
2832203000	아황산칼슘	0.0%	E0
2832209000	기타	0.0%	E0
2832301000	티오황산암모늄	0.0%	E0
2832302000	티오황산나트륨	0.0%	E0
2832303000	티오황산칼륨	0.0%	E0
2832309000	기타	0.0%	E0
2833110000	황산이나트륨	0.0%	E0
2833191000	황산수소나트륨	0.0%	E0
2833192000	이황산이나트륨	0.0%	E0
2833199000	기타	0.0%	E0
2833210000	황산마그네슘	0.0%	E0
2833221000	이차전지 제조용	0.0%	E0
2833229000	기타	0.0%	E0
2833240000	황산니켈	0.0%	E0
283325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2833259000	기타	0.0%	E0
2833270000	황산바륨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2833291000	황산철	0.0%	E0
2833292010	이차전지 제조용	0.0%	E0
2833292090	기타	0.0%	E0
2833293010	이차전지 제조용	0.0%	E0
2833293090	기타	0.0%	E0
2833299000	기타	0.0%	E0
2833300000	명반	0.0%	E0
2833401000	과황산암모늄	0.0%	E0
2833402000	과황산나트륨	0.0%	E0
2833403000	과황산칼슘	0.0%	E0
2833409000	기타	0.0%	E0
2834101000	아질산나트륨	0.0%	E0
2834109000	기타	0.0%	E0
2834210000	질산칼륨	0.0%	E0
2834291000	질산바륨	0.0%	E0
2834299000	기타	0.0%	E0
2835101010	하이포아인산나트륨	0.0%	E0
2835101020	하이포아인산칼슘	0.0%	E0
2835101090	기타	0.0%	E0
2835102000	아인산염	0.0%	E0
2835221000	인산일나트륨	0.0%	E0
2835222000	인산이나트륨	0.0%	E0
2835240000	인산칼륨	0.0%	E0
2835250000	오르토인산수소칼슘(인산이칼슘)	0.0%	E0
2835260000	그 밖의 인산칼슘	0.0%	E0
2835291000	인산알루미늄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2835299000	기타	0.0%	E0
2835310000	삼인산나트륨(트리폴리인산나트륨)	0.0%	E0
2835391000	메타인산나트륨	0.0%	E0
2835392000	피로인산나트륨	0.0%	E0
2835399000	기타	0.0%	E0
2836200000	탄산이나트륨	0.0%	E0
2836300000	탄산수소나트륨(중탄산나트륨)	0.0%	E0
2836400000	탄산칼륨	0.0%	E0
2836500000	탄산칼슘	0.0%	E0
2836600000	탄산바륨	0.0%	E0
2836910000	탄산리튬	0.0%	E0
2836920000	탄산스트론튬	0.0%	E0
2836991010	탄산마그네슘	0.0%	E0
2836991020	상관습상의 탄산암모늄과 그 밖의 탄산암모늄	0.0%	E0
2836991031	이차전지 제조용	0.0%	E0
2836991039	기타	0.0%	E0
2836991090	기타	0.0%	E0
2836992000	과산화탄산염(과탄산염)	0.0%	E0
2837111000	시안화나트륨	0.0%	E0
2837112000	산화시안화나트륨	0.0%	E0
2837191010	시안화칼륨	0.0%	E0
2837191020	시안화구리	0.0%	E0
2837191030	시안화아연	0.0%	E0
2837191090	기타	0.0%	E0
2837192000	산화시안화물	0.0%	E0
2837201000	페로시안화물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2837202000	페리시안화물	0.0%	E0
2837209000	기타	0.0%	E0
2839110000	메타규산나트륨	0.0%	E0
2839190000	기타	0.0%	E0
2839901000	규산지르코늄	0.0%	E0
2839902000	규산바륨	0.0%	E0
2839909000	기타	0.0%	E0
2840110000	무수물(無水物)	0.0%	E0
2840190000	기타	0.0%	E0
2840200000	그 밖의 붕산염	0.0%	E0
2840300000	과산화붕산염(과붕산염)	0.0%	E0
2841300000	중크롬산나트륨	0.0%	E0
2841501000	크롬산칼륨	0.0%	E0
2841509000	기타	0.0%	E0
2841610000	과망간산칼륨	0.0%	E0
2841691000	아망간산염	0.0%	E0
2841692000	망간산염	0.0%	E0
2841693000	과망간산염	0.0%	E0
2841700000	몰리브덴산염	0.0%	E0
2841800000	텅스텐산염[울프라메이트(wolframate)]	0.0%	E0
2841901000	주석산염	0.0%	E0
2841902010	티탄산바륨	0.0%	E0
2841902020	티탄산스트론튬	0.0%	E0
2841902030	티탄산납	0.0%	E0
2841902090	기타	0.0%	E0
2841903000	안티몬산염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2841904000	철산염과 아철산염	0.0%	E0
2841905000	바나듐산염	0.0%	E0
2841906000	비스무트산염	0.0%	E0
2841909000	기타	0.0%	E0
2842101000	알루미노실리케이트	0.0%	E0
2842109000	기타	0.0%	E0
2842901000	셀렌산염	0.0%	E0
2842903000	황을 함유하는 겹염이나 착염	0.0%	E0
2842905000	셀렌의 겹염이나 착염	0.0%	E0
2842909000	기타	0.0%	E0
2843101000	콜로이드 은	0.0%	E0
2843102000	콜로이드 금	0.0%	E0
2843103000	콜로이드 백금	0.0%	E0
2843109000	기타	0.0%	E0
2843211000	반도체 제조용	0.0%	E0
2843219000	기타	0.0%	E0
2843291000	반도체 제조용	0.0%	E0
2843299000	기타	0.0%	E0
2843301000	반도체 제조용 금청산칼륨	0.0%	E0
2843309000	기타	0.0%	E0
2843901000	아말감(amalgam)	0.0%	E0
2843909010	백금 화합물	0.0%	E0
2843909090	기타	0.0%	E0
2844101000	천연 우라늄	0.0%	E0
2844102000	분산물(分散物)(천연 우라늄이나 그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2844109000	기타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2844201000	우라늄 235 를 농축한 우라늄	0.0%	E0
2844202000	분산물(分散物)(우라늄 235 를 농축한 우라늄・플루토늄이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2844209000	기타	0.0%	E0
2844301000	분산물(分散物)(우라늄 235 를 열화시킨 우라늄과 토륨이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2844309000	기타	0.0%	E0
2844401000	방사성원소	0.0%	E0
2844402000	방사성동위원소	0.0%	E0
2844403000	분산물(分散物)(방사성원소와 방사성동위원소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2844409000	기타	0.0%	E0
2844500000	핵반응로에서 사용[조사(照射)]된 연료 요소[카트리지(cartridge)]	0.0%	E0
2845100000	중수(重水)(산화 중수소)	0.0%	E0
2845901000	중수소	0.0%	E0
2845902000	탄소의 동위원소	0.0%	E0
2845909000	기타	0.0%	E0
2846100000	세륨화합물	0.0%	E0
2846901000	산화이트륨	0.0%	E0
2846909000	기타	0.0%	E0
2847002000	반도체 제조용	0.0%	E0
2847009000	기타	0.0%	E0
2849100000	탄화칼슘	0.0%	E0
2849200000	탄화규소	0.0%	E0
2849901000	복탄화물	0.0%	E0
2849909010	탄화텅스텐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2849909090	기타	0.0%	E0
2850001000	수소화물	0.0%	E0
2850002000	질화물	0.0%	E0
2850003000	아지드화물	0.0%	E0
2850004000	규화물	0.0%	E0
2850005000	붕화물	0.0%	E0
2852101000	소호 제 2825.90 호, 제 2827.39 호, 제 2827.49 호, 제 2827.60 호, 제 2830.90 호, 제 2833.29 호, 제 2834.29 호, 제 2835.39 호, 제 2837.19 호, 제 2837.20 호, 제 2841.50 호, 제 2842.10 호, 제 2842.90 호, 제 2843.90 호, 제 2849.90 호, 제 2850.00 호, 또는 제 2853 호의 것	0.0%	E0
2852102000	제 2931 호의 것,소호 제 2918.11 호, 제 2932.99 호, 제 2934.99.9090 호, 제 3201.90.2000 호, 제 3201.90.4000 호, 제 3206.50 호, 제 3707.90 호, 제 3822.00.1091 호, 제 3822.00.2091 호의 것	0.0% / 5.0%	E5
2852103000	제 2934.99.2000 호, 제 3822.00.1092 호, 제 3822.00.2092 호의 것	0.0%	E0
2852104000	소호 제 3502.90 호, 제 3504.00 호의 것	0.0%	E0
2852105000	제 3822.00.101 호, 제 3822.00.102 호, 제 3822.00.1093 호, 제 3822.00.201 호, 제 3822.00.202 호, 제 3822.00.2093 호의 것	0.0%	E0
2852106000	제 3822.00.1099 호, 제 3822.00.2099 호의 것	0.0%	E0
2852901000	소호 제 2830.90 호, 제 2835.39 호, 제 2842.10.9000 호, 제 2849.90 호, 제 2850.00 호, 제 2853.90.2000 호의 것	0.0%	E0
2852902000	제 2842.10.1000 호, 제 2934.99.2000 호, 제 2934.99.9090 호, 소호 제 3201.90 호, 제 3824.84 호부터 제 3824.88 호까지, 제 3824.91 호, 제 3824.99.2100 호, 제 3824.99.2290 호부터 제 3824.99.9090 호까지의 것	0.0% / 5.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2852903000	소호 제 3501.90 호의 카세인산염과 그 밖의 카세인 유도체의 것(커피크리머 제조용은 제외한다)	0.0%	E0
2852904000	소호 제 3502.90 호, 제 3504.00 호의 것	0.0%	E0
2853100000	시아노겐 클로라이드	0.0%	E0
2853901000	증류수, 전도도수와 이와 유사한 순도의 물	0.0%	E0
2853902000	인화물(燐化物)(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인철은 제외한다)	0.0%	E0
2853909000	기타	0.0%	E0
2901101000	부탄	0.0%	E0
2901102000	헥산	0.0%	E0
2901103000	헵탄	0.0%	E0
2901109000	기타	0.0%	E0
2901210000	에틸렌	0.0%	E0
2901220000	프로펜(프로필렌)	0.0%	E0
2901230000	부텐(부틸렌)과 이들의 이성체	0.0%	E0
2901241000	1,3-부타디엔	0.0%	E0
2901242000	이소프렌	0.0%	E0
2901291000	헥센	0.0%	E0
2901292000	옥텐	0.0%	E0
2901299000	기타	0.0%	E0
2902110000	시클로헥산	0.0%	E0
2902191000	에틸리덴 노르보넨	0.0%	E0
2902199000	기타	0.0%	E0
2902200000	벤젠	0.0%	E0
2902300000	톨루엔	0.0%	E0
2902410000	오르토-크실렌	0.0%	E0
2902420000	메타-크실렌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2902430000	파라-크실렌	0.0%	E0
2902440000	혼합크실렌이성체	0.0%	E0
2902500000	스티렌	0.0%	E0
2902600000	에틸벤젠	0.0%	E0
2902700000	큐멘	0.0%	E0
2902901000	나프탈렌	0.0%	E0
2902902000	메틸나프탈렌	0.0%	E0
2902903000	메틸스티렌	0.0%	E0
2902909000	기타	0.0%	E0
2903111000	염화메탄(염화메틸)	0.0%	E0
2903112000	염화에탄(염화에틸)	0.0%	E0
2903120000	이염화메탄(염화메틸렌)	0.0%	E0
2903130000	클로로포름(삼염화메탄)	0.0%	E0
2903140000	사염화탄소	0.0%	E0
2903150000	이염화에틸렌(ISO)(1,2-이염화에탄)	5.0%	E3
2903191000	1,1,1-트리클로로에탄(메틸클로로포름)	0.0%	E0
2903199000	기타	0.0%	E0
2903210000	염화비닐(염화에틸렌)	5.0%	E3
2903220000	삼염화에틸렌	0.0%	E0
2903230000	사염화에틸렌(과염화에틸렌)	0.0%	E0
2903290000	기타	0.0%	E0
2903310000	이브롬화에틸렌(ISO)(1,2-디브로모에탄)	0.0%	E0
2903391000	브로모메탄(메틸 브로마이드)	0.0%	E0
2903392000	브로모에탄(1,2-디브로모에탄은 제외한다)	0.0%	E0
2903393000	요드메탄	0.0%	E0
2903394000	헥사플루오르에탄(CFC-116)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2903395000	1,1-디플루오르에탄(HFC-152a)	0.0%	E0
2903396000	1,1,1,2-테트라 플루오르에탄(HFC-134a)	0.0%	E0
2903397000	1,1,3,3,3-펜타플루오로-2-(트리플루오로메틸)-1-프로펜	0.0%	E0
2903399000	기타	0.0%	E0
2903710000	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0.0%	E0
2903720000	디클로로트리플루오르에탄	0.0%	E0
2903730000	디클로로플루오르에탄	0.0%	E0
2903740000	클로로디플루오르에탄	0.0%	E0
2903750000	디클로로펜타플루오르프로판	0.0%	E0
2903760000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브로모트리플루오르메탄, 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르에탄	0.0%	E0
2903770000	기타(불소와 염소만으로 퍼할로겐화한 것)	0.0%	E0
2903780000	그 밖의 퍼할로겐화유도체	0.0%	E0
2903791100	클로로플루오르메탄	0.0%	E0
2903791210	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에탄(HCFC-124)	0.0%	E0
2903791290	기타	0.0%	E0
2903791300	클로로플루오르프로판	0.0%	E0
2903792000	불소와 염소만을 가지는 할로겐화 메탄·에탄·프로판의 유도체	0.0%	E0
2903799000	기타	0.0%	E0
2903810000	1,2,3,4,5,6- 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HCH(ISO)][린데인(ISO, INN)을 포함한다]	0.0%	E0
2903820000	앨드린(ISO), 클로르덴(ISO), 헵타클로르(ISO)	0.0%	E0
2903830000	미렉스(ISO)	0.0%	E0
2903890000	기타	0.0%	E0
2903911000	클로로벤젠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2903919000	기타	0.0%	E0
2903921000	헥사클로로벤젠(ISO)	0.0%	E0
2903922000	디디티(ISO)[클로페노탄(INN), 1,1,1-트리클로로-2,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	0.0%	E0
2903930000	펜타클로로벤젠(ISO)	0.0%	E0
2903940000	헥사브로모비페닐	0.0%	E0
2903991000	염화벤질	0.0%	E0
2903992010	1,2,4-트리클로로벤젠	0.0%	E0
2903992090	기타	0.0%	E0
2903993000	벤조트리클로라이드	0.0%	E0
2903999000	기타	0.0%	E0
2904101000	벤젠 술폰산	0.0%	E0
2904109000	기타	0.0%	E0
2904201000	니트로톨루엔	0.0%	E0
2904209010	니트로벤젠	0.0%	E0
2904209090	기타	0.0%	E0
2904310000	과불화옥탄술폰산	0.0%	E0
2904320000	과불화옥탄술폰산 암모늄	0.0%	E0
2904330000	과불화옥탄술폰산 리튬	0.0%	E0
2904340000	과불화옥탄술폰산 칼륨	0.0%	E0
2904350000	그 밖의 과불화옥탄술폰산의 염	0.0%	E0
2904360000	과불화옥탄술포닐플루오라이드	0.0%	E0
2904910000	트리클로로니트로메탄(클로로피크린)	0.0%	E0
2904990000	기타	0.0%	E0
2905110000	메탄올(메틸알코올)	0.0%	E0
2905121000	1-프로판올(프로필알코올)	0.0%	E0
2905122010	반도체 제조용	5.0%	E3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2905122090	기타	5.0%	E3
2905130000	1-부탄올(노르말-부틸알코올)	5.0%	E3
2905140000	그 밖의 부탄올	5.0%	E3
2905161000	2-에틸헥실알코올	5.0%	E3
2905169000	기타	0.0%	E0
2905171000	1-도데칸올(라우릴알코올)	0.0%	E0
2905172000	1-헥사데칸올(세틸알코올)	0.0%	E0
2905173000	1-옥타데칸올(스테아릴알코올)	0.0%	E0
2905191000	헵틸알코올	0.0%	E0
2905192000	노닐알코올	0.0%	E0
2905193000	이소노닐알코올	0.0%	E0
2905194000	펜탄올(아밀알코올)과 그 이성체	0.0%	E0
2905199010	3,3-디메틸부탄-2-올(피나코릴 알코올)	0.0%	E0
2905199020	2-프로필 헵틸 알코올	0.0%	E0
2905199030	이소데실 알코올	0.0%	E0
2905199090	기타	0.0%	E0
2905221000	게라니올・시트로네롤・리날롤・로디놀・네롤	0.0%	E0
2905229000	기타	0.0%	E0
2905290000	기타	0.0%	E0
2905310000	에틸렌글리콜(에탄디올)	0.0%	E0
2905320000	프로필렌글리콜(프로판-1,2-디올)	5.0%	E3
2905391000	1,4-부탄디올	0.0%	E0
2905392000	네오펜틸 글리콜	5.0%	E3
2905399000	기타	0.0%	E0
2905410000	2-에틸-2-(히드록시메틸)프로판-1,3-디올(트리메틸올프로판)	0.0%	E0
2905420000	펜타에리트리톨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2905430000	만니톨	5.0%	E10
2905440000	디-글루시톨(소르비톨)	5.0%	E15
2905450000	글리세롤	0.0%	E0
2905490000	기타	0.0%	E0
2905510000	에스클로비놀(INN)	0.0%	E0
2905590000	기타	0.0%	E0
2906110000	멘톨	0.0%	E0
2906120000	시클로헥산올・메틸시클로헥산올・디메틸시클로헥산올	0.0%	E0
2906131000	스테롤	0.0%	E0
2906132000	이노시톨	0.0%	E0
2906191000	보르네올	0.0%	E0
2906192000	테르피네올	0.0%	E0
2906199000	기타	0.0%	E0
2906210000	벤질알코올	0.0%	E0
2906291000	페닐에틸알코올	0.0%	E0
2906292000	페닐프로필알코올	0.0%	E0
2906293000	신나밀알코올	0.0%	E0
2906299000	기타	0.0%	E0
2907111000	페놀	0.0%	E0
2907112000	페놀의 염	0.0%	E0
2907121000	크레졸	0.0%	E0
2907122000	크레졸의 염	0.0%	E0
2907131000	옥틸페놀	0.0%	E0
2907132000	노닐페놀	0.0%	E0
2907139000	기타	0.0%	E0
2907151000	나프톨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2907152000	나프톨의 염	0.0%	E0
2907191000	티몰	0.0%	E0
2907192000	크실레놀과 이들의 염	0.0%	E0
2907199000	기타	0.0%	E0
2907211000	레소르시놀	0.0%	E0
2907212000	레소르시놀의 염	0.0%	E0
2907221000	히드로퀴논	0.0%	E0
2907222000	히드로퀴논의 염	0.0%	E0
2907231000	4,4′-이소프로필리덴디페놀(비스페놀에이)	5.0%	E3
2907232000	4,4′-이소프로필리덴디페놀(비스페놀에이)의 염	0.0%	E0
2907291000	카테콜	0.0%	E0
2907299000	기타	0.0%	E0
2908110000	펜타클로로페놀(ISO)	0.0%	E0
2908191000	클로로페놀(펜타클로로페놀은 제외한다)	0.0%	E0
2908192000	테트라브로모비스페놀에이	0.0%	E0
2908193000	트리브로모페놀	0.0%	E0
2908199000	기타	0.0%	E0
2908910000	디노셉(ISO)과 그 염	0.0%	E0
2908920000	4,6-디니트로-오르토-크레졸[DNOC(ISO)]과 그 염	0.0%	E0
2908991000	나프톨술폰산과 이들의 염	0.0%	E0
2908992000	페놀술폰산	0.0%	E0
2908993000	니트로화유도체와 이들의 염	0.0%	E0
2908994000	니트로소화유도체와 이들의 염	0.0%	E0
2908999000	기타	0.0%	E0
2909110000	디에틸에테르	0.0%	E0
2909191000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2909192000	메틸터샤리 부틸에테르	0.0%	E0
2909199000	기타	0.0%	E0
2909200000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시클로테르펜에테르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0.0%	E0
2909301000	아니솔	0.0%	E0
2909302000	아네톨	0.0%	E0
2909303000	디페닐 에테르	0.0%	E0
2909304000	앰브렛 머스크	0.0%	E0
2909305000	데카브로모디페닐 옥사이드	0.0%	E0
290930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2909309090	기타	0.0%	E0
2909410000	2,2'-옥시디에탄올(디에틸렌글리콜, 디골)	0.0%	E0
2909430000	에틸렌글리콜의 모노부틸에테르와 디에틸렌글리콜의 모노부틸에테르	0.0%	E0
2909441000	에틸렌글리콜의 그 밖의 모노알킬에테르와 디에틸렌글리콜의 그 밖의 모노알킬에테르	0.0%	E0
2909449000	기타	0.0%	E0
2909491000	트리에틸렌 글리콜	0.0%	E0
2909499000	기타	0.0%	E0
2909501000	오이게놀	0.0%	E0
2909502000	이소오이게놀	0.0%	E0
2909503000	에테르알코올페놀	0.0%	E0
2909509000	기타	0.0%	E0
2909601000	과산화알코올	0.0%	E0
2909602000	디쿠밀퍼록사이드	0.0%	E0
2909603000	메틸에틸케톤퍼록사이드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2909609000	기타	0.0%	E0
2910100000	옥시란(에틸렌옥사이드)	0.0%	E0
2910200000	메틸옥시란(프로필렌옥사이드)	5.0%	E3
2910300000	1-클로로-2,3-에폭시프로판(에피클로로히드린)	5.0%	E3
2910400000	디엘드린(ISO, INN)	0.0%	E0
2910500000	엔드린(ISO)	0.0%	E0
2910900000	기타	0.0%	E0
2911001010	아세탈	0.0%	E0
2911001020	헤미아세탈	0.0%	E0
2911009000	기타	0.0%	E0
2912110000	메탄알(포름알데히드)	0.0%	E0
2912120000	에탄알(아세트알데히드)	0.0%	E0
2912191000	시트로넬알데히드	0.0%	E0
2912192000	시틀알	0.0%	E0
2912193000	부탄알(부티르알데히드, 노르말-이성체)	0.0%	E0
2912199000	기타	0.0%	E0
2912210000	벤즈알데히드	0.0%	E0
2912292000	페닐아세트알데히드	0.0%	E0
2912293000	신남알데히드	0.0%	E0
2912294000	알파아밀신남알데히드	0.0%	E0
2912295000	시클라멘알데히드	0.0%	E0
2912299000	기타	0.0%	E0
2912410000	바닐린(4-히드록시-3-메톡시벤즈알데히드)	0.0%	E0
2912420000	에틸바닐린(3-에톡시-4-히드록시벤즈알데히드)	0.0%	E0
2912491000	3,4,5-트리메톡시벤즈알데히드	0.0%	E0
2912499000	기타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2912501000	트리옥산	0.0%	E0
2912503000	메타알데히드	0.0%	E0
2912509000	기타	0.0%	E0
2912600000	파라포름알데히드	0.0%	E0
2913000000	제 2912 호의 물품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0.0%	E0
2914110000	아세톤	5.0%	E3
2914120000	부탄온(메틸에틸케톤)	0.0%	E0
2914130000	4-메틸펜탄-2-온(메틸이소부틸케톤)	0.0%	E0
2914191000	3,3-디메틸-2-부타논(피나콜론)	0.0%	E0
2914199000	기타	0.0%	E0
2914221000	시클로헥사논	0.0%	E0
2914222000	메틸시클로헥사논	0.0%	E0
2914231000	이오논	0.0%	E0
2914232000	메틸이오논	0.0%	E0
2914291000	자스몬	0.0%	E0
2914299000	기타	0.0%	E0
2914310000	페닐아세톤(페닐프로판-2-온)	0.0%	E0
2914390000	기타	0.0%	E0
2914401000	디아세톤 알코올(4-히드록시-4-메틸펜탄-2-온)	0.0%	E0
2914409000	기타	0.0%	E0
2914501000	케톤-페놀	0.0%	E0
2914509000	기타	0.0%	E0
2914610000	안트라퀴논	0.0%	E0
2914620000	코엔자임 Q10[유비데카레논(INN)]	0.0%	E0
2914691000	안트라퀴논의 유도체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2914699010	퀴논알코올・퀴논페놀과 퀴논알데히드	0.0%	E0
2914699090	기타	0.0%	E0
2914710000	클로르데콘(ISO)	0.0%	E0
291479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2914799000	기타	0.0%	E0
2915110000	포름산	0.0%	E0
2915121000	포름산 칼슘	0.0%	E0
2915122000	포름산 암모늄	0.0%	E0
2915129000	기타	0.0%	E0
2915131000	포름산 메틸	0.0%	E0
2915132000	2-에틸헥실클로로포메이트	0.0%	E0
2915139000	기타	0.0%	E0
2915210000	초산	5.0%	E3
2915240000	무수(無水)초산	0.0%	E0
2915291000	초산칼슘	0.0%	E0
2915292000	초산나트륨	0.0%	E0
2915293000	초산코발트	0.0%	E0
2915299000	기타	0.0%	E0
2915310000	초산에틸	5.0%	E10
2915320000	초산비닐	5.0%	E3
2915331000	반도체 제조용	0.0%	E0
2915339000	기타	5.0%	E3
2915360000	초산디노셉(ISO)	0.0%	E0
2915391000	초산아밀	0.0%	E0
2915392000	초산이소아밀	0.0%	E0
2915393000	초산메틸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2915394000	초산이소부틸	0.0%	E0
2915395000	초산 2-에톡시에틸	0.0%	E0
2915399000	기타	0.0%	E0
2915401000	모노클로로 아세트산	0.0%	E0
2915409000	기타	0.0%	E0
2915500000	프로피온산, 그 염과 에스테르	0.0%	E0
2915600000	부탄산·펜탄산,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	0.0%	E0
2915701000	팔미트산, 그 염과 에스테르	0.0%	E0
2915702010	스테아르산	0.0%	E0
2915702020	스테아르산 마그네슘	0.0%	E0
2915702030	스테아르산 연	0.0%	E0
2915702040	스테아르산 아연	0.0%	E0
2915702050	스테아르산 바륨	0.0%	E0
2915702060	스테아르산 카드뮴	0.0%	E0
2915702070	스테아르산 칼슘	0.0%	E0
2915702080	스테아르산 부틸	0.0%	E0
2915702090	기타	0.0%	E0
2915901000	네오데카노일 클로라이드와 피발로일클로라이드	0.0%	E0
2915909010	2-에틸헥소산	0.0%	E0
2915909090	기타	0.0%	E0
2916111000	아크릴산	5.0%	E3
2916119000	기타	0.0%	E0
2916121000	아크릴산에틸	5.0%	E0
2916122000	아크릴산메틸	5.0%	E3
2916123000	아크릴산부틸	5.0%	E3
2916124000	아크릴산 2-에틸헥실	5.0%	E3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2916129000	기타	0.0%	E0
2916131000	메타아크릴산	5.0%	E3
2916139000	기타	0.0%	E0
2916141000	메타아크릴산메틸	5.0%	E3
2916149000	기타	0.0%	E0
2916151000	올레산, 그 염과 에스테르	0.0%	E0
2916152000	리놀레산, 그 염과 에스테르	0.0%	E0
2916153000	리놀렌산, 그 염과 에스테르	0.0%	E0
2916160000	비나파크릴(ISO)	0.0%	E0
2916190000	기타	0.0%	E0
2916201000	시클로 헥산카르복시산	0.0%	E0
2916202000	시클로 펜테닐 초산	0.0%	E0
291620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2916209090	기타	0.0%	E0
2916311000	벤조산	0.0%	E0
2916312000	벤조산나트륨	0.0%	E0
2916313000	벤조산벤질	0.0%	E0
291631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2916319090	기타	0.0%	E0
2916321000	과산화벤조일	0.0%	E0
2916322000	염화벤조일	0.0%	E0
2916341000	페닐아세트산	0.0%	E0
2916342000	페닐아세트산의 염	0.0%	E0
2916391000	계피산	0.0%	E0
291639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2916399090	기타	0.0%	E0
2917111000	옥살산	0.0%	E0
2917112000	옥살산의 염	0.0%	E0
2917113000	옥살산의 에스테르	0.0%	E0
2917121000	아디프산	0.0%	E0
2917122000	아디프산의 염	0.0%	E0
2917123010	아디프산 디옥틸	0.0%	E0
2917123090	기타	0.0%	E0
2917131000	아젤라산, 그 염과 에스테르	0.0%	E0
2917132000	세바스산, 그 염과 에스테르	0.0%	E0
2917140000	무수말레산	0.0%	E0
2917191000	말레산	0.0%	E0
2917192000	숙신산	0.0%	E0
2917193000	숙신산 나트륨	0.0%	E0
2917194000	말론산 디에틸	0.0%	E0
2917195000	말론산 디이소프로필	0.0%	E0
2917199000	기타	0.0%	E0
2917200000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시클로테르펜폴리카르복시산,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0.0%	E0
2917321000	오르토프탈산 디-2-에틸헥실	5.0%	E3
2917329000	기타	5.0%	E0
2917331000	오르토프탈산디노닐	0.0%	E0
2917332000	오르토프탈산디데실	0.0%	E0
2917341000	오르토프탈산 디헵틸	0.0%	E0
2917342000	오르토프탈산 디이소데실	5.0%	E3
2917343000	오르토프탈산 디부틸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2917349000	기타	0.0%	E0
2917350000	무수프탈산	0.0%	E0
2917361000	테레프탈산	0.0%	E0
2917369000	기타	0.0%	E0
2917370000	테레프탈산디메틸	0.0%	E0
2917391000	이소프탈산	5.0%	E3
2917392000	트리옥틸트리메리테이트(T.O.T.M)	0.0%	E0
2917393000	무수트리멜리트산	0.0%	E0
2917399000	기타	0.0%	E0
2918111000	락트산	0.0%	E0
2918112000	락트산의 염	0.0%	E0
2918113000	락트산의 에스테르	0.0%	E0
2918120000	타르타르산	0.0%	E0
2918131000	타르타르산의 염	0.0%	E0
2918132000	타르타르산의 에스테르	0.0%	E0
2918140000	시트르산	0.0%	E0
2918151010	시트르산 칼슘	0.0%	E0
2918151090	기타	0.0%	E0
2918152000	시트르산의 에스테르	0.0%	E0
2918161000	글루콘산	0.0%	E0
2918162000	글루콘산의 염	0.0%	E0
2918163000	글루콘산의 에스테르	0.0%	E0
2918170000	2,2-디페닐-2-하이드록시아세트산(벤질산)	0.0%	E0
2918180000	클로로벤질레이트(ISO)	0.0%	E0
2918191010	말산	0.0%	E0
2918191090	기타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2918192010	말산의 염	0.0%	E0
2918192090	기타	0.0%	E0
2918193010	말산의 에스테르	0.0%	E0
2918193020	메틸벤질레이트	0.0%	E0
2918193090	기타	0.0%	E0
2918199000	기타	0.0%	E0
2918211000	살리실산	0.0%	E0
2918212010	살리실산 나트륨	0.0%	E0
2918212090	기타	0.0%	E0
2918221000	오르토-아세틸살리실산	0.0%	E0
2918222000	오르토-아세틸살리산의 염	0.0%	E0
2918223000	오르토-아세틸살리실산의 에스테르	0.0%	E0
2918231010	살리실산 메틸	0.0%	E0
2918231020	살리실산 에틸	0.0%	E0
2918231090	기타	0.0%	E0
2918232000	그 밖의 살리실산에스테르의 염	0.0%	E0
2918291000	베타옥시나프토산과 그 염	0.0%	E0
2918299010	갈산	0.0%	E0
2918299030	파라히드록시 벤조산	0.0%	E0
2918299040	갈산의 염과 에스테르	0.0%	E0
2918299090	기타	0.0%	E0
291830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2918309000	기타	0.0%	E0
2918910000	2,4,5-티(ISO)(2,4,5-트리클로로페녹시아세트산), 그 염과 에스테르	0.0%	E0
291899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2918999000	기타	0.0%	E0
2919100000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	0.0%	E0
291990101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2919901019	기타	0.0%	E0
2919901020	글리세로인산	0.0%	E0
2919901090	기타	0.0%	E0
2919902000	인산에스테르의 염	0.0%	E0
2919909000	기타	0.0%	E0
292011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2920119000	기타	0.0%	E0
292019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2920199000	기타	0.0%	E0
2920210000	디메틸 포스파이트	0.0%	E0
2920220000	디에틸 포스파이트	0.0%	E0
2920230000	트리메틸 포스파이트	0.0%	E0
2920240000	트리에틸 포스파이트	0.0%	E0
2920290000	기타	0.0%	E0
292030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2920309000	기타	0.0%	E0
2920901010	황산디메틸	0.0%	E0
2920901020	황산디에틸	0.0%	E0
2920901090	기타	0.0%	E0
2920902000	아질산에스테르와 질산에스테르의 것	0.0%	E0
2920903000	탄산에스테르의 것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292090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2920909090	기타	0.0%	E0
2921111010	메틸아민	0.0%	E0
2921111020	메틸아민의 염	0.0%	E0
2921112010	디메틸아민	0.0%	E0
2921112020	디메틸아민의 염	0.0%	E0
2921113010	트리메틸아민	0.0%	E0
2921113020	트리메틸아민의 염	0.0%	E0
2921120000	2-(엔,엔-디메틸아미노)에틸클로라이드 염산염	0.0%	E0
2921130000	2-(엔,엔-디에틸아미노)에틸클로라이드 염산염	0.0%	E0
2921140000	2-(엔,엔-디이소프로필아미노)에틸클로라이드 염산염	0.0%	E0
2921192000	디에틸아민과 그 염	0.0%	E0
2921199010	디메틸라우릴아민	0.0%	E0
2921199020	클로르메틴(INN)[비스(2-클로로에틸)메틸아민]	0.0%	E0
2921199030	비스(2-클로로에틸)에틸아민	0.0%	E0
2921199040	트리클로르메틴(INN)[트리스(2-클로로에틸)아민]	0.0%	E0
2921199050	디-이소프로필아민	0.0%	E0
2921199070	엔,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이소프로필)2-클로로에틸아민과 이들의 수소화된 염들	0.0%	E0
2921199090	기타	0.0%	E0
2921211000	에틸렌디아민	0.0%	E0
2921212000	에틸렌디아민의 염	0.0%	E0
2921221000	헥사메틸렌디아민	0.0%	E0
2921222000	헥사메틸렌디아민아디페이트	0.0%	E0
2921229000	기타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2921291000	디에틸렌 트리아민	0.0%	E0
2921292000	트리에틸렌 테트라아민	0.0%	E0
2921299000	기타	0.0%	E0
2921301000	시클로 헥실아민	0.0%	E0
2921309000	기타	0.0%	E0
2921411000	아닐린	0.0%	E0
2921412000	아닐린의 염	0.0%	E0
2921421000	아닐린의 니트로할로겐화 유도체	0.0%	E0
2921422000	2,4,5-트리클로로아닐린	0.0%	E0
292142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2921429090	기타	0.0%	E0
2921431000	파라-톨루이딘-메타-술폰산과 그 염	0.0%	E0
2921432000	2-클로로-파라-톨루이딘-5-술폰산과 그 염	0.0%	E0
2921433000	3-아미노-6-클로로톨루엔-4-술폰산과 그 염	0.0%	E0
2921439010	톨루이딘	0.0%	E0
292143909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2921439099	기타	0.0%	E0
2921441000	디페닐아민	0.0%	E0
2921449000	기타	0.0%	E0
2921451000	1-나프틸아민-4-술폰산과 그 염	0.0%	E0
2921459010	1-나프틸아민(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0.0%	E0
2921459020	2-나프틸아민(베타-나프틸아민)과 그 염	0.0%	E0
2921459030	2-나프틸아민-3,6,8-트리술폰산과 그 염	0.0%	E0
2921459090	기타	0.0%	E0
2921460000	암페타민(INN)·벤즈페타민(INN)·덱스암페타민(INN)·에틸암페타민(INN)·펜캄파민(INN)·레페타민(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INN)·레브암페타민(INN)·메페노렉스(INN)·펜터민(INN), 이들의 염		
292149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2921499000	기타	0.0%	E0
2921511000	엔-페닐-엔-이소프로필 파라-페닐렌디아민	0.0%	E0
2921512000	엔-(1,3-디메틸 부틸)-엔-페닐-파라-페닐렌디아민	0.0%	E0
2921519010	오르토-페닐렌 디아민	0.0%	E0
2921519020	메타-페닐렌 디아민	0.0%	E0
2921519030	파라-페닐렌 디아민	0.0%	E0
2921519040	디아미노톨루엔	0.0%	E0
2921519090	기타	0.0%	E0
2921591000	3,3-디클로로벤지딘술폰산염	0.0%	E0
2921599010	벤지딘	0.0%	E0
2921599020	벤지딘 디히드로 클로라이드	0.0%	E0
2921599030	4,4′디아미노스틸벤-2,2′-디술폰산과 그 염	0.0%	E0
2921599040	벤지딘의 염(벤지딘디히드로클로라이드의 것은 제외한다)	0.0%	E0
2921599050	오르토-톨리딘과 그 염	0.0%	E0
2921599090	기타	0.0%	E0
2922111000	모노에탄올아민	0.0%	E0
2922112000	모노에탄올아민의 염	0.0%	E0
2922121000	디에탄올아민	0.0%	E0
2922122000	디에탄올아민의 염	0.0%	E0
2922140000	덱스트로프로폭시펜(INN)과 그 염	0.0%	E0
2922150000	트리에탄올아민	0.0%	E0
2922160000	과불화옥탄 술폰산 디에탄올암모늄	0.0%	E0
2922171000	메틸디에탄올아민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2922172000	에틸디에탄올아민	0.0%	E0
2922180000	2-(엔,엔-디이소프로필아미노)에탄올	0.0%	E0
2922191000	아릴에탄올아민	0.0%	E0
2922193010	엔,엔-디메틸-2-아미노에탄올과 그의 수소화된 염들	0.0%	E0
2922193020	엔,엔-디에틸-2-아미노에탄올과 그의 수소화된 염들	0.0%	E0
2922193090	기타	0.0%	E0
2922196000	디에틸아미노에탄올	0.0%	E0
2922199000	기타	0.0%	E0
2922211000	7-아미노-1-나프톨-3-술폰산(감마 에시드)과 그 염	0.0%	E0
2922212000	8-아미노-1-나프톨-3, 6-디술폰산(에이치 에시드)과 그 염	0.0%	E0
2922213000	2-아미노-5-나프톨-7-디술폰산(제이 에시드)과 그 염	0.0%	E0
2922219000	기타	0.0%	E0
2922291000	파라-아미노페놀	0.0%	E0
2922299010	메타-아미노페놀	0.0%	E0
2922299020	오르토-아미노페놀	0.0%	E0
2922299030	아미노 크레졸	0.0%	E0
2922299040	페네티딘과 이들의 염	0.0%	E0
2922299090	기타	0.0%	E0
2922310000	암페프라몬(INN)·메타돈(INN)·노르메타돈(INN)과 이들의 염	0.0%	E0
2922392000	아미노 안트라퀴논과 이들의 염	0.0%	E0
2922393000	아미노 안트라퀴논의 유도체	0.0%	E0
2922399000	기타	0.0%	E0
2922411000	리신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2922412000	리신의 에스테르	0.0%	E0
2922413000	리신의 염과 리신에스테르의 염	0.0%	E0
2922421000	글루탐산	0.0%	E0
2922422000	글루탐산 나트륨	0.0%	E0
2922423000	그 밖의 글루탐산의 염	0.0%	E0
2922431000	안트라닐산	0.0%	E0
2922439000	안트라닐산의 염	0.0%	E0
2922440000	틸리딘(INN)과 그 염	0.0%	E0
2922491000	글리신	0.0%	E0
2922492000	알라닌	0.0%	E0
2922493000	류우신	0.0%	E0
2922494000	바린	0.0%	E0
2922495000	아스파르트산	0.0%	E0
2922496000	페닐글리신	0.0%	E0
2922497000	에틸파라아미노 벤조에이트	0.0%	E0
2922499000	기타	0.0%	E0
2922501000	세린	0.0%	E0
2922502000	파라아미노살리실산과 그 염	0.0%	E0
2922503000	1-파라-니트로 페놀-2-아미노-1,3-프로판디올	0.0%	E0
2922504000	디알파히드록시페닐글리신	0.0%	E0
292250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2922509090	기타	0.0%	E0
2923101000	콜린	0.0%	E0
2923102000	콜린의 염	0.0%	E0
2923201000	레시틴	0.0%	E0
2923202000	그 밖의 포스포아미노리피드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2923300000	과불화옥탄 술폰산 테트라에틸암모늄	0.0%	E0
2923400000	과불화옥탄 술폰산 디데실디메틸암모늄	0.0%	E0
2923900000	기타	0.0%	E0
2924110000	메프로바메이트(INN)	0.0%	E0
2924121000	플루오로아세트아미드(ISO)	0.0%	E0
2924122000	모노크로토포스(ISO)	0.0%	E0
2924123000	포스파미돈(ISO)	0.0%	E0
2924191000	디메틸포름아미드	0.0%	E0
2924192000	디메틸아세트아미드	0.0%	E0
292419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2924199090	기타	0.0%	E0
292421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2924219000	기타	0.0%	E0
2924230000	2-아세트아미도벤조산(엔-아세틸 안트라닐산)과 그 염	0.0%	E0
2924240000	에치나메이트(INN)	0.0%	E0
292425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2924259000	기타	0.0%	E0
2924291010	아미노아세트아닐리드와 그 유도체	0.0%	E0
2924291020	아세트아미노펜	0.0%	E0
2924291090	기타	0.0%	E0
2924292000	아세토아세트아닐리드와 그 유도체	0.0%	E0
2924299010	염산리도카인	0.0%	E0
2924299020	이오프로마이드, 이오파미돌, 이오메프롤, 이오헥솔, 이오버솔, 이오딕산올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2924299092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2924299099	기타	0.0%	E0
2925111000	사카린	0.0%	E0
2925112000	사카린의 염	0.0%	E0
2925120000	구루테치미드(INN)	0.0%	E0
2925191000	프탈이미드	0.0%	E0
292519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2925199090	기타	0.0%	E0
2925210000	클로르디메포름(ISO)	0.0%	E0
2925291000	디페닐구아니딘	0.0%	E0
292529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2925299090	기타	0.0%	E0
2926100000	아크릴로니트릴	0.0%	E0
2926200000	1-시아노구아니딘(디시안디아미드)	0.0%	E0
2926300000	펜프로포렉스(INN)와 그 염, 메사돈(INN) 제조중간체(4-시아노-2-디메틸아미노-4,4-디페닐부탄)	0.0%	E0
2926400000	알파-페닐아세토아세토니트릴	0.0%	E0
2926901000	아세토니트릴	0.0%	E0
2926902000	1,4-디아미노-2,3-디시아노안트라퀴논	0.0%	E0
2926909010	말로노니트릴	0.0%	E0
292690909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2926909099	기타	0.0%	E0
2927001100	6-니트로-1-디아조-2-나프톨-4-술폰산	0.0%	E0
2927001900	기타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2927002100	아조디카본아미드	0.0%	E0
2927002910	아조이소부티로니트릴	0.0%	E0
2927002990	기타	0.0%	E0
2927003000	아족시화합물	0.0%	E0
2928001000	페닐히드라진	0.0%	E0
2928009010	페릴랄틴	0.0%	E0
2928009020	메틸에틸 케토옥심	0.0%	E0
292800909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2928009099	기타	0.0%	E0
2929101000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0.0%	E0
2929102000	디페닐메탄 디이소시아네이트	0.0%	E0
2929109000	기타	0.0%	E0
2929901000	이소시안화물	0.0%	E0
2929903000	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 엔,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포스포라미데이트	0.0%	E0
2929904000	디에틸-노르말, 노르말-디메틸 포스포르아미데이트	0.0%	E0
2929905000	오르토-에틸-2-디이소프로필 아미노에틸 메틸포스포나이트	0.0%	E0
2929906000	엔-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포스포라미딕 디할라이드	0.0%	E0
2929909000	기타	0.0%	E0
2930201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2930201090	기타	0.0%	E0
2930202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2930202090	기타	0.0%	E0
2930301000	티우람모노술파이드	0.0%	E0
2930302000	티우람디술파이드	0.0%	E0
2930303000	티우람테트라술파이드	0.0%	E0
2930400000	메티오닌	0.0%	E0
2930600000	2-(엔,엔-디에틸아미노)에탄티올	0.0%	E0
2930700000	비스(2- 하이드록시에틸)술파이드[티오디글리콜(INN)]	0.0%	E0
2930800000	알디카브(ISO), 캡타폴(ISO) 및 메타미도포스(ISO)	0.0%	E0
2930901000	2-아미노-4-메틸티오부티르산나트륨	0.0%	E0
2930902010	티오우레아	0.0%	E0
2930902020	티오카르바닐리드	0.0%	E0
293090209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2930902099	기타	0.0%	E0
2930903010	티오알코올	0.0%	E0
2930903020	티오페놀	0.0%	E0
2930903030	엔,엔-디이소프로필-베타-아미노에탄티올	0.0%	E0
2930903040	엔-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 아미노에탄-2-티올과 이들의 수소화된 염들	0.0%	E0
2930904020	티오아닐린	0.0%	E0
2930904090	기타	0.0%	E0
2930905010	2-클로로 에틸클로로메틸술파이드	0.0%	E0
2930905020	비스(2-클로로에틸)술파이드	0.0%	E0
2930905070	1,5-비스(2-클로로에틸티오)-노르말-펜탄	0.0%	E0
2930905090	기타	0.0%	E0
2930906000	[에스-2-(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이나 이소프로필)아미노)에틸]하이드로젠 알킬(메틸,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에틸, 노르말-프로필이나 이소프로필)포스포노티오에이트와 이들의 오-알킬(탄소수가 10 개 이하로서 사이클로알킬을 포함한다) 에스테르와 이들의 알킬화나 수소화된 염들		
2930907000	오, 오-디에틸에스-[2-(디에틸아미노)에틸]포스포로티오에이트와 그의 알킬화나 수소화된 염들	0.0%	E0
2930908000	오-에틸, 에스-페닐 에틸포스포노티올로티오네이트(포노포스)	0.0%	E0
2930909010	티오산	0.0%	E0
2930909020	이소티오시아네이트	0.0%	E0
2930909030	시스테인	0.0%	E0
2930909040	시스틴	0.0%	E0
2930909050	글루타티온	0.0%	E0
2930909060	8-클로로-6-토시록틴산에틸에스테르	0.0%	E0
2930909070	하나의 인(燐) 원자가 하나의 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이나 이소프로필 그룹과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더 이상의 탄소 원자와 결합하지 않은 화합물	0.0%	E0
2930909080	디티오카르본산염(크산틴산염)	0.0%	E0
293090909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2930909099	기타	0.0%	E0
2931100000	테트라메칠납, 테트라에칠납	0.0%	E0
2931200000	트리부틸틴 화합물	0.0%	E0
2931310000	디메틸 메틸포스포네이트	0.0%	E0
2931320000	디메틸 프로필포스포네이트	0.0%	E0
2931330000	디에틸 에틸포스포네이트	0.0%	E0
2931340000	3-(트리하이드록시시릴)프로필 메틸포스포네이트 나트륨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2931350000	2,4,6-트리프로필-1,3,5,2,4,6-트리옥사트리포스피네인 2,4,6-트리옥사이드	0.0%	E0
2931360000	(5-에틸-2-메틸-2-옥시도-1,3,2-디옥사포스피난-5-일)메틸 메틸 메틸포스포네이트	0.0%	E0
2931370000	비스[(5-에틸-2-메틸-2-옥시도-1,3,2-디옥사포스피난-5-일)메틸] 메틸포스포네이트	0.0%	E0
2931380000	메틸포스폰산과 (아미노이미노메틸)우레아의 염(1:1)	0.0%	E0
2931390000	기타	0.0%	E0
2931901010	2-클로로비닐 디클로로아르신	0.0%	E0
2931901020	비스(2-클로로비닐)클로로아르신	0.0%	E0
2931901030	트리스(2-클로로비닐) 아르신	0.0%	E0
293190109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2931901099	기타	0.0%	E0
2931902100	[오-2-(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이나 이소프로필)아미노)에틸] 하이드로젠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이나 이소프로필)포스포나이트와 이들의 오-알킬(탄소수가 10개 이하로서 사이클로알킬을 포함한다) 에스테르, 이들의 알킬화나 수소화된 염들	0.0%	E0
2931902200	오-이소프로필 메틸포스포노클로리데이트	0.0%	E0
2931902300	오-피나콜릴 메틸포스포노클로리데이트	0.0%	E0
2931902400	오-알킬(탄소수가 10개 이하로서 사이클로알킬을 포함한다)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이나 이소프로필)포스포노플루오리데이트	0.0%	E0
2931902500	오-알킬(탄소수가 10개 이하로서 사이클로알킬을 포함한다) 엔, 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이나 이소프로필)포스포라미도시아니데이트	0.0%	E0
2931902913	디에틸 메틸포스포네이트	0.0%	E0
2931902914	디메틸 에틸포스포네이트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2931902915	기타[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로 한정한다]	0.0%	E0
2931902919	기타	0.0%	E0
293190299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2931902999	기타	0.0%	E0
2931903010	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이나 이소프로필) 포스포닐 디플루오라이드	0.0%	E0
2931903090	기타	0.0%	E0
2931904030	에틸포스포닐디클로라이드	0.0%	E0
2931904090	기타	0.0%	E0
2931909010	디부틸 틴 옥사이드	0.0%	E0
2931909020	디에틸 알루미늄 클로라이드	0.0%	E0
293190909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2931909099	기타	0.0%	E0
2932110000	테트라히드로푸란	0.0%	E0
2932120000	2-푸르알데히드(푸르푸르알데히드)	0.0%	E0
2932131000	푸르푸릴 알코올	0.0%	E0
2932132000	테트라히드로푸르푸릴 알코올	0.0%	E0
2932140000	수크랄로스	0.0%	E0
293219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2932199000	기타	0.0%	E0
2932201010	쿠마린	0.0%	E0
2932201020	메틸쿠마린	0.0%	E0
2932201030	에틸쿠마린	0.0%	E0
2932209010	노나락톤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2932209020	운데카락톤	0.0%	E0
2932209030	부티로락톤	0.0%	E0
2932209040	산토닌	0.0%	E0
2932209050	페놀프탈레인	0.0%	E0
2932209060	글루쿠로노락톤	0.0%	E0
2932209070	탈수소초산과 그 염	0.0%	E0
2932209080	아세틸케텐(디케텐)	0.0%	E0
293220909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2932209099	기타	0.0%	E0
2932910000	이소사프롤	0.0%	E0
2932920000	1-(1,3-벤조디옥솔-5-일)프로판-2-온	0.0%	E0
2932930000	피페로날	0.0%	E0
2932940000	사프롤	0.0%	E0
2932950000	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모든 이성체)	0.0%	E0
2932991000	디옥산	0.0%	E0
2932992000	벤조푸란(쿠마론)	0.0%	E0
2932993000	시네올	0.0%	E0
293299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2932999090	기타	0.0%	E0
2933111000	메틸렌비스(1-페닐-2,3-디메틸-4-메틸아미노피라조론-5)	0.0%	E0
2933119010	페나존(안티피린)	0.0%	E0
2933119030	설피린	0.0%	E0
2933119040	이소프로필 안티피린	0.0%	E0
293311909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2933119099	기타	0.0%	E0
2933191000	피라조론과 그 유도체	0.0%	E0
2933199010	페닐부타존	0.0%	E0
2933199020	피라졸레이트	0.0%	E0
293319909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2933199099	기타	0.0%	E0
2933211000	히단토인	0.0%	E0
2933212000	히단토인의 유도체	0.0%	E0
2933291000	리시딘	0.0%	E0
293329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2933299090	기타	0.0%	E0
2933311000	피리딘	0.0%	E0
2933312000	피리딘의 염	0.0%	E0
2933321000	피페리딘	0.0%	E0
2933329000	피페리딘의 염	0.0%	E0
2933330000	알펜타닐(INN)·아닐레리딘(INN)·베지트라마이드(INN)·브로마제팜(INN)·디페녹신(INN)·디펜옥실레이트(INN)·디피파논(INN)·펜타일(INN)·케토베미돈(INN)·메틸페니데이트(INN)·펜타조신(INN)·페치딘(INN)·페치딘(INN) 제조중간체 에이·펜사이클리딘(INN)(PCP)·페노페리딘(INN)·피프라드롤(INN)·피리트라미드(INN)·프로피람(INN)·트리메페리딘(INN)과 이들의 염	0.0%	E0
2933391000	이소니코틴산 히드라지드	0.0%	E0
2933393000	3-하이드록시-1-메틸피페리딘	0.0%	E0
2933394000	3-퀴뉴클리디닐 벤질레이트	0.0%	E0
2933395000	퀴뉴클리딘-3-올	0.0%	E0
293339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것으로 한정한다)		
2933399090	기타	0.0%	E0
2933410000	레보파놀(INN)과 그 염	0.0%	E0
2933491000	피비니움파모에이트	0.0%	E0
293349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2933499090	기타	0.0%	E0
2933520000	말로닐우레아(바르비투르산)와 그 염	0.0%	E0
2933530000	아로바르비탈(INN)·아모바르비탈(INN)·바르비탈(INN)·부탈비탈(INN)·부토바르비탈(INN)·싸이클로바르비탈(INN)·메틸페노바르비탈(INN)·펜토바르비탈(INN)·페노바르비탈(INN)·섹부타바르비탈(INN)·세코바르비탈(INN)·비닐비탈(INN)과 이들의 염	0.0%	E0
2933540000	그 밖의 말로닐우레아 유도체(바르비투르산)와 이들의 염	0.0%	E0
2933550000	로프라졸람(INN)·메크로콰론(INN)·메타콰론(INN)·지페프롤(INN)과 이들의 염	0.0%	E0
2933591100	5-플루오르우라실	0.0%	E0
2933591910	피리미딘	0.0%	E0
293359199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2933591999	기타	0.0%	E0
2933592010	피페라진	0.0%	E0
2933592020	시트르산 피페라진	0.0%	E0
2933592040	1-아미노-4-메틸피페라진	0.0%	E0
2933592090	기타	0.0%	E0
2933610000	멜라민	0.0%	E0
2933691000	염화시아눌	0.0%	E0
2933692000	헥사메틸렌테트라민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2933699010	트리메틸렌 트리니트라민	0.0%	E0
293369909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2933699099	기타	0.0%	E0
2933710000	6-헥산락탐(에프시론-카프로락탐)	0.0%	E0
2933720000	클로바잠(INN)과 메치푸리론(INN)	0.0%	E0
2933791000	이사틴	0.0%	E0
2933792000	2- 히드록시퀴놀린	0.0%	E0
2933793000	1-비닐-2-피롤리돈	0.0%	E0
2933799000	기타	0.0%	E0
2933910000	알프라졸람(INN)·카마제팜(INN)·클로르디아제폭사이드(INN)·클로나제팜(INN)·클로라제페이트·델로라제팜(INN)·디아제팜(INN)·에스타졸람(INN)·에틸로프라제페이트(INN)·플르디아제팜(INN)·플루니트라제팜(INN)·플루라제팜(INN)·할라제팜(INN)·로라제팜(INN)·로르메타제팜(INN)·마진돌(INN)·메다제팜(INN)·미다졸람(INN)·니메타제팜(INN)·니트라제팜(INN)·놀다제팜(INN)·옥사제팜(INN)·피나제팜(INN)·프라제팜(INN)·피로발레톤(INN)·테마제팜(INN)·테트라제팜(INN)·트리아졸람(INN)과 이들의 염	0.0%	E0
293392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2933929000	기타	0.0%	E0
2933991000	인돌과 그 유도체	0.0%	E0
293399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2933999090	기타	0.0%	E0
2934101000	아미노티아졸과 그 유도체	0.0%	E0
293410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2934109090	기타	0.0%	E0
2934201000	벤조티아졸	0.0%	E0
2934202000	머캐프토 벤조티아졸	0.0%	E0
2934203000	디벤조티아졸린 디술파이드	0.0%	E0
293420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2934209090	기타	0.0%	E0
2934301000	페노티아진(티오디페닐아민)	0.0%	E0
2934309000	기타	0.0%	E0
2934910000	아미노렉스(INN)·브로티졸람(INN)·클로티아제팜(INN)·클록사졸람(INN)·덱스트로모라마이드(INN)·할록사졸람(INN)·케타졸람(INN)·메소카브(INN)·옥사졸람(INN)·페몰린(INN)·펜디메트라진(INN)·펜메트라진(INN)·서펜타닐(INN)과 이들의 염	0.0%	E0
2934991000	모르포린	0.0%	E0
2934992000	핵산, 이들의 염과 유도체	0.0%	E0
2934993000	7-아미노세팔로스포린산	0.0%	E0
293499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0%	E0
2934999090	기타	5.0%	E3
2935100000	엔-메틸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0.0%	E0
2935200000	엔-에틸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0.0%	E0
2935300000	엔-에틸-엔-(2-히드록시에틸)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0.0%	E0
2935400000	엔-(2-히드록시에틸)-엔-메틸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0.0%	E0
2935500000	그 밖의 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0.0%	E0
2935901000	2-아미노-엔-에틸벤젠 술폰아닐리드	0.0%	E0
2935902000	술파메톡사졸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2935903010	술파티아졸	0.0%	E0
2935903090	기타	0.0%	E0
293590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2935909090	기타	0.0%	E0
2936210000	비타민 A 와 이들의 유도체	0.0%	E0
2936220000	비타민 B1 과 이들의 유도체	0.0%	E0
2936230000	비타민 B2 와 이들의 유도체	0.0%	E0
2936240000	디-판토텐산이나 디엘-판토텐산(비타민 B3 나 비타민 B5)과 이들의 유도체	0.0%	E0
2936250000	비타민 B6 와 이들의 유도체	0.0%	E0
2936260000	비타민 B12 와 이들의 유도체	0.0%	E0
2936271000	아스코르브산	0.0%	E0
2936272000	아스코르브산나트륨	0.0%	E0
2936273000	아스코르브산 칼슘	0.0%	E0
2936279000	기타	0.0%	E0
2936281000	초산알파토코페롤	0.0%	E0
2936289000	기타	0.0%	E0
2936291010	비타민 B9	0.0%	E0
2936291090	기타	0.0%	E0
2936292000	비타민 D 와 이들의 유도체	0.0%	E0
2936293000	비타민 H 와 이들의 유도체	0.0%	E0
2936294000	비타민 K 와 이들의 유도체	0.0%	E0
2936295000	니코틴아미드와 이들의 유도체	0.0%	E0
2936299000	기타	0.0%	E0
2936901000	프로비타민(혼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2936909000	기타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2937111000	소호 제 2933.9 호나 제 2934.9 호의 것	0.0%	E0
2937119000	기타	0.0%	E0
2937120000	인슐린과 그 염	0.0%	E0
2937191000	소호 제 2933.9 호, 제 2934.9 호의 것	0.0%	E0
2937199000	기타	0.0%	E0
2937211000	코르티손	0.0%	E0
2937212000	히드로코르티손	0.0%	E0
2937213000	프레드니손	0.0%	E0
2937214000	프레드니소론	0.0%	E0
2937220000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호르몬의 할로겐화 유도체	0.0%	E0
2937230000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토겐	0.0%	E0
2937292000	소호 제 2914.50 호의 것	0.0%	E0
2937299000	기타	0.0%	E0
2937501000	소호 제 2918.17 호, 제 2918.19 호, 제 2918.9 호의 것	0.0%	E0
2937502000	소호 제 2934.9 호의 것	0.0%	E0
2937509000	기타	0.0%	E0
2937901000	소호 제 2933.9 호, 제 2934.9 호의 것	0.0%	E0
2937902100	에피네프린	0.0%	E0
2937902910	소호 제 2922.50 호의 것	0.0%	E0
2937902990	기타	0.0%	E0
2937903000	아미노산 유도체	0.0%	E0
2937909000	기타	0.0%	E0
2938101000	루토시드(루틴)	0.0%	E0
2938102000	루토시드의 유도체	0.0%	E0
2938901000	디기탈리스 글리코시드	0.0%	E0
2938902000	글리시리진과 글리시리제이트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2938903000	사포닌	0.0%	E0
2938904000	스테비오사이드	0.0%	E0
2938909000	기타	0.0%	E0
2939111000	모르핀	0.0%	E0
2939112000	에틸모르핀	0.0%	E0
2939113000	코데인	0.0%	E0
2939114000	양귀비 줄기 농축물(전중량의 100 분의 50 이상의 알칼로이드를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2939119000	기타	0.0%	E0
2939190000	기타	0.0%	E0
2939200000	기나의 알칼로이드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0.0%	E0
2939300000	카페인과 그 염	0.0%	E0
2939411000	에페드린	0.0%	E0
2939419000	에페드린의 염	0.0%	E0
2939421000	슈도에페드린(INN)	0.0%	E0
2939429000	슈도에페드린의 염	0.0%	E0
2939430000	캐친(INN)과 그 염	0.0%	E0
2939440000	놀에페드린과 그 염	0.0%	E0
2939490000	기타	0.0%	E0
2939510000	페네틸린(INN)과 그 염	0.0%	E0
2939590000	기타	0.0%	E0
2939611000	엘고메트린(INN)	0.0%	E0
2939619000	엘고메트린(INN)의 염	0.0%	E0
2939621000	엘고타민(INN)	0.0%	E0
2939629000	엘고타민(INN)의 염	0.0%	E0
2939631000	리세르그산	0.0%	E0
2939639000	리세르그산의 염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2939690000	기타	0.0%	E0
2939710000	코카인・엑고닌・레보메탐페타민・메탐페타민(INN)・메탐페타민 레이스메이트 및 이들의 염・에스테르・그 밖의 유도체	0.0%	E0
2939791000	니코틴과 그 염	0.0%	E0
2939799000	기타	0.0%	E0
2939801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0% / 2.0%	E0
2939801090	기타	0.0% / 5.0%	E3
2939802000	히스트리노코톡신, 테트로도톡신	0.0%	E0
2939809000	기타	0.0% / 5.0%	E3
2940001010	갈락토오스	0.0%	E0
2940001020	소르보오스	0.0%	E0
2940001030	키실로오스	0.0%	E0
2940001090	기타	0.0%	E0
2940002010	히드록시프로필 슈크로오스	0.0%	E0
2940002090	기타	0.0%	E0
2941101000	페니실린 지(G) 칼륨	0.0%	E0
2941109010	페니실린 지(G) 나트륨	0.0%	E0
2941109020	페니실린 브이(V)	0.0%	E0
2941109090	기타	0.0%	E0
294120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2941209000	기타	0.0%	E0
2941301000	클로로 테트라사이클린	0.0%	E0
2941302000	염산 옥시 테트라사이클린	0.0%	E0
2941303000	염산 클로로 테트라사이클린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2941309000	기타	0.0%	E0
2941400000	클로람페니콜과 그 유도체, 이들의 염	0.0%	E0
2941501000	에리즈로마이신 티오시아네이트	0.0%	E0
2941509000	기타	0.0%	E0
2941902000	11-알파클로로-6-데옥시-6-데메틸-6-메틸렌-5-옥시테트라시클린-파라톨루엔술포네이트	0.0%	E0
2941909010	황산 카나마이신	0.0%	E0
2941909020	레더마이신	0.0%	E0
2941909030	황산 겐타마이신	0.0%	E0
2941909040	류코마이신	0.0%	E0
294190909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2941909099	기타	0.0%	E0
2942001000	케텐	0.0%	E0
2942009010	아세트 아비산 동	0.0%	E0
2942009090	기타	0.0%	E0
3001201000	선(腺) 추출물	0.0%	E0
3001202000	간장 추출물	0.0%	E0
3001203000	담낭 추출물	0.0%	E0
3001204000	췌장 추출물	0.0%	E0
3001205000	위장 추출물	0.0%	E0
3001209000	기타	0.0%	E0
3001901010	인체의 것	0.0%	E0
3001901090	기타	0.0%	E0
3001902010	웅담	0.0%	E0
3001902090	기타	0.0%	E0
3001909010	헤파린과 그 염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3001909020	인체의 것	0.0%	E0
3001909090	기타	0.0%	E0
3002110000	말라리아 진단 테스트 키트	0.0%	E0
3002121000	혈액 분획물의 조제품, 의약품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또는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	0.0%	E0
3002129010	면역혈청	0.0%	E0
3002129021	헤모글로빈	0.0%	E0
3002129022	글로불린(globulin)	0.0%	E0
3002129030	트롬빈(thrombin)과 프로트롬비나제(prothrombinase)	0.0%	E0
3002129040	혈청과 혈장(합성인 것은 제외한다)	0.0%	E0
3002129090	기타	0.0%	E0
3002131000	소호 제 2925.29 호, 제 2933.29 호, 제 2934.99 호, 제 2937.90.1000 호, 제 3002.90.3010 호, 제 3907.20 호의 것[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0.0% / 5.0%	E0
3002139000	기타	0.0%	E0
3002141000	소호 제 2925.29 호, 제 2933.29 호, 제 2934.99 호, 제 2937.90.1000 호, 제 3002.90.3010 호, 제 3907.20 호의 것[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0.0% / 5.0%	E0
3002149000	기타	0.0%	E0
3002150000	면역물품(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에 한정한다)	0.0%	E0
3002191000	소호 제 2925.29 호, 제 2933.29 호, 제 2934.99 호, 제 2937.90.1000 호, 제 3002.90.3010 호, 제 3907.20 호의 것[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0.0% / 5.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3002199000	기타	0.0%	E0
3002200000	백신(인체의약용으로 한정한다)	0.0%	E0
3002301000	구제역 백신	0.0%	E0
3002309000	기타	0.0%	E0
3002901000	사람의 피	0.0%	E0
3002902000	동물의 피(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3002903010	색시톡신(saxitoxin)	0.0%	E0
3002903020	리신(ricin)	0.0%	E0
3002903090	기타	0.0%	E0
3002904000	미생물 배양체	0.0%	E0
3002905000	바이러스와 항바이러스	0.0%	E0
3002906000	살균소	0.0%	E0
3002907000	제 2933.29 호의 것[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0.0%	E0
3002908000	소호 제 3002.12.1000 호, 제 3002.12.9021 호, 제 3002.12.9022 호, 3002.12.9030 호의 것	0.0%	E0
3002909000	기타	0.0%	E0
3003101000	페니실린이나 이들의 유도체(페니실린산 구조를 가진 것)를 함유하는 것	0.0%	E0
3003102000	스트렙토마이신이나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0.0%	E0
3003201000	항결핵제와 항암제	0.0%	E0
3003209000	기타	0.0%	E0
3003310000	인슐린을 함유한 것	0.0%	E0
3003391010	뇌하수체 전엽 호르몬제제	0.0%	E0
3003391020	뇌하수체 후엽 호르몬제제	0.0%	E0
3003395000	부신피질 호르몬제제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3003397000	남성 호르몬제제	0.0%	E0
3003398000	난포와 황체 호르몬제제	0.0%	E0
3003399000	기타	0.0%	E0
3003410000	에페드린 또는 그 염을 함유한 것	0.0%	E0
3003420000	슈도에페드린(INN) 또는 그 염을 함유한 것	0.0%	E0
3003430000	놀에페드린 또는 그 염을 함유한 것	0.0%	E0
3003491000	항암제	0.0%	E0
3003499000	기타	0.0%	E0
3003600000	기타(이 류의 소호주 제2호에 열거한 항말라리아 활성성분을 함유한 것에 한정한다)	0.0%	E0
3003901000	항결핵제·구충제·항암제	0.0%	E0
3003909100	아스피린제제	0.0%	E0
3003909200	항히스타민제제	0.0%	E0
3003909300	비타민제제	0.0%	E0
3003909400	녹용제제	0.0%	E0
3003909500	인삼제제	0.0%	E0
3003909900	기타	0.0%	E0
3004101000	페니실린이나 이들의 유도체(페니실린산 구조를 가진 것)를 함유하는 것	0.0%	E0
3004102000	스트렙토마이신이나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0.0%	E0
3004201000	항결핵제·구충제·항암제	0.0%	E0
3004209100	클로람페니콜제제	0.0%	E0
3004209200	에리트로마이신제제	0.0%	E0
3004209300	옥시테트라 사이클린제제	0.0%	E0
3004209400	카나마이신제제	0.0%	E0
3004209900	기타	0.0%	E0
3004310000	인슐린을 함유한 것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3004320000	코르티코스테로이드(corticosteroid) 호르몬을 함유한 것과 이들의 유도체나 그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0.0%	E0
3004391010	뇌하수체 전엽 호르몬제제	0.0%	E0
3004391020	뇌하수체 후엽 호르몬제제	0.0%	E0
3004392000	수액선 호르몬제제	0.0%	E0
3004393000	갑상샘과 부갑상샘 호르몬제제	0.0%	E0
3004394000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제	0.0%	E0
3004395000	부신수질 호르몬제제	0.0%	E0
3004396000	남성 호르몬제제	0.0%	E0
3004397000	난포와 황체 호르몬제제	0.0%	E0
3004399000	기타	0.0%	E0
3004410000	에페드린 또는 그 염을 함유한 것	0.0%	E0
3004420000	슈도에페드린(INN) 또는 그 염을 함유한 것	0.0%	E0
3004430000	놀에페드린 또는 그 염을 함유한 것	0.0%	E0
3004491000	항암제	0.0%	E0
3004492010	코카인제제	0.0%	E0
3004492020	맥각알칼로이드제제	0.0%	E0
3004492030	니코틴제제	0.0%	E0
3004493000	아트로핀과 호마트로핀제제	0.0%	E0
3004499000	기타	0.0%	E0
3004501000	비타민 A 제제	0.0%	E0
3004502010	비타민 B1 제제	0.0%	E0
3004502090	기타	0.0%	E0
3004503000	비타민 C 제제	0.0%	E0
3004504000	비타민 D 제제	0.0%	E0
3004505000	비타민 E 제제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3004506000	비타민 H 제제	0.0%	E0
3004507000	비타민 K 제제	0.0%	E0
3004509000	기타	0.0%	E0
3004600000	기타(이 류의 소호주 제2호에 열거한 항말라리아 활성성분을 함유한 것에 한정한다)	0.0%	E0
3004901000	항결핵제·구충제·항암제	0.0%	E0
3004909100	아스피린제제	0.0%	E0
3004909200	항히스타민제제	0.0%	E0
3004909300	녹용제제	0.0%	E0
3004909400	인삼제제	0.0%	E0
3004909500	로열젤리 제제	0.0%	E0
3004909900	기타	0.0%	E0
3005101000	반창고	0.0%	E0
3005109000	기타	0.0%	E0
3005901000	탈지면	0.0%	E0
3005902000	거즈	0.0%	E0
3005903000	붕대	0.0%	E0
3005904000	조제 드레싱과 습포제	0.0%	E0
3005909000	기타	0.0%	E0
3006101010	살균한 외과용 캣거트(catgut)	0.0%	E0
3006101020	살균한 봉합재(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흡수성 실을 포함한다)	0.0%	E0
3006102000	살균한 외과용 수술상처의 봉합용 접착제	0.0%	E0
3006103000	살균한 라미나리아와 살균한 라미나리아의 텐트	0.0%	E0
3006104000	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흡수성 지혈제	0.0%	E0
300610501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0.0%	E0
3006105020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3006105090	기타	0.0%	E0
3006200000	혈액형 분류용 시약	0.0%	E0
3006301000	엑스선 검사용 조영제	0.0%	E0
3006302000	진단용 시약(환자 투여용)	0.0%	E0
3006401000	치과용 시멘트	0.0%	E0
3006402000	치과용 충전제	0.0%	E0
3006403000	뼈 형성용 시멘트	0.0%	E0
3006500000	구급상자와 구급대	0.0%	E0
3006600000	제 2937 호의 호르몬과 기타 제품이나 살정자제(殺精子劑)를 기본 재료로 하는 피임성의 화학조제품	0.0%	E0
3006700000	외과수술이나 신체검사를 할 때 신체 각 부분의 윤활제로 사용되거나 신체와 의료기기 사이의 접착약품으로서 사람이나 수의약에 사용되는 겔(gel) 조제품	0.0%	E0
3006910000	장루(腸瘻)용으로 인정되는 기구	0.0%	E0
3006921010	피부와 뼈(이식용으로 한정한다)	0.0%	E0
3006921090	기타	0.0%	E0
3006922010	혈액 분획물의 조제품, 의약품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또는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	0.0%	E0
3006922020	헤모글로빈과 글로불린(globulin)	0.0%	E0
3006922031	색시톡신(saxitoxin)	0.0%	E0
3006922032	리신(ricin)	0.0%	E0
3006922090	기타	0.0%	E0
3006923000	제 3003 호와 제 3004 호의 것	0.0%	E0
3006924000	제 3005 호와 제 3006 호의 것	0.0%	E0
3006925000	소호 제 3824.84 호부터 제 3824.88 호까지, 제 3824.91 호, 제 3824.99 호의 것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3101001010	구아노(guano)	0.0%	E0
3101001090	기타	0.0%	E0
3101002000	식물성 비료	0.0%	E0
3101003000	동물성·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비료	0.0%	E0
3102101000	비료나 비료제조용	2.0%	E3
3102109000	기타	5.0%	E3
3102210000	황산암모늄	0.0%	E0
3102291000	황산암모늄과 질산암모늄의 겹염	0.0%	E0
3102292000	황산암모늄과 질산암모늄의 혼합물	0.0%	E0
3102300000	질산암모늄(수용액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0.0%	E0
3102400000	질산암모늄의 혼합물(탄산칼슘이나 그 밖의 비료성분이 아닌 무기물을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3102501000	천연의 것	0.0%	E0
3102509000	기타	0.0%	E0
3102600000	질산칼슘·질산암모늄의 겹염과 혼합물	0.0%	E0
3102800000	요소·질산암모늄의 혼합물(수용액이나 암모니아용액을 혼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3102901000	질산칼슘과 질산마그네슘의 겹염	0.0%	E0
3102909000	기타	0.0%	E0
3103110000	오산화인(P205)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35 이상인 것	0.0%	E0
3103190000	기타	0.0%	E0
3103901000	소성인산석회	0.0%	E0
3103902000	오르토인산수소칼슘(플루오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 분의 0.2 이상으로 한정한다)	0.0%	E0
3103903000	기타 인산석회	0.0%	E0
3103904000	혼합 인산질비료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3103909000	기타	0.0%	E0
3104200000	염화칼륨	0.0%	E0
3104301000	산화칼륨으로 계산한 칼륨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2 이하인 것	0.0%	E0
3104309000	기타	0.0%	E0
3104901010	산화칼륨으로 계산한 칼륨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30 이하인 것	0.0%	E0
3104901090	기타	0.0%	E0
3104909000	기타	0.0%	E0
3105100000	이 류에 열거한 물품을 둥글넓적한(tablet)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 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0.0%	E0
3105200000	질소·인·칼륨을 함유한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	0.0%	E0
3105300000	오르토인산수소 이암모늄(인산이암모늄)	0.0%	E0
3105400000	오르토인산이수소암모늄(인산일암모늄), 이것과 오르토인산수소이암모늄(인산이암모늄)의 혼합물	0.0%	E0
3105510000	질산염과 인산염을 함유한 비료	0.0%	E0
3105590000	기타	0.0%	E0
3105600000	인과 칼륨을 함유한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	0.0%	E0
3105901000	질소와 칼륨을 함유한 비료	0.0%	E0
3105909000	기타	0.0%	E0
3201100000	퀘브라쵸 추출물(quebracho extract)	0.0%	E0
3201200000	왓틀 추출물(wattle extract)	0.0%	E0
3201901010	망그로브 추출물(extract)	0.0%	E0
3201901020	미로보란 추출물(extract)	0.0%	E0
3201901040	감비어 추출물(extract)	0.0%	E0
3201901090	기타	0.0%	E0
3201902000	탄닌산과 그 염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3201903000	탄닌의 에테르나 에스테르	0.0%	E0
3201904000	그 밖의 탄닌의 유도체	0.0%	E0
3202101000	방향족 신탄스	0.0%	E0
3202102000	염화 알킬술폰	0.0%	E0
3202103000	수지성 유연제	0.0%	E0
3202109000	기타	0.0%	E0
3202901000	무기유연제	0.0%	E0
3202902000	인조 탈회제	0.0%	E0
3202909000	기타	0.0%	E0
3203001100	천연 인디고(indigo)	0.0%	E0
3203001910	로그우드(logwood)	0.0%	E0
3203001930	엽록소	0.0%	E0
3203001990	기타	0.0%	E0
3203002010	코치니엘(cochineal)	0.0%	E0
3203002030	세피아(sepia)	0.0%	E0
3203002090	기타	0.0%	E0
3203003000	식물성이나 동물성 착색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0.0%	E0
3204111000	분산성 염료 중간체[프레스케익(press cake)으로 한정한다]	0.0%	E0
3204119000	기타	0.0%	E0
3204121000	산성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0.0%	E0
3204122000	매염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0.0%	E0
3204130000	염기성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0.0%	E0
3204140000	직접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0.0%	E0
3204150000	건염(建染) 염료(그 상태에서 안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3204160000	반응성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0.0%	E0
3204170000	안료 색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0.0%	E0
3204191000	유기용제 용해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0.0%	E0
3204192000	래피드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0.0%	E0
3204193000	황화염료·황화 건염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0.0%	E0
3204199000	기타	0.0%	E0
3204200000	형광증백제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품	0.0%	E0
3204901010	유기발광다이오드(오엘이디) 제조용	0.0%	E0
3204901090	기타	0.0%	E0
3204909000	기타	0.0%	E0
3205001000	플라스틱 안료색소	0.0%	E0
3205009000	기타	0.0%	E0
3206110000	건조 상태로 계산하여 이산화티타늄의 중량이 100 분의 80 이상 함유된 것	0.0%	E0
3206190000	기타	0.0%	E0
3206200000	크로뮴화합물을 기본 재료로 한 안료와 그 조제품	0.0%	E0
3206411000	군청	0.0%	E0
3206419000	기타	0.0%	E0
3206421000	리도폰(lithopone)	0.0%	E0
3206429000	기타	0.0%	E0
3206491000	아연회	0.0%	E0
3206492000	광물성 블랙	0.0%	E0
3206493000	어스칼러(colored earth)	0.0%	E0
3206494000	용해성 반다이케브라운	0.0%	E0
3206495000	코발트화합물을 기본 재료로 한 안료	0.0%	E0
3206496000	카드뮴화합물을 기본 재료로 한 안료와 그 조제품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3206499000	기타	0.0%	E0
3206500000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	0.0%	E0
3207100000	조제 안료·조제 유백제(乳白劑)·조제 그림물감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0.0%	E0
3207201000	법랑과 유약	0.0%	E0
3207202000	슬립	0.0%	E0
3207209000	기타	0.0%	E0
3207301000	금으로 만든 것	0.0%	E0
3207302000	백금으로 만든 것	0.0%	E0
3207303000	팔라듐으로 만든 것	0.0%	E0
3207304000	은으로 만든 것	0.0%	E0
3207309000	기타	0.0%	E0
3207400000	유리 프리트(frit)와 그 밖의 유리[가루·알갱이·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3208101010	에나멜	0.0%	E0
3208101090	기타	0.0%	E0
3208102000	바니시(varnish)[래커(lacquer)를 포함한다]	0.0%	E0
3208103000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	0.0%	E0
3208201011	에나멜	0.0%	E0
3208201019	기타	0.0%	E0
3208201020	바니시(varnish)[래커(lacquer)를 포함한다]	0.0%	E0
3208201030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	0.0%	E0
3208202011	에나멜	0.0%	E0
3208202019	기타	0.0%	E0
3208202020	바니시(varnish)[래커(lacquer)를 포함한다]	0.0%	E0
3208202030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	0.0%	E0
3208901011	에나멜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3208901019	기타	0.0%	E0
3208901020	바니시(varnish)[래커(lacquer)를 포함한다]	0.0%	E0
3208901030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	0.0%	E0
3208909011	에나멜	0.0%	E0
3208909019	기타	0.0%	E0
3208909020	바니시(varnish)[래커(lacquer)를 포함한다]	0.0%	E0
3208909030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	0.0%	E0
3209101011	에나멜	0.0%	E0
3209101019	기타	0.0%	E0
3209101020	바니시(varnish)[래커(lacquer)를 포함한다]	0.0%	E0
3209102010	페인트(에나멜을 포함한다)	0.0%	E0
3209102020	바니시(varnish)[래커(lacquer)를 포함한다]	0.0%	E0
3209901011	에나멜	0.0%	E0
3209901019	기타	0.0%	E0
3209901020	바니시(varnish)[래커(lacquer)를 포함한다]	0.0%	E0
3209909011	에나멜	0.0%	E0
3209909019	기타	0.0%	E0
3209909020	바니시(varnish)[래커(lacquer)를 포함한다]	0.0%	E0
3210001011	에나멜	0.0%	E0
3210001019	기타	0.0%	E0
3210001091	에나멜	0.0%	E0
3210001099	기타	0.0%	E0
3210002010	오일 바니시(varnish)	0.0%	E0
3210002020	락·천연 검이나 천연 수지를 기본 재료로 한 바니시(varnish)와 래커(lacquer)	0.0%	E0
3210002030	역청질·피치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을 기본 재료로 한 바니시(varnish)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3210002040	용제를 함유하지 않은 액상 바니시(varnish)	0.0%	E0
3210003010	디스템퍼(distemper)	0.0%	E0
3210003090	기타	0.0%	E0
3211000000	조제 드라이어	0.0%	E0
3212100000	스탬프용 박(箔)	0.0%	E0
3212901000	소매용의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염료와 그 밖의 착색제	0.0%	E0
3212909000	기타	0.0%	E0
3213101000	유성 물감	0.0%	E0
3213102000	수성 물감	0.0%	E0
3213109000	기타	0.0%	E0
3213901000	유성 물감	0.0%	E0
3213902000	수성 물감	0.0%	E0
3213909000	기타	0.0%	E0
3214101060	고무를 기본 재료로 한 것	0.0%	E0
3214101080	수지매스틱과 수지시멘트	0.0%	E0
3214101090	기타	0.0%	E0
3214102000	도장용 충전제	0.0%	E0
3214109000	기타	0.0%	E0
3214900000	기타	0.0%	E0
3215110000	흑색	0.0%	E0
3215190000	기타	0.0%	E0
3215901000	필기용 잉크	0.0%	E0
3215902000	제도용 잉크	0.0%	E0
3215903000	복사용 잉크	0.0%	E0
3215904010	유성	0.0%	E0
3215904020	수성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3215904030	유성・수성 겸용	0.0%	E0
3215905000	금속성 잉크	0.0%	E0
3215906010	유성	0.0%	E0
3215906020	수성	0.0%	E0
3215906030	유성・수성 겸용	0.0%	E0
3215909000	기타	0.0%	E0
3301120000	오렌지유	0.0%	E0
3301130000	레몬유	0.0%	E0
3301190000	기타	0.0%	E0
3301240000	박하유[멘타 피페리타(Mentha piperita)]	0.0%	E0
3301250000	그 밖의 민트류로 만든 것	0.0%	E0
3301291000	바닐라유	0.0%	E0
3301292000	시트로넬라유	0.0%	E0
3301293000	신나몬바크유	0.0%	E0
3301294000	신나몬리프유	0.0%	E0
3301299000	기타	0.0%	E0
3301300000	레지노이드(resinoid)	0.0%	E0
3301901000	정유(essential oil)에서 테르펜을 제거할 때에 생기는 테르펜계 부산물	0.0%	E0
3301902000	정유(essential oil)의 농축물	0.0%	E0
3301903000	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	0.0%	E0
3301904100	아편에서 추출한 것	0.0%	E0
3301904200	감초에서 추출한 것	0.0%	E0
3301904300	홉(hop)에서 추출한 것	0.0%	E0
3301904400	제충국(除蟲菊)에서 추출한 것이나 로테논(rotenone)을 함유하는 식물 뿌리에서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추출한 것		
3301904510	백삼에서 추출한 것	0.0%	E0
3301904520	홍삼에서 추출한 것	603.4%	EX
3301904530	그 밖의 인삼에서 추출한 것	0.0%	E0
3301904600	캐슈너트 쉘액(cashew nut shell liquid)에서 추출한 것	0.0%	E0
3301904700	생칠(生漆)에서 추출한 것	0.0%	E0
3301904800	기타	0.0%	E0
3302101000	식품공업용	0.0%	E0
3302102011	알코올성 합성 조제품	0.0%	E0
3302102019	기타	0.0%	E0
3302102090	기타	0.0%	E0
3302900000	기타	0.0%	E0
3303001000	향수	0.0%	E0
3303002000	화장수	0.0%	E0
3304101000	립스틱	0.0%	E0
3304109000	기타	0.0%	E0
3304201000	아이섀도	0.0%	E0
3304209000	기타	0.0%	E0
3304301000	네일에나멜	0.0%	E0
3304309000	기타	0.0%	E0
3304911000	페이스파우다	0.0%	E0
3304912000	베이비파우다(탈쿰파우다를 포함한다)	0.0%	E0
3304919000	기타	0.0%	E0
3304991000	기초화장용 제품류	0.0%	E0
3304992000	메이크업용 제품류	0.0%	E0
3304993000	어린이용 제품류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3304999000	기타	0.0%	E0
3305100000	샴푸	5.0%	E3
3305200000	퍼머넌트 웨이빙(permanent waving)용이나 스트레이트닝(straightening)용 제품류	0.0%	E0
3305300000	헤어 래커(hair lacquer)	0.0%	E0
3305901000	헤어린스	5.0%	E3
3305902000	헤어크림	0.0%	E0
3305909000	기타	0.0%	E0
3306100000	치약	0.0%	E0
3306201011	70 덱시텍스를 초과하지 않는 것	0.0%	E0
3306201019	기타	0.0%	E0
3306201020	구성하는 단사가 50 텍스를 초과하는 것	0.0%	E0
3306209000	기타	0.0%	E0
3306901000	구강위생용 제품류	0.0%	E0
3306902000	치과위생용 제품류	0.0%	E0
3307101000	애프터 셰이빙로션	0.0%	E0
3307109000	기타	0.0%	E0
3307200000	인체용 탈취제와 땀 억제제	0.0%	E0
3307301000	가향한 목욕용 염	0.0%	E0
3307302000	그 밖의 목욕용 제품류	0.0%	E0
3307410000	아가바티(agarbatti)와 그 밖의 연소시켜 사용하는 향기성의 조제품	0.0%	E0
3307490000	기타	0.0%	E0
3307901000	탈모제	0.0%	E0
3307902000	향낭	0.0%	E0
3307903000	콘택트렌즈의 액이나 의안의 액	0.0%	E0
3307909000	기타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3401111000	약용비누	0.0%	E0
3401119000	기타	5.0%	E3
3401191010	세탁비누	0.0%	E0
3401191090	기타	5.0%	E3
3401192000	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와 부직포	0.0%	E0
3401200000	그 밖의 모양의 비누	5.0%	E3
3401300000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0%	E0
3402110000	음이온성	0.0%	E0
3402120000	양이온성	0.0%	E0
340213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3402139000	기타	0.0%	E0
3402190000	기타	0.0%	E0
3402201000	조제 세제	0.0%	E0
3402202000	조제 청정제	0.0%	E0
3402209000	기타	0.0%	E0
3402901000	조제 계면활성제	0.0%	E0
3402902000	조제 세제	0.0%	E0
3402903000	조제 청정제	0.0%	E0
3403111000	방직용 재료의 처리용 조제품	0.0%	E0
3403112000	가죽이나 모피의 처리용 조제품	0.0%	E0
3403119000	기타	0.0%	E0
3403191000	조제 절삭유	0.0%	E0
3403192000	볼트・너트 방출제	0.0%	E0
3403193000	방청제나 부식방지제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3403194000	이형(mold release) 조제품	0.0%	E0
3403195000	신선용(伸線用) 조제 윤활제	0.0%	E0
3403199000	기타	0.0%	E0
3403911000	방직용 재료의 처리용 조제품	0.0%	E0
3403912000	가죽이나 모피의 처리용 조제품	0.0%	E0
3403919000	기타	0.0%	E0
3403991000	조제 절삭유	0.0%	E0
3403992000	신선용(伸線用) 조제 윤활제	0.0%	E0
3403999000	기타	0.0%	E0
3404200000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글리콜)의 것	0.0%	E0
3404901010	클로로 파라핀왁스	0.0%	E0
3404901030	폴리알킬렌왁스	0.0%	E0
3404901040	화학적으로 변성한 갈탄왁스	0.0%	E0
3404901090	기타	0.0%	E0
3404902000	조제 왁스	0.0%	E0
3405100000	신발용이나 가죽용 광택제·크림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0.0%	E0
3405200000	목제가구·마루나 그 밖의 목제품의 유지용 광택제·크림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0.0%	E0
3405300000	차체(coachwork)용 광택제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금속용 광택제는 제외한다)	0.0%	E0
3405400000	조제 연마페이스트(paste)·조제 연마가루와 그 밖의 연마용 조제품	0.0%	E0
3405901010	초크를 기본 재료로 한 것	0.0%	E0
3405901020	규조토를 기본 재료로 한 것	0.0%	E0
3405901030	다이아몬드 가루나 더스트를 기본 재료로 한 것	0.0%	E0
3405901090	기타	0.0%	E0
3405909000	기타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3406000000	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	0.0%	E0
3407001000	조형용 페이스트(paste)	0.0%	E0
3407002000	치과용 왁스나 치과용 인상재료	0.0%	E0
3407003000	플라스터를 기본 재료로 한 기타 치과용 조제품	0.0%	E0
3501101000	커피 크리머 제조용	0.0%	E0
3501109000	기타	0.0%	E0
3501901110	커피 크리머 제조용	0.0%	E0
3501901190	기타	0.0%	E0
3501901200	그 밖의 카세인(casein) 유도체	0.0%	E0
3501902000	카세인 글루(casein glue)	0.0%	E0
3502110000	건조한 것	0.0%	E0
3502190000	기타	0.0%	E0
3502200000	밀크알부민(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	0.0%	E0
3502901000	알부민산염과 그 밖의 알부민 유도체	0.0%	E0
3502909000	기타	0.0%	E0
3503001010	젤라틴	0.0%	E0
3503001020	젤라틴 유도체	0.0%	E0
3503002000	아이징글라스(isinglass)	0.0%	E0
3503003000	그 밖의 동물성 글루(glue)	0.0%	E0
3504001010	펩톤(peptone)	0.0%	E0
3504001020	펩톤(peptone) 유도체	0.0%	E0
3504002010	케라틴	0.0%	E0
3504002020	핵산단백질	0.0%	E0
3504002030	유리단백질	0.0%	E0
3504002090	기타	0.0%	E0
3504003000	하이드 파우더(hide powder)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3505101000	덱스트린	0.0%	E0
3505102000	가용성 전분(아밀로겐)	0.0%	E0
3505103000	배소전분	192.8%	EX
3505104010	식품용	308.5%	EX
3505104090	기타	308.5%	EX
3505105010	식품용	308.5%	EX
3505105090	기타	308.5%	EX
3505109010	식품용	308.5%	EX
3505109090	기타	308.5%	EX
3505201000	전분 글루(glue)	100.6%	EX
3505202000	덱스트린 글루(glue)	100.6%	EX
3505209000	기타	100.6%	EX
3506101000	고무를 기본 재료로 한 것	0.0%	E0
3506102000	플라스틱(인조수지를 포함한다)을 기본 재료로 한 것	0.0%	E0
3506109000	기타	0.0%	E0
3506911000	광학용 투명 점착 필름 접착제·광학용 투명 경화성 액상 접착제(평판디스플레이 또는 터치 감지 스크린 패널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3506919000	기타	0.0%	E0
3506991000	비엔나 글루(glue)	0.0%	E0
3506992000	화학처리한 천연검에서 얻은 글루(glue)	0.0%	E0
3506993000	규산염을 기본 재료로 한 글루(glue)	0.0%	E0
3506999000	기타	0.0%	E0
3507100000	레네트(rennet)와 이들의 농축물	0.0%	E0
3507901010	트립신	0.0%	E0
3507901020	키모트립신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3507901030	알파아밀라제	0.0%	E0
3507901040	리파제	0.0%	E0
3507901090	기타	0.0%	E0
3507902000	펩신	0.0%	E0
3507903000	맥아효소	0.0%	E0
3507904010	파파인	0.0%	E0
3507904020	브로멜라인	0.0%	E0
3507904030	피신	0.0%	E0
3507906010	아밀라제	0.0%	E0
3507906020	프로테아제	0.0%	E0
3507907000	펙틱효소	0.0%	E0
3507909000	기타	0.0%	E0
3601001000	흑색화약	0.0%	E0
3601002000	무연화약	0.0%	E0
3602000000	폭약(화약은 제외한다)	0.0%	E0
3603001000	도화선	0.0%	E0
3603002000	도폭선	0.0%	E0
3603003000	뇌관	0.0%	E0
3603004000	점화기	0.0%	E0
3603005000	전기뇌관	0.0%	E0
3604100000	불꽃제품	0.0%	E0
3604901000	신호용 조명탄	0.0%	E0
3604909000	기타	0.0%	E0
3605001000	황린(黃燐) 성냥	0.0%	E0
3605009000	기타	0.0%	E0
3606100000	흡연용 라이터나 이와 유사한 라이터를 충전하거나 재충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용기(용량이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300 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에 넣은 액체연료·액화가스연료		
3606901010	메타 연료	0.0%	E0
3606901020	헥사민	0.0%	E0
3606901030	고체 알코올	0.0%	E0
3606901090	기타	0.0%	E0
3606902010	라이터 돌	0.0%	E0
3606902090	기타	0.0%	E0
3606909010	라이터 돌	0.0%	E0
3606909090	기타	0.0%	E0
3701100000	엑스선용	0.0%	E0
3701200000	인스턴트 프린트필름	0.0%	E0
3701301000	반도체 제조용	0.0%	E0
3701309100	인쇄제판용	0.0%	E0
3701309200	인쇄회로기판용	0.0%	E0
3701309930	평판디스플레이용[블랭크마스크(blank mask)로 한정한다]	0.0%	E0
3701309990	기타	0.0%	E0
3701911000	반도체 제조용	0.0%	E0
3701919100	인쇄제판용	0.0%	E0
3701919200	인쇄회로기판용	0.0%	E0
3701919900	기타	0.0%	E0
3701991000	반도체 제조용	0.0%	E0
3701999100	인쇄제판용	0.0%	E0
3701999200	인쇄회로기판용	0.0%	E0
3701999920	항공촬영용	0.0%	E0
3701999990	기타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3702100000	엑스선용	0.0%	E0
3702311110	네거티브	0.0%	E0
3702311120	포지티브	0.0%	E0
3702311210	네거티브	0.0%	E0
3702311220	포지티브	0.0%	E0
3702311910	네거티브	0.0%	E0
3702311920	포지티브	0.0%	E0
3702312000	인쇄제판용	0.0%	E0
3702313000	인쇄회로기판용	0.0%	E0
3702319000	기타	0.0%	E0
3702321110	네거티브	0.0%	E0
3702321120	포지티브	0.0%	E0
3702321210	네거티브	0.0%	E0
3702321220	포지티브	0.0%	E0
3702321910	네거티브	0.0%	E0
3702321920	포지티브	0.0%	E0
3702322000	인쇄제판용	0.0%	E0
3702323000	인쇄회로기판용	0.0%	E0
3702329030	인스턴트 프린트필름	0.0%	E0
3702329090	기타	0.0%	E0
3702391110	네거티브	0.0%	E0
3702391120	포지티브	0.0%	E0
3702391210	네거티브	0.0%	E0
3702391220	포지티브	0.0%	E0
3702391910	네거티브	0.0%	E0
3702391920	포지티브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3702392000	인쇄제판용	0.0%	E0
3702393000	인쇄회로기판용	0.0%	E0
3702399000	기타	0.0%	E0
3702411000	영화필름	0.0%	E0
3702419000	기타	0.0%	E0
3702421000	영화필름	0.0%	E0
3702422000	인쇄제판용	0.0%	E0
3702423000	인쇄회로기판용	5.0%	E3
3702429000	기타	0.0%	E0
3702431010	네거티브	0.0%	E0
3702431020	포지티브	0.0%	E0
3702432000	인쇄제판용	0.0%	E0
3702433000	인쇄회로기판용	0.0%	E0
3702439000	기타	0.0%	E0
3702441010	네거티브	0.0%	E0
3702441020	포지티브	0.0%	E0
3702442000	인쇄제판용	0.0%	E0
3702443000	인쇄회로기판용	0.0%	E0
3702449020	항공촬영용	0.0%	E0
3702449090	기타	0.0%	E0
3702521010	네거티브	0.0%	E0
3702521020	포지티브	0.0%	E0
3702523000	인쇄회로기판용	0.0%	E0
3702529000	기타	0.0%	E0
3702530000	폭이 16 밀리미터 초과 35 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 미터 이하인 것(슬라이드용으로 한정한다)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3702541010	네거티브	0.0%	E0
3702541020	포지티브	0.0%	E0
3702542000	인쇄제판용	0.0%	E0
3702543000	인쇄회로기판용	0.0%	E0
3702549010	광전녹음용	0.0%	E0
3702549090	기타	0.0%	E0
3702551010	네거티브	0.0%	E0
3702551020	포지티브	0.0%	E0
3702553000	인쇄회로기판용	0.0%	E0
3702559000	기타	0.0%	E0
3702561010	네거티브	0.0%	E0
3702561020	포지티브	0.0%	E0
3702562000	인쇄제판용	0.0%	E0
3702569000	기타	0.0%	E0
3702961010	네거티브	0.0%	E0
3702961020	포지티브	0.0%	E0
3702963000	인쇄회로기판용	0.0%	E0
3702969000	기타	0.0%	E0
3702971010	네거티브	0.0%	E0
3702971020	포지티브	0.0%	E0
3702973000	인쇄회로기판용	0.0%	E0
3702979010	광전녹음용	0.0%	E0
3702979090	기타	0.0%	E0
3702981010	네거티브	0.0%	E0
3702981020	포지티브	0.0%	E0
3702982000	인쇄제판용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3702983000	인쇄회로기판용	0.0%	E0
3702989000	기타	0.0%	E0
3703101030	사진복사용	0.0%	E0
3703101040	기록용	0.0%	E0
3703101090	기타	0.0%	E0
3703109030	사진복사용	0.0%	E0
3703109090	기타	0.0%	E0
3703201000	엑스선용	0.0%	E0
3703203000	사진복사용	0.0%	E0
3703204000	기록용	0.0%	E0
3703209000	기타	0.0%	E0
3703901000	엑스선용	0.0%	E0
3703903000	사진복사용	0.0%	E0
3703904000	기록용	0.0%	E0
3703909000	기타	0.0%	E0
3704001100	영화용	0.0%	E0
3704001200	오프셋 복사용(엽서・그림엽서・카드・캘린더 제작용으로 한정한다)	0.0%	E0
3704001300	반도체 제조용	0.0%	E0
3704001900	기타	0.0%	E0
3704002000	사진 인화지・판지・직물	0.0%	E0
3705001010	엽서・그림엽서・카드와 캘린더 제작용	0.0%	E0
3705001090	기타	0.0%	E0
3705009010	반도체 제조용	0.0%	E0
3705009090	기타	0.0%	E0
3706101000	사운드트랙만 있는 것	0.0%	E0
3706102000	뉴스용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3706103010	편집용 필름(rush)	0.0%	E0
3706103020	그 밖의 네거티브 합작영화	0.0%	E0
3706103030	그 밖의 포지티브 합작영화	0.0%	E0
3706104000	대한민국 제작자가 외국에서 촬영한 것(단순히 외국 풍물만 촬영한 것이나 대한민국 배우가 출연한 것으로 한정한다)과 한국영화	0.0%	E0
3706105010	네거티브	0.0%	E0
3706105020	포지티브	5%, 140 원/m	E3
3706106010	네거티브	0.0%	E0
3706106020	포지티브	0.0%	E0
3706901000	사운드트랙만 있는 것	0.0%	E0
3706902000	뉴스용	0.0%	E0
3706903010	편집용 필름(rush)	0.0%	E0
3706903020	그 밖의 네거티브 합작영화	0.0%	E0
3706903030	그 밖의 포지티브 합작영화	0.0%	E0
3706904000	대한민국 제작자가 외국에서 촬영한 것(단순히 외국 풍물만 촬영한 것이나 대한민국 배우가 출연한 것으로 한정한다)과 한국영화	0.0%	E0
3706905010	네거티브	0.0%	E0
3706905020	포지티브	0.0%	E0
3706906010	네거티브	0.0%	E0
3706906020	포지티브	0.0%	E0
3707100000	감광유제	0.0%	E0
3707901010	반도체 제조용	0.0%	E0
3707901020	유기발광다이오드(오엘이디) 제조용	0.0%	E0
3707901090	기타	0.0%	E0
3707902100	천연색 사진용	1.6%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3707902910	엑스선용	0.0%	E0
3707902920	인쇄제판용	1.6%	E0
3707902990	기타	0.0%	E0
3707903100	천연색 사진용	1.6%	E0
3707903910	엑스선용	0.0%	E0
3707903920	인쇄제판용	0.0%	E0
3707903990	기타	0.0%	E0
3707909100	증도제와 감도제	0.0%	E0
3707909200	조색제	0.0%	E0
3707909300	세정제	0.0%	E0
3707909400	섬광재료	0.0%	E0
3707909900	기타	0.0%	E0
3801101000	이차전지 제조용	0.0%	E0
3801109000	기타	0.0%	E0
3801200000	콜로이드흑연이나 반콜로이드흑연	0.0%	E0
3801300000	전극용 탄소질 페이스트(paste)와 노(爐) 내장용의 이와 유사한 페이스트(paste)	0.0%	E0
3801900000	기타	0.0%	E0
3802100000	활성탄	0.0%	E0
3802901010	활성 규조토	0.0%	E0
3802901020	활성토	0.0%	E0
3802901090	기타	0.0%	E0
3802902000	수탄(獸炭)[폐수탄(廢獸炭)을 포함한다]	0.0%	E0
3803000000	톨유(tall oil)(정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0%	E0
3804001000	액체 상태인 것	0.0%	E0
3804009000	기타	0.0%	E0
3805101000	검테레빈유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3805102000	우드테레빈유	0.0%	E0
3805103000	황산테레빈유	0.0%	E0
3805900000	기타	0.0%	E0
3806101000	로진(rosin)	0.0%	E0
3806102000	수지산	0.0%	E0
3806201000	로진염	0.0%	E0
3806202000	수지산염	0.0%	E0
3806209000	기타	0.0%	E0
3806300000	에스테르 검(ester gum)	0.0%	E0
3806903000	로진스피릿과 로진유	0.0%	E0
3806909000	기타	0.0%	E0
3807001000	목(木)타르・목(木)타르유・목(木)크레오소트(creosote)	0.0%	E0
3807002000	목(木)나프타	0.0%	E0
3807003000	식물성 피치(pitch)	0.0%	E0
3807009010	목초액	0.0%	E0
3807009090	기타	0.0%	E0
3808520000	디디티(ISO)[클로페노탄(INN)](순중량이 300 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에 한정한다)	0.0%	E0
380859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3808599000	기타	0.0%	E0
380861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3808619000	기타	0.0%	E0
380862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3808629000	기타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380869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3808699000	기타	0.0%	E0
380891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3808919000	기타	0.0%	E0
380892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3808929000	기타	0.0%	E0
3808931000	제초제	0.0%	E0
3808932000	발아억제제	0.0%	E0
3808933000	식물성장조절제	0.0%	E0
3808940000	소독제	0.0%	E0
3808991000	살서제(쥐약)	0.0%	E0
3808999000	기타	0.0%	E0
3809100000	전분질을 기본 재료로 한 것	0.0%	E0
3809910000	섬유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용하는 것	0.0%	E0
3809920000	제지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용하는 것	0.0%	E0
3809930000	가죽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용하는 것	5.0%	E0
3810101000	금속표면처리용 침지 조제품	0.0%	E0
3810109000	기타	0.0%	E0
3810901000	납붙임·땜질이나 용접용의 융제와 그 밖의 보조 조제품	0.0%	E0
3810909000	기타	0.0%	E0
3811110000	납화합물을 기본 재료로 한 것	0.0%	E0
3811190000	기타	0.0%	E0
3811210000	석유나 역청유(瀝靑油)를 함유하는 것	5.0%	E0
3811290000	기타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3811900000	기타	0.0%	E0
3812101000	디페닐구아니딘을 기본 재료로 한 것	0.0%	E0
3812102000	디티오카르바메이트를 기본 재료로 한 것	0.0%	E0
3812103000	티우람 술파이드를 기본 재료로 한 것	0.0%	E0
3812104000	헥사메틸렌테트라민을 기본 재료로 한 것	0.0%	E0
3812105000	머캐프토 벤조티아졸을 기본 재료로 한 것	0.0%	E0
3812106000	디벤조티아질 디술파이드(DM)를 기본 재료로 한 것	0.0%	E0
3812109000	기타	0.0%	E0
3812200000	고무용·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	5.0%	E0
3812310000	2,2,4-트리메틸-1,2-디히드로퀴놀린 올리고머(티엠큐)의 혼합물	0.0%	E0
3812391000	산화방지 조제품	0.0%	E0
3812392000	그 밖의 복합안정제	0.0%	E0
3813001000	소화기용 조제품	0.0%	E0
3813002000	소화기용 장전물	0.0%	E0
3813003000	장전된 소화탄	0.0%	E0
3814001010	아세톤·초산메틸과 메틸알코올 혼합물	0.0%	E0
3814001020	초산에틸·부틸알코올과 톨루엔 혼합물	0.0%	E0
3814001090	기타	0.0%	E0
3814002110	반도체 제조용	0.0%	E0
3814002190	기타	0.0%	E0
3814002900	기타	0.0%	E0
3815110000	활성물질로서 니켈이나 니켈화합물의 것	0.0%	E0
3815121000	백금이나 백금화합물의 것	0.0%	E0
3815122000	팔라듐이나 팔라듐화합물의 것	0.0%	E0
3815129000	기타	0.0%	E0
3815191000	활성물질로서 철이나 철화합물의 것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3815192000	티타늄이나 티타늄화합물의 것	0.0%	E0
3815199000	기타	0.0%	E0
3815901000	반응시작제	0.0%	E0
3815909000	기타	0.0%	E0
3816001000	내화시멘트	0.0%	E0
3816002000	내화모르타르	0.0%	E0
3816003000	내화콘크리트	0.0%	E0
3816009000	기타	0.0%	E0
3817000000	혼합알킬벤젠과 혼합알킬나프탈렌(제 2707 호・제 2902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0.0%	E0
3818001000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doped) 화학원소	0.0%	E0
3818002010	태양전지 제조용 웨이퍼	0.0%	E0
3818002090	기타	0.0%	E0
3819001000	유압제동액	0.0%	E0
3819002000	그 밖의 조제 유압전동액	0.0%	E0
3820001000	부동(不凍) 조제품	0.0%	E0
3820002000	조제 제빙액	0.0%	E0
3821000000	미생물(바이러스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식물・인간・동물 세포의 성장이나 보존을 위한 조제 배양제	0.0%	E0
3822001011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 시트(sheet), 필름, 박(箔)과 스트립(strip)의 것	0.0%	E0
3822001012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0.0%	E0
3822001013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 섬유의 웹(web)[제 48 류의 주 제 8 호의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0.0%	E0
3822001014	리트머스 시험지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험지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3822001019	기타	0.0%	E0
3822001020	조제된 것(뒷편을 보강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3822001091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 시트(sheet), 필름, 박(箔)과 스트립(strip)의 것	0.0%	E0
3822001092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0.0%	E0
3822001093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 섬유의 웹(web)[제 48 류의 주 제 8 호의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0.0%	E0
3822001099	기타	0.0%	E0
3822002011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 시트(sheet), 필름, 박(箔)과 스트립(strip)의 것	0.0%	E0
3822002012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0.0%	E0
3822002013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 섬유의 웹(web)[제 48 류의 주 제 8 호의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0.0%	E0
3822002014	리트머스 시험지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험지	0.0%	E0
3822002019	기타	0.0%	E0
3822002020	조제된 것(뒷편을 보강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3822002091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 시트(sheet), 필름, 박(箔)과 스트립(strip)의 것	0.0%	E0
3822002092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0.0%	E0
3822002093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 섬유의 웹(web)[제 48 류의 주 제 8 호의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0.0%	E0
3822002099	기타	0.0%	E0
3822003041	이 표에서 세율이 무세인 것	0.0%	E0
3822003042	이 표에서 세율이 1 퍼센트인 것	0.0%	E0
3822003043	이 표에서 세율이 2 퍼센트인 것	0.0%	E0
3822003044	이 표에서 세율이 3 퍼센트인 것	0.0%	E0
3822003045	이 표에서 세율이 4 퍼센트인 것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3822003046	이 표에서 세율이 5 퍼센트인 것	0.0%	E0
3822003047	이 표에서 세율이 5.4 퍼센트인 것	0.0%	E0
3822003048	이 표에서 세율이 6.5 퍼센트인 것	0.0%	E0
3822003049	이 표에서 세율이 7 퍼센트인 것	0.0%	E0
3822003050	이 표에서 세율이 8 퍼센트인 것	0.0%	E0
3822003051	이 표에서 세율이 10 퍼센트인 것	0.0%	E0
3822003052	이 표에서 세율이 20 퍼센트인 것	0.0%	E0
3822003053	이 표에서 세율이 27 퍼센트인 것	0.0%	E0
3822003054	이 표에서 세율이 30 퍼센트인 것	0.0%	E0
3822003055	이 표에서 세율이 36 퍼센트인 것	0.0%	E0
3822003056	이 표에서 세율이 40 퍼센트인 것	0.0%	E0
3822003057	이 표에서 세율이 50 퍼센트인 것	0.0%	E0
3822003058	제 3706.10.1000 호, 제 3706.10.5020 호, 제 3706.90.6020 호의 것	0.0%	E0
3822003059	제 3706.10.2000 호, 제 3706.90.2000 호의 것	0.0%	E0
3822003060	제 3706.10.3010 호, 제 3706.10.4000 호, 제 3706.90.3010 호, 제 3706.90.4000 호의 것	0.0%	E0
3822003061	제 3706.10.3020 호, 제 3706.90.3020 호의 것	0.0%	E0
3822003062	제 3706.10.3030 호, 제 3706.90.3030 호의 것	0.0%	E0
3822003063	제 3706.10.5010 호, 제 3706.90.6010 호의 것	0.0%	E0
3822003064	제 3706.10.6010 호의 것	0.0%	E0
3822003065	제 3706.10.6020 호의 것	0.0%	E0
3822003066	제 3706.90.1000 호, 제 3706.90.5020 호의 것	0.0%	E0
3822003067	제 3706.90.5010 호의 것	0.0%	E0
3823110000	스테아린산	5.0%	E10
3823120000	올레인산	0.0%	E0
3823130000	톨유(tall oil) 지방산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3823191000	팔미틴산	0.0%	E0
3823192000	유지를 정제할 때 생긴 애시드유(acid oil)	5.0%	E3
3823199000	기타	0.0%	E0
3823701000	세틸 알코올	0.0%	E0
3823702000	스테아릴 알코올	0.0%	E0
3823703000	올레일 알코올	0.0%	E0
3823704000	라우릴 알코올	3.0%	E3
382370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3823709090	기타	0.0%	E0
3824100000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0.0%	E0
3824300000	응집하지 않은 금속탄화물(상호 혼합되거나 금속점결제와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3824400000	시멘트용·모르타르용·콘크리트용 조제 첨가제	0.0%	E0
3824500000	비내화성 모르타르와 비내화성 콘크리트	0.0%	E0
3824600000	소르비톨(sorbitol)(소호 제 2905.44 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0.0%	E0
3824711000	트리클로로트리플루오르에탄을 기본 재료로 한 세정제	0.0%	E0
3824719000	기타	0.0%	E0
3824720000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브로모트리플루오르메탄, 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르에탄을 함유하는 것	0.0%	E0
3824730000	수소브로모플루오르카본(HBFCs)을 함유하는 것	0.0%	E0
3824740000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하는 것[과불화탄소(PFCs), 수소불화탄소(HFCs)를 함유한 것인지는 상관없으며 염화불화탄소(CFCs)를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3824750000	사염화탄소를 함유하는 것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3824760000	1,1,1-삼염화에탄(메틸 클로로포름)을 함유하는 것	0.0%	E0
3824770000	브로모메탄(브롬화메틸), 브로모클로로메탄을 함유하는 것	0.0%	E0
3824780000	과불화탄소(PFCs), 수소불화탄소(HFCs)를 함유하는 것[염화불화탄소(CFCs)나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하지 않은 것]	0.0%	E0
3824790000	기타	0.0%	E0
3824810000	옥시란(산화에틸렌)을 함유한 것	0.0%	E0
3824820000	폴리염소화 비페닐 (PCBs), 폴리염소화 테르페닐(PCTs), 폴리브롬화 비페닐(PBBs)을 함유한 것	0.0%	E0
3824830000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를 함유한 것	0.0%	E0
3824840000	앨드린(ISO), 캄페클로(ISO)(톡사핀), 클로단(ISO), 클로르데콘(ISO), 디디티(ISO)[클로페노탄(INN), 1,1,1-트리클로로-2,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 디엘드린(ISO, INN), 엔도설판(ISO), 엔드린(ISO), 헵타클로르(ISO) 또는 미렉스(ISO)를 함유한 것	0.0%	E0
3824850000	1,2,3,4,5,6-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HCH(ISO)][린데인(ISO, INN)을 포함하는 것]을 함유한 것	0.0%	E0
3824860000	펜타클로로벤젠(ISO) 또는 헥사클로로벤젠(ISO)을 함유한 것	0.0%	E0
3824870000	과불화옥탄 술폰산과 그 염, 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또는 과불화옥탄술포닐 플루오라이드를 함유한 것	0.0%	E0
3824880000	테트라-, 펜타-, 헥사-, 헵타- 또는 옥타브로모디페닐 에테르를 함유한 것	0.0%	E0
3824910000	(5-에틸-2-메틸-2-옥시도-1,3,2-디옥사포스피난-5-일)메틸 메틸 메틸포스포네이트와 비스[(5-에틸-2-메틸-2-옥시도-1,3,2-디옥사포스피난-5-일)메틸] 메틸포스포네이트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과 조제품	0.0%	E0
3824991000	크롬광 배소물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3824992100	진공관의 게터(getter)	0.0%	E0
38249922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3824992290	기타	0.0%	E0
3824992900	기타	0.0%	E0
3824993100	[오-2-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이소프로필)아미노에틸]하이드로젠 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이소프로필)포스포노티오에이트와 이들의 오-알킬(탄소수가 10개 이하로서 사이클로 알킬을 포함한다)에스테르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과 이들의 알킬화나 수소화된 염들로 구성된 혼합물	0.0%	E0
3824993910	하나의 인(燐) 원자가 하나의 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이나 이소프로필 그룹과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더 이상의 탄소 원자와 결합하지 않은 화학품으로 주로 구성된 그 밖의 혼합물	0.0%	E0
3824993990	기타	0.0%	E0
3824994100	혼합 폴리에틸렌글리콜	0.0%	E0
3824994200	이온교환체	0.0%	E0
3824994300	스케일방지제	0.0%	E0
3824994400	바니시(varnish)경화제나 글루(glue)의 경화제	0.0%	E0
3824995100	잉크제거제	0.0%	E0
3824995200	등사판원지 수정제	0.0%	E0
3824995300	수정액	0.0%	E0
3824996100	페인트용 혼합증량제	0.0%	E0
3824996200	특정요업제품 제조용 조제품(의치 등)	0.0%	E0
3824996300	소다석회	0.0%	E0
3824996400	수화실리카겔	0.0%	E0
3824996500	방청제(anti-rust preparation)	0.0%	E0
3824996600	세라믹콘덴서와 페라이트코어 제조용 조제품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3824997100	도금용 조제품	0.0%	E0
3824997200	염화파라핀	0.0%	E0
3824997300	소포제	0.0%	E0
3824997400	발포제	0.0%	E0
3824997500	조제 탄산칼슘	0.0%	E0
3824997600	액정용 조제품	0.0%	E0
3824997700	암모니아성 가스액	0.0%	E0
3824998000	조제유기과산화물(제 3815 호의 물품과 제 3824.99.4400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0.0%	E0
3824999010	미량요소비료(제 31 류의 물품은 제외한다)	0.0%	E0
3824999020	추잉껌 베이스	0.0%	E0
3824999030	나프텐산과 이들의 수불용성염과 이들의 에스테르	0.0%	E0
3824999041	니코틴을 함유한 것	0.0%	E0
3824999049	기타	0.0%	E0
3824999090	기타	0.0%	E0
3825100000	생활폐기물	0.0%	E0
3825200000	하수 찌꺼기	0.0%	E0
3825301000	제 3005 호의 것	0.0%	E0
3825302000	소호 제 3824.84 호부터 제 3824.88 호까지, 제 3824.91 호, 제 3824.99 호의 것	0.0%	E0
3825303000	소호 제 4015.11 호의 것	0.0%	E0
3825304000	소호 제 9018.3 호의 것	0.0%	E0
3825410000	할로겐을 함유하는 것	0.0%	E0
3825490000	기타	0.0%	E0
3825500000	금속세정액, 유압액, 브레이크액, 부동액 폐기물	0.0%	E0
3825610000	주로 유기성분을 함유하는 것	0.0%	E0
3825690000	기타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3825900000	기타	0.0%	E0
3826000000	바이오디젤과 그 혼합물[석유나 역청유(瀝靑油)를 함유하지 않거나 중량기준으로 70 퍼센트 미만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3901101000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	5.0%	E10
3901109000	기타	5.0%	E5
3901201000	펄프의 것	5.0%	E3
3901209000	기타	5.0%	E10
3901300000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	5.0%	E5
3901400000	에틸렌-알파-올레핀 공중합체(비중이 0.94 미만으로 한정한다)	5.0%	E3
3901900000	기타	5.0%	E3
3902100000	폴리프로필렌	5.0%	E3
3902200000	폴리이소부틸렌	0.0%	E0
3902300000	프로필렌 공중합체	0.0%	E0
3902900000	기타	0.0%	E0
3903110000	발포성의 것	0.0%	E0
3903190000	기타	0.0%	E0
3903200000	스티렌-아크릴로니트릴 공중합체(SAN)	0.0%	E0
3903300000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ABS)	0.0%	E0
3903901000	스티렌-부타디엔 공중합체	0.0%	E0
3903909000	기타	5.0%	E3
3904100000	폴리(염화비닐)(다른 물질을 혼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0%	E3
3904210000	가소화하지 않은 것	0.0%	E0
3904220000	가소화한 것	0.0%	E0
3904300000	염화비닐-초산비닐 공중합체	5.0%	E3
3904400000	그 밖의 염화비닐 공중합체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3904500000	염화비닐리덴 중합체	0.0%	E0
3904610000	폴리테트라 플루오르에틸렌	0.0%	E0
3904690000	기타	0.0%	E0
3904900000	기타	0.0%	E0
3905120000	물에 분산된 것	0.0%	E0
3905190000	기타	0.0%	E0
3905210000	물에 분산된 것	0.0%	E0
3905290000	기타	0.0%	E0
3905300000	폴리(비닐알코올)[가수분해되지 않은 초산기(基)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5.0%	E3
3905910000	공중합체(共重合體)	0.0%	E0
3905990000	기타	0.0%	E0
3906100000	폴리(메틸 메타크리레이트)	5.0%	E3
3906901000	폴리아크릴아미드	0.0%	E0
3906909000	기타	5.0%	E3
3907100000	폴리아세탈수지	0.0%	E0
3907201000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 글리콜)	0.0%	E0
3907202000	폴리옥시프로필렌(폴리프로필렌 글리콜)	5.0%	E3
3907203000	폴리페닐렌 옥사이드	0.0%	E0
3907209000	기타	0.0%	E0
3907301000	반도체 제조용	0.0%	E0
3907309000	기타	0.0%	E0
3907400000	폴리카보네이트	5.0%	E3
3907500000	알키드수지	0.0%	E0
3907610000	점도번호가 그램당 78 밀리리터 이상인 것	0.0%	E0
3907690000	기타	0.0%	E0
3907700000	폴리(락트산)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3907910000	불포화의 것	0.0%	E0
3907991000	폴리부틸렌 테레프탈레이트	0.0%	E0
3907992000	열가소성의 액정 방향족 폴리에스테르 공중합체	0.0%	E0
3907999000	기타	0.0%	E0
3908101000	폴리아미드 -6	0.0%	E0
3908102000	폴리아미드 -6,6	5.0%	E3
3908103000	폴리아미드 -11, -12, -6,9, -6,10 또는 -6,12	5.0%	E3
3908900000	기타	5.0%	E3
3909101000	요소수지	0.0%	E0
3909102000	티오요소수지	0.0%	E0
3909200000	멜라민수지	0.0%	E0
3909310000	폴리(메틸렌 페닐 이소시아네이트)(크루드 엠디아이, 중합 엠디아이)	0.0%	E0
3909390000	기타	0.0%	E0
3909400000	페놀수지	0.0%	E0
3909500000	폴리우레탄	0.0%	E0
3910001000	반도체 제조용	0.0%	E0
3910009010	실리콘오일	0.0%	E0
3910009020	실리콘고무	0.0%	E0
3910009090	기타	0.0%	E0
3911101000	석유수지	0.0%	E0
3911102000	쿠마론・인덴이나 쿠마론-인덴수지	0.0%	E0
3911103000	폴리테르펜	0.0%	E0
3911901000	폴리술파이드	0.0%	E0
3911902000	폴리술폰	0.0%	E0
3911903000	푸란수지	0.0%	E0
3911909000	기타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3912110000	가소화하지 않은 것	0.0%	E0
3912120000	가소화한 것	0.0%	E0
3912200000	질산셀룰로오스(콜로디온을 포함한다)	0.0%	E0
3912311000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 나트륨	0.0%	E0
3912319000	기타	0.0%	E0
3912391000	메틸셀룰로오스	0.0%	E0
3912399000	기타	0.0%	E0
3912901000	재생 셀룰로오스	0.0%	E0
3912909000	기타	0.0%	E0
3913101000	알긴산 나트륨	0.0%	E0
3913102000	알긴산 프로필렌 글리콜	0.0%	E0
3913109000	기타	0.0%	E0
3913901000	경화단백질	0.0%	E0
3913902010	염화고무	0.0%	E0
3913902040	환화고무	0.0%	E0
3913902090	기타	0.0%	E0
3913909010	덱스트란	0.0%	E0
3913909090	기타	0.0%	E0
3914001000	양이온성의 것	0.0%	E0
3914009000	기타	0.0%	E0
3915101000	제조 당시 필름·시트(sheet)·판·박(箔) 상태의 것	0.0%	E0
3915102000	제조 당시 파이프·호스 상태의 것	0.0%	E0
3915109000	기타	0.0%	E0
3915200000	스티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0.0%	E0
391530000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0.0%	E0
3915901000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3915902000	아크릴 중합체로 만든 것	0.0%	E0
3915903000	폴리아세탈수지로 만든 것	0.0%	E0
3915904000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것	0.0%	E0
3915905000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0.0%	E0
3915909000	기타	0.0%	E0
391610000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0.0%	E0
391620000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0.0%	E0
3916901000	스티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0.0%	E0
3916902000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0.0%	E0
3916903000	아크릴 중합체로 만든 것	0.0%	E0
3916904000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0.0%	E0
3916909000	기타	0.0%	E0
3917101000	경화 단백질로 만든 것	0.0%	E0
3917102000	셀룰로오스 물질로 만든 것	0.0%	E0
391721000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0.0%	E0
3917220000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0.0%	E0
391723000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0.0%	E0
3917291000	스티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0.0%	E0
3917292000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0.0%	E0
3917299000	기타	0.0%	E0
391731100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0.0%	E0
391731200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0.0%	E0
3917319000	기타	0.0%	E0
391732100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0.0%	E0
391732200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0.0%	E0
3917329000	기타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391733100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0.0%	E0
391733200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0.0%	E0
3917339000	기타	0.0%	E0
391739100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0.0%	E0
391739200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0.0%	E0
3917399000	기타	0.0%	E0
3917400000	연결구류	0.0%	E0
3918101000	폴리염화비닐로 만든 것	0.0%	E0
3918102000	염화비닐과 초산비닐의 공중합체로 만든 것	0.0%	E0
3918109000	기타	0.0%	E0
3918900000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0.0%	E0
3919100000	롤 모양인 것(폭이 20 센티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0.0%	E0
3919900000	기타	0.0%	E0
392010000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0.0%	E0
3920200000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0.0%	E0
3920300000	스티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0.0%	E0
3920430000	전 중량의 100 분의 6 이상의 가소제를 함유하는 것	0.0%	E0
3920490000	기타	0.0%	E0
3920510000	폴리(메틸메타크리레이트)로 만든 것	0.0%	E0
3920590000	기타	0.0%	E0
3920610000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것	0.0%	E0
3920620000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	0.0%	E0
3920630000	불포화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0.0%	E0
3920690000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0.0%	E0
3920710000	재생 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0.0%	E0
3920730000	초산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3920791000	벌커나이즈드 파이버의 것	0.0%	E0
3920799000	기타	0.0%	E0
3920910000	폴리(비닐 부티랄)로 만든 것	0.0%	E0
3920920000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0.0%	E0
3920930000	아미노수지로 만든 것	0.0%	E0
3920940000	페놀수지로 만든 것	0.0%	E0
3920991000	항공기용	0.0%	E0
3920999010	폴리이미드 필름(리드프레임의 기능을 하는 인쇄회로기판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0%	E0
3920999090	기타	0.0%	E0
3921110000	스티렌 중합체로 만든 것	0.0%	E0
3921120000	염화비닐 중합체로 만든 것	0.0%	E0
3921130000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	0.0%	E0
3921140000	재생 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0.0%	E0
3921191010	격리막(이차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0%	E0
3921191090	기타	0.0%	E0
3921192010	격리막(이차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0%	E0
3921192090	기타	0.0%	E0
3921193010	폴리메틸메타클레이트로 만든 것	0.0%	E0
3921193090	기타	0.0%	E0
3921194010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것	0.0%	E0
3921194020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	0.0%	E0
3921194030	불포화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0.0%	E0
3921194090	기타	0.0%	E0
3921195010	벌커나이즈드 파이버로 만든 것	0.0%	E0
3921195020	초산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0.0%	E0
3921195090	기타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3921199010	폴리비닐 부티랄로 만든 것	0.0%	E0
3921199020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0.0%	E0
3921199030	아미노수지로 만든 것	0.0%	E0
3921199040	페놀수지로 만든 것	0.0%	E0
3921199090	기타	0.0%	E0
392190100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0.0%	E0
3921902000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0.0%	E0
3921903000	스티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0.0%	E0
3921904010	경질의 것	0.0%	E0
3921904020	연질의 것	0.0%	E0
3921905010	폴리메틸메타클레이트로 만든 것	0.0%	E0
3921905090	기타	0.0%	E0
3921906010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것	0.0%	E0
3921906020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	0.0%	E0
3921906030	불포화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0.0%	E0
3921906090	기타	0.0%	E0
3921907010	재생 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0.0%	E0
3921907020	벌커나이즈드 파이버로 만든 것	0.0%	E0
3921907030	초산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0.0%	E0
3921907090	기타	0.0%	E0
3921909010	폴리비닐 부티랄로 만든 것	0.0%	E0
3921909020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0.0%	E0
3921909030	아미노수지로 만든 것	0.0%	E0
3921909040	페놀수지로 만든 것	0.0%	E0
3921909050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	0.0%	E0
3921909090	기타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3922101000	목욕통과 샤워통	0.0%	E0
3922102000	세면대	0.0%	E0
3922103000	설거지통	0.0%	E0
3922200000	변기용 시트(seat)와 커버	0.0%	E0
3922901000	비데	0.0%	E0
3922909000	기타	0.0%	E0
3923100000	상자・케이스・바구니와 이와 유사한 물품	0.0%	E0
3923210000	에틸렌 중합체로 만든 것	0.0%	E0
3923290000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0.0%	E0
3923300000	카보이(carboy)・병・플라스크(flask)와 이와 유사한 물품	0.0%	E0
3923400000	스풀(spool)・콥(cop)・보빈(bobbin)과 이와 유사한 물품	0.0%	E0
3923500000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0.0%	E0
3923900000	기타	0.0%	E0
3924100000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0.0%	E0
3924901000	비누접시와 통	0.0%	E0
3924902000	탁상보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0.0%	E0
3924909000	기타	0.0%	E0
3925100000	저장기・탱크・배트(vat)와 이와 유사한 용기(용량이 300 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3925200000	문・창과 이들의 틀과 문지방	0.0%	E0
3925300000	셔터・블라인드[베네치안 블라인드(venetian blind)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이들의 부분품	0.0%	E0
3925900000	기타	0.0%	E0
3926101000	필통과 지우개	0.0%	E0
3926102000	바인더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3926109000	기타	0.0%	E0
3926200000	의류와 의류 부속품(장갑, 벙어리장갑을 포함한다)	0.0%	E0
3926300000	가구・차체(coachwork)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	0.0%	E0
3926400000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용품	0.0%	E0
3926901000	기계용의 부분품	0.0%	E0
3926902000	부채・핸드스크린(기계식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의 살・자루(살・자루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0.0%	E0
3926903000	레이블과 태그	0.0%	E0
3926904000	케이스를 갖춘 접착테이프	0.0%	E0
3926905000	그림틀・사진틀・거울틀과 이와 유사한 틀	0.0%	E0
3926906000	앨범	0.0%	E0
3926909000	기타	0.0%	E0
4001100000	천연고무의 라텍스[프리-벌커나이즈된(pre-vulcanised) 것인지에 상관없다]	0.0%	E0
4001210000	스모크드 시트(smoked sheet)	0.0%	E0
4001220000	공업 규격화된 천연고무(TSNR)	0.0%	E0
4001290000	기타	0.0%	E0
4001301000	치클검(chicle gum)	0.0%	E0
4001309000	기타	0.0%	E0
4002110000	라텍스	0.0%	E0
4002190000	기타	0.0%	E0
4002201000	라텍스	0.0%	E0
4002209000	기타	0.0%	E0
4002311000	라텍스	0.0%	E0
4002319000	기타	0.0%	E0
4002391000	라텍스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4002399010	염화부틸고무(CIIR)의 것	0.0%	E0
4002399020	브롬화 부틸고무(BIIR)의 것	0.0%	E0
4002410000	라텍스	0.0%	E0
4002490000	기타	0.0%	E0
4002510000	라텍스	0.0%	E0
4002590000	기타	0.0%	E0
4002601000	라텍스	0.0%	E0
4002609000	기타	0.0%	E0
4002701000	라텍스	0.0%	E0
4002709000	기타	5.0%	E3
4002801000	라텍스	0.0%	E0
4002809000	기타	0.0%	E0
4002910000	라텍스	0.0%	E0
4002991000	카르복시화한 아크릴로니트릴 부타디엔고무(XNBR)의 것	0.0%	E0
4002992000	아크릴로니트릴 이소프렌고무(NIR)의 것	0.0%	E0
4002993000	티오플라스트(TM)	0.0%	E0
4002999000	기타	0.0%	E0
4003000000	재생고무[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0.0%	E0
4004000000	고무의 웨이스트(waste)·페어링(paring)·스크랩(scrap)[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과 이들의 가루와 알갱이	0.0%	E0
4005101000	판·시트(sheet)·스트립	0.0%	E0
4005109000	기타	0.0%	E0
4005200000	용액과 분산액(소호 제 4005.10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4005910000	판・시트(sheet)・스트립	0.0%	E0
4005991000	배합고무 라텍스	0.0%	E0
4005999000	기타	0.0%	E0
4006100000	고무타이어 재생용 “캐멀-백(camel-back)” 스트립	0.0%	E0
4006901000	고무막대(rod)	0.0%	E0
4006902000	고무관	0.0%	E0
4006903000	고무형재(形材)	0.0%	E0
4006904000	고무디스크・링・와셔	0.0%	E0
4006905000	고무실	0.0%	E0
4006909000	기타	0.0%	E0
4007001000	고무실	5.0%	E3
4007002000	고무끈	0.0%	E0
4008111000	보강을 위하여 방직용 직물과 결합된 것	0.0%	E0
4008119000	기타	0.0%	E0
4008191000	보강을 위하여 방직용 직물과 결합된 것	0.0%	E0
4008199000	기타	0.0%	E0
4008211000	보강을 위해서 방직용 직물과 결합된 것	0.0%	E0
4008219000	기타	0.0%	E0
4008291000	보강을 위해서 방직용 직물과 결합된 것	0.0%	E0
4008299000	기타	0.0%	E0
4009110000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것	0.0%	E0
4009120000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0.0%	E0
4009210000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것	0.0%	E0
4009220000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0.0%	E0
4009310000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것	0.0%	E0
4009320000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4009410000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것	0.0%	E0
4009420000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0.0%	E0
4010110000	금속으로만 보강된 것	0.0%	E0
4010120000	방직용 섬유 재료로만 보강된 것	0.0%	E0
4010191000	플라스틱으로만 보강된 것	0.0%	E0
4010199000	기타	0.0%	E0
4010310000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transmission)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 센티미터 초과 180 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파인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4010320000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transmission)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 센티미터 초과 180 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파인 것은 제외한다)	0.0%	E0
4010330000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transmission)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80 센티미터 초과 240 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파인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4010340000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transmission)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80 센티미터 초과 240 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파인 것은 제외한다)	0.0%	E0
4010350000	엔드리스 싱크러너스(endless synchronous) 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 센티미터 초과 150 센티미터 이하인 것	0.0%	E0
4010360000	엔드리스 싱크러너스(endless synchronous) 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50 센티미터 초과 198 센티미터 이하인 것	0.0%	E0
4010390000	기타	0.0%	E0
4011101000	래디알 구조의 것	0.0%	E0
4011102000	바이어스 구조의 것	0.0%	E0
4011109000	기타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4011201010	림의 지름이 49.53 센티미터 미만인 것	0.0%	E0
4011201090	기타	0.0%	E0
4011202010	림의 지름이 49.53 센티미터 미만인 것	0.0%	E0
4011202090	기타	0.0%	E0
4011209000	기타	0.0%	E0
4011300000	항공기용	0.0%	E0
4011400000	모터사이클용	0.0%	E0
4011500000	자전거용	0.0%	E0
4011701000	헤링본(herring-bone)이나 이와 유사한 트레드(tread)가 있는 것	0.0%	E0
4011709000	기타	0.0%	E0
4011801010	림(rim)의 지름이 61 센티미터 이하인 것	0.0%	E0
4011801090	기타	0.0%	E0
4011809010	림(rim)의 지름이 61 센티미터 이하인 것	0.0%	E0
4011809090	기타	0.0%	E0
4011901000	헤링본(herring-bone)이나 이와 유사한 트레드(tread)가 있는 것	0.0%	E0
4011909000	기타	0.0%	E0
4012110000	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자동차용을 포함한다]	0.0%	E0
4012120000	버스용·화물자동차용	0.0%	E0
4012130000	항공기용	0.0%	E0
4012190000	기타	0.0%	E0
4012201000	항공기용	0.0%	E0
4012209010	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자동차용을 포함한다]	0.0%	E0
4012209020	버스용이나 화물차용의 것	0.0%	E0
4012209090	기타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4012901010	솔리드 타이어	0.0%	E0
4012901020	쿠션 타이어	0.0%	E0
4012901030	타이어트래드	0.0%	E0
4012901040	타이어 플랩	0.0%	E0
4012909010	솔리드 타이어	0.0%	E0
4012909020	쿠션 타이어	0.0%	E0
4012909030	타이어트래드	0.0%	E0
4012909040	타이어 플랩	0.0%	E0
4012909090	기타	0.0%	E0
4013101000	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자동차용을 포함한다]	0.0%	E0
4013102000	버스·화물차용	0.0%	E0
4013200000	자전거용	0.0%	E0
4013901000	항공기용	0.0%	E0
4013909010	모터싸이클·모터스쿠터용	0.0%	E0
4013909020	산업용·농경용	0.0%	E0
4013909090	기타	0.0%	E0
4014100000	콘돔	0.0%	E0
4014901000	젖꼭지	0.0%	E0
4014909000	기타	0.0%	E0
4015110000	외과용	0.0%	E0
4015190000	기타	0.0%	E0
4015901000	잠수복	0.0%	E0
4015902000	방사선 방호복	0.0%	E0
4015909000	기타	0.0%	E0
4016100000	셀룰러 고무로 만든 것	0.0%	E0
4016910000	바닥깔개와 매트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4016920000	지우개	0.0%	E0
4016930000	개스킷(gasket)·와셔(washer)·그 밖의 실(seal)	0.0%	E0
4016940000	보트나 도크펜더(dock fender)(팽창성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0.0%	E0
4016951000	공기 매트리스	0.0%	E0
4016952000	베개	0.0%	E0
4016953000	쿠션	0.0%	E0
4016959000	기타	0.0%	E0
4016991010	기구·비행선·비행기계류·글라이더·연과 로토슈트의 부품	0.0%	E0
4016991090	기타	0.0%	E0
4016992000	고무밴드	0.0%	E0
4016993000	병마개	0.0%	E0
4016999000	기타	0.0%	E0
4017001000	경질고무	0.0%	E0
4017002000	경질고무의 제품	0.0%	E0
4101201000	유연처리 하지 않은 원피	0.0%	E0
4101202000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4101501011	카우하이드(cow hide)	0.0%	E0
4101501012	스티어하이드(steer hide)	0.0%	E0
4101501013	옥스하이드(ox hide)	0.0%	E0
4101501014	불하이드(bull hide)	0.0%	E0
4101501019	기타	0.0%	E0
4101501021	카우하이드(cow hide)	0.0%	E0
4101501022	스티어하이드(steer hide)	0.0%	E0
4101501023	옥스하이드(ox hide)	0.0%	E0
4101501024	불하이드(bull hide)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4101501029	기타	0.0%	E0
4101501090	기타	0.0%	E0
4101502000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4101901010	버트(butt)와 벤드(bend)	0.0%	E0
4101901091	송아지의 원피	0.0%	E0
4101901099	기타	0.0%	E0
4101902000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4102100000	털을 제거하지 않은 것	0.0%	E0
4102211000	유연처리 하지 않은 원피	0.0%	E0
4102212000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4102291000	유연처리 하지 않은 원피	0.0%	E0
4102292000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4103201010	뱀의 원피	0.0%	E0
4103201030	악어의 원피	0.0%	E0
4103201090	기타	0.0%	E0
4103202000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4103301000	유연처리 하지 않은 원피	0.0%	E0
4103302000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4103901010	장어류의 원피	0.0%	E0
4103901020	캥거루의 원피	0.0%	E0
4103901030	낙타(단봉낙타를 포함한다)의 원피	0.0%	E0
4103901090	기타	0.0%	E0
4103902000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복귀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4104110000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0.0%	E0
4104190000	기타	0.0%	E0
4104410000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0.0%	E0
4104490000	기타	0.0%	E0
4105100000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0.0%	E0
4105300000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0.0%	E0
4106210000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0.0%	E0
4106220000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0.0%	E0
4106310000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0.0%	E0
4106320000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0.0%	E0
4106400000	파충류의 원피	0.0%	E0
4106910000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0.0%	E0
4106920000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0.0%	E0
4107110000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0.0%	E0
4107120000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0.0%	E0
4107190000	기타	0.0%	E0
4107910000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0.0%	E0
4107920000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0.0%	E0
4107990000	기타	0.0%	E0
4112000000	유연처리·크러스트 처리한 후 그 이상의 가공을 한 면양이나 어린 양의 가죽[파치먼트(parchment) 가공 가죽을 포함한다][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 4114 호의 가죽은 제외한다]	0.0%	E0
4113100000	산양의 가죽	0.0%	E0
4113200000	돼지의 가죽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4113300000	파충류의 가죽	0.0%	E0
4113900000	기타	0.0%	E0
4114100000	샤미가죽(chamois leather)[콤비네이션 샤미가죽(chamois leather)을 포함한다]	0.0%	E0
4114201000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	0.0%	E0
4114202000	적층한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	0.0%	E0
4114203000	메탈라이즈드 레더(metallised leather)	0.0%	E0
4115100000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가죽이나 가죽섬유를 기본 재료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롤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슬래브 모양·시트(sheet) 모양·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0.0%	E0
4115200000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의 페어링(paring)과 그 밖의 웨이스트(waste)(가죽제품의 제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가죽의 더스트(dust)와 가루	0.0%	E0
4201001000	파충류의 가죽으로 만든 것	0.0%	E0
4201009010	안장과 안장용 방석	0.0%	E0
4201009020	고삐줄	0.0%	E0
4201009030	끈	0.0%	E0
4201009040	재갈	0.0%	E0
4201009090	기타	0.0%	E0
4202111010	뱀 가죽으로 만든 것	0.0%	E0
4202111020	도마뱀 가죽으로 만든 것	0.0%	E0
4202111030	악어 가죽으로 만든 것	0.0%	E0
4202111040	장어류의 가죽으로 만든 것	0.0%	E0
4202111050	캉가루 가죽으로 만든 것	0.0%	E0
4202111090	기타	0.0%	E0
4202112000	콤퍼지션 레더로 만든 것	0.0%	E0
4202113000	페이턴트 레더로 만든 것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4202121010	폴리염화비닐로 만든 것	0.0%	E0
4202121020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	0.0%	E0
4202121090	기타	0.0%	E0
4202122000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0.0%	E0
4202191000	판지로 만든 것	0.0%	E0
4202199000	기타	0.0%	E0
4202211010	뱀 가죽으로 만든 것	0.0%	E0
4202211020	도마뱀 가죽으로 만든 것	0.0%	E0
4202211030	악어 가죽으로 만든 것	0.0%	E0
4202211040	장어류의 가죽으로 만든 것	0.0%	E0
4202211050	캉가루 가죽으로 만든 것	0.0%	E0
4202211090	기타	0.0%	E0
4202212000	콤퍼지션 레더로 만든 것	0.0%	E0
4202213000	페이턴트 레더로 만든 것	0.0%	E0
4202221010	폴리염화비닐로 만든 것	0.0%	E0
4202221020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	0.0%	E0
4202221090	기타	0.0%	E0
4202222000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0.0%	E0
4202291000	판지로 만든 것	0.0%	E0
4202299000	기타	0.0%	E0
4202311010	뱀 가죽으로 만든 것	0.0%	E0
4202311020	도마뱀 가죽으로 만든 것	0.0%	E0
4202311030	악어 가죽으로 만든 것	0.0%	E0
4202311040	장어류의 가죽으로 만든 것	0.0%	E0
4202311050	캉가루 가죽으로 만든 것	0.0%	E0
4202311090	기타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4202312000	콤퍼지션 레더로 만든 것	0.0%	E0
4202313000	페이턴트 레더로 만든 것	0.0%	E0
4202321010	폴리염화비닐로 만든 것	0.0%	E0
4202321020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	0.0%	E0
4202321090	기타	0.0%	E0
4202322000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0.0%	E0
4202391000	판지로 만든 것	0.0%	E0
4202399000	기타	0.0%	E0
4202911010	뱀 가죽으로 만든 것	0.0%	E0
4202911020	도마뱀 가죽으로 만든 것	0.0%	E0
4202911030	악어 가죽으로 만든 것	0.0%	E0
4202911040	장어류의 가죽으로 만든 것	0.0%	E0
4202911050	캉가루 가죽으로 만든 것	0.0%	E0
4202911090	기타	0.0%	E0
4202912000	콤퍼지션 레더로 만든 것	0.0%	E0
4202913000	페이턴트 레더로 만든 것	0.0%	E0
4202921010	폴리염화비닐로 만든 것	0.0%	E0
4202921020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	0.0%	E0
4202921090	기타	0.0%	E0
4202922000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0.0%	E0
4202991000	판지로 만든 것	0.0%	E0
4202999000	기타	0.0%	E0
4203101010	코트류	0.0%	E0
4203101020	재킷, 블레이저와 점퍼류	0.0%	E0
4203101050	조끼류	0.0%	E0
4203101060	바지류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4203101070	스커트류	0.0%	E0
4203101080	오버롤류	0.0%	E0
4203101090	기타	0.0%	E0
4203102010	코트류	0.0%	E0
4203102020	재킷, 블레이저와 점퍼류	0.0%	E0
4203102050	조끼류	0.0%	E0
4203102060	바지류	0.0%	E0
4203102070	스커트류	0.0%	E0
4203102080	오버롤류	0.0%	E0
4203102090	기타	0.0%	E0
4203103010	코트류	0.0%	E0
4203103020	재킷, 블레이저와 점퍼류	0.0%	E0
4203103050	조끼류	0.0%	E0
4203103060	바지류	0.0%	E0
4203103070	스커트류	0.0%	E0
4203103080	오버롤류	0.0%	E0
4203103090	기타	0.0%	E0
4203109010	코트류	0.0%	E0
4203109020	재킷, 블레이저와 점퍼류	0.0%	E0
4203109050	조끼류	0.0%	E0
4203109060	바지류	0.0%	E0
4203109070	스커트류	0.0%	E0
4203109080	오버롤류	0.0%	E0
4203109090	기타	0.0%	E0
4203211000	야구장갑	0.0%	E0
4203212000	골프장갑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4203213000	스키장갑	0.0%	E0
4203214000	모터싸이클장갑	0.0%	E0
4203215000	배팅장갑	0.0%	E0
4203216000	테니스장갑	0.0%	E0
4203217000	아이스하키장갑	0.0%	E0
4203219000	기타	0.0%	E0
4203291000	작업용 장갑	0.0%	E0
4203292000	방한용 장갑	0.0%	E0
4203293000	운전용 장갑	0.0%	E0
4203299000	기타	0.0%	E0
4203301010	뱀 가죽으로 만든 것	0.0%	E0
4203301020	도마뱀 가죽으로 만든 것	0.0%	E0
4203301030	악어 가죽으로 만든 것	0.0%	E0
4203301040	장어류의 가죽으로 만든 것	0.0%	E0
4203301090	기타	0.0%	E0
4203309000	기타	0.0%	E0
4203400000	그 밖의 의류 부속품	0.0%	E0
4205001110	벨트	0.0%	E0
4205001190	기타	0.0%	E0
4205001900	그 밖의 가죽제품	0.0%	E0
4205002110	벨트	0.0%	E0
4205002190	기타	0.0%	E0
4205002900	그 밖의 가죽제품과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제품	0.0%	E0
4206001000	캣거트(catgut)	0.0%	E0
4206009000	기타	0.0%	E0
4301100000	밍크의 것(전신인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부분・꼬리 부분・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4301300000	어린 양의 것[아스트라칸(Astrakhan)・브로드테일(Broadtail)・카라쿨(Caracul)・페르시아 어린 양과 이와 유사한 어린 양, 인도・중국・몽고・티베트 어린 양의 것으로서 전신인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꼬리 부분・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0.0%	E0
4301600000	여우의 것(전신인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꼬리 부분・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0.0%	E0
4301802000	오파섬(opossum)의 것	0.0%	E0
4301803000	라쿤(raccoon)의 것	0.0%	E0
4301804000	코요테의 것	0.0%	E0
4301805000	토끼의 것	0.0%	E0
4301806000	사향뒤쥐의 것	0.0%	E0
4301809000	기타	0.0%	E0
4301900000	머리 부분・꼬리 부분・발 부분과 그 밖의 조각이나 절단품으로서 모피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0.0%	E0
4302110000	밍크의 것	0.0%	E0
4302191000	비버(beaver)의 것	0.0%	E0
4302192000	사향뒤쥐의 것	0.0%	E0
4302193000	여우의 것	0.0%	E0
4302195000	친칠라의 것	0.0%	E0
4302196000	오파섬(opossum)의 것	0.0%	E0
4302197000	라쿤(raccoon)의 것	0.0%	E0
4302198000	코요테의 것	0.0%	E0
4302199010	면양의 것	0.0%	E0
4302199020	어린 양의 것[아스트라칸(Astrakhan)・브로드테일(Broadtail)・카라쿨(Caracul)・페르시아와 이와 유사한 어린 양・인도・중국・몽고나 티베트 어린 양의 것으로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한정한다]		
4302199090	기타	0.0%	E0
4302201000	밍크의 것	0.0%	E0
4302202000	토끼의 것	0.0%	E0
4302203000	비버(beaver)의 것	0.0%	E0
4302204000	사향뒤쥐의 것	0.0%	E0
4302205000	여우의 것	0.0%	E0
4302207000	친칠라의 것	0.0%	E0
4302209020	라쿤(raccoon)의 것	0.0%	E0
4302209030	코요테의 것	0.0%	E0
4302209090	기타	0.0%	E0
4302300000	전신 모피와 그 조각이나 절단품(조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4303101100	밍크의 것	0.0%	E0
4303101200	토끼의 것	0.0%	E0
4303101300	어린 양의 것	0.0%	E0
4303101400	비버(beaver)의 것	0.0%	E0
4303101500	사향뒤쥐의 것	0.0%	E0
4303101600	여우의 것	0.0%	E0
4303101800	친칠라의 것	0.0%	E0
4303101910	오파섬(opossum)의 것	0.0%	E0
4303101920	라쿤(raccoon)의 것	0.0%	E0
4303101930	코요테의 것	0.0%	E0
4303101990	기타	0.0%	E0
4303102100	밍크의 것	0.0%	E0
4303102200	토끼의 것	0.0%	E0
4303102300	어린 양의 것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4303102400	비버(beaver)의 것	0.0%	E0
4303102500	사향뒤쥐의 것	0.0%	E0
4303102600	여우의 것	0.0%	E0
4303102800	친칠라의 것	0.0%	E0
4303102920	라쿤(raccoon)의 것	0.0%	E0
4303102930	코요테의 것	0.0%	E0
4303102990	기타	0.0%	E0
4303900000	기타	0.0%	E0
4304001000	인조모피	0.0%	E0
4304002000	인조모피의 제품	0.0%	E0
4401110000	침엽수류	0.0%	E0
4401120000	활엽수류	0.0%	E0
4401210000	침엽수류	0.0%	E0
4401221000	펄프 제조용	0.0%	E0
4401229000	기타	0.0%	E0
4401310000	목재 펠릿(pellet)	0.0%	E0
4401390000	기타	0.0%	E0
4401400000	톱밥, 목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응결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4402101000	성형 목탄	0.0%	E0
4402109000	기타	0.0%	E0
4402901000	성형 목탄	0.0%	E0
4402909000	기타	0.0%	E0
4403110000	침엽수류	0.0%	E0
4403121000	열대산 목재	0.0%	E0
4403129000	기타	0.0%	E0
4403211000	적송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4403212000	라디에타소나무(radiata pine)	0.0%	E0
4403219000	기타	0.0%	E0
4403221000	적송	0.0%	E0
4403222000	라디에타소나무(radiata pine)	0.0%	E0
4403229000	기타	0.0%	E0
4403231000	전나무[아비에스(Abies)종]	0.0%	E0
4403232000	가문비나무[피세아(Picea)종]	0.0%	E0
4403241000	전나무[아비에스(Abies)종]	0.0%	E0
4403242000	가문비나무[피세아(Picea)종]	0.0%	E0
4403251000	삼나무	0.0%	E0
4403252000	미송	0.0%	E0
4403253000	낙엽송	0.0%	E0
4403254000	전나무류[아비에스(Abies)종을 제외한다]	0.0%	E0
4403259000	기타	0.0%	E0
4403261000	삼나무	0.0%	E0
4403262000	미송	0.0%	E0
4403263000	낙엽송	0.0%	E0
4403264000	전나무류[아비에스(Abies)종을 제외한다]	0.0%	E0
4403269000	기타	0.0%	E0
4403410000	다크레드메란티(Dark Red Meranti)·라이트레드메란티(Light Red Meranti)·메란티바카우(Meranti Bakau)	0.0%	E0
4403491000	화이트라왕(White Lauan)·화이트메란티(White Meranti)·화이트세라야(White Seraya)·옐로메란티(Yellow Meranti)·아란(Alan)	0.0%	E0
4403492000	케루잉(Keruing)·라민(Ramin)·카풀(Kapur)·티크(Teak)·종콩(Jongkong)·멜바우(Merbau)·제루통(Jelutong)·켐파스(Kempas)	0.0%	E0
4403493000	오꾸메(Okoumé)·오베체(Obeche)·사팰리(Sapelli)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시포(Sipo)・아까주다푸리케(Acajou d'Afrique)・마코레(Makoré)・이로코(Iroko)		
4403494000	티아마(Tiama)・만소니아(Mansonia)・이롬바(Ilomba)・디베토우(Dibétou)・림바(Limba)・아조베(Azobé)	0.0%	E0
4403495000	마호가니(Mahogany)와 발사(Balsa)	0.0%	E0
4403499000	기타	0.0%	E0
4403910000	참나무[코커스(Quercus)종]	0.0%	E0
4403930000	너도밤나무[파구스(Fagus)종]의 것(모든 횡단면의 치수가 15 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4403940000	너도밤나무[파구스(Fagus)종]의 것(그 밖의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4403950000	자작나무[베툴라(Betula)종]의 것(모든 횡단면의 치수가 15 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4403960000	자작나무[베툴라(Betula)종]의 것(그 밖의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4403971000	포플러	0.0%	E0
4403972000	사시나무	0.0%	E0
4403980000	유칼립투스[유칼립투스(Eucalyptus)종]의 것	0.0%	E0
4403991010	자단(rosewood)	0.0%	E0
4403991020	흑단(ebony wood)	0.0%	E0
4403991040	물푸레나무	0.0%	E0
4403991050	호두나무	0.0%	E0
4403991090	기타	0.0%	E0
4403992000	리그넘 바이티(Lignum vitae)	0.0%	E0
4403993030	단풍나무	0.0%	E0
4403993040	느릅나무	0.0%	E0
4403993060	피나무	0.0%	E0
4403994000	오동나무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4403999000	기타	0.0%	E0
4404100000	침엽수류	0.0%	E0
4404200000	활엽수류	0.0%	E0
4405000000	목모(wood wool)와 목분(wood flour)	0.0%	E0
4406110000	침엽수류	0.0%	E0
4406120000	활엽수류	0.0%	E0
4406910000	침엽수류	0.0%	E0
4406920000	활엽수류	0.0%	E0
4407111000	적송	5.0%	EX
4407112000	라디에타소나무(radiata pine)	5.0%	EX
4407119000	기타	5.0%	EX
4407121000	전나무[아비에스(Abies)종]	5.0%	SS
4407122000	가문비나무[피세아(Picea)종]	5.0%	E10
4407191000	삼나무	5.0%	E10
4407192010	더글러스퍼(Douglas fir)	5.0%	E10
4407192020	헴록(hemlock)	5.0%	E10
4407192090	기타	5.0%	E10
4407193000	전나무류[아비에스(Abies)종을 제외한다]	5.0%	E10
4407194000	낙엽송	5.0%	E10
4407195000	편백나무	5.0%	E10
4407199000	기타	5.0%	E10
4407210000	마호가니(Mahogany)[스웨테니아(Swietenia)종]	5.0%	E10
4407220000	비롤라(Virola)·임부아(Imbua)·발사(Balsa)	5.0%	E10
4407250000	다크레드메란티(Dark Red Meranti)·라이트레드메란티(Light Red Meranti)·메란티바카우(Meranti Bakau)	5.0%	E10
4407260000	화이트라왕(White Lauan)·화이트메란티(White Meranti)·화이트세라야(White	5.0%	E7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Seraya)・옐로메란티(Yellow Meranti)・아란(Alan)		
4407270000	사팰리(Sapelli)	5.0%	E10
4407280000	이로코(Iroko)	5.0%	E10
4407291000	케루잉(Keruing)・라민(Ramin)・카풀(Kapur)・종콩(Jongkong)・멜바우(Merbau)・제루통(Jelutong)・켐파스(Kempas)	5.0%	E10
4407292000	티크(Teak)	5.0%	E10
4407293000	오꾸메(Okoumé)・오베체(Obeche)・시포(Sipo)・아까주다푸리케(Acajou d'Afrique)・마꼬레(Makoré)・티아마(Tiama)・만소니아(Mansonia)・이롬바(Ilomba)・디베토우(Dibétou)・림바(Limba)・아조베(Azobé)	5.0%	E10
4407299000	기타	5.0%	EX
4407910000	참나무[코커스(Quercus)종]	5.0%	E10
4407920000	너도밤나무[파구스(Fagus)종]	5.0%	E10
4407930000	단풍나무[아세르(Acer)종]	5.0%	E10
4407940000	체리나무[프루누스(Prunus)종]	5.0%	E10
4407950000	물푸레나무[프라시너스(Fraxinus)종]	5.0%	E10
4407960000	자작나무[베툴라(Betula)종]의 것	5.0%	E10
4407971000	포플러	5.0%	E10
4407972000	사시나무	5.0%	E10
4407991010	자단(rosewood)	5.0%	E7
4407991020	흑단(ebony wood)	5.0%	E10
4407991040	호두나무	5.0%	E10
4407991090	기타	5.0%	E10
4407992000	리그넘 바이티(Lignum vitae)	5.0%	E10
4407993040	느릅나무	5.0%	E10
4407993060	피나무	5.0%	E10
4407994000	오동나무	5.0%	E1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4407999000	기타	5.0%	EX
4408106000	적층 목재를 평삭(平削)한 베니어용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용	0.0%	E0
4408109100	합판 제조용	0.0%	E0
4408109200	무늬목	0.0%	E0
4408109910	삼나무	0.0%	E0
4408109920	미송	0.0%	E0
4408109950	낙엽송	0.0%	E0
4408109960	가문비나무	0.0%	E0
4408109990	기타	0.0%	E0
4408313000	적층 목재를 평삭(平削)한 베니어용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용	0.0%	E0
4408319011	합판 제조용	0.0%	E0
4408319012	무늬목	0.0%	E0
4408319019	기타	0.0%	E0
4408319021	합판 제조용	0.0%	E0
4408319022	무늬목	0.0%	E0
4408319029	기타	0.0%	E0
4408396000	적층 목재를 평삭(平削)한 베니어용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용	0.0%	E0
4408399011	합판 제조용	0.0%	E0
4408399012	무늬목	0.0%	E0
4408399019	기타	0.0%	E0
4408399021	합판 제조용	0.0%	E0
4408399022	무늬목	0.0%	E0
4408399029	기타	0.0%	E0
4408399031	합판 제조용	0.0%	E0
4408399032	무늬목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4408399039	기타	0.0%	E0
4408399041	합판 제조용	0.0%	E0
4408399042	무늬목	0.0%	E0
4408399049	기타	0.0%	E0
4408399051	합판 제조용	0.0%	E0
4408399052	무늬목	0.0%	E0
4408399059	기타	0.0%	E0
4408399091	합판 제조용	0.0%	E0
4408399092	무늬목	0.0%	E0
4408399099	기타	0.0%	E0
4408901000	적층 목재를 평삭(平削)한 베니어용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용	0.0%	E0
4408909150	합판 제조용	0.0%	E0
4408909160	무늬목	0.0%	E0
4408909191	자단(Rosewood)	0.0%	E0
4408909192	흑단(Ebony wood)	0.0%	E0
4408909193	물푸레나무	0.0%	E0
4408909194	호두나무	0.0%	E0
4408909195	참나무	0.0%	E0
4408909199	기타	0.0%	E0
4408909210	합판 제조용	0.0%	E0
4408909220	무늬목	0.0%	E0
4408909290	기타	0.0%	E0
4408909370	합판 제조용	0.0%	E0
4408909380	무늬목	0.0%	E0
4408909391	사시나무	0.0%	E0
4408909392	포플러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4408909393	단풍나무	0.0%	E0
4408909394	느릅나무	0.0%	E0
4408909395	자작나무	0.0%	E0
4408909396	피나무	0.0%	E0
4408909410	합판 제조용	0.0%	E0
4408909420	무늬목	0.0%	E0
4408909490	기타	0.0%	E0
4408909910	합판 제조용	0.0%	E0
4408909920	무늬목	0.0%	E0
4408909990	기타	0.0%	E0
4409101000	사이딩(Siding)	0.0%	E0
4409102000	플로어링(Flooring)	0.0%	E0
4409109000	기타	0.0%	E0
4409210000	대나무로 만든 것	0.0%	E0
4409221000	사이딩(Siding)	0.0%	E0
4409222000	플로어링(Flooring)	0.0%	E0
4409229000	기타	0.0%	E0
4409291000	사이딩(Siding)	0.0%	E0
4409292000	플로어링(Flooring)	0.0%	E0
4409299000	기타	0.0%	E0
4410111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연마가공 이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	6.4%	EX
4410112000	멜라민을 침투한 종이로 표면을 피복한 것	5.0%	EX
4410113000	장식용 플라스틱라미네이트로 표면을 피복한 것	5.0%	EX
4410119000	기타	5.0%	E10
4410121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연마가공 이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4410129000	기타	0.0%	E0
441019101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연마가공 이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	0.0%	E0
4410191090	기타	0.0%	E0
4410199020	멜라민을 침투한 종이로 표면을 피복한 것	5.0%	E10
4410199030	장식용 플라스틱라미네이트로 표면을 피복한 것	5.0%	E10
4410199090	기타	5.0% / 6.4%	E10
4410900000	기타	5.0%	E10
4411121000	기계적 가공과 표면 피복을 모두 하지 않은 것	5.0% / 6.4% / 8.0%	EX
4411129000	기타	0.0% / 5.0%	E10
4411131000	기계적 가공과 표면 피복을 모두 하지 않은 것	5.0% / 6.4% / 8.0%	EX
4411139000	기타	0.0% / 5.0%	EX
4411141000	기계적 가공과 표면 피복을 모두 하지 않은 것	5.0% / 6.4% / 8.0%	EX
4411149010	마루판	0.0% / 5.0% / 6.4%	EX
4411149090	기타	0.0% / 5.0%	EX
4411921000	기계적 가공과 표면 피복을 모두 하지 않은 것	6.4%	EX
4411929010	마루판	0.0% / 6.4%	EX
4411929090	기타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4411931000	기계적 가공과 표면 피복을 모두 하지 않은 것	8.0%	EX
4411939010	마루판	5.0% / 6.4%	EX
4411939090	기타	5.0%	E10
4411941000	기계적 가공과 표면 피복을 모두 하지 않은 것	0.0% / 5.0%	E10
4411949000	기타	0.0%	E0
4412101010	두께가 6밀리미터 미만인 것	5.0%	E10
4412101020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5.0% / 8.0%	E10
4412102000	마루판	8.0%	E10
4412109010	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5.0%	E10
4412109090	기타	5.0%	E10
4412311000	두께가 3.2밀리미터 미만인 것	5.0%	E10
4412312010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이류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	5.0%	E10
4412312090	기타	5.0%	E10
4412313000	두께가 4밀리미터 이상 6밀리미터 미만인 것	5.0%	EX
4412314011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이류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	8.0%	EX
4412314019	기타	5.0%	EX
4412314021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이류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	10.0%	EX
4412314029	기타	5.0%	EX
4412315010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이류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	10.0%	EX
4412315090	기타	5.0%	EX
4412316010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이류의 국내주	10.0%	EX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제 1 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		
4412316090	기타	5.0%	EX
4412317010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이류의 국내주 제 1 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	5.0%	EX
4412317090	기타	5.0%	EX
4412331000	두께가 3.2 밀리미터 미만인 것	5.0%	E10
4412332000	두께가 3.2 밀리미터 이상 4 밀리미터 미만인 것	5.0%	E10
4412333000	두께가 4 밀리미터 이상 6 밀리미터 미만인 것	5.0%	EX
4412334010	두께가 6 밀리미터 이상 8 밀리미터 미만인 것	5.0%	EX
4412334020	두께가 8 밀리미터 이상 10 밀리미터 미만인 것	5.0%	EX
4412335000	두께가 10 밀리미터 이상 12 밀리미터 미만인 것	5.0%	EX
4412336000	두께가 12 밀리미터 이상 15 밀리미터 미만인 것	5.0%	EX
4412337000	두께가 15 밀리미터 이상인 것	5.0%	EX
4412341000	두께가 3.2 밀리미터 미만인 것	5.0%	E10
4412342000	두께가 3.2 밀리미터 이상 4 밀리미터 미만인 것	5.0%	E10
4412343000	두께가 4 밀리미터 이상 6 밀리미터 미만인 것	5.0%	EX
4412344010	두께가 6 밀리미터 이상 8 밀리미터 미만인 것	5.0%	EX
4412344020	두께가 8 밀리미터 이상 10 밀리미터 미만인 것	5.0%	EX
4412345000	두께가 10 밀리미터 이상 12 밀리미터 미만인 것	5.0%	EX
4412346000	두께가 12 밀리미터 이상 15 밀리미터 미만인 것	5.0%	EX
4412347000	두께가 15 밀리미터 이상인 것	5.0%	EX
4412391000	두께가 6 밀리미터 미만인 것	5.0%	EX
4412399000	기타	5.0%	EX
4412941000	블록보드(blockboard)	5.0% / 8.0%	E10
4412942000	라민보드(laminboard)	5.0% / 8.0%	E10
4412943000	배튼보드(battenboard)	5.0% /	E1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8.0%	
4412994100	합판	5.0%	EX
4412994911	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5.0% / 10.0%	EX
4412994919	기타	5.0% / 8.0%	EX
4412994991	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5.0%	EX
4412994999	기타	5.0%	E10
4412995100	합판	5.0%	EX
4412995911	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5.0% / 10.0%	EX
4412995919	기타	5.0% / 8.0%	EX
4412995991	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5.0%	EX
4412995999	기타	5.0%	E10
4412996100	합판	5.0%	EX
4412996911	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0.0%	EX
4412996919	기타	8.0%	E10
4412996991	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5.0%	EX
4412996999	기타	5.0%	E10
4412999100	합판	5.0%	E1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4412999911	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5.0% / 10.0%	EX
4412999919	기타	5.0% / 8.0%	E10
4412999991	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5.0%	EX
4412999999	기타	5.0%	E10
4413000000	고밀도화 목재[블록 모양·플레이트(plate) 모양·스트립(strip) 모양·프로파일(profile)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5.0%	E10
4414000000	나무로 만든 그림틀·사진틀·거울틀이나 이와 유사한 틀	0.0%	E0
4415100000	케이스·상자·크레이트(crate)·드럼과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 케이블드럼	0.0%	E0
4415200000	팰릿(pallet)·박스팰릿(box pallet)·그 밖의 깔판류, 나무로 만든 팰릿칼러(pallet collar)	0.0%	E0
4416000000	나무로 만든 통·배럴(barrel)·배트(vat)·텁(tub)·그 밖의 용기와 이들의 부분품(통재와 준재를 포함한다)	0.0%	E0
4417000000	나무로 만든 공구·공구의 몸체·공구의 손잡이·비나 브러시의 몸체와 손잡이·나무로 만든 신발의 골	0.0%	E0
4418100000	창, 프랑스 창과 이들의 틀	0.0%	E0
4418200000	문·문틀·문지방	0.0%	E0
4418400000	콘크리트 구조물 작업용 거푸집널	0.0%	E0
4418500000	지붕을 이는 판자	0.0%	E0
4418600000	기둥과 들보	0.0%	E0
4418731000	파케이패널(parquet panel)	0.0%	E0
4418739000	기타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4418741000	파케이패널(parquet panel)	0.0%	E0
4418749000	기타	0.0%	E0
4418751000	파케이패널(parquet panel)	0.0%	E0
4418759000	기타	0.0%	E0
4418791000	파케이패널(parquet panel)	0.0%	E0
4418799000	기타	0.0%	E0
4418910000	대나무로 만든 것	0.0%	E0
4418991000	셀룰러우드패널	0.0%	E0
4418999000	기타	0.0%	E0
4419110000	빵도마, 도마 및 이와 유사한 판	0.0%	E0
4419120000	젓가락	0.0%	E0
4419190000	기타	0.0%	E0
4419901000	빵도마, 도마 및 이와 유사한 판	0.0%	E0
4419902000	대접(공기)	0.0%	E0
4419903000	젓가락	0.0%	E0
4419909000	기타	0.0%	E0
4420101000	작은 조각상	0.0%	E0
4420109000	기타	0.0%	E0
4420901000	마르퀘트리 목제품과 상감세공 목제품	0.0%	E0
4420902010	담배상자	0.0%	E0
4420902020	신변장식용품용 상자	0.0%	E0
4420902030	제 94 류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가구	0.0%	E0
4420902090	기타	0.0%	E0
4420909010	담배용 상자와 신변장식용품용 상자	0.0%	E0
4420909020	제 94 류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가구	0.0%	E0
4420909090	기타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4421100000	옷걸이	0.0%	E0
4421911000	스풀・콥・보빈・재봉사 릴과 이와 유사한 것(선반가공한 목재의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4421912000	성냥개비의 나무, 신발용의 나무 펙(peg)과 못	0.0%	E0
4421913000	이쑤시개	0.0%	E0
4421914000	포장용의 목재블록	0.0%	E0
4421915000	부채・핸드스크린(기계식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이들의 살과 자루(살・자루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0.0%	E0
4421919000	기타	0.0%	E0
4421991000	스풀・콥・보빈・재봉사 릴과 이와 유사한 것(선반가공한 목재의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4421992000	성냥개비의 나무, 신발용의 나무 펙(peg)과 못	0.0%	E0
4421993000	이쑤시개	0.0%	E0
4421994000	포장용의 목재블록	0.0%	E0
4421995000	부채・핸드스크린(기계식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이들의 살과 자루(살・자루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0.0%	E0
4421999000	기타	0.0%	E0
4501100000	천연 코르크(cork)(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단순히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4501900000	기타	0.0%	E0
4502000000	천연 코르크(cork)[외피를 제거한 것, 거칠게 각을 만든 것,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판 모양・시트(sheet) 모양・스트립(strip)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고, 각이 예리한 마개용 블랭크(blank)를 포함한다]	0.0%	E0
4503100000	마개	0.0%	E0
4503900000	기타	0.0%	E0
4504100000	블록・판・시트(sheet)・스트립(strip)・타일(어떤 모양이라도 상관없다)・솔리드실린더(solid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cylinder)(디스크를 포함한다)		
4504900000	기타	0.0%	E0
4601211000	매트류	0.0%	E0
4601212000	발	0.0%	E0
4601221000	매트류	0.0%	E0
4601222000	발	0.0%	E0
4601291000	매트류	0.0%	E0
4601292000	발	0.0%	E0
4601921000	은죽발장(폭이 35 센티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4601929000	기타	0.0%	E0
4601930000	등나무로 만든 것	0.0%	E0
4601941000	은죽발장(폭이 35 센티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4601949000	기타	0.0%	E0
4601991000	플라스틱재료로 엮은 시트(sheet) 모양의 물품	0.0%	E0
4601999000	기타	0.0%	E0
4602111000	바구니	0.0%	E0
4602112000	쟁반, 접시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주방용품이나 식탁용품	0.0%	E0
4602119000	기타	0.0%	E0
4602120000	등나무로 만든 것	0.0%	E0
4602191000	골풀제품	0.0%	E0
4602199000	기타	0.0%	E0
4602900000	기타	0.0%	E0
4701001000	표백하지 않은 것	0.0%	E0
4701002000	반표백하거나 표백한 것	0.0%	E0
4702000000	화학목재펄프(용해용으로 한정한다)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4703110000	침엽수류로 만든 것	0.0%	E0
4703190000	활엽수류로 만든 것	0.0%	E0
4703211000	반표백한 것	0.0%	E0
4703212000	표백한 것	0.0%	E0
4703291000	반표백한 것	0.0%	E0
4703292000	표백한 것	0.0%	E0
4704110000	침엽수류로 만든 것	0.0%	E0
4704190000	활엽수류로 만든 것	0.0%	E0
4704210000	침엽수류로 만든 것	0.0%	E0
4704290000	활엽수류로 만든 것	0.0%	E0
4705000000	기계펄프공정과 화학펄프공정을 결합하여 얻은 목재펄프	0.0%	E0
4706100000	면 린터 펄프(cotton linters pulp)	0.0%	E0
4706200000	회수한 종이나 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에서 뽑아낸 섬유펄프	0.0%	E0
4706301000	기계펄프	0.0%	E0
4706302000	화학펄프	0.0%	E0
4706303000	기계공정과 화학공정의 결합으로 생산된 펄프	0.0%	E0
4706911000	표백하지 않은 것	0.0%	E0
4706912000	반표백하거나 표백한 것	0.0%	E0
4706921000	표백하지 않은 것	0.0%	E0
4706922000	반표백하거나 표백한 것	0.0%	E0
4706931000	표백하지 않은 것	0.0%	E0
4706932000	반표백하거나 표백한 것	0.0%	E0
4707100000	표백하지 않은 크라프트지·판지나 물결 모양의 종이·판지로 만든 것	0.0%	E0
4707200000	주로 표백화학펄프로 된 그 밖의 종이나 판지(전체를 착색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4707300000	주로 기계펄프로 만들어진 종이나 판지(예: 신문, 잡지, 이와 유사한 인쇄물)	0.0%	E0
4707900000	기타[선별하지 않은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0.0%	E0
4801000000	신문용지(롤 모양이나 시트 모양으로 한정한다)	0.0%	E0
4802100000	수제지(手製紙)와 판지	0.0%	E0
4802200000	사진 감광성·열 감응성·전자 감광성 종이나 판지의 기본 재료로 사용되는 종이와 판지	0.0%	E0
4802400000	벽지용 원지(原紙)	0.0%	E0
4802541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0%	E0
4802541090	기타	0.0%	E0
4802549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0%	E0
4802549090	기타	0.0%	E0
4802551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0%	E0
4802551020	복사용지	0.0%	E0
4802551030	전산용지와 폼용지 (컴퓨터용지와 지로용지를 포함한다)	0.0%	E0
4802551040	팬시지	0.0%	E0
4802551090	기타	0.0%	E0
4802559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0%	E0
4802559090	기타	0.0%	E0
4802561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0%	E0
4802561020	복사용지	0.0%	E0
4802561030	전산용지와 폼용지 (컴퓨터용지와 지로용지를 포함한다)	0.0%	E0
4802561040	팬시지	0.0%	E0
4802561090	기타	0.0%	E0
4802569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4802569090	기타	0.0%	E0
4802571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0%	E0
4802571020	복사용지	0.0%	E0
4802571030	전산용지와 폼용지 (컴퓨터용지와 지로용지를 포함한다)	0.0%	E0
4802571040	팬시지	0.0%	E0
4802571090	기타	0.0%	E0
4802579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0%	E0
4802579090	기타	0.0%	E0
4802581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0%	E0
4802581020	팬시지	0.0%	E0
4802581090	기타	0.0%	E0
4802582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0%	E0
4802582090	기타	0.0%	E0
4802589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0%	E0
4802589090	기타	0.0%	E0
4802611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0%	E0
4802611020	복사용지	0.0%	E0
4802611030	전산용지와 폼용지 (컴퓨터용지와 지로용지를 포함한다)	0.0%	E0
4802611090	기타	0.0%	E0
4802619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0%	E0
4802619090	기타	0.0%	E0
4802621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0%	E0
4802621020	복사용지	0.0%	E0
4802621030	전산용지와 폼용지 (컴퓨터용지와 지로용지를 포함한다)	0.0%	E0
4802621090	기타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4802629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0%	E0
4802629090	기타	0.0%	E0
4802691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0%	E0
4802691020	복사용지	0.0%	E0
4802691030	전산용지와 폼용지 (컴퓨터용지와 지로용지를 포함한다)	0.0%	E0
4802691040	팬시지	0.0%	E0
4802691090	기타	0.0%	E0
4802699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0%	E0
4802699090	기타	0.0%	E0
4803001000	화장지·안면용 티슈스톡	0.0%	E0
4803002000	셀룰로오스워딩과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	0.0%	E0
4803009000	기타	0.0%	E0
4804110000	표백하지 않은 것	0.0%	E0
4804190000	기타	0.0%	E0
4804210000	표백하지 않은 것	0.0%	E0
4804290000	기타	0.0%	E0
4804311000	전기절연지와 판지	0.0%	E0
4804312000	콘덴서지와 판지	0.0%	E0
4804313000	포장지와 판지	0.0%	E0
4804319000	기타	0.0%	E0
4804391000	전기절연지와 판지	0.0%	E0
4804392000	콘덴서지와 판지	0.0%	E0
4804393000	포장지와 판지	0.0%	E0
4804399000	기타	0.0%	E0
4804411010	중량이 1 제곱미터당 200 그램 미만인 것	0.0%	E0
4804411090	기타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4804419010	중량이 1제곱미터당 200그램 미만인 것	0.0%	E0
4804419090	기타	0.0%	E0
4804421010	밀크카톤(carton)과 그 밖의 음료용기용 원지	0.0%	E0
4804421020	카톤(carton)용 원지(화장품·의약품·담배의 포장용과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0.0%	E0
4804421030	쟁반·접시·플레이트·컵 원지와 이와 유사한 것	0.0%	E0
4804421090	기타	0.0%	E0
4804429010	밀크카톤(carton)과 그 밖의 음료용기용 원지	0.0%	E0
4804429030	쟁반·접시·플레이트·컵 원지와 이와 유사한 것	0.0%	E0
4804429090	기타	0.0%	E0
4804491000	중량이 1제곱미터당 200그램 미만인 것	0.0%	E0
4804499000	기타	0.0%	E0
4804510000	표백하지 않은 것	0.0%	E0
4804521000	밀크카톤(carton)과 그 밖의 음료용기용 원지	0.0%	E0
4804522000	카톤(carton)용 원지(화장품·의약품·담배의 포장용과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0.0%	E0
4804523000	쟁반·접시·플레이트·컵 원지와 이와 유사한 것	0.0%	E0
4804529000	기타	0.0%	E0
4804590000	기타	0.0%	E0
4805110000	반화학 플루팅지(fluting paper)	0.0%	E0
4805120000	스트로 플루팅지(straw fluting paper)	0.0%	E0
4805190000	기타	0.0%	E0
480524100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0%	E0
4805249000	기타	0.0%	E0
480525100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0%	E0
4805259000	기타	0.0%	E0
4805300000	아황산포장지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4805400000	여과지와 판지	0.0%	E0
4805500000	펠트지와 판지	0.0%	E0
480591100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0%	E0
4805919010	콘덴서지와 판지	0.0%	E0
4805919090	기타	0.0%	E0
480592100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0%	E0
4805929000	기타	0.0%	E0
480593100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0%	E0
4805939000	기타	0.0%	E0
4806100000	황산지	0.0%	E0
4806200000	내지지(耐脂紙)	0.0%	E0
4806300000	트레이싱지(tracing paper)	0.0%	E0
4806401000	글라신지(glassine paper)	0.0%	E0
4806409000	기타	0.0%	E0
4807000000	겹붙인 종이와 판지[접착제로 겹붙인 것으로서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표면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은 제외하고, 내면을 보강했는지에 상관없다]	0.0%	E0
4808100000	물결 모양의 종이와 판지(구멍을 뚫었는지에 상관없다)	0.0%	E0
4808401000	자루(sack)용	0.0%	E0
4808409000	기타	0.0%	E0
4808900000	기타	0.0%	E0
4809201000	한 겹의 것	0.0%	E0
4809202000	두 겹 이상의 것	0.0%	E0
4809901000	전사지	0.0%	E0
4809902010	제곱미터당 중량이 65 그램 이상의 것	0.0%	E0
4809902090	기타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4809903000	인쇄용 제판용지	0.0%	E0
4809904000	카본지나 이와 유사한 복사지	0.0%	E0
4809909000	기타	0.0%	E0
4810131000	인쇄용·필기용 종이와 판지	0.0%	E0
4810139000	기타	0.0%	E0
4810141000	인쇄용·필기용 종이와 판지	0.0%	E0
4810149000	기타	0.0%	E0
4810191000	인쇄용·필기용 종이와 판지	0.0%	E0
4810199000	기타	0.0%	E0
4810220000	경량(輕量)의 도포한 종이	0.0%	E0
4810290000	기타	0.0%	E0
4810311000	카톤(carton)용 원지(화장품·의약품·담배의 포장용과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0.0%	E0
4810312000	쟁반·접시·플레이트·컵 원지와 이와 유사한 것	0.0%	E0
4810319000	기타	0.0%	E0
4810321000	카톤(carton)용 원지(화장품·의약품·담배의 포장용과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0.0%	E0
4810322000	쟁반·접시·플레이트·컵 원지와 이와 유사한 것	0.0%	E0
4810329000	기타	0.0%	E0
4810390000	기타	0.0%	E0
4810921010	제곱미터당 중량이 250 그램 이하인 것	0.0%	E0
4810921090	기타	0.0%	E0
4810922000	아이보리판지	0.0%	E0
4810929000	기타	0.0%	E0
4810991000	지형지	0.0%	E0
4810992000	여과지	0.0%	E0
4810999000	기타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4811101000	루핑지	0.0%	E0
4811109000	기타	0.0%	E0
4811410000	셀프접착지	0.0%	E0
4811490000	기타	0.0%	E0
481151100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을 초과하며 265 그램 이하인 것	0.0%	E0
4811519011	종이나 판지를 기본 재료로 한 바닥깔개	0.0%	E0
4811519019	기타	0.0%	E0
4811519090	기타	0.0%	E0
4811590000	기타	0.0%	E0
4811600000	왁스・파라핀왁스・스테아린(stearin)・기름・글리세롤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키거나 피복한 종이와 판지	0.0%	E0
4811901010	괘선, 선이나 방안선을 그은 것	0.0%	E0
4811901090	기타	0.0%	E0
4811902010	셀룰로오스워딩	0.0%	E0
4811902090	기타	0.0%	E0
4812000000	제지용 펄프로 만든 필터블록, 필터슬래브, 필터플레이트	0.0%	E0
4813100000	소책자 모양이나 튜브 모양인 것	0.0%	E0
4813200000	폭이 5 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인 것	0.0%	E0
4813900000	기타	0.0%	E0
4814201000	벽지	0.0%	E0
4814202000	린크라스타	0.0%	E0
4814209000	기타	0.0%	E0
4814901010	갈포섬유로 만든 것	0.0%	E0
4814901090	기타	0.0%	E0
4814909000	기타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4816201000	한 겹의 것	0.0%	E0
4816202000	두 겹 이상의 것	0.0%	E0
4816901000	전사지	0.0%	E0
4816902010	제곱미터당 중량이 65 그램 이상인 것	0.0%	E0
4816902090	기타	0.0%	E0
4816903000	인쇄용 제판용지	0.0%	E0
4816904000	카본지나 이와 유사한 복사지	0.0%	E0
4816905000	등사원지	0.0%	E0
4816909000	기타	0.0%	E0
4817100000	봉투	0.0%	E0
4817200000	봉함엽서・우편엽서・통신용카드	0.0%	E0
4817300000	종이나 판지로 만든 상자・파우치・지갑・필기첩(안에 종이로 만든 문구류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4818100000	화장지	0.0%	E0
4818200000	손수건・클렌징티슈・안면용 화장지・타월	0.0%	E0
4818300000	책상보와 서비에트(serviette)	0.0%	E0
4818500000	의류와 의류 부속품	0.0%	E0
4818900000	기타	0.0%	E0
4819100000	상자류(골판지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4819200000	접는 상자류(골판지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0.0%	E0
4819300000	폭이 40 센티미터 이상인 포장대	0.0%	E0
4819400000	그 밖의 포장대[콘(cone)을 포함한다]	0.0%	E0
4819501000	액체 포장에 적합한 것	0.0%	E0
4819509000	기타	0.0%	E0
4819600000	서류상자・서류받침・보관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4820100000	장부・회계부・노트북・주문장・영수장・편지지철・메모철・일기장과 이와 유사한 물품	0.0%	E0
4820200000	연습장	0.0%	E0
4820300000	바인더(책표지는 제외한다)・폴더・서류철 표지	0.0%	E0
4820400000	각종 사무용 양식과 삽입식 카본세트	0.0%	E0
4820500000	견본용이나 수집용 앨범	0.0%	E0
4820900000	기타	0.0%	E0
4821100000	인쇄한 것	0.0%	E0
4821900000	기타	0.0%	E0
4822100000	방직용 섬유사를 감는 데에 사용하는 것	0.0%	E0
4822900000	기타	0.0%	E0
4823200000	여과용 종이와 판지	0.0%	E0
4823400000	자동기록장치용으로 인쇄된 롤・시트(sheet)・다이얼	0.0%	E0
4823610000	대나무로 만든 것	0.0%	E0
4823690000	기타	0.0%	E0
4823700000	제지용 펄프로 만든 몰드・프레스한 제품	0.0%	E0
4823901010	구멍을 뚫은 카드	0.0%	E0
4823901090	기타	0.0%	E0
4823902000	전기절연지	0.0%	E0
4823903011	종이나 판지를 기본 재료로 한 바닥깔개	0.0%	E0
4823903019	기타	0.0%	E0
4823903021	종이나 판지를 기본 재료로 한 바닥깔개	0.0%	E0
4823903029	기타	0.0%	E0
4823903090	기타	0.0%	E0
4823905000	자카드(Jacquard) 직기용 구멍을 뚫은 종이	0.0%	E0
4823909011	종이나 판지를 기본 재료로 한 바닥깔개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4823909019	기타	0.0%	E0
4823909090	기타	0.0%	E0
4901101000	국문판	0.0%	E0
4901109000	기타	0.0%	E0
4901911000	국문판	0.0%	E0
4901919000	기타	0.0%	E0
4901991000	국문판	0.0%	E0
4901999000	기타	0.0%	E0
4902101010	신문	0.0%	E0
4902101090	기타	0.0%	E0
4902109000	기타	0.0%	E0
4902901010	잡지	0.0%	E0
4902901090	기타	0.0%	E0
4902909010	잡지	0.0%	E0
4902909090	기타	0.0%	E0
4903000000	아동용 그림책과 습화책	0.0%	E0
4904000000	악보[인쇄나 수제(手製)의 것으로서 제본되었는지 또는 그림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0.0%	E0
4905100000	지구의	0.0%	E0
4905911000	지도와 해도	0.0%	E0
4905919000	기타	0.0%	E0
4905990000	기타	0.0%	E0
4906001000	설계도	0.0%	E0
4906002000	도안	0.0%	E0
4906009000	기타	0.0%	E0
4907001000	우표(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4907002000	항공화물증권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4907009000	기타	0.0%	E0
4908100000	전사지[디칼커매니어(decalcomania)]로서 유리화할 수 있는 것	0.0%	E0
4908901000	전사지[디칼커매니어(decalcomania)]로서 쿠션 플로어링 시트(sheet)용의 것	0.0%	E0
4908909000	기타	0.0%	E0
4909000000	인쇄된 엽서와 그림엽서, 인쇄카드(인사용・전언용・안내용으로서 그림・봉투・장식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0.0%	E0
4910001000	종이나 판지로 만든 것	0.0%	E0
4910009000	기타	0.0%	E0
4911100000	광고 선전물・상업용 카탈로그(catalogue)와 이와 유사한 것	0.0%	E0
4911911000	인쇄된 설계도와 도안	0.0%	E0
4911919000	기타	0.0%	E0
4911990000	기타	0.0%	E0
5001000000	누에고치(생사를 뽑는 데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5002001010	20 데시텍스 이하인 것	0.0%	E0
5002001020	20 데시텍스 초과 25.56 데시텍스 이하인 것	0.0%	E0
5002001030	25.56 데시텍스 초과 28.89 데시텍스 이하인 것	0.0%	E0
5002001040	28.89 데시텍스 초과 36.67 데시텍스 이하인 것	0.0%	E0
5002001050	36.67 데시텍스를 초과하는 것	0.0%	E0
5002002000	옥사(doupion silk)	0.0%	E0
5002009000	기타	0.0%	E0
5003001000	카드(card)하지도 코움(comb)하지도 않은 것	0.0%	E0
5003009000	기타	0.0%	E0
5004000000	견사[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견방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5005001000	견수방사	0.0%	E0
5005002000	견방사	0.0%	E0
5005003000	견방주사	0.0%	E0
5006001000	견사	0.0%	E0
5006002000	견수방사	0.0%	E0
5006003000	견방사	0.0%	E0
5006004000	견방주사	0.0%	E0
5006005000	누에의 거트(gut)	0.0%	E0
5007100000	견 노일(noil) 직물	0.0%	E0
5007201000	생지견직물	0.0%	E0
5007202010	홀치기가공	0.0%	E0
5007202020	사틴	0.0%	E0
5007202030	크렙 데신(crepe de chine)	0.0%	E0
5007202090	기타	0.0%	E0
5007209000	기타	0.0%	E0
5007901000	생지견직물	0.0%	E0
5007902000	아세테이트사와 혼방한 견직물	0.0%	E0
5007903000	그 밖의 인조섬유와 혼방한 견직물	0.0%	E0
5007904000	양모와 혼방한 견직물	0.0%	E0
5007909000	기타	0.0%	E0
5101110000	깎은 양모	0.0%	E0
5101190000	기타	0.0%	E0
5101210000	깎은 양모	0.0%	E0
5101290000	기타	0.0%	E0
5101300000	탄화처리한 것	0.0%	E0
5102110000	캐시미어 산양의 것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5102190000	기타	0.0%	E0
5102200000	동물의 거친 털	0.0%	E0
510310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노일(noil)	0.0%	E0
510320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그 밖의 웨이스트(waste)	0.0%	E0
5103300000	동물의 거친 털의 웨이스트(waste)	0.0%	E0
5104000000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의 가닛스톡(garnetted stock)	0.0%	E0
5105100000	카드(card)한 양모	0.0%	E0
5105210000	코움(comb)한 양모(단편 모양으로 한정한다)	0.0%	E0
5105290000	기타	0.0%	E0
5105310000	캐시미어 산양의 것	0.0%	E0
5105390000	기타	0.0%	E0
5105400000	동물의 거친 털[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5106101000	순모의 것	5.0%	E0
5106109000	기타	5.0%	E0
5106201000	폴리에스테르섬유와 혼방한 것	5.0%	E0
5106202000	폴리아미드섬유와 혼방한 것	5.0%	E0
5106203000	아크릴섬유와 혼방한 것	5.0%	E0
5106204000	그 밖의 합성섬유와 혼방한 것	5.0%	E0
5106209000	기타	5.0%	E0
5107101000	순모의 것	5.0%	E0
5107102000	합성섬유와 혼방한 것	5.0%	E0
5107109000	그 밖의 섬유와 혼방한 것	5.0%	E0
5107201000	폴리에스테르섬유와 혼방한 것	0.0%	E0
5107202000	폴리아미드섬유와 혼방한 것	5.0%	E0
5107203000	아크릴섬유와 혼방한 것	5.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5107204000	그 밖의 합성섬유와 혼방한 것	5.0%	E0
5107209000	그 밖의 섬유와 혼방한 것	5.0%	E0
5108100000	카드(card)한 것	5.0%	E0
5108200000	코움(comb)한 것	5.0%	E0
5109101000	양모사	5.0%	E0
5109109000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실	5.0%	E0
5109901000	양모사	5.0%	E0
5109909000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실	5.0%	E0
5110000000	동물의 거친 털로 만든 실이나 말의 털로 만든 실[짐프한(gimped) 말의 털로 만든 실을 포함하며, 소매용인지에 상관없다]	5.0%	E0
5111111000	양모로 만든 것	5.0%	E0
5111112000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실로 만든 것	0.0%	E0
5111191000	양모로 만든 것	0.0%	E0
5111192000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실로 만든 것	0.0%	E0
5111200000	기타(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5111300000	기타(주로 인조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5111900000	기타	0.0%	E0
5112111000	양모로 만든 것	0.0%	E0
5112112000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실로 만든 것	0.0%	E0
5112191000	양모로 만든 것	0.0%	E0
5112192000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실로 만든 것	0.0%	E0
5112200000	기타(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5112300000	기타(주로 인조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5112900000	기타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5113000000	직물(동물의 거친 털이나 말의 털의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5201001000	실면(實綿)	0.0%	E0
5201009010	섬유 길이가 23.2 밀리미터 미만인 것	0.0%	E0
5201009020	섬유 길이가 23.2 밀리미터 이상 25.4 밀리미터 미만인 것	0.0%	E0
5201009030	섬유 길이가 25.4 밀리미터 이상 28.5 밀리미터 미만인 것	0.0%	E0
5201009050	섬유 길이가 28.5 밀리미터 이상 34.9 밀리미터 미만인 것	0.0%	E0
5201009060	섬유 길이가 34.9 밀리미터 이상인 것	0.0%	E0
5202100000	실(yarn)의 웨이스트(waste)[실(thread)의 웨이스트(waste)를 포함한다]	0.0%	E0
5202910000	가닛스톡(garnetted stock)	0.0%	E0
5202990000	기타	0.0%	E0
5203000000	면[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5204110000	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5.0%	E0
5204190000	기타	5.0%	E0
5204200000	소매용	0.0%	E0
520511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0.0%	E0
5205119000	기타	0.0%	E0
5205121010	370.37 데시텍스 이하 232.56 데시텍스 이상(미터식 번수 27 수 이상 43 수 이하)인 것. 다만, 오픈・엔드사(open end yarn)는 제외한다.	0.0%	E0
5205121090	기타	0.0%	E0
5205129000	기타	0.0%	E0
520513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0.0%	E0
5205139000	기타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520514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0.0%	E0
5205149000	기타	0.0%	E0
520515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0.0%	E0
5205159000	기타	0.0%	E0
520521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5.0%	E0
5205219000	기타	5.0%	E0
520522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5.0%	EX
5205229000	기타	5.0%	EX
520523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5.0%	EX
5205239000	기타	5.0%	EX
520524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5.0%	EX
5205249000	기타	5.0%	EX
520526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5.0%	EX
5205269000	기타	5.0%	EX
520527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5.0%	EX
5205279000	기타	5.0%	EX
520528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5.0%	EX
5205289000	기타	5.0%	EX
520531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0.0%	E0
5205319000	기타	0.0%	E0
5205321010	370.37 데시텍스 이하 232.56 데시텍스 이상(미터식 번수 27 수 이상 43 수 이하)인 것. 다만, 오픈・엔드사(open end yarn)는 제외한다.	0.0%	E0
5205321090	기타	0.0%	E0
5205329000	기타	0.0%	E0
520533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0.0%	E0
5205339000	기타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520534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0.0%	E0
5205349000	기타	0.0%	E0
520535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0.0%	E0
5205359000	기타	0.0%	E0
520541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5.0%	E0
5205419000	기타	5.0%	E0
520542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5.0%	E0
5205429000	기타	5.0%	E0
520543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5.0%	E0
5205439000	기타	5.0%	E0
520544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5.0%	E0
5205449000	기타	5.0%	E0
520546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5.0%	E0
5205469000	기타	5.0%	E0
520547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5.0%	E0
5205479000	기타	5.0%	E0
520548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5.0%	E0
5205489000	기타	5.0%	E0
520611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0.0%	E0
5206119000	기타	0.0%	E0
520612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0.0%	E0
5206129000	기타	0.0%	E0
520613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0.0%	E0
5206139000	기타	0.0%	E0
520614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0.0%	E0
5206149000	기타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520615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0.0%	E0
5206159000	기타	0.0%	E0
520621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0.0%	E0
5206219000	기타	0.0%	E0
520622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0.0%	E0
5206229000	기타	0.0%	E0
520623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0.0%	E0
5206239000	기타	0.0%	E0
520624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0.0%	E0
5206249000	기타	0.0%	E0
520625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0.0%	E0
5206259000	기타	0.0%	E0
520631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0.0%	E0
5206319000	기타	0.0%	E0
520632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0.0%	E0
5206329000	기타	0.0%	E0
520633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0.0%	E0
5206339000	기타	0.0%	E0
520634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0.0%	E0
5206349000	기타	0.0%	E0
520635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0.0%	E0
5206359000	기타	0.0%	E0
520641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0.0%	E0
5206419000	기타	0.0%	E0
520642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0.0%	E0
5206429000	기타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520643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0.0%	E0
5206439000	기타	0.0%	E0
520644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0.0%	E0
5206449000	기타	0.0%	E0
520645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0.0%	E0
5206459000	기타	0.0%	E0
520710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0.0%	E0
5207109000	기타	0.0%	E0
520790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0.0%	E0
5207909000	기타	0.0%	E0
5208110000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5208120000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5.0%	E0
5208130000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0.0%	E0
5208190000	그 밖의 직물의 것	0.0%	E0
5208210000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5208220000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5208230000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0.0%	E0
5208290000	그 밖의 직물의 것	5.0%	E0
5208310000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5208320000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5208330000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0.0%	E0
5208390000	그 밖의 직물	0.0%	E0
5208410000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5208420000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5208430000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0.0%	E0
5208490000	그 밖의 직물	0.0%	E0
5208510000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5208520000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5208591000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0.0%	E0
5208599000	기타	0.0%	E0
5209110000	평직물(平織物)	0.0%	E0
5209120000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0.0%	E0
5209190000	그 밖의 직물	0.0%	E0
5209210000	평직물(平織物)	0.0%	E0
5209220000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0.0%	E0
5209290000	그 밖의 직물	0.0%	E0
5209310000	평직물(平織物)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5209320000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0.0%	E0
5209390000	그 밖의 직물	0.0%	E0
5209410000	평직물(平織物)	0.0%	E0
5209420000	데님(denim)	0.0%	E0
5209430000	3 올이나 4 올의 그 밖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0.0%	E0
5209490000	그 밖의 직물	0.0%	E0
5209510000	평직물(平織物)	0.0%	E0
5209520000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0.0%	E0
5209590000	그 밖의 직물	0.0%	E0
5210110000	평직물(平織物)	0.0%	E0
5210191000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0.0%	E0
5210199000	기타	0.0%	E0
5210210000	평직물(平織物)	0.0%	E0
5210291000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0.0%	E0
5210299000	기타	0.0%	E0
5210310000	평직물(平織物)	0.0%	E0
5210320000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0.0%	E0
5210390000	그 밖의 직물	0.0%	E0
5210410000	평직물(平織物)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5210491000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0.0%	E0
5210499000	기타	0.0%	E0
5210510000	평직물(平織物)	0.0%	E0
5210590000	그 밖의 직물	0.0%	E0
5211110000	평직물(平織物)	0.0%	E0
5211120000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0.0%	E0
5211190000	그 밖의 직물	0.0%	E0
5211200000	표백한 것	0.0%	E0
5211310000	평직물(平織物)	0.0%	E0
5211320000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0.0%	E0
5211390000	그 밖의 직물	0.0%	E0
5211410000	평직물(平織物)	0.0%	E0
5211420000	데님(denim)	0.0%	E0
5211430000	3 올이나 4 올의 그 밖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0.0%	E0
5211490000	그 밖의 직물	0.0%	E0
5211510000	평직물(平織物)	0.0%	E0
5211520000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0.0%	E0
5211590000	그 밖의 직물	0.0%	E0
5212110000	표백하지 않은 것	0.0%	E0
5212120000	표백한 것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5212130000	염색한 것	0.0%	E0
52121400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0.0%	E0
5212150000	날염한 것	0.0%	E0
5212210000	표백하지 않은 것	0.0%	E0
5212220000	표백한 것	0.0%	E0
5212230000	염색한 것	0.0%	E0
52122400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0.0%	E0
5212250000	날염한 것	0.0%	E0
5301100000	생아마나 침지(沈漬)아마	0.0%	E0
5301210000	줄기를 으깨거나(broken) 두드린(scutched) 것	0.0%	E0
5301290000	기타	0.0%	E0
5301301000	아마의 토우(tow)	0.0%	E0
5301302000	아마의 웨이스트(waste)	0.0%	E0
5302100000	생대마나 침지(沈漬)대마	0.0%	E0
5302901000	줄기를 으깨거나(broken) 두드리거나(scutched) 훑어내리거나(hackled)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대마(방적한 것은 제외한다)	0.0%	E0
5302902010	대마의 토우(tow)	0.0%	E0
5302902020	대마의 웨이스트(waste)	0.0%	E0
5303101000	황마	0.0%	E0
5303102000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靭皮)섬유	0.0%	E0
5303901010	황마	0.0%	E0
5303901090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靭皮)섬유	0.0%	E0
5303909010	황마의 토우(tow)와 웨이스트(waste)	0.0%	E0
5303909090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靭皮)섬유의 토우(tow)와 웨이스트(waste)	0.0%	E0
5305001000	코코넛[코이어(coir)]의 것	0.0%	E0
5305002000	아바카의 것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5305003000	사이잘(sisal)마와 아가베(Agave)속의 것	0.0%	E0
5305009000	기타	0.0%	E0
5306101000	순아마사	0.0%	E0
5306102000	혼방아마사	0.0%	E0
5306201000	순아마사	0.0%	E0
5306202000	혼방아마사	0.0%	E0
5307101000	황마사	0.0%	E0
5307109000	기타	0.0%	E0
5307201000	황마사	0.0%	E0
5307209000	기타	0.0%	E0
5308100000	코이어(coir)사	0.0%	E0
5308200000	대마사	0.0%	E0
5308901000	라미(ramie)사	0.0%	E0
5308909000	기타	0.0%	E0
5309110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0.0%	E0
5309190000	기타	0.0%	E0
5309210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0.0%	E0
5309290000	기타	0.0%	E0
5310101000	황마직물	0.0%	E0
5310109000	기타	0.0%	E0
5310901000	황마직물	0.0%	E0
5310909000	기타	0.0%	E0
5311001000	라미(ramie)의 것	0.0%	E0
5311002000	대마의 것	0.0%	E0
5311003000	종이실(paper yarn)의 것	0.0%	E0
5311009000	기타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5401101000	나일론이나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0.0%	E0
540110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0.0%	E0
540110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0.0%	E0
5401109000	기타	0.0%	E0
5401201000	비스코스 레이온의 것	0.0%	E0
5401209000	기타	0.0%	E0
5402110000	아라미드의 것	0.0%	E0
5402191011	타이어 코드사	0.0%	E0
5402191012	어망사	0.0%	E0
5402191019	기타	0.0%	E0
5402191021	타이어 코드사	0.0%	E0
5402191022	어망사	0.0%	E0
5402191029	기타	0.0%	E0
5402191090	기타	0.0%	E0
5402199000	기타	0.0%	E0
5402200000	강력사[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 한정하며, 텍스처화한(textured) 것인지에 상관없다]	0.0%	E0
5402311010	나일론 6의 것	0.0%	E0
5402311020	나일론 66의 것	0.0%	E0
5402311090	기타	0.0%	E0
5402319000	기타	0.0%	E0
5402321010	나일론 6의 것	0.0%	E0
5402321020	나일론 66의 것	0.0%	E0
5402321090	기타	0.0%	E0
5402329000	기타	0.0%	E0
5402331000	폴리 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의 것	5.0%	E0
5402339000	기타	5.0%	E1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5402340000	폴리프로필렌의 것	0.0%	E0
5402390000	기타	0.0%	E0
5402440000	탄성사	0.0% / 5.0%	E0
5402451010	나일론 6 의 것	0.0%	E0
5402451020	나일론 66 의 것	0.0%	E0
5402451090	기타	0.0%	E0
5402459000	기타	0.0%	E0
5402461000	폴리 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의 것	0.0%	E0
5402469000	기타	0.0%	E0
5402471000	폴리 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의 것	5.0%	E0
5402479000	기타	5.0%	E10
5402480000	기타(폴리프로필렌의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5402491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0.0%	E0
5402499000	기타	5.0%	E0
5402510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0.0%	E0
5402520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0.0%	E0
5402530000	폴리프로필렌의 것	0.0%	E0
5402591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0.0%	E0
5402599000	기타	0.0%	E0
5402610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0.0%	E0
5402620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0.0%	E0
5402630000	폴리프로필렌의 것	0.0%	E0
5402691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0.0%	E0
5402692000	폴리비닐알코올의 것	0.0%	E0
5402699000	기타	0.0%	E0
5403100000	강력사[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으로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한정한다]		
5403311000	텍스처드사	0.0%	E0
5403319000	기타	0.0%	E0
5403321000	텍스처드사	0.0%	E0
5403329000	기타	0.0%	E0
5403331000	텍스처드사	0.0%	E0
5403339000	기타	0.0%	E0
5403391000	텍스처드사	0.0%	E0
5403399000	기타	0.0%	E0
5403411000	텍스처드사	0.0%	E0
5403419000	기타	0.0%	E0
5403421000	텍스처드사	0.0%	E0
5403429000	기타	0.0%	E0
5403491000	텍스처드사	0.0%	E0
5403499000	기타	0.0%	E0
5404110000	탄성사	0.0%	E0
5404120000	기타(폴리프로필렌의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5404191000	나일론이나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0.0%	E0
5404192000	폴리우레탄의 것	0.0%	E0
5404193000	폴리비닐알코올의 것	0.0%	E0
5404199000	기타	0.0%	E0
5404901000	스트립 모양의 것	0.0%	E0
5404909000	기타	0.0%	E0
5405001000	모노필라멘트	0.0%	E0
5405009000	기타	0.0%	E0
5406001000	합성필라멘트사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5406002000	재생·반(半)합성 필라멘트사	0.0%	E0
540710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0.0%	E0
540710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0.0%	E0
5407200000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직조한 직물	0.0%	E0
5407300000	제 11 부의 주 제 9 호의 직물	0.0%	E0
5407410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0.0%	E0
5407420000	염색한 것	0.0%	E0
54074300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0.0%	E0
5407440000	날염한 것	0.0%	E0
5407510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0.0%	E0
5407520000	염색한 것	0.0%	E0
54075300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0.0%	E0
5407540000	날염한 것	0.0%	E0
5407611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0.0%	E0
5407612000	염색한 것	0.0%	E0
54076130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0.0%	E0
5407614000	날염한 것	0.0%	E0
5407691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0.0%	E0
5407692000	염색한 것	0.0%	E0
54076930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0.0%	E0
5407694000	날염한 것	0.0%	E0
5407711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0.0%	E0
5407719000	기타	0.0%	E0
5407721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0.0%	E0
5407729000	기타	0.0%	E0
5407731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5407739000	기타	0.0%	E0
5407741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0.0%	E0
5407749000	기타	0.0%	E0
540781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0.0%	E0
540781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0.0%	E0
540781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0.0%	E0
5407819000	기타	0.0%	E0
540782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0.0%	E0
540782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0.0%	E0
540782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0.0%	E0
5407829000	기타	0.0%	E0
540783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0.0%	E0
540783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0.0%	E0
540783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0.0%	E0
5407839000	기타	0.0%	E0
540784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0.0%	E0
540784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0.0%	E0
540784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0.0%	E0
5407849000	기타	0.0%	E0
540791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0.0%	E0
540791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0.0%	E0
540791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0.0%	E0
5407919000	기타	0.0%	E0
540792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0.0%	E0
540792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0.0%	E0
540792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5407929000	기타	0.0%	E0
540793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0.0%	E0
540793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0.0%	E0
540793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0.0%	E0
5407939000	기타	0.0%	E0
540794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0.0%	E0
540794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0.0%	E0
540794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0.0%	E0
5407949000	기타	0.0%	E0
5408100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강력사로 직조한 직물	0.0%	E0
5408210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0.0%	E0
5408220000	염색한 것	0.0%	E0
54082300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0.0%	E0
5408240000	날염한 것	0.0%	E0
5408310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0.0%	E0
5408320000	염색한 것	0.0%	E0
54083300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0.0%	E0
5408340000	날염한 것	0.0%	E0
5501100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0.0%	E0
5501200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0.0%	E0
5501301000	아크릴의 것	0.0%	E0
550130200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0.0%	E0
5501400000	폴리프로필렌의 것	0.0%	E0
5501900000	기타	0.0%	E0
5502101000	44,000 데시텍스 미만의 것	0.0%	E0
5502102000	44,000 데시텍스 이상의 것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550290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0.0%	E0
5502909000	기타	0.0%	E0
5503111000	이형단면(異型斷面)인 것	0.0%	E0
5503119000	기타	0.0%	E0
5503191000	이형단면(異型斷面)인 것	0.0%	E0
5503199000	기타	0.0%	E0
5503201000	이형단면(異型斷面)인 것	0.0%	E0
5503209010	폴리 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의 것	0.0%	E0
5503209090	기타	0.0%	E0
5503301010	이형단면(異型斷面)인 것	0.0%	E0
5503301090	기타	0.0%	E0
5503302010	이형단면(異型斷面)인 것	0.0%	E0
5503302090	기타	0.0%	E0
5503400000	폴리프로필렌의 것	0.0%	E0
5503900000	기타	0.0%	E0
5504101000	이형단면(異型斷面)인 것	0.0%	E0
5504102000	폴리노직(polynosic) 단면인 것	0.0%	E0
5504109000	기타	0.0%	E0
5504902000	리오셀(lyocell)의 것	0.0%	E0
5504909000	기타	0.0%	E0
5505100000	합성섬유의 것	0.0%	E0
5505200000	재생·반(半)합성 섬유의 것	0.0%	E0
5506101000	이형단면(異型斷面)인 것	0.0%	E0
5506109000	기타	0.0%	E0
5506201000	이형단면(異型斷面)인 것	0.0%	E0
5506209000	기타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5506301010	이형단면(異型斷面)인 것	0.0%	E0
5506301090	기타	0.0%	E0
550630200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0.0%	E0
5506400000	폴리프로필렌의 것	0.0%	E0
5506900000	기타	0.0%	E0
5507001020	폴리노직(polynosic) 단면인 것	0.0%	E0
5507001090	기타	0.0%	E0
550700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0.0%	E0
5507009000	기타	0.0%	E0
550810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0.0%	E0
550810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0.0%	E0
5508103000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0.0%	E0
5508109000	기타	0.0%	E0
550820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0.0%	E0
5508209000	기타	0.0%	E0
5509111000	강력사	0.0%	E0
5509119000	기타	0.0%	E0
5509121000	강력사	0.0%	E0
5509129000	기타	0.0%	E0
5509211000	강력사	0.0%	E0
5509219000	기타	0.0%	E0
5509221000	강력사	0.0%	E0
5509229000	기타	0.0%	E0
5509311000	아크릴의 것	0.0%	E0
550931200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0.0%	E0
5509321000	아크릴의 것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550932200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0.0%	E0
5509410000	단사	0.0%	E0
5509420000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0.0%	E0
5509510000	주로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	0.0%	E0
5509520000	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	0.0%	E0
5509530000	주로 면과 혼방한 것	0.0%	E0
5509590000	기타	0.0%	E0
5509611000	아크릴의 것	0.0%	E0
550961200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0.0%	E0
5509621000	아크릴의 것	0.0%	E0
550962200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0.0%	E0
5509691010	아크릴의 것	0.0%	E0
550969102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0.0%	E0
5509692010	아크릴의 것	0.0%	E0
550969202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0.0%	E0
550991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0.0%	E0
5509919000	기타	0.0%	E0
550992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0.0%	E0
5509929000	기타	0.0%	E0
5509990000	기타	0.0%	E0
551011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0.0%	E0
551011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0.0%	E0
5510119000	기타	0.0%	E0
551012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0.0%	E0
5510129000	기타	0.0%	E0
551020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5510209000	기타	0.0%	E0
551030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0.0%	E0
551030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0.0%	E0
5510309000	기타	0.0%	E0
551090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0.0%	E0
551090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0.0%	E0
5510909000	기타	0.0%	E0
551110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0.0%	E0
551110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0.0%	E0
5511103000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0.0%	E0
5511109000	기타	0.0%	E0
551120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0.0%	E0
551120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0.0%	E0
5511203000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0.0%	E0
5511209000	기타	0.0%	E0
551130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0.0%	E0
5511309000	기타	0.0%	E0
5512110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0.0%	E0
5512191000	염색한 것	0.0%	E0
55121920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0.0%	E0
5512193000	날염한 것	0.0%	E0
5512211000	아크릴의 것	0.0%	E0
551221200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0.0%	E0
5512290000	기타	0.0%	E0
551291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0.0%	E0
5512919000	기타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551299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0.0%	E0
5512999000	기타	0.0%	E0
551311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0.0%	E0
551312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3 올이나 4 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0.0%	E0
551313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0.0%	E0
551319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0.0%	E0
5513192010	아크릴의 것	0.0%	E0
551319202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0.0%	E0
5513199000	기타	0.0%	E0
551321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0.0%	E0
5513231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3 올이나 4 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0.0%	E0
5513239000	기타	0.0%	E0
551329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0.0%	E0
5513292010	아크릴의 것	0.0%	E0
551329202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0.0%	E0
5513299000	기타	0.0%	E0
551331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0.0%	E0
551339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0.0%	E0
5513392010	아크릴의 것	0.0%	E0
551339202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0.0%	E0
5513399000	기타	0.0%	E0
551341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한정한다]		
551349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0.0%	E0
5513492010	아크릴의 것	0.0%	E0
551349202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0.0%	E0
5513499000	기타	0.0%	E0
551411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0.0%	E0
551412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3 올이나 4 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0.0%	E0
551419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0.0%	E0
5514192010	아크릴의 것	0.0%	E0
551419202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0.0%	E0
5514193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기타직물	0.0%	E0
5514199000	기타	0.0%	E0
551421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0.0%	E0
551422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3 올이나 4 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0.0%	E0
551423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0.0%	E0
551429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0.0%	E0
5514292010	아크릴의 것	0.0%	E0
551429202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0.0%	E0
5514299000	기타	0.0%	E0
55143000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0.0%	E0
551441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0.0%	E0
551442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3 올이나 4 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551443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0.0%	E0
551449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0.0%	E0
5514492010	아크릴의 것	0.0%	E0
551449202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0.0%	E0
5514499000	기타	0.0%	E0
5515111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0.0%	E0
5515119000	기타	0.0%	E0
5515121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0.0%	E0
5515129000	기타	0.0%	E0
5515131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0.0%	E0
5515139000	기타	0.0%	E0
5515191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0.0%	E0
5515199000	기타	0.0%	E0
5515211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0.0%	E0
5515219000	기타	0.0%	E0
5515221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0.0%	E0
5515229000	기타	0.0%	E0
5515291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0.0%	E0
5515299000	기타	0.0%	E0
5515911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0.0%	E0
5515919000	기타	0.0%	E0
5515991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0.0%	E0
5515999000	기타	0.0%	E0
551611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0.0%	E0
551611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5516119000	기타	0.0%	E0
551612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0.0%	E0
551612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0.0%	E0
5516129000	기타	0.0%	E0
551613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0.0%	E0
551613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0.0%	E0
5516139000	기타	0.0%	E0
551614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0.0%	E0
551614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0.0%	E0
5516149000	기타	0.0%	E0
551621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0.0%	E0
551621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0.0%	E0
5516219000	기타	0.0%	E0
551622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0.0%	E0
551622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0.0%	E0
5516229000	기타	0.0%	E0
551623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0.0%	E0
551623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0.0%	E0
5516239000	기타	0.0%	E0
551624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0.0%	E0
551624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0.0%	E0
5516249000	기타	0.0%	E0
551631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0.0%	E0
551631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0.0%	E0
5516319000	기타	0.0%	E0
551632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551632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0.0%	E0
5516329000	기타	0.0%	E0
551633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0.0%	E0
5516339000	기타	0.0%	E0
551634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0.0%	E0
5516349000	기타	0.0%	E0
551641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0.0%	E0
5516419000	기타	0.0%	E0
551642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0.0%	E0
551642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0.0%	E0
5516429000	기타	0.0%	E0
551643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0.0%	E0
551643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0.0%	E0
5516439000	기타	0.0%	E0
551644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0.0%	E0
5516449000	기타	0.0%	E0
551691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0.0%	E0
5516919000	기타	0.0%	E0
551692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0.0%	E0
551692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0.0%	E0
5516929000	기타	0.0%	E0
551693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0.0%	E0
5516939000	기타	0.0%	E0
551694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0.0%	E0
5516949000	기타	0.0%	E0
5601210000	면으로 만든 것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560122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0.0%	E0
5601290000	기타	0.0%	E0
5601301000	섬유의 플록(flock)	0.0%	E0
5601309000	기타	0.0%	E0
5602101000	니들룸 펠트(needleloom felt)	0.0%	E0
5602102000	스티치 본드(stitch-bonded) 섬유직물	0.0%	E0
5602211000	피아노 펠트(felt)	0.0%	E0
5602219000	기타	0.0%	E0
5602290000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0.0%	E0
5602900000	기타	0.0%	E0
5603111000	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	0.0%	E0
5603119000	기타	0.0%	E0
5603121000	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	0.0%	E0
5603129000	기타	0.0%	E0
5603131000	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	0.0%	E0
5603139000	기타	0.0%	E0
5603141000	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	0.0%	E0
5603149000	기타	0.0%	E0
560391000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5 그램 이하인 것	0.0%	E0
560392000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5 그램 초과 70 그램 이하인 것	0.0%	E0
560393000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70 그램 초과 150 그램 이하인 것	0.0%	E0
560394000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을 초과하는 것	0.0%	E0
5604100000	고무실과 고무끈(방직용 섬유로 피복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5604901000	모조 캣거트(방직용 섬유사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5604902000	강력사(폴리에스테르·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비스코스레이온의 것으로서 침투·도포한 것)	0.0%	E0
5604909000	기타	0.0%	E0
5605000000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짐프한(gimped)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직용 섬유사, 제 5404 호나 제 5405 호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실·스트립(strip)·가루 모양의 금속과 결합한 것이나 금속을 피복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5606001000	짐프사(Gimped yarn)	0.0%	E0
5606002000	셔닐사(chenille yarn)	0.0%	E0
5606003000	루프웨일사(loop wale-yarn)	0.0%	E0
5606009000	기타	0.0%	E0
5607210000	포장용 끈	0.0%	E0
5607290000	기타	0.0%	E0
5607410000	포장용 끈	0.0%	E0
5607490000	기타	0.0%	E0
5607500000	그 밖의 합성섬유로 만든 것	0.0%	E0
5607901000	제 5303 호의 황마, 방직용 인피섬유로 만든 것	0.0%	E0
5607909000	기타	0.0%	E0
560811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0.0%	E0
5608119000	기타	0.0%	E0
560819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0.0%	E0
5608199000	기타	0.0%	E0
5608901000	면으로 만든 것	0.0%	E0
5608909000	기타	0.0%	E0
5609001000	면으로 만든 것	0.0%	E0
5609002000	식물성 섬유로 만든 것(면으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5609003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0.0%	E0
5609009000	기타	0.0%	E0
570110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0%	E0
570190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0%	E0
5702100000	켈렘(kelem)·슈맥(schumack)·카라마니(karamanie)와 이와 유사한 손으로 짠 러그(rug)	0.0%	E0
5702200000	코코넛섬유(코이어)로 만든 바닥깔개	0.0%	E0
57023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0%	E0
570232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0.0%	E0
57023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0%	E0
57024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0%	E0
570242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0.0%	E0
57024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0%	E0
5702500000	기타[파일(pile)직물로 만든 것과 제품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	0.0%	E0
57029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0%	E0
570292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0.0%	E0
57029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0%	E0
570310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0%	E0
5703200000	나일론이나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0.0%	E0
5703300000	그 밖의 인조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0%	E0
570390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0%	E0
5704100000	타일(tile)(표면적이 최고 0.3제곱미터인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5704200000	타일(tile)(표면적이 최고 0.3제곱미터 초과 1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5704900000	기타	0.0%	E0
5705000000	그 밖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바닥깔개(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5801101000	파일(pile)직물	0.0%	E0
5801102000	셔닐(chenille)직물	0.0%	E0
5801210000	절단되지 않은 위(緯)파일(pile)직물	0.0%	E0
5801220000	절단된 코듀로이(corduroy)	0.0%	E0
5801230000	그 밖의 위(緯)파일(pile)직물	0.0%	E0
5801260000	셔닐(chenille)직물	0.0%	E0
5801271000	절단되지 않은 것	0.0%	E0
5801272000	절단된 것	0.0%	E0
5801310000	절단되지 않은 위(緯)파일(pile)직물	0.0%	E0
5801320000	절단된 코듀로이(corduroy)	0.0%	E0
5801330000	그 밖의 위(緯)파일(pile)직물	0.0%	E0
5801360000	셔닐(chenille)직물	0.0%	E0
5801371000	절단되지 않은 것	0.0%	E0
5801372000	절단된 것	0.0%	E0
5801900000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0.0%	E0
5802110000	표백하지 않은 것	0.0%	E0
5802190000	기타	0.0%	E0
5802200000	그 밖의 섬유로 만든 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와 이와 유사한 테리(terry)직물	0.0%	E0
5802300000	터프트(tuft)한 직물	0.0%	E0
5803000000	거즈[제 5806 호에 해당하는 세폭(細幅)직물은 제외한다]	0.0%	E0
5804101000	견으로 만든 것	0.0%	E0
5804102000	면으로 만든 것	0.0%	E0
5804103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0.0%	E0
5804109000	기타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580421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0.0%	E0
5804291000	견으로 만든 것	0.0%	E0
5804292000	면으로 만든 것	0.0%	E0
5804299000	기타	0.0%	E0
5804300000	손으로 만든 레이스	0.0%	E0
5805001000	손으로 짠 태피스트리(tapestry)	0.0%	E0
5805002000	자수의 태피스트리(tapestry)	0.0%	E0
5806101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0%	E0
5806102000	면으로 만든 것	0.0%	E0
5806103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0.0%	E0
5806109000	기타	0.0%	E0
5806200000	그 밖의 직물(탄성사나 고무실의 중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5806310000	면으로 만든 것	0.0%	E0
580632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0.0%	E0
5806391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0%	E0
5806392000	식물성섬유(면은 제외한다)로 만든 것	0.0%	E0
5806399000	기타	0.0%	E0
5806400000	접착제로 접착한 경사(經絲)만으로 이루어진 세폭(細幅)직물(볼덕)	0.0%	E0
5807101000	레이블(label)	0.0%	E0
5807109000	기타	0.0%	E0
5807901000	레이블(label)	0.0%	E0
5807909000	기타	0.0%	E0
5808100000	브레이드(braid)(원단 상태로 한정한다)	0.0%	E0
5808901000	장식용 트리밍(trimming)	0.0%	E0
5808909000	기타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5809000000	금속사의 직물과 제5605호에 해당하는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의 직물(의류·실내용품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하며, 따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0.0%	E0
5810100000	자수천(바탕천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5810910000	면으로 만든 것	0.0%	E0
581092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0.0%	E0
58109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0%	E0
5811001000	견으로 만든 것	0.0%	E0
5811002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0%	E0
5811003000	면으로 만든 것	0.0%	E0
5811004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0.0%	E0
5811009000	기타	0.0%	E0
5901100000	서적 장정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서 검(gum)이나 전분질의 물품을 도포한 것	0.0%	E0
5901901000	투사포(tracing cloth)	0.0%	E0
5901902000	회화용 캔버스	0.0%	E0
5901903000	버크럼(buckram)과 이와 유사한 경화가공된 방직용 섬유의 직물	0.0%	E0
5902100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0.0%	E0
5902200000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0.0%	E0
5902900000	기타	0.0%	E0
5903100000	폴리(염화비닐)의 것	0.0%	E0
5903200000	폴리우레탄의 것	0.0%	E0
5903900000	기타	0.0%	E0
5904100000	리놀륨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5904900000	기타	0.0%	E0
5905000000	방직용 섬유로 만든 벽 피복재	0.0%	E0
5906100000	폭이 20 센티미터 이하인 접착테이프	0.0%	E0
5906910000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0.0%	E0
5906990000	기타	0.0%	E0
5907001000	건성유의 조제품이나 기름을 도포·침투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0.0%	E0
5907002000	극장용 배경이나 스튜디오용 배경막이나 이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그림이 그려진 캔버스	0.0%	E0
5907009000	기타	0.0%	E0
5908001000	심지	0.0%	E0
5908009000	기타	0.0%	E0
5909000000	방직용 섬유로 만든 호스와 이와 유사한 관 모양의 물품(다른 재료를 내장·보강한 것인지 또는 부속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0.0%	E0
5910000000	전동(transmission)용·컨베이어용 벨트와 벨팅(belting)(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 또는 금속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0%	E0
5911101000	세폭(細幅)직물로 만든 것	0.0%	E0
5911109000	기타	0.0%	E0
5911200000	볼팅 클로스(bolting cloth)(제품인지에 상관없다)	0.0%	E0
591131000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650 그램 미만인 것	0.0%	E0
591132000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650 그램 이상인 것	0.0%	E0
5911400000	착유기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여과포(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든 것을 포함한다)	0.0%	E0
5911900000	기타	0.0%	E0
6001101000	면으로 만든 것	0.0%	E0
6001102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6001109000	기타	0.0%	E0
6001210000	면으로 만든 것	0.0%	E0
600122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0.0%	E0
6001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0%	E0
6001910000	면으로 만든 것	0.0%	E0
600192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0.0%	E0
60019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0%	E0
6002400000	탄성사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 이상이며, 고무실은 함유하지 않은 것	0.0%	E0
6002900000	기타	0.0%	E0
600310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0%	E0
6003200000	면으로 만든 것	0.0%	E0
600330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0.0%	E0
6003400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0.0%	E0
6003900000	기타	0.0%	E0
6004100000	탄성사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 이상이며, 고무실은 함유하지 않은 것	0.0%	E0
6004900000	기타	0.0%	E0
6005210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0.0%	E0
6005220000	염색한 것	0.0%	E0
6005230000	서로 다른 색실의 것	0.0%	E0
6005240000	날염한 것	0.0%	E0
6005351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0.0%	E0
6005352000	염색한 것	0.0%	E0
6005353000	서로 다른 색실의 것	0.0%	E0
6005354000	날염한 것	0.0%	E0
6005360000	기타(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6005370000	기타(염색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6005380000	기타(서로 다른 색실의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6005390000	기타(날염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6005410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0.0%	E0
6005420000	염색한 것	0.0%	E0
6005430000	서로 다른 색실의 것	0.0%	E0
6005440000	날염한 것	0.0%	E0
6005900000	기타	0.0%	E0
600610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0%	E0
6006210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0.0%	E0
6006220000	염색한 것	0.0%	E0
6006230000	서로 다른 색실의 것	0.0%	E0
6006240000	날염한 것	0.0%	E0
6006310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0.0%	E0
6006320000	염색한 것	0.0%	E0
6006330000	서로 다른 색실의 것	0.0%	E0
6006340000	날염한 것	0.0%	E0
6006410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0.0%	E0
6006420000	염색한 것	0.0%	E0
6006430000	서로 다른 색실의 것	0.0%	E0
6006440000	날염한 것	0.0%	E0
6006900000	기타	0.0%	E0
6101200000	면으로 만든 것	0.0%	E0
610130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0.0%	E0
610130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0.0%	E0
610190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610210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0%	E0
6102200000	면으로 만든 것	0.0%	E0
610230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0.0%	E0
610230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0.0%	E0
610290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0%	E0
6103101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0%	E0
6103102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0.0%	E0
6103109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0%	E0
6103220000	면으로 만든 것	0.0%	E0
61032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0.0%	E0
6103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0%	E0
61033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0%	E0
6103320000	면으로 만든 것	0.0%	E0
61033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0.0%	E0
61033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0%	E0
61034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0%	E0
6103420000	면으로 만든 것	0.0%	E0
61034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5.0%	E0
61034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0%	E0
61041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0.0%	E0
6104191000	면으로 만든 것	0.0%	E0
6104199000	기타	0.0%	E0
6104220000	면으로 만든 것	0.0%	E0
61042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0.0%	E0
6104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0%	E0
61043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6104320000	면으로 만든 것	0.0%	E0
61043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0.0%	E0
61043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0%	E0
61044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0%	E0
6104420000	면으로 만든 것	0.0%	E0
61044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0.0%	E0
6104440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0.0%	E0
6104491000	견으로 만든 것	0.0%	E0
6104499000	기타	0.0%	E0
61045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0%	E0
6104520000	면으로 만든 것	0.0%	E0
61045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0.0%	E0
61045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0%	E0
61046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0%	E0
6104620000	면으로 만든 것	0.0%	E0
61046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0.0%	E0
61046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0%	E0
6105100000	면으로 만든 것	5.0%	E0
610520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5.0%	E0
610520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0.0%	E0
6105901000	견으로 만든 것	0.0%	E0
6105902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0%	E0
6105909000	기타	0.0%	E0
6106100000	면으로 만든 것	0.0%	E0
610620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0.0%	E0
610620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5.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6106901000	견으로 만든 것	0.0%	E0
6106902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0%	E0
6106909000	기타	0.0%	E0
6107110000	면으로 만든 것	0.0%	E0
610712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0.0%	E0
610712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0.0%	E0
61071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0%	E0
6107210000	면으로 만든 것	0.0%	E0
610722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0.0%	E0
610722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0.0%	E0
6107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0%	E0
6107910000	면으로 만든 것	0.0%	E0
6107991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0%	E0
6107999000	기타	0.0%	E0
610811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0.0%	E0
610811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0.0%	E0
6108191000	면으로 만든 것	0.0%	E0
6108199000	기타	0.0%	E0
6108210000	면으로 만든 것	0.0%	E0
610822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0.0%	E0
610822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0.0%	E0
6108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0%	E0
6108310000	면으로 만든 것	0.0%	E0
610832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0.0%	E0
610832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0.0%	E0
61083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6108910000	면으로 만든 것	0.0%	E0
610892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0.0%	E0
610892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0.0%	E0
6108991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0%	E0
6108999000	기타	0.0%	E0
6109101000	티셔츠	0.0%	E0
6109109000	기타	0.0%	E0
6109901010	티셔츠	0.0%	E0
6109901090	기타	0.0%	E0
6109902010	티셔츠	0.0%	E0
6109902090	기타	0.0%	E0
6109903010	티셔츠	5.0%	E0
6109903090	기타	0.0%	E0
6109909010	티셔츠	0.0%	E0
6109909090	기타	0.0%	E0
6110110000	양모로 만든 것	0.0%	E0
6110120000	캐시미어 산양의 털로 만든 것	0.0%	E0
6110190000	기타	0.0%	E0
6110200000	면으로 만든 것	5.0%	E0
611030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0.0%	E0
611030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0.0%	E0
6110901000	견으로 만든 것	0.0%	E0
6110909000	기타	0.0%	E0
6111201000	의류	0.0%	E0
6111202000	부속품	0.0%	E0
6111301000	의류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6111302000	부속품	0.0%	E0
6111901000	의류	0.0%	E0
6111902000	부속품	0.0%	E0
6112110000	면으로 만든 것	0.0%	E0
611212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0.0%	E0
61121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0%	E0
6112201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0.0%	E0
6112209000	기타	0.0%	E0
611231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0.0%	E0
61123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0%	E0
611241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0.0%	E0
61124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0%	E0
6113001000	제 5903 호의 것	0.0%	E0
6113002000	제 5906 호의 것	0.0%	E0
6113003000	제 5907 호의 것	0.0%	E0
6114200000	면으로 만든 것	0.0%	E0
611430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0.0%	E0
611430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0.0%	E0
6114901000	견으로 만든 것	0.0%	E0
6114909000	기타	0.0%	E0
6115100000	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	0.0% / 5.0%	E0
611521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구성하는 단사가 67 데시텍스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611522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구성하는 단사가 67 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6115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0%	E0
6115301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6115309000	기타	0.0%	E0
611594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0%	E0
6115950000	면으로 만든 것	0.0%	E0
611596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0.0%	E0
61159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0%	E0
6116100000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하거나 피복한 것	0.0%	E0
61169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0%	E0
6116921000	작업용 장갑	0.0%	E0
6116929000	기타	0.0%	E0
61169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0.0%	E0
61169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0%	E0
6117101000	견으로 만든 것	0.0%	E0
6117102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0%	E0
6117103000	면으로 만든 것	0.0%	E0
6117104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0.0%	E0
6117109000	기타	0.0%	E0
6117801000	넥타이류	0.0%	E0
6117809000	기타	0.0%	E0
6117900000	부분품	0.0%	E0
62011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0%	E0
6201120000	면으로 만든 것	0.0%	E0
620113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0.0%	E0
620113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0.0%	E0
62011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0%	E0
62019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0%	E0
6201920000	면으로 만든 것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620193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0.0%	E0
620193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0.0%	E0
62019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0%	E0
62021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5.0%	E0
6202120000	면으로 만든 것	0.0%	E0
620213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0.0%	E0
620213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0.0%	E0
62021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0%	E0
62029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0%	E0
6202920000	면으로 만든 것	0.0%	E0
620293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0.0%	E0
620293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0.0%	E0
62029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0%	E0
62031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5.0%	E0
620312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0.0%	E0
62031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0%	E0
6203220000	면으로 만든 것	0.0%	E0
62032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0.0%	E0
6203291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0%	E0
6203299000	기타	0.0%	E0
62033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5.0%	E0
6203320000	면으로 만든 것	5.0%	E0
62033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0.0%	E0
62033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0%	E0
62034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5.0%	E0
6203421000	데님의 것(청바지를 포함한다)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6203429000	기타	0.0%	E0
62034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0.0%	E0
62034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0%	E0
62041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5.0%	E0
6204120000	면으로 만든 것	0.0%	E0
62041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0.0%	E0
6204191000	견으로 만든 것	0.0%	E0
6204199000	기타	0.0%	E0
62042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0%	E0
6204220000	면으로 만든 것	0.0%	E0
62042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0.0%	E0
6204291000	견으로 만든 것	0.0%	E0
6204299000	기타	0.0%	E0
62043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5.0%	E0
6204320000	면으로 만든 것	5.0%	E0
62043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0.0%	E0
6204391000	견으로 만든 것	0.0%	E0
6204399000	기타	0.0%	E0
62044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0%	E0
6204420000	면으로 만든 것	0.0%	E0
62044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0.0%	E0
6204440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0.0%	E0
6204491000	견으로 만든 것	0.0%	E0
6204499000	기타	0.0%	E0
62045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5.0%	E0
6204520000	면으로 만든 것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62045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0.0%	E0
6204591000	견으로 만든 것	0.0%	E0
6204599000	기타	0.0%	E0
62046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5.0%	E0
6204621000	데님의 것(청바지를 포함한다)	0.0%	E0
6204629000	기타	5.0%	E0
62046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0.0%	E0
6204691000	견으로 만든 것	0.0%	E0
6204699000	기타	0.0%	E0
6205200000	면으로 만든 것	5.0%	E0
620530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0.0%	E0
620530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0.0%	E0
6205901000	견으로 만든 것	0.0%	E0
6205902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0%	E0
6205909000	기타	0.0%	E0
6206100000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0.0%	E0
620620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0%	E0
6206300000	면으로 만든 것	0.0%	E0
620640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0.0%	E0
620640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0.0%	E0
620690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0%	E0
6207110000	면으로 만든 것	0.0%	E0
6207191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0.0%	E0
6207199000	기타	0.0%	E0
6207210000	면으로 만든 것	0.0%	E0
620722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620722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0.0%	E0
6207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0%	E0
6207910000	면으로 만든 것	0.0%	E0
6207991000	견으로 만든 것	0.0%	E0
6207992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0%	E0
6207993010	합성섬유로 만든 것	0.0%	E0
620799302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0.0%	E0
6207999000	기타	0.0%	E0
620811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0.0%	E0
620811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0.0%	E0
6208191000	견으로 만든 것	0.0%	E0
6208192000	면으로 만든 것	0.0%	E0
6208199000	기타	0.0%	E0
6208210000	면으로 만든 것	0.0%	E0
620822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0.0%	E0
620822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0.0%	E0
6208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0%	E0
6208910000	면으로 만든 것	0.0%	E0
620892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0.0%	E0
620892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0.0%	E0
6208991000	견으로 만든 것	0.0%	E0
6208992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0%	E0
6208999000	기타	0.0%	E0
6209201000	의류	0.0%	E0
6209202000	부속품	0.0%	E0
6209301000	의류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6209302000	부속품	0.0%	E0
620990101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0%	E0
6209901090	기타	0.0%	E0
6209902000	부속품	0.0%	E0
6210101000	제 5602 호의 직물로 만든 것	0.0%	E0
6210102000	제 5603 호의 직물로 만든 것	0.0%	E0
6210201000	제 5903 호의 직물로 만든 것	0.0%	E0
6210202000	제 5906 호의 직물로 만든 것	0.0%	E0
6210203000	제 5907 호의 직물로 만든 것	0.0%	E0
6210301000	제 5903 호의 직물로 만든 것	0.0%	E0
6210302000	제 5906 호의 직물로 만든 것	0.0%	E0
6210303000	제 5907 호의 직물로 만든 것	0.0%	E0
6210401000	제 5903 호의 직물로 만든 것	0.0%	E0
6210402000	제 5906 호의 직물로 만든 것	0.0%	E0
6210403000	제 5907 호의 직물로 만든 것	0.0%	E0
6210501000	제 5903 호의 직물로 만든 것	0.0%	E0
6210502000	제 5906 호의 직물로 만든 것	0.0%	E0
6210503000	제 5907 호의 직물로 만든 것	0.0%	E0
6211111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0.0%	E0
6211119000	기타	0.0%	E0
6211121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0.0%	E0
6211129000	기타	0.0%	E0
6211201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0.0%	E0
6211209000	기타	0.0%	E0
6211321000	유도, 태권도와 그 밖의 동양 무술복	0.0%	E0
6211329000	기타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621133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0.0%	E0
621133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0.0%	E0
6211391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0%	E0
6211399000	기타	0.0%	E0
6211421000	유도, 태권도와 그 밖의 동양 무술복	0.0%	E0
6211429000	기타	0.0%	E0
621143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0.0%	E0
621143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0.0%	E0
6211491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0%	E0
6211499000	기타	0.0%	E0
6212101000	면으로 만든 것	0.0%	E0
6212102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0.0%	E0
6212109000	기타	5.0%	E0
6212201000	면으로 만든 것	0.0%	E0
6212202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0.0%	E0
6212209000	기타	0.0%	E0
6212300000	코르슬렛(corselette)	0.0%	E0
6212900000	기타	0.0%	E0
6213200000	면으로 만든 것	0.0%	E0
621390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0%	E0
6214100000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5.0%	E0
621420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0%	E0
621430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0.0%	E0
6214400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0.0%	E0
621490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0%	E0
6215100000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621520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0.0%	E0
621590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0%	E0
6216001000	플라스틱·고무를 침투, 도포, 피복한 것	0.0%	E0
6216009000	기타	5.0%	E0
6217100000	부속품	0.0%	E0
6217900000	부분품	0.0%	E0
6301100000	전기모포	0.0%	E0
630120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모포(전기모포는 제외한다)와 여행용 러그(rug)	0.0%	E0
6301300000	면으로 만든 모포(전기모포는 제외한다)와 여행용 러그(rug)	0.0%	E0
6301400000	합성섬유로 만든 모포(전기모포는 제외한다)와 여행용 러그(rug)	0.0%	E0
6301900000	그 밖의 모포와 여행용 러그(rug)	0.0%	E0
6302101000	면으로 만든 것	0.0%	E0
6302109000	기타	0.0%	E0
6302210000	면으로 만든 것	0.0%	E0
630222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0.0%	E0
6302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0%	E0
6302310000	면으로 만든 것	0.0%	E0
630232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0.0%	E0
63023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0%	E0
6302400000	테이블린넨(table linen)(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0.0%	E0
6302510000	면으로 만든 것	0.0%	E0
630253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0.0%	E0
63025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0%	E0
6302600000	면으로 만든 토일렛린넨(toilet linen)과 주방린넨(kitchen linen)[테리타월지(terry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towelling fabric)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테리(terry)직물의 것으로 한정한다]		
6302910000	면으로 만든 것	0.0%	E0
630293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0.0%	E0
63029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0%	E0
630312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0.0%	E0
6303191000	면으로 만든 것	0.0%	E0
6303199000	기타	0.0%	E0
6303910000	면으로 만든 것	0.0%	E0
630392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0.0%	E0
63039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0%	E0
6304110000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	0.0%	E0
6304190000	기타	0.0%	E0
6304200000	베드 네트(이 류의 소호주 제 1 호에 규정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6304910000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	0.0%	E0
6304920000	면으로 만든 것(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0.0%	E0
63049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0.0%	E0
63049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0.0%	E0
6305100000	황마나 제 5303 호의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靭皮)섬유로 만든 것	0.0%	E0
6305200000	면으로 만든 것	0.0%	E0
6305320000	중간 벌크컨테이너(신축성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6305330000	기타[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 스트립(strip)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6305390000	기타	0.0%	E0
630590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0%	E0
630612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0.0%	E0
63061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0%	E0
630622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0.0%	E0
6306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0%	E0
6306300000	돛	0.0%	E0
6306401000	면으로 만든 것	0.0%	E0
6306409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0%	E0
6306901000	면으로 만든 것	0.0%	E0
6306902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0.0%	E0
6306909000	기타	0.0%	E0
6307100000	마루닦이포·접시닦이포·더스터(duster)와 이와 유사한 청소용 포	0.0%	E0
6307200000	구명재킷과 구명벨트	0.0%	E0
6307901000	신발류 끈	0.0%	E0
6307902000	보자기	0.0%	E0
6307903000	드레스 패턴(dress pattern)	0.0%	E0
6307909000	기타	0.0%	E0
6308000000	러그(rug)용·태피스트리(tapestry)용·자수한 테이블보용·서비에트(serviette)용 직물이나 실로 구성된 세트(부속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와 유사한 방직용 섬유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0.0%	E0
6309000000	사용하던 의류와 그 밖의 사용하던 물품	0.0%	E0
6310100000	선별한 것	0.0%	E0
6310900000	기타	0.0%	E0
6401100000	보호용 금속 토캡(toe-cap)을 넣은 신발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6401921000	스키부츠	0.0%	E0
6401929010	고무로 만든 것	0.0%	E0
6401929090	기타	0.0%	E0
6401991010	고무로 만든 것	0.0%	E0
6401991090	기타	0.0%	E0
6401999000	기타	0.0%	E0
6402120000	스키부츠·크로스컨트리스키화·스노보드부츠	0.0%	E0
6402190000	기타	0.0%	E0
6402200000	신발[갑피(甲皮)끈을 플러그(plug) 삽입식으로 바닥에 조립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6402911000	방한화	0.0%	E0
6402912000	테니스화·농구화·체조화·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	0.0%	E0
6402919000	기타	0.0%	E0
6402991000	샌들이나 이와 유사한 신발로서 주조에 의하여 단일체로 제조된 것	0.0%	E0
6402992000	테니스화·농구화·체조화·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	0.0%	E0
6402999000	기타	0.0%	E0
6403120000	스키부츠·크로스컨트리스키화·스노보드부츠	0.0%	E0
6403190000	기타	0.0%	E0
6403200000	신발류[바깥 바닥을 가죽으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발등과 엄지발가락의 주위를 감싸는 가죽끈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6403400000	그 밖의 신발류[보호용 금속 토캡(toe-cap)을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6403511000	드레스화	0.0%	E0
6403519000	기타	0.0%	E0
6403591000	드레스화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6403599000	기타	0.0%	E0
6403911000	드레스화	0.0%	E0
6403912000	등산화	0.0%	E0
6403913000	편상화(lace-boots)	0.0%	E0
6403914000	테니스화·농구화·체조화·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	0.0%	E0
6403919000	기타	0.0%	E0
6403991000	드레스화	0.0%	E0
6403992000	등산화	0.0%	E0
6403993000	편상화(lace-boots)	0.0%	E0
6403994000	테니스화·농구화·체조화·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	0.0%	E0
6403999000	기타	0.0%	E0
6404110000	스포츠용 신발류, 테니스화·농구화·체조화·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	0.0%	E0
6404191000	실내화	0.0%	E0
6404199000	기타	0.0%	E0
6404201000	실내화	0.0%	E0
6404209000	기타	0.0%	E0
6405100000	갑피(甲皮)를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	0.0%	E0
6405200000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0.0%	E0
6405900000	기타	0.0%	E0
6406101000	갑피	0.0%	E0
6406102000	부분품	0.0%	E0
6406201000	바깥바닥	0.0%	E0
6406202000	뒷굽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6406901000	목재로 만든 것	0.0%	E0
6406909010	갈아 끼울수 있는 안창	0.0%	E0
6406909020	힐 쿠션	0.0%	E0
6406909030	각반	0.0%	E0
6406909040	레깅	0.0%	E0
6406909090	기타	0.0%	E0
6501000000	모체(hat-form)[펠트(felt)로 만든 성형하지 않은 것으로서 차양을 붙이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펠트(felt)로 만든 플래토우(plateaux)와 망숑(manchon)[슬릿망숑(slit manchon)을 포함한다]	0.0%	E0
6502000000	모체(hat-shape)[각종 재료로 만든 스트립(strip)을 엮거나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서 미성형인 것, 차양을 붙이지 않은 것, 안을 대지 않거나 장식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6504000000	모자[각종 재료로 만든 스트립(strip)을 엮거나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안을 댄 것인지 또는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0%	E0
6505001000	헤어네트	0.0%	E0
6505009011	합성섬유로 만든 것	0.0%	E0
6505009019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0.0%	E0
6505009021	운동모	0.0%	E0
6505009022	베레모	0.0%	E0
6505009029	기타	0.0%	E0
6505009090	기타	0.0%	E0
6506100000	안전모자	0.0%	E0
6506910000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0.0%	E0
6506991000	가죽으로 만든 것	0.0%	E0
6506992000	금속으로 만든 것	0.0%	E0
6506999000	기타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6507000000	헤드밴드・내장재・커버・모자의 파운데이션(foundation)・모자의 프레임(frame)・챙・턱끈	0.0%	E0
6601100000	정원용 산류(傘類)나 이와 유사한 산류(傘類)	0.0%	E0
6601910000	대가 절첩식(折疊式)인 것	0.0%	E0
6601991000	지팡이 겸용 우산	0.0%	E0
6601992000	양산	0.0%	E0
6601999000	기타	0.0%	E0
6602001000	지팡이	0.0%	E0
6602002000	시트스틱(seat-stick)	0.0%	E0
6602003000	채찍・승마용 채찍	0.0%	E0
6602009000	기타	0.0%	E0
6603200000	산류(傘類)의 틀(대에 부착된 틀을 포함한다)	0.0%	E0
6603900000	기타	0.0%	E0
6701000000	새의 깃털이나 솜털이 붙은 가죽과 그 밖의 부분・깃털과 그 부분・솜털과 이들의 제품[제 0505 호의 물품과 가공한 깃대(scape)・깃촉(quill)은 제외한다]	0.0%	E0
6702100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0.0%	E0
6702901000	직물로 만든 것	0.0%	E0
6702902000	종이로 만든 것	0.0%	E0
6702909000	기타	0.0%	E0
6703001010	세척・정돈한 것	0.0%	E0
6703001090	기타	0.0%	E0
6703009000	기타	0.0%	E0
6704110000	전체가발	0.0%	E0
6704191000	부분가발	0.0%	E0
6704192000	가수염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6704193000	가눈썹	0.0%	E0
6704194000	가속눈썹	0.0%	E0
6704199000	기타	0.0%	E0
6704201000	전체가발	0.0%	E0
6704202000	부분가발	0.0%	E0
6704203000	가수염	0.0%	E0
6704204000	가눈썹	0.0%	E0
6704205000	가속눈썹	0.0%	E0
6704209000	기타	0.0%	E0
6704900000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0.0%	E0
6801000000	포석·연석·판석[천연 석재로 한정하며, 슬레이트(slate)는 제외한다]	0.0%	E0
6802100000	타일·큐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사각형인지에 상관없으며 최대 표면적이 한 변이 7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로 한정한다), 인공적으로 착색한 알갱이·조각·가루	0.0%	E0
6802211000	대리석	0.0%	E0
6802212000	트래버틴(travertine)	0.0%	E0
6802213000	설화석고(alabaster)	0.0%	E0
6802230000	화강암	0.0%	E0
6802291000	그 밖의 석회질 암석	0.0%	E0
6802299000	기타	0.0%	E0
6802911000	대리석	0.0%	E0
6802912000	트래버틴(travertine)	0.0%	E0
6802913000	설화석고(alabaster)	0.0%	E0
6802920000	그 밖의 석회질 암석	0.0%	E0
6802930000	화강암	0.0%	E0
6802990000	그 밖의 돌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6803001000	벼루	0.0%	E0
6803009000	기타	0.0%	E0
6804100000	밀스톤(millstone)과 그라인드스톤(grindstone)[밀링(milling)용·그라인딩(grinding)용·펄핑(pulping)용으로 한정한다]	0.0%	E0
6804210000	합성·천연 다이아몬드로 만든 것(응결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6804220000	그 밖의 연마재료로 만든 것(응결된 것으로 한정한다)이나 도자제의 것	0.0%	E0
6804230000	천연석으로 만든 것	0.0%	E0
6804300000	수지석(手砥石)	0.0%	E0
6805100000	방직용 섬유의 직물만을 기본 재료로 한 것	0.0%	E0
6805200000	종이나 판지만을 기본 재료로 한 것	0.0%	E0
6805300000	그 밖의 재료를 기본 재료로 한 것	0.0%	E0
6806101000	슬래그 울(slag wool)	0.0%	E0
6806102000	암면(rock wool)	0.0%	E0
6806103000	세라믹 파이버	0.0%	E0
6806109000	기타	0.0%	E0
6806201000	박리한 버미큐라이트(vermiculite)	0.0%	E0
6806202000	팽창점토	0.0%	E0
6806204000	팽창퍼라이트	0.0%	E0
6806209000	기타	0.0%	E0
6806901000	내화피복재	0.0%	E0
6806909000	기타	0.0%	E0
6807100000	롤 모양인 것	0.0%	E0
6807900000	기타	0.0%	E0
6808000000	패널·보드·타일·블록과 이와 유사한 물품[식물성 섬유·짚·목재의 대팻밥·칩·파티클(particle)·톱밥이나 그 밖의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웨이스트(waste)를 시멘트・플라스터(plaster)나 그 밖의 광물성 결합재로 응결시킨 것으로 한정한다]		
6809110000	종이나 판지만을 입혔거나 보강한 것	0.0%	E0
6809190000	기타	0.0%	E0
6809900000	그 밖의 제품	0.0%	E0
6810111000	블록	0.0%	E0
6810112000	벽돌	0.0%	E0
6810191000	타일	0.0%	E0
6810192000	판석	0.0%	E0
6810193000	기와(지붕타일)	0.0%	E0
6810199000	기타	0.0%	E0
6810910000	조립식 건축자재(건축용이나 토목 공사용으로 한정한다)	0.0%	E0
6810991000	빔(beam)과 거더(girder)	0.0%	E0
6810992000	파일	0.0%	E0
6810993000	전신주	0.0%	E0
6810994000	철도 받침목	0.0%	E0
6810995000	관	0.0%	E0
6810999000	기타	0.0%	E0
6811401010	지붕・천장・벽과 바닥재용	0.0%	E0
6811401090	기타	0.0%	E0
6811402010	지붕・천장・벽과 바닥재용	0.0%	E0
6811402090	기타	0.0%	E0
6811403000	관・관의 연결구류	0.0%	E0
6811409010	지붕・천장・벽과 바닥재용	0.0%	E0
6811409090	기타	0.0%	E0
6811810000	물결 모양의 시트(sheet)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6811820000	그 밖의 시트(sheet)·패널·타일과 이와 유사한 제품	0.0%	E0
6811891000	관·관의 연결구류	0.0%	E0
6811899000	기타	0.0%	E0
6812801000	의류·의류부속품·신발·모자류	0.0%	E0
6812803000	압축가공한 시트(sheet) 모양이나 롤 모양인 석면섬유 조인팅(jointing)	0.0%	E0
6812809000	기타	0.0%	E0
6812910000	의류·의류 부속품·신발·모자류	0.0%	E0
6812920000	종이·표지용 판지·펠트(felt)	0.0%	E0
6812930000	압축가공한 시트(sheet) 모양이나 롤 모양인 석면섬유 조인팅(jointing)	0.0%	E0
6812990000	기타	0.0%	E0
6813201010	자동차용	0.0%	E0
6813201090	기타	0.0%	E0
6813202000	클러치 페이싱	0.0%	E0
6813209010	자동차용	0.0%	E0
6813209090	기타	0.0%	E0
6813810000	브레이크 라이닝(brake lining)과 패드	0.0%	E0
6813891000	클러치 페이싱	0.0%	E0
6813899000	기타	0.0%	E0
6814100000	판·시트(sheet)·스트립(strip)(응결시키거나 재생한 운모의 것으로 한정하며 지지물에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0%	E0
6814900000	기타	0.0%	E0
6815101000	비전기용 흑연제품	0.0%	E0
6815102000	탄소섬유	0.0%	E0
6815109000	기타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6815200000	이탄(泥炭)제품	0.0%	E0
6815910000	마그네사이트・백운석・크로마이트를 함유한 것	0.0%	E0
6815990000	기타	0.0%	E0
6901001000	벽돌	0.0%	E0
6901002000	블록	0.0%	E0
6901003000	타일	5.0%	E0
6901009010	슬래브와 패널	0.0%	E0
6901009090	기타	0.0%	E0
6902100000	마그네슘・칼슘・크로뮴 원소를 산화마그네슘・산화칼슘・산화크로뮴으로 표현하였을 때 하나 이상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는 것	0.0%	E0
6902200000	알루미나・실리카, 이들의 혼합물이나 화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는 것	0.0%	E0
6902901000	탄화규소나 지르콘을 기본 재료로 한 것	0.0%	E0
6902909000	기타	0.0%	E0
6903101000	레토르트(retort)	0.0%	E0
6903102010	반도체 웨이퍼(wafer) 제조에 사용되는 노(爐)용	0.0%	E0
6903102090	기타	0.0%	E0
6903103000	반응그릇	0.0%	E0
6903104000	머플	0.0%	E0
6903105000	노즐	0.0%	E0
6903106000	플러그(plug)	0.0%	E0
6903107000	관(管)	0.0%	E0
6903108000	막대(bar, rod)	0.0%	E0
6903109000	기타	0.0%	E0
6903201000	레토르트(retort)	0.0%	E0
6903202000	도가니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6903203000	반응그릇	0.0%	E0
6903204000	머플	0.0%	E0
6903205000	노즐	0.0%	E0
6903206000	플러그(plug)	0.0%	E0
6903207000	관(管)	0.0%	E0
6903208000	막대(bar, rod)	0.0%	E0
6903209000	기타	0.0%	E0
6903901000	탄화규소나 지르콘을 기본 재료로 한 것	0.0%	E0
6903909010	레토르트(retort)	0.0%	E0
6903909020	도가니	0.0%	E0
6903909030	반응그릇	0.0%	E0
6903909040	머플	0.0%	E0
6903909050	노즐	0.0%	E0
6903909060	플러그(plug)	0.0%	E0
6903909070	관(管)	0.0%	E0
6903909080	막대(bar, rod)	0.0%	E0
6903909090	기타	0.0%	E0
6904100000	건축용 벽돌	0.0%	E0
6904900000	기타	0.0%	E0
6905100000	기와(지붕타일)	0.0%	E0
6905901000	굴뚝통・굴뚝갓・굴뚝용 내장재	0.0%	E0
6905902000	건축용 장식품	0.0%	E0
6905909000	기타	0.0%	E0
6906001000	관(管)・도관(導管)・홈통	0.0%	E0
6906002000	관의 연결구류	0.0%	E0
6907210000	수분흡수계수가 중량기준으로 100 분의 0.5 이하인 것	0.0% / 5.0%	E3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6907221000	수분흡수계수가 중량기준으로 100 분의 0.5 초과 100 분의 3 이하인 것	0.0% / 5.0%	E3
6907229000	기타	0.0% / 5.0%	E3
6907230000	수분흡수계수가 중량기준으로 100 분의 10 초과인 것	0.0% / 5.0%	E3
6907301000	자기제의 것	0.0% / 5.0%	E3
6907309000	기타	0.0% / 5.0%	E3
6907401000	자기제의 것	0.0% / 5.0%	E3
6907409000	기타	0.0% / 5.0%	E3
6909110000	자기제의 것	5.0%	E0
6909120000	모스 경도가 9 이상인 물품	0.0%	E0
6909190000	기타	0.0%	E0
6909900000	기타	0.0%	E0
6910101000	세면대	5.0%	E3
6910102000	목욕통	0.0%	E0
6910103000	수세식 변기통	5.0%	E3
6910104000	소변기	0.0%	E0
6910109000	기타	0.0%	E0
6910900000	기타	0.0%	E0
6911101000	커피 세트·티세트	0.0%	E0
6911102000	공기, 대접과 접시	0.0%	E0
6911109000	기타	0.0%	E0
6911901000	가정용품	0.0%	E0
6911902000	화장용품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6911909000	기타	0.0%	E0
6912001010	커피 세트・티세트	0.0%	E0
6912001020	공기, 대접과 접시	0.0%	E0
6912001090	기타	0.0%	E0
6912002000	가정용품	0.0%	E0
6912003000	화장용품	0.0%	E0
6912009000	기타	0.0%	E0
6913101000	조각상・작은 소각상・흉상	0.0%	E0
6913109020	식탁장식용품	0.0%	E0
6913109090	기타	0.0%	E0
6913901000	조각상・작은 소각상・흉상	0.0%	E0
6913909020	식탁장식용품	0.0%	E0
6913909090	기타	0.0%	E0
6914101000	화분	0.0%	E0
6914109000	기타	0.0%	E0
6914901000	화분	0.0%	E0
6914909000	기타	0.0%	E0
7001001000	괴(塊)	0.0%	E0
7001002000	웨이스트(waste)・스크랩(scrap), 깨진 유리	0.0%	E0
7002100000	구(球)	0.0%	E0
7002201000	반도체 제조용으로서 석영제품(quartz ware) 제조에 사용되는 것	0.0%	E0
7002209000	기타	0.0%	E0
7002311000	반도체 제조용으로서 석영제품(quartz ware) 제조에 사용되는 것	0.0%	E0
7002319000	기타	0.0%	E0
7002320000	선팽창계수가 섭씨 0 도에서 300 도의 범위 내에서 1 켈빈온도당 1 백만분의 5 를 초과하지 않는 그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밖의 유리로 만든 것		
7002390000	기타	0.0%	E0
7003121000	두께가 2밀리미터 이하인 것	0.0%	E0
7003122000	두께가 2밀리미터 초과 3밀리미터 이하인 것	0.0%	E0
7003123000	두께가 3밀리미터 초과 4밀리미터 이하인 것	0.0%	E0
7003124000	두께가 4밀리미터 초과 5밀리미터 이하인 것	0.0%	E0
7003125000	두께가 5밀리미터 초과 6밀리미터 이하인 것	0.0%	E0
7003126000	두께가 6밀리미터 초과 8밀리미터 이하인 것	0.0%	E0
7003127000	두께가 8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0%	E0
7003191000	두께가 2밀리미터 이하인 것	0.0%	E0
7003192000	두께가 2밀리미터 초과 3밀리미터 이하인 것	0.0%	E0
7003193000	두께가 3밀리미터 초과 4밀리미터 이하인 것	0.0%	E0
7003194000	두께가 4밀리미터 초과 5밀리미터 이하인 것	0.0%	E0
7003195000	두께가 5밀리미터 초과 6밀리미터 이하인 것	0.0%	E0
7003196000	두께가 6밀리미터 초과 8밀리미터 이하인 것	0.0%	E0
7003197000	두께가 8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0%	E0
7003200000	망입(網入) 시트(sheet) 유리	0.0%	E0
7003300000	프로파일(profile)	0.0%	E0
7004201000	두께가 2밀리미터 이하인 것	0.0%	E0
7004202000	두께가 2밀리미터 초과 3밀리미터 이하인 것	0.0%	E0
7004203000	두께가 3밀리미터 초과 4밀리미터 이하인 것	0.0%	E0
7004204000	두께가 4밀리미터 초과 5밀리미터 이하인 것	0.0%	E0
7004205000	두께가 5밀리미터 초과 6밀리미터 이하인 것	0.0%	E0
7004206000	두께가 6밀리미터 초과 8밀리미터 이하인 것	0.0%	E0
7004207000	두께가 8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0%	E0
7004901000	두께가 2밀리미터 이하인 것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7004902000	두께가 2밀리미터 초과 3밀리미터 이하인 것	0.0%	E0
7004903000	두께가 3밀리미터 초과 4밀리미터 이하인 것	0.0%	E0
7004904000	두께가 4밀리미터 초과 5밀리미터 이하인 것	0.0%	E0
7004905000	두께가 5밀리미터 초과 6밀리미터 이하인 것	0.0%	E0
7004906000	두께가 6밀리미터 초과 8밀리미터 이하인 것	0.0%	E0
7004907000	두께가 8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0%	E0
7005101010	두께가 4밀리미터 이하인 것	0.0%	E0
7005101020	두께가 4밀리미터 초과 6밀리미터 이하인 것	0.0%	E0
7005101030	두께가 6밀리미터 초과 8밀리미터 이하인 것	0.0%	E0
7005101040	두께가 8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0%	E0
7005102010	두께가 4밀리미터 이하인 것	0.0%	E0
7005102020	두께가 4밀리미터 초과 6밀리미터 이하인 것	0.0%	E0
7005102030	두께가 6밀리미터 초과 8밀리미터 이하인 것	0.0%	E0
7005102040	두께가 8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0%	E0
7005109010	두께가 4밀리미터 이하인 것	0.0%	E0
7005109020	두께가 4밀리미터 초과 6밀리미터 이하인 것	0.0%	E0
7005109030	두께가 6밀리미터 초과 8밀리미터 이하인 것	0.0%	E0
7005109040	두께가 8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0%	E0
7005211000	두께가 2밀리미터 이하인 것	0.0%	E0
7005212000	두께가 2밀리미터 초과 3밀리미터 이하인 것	5.0%	E0
7005213000	두께가 3밀리미터 초과 4밀리미터 이하인 것	5.0%	E0
7005214000	두께가 4밀리미터 초과 5밀리미터 이하인 것	0.0%	E0
7005215000	두께가 5밀리미터 초과 6밀리미터 이하인 것	0.0%	E0
7005216000	두께가 6밀리미터 초과 8밀리미터 이하인 것	0.0%	E0
7005217010	두께가 10밀리미터 이하인 것	0.0%	E0
7005217020	두께가 10밀리미터 초과 12밀리미터 이하인 것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7005217030	두께가 12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0%	E0
7005291010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용	0.0%	E0
7005291020	반도체나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블랭크마스크(blank mask)용	0.0%	E0
7005291030	유기발광 디스플레이 패널용	0.0%	E0
7005291040	액정 디스플레이용	0.0%	E0
7005291091	맑은 유리	0.0%	E0
7005291092	저철분 유리	0.0%	E0
7005291099	기타	0.0%	E0
7005292010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용	0.0%	E0
7005292020	반도체나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블랭크마스크(blank mask)용	0.0%	E0
7005292030	유기발광 디스플레이 패널용	0.0%	E0
7005292091	맑은 유리	0.0%	E0
7005292092	저철분 유리	0.0%	E0
7005292099	기타	0.0%	E0
7005293010	맑은 유리	0.0%	E0
7005293020	저철분 유리	0.0%	E0
7005293090	기타	0.0%	E0
7005294010	맑은 유리	0.0%	E0
7005294020	저철분 유리	0.0%	E0
7005294090	기타	0.0%	E0
7005295010	맑은 유리	0.0%	E0
7005295020	저철분 유리	0.0%	E0
7005295090	기타	0.0%	E0
7005296010	맑은 유리	0.0%	E0
7005296020	저철분 유리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7005296090	기타	0.0%	E0
7005297010	맑은 유리	0.0%	E0
7005297020	저철분 유리	0.0%	E0
7005297090	기타	0.0%	E0
7005298010	맑은 유리	0.0%	E0
7005298020	저철분 유리	0.0%	E0
7005298090	기타	0.0%	E0
7005299010	맑은 유리	0.0%	E0
7005299020	저철분 유리	0.0%	E0
7005299090	기타	0.0%	E0
7005300000	망입(網入) 유리	0.0%	E0
7006001000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용	0.0%	E0
7006002000	반도체나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블랭크마스크(blank mask)용	0.0%	E0
7006003000	유기발광 디스플레이 패널용	0.0%	E0
7006004000	액정 디스플레이용	0.0%	E0
7006009000	기타	0.0%	E0
7007111000	두께가 8 밀리미터 이하인 것	0.0%	E0
7007112000	두께가 8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0%	E0
7007191000	두께가 8 밀리미터 이하인 것	0.0%	E0
7007192000	두께가 8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0%	E0
7007211000	두께가 12 밀리미터 이하인 것(필름 두께를 포함한다)	0.0%	E0
7007212000	두께가 12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필름 두께를 포함한다)	0.0%	E0
7007291000	두께가 12 밀리미터 이하인 것(필름 두께를 포함한다)	0.0%	E0
7007292000	두께가 12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필름 두께를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포함한다)		
7008000000	유리로 만든 복층 절연유닛	0.0%	E0
7009100000	백미러(차량용으로 한정한다)	0.0%	E0
7009910000	틀이 붙지 않은 것	0.0%	E0
7009920000	틀이 붙은 것	0.0%	E0
7010100000	앰플	0.0%	E0
7010200000	마개·뚜껑과 그 밖의 마개류	0.0%	E0
7010900000	기타	0.0%	E0
7011100000	전등용	0.0%	E0
7011201000	천연색용	0.0%	E0
7011209000	기타	0.0%	E0
7011900000	기타	0.0%	E0
7013100000	유리 도자제의 것	0.0%	E0
7013220000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0.0%	E0
7013280000	기타	0.0%	E0
7013330000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0.0%	E0
7013370000	기타	0.0%	E0
7013410000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0.0%	E0
7013420000	선팽창계수가 섭씨 0 도에서 300 도의 범위 내에서 1 켈빈온도당 백만분의 5 를 초과하지 않는 유리로 만든 것	0.0%	E0
7013490000	기타	0.0%	E0
7013910000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0.0%	E0
7013990000	기타	0.0%	E0
7014001000	실드빔 램프(sealed beam lamp)의 것	0.0%	E0
7014009010	신호용 유리제품	0.0%	E0
7014009020	유리로 만든 광학소자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7015100000	시력교정용 안경유리	0.0%	E0
7015901000	선글라스용	0.0%	E0
7015902000	시계용 유리와 이와 유사한 것	0.0%	E0
7015909000	기타	0.0%	E0
7016100000	유리로 만든 입방체와 그 밖의 유리 세공품(뒷면을 보강한지에 상관없으며 모자이크용이나 이와 유사한 장식용으로 한정한다)	0.0%	E0
7016901000	압축하거나 주형한 유리로 만든 포장(鋪裝)용 블록·슬래브·벽돌·스퀘어(square)·타일과 그 밖의 제품[망입(網入)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건축용이나 건설용으로 한정한다]	0.0%	E0
7016909010	레드라이트(leaded light)	0.0%	E0
7016909020	스테인드글라스(stained glass)	0.0%	E0
7016909090	기타	0.0%	E0
7017100000	석영유리 또는 용융실리카로 만든 것	0.0%	E0
7017200000	선팽창계수가 섭씨 0도에서 300도의 범위 내에서 1켈빈온도당 백만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그 밖의 유리로 만든 것	0.0%	E0
7017900000	기타	0.0%	E0
7018101000	비드(bead)	0.0%	E0
7018102000	모조 진주	0.0%	E0
7018103000	모조 귀석과 반귀석	0.0%	E0
7018104000	모조 산호	0.0%	E0
7018109000	기타	0.0%	E0
7018200000	1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유리로 만든 마이크로스피어(microsphere)	0.0%	E0
7018901000	유리안구(인체용은 제외한다)	0.0%	E0
7018909000	기타	0.0%	E0
7019110000	단연사(길이가 50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7019120000	로빙(roving)	0.0%	E0
7019190000	기타	0.0%	E0
7019310000	매트(mat)	0.0%	E0
7019320000	얇은 시트(sheet)(보일)	0.0%	E0
7019390000	기타	0.0%	E0
7019400000	로빙(roving) 직물	0.0%	E0
7019510000	폭이 30 센티미터 이하인 것	0.0%	E0
7019520000	폭이 30 센티미터 초과인 것(평직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50 그램 미만이며, 구성하는 단사가 136 텍스 이하의 필라멘트인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7019590000	기타	0.0%	E0
7019901000	글라스울(glass wool)	0.0%	E0
7019909000	기타	0.0%	E0
7020001011	반도체 웨이퍼(wafer) 제조용으로 확산로(擴散爐)와 산화로(酸化爐)에 삽입할 수 있도록 고안된 석영 리액터(reactor) 튜브와 홀더	0.0%	E0
7020001012	반도체 웨이퍼(wafer) 제조에 사용되는 노(爐)용 석영 도가니	0.0%	E0
7020001013	반도체 제조용으로서 석영제품(quartz ware) 제조에 사용되는 것	0.0%	E0
7020001019	기타	0.0%	E0
7020001090	기타	0.0%	E0
7020009000	기타	0.0%	E0
7101101000	가공하지 않은 것	0.0%	E0
7101102000	가공한 것	0.0%	E0
7101210000	가공하지 않은 것	0.0%	E0
7101220000	가공한 것	0.0%	E0
7102100000	선별하지 않은 것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7102210000	원석(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쪼갠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7102290000	기타	0.0%	E0
7102310000	원석(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쪼갠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7102390000	기타	0.0%	E0
7103100000	원석, 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거칠게 성형한 것	0.0%	E0
7103911000	공업용	0.0%	E0
7103919010	루비	0.0%	E0
7103919020	사파이어	0.0%	E0
7103919030	에메랄드	0.0%	E0
7103991000	공업용	0.0%	E0
7103999010	오팔	0.0%	E0
7103999020	비취	0.0%	E0
7103999030	옥수(玉髓)	0.0%	E0
7103999040	수정	0.0%	E0
7103999090	기타	0.0%	E0
7104100000	압전기용 석영	0.0%	E0
7104201000	다이아몬드	0.0%	E0
7104209000	기타	0.0%	E0
7104901010	다이아몬드	0.0%	E0
7104901020	인조수정	0.0%	E0
7104901090	기타	0.0%	E0
7104909010	다이아몬드	0.0%	E0
7104909090	기타	0.0%	E0
7105101000	천연의 것	0.0%	E0
7105102000	합성한 것	0.0%	E0
7105901000	석류석의 것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7105909000	기타	0.0%	E0
7106100000	가루	0.0%	E0
7106911000	은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9.99 이상인 것	0.0%	E0
7106919000	기타	0.0%	E0
7106921000	막대(bar, rod)와 형재(形材)	0.0%	E0
7106922000	판・시트(sheet)・스트립(strip)	0.0%	E0
7106923000	선	0.0%	E0
7106929000	기타	0.0%	E0
7107001000	막대(bar, rod)와 형재(形材)	0.0%	E0
7107002000	판・시트(sheet)・스트립(strip)	0.0%	E0
7107003000	선	0.0%	E0
7107004000	관(管)과 중공(中空)봉	0.0%	E0
7107009000	기타	0.0%	E0
7108110000	가루	0.0%	E0
7108121000	럼프(lump)・빌릿(billet)・알갱이	0.0%	E0
7108129000	기타	0.0%	E0
7108131010	반도체 제조용	0.0%	E0
7108131090	기타	0.0%	E0
7108139010	막대(bar, rod)와 형재(形材)	0.0%	E0
7108139020	판・시트(sheet)・스트립(strip)	0.0%	E0
7108139090	기타	0.0%	E0
7108200000	화폐용	0.0%	E0
7109000000	금을 입힌 비금속(卑金屬)이나 은(반가공한 것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7110110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0.0%	E0
7110190000	기타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7110210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0.0%	E0
7110290000	기타	0.0%	E0
7110310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0.0%	E0
7110390000	기타	0.0%	E0
7110410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0.0%	E0
7110490000	기타	0.0%	E0
7111000000	백금을 입힌 비금속(卑金屬)·은·금(반가공한 것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7112300000	귀금속이나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회(灰)	0.0%	E0
7112911000	잔재물의 것	0.0%	E0
7112919000	기타	0.0%	E0
7112921000	잔재물의 것	0.0%	E0
7112929000	기타	0.0%	E0
7112991000	잔재물의 것	0.0%	E0
7112992000	플라스틱의 웨이스트(waste)·페어링(paring)·스크랩(scrap)의 것	0.0%	E0
7112999000	기타	0.0%	E0
7113110000	은으로 만든 것(그 밖의 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0.0%	E0
7113191000	백금으로 만든 것	0.0%	E0
7113192000	금으로 만든 것	0.0%	E0
7113199000	기타	0.0%	E0
7113201000	백금을 입힌 것	0.0%	E0
7113202000	금을 입힌 것	0.0%	E0
7113203000	은을 입힌 것	0.0%	E0
7113209000	기타	0.0%	E0
7114111000	식탁용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7114112000	화장실용	0.0%	E0
7114113000	사무실용이나 책상용	0.0%	E0
7114114000	끽연용	0.0%	E0
7114119000	기타	0.0%	E0
7114191000	식탁용	0.0%	E0
7114193000	사무실용이나 책상용	0.0%	E0
7114199000	기타	0.0%	E0
7114201000	식탁용	0.0%	E0
7114203000	사무실용이나 책상용	0.0%	E0
7114204000	끽연용	0.0%	E0
7114209000	기타	0.0%	E0
7115100000	촉매제[백금으로 만든 와이어 클로스(wire cloth)나 그릴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7115901010	백금 도가니	0.0%	E0
7115901090	기타	0.0%	E0
7115909010	금으로 만든 것(금을 입힌 금속을 포함한다)	0.0%	E0
7115909020	은으로 만든 것(은을 입힌 금속을 포함한다)	0.0%	E0
7115909090	기타	0.0%	E0
7116101000	천연진주로 만든 것	0.0%	E0
7116102000	양식진주로 만든 것	0.0%	E0
7116201000	공업용	0.0%	E0
7116209010	신변장식용	0.0%	E0
7116209090	기타	0.0%	E0
7117110000	커프링크(cuff-link)와 장식용 단추	0.0%	E0
7117191000	목걸이	0.0%	E0
7117192000	팔찌	0.0%	E0
7117193000	귀걸이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7117194000	브로치	0.0%	E0
7117195000	반지	0.0%	E0
7117196000	신변장식용 체인	0.0%	E0
7117199000	기타	0.0%	E0
7117900000	기타	0.0%	E0
7118100000	주화(금화는 제외한다)로서 법정통화가 아닌 것	0.0%	E0
7118901000	금화	0.0%	E0
7118902000	은화	0.0%	E0
7118909000	기타	0.0%	E0
7201101000	주물용	0.0%	E0
7201102000	제강용	0.0%	E0
7201109000	기타	0.0%	E0
7201200000	비합금선철(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5 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7201500000	합금선철과 스피그라이즌(spiegeleisen)	0.0%	E0
7202110000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2 를 초과하는 것	0.0%	E0
7202190000	기타	0.0%	E0
7202210000	실리콘의 함유량이 100 분의 55 를 초과하는 것	0.0%	E0
7202291000	마그네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2 이상인 것	0.0%	E0
7202299000	기타	0.0%	E0
7202300000	페로실리코망간(ferro-silico-manganese)	0.0%	E0
7202410000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4 를 초과하는 것	0.0%	E0
7202490000	기타	0.0%	E0
7202500000	페로실리코크로뮴(ferro-silico-chromium)	0.0%	E0
7202600000	페로니켈(ferro-nickel)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7202700000	페로몰리브데늄(ferro-molybdenum)	0.0%	E0
7202800000	페로텅스텐(ferro-tungsten)과 페로실리코텅스텐(ferro-silico-tungsten)	0.0%	E0
7202910000	페로티타늄(ferrotitanium)과 페로실리코티타늄(ferro-silico-titanium)	0.0%	E0
7202920000	페로바나듐(ferro-vanadium)	0.0%	E0
7202930000	페로니오븀(ferro-niobium)	0.0%	E0
7202991000	인철(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1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7202999000	기타	0.0%	E0
7203100000	철광석을 직접 환원하여 제조한 철제품	0.0%	E0
7203900000	기타	0.0%	E0
7204100000	주철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0%	E0
7204210000	스테인리스강의 것	0.0%	E0
7204290000	기타	0.0%	E0
7204300000	주석을 도금한 철강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0%	E0
7204410000	선삭(旋削)·세이빙(shaving)·칩·밀링 웨이스트(milling waste)·톱밥·파일링(filing)·트리밍(trimming)·스탬핑(stamping)(번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0.0%	E0
7204490000	기타	0.0%	E0
7204500000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scrap ingot)	0.0%	E0
7205101000	숏(shot)	0.0%	E0
7205102000	그릿(grit)	0.0%	E0
7205109000	기타	0.0%	E0
7205210000	합금강의 것	0.0%	E0
7205290000	기타	0.0%	E0
7206100000	잉곳(ingot)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7206900000	기타	0.0%	E0
7207111000	블룸(bloom)	0.0%	E0
7207112000	빌릿(billet)	0.0%	E0
7207121000	슬래브	0.0%	E0
7207122000	시트바(sheet bar)	0.0%	E0
7207190000	기타	0.0%	E0
7207201000	블룸(bloom)	0.0%	E0
7207202000	빌릿(billet)	0.0%	E0
7207203000	슬래브	0.0%	E0
7207209000	기타	0.0%	E0
7208101000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인 것	0.0%	E0
7208109000	두께가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0.0%	E0
7208251000	인장강도가 49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0%	E0
7208259000	기타	0.0%	E0
7208261000	인장강도가 49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0%	E0
7208269000	기타	0.0%	E0
7208271000	인장강도가 49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0%	E0
7208279000	기타	0.0%	E0
7208361000	인장강도가 49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0%	E0
7208369000	기타	0.0%	E0
7208371000	인장강도가 49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0%	E0
7208379000	기타	0.0%	E0
7208381000	인장강도가 49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0%	E0
7208389000	기타	0.0%	E0
7208391000	인장강도가 49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0%	E0
7208399000	기타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7208400000	코일 모양이 아닌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부조(浮彫)된 무늬가 있는 것	0.0%	E0
7208511000	인장강도가 49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0%	E0
7208519000	기타	0.0%	E0
7208521000	인장강도가 49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0%	E0
7208529000	기타	0.0%	E0
7208531000	인장강도가 49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0%	E0
7208539000	기타	0.0%	E0
7208541000	인장강도가 49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0%	E0
7208549000	기타	0.0%	E0
7208900000	기타	0.0%	E0
7209151000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0%	E0
7209159000	기타	0.0%	E0
7209161000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0%	E0
7209169000	기타	0.0%	E0
7209171000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0%	E0
7209179000	기타	0.0%	E0
7209181000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0%	E0
7209189000	기타	0.0%	E0
7209251000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0%	E0
7209259000	기타	0.0%	E0
7209261000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0%	E0
7209269000	기타	0.0%	E0
7209271000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0%	E0
7209279000	기타	0.0%	E0
7209281000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0%	E0
7209289000	기타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7209900000	기타	0.0%	E0
7210110000	두께가 0.5 밀리미터 이상인 것	0.0%	E0
7210120000	두께가 0.5 밀리미터 미만인 것	0.0%	E0
7210200000	납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함석판을 포함한다)	0.0%	E0
7210301000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0%	E0
7210309000	기타	0.0%	E0
7210410000	물결 모양의 것	0.0%	E0
7210491010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0%	E0
7210491090	기타	0.0%	E0
7210499010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0%	E0
7210499090	기타	0.0%	E0
7210500000	산화크로뮴이나 크로뮴과 산화크로뮴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0.0%	E0
7210610000	알루미늄-아연 합금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0.0%	E0
7210690000	기타	0.0%	E0
7210701000	두께가 4.75mm 이상의 것	0.0%	E0
7210702000	두께가 4.75mm 미만의 것	0.0%	E0
7210901000	니켈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0.0%	E0
7210902000	구리를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0.0%	E0
7210909000	기타	0.0%	E0
7211130000	4 면을 압연한 것이나 크로스드박스패스(closed box pass)로 한 것(폭이 150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두께가 4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코일 모양인 것과 부조(浮彫)된 무늬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	0.0%	E0
7211141000	인장강도가 49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0%	E0
7211149000	기타	0.0%	E0
7211191000	인장강도가 49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7211199000	기타	0.0%	E0
7211231000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0%	E0
7211239000	기타	0.0%	E0
7211291000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0%	E0
7211299000	기타	0.0%	E0
7211901000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0%	E0
7211909000	기타	0.0%	E0
7212101000	두께가 0.5 밀리미터 이상인 것	0.0%	E0
7212102000	두께가 0.5 밀리미터 미만인 것	0.0%	E0
7212201000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0%	E0
7212209000	기타	0.0%	E0
7212301010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0%	E0
7212301090	기타	0.0%	E0
7212309010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0%	E0
7212309090	기타	0.0%	E0
7212401000	두께가 4.75mm 이상인 것	0.0%	E0
7212402000	두께가 4.75mm 미만인 것	0.0%	E0
7212501000	니켈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0.0%	E0
7212502000	구리를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0.0%	E0
7212509000	기타	0.0%	E0
7212600000	클래드(clad)한 것	0.0%	E0
7213100000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모양의 마디・리브(rib)・홈이나 그 밖의 모양으로 된 것	0.0%	E0
7213200000	기타[쾌삭강(快削鋼)의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7213911010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25 이상인 것	0.0%	E0
7213911090	기타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7213919000	기타	0.0%	E0
7213991010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25 이상인 것	0.0%	E0
7213991090	기타	0.0%	E0
7213999000	기타	0.0%	E0
7214100000	단조(鍛造)한 것	0.0%	E0
7214201000	철근	0.0%	E0
7214209000	기타	0.0%	E0
7214300000	기타[쾌삭강(快削鋼)의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7214910000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정사각형인 것은 제외한다)	0.0%	E0
7214991000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6 미만인 것	0.0%	E0
7214999000	기타	0.0%	E0
7215100000	쾌삭강(快削鋼)의 것[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7215500000	기타[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7215900000	기타	0.0%	E0
7216101000	유(U)형강	0.0%	E0
7216102000	아이(I)형강	0.0%	E0
7216103000	에이치(H)형강	0.0%	E0
7216210000	엘(L)형강	0.0%	E0
7216220000	티(T)형강	0.0%	E0
7216310000	유(U)형강	0.0%	E0
7216320000	아이(I)형강	0.0%	E0
7216333000	높이가 300 밀리미터 미만인 것	0.0%	E0
7216334000	높이가 300 밀리미터 이상 600 밀리미터 이하인 것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7216335000	높이가 60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0%	E0
7216401000	엘(L)형강	0.0%	E0
7216402000	티(T)형강	0.0%	E0
7216500000	그 밖의 형강[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7216610000	평판압연제품으로부터 만든 것	0.0%	E0
7216690000	기타	0.0%	E0
7216910000	평판압연제품으로부터 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한 것	0.0%	E0
7216990000	기타	0.0%	E0
7217100000	도금하거나 도포하지 않은 것(연마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0%	E0
7217200000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0.0%	E0
7217301000	구리를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0.0%	E0
7217309000	기타	0.0%	E0
7217900000	기타	0.0%	E0
7218101000	잉곳(ingot)	0.0%	E0
7218109000	기타	0.0%	E0
7218911000	슬래브	0.0%	E0
7218912000	시트바(sheet bar)	0.0%	E0
7218919000	기타	0.0%	E0
7218991000	블룸(bloom)	0.0%	E0
7218992000	빌릿(billet)	0.0%	E0
7218999000	기타	0.0%	E0
7219111010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3% 이상인 것	0.0%	E0
7219111090	기타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7219119000	기타	0.0%	E0
7219121010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3% 이상인 것	0.0%	E0
7219121090	기타	0.0%	E0
7219129000	기타	0.0%	E0
7219131010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3% 이상인 것	0.0%	E0
7219131090	기타	0.0%	E0
7219139000	기타	0.0%	E0
7219141010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3% 이상인 것	0.0%	E0
7219141090	기타	0.0%	E0
7219149000	기타	0.0%	E0
7219211010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3% 이상인 것	0.0%	E0
7219211090	기타	0.0%	E0
7219219000	기타	0.0%	E0
7219221010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3% 이상인 것	0.0%	E0
7219221090	기타	0.0%	E0
7219229000	기타	0.0%	E0
7219231010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3% 이상인 것	0.0%	E0
7219231090	기타	0.0%	E0
7219239000	기타	0.0%	E0
7219241010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3% 이상인 것	0.0%	E0
7219241090	기타	0.0%	E0
7219249000	기타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7219311010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3% 이상인 것	0.0%	E0
7219311090	기타	0.0%	E0
7219319000	기타	0.0%	E0
7219321010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3% 이상인 것	0.0%	E0
7219321090	기타	0.0%	E0
7219329000	기타	0.0%	E0
7219331010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3% 이상인 것	0.0%	E0
7219331090	기타	0.0%	E0
7219339000	기타	0.0%	E0
7219341010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3% 이상인 것	0.0%	E0
7219341090	기타	0.0%	E0
7219349000	기타	0.0%	E0
7219351010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3% 이상인 것	0.0%	E0
7219351090	기타	0.0%	E0
7219359000	기타	0.0%	E0
7219901010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3% 이상인 것	0.0%	E0
7219901090	기타	0.0%	E0
7219909000	기타	0.0%	E0
7220111010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3% 이상인 것	0.0%	E0
7220111090	기타	0.0%	E0
7220119000	기타	0.0%	E0
7220121010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3%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이상인 것		
7220121090	기타	0.0%	E0
7220129000	기타	0.0%	E0
7220201010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3% 이상인 것	0.0%	E0
7220201090	기타	0.0%	E0
7220209000	기타	0.0%	E0
7220901010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3% 이상인 것	0.0%	E0
7220901090	기타	0.0%	E0
7220909000	기타	0.0%	E0
7221000000	스테인리스강의 봉[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7222110000	횡단면이 원형인 것	0.0%	E0
7222190000	기타	0.0%	E0
7222200000	봉[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7222300000	그 밖의 봉	0.0%	E0
7222400000	형강(形鋼)	0.0%	E0
7223000000	스테인리스강의 선(線)	0.0%	E0
7224101000	잉곳(ingot)	0.0%	E0
7224109000	기타	0.0%	E0
7224901000	블룸(bloom)	0.0%	E0
7224902000	빌릿(billet)	0.0%	E0
7224903000	슬래브	0.0%	E0
7224904000	시트바(sheet bar)	0.0%	E0
7224909000	기타	0.0%	E0
7225110000	방향성(方向性)인 것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7225190000	기타	0.0%	E0
7225301000	고속도강의 것	0.0%	E0
7225309010	인장강도가 49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0%	E0
7225309091	붕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0008 이상의 것으로서 두께가 4.75㎜ 이상의 것	0.0%	E0
7225309092	붕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0008 이상의 것으로서 두께가 4.75㎜ 미만의 것	0.0%	E0
7225309099	기타	0.0%	E0
7225401000	고속도강의 것	0.0%	E0
7225409010	인장강도가 49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0%	E0
7225409091	붕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0008 이상의 것으로서 두께가 4.75㎜ 이상의 것	0.0%	E0
7225409092	붕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0008 이상의 것으로서 두께가 4.75㎜ 미만의 것	0.0%	E0
7225409099	기타	0.0%	E0
7225501000	고속도강의 것	0.0%	E0
7225509000	기타	0.0%	E0
7225911000	고속도강의 것	0.0%	E0
7225919010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0%	E0
7225919090	기타	0.0%	E0
7225921000	고속도강의 것	0.0%	E0
7225929011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0%	E0
7225929019	기타	0.0%	E0
7225929091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0%	E0
7225929099	기타	0.0%	E0
7225991000	고속도강의 것	0.0%	E0
7225999000	기타	0.0%	E0
7226110000	방향성(方向性)인 것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7226190000	기타	0.0%	E0
7226200000	고속도강의 것	0.0%	E0
7226911000	붕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0008 이상의 것으로서 두께가 4.75㎜ 이상의 것	0.0%	E0
7226912000	붕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0008 이상의 것으로서 두께가 4.75㎜ 미만의 것	0.0%	E0
7226919000	기타	0.0%	E0
7226920000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0.0%	E0
7226991000	비정질 합금 박판(두께가 100 미크론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7226992000	아연을 전해도금이나 전해 도포한 것	0.0%	E0
7226993000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이나 도포한 것	0.0%	E0
7226999000	기타	0.0%	E0
7227100000	고속도강의 것	0.0%	E0
7227200000	실리코망간강의 것	0.0%	E0
7227901000	내열강의 것	0.0%	E0
7227909010	붕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0008 이상이고 전 중량의 100 분의 0.003 미만의 것	0.0%	E0
7227909020	붕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003 이상의 것	0.0%	E0
7227909090	기타	0.0%	E0
7228100000	고속도강의 봉	0.0%	E0
7228200000	실리코망간강의 봉	0.0%	E0
7228301000	붕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0008 이상의 것	0.0%	E0
7228309000	기타	0.0%	E0
7228401000	붕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0008 이상의 것	0.0%	E0
7228409000	기타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7228500000	그 밖의 봉[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7228601000	철근(붕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0008 이상의 것)	0.0%	E0
7228609000	기타	0.0%	E0
7228701010	붕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0008 이상의 것	0.0%	E0
7228701090	기타	0.0%	E0
7228709000	기타	0.0%	E0
7228800000	중공(中空)드릴봉	0.0%	E0
7229200000	실리코망간강의 것	0.0%	E0
7229901010	고속도강의 것	0.0%	E0
7229901090	기타	0.0%	E0
7229902010	고속도강의 것	0.0%	E0
7229902090	기타	0.0%	E0
7229909010	고속도강의 것	0.0%	E0
7229909090	기타	0.0%	E0
7301101000	유(U)형	0.0%	E0
7301109000	기타	0.0%	E0
7301201000	유(U)형강	0.0%	E0
7301202000	에이치(H)형강	0.0%	E0
7301203000	아이(I)형강	0.0%	E0
7301209000	기타	0.0%	E0
7302101010	열처리한 것	0.0%	E0
7302101090	기타	0.0%	E0
7302102010	열처리한 것	0.0%	E0
7302102090	기타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7302103010	열처리한 것	0.0%	E0
7302103090	기타	0.0%	E0
7302104010	열처리한 것	0.0%	E0
7302104090	기타	0.0%	E0
7302300000	스위치 블레이드(switch blade)·교차구류(crossing frog)·전철봉(point rod)과 그 밖의 크로싱피스(crossing piece)	0.0%	E0
7302400000	이음매판(fish-plate)과 받침판(sole plate)	0.0%	E0
7302900000	기타	0.0%	E0
7303001010	구상흑연 주철로 만든 것	0.0%	E0
7303001090	기타	0.0%	E0
7303002000	주철로 만든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	0.0%	E0
7304110000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	0.0%	E0
7304190000	기타	0.0%	E0
7304220000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드릴파이프	0.0%	E0
7304230000	그 밖의 드릴파이프	0.0%	E0
7304240000	기타(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7304290000	기타	0.0%	E0
7304310000	냉간인발(冷間引拔)하거나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0.0%	E0
7304390000	기타	0.0%	E0
7304410000	냉간인발(冷間引拔)하거나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0.0%	E0
7304490000	기타	0.0%	E0
7304510000	냉간인발(冷間引拔)하거나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0.0%	E0
7304590000	기타	0.0%	E0
7304900000	기타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7305111000	바깥지름이 406.4 밀리미터 초과 1,422.4 밀리미터 이하인 것	0.0%	E0
7305112000	바깥지름이 1,422.4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0%	E0
7305120000	기타(세로 방향으로 용접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7305190000	기타	0.0%	E0
7305200000	유정용이나 가스정용 케이싱	0.0%	E0
7305311000	서브머지드아크(submerged arc) 용접한 것	0.0%	E0
7305312000	전기저항 용접한것	0.0%	E0
7305319000	기타	0.0%	E0
7305390000	기타	0.0%	E0
7305900000	기타	0.0%	E0
7306110000	용접한 것(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7306190000	기타	0.0%	E0
7306211000	케이싱	0.0%	E0
7306212000	튜빙	0.0%	E0
7306291000	케이싱	0.0%	E0
7306292000	튜빙	0.0%	E0
7306301010	아연도금한 것	0.0%	E0
7306301020	아연 이외의 금속으로 도금이나 클래드한 것	0.0%	E0
7306301030	비금속으로 도포한 것	0.0%	E0
7306301090	기타	0.0%	E0
7306302010	아연도금한 것	0.0%	E0
7306302020	아연 이외의 금속으로 도금이나 클래드한 것	0.0%	E0
7306302030	비금속으로 도포한 것	0.0%	E0
7306302090	기타	0.0%	E0
7306401000	바깥지름이 114.3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7306402000	바깥지름이 114.3 밀리미터 이하인 것	0.0%	E0
7306500000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그 밖의 합금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7306611010	아연도금한 것	0.0%	E0
7306611090	기타	0.0%	E0
7306612000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	0.0%	E0
7306613000	그 밖의 합금강으로 만든 것	0.0%	E0
7306691010	아연도금한 것	0.0%	E0
7306691090	기타	0.0%	E0
7306692000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	0.0%	E0
7306693000	그 밖의 합금강으로 만든 것	0.0%	E0
7306901000	이중권(double wall) 강관	0.0%	E0
7306909000	기타	0.0%	E0
7307110000	비가단주철(非可鍛鑄鐵)로 만든 것	0.0%	E0
7307190000	기타	0.0%	E0
7307210000	플랜지(flange)	0.0%	E0
7307221000	나선 가공한 슬리브(sleeve)(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에 한정한다)	0.0%	E0
7307229000	기타	0.0%	E0
7307230000	버트(butt)용접용 연결구	0.0%	E0
7307290000	기타	0.0%	E0
7307910000	플랜지(flange)	0.0%	E0
7307921000	나선 가공한 슬리브(sleeve)(철강으로 만든 것에 한정한다)	0.0%	E0
7307929000	기타	0.0%	E0
7307930000	바트(butt)용접용 연결구	0.0%	E0
7307991000	나선가공한 것(도금여부에 상관없다)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7307999000	기타	0.0%	E0
7308100000	다리와 교량	0.0%	E0
7308200000	탑과 격자주(格子柱)	0.0%	E0
7308300000	문·창과 이들의 틀과 문지방	0.0%	E0
7308400000	비계(飛階)·차단기·지주·갱도 받침에 사용되는 기구	0.0%	E0
7308901000	수문	0.0%	E0
7308909000	기타	0.0%	E0
7309000000	철강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저장조·탱크·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냉각 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 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0%	E0
7310100000	용적이 50 리터 이상인 것	0.0%	E0
7310210000	납땜이나 크림핑(crimping)으로 봉합되는 통	0.0%	E0
7310290000	기타	0.0%	E0
7311001000	용적이 30 리터 이하인 것	0.0%	E0
7311002000	용적이 30 리터 초과 100 리터 이하인 것	0.0%	E0
7311003000	용적이 100 리터를 초과하는 것	0.0%	E0
7312101011	연결구류 부착한 것	0.0%	E0
7312101019	기타	0.0%	E0
7312101091	연결구류 부착한 것	0.0%	E0
7312101092	스틸타이어 코드	0.0%	E0
7312101099	기타	0.0%	E0
7312102011	연결구류 부착한 것	0.0%	E0
7312102019	기타	0.0%	E0
7312102091	연결구류 부착한 것	0.0%	E0
7312102092	스틸타이어 코드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7312102099	기타	0.0%	E0
7312900000	기타	0.0%	E0
7313001000	유자선(有刺銑)	0.0%	E0
7313009000	기타	0.0%	E0
7314120000	기계용 엔드리스 밴드(endless band)(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7314140000	그 밖의 직조한 클로스(cloth)(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7314190000	기타	0.0%	E0
7314200000	그릴・망・울타리[접점을 용접한 것으로 선의 횡단면의 최대치가 3 밀리미터 이상이고, 메시(mesh)의 크기가 100 제곱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7314310000	아연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0.0%	E0
7314390000	기타	0.0%	E0
7314410000	아연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0.0%	E0
7314420000	플라스틱으로 도포한 것	0.0%	E0
7314490000	기타	0.0%	E0
7314500000	익스팬디드 메탈(expanded metal)	0.0%	E0
7315110000	롤러체인(roller chain)	0.0%	E0
7315120000	그 밖의 체인	0.0%	E0
7315190000	부분품	0.0%	E0
7315200000	스키드체인(skid chain)	0.0%	E0
7315810000	스터드링크(stud-link)	0.0%	E0
7315820000	기타(용접한 링크의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7315890000	기타	0.0%	E0
7315900000	그 밖의 부분품	0.0%	E0
7316001000	닻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7316002000	부분품	0.0%	E0
7317001011	도금·도포· 페인트한 것	0.0%	E0
7317001019	기타	0.0%	E0
7317001021	도금·도포· 페인트한 것	0.0%	E0
7317001029	기타	0.0%	E0
7317002000	압정	0.0%	E0
7317003000	제도용과 사무용 핀	0.0%	E0
7317004000	파형 못	0.0%	E0
7317005000	스테이플	0.0%	E0
7317009000	기타	0.0%	E0
7318110000	코치 스크루(coach screw)	0.0%	E0
7318120000	그 밖의 목재용 스크루(screw)	0.0%	E0
7318130000	스크루 훅(screw hook)과 스크루 링(screw ring)	0.0%	E0
7318140000	셀프태핑 스크루(self-tapping screw)	0.0%	E0
7318151000	머신스크루(screw)	0.0%	E0
7318152000	볼트(bolt)	0.0%	E0
7318153000	볼트(bolt)·너트(nut)(세트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7318159000	기타	0.0%	E0
7318160000	너트(nut)	0.0%	E0
7318190000	기타	0.0%	E0
7318210000	스프링 와셔(spring washer)와 그 밖의 록 와셔(lock washer)	0.0%	E0
7318220000	그 밖의 와셔(washer)	0.0%	E0
7318230000	리벳(rivet)	0.0%	E0
7318240000	코터(cotter)와 코터핀(cotter-pin)	0.0%	E0
7318290000	기타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7319401000	안전핀	0.0%	E0
7319402000	반도체 웨이퍼·반도체 디바이스의 측정이나 검사에 사용되는 핀	0.0%	E0
7319409000	기타	0.0%	E0
7319901010	수봉침	0.0%	E0
7319901020	수편침	0.0%	E0
7319901090	기타	0.0%	E0
7319909000	기타	0.0%	E0
7320101000	자동차용 판상 스프링	8.0%	E0
7320102000	기관차·철도 차량용 판상 스프링	0.0%	E0
7320109000	기타	0.0%	E0
7320201000	자동차용	0.0%	E0
7320202000	충격 흡수용	0.0%	E0
7320203000	철도차량 연계완충기용	0.0%	E0
7320204000	가구용	0.0%	E0
7320209000	기타	0.0%	E0
7320901000	평나선형 스프링	0.0%	E0
7320909000	그 밖의 스프링	0.0%	E0
7321110000	가스연료용이나 가스와 그 밖의 연료 겸용	0.0%	E0
7321120000	액체연료용	0.0%	E0
7321190000	기타(고체연료용 기구를 포함한다)	0.0%	E0
7321810000	가스연료용이나 가스와 그 밖의 연료 겸용	0.0%	E0
7321820000	액체연료용	0.0%	E0
7321890000	기타(고체연료용 기구를 포함한다)	0.0%	E0
7321900000	부분품	0.0%	E0
7322111000	방열기	0.0%	E0
7322112000	부분품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7322191000	방열기	0.0%	E0
7322192000	부분품	0.0%	E0
7322901000	태양열 집열기와 그 부분품	0.0%	E0
7322909010	공기가열기	0.0%	E0
7322909020	온풍배분기	0.0%	E0
7322909030	부분품	0.0%	E0
7323100000	철강의 울, 철강으로 만든 용기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0.0%	E0
7323910000	주철로 만든 것으로 법랑제가 아닌 것	0.0%	E0
7323920000	주철로 만든 것으로 법랑제의 것	0.0%	E0
7323930000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	0.0%	E0
7323940000	철강(주철은 제외한다)으로 만든 것으로 법랑제의 것	0.0%	E0
7323990000	기타	0.0%	E0
7324101000	설거지통	0.0%	E0
7324102000	세면대	0.0%	E0
7324210000	주철로 만든 것(법랑제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0.0%	E0
7324291000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	0.0%	E0
7324299000	기타	0.0%	E0
7324901000	화장용 세트	0.0%	E0
7324908000	기타	0.0%	E0
7324909000	부분품	0.0%	E0
7325100000	비가단주철(非可鍛鑄鐵)로 만든 것	0.0%	E0
7325910000	분쇄기용 그라인딩볼(grinding ball)과 이와 유사한 물품	0.0%	E0
7325991000	주철로 만든 것	0.0%	E0
7325992000	주강으로 만든 것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7325993000	합금강으로 만든 것	0.0%	E0
7325999000	기타	0.0%	E0
7326110000	분쇄기용 그라인딩볼(grinding ball)과 이와 유사한 물품	0.0%	E0
7326190000	기타	0.0%	E0
7326200000	철강선으로 만든 제품	0.0%	E0
7326901000	방직기계용 보빈(bobbin)	0.0%	E0
7326909000	기타	0.0%	E0
7401001000	구리의 매트(mat)	0.0%	E0
7401002000	시멘트동(침전동)	0.0%	E0
7402001000	정제하지 않은 구리	0.0%	E0
7402002000	전해정제용 구리 양극	0.0%	E0
7403110000	음극과 음극의 형재	0.0%	E0
7403120000	와이어바(wire-bar)	0.0%	E0
7403130000	빌릿(billet)	0.0%	E0
7403191000	슬래브	0.0%	E0
7403192000	잉곳(ingot)	0.0%	E0
7403199000	기타	0.0%	E0
7403210000	구리-아연의 합금(황동)	0.0%	E0
7403220000	구리-주석의 합금(청동)	0.0%	E0
7403291010	구리-니켈의 합금(백동)	0.0%	E0
7403291020	구리-니켈-아연의 합금(양백)	0.0%	E0
7403299000	기타	0.0%	E0
7404000000	구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0%	E0
7405000000	구리의 모합금(master alloy)	0.0%	E0
7406100000	비(非)층상조직인 가루	0.0%	E0
7406201000	층상조직인 가루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7406202000	플레이크(flake)	0.0%	E0
7407100000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0.0%	E0
7407210000	구리-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황동)	0.0%	E0
7407291000	구리-주석 합금으로 만든 것(청동)	0.0%	E0
7407292010	구리-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백동)	0.0%	E0
7407292020	구리-니켈-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양백)	0.0%	E0
7407299000	기타	0.0%	E0
7408110000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6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5.0%	E3
7408190000	기타	0.0%	E0
7408210000	구리-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황동)	0.0%	E0
7408221000	구리-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백동)	0.0%	E0
7408222000	구리-니켈-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양백)	0.0%	E0
7408291000	구리-주석 합금으로 만든 것(청동)	0.0%	E0
7408299000	기타	0.0%	E0
7409111000	반도체 제조용	0.0%	E0
7409119000	기타	0.0%	E0
7409191000	반도체 제조용	0.0%	E0
7409199000	기타	0.0%	E0
7409211000	반도체 제조용	0.0%	E0
7409219000	기타	0.0%	E0
7409291000	반도체 제조용	0.0%	E0
7409299000	기타	0.0%	E0
7409311000	반도체 제조용	0.0%	E0
7409319000	기타	0.0%	E0
7409391000	반도체 제조용	0.0%	E0
7409399000	기타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7409401010	반도체 제조용	0.0%	E0
7409401090	기타	0.0%	E0
7409402010	반도체 제조용	0.0%	E0
7409402090	기타	0.0%	E0
7409901000	반도체 제조용	0.0%	E0
7409909000	기타	0.0%	E0
7410110000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0.0%	E0
7410120000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0.0%	E0
7410211000	인쇄회로판 제조에 적합한 모양인 것	0.0%	E0
7410219000	기타	0.0%	E0
7410221000	인쇄회로판 제조에 적합한 모양인 것	0.0%	E0
7410229000	기타	0.0%	E0
7411100000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0.0%	E0
7411210000	구리-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황동)	0.0%	E0
7411221000	구리-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백동)	0.0%	E0
7411222000	구리-니켈-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양백)	0.0%	E0
7411291000	구리-주석 합금으로 만든 것(청동)	0.0%	E0
7411299000	기타	0.0%	E0
7412100000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0.0%	E0
7412200000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0.0%	E0
7413000000	구리로 만든 연선·케이블·엮은 밴드와 이와 유사한 것(전기 절연한 것은 제외한다)	0.0%	E0
7415101000	귀금속을 도금·피복·도포한 것	0.0%	E0
7415109000	기타	0.0%	E0
7415210000	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	0.0%	E0
7415290000	기타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7415330000	스크루(screw), 볼트(bolt)와 너트(nut)	0.0%	E0
7415390000	기타	0.0%	E0
7418101000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0.0%	E0
7418109010	식탁용품 · 주방용품	0.0%	E0
7418109020	태양열 집열기(가정용에 사용되는 비전기식으로 한정한다)	0.0%	E0
7418109030	기타 가정용 물품	0.0%	E0
7418109091	태양열 집열기(가정용에 사용되는 비전기식으로 한정한다)용	0.0%	E0
7418109099	기타	0.0%	E0
7418201000	위생용품	0.0%	E0
7418202000	부분품	0.0%	E0
7419101000	체인	0.0%	E0
7419102000	부분품	0.0%	E0
7419910000	주조·주형·압착·단조(鍛造)된 것(이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7419991010	클로스(cloth)	0.0%	E0
7419991090	기타	0.0%	E0
7419992000	구리로 만든 스프링	0.0%	E0
7419999000	기타	0.0%	E0
7501100000	니켈의 매트(mat)	0.0%	E0
7501201010	니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8 이상인 것	0.0%	E0
7501201090	기타	0.0%	E0
7501209010	니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8 이상인 것	0.0%	E0
7501209090	기타	0.0%	E0
7502101000	음극	0.0%	E0
7502109000	기타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7502200000	니켈 합금	0.0%	E0
7503000000	니켈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0%	E0
7504001000	가루	0.0%	E0
7504002000	플레이크(flake)	0.0%	E0
7505110000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0.0%	E0
7505120000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0.0%	E0
7505210000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0.0%	E0
7505220000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0.0%	E0
7506101000	판・시트(sheet)・스트립	0.0%	E0
7506102000	박(箔)	0.0%	E0
7506201000	판・시트(sheet)・스트립	0.0%	E0
7506202000	박(箔)	0.0%	E0
7507110000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0.0%	E0
7507120000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0.0%	E0
7507200000	관(管) 연결구류	0.0%	E0
7508100000	니켈선으로 만든 클로스(cloth)・그릴・망	0.0%	E0
7508901000	전기도금용 양극	0.0%	E0
7508902010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0.0%	E0
7508902020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0.0%	E0
7508909000	기타	0.0%	E0
7601100000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	0.0%	E0
7601201000	캐스팅 얼로이(casting alloy)	0.0%	E0
7601202000	빌릿(billet)	0.0%	E0
7601209000	기타	0.0%	E0
7602000000	알루미늄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0%	E0
7603100000	비(非)층상조직인 가루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7603201000	가루	0.0%	E0
7603202000	플레이크(flake)	0.0%	E0
7604101000	봉	0.0%	E0
7604102010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	0.0%	E0
7604102090	기타	0.0%	E0
7604210000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	0.0%	E0
7604291000	봉	0.0%	E0
7604299000	그 밖의 프로파일(profile)	0.0%	E0
7605110000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7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0%	E0
7605190000	기타	0.0%	E0
7605210000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7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0%	E0
7605290000	기타	0.0%	E0
7606111000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9.99 이상인 것	0.0%	E0
7606119000	기타	0.0%	E0
7606120000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0.0%	E0
7606911000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9.99 이상인 것	0.0%	E0
7606919000	기타	0.0%	E0
7606920000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0.0%	E0
7607111000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9.99 이상인 것	0.0%	E0
7607119000	기타	0.0%	E0
7607191000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9.99 이상인 것	0.0%	E0
7607199000	기타	0.0%	E0
7607201000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9.99 이상인 것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7607209000	기타	0.0%	E0
7608100000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0.0%	E0
7608200000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0.0%	E0
7609000000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	0.0%	E0
7610100000	문·창과 이들의 틀과 문지방	0.0%	E0
7610901000	구조물	0.0%	E0
7610908000	기타	0.0%	E0
7610909000	부분품	0.0%	E0
7611000000	알루미늄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저장조·탱크·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냉각 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 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0%	E0
7612100000	연질의 튜브형 용기	0.0%	E0
7612901000	경질의 튜브형 용기	0.0%	E0
7612909010	용적이 1 리터 미만인 것	0.0%	E0
7612909020	용적이 1 리터 이상 20 리터 미만인 것	0.0%	E0
7612909030	용적이 20 리터 이상인 것	0.0%	E0
7613001000	압축가스용	0.0%	E0
7613002000	액화가스용	0.0%	E0
7614100000	철강심으로 되어 있는 것	0.0%	E0
7614900000	기타	0.0%	E0
7615101000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용(polishing)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0.0%	E0
7615109010	태양열 집열기와 그 부분품	0.0%	E0
7615109020	식탁용품 · 주방용품	0.0%	E0
7615109030	그 밖의 가정용 물품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7615109090	부분품	0.0%	E0
7615201000	위생용품	0.0%	E0
7615202000	부분품	0.0%	E0
7616100000	못・압정・스테이플(제 8305 호의 것은 제외한다)・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스크루 훅(screw hook)・리벳(rivet)・코터(cotter)・코터핀(cotter-pin)・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물품	0.0%	E0
7616910000	알루미늄선으로 만든 클로스(cloth)・그릴・망・울타리	0.0%	E0
7616991000	보빈(bobbin)	0.0%	E0
7616999010	알루미늄 파우치(pouch)	0.0%	E0
7616999020	알루미늄 노브(knob)	0.0%	E0
7616999090	기타	0.0%	E0
7801101000	납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9.99 이상인 것	0.0%	E0
7801109000	기타	0.0%	E0
7801910000	안티모니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주된 그 밖의 원소의 것	0.0%	E0
7801991000	정제하지 않은 납	0.0%	E0
7801992010	납-주석 합금	0.0%	E0
7801992090	기타	0.0%	E0
7802000000	납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0%	E0
7804111000	시트(sheet)・스트립	0.0%	E0
7804112000	박(箔)	0.0%	E0
7804190000	기타	0.0%	E0
7804201000	가루	0.0%	E0
7804202000	플레이크(flake)	0.0%	E0
7806001000	납으로 만든 용기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7806002000	전기도금용 양극	0.0%	E0
7806003010	봉	0.0%	E0
7806003020	프로파일(profile)	0.0%	E0
7806003030	선(線)	0.0%	E0
7806004000	관(管)과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	0.0%	E0
7806009000	기타	0.0%	E0
7901110000	아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인 것	0.0%	E0
7901120000	아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미만인 것	0.0%	E0
7901201000	아연-알루미늄 합금	0.0%	E0
7901209000	기타	0.0%	E0
7902000000	아연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0%	E0
7903100000	아연 더스트(dust)	0.0%	E0
7903901000	가루	0.0%	E0
7903902000	플레이크(flake)	0.0%	E0
7904001000	봉	0.0%	E0
7904002000	프로파일(profile)	0.0%	E0
7904003000	선(線)	0.0%	E0
7905001000	판·시트(sheet)·스트립	0.0%	E0
7905002000	박(箔)	0.0%	E0
7907001000	아연으로 만든 홈통·지붕덮개·채광 창틀과 그 밖의 가공한 건축용 재료	0.0%	E0
7907002010	관(管)	0.0%	E0
7907002020	관(管) 연결구류	0.0%	E0
7907009010	전기도금용 양극	0.0%	E0
7907009090	기타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8001100000	합금하지 않은 주석	0.0%	E0
8001200000	주석 합금	0.0%	E0
8002000000	주석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0%	E0
8003001010	합금하지 않은 것	0.0%	E0
8003001090	기타	0.0%	E0
8003002010	합금하지 않은 것	0.0%	E0
8003002090	기타	0.0%	E0
8007001000	전기도금용 양극	0.0%	E0
8007002000	판·쉬트(sheet) 및 스트립(두께가 0.2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8007003010	박(箔)	0.0%	E0
8007003021	가루	0.0%	E0
8007003022	플레이크(flake)	0.0%	E0
8007004000	관(管)과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	0.0%	E0
8007009000	기타	0.0%	E0
8101100000	가루	0.0%	E0
8101940000	괴(塊)[단순히 소결(燒結)로 얻어지는 봉을 포함한다]	0.0%	E0
8101961000	전구용이나 전자관용 스파이럴 필라멘트	0.0%	E0
8101969000	기타	0.0%	E0
8101970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0%	E0
8101991010	봉	0.0%	E0
8101991020	프로파일(profile)	0.0%	E0
8101991030	판·시트(sheet)·스트립	0.0%	E0
8101991040	박(箔)	0.0%	E0
8101999000	기타	0.0%	E0
8102100000	가루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8102940000	괴(塊)[단순히 소결(燒結)로 얻어지는 봉을 포함한다]	0.0%	E0
8102951000	봉	0.0%	E0
8102952000	프로파일(profile)	0.0%	E0
8102953000	판・시트(sheet)・스트립	0.0%	E0
8102954000	박(箔)	0.0%	E0
8102961000	전구용이나 전자관용 스파이럴 필라멘트	0.0%	E0
8102969000	기타	0.0%	E0
8102970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0%	E0
8102990000	기타	0.0%	E0
8103201000	괴(塊)	0.0%	E0
8103202000	가루	0.0%	E0
8103300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0%	E0
8103900000	기타	0.0%	E0
8104110000	마그네슘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9.8 이상인 것	0.0%	E0
8104190000	기타	0.0%	E0
8104200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0%	E0
8104301000	줄밥(rasping)・연삭설(turning)・알갱이	0.0%	E0
8104302000	가루	0.0%	E0
8104901000	봉	0.0%	E0
8104909000	기타	0.0%	E0
8105201000	괴(塊)	0.0%	E0
8105202000	코발트의 매트(mat)와 코발트 제련으로 생산된 그 밖의 중간생산물	0.0%	E0
8105203000	가루	0.0%	E0
8105300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0%	E0
8105900000	기타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8106001010	괴(塊)	0.0%	E0
810600102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0%	E0
8106001030	가루	0.0%	E0
8106009000	기타	0.0%	E0
8107201000	괴(塊)	0.0%	E0
8107202000	가루	0.0%	E0
8107300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0%	E0
8107900000	기타	0.0%	E0
8108201000	괴(塊)	0.0%	E0
8108202000	가루	0.0%	E0
8108300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0%	E0
8108901000	판과 스트립	0.0%	E0
8108902000	관	0.0%	E0
8108909000	기타	0.0%	E0
8109201000	괴(塊)	0.0%	E0
8109202000	가루	0.0%	E0
8109300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0%	E0
8109901010	관	0.0%	E0
8109901020	판・시트(sheet)・스트립	0.0%	E0
8109901030	봉	0.0%	E0
8109901090	기타	0.0%	E0
8109909000	기타	0.0%	E0
8110100000	안티모니의 괴(塊), 가루	0.0%	E0
8110200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0%	E0
8110900000	기타	0.0%	E0
8111000000	망간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8112120000	괴(塊), 가루	0.0%	E0
8112130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0%	E0
8112190000	기타	0.0%	E0
8112210000	괴(塊), 가루	0.0%	E0
8112220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0%	E0
8112290000	기타	0.0%	E0
8112510000	괴(塊), 가루	0.0%	E0
8112520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0%	E0
8112590000	기타	0.0%	E0
8112921000	게르마늄	0.0%	E0
8112922000	바나듐	0.0%	E0
8112923000	갈륨	0.0%	E0
8112924000	하프늄	0.0%	E0
8112925000	인듐	0.0%	E0
8112926000	니오븀(컬럼븀)	0.0%	E0
8112927000	레늄	0.0%	E0
8112929000	기타	0.0%	E0
8112991000	게르마늄	0.0%	E0
8112992000	바나듐	0.0%	E0
8112993000	갈륨	0.0%	E0
8112994000	하프늄	0.0%	E0
8112995000	인듐	0.0%	E0
8112996000	니오븀(컬럼븀)	0.0%	E0
8112997000	레늄	0.0%	E0
8112999000	기타	0.0%	E0
8113000000	서멧(cermet)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8201100000	가래와 삽	0.0%	E0
8201300000	곡괭이・픽스(picks)・괭이・쇠스랑	0.0%	E0
8201400000	도끼・빌훅(bill hook)과 이와 유사한 절단용 도구	0.0%	E0
8201500000	전정가위와 이와 유사한 한손용 전정가위[가금(家禽)용 가위를 포함한다]	0.0%	E0
8201600000	울타리 전단기(剪斷機)・양손용 전지가위와 이와 유사한 양손용 전지가위	0.0%	E0
8201901000	낫	0.0%	E0
8201904000	포크	0.0%	E0
8201909000	기타	0.0%	E0
8202101000	목재용	0.0%	E0
8202102000	금속용	0.0%	E0
8202109000	기타	0.0%	E0
8202200000	띠톱의 날	0.0%	E0
8202310000	작용하는 부분을 강(鋼)으로 만든 것	0.0%	E0
8202391000	작용하는 부분이 텅스텐 카바이드로 만든 것	0.0%	E0
8202392010	반도체 웨이퍼, 반도체 디바이스를 개별 단위로 절단하는 기기에 사용되는 것	0.0%	E0
8202392090	기타	0.0%	E0
8202393000	작용하는 부분이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0.0%	E0
8202399000	부분품	0.0%	E0
8202400000	체인톱의 날	0.0%	E0
8202911000	쇠톱의 날	0.0%	E0
8202919000	기타	0.0%	E0
8202991000	사파이어 잉곳(ingot) 절단용	0.0%	E0
8202999000	기타	0.0%	E0
8203101000	톱날용	0.0%	E0
8203109000	기타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8203201000	플라이어(plier)[절단용 플라이어(plier)를 포함한다]	0.0%	E0
8203202000	집게	0.0%	E0
8203203000	핀셋	0.0%	E0
8203209000	기타	0.0%	E0
8203300000	금속 절단용 가위와 이와 유사한 공구	0.0%	E0
8203401000	파이프커터(pipe-cutter)	0.0%	E0
8203402000	볼트크로퍼(bolt cropper)와 클리퍼	0.0%	E0
8203403000	천공펀치	0.0%	E0
8203409000	기타	0.0%	E0
8204110000	조절할 수 없는 것	0.0%	E0
8204120000	조절할 수 있는 것	0.0%	E0
8204200000	호환성 스패너소켓(spanner socket)(손잡이가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0.0%	E0
8205101000	드릴링용	0.0%	E0
8205102000	드레딩(threading)용	0.0%	E0
8205103000	태핑용(tapping)	0.0%	E0
8205109000	기타	0.0%	E0
8205200000	망치(hammer, sledge hammer)	0.0%	E0
8205300000	목재 가공용 대패·끌·둥근끌과 이와 유사한 절단공구	0.0%	E0
8205400000	스크루드라이버(screwdriver)	0.0%	E0
8205510000	가정용 공구	0.0%	E0
8205591000	유리가공용 다이아몬드공구	0.0%	E0
8205592000	땜인두	0.0%	E0
8205593000	그리스 건(grease gun)	0.0%	E0
8205595000	광산용과 토목공사용 공구	0.0%	E0
8205596000	미장용과 도장용 공구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8205597000	시계 제조용 공구	0.0%	E0
8205599000	기타	0.0%	E0
8205600000	블로램프(blow lamp)	0.0%	E0
8205701000	바이스(vice)	0.0%	E0
8205702000	클램프(clamp)	0.0%	E0
8205709000	기타	0.0%	E0
8205901000	모루	0.0%	E0
8205902000	프레임을 갖춘 수동식이나 페달식 그라인딩휠	0.0%	E0
8205909010	이 호의 둘 이상의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트	0.0%	E0
8205909090	기타	0.0%	E0
8206000000	제 8202 호부터 제 8205 호까지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공구가 소매용 세트로 되어 있는 것	0.0%	E0
8207130000	작용하는 부분을 서멧(cermet)으로 만든 것	0.0%	E0
8207191000	작용하는 부분을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0.0%	E0
8207199000	부분품	0.0%	E0
8207201000	인발(引拔)용	0.0%	E0
8207202000	압출용	0.0%	E0
8207301000	프레싱(pressing)용	0.0%	E0
8207302000	스탬핑(stamping)용	0.0%	E0
8207303000	펀칭(punching)용	0.0%	E0
8207309000	기타	0.0%	E0
8207401000	태핑(tapping)용	0.0%	E0
8207402000	드레딩(threading)용	0.0%	E0
8207409000	기타	0.0%	E0
8207501010	고속도강으로 만든 것	0.0%	E0
8207501090	기타	0.0%	E0
8207502000	브레이스비트(brace bit)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8207509000	기타	0.0%	E0
8207601000	리머(reamer)	0.0%	E0
8207603000	브로치(broach)	0.0%	E0
8207609000	기타	0.0%	E0
8207701000	기어커터	0.0%	E0
8207702000	밀링커터	0.0%	E0
8207703000	기어커팅 호브(gear cutting hob)	0.0%	E0
8207704000	로터리파일	0.0%	E0
8207709000	기타	0.0%	E0
8207801000	선반용 공구	0.0%	E0
8207809000	기타	0.0%	E0
8207901000	다이아몬드 공구	0.0%	E0
8207909000	기타	0.0%	E0
8208100000	금속 가공용	0.0%	E0
8208200000	목재 가공용	0.0%	E0
8208300000	주방기구용이나 식품공업에 사용되는 기계용	0.0%	E0
8208400000	농업용・원예용・임업용 기계의 것	0.0%	E0
8208900000	기타	0.0%	E0
8209001010	텅스텐 카바이드로 만든 것으로 코팅 처리된 것	0.0%	E0
8209001050	티타늄의 것	0.0%	E0
8209001090	기타	0.0%	E0
8209002010	텅스텐 카바이드로 만든 것	0.0%	E0
8209002050	티타늄의 것	0.0%	E0
8209002090	기타	0.0%	E0
8210001000	분쇄기・마쇄기	0.0%	E0
8210002000	추출기・압착기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8210003000	비터(beater)·믹서	0.0%	E0
8210004000	세절기· 커터	0.0%	E0
8210005000	오프너·코르커·실러	0.0%	E0
8210008000	그 밖의 가정용 식품가공기기	0.0%	E0
8210009000	부분품	0.0%	E0
8211100000	위 물품이 조합된 세트	0.0%	E0
8211910000	칼날이 고정된 식탁용 칼	0.0%	E0
8211920000	칼날이 고정된 그 밖의 칼	0.0%	E0
8211930000	칼날이 고정된 것 외의 칼	0.0%	E0
8211940000	칼날	0.0%	E0
82119500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손잡이	0.0%	E0
8212100000	면도기	0.0%	E0
8212200000	안전면도날[면도날의 블랭크(blank)로서 스트립 모양인 것을 포함한다]	0.0%	E0
8212900000	그 밖의 부분품	0.0%	E0
8213001000	가정용·사무용 가위	0.0%	E0
8213002010	재단용 가위	0.0%	E0
8213002020	이발용 가위	0.0%	E0
8213002090	기타	0.0%	E0
8213003000	매니큐어용 가위	0.0%	E0
8213004000	가위날	0.0%	E0
8213009000	기타	0.0%	E0
8214101000	연필깎이	0.0%	E0
8214109000	기타	0.0%	E0
8214200000	매니큐어나 페디큐어(pedicure) 세트와 용구(손톱줄을 포함한다)	0.0%	E0
8214901000	이발기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8214902000	정육점이나 주방용 칼붙이와 토막용 칼(chopper)과 다지기(mincing)용 칼	0.0%	E0
8214909000	기타	0.0%	E0
8215100000	위 물품이 조합된 세트(최소한 한 가지는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8215200000	위 물품이 조합된 그 밖의 세트	0.0%	E0
8215911000	스푼	0.0%	E0
8215912000	포크	0.0%	E0
8215913000	국자와 스키머(skimmer)	0.0%	E0
8215914000	생선용 칼과 버터용 칼	0.0%	E0
8215915000	각종 집게	0.0%	E0
8215919000	기타	0.0%	E0
8215991000	스푼	0.0%	E0
8215992000	포크	0.0%	E0
8215993000	국자와 스키머(skimmer)	0.0%	E0
8215994000	생선용 칼과 버터용 칼	0.0%	E0
8215995000	각종 집게	0.0%	E0
8215999000	기타	0.0%	E0
8301100000	자물쇠	0.0%	E0
8301200000	모터차량에 사용되는 자물쇠	0.0%	E0
8301300000	가구에 사용되는 자물쇠	0.0%	E0
8301401010	디지털 도어 록	0.0%	E0
8301401090	기타	0.0%	E0
8301409000	기타	0.0%	E0
8301500000	걸쇠와 걸쇠가 붙은 프레임으로 자물쇠가 결합된 것	0.0%	E0
8301600000	부분품	0.0%	E0
8301700000	별도로 제시되는 열쇠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8302100000	경첩	0.0%	E0
8302200000	카스터(castor)	0.0%	E0
8302300000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0.0%	E0
8302411000	문·창에 적합한 것	0.0%	E0
8302419000	기타	0.0%	E0
8302420000	기타(가구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8302491000	트렁크·슈트케이스나 이와 유사한 여행용구에 적합한 것	0.0%	E0
8302499000	기타	0.0%	E0
8302500000	모자걸이·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0.0%	E0
8302600000	자동도어 폐지기	0.0%	E0
8303001000	금고	0.0%	E0
8303009000	기타	0.0%	E0
83040000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서류정리함·카드인덱스함·페이퍼 트레이(paper tray)·페이퍼 레스트(paper rest)·펜 트레이(pen tray)·사무실용 스탬프스탠드(stamp stand)와 이와 유사한 사무실용이나 책상용 비품(제 9403 호에 해당하는 사무실용 가구는 제외한다)	0.0%	E0
8305100000	루스-리프(loose-leaf)식 바인더용이나 서류철용 피팅(fitting)	0.0%	E0
8305200000	스트립 모양인 스테이플(staple)	0.0%	E0
8305900000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0.0%	E0
8306100000	벨·징과 이와 유사한 것	0.0%	E0
8306210000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	0.0%	E0
8306290000	기타	0.0%	E0
8306301000	사진틀·그림틀이나 이와 유사한 틀	0.0%	E0
83063020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거울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8307100000	철강으로 만든 것	0.0%	E0
8307900000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	0.0%	E0
8308101000	훅(hook)	0.0%	E0
8308102000	아이(eye)·아일릿(eyelet)	0.0%	E0
8308200000	관 리벳(tubular rivet)이나 두 가닥 리벳(bifurcated rivet)	0.0%	E0
8308901000	걸쇠나 걸쇠가 붙은 프레임	0.0%	E0
8308902000	버클(buckle)이나 버클(buckle)걸쇠	0.0%	E0
8308903000	구슬	0.0%	E0
8308904000	스팽글(spangle)	0.0%	E0
8308909000	기타	0.0%	E0
8309100000	크라운코르크(crown cork)	0.0%	E0
8309901000	캔뚜껑(E.O.E)	0.0%	E0
8309909000	기타	0.0%	E0
83100000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사인판·명판·주소판과 이와 유사한 판, 숫자·문자와 그 밖의 심벌(제 9405 호의 것은 제외한다)	0.0%	E0
8311101000	반도체 제조용	0.0%	E0
8311109000	기타	0.0%	E0
8311201000	반도체 제조용	0.0%	E0
8311209000	기타	0.0%	E0
8311301000	반도체 제조용	0.0%	E0
8311309010	납-주석 합금의 땜납	0.0%	E0
8311309090	기타	0.0%	E0
8311901000	반도체 제조용	0.0%	E0
8311909000	기타	0.0%	E0
8401100000	원자로	0.0%	E0
8401200000	동위원소 분리용 기기와 그 부분품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8401300000	방사선을 조사(照射)하지 않은 연료요소(카트리지)	0.0%	E0
8401400000	원자로의 부분품	0.0%	E0
8402110000	증기발생량이 시간당 45 톤을 초과하는 수관(水管)보일러	0.0%	E0
8402120000	증기발생량이 시간당 45 톤 이하인 수관(水管)보일러	0.0%	E0
8402191000	열매체보일러	0.0%	E0
8402199000	기타	0.0%	E0
8402200000	과열수보일러(super-heated water boiler)	0.0%	E0
8402901000	증기발생보일러의 것	0.0%	E0
8402902000	과열수보일러의 것	0.0%	E0
8403101000	유류를 사용하는 것	0.0%	E0
8403102000	석탄을 사용하는 것	0.0%	E0
8403103000	가스를 사용하는 것	0.0%	E0
8403109000	기타	0.0%	E0
8403900000	부분품	0.0%	E0
8404101000	연료절약기	0.0%	E0
8404102000	과열기	0.0%	E0
8404103000	그을음제거기	0.0%	E0
8404104000	가스회수기	0.0%	E0
8404109000	기타	0.0%	E0
8404200000	증기원동기용 응축기	0.0%	E0
8404901000	보일러용 응축기의 것	0.0%	E0
8404902000	증기원동기용 응축기의 것	0.0%	E0
8404909000	기타	0.0%	E0
8405101000	발생로가스 발생기	0.0%	E0
8405102000	수성가스 발생기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8405104000	산소 발생기	0.0%	E0
8405109000	기타	0.0%	E0
8405901000	발생로가스 발생기의 것	0.0%	E0
8405902000	수성가스 발생기의 것	0.0%	E0
8405904000	산소 발생기의 것	0.0%	E0
8405909000	기타	0.0%	E0
8406100000	선박추진용 터빈	0.0%	E0
8406811000	출력이 40 메가와트 초과 100 메가와트 이하인 것	0.0%	E0
8406812000	출력이 100 메가와트 초과 300 메가와트 이하인 것	0.0%	E0
8406813000	출력이 300 메가와트를 초과하는 것	0.0%	E0
8406820000	출력이 40 메가와트 이하인 것	0.0%	E0
8406901000	선박추진용 증기터빈의 것	0.0%	E0
8406909000	기타	0.0%	E0
8407100000	항공기용 엔진	0.0%	E0
8407210000	아웃보드(outboard) 모터	0.0%	E0
8407290000	기타	0.0%	E0
8407311000	모터사이클의 것	0.0%	E0
8407319000	기타	0.0%	E0
8407321000	모터사이클의 것	0.0%	E0
8407329000	기타	0.0%	E0
8407331000	모터사이클의 것	0.0%	E0
8407339000	기타	0.0%	E0
8407341000	모터사이클의 것	0.0%	E0
8407349000	기타	0.0%	E0
8407901000	철도차량용	0.0%	E0
8407909000	기타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8408101000	출력이 300 킬로와트 이하인 것	5.0%	E0
8408102000	출력이 300 킬로와트 초과 2,000 킬로와트 이하인 것	5.0%	E0
8408103000	출력이 2,000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5.0%	E0
8408201000	실린더용량이 1,000 시시 이하인 것	0.0%	E0
8408202000	실린더용량이 1,000 시시 초과 2,000 시시 이하인 것	0.0%	E0
8408203000	실린더용량이 2,000 시시 초과 4,000 시시 이하인 것	0.0%	E0
8408204000	실린더용량이 4,000 시시 초과 10,000 시시 이하인 것	0.0%	E0
8408205000	실린더용량이 10,0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0.0%	E0
8408901010	철도용 기관차의 내연기관	0.0%	E0
8408901090	기타	0.0%	E0
8408909010	선박용 내연기관	5.0%	E0
8408909021	출력이 400 킬로와트 이상인 발전기용[분당 회전수(알피엠)가 1,500 이나 1,800 인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8408909029	기타	0.0%	E0
8408909030	제 8429 호용 내연기관	0.0%	E0
8408909090	기타	0.0%	E0
8409100000	항공기 엔진용	0.0%	E0
8409911000	제 87 류의 차량용	0.0%	E0
8409912000	아웃보드(outboard) 모터의 것	0.0%	E0
8409919000	기타	0.0%	E0
8409991000	철도차량용	0.0%	E0
8409992000	제 87 류의 차량용	0.0%	E0
8409993010	출력이 300 킬로와트 이하인 내연기관의 것	5.0%	E0
8409993020	출력이 300 킬로와트 초과 2,000 킬로와트 이하인	5.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내연기관의 것		
8409993030	출력이 2,000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내연기관의 것	0.0%	E0
8409999010	발전용	0.0%	E0
8409999090	기타	0.0%	E0
8410111000	수력터빈	0.0%	E0
8410119000	기타	0.0%	E0
8410120000	동력이 1,000 킬로와트 초과 10,000 킬로와트 이하인 것	0.0%	E0
8410130000	동력이 10,000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0.0%	E0
8410901010	수력터빈의 것	0.0%	E0
8410901090	기타	0.0%	E0
8410909010	수력터빈의 것	0.0%	E0
8410909090	기타	0.0%	E0
8411111000	항공기용	0.0%	E0
8411119010	선박용	0.0%	E0
8411119090	기타	0.0%	E0
8411121000	항공기용	0.0%	E0
8411129010	선박용	0.0%	E0
8411129090	기타	0.0%	E0
8411211000	항공기용	0.0%	E0
8411219010	선박용	0.0%	E0
8411219090	기타	0.0%	E0
8411221000	항공기용	0.0%	E0
8411229010	선박용	0.0%	E0
8411229090	기타	0.0%	E0
8411811000	항공기용	0.0%	E0
8411819010	선박용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8411819090	기타	0.0%	E0
8411821000	항공기용	0.0%	E0
8411829010	선박용	0.0%	E0
8411829090	기타	0.0%	E0
8411911000	항공기용	0.0%	E0
8411919000	기타	0.0%	E0
8411991000	항공기용	0.0%	E0
8411999000	기타	0.0%	E0
8412101000	항공기의 것	0.0%	E0
8412109000	기타	0.0%	E0
8412211000	액압실린더	0.0%	E0
8412219000	기타	0.0%	E0
8412290000	기타	0.0%	E0
8412310000	리니어 액팅식(실린더)	0.0%	E0
8412390000	기타	0.0%	E0
8412800000	기타	0.0%	E0
8412901010	램제트나 펄스제트 엔진의 것	0.0%	E0
8412901090	기타	0.0%	E0
8412902000	수력엔진의 것	0.0%	E0
8412909000	기타	0.0%	E0
8413110000	연료나 윤활유 급유용 펌프(주유소나 정비소에서 사용하는 형태로 한정한다)	0.0%	E0
8413190000	기타	0.0%	E0
8413200000	수지식 펌프(소호 제 8413.11 호나 제 8413.19 호의 것은 제외한다)	0.0%	E0
8413301000	항공기용	0.0%	E0
8413302000	철도용 기관차용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8413303000	선박용	5.0%	E0
8413304000	제 87 류에 해당하는 차량용	0.0%	E0
8413309000	기타	0.0%	E0
8413400000	콘크리트 펌프	0.0%	E0
8413504000	수영장용 펌프	0.0%	E0
8413509010	플런저펌프	0.0%	E0
8413509020	피스톤펌프	0.0%	E0
8413509030	다이아프램펌프	0.0%	E0
8413509090	기타	0.0%	E0
8413604000	수영장용 펌프	0.0%	E0
8413609010	기어펌프	0.0%	E0
8413609020	베인펌프	0.0%	E0
8413609030	스크루펌프	0.0%	E0
8413609090	기타	0.0%	E0
8413703000	수영장용 펌프	0.0%	E0
8413709010	터빈펌프	0.0%	E0
8413709020	볼류트 펌프	0.0%	E0
8413709090	기타	0.0%	E0
8413811000	수영장용 펌프	0.0%	E0
8413819000	기타	0.0%	E0
8413820000	액체엘리베이터	0.0%	E0
8413911000	급유용 펌프의 것	0.0%	E0
8413912000	내연기관의 것	0.0%	E0
8413913000	왕복펌프의 것	0.0%	E0
8413914000	원심펌프의 것	0.0%	E0
8413915000	로터리펌프의 것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8413919000	기타	0.0%	E0
8413920000	액체엘리베이터의 것	0.0%	E0
8414101000	항공기용	0.0%	E0
8414109010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	0.0%	E0
8414109020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기의 것	0.0%	E0
8414109090	기타	0.0%	E0
8414200000	손이나 발로 작동하는 기체펌프	0.0%	E0
8414301000	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 미만인 것	0.0%	E0
8414302000	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 이상인 것	0.0%	E0
8414400000	예인용 바퀴달린 섀시 위에 장착된 기체압축기	0.0%	E0
8414511000	항공기용	0.0%	E0
8414519000	기타	0.0%	E0
8414591000	항공기용	0.0%	E0
8414592000	마이크로프로세서, 전기통신용 기기,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 냉각을 위해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	0.0%	E0
8414599000	기타	0.0%	E0
8414601000	항공기용	0.0%	E0
8414609000	기타	0.0%	E0
8414801000	후드(수평면의 최대길이가 12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8414809110	항공기용	0.0%	E0
8414809190	기타	0.0%	E0
8414809210	사용동력이 74.6킬로와트 미만인 것	0.0%	E0
8414809220	사용동력이 74.6킬로와트 이상 373킬로와트 미만인 것	0.0%	E0
8414809230	사용동력이 373킬로와트 이상인 것	0.0%	E0
8414809900	기타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8414901000	팬과 후드의 것	0.0%	E0
8414909010	냉장설비용이나 냉동설비용 압축기의 것	0.0%	E0
8414909020	기체압축기의 것(냉장설비용이나 냉동설비용은 제외한다)	0.0%	E0
8414909090	기타	0.0%	E0
8415101010	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 미만인 것	0.0%	E0
8415101020	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 이상인 것	0.0%	E0
8415102010	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 미만인 것	0.0%	E0
8415102020	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 이상인 것	0.0%	E0
8415109010	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 미만인 것	0.0%	E0
8415109020	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 이상인 것	0.0%	E0
8415200000	자동차용(탑승자용으로 한정한다)	0.0%	E0
8415810000	냉각유닛과 냉·열순환 반전용 밸브를 결합한 것(반전가능 열펌프를 포함한다)	0.0%	E0
8415820000	기타(냉각유닛을 결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8415830000	냉각유닛을 결합하지 않은 것	0.0%	E0
8415900000	부분품	0.0%	E0
8416101000	시간당 최대연료소비량이 200리터 이하인 것	0.0%	E0
8416102000	시간당 최대연료소비량이 200리터 초과 1,500리터 미만인 것	0.0%	E0
8416103000	시간당 최대연료소비량이 1,500리터 이상인 것	0.0%	E0
8416201000	잘게 부순 고체연료용	0.0%	E0
8416202000	기체연료용	0.0%	E0
8416209000	기타	0.0%	E0
8416300000	기계식 스토커(stoker)[이들의 기계식 불판·기계식 회(灰)배출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를 포함한다]	0.0%	E0
8416901000	노용 버너의 것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8416909000	기타	0.0%	E0
8417101010	철광석용	0.0%	E0
8417101090	기타	0.0%	E0
8417102010	철강용	0.0%	E0
8417102090	기타	0.0%	E0
8417200000	베이커리용 오븐(비스킷용 오븐을 포함한다)	0.0%	E0
8417801010	시멘트용	0.0%	E0
8417801020	유리용	0.0%	E0
8417801030	도자기용	0.0%	E0
8417801090	기타	0.0%	E0
8417802000	이화학용	0.0%	E0
8417809000	기타	0.0%	E0
8417900000	부분품	0.0%	E0
8418101010	용량이 200 리터 이하인 것	0.0%	E0
8418101020	용량이 200 리터 초과 400 리터 이하인 것	0.0%	E0
8418101030	용량이 400 리터를 초과하는 것	0.0%	E0
8418109000	기타	0.0%	E0
8418211000	용량이 200 리터 미만인 것	0.0%	E0
8418212000	용량이 200 리터 이상 400 리터 미만인 것	0.0%	E0
8418213000	용량이 400 리터 이상인 것	0.0%	E0
8418291000	흡수식(전기식으로 한정한다)	0.0%	E0
8418299000	기타	0.0%	E0
8418300000	체스트(chest)형 냉동고(용량이 800 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8418400000	직립형 냉동고(용량이 900 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8418501000	쇼케이스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8418509000	기타	0.0%	E0
8418610000	열펌프(제 8415 호의 공기조절기는 제외한다)	0.0%	E0
8418691000	혈액 저장용 냉장고	0.0%	E0
8418692010	아이스크림 제조기	0.0%	E0
8418692020	아이스큐버	0.0%	E0
8418692030	냉수기	0.0%	E0
8418692090	기타	0.0%	E0
8418693000	열펌프	0.0%	E0
8418910000	냉장기구나 냉동기구를 넣을 수 있도록 설계된 가구	0.0%	E0
8418991000	가정형 냉장고의 것	0.0%	E0
8418999000	기타	0.0%	E0
8419110000	가스식인 즉시식 물가열기	0.0%	E0
8419190000	기타	0.0%	E0
8419200000	내과용・외과용・실험실용 살균기	0.0%	E0
8419310000	농산물용	0.0%	E0
8419320000	목재용・제지펄프용・종이용・판지용	0.0%	E0
8419391000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스핀 드라이어	0.0%	E0
8419399000	기타	0.0%	E0
8419400000	증류기나 정류기	0.0%	E0
8419501000	항공기용	0.0%	E0
8419502000	플루오르 중합체로 만든 것으로서 내경이 3 센티미터 이하인 관 구멍을 가진 주입구와 배출구를 갖춘 것	0.0%	E0
8419509000	기타	0.0%	E0
8419600000	기체 액화용 기기	0.0%	E0
8419810000	뜨거운 음료 제조용이나 음식물의 조리용이나 가열용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8419891000	인조섬유 제조용 중합기	0.0%	E0
8419899010	가열기	0.0%	E0
8419899020	냉각기	0.0%	E0
8419899030	증발기	0.0%	E0
8419899040	응축기	0.0%	E0
8419899050	태양열 집열기와 그 장치	0.0%	E0
8419899060	고온항온기·저온항온기	0.0%	E0
8419899070	항온항습기	0.0%	E0
8419899080	공기조절기	0.0%	E0
8419899090	기타	0.0%	E0
8419901000	인조섬유 제조용 중합기의 것	0.0%	E0
8419909010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가열기의 것	0.0%	E0
8419909020	뜨거운 음료제조용 기기의 것, 음식물의 조리나 가열용 기기의 것	0.0%	E0
8419909030	공기조절용 기기의 것	0.0%	E0
8419909040	내과용·외과용·실험실용 살균장치의 것	0.0%	E0
8419909090	기타	0.0%	E0
8420101000	제지용	0.0%	E0
8420102000	직물용	0.0%	E0
8420103000	가죽용	0.0%	E0
8420104000	고무용·플라스틱용	0.0%	E0
8420105000	인쇄회로기판이나 인쇄회로 제조용	0.0%	E0
8420109000	기타	0.0%	E0
8420910000	실린더	0.0%	E0
8420990000	기타	0.0%	E0
8421110000	크림분리기	0.0%	E0
8421120000	의류탈수기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8421191000	내과용・외과용・이화학용	0.0%	E0
8421192000	식품공업용	0.0%	E0
8421193000	석유화학공업용	0.0%	E0
8421199000	기타	0.0%	E0
8421211000	가정형	0.0%	E0
8421219010	수영장용 여과기나 청정기	0.0%	E0
8421219020	반도체 제조용 여과기나 청정기	0.0%	E0
8421219090	기타	0.0%	E0
8421220000	물 외의 음료의 여과용이나 청정용	0.0%	E0
8421231000	제 87 류 차량의 내연기관의 것	0.0%	E0
8421232000	항공기용	0.0%	E0
8421239000	기타	0.0%	E0
8421291000	낙농용	0.0%	E0
8421292010	플루오르 중합체로 만든 것으로서 여과기 또는 청정기의 막 두께가 140 마이크론 이하인 것	0.0%	E0
8421292090	기타	0.0%	E0
8421293010	플루오르 중합체로 만든 것으로서 여과기 또는 청정기의 막 두께가 140 마이크론 이하인 것	0.0%	E0
8421293090	기타	0.0%	E0
8421294000	항공기용	0.0%	E0
8421299010	플루오르 중합체로 만든 것으로서 여과기 또는 청정기의 막 두께가 140 마이크론 이하인 것	0.0%	E0
8421299090	기타	0.0%	E0
8421311000	제 87 류 차량의 내연기관의 것	0.0%	E0
8421312000	항공기용	0.0%	E0
8421319000	기타	0.0%	E0
8421391000	가정형	0.0%	E0
8421392000	제 87 류 차량의 배기가스 정화용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8421399011	스테인리스강제의 하우징을 갖추고, 내경이 1.3 센티미터 이하인 관 구멍을 가진 주입구와 배출구를 갖춘 것	0.0%	E0
8421399019	기타	0.0%	E0
8421399021	스테인리스강제의 하우징을 갖추고, 내경이 1.3 센티미터 이하인 관 구멍을 가진 주입구와 배출구를 갖춘 것	0.0%	E0
8421399029	기타	0.0%	E0
8421399030	항공기용	0.0%	E0
8421399091	스테인리스강제의 하우징을 갖추고, 내경이 1.3 센티미터 이하인 관 구멍을 가진 주입구와 배출구를 갖춘 것	0.0%	E0
8421399099	기타	0.0%	E0
8421910000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의 것	0.0%	E0
8421991000	제 87 류 차량의 배기가스정화기의 것	0.0%	E0
8421999010	내연기관용의 여과기나 청정기의 것	0.0%	E0
8421999021	액체용의 여과기나 청정기(플루오르 중합체로 만든 것으로서 여과기나 청정기의 막 두께가 140 마이크론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스테인리스강의 하우징을 갖춘 기체용의 여과기나 청정기(내경이 1.3 센티미터 이하인 관 구멍을 가진 주입구와 배출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의 것	0.0%	E0
8421999029	기타	0.0%	E0
8421999031	액체용의 여과기나 청정기(플루오르 중합체로 만든 것으로서 여과기나 청정기의 막 두께가 140 마이크론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스테인리스강의 하우징을 갖춘 기체용의 여과기나 청정기(내경이 1.3 센티미터 이하인 관 구멍을 가진 주입구와 배출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의 것	0.0%	E0
8421999039	기타	0.0%	E0
8421999091	액체용의 여과기나 청정기(플루오르 중합체로 만든 것으로서 여과기나 청정기의 막 두께가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140 마이크론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스테인리스강의 하우징을 갖춘 기체용의 여과기나 청정기(내경이 1.3 센티미터 이하인 관 구멍을 가진 주입구와 배출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의 것		
8421999099	기타	0.0%	E0
8422110000	가정형	0.0%	E0
8422190000	기타	0.0%	E0
8422200000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	0.0%	E0
8422301000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충전용 기계	0.0%	E0
8422302000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봉함용· 봉지용 기계	0.0%	E0
8422303000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캡슐 취부용·레이블 첨부용 기계	0.0%	E0
8422304000	음료용 탄산가스주입기	0.0%	E0
8422309000	기타	0.0%	E0
8422404000	열수축포장기계	0.0%	E0
8422409010	자동포장기계	0.0%	E0
8422409020	자동결속기	0.0%	E0
8422409030	진공포장기	0.0%	E0
8422409090	기타	0.0%	E0
8422901000	접시세척기의 것	0.0%	E0
8422902000	그 밖의 포장기계의 것	0.0%	E0
8422909000	기타	0.0%	E0
8423100000	체중기(유아용 저울을 포함한다)와 가정형 저울	0.0%	E0
8423201000	컨베이어 스케일	0.0%	E0
8423202000	피드미터(feed meter)·피드웨이어(feed weigher)	0.0%	E0
8423209000	기타	0.0%	E0
8423301000	중량 측정에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는 것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8423309000	기타	0.0%	E0
8423811000	중량 측정에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는 것	0.0%	E0
8423819000	기타	0.0%	E0
8423821000	중량 측정에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는 것(자동차중량측정용 기기는 제외한다)	0.0%	E0
8423829000	기타	0.0%	E0
8423891000	트럭 스케일	0.0%	E0
8423899010	중량 측정에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는 것	0.0%	E0
8423899090	기타	0.0%	E0
8423901011	중량 측정에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는 것(자동차중량측정용 기기의 부분품은 제외한다)	0.0%	E0
8423901019	기타	0.0%	E0
8423901091	중량 측정에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는 것(자동차중량측정용 기기의 부분품은 제외한다)	0.0%	E0
8423901099	기타	0.0%	E0
8423909010	중량 측정에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는 것(자동차중량측정용 기기의 부분품은 제외한다)	0.0%	E0
8423909090	기타	0.0%	E0
8424100000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0%	E0
8424201000	스프레이건	0.0%	E0
8424202010	로보트형	0.0%	E0
8424202090	기타	0.0%	E0
8424209000	기타	0.0%	E0
8424301000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	0.0%	E0
8424302000	고압증기 세척기	0.0%	E0
8424309000	기타	0.0%	E0
8424410000	휴대용 방제기	0.0%	E0
8424491000	자주식(自走式) 방제기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8424499000	기타	0.0%	E0
8424820000	농업용이나 원예용	0.0%	E0
8424891000	반도체 제조용	0.0%	E0
8424892000	인쇄회로나 인쇄회로조립품 제조용	0.0%	E0
8424899000	기타	0.0%	E0
8424901000	소화기의 것	0.0%	E0
8424902000	스프레이건의 것	0.0%	E0
8424903000	방제기의 것	0.0%	E0
8424909010	반도체 제조용	0.0%	E0
8424909020	인쇄회로나 인쇄회로조립품 제조용	0.0%	E0
8424909090	기타	0.0%	E0
8425111010	체인블록	0.0%	E0
8425111090	기타	0.0%	E0
8425112010	체인블록	0.0%	E0
8425112090	기타	0.0%	E0
8425190000	기타	0.0%	E0
8425311000	갱구용 와인딩 기어와 윈치(winch)(지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특수설계 제작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8425319000	기타	0.0%	E0
8425391000	갱구용 와인딩 기어와 윈치(winch)(지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특수설계 제작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8425399000	기타	0.0%	E0
8425410000	차고용 고정식 재킹시스템(jacking system)	0.0%	E0
8425421000	양하중량이 10 메트릭톤 이하인 것	0.0%	E0
8425422000	양하중량이 10 메트릭톤을 초과하는 것	0.0%	E0
8425491000	양하중량이 10 메트릭톤 이하인 것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8425492000	양하중량이 10 메트릭톤을 초과하는 것	0.0%	E0
8426110000	고정식 천장주행 크레인	0.0%	E0
8426121000	타이어가 달린 이동식 양하대	0.0%	E0
8426122000	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	0.0%	E0
8426190000	기타	0.0%	E0
8426200000	타워크레인(tower crane)	0.0%	E0
8426301000	문형 크레인	0.0%	E0
8426302000	정치형 지브 크레인(jib crane)	0.0%	E0
8426410000	타이어가 달린 것	0.0%	E0
8426491000	신축붐식(telescopic boom type)	0.0%	E0
8426492000	앵글식(latticed boom type)	0.0%	E0
8426499000	기타	0.0%	E0
8426910000	도로주행 차량에 장착하도록 제작된 것	0.0%	E0
8426991000	선박의 데릭(derrick)	0.0%	E0
8426999000	기타	0.0%	E0
8427101010	신품	0.0%	E0
8427101020	중고품	0.0%	E0
8427102010	신품	0.0%	E0
8427102020	중고품	0.0%	E0
8427201011	신품	0.0%	E0
8427201012	중고품	0.0%	E0
8427201021	신품	0.0%	E0
8427201022	중고품	0.0%	E0
8427209000	기타	0.0%	E0
8427901000	수동식 펠릿(pallet) 트럭	0.0%	E0
8427909000	기타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8428101000	리프트	0.0%	E0
8428102000	스킵호이스트(skip hoist)	0.0%	E0
8428201000	뉴매틱 엘리베이터	0.0%	E0
8428202000	뉴매틱 컨베이어	0.0%	E0
8428310000	지하 작업용으로 특수 설계된 것	0.0%	E0
8428320000	그 밖의 버켓형	0.0%	E0
8428331010	분당 속도가 240 미터 미만인 것	0.0%	E0
8428331020	분당 속도가 240 미터 이상인 것	0.0%	E0
8428332000	컨베이어	0.0%	E0
8428390000	기타	0.0%	E0
8428401000	에스컬레이터	0.0%	E0
8428402000	무빙 워크웨이(moving walkway)	0.0%	E0
8428600000	텔레페릭(teleferic)·의자 양하기·스키용 드래그라인(dragline)·퓨니쿨러(funicular)용 견인장치	0.0%	E0
8428901000	광산용 왜건푸셔·기관차·화차의 트레버서·화차 경사기나 이와 유사한 철도화차 취급 장비	0.0%	E0
8428909000	기타	0.0%	E0
8429111000	불도저(bulldozer)	0.0%	E0
8429112000	앵글도저(angledozer)	0.0%	E0
8429190000	기타	0.0%	E0
8429200000	그레이더(grader)와 레벨러(leveller)	0.0%	E0
8429300000	스크래퍼(scraper)	0.0%	E0
8429401000	탬핑머신(tamping machine)	0.0%	E0
8429402000	로드롤러(road roller)	0.0%	E0
8429511011	신품	0.0%	E0
8429511012	중고품	0.0%	E0
8429511021	신품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8429511022	중고품	0.0%	E0
8429511031	신품	0.0%	E0
8429511032	중고품	0.0%	E0
8429511091	신품	0.0%	E0
8429511092	중고품	0.0%	E0
8429519000	기타	0.0%	E0
8429521011	신품	0.0%	E0
8429521012	중고품	0.0%	E0
8429521021	신품	0.0%	E0
8429521022	중고품	0.0%	E0
8429521090	기타	0.0%	E0
8429529000	기타	0.0%	E0
8429590000	기타	0.0%	E0
8430100000	항타기(杭打機)와 항발기(抗拔機)	0.0%	E0
8430200000	스노플라우(snow-plough)와 스노블로어(snow-blower)	0.0%	E0
8430310000	자주식(自走式)	0.0%	E0
8430390000	기타	0.0%	E0
8430411000	천공용 기계	0.0%	E0
8430412000	시굴용 기계	0.0%	E0
8430491000	시추기	0.0%	E0
8430499000	기타	0.0%	E0
8430500000	그 밖의 기계[자주식(自走式)으로 한정한다]	0.0%	E0
8430610000	탬핑(tamping)용이나 콤팩팅(compacting)용 기계	0.0%	E0
8430690000	기타	0.0%	E0
8431100000	제 8425 호의 기계의 것	0.0%	E0
8431200000	제 8427 호의 기계의 것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8431310000	리프트・스킵호이스트(skip hoist)・에스컬레이터의 것	0.0%	E0
8431390000	기타	0.0%	E0
8431411000	엑스커베이터(excavator)의 것	0.0%	E0
8431419000	기타	0.0%	E0
8431420000	불도저(bulldozer)나 앵글도저(angledozer)의 블레이드(blade)	0.0%	E0
8431430000	소호 제 8430.41 호나 제 8430.49 호의 천공용이나 시굴용 기계의 부분품	0.0%	E0
8431491000	유압브레이커	0.0%	E0
8431492000	크러셔(crusher)	0.0%	E0
8431499000	기타	0.0%	E0
8432100000	플라우(쟁기)	0.0%	E0
8432210000	디스크 하로우(쇄토기)	0.0%	E0
8432291000	스카리파이어	0.0%	E0
8432292000	제초기	0.0%	E0
8432299000	기타	0.0%	E0
8432310000	무경간(無耕墾) 직접 농법용 파종기・식부기(植付機)・이식기	0.0%	E0
8432391000	파종기	0.0%	E0
8432392000	식부기(植付機)・이식기(이앙기를 포함한다)	0.0%	E0
8432410000	퇴비 살포기	0.0%	E0
8432420000	비료 살포기	0.0%	E0
8432800000	그 밖의 기계	0.0%	E0
8432901000	플라우(쟁기)의 것	0.0%	E0
8432902000	자동경운기의 것	0.0%	E0
8432909000	기타	0.0%	E0
8433110000	동력식(수평으로 회전하는 절단장치를 갖춘 것으로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한정한다)		
8433190000	기타	0.0%	E0
8433200000	그 밖의 풀 베는 기계[트랙터 장착용 커터바(cutter bar)를 포함한다]	0.0%	E0
8433300000	그 밖의 건초제조용 기계	0.0%	E0
8433400000	짚이나 건초 결속기[픽업(pick-up)결속기를 포함한다]	0.0%	E0
8433510000	수확·탈곡 겸용기	0.0%	E0
8433520000	그 밖의 탈곡기	0.0%	E0
8433530000	구경(球莖)이나 괴경(塊莖)의 수확기[근채(根菜) 수확기]	0.0%	E0
8433590000	기타	0.0%	E0
8433601000	새의 알 선별기	0.0%	E0
8433609010	농산물 선별기	0.0%	E0
8433609090	기타	0.0%	E0
8433901000	수확·탈곡 겸용기의 것	0.0%	E0
8433902000	풀베는 기계의 것	0.0%	E0
8433909000	기타	0.0%	E0
8434100000	착유기	0.0%	E0
8434201000	균질기	0.0%	E0
8434209000	기타	0.0%	E0
8434901000	착유기의 것	0.0%	E0
8434902000	균질기의 것	0.0%	E0
8434909000	기타	0.0%	E0
8435101000	과실주스 추출용 프레스(press)	0.0%	E0
8435102000	과실주스 추출용 크러셔(crusher)	0.0%	E0
8435109000	기타	0.0%	E0
8435900000	부분품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8436101000	사료절단기	0.0%	E0
8436102000	사료분쇄기	0.0%	E0
8436103000	사료배합기	0.0%	E0
8436109000	기타	0.0%	E0
8436211000	부란기	0.0%	E0
8436219000	기타	0.0%	E0
8436290000	기타	0.0%	E0
8436800000	그 밖의 기계	0.0%	E0
8436910000	가금(家禽) 사육용 기계나 가금(家禽)의 부란기와 양육기의 것	0.0%	E0
8436990000	기타	0.0%	E0
8437101000	목초종자 정선기	0.0%	E0
8437109000	기타	0.0%	E0
8437801000	제분업용 기계	0.0%	E0
8437802000	곡물이나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가공용	0.0%	E0
8437901000	종자·곡물이나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세정기·분류기·선별기용의 것	0.0%	E0
8437909000	기타	0.0%	E0
8438101000	베이커리 기계	0.0%	E0
8438109000	기타	0.0%	E0
8438200000	과자·코코아·초콜릿 제조용 기계	0.0%	E0
8438300000	설탕 제조용 기계	0.0%	E0
8438400000	양조용 기계	0.0%	E0
8438501000	육류 조제용 기계	0.0%	E0
8438509000	기타	0.0%	E0
8438600000	과실·견과·채소의 조제용 기계	0.0%	E0
8438801000	어패류 조제용 기계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8438809000	기타	0.0%	E0
8438900000	부분품	0.0%	E0
8439101000	쇄목기	0.0%	E0
8439102000	절단기	0.0%	E0
8439103000	스트레이너	0.0%	E0
8439109000	기타	0.0%	E0
8439201000	초지 준비기	0.0%	E0
8439202000	초지기	0.0%	E0
8439209000	기타	0.0%	E0
8439301000	종이·판지를 감는 기계	0.0%	E0
8439302000	표면 가공기	0.0%	E0
8439303000	침투 가공기	0.0%	E0
8439309000	기타	0.0%	E0
8439910000	섬유소 펄프 제조용 기계의 것	0.0%	E0
8439990000	기타	0.0%	E0
8440101000	제본용 재봉기	0.0%	E0
8440102000	제본용 접는 기계	0.0%	E0
8440109000	기타	0.0%	E0
8440901000	제본용 재봉기의 것	0.0%	E0
8440909000	기타	0.0%	E0
8441100000	절단기	0.0%	E0
8441201000	종이백·봉지 제조용 기계	0.0%	E0
8441202000	봉투 제조기	0.0%	E0
8441300000	카톤(carton)·박스·케이스·튜브·드럼·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기의 제조기계[몰딩(moulding)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0.0%	E0
8441400000	제지용 펄프·종이·판지 제품의 몰딩(moulding)용 기계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8441801000	종이 · 판지의 트리밍기	0.0%	E0
8441809000	기타	0.0%	E0
8441900000	부분품	0.0%	E0
8442301000	활자 주조용 기계류, 장치	0.0%	E0
8442302000	특수 성형 프레스	0.0%	E0
8442303000	산 부식용 기기	0.0%	E0
8442305000	다른 공정에 의한 식자용 기계류, 장치, 장비(활자 주조용 장치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0.0%	E0
8442309000	기타	0.0%	E0
8442401000	식자용 기계류·장치의 것	0.0%	E0
8442402000	활자주조용 기계류·장치의 것	0.0%	E0
8442409000	기타	0.0%	E0
8442500000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부품, 인쇄용으로 조제가공[예: 평삭(平削)·그레인·연마]한 플레이트·실린더와 석판석	0.0%	E0
8443110000	오프셋(offset) 인쇄기계[릴(reel)식으로 한정한다]	0.0%	E0
8443120000	오프셋(offset) 인쇄기계[시트(sheet)식 사무실용으로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22 센티미터 이하, 다른 변이 36 센티미터 이하인 시트(sheet)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8443130000	그 밖의 오프셋(offset) 인쇄기계	0.0%	E0
8443140000	활판인쇄용 기계[릴(reel)식의 것으로 곡면인쇄용은 제외한다]	0.0%	E0
8443150000	활판인쇄용 기계[릴(reel)식 외의 것으로 곡면인쇄용은 제외한다]	0.0%	E0
8443160000	곡면인쇄용 기계	0.0%	E0
8443170000	그라비어(gravure) 인쇄용 기계	0.0%	E0
8443191000	직물날염기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8443192000	그 밖의 직물, 가죽, 벽지, 포장지, 리노륨 등의 재료에 동일한 모양이나 문자를 반복하여 인쇄하거나 지색을 인쇄하는 인쇄기	0.0%	E0
8443199000	기타	0.0%	E0
8443311010	레이저 프린터	0.0%	E0
8443311020	도트 프린터	0.0%	E0
8443311030	잉크젯 프린터	0.0%	E0
8443311090	기타	0.0%	E0
8443312000	팩시밀리(프린터, 복사기능 중 하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8443313010	원래의 영상을 직접 복사지에 복사하는 것(직접처리식으로 한정한다)	0.0%	E0
8443313020	원래의 영상을 매개체를 통하여 복사지에 복사하는 것(간접처리식으로 한정한다)	0.0%	E0
8443314000	잉크젯방식 인쇄기(제 8443.31.10 호의 것은 제외한다)	0.0%	E0
8443321010	레이저 프린터	0.0%	E0
8443321020	도트 프린터	0.0%	E0
8443321030	잉크젯 프린터	0.0%	E0
8443321090	기타	0.0%	E0
8443322000	팩시밀리	0.0%	E0
8443323000	텔레프린터	0.0%	E0
8443324010	원래의 영상을 직접 복사지에 복사하는 것(직접처리식으로 한정한다)	0.0%	E0
8443324020	원래의 영상을 매개체를 통하여 복사지에 복사하는 것(간접처리식으로 한정한다)	0.0%	E0
8443325010	반도체 제조용	0.0%	E0
8443325090	기타	0.0%	E0
8443391010	반도체 제조용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8443391090	기타	0.0%	E0
8443392010	원래의 영상을 직접 복사지에 복사하는 것(직접처리식으로 한정한다)	0.0%	E0
8443392020	원래의 영상을 매개체를 통하여 복사지에 복사하는 것(간접처리식으로 한정한다)	0.0%	E0
8443393010	광학기구를 갖춘 것	0.0%	E0
8443393020	밀착식	0.0%	E0
8443394000	열식 복사기	0.0%	E0
8443399000	기타	0.0%	E0
8443911010	자동급지기	0.0%	E0
8443911020	접기용, 풀칠용, 천공용, 지철용의 기계	0.0%	E0
8443911090	기타	0.0%	E0
8443919000	기타	0.0%	E0
8443991000	제 8443.31.10 호이나 제 8443.32.10 호의 것	0.0%	E0
8443992000	팩시밀리의 것	0.0%	E0
8443993000	텔레프린터의 것	0.0%	E0
8443994010	자동 문서공급기	0.0%	E0
8443994020	종이공급기	0.0%	E0
8443994030	분류기	0.0%	E0
8443994090	기타	0.0%	E0
8443995000	제 8443.31.4000 호, 제 8443.32.5010 호, 제 8443.32.5090 호, 제 8443.39.1010 호, 제 8443.39.1090 호의 것	0.0%	E0
8443999000	기타	0.0%	E0
8444001000	방사(紡絲)기	0.0%	E0
8444002000	연신(drawing)기	0.0%	E0
8444003000	텍스처(texture)기	0.0%	E0
8444004000	절단기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8444009000	기타	0.0%	E0
8445110000	카드기(carding machine)	0.0%	E0
8445120000	코밍기(combing machine)	0.0%	E0
8445130000	연조기나 조방기	0.0%	E0
8445191000	혼타면기	0.0%	E0
8445192000	래프성형기	0.0%	E0
8445193000	조면기	0.0%	E0
8445199000	기타	0.0%	E0
8445201010	정방기	0.0%	E0
8445201090	기타	0.0%	E0
8445202000	모방용	0.0%	E0
8445203000	견방용	0.0%	E0
8445209000	기타	0.0%	E0
8445301000	필라멘트사용	0.0%	E0
8445302000	방적사용	0.0%	E0
8445309000	기타	0.0%	E0
8445401000	콘 와인더	0.0%	E0
8445402000	치즈 와인더	0.0%	E0
8445409000	기타	0.0%	E0
8445901000	정경기	0.0%	E0
8445902000	정경호부기	0.0%	E0
8445903000	통경기	0.0%	E0
8445904000	연경기	0.0%	E0
8445909000	기타	0.0%	E0
8446100000	폭이 30 센티미터 이하인 소폭직기	0.0%	E0
8446211000	면직기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8446213000	견직기	0.0%	E0
8446219000	기타	0.0%	E0
8446290000	기타	0.0%	E0
8446301010	면직기	0.0%	E0
8446301020	견직기	0.0%	E0
8446301030	타올직기	0.0%	E0
8446301090	기타	0.0%	E0
8446302010	면직기	0.0%	E0
8446302020	견직기	0.0%	E0
8446302030	타올직기	0.0%	E0
8446302090	기타	0.0%	E0
8446303010	면직기	0.0%	E0
8446303020	견직기	0.0%	E0
8446303030	타올직기	0.0%	E0
8446303090	기타	0.0%	E0
8446309010	면직기	0.0%	E0
8446309020	견직기	0.0%	E0
8446309030	타올직기	0.0%	E0
8446309090	기타	0.0%	E0
8447111000	양말편기	0.0%	E0
8447119000	기타	0.0%	E0
8447120000	실린더 지름이 16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0%	E0
8447201010	수(手) 편직기(반자동 횡(横) 편직기는 포함한다)	0.0%	E0
8447201020	자동 횡(横) 편직기	0.0%	E0
8447201090	기타	0.0%	E0
8447202010	랏셀기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8447202020	트리코트기	0.0%	E0
8447202090	기타	0.0%	E0
8447209000	기타	0.0%	E0
8447901000	레이스기	0.0%	E0
8447902010	자동자수기	0.0%	E0
8447902090	기타	0.0%	E0
8447903000	결망기	0.0%	E0
8447909000	기타	0.0%	E0
8448111000	도비(dobby)기	0.0%	E0
8448112000	자카드기	0.0%	E0
8448113000	카드 천공기	0.0%	E0
8448119000	기타	0.0%	E0
8448191000	경사용 빔스탠드와 크릴(creel)	0.0%	E0
8448199010	실 제조용 보조기계(조면기는 제외한다)	0.0%	E0
8448199090	기타	0.0%	E0
8448201000	방사 니플	0.0%	E0
8448209000	기타	0.0%	E0
8448310000	침포	0.0%	E0
8448321000	카드기(carding machine)용[가닛와이어(garnet wire)는 제외한다]	0.0%	E0
8448329000	기타	0.0%	E0
8448331000	스핀들 플라이어	0.0%	E0
8448339010	스핀들	0.0%	E0
8448339020	스피닝링	0.0%	E0
8448339030	링트래블러	0.0%	E0
8448391000	경사빔	0.0%	E0
8448399000	기타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8448420000	직조기용 바디·종광(heald)과 종광 프레임	0.0%	E0
8448491000	셔틀	0.0%	E0
8448499000	기타	0.0%	E0
8448511000	메리야스용 바늘	0.0%	E0
8448512000	자수기용 바늘	0.0%	E0
8448513000	레이스기용 바늘	0.0%	E0
8448519000	기타	0.0%	E0
8448590000	기타	0.0%	E0
8449001000	기계	0.0%	E0
8449002000	모자제조용 형(型)	0.0%	E0
8449009000	부분품	0.0%	E0
8450110000	완전자동 세탁기	0.0%	E0
8450120000	그 밖의 세탁기(원심탈수기를 내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8450190000	기타	0.0%	E0
8450200000	1회의 세탁 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0.0%	E0
8450900000	부분품	0.0%	E0
8451100000	드라이클리닝기	0.0%	E0
8451210000	1회의 건조 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킬로그램 이하인 것	0.0%	E0
8451290000	기타	0.0%	E0
8451301000	스팀 프레스	0.0%	E0
8451309000	기타	0.0%	E0
8451401000	세척기	0.0%	E0
8451402000	표백기	0.0%	E0
8451403000	염색기	0.0%	E0
8451501000	감기(reeling)용 기계·풀기(unreeling)용 기계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8451502000	절단기	0.0%	E0
8451509000	기타	0.0%	E0
8451801000	열처리기	0.0%	E0
8451802000	폭출기(幅出機)	0.0%	E0
8451803000	머서라이징(mercerizing)기	0.0%	E0
8451809010	방축가공기	0.0%	E0
8451809020	도포기, 침투기	0.0%	E0
8451809030	기모기(起毛機)	0.0%	E0
8451809040	패딩기	0.0%	E0
8451809090	기타	0.0%	E0
8451901000	드라이크리닝기의 것	0.0%	E0
8451902000	건조기의 것	0.0%	E0
8451909000	기타	0.0%	E0
8452101020	지그재그형	0.0%	E0
8452101030	프리암식	0.0%	E0
8452101090	기타	0.0%	E0
8452102000	수동식	0.0%	E0
8452212000	포장대 봉함용	0.0%	E0
8452219000	기타	0.0%	E0
8452292000	포장대 봉함용	0.0%	E0
8452299000	기타	0.0%	E0
8452300000	재봉기용 바늘	0.0%	E0
8452901000	재봉기용으로 특수 제작된 가구·밑판·덮개와 그 부분품	0.0%	E0
8452909000	그 밖의 재봉기 부분품	0.0%	E0
8453101000	유피준비기계	0.0%	E0
8453102000	유피기계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8453103000	원피・가죽 가공기계	0.0%	E0
8453200000	신발의 제조용이나 수선용 기계	0.0%	E0
8453800000	그 밖의 기계	0.0%	E0
8453900000	부분품	0.0%	E0
8454100000	전로	0.0%	E0
8454200000	잉곳(ingot)용 주형과 레이들(ladle)	0.0%	E0
8454301010	다이케스팅기	0.0%	E0
8454301090	기타	0.0%	E0
8454309000	기타	0.0%	E0
8454901000	전로의 것	0.0%	E0
8454909000	기타	0.0%	E0
8455100000	관 압연기	0.0%	E0
8455210000	열간(熱間)이나 열・냉간(熱冷間) 겸용 압연기	0.0%	E0
8455220000	냉간(冷間) 압연기	0.0%	E0
8455301000	주조제의 것	0.0%	E0
8455302000	단조제의 것	0.0%	E0
8455309000	기타	0.0%	E0
8455900000	그 밖의 부분품	0.0%	E0
8456111000	인쇄회로, 인쇄회로조립품, 제 8517 호의 부분품 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0.0%	E0
8456119000	기타	0.0%	E0
8456121000	인쇄회로, 인쇄회로조립품, 제 8517 호의 부분품 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0.0%	E0
8456129000	기타	0.0%	E0
8456200000	초음파 방식으로 하는 것	0.0%	E0
8456301010	와이어 컷 방전 가공기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8456301090	기타	0.0%	E0
8456309000	기타	0.0%	E0
8456400000	플라즈마아크(plasma arc) 방식으로 하는 것	0.0%	E0
8456500000	워터제트 절단기	0.0%	E0
8456900000	기타	0.0%	E0
8457101000	수직형	0.0%	E0
8457102000	수평형	0.0%	E0
8457103000	문형	0.0%	E0
8457109000	기타	0.0%	E0
8457200000	유닛 컨스트럭션 머신(unit construction machine)(싱글스테이션)	0.0%	E0
8457300000	멀티스테이션(multi-station)의 트랜스퍼머신(transfer machine)	0.0%	E0
8458110000	수치제어식	0.0%	E0
8458190000	기타	0.0%	E0
8458910000	수치제어식	0.0%	E0
8458990000	기타	0.0%	E0
8459100000	웨이타입(way-type) 유닛헤드머신(unit head machine)	0.0%	E0
8459210000	수치제어식	0.0%	E0
8459291000	레이디얼 드릴링 머신	0.0%	E0
8459292000	직립 드릴링 머신	0.0%	E0
8459293000	다축 드릴링 머신	0.0%	E0
8459299000	기타	0.0%	E0
8459310000	수치제어식	0.0%	E0
8459390000	기타	0.0%	E0
8459411000	지그 보링머신	0.0%	E0
8459412000	수평 보링머신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8459419000	기타	0.0%	E0
8459490000	기타	0.0%	E0
8459510000	수치제어식	0.0%	E0
8459590000	기타	0.0%	E0
8459611000	베드형 밀링머신	0.0%	E0
8459612000	평삭(平削) 밀링머신	0.0%	E0
8459619000	기타	0.0%	E0
8459691000	베드형 밀링머신	0.0%	E0
8459692000	평삭(平削) 밀링머신	0.0%	E0
8459693000	만능공구 밀링머신	0.0%	E0
8459694000	프로필 밀링머신	0.0%	E0
8459699000	기타	0.0%	E0
8459701000	태핑머신(tapping machine)	0.0%	E0
8459709000	그 밖의 나사절삭기	0.0%	E0
8460120000	수치제어식	0.0%	E0
8460190000	기타	0.0%	E0
8460220000	무심연삭기(수치제어식으로 한정한다)	0.0%	E0
8460230000	그 밖의 원통연삭기(수치제어식으로 한정한다)	0.0%	E0
8460241000	내면연삭기	0.0%	E0
8460242000	프로파일(profile) 연삭기	0.0%	E0
8460249000	기타	0.0%	E0
8460291000	원통연삭기	0.0%	E0
8460292000	내면연삭기	0.0%	E0
8460293000	무심연삭기	0.0%	E0
8460294000	프로파일(profile) 연삭기	0.0%	E0
8460299000	기타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8460310000	수치제어식	0.0%	E0
8460390000	기타	0.0%	E0
8460401000	호닝머신(honing machine)	0.0%	E0
8460402000	래핑머신(lapping machine)	0.0%	E0
8460900000	기타	0.0%	E0
8461200000	쉐이핑머신(shaping machine)이나 슬로팅머신(slotting machine)	0.0%	E0
8461300000	브로칭머신(broaching machine)	0.0%	E0
8461401010	수치제어식	0.0%	E0
8461401090	기타	0.0%	E0
8461402000	기어연삭기·기어완성가공기	0.0%	E0
8461500000	톱기계나 절단기	0.0%	E0
8461900000	기타	0.0%	E0
8462101000	에어해머	0.0%	E0
8462109000	기타	0.0%	E0
8462210000	수치제어식	0.0%	E0
8462290000	기타	0.0%	E0
8462310000	수치제어식	0.0%	E0
8462390000	기타	0.0%	E0
8462411000	펀칭기(전단기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0.0%	E0
8462412000	낫칭기(notching machine)	0.0%	E0
8462491000	펀칭기(전단기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0.0%	E0
8462492000	낫칭기(notching machine)	0.0%	E0
8462911000	최고가압이 100 메트릭톤 이하인 것	0.0%	E0
8462912000	최고가압이 100 메트릭톤 초과 300 메트릭톤 이하인 것	0.0%	E0
8462913000	최고가압이 300 메트릭톤 초과 1,000 메트릭톤 이하인 것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8462914000	최고가압이 1,000 메트릭톤을 초과하는 것	0.0%	E0
8462991010	최고가압이 30 메트릭톤 이하인 것	0.0%	E0
8462991020	최고가압이 30 메트릭톤 초과 100 메트릭톤 이하인 것	0.0%	E0
8462991030	최고가압이 100 메트릭톤 초과 300 메트릭톤 이하인 것	0.0%	E0
8462991040	최고가압이 300 메트릭톤 초과 600 메트릭톤 이하인 것	0.0%	E0
8462991050	최고가압이 600 메트릭톤 초과 1,500 메트릭톤 이하인 것	0.0%	E0
8462991090	기타	0.0%	E0
8462999000	기타	0.0%	E0
8463100000	드로우벤치(draw-bench)[봉·관·프로파일(profile)·선이나 이와 유사한 것을 인발(引拔)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8463200000	나사 전조기	0.0%	E0
8463300000	선 가공기	0.0%	E0
8463901000	3D 프린터	0.0%	E0
8463909000	기타	0.0%	E0
8464100000	톱기계	0.0%	E0
8464201000	광학유리용·안경유리용	0.0%	E0
8464202000	그 밖의 유리용	0.0%	E0
8464209000	기타	0.0%	E0
8464901000	유리 냉간 가공용 공작기계	0.0%	E0
8464902000	콘크리트 가공용 공작기계	0.0%	E0
8464903000	도자기 가공용 공작기계	0.0%	E0
8464909000	기타	0.0%	E0
8465101000	목재 가공용	0.0%	E0
8465109000	기타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8465201000	목재 가공용	0.0%	E0
8465209000	기타	0.0%	E0
8465911000	목재 가공용	0.0%	E0
8465919000	기타	0.0%	E0
8465921000	목재 가공용	0.0%	E0
8465929000	기타	0.0%	E0
8465931000	목재 가공용	0.0%	E0
8465939000	기타	0.0%	E0
8465941000	목재 가공용	0.0%	E0
8465949000	기타	0.0%	E0
8465951000	목재 가공용	0.0%	E0
8465959000	기타	0.0%	E0
8465961000	목재 가공용	0.0%	E0
8465969000	기타	0.0%	E0
8465991000	목재 가공용	0.0%	E0
8465999000	기타	0.0%	E0
8466100000	툴홀더(tool holder)와 자동개폐식 다이헤드(diehead)	0.0%	E0
8466201000	항공기용	0.0%	E0
8466209000	기타	0.0%	E0
8466300000	분할대와 그 밖의 기계용 특수 부착물	0.0%	E0
8466910000	제 8464 호의 기계용	0.0%	E0
8466920000	제 8465 호의 기계용	0.0%	E0
8466931000	인쇄회로, 인쇄회로조립품, 제 8517 호의 부분품 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의 것	0.0%	E0
8466939000	기타	0.0%	E0
8466940000	제 8462 호나 제 8463 호의 기계용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8467111000	착암기	0.0%	E0
8467112000	스크루 드라이버	0.0%	E0
8467113000	그라인더	0.0%	E0
8467114000	임팩트 렌치	0.0%	E0
8467115000	드릴	0.0%	E0
8467119000	기타	0.0%	E0
8467191000	착암기	0.0%	E0
8467199000	기타	0.0%	E0
8467210000	각종 드릴	0.0%	E0
8467220000	톱	0.0%	E0
8467290000	기타	0.0%	E0
8467810000	체인톱	0.0%	E0
8467891010	소호 제 8430.49 호, 제 8479.10 호의 것	0.0%	E0
8467891020	제 8479.89.9010 호, 제 8479.89.9030 호, 제 8479.89.9091 호의 것	0.0%	E0
8467891090	기타	0.0%	E0
8467899000	기타	0.0%	E0
8467910000	체인톱의 것	0.0%	E0
8467920000	압축공기식 공구의 것	0.0%	E0
8467990000	기타	0.0%	E0
8468100000	수지식 취관(吹管)	0.0%	E0
8468201000	가스 용접기	0.0%	E0
8468202000	가스 자동절단기	0.0%	E0
8468209000	기타	0.0%	E0
8468800000	그 밖의 기기	0.0%	E0
8468900000	부분품	0.0%	E0
8470103010	17 단위 미만인 것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8470103020	17 단위 이상인 것	0.0%	E0
8470104010	제 8472.90.9000 호의 것	0.0%	E0
8470104090	기타	0.0%	E0
8470210000	인쇄 장치를 갖추고 있는 것	0.0%	E0
8470290000	기타	0.0%	E0
8470300000	그 밖의 계산기	0.0%	E0
8470500000	금전 등록기	0.0%	E0
8470902000	표권 발행기	0.0%	E0
8470903000	회계기	0.0%	E0
8470909000	기타	0.0%	E0
847130000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 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8471411000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64 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64 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0.0%	E0
8471412000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32 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16 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0.0%	E0
8471419000	기타	0.0%	E0
8471491010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64 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64 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0.0%	E0
8471491020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32 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16 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0.0%	E0
8471491090	기타	0.0%	E0
8471499000	기타	0.0%	E0
8471501000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64 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64 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8471502000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32 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16 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0.0%	E0
8471509000	기타	0.0%	E0
8471601010	문자(표식) 판독장치	0.0%	E0
8471601020	키 입력장치	0.0%	E0
8471601030	마우스	0.0%	E0
8471601040	스캐너	0.0%	E0
8471601090	기타	0.0%	E0
8471602000	출력장치	0.0%	E0
8471603030	음성 입출력장치	0.0%	E0
8471603090	기타	0.0%	E0
8471701000	주기억장치(램·롬)	0.0%	E0
8471702020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0.0%	E0
8471702031	씨디(CD) 드라이브	0.0%	E0
8471702032	디브이디(DVD) 드라이브	0.0%	E0
8471702033	블루레이 디스크 드라이브	0.0%	E0
8471702039	기타	0.0%	E0
8471702090	기타	0.0%	E0
8471709000	기타	0.0%	E0
8471801000	사운드카드	0.0%	E0
8471802000	비디오 카드	0.0%	E0
8471809000	기타	0.0%	E0
8471900000	기타	0.0%	E0
8472100000	등사기	0.0%	E0
8472301000	편지 분류기	0.0%	E0
8472302000	소인기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8472309000	기타	0.0%	E0
8472901010	현금자동지불기	0.0%	E0
8472901020	현금자동입금기	0.0%	E0
8472901040	현금자동지불・입금기	0.0%	E0
8472901050	주화계수 포장기	0.0%	E0
8472901090	기타	0.0%	E0
8472902000	등사용이나 인쇄용 자동제판기	0.0%	E0
8472903000	표권발행기	0.0%	E0
8472904000	연필절삭기	0.0%	E0
8472905000	서류절단기	0.0%	E0
8472906000	주소인쇄기와 주소판 엠보싱기	0.0%	E0
8472909000	기타	0.0%	E0
8473210000	소호 제 8470.10 호・제 8470.21 호・제 8470.29 호에 해당하는 전자 계산기의 것	0.0%	E0
8473291000	소호 제 8470.30 호의 기계의 것	0.0%	E0
8473293000	소호 제 8470.50 호의 기계의 것	0.0%	E0
8473294000	소호 제 8470.90 호의 기계의 것	0.0%	E0
8473301000	자기헤드	0.0%	E0
8473302000	주기판(마이크로프로세서 유닛이 장착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8473303000	컴퓨터 케이스	0.0%	E0
8473304060	디램 모듈	0.0%	E0
8473304090	기타	0.0%	E0
8473309010	컴퓨터용 중앙처리장치로서 제 8542 호에 분류되지 않는 것	0.0%	E0
8473309090	기타	0.0%	E0
8473401000	현금자동처리기(제 8472.90.1050 호와 제 8472.90.1090 호는 제외한다)용 평판디스플레이(엘시디, 이엘, 플라즈마, 그 밖의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다른 기술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		
8473402000	현금자동처리기(제 8472.90.1050 호와 제 8472.90.1090 호는 제외한다)용 인쇄회로조립품(제 8534 호의 인쇄회로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8473409000	기타	0.0%	E0
8473501000	소호 제 8470.10 호, 제 8470.21 호, 제 8470.29 호에 해당하는 전자계산기에 주로 사용되는 것	0.0%	E0
8473509000	기타	0.0%	E0
8474100000	선별기・기계식 체・분리기・세척기	0.0%	E0
8474201000	파쇄・분쇄능력이 시간당 20 톤 이하인 것	0.0%	E0
8474209000	기타	0.0%	E0
8474311000	배처 플랜트	0.0%	E0
8474319000	기타	0.0%	E0
8474321000	아스팔트 플랜트	0.0%	E0
8474329000	기타	0.0%	E0
8474390000	기타	0.0%	E0
8474801000	주물용 사형의 성형기	0.0%	E0
8474802000	조괴기(造塊機)・형입기와 성형기	0.0%	E0
8474809000	기타	0.0%	E0
8474900000	부분품	0.0%	E0
8475100000	전기램프나 전자램프・튜브・밸브・플래시벌브(flashbulb)(외피를 유리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의 조립기계	0.0%	E0
8475210000	광섬유와 광섬유 예비성형품 제조용 기계	0.0%	E0
8475291000	판유리 제조용	0.0%	E0
8475292000	유리병 제조용	0.0%	E0
8475299000	기타	0.0%	E0
8475901000	판유리 제조용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8475902000	광섬유와 광섬유 예비성형품 제조용	0.0%	E0
8475909000	기타	0.0%	E0
8476210000	가열장치나 냉장장치를 갖춘 것	0.0%	E0
8476290000	기타	0.0%	E0
8476811000	식품 자동판매기	0.0%	E0
8476819000	기타	0.0%	E0
8476891000	식품 자동판매기	0.0%	E0
8476894000	화폐 교환기	0.0%	E0
8476899000	기타	0.0%	E0
8476901000	화폐교환기의 것	0.0%	E0
8476909000	기타	0.0%	E0
8477101000	고무 공업용	0.0%	E0
8477102000	플라스틱 공업용	0.0%	E0
8477201000	고무 공업용	0.0%	E0
8477202000	플라스틱 공업용	0.0%	E0
8477300000	취입 성형기	0.0%	E0
8477400000	진공성형기와 그 밖의 열성형기	0.0%	E0
8477510000	공기를 넣는 타이어 성형기나 재생기와 그 밖의 이너튜브(inner tube) 성형기	0.0%	E0
8477591000	3D 프린터	0.0%	E0
8477599000	기타	0.0%	E0
8477800000	그 밖의 기계	0.0%	E0
8477900000	부분품	0.0%	E0
8478100000	기계류	0.0%	E0
8478900000	부분품	0.0%	E0
8479101000	모올타르나 콘크리트 살포기	0.0%	E0
8479102000	그 밖의 도로공사용 기계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8479109000	기타	0.0%	E0
8479200000	동물성이나 비휘발성인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의 추출용・조제용 기계류	0.0%	E0
8479300000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나 건축용 섬유판(목재나 그 밖의 목질 물질로 제조된 것으로 한정한다)의 제조용 프레스, 목재나 코르크 처리용 그 밖의 기계	0.0%	E0
8479400000	로프나 케이블 제조기	0.0%	E0
8479501000	제 8479.81 호, 제 8479.82 호, 제 8479.89.9010 호, 제 8479.89.9030 호, 제 8479.89.9040 호, 제 8479.89.9060 호, 제 8479.89.9091 호의 것	0.0%	E0
8479502000	제 8479.89.9080 호의 것	0.0%	E0
8479509000	기타	0.0%	E0
8479600000	증발식 에어쿨러	0.0%	E0
8479710000	공항에서 사용되는 것	0.0%	E0
8479790000	기타	0.0%	E0
8479811000	금속 세척기	0.0%	E0
8479812010	반도체 제조용	0.0%	E0
8479812090	기타	0.0%	E0
8479813000	권선기	0.0%	E0
8479814000	절연이나 보호재료 피복기	0.0%	E0
8479819000	기타	0.0%	E0
8479821000	혼합기	0.0%	E0
8479822000	파쇄기와 분쇄기	0.0%	E0
8479823000	균질기	0.0%	E0
8479824000	교반기	0.0%	E0
8479829000	기타	0.0%	E0
8479891010	공기청정기(제습 및 가습 기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8479891090	기타	0.0%	E0
8479892010	인쇄회로조립품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0.0%	E0
8479892090	기타	0.0%	E0
8479899010	프레스・압출기	0.0%	E0
8479899020	선박용・어업용 기기	0.0%	E0
8479899030	아이레팅(eyeletting)기・튜불러리베팅(tubular revetting)기	0.0%	E0
8479899050	코팅머신(도포기)	0.0%	E0
8479899060	자동도어 작동기	0.0%	E0
8479899070	3D 프린터	0.0%	E0
8479899080	조상기(釣上機)	0.0%	E0
8479899091	제 87 류의 차량용	0.0%	E0
8479899099	기타	0.0%	E0
8479901010	냉방기기용(카쿨러의 것을 포함한다)	0.0%	E0
8479901020	가정형 기기용	0.0%	E0
8479901030	제 87 류의 차량용	0.0%	E0
8479902000	제 8479.89.9080 호의 것	0.0%	E0
8479903000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	0.0%	E0
8479904000	제 8479.7 호의 것	0.0%	E0
8479905010	인쇄회로조립품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0.0%	E0
8479905090	기타	0.0%	E0
8479909010	토목공사, 건축,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기계류의 것	0.0%	E0
8479909020	동물성이나 비휘발성의 식물성 유지의 추출 및 조제용 기계의 것	0.0%	E0
8479909030	로프, 케이블 제조기의 것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8479909040	금속처리용 기계류의 것	0.0%	E0
8479909050	혼합기・반죽기・파쇄기・분쇄기・기계식체・시프팅기・균질기・유화기・교반기의 것	0.0%	E0
8479909060	프레스・압출기의 것	0.0%	E0
8479909070	선박용・어업 기기의 것	0.0%	E0
8479909080	자동 마그네틱 제조기의 것	0.0%	E0
8479909090	기타	0.0%	E0
8480100000	금속 주조용 주형틀	0.0%	E0
8480200000	주형 베이스	0.0%	E0
8480300000	주형 제조용 모형	0.0%	E0
8480410000	사출식이나 압축식	0.0%	E0
8480490000	기타	0.0%	E0
8480500000	유리 성형용 주형	0.0%	E0
8480600000	광물성 물질 성형용 주형	0.0%	E0
8480710000	사출식이나 압축식	0.0%	E0
8480790000	기타	0.0%	E0
8481100000	감압밸브	0.0%	E0
8481201000	유압 전송용 밸브	0.0%	E0
8481202000	공기압 전송용 밸브	0.0%	E0
8481300000	체크(논리턴)밸브	0.0%	E0
8481400000	안전밸브	0.0%	E0
8481801010	전기 작동식의 것	0.0%	E0
8481801020	액압 작동식의 것	0.0%	E0
8481801030	그 밖의 자동제어식의 것	0.0%	E0
8481801090	기타	0.0%	E0
8481802000	탭・코크와 트랩	0.0%	E0
8481809000	기타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8481900000	부분품	0.0%	E0
8482102000	내경이 100 밀리미터 이하인 것	5.0%	E10
8482109000	기타	5.0%	E10
8482200000	원추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콘과 결합된 원추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을 포함한다]	0.0%	E0
8482300000	구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0.0%	E0
8482400000	니들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0.0%	E0
8482500000	그 밖의 원통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0.0%	E0
8482800000	그 밖의 베어링[볼베어링(ball bearing)과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이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0.0%	E0
8482910000	볼・니들・롤러	0.0%	E0
8482990000	기타	0.0%	E0
8483101000	항공기용	0.0%	E0
8483109010	제 87 류 차량용	0.0%	E0
8483109090	기타	0.0%	E0
8483201000	항공기용	0.0%	E0
8483209000	기타	0.0%	E0
8483301000	항공기용	0.0%	E0
8483309000	기타	0.0%	E0
8483401010	롤러 스크루(roller screw)	0.0%	E0
8483401090	기타	0.0%	E0
8483409010	기어	0.0%	E0
8483409020	기어박스	0.0%	E0
8483409030	무단변속기	0.0%	E0
8483409041	제 87 류 차량용	0.0%	E0
8483409049	기타	0.0%	E0
8483409090	기타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8483501000	항공기용	0.0%	E0
8483509000	기타	0.0%	E0
8483601000	항공기용	0.0%	E0
8483602000	풍력발전기용	0.0%	E0
8483609000	기타	0.0%	E0
8483901000	항공기용	0.0%	E0
8483902000	풍력발전기용	0.0%	E0
8483909000	기타	0.0%	E0
8484101000	제 87 류 차량용	0.0%	E0
8484109000	기타	0.0%	E0
8484200000	메커니컬 실(mechanical seal)	0.0%	E0
8484900000	기타	0.0%	E0
8486101000	스핀 드라이어(원심분리방식으로 한정한다)	0.0%	E0
8486102000	단결정 보울(boule)을 성장시키는 기계	0.0%	E0
8486103011	레이저 작동식 절단기	0.0%	E0
8486103019	기타	0.0%	E0
8486103020	웨이퍼 가공용의 연마기・광택기(래핑기를 포함한다)	0.0%	E0
8486103090	기타	0.0%	E0
8486104011	반도체 웨이퍼 제조공정에서 재료를 제거하는 방식에 의하여 재료를 가공하는 기계	0.0%	E0
8486104019	기타	0.0%	E0
8486104021	웨이퍼를 스트리핑・세척하는 기기	0.0%	E0
8486104029	기타	0.0%	E0
8486105010	저항가열식의 노(爐)와 오븐	0.0%	E0
8486105020	전자유도식・유전식 노(爐)와 오븐	0.0%	E0
8486105030	그 밖의 노(爐)와 오븐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8486109000	기타	0.0%	E0
8486201000	스핀 드라이어(원심분리방식으로 한정한다)	0.0%	E0
8486202100	저항가열식의 노(爐)와 오븐	0.0%	E0
8486202210	반도체 웨이퍼 위에 반도체 소자를 제조하는 용도의 것	0.0%	E0
8486202290	기타	0.0%	E0
8486202310	반도체 웨이퍼 급속가열기	0.0%	E0
8486202390	기타	0.0%	E0
8486203000	반도체재료 도핑용 이온주입기	0.0%	E0
8486204000	반도체웨이퍼 위에 막을 형성하거나 금속을 증착하는 기계	0.0%	E0
8486205110	반도체 리드의 것	0.0%	E0
8486205190	기타	0.0%	E0
8486205910	반도체 리드의 것	0.0%	E0
8486205990	기타	0.0%	E0
8486206010	반도체웨이퍼 위에 직접 그리는 기기	0.0%	E0
8486206020	스텝 앤 리피트 얼라이너	0.0%	E0
8486206091	레이저 작동식 기기	0.0%	E0
8486206099	기타	0.0%	E0
8486207000	반도체 웨이퍼를 습식 식각, 현상, 스트리핑하거나 세척하는 기계	0.0%	E0
8486208110	반도체 제조공정 중 레이저빔에 의하여 연결통로를 절단하는 레이저절단기	0.0%	E0
8486208120	반도체 웨이퍼 제조공정에서 재료를 제거하는 방식에 의하여 재료를 가공하는 기계	0.0%	E0
8486208190	기타	0.0%	E0
8486208410	반도체재료의 건식식각 패턴용의 것	0.0%	E0
8486208420	반도체웨이퍼를 스트리핑하거나 세척하는 기기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8486208490	기타	0.0%	E0
8486209110	반도체 웨이퍼의 식각, 스트리핑하거나 세척을 위한 분사기	0.0%	E0
8486209120	전기도금공정에 앞서 반도체패키지의 금속리드의 세척과 오염물질제거기	0.0%	E0
8486209190	기타	0.0%	E0
8486209200	포토레지스트를 도포·현상·경화시키는 기계	0.0%	E0
8486209310	반도체 웨이퍼가공용의 연마기·광택기(래핑기를 포함한다)	0.0%	E0
8486209321	레이저 작동식 기기	0.0%	E0
8486209329	기타	0.0%	E0
8486209390	기타	0.0%	E0
8486209400	웨이퍼·캐리어·튜브를 세척하는 기계	0.0%	E0
8486209500	반도체웨이퍼 위에 테이프를 부착시키는 기계	0.0%	E0
8486209600	반도체웨이퍼를 개별 칩으로 절단하는 기기	0.0%	E0
8486209900	기타	0.0%	E0
8486301000	습식 식각, 현상, 스트리핑하거나 세척하는 기기	0.0%	E0
8486302000	감광성 평판디스플레이용기판에 회로모형을 투영하거나 드로잉하는 기기	0.0%	E0
8486303010	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 광자빔 방식에 의한 것	0.0%	E0
8486303020	초음파 방식에 의한 것	0.0%	E0
8486303030	방전 방식에 의한 것	0.0%	E0
8486303042	유기발광다이오드(오엘이디) 제조용 건식 식각기	0.0%	E0
8486303043	그 밖의 건식식각기	0.0%	E0
8486303049	기타	0.0%	E0
8486304010	연마기·광택기	0.0%	E0
8486304090	기타	0.0%	E0
8486305011	유기발광다이오드(오엘이디) 제조용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8486305019	기타	0.0%	E0
8486305020	도포·현상기	0.0%	E0
8486305041	물리적 방식의 것	0.0%	E0
8486305042	화학적 방식의 것	0.0%	E0
8486305049	기타	0.0%	E0
8486305051	물리적 방식의 것	0.0%	E0
8486305052	화학적 방식의 것	0.0%	E0
8486305059	기타	0.0%	E0
8486306010	실(seal), 쇼트, 스페이서, 액정 디스펜서	0.0%	E0
8486306020	스크라이빙 머신	0.0%	E0
8486306030	패널 어셈블러	0.0%	E0
8486306090	기타	0.0%	E0
8486307000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0.0%	E0
8486308000	액체나 분말의 분사용·살포용·분무용 기기	0.0%	E0
8486309020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로보트	0.0%	E0
8486309090	기타	0.0%	E0
8486401010	패턴형성기(주로 사진 감광액이 도포된 감광판으로부터 마스크와 레티클을 제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	0.0%	E0
8486401020	마스크와 레티클을 처리·수리하기 위한 포커스드 이온빔 밀링기	0.0%	E0
8486401030	포토레지스트를 도포·현상·경화시키는 기계	0.0%	E0
8486401040	마스크와 레티클을 식각, 세척, 스트리핑하는 기계와 기기	0.0%	E0
8486401090	기타	0.0%	E0
8486402010	반도체 조립용의 다이 부착기, 테이프자동접착기·와이어접착기	0.0%	E0
8486402020	반도체 디바이스를 삽입·제거시키는 기계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8486402031	반도체조립용 인캡슐레이션 기기	0.0%	E0
8486402039	기타	0.0%	E0
8486402040	납볼을 반도체 제조용 인쇄회로기판이나 세라믹기판에 탑재하는 기계	0.0%	E0
8486402050	웨이퍼를 세라믹판에 부착·분리하는 기계	0.0%	E0
8486402070	사출식·압축식의 고무·플라스틱 성형용 주형	0.0%	E0
8486402080	반도체 다이를 부착하거나 웨이퍼, 캐리어, 튜브를 세척하는 기계	0.0%	E0
8486402091	굽힘용·접음용·교정용·펼침용 금속가공 공작기계(반도체 리드의 것으로서 프레스를 포함하며, 수치제어식의 여부는 상관없다)	0.0%	E0
8486402092	굽힘용·접음용·교정용·펼침용 금속가공 공작기계(반도체 리드 외의 것으로서 프레스를 포함하며, 수치제어식의 여부는 상관없다)	0.0%	E0
8486402093	웨이퍼의 절단 이전에 전체 웨이퍼에 연결접점(범프)을 형성하는 웨이퍼 범핑용 기기	0.0%	E0
8486402094	전기도금공정에 앞서 반도체패키지의 금속리드의 세척이나 오염물질제거기(액체나 분말의 분사용·살포용·분무용으로 한정한다)	0.0%	E0
8486402095	저항가열식의 전기식 노(爐)와 오븐	0.0%	E0
8486402099	기타	0.0%	E0
8486403010	반도체 소자 제조용 웨이퍼, 웨이퍼카셋트, 상자나 그 밖의 물품을 이송, 핸들링 그리고 저장하기 위한 것	0.0%	E0
8486403020	평판디스플레이의 권양(捲揚), 취급, 적하(積荷)나 양하(揚荷)용의 것	0.0%	E0
8486403090	기타	0.0%	E0
8486901010	제 8486.10.1000 호, 제 8486.10.2000 호, 제 8486.10.3011 호, 제 8486.10.3019 호, 제 8486.10.3020 호, 제 8486.10.4011 호, 제 8486.10.4021 호, 제 8486.10.5010 호, 제 8486.10.5020 호, 제 8486.10.5030 호의 것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8486901020	제 8486.10.3090 호, 제 8486.10.4019 호, 제 8486.10.4029 호, 제 8486.10.9000 호의 것	0.0%	E0
8486902010	제 8486.20.1000 호, 제 8486.20.2100 호, 제 8486.20.2210 호, 제 8486.20.2310 호, 제 8486.20.2390 호, 제 8486.20.3000 호, 제 8486.20.4000 호, 제 8486.20.5110 호, 제 8486.20.5910 호, 제 8486.20.6010 호, 제 8486.20.6020 호, 제 8486.20.6091 호, 제 8486.20.6099 호, 제 8486.20.7000 호, 제 8486.20.8110 호, 제 8486.20.8120 호, 제 8486.20.8410 호, 제 8486.20.8420 호, 제 8486.20.9110 호, 제 8486.20.9120 호, 제 8486.20.9190 호, 제 8486.20.9200 호, 제 8486.20.9310 호, 제 8486.20.9321 호, 제 8486.20.9329 호, 제 8486.20.9400 호, 제 8486.20.9500 호, 제 8486.20.9600 호의 것	0.0%	E0
8486902020	제 8486.20.2290 호, 제 8486.20.5190 호, 제 8486.20.5990 호, 제 8486.20.8190 호, 제 8486.20.8490 호, 제 8486.20.9390 호, 제 8486.20.9900 호의 것	0.0%	E0
8486903010	제 8486.30.1000 호, 제 8486.30.2000 호의 것	0.0%	E0
8486903020	제 8486.30.3010 호, 제 8486.30.3020 호, 제 8486.30.3030 호, 제 8486.30.3043 호, 제 8486.30.3049 호, 제 8486.30.4010 호, 제 8486.30.4090 호, 제 8486.30.6020 호, 제 8486.30.7000 호, 제 8486.30.8000 호, 제 8486.30.9020 호, 제 8486.30.9090 호의 것	0.0%	E0
8486903030	제 8486.30.5019 호, 제 8486.30.5020 호, 제 8486.30.5051 호, 제 8486.30.5052 호, 제 8486.30.5059 호, 제 8486.30.6010 호, 제 8486.30.6030 호, 제 8486.30.6090 호의 것	0.0%	E0
8486903040	제 8486.30.3042 호, 제 8486.30.5011 호, 제 8486.30.5041 호, 제 8486.30.5042 호, 제 8486.30.5049 호의 것	0.0%	E0
8486904010	제 8486.40.1010 호, 제 8486.40.1020 호, 제 8486.40.1030 호, 제 8486.40.2010 호, 제 8486.40.2031 호, 제 8486.40.2070 호,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제 8486.40.2080 호, 제 8486.40.2091 호, 제 8486.40.2094 호, 제 8486.40.2095 호, 제 8486.40.3010 호, 제 8486.40.3020 호,제 8486.40.3090 호의 것		
8486904020	제 8486.40.1040 호, 제 8486.40.1090 호, 제 8486.40.2020 호, 제 8486.40.2039 호, 제 8486.40.2040 호, 제 8486.40.2050 호, 제 8486.40.2092 호, 제 8486.40.2093 호, 제 8486.40.2099 호의 것	0.0%	E0
8487100000	선박이나 보트의 추진기와 그 블레이드(blade)	0.0%	E0
8487901000	제 87 류 차량용	0.0%	E0
8487909010	오일 실링	0.0%	E0
8487909090	기타	0.0%	E0
8501101000	직류 전동기	0.0%	E0
8501102000	교류 전동기	0.0%	E0
8501103000	교류·직류 겸용 전동기	0.0%	E0
8501201000	출력이 37.5 와트 초과 100 와트 이하인 것	0.0%	E0
8501202000	출력이 100 와트 초과 750 와트 이하인 것	0.0%	E0
8501203000	출력이 750 와트를 초과하는 것	0.0%	E0
8501311010	출력이 100 와트 이하인 것	0.0%	E0
8501311090	기타	0.0%	E0
8501312000	직류 발전기	0.0%	E0
8501321000	직류 전동기	0.0%	E0
8501322000	직류 발전기	0.0%	E0
8501331000	직류 전동기	0.0%	E0
8501332000	직류 발전기	0.0%	E0
8501341000	직류 전동기	0.0%	E0
8501342000	직류 발전기	0.0%	E0
8501401000	출력이 100 와트 이하인 것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8501402000	출력이 100 와트 초과 750 와트 이하인 것	0.0%	E0
8501403000	출력이 750 와트 초과 75 킬로와트 이하인 것	0.0%	E0
8501404000	출력이 75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0.0%	E0
8501510000	출력이 750 와트 이하인 것	0.0%	E0
8501520000	출력이 750 와트 초과 75 킬로와트 이하인 것	0.0%	E0
8501531000	출력이 375 킬로와트 이하인 것	0.0%	E0
8501532000	출력이 375 킬로와트 초과 1,500 킬로와트 이하인 것	0.0%	E0
8501534000	출력이 1,500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0.0%	E0
8501611000	출력이 750 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0.0%	E0
8501612000	출력이 750 볼트암페어 초과 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0.0%	E0
8501620000	출력이 75 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0.0%	E0
8501631000	400 킬로와트에 상응하는 출력 이상인 것	0.0%	E0
8501639000	기타	0.0%	E0
8501640000	출력이 75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0.0%	E0
8502111000	출력이 750 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0.0%	E0
8502112000	출력이 750 볼트암페어 초과 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0.0%	E0
8502120000	출력이 75 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0.0%	E0
8502131010	400 킬로와트에 상응하는 출력 이상인 것	0.0%	E0
8502131090	기타	0.0%	E0
8502132000	출력이 750 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50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0.0%	E0
8502134000	출력이 3,50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0.0%	E0
8502201000	출력이 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0.0%	E0
8502202000	출력이 75 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75 킬로볼트암페어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이하인 것		
8502203010	400 킬로와트에 상응하는 출력 이상인 것	0.0%	E0
8502203090	기타	0.0%	E0
8502204000	출력이 75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0.0%	E0
8502311000	출력이 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0.0%	E0
8502312000	출력이 75 킬로볼트암페어 초과 75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0.0%	E0
8502314000	출력이 75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0.0%	E0
8502391000	출력이 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0.0%	E0
8502392000	출력이 75 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0.0%	E0
8502393000	출력이 375 킬로볼트암페어 초과 75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0.0%	E0
8502394000	출력이 75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0.0%	E0
8502400000	회전변환기	0.0%	E0
8503001000	전동기의 것	0.0%	E0
8503002010	풍력발전기용	0.0%	E0
8503002090	기타	0.0%	E0
8503003000	회전변환기의 것	0.0%	E0
8504101010	전류가 1 암페어 이하인 것	0.0%	E0
8504101020	전류가 1 암페어 초과 20 암페어 이하인 것	0.0%	E0
8504102000	전류가 20 암페어 초과 60 암페어 이하인 것	0.0%	E0
8504103000	전류가 60 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0.0%	E0
8504211000	계기용 변압기	0.0%	E0
8504219010	용량이 10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0.0%	E0
8504219020	용량이 100 킬로볼트암페어 초과 65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0.0%	E0
8504221000	계기용 변압기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8504229010	용량이 650 킬로볼트암페어 초과 1,00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0.0%	E0
8504229020	용량이 1,000 킬로볼트암페어 초과 5,00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0.0%	E0
8504229030	용량이 5,000 킬로볼트암페어 초과 10,00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0.0%	E0
8504230000	용량이 10,00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0.0%	E0
8504311000	계기용 변압기	0.0%	E0
8504312000	전압 조정기	0.0%	E0
8504319010	용량이 100 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0.0%	E0
8504319020	용량이 100 볼트암페어 초과 500 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0.0%	E0
8504319040	용량이 500 볼트암페어 초과 1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0.0%	E0
8504321000	계기용 변압기	0.0%	E0
8504322000	전압 조정기	0.0%	E0
8504329010	용량이 1 킬로볼트암페어 초과 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0.0%	E0
8504329020	용량이 5 킬로볼트암페어 초과 16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0.0%	E0
8504331000	계기용 변압기	0.0%	E0
8504332000	전압 조정기	0.0%	E0
8504339010	용량이 16 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0.0%	E0
8504339020	용량이 30 킬로볼트암페어 초과 10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0.0%	E0
8504339040	용량이 100 킬로볼트암페어 초과 50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0.0%	E0
8504341000	계기용 변압기	0.0%	E0
8504342000	전압 조정기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8504349010	용량이 500 킬로볼트암페어 초과 2,00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0.0%	E0
8504349030	용량이 2,00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0.0%	E0
8504401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제 8471 호, 제 8443.31 호, 제 8443.32 호, 제 8528.42 호, 제 8528.52 호, 제 8528.62 호)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0.0%	E0
8504401090	기타	0.0%	E0
8504402011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제 8471 호, 제 8443.31 호, 제 8443.32 호, 제 8528.42 호, 제 8528.52 호, 제 8528.62 호)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0.0%	E0
8504402019	기타	0.0%	E0
8504402091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제 8471 호, 제 8443.31 호, 제 8443.32 호, 제 8528.42 호, 제 8528.52 호, 제 8528.62 호)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0.0%	E0
8504402099	기타	0.0%	E0
8504403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제 8471 호, 제 8443.31 호, 제 8443.32 호, 제 8528.42 호, 제 8528.52 호, 제 8528.62 호)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0.0%	E0
8504403090	기타	0.0%	E0
8504404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제 8471 호, 제 8443.31 호, 제 8443.32 호, 제 8528.42 호, 제 8528.52 호, 제 8528.62 호)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0.0%	E0
8504404090	기타	0.0%	E0
8504405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제 8471 호, 제 8443.31 호, 제 8443.32 호, 제 8528.42 호, 제 8528.52 호, 제 8528.62 호)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0.0%	E0
8504405090	기타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8504409011	자동자료처리기계의 것	0.0%	E0
8504409019	기타	0.0%	E0
8504409091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0.0%	E0
8504409099	기타	0.0%	E0
8504501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제 8471 호, 제 8443.31 호, 제 8443.32 호, 제 8528.42 호, 제 8528.52 호, 제 8528.62 호)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0.0%	E0
8504501090	기타	0.0%	E0
8504502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제 8471 호, 제 8443.31 호, 제 8443.32 호, 제 8528.42 호, 제 8528.52 호, 제 8528.62 호)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0.0%	E0
8504502090	기타	0.0%	E0
8504509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제 8471 호, 제 8443.31 호, 제 8443.32 호, 제 8528.42 호, 제 8528.52 호, 제 8528.62 호)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0.0%	E0
8504509090	기타	0.0%	E0
8504901000	인쇄회로조립품(소호 제 8504.40 호・제 8504.50 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 그 단위기기와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으로서 제 8534 호의 인쇄회로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8504909000	기타	0.0%	E0
8505111000	알니코(alnico)의 것	0.0%	E0
8505119000	기타	0.0%	E0
8505191000	산화철의 것	0.0%	E0
8505199000	기타	0.0%	E0
8505200000	전자석 커플링(coupling)・클러치・브레이크	0.0%	E0
8505901010	자기공명 촬영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제 9018 호의 전자석은 제외한다)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8505901090	기타	0.0%	E0
8505902000	전자석이나 영구자석식의 척(chuck)·클램프·바이스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가공물 홀더	0.0%	E0
8505903000	전자석 리프팅 헤드(lifting head)	0.0%	E0
8505909000	부분품	0.0%	E0
8506101000	망간건전지	5.0%	E0
8506102000	알칼리망간건전지	5.0%	E0
8506109000	기타	0.0%	E0
8506300000	산화수은으로 만든 것	0.0%	E0
8506400000	산화은으로 만든 것	0.0%	E0
8506500000	리튬으로 만든 것	0.0%	E0
8506600000	에어징크로 만든 것	0.0%	E0
8506801000	산화아연으로 만든 것	0.0%	E0
8506809000	기타	0.0%	E0
8506900000	부분품	0.0%	E0
8507100000	피스톤식 엔진 시동용 연산(鉛酸)축전지	0.0%	E0
8507200000	그 밖의 연산(鉛酸)축전지	0.0%	E0
8507300000	니켈-카드뮴 축전지	0.0%	E0
8507400000	니켈-철 축전지	0.0%	E0
8507500000	니켈-수소합금 축전지	0.0%	E0
8507601000	리튬폴리머 축전지	0.0%	E0
8507609000	기타	0.0%	E0
8507800000	그 밖의 축전지	0.0%	E0
8507901000	격리판	0.0%	E0
8507909000	기타	0.0%	E0
8508111000	로보트형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8508119000	기타	0.0%	E0
8508192000	로보트형	0.0%	E0
8508199000	기타	0.0%	E0
8508600000	그 밖의 진공청소기	0.0%	E0
8508701000	제 8508.11.9000 호의 것	0.0%	E0
8508702000	제 8508.19.9000 호, 제 8508.60.0000 호의 것	0.0%	E0
8508703000	제 8508.11.1000 호, 제 8508.19.2000 호의 것	0.0%	E0
8509400000	식품용 그라인더와 믹서, 과즙·채소즙 추출기	0.0%	E0
8509801000	커피분쇄기	0.0%	E0
8509802000	얼음분쇄기	0.0%	E0
8509803000	바닥광택기	0.0%	E0
8509804000	주방용 쓰레기처리기	0.0%	E0
8509809000	기타	0.0%	E0
8509900000	부분품	0.0%	E0
8510100000	면도기	0.0%	E0
8510200000	이발기	0.0%	E0
8510300000	모발제거기	0.0%	E0
8510901000	면도기의 것	0.0%	E0
8510902000	이발기의 것	0.0%	E0
8510903000	모발제거기의 것	0.0%	E0
8511101000	항공기용	0.0%	E0
8511109000	기타	0.0%	E0
8511201000	항공기용	0.0%	E0
8511209000	기타	0.0%	E0
8511301000	항공기용	0.0%	E0
8511309000	기타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8511401000	항공기용	0.0%	E0
8511409000	기타	0.0%	E0
8511501000	항공기용	0.0%	E0
8511509000	기타	0.0%	E0
8511801000	항공기용	0.0%	E0
8511809000	기타	0.0%	E0
8511901000	항공기용	0.0%	E0
8511909000	기타	0.0%	E0
8512101000	발광다이오드(엘이디)의 것	0.0%	E0
8512109000	기타	0.0%	E0
8512201010	발광다이오드(엘이디)의 것	0.0%	E0
8512201090	기타	0.0%	E0
8512202010	발광다이오드(엘이디)의 것	0.0%	E0
8512202090	기타	0.0%	E0
8512300000	음향신호용 기구	0.0%	E0
8512400000	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제상기(defroster)·제무기(demister)	0.0%	E0
8512900000	부분품	0.0%	E0
8513101000	광산용 안전등	0.0%	E0
8513102010	발광다이오드(엘이디)의 것	0.0%	E0
8513102090	기타	0.0%	E0
8513109010	발광다이오드(엘이디)의 것	0.0%	E0
8513109090	기타	0.0%	E0
8513900000	부분품	0.0%	E0
8514101000	실험실용	0.0%	E0
8514102000	금속공업용	0.0%	E0
8514103000	식품공업용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8514109000	기타	0.0%	E0
8514201000	실험실용	0.0%	E0
8514202000	금속공업용	0.0%	E0
8514203000	식품공업용	0.0%	E0
8514209000	기타	0.0%	E0
8514301000	인쇄회로나 인쇄회로조립품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0.0%	E0
8514309000	기타	0.0%	E0
8514401000	반도체 제조용	0.0%	E0
8514409000	기타	0.0%	E0
8514901000	반도체 제조용	0.0%	E0
8514902000	인쇄회로나 인쇄회로조립품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노(爐)와 오븐의 것	0.0%	E0
8514909000	기타	0.0%	E0
8515110000	납땜용 인두와 건(gun)	0.0%	E0
8515191000	인쇄회로조립품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침적 납땜용(wave soldering) 기계	0.0%	E0
8515199000	기타	0.0%	E0
8515211010	로보트형	0.0%	E0
8515211090	기타	0.0%	E0
8515212010	로보트형	0.0%	E0
8515212090	기타	0.0%	E0
8515213010	로보트형	0.0%	E0
8515213090	기타	0.0%	E0
8515219010	로보트형	0.0%	E0
8515219090	기타	0.0%	E0
8515291000	점 용접기기	0.0%	E0
8515292000	봉합 용접기기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8515293000	바트 용접기기	0.0%	E0
8515299000	기타	0.0%	E0
8515311010	로보트형	0.0%	E0
8515311090	기타	0.0%	E0
8515319010	로보트형	0.0%	E0
8515319090	기타	0.0%	E0
8515391000	교류아크 용접기기	0.0%	E0
8515399000	기타	0.0%	E0
8515801000	초음파 응용기기	0.0%	E0
8515802000	전자빔용 기기	0.0%	E0
8515803000	레이저 작동식 기기	0.0%	E0
8515809000	기타	0.0%	E0
8515901010	레이저 작동식의 것	0.0%	E0
8515901090	기타	0.0%	E0
8515902000	인쇄회로조립품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침적 납땜용(wave soldering) 기기의 것	0.0%	E0
8515909000	기타	0.0%	E0
8516100000	전기식의 즉시식·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0.0%	E0
8516210000	저장식 가열 라디에이터	0.0%	E0
8516290000	기타	0.0%	E0
8516310000	헤어드라이어	0.0%	E0
8516320000	그 밖의 이용기기	0.0%	E0
8516330000	손 건조기	0.0%	E0
8516400000	전기다리미	0.0%	E0
8516500000	마이크로웨이브 오븐(microwave oven)	0.0%	E0
8516601000	전기오븐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8516602000	전기밥솥(보온기능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0.0%	E0
8516609000	기타	0.0%	E0
8516710000	커피·차를 끓이는 기기	0.0%	E0
8516720000	토스터	0.0%	E0
8516791000	전기보온밥통	0.0%	E0
8516799000	기타	0.0%	E0
8516800000	전열용 저항체	0.0%	E0
8516900000	부분품	0.0%	E0
8517110000	유선전화기[무선 송수화기(cordless handset)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8517121010	디지털 방송수신이 가능한 것	0.0%	E0
8517121090	기타	0.0%	E0
8517122010	디지털 방송수신이 가능한 것	0.0%	E0
8517122090	기타	0.0%	E0
8517123010	디지털 방송수신이 가능한 것	0.0%	E0
8517123090	기타	0.0%	E0
8517124010	디지털 방송수신이 가능한 것	0.0%	E0
8517124090	기타	0.0%	E0
8517129010	디지털 방송수신이 가능한 것	0.0%	E0
8517129090	기타	0.0%	E0
8517181000	푸쉬 버튼식 전화기	0.0%	E0
8517189000	기타	0.0%	E0
8517611000	기지국용 송수신기	0.0%	E0
8517619000	기타	0.0%	E0
8517621000	텔레프린터	0.0%	E0
8517622010	기간통신사업용 교환기	0.0%	E0
8517622020	사설통신용 교환기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8517622090	기타	0.0%	E0
8517623110	단국장치	0.0%	E0
8517623120	중계장치	0.0%	E0
8517623190	기타	0.0%	E0
8517623210	단국장치	0.0%	E0
8517623220	중계장치	0.0%	E0
8517623290	기타	0.0%	E0
8517623310	광중계장치	0.0%	E0
8517623320	광단국장치	0.0%	E0
8517623390	기타	0.0%	E0
8517623410	에이/디(A/D), 디/에이(D/A)변환기	0.0%	E0
8517623420	코덱	0.0%	E0
8517623430	모뎀(모뎀카드를 포함한다)	0.0%	E0
8517623490	기타	0.0%	E0
8517623510	아날로그 신호전송 방식	0.0%	E0
8517623520	디지털 신호전송 방식	0.0%	E0
8517623590	기타	0.0%	E0
8517623900	기타	0.0%	E0
8517624010	키-폰	0.0%	E0
8517624020	영상전신기기	0.0%	E0
8517624090	기타	0.0%	E0
8517625000	무선전화용·무선전신용 송신기기	0.0%	E0
8517626020	영상전신기기	0.0%	E0
8517626031	워키토키 세트	0.0%	E0
8517626039	기타	0.0%	E0
8517626050	무선통신용 교환기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8517626060	무선통신용 중계기	0.0%	E0
8517626090	기타	0.0%	E0
8517627000	그 밖의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의 것	0.0%	E0
8517629000	기타	0.0%	E0
8517691100	장중단파 수신기	0.0%	E0
8517691211	휴대용 무선호출기	0.0%	E0
8517691219	기타	0.0%	E0
8517691290	기타	0.0%	E0
8517691900	기타	0.0%	E0
8517692000	영상전화기	0.0%	E0
8517699000	기타	0.0%	E0
8517701010	유선전화기의 것	0.0%	E0
8517701021	키패드	0.0%	E0
8517701022	프레임	0.0%	E0
8517701023	디스플레이 모듈	0.0%	E0
8517701029	기타	0.0%	E0
8517701090	기타	0.0%	E0
8517702000	소호 제 8517.61 호의 것	0.0%	E0
8517703010	텔레프린터의 것	0.0%	E0
8517703021	기간통신사업용 교환기의 것	0.0%	E0
8517703022	사설통신용 교환기의 것	0.0%	E0
8517703029	기타	0.0%	E0
8517703031	동축케이블 반송장치의 것	0.0%	E0
8517703032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것	0.0%	E0
8517703039	기타	0.0%	E0
8517703041	영상전신기기의 것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8517703049	기타	0.0%	E0
8517703050	무선전화용・무선전신용 송신기기의 것	0.0%	E0
8517703061	디스플레이 모듈	0.0%	E0
8517703069	기타	0.0%	E0
8517703070	그 밖의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의 것	0.0%	E0
8517703090	기타	0.0%	E0
8517704011	호출용・경보용・페이징용의 휴대용 수신기기의 것	0.0%	E0
8517704019	기타	0.0%	E0
8517704020	영상전화기의 것	0.0%	E0
8517704090	기타	0.0%	E0
8518101000	전기통신용 마이크로폰(지름이 10 밀리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3 밀리미터 이하이며, 주파수 대역이 300 헤르츠부터 3.4 킬로헤르츠까지인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8518109010	무선 마이크로폰(무선 마이크로폰 세트를 포함한다)	0.0%	E0
8518109090	기타	0.0%	E0
8518210000	단일형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8518220000	복합형 확성기[동일 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8518291000	전기통신용의 것(지름이 50 밀리미터 이하이고, 주파수대역이 300 헤르츠부터 3.4 킬로헤르츠까지이며, 하우징이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8518299000	기타	0.0%	E0
8518304000	유선전화 핸드세트	0.0%	E0
8518309000	기타	0.0%	E0
8518400000	가청주파증폭기	0.0%	E0
8518500000	음향증폭세트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8518901000	인쇄회로조립품(제 8518.10.1000 호・제 8518.29.1000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8518909000	기타	0.0%	E0
8519201000	코인이나 디스크 작동식 레코드 플레이어(음성기록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8519209000	기타(음성기록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8519301000	레코드판 자동교환 기능을 갖춘 것	0.0%	E0
8519309000	기타	0.0%	E0
8519500000	전화응답기	0.0%	E0
8519811000	트랜스크라이빙 머신(음성기록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8519812100	카세트 플레이어(제 85 류 소호주 제 1 호에서 규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8519812210	자동차용	0.0%	E0
8519812220	휴대용(제 85 류 소호주 제 1 호에서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0.0%	E0
8519812290	기타	0.0%	E0
8519812310	자동차용	0.0%	E0
8519812320	휴대용	0.0%	E0
8519812390	기타	0.0%	E0
8519812900	기타	0.0%	E0
8519813000	딕테이팅기(외부전원 없이는 작동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8519814111	자동차용	0.0%	E0
8519814112	휴대용	0.0%	E0
8519814119	기타	0.0%	E0
8519814190	기타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8519814200	기타(카세트형으로 한정한다)	0.0%	E0
8519814300	기타	0.0%	E0
8519815020	디스크형	0.0%	E0
8519815030	카세트형	0.0%	E0
8519815090	기타	0.0%	E0
8519819000	그 밖의 음성기록기(음성재생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0.0%	E0
8519891000	그 밖의 레코드 플레이어(음성기록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8519893000	데크(음성재생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0.0%	E0
8519899010	그 밖의 음성재생기(음성기록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8519899020	그 밖의 음성기록기(음성재생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0.0%	E0
8521100000	마그네틱 테이프형	0.0%	E0
8521901000	디스크형	0.0%	E0
8521909000	기타	0.0%	E0
8522100000	픽업 카트리지	0.0%	E0
8522901020	비디오 녹화용	0.0%	E0
8522901090	기타	0.0%	E0
8522902000	레이저 픽업	0.0%	E0
8522909010	전화응답기용 평판 디스플레이(엘시디, 이엘, 플라즈마,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	0.0%	E0
8522909020	전화응답기용 인쇄회로조립품(제 8534 호의 인쇄회로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8522909090	기타	0.0%	E0
8523210000	마그네틱 스트라이프(magnetic stripe)를 갖춘 카드(기록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8523291110	폭이 4밀리미터 이하인 것	0.0%	E0
8523291120	폭이 4밀리미터 초과 6.5밀리미터 이하인 것	0.0%	E0
8523291130	폭이 6.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0%	E0
8523291200	마그네틱 디스크	0.0%	E0
8523291900	기타	0.0%	E0
8523292111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0.0%	E0
8523292119	기타	0.0%	E0
8523292121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0.0%	E0
8523292129	기타	0.0%	E0
8523292131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0.0%	E0
8523292139	기타	0.0%	E0
8523292210	폭이 4밀리미터 이하인 것	0.0%	E0
8523292220	폭이 4밀리미터 초과 6.5밀리미터 이하인 것	0.0%	E0
8523292231	비디오 녹화된 것	0.0%	E0
8523292239	기타	0.0%	E0
8523292911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0.0%	E0
8523292919	기타	0.0%	E0
8523292991	비디오 녹화된 것	0.0%	E0
8523292992	명령・데이타・음성・영상을 재생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영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8523292999	기타	0.0%	E0
8523410000	기록이 안 된 것	0.0%	E0
8523491011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0.0%	E0
8523491019	기타	0.0%	E0
8523491020	음성만을 재생하는 것	0.0%	E0
8523491031	명령・데이타・음성・영상을 재생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영되고,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8523491039	기타	0.0%	E0
8523499011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0.0%	E0
8523499019	기타	0.0%	E0
8523499091	비디오 녹화된 것	0.0%	E0
8523499092	명령・데이타・음성・영상을 재생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영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8523499099	기타	0.0%	E0
8523511000	기록이 안 된 매체	0.0%	E0
8523512110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0.0%	E0
8523512190	기타	0.0%	E0
8523512920	명령・데이타・음성・영상을 재생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영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8523512990	기타	0.0%	E0
8523521000	한 개의 전자집적회로를 갖춘 것과 그 부분품	0.0%	E0
8523529000	기타와 그 부분품	0.0%	E0
8523591000	기록이 안 된 매체	0.0%	E0
8523592110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0.0%	E0
8523592190	기타	0.0%	E0
8523592920	명령・데이타・음성・영상을 재생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영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8523592990	기타	0.0%	E0
8523593000	프록시미티 카드(Proximity card)와 태그	0.0%	E0
8523801000	기록이 안 된 매체	0.0%	E0
8523802100	축음기용 레코드판	0.0%	E0
8523802210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8523802290	기타	0.0%	E0
8523802920	명령・데이타・음성・영상을 재생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영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8523802990	기타	0.0%	E0
8525501000	라디오 방송용	0.0%	E0
8525502000	텔레비전용	0.0%	E0
8525509000	기타	0.0%	E0
8525601000	라디오 방송용	0.0%	E0
8525602000	텔레비전용	0.0%	E0
8525609000	기타	0.0%	E0
8525801010	녹화기용	0.0%	E0
8525801020	모니터용	0.0%	E0
8525801090	기타	0.0%	E0
8525802010	정지화상비디오카메라	0.0%	E0
8525802090	기타	0.0%	E0
8525803000	비디오카메라레코더	0.0%	E0
8526101000	항공기용	0.0%	E0
8526109000	기타	0.0%	E0
8526911010	항공기용	0.0%	E0
8526911090	기타	0.0%	E0
8526912010	항공기용	0.0%	E0
8526912090	기타	0.0%	E0
8526913010	항공기용	0.0%	E0
8526913020	자동차용	0.0%	E0
8526913090	기타	0.0%	E0
8526914000	로란 리시버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8526919010	항공기용	0.0%	E0
8526919020	자동차용	0.0%	E0
8526919090	기타	0.0%	E0
8526920000	무선원격조절기기	0.0%	E0
8527120000	포켓사이즈형 라디오카세트플레이어	0.0%	E0
8527131000	카세트형	0.0%	E0
8527132000	디스크형	0.0%	E0
8527133000	카셋트형과 디스크형의 결합기기	0.0%	E0
8527139000	기타	0.0%	E0
8527190000	기타	0.0%	E0
8527211000	카세트형	0.0%	E0
8527212010	디지털 무선 데이터 시스템 신호를 수신 및 디코딩할 수 있는 것	0.0%	E0
8527212090	기타	0.0%	E0
8527213010	디지털 무선 데이터 시스템 신호를 수신 및 디코딩할 수 있는 것	0.0%	E0
8527213090	기타	0.0%	E0
8527219010	디지털 무선 데이터 시스템 신호를 수신 및 디코딩할 수 있는 것	0.0%	E0
8527219090	기타	0.0%	E0
8527290000	기타	0.0%	E0
8527911010	카세트형	0.0%	E0
8527911020	디스크형	0.0%	E0
8527911030	카셋트형과 디스크형의 결합기기	0.0%	E0
8527911090	기타	0.0%	E0
8527919000	기타	0.0%	E0
8527920000	시계와 결합된 것(음성기록기기나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은 제외한다)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8527990000	기타	0.0%	E0
8528420000	제 8471 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	0.0%	E0
8528491010	의료용으로 특수 제작된 것	0.0%	E0
8528491090	기타	0.0%	E0
8528492010	의료용으로 특수 제작된 것	0.0%	E0
8528492090	기타	0.0%	E0
8528521000	액정모니터	0.0%	E0
8528529000	기타	0.0%	E0
8528591010	의료용으로 특수 제작된 것	0.0%	E0
8528591090	기타	0.0%	E0
8528592010	의료용으로 특수 제작된 것	0.0%	E0
8528592090	기타	0.0%	E0
8528620000	제 8471 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	0.0%	E0
8528690000	기타	0.0%	E0
8528711000	비디오 튜너	0.0%	E0
8528712020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갖춘 것	0.0%	E0
8528712090	기타	0.0%	E0
8528719000	기타	0.0%	E0
8528721010	아날로그의 것	0.0%	E0
8528721020	디지털의 것	0.0%	E0
8528722010	아날로그의 것	0.0%	E0
8528722020	디지털의 것	0.0%	E0
8528723010	아날로그의 것	0.0%	E0
8528723020	디지털의 것	0.0%	E0
8528724010	아날로그의 것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8528724020	디지털의 것	0.0%	E0
8528725010	아날로그의 것	0.0%	E0
8528725020	디지털의 것	0.0%	E0
8528729000	기타	0.0%	E0
8528732000	수상기의 형광면을 대각선으로 측정한 길이가 45.72 센티미터 미만인 것	0.0%	E0
8528733000	수상기의 형광면을 대각선으로 측정한 길이가 45.72 센티미터 이상인 것	0.0%	E0
8528739000	기타	0.0%	E0
8529101000	레이더기기용	0.0%	E0
8529109100	항행용 무선기기·무선원격조절기용	0.0%	E0
8529109210	위성방송 수신용	0.0%	E0
8529109290	기타	0.0%	E0
8529109300	무선전화용·무선전신용 기기의 것	0.0%	E0
8529109900	기타	0.0%	E0
8529901000	레이더기기의 것	0.0%	E0
8529909100	항행용 무선기기·무선원격조절기의 것	0.0%	E0
8529909200	라디오 방송용·텔레비전용 송신기의 것	0.0%	E0
8529909400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의 것	0.0%	E0
8529909500	텔레비전 카메라의 것	0.0%	E0
8529909610	천연색 튜너	0.0%	E0
8529909620	흑백이나 단색 튜너	0.0%	E0
8529909630	영상투사기용 스크린	0.0%	E0
8529909641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방식용	0.0%	E0
8529909642	액정 디스플레이 방식용	0.0%	E0
8529909643	유기발광 디스플레이 방식용	0.0%	E0
8529909649	기타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8529909650	그 밖의 흑백이나 단색용	0.0%	E0
8529909910	수신기기가 결합된 송신기기, 디지털카메라용(디지털정지화상 비디오카메라의 것을 포함한다)	0.0%	E0
8529909921	디스플레이 모듈	0.0%	E0
8529909929	기타	0.0%	E0
8529909990	기타	0.0%	E0
8530101010	지상장치용	0.0%	E0
8530101090	기타	0.0%	E0
8530109000	기타	0.0%	E0
8530800000	그 밖의 기기	0.0%	E0
8530900000	부분품	0.0%	E0
8531101000	도난경보기	0.0%	E0
8531102000	화재경보기	0.0%	E0
8531103000	가스경보기	0.0%	E0
8531104000	전기식의 벨	0.0%	E0
8531105000	사이렌	0.0%	E0
8531109000	그 밖의 신호기기	0.0%	E0
8531201000	액정 디바이스(엘시디)가 결합된 표시반	0.0%	E0
8531202000	발광다이오드(엘이디)가 결합된 표시반	0.0%	E0
8531802000	도어벨·차임·버저와 이와 유사한 기기	0.0%	E0
8531809000	기타	0.0%	E0
8531901000	소호 제 8531.10 호의 것	0.0%	E0
8531902000	소호 제 8531.20 호의 것	0.0%	E0
8531909000	기타	0.0%	E0
8532100000	고정식 축전기로 50/60 헤르츠 회로에서 사용하고, 무효(無效)전력 용량이 0.5 킬로바르 이상인 것(전력용 축전기)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8532210000	탄탈륨의 것	0.0%	E0
8532220000	알루미늄 전해의 것	0.0%	E0
8532230000	세라믹 유전체의 것(단층)	0.0%	E0
8532240000	세라믹 유전체의 것(다층)	0.0%	E0
8532250000	종이나 플라스틱 유전체의 것	0.0%	E0
8532290000	기타	0.0%	E0
8532301000	폴리에틸렌 가변식 축전기	0.0%	E0
8532309000	기타	0.0%	E0
8532901000	고정식	0.0%	E0
8532902000	가변식	0.0%	E0
8532909000	기타	0.0%	E0
8533100000	탄소피막형 고정식 저항기(콤퍼지션형이나 필름형으로 한정한다)	0.0%	E0
8533212000	서미스터	0.0%	E0
8533219000	기타	0.0%	E0
8533292000	서미스터	0.0%	E0
8533299000	기타	0.0%	E0
8533310000	용량이 20 와트 이하인 것	0.0%	E0
8533390000	기타	0.0%	E0
8533401000	탄소가변의 것	0.0%	E0
8533403000	바리스터	0.0%	E0
8533409000	기타	0.0%	E0
8533901000	가변식 저항기의 것	0.0%	E0
8533909000	그 밖의 것	0.0%	E0
8534001000	수동소자 부분[인덕턴스(inductance), 저항기, 축전지 등]이 형성된 것	0.0%	E0
8534002000	테이프형이나 리드프레임(lead frame) 기능을 하는 회로가 형성된 것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8534009000	기타	0.0%	E0
8535100000	퓨즈	0.0%	E0
8535211000	정격전압이 7.25 킬로볼트 미만인 것	0.0%	E0
8535212000	정격전압이 7.25 킬로볼트 이상 72.5 킬로볼트 미만인 것	0.0%	E0
8535291000	정격전압이 200 킬로볼트 미만인 것	0.0%	E0
8535292000	정격전압이 200 킬로볼트 이상인 것	0.0%	E0
8535301000	정격전압이 7.25 킬로볼트 미만인 것	0.0%	E0
8535302000	정격전압이 7.25 킬로볼트 이상 72.5 킬로볼트 미만인 것	0.0%	E0
8535303000	정격전압이 72.5 킬로볼트 이상인 것	0.0%	E0
8535400000	피뢰기·전압제한기와 서지(surge)억제기	0.0%	E0
8535901000	커넥터	0.0%	E0
8535902000	터미널	0.0%	E0
8535909000	기타	0.0%	E0
8536101000	관형	0.0%	E0
8536109000	기타	0.0%	E0
8536200000	자동차단기	0.0%	E0
8536300000	전기회로 보호용 그 밖의 기기	0.0%	E0
8536410000	전압이 60 볼트 이하인 것	0.0%	E0
8536490000	기타	0.0%	E0
8536501000	회전형	0.0%	E0
8536502000	푸쉬 버튼형	0.0%	E0
8536503000	마이크로형	0.0%	E0
8536504000	전자개폐형(전자접속기를 포함한다)	0.0%	E0
8536509010	전기기계식의 스냅동작방식의 것(11 암페어 이하로 한정한다)	0.0%	E0
8536509020	교류(AC)방식의 것(입출력 회로가 광학적으로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짝지워진 것으로 한정한다)		
8536509030	온도보호용의 것(1,000 볼트 이하의 전압용으로 트랜지스터와 논리칩으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8536509090	기타	0.0%	E0
8536610000	램프홀더	0.0%	E0
8536691000	동축케이블·인쇄회로용의 것	0.0%	E0
8536699000	기타	0.0%	E0
8536701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0.0%	E0
8536702000	실험실용·화학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도자제품의 것	0.0%	E0
8536703010	주조·주형·압착·단조(이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8536703090	기타	0.0%	E0
8536901000	접속함	0.0%	E0
8536902000	제 8702 호, 제 8703 호, 제 8704 호 또는 제 8711 호의 자동차용 배터리 클램프(battery clamp)	0.0%	E0
8536909010	선이나 케이블의 접속용 구성품	0.0%	E0
8536909090	기타	0.0%	E0
8537101000	배전반	0.0%	E0
8537102010	수치 제어반	0.0%	E0
8537102020	프로그램이 가능한 제어기	0.0%	E0
8537102090	기타	0.0%	E0
8537109000	기타	0.0%	E0
8537201000	배전반	0.0%	E0
8537202000	제어반	0.0%	E0
8537209000	기타	0.0%	E0
8538100000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 8537 호의 물품용으로 한정하며,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이들 기기를 장착하여 조립한 것은 제외한다)		
8538901000	개폐기의 것	0.0%	E0
8538902000	자동차단기의 것	0.0%	E0
8538903000	계전기의 것	0.0%	E0
8538904000	제어반의 것	0.0%	E0
8538909000	기타	0.0%	E0
8539100000	실드빔 램프 유닛(sealed beam lamp unit)	0.0%	E0
8539210000	텅스텐 할로겐의 것	0.0%	E0
8539221000	백열램프	0.0%	E0
8539222000	장식용 램프	0.0%	E0
8539223000	빔 램프	0.0%	E0
8539224000	집어(集魚)용 램프	0.0%	E0
8539229000	기타	0.0%	E0
8539290000	기타	0.0%	E0
8539310000	형광램프(열음극형으로 한정한다)	0.0%	E0
8539321000	수은램프	0.0%	E0
8539322000	나트륨 증기 램프	0.0%	E0
8539323000	메탈 할라이드(metal halide)램프	0.0%	E0
8539391010	평판디스플레이의 후면광원(backlighting)용	0.0%	E0
8539391090	기타	0.0%	E0
8539399000	기타	0.0%	E0
8539410000	아크램프	0.0%	E0
8539491010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	0.0%	E0
8539491090	기타	0.0%	E0
8539492000	적외선 램프	0.0%	E0
8539500000	발광다이오드(엘이디)램프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8539901000	필라멘트 램프의 것	0.0%	E0
8539902000	방전램프의 것	0.0%	E0
8539909000	기타	0.0%	E0
8540110000	천연색	0.0%	E0
8540120000	단색	0.0%	E0
8540200000	텔레비전용 촬상관(camera tube), 영상변환관, 영상증강관(image intensifier), 그 밖의 광전관(photocathode tube)	0.0%	E0
8540400000	데이터/그래픽 직시관(display tube)(단색), 데이터/그래픽 직시관(display tube)(천연색으로서 인광물질 도트화면 간격이 0.4 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8540601000	천연색	0.0%	E0
8540609000	기타	0.0%	E0
8540710000	자전관(magnetron)	0.0%	E0
8540791000	속도변조관(klystron)	0.0%	E0
8540799000	기타	0.0%	E0
8540810000	수신관이나 증폭관	0.0%	E0
8540891000	송신기용 열전자관	0.0%	E0
8540892000	방전관	0.0%	E0
8540899000	기타	0.0%	E0
8540911000	디플렉션 코일	0.0%	E0
8540912000	전자총	0.0%	E0
8540913000	섀도우마스크	0.0%	E0
8540919000	기타	0.0%	E0
8540990000	기타	0.0%	E0
8541101000	칩, 다이스와 절단되지 않은 웨이퍼	0.0%	E0
8541109000	기타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8541211000	칩, 다이스와 절단되지 않은 웨이퍼	0.0%	E0
8541219000	기타	0.0%	E0
8541291000	칩, 다이스와 절단되지 않은 웨이퍼	0.0%	E0
8541299000	기타	0.0%	E0
8541301000	칩, 다이스와 절단되지 않은 웨이퍼	0.0%	E0
8541302000	사이리스터(thyristor)	0.0%	E0
8541303000	다이액(diac)	0.0%	E0
8541304000	트라이액(triac)	0.0%	E0
8541401000	칩, 다이스와 절단되지 않은 웨이퍼	0.0%	E0
8541402010	레이저소자	0.0%	E0
8541402090	기타	0.0%	E0
8541409010	광전도 셀	0.0%	E0
8541409021	태양전지	0.0%	E0
8541409022	태양광모듈(태양전지가 모듈 또는 패널로 조립된 것을 포함한다)	0.0%	E0
8541409029	기타	0.0%	E0
8541409030	전하결합소자	0.0%	E0
8541409090	기타	0.0%	E0
8541501000	칩, 다이스와 절단되지 않은 웨이퍼	0.0%	E0
8541502000	정류소자	0.0%	E0
8541509000	기타	0.0%	E0
8541601000	수정진동자	0.0%	E0
8541609000	기타	0.0%	E0
8541902000	다이오드의 것	0.0%	E0
8541903000	트랜지스터의 것	0.0%	E0
8541909000	기타	0.0%	E0
8542311000	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8542312000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0.0%	E0
8542313000	복합구조칩 집적회로	0.0%	E0
8542314010	제 9301 호・제 9306 호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0.0%	E0
8542314020	제 9032 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항공기용으로 한정한다)	0.0%	E0
8542314030	제 8517 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0.0%	E0
8542314040	제 8528.41 호・제 8528.51 호・제 8528.61 호・제 8531.20 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0.0%	E0
8542314050	제 9031 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반도체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0%	E0
8542314060	제 8425 호・제 8526 호・제 8428 호・제 8429 호・제 8430 호・제 8443.99 호・ 8470 호・제 8471 호・제 8472 호・제 9026 호・제 9030 호・제 9504 호의 기계・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0.0%	E0
8542314090	기타	0.0%	E0
8542321010	디램	0.0%	E0
8542321020	에스램	0.0%	E0
8542321030	플래시 메모리	0.0%	E0
8542321090	기타	0.0%	E0
8542322000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0.0%	E0
8542323000	복합구조칩 집적회로	0.0%	E0
8542324010	제 9301 호・제 9306 호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0.0%	E0
8542324020	제 9032 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항공기용으로 한정한다)	0.0%	E0
8542324030	제 8517 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0.0%	E0
8542324040	제 8528.41 호・제 8528.51 호・제 8528.61 호・제 8531.20 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0.0%	E0
8542324050	제 9031 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것(반도체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8542324060	제 8425 호・제 8526 호・제 8428 호・제 8429 호・제 8430 호・제 8443.99 호・ 8470 호・제 8471 호・제 8472 호・제 9026 호・제 9030 호・제 9504 호의 기계・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0.0%	E0
8542324090	기타	0.0%	E0
8542331000	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	0.0%	E0
8542332000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0.0%	E0
8542333000	복합구조칩 집적회로	0.0%	E0
8542334010	제 9301 호・제 9306 호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0.0%	E0
8542334020	제 9032 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항공기용으로 한정한다)	0.0%	E0
8542334030	제 8517 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0.0%	E0
8542334040	제 8528.41 호・제 8528.51 호・제 8528.61 호・제 8531.20 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0.0%	E0
8542334050	제 9031 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반도체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0%	E0
8542334060	제 8425 호・제 8526 호・제 8428 호・제 8429 호・제 8430 호・제 8443.99 호・ 8470 호・제 8471 호・제 8472 호・제 9026 호・제 9030 호・제 9504 호의 기계・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0.0%	E0
8542334090	기타	0.0%	E0
8542391000	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	0.0%	E0
8542392000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0.0%	E0
8542393000	복합구조칩 집적회로	0.0%	E0
8542394010	제 9301 호・제 9306 호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0.0%	E0
8542394020	제 9032 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항공기용으로 한정한다)	0.0%	E0
8542394030	제 8517 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8542394040	제 8528.41 호・제 8528.51 호・제 8528.61 호・제 8531.20 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0.0%	E0
8542394050	제 9031 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반도체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0%	E0
8542394060	제 8425 호・제 8526 호・제 8428 호・제 8429 호・제 8430 호・제 8443.99 호・ 8470 호・제 8471 호・제 8472 호・제 9026 호・제 9030 호・제 9504 호의 기계・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0.0%	E0
8542394090	기타	0.0%	E0
8542901000	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의 것	0.0%	E0
8542902000	하이브리드 집적회로의 것	0.0%	E0
8542903000	복합구조칩 집적회로의 것	0.0%	E0
8542904010	제 9301 호・제 9306 호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0.0%	E0
8542904020	제 9032 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항공기용으로 한정한다)	0.0%	E0
8542904030	제 8517 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0.0%	E0
8542904040	제 8528.41 호・제 8528.51 호・제 8528.61 호・제 8531.20 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0.0%	E0
8542904050	제 9031 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반도체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0%	E0
8542904060	제 8425 호・제 8526 호・제 8428 호・제 8429 호・제 8430 호・제 8443.99 호・ 8470 호・제 8471 호・제 8472 호・제 9026 호・제 9030 호・제 9504 호의 기계・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0.0%	E0
8542904090	기타	0.0%	E0
8543100000	입자가속기	0.0%	E0
8543200000	신호발생기	0.0%	E0
8543301000	인쇄회로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전기영동용은 제외한다)	0.0%	E0
8543309000	기타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8543701000	일렉트릭 펜스 에너자이저	0.0%	E0
8543702010	이온정수기	0.0%	E0
8543702020	미용기기	0.0%	E0
8543702030	오디오믹서	0.0%	E0
8543702040	이퀄라이저	0.0%	E0
8543702050	오존 발생기	0.0%	E0
8543702090	기타	0.0%	E0
8543703000	전자번역기·전자사전	0.0%	E0
8543704010	니코틴 용액을 포함한 것	0.0%	E0
8543704090	기타	0.0%	E0
8543705000	유선전신용·유선전화용 기기 또는 유선전신용·유선전화용 통신망 연결용 제품	0.0%	E0
8543709010	고주파증폭기	0.0%	E0
8543709020	디텍터(광센서를 포함한다)	0.0%	E0
8543709040	비디오게임 콘솔용 무선 적외선 원격조절장치	0.0%	E0
8543709050	디지털 비행 데이터 기록 장치	0.0%	E0
8543709060	휴대용 밧데리로 작동하는 전자 리더기(문자, 정지화상 또는 음성파일의 기록 및 재생용으로 한정한다)	0.0%	E0
8543709070	디지털신호처리기(사운드 믹싱을 위해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 연결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8543709090	기타	0.0%	E0
8543901000	전자초소형 조립회로	0.0%	E0
8543909011	유기발광다이오드(오엘이디)	0.0%	E0
8543909019	기타	0.0%	E0
8543909020	전자번역기·전자사전용 인쇄회로조립품(제 8534 호의 인쇄회로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8543909090	기타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8544111000	절연도료 피복전선	0.0%	E0
8544119000	기타	0.0%	E0
8544190000	기타	0.0%	E0
8544200000	동축케이블과 그 밖의 동축 도체	0.0%	E0
8544300000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그 밖의 와이어링 세트(자동차용・항공기용・선박용으로 한정한다)	0.0%	E0
8544421010	전기통신용	0.0%	E0
8544421090	기타	0.0%	E0
8544422010	전기통신용	0.0%	E0
8544422090	기타	0.0%	E0
8544429010	전기통신용	0.0%	E0
8544429090	기타	0.0% / 5.0%	E0
8544491011	전압이 80 볼트 이하인 것	0.0%	E0
8544491012	전압이 80 볼트 초과 1,000 볼트 이하인 것	0.0%	E0
8544491090	기타	0.0%	E0
8544492011	전압이 80 볼트 이하인 것	0.0%	E0
8544492012	전압이 80 볼트 초과 1,000 볼트 이하인 것	0.0%	E0
8544492090	기타	0.0%	E0
8544499011	전압이 80 볼트 이하인 것	0.0%	E0
8544499012	전압이 80 볼트 초과 1,000 볼트 이하인 것	0.0% / 5.0%	E0
8544499090	기타	0.0% / 5.0%	E0
8544601010	플라스틱 절연전선	0.0%	E0
8544601090	기타	0.0%	E0
8544602010	플라스틱 절연전선	0.0%	E0
8544602090	기타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8544603010	플라스틱 절연전선	5.0%	E0
8544603090	기타	0.0%	E0
8544700000	광섬유 케이블	0.0%	E0
8545110000	노(爐)용	0.0%	E0
8545190000	기타	0.0%	E0
8545200000	브러시	0.0%	E0
8545901000	탄소봉	0.0%	E0
8545909000	기타	0.0%	E0
8546100000	유리로 만든 것	0.0%	E0
8546200000	도자제의 것	0.0%	E0
8546901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애자	0.0%	E0
8546909000	기타	0.0%	E0
8547100000	도자제의 절연용 물품	0.0%	E0
8547200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절연용 물품	0.0%	E0
8547900000	기타	0.0%	E0
8548101000	소호 제 3824.84 호부터 제 3824.88 호까지, 제 3824.91 호, 제 3824.99 호의 것	0.0%	E0
8548102000	소호 제 7204.21 호, 제 7204.29 호, 제 7204.30 호, 제 7204.49 호의 것	0.0%	E0
8548103000	소호 제 7404.00 호의 것	0.0%	E0
8548104000	소호 제 7503.00 호, 제 7902.00 호의 것	0.0%	E0
8548105000	소호 제 7802.00 호의 것	0.0%	E0
8548106000	소호 제 8107.30 호, 제 8111.00 호의 것	0.0%	E0
8548107000	소호 제 8506.10 호, 제 8506.30 호, 제 8506.40 호, 제 8506.50 호, 제 8506.60 호, 제 8506.80 호의 것	0.0%	E0
8548109000	기타	0.0%	E0
8548901000	전자 초소형 조립회로	0.0%	E0
8548902010	유기발광다이오드(오엘이디)의 것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8548902090	기타	0.0%	E0
8548909000	기타	0.0%	E0
8601100000	외부 전원으로 주행하는 것	0.0%	E0
8601200000	축전지로 주행하는 것	0.0%	E0
8602100000	디젤 전기기관차	0.0%	E0
8602900000	기타	0.0%	E0
8603101000	객차	0.0%	E0
8603102000	화차	0.0%	E0
8603901000	객차	0.0%	E0
8603902000	화차	0.0%	E0
8604004000	궤도검사차	0.0%	E0
8604009000	기타	0.0%	E0
8605001000	객차	0.0%	E0
8605002000	수하물차	0.0%	E0
8605009000	기타	0.0%	E0
8606100000	탱크차와 이와 유사한 차	0.0%	E0
8606300000	자기양하식(self-discharging) 화차(소호 제 8606.10 호의 것은 제외한다)	0.0%	E0
8606910000	덮개가 있는 것으로서 밀폐되어 있는 것	0.0%	E0
8606920000	무개차로서 고정된 측면의 높이가 60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0.0%	E0
8606990000	기타	0.0%	E0
8607110000	구동식 보기(bogie)와 비셀보기(bissel-bogie)	0.0%	E0
8607120000	그 밖의 보기(bogie)와 비셀보기(bissel-bogie)	0.0%	E0
8607191000	차축	0.0%	E0
8607192000	차륜	0.0%	E0
8607193000	윤축(輪軸)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8607199000	기타	0.0%	E0
8607210000	공기식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0.0%	E0
8607290000	기타	0.0%	E0
8607301000	훅	0.0%	E0
8607302000	연결장치	0.0%	E0
8607303000	완충장치	0.0%	E0
8607309000	기타	0.0%	E0
8607910000	기관차용	0.0%	E0
8607990000	기타	0.0%	E0
8608001000	철도·궤도선로용 장치물	0.0%	E0
8608002000	기계식의 신호·안전·교통 관제용 기기	0.0%	E0
8608009000	부분품	0.0%	E0
8609001000	액체 운반용	0.0%	E0
8609002000	압축가스 운반용	0.0%	E0
8609003000	일반화물 운반용	0.0%	E0
8609004000	살아있는 동물 운반용	0.0%	E0
8609005000	냉동용과 냉장용	0.0%	E0
8609009000	기타	0.0%	E0
8701100000	차축이 하나인 트랙터	5.0% / 8.0%	E0
8701201000	신차	0.0%	E0
8701202000	중고차	0.0%	E0
8701300000	무한궤도식 트랙터	0.0%	E0
8701911010	신차	0.0%	E0
8701911020	중고차	0.0%	E0
8701912000	농업용 트랙터	0.0%	E0
8701919000	기타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8701921010	신차	0.0%	E0
8701921020	중고차	0.0%	E0
8701922000	농업용 트랙터	0.0%	E0
8701929000	기타	0.0%	E0
8701931010	신차	0.0%	E0
8701931020	중고차	0.0%	E0
8701932000	농업용 트랙터	0.0%	E0
8701939000	기타	0.0%	E0
8701941010	신차	0.0%	E0
8701941020	중고차	0.0%	E0
8701942000	농업용 트랙터	0.0%	E0
8701949000	기타	0.0%	E0
8701951010	신차	0.0%	E0
8701951020	중고차	0.0%	E0
8701952000	농업용 트랙터	0.0%	E0
8701959000	기타	0.0%	E0
8702101010	신차	0.0% / 10.0%	E0
8702101020	중고차	0.0% / 10.0%	E0
8702102010	신차	0.0% / 10.0%	E0
8702102020	중고차	0.0% / 10.0%	E0
8702103010	신차	0.0% / 10.0%	E0
8702103020	중고차	0.0% / 10.0%	E0
8702201000	신차	0.0% /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10.0%	
8702202000	중고차	0.0% / 10.0%	E0
8702301000	신차	0.0%	E0
8702302000	중고차	0.0%	E0
8702401000	신차	0.0%	E0
8702402000	중고차	0.0%	E0
8702901010	신차	0.0%	E0
8702901020	중고차	0.0%	E0
8702902010	신차	0.0%	E0
8702902020	중고차	0.0%	E0
8702903010	신차	0.0%	E0
8702903020	중고차	0.0%	E0
8703101000	설상주행용	0.0%	E0
8703102000	골프용차	0.0%	E0
8703109000	기타	0.0%	E0
8703217000	신차	0.0% / 8.0%	E0
8703218000	중고차	0.0% / 8.0%	E0
8703227000	신차	0.0% / 8.0%	E0
8703228000	중고차	0.0% / 8.0%	E0
8703231010	신차	0.0% / 8.0%	E0
8703231020	중고차	0.0% / 8.0%	E0
8703239010	신차	0.0% /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8.0%	
8703239020	중고차	0.0% / 8.0%	E0
8703241010	신차	0.0%	E0
8703241020	중고차	0.0%	E0
8703249010	신차	0.0%	E0
8703249020	중고차	0.0%	E0
8703317000	신차	0.0% / 8.0%	E0
8703318000	중고차	0.0% / 8.0%	E0
8703321010	신차	0.0% / 8.0%	E0
8703321020	중고차	0.0% / 8.0%	E0
8703329010	신차	0.0% / 8.0%	E0
8703329020	중고차	0.0% / 8.0%	E0
8703337000	신차	0.0% / 8.0%	E0
8703338000	중고차	0.0% / 8.0%	E0
8703401000	신차	0.0% / 8.0%	E0
8703402000	중고차	0.0% / 8.0%	E0
8703501000	신차	0.0% / 8.0%	E0
8703502000	중고차	0.0% / 8.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8703601000	신차	0.0% / 8.0%	E0
8703602000	중고차	0.0% / 8.0%	E0
8703701000	신차	0.0% / 8.0%	E0
8703702000	중고차	0.0% / 8.0%	E0
8703801000	신차	0.0% / 8.0%	E0
8703802000	중고차	0.0% / 8.0%	E0
8703900000	기타	0.0% / 8.0%	E0
8704100000	덤프차(비고속도로용으로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8704211010	신차	0.0% / 10.0%	E0
8704211020	중고차	0.0% / 10.0%	E0
8704219010	냉동차·냉장차	0.0% / 10.0%	E0
8704219020	탱크차	0.0% / 10.0%	E0
8704219090	기타	0.0% / 10.0%	E0
8704221011	신차	0.0% / 10.0%	E0
8704221012	중고차	0.0% / 10.0%	E0
8704221091	신차	0.0% / 10.0%	E0
8704221092	중고차	0.0% /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10.0%	
8704229010	냉동차·냉장차	0.0% / 10.0%	E0
8704229020	탱크차	0.0% / 10.0%	E0
8704229090	기타	0.0% / 10.0%	E0
8704231010	신차	0.0% / 10.0%	E0
8704231020	중고차	0.0% / 10.0%	E0
8704239010	냉동차·냉장차	0.0% / 10.0%	E0
8704239020	탱크차	0.0% / 10.0%	E0
8704239090	기타	0.0% / 10.0%	E0
8704311010	신차	0.0% / 10.0%	E0
8704311020	중고차	0.0% / 10.0%	E0
8704319010	냉동차·냉장차	0.0% / 10.0%	E0
8704319020	탱크차	0.0% / 10.0%	E0
8704319090	기타	0.0% / 10.0%	E0
8704321010	신차	0.0% / 10.0%	E0
8704321020	중고차	0.0% / 10.0%	E0
8704329010	냉동차·냉장차	0.0% /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10.0%	
8704329020	탱크차	0.0% / 10.0%	E0
8704329090	기타	0.0% / 10.0%	E0
8704901010	신차	0.0% / 10.0%	E0
8704901020	중고차	0.0% / 10.0%	E0
8704909010	냉동차·냉장차	0.0% / 10.0%	E0
8704909020	탱크차	0.0% / 10.0%	E0
8704909090	기타	0.0% / 10.0%	E0
8705101000	신축붐식	0.0%	E0
8705102000	앵글식	0.0%	E0
8705109000	기타	0.0%	E0
8705200000	이동식 시추용 데릭(derrick)차	0.0%	E0
8705300000	소방차	0.0%	E0
8705400000	콘크리트믹서 운반차	0.0%	E0
8705901010	농업용 살포차	0.0%	E0
8705901090	기타	0.0%	E0
8705909010	구난차	0.0%	E0
8705909020	도로청소차	0.0%	E0
8705909030	이동공작차	0.0%	E0
8705909040	이동방송차	0.0%	E0
8705909050	이동진료차	0.0%	E0
8705909060	이동통신차와 레이더차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8705909070	제설차	0.0%	E0
8705909090	기타	0.0%	E0
8706001000	제 8701 호의 것	0.0%	E0
8706002000	제 8702 호의 것	0.0%	E0
8706003000	제 8703 호의 것	0.0%	E0
8706004000	제 8704 호의 것	0.0%	E0
8706005000	제 8705 호의 것	0.0%	E0
8707100000	제 8703 호의 차량용	0.0%	E0
8707901000	제 8701 호의 것	0.0%	E0
8707902000	제 8702 호의 것	0.0%	E0
8707903000	제 8704 호의 것	0.0%	E0
8707904000	제 8705 호의 것	0.0%	E0
8708100000	완충기와 그 부분품	0.0% / 8.0%	E0
8708210000	안전벨트	0.0%	E0
8708290000	기타	0.0% / 8.0%	E0
8708301000	장착된 브레이크 라이닝	0.0%	E0
8708302000	브레이크 부스터	0.0% / 8.0%	E0
8708303000	전자 제어식 제동장치	0.0% / 8.0%	E0
8708309000	기타	0.0% / 8.0%	E0
8708400000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	0.0% / 8.0%	E0
8708501000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변속장치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과 그 부분품	0.0%	E0
8708502000	비구동 차축과 그 부분품	0.0% /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8.0%	
8708700000	로드 휠(road wheel)과 그 부분품・부속품	0.0% / 8.0%	E0
8708800000	서스펜션 시스템(suspension system)과 그 부분품[쇼크업소버(shock-absorber)를 포함한다]	0.0% / 8.0%	E0
8708910000	방열기와 그 부분품	0.0% / 8.0%	E0
8708920000	소음기(머플러), 배기관, 그 부분품	0.0% / 8.0%	E0
8708930000	클러치와 그 부분품	0.0% / 8.0%	E0
8708940000	운전대・스티어링칼럼(steering column)・운전박스와 그 부분품	0.0%	E0
8708951000	에어백	0.0%	E0
8708959000	기타	0.0%	E0
8708991010	제 8701 호의 것	0.0%	E0
8708991020	제 8702 호의 것	0.0%	E0
8708991030	제 8703 호의 것	0.0%	E0
8708991040	제 8704 호의 것	0.0%	E0
8708991050	제 8705 호의 것	0.0%	E0
8708999000	기타	0.0%	E0
8709110000	전기식의 것	0.0%	E0
8709190000	기타	0.0%	E0
8709900000	부분품	0.0%	E0
8710001000	전차	0.0%	E0
8710002000	그 밖의 장갑차량	0.0%	E0
8710009000	부분품	0.0%	E0
8711101000	모터사이클	0.0% / 8.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8711102000	모페드	0.0%	E0
8711109000	기타	0.0% / 8.0%	E0
8711201000	모터사이클	0.0% / 8.0%	E0
8711209000	기타	0.0% / 8.0%	E0
8711301000	모터사이클	0.0%	E0
8711309000	기타	0.0%	E0
8711401000	모터사이클	0.0%	E0
8711409000	기타	0.0%	E0
8711501000	모터사이클	0.0%	E0
8711509000	기타	0.0%	E0
8711601000	모터사이클	0.0%	E0
8711609000	기타	0.0%	E0
8711901000	모터사이클	0.0%	E0
8711909000	기타	0.0%	E0
8712001000	경기용	5.0%	E0
8712009020	삼륜자전거	5.0%	E0
8712009090	기타	5.0%	E0
8713100000	기계구동식이 아닌 것	0.0%	E0
8713900000	기타	0.0%	E0
8714101000	안장	8.0%	E0
8714109000	기타	0.0%	E0
8714200000	신체장애인용 차량의 것	0.0%	E0
8714911000	프레임	5.0%	E0
8714912000	포크	5.0%	E0
8714919000	이들의 부분품	5.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8714921000	휠 림	5.0%	E0
8714922000	스포크	5.0%	E0
8714931000	허브[코스터 브레이킹허브(coaster braking hub)와 허브브레이크(hub brake)는 제외한다]	5.0%	E0
8714932000	프리휠(free-wheel) 스프로켓 휠(sprocket-wheel)	5.0%	E0
8714941000	브레이크	5.0%	E0
8714949000	이들의 부분품	5.0%	E0
8714950000	안장	5.0%	E0
8714961000	페달	5.0%	E0
8714962000	크랭크 기어(crankgear)	5.0%	E0
8714969000	이들의 부분품	5.0%	E0
8714990000	기타	5.0%	E0
8715000000	유모차와 그 부분품	0.0%	E0
8716100000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이동주택형으로서 주거용과 캠핑용으로 한정한다)	0.0%	E0
8716200000	농업용 자동적재식이나 자동양하식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0.0%	E0
8716310000	탱커 트레일러(tanker trailer)와 탱커 세미트레일러(tanker semi-trailer)	0.0%	E0
8716390000	기타	0.0%	E0
8716400000	그 밖의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0.0%	E0
8716801000	손수레	0.0%	E0
8716802000	우마차	0.0%	E0
8716803000	썰매	0.0%	E0
8716809000	기타	0.0%	E0
8716901000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의 것	0.0%	E0
8716909000	기타	0.0%	E0
8801001000	글라이더와 행글라이더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8801009010	기구와 비행선	0.0%	E0
8801009090	기타	0.0%	E0
8802111000	군용	0.0%	E0
8802119000	기타	0.0%	E0
8802121000	군용	0.0%	E0
8802129000	기타	0.0%	E0
8802201000	프로펠러식	0.0%	E0
8802202000	터보프로펠러식	0.0%	E0
8802203000	터보제트식	0.0%	E0
8802209000	기타	0.0%	E0
8802301000	프로펠러식	0.0%	E0
8802302000	터보프로펠러식	0.0%	E0
8802303000	터보제트식	0.0%	E0
8802309000	기타	0.0%	E0
8802401000	프로펠러식	0.0%	E0
8802402000	터보프로펠러식	0.0%	E0
8802403000	터보제트식	0.0%	E0
8802409000	기타	0.0%	E0
8802601010	인공위성	0.0%	E0
8802601090	기타	0.0%	E0
8802602000	우주선 운반로켓	0.0%	E0
8802603000	서보비틀(suborbital)	0.0%	E0
8803100000	프로펠러·로터(rotor)와 이들의 부분품	0.0%	E0
8803200000	기체 지지부와 그 부분품	0.0%	E0
8803301000	비행기의 것	0.0%	E0
8803302000	헬리콥터의 것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8803901000	글라이더나 행글라이더의 것	0.0%	E0
8803902000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의 것	0.0%	E0
8803909000	기타	0.0%	E0
8804001000	낙하산(조종 가능한 낙하산과 패러글라이더를 포함한다)	0.0%	E0
8804002000	로토슈트(rotochute)	0.0%	E0
8804009010	낙하산(조종 가능한 낙하산과 패러글라이더를 포함한다)의 것	0.0%	E0
8804009020	로토슈트(rotochute)의 것	0.0%	E0
8805101010	군용·경찰용	0.0%	E0
8805101090	기타	0.0%	E0
8805102010	군용·경찰용	0.0%	E0
8805102090	기타	0.0%	E0
8805109010	군용·경찰용	0.0%	E0
8805109090	기타	0.0%	E0
8805211010	군용·경찰용	0.0%	E0
8805211090	기타	0.0%	E0
8805212010	군용·경찰용	0.0%	E0
8805212090	기타	0.0%	E0
8805291010	군용·경찰용	0.0%	E0
8805291090	기타	0.0%	E0
8805292010	군용·경찰용	0.0%	E0
8805292090	기타	0.0%	E0
8901100000	순항선·유람선과 이와 유사한 선박(주로 사람 수송용으로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각종 페리보트(ferry-boat)	0.0%	E0
8901200000	탱커(tanker)	0.0%	E0
8901300000	냉동선(소호 제 8901.20 호의 것은 제외한다)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8901901000	화물선	0.0%	E0
8901902000	화객선	0.0%	E0
8902001010	철강선	0.0%	E0
8902001020	에프알피(FRP)선	0.0%	E0
8902001030	목조선	0.0%	E0
8902001090	기타	0.0%	E0
8902002010	어획물의 가공선·저장선	0.0%	E0
8902002090	기타	0.0%	E0
8903100000	인플랫터블(inflatable)식	0.0%	E0
8903910000	범선(보조모터를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	0.0%	E0
8903920000	모터보트[아웃보드 모터보트(outboard motorboat)는 제외한다]	0.0%	E0
8903991000	아웃보드 모터보트(outboard motorboat)	0.0%	E0
8903999000	기타	0.0%	E0
8904001000	예인선	0.0%	E0
8904002000	푸셔크라프트(pusher craft)	0.0%	E0
8904009000	기타	0.0%	E0
8905100000	준설선	0.0%	E0
8905201000	시추대	0.0%	E0
8905202000	작업대	0.0%	E0
8905209000	기타	0.0%	E0
8905901000	조명선	0.0%	E0
8905902000	소방선	0.0%	E0
8905903000	기중기선	0.0%	E0
8905905000	해난구조선	0.0%	E0
8905907000	시추선	0.0%	E0
8905908000	부선거(艀船渠)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8905909000	기타	0.0%	E0
8906100000	군함	0.0%	E0
8906900000	기타	0.0%	E0
8907100000	인플랫터블(inflatable)식 부교	0.0%	E0
8907901000	부교(소호 제 8907.10 호의 것은 제외한다)	0.0%	E0
8907902000	탱크	0.0%	E0
8907903000	코퍼댐(coffer-dam)	0.0%	E0
8907904000	부잔교(landing stage)	0.0%	E0
8907905000	부표	0.0%	E0
8907906000	수로부표	0.0%	E0
8907909000	기타	0.0%	E0
8908001000	해체용 선박	0.0%	E0
8908009000	기타	0.0%	E0
9001101000	광섬유	0.0%	E0
9001102000	광섬유다발	0.0%	E0
9001103000	광섬유 케이블	0.0%	E0
9001200000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0.0%	E0
9001300000	콘택트렌즈	0.0%	E0
9001401000	시력 교정용	0.0%	E0
9001409000	기타	0.0%	E0
9001501000	시력 교정용	0.0%	E0
9001509000	기타	0.0%	E0
9001901000	프리즘	0.0%	E0
9001902000	반사경	0.0%	E0
9001903000	그 밖의 렌즈	0.0%	E0
9001909000	기타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9002111000	사진기용	0.0%	E0
9002119010	촬영기·비디오카메라용	0.0%	E0
9002119020	영사기용	0.0%	E0
9002119090	기타	0.0%	E0
9002191000	현미경용	0.0%	E0
9002192000	천체망원경용	0.0%	E0
9002199000	기타	0.0%	E0
9002201000	사진기용	0.0%	E0
9002209000	기타	0.0%	E0
9002901000	사진기용	0.0%	E0
9002909010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	0.0%	E0
9002909090	기타	0.0%	E0
9003110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0.0%	E0
9003191000	귀금속을 사용한 것	0.0%	E0
9003199000	기타	0.0%	E0
9003900000	부분품	0.0%	E0
9004101000	귀금속을 사용한 것	0.0%	E0
9004109000	기타	0.0%	E0
9004901000	시력교정용 안경	0.0%	E0
9004902000	3D 입체영상용 안경(능동방식인지 수동방식인지에 상관없다)	0.0%	E0
9004909010	귀금속을 사용한 것	0.0%	E0
9004909090	기타	0.0%	E0
9005100000	쌍안경	0.0%	E0
9005801000	단안경	0.0%	E0
9005802010	반사망원경	0.0%	E0
9005802020	굴절식 천체망원경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9005802090	기타	0.0%	E0
9005809000	기타	0.0%	E0
9005900000	부분품과 부속품(장착구를 포함한다)	0.0%	E0
9006301000	수중촬영용 사진기	0.0%	E0
9006302000	공중측량용 사진기	0.0%	E0
9006303000	내부기관의 내과용·외과용 검진용 사진기	0.0%	E0
9006304000	법정비교용 사진기	0.0%	E0
9006401000	폴라로이드 사진기	0.0%	E0
9006402000	스티커 사진기	0.0%	E0
9006409000	기타	0.0%	E0
9006511000	특수용도 사진기	0.0%	E0
9006519000	기타	0.0%	E0
9006521000	특수용도 사진기	0.0%	E0
9006529000	기타	0.0%	E0
9006531000	특수용도 사진기	0.0%	E0
9006539010	일회용사진기	0.0%	E0
9006539090	기타	0.0%	E0
9006591000	특수용도 사진기	0.0%	E0
9006599000	기타	0.0%	E0
9006610000	섬광기구(전자식 방전램프를 사용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9006691000	섬광전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0.0%	E0
9006699000	기타	0.0%	E0
9006910000	카메라용	0.0%	E0
9006990000	기타	0.0%	E0
9007100000	촬영기	0.0%	E0
9007201000	폭이 20 밀리미터 미만의 필름용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9007209000	기타	0.0%	E0
9007910000	촬영기용	0.0%	E0
9007920000	영사기용	0.0%	E0
9008501000	마이크로필름·마이크로피셰나 그 밖의 마이크로폼 리더(복사기능의 유무는 상관없다)	0.0%	E0
9008502000	그 밖의 투영기	0.0%	E0
9008503000	사진 확대기와 사진 축소기(영화용의 것은 제외한다)	0.0%	E0
9008900000	부분품과 부속품	0.0%	E0
9010101000	인쇄 제판용	0.0%	E0
9010102000	마이크로필름용	0.0%	E0
9010109010	반도체 제조용	0.0%	E0
9010109090	기타	0.0%	E0
9010501000	반도체 제조용 현상기	0.0%	E0
9010509000	기타	0.0%	E0
9010600000	영사용 스크린	0.0%	E0
9010901010	제 9010.50.1000 호의 것	0.0%	E0
9010901090	기타	0.0%	E0
9010902000	제 9010.50 호 및 제 9010.60 호의 것(반도체 제조용은 제외한다)	0.0%	E0
9010909000	기타	0.0%	E0
9011101000	반도체 웨이퍼나 레티클의 취급과 이송용으로 특별히 고안된 장치가 부착된 것	0.0%	E0
9011109000	기타	0.0%	E0
9011201010	반도체 웨이퍼나 레티클의 취급과 이송용으로 특별히 고안된 장치가 부착된 것	0.0%	E0
9011201090	기타	0.0%	E0
9011209000	기타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9011801000	편광 현미경	0.0%	E0
9011802000	금속 현미경	0.0%	E0
9011803000	위상차 현미경	0.0%	E0
9011804000	생물 현미경	0.0%	E0
9011809000	기타	0.0%	E0
9011901000	제 9011.10.1000 호, 제 9011.20.1010 호의 것	0.0%	E0
9011909000	기타	0.0%	E0
9012101010	일렉트론 빔 현미경(반도체 웨이퍼나 레티클의 취급과 이송용으로 특별히 고안된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9012101090	기타	0.0%	E0
9012102000	회절기기(diffraction apparatus)	0.0%	E0
9012901000	제 9012.10.1010 호의 것	0.0%	E0
9012909000	기타	0.0%	E0
9013101000	이 류나 제 16 부의 기기 부분품용 망원경	0.0%	E0
9013109000	기타	0.0%	E0
9013200000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laser diode)는 제외한다]	0.0%	E0
9013801120	전자계산기용	0.0%	E0
9013801130	텔레비전용	0.0%	E0
9013801140	모니터용	0.0%	E0
9013801190	기타	0.0%	E0
9013801920	전자계산기용	0.0%	E0
9013801930	텔레비전용	0.0%	E0
9013801990	기타	0.0%	E0
9013802000	확대경, 루페, 섬유 카운터	0.0%	E0
9013803000	도어아이	0.0%	E0
9013809000	기타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9013901000	제 9013.80.1120 호, 제 9013.80.1920 호의 것	0.0%	E0
9013902000	무기용 망원 조준기 또는 잠망경의 것	0.0%	E0
9013909000	기타	0.0%	E0
9014101010	항공기용	0.0%	E0
9014101090	기타	0.0%	E0
9014102010	항공기용	0.0%	E0
9014102090	기타	0.0%	E0
9014109000	기타	0.0%	E0
9014200000	항공용이나 우주항행용 기기[컴퍼스(compass)는 제외한다]	0.0%	E0
9014800000	그 밖의 항행용 기기	0.0%	E0
9014901000	항공기용	0.0%	E0
9014909000	기타	0.0%	E0
9015100000	거리측정기	0.0%	E0
9015200000	경위의(經緯儀)와 시거의(視距儀)	0.0%	E0
9015300000	수준기(水準器)	0.0%	E0
9015400000	사진측량기기	0.0%	E0
9015801000	토지 측량용	0.0%	E0
9015802000	수로 측량용	0.0%	E0
9015803000	해양 측량용	0.0%	E0
9015804000	수리 계측용	0.0%	E0
9015805000	기상 관측용	0.0%	E0
9015809000	기타	0.0%	E0
9015900000	부분품과 부속품	0.0%	E0
9016001000	직시식	0.0%	E0
9016002000	전자식	0.0%	E0
9016008000	기타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9016009000	부분품과 부속품	0.0%	E0
9017101000	플로터	0.0%	E0
9017109000	기타	0.0%	E0
9017201010	플로터	0.0%	E0
9017201090	기타	0.0%	E0
9017202010	플로터	0.0%	E0
9017202090	기타	0.0%	E0
9017203000	계산용구	0.0%	E0
9017209000	기타	0.0%	E0
9017301000	마이크로미터	0.0%	E0
9017302000	다이알 게이지류	0.0%	E0
9017303000	버니어 캘리퍼스(Vernier callipers)	0.0%	E0
9017309000	기타	0.0%	E0
9017801000	눈금이 든 곧은 자와 줄자	0.0%	E0
9017809010	반도체 제조용	0.0%	E0
9017809090	기타	0.0%	E0
9017901000	반도체 제조용	0.0%	E0
9017909010	플로터용 인쇄회로조립품(제 8534 호의 인쇄회로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9017909020	플로터용 평판디스플레이(엘시디, 이엘, 플라즈마와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	0.0%	E0
9017909090	기타	0.0%	E0
9018111000	심전계	0.0%	E0
9018119000	부분품과 부속품	0.0%	E0
9018121000	초음파 영상진단기	0.0%	E0
9018129000	부분품과 부속품	0.0%	E0
9018131000	자기공명 촬영기기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9018139000	부분품과 부속품	0.0%	E0
9018140000	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	0.0%	E0
9018191000	뇌파계	0.0%	E0
9018192000	청력검사용 기구	0.0%	E0
9018194000	혈압 측정기기	0.0%	E0
9018197000	환자 감시장치	0.0%	E0
9018198000	기타	0.0%	E0
9018199000	부분품과 부속품	0.0%	E0
9018201000	자외선이나 적외선 응용기기	0.0%	E0
9018209000	부분품과 부속품	0.0%	E0
9018310000	주사기(바늘이 부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0.0%	E0
9018321000	주사침	0.0%	E0
9018322000	봉합침	0.0%	E0
9018329000	기타	0.0%	E0
9018391000	수혈세트와 수액세트	0.0%	E0
9018392000	카테터(catheter)	0.0%	E0
9018398000	기타	0.0%	E0
9018399000	부분품과 부속품	0.0%	E0
9018411000	치과용 드릴 엔진	0.0%	E0
9018419000	부분품과 부속품	0.0%	E0
9018491000	치과용 버(bur)	0.0%	E0
9018492000	치과용 유닛	0.0%	E0
9018493000	치석 제거기	0.0%	E0
9018498000	기타	0.0%	E0
9018499000	부분품과 부속품	0.0%	E0
9018501010	레이저 작동식 기기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9018501090	기타	0.0%	E0
9018509000	부분품과 부속품	0.0%	E0
9018901000	임신진단기	0.0%	E0
9018902010	레이저 작동식 기기	0.0%	E0
9018902090	기타	0.0%	E0
9018903000	산부인과용 기기	0.0%	E0
9018904000	내시경(위내시경, 복막경, 방광경과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9018905000	인공신장기(인공신장기용 투석기를 포함한다)	0.0%	E0
9018906000	전기신경자극기	0.0%	E0
9018907000	수의과용 기기	0.0%	E0
9018908010	레이저 작동식 기기	0.0%	E0
9018908090	기타	0.0%	E0
9018909080	기타	0.0%	E0
9018909090	부분품과 부속품	0.0%	E0
9019101000	기계요법용 기기	0.0%	E0
9019102000	마사지용 기기	0.0%	E0
9019103000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0.0%	E0
9019109000	부분품과 부속품	0.0%	E0
9019201000	오존 흡입기	0.0%	E0
9019202000	산소 흡입기	0.0%	E0
9019203000	에어로졸 치료기	0.0%	E0
9019204000	인공호흡기	0.0%	E0
9019208000	기타	0.0%	E0
9019209000	부분품과 부속품	0.0%	E0
9020001000	가스마스크	0.0%	E0
9020008000	그 밖의 호흡용 기기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9020009000	부분품과 부속품	0.0%	E0
9021100000	정형외과용이나 골절치료용 기기	0.0%	E0
9021210000	의치	0.0%	E0
9021290000	기타	0.0%	E0
9021310000	인조관절	0.0%	E0
9021390000	기타	0.0%	E0
9021400000	보청기(부분품과 부속품은 제외한다)	0.0%	E0
9021500000	심장박동기(부분품과 부속품은 제외한다)	0.0%	E0
9021901000	스크루·스테이플·핀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인체에 삽입되는 것	0.0%	E0
9021908000	기타	0.0%	E0
9021909000	부분품과 부속품	0.0%	E0
9022120000	컴퓨터 단층촬영기기	0.0%	E0
9022130000	기타(치과용으로 한정한다)	0.0%	E0
9022141020	혈관조영 촬영장치	0.0%	E0
9022141030	뼈(골)밀도측정기	0.0%	E0
9022141090	기타	0.0%	E0
9022142000	수의과용	0.0%	E0
9022191000	물리·화학시험용	0.0%	E0
9022192000	공업용	0.0%	E0
9022199000	기타	0.0%	E0
9022211010	감마사진기 장치	0.0%	E0
9022211020	선형 가속치료 장치	0.0%	E0
9022211030	코발트 60 치료기	0.0%	E0
9022211090	기타	0.0%	E0
9022212000	수의과용	0.0%	E0
9022291000	물리·화학시험용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9022292000	공업용	0.0%	E0
9022299000	기타	0.0%	E0
9022300000	엑스선관	0.0%	E0
9022901010	엑스선 발생기	0.0%	E0
9022901020	엑스선의 스크린	0.0%	E0
9022901030	엑스선용 고압발생기	0.0%	E0
9022901090	기타	0.0%	E0
9022909010	엑스선을 사용하는 기기의 것	0.0%	E0
9022909090	기타	0.0%	E0
9023001000	인체나 동물의 해부 전시모형	0.0%	E0
9023009000	기타	0.0%	E0
9024101000	경도시험기	0.0%	E0
9024102000	항장력(인장)시험기	0.0%	E0
9024103000	압축시험기	0.0%	E0
9024104000	피로시험기	0.0%	E0
9024105000	만능시험기	0.0%	E0
9024106000	인쇄회로기판, 반도체디바이스, 및 전자집적회로의 볼이나 와이어의 접착력·전단력 측정을 위한 기기	0.0%	E0
9024109000	기타	0.0%	E0
9024801010	신축시험기	0.0%	E0
9024801020	마모시험기	0.0%	E0
9024801090	기타	0.0%	E0
9024809010	탄성시험기	0.0%	E0
9024809020	소성시험기	0.0%	E0
9024809090	기타	0.0%	E0
9024901000	센서(특정의 변화량을 감지하는 소자로서 감지된 신호를 전기적신호로 변환하는 장치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9024909000	기타	0.0%	E0
9025111000	의료용·수의과용 온도계	0.0%	E0
9025119000	기타	0.0%	E0
9025191000	온도계	0.0%	E0
9025192010	광학식 고온계	0.0%	E0
9025192090	기타	0.0%	E0
9025801000	액체 비중계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	0.0%	E0
9025802000	기압계(다른기기와 결합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9025803010	건습구 습도계	0.0%	E0
9025803090	기타	0.0%	E0
9025809000	기타	0.0%	E0
9025900000	부분품과 부속품	0.0%	E0
9026101000	유량계	0.0%	E0
9026102000	액면계	0.0%	E0
9026109000	기타	0.0%	E0
9026201110	액체형	0.0%	E0
9026201120	금속형	0.0%	E0
9026201190	기타	0.0%	E0
9026201900	기타	0.0%	E0
9026209000	기타	0.0%	E0
9026801000	열측정계	0.0%	E0
9026802000	풍력계	0.0%	E0
9026809000	기타	0.0%	E0
9026900000	부분품과 부속품	0.0%	E0
9027100000	가스나 매연 분석용 기기	0.0%	E0
9027200000	크로마토그래프와 전기영동 장치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9027301000	분광계	0.0%	E0
9027302000	분광광도계	0.0%	E0
9027303000	분광사진기	0.0%	E0
9027501000	편광계	0.0%	E0
9027502000	굴절계	0.0%	E0
9027503000	비색계	0.0%	E0
9027504000	조도계	0.0%	E0
9027509000	기타	0.0%	E0
9027801000	그 밖의 물리분석용·화학분석용 기기	0.0%	E0
9027802010	피·에이치(PH) 미터	0.0%	E0
9027802020	열량계	0.0%	E0
9027802030	점도계	0.0%	E0
9027802040	팽창계	0.0%	E0
9027802050	노출계	0.0%	E0
9027802090	기타	0.0%	E0
9027901000	마이크로톰(microtome)	0.0%	E0
9027909010	반도체 제조용	0.0%	E0
9027909091	가스·매연분석기기와 마이크로톰(microtome)의 것	0.0%	E0
9027909099	기타	0.0%	E0
9028101010	디지털식	0.0%	E0
9028101090	기타	0.0%	E0
9028102000	검정용 계기	0.0%	E0
9028201010	디지털식	0.0%	E0
9028201090	기타	0.0%	E0
9028202000	검정용 계기	0.0%	E0
9028301010	전류가 50 암페어 이상인 것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9028301020	전류가 50 암페어 미만인 것	0.0%	E0
9028302000	검정용 계기	0.0%	E0
9028900000	부분품과 부속품	0.0%	E0
9029101000	적산(積算)회전계	0.0%	E0
9029102000	생산량계	0.0%	E0
9029103000	택시미터	0.0%	E0
9029104000	주행거리계	0.0%	E0
9029105000	기계 등의 작동시간 지시용 적산(積算)계기	0.0%	E0
9029109000	기타	0.0%	E0
9029201010	시계식	0.0%	E0
9029201090	기타	0.0%	E0
9029202000	스트로보스코우프(stroboscope)	0.0%	E0
9029900000	부분품과 부속품	0.0%	E0
9030100000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기	0.0%	E0
9030201010	음극선관의 것	0.0%	E0
9030201090	기타	0.0%	E0
9030202000	오실로그래프(oscillograph)	0.0%	E0
9030310000	기록장치가 없는 멀티미터	0.0%	E0
9030320000	기록장치를 갖춘 멀티미터	0.0%	E0
9030331000	전압계	0.0%	E0
9030332000	전류계	0.0%	E0
9030333000	회로계	0.0%	E0
9030334000	저항계	0.0%	E0
9030335000	검류계	0.0%	E0
9030336000	주파수 측정기	0.0%	E0
9030339000	기타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9030391000	전압계	0.0%	E0
9030392000	전류계	0.0%	E0
9030393000	회로계	0.0%	E0
9030394000	저항계	0.0%	E0
9030395000	검류계	0.0%	E0
9030396000	주파수 측정기	0.0%	E0
9030399000	기타	0.0%	E0
9030401000	누화계(cross-talk meter)	0.0%	E0
9030402000	게인측정계(gain measuring instrument)	0.0%	E0
9030403000	만곡률계(distortion factor meter)	0.0%	E0
9030404000	잡음전압계(psophometer)	0.0%	E0
9030409000	기타	0.0%	E0
9030820000	반도체 웨이퍼나 소자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0.0%	E0
9030840000	기타(기록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9030890000	기타	0.0%	E0
9030901000	소호 제 9030.82 호의 것	0.0%	E0
9030909000	기타	0.0%	E0
9031100000	균형시험기	0.0%	E0
9031200000	테스트벤치(Test bench)	0.0%	E0
9031411000	포시미터	0.0%	E0
9031412000	반도체웨이퍼 표면의 파티클 오염상태 측정용	0.0%	E0
9031419000	기타	0.0%	E0
9031491000	광학식 표면 테스터	0.0%	E0
9031492000	광학식 각도계와 앵글게이지	0.0%	E0
9031493000	포시미터	0.0%	E0
9031494010	반도체 제조공정의 것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9031494090	기타	0.0%	E0
9031499000	기타	0.0%	E0
9031801000	초음파 어군탐지기	0.0%	E0
9031802000	로드셀	0.0%	E0
9031809010	내연기관 특성 시험기	0.0%	E0
9031809020	기어 테스터	0.0%	E0
9031809030	면적계	0.0%	E0
9031809040	구면계	0.0%	E0
9031809050	직물 검사장치	0.0%	E0
9031809060	초음파 두께 측정기	0.0%	E0
9031809070	흠·균열 등 측정기	0.0%	E0
9031809080	동력시험기	0.0%	E0
9031809091	반도체 제조용	0.0%	E0
9031809099	기타	0.0%	E0
9031901010	소호 제 9031.41 호의 것	0.0%	E0
9031901090	그 밖의 것	0.0%	E0
9031909000	기타	0.0%	E0
9032101010	냉장고용	0.0%	E0
9032101020	항공기용	0.0%	E0
9032101090	기타	0.0%	E0
9032102000	고정식	0.0%	E0
9032200000	매노우스타트(manostat)	0.0%	E0
9032811010	항공기용	0.0%	E0
9032811090	기타	0.0%	E0
9032812010	항공기용	0.0%	E0
9032812091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9032812099	기타	0.0%	E0
9032819010	항공기용	0.0%	E0
9032819090	기타	0.0%	E0
9032891010	항공기용	0.0%	E0
9032891090	기타	0.0%	E0
9032892010	항공기용	0.0%	E0
9032892090	기타	0.0%	E0
9032893010	항공기용	0.0%	E0
9032893090	기타	0.0%	E0
9032899010	항공기용	0.0%	E0
9032899090	기타	0.0%	E0
9032901000	항공기용	0.0%	E0
9032909000	기타	0.0%	E0
9033000000	제 90 류의 기계・기기・장치・장비용 부분품과 부속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9101110000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0.0%	E0
9101191000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0.0%	E0
9101199000	기타	0.0%	E0
9101210000	자동권(自動捲)식	0.0%	E0
9101290000	기타	0.0%	E0
9101910000	전기구동식	0.0%	E0
9101990000	기타	0.0%	E0
9102111000	시각장애인용	0.0%	E0
9102112000	문자판・밴드 등을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	0.0%	E0
9102119010	밧데리・축전지 구동식	0.0%	E0
9102119090	기타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9102121000	밧데리・축전지 구동식	0.0%	E0
9102129010	시각장애인용	0.0%	E0
9102129020	문자판・밴드 등을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	0.0%	E0
9102129090	기타	0.0%	E0
9102191000	밧데리・축전지 구동식	0.0%	E0
9102199010	시각장애인용	0.0%	E0
9102199020	문자판・밴드 등을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	0.0%	E0
9102199090	기타	0.0%	E0
9102211000	시각장애인용	0.0%	E0
9102212000	문자판・밴드 등을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	0.0%	E0
9102219000	기타	0.0%	E0
9102291000	시각장애인용	0.0%	E0
9102292000	문자판・밴드 등을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	0.0%	E0
9102299000	기타	0.0%	E0
9102911000	스톱워치	0.0%	E0
9102912000	시각장애인용	0.0%	E0
9102919010	밧데리・축전지 구동식	0.0%	E0
9102919090	기타	0.0%	E0
9102991000	스톱워치	0.0%	E0
9102992000	시각장애인용	0.0%	E0
9102999000	기타	0.0%	E0
9103100000	전기구동식	0.0%	E0
9103900000	기타	0.0%	E0
9104001000	차량용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9104002000	항공기용	0.0%	E0
9104004000	선박용	0.0%	E0
9104009000	기타	0.0%	E0
9105110000	전기구동식	0.0%	E0
9105190000	기타	0.0%	E0
9105210000	전기구동식	0.0%	E0
9105290000	기타	0.0%	E0
9105910000	전기구동식	0.0%	E0
9105990000	기타	0.0%	E0
9106100000	타임레지스터(time-register)와 타임레코더(time-recorder)	0.0%	E0
9106902000	타이머	0.0%	E0
9106909000	기타	0.0%	E0
9107001000	동기(同期) 전동기를 갖춘 것	0.0%	E0
9107009000	기타	0.0%	E0
9108110000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이나 기계식 표시부를 내장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것	0.0%	E0
9108120000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0.0%	E0
9108190000	기타	0.0%	E0
9108200000	자동권(自動捲)식	0.0%	E0
9108900000	기타	0.0%	E0
9109100000	전기구동식	0.0%	E0
9109900000	기타	0.0%	E0
9110111000	밧데리·축전지 구동식	0.0%	E0
9110119000	기타	0.0%	E0
9110121000	밧데리·축전지 구동식	0.0%	E0
9110129000	기타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9110190000	러프 무브먼트(rough movement)	0.0%	E0
9110901000	밧데리・축전지 구동식	0.0%	E0
9110909000	기타	0.0%	E0
9111100000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케이스	0.0%	E0
91112000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케이스(금이나 은을 도금하였는지에 상관없다)	0.0%	E0
9111800000	그 밖의 케이스	0.0%	E0
9111901000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케이스	0.0%	E0
9111909000	기타	0.0%	E0
9112200000	케이스	0.0%	E0
9112900000	부분품	0.0%	E0
9113100000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	0.0%	E0
91132000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금이나 은을 도금하였는지에 상관없다)	0.0%	E0
9113901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0.0%	E0
9113902000	가죽이나 콤퍼지션레더로 만든 것	0.0%	E0
9113909000	기타	0.0%	E0
9114100000	스프링(헤어스프링을 포함한다)	0.0%	E0
9114300000	문자판	0.0%	E0
9114400000	지판과 브리지(bridge)	0.0%	E0
9114900000	기타	0.0%	E0
9201100000	업라이트(upright) 피아노	0.0%	E0
9201200000	그랜드 피아노	0.0%	E0
9201901000	하프시코드(harpsichord)	0.0%	E0
9201909000	기타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9202101000	바이올린	0.0%	E0
9202102000	첼로	0.0%	E0
9202109000	기타	0.0%	E0
9202901000	기타	0.0%	E0
9202902000	하프	0.0%	E0
9202903000	만도린	0.0%	E0
9202904000	밴조(banjo)	0.0%	E0
9202909000	기타	0.0%	E0
9205101000	트럼펫	0.0%	E0
9205102000	트럼본	0.0%	E0
9205109000	기타	0.0%	E0
9205901010	플루트	0.0%	E0
9205901020	클라리넷	0.0%	E0
9205901030	색소폰	0.0%	E0
9205901040	리코더(recorder)	0.0%	E0
9205901090	기타	0.0%	E0
9205902010	파이프 오르간	0.0%	E0
9205902090	기타	0.0%	E0
9205903010	아코디언	0.0%	E0
9205903020	멜로디카	0.0%	E0
9205903090	기타	0.0%	E0
9205904000	하모니카	0.0%	E0
9205909000	기타	0.0%	E0
9206001000	북	0.0%	E0
9206002000	목금	0.0%	E0
9206003000	심벌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9206004000	캐스터네츠	0.0%	E0
9206005000	마라카스(maracas)	0.0%	E0
9206006000	탬버린	0.0%	E0
9206009000	기타	0.0%	E0
9207101000	오르간(신디사이저를 포함한다)	0.0%	E0
9207103000	피아노	0.0%	E0
9207109000	기타	0.0%	E0
9207901000	기타	0.0%	E0
9207902000	아코디언	0.0%	E0
9207909000	기타	0.0%	E0
9208100000	뮤지컬박스	0.0%	E0
9208901000	페어그라운드 오르간(fairground organ)	0.0%	E0
9208902000	메커니컬 스트리트 오르간(mechanical street organ)	0.0%	E0
9208903000	기계식 자명조(singing bird)	0.0%	E0
9208904000	뮤지컬소(musical saw)	0.0%	E0
9208909000	기타	0.0%	E0
9209301000	금속선으로 만든 것	0.0%	E0
9209309000	기타	0.0%	E0
9209910000	피아노의 부분품과 부속품	0.0%	E0
9209920000	제 9202 호 악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0.0%	E0
9209940000	제 9207 호 악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0.0%	E0
9209991000	뮤지컬 무브먼트의 것	0.0%	E0
9209992000	박절기(metronom)·소리굽쇠와 각종 조율관(調律管)	0.0%	E0
9209993000	뮤지컬 박스용 메커니즘	0.0%	E0
9209999000	기타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9301101000	자주식(自走式)	0.0%	E0
9301109000	기타	0.0%	E0
9301200000	로켓발사기, 화염발사기, 유탄발사기, 어뢰발사관과 이와 유사한 발사장치	0.0%	E0
9301901000	완전자동 산탄총	0.0%	E0
9301902010	노리쇠작동	0.0%	E0
9301902020	반자동	0.0%	E0
9301902030	완전자동	0.0%	E0
9301902090	기타	0.0%	E0
9301903000	기관총	0.0%	E0
9301904010	완전자동 피스톨(pistol)	0.0%	E0
9301904090	기타	0.0%	E0
9301909000	기타	0.0%	E0
9302001010	리볼버(revolver)	0.0%	E0
9302001021	반자동	0.0%	E0
9302001029	기타	0.0%	E0
9302001030	피스톨(pistol)(다열총열)	0.0%	E0
9302001090	기타	0.0%	E0
9302009010	리볼버(revolver)	0.0%	E0
9302009021	반자동	0.0%	E0
9302009029	기타	0.0%	E0
9302009030	피스톨(pistol)(다열총열)	0.0%	E0
9302009090	기타	0.0%	E0
9303100000	총구장전 화기	0.0%	E0
9303201011	펌프작동	0.0%	E0
9303201012	반자동	0.0%	E0
9303201019	기타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9303201020	산탄총(다열총열)[산탄총과 라이플(rifle) 기능이 결합된 것은 포함한다]	0.0%	E0
9303201090	기타	0.0%	E0
9303209011	펌프작동	0.0%	E0
9303209012	반자동	0.0%	E0
9303209019	기타	0.0%	E0
9303209020	산탄총(다열총열)[산탄총과 라이플(rifle) 기능이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0.0%	E0
9303209090	기타	0.0%	E0
9303301010	단발	0.0%	E0
9303301020	반자동	0.0%	E0
9303301090	기타	0.0%	E0
9303309010	단발	0.0%	E0
9303309020	반자동	0.0%	E0
9303309090	기타	0.0%	E0
9303900000	기타	0.0%	E0
9304001000	공기총	0.0%	E0
9304009000	기타	0.0%	E0
9305101010	격발장치	0.0%	E0
9305101020	프레임과 총몸	0.0%	E0
9305101030	총열	0.0%	E0
9305101040	피스톤・잠금러그(locking lug)・가스완충기	0.0%	E0
9305101050	탄알집과 그 부분품	0.0%	E0
9305101060	소음기와 그 부분품	0.0%	E0
9305101070	개머리판・손잡이・ 플레이트	0.0%	E0
9305101080	슬라이드[피스톨(pistol)용]와 실린더[리볼버(revolver)용]	0.0%	E0
9305101090	기타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9305109010	격발장치	0.0%	E0
9305109020	프레임과 총몸	0.0%	E0
9305109030	총열	0.0%	E0
9305109040	피스톤·잠금러그(locking lug)·가스완충기	0.0%	E0
9305109050	탄알집과 그 부분품	0.0%	E0
9305109060	소음기와 그 부분품	0.0%	E0
9305109070	개머리판·손잡이·플레이트	0.0%	E0
9305109080	슬라이드(피스톨용)와 실린더(리볼버용)	0.0%	E0
9305109090	기타	0.0%	E0
9305201000	산탄총의 총열	0.0%	E0
9305209010	라이플 총열	0.0%	E0
9305209020	탄알집과 그 부분품	0.0%	E0
9305209090	기타	0.0%	E0
9305911010	격발장치	0.0%	E0
9305911020	프레임과 총몸	0.0%	E0
9305911030	총열	0.0%	E0
9305911040	피스톤·잠금러그(locking lug)·가스완충기	0.0%	E0
9305911050	탄알집과 그 부분품	0.0%	E0
9305911060	소음기와 그 부분품	0.0%	E0
9305911070	소염기와 그 부분품	0.0%	E0
9305911080	브리치(breech)·노리쇠와 노리쇠집	0.0%	E0
9305911090	기타	0.0%	E0
9305919000	기타	0.0%	E0
9305990000	기타	0.0%	E0
9306210000	탄약	0.0%	E0
9306290000	기타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9306301000	리베팅용이나 이와 유사한 공구용·무통 도살기용 탄약과 이들의 부분품	0.0%	E0
9306309000	기타	0.0%	E0
9306900000	기타	0.0%	E0
9307000000	검류·창과 이와 유사한 무기, 이들의 부분품과 집	0.0%	E0
9401100000	항공기용 의자	0.0%	E0
9401200000	차량용 의자	0.0%	E0
9401303000	가죽으로 덮어씌운 것	0.0%	E0
9401309000	기타	0.0%	E0
9401401000	등나무로 만든 것	0.0%	E0
9401402000	가죽으로 덮어씌운 것	0.0%	E0
9401409000	기타	0.0%	E0
9401520000	대나무로 만든 것	0.0%	E0
9401530000	등나무로 만든 것	0.0%	E0
9401591000	등나무로 만든 것	0.0%	E0
9401599000	기타	0.0%	E0
9401611000	가죽으로 덮어씌운 것	0.0%	E0
9401619000	기타	0.0%	E0
9401691000	가죽으로 덮어씌운 것	0.0%	E0
9401699000	기타	0.0%	E0
9401711000	가죽으로 덮어씌운 것	0.0%	E0
9401719000	기타	0.0%	E0
9401791000	가죽으로 덮어씌운 것	0.0%	E0
9401799000	기타	0.0%	E0
9401801000	석재로 만든 것	0.0%	E0
9401809000	기타	0.0%	E0
9401901000	목재로 만든 것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9401902000	금속으로 만든 것	0.0%	E0
9401909000	기타	0.0%	E0
9402101010	치과용 의자	0.0%	E0
9402101090	기타	0.0%	E0
9402109010	이발용·미용실용 의자	0.0%	E0
9402109090	기타	0.0%	E0
9402901000	수술대	0.0%	E0
9402902000	산부인과용 검진대	0.0%	E0
9402903000	분만대	0.0%	E0
9402908000	기타	0.0%	E0
9402909000	부분품	0.0%	E0
9403100000	금속으로 만든 사무실용 가구	0.0%	E0
9403201000	침대	0.0%	E0
9403209000	기타	0.0%	E0
9403301000	책상	0.0%	E0
9403309000	기타	0.0%	E0
9403401000	식탁	0.0%	E0
9403409000	기타	0.0%	E0
9403501000	침대	0.0%	E0
9403509000	기타	0.0%	E0
9403601010	문갑	0.0%	E0
9403601020	화장대	0.0%	E0
9403601030	장롱	0.0%	E0
9403601090	기타	0.0%	E0
9403609010	문갑	0.0%	E0
9403609020	화장대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9403609030	장롱	0.0%	E0
9403609090	기타	0.0%	E0
9403701000	보행기	0.0%	E0
9403709000	기타	0.0%	E0
9403820000	대나무로 만든 것	0.0%	E0
9403830000	등나무로 만든 것	0.0%	E0
9403890000	기타	0.0%	E0
9403900000	부분품	0.0%	E0
9404100000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	0.0%	E0
9404210000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피복하였는지에 상관없다)	0.0%	E0
9404290000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0.0%	E0
9404300000	침낭(sleeping bag)	0.0%	E0
9404900000	기타	0.0%	E0
9405101000	필라멘트 램프의 것	0.0%	E0
9405102000	형광램프의 것	0.0%	E0
9405103000	발광다이오드(엘이디)의 것	0.0%	E0
9405109000	기타	0.0%	E0
9405201000	필라멘트 램프의 것	0.0%	E0
9405202000	형광램프의 것	0.0%	E0
9405203000	발광다이오드(엘이디)의 것	0.0%	E0
9405209000	기타	0.0%	E0
9405301000	필라멘트램프의 것	0.0%	E0
9405302000	발광다이오드(엘이디)의 것	0.0%	E0
9405309000	기타	0.0%	E0
9405401000	방폭형	0.0%	E0
9405402000	투광형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9405403000	가로등의 것	0.0%	E0
9405409000	기타	0.0%	E0
9405500000	비전기식 램프와 조명기구	0.0%	E0
9405601000	네온관의 것	0.0%	E0
9405602000	필라멘트램프의 것	0.0%	E0
9405603000	형광램프의 것	0.0%	E0
9405604000	발광다이오드(엘이디)의 것	0.0%	E0
9405609000	기타	0.0%	E0
9405911000	샹들리에용	0.0%	E0
9405919000	기타	0.0%	E0
9405921000	샹들리에용	0.0%	E0
9405929000	기타	0.0%	E0
9405991000	샹들리에용	0.0%	E0
9405999000	기타	0.0%	E0
9406100000	나무로 만든 것	5.0%	EX
9406901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0.0%	E0
9406902000	철강으로 만든 것	0.0%	E0
9406903000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0.0%	E0
9406909000	기타	0.0%	E0
9503001100	어린이용 세발자전거	0.0%	E0
9503001200	스쿠터	0.0%	E0
9503001300	페달차	0.0%	E0
9503001400	인형용 차	0.0%	E0
9503001800	기타	0.0%	E0
9503001900	부분품과 부속품	0.0%	E0
9503002110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9503002120	고무로 만든 것	0.0%	E0
950300213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0.0%	E0
9503002140	도자제의 것	0.0%	E0
9503002150	유리로 만든 것	0.0%	E0
9503002160	나무로 만든 것	0.0%	E0
9503002190	기타	0.0%	E0
9503002910	인형용 의류와 부속품, 신발과 모자	0.0%	E0
9503002990	기타	0.0%	E0
9503003110	전기식 기차	0.0%	E0
9503003190	부속품	0.0%	E0
9503003200	축소모형의 조립용 키트(작동하는 것인지는 상관없으며, 제 9503.00.31 호의 것은 제외한다)	0.0%	E0
9503003300	그 밖의 조립세트와 조립식 완구	0.0%	E0
9503003411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0.0%	E0
9503003419	기타	0.0%	E0
9503003491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0.0%	E0
9503003492	고무로 만든 것	0.0%	E0
9503003493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0.0%	E0
9503003494	금속으로 만든 것	0.0%	E0
9503003495	도자제의 것	0.0%	E0
9503003496	유리로 만든 것	0.0%	E0
9503003497	나무로 만든 것	0.0%	E0
9503003499	기타	0.0%	E0
9503003500	완구용 악기류	0.0%	E0
9503003600	퍼즐	0.0%	E0
9503003700	그 밖의 완구(세트・아웃피트로 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9503003800	그 밖의 완구와 모형(모터가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9503003911	풍선·완구용 공·연과 이와 유사한 것	0.0%	E0
9503003919	기타	0.0%	E0
9503003990	부분품과 부속품(제 9503.00.3190 호의 것은 제외한다)	0.0%	E0
9504201000	당구대	0.0%	E0
9504202000	당구공	0.0%	E0
9504209000	기타	0.0%	E0
9504301000	금전적 보상을 즉시 지급하는 사행성 게임용구	0.0%	E0
9504309000	기타	0.0%	E0
9504400000	오락용 카드	0.0%	E0
9504501000	비디오 게임용구(텔레비전 수상기와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9504509000	기타	0.0%	E0
9504901020	핀 세터	0.0%	E0
9504901030	볼링 볼	0.0%	E0
9504901040	레인	0.0%	E0
9504901050	볼링 핀	0.0%	E0
9504901090	기타	0.0%	E0
9504902000	전자식 게임기	0.0%	E0
9504903000	그 밖의 용구	0.0%	E0
9504909020	전자식 게임기의 것	0.0%	E0
9504909090	기타	0.0%	E0
9505100000	크리스마스 축제용품	0.0%	E0
9505900000	기타	0.0%	E0
9506110000	스키	0.0%	E0
9506120000	스키파스닝(ski-fastening)(스키바인딩)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9506190000	기타	0.0%	E0
9506210000	세일보드(sailboard)	0.0%	E0
9506290000	기타	0.0%	E0
9506310000	골프채(완제품으로 한정한다)	0.0%	E0
9506320000	골프공	0.0%	E0
9506391000	골프채의 부분품	0.0%	E0
9506399000	기타	0.0%	E0
9506401000	탁구대	0.0%	E0
9506402000	탁구라켓	0.0%	E0
9506403000	탁구공	0.0%	E0
9506409000	기타	0.0%	E0
9506510000	론테니스(lawn-tennis) 라켓(줄을 맨 것인지에 상관없다)	0.0%	E0
9506591000	배드민턴 라켓	0.0%	E0
9506599000	기타	0.0%	E0
9506610000	론테니스(lawn-tennis) 공	0.0%	E0
9506621000	축구공	0.0%	E0
9506622000	농구공	0.0%	E0
9506623000	배구공	0.0%	E0
9506624000	핸드볼공	0.0%	E0
9506625000	미식축구용	0.0%	E0
9506629000	기타	0.0%	E0
9506691000	배드민턴 셔틀콕	0.0%	E0
9506692000	야구공	0.0%	E0
9506699000	기타	0.0%	E0
9506700000	아이스스케이트와 롤러스케이트(스케이트가 부착된 스케이팅부츠를 포함한다)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9506910000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 경기에 사용하는 물품	0.0%	E0
9506990000	기타	0.0%	E0
9507101000	유리섬유로 만든 것	0.0%	E0
9507102000	카본으로 만든 것	0.0%	E0
9507109000	기타	0.0%	E0
9507200000	낚싯바늘(낚싯줄에 매는 짧은 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0.0%	E0
9507300000	낚시 릴	0.0%	E0
9507901000	낚시용 망과 그 밖의 낚시용구	0.0%	E0
9507909000	기타	0.0%	E0
9508100000	순회서커스와 순회동물원 용품	0.0%	E0
9508900000	기타	0.0%	E0
9601100000	가공한 아이보리(ivory)와 그 제품	0.0%	E0
9601901010	진주 양식용 핵	0.0%	E0
9601901090	기타	0.0%	E0
9601902000	뿔로 된 것	0.0%	E0
9601909010	진주양식용 핵	0.0%	E0
9601909090	기타	0.0%	E0
9602001000	젤라틴 캡슐	0.0%	E0
9602009010	가공한 식물성 조각용 재료(예: 상아야자)와 식물성 조각용 재료의 제품	0.0%	E0
9602009020	흑옥(광물성 흑옥 유사품을 포함한다)·호박·해포석·응결한 호박·응결한 해포석의 가공품과 그 제품	0.0%	E0
9602009090	기타	0.0%	E0
9603100000	비와 브러시(작은 가지나 그 밖의 식물성 재료를 단순히 묶은 것으로 한정하며, 자루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9603210000	칫솔[덴탈플레이트(dental-plate) 브러시를 포함한다]	0.0%	E0
9603290000	기타	0.0%	E0
9603300000	회화용 붓·필기용 붓과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붓	0.0%	E0
9603400000	페인트용·디스템퍼(distemper)용·바니시(varnish)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의 브러시(소호 제 9603.30 호의 브러시는 제외한다), 페인트용 패드와 롤러	0.0%	E0
9603500000	그 밖의 브러시(기계·기구·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9603900000	기타	0.0%	E0
9604000000	수동식 체와 어레미	0.0%	E0
9605000000	개인용 여행세트(화장용·바느질용·신발이나 의류 청소용으로 한정한다)	0.0%	E0
9606100000	프레스파스너(press-fastener)·스냅파스너(snap-fastener)·프레스스터드(press-stud)와 이들의 부분품	0.0%	E0
9606210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서 방직용 섬유재료로 피복되어 있지 않은 것	0.0%	E0
96062200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으로서 방직용 섬유재료로 피복되어 있지 않은 것	0.0%	E0
9606291000	조개껍질로 만든 것	0.0%	E0
9606299000	기타	0.0%	E0
9606300000	단추의 몰드(mould)와 단추의 부분품, 단추 블랭크(blank)	0.0%	E0
9607110000	체인스쿠프(chain scoop)를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	0.0%	E0
9607191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0.0%	E0
9607199000	기타	0.0%	E0
96072010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	0.0%	E0
9607202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9607209000	기타	0.0%	E0
9608100000	볼펜	0.0%	E0
9608200000	팁(tip)이 펠트로 된 것과 그 밖의 포러스팁(porous-tip)으로 된 펜과 마커	0.0%	E0
9608301000	만년필	0.0%	E0
9608309000	기타	0.0%	E0
9608401000	프로펠링 펜슬(propelling pencil)	0.0%	E0
9608402010	메커니컬 타입의 것	0.0%	E0
9608402090	기타	0.0%	E0
9608500000	위 소호들의 물품이 두 개 이상으로 세트를 이루는 것	0.0%	E0
9608600000	볼펜용 심(볼포인트와 잉크 저장기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9608911000	펜촉	0.0%	E0
9608912000	닙 포인트(nib point)	0.0%	E0
9608991000	부분품	0.0%	E0
9608999000	기타	0.0%	E0
9609101000	연필	0.0%	E0
9609102000	색연필	0.0%	E0
9609103000	크레용	0.0%	E0
9609200000	연필심(검은색이나 색깔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9609901000	크레용·오일파스텔	0.0%	E0
9609902000	파스텔	0.0%	E0
9609903010	필기용	0.0%	E0
9609903090	기타	0.0%	E0
9609909000	기타	0.0%	E0
9610001000	석판	0.0%	E0
9610002000	흑판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9610009000	기타	0.0%	E0
9611001000	스탬프	0.0%	E0
9611002000	수동식 인쇄용 세트	0.0%	E0
9611009000	기타	0.0%	E0
9612101000	타자기용	0.0%	E0
9612102000	자동자료처리기계용	0.0%	E0
9612109000	기타	0.0%	E0
9612200000	잉크 패드	0.0%	E0
9613100000	포켓형 라이터(가스 주입식으로 다시 채울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9613200000	포켓형 라이터(가스 주입식으로 다시 채울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9613800000	그 밖의 라이터	0.0%	E0
9613901000	압전식 점화 유닛	0.0%	E0
9613909000	기타	0.0%	E0
9614001000	파이프와 파이프 볼(pipe bowl)	0.0%	E0
9614009000	기타	0.0%	E0
9615111000	빗	0.0%	E0
9615119000	기타	0.0%	E0
9615191000	빗	0.0%	E0
9615199000	기타	0.0%	E0
9615901000	머리핀	0.0%	E0
9615909000	기타	0.0%	E0
9616100000	향수용 분무기와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 이들의 마운트(mount)와 두부(頭部)	0.0%	E0
9616200000	화장용 분첩과 패드	0.0%	E0
9617001000	보온병	0.0%	E0
9617002000	보온 도시락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9617008000	기타	0.0%	E0
9617009000	부분품	0.0%	E0
9618001000	마네킹 인형	0.0%	E0
9618002000	자동 인형	0.0%	E0
9618009000	기타	0.0%	E0
9619001010	유아용 냅킨과 냅킨라이너(napkin liner)	0.0%	E0
9619001090	기타	0.0%	E0
9619002000	방직용 섬유재료의 워딩(wadding)으로 만든 것	0.0%	E0
9619003010	제 6108.21 호, 제 6108.22 호, 제 6108.29 호, 제 6111.20 호, 제 6111.30 호, 제 6111.90 호, 제 6209.20 호, 제 6209.30 호, 제 6209.90 호, 제 6210.50 호의 것	0.0%	E0
9619003020	제 6113 호, 제 6208.91 호, 제 6208.92 호, 제 6208.99 호의 것	0.0%	E0
9619004000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재료의 그 밖의 물품(제 63 류 주 2 호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0.0%	E0
9619009010	유아용 냅킨과 냅킨라이너(napkin liner)	0.0%	E0
9619009090	기타	0.0%	E0
9620000000	일각대・양각대・삼각대와 이와 유사한 물품	0.0%	E0
9701101000	회화	0.0%	E0
9701102000	데생	0.0%	E0
9701103000	파스텔	0.0%	E0
9701900000	기타	0.0%	E0
9702001000	판화	0.0%	E0
9702002000	인쇄화	0.0%	E0
9702003000	석판화	0.0%	E0
9703001000	조각	0.0%	E0
9703002000	조상(彫像)	0.0%	E0

HSK 2018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유형
9704001000	우표	0.0%	E0
9704009000	기타	0.0%	E0
9705000000	수집품과 표본[동물학・식물학・광물학・해부학・사학・고고학・고생물학・민족학・고전학(古錢學)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0.0%	E0
9706001000	도자기류	0.0%	E0
9706002000	악기류	0.0%	E0
9706009000	기타	0.0%	E0

* HS 코드 전환에 의하여 둘 이상의 서로 다른 하위 범주를 포함하는 세번의 경우, 2018 국정 세번(HSK2018)에 따라 한-아세안 FTA 상에서 둘 이상의 관세를 갖는다.

인도네시아의 양허표에 대한 주해

1. 인도네시아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이하 "HSI"라 한다)와의 관계: 이 양허표의 규정은 일반적으로 HSI 식으로 표현되며, 이 양허표의 규정에 대한 해석은 HSI 의 일반 주해, 부 주해 및 류 주해에 의하여 규율된다. 이 양허표의 규정이 이에 상응하는 HSI 의 규정과 일치하는 한도에서, 이 양허표의 규정은 이에 상응하는 HSI 의 규정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2. 양허단계: 부속서 2-가의 제 1 항에 열거된 단계별 양허유형에 추가하여, 이 양허표는 단계별 양허유형 EX*를 포함한다.

가.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원산지 상품이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승인된 제조업자, 승인된 철강 서비스 센터 및 승인된 지원 산업에 의하여 직접 수입되고 사용되는 경우, 관세는 "EX*"로 표시된 세번으로 분류된 원산지 상품에 적용되지 않는다.

1) 자동차, 모터사이클 및 그 구성품

2) 전기 및 전자제품

3) 건설 기계 및 중장비, 그리고

4) 석유, 가스 및 전력

다만, 규격, 등급, 수량 및 인도 시기에 대한 그러한 원산지 상품의 사용자 요건을 충족하는 상품이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지 않고, 제 4)호와 관련하여, 그러한 원산지 상품이 대한민국이나 인도네시아 투자자가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최종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주해: 제 4)호 및 이와 관련된 조건은 이행 4 년차에 양 당사국의 검토 대상이다.

나.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이 주해와 관련된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협의한다. 어느 한쪽 당사국은 사용자, 생산자 및 그 밖의 관련 기관의 대표자들을 협의에 초청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양허표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01.01	살아 있는 말・당나귀・노새・버새		
		- 말		
1	0101.21.00	- - 번식용	0%	E0
2	0101.29.00	- - 기타	0%	E0
	0101.30	- 당나귀		
3	0101.30.10	- - 번식용	0%	E0
4	0101.30.90	- - 기타	0%	E0
5	0101.90.00	- 기타	0%	E0
	01.02	살아 있는 소		
		- 축우(畜牛)		
6	0102.21.00	- - 번식용	0%	E0
	0102.29	- - 기타		
		- - - 숫소		
7	0102.29.11	- - - - 황소	0%	E0
8	0102.29.19	- - - - 기타	5%	E0
9	0102.29.90	- - - 기타	5%	E20
		- 버팔로		
10	0102.31.00	- - 번식용	0%	E0
11	0102.39.00	- - 기타	0%	E0
	0102.90	- 기타		
12	0102.90.10	- - 번식용	0%	E0
13	0102.90.90	- - 기타	0%	E0
	01.03	살아 있는 돼지		
14	0103.10.00	- 번식용	0%	E0
		- 기타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15	0103.91.00	- - 중량이 50 킬로그램 미만인 것	0%	E0
16	0103.92.00	- - 중량이 50 킬로그램 이상인 것	0%	E0
	01.04	**살아 있는 면양과 산양**		
	0104.10	- 면양		
17	0104.10.10	- - 번식용	0%	E0
18	0104.10.90	- - 기타	0%	E0
	0104.20	- 산양		
19	0104.20.10	- - 번식용	0%	E0
20	0104.20.90	- - 기타	0%	E0
	01.05	**살아 있는 가금(家禽)류[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오리·거위·칠면조·기니아새로 한정한다]**		
		- 중량이 185 그램 이하인 것		
	0105.11	- -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		
21	0105.11.10	- - - 번식용 닭	0%	E0
22	0105.11.90	- - - 기타	0%	E0
	0105.12	- - 칠면조		
23	0105.12.10	- - - 번식용 칠면조	0%	E0
24	0105.12.90	- - - 기타	0%	E0
	0105.13	- - 오리		
25	0105.13.10	- - - 번식용 오리 새끼	0%	E0
26	0105.13.90	- - - 기타	0%	E0
	0105.14	- - 거위		
27	0105.14.10	- - - 번식용 거위 새끼	0%	E0
28	0105.14.90	- - - 기타	0%	E0
	0105.15	- - 기니아새		
29	0105.15.10	- - - 번식용 기니아새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30	0105.15.90	- - - 기타	0%	E0
		- 기타		
	0105.94	- -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		
31	0105.94.10	- - - 번식용 닭(싸움닭은 제외한다)	0%	E0
		- - - 싸움닭		
32	0105.94.41	- - - - 중량이 2킬로그램 이하인 것	0%	E0
33	0105.94.49	- - - - 기타	0%	E0
		- - - 기타		
34	0105.94.91	- - - - 중량이 2킬로그램 이하인 것	0%	E0
35	0105.94.99	- - - - 기타	0%	E0
	0105.99	- - 기타		
36	0105.99.10	- - - 번식용 오리	0%	E0
37	0105.99.20	- - - 그 밖의 오리	0%	E0
38	0105.99.30	- - - 번식용 거위·칠면조 및 기니아새	0%	E0
39	0105.99.40	- - - 그 밖의 거위·칠면조 및 기니아새	0%	E0
	01.06	**그 밖의 살아 있는 동물**		
		- 포유동물		
40	0106.11.00	- - 영장류	0%	E0
41	0106.12.00	- - 고래·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바다소(바다소목의 포유동물), 물개·바다사자 및 바다코끼리(기각아목의 포유동물)	0%	E0
42	0106.13.00	- - 낙타와 그 밖의 낙타과의 동물[카멜리대(Camelidae)과]	0%	E0
43	0106.14.00	- - 토끼	0%	E0
44	0106.19.00	- - 기타	0%	E0
45	0106.20.00	- 파충류(뱀과 거북을 포함한다)	0%	E0
		- 조류		
46	0106.31.00	- - 맹금류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47	0106.32.00	- - 앵무류[패럿류(parrots)·패러키트류(parakeets)·금강앵무류 및 유황앵무류를 포함한다]	0%	E0
48	0106.33.00	- - 타조, 에뮤(emus)[드로마이어스 노배홀란디애(Dromaius novaehollandiae)]	0%	E0
49	0106.39.00	- - 기타	0%	E0
		- 곤충류		
50	0106.41.00	- - 벌	0%	E0
51	0106.49.00	- - 기타	0%	E0
52	0106.90.00	- 기타	0%	E0
	02.01	**쇠고기(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53	0201.10.00	-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5%	E0
54	0201.20.00	-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5%	E0
55	0201.30.00	- 뼈 없는 것	5%	E0
	02.02	**쇠고기(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56	0202.10.00	-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5%	E15
57	0202.20.00	-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5%	E15
58	0202.30.00	- 뼈 없는 것	5%	E0
	02.03	**돼지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		
59	0203.11.00	- -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5%	E0
60	0203.12.00	- -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를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5%	E0
61	0203.19.00	- - 기타	5%	E0
		- 냉동한 것		
62	0203.21.00	- -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5%	E0
63	0203.22.00	- -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를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5%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64	0203.29.00	- - 기타	5%	E0
	02.04	**면양과 산양의 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65	0204.10.00	- 어린 면양의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	E0
		- 그 밖의 면양의 고기(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66	0204.21.00	- -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0%	E0
67	0204.22.00	- -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0%	E0
68	0204.23.00	- - 뼈 없는 것	0%	E0
69	0204.30.00	- 어린 면양의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	E0
		- 그 밖의 면양의 고기(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70	0204.41.00	- -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0%	E0
71	0204.42.00	- -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0%	E0
72	0204.43.00	- - 뼈 없는 것	0%	E0
73	0204.50.00	- 산양의 고기	0%	E0
74	**0205.00.00**	**말·당나귀·노새 또는 버새의 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	E0
	02.06	**소·돼지·면양·산양·말·당나귀·노새·버새의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75	0206.10.00	- 소의 것(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5%	E0
		- 소의 것(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76	0206.21.00	- - 혀	5%	E15
77	0206.22.00	- - 간	5%	E15
78	0206.29.00	- - 기타	5%	E15
79	0206.30.00	- 돼지의 것(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5%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한정한다)		
		- 돼지의 것(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80	0206.41.00	- - 간	5%	E0
81	0206.49.00	- - 기타	5%	E0
82	0206.80.00	- 기타(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5%	E0
83	0206.90.00	- 기타(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5%	E0
	02.07	**제 0105 호의 가금(家禽)류의 육과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84	0207.11.00	- -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5%	E0
85	0207.12.00	- -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5%	E10
86	0207.13.00	- - 절단육과 설육(屑肉)(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5%	E0
	0207.14	- - 절단육과 설육(屑肉)(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87	0207.14.10	- - - 날개	5%	EX
88	0207.14.20	- - - 넓적다리	5%	EX
89	0207.14.30	- - - 간	5%	EX
		- - - 기타		
90	0207.14.91	- - - - 기계로 뼈를 발라내거나 분리한 육	5%	EX
91	0207.14.99	- - - - 기타	5%	EX
		- 칠면조의 것		
92	0207.24.00	- -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	E0
93	0207.25.00	- -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94	0207.26.00	- - 절단육과 설육(屑肉)(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	E0
	0207.27	- - 절단육과 설육(屑肉)(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95	0207.27.10	- - - 간	0%	E0
		- - - 기타		
96	0207.27.91	- - - - 기계로 뼈를 발라내거나 분리한 육	0%	E0
97	0207.27.99	- - - - 기타	0%	E0
		- 오리의 것		
98	0207.41.00	- -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5%	E0
99	0207.42.00	- -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5%	E10
100	0207.43.00	- - 지방간(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	E0
101	0207.44.00	- - 기타(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5%	E0
102	0207.45.00	- - 기타(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5%	E0
		- 거위의 것		
103	0207.51.00	- -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5%	E0
104	0207.52.00	- -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5%	E0
105	0207.53.00	- - 지방간(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	E0
106	0207.54.00	- - 기타(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5%	E0
107	0207.55.00	- - 기타(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5%	E0
108	0207.60.00	- 기니아새의 것	5%	E0
	02.08	**그 밖의 육과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109	0208.10.00	- 토끼의 것	0%	E0
110	0208.30.00	- 영장류의 것	0%	E0
	0208.40	- 고래·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바다소(바다소목의 포유동물), 물개·바다사자·바다코끼리(기각아목의 포유동물)의 것		
111	0208.40.10	- - 고래·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바다소(바다소목의 포유동물)의 것	0%	E0
112	0208.40.90	- - 기타	0%	E0
113	0208.50.00	- 파충류(뱀과 거북을 포함한다)의 것	0%	E0
114	0208.60.00	- 낙타와 그 밖의 낙타과[카멜리대(Camelidae)과]의 것	0%	E0
	0208.90	- 기타		
115	0208.90.10	- - 개구리 다리	0%	E0
116	0208.90.90	- - 기타	0%	E0
	02.09	**살코기가 없는 돼지 비계와 가금(家禽)의 비계(기름을 빼지 않은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추출하지 않은 것으로서 신선한 것·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117	0209.10.00	- 돼지의 것	0%	E0
118	0209.90.00	- 기타	0%	E0
	02.10	**육과 식용 설육(屑肉)(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육이나 설육(屑肉)의 식용 고운 가루·거친 가루**		
		- 돼지고기		
119	0210.11.00	- -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를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5%	E0
120	0210.12.00	- - 복부살과 이를 절단한 것	5%	E0
	0210.19	- - 기타		
121	0210.19.30	- - - 베이컨이나 뼈 없는 햄	5%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122	0210.19.90	- - - 기타	5%	E0
123	0210.20.00	- 쇠고기	5%	E0
		- 기타[육이나 설육(屑肉)의 식용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를 포함한다]		
124	0210.91.00	- - 영장류의 것	0%	E0
	0210.92	- - 고래·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바다소(바다소목의 포유동물), 물개·바다사자·바다코끼리(기각아목의 포유동물)의 것		
125	0210.92.10	- - - 고래·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바다소(바다소목의 포유동물)의 것	0%	E0
126	0210.92.90	- - - 기타	0%	E0
127	0210.93.00	- - 파충류(뱀과 거북을 포함한다)의 것	0%	E0
	0210.99	- - 기타		
128	0210.99.10	- - - 냉동건조한 치킨 다이스(dice)	0%	E0
129	0210.99.20	- - - 건조한 돼지 껍질	5%	E0
130	0210.99.90	- - - 기타	5%	E10
	03.01	**활어**		
		- 관상용		
	0301.11	- - 민물의 것		
		- - - 치어		
131	0301.11.11	- - - - 보티아[크로모보티아 마크라칸투스(Chromobotia macracanthus)]	0%	E0
132	0301.11.19	- - - - 기타	0%	E0
		- - - 기타		
133	0301.11.91	- - - - 비단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Cyprinus carpio)]	0%	E0
134	0301.11.92	- - - - 금붕어[카라시우스 아우라투스(Carassius auratus)]	0%	E0
135	0301.11.93	- - - - 삼투어[베타 스플렌덴스(Beta	5%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splendens)]		
136	0301.11.94	- - - - 오스카[아스토노투스 오셀라투스(Astonotus ocellatus)]	5%	E0
137	0301.11.95	- - - - 아로와나[스클레로파게스 포르모수스(Scleropages formosus)]	5%	E0
138	0301.11.96	- - - - 아로와나 자르디니[스클레로파게스 자르디니(Scleropages jardini)]	5%	E0
139	0301.11.99	- - - - 기타	5%	E0
	0301.19	- - 기타		
140	0301.19.10	- - - 치어	0%	E0
		- - - 기타		
141	0301.19.91	- - - - 벵가이 카디날[프테라포곤 카우데르니(Pterapogon kauderni)]	5%	E0
142	0301.19.92	- - - - 나폴레옹 피쉬[세일리누스 언둘라투스(Cheilinus undulatus)]	5%	E0
143	0301.19.99	- - - - 기타	5%	E0
		- 그 밖의 활어		
144	0301.91.00	- -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옹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옹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옹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옹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옹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 및 옹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0%	E0
145	0301.92.00	- - 뱀장어[앙귈라(Anguilla)종]	0%	E0
	0301.93	- -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종·카라시우스(Carassius)종·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시리누스(Cirrhinus)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라베오(Labeo)종·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렙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hoeveni)·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종]		
146	0301.93.10	- - - 번식용(치어는 제외한다)	0%	E0
147	0301.93.90	- - - 기타	5%	E0
148	0301.94.00	- - 대서양 참다랑어와 태평양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Thunnus thynnus)·터너스 오리엔탈리스(Thunnus orientalis)]	5%	E7
149	0301.95.00	- - 남방 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Thunnus maccoyii)]	5%	E0
	0301.99	- - 기타		
		- - - 밀크 피쉬와 그루퍼(Grouper)의 치어		
150	0301.99.11	- - - - 번식용	0%	E0
151	0301.99.19	- - - - 기타	0%	E0
		- - - 그 밖의 어류 치어		
152	0301.99.21	- - - - 번식용	0%	E0
153	0301.99.29	- - - - 기타	5%	E0
		- - - 기타(민물 어류의 것으로 한정한다)		
154	0301.99.41	- - -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10%	E0
155	0301.99.42	- - - - 그 밖의 잉어(번식용으로 한정한다)	5%	E0
156	0301.99.49	- - - - 기타	5%	E0
		- - - 그 밖의 해수어		
157	0301.99.51	- - - - 밀크피쉬(번식용으로 한정한다)	0%	E0
158	0301.99.52	- - - - 그루퍼	1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159	0301.99.59	- - - - 기타	5%	E0
160	0301.99.90	- - - 기타	5%	E0
	03.02	신선하거나 냉장한 어류[제 0304 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그 밖의 어육은 제외한다]		
		- 연어과. 다만, 제 0302.91 호부터 제 0302.99 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161	0302.11.00	- -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옹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옹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옹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옹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옹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 및 옹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0%	E0
162	0302.13.00	- - 태평양 연어[옹코링쿠스 넬카(Oncorhynchus nerka)·옹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cha)·옹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옹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chawytscha)·옹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옹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 및 옹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0%	E0
163	0302.14.00	- -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 와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0%	E0
164	0302.19.00	- - 기타	0%	E0
		- 넙치류[플루로넥티대(Pleuronectidae)과·바디대(Bothidae)과·사이노글로시대(Cynoglossidae)과·솔레이대(Soleidae)과·스코프탈미대(Scophthalmidae)과·시타리대(Citharidae)과]. 다만, 제 0302.91 호부터 제 0302.99 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165	0302.21.00	- - 넙치[레인하드티우스 히포글러소이데스(Reinhardtius hippoglossoides)·히포글러서스 히포글러서스(Hippoglossus hippoglossus)·히포글러서스 스테노레피스(Hippoglossus stenolepis)]	5%	E15
166	0302.22.00	- - 가자미[플루로넥테스 플라테사(Pleuronectes platessa)]	5%	E0
167	0302.23.00	- - 서대[솔레아(Solea)종]	0%	E0
168	0302.24.00	- - 터벗(turbot)[프세타 맥시마(Psetta maxima)]	5%	E0
169	0302.29.00	- - 기타	5%	E0
		- 다랑어[터너스(Thunnus)속의 것으로 한정한다]·가다랑어·줄무늬 버니토[유티너스(카추워누스) 펠라미스(Euthynnus (Katsuwonus) pelamis)]. 다만, 제 0302.91 호부터 제 0302.99 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170	0302.31.00	- - 날개다랑어나 긴지느러미 다랑어[터너스 알라룽가(Thunnus alalunga)]	5%	SS
171	0302.32.00	- - 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Thunnus albacares)]	5%	SS
172	0302.33.00	- - 가다랑어 또는 줄무늬 버니토	5%	SS
173	0302.34.00	- - 눈다랑어[터너스 오베서스(Thunnus obesus)]	5%	SS
174	0302.35.00	- - 대서양 참다랑어와 태평양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Thunnus thynnus)·터너스 오리엔탈리스(Thunnus orientalis)]	0%	E0
175	0302.36.00	- - 남방 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Thunnus maccoyii)]	0%	E0
176	0302.39.00	- - 기타	5%	E20
		-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멸치[엔그라울리스(Engraulis)종],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Sardina pilchardus)·사르디노프스(Sardinops)종],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Sardinella)종], 브리스링(brisling)이나 스프랫(sprats)[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Sprattus sprattus)],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Scomber scombrus)·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Scomber australasicus)·스콤버 자포니쿠스(Scomber japonicus)], 줄무늬 고등어(Indian mackerels) [라스트렐리거(Rastrelliger)종], 삼치[스콤버로모러스(Scomberomorus)종], 전갱이[트라커러스(Trachurus)종], 줄전갱이류[카랑크스(Caranx)종], 날쌔기[라키센트론 카나둠(Rachycentron canadum)], 병어[팜푸스(Pampus)종], 꽁치[콜로라비스 사이라(Cololabis saira)], 가라지[데캅테러스(Decapterus)종], 열빙어 [말로투스 빌로서스(Mallotus villosus)],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점다랑어 [유티너스 아피니스(Euthynnus affinis)], 버니토[사르다(Sarda)종], 새치류, 돛새치, 청새치[이스티오포리대(Istiophoridae)]. 다만, 제 0302.91 호부터 제 0302.99 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177	0302.41.00	- - 청어[클루페아 하렝구스(Clupea harengus)·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0%	E0
178	0302.42.00	- - 멸치[엔그라울리스(Engraulis)종]	0%	E0
179	0302.43.00	- -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Sardina pilchardus)·사르디노프스(Sardinops)종],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Sardinella)종], 브리스링(brisling)이나 스프랫(sprats)[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Sprattus sprattus)]	5%	SS
180	0302.44.00	- -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Scomber scombrus)·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Scomber australasicus)·스콤버 자포니쿠스(Scomber japonicus)]	5%	E0
181	0302.45.00	- - 전갱이[트라커러스(Trachurus)종]	0%	E0
182	0302.46.00	- - 날쌔기[라키센트론 카나둠(Rachycentron canadum)]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183	0302.47.00	- -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5%	E0
184	0302.49.00	- - 기타	5%	E0
		-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가디대(Gadidae)과・마크로우리대(Macrouridae)과・멜라노니대(Melanonidae)과・메르루치대(Merlucciidae)과・모리대(Moridae)과・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과의 어류. 다만, 제 0302.91 호부터 제 0302.99 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185	0302.51.00	- -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가두스 오각(Gadus ogac)・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5%	E15
186	0302.52.00	- -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Melanogrammus aeglefinus)]	0%	E0
187	0302.53.00	- - 검정대구[폴라치우스 비렌스(Pollachius virens)]	0%	E0
188	0302.54.00	- - 민대구[메루키우스(Merluccius)종・유르피키스(Urophycis)종]	5%	E0
189	0302.55.00	- -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	0%	E0
190	0302.56.00	- - 블루 화이팅스(blue whitings)[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포우타소우(Micromesistius poutassou)・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오스트랄리스(Micromesistius australis)]	5%	E0
191	0302.59.00	- - 기타	5%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종・카라시우스(Carassius)종・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시리누스(Cirrhinus)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라베오(Labeo)종・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렙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종], 뱀장어[앙귈라(Anguilla)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나(Channa)종]. 다만, 제 0302.91 호부터 제 0302.99 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192	0302.71.00	-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10%	EX
	0302.72	- -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193	0302.72.10	- - - 노랑꼬리 메기[판가시우스 판가시우스(Pangasius pangasius)]	5%	E0
194	0302.72.90	- - - 기타	5%	E0
195	0302.73.00	- -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종・카라시우스(Carassius)종・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시리누스(Cirrhinus)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라베오(Labeo)종・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렙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종]	5%	E0
196	0302.74.00	- - 뱀장어[앙귈라(Anguilla)종]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197	0302.79.00	- - 기타	5%	E0
		- 그 밖의 어류. 다만, 제 0302.91 호부터 제 0302.99 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198	0302.81.00	- - 곱상어와 그 밖의 상어	0%	E0
199	0302.82.00	- - 가오리와 홍어[라지대(Rajidae)과]	5%	E0
200	0302.83.00	- -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종]	5%	E0
201	0302.84.00	- - 농어[디센트라르쿠스(Dicentrarchus)종]	5%	E0
202	0302.85.00	- - 돔[스파리대(Sparidae)과]	5%	E0
	0302.89	- - 기타		
		- - - 해수어		
203	0302.89.11	- - - - 그루퍼	10%	E10
204	0302.89.12	- - - - 긴 지느러미 게레치[펜타프리온 롱기마누스(Pentaprion longimanus)]	5%	E0
205	0302.89.13	- - - - 황매퉁이[트라치노세팔루스 미오프스(Trachinocephalus myops)]	5%	E0
206	0302.89.14	- - - - 리본피시[랩투라칸투스 사발라(Lepturacanthus savala)]·등갈민태[죠니우스 밸랑게리(Johnius belangerii)]·황금리브민어[크리소치르 아우레우스(Chrysochir aureus)] 및 대안이석태[팬나히아 아네아(Pennahia anea)]	5%	E0
207	0302.89.16	- - - - 고등가라지[메갈라스피스 코르딜라(Megalaspis cordyla)], 얼룩활치[디프란 펑타타(Drepane punctata)]와 큰꼬치고기[스피레나 바라쿠다(Sphyraena barracuda)]	5%	E0
208	0302.89.17	- - - - 흑병어[파라스트로마투스 니게르(Parastromatus niger)]	5%	E0
209	0302.89.18	- - - - 맹그로브 홍돔[루트야누스 아르겐티마쿨라투스(Lutjanus argentimaculatus)]	5%	E0
210	0302.89.19	- - - - 기타	5%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 - - 기타		
211	0302.89.22	- - - - 스왐프 바브[펀티우스 촐라 (Puntius chola)]	5%	E0
212	0302.89.26	- - - - 줄무늬 날가지숭어[폴리네무스 인디쿠스(Polynemus indicus)와 별도랑벤자리[포마다시스 아르겐테우스(Pomadasys argenteus)]	5%	E0
213	0302.89.27	- - - - 힐사 샤드[테누아로사 일리샤 (Tenualosa ilisha)]	5%	E0
214	0302.89.28	- - - - 왈라고메기[왈라고 아투(Wallago attu)]와 자이언트 리버 메기[스페라타 싱갈라(Sperata seenghala)]	5%	E0
215	0302.89.29	- - - - 기타	5%	E0
		- 간·어란(魚卵)·어백(魚白)·어류의 지느러미·머리·꼬리·부레와 그 밖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		
216	0302.91.00	- - 간·어란(魚卵)·어백(魚白)	0%	E0
217	0302.92.00	- - 상어 지느러미	0%	E0
218	0302.99.00	- - 기타	10%	E20
	03.03	**냉동어류[제 0304 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기타 어육은 제외한다]**		
		- 연어과. 다만, 제 0303.91 호부터 제 0303.99 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219	0303.11.00	- - 소크아이 연어[홍연어(red salmon)][옹코링쿠스 넬카(Oncorhynchus nerka)]	0%	E0
220	0303.12.00	- - 그 밖의 태평양 연어[옹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cha)·옹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옹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chawytscha)·옹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옹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 및 옹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221	0303.13.00	- -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와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0%	E0
222	0303.14.00	- -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옹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옹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옹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옹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옹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 및 옹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0%	E0
223	0303.19.00	- - 기타	0%	E0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종・카라시우스(Carassius)종・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시리누스(Cirrhinus)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라베오(Labeo)종・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렙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종], 뱀장어[앙귈라(Anguilla)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나(Channa)종]. 다만, 제 0303.91 호부터 제 0303.99 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224	0303.23.00	-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10%	EX
225	0303.24.00	- -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5%	E1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226	0303.25.00	- -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종・카라시우스(Carassius)종・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시리누스(Cirrhinus)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라베오(Labeo)종・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렙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종]	5%	E15
227	0303.26.00	- - 뱀장어[앙귈라(Anguilla)종]	0%	E0
228	0303.29.00	- - 기타	5%	E15
		- 넙치류[플루로넥티대(Pleuronectidae)과・바디대(Bothidae)과・사이노글로시대(Cynoglossidae)과・솔레이대(Soleidae)과・스코프탈미대(Scophthalmidae)과・시타리대(Citharidae)과]. 다만, 제 0303.91 호부터 제 0303.99 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229	0303.31.00	- - 넙치[레인하드티우스 히포글러소이데스(Reinhardtius hippoglossoides)・히포글러서스 히포글러서스(Hippoglossus hippoglossus)・히포글러서스 스테노레피스(Hippoglossus stenolepis)]	5%	E10
230	0303.32.00	- - 가자미[플루로넥테스 플라테사(Pleuronectes platessa)]	5%	E0
231	0303.33.00	- - 서대[솔레아(Solea)종]	0%	E0
232	0303.34.00	- - 터벗(turbot)[프세타 맥시마(Psetta maxima)]	5%	E0
233	0303.39.00	- - 기타	5%	E10
		- 다랑어[터너스(Thunnus)속의 것으로 한정한다]・가다랑어・줄무늬 버니토[유티너스(카추워누스) 펠라미스(Euthynnus (Katsuwonus) pelamis)]. 다만, 제 0303.91 호부터 제 0303.99 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234	0303.41.00	- - 날개다랑어나 긴지느러미 다랑어[터너스 알라룽가(Thunnus alalunga)]	5%	EX
235	0303.42.00	- - 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Thunnus albacares)]	5%	SS
236	0303.43.00	- - 가다랑어 또는 줄무늬 버니토	5%	SS
237	0303.44.00	- - 눈다랑어[터너스 오베서스(Thunnus obesus)]	5%	EX
	0303.45	- - 대서양 참다랑어와 태평양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Thunnus thynnus)·터너스 오리엔탈리스(Thunnus orientalis)]		
238	0303.45.10	- - - 대서양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Thunnus thynnus)]	5%	SS
239	0303.45.90	- - - 태평양 참다랑어[터너스 오리엔탈리스(Thunnus orientalis)]	0%	E0
240	0303.46.00	- - 남방 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Thunnus maccoyii)]	0%	E0
241	0303.49.00	- - 기타	5%	E15
		-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멸치[엔그라울리스(Engraulis)종],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Sardina pilchardus)·사르디노프스(Sardinops)종],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Sardinella)종], 브리스링(brisling)이나 스프랫(sprats)[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Sprattus sprattus)],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Scomber scombrus)·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Scomber australasicus)·스콤버 자포니쿠스(Scomber japonicus)], 줄무늬 고등어(Indian mackerels)[라스트렐리거(Rastrelliger)종], 삼치[스콤버로모러스(Scomberomorus)종], 전갱이[트라커러스(Trachurus)종], 줄전갱이류[카랑크스(Caranx)종], 날쌔기[라키센트론 카나둠(Rachycentron canadum)], 병어[팜푸스(Pampus)종], 꽁치[콜로라비스 사이라(Cololabis saira)], 가라지[데캅테러스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Decapterus)종], 열빙어[말로투스 빌로서스(Mallotus villosus)],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점다랑어[유티너스 아피니스(Euthynnus affinis)], 버니토 [사르다(Sarda)종], 새치류, 돛새치, 청새치[이스티오포리대(Istiophoridae)]. 다만, 제0303.91호부터 제0303.99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242	0303.51.00	- - 청어[클루페아 하렝구스(Clupea harengus)·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5%	E10
243	0303.53.00	- -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Sardina pilchardus)·사르디노프스(Sardinops)종],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Sardinella)종], 브리스링(brisling)이나 스프랫(sprats)[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Sprattus sprattus)]	5%	SS
	0303.54	- -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Scomber scombrus)·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Scomber australasicus)·스콤버 자포니쿠스(Scomber japonicus)]		
244	0303.54.10	- - -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Scomber scombrus)·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Scomber australasicus)]	5%	E0
245	0303.54.20	- - - 태평양 고등어[스콤버 자포니쿠스(Scomber japonicus)]	5%	E0
246	0303.55.00	- - 전갱이[트라커러스(Trachurus)종]	5%	E15
247	0303.56.00	- - 날쌔기[라키센트론 카나둠(Rachycentron canadum)]	5%	E0
248	0303.57.00	- -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5%	E15
	0303.59	- - 기타		
249	0303.59.10	- - - 줄무늬고등어[라스트렐리거 카나구르타(Rastrelliger kanagurta)], 아일랜드고등어[라스트렐리거 파우니(Rastrelliger faughni)]	5%	E10
250	0303.59.20	- - - 병어[팜푸스(Pampus)종]	5%	E15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251	0303.59.90	- - - 기타	5%	E20
		-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가디대(Gadidae)과・마크로우리대(Macrouridae)과・멜라노니대(Melanonidae)과・메르루치대(Merluccidae)과・모리대(Moridae)과・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과의 어류. 다만, 제 0303.91 호부터 제 0303.99 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252	0303.63.00	- -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가두스 오각(Gadus ogac)・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5%	E15
253	0303.64.00	- -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Melanogrammus aeglefinus)]	0%	E0
254	0303.65.00	- - 검정대구[폴라치우스 비렌스(Pollachius virens)]	0%	E0
255	0303.66.00	- - 민대구[메루키우스(Merluccius)종・유르피키스(Urophycis)종]	0%	E0
256	0303.67.00	- -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	5%	E15
257	0303.68.00	- - 블루 화이팅스(blue whitings)[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포우타소우(Micromesistius poutassou)・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오스트랄리스(Micromesistius australis)]	5%	E0
258	0303.69.00	- - 기타	5%	E20
		- 그 밖의 어류. 다만, 제 0303.91 호부터 제 0303.99 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259	0303.81.00	- - 곱상어와 그 밖의 상어	5%	E0
260	0303.82.00	- - 가오리와 홍어[라지대(Rajidae)과]	5%	E0
261	0303.83.00	- -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종]	0%	E0
262	0303.84.00	- - 농어[디센트라르쿠스(Dicentrarchus)종]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0303.89	- - 기타		
		- - - 해수어		
263	0303.89.11	- - - - 그루퍼	10%	E20
264	0303.89.12	- - - - 긴 지느러미 게레치[펜타프리온 롱기마누스(Pentaprion longimanus)]	5%	E0
265	0303.89.13	- - - - 황매퉁이[트라치노세팔루스 미오프스(Trachinocephalus myops)]	5%	E0
266	0303.89.14	- - - - 리본피시[랩투라칸투스 사발라(Lepturacanthus savala)]·등갈민태[죠니우스 밸랑게리(Johnius belangerii)]·황금리브민어[크리소치르 아우레우스(Chrysochir aureus)] 및 대안이석태[팬나히아 아네아(Pennahia anea)]	5%	E0
267	0303.89.16	- - - - 고등가라지[메갈라스피스 코르딜라(Megalaspis cordyla)], 얼룩활치[디프란 펑타타(Drepane punctata)]와 큰꼬치고기[스피레나 바라쿠다(Sphyraena barracuda)]	5%	E0
268	0303.89.17	- - - - 흑병어[파라스트로마투스 니게르(Parastromatus niger)]	5%	E10
269	0303.89.18	- - - - 맹그로브 홍돔[루트야누스 아르겐티마쿨라투스(Lutjanus argentimaculatus)]	5%	E10
270	0303.89.19	- - - - 기타	5%	EX
		- - - 기타		
271	0303.89.22	- - - - 스왐프 바브[펀티우스 촐라(Puntius chola)]	5%	E0
272	0303.89.26	- - - - 줄무늬 날가지숭어[폴리네무스 인디쿠스(Polynemus indicus)]와 별도랑벤자리[포마다시스 아르겐테우스(Pomadasys argenteus)]	5%	E0
273	0303.89.27	- - - - 힐사 샤드[테누아로사 일리샤(Tenualosa ilisha)]	5%	E0
274	0303.89.28	- - - - 왈라고메기[왈라고 아투(Wallago attu)]와 자이언트 리버 메기[스페라타 싱갈라(Sperata seenghala)]	5%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275	0303.89.29	- - - - 기타	5%	EX
		- 간·어란(魚卵)·어백(魚白)·어류의 지느러미·머리·꼬리·부레와 그 밖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		
276	0303.91.00	- - 간·어란(魚卵)·어백(魚白)	0%	E0
277	0303.92.00	- - 상어 지느러미	5%	E0
278	0303.99.00	- - 기타	5%	SS
	03.04	**어류의 필레(fillet)와 그 밖의 어육(잘게 썰었는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 냉장·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종·카라시우스(Carassius)종·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시리누스(Cirrhinus)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라베오(Labeo)종·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렙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종], 뱀장어[앙귈라(Anguilla)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나(Channa)종]의 신선하거나 냉장한 필레(fillet)		
279	0304.31.00	-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0%	E0
280	0304.32.00	- -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0%	E0
281	0304.33.00	- -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0%	E0
282	0304.39.00	- - 기타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 그 밖의 어류의 신선하거나 냉장한 필레(fillet)		
283	0304.41.00	- - 태평양 연어[옹코링쿠스 넬카(Oncorhynchus nerka)·옹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cha)·옹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옹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chawytscha)·옹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옹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 및 옹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 및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0%	E0
284	0304.42.00	- -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옹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옹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옹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옹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옹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 및 옹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0%	E0
285	0304.43.00	- - 넙치류[플루로넥티대(Pleuronectidae)과·바디대(Bothidae)과·사이노글로시대(Cynoglossidae)과·솔레이대(Soleidae)과·스코프탈미대(Scophthal midae)과 및 시타리대(Citharidae)과]	0%	E0
286	0304.44.00	- -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가디대(Gadidae)과·마크로우리대(Macrouridae)과·멜라노니대(Melanonidae)과·메르루치대(Merlucciidae)과·모리대(Moridae)과 및 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과의 어류	0%	E0
287	0304.45.00	- -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0%	E0
288	0304.46.00	- -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종]	0%	E0
289	0304.47.00	- - 곱상어와 그 밖의 상어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290	0304.48.00	- - 가오리와 홍어[라지대(Rajidae)과]	0%	E0
291	0304.49.00	- - 기타	0%	E0
		- 기타(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292	0304.51.00	-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종・카라시우스(Carassius)종・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시리누스(Cirrhinus)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라베오(Labeo)종・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렙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종], 뱀장어[앙귈라(Anguilla)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나(Channa)종]	0%	E0
293	0304.52.00	- - 연어과	0%	E0
294	0304.53.00	- -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가디대(Gadidae)과・마크로우리대(Macrouridae)과・멜라노니대(Melanonidae)과・메르루치대(Merluccidae)과・모리대(Moridae)과 및 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과의 어류	0%	E0
295	0304.54.00	- -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0%	E0
296	0304.55.00	- -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종]	0%	E0
297	0304.56.00	- - 곱상어와 그 밖의 상어	0%	E0
298	0304.57.00	- - 가오리와 홍어[라지대(Rajidae)과]	0%	E0
299	0304.59.00	- - 기타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종・카라시우스(Carassius)종・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시리누스(Cirrhinus)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라베오(Labeo)종・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렙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종], 뱀장어[앙귈라(Anguilla)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나(Channa)종]의 냉동한 필레(fillet)		
300	0304.61.00	-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0%	E0
301	0304.62.00	- -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0%	E0
302	0304.63.00	- -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0%	E0
303	0304.69.00	- - 기타	0%	E0
		-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가디대(Gadidae)과・마크로우리대(Macrouridae)과・멜라노니대(Melanonidae)과・메르루치대(Merlucciidae)과・모리대(Moridae)과 및 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과의 어류의 냉동한 필레(fillet)		
304	0304.71.00	- -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가두스 오각(Gadus ogac)・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0%	E0
305	0304.72.00	- -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Melanogrammus aeglefinus)]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306	0304.73.00	- - 검정대구[폴라치우스 비렌스 (Pollachius virens)]	0%	E0
307	0304.74.00	- - 민대구[메루키우스(Merluccius)종·유르피키스(Urophycis)종]	0%	E0
308	0304.75.00	- -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	0%	E0
309	0304.79.00	- - 기타	0%	E0
		- 그 밖의 어류의 냉동한 필레(fillet)		
310	0304.81.00	- - 태평양 연어[옹코링쿠스 넬카 (Oncorhynchus nerka)·옹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cha)·옹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옹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chawytscha)·옹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옹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 및 옹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 및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0%	E0
311	0304.82.00	- -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옹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옹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옹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옹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옹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 및 옹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0%	E0
312	0304.83.00	- - 넙치류[플루로넥티대(Pleuronectidae)과·바디대(Bothidae)과·사이노글로시대(Cynoglossidae)과·솔레이대(Soleidae)과·스코프탈미대(Scophthal midae)과 및 시타리대(Citharidae)과]	0%	E0
313	0304.84.00	- -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0%	E0
314	0304.85.00	- -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종]	0%	E0
315	0304.86.00	- -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us)・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316	0304.87.00	- - 다랑어[터너스(Thunnus)속의 것으로 한정한다]・가다랑어 또는 줄무늬 버니토[유티너스(카추워누스) 펠라미스(Euthynnus(Katsuwonus) pelamis)]	0%	E0
317	0304.88.00	- - 곱상어, 그 밖의 상어, 가오리와 홍어[라지대(Rajidae)과]	0%	E0
318	0304.89.00	- - 기타	0%	E0
		- 기타(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319	0304.91.00	- -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0%	E0
320	0304.92.00	- -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종]	0%	E0
321	0304.93.00	-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종・카라시우스(Carassius)종・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시리누스(Cirrhinus)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라베오(Labeo)종・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렙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종], 뱀장어[앙귈라(Anguilla)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나(Channa)종]	0%	E0
322	0304.94.00	- -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	0%	E0
323	0304.95.00	- -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가디대(Gadidae)과・마크로우리대(Macrouridae)과・멜라노니대(Melanonidae)과・메르루치대(Merluccidae)과・모리대(Moridae)과・무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과의 어류[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는 제외한다]		
324	0304.96.00	- - 곱상어와 그 밖의 상어	0%	E0
325	0304.97.00	- - 가오리와 홍어[라지대(Rajidae)과]	0%	E0
326	0304.99.00	- - 기타	0%	E0
	03.05	**건조한 어류, 염장이나 염수장한 어류, 훈제한 어류(훈제과정 중이나 훈제 전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어류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327	0305.10.00	- 어류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	E0
	0305.20	- 어류의 간·어란(魚卵)·어백(魚白)(건조한 것·훈제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328	0305.20.10	- - 그 밖의 민물어류의 것(건조한 것·염장한 것 또는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5%	E10
329	0305.20.90	- - 기타	0%	E0
		- 어류의 필레(fillet)(건조하거나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하며,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330	0305.31.00	-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종·카라시우스(Carassius)종·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시리누스(Cirrhinus)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라베오(Labeo)종·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렙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종], 뱀장어[앙귈라(Anguilla)종], 나일 퍼치[라테스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나(Channa)종]		
331	0305.32.00	- -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가디대(Gadidae)과・마크로우리대(Macrouridae)과・멜라노니대(Melanonidae)과・메르루치대(Merlucciidae)과・모리대(Moridae)과 및 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과의 어류	0%	E0
	0305.39	- - 기타		
332	0305.39.10	- - - 민물 동갈치[세넨토돈 칸실라(Xenentodon cancila)]・범꼬리촉수[유페네우스 비타투스(Upeneus vittatus)] 및 턱전갱이[울루아 멘테일스(Ulua mentalis)]	0%	E0
333	0305.39.20	- - - 리본피시[랩투라칸투스 사발라(Lepturacanthus savala)]・등갈민태[죠니우스 밸랑게리(Johnius belangerii)]・황금리브민어[크리소치르 아우레우스(Chrysochir aureus)] 및 대안이석태[팬나히아 아네아(Pennahia anea)]	0%	E0
		- - - 기타		
334	0305.39.91	- - - - 민물어류의 것	0%	E0
335	0305.39.92	- - - - 해수어의 것	0%	E0
336	0305.39.99	- - - - 기타	0%	E0
		- 훈제한 어류[필레(fillet)를 포함하며,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337	0305.41.00	- - 태평양 연어[옹코링쿠스 넬카(Oncorhynchus nerka)・옹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cha)・옹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옹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chawytscha)・옹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옹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 및 옹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 및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338	0305.42.00	- - 청어[클루페아 하렝구스(Clupea harengus)·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0%	E0
339	0305.43.00	- -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옹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옹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옹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옹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옹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 및 옹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0%	E0
340	0305.44.00	-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종·카라시우스(Carassius)종·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시리누스(Cirrhinus)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라베오(Labeo)종·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렙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종], 뱀장어[앙귈라(Anguilla)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나(Channa)종]	0%	E0
341	0305.49.00	- - 기타	0%	E0
		- 건조한 어류[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 것으로서 염장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342	0305.51.00	- -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가두스 오각(Gadus ogac)·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343	0305.52.00	-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종・카라시우스(Carassius)종・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시리누스(Cirrhinus)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라베오(Labeo)종・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렙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종], 뱀장어[앙귈라(Anguilla)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나(Channa)종]	0%	E0
344	0305.53.00	- -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가두스 오각(Gadus ogac)・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이외의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가디대(Gadidae)과・마크로우리대(Macrouridae)과・멜라노니대(Melanonidae)과・메르루치대(Merlucciidae)과・모리대(Moridae)과・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과의 어류	5%	E20
345	0305.54.00	- -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멸치[엔그라울리스(Engraulis)종],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Sardina pilchardus)・사르디노프스(Sardinops)종],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Sardinella)종], 브리스링(brisling)이나 스프랫(sprats)[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Sprattus sprattus)],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Scomber scombrus)・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Scomber australasicus)・스콤버 자포니쿠스(Scomber japonicus)], 줄무늬 고등어(Indian mackerels)[라스트렐리거(Rastrelliger)종], 삼치[스콤버로모러스	5%	E2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Scomberomorus)종], 전갱이[트라커러스(Trachurus)종], 줄전갱이류[카랑크스(Caranx)종], 날쌔기[라키센트론 카나둠(Rachycentron canadum)], 병어 [팜푸스(Pampus)종], 꽁치[콜로라비스 사이라(Cololabis saira)], 가라지[데캅테러스(Decapterus)종], 열빙어[말로투스 빌로서스(Mallotus villosus)],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점다랑어[유티너스 아피니스(Euthynnus affinis)], 버니토[사르다(Sarda)종], 새치류, 돛새치, 청새치[이스티오포리대(Istiophoridae)]		
	0305.59	- - 기타		
		- - - 해수어		
346	0305.59.21	- - - - 멸치[스톨레포러스(Stolephorus)종, 코일리아(Coilia)종, 스테티핀나(Setipinna)종, 리코트리사(Lycothrissa)종. 트리사(Thryssa)종, 엔크라니콜리나(Encrasicholina)종]	5%	E10
347	0305.59.29	- - - - 기타	5%	E20
348	0305.59.90	- - - 기타	0%	E0
		- 건조하지도 훈제하지도 않은 염장한 어류 및 염수장한 어류[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349	0305.61.00	- - 청어[클루페아 하렝구스(Clupea harengus)·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0%	E0
350	0305.62.00	- -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가두스 오각(Gadus ogac)·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0%	E0
351	0305.63.00	- - 멸치[엔그라울리스(Engraulis)종]	5%	EX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352	0305.64.00	-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종・카라시우스(Carassius)종・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시리누스(Cirrhinus)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라베오(Labeo)종・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렙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종], 뱀장어[앙귈라(Anguilla)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나(Channa)종]	5%	EX
	0305.69	- - 기타		
353	0305.69.10	- - - 해수어	5%	E15
354	0305.69.90	- - - 기타	5%	E20
		- 어류의 지느러미・머리・꼬리・부레와 그 밖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		
355	0305.71.00	- - 상어 지느러미	0%	E0
	0305.72	- - 어류의 머리・꼬리・부레		
		- - - 어류의 부레		
356	0305.72.11	- - - - 대구의 것	0%	E0
357	0305.72.19	- - - - 기타	0%	E0
		- - - 기타		
358	0305.72.91	- - - - 대구의 것	5%	E10
359	0305.72.99	- - - - 기타	5%	E10
	0305.79	- - 기타		
360	0305.79.10	- - - 대구의 것	5%	E10
361	0305.79.90	- - - 기타	5%	E7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03.06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은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갑각류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 냉동한 것		
	0306.11	- - 닭새우류[팔리누루스(Palinurus)종·파누리루스(Panulirus)종·자수스(Jasus)종]		
362	0306.11.10	- - - 훈제한 것	5%	SS
363	0306.11.90	- - - 기타	5%	SS
	0306.12	- - 바닷가재[호마루스(Homarus)종]		
364	0306.12.10	- - - 훈제한 것	5%	EX
365	0306.12.90	- - - 기타	5%	SS
	0306.14	- - 게		
366	0306.14.10	- - - 딱지가 연한 게(soft shell crabs)	5%	E10
367	0306.14.90	- - - 기타	5%	E20
368	0306.15.00	- - 노르웨이 바닷가재[네프로프스 노르베지쿠스(Nephrops norvegicus)]	0%	E0
369	0306.16.00	- - 냉수성(冷水性) 새우류[판달러스(Pandalus)종·크란곤 크란곤(Crangon crangon)]	5%	EX
	0306.17	- - 그 밖의 새우류		
		- - - 홍다리 얼룩새우(Penaeus monodon)		
370	0306.17.11	- - - - 머리가 없는것	5%	EX
371	0306.17.19	- - - - 기타	5%	EX
		- - - 흰다리새우(Liptopenaeus vannamei)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372	0306.17.21	- - - - 머리가 없는 것(꼬리를 포함한다)	5%	SS
373	0306.17.22	- - - - 머리가 없는 것(꼬리를 포함하지 않는다)	5%	SS
374	0306.17.29	- - - - 기타	5%	SS
375	0306.17.30	- - - 담수산 새우(Macrobrachium rosenbergii)	5%	EX
376	0306.17.90	- - - 기타	5%	EX
377	0306.19.00	- - 기타[갑각류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을 포함한다(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	E0
		-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또는 냉장한 것		
	0306.31	- - 닭새우류[팔리누루스(Palinurus)종·파누리루스(Panulirus)종·자수스(Jasus)종]		
378	0306.31.10	- - - 번식용	0%	E0
379	0306.31.20	- - - 기타(살아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	E0
380	0306.31.30	- - - 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	5%	SS
	0306.32	- - 바닷가재[호마루스(Homarus)종]		
381	0306.32.10	- - - 번식용	0%	E0
382	0306.32.20	- - - 기타(살아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	E0
383	0306.32.30	- - - 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	0%	E0
384	0306.33.00	- - 게	5%	E0
385	0306.34.00	- - 노르웨이 바닷가재[네프로프스 노르베지쿠스(Nephrops norvegicus)]	0%	E0
	0306.35	- - 냉수성(冷水性) 새우류[판달러스(Pandalus)종·크란곤 크란곤(Crangon crangon)]		
386	0306.35.10	- - - 번식용	0%	E0
387	0306.35.20	- - - 기타(살아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5%	E0
388	0306.35.30	- - - 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	5%	SS
	0306.36	- - 그 밖의 새우류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 - - 번식용		
389	0306.36.11	- - - - 홍다리 얼룩새우(Penaeus monodon)	0%	E0
390	0306.36.12	- - - - 흰다리 새우(Liptopenaeus vannamei)	0%	E0
391	0306.36.13	- - - - 담수산 새우(Macrobrachium rosenbergii)	0%	E0
392	0306.36.19	- - - - 기타	0%	E0
		- - - 기타(살아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93	0306.36.21	- - - - 홍다리 얼룩새우(Penaeus monodon)	5%	E0
394	0306.36.22	- - - - 흰다리 새우(Liptopenaeus vannamei)	5%	E10
395	0306.36.23	- - - - 담수산 새우(Macrobrachium rosenbergii)	5%	E0
396	0306.36.29	- - - - 기타	5%	E0
		- - - 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		
397	0306.36.31	- - - - 홍다리 얼룩새우(Penaeus monodon)	5%	SS
398	0306.36.32	- - - - 흰다리 새우(Liptopenaeus vannamei)	5%	SS
399	0306.36.33	- - - - 담수산 새우(Macrobrachium rosenbergii)	5%	SS
400	0306.36.39	- - - - 기타	5%	SS
	0306.39	- - 기타[식용에 적합한 것으로서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을 포함한다]		
401	0306.39.10	- - - 살아 있는 것	0%	E0
402	0306.39.20	- - - 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	0%	E0
403	0306.39.30	- - -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	0%	E0
		- 기타		
	0306.91	- - 닭새우류[팔리누루스(Palinurus)종·파누리루스(Panulirus)종·자수스(Jasus)종]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 - - 밀폐용기에 넣은 것(소매용으로 한정한다)		
404	0306.91.21	- - - - 훈제한 것	0%	E0
405	0306.91.29	- - - - 기타	0%	E0
		- - - 기타		
406	0306.91.31	- - - - 훈제한 것	0%	E0
407	0306.91.39	- - - - 기타	0%	E0
	0306.92	- - 바닷가재[호마루스(Homarus)종]		
		- - - 밀폐용기에 넣은 것(소매용으로 한정한다)		
408	0306.92.21	- - - - 훈제한 것	0%	E0
409	0306.92.29	- - - - 기타	0%	E0
		- - - 기타		
410	0306.92.31	- - - - 훈제한 것	0%	E0
411	0306.92.39	- - - - 기타	0%	E0
	0306.93	- - 게		
		- - - 밀폐용기에 넣은 것(소매용으로 한정한다)		
412	0306.93.21	- - - - 훈제한 것	0%	E0
413	0306.93.29	- - - - 기타	0%	E0
414	0306.93.30	- - - 기타	0%	E0
	0306.94	- - 노르웨이 바닷가재[네프로프스 노르베지쿠스(Nephrops norvegicus)]		
		- - - 밀폐용기에 넣은 것(소매용으로 한정한다)		
415	0306.94.21	- - - - 훈제한 것	0%	E0
416	0306.94.29	- - - - 기타	0%	E0
		- - - 기타		
417	0306.94.31	- - - - 훈제한 것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418	0306.94.39	- - - - 기타	0%	E0
	0306.95	- - 새우류		
		- - - 밀폐용기에 넣은 것(소매용으로 한정한다)		
419	0306.95.21	- - - - 껍질이 붙은 것(물에 삶았거나 찐 것으로 한정한다)	5%	EX
420	0306.95.29	- - - - 기타	5%	EX
421	0306.95.30	- - - 기타	5%	EX
	0306.99	- - 기타[식용에 적합한 것으로서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을 포함한다]		
		- - - 밀폐용기에 넣은 것(소매용으로 한정한다)		
422	0306.99.21	- - - - 훈제한 것	0%	E0
423	0306.99.29	- - - - 기타	0%	E0
		- - - 기타		
424	0306.99.31	- - - - 훈제한 것	0%	E0
425	0306.99.39	- - - - 기타	0%	E0
	03.07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연체동물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 굴		
	0307.11	- -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426	0307.11.10	- - - 살아 있는 것	0%	E0
427	0307.11.20	- - - 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	0%	E0
428	0307.12.00	- - 냉동한 것	0%	E0
	0307.19	- - 기타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429	0307.19.20	- - -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0%	E0
430	0307.19.30	- - - 훈제한 것	0%	E0
		- 가리비과의 조개[펙텐(Pecten)·클라미스(Chlamys) 또는 프라코펙텐(Placopecten)속의 것으로서 여왕가리비과 조개를 포함한다]		
	0307.21	- -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431	0307.21.10	- - - 살아 있는 것	5%	E10
432	0307.21.20	- - - 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	5%	E0
433	0307.22.00	- - 냉동한 것	0%	E0
	0307.29	- - 기타		
434	0307.29.30	- - -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0%	E0
435	0307.29.40	- - - 훈제한 것	0%	E0
		- 홍합[미틸루스(Mytilus)종·페르나(Perna)종]		
	0307.31	- -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436	0307.31.10	- - - 살아 있는 것	0%	E0
437	0307.31.20	- - - 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	0%	E0
438	0307.32.00	- - 냉동한 것	0%	E0
	0307.39	- - 기타		
439	0307.39.30	- - -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0%	E0
440	0307.39.40	- - - 훈제한 것	0%	E0
		- 갑오징어와 오징어		
	0307.42	- - 살아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 - - 살아 있는 것		
441	0307.42.11	- - - - 갑오징어[세피아 오피시날리스(Sepia officinalis)·로시아 마크로소마(Rossia macrosoma)·세피올라(Sepiola)종]와 오징어[옴마스트레페스(Ommastrephes)종·로리고(Loligo)종·노토토다루스(Nototodarus)종·세피오투디스	5%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Sepioteuthis)종]		
442	0307.42.19	- - - - 기타	5%	E10
		- - - 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		
443	0307.42.21	- - - - 갑오징어[세피아 오피시날리스(Sepia officinalis)·로시아 마크로소마(Rossia macrosoma)·세피올라(Sepiola)종]와 오징어[옴마스트레페스(Ommastrephes)종·로리고(Loligo)종·노토토다루스(Nototodarus)종·세피오투디스(Sepioteuthis)종]	5%	EX
444	0307.42.29	- - - - 기타	5%	E10
	0307.43	- - 냉동한 것		
445	0307.43.10	- - - 갑오징어[세피아 오피시날리스(Sepia officinalis)·로시아 마크로소마(Rossia macrosoma)·세피올라(Sepiola)종]와 오징어[옴마스트레페스(Ommastrephes)종·로리고(Loligo)종·노토토다루스(Nototodarus)종·세피오투디스(Sepioteuthis)종]	5%	EX
446	0307.43.90	- - - 기타	5%	E20
	0307.49	- - 기타		
		- - -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447	0307.49.21	- - - - 갑오징어[세피아 오피시날리스(Sepia officinalis)·로시아 마크로소마(Rossia macrosoma)·세피올라(Sepiola)종]와 오징어[옴마스트레페스(Ommastrephes)종·로리고(Loligo)종·노토토다루스(Nototodarus)종·세피오투디스(Sepioteuthis)종]	5%	EX
448	0307.49.29	- - - - 기타	5%	E0
449	0307.49.30	- - - 훈제한 것	5%	EX
		- 문어[옥토퍼스(Octopus)종]		
	0307.51	- -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450	0307.51.10	- - - 살아 있는 것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451	0307.51.20	- - - 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	0%	E0
452	0307.52.00	- - 냉동한 것	0%	E0
	0307.59	- - 기타		
453	0307.59.20	- - -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0%	E0
454	0307.59.30	- - - 훈제한 것	0%	E0
	0307.60	- 달팽이(바다달팽이는 제외한다)		
455	0307.60.10	- - 살아 있는 것	0%	E0
456	0307.60.20	- - 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0%	E0
457	0307.60.40	- -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0%	E0
458	0307.60.50	- - 훈제한 것	0%	E0
		- 클램(clam), 새조개와 피조개[아르치대(Arcidae)과・아르크티치대(Arcticidae)과・카르디대(Cardiidae)과・도나치대(Donacidae)과・히아텔리대(Hiatellidae)과・마르크트리대(Mactridae)과・메소데스마티대(Mesodesmatidae)과・마이이대(Myidae)과・세멜리대(Semelidae)과・솔레쿠르티대(Solecurtidae)과・솔레니대(Solenidae)과・트리다크니대(Tridacnidae)과 및 베네리대(Veneridae)과]		
	0307.71	- -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459	0307.71.10	- - - 살아 있는 것	0%	E0
460	0307.71.20	- - - 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	0%	E0
461	0307.72.00	- - 냉동한 것	0%	E0
	0307.79	- - 기타		
462	0307.79.30	- - -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0%	E0
463	0307.79.40	- - - 훈제한 것	0%	E0
		- 전복[할리오티스(Haliotis)종]과 수정고둥류[스트롬버스(Strombus)종]		
	0307.81	- - 살아있거나, 신선하거나 냉장한 전복[할리오티스(Haliotis)종]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464	0307.81.10	- - - 살아 있는 것	5%	E0
465	0307.81.20	- - - 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	5%	E0
	0307.82	- - 살아있거나, 신선하거나 냉장한 수정고둥류[스트롬버스(Strombus)종]		
466	0307.82.10	- - - 살아 있는 것	5%	E10
467	0307.82.20	- - - 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	5%	E10
468	0307.83.00	- - 냉동한 전복[할리오티스(Haliotis)종]	5%	E0
469	0307.84.00	- - 냉동한 수정고둥류[스트롬버스(Strombus)종]	5%	E20
	0307.87	- - 그 밖의 전복[할리오티스(Haliotis)종]		
470	0307.87.10	- - -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5%	E0
471	0307.87.20	- - - 훈제한 것	5%	E0
	0307.88	- - 그 밖의 수정고둥류[스트롬버스(Strombus)종]		
472	0307.88.10	- - -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5%	E0
473	0307.88.20	- - - 훈제한 것	5%	E0
		- 기타[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을 포함한다(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307.91	- -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474	0307.91.10	- - - 살아 있는 것	5%	E10
475	0307.91.20	- - - 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	5%	E10
476	0307.92.00	- - 냉동한 것	5%	E20
	0307.99	- - 기타		
477	0307.99.30	- - -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5%	E0
478	0307.99.40	- - - 훈제한 것	5%	E0
479	0307.99.50	- - - 연체동물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	5%	E1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03.08	수생(水生) 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은 제외하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갑각류와 연체동물은 제외하며,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수생(水生) 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은 제외한다)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 해삼[스티코푸스 자포니쿠스(Stichopus japonicus), 홀로투로이대(Holothuroidea)]		
	0308.11	- -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480	0308.11.10	- - - 살아 있는 것	0%	E0
481	0308.11.20	- - - 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	0%	E0
482	0308.12.00	- - 냉동한 것	0%	E0
	0308.19	- - 기타		
483	0308.19.20	- - -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0%	E0
484	0308.19.30	- - - 훈제한 것	0%	E0
		- 성게[스트론길로센트로투스(Strongylocentrotus)종·파라센트로투스 리비두스(Paracentrotus lividus)·록세치누스 알버스(Loxechinus albus)·에치누스 에스쿨렌투스(Echinus esculentus)]		
	0308.21	- -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485	0308.21.10	- - - 살아 있는 것	0%	E0
486	0308.21.20	- - - 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	0%	E0
487	0308.22.00	- - 냉동한 것	0%	E0
	0308.29	- - 기타		
488	0308.29.20	- - -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0%	E0
489	0308.29.30	- - - 훈제한 것	0%	E0
	0308.30	- 해파리[로필레마(Rhopilema)종]		
490	0308.30.10	- - 살아 있는 것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491	0308.30.20	- - 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	0%	E0
492	0308.30.30	- - 냉동한 것	0%	E0
493	0308.30.40	- -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0%	E0
494	0308.30.50	- - 훈제한 것	0%	E0
	0308.90	- 기타		
495	0308.90.10	- - 살아 있는 것	0%	E0
496	0308.90.20	- - 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	0%	E0
497	0308.90.30	- - 냉동한 것	0%	E0
498	0308.90.40	- -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0%	E0
499	0308.90.50	- - 훈제한 것	0%	E0
500	0308.90.90	- - 기타	0%	E0
	04.01	**밀크와 크림(농축하지 않은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401.10	-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 분의 1 이하인 것		
501	0401.10.10	- - 액체 상태의 것	5%	E15
502	0401.10.90	- - 기타	5%	E10
	0401.20	-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 분의 1 초과 100 분의 6 이하인 것		
503	0401.20.10	- - 액체 상태의 것	5%	E15
504	0401.20.90	- - 기타	5%	E10
	0401.40	-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 분의 6 초과 100 분의 10 이하인 것		
505	0401.40.10	- - 액체 상태의 밀크	5%	E0
506	0401.40.20	- - 냉동한 밀크	5%	E0
507	0401.40.90	- - 기타	5%	E0
	0401.50	-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는 것		
508	0401.50.10	- - 액체 상태의 것	5%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509	0401.50.90	- - 기타	5%	E0
	04.02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0402.10	- 가루 모양·알갱이 모양이나 그 밖의 고체 상태인 것으로서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 분의 1.5 이하인 것		
		- -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		
510	0402.10.41	- - - 순 중량이 20 킬로그램 이상으로 포장한 것	5%	EX
511	0402.10.42	- - - 순 중량이 2 킬로그램 미만으로 포장한 것	5%	EX
512	0402.10.49	- - - 기타	5%	EX
		- - 기타		
513	0402.10.91	- - - 순 중량이 20 킬로그램 이상으로 포장한 것	5%	EX
514	0402.10.92	- - - 순 중량이 2 킬로그램 미만으로 포장한 것	5%	EX
515	0402.10.99	- - - 기타	5%	EX
		- 가루 모양·알갱이 모양이나 그 밖의 고체 상태인 것으로서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 분의 1.5 를 초과하는 것		
	0402.21	- -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		
516	0402.21.20	- - - 순 중량이 20 킬로그램 이상으로 포장한 것	5%	EX
517	0402.21.30	- - - 순 중량이 2 킬로그램 미만으로 포장한 것	5%	EX
518	0402.21.90	- - - 기타	5%	EX
	0402.29	- - 기타		
519	0402.29.20	- - - 순 중량이 20 킬로그램 이상으로 포장한 것	5%	EX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520	0402.29.30	- - - 순 중량이 2킬로그램 미만으로 포장한 것	5%	EX
521	0402.29.90	- - - 기타	5%	EX
		- 기타		
522	0402.91.00	- -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	5%	EX
523	0402.99.00	- - 기타	10%	EX
	04.03	**버터밀크·응고밀크와 응고크림·요구르트·케피어(kephir)와 그 밖의 발효되거나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 또는 향·과실·견과류·코코아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403.10	- 요구르트		
		- - 액체 상태의 것(농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24	0403.10.21	- - - 향·과실[펄프(pulp)나 잼을 포함한다]·견과류·코코아를 첨가한 것	10%	E0
525	0403.10.29	- - - 기타	10%	E0
		- - 기타		
526	0403.10.91	- - - 향·과실[펄프(pulp)나 잼을 포함한다]·견과류·코코아를 첨가한 것	10%	E0
527	0403.10.99	- - - 기타	10%	E0
	0403.90	- 기타		
528	0403.90.10	- - 버터밀크	5%	E0
529	0403.90.90	- - 기타	5%	E0
	04.04	**유장(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따로 분류된 것 외의 천연밀크의 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404.10	- 유장과 변성유장(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상관없다)		
530	0404.10.10	- - 가루 모양	5%	E0
531	0404.10.90	- - 기타	5%	E0
532	0404.90.00	- 기타	5%	E0
	04.05	**버터와 그 밖의 지방과 기름(밀크에서 얻은 것으로 한정한다), 데어리 스프레드(dairy spread)**		
533	0405.10.00	- 버터	5%	E0
534	0405.20.00	- 데어리 스프레드(dairy spread)	0%	E0
	0405.90	- 기타		
535	0405.90.10	- - 탈수 유지방	5%	E0
536	0405.90.20	- - 버터오일	5%	E0
537	0405.90.30	- - 버터기름	5%	E0
538	0405.90.90	- - 기타	5%	E0
	04.06	**치즈와 커드(curd)**		
	0406.10	- 신선한(숙성되지 않은 것이나 처리하지 않은 것) 치즈(유장치즈를 포함한다)와 커드(curd)		
539	0406.10.10	- - 신선한(숙성되지 않은 것이나 처리하지 않은 것) 치즈(유장치즈를 포함한다)	5%	E0
540	0406.10.20	- - 커드(curd)	5%	E0
	0406.20	- 갈았거나 가루 모양으로 한 모든 종류의 치즈		
541	0406.20.10	- - 총중량이 20 킬로그램을 초과하여 포장한 것	5%	E0
542	0406.20.90	- - 기타	5%	E0
543	0406.30.00	- 가공치즈(갈았거나 가루 모양의 것은 제외한다)	5%	E0
544	0406.40.00	- 블루바인 치즈(blueveined cheese)와 페니실리움 로우크포티(Penicillium	5%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roqueforti)로 생산된 바인(vein)을 함유한 그 밖의 치즈		
545	0406.90.00	- 그 밖의 치즈	5%	E0
	04.07	**새의 알(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한 것, 보존처리하거나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 부화용 수정란		
	0407.11	- -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546	0407.11.10	- - - 번식용	5%	E0
547	0407.11.90	- - - 기타	5%	E0
	0407.19	- - 기타		
		- - - 오리의 것		
548	0407.19.11	- - - - 번식용	5%	E0
549	0407.19.19	- - - - 기타	5%	E0
		- - - 기타		
550	0407.19.91	- - - - 번식용	5%	E0
551	0407.19.99	- - - - 기타	5%	E0
		- 그 밖의 신선란		
552	0407.21.00	- -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5%	E0
	0407.29	- - 기타		
553	0407.29.10	- - - 오리의 것	5%	E0
554	0407.29.90	- - - 기타	5%	E0
	0407.90	- 기타		
555	0407.90.10	- -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5%	E0
556	0407.90.20	- - 오리의 것	5%	E0
557	0407.90.90	- - 기타	5%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04.08	새의 알(껍질이 붙지 않은 것)과 알의 노른자위(신선한 것, 건조한 것, 물에 삶았거나 찐 것, 성형한 것, 냉동한 것이나 그 밖의 보존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알의 노른자위		
558	0408.11.00	- - 건조한 것	0%	E0
559	0408.19.00	- - 기타	0%	E0
		- 기타		
560	0408.91.00	- - 건조한 것	5%	E0
561	0408.99.00	- - 기타	5%	E0
562	0409.00.00	천연꿀	5%	E15
	04.10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563	0410.00.10	- 조류의 둥지	0%	E0
564	0410.00.90	- 기타	0%	E0
565	0501.00.00	사람 머리카락(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세척이나 세정을 했는지에 상관없다), 그 웨이스트(waste)	0%	E0
	05.02	돼지털·멧돼지털·오소리털과 그 밖의 브러시 제조용 동물의 털과 이들의 웨이스트(waste)		
566	0502.10.00	- 돼지털 또는 멧돼지털과 이들의 웨이스트(waste)	0%	E0
567	0502.90.00	- 기타	0%	E0
568	0504.00.00	동물(어류는 제외한다)의 장·방광 및 위의 전체나 부분(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건조한 것이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0%	E0
	05.05	새의 깃털이나 솜털이 붙은 가죽과 그 밖의 부분, 깃털과 그 부분(가장자리를 정리했는지에 상관없다), 새의 솜털(청정·소독·보존을 위한 처리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새의 깃털이나 그 부분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		
	0505.10	- 솜털과 충전재용 깃털		
569	0505.10.10	- - 오리 깃털	0%	E0
570	0505.10.90	- - 기타	0%	E0
	0505.90	- 기타		
571	0505.90.10	- - 오리 깃털	0%	E0
572	0505.90.90	- - 기타	0%	E0
	05.06	뼈와 혼코어(horn-core)[가공하지 않은 것, 탈지(脫脂)한 것, 단순히 정리한 것(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은 제외한다), 산(酸)처리를 하거나 탈교한(degelatinised) 것], 이들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		
573	0506.10.00	- 골소(骨素)와 뼈[산(酸)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0%	E0
574	0506.90.00	- 기타	5%	E0
	05.07	아이보리(ivory)·귀갑(龜甲)·고래수염과 그 털·뿔(horn)·사슴뿔·발굽·발톱·부리(가공하지 않은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으로 한정하며, 특정한 모양으로 깎은 것은 제외한다), 이들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		
575	0507.10.00	- 아이보리(ivory), 아이보리(ivory) 가루와 웨이스트(waste)	0%	E0
	0507.90	- 기타		
576	0507.90.20	- - 귀갑(龜甲)	0%	E0
577	0507.90.90	- - 기타	5%	E0
	05.08	산호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공하지 않은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한다), 연체동물·갑각류·극피동물의 껍데기와 오징어뼈(가공하지 않은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으로 한정하며, 특정한 모양으로 깎은 것은 제외한다)와 이들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		
578	0508.00.20	- 연체동물·갑각류 또는 극피동물의 껍데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기		
579	0508.00.90	- 기타	0%	E0
580	0510.00.00	용연향(ambergris)·해리향(castoreum)·시빗(civet)과 사향, 캔대리디즈(cantharides), 쓸개즙(건조했는지에 상관없다), 의약품 제조용 선(腺)과 그 밖의 동물성 생산품(신선한 것, 냉장·냉동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0%	E0
	05.11	따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과 제1류나 제3류의 동물의 사체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		
581	0511.10.00	- 소의 정액	0%	E0
		- 기타		
	0511.91	- - 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생산품, 제3류에 해당하는 동물의 사체		
582	0511.91.10	- - - 어란(魚卵)과 어백(魚白)	0%	E0
583	0511.91.20	- - - 알테미아의 알[브라인 쉬림프(Brine shrimp)의 알]	0%	E0
584	0511.91.30	- - - 어피(魚皮)	0%	E0
585	0511.91.90	- - - 기타	0%	E0
	0511.99	- - 기타		
586	0511.99.10	- - - 판매용 동물의 정액	0%	E0
587	0511.99.20	- - - 잠종(蠶種)	0%	E0
588	0511.99.30	- - - 해면 스펀지	0%	E0
589	0511.99.90	- - - 기타	0%	E0
	06.01	인경(鱗莖)·괴경(塊莖)·괴근(塊根)·구경(球莖)·관근(冠根)·근경(根莖)으로서 휴면(休眠)상태이거나 자라고 있거나 꽃이 피어 있는 것, 치커리·치커리 뿌리(제1212호의 뿌리는 제외한다)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590	0601.10.00	- 인경(鱗莖)·괴경(塊莖)·괴근(塊根)·구경(球莖)·관근(冠根) 및 근경(根莖)으로서 휴면(休眠)상태인 것	0%	E0
	0601.20	- 인경(鱗莖)·괴경(塊莖)·괴근(塊根)·구경(球莖)·관근(冠根)·근경(根莖)으로서 자라고 있거나 꽃이 피어 있는 것, 치커리·치커리 뿌리		
591	0601.20.10	- - 치커리(chicory)	0%	E0
592	0601.20.20	- - 치커리(chicory) 뿌리	0%	E0
593	0601.20.90	- - 기타	0%	E0
	06.02	**그 밖의 살아 있는 식물(뿌리를 포함한다)·꺾꽂이용 가지·접붙임용 가지, 버섯의 종균(種菌)**		
	0602.10	- 뿌리가 없는 꺾꽂이용 가지와 접붙임용 가지		
594	0602.10.10	- - 난의 것	0%	E0
595	0602.10.20	- - 고무나무의 것	0%	E0
596	0602.10.90	- - 기타	5%	E10
597	0602.20.00	- 수목과 관목(식용 과실이나 견과류의 것으로서 접목했는지에 상관없다)	0%	E0
598	0602.30.00	- 철쭉과 진달래속의 식물(접목했는지에 상관없다)	0%	E0
599	0602.40.00	- 장미(접목했는지에 상관없다)	0%	E0
	0602.90	- 기타		
600	0602.90.10	- - 뿌리가 있는 꺾꽂이용 난과 접붙임용 난	0%	E0
601	0602.90.20	- - 난의 묘목	0%	E0
602	0602.90.40	- - 히비어 속의 발아시킨 그루터기	0%	E0
603	0602.90.50	- - 히비어 속의 묘목	0%	E0
604	0602.90.60	- - 히비어 속의 눈접용 접가지	0%	E0
605	0602.90.90	- - 기타	8%	EX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06.03	절화(切花)와 꽃봉오리(신선한 것과 건조·염색·표백·침투나 그 밖의 가공을 한 것으로서 꽃다발용이나 장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 신선한 것		
606	0603.11.00	- - 장미	20%	EX
607	0603.12.00	- - 카네이션	20%	EX
608	0603.13.00	- - 난	20%	EX
609	0603.14.00	- - 국화	20%	EX
610	0603.15.00	- - 백합[릴리움(Lilium)종]	20%	EX
611	0603.19.00	- - 기타	20%	EX
612	0603.90.00	- 기타	20%	EX
	06.04	식물의 잎·가지와 그 밖의 부분(꽃과 꽃봉오리가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풀·이끼·지의(地衣)(신선한 것과 건조·염색·표백·침투나 그 밖의 가공을 한 것으로서 꽃다발용이나 장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604.20	- 신선한 것		
613	0604.20.10	- - 이끼와 지의(地衣)	0%	E0
614	0604.20.90	- - 기타	0%	E0
	0604.90	- 기타		
615	0604.90.10	- - 이끼와 지의(地衣)	0%	E0
616	0604.90.90	- - 기타	0%	E0
	07.01	감자(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617	0701.10.00	- 종자	0%	E0
	0701.90	- 기타		
618	0701.90.10	- - 칩용에 적합한 감자	20%	EX
619	0701.90.90	- - 기타	20%	EX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620	0702.00.00	토마토(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5%	E0
	07.03	양파・쪽파・마늘・리크(leek)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3.10	- 양파와 쪽파		
		- - 양파		
621	0703.10.11	- - - 증식용 인경(鱗莖)	0%	E0
622	0703.10.19	- - - 기타	5%	E10
		- - 쪽파		
623	0703.10.21	- - - 증식용 인경(鱗莖)	0%	E0
624	0703.10.29	- - - 기타	0%	E0
	0703.20	- 마늘		
625	0703.20.10	- - 증식용 인경(鱗莖)	0%	E0
626	0703.20.90	- - 기타	5%	E15
	0703.90	- 리크(leek)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		
627	0703.90.10	- - 증식용 인경(鱗莖)	0%	E0
628	0703.90.90	- - 기타	0%	E0
	07.04	양배추・꽃양배추・구경(球莖)양배추・케일(kale)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배추속(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4.10	- 꽃양배추와 결구(結球) 브로콜리(broccoli)		
629	0704.10.10	- - 꽃양배추	5%	E15
630	0704.10.20	- - 결구(結球) 브로콜리(broccoli)	5%	E15
631	0704.20.00	- 방울다다기 양배추	5%	E10
	0704.90	- 기타		
632	0704.90.10	- - 라운드[드럼헤드(drumhead)] 양배추	0%	E0
633	0704.90.20	- - 갓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634	0704.90.90	- - 기타	0%	E0
	07.05	상추[락투카 사티바(Lactuca sativa)]와 치커리(chicory)[시커리엄(Cichorium)종](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상추		
635	0705.11.00	- - 결구(結球) 상추	0%	E0
636	0705.19.00	- - 기타	0%	E0
		- 치커리(chicory)		
637	0705.21.00	- - 위트루프 치커리(Witloof chicory)[시코리엄 인티부스 변종 포리오섬(Cichorium intybus var. foliosum)]	0%	E0
638	0705.29.00	- - 기타	0%	E0
	07.06	당근·순무·샐러드용 사탕무뿌리·선모(仙茅)·셀러리액(celeriac)·무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뿌리(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6.10	- 당근과 순무		
639	0706.10.10	- - 당근	0%	E0
640	0706.10.20	- - 순무	0%	E0
641	0706.90.00	- 기타	0%	E0
642	0707.00.00	오이류(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	E0
	07.08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643	0708.10.00	- 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0%	E0
	0708.20	- 콩[비그나(Vigna)종·파세러스(Phaseolus)종)]		
644	0708.20.10	- - 강낭콩	0%	E0
645	0708.20.20	- - 긴 콩	0%	E0
646	0708.20.90	- - 기타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647	0708.90.00	- 그 밖의 채두류(菜豆類)	0%	E0
	07.09	그 밖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648	0709.20.00	- 아스파라거스(asparagus)	5%	E0
649	0709.30.00	- 가지(에그플랜트)	0%	E0
650	0709.40.00	- 셀러리(celery)[셀러리액(celeriac)은 제외한다]	0%	E0
		- 버섯과 송로(松露)		
651	0709.51.00	- - 아가리쿠스(Agaricus)속의 버섯	5%	E0
	0709.59	- - 기타		
652	0709.59.10	- - - 송로(松露)	0%	E0
653	0709.59.90	- - - 기타	0%	E0
	0709.60	-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		
654	0709.60.10	- -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	5%	EX
655	0709.60.90	- - 기타	5%	E10
656	0709.70.00	- 시금치류	0%	E0
		- 기타		
657	0709.91.00	- - 글로브 아티초크(globe artichoke)	0%	E0
658	0709.92.00	- - 올리브	0%	E0
659	0709.93.00	- - 호박류[쿠쿠르비타(Cucurbita)종]	5%	E0
	0709.99	- - 기타		
660	0709.99.10	- - - 스위트콘	0%	E0
661	0709.99.20	- - - 레이디스 핑거[오크라(Okra)]	0%	E0
662	0709.99.90	- - - 기타	0%	E0
	07.10	냉동채소(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663	0710.10.00	- 감자	0%	E0
		-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있는지에 상관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없다)		
664	0710.21.00	- - 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0%	E0
665	0710.22.00	- - 콩[비그나(Vigna)종・파세러스(Phaseolus)종)]	0%	E0
666	0710.29.00	- - 기타	0%	E0
667	0710.30.00	- 시금치류	0%	E0
668	0710.40.00	- 스위트콘	0%	E0
669	0710.80.00	- 그 밖의 채소	5%	E10
670	0710.90.00	- 채소류의 혼합물	0%	E0
	07.11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예: 이산화유황가스・염수・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한 채소(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711.20	- 올리브		
671	0711.20.10	- - 이산화유황가스로 보존처리 한 것	0%	E0
672	0711.20.90	- - 기타	0%	E0
	0711.40	- 오이류		
673	0711.40.10	- - 이산화유황가스로 보존처리 한 것	0%	E0
674	0711.40.90	- - 기타	0%	E0
		- 버섯과 송로(松露)		
	0711.51	- - 아가리쿠스(Agaricus)속의 버섯		
675	0711.51.10	- - - 이산화유황가스로 보존처리 한 것	0%	E0
676	0711.51.90	- - - 기타	0%	E0
	0711.59	- - 기타		
677	0711.59.10	- - - 이산화유황가스로 보존처리 한 것	0%	E0
678	0711.59.90	- - - 기타	0%	E0
	0711.90	- 그 밖의 채소와 채소류의 혼합물		
679	0711.90.10	- - 스위트콘	0%	E0
680	0711.90.20	- -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681	0711.90.30	- - 서양풍조목	0%	E0
682	0711.90.40	- - 양파(이산화유황가스로 보존처리 한 것으로 한정한다)	0%	E0
683	0711.90.50	- - 양파(이산화유황가스외의 것으로 보존처리 한 것으로 한정한다)	0%	E0
684	0711.90.60	- - 기타(이산화유황가스로 보존처리 한 것으로 한정한다)	5%	E0
685	0711.90.90	- - 기타	5%	E0
	07.12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		
686	0712.20.00	- 양파	5%	E0
		- 버섯, 목이버섯[오리쿨라리아(Auricularia)종], 젤리균류[트레멜라(Tremella)종] 및 송로(松露)		
687	0712.31.00	- - 아가리쿠스(Agaricus)속의 버섯	0%	E0
688	0712.32.00	- - 목이버섯[오리쿨라리아(Auricularia)종]	0%	E0
689	0712.33.00	- - 젤리균류[트레멜라(Tremella)종]	0%	E0
	0712.39	- - 기타		
690	0712.39.10	- - - 송로(松露)	0%	E0
691	0712.39.20	- - - 표고버섯(donggu)	5%	E10
692	0712.39.90	- - - 기타	0%	E0
	0712.90	- 그 밖의 채소와 채소류의 혼합물		
693	0712.90.10	- - 마늘	5%	E15
694	0712.90.90	- - 기타	5%	E0
	07.13	**건조한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에 상관없다)**		
	0713.10	- 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695	0713.10.10	- - 파종에 적합한 것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696	0713.10.90	- - 기타	0%	E0
	0713.20	- 이집트 콩[가반조스(garbanzos)]		
697	0713.20.10	- - 파종에 적합한 것	0%	E0
698	0713.20.90	- - 기타	0%	E0
		- 콩[비그나(Vigna)종·파세러스(Phaseolus)종)]		
	0713.31	- - 녹두[비그나 멍고(엘) 헤파(Vigna mungo (L) Hepper)종·비그나 라디에이타(엘) 윌크젝(Vigna radiata (L) Wilczek)종]		
699	0713.31.10	- - - 파종에 적합한 것	0%	E0
700	0713.31.90	- - - 기타	5%	E15
	0713.32	- - 팥[아주기(Adzuki)][파세러스(Phaseolus)·비그나 앵구라리스(Vigna angularis)]		
701	0713.32.10	- - - 파종에 적합한 것	0%	E0
702	0713.32.90	- - - 기타	5%	E10
	0713.33	- - 강낭콩(흰 완두콩을 포함한다)[파세러스 불가리스(Phaseolus vulgaris)]		
703	0713.33.10	- - - 파종에 적합한 것	0%	E0
704	0713.33.90	- - - 기타	5%	E10
	0713.34	- - 밤바라콩[비그나 서브터라니아(Vigna subterranea)·보안드제이아 서브터라니아(Voandzeia subterranea)]		
705	0713.34.10	- - - 파종에 적합한 것	0%	E0
706	0713.34.90	- - - 기타	5%	E10
	0713.35	- - 동부콩[비그나 운구이쿨라타(Vigna unguiculata)]		
707	0713.35.10	- - - 파종에 적합한 것	0%	E0
708	0713.35.90	- - - 기타	5%	E0
	0713.39	- - 기타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709	0713.39.10	- - - 파종에 적합한 것	0%	E0
710	0713.39.90	- - - 기타	5%	E0
	0713.40	- 렌즈콩		
711	0713.40.10	- - 파종에 적합한 것	0%	E0
712	0713.40.90	- - 기타	5%	E0
	0713.50	- 누에콩[비시아 파바 변종 메이저(Vicia faba var. major)]과 말먹이용 누에콩[비시아 파바 변종 에퀴나(Vicia faba var. equina)·비시아 파바 변종 마이너(Vicia faba var. minor)]		
713	0713.50.10	- - 파종에 적합한 것	0%	E0
714	0713.50.90	- - 기타	0%	E0
	0713.60	- 비둘기콩[카자누스 카잔(Cajanus cajan)]		
715	0713.60.10	- - 파종에 적합한 것	0%	E0
716	0713.60.90	- - 기타	0%	E0
	0713.90	- 기타		
717	0713.90.10	- - 파종에 적합한 것	0%	E0
718	0713.90.90	- - 기타	0%	E0
	07.14	매니옥(manioc)·칡뿌리·살렙(salep)·돼지감자(Jerusalem artichoke)·고구마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분이나 이눌린(inulin)을 다량 함유한 뿌리·괴경(塊莖)[자른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 냉장·냉동한 것,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사고야자(sago)의 심(pith)		
	0714.10	- 매니옥(manioc)[카사바(cassava)]		
		- - 절단한 것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 것		
719	0714.10.11	- - - 건조한 칩	5%	E10
720	0714.10.19	- - - 기타	5%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 - 기타		
721	0714.10.91	- - - 냉동한 것	5%	E0
722	0714.10.99	- - - 기타	5%	E0
	0714.20	- 고구마		
723	0714.20.10	- - 냉동한 것	5%	E0
724	0714.20.90	- - 기타	5%	E0
	0714.30	- 얌[디오스코레아(Dioscorea)종]		
725	0714.30.10	- - 냉동한 것	5%	E10
726	0714.30.90	- - 기타	5%	E10
	0714.40	- 토란[콜로카시아(Colocasia)종]		
727	0714.40.10	- - 냉동한 것	5%	E0
728	0714.40.90	- - 기타	5%	E0
	0714.50	- 아메리카 토란[크산토소마(Xanthosoma)종]		
729	0714.50.10	- - 냉동한 것	5%	E10
730	0714.50.90	- - 기타	5%	E10
	0714.90	- 기타		
		- - 사고야자의 심(pith)		
731	0714.90.11	- - - 냉동한 것	5%	E10
732	0714.90.19	- - - 기타	5%	E10
		- - 기타		
733	0714.90.91	- - - 냉동한 것	5%	E10
734	0714.90.99	- - - 기타	5%	E10
	08.01	코코넛·브라질너트·캐슈너트(cashew nut)(신선한 것이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에 상관없다)		
		- 코코넛		
735	0801.11.00	- - 말린 것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736	0801.12.00	- - 내피[내과피(內果皮)]를 벗기지 않은 것	0%	E0
	0801.19	- - 기타		
737	0801.19.10	- - - 어린 코코넛	0%	E0
738	0801.19.90	- - - 기타	0%	E0
		- 브라질너트		
739	0801.21.00	- -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0%	E0
740	0801.22.00	- - 껍데기를 벗긴 것	0%	E0
		- 캐슈너트(cashew nut)		
741	0801.31.00	- -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5%	E0
742	0801.32.00	- - 껍데기를 벗긴 것	5%	E10
	08.02	**그 밖의 견과류(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에 상관없다)**		
		- 아몬드		
743	0802.11.00	- -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0%	E0
744	0802.12.00	- - 껍데기를 벗긴 것	0%	E0
		- 헤즐너트(hazelnut)나 필버트(filbert)[코리루스(Corylus)종]		
745	0802.21.00	- -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0%	E0
746	0802.22.00	- - 껍데기를 벗긴 것	0%	E0
		- 호두		
747	0802.31.00	- -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5%	E0
748	0802.32.00	- - 껍데기를 벗긴 것	5%	E0
		- 밤[카스타네아(Castanea)종]		
749	0802.41.00	- -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5%	E0
750	0802.42.00	- - 껍데기를 벗긴 것	5%	E0
		- 피스타치오(pistachio)		
751	0802.51.00	- -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752	0802.52.00	- - 껍데기를 벗긴 것	0%	E0
		- 마카다미아 너트(macadamia nut)		
753	0802.61.00	- -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0%	E0
754	0802.62.00	- - 껍데기를 벗긴 것	0%	E0
755	0802.70.00	- 콜라 너트(kola nut)[콜라(Cola)종]	0%	E0
756	0802.80.00	- 빈랑자(areca nut)	0%	E0
757	0802.90.00	- 기타	5%	E0
	08.03	바나나[플랜틴(plantain)을 포함하며,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758	0803.10.00	- 플랜틴(plantain)	5%	E0
	0803.90	- 기타		
759	0803.90.10	- - 레이디핑거 바나나(Lady's finger banana)	5%	E0
760	0803.90.90	- - 기타	5%	E0
	08.04	대추야자·무화과·파인애플·아보카도(avocado)·구아바(guava)·망고(mango)·망고스틴(mangosteen)(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761	0804.10.00	- 대추야자	5%	E0
762	0804.20.00	- 무화과	0%	E0
763	0804.30.00	- 파인애플	5%	E7
764	0804.40.00	- 아보카도(avocado)	0%	E0
	0804.50	- 구아바(guava)·망고(mango)·망고스틴(mangosteen)		
765	0804.50.10	- - 구아바(guava)	5%	E7
766	0804.50.20	- - 망고(mango)	20%	E20
767	0804.50.30	- - 망고스틴(mangosteen)	5%	E0
	08.05	감귤류의 과실(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5.10	- 오렌지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768	0805.10.10	- - 신선한 것	5%	E20
769	0805.10.20	- - 건조한 것	5%	E7
		- 만다린(mandarins)[탄제린(tangerines)과 세트수머(satsumas)를 포함한다], 클레멘타인(clementines), 윌킹(wilkings)과 이와 유사한 감귤류 잡종		
770	0805.21.00	- - 만다린(mandarins)[탄제린(tangerines)·세트수머(satsumas)를 포함한다]	5%	EX
771	0805.22.00	- - 클레멘타인(clementine)	5%	EX
772	0805.29.00	- - 기타	5%	EX
773	0805.40.00	- 그레이프프루트(grapefruit)[포멜로(pomelos)를 포함한다]	0%	E0
	0805.50	- 레몬[시트러스 리몬(Citrus limon)·시트러스 리머늄(Citrus limonum)], 라임(lime)[시트러스 오란티폴리아(Citrus aurantifolia)·시트러스 라티폴리아(Citrus latifolia)]		
774	0805.50.10	- - 레몬[시트러스 리몬(Citrus limon)·시트러스 리머늄(Citrus limonum)]	5%	E7
775	0805.50.20	- - 라임(lime)[시트러스 오란티폴리아(Citrus aurantifolia)·시트러스 라티폴리아(Citrus latifolia)]	5%	E7
776	0805.90.00	- 기타	5%	E0
	08.06	**포도(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777	0806.10.00	- 신선한 것	5%	E0
778	0806.20.00	- 건조한 것	5%	E0
	08.07	**멜론(수박을 포함한다)과 포포(papaw)[파파야(papaya)](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 멜론(수박을 포함한다)		
779	0807.11.00	- - 수박	0%	E0
780	0807.19.00	- - 기타	5%	E0
781	0807.20.00	- 포포(papaw)[파파야(papaya)]	5%	E1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08.08	사과・배・마르멜로(quince)(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782	0808.10.00	- 사과	5%	E0
783	0808.30.00	- 배	5%	E0
784	0808.40.00	- 마르멜로(quince)	0%	E0
	08.09	살구・체리・복숭아[넥터린(nectarine)을 포함한다]・자두・슬로(sloe)(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785	0809.10.00	- 살구	0%	E0
		- 체리		
786	0809.21.00	- - 신 체리[프루너스 체라서스(Prunus cerasus)]	5%	E0
787	0809.29.00	- - 기타	5%	E0
788	0809.30.00	- 복숭아[넥터린(nectarine)을 포함한다]	5%	E0
	0809.40	- 자두와 슬로(sloe)		
789	0809.40.10	- - 자두	0%	E0
790	0809.40.20	- - 슬로(sloe)	5%	E0
	08.10	그 밖의 과실(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791	0810.10.00	- 초본류 딸기	5%	E3
792	0810.20.00	- 나무딸기・검은나무딸기・오디 및 로간베리(loganberry)	0%	E0
793	0810.30.00	- 흑색・백색 또는 적색의 커런트(currant)와 구스베리(gooseberry)	0%	E0
794	0810.40.00	- 크랜베리(cranberry)・빌베리(bilberry)와 그 밖의 박시니엄(Vaccinium)속의 과실	0%	E0
795	0810.50.00	- 키위프루트(kiwifruit)	5%	E0
796	0810.60.00	- 두리안(durian)	5%	E0
797	0810.70.00	- 감	5%	E0
	0810.90	- 기타		
798	0810.90.10	- - 용안(longans), 마타쿠칭(mata kucing)	5%	E7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799	0810.90.20	- - 리치(lychees)	5%	E7
800	0810.90.30	- - 람부탄(rambutan)	5%	E0
801	0810.90.40	- - 랑삿(langsat)[란조네스(Lanzones)]	5%	E0
802	0810.90.50	- - 잭프루트(jackfruit)[쳄페닥(Cempedak)과 낭까(Nangka)를 포함한다]	5%	E0
803	0810.90.60	- - 타마린드(tamarinds)	5%	E0
804	0810.90.70	- - 스타프루트(starfruit)	5%	E0
		- - 기타		
805	0810.90.91	- - - 살락(salacca)[스네이크 프루트(snake fruit)]	5%	E0
806	0810.90.92	- - - 용과(dragon fruit)	5%	E7
807	0810.90.93	- - - 사포딜라(sapodilla)[치쿠 프루트(ciku fruit)]	5%	E0
808	0810.90.94	- - - 석류[푸니카(Punica)종], 사워솝과 스위트솝[안노나(Annona)종], 벨 프루트(bell fruit)[시지지움(Syzygium)종·에우게니아(Eugenia)종], 마프랑[보우에아(Bouea)종], 패션 프루트(passion fruit)[패시플로라(Passiflora)종], 코튼 프루트[산도리컴(Sandoricum)종], 대추[지지푸스(Ziziphus)종], 탬포이나 람바이[바카우레아(Baccaurea)종]	5%	E0
809	0810.90.99	- - - 기타	5%	E0
	08.11	**냉동 과실과 냉동 견과류(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찐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810	0811.10.00	- 초본류 딸기	5%	E0
811	0811.20.00	- 나무딸기, 검은나무딸기, 오디, 로간베리(loganberry), 흑색·백색 또는 적색의 커런트(currant) 및 구스베리(gooseberry)	0%	E0
812	0811.90.00	- 기타	5%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08.12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예: 이산화유황가스·염수·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한 과실과 견과류(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13	0812.10.00	- 체리	5%	E0
	0812.90	- 기타		
814	0812.90.10	- - 초본류 딸기	5%	E7
815	0812.90.90	- - 기타	0%	E0
	08.13	건조한 과실(제 0801 호부터 제 0806 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 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816	0813.10.00	- 살구	0%	E0
817	0813.20.00	- 프룬(prune)	0%	E0
818	0813.30.00	- 사과	5%	E0
	0813.40	- 그 밖의 과실		
819	0813.40.10	- - 용안(longans)	5%	E0
820	0813.40.20	- - 타마린드(tamarinds)	5%	E0
821	0813.40.90	- - 기타	5%	E0
	0813.50	- 이 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822	0813.50.10	- - 전체 중량에서 캐슈너트(cashew nut)나 브라질너트(Brazil nuts)가 차지하는 중량이 우세한 것	5%	E0
823	0813.50.20	- - 전체 중량에서 그 밖의 견과류가 차지하는 중량이 우세한 것	5%	E0
824	0813.50.30	- - 전체 중량에서 대추야자가 차지하는 중량이 우세한 것	5%	E0
825	0813.50.40	- - 전체 중량에서 아보카도(avocado)나 오렌지나 만다린(mandarins)[탄제린(tangerines)과 세트수머(satsumas)를 포함한다]이 차지하는 중량이 우세한 것	5%	E0
826	0813.50.90	- - 기타	5%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27	0814.00.00	감귤류의 껍질이나 멜론(수박을 포함한다)의 껍질(신선한 것, 냉동한 것, 건조한 것 또는 염수·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5%	E0
	09.01	커피(볶았는지, 카페인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 커피를 함유한 커피 대용물(커피의 포함비율은 상관없다)		
		- 커피(볶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901.11	- -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828	0901.11.10	- - - 아라비카(Arabica)종 더블유·아이·비(WIB) 또는 로부스타(Robusta)종 오·아이·비(OIB)	0%	E0
829	0901.11.90	- - - 기타	0%	E0
	0901.12	- - 카페인을 제거한 것		
830	0901.12.10	- - - 아라비카(Arabica)종 더블유·아이·비(WIB) 또는 로부스타(Robusta)종 오·아이·비(OIB)	0%	E0
831	0901.12.90	- - - 기타	0%	E0
		- 커피(볶은 것으로 한정한다)		
	0901.21	- -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832	0901.21.10	- - - 잘게 부수지 않은 것	0%	E0
833	0901.21.20	- - - 잘게 부순 것	0%	E0
	0901.22	- - 카페인을 제거한 것		
834	0901.22.10	- - - 잘게 부수지 않은 것	0%	E0
835	0901.22.20	- - - 잘게 부순 것	0%	E0
	0901.90	- 기타		
836	0901.90.10	- -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	0%	E0
837	0901.90.20	- - 커피를 함유한 커피 대용물	0%	E0
	09.02	차류(맛과 향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0902.10	- 녹차(발효하지 않은 것으로서 내용물의 무게가 3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		
838	0902.10.10	- - 잎	5%	E15
839	0902.10.90	- - 기타	5%	E10
	0902.20	- 그 밖의 녹차(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40	0902.20.10	- - 잎	5%	E15
841	0902.20.90	- - 기타	5%	E15
	0902.30	- 홍차(발효차)와 부분 발효차(내용물의 무게가 3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		
842	0902.30.10	- - 잎	0%	E0
843	0902.30.90	- - 기타	0%	E0
	0902.40	- 그 밖의 홍차(발효차)와 그 밖의 부분 발효차		
844	0902.40.10	- - 잎	0%	E0
845	0902.40.90	- - 기타	0%	E0
846	0903.00.00	마테(maté)	0%	E0
	09.04	후추[파이퍼(Piper)속의 것으로 한정한다], 건조하거나 부수거나 잘게 부순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		
		- 후추		
	0904.11	-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847	0904.11.10	- - - 백색	0%	E0
848	0904.11.20	- - - 흑색	0%	E0
849	0904.11.90	- - - 기타	0%	E0
	0904.12	-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850	0904.12.10	- - - 백색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51	0904.12.20	- - - 흑색	0%	E0
852	0904.12.90	- - - 기타	0%	E0
		-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		
	0904.21	- - 건조한 것(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853	0904.21.10	- - -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	5%	E20
854	0904.21.90	- - - 기타	5%	E10
	0904.22	-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855	0904.22.10	- - -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	5%	E15
856	0904.22.90	- - - 기타	5%	E15
	09.05	**바닐라**		
857	0905.10.00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0%	E0
858	0905.20.00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0%	E0
	09.06	**계피와 계피나무의 꽃**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859	0906.11.00	- - 계피[신나모멈 제이나이쿰 블룸(Cinnamomum zeylanicum Blume)]	0%	E0
860	0906.19.00	- - 기타	0%	E0
861	0906.20.00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0%	E0
	09.07	**정향(丁香)(과실・꽃・꽃대로 한정한다)**		
862	0907.10.00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0%	E0
863	0907.20.00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0%	E0
	09.08	**육두구(肉荳蔻)・메이스(mace)・소두구(小荳蔻)**		
		- 육두구(肉荳)		
864	0908.11.00	-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0%	E0
865	0908.12.00	-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0%	E0
		- 메이스(mace)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66	0908.21.00	-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0%	E0
867	0908.22.00	-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0%	E0
		- 소두구(小荳)		
868	0908.31.00	-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0%	E0
869	0908.32.00	-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0%	E0
	09.09	아니스(anise)·대회향(大茴香)·회향(茴香)·코리앤더(coriander)·커민(cumin)·캐러웨이(caraway)의 씨와 주니퍼(juniper)의 열매		
		- 코리앤더(coriander)의 씨		
870	0909.21.00	-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0%	E0
871	0909.22.00	-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0%	E0
		- 커민(cumin)의 씨		
872	0909.31.00	-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0%	E0
873	0909.32.00	-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0%	E0
		- 아니스(anise)·대회향(大茴香)·캐러웨이(caraway) 또는 회향(茴香)의 씨, 주니퍼(juniper)의 열매		
	0909.61	-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874	0909.61.10	- - - 아니스(anise)의 것	0%	E0
875	0909.61.20	- - - 대회향(大茴香)의 것	0%	E0
876	0909.61.30	- - - 캐러웨이(caraway)의 것	0%	E0
877	0909.61.90	- - - 기타	0%	E0
	0909.62	-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878	0909.62.10	- - - 아니스(anise)의 것	0%	E0
879	0909.62.20	- - - 대회향(大茴香)의 것	0%	E0
880	0909.62.30	- - - 캐러웨이(caraway)의 것	0%	E0
881	0909.62.90	- - - 기타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09.10	**생강・사프란(saffron)・심황[강황(薑黃)]・타임(thyme)・월계수 잎・카레와 그 밖의 향신료**		
		- 생강		
882	0910.11.00	-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5%	E15
883	0910.12.00	-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5%	E10
884	0910.20.00	- 사프란(saffron)	0%	E0
885	0910.30.00	- 심황[강황(薑黃)]	0%	E0
		- 그 밖의 향신료		
	0910.91	- - 혼합물(제9류의 주 제1호나목의 것으로 한정한다)		
886	0910.91.10	- - - 카레	0%	E0
887	0910.91.90	- - - 기타	0%	E0
	0910.99	- - 기타		
888	0910.99.10	- - - 타임, 월계수의 잎	0%	E0
889	0910.99.90	- - - 기타	0%	E0
	10.01	**밀과 메슬린(meslin)**		
		- 듀럼종 밀(Durum wheat)		
890	1001.11.00	- - 종자	0%	E0
891	1001.19.00	- - 기타	0%	E0
		- 기타		
892	1001.91.00	- - 종자	0%	E0
	1001.99	- - 기타		
		- - - 식용에 적합한 것		
893	1001.99.11	- - - - 메슬린(meslin)	0%	E0
894	1001.99.12	- - - - 껍질 없는 밀알	0%	E0
895	1001.99.19	- - - - 기타	0%	E0
		- - - 기타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96	1001.99.91	- - - - 메슬린(meslin)	0%	E0
897	1001.99.99	- - - - 기타	0%	E0
	10.02	**호밀**		
898	1002.10.00	- 종자	0%	E0
899	1002.90.00	- 기타	0%	E0
	10.03	**보리**		
900	1003.10.00	- 종자	0%	E0
901	1003.90.00	- 기타	0%	E0
	10.04	**귀리**		
902	1004.10.00	- 종자	0%	E0
903	1004.90.00	- 기타	0%	E0
	10.05	**옥수수**		
904	1005.10.00	- 종자	0%	E0
	1005.90	- 기타		
905	1005.90.10	- - 팝콘	5%	E10
906	1005.90.90	- - 기타	3%	EX
	10.06	**쌀**		
	1006.10	- 벼		
907	1006.10.10	- - 파종에 적합한 것	Rp 450/Kg	EX
908	1006.10.90	- - 기타	Rp 450/Kg	EX
	1006.20	- 현미		
909	1006.20.10	- - 홈 말리(Hom Mali) 쌀	Rp 450/Kg	EX
910	1006.20.90	- - 기타	Rp 450/Kg	EX
	1006.30	- 정미(연마·광택 여부에 상관없다)		
911	1006.30.30	- - 찹쌀	Rp	EX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450/Kg	
912	1006.30.40	- - 홈 말리(Hom Mali) 쌀	Rp 450/Kg	EX
		- - 기타		
913	1006.30.91	- - - 반숙미	Rp 450/Kg	EX
914	1006.30.99	- - - 기타	Rp 450/Kg	EX
	1006.40	- 쇄미(broken rice)		
915	1006.40.10	- - 사료용의 것	Rp 450/Kg	EX
916	1006.40.90	- - 기타	Rp 450/Kg	EX
	10.07	**수수**		
917	1007.10.00	- 종자	0%	E0
918	1007.90.00	- 기타	0%	E0
	10.08	**메밀·밀리트(millet)·카나리시드(canary seed)와 그 밖의 곡물**		
919	1008.10.00	- 메밀	5%	E0
		- 밀리트(millet)		
920	1008.21.00	- - 종자	0%	E0
921	1008.29.00	- - 기타	0%	E0
922	1008.30.00	- 카나리시드(canary seed)	0%	E0
923	1008.40.00	- 포니오(Fonio)[디지타리아(Digitaria)종]	5%	E0
924	1008.50.00	- 퀴노아(quinoa)[체노포디움 퀴노아(Chenopodium quinoa)]	5%	E0
925	1008.60.00	- 라이밀(triticale)	5%	E0
926	1008.90.00	- 그 밖의 곡물	5%	E0
	11.01	**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		
		- 밀가루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927	1101.00.11	- - 강화된 것	0%	E0
928	1101.00.19	- - 기타	0%	E0
929	1101.00.20	- 메슬린(meslin) 가루	0%	E0
	11.02	**곡물의 고운 가루[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는 제외한다]**		
930	1102.20.00	- 옥수수가루	0%	E0
	1102.90	- 기타		
931	1102.90.10	- - 쌀가루	Rp 450/Kg	EX
932	1102.90.20	- - 호밀가루	0%	E0
933	1102.90.90	- - 기타	5%	E0
	11.03	**곡물의 부순 알곡·거친 가루·펠릿(pellet)**		
		-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		
934	1103.11.00	- - 밀로 만든 것	5%	EX
935	1103.13.00	- - 옥수수로 만든 것	5%	EX
	1103.19	- - 그 밖의 곡물로 만든 것		
936	1103.19.10	- - - 메슬린(meslin)의 것	0%	E0
937	1103.19.20	- - - 쌀로 만든 것	5%	EX
938	1103.19.90	- - - 기타	5%	EX
939	1103.20.00	- 펠릿(pellet)	5%	E0
	11.04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제 1006 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잘게 부순 것**		
		- 압착한 것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940	1104.12.00	- - 귀리로 만든 것	5%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1104.19	- - 그 밖의 곡물로 만든 것		
941	1104.19.10	- - - 옥수수로 만든 것	5%	E10
942	1104.19.90	- - - 기타	5%	E10
		- 그 밖의 가공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 또는 거칠게 빻은 것)		
943	1104.22.00	- - 귀리로 만든 것	5%	E0
944	1104.23.00	- - 옥수수로 만든 것	5%	E10
	1104.29	- - 그 밖의 곡물로 만든 것		
945	1104.29.20	- - - 보리로 만든 것	5%	E0
946	1104.29.90	- - - 기타	5%	E0
947	1104.30.00	- 곡물의 씨눈[원래 모양인 것·압축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또는 잘게 부순 것으로 한정한다]	5%	E0
	11.05	**감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플레이크(flake)·알갱이·펠릿(pellet)**		
948	1105.10.00	- 고운 가루·거친 가루 및 가루	5%	E0
949	1105.20.00	- 플레이크(flake)·알갱이 및 펠릿(pellet)	5%	EX
	11.06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제 0713 호의 것), 사고(sago)·뿌리나 괴경(塊莖)(제 0714 호의 것), 제 8 류 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		
950	1106.10.00	-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것(제 0713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0%	E0
	1106.20	- 사고(sago)·뿌리나 괴경(塊莖)의 것(제 0714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951	1106.20.10	- - 매니옥(manioc)[카사바(cassava)]의 것	5%	EX
952	1106.20.20	- - 사고의 것	5%	E0
953	1106.20.30	- - 고구마의 것[이포메아 바타타스(Ipomoea batatas)]	5%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954	1106.20.90	- - 기타	5%	E0
955	1106.30.00	- 제8류 물품의 것	5%	EX
	11.07	**맥아(볶은 것인지에 상관없다)**		
956	1107.10.00	- 볶지 않은 것	5%	E0
957	1107.20.00	- 볶은 것	0%	E0
	11.08	**전분과 이눌린(inulin)**		
		- 전분		
958	1108.11.00	- - 밀로 만든 것	5%	E0
959	1108.12.00	- - 옥수수로 만든 것	10%	EX
960	1108.13.00	- - 감자로 만든 것	5%	E10
961	1108.14.00	- - 매니옥(manioc)[카사바(cassava)]으로 만든 것	10%	E20
	1108.19	- - 그 밖의 전분		
962	1108.19.10	- - - 사고(sago)	5%	E7
963	1108.19.90	- - - 기타	5%	E7
964	1108.20.00	- 이눌린(inulin)	5%	E0
965	**1109.00.00**	**밀의 글루텐(gluten)(건조했는지에 상관없다)**	0%	E0
	12.01	**대두(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966	1201.10.00	- 종자	0%	E0
967	1201.90.00	- 기타	0%	EX
	12.02	**땅콩(볶거나 그 밖의 조리를 한 것은 제외하며, 껍데기를 벗겼는지,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968	1202.30.00	- 종자	5%	E10
		- 기타		
969	1202.41.00	- -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5%	E10
970	1202.42.00	- - 껍데기를 벗긴 것(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5%	E1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971	1203.00.00	코프라(copra)	0%	E0
972	1204.00.00	아마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0%	E0
	12.05	유채(rape, colza)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973	1205.10.00	- 저에루크산(low erucic acid) 유채(rape, colza)의 씨	0%	E0
974	1205.90.00	- 기타	0%	E0
975	1206.00.00	해바라기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0%	E0
	12.07	그 밖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07.10	- 팜너트(palm nut)와 핵(核)		
976	1207.10.10	- - 팜 너트(palm nut)(파종이나 재배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	E0
977	1207.10.30	- - 팜핵(核)	0%	E0
978	1207.10.90	- - 기타	0%	E0
		- 목화씨		
979	1207.21.00	- - 종자	0%	E0
980	1207.29.00	- - 기타	0%	E0
981	1207.30.00	- 피마자	0%	E0
	1207.40	- 참깨		
982	1207.40.10	- - 식용인 것	5%	E0
983	1207.40.90	- - 기타	5%	E0
984	1207.50.00	- 겨자씨	0%	E0
985	1207.60.00	- 잇꽃[카르타무스 틴크토리우스(Carthamus tinctorius)] 종자	0%	E0
986	1207.70.00	- 멜론 종자	0%	E0
		- 기타		
987	1207.91.00	- - 양귀비씨	0%	E0
	1207.99	- - 기타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988	1207.99.40	- - - 일리프 종자(Illipe nuts)	0%	E0
989	1207.99.50	- - - 신선한 팜유용 과실다발	5%	E0
990	1207.99.90	- - - 기타	5%	E0
	12.08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의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겨자의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는 제외한다)**		
991	1208.10.00	- 대두로 만든 것	0%	E0
992	1208.90.00	- 기타	0%	E0
	12.09	**파종용 종자·과실·포자(胞子)**		
993	1209.10.00	- 사탕무 종자	0%	E0
		- 사료용 식물의 종자		
994	1209.21.00	- - 루우산(lucerne)(알팔파) 종자	0%	E0
995	1209.22.00	- - 클로버(clover)[트리폴리엄(Trifolium)종] 종자	0%	E0
996	1209.23.00	- - 페스큐(fescue) 종자	0%	E0
997	1209.24.00	- - 켄터키블루그래스(kentucky blue grass)[포아프래텐시스 엘(Poa pratensis L.)] 종자	0%	E0
998	1209.25.00	- - 라이그래스(rye grass) 종자[로리엄 멀티플로럼 램(Lolium multiflorum Lam)·로리엄 페레네 엘(Lolium perenne L.)]	0%	E0
	1209.29	- - 기타		
999	1209.29.10	- - - 티머시 그라스(timothy grass)[플레움프라텐스(Phleumpratense)] 종자	0%	E0
1000	1209.29.20	- - - 그 밖의 사탕무 종자	0%	E0
1001	1209.29.90	- - - 기타	0%	E0
1002	1209.30.00	- 화초용 초본(草本)식물의 종자	0%	E0
		- 기타		
	1209.91	- - 채소 종자		
1003	1209.91.10	- - - 양파 종자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1004	1209.91.90	- - - 기타	0%	E0
	1209.99	- - 기타		
1005	1209.99.10	- - - 고무 나무 종자, 케나프(kenaf) 종자	0%	E0
1006	1209.99.90	- - - 기타	0%	E0
	12.10	**홉(hop)[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나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루플린(lupulin)**		
1007	1210.10.00	- 홉(hop)[잘게 부순 것 또는 가루모양이나 펠릿(pellet) 모양은 제외한다]	0%	E0
1008	1210.20.00	- 홉(hop)[잘게 부순 것·가루모양이나 펠릿(pellet) 모양으로 한정한다], 루플린(lupulin)	0%	E0
	12.11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에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1009	1211.20.00	- 인삼	5%	EX
1010	1211.30.00	- 코카잎	0%	E0
1011	1211.40.00	- 양귀비줄기	0%	E0
1012	1211.50.00	- 마황(麻黃)	0%	E0
	1211.90	- 기타		
		- - 주로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것		
1013	1211.90.11	- - - 대마(절단하거나 잘게 부수거나 가루모양으로 한정한다)	5%	EX
1014	1211.90.12	- - - 대마(그 밖의 모양으로 한정한다)	5%	EX
1015	1211.90.13	- - - 로우웰피아 서펜티나(rauwolfia serpentina) 뿌리	5%	EX
1016	1211.90.15	- - - 감초	5%	EX
1017	1211.90.16	- - - 기타(절단하거나 잘게 부수거나 가루모양으로 한정한다)	5%	EX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1018	1211.90.19	- - - 기타	5%	EX
		- - 기타		
1019	1211.90.91	- - - 제충국(除蟲菊)(절단하거나 잘게 부수거나 가루 모양으로 한정한다)	5%	EX
1020	1211.90.92	- - - 제충국(除蟲菊)(그 밖의 모양으로 한정한다)	5%	EX
1021	1211.90.94	- - - 백단향(白檀香)나무 칩	5%	EX
1022	1211.90.95	- - - 침향나무[가하루(gaharu)] 칩	5%	EX
1023	1211.90.97	- - - 페르세아속 나무의 껍질(Persea Kurzii Kosterm)	0%	E0
1024	1211.90.98	- - - 기타(절단하거나 잘게 부수거나 가루 모양으로 한정한다)	5%	EX
1025	1211.90.99	- - - 기타	5%	EX
	12.12	**로커스트콩(locust bean)·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藻類)·사탕무와 사탕수수(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核)과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볶지 않은 시코리엄 인티부스 새티범(Cichorium intybus sativum) 변종의 치커리(chicory) 뿌리를 포함한다]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		
		- 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		
	1212.21	- - 식용		
		- - - 건조한 것으로, 잘게 부수지 않은것		
1026	1212.21.11	- - - - 유케마스피노섬(Eucheumaspinosum)	0%	E0
1027	1212.21.12	- - - - 에우케마코토니(Eucheumacottonii)	0%	E0
1028	1212.21.13	- - - - 꼬시래기(Gracilaria) 종	5%	E0
1029	1212.21.14	- - - - 우뭇가사리(Gelidium) 종	5%	E0
1030	1212.21.15	- - - - 사르가슘(Sargassum) 종	5%	E0
1031	1212.21.19	- - - - 기타	5%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1032	1212.21.90	- - - 기타	5%	E0
	1212.29	- - 기타		
		- - - 염색용·유연용·향료용·의료용 또는 살충용·살균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신선한 것·냉장한 것 또는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1033	1212.29.11	- - - - 의료용의 것	0%	E0
1034	1212.29.19	- - - - 기타	5%	E10
1035	1212.29.20	- - - 기타(신선한 것·냉장한 것 또는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5%	E10
1036	1212.29.30	- - - 기타(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	E0
		- 기타		
1037	1212.91.00	- - 사탕무	0%	E0
1038	1212.92.00	- - 로커스트콩(locust bean)(캐롭)	0%	E0
	1212.93	- - 사탕수수		
1039	1212.93.10	- - - 재배용에 적합한 것	0%	E0
1040	1212.93.90	- - - 기타	0%	E0
1041	1212.94.00	- - 치커리(chicory) 뿌리	0%	E0
	1212.99	- - 기타		
1042	1212.99.10	- - - 살구, 복숭아[넥터린(nectarine)을 포함한다] 또는 자두 과실의 핵(核)	0%	E0
1043	1212.99.90	- - - 기타	0%	E0
1044	1213.00.00	곡물의 짚과 껍질[조제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수거나 압착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0%	E0
	12.14	스위드(swede)·맹골드(mangold)·사료용 뿌리채소류(根菜類)·건초·루우산(lucerne)(알팔파)·클로버(clover)·샌포인(sainfoin)·사료용 케일(kale)·루핀(lupine)·베치(vetch)와 이와 유사한 사료용 식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다]		
1045	1214.10.00	- 루우산(lucerne)(알팔파)의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	0%	E0
1046	1214.90.00	- 기타	5%	E0
	13.01	락(lac), 천연 검·수지·검 수지·올레오레진(oleoresin)[예: 발삼(balsam)]		
1047	1301.20.00	- 아라비아검	0%	E0
	1301.90	- 기타		
1048	1301.90.30	- - 대마 수지	3%	E0
1049	1301.90.40	- - 락(lac)	0%	E0
1050	1301.90.90	- - 기타	3%	E0
	13.02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		
		-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1302.11	- - 아편		
1051	1302.11.10	- - - 아편가루	0%	E0
1052	1302.11.90	- - - 기타	0%	E0
1053	1302.12.00	- - 감초로 만든 것	0%	E0
1054	1302.13.00	- - 홉(hop)으로 만든 것	0%	E0
1055	1302.14.00	- - 마황(麻黃)으로 만든 것	5%	E7
	1302.19	- - 기타		
1056	1302.19.20	- - - 대마의 추출물과 틴크제	0%	E0
1057	1302.19.40	- - - 제충국(除蟲菊)이나 로테논(rotenonon)을 포함하는 식물 뿌리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0%	E0
1058	1302.19.50	- - - 일본(이나 중국) 락커(lacquer)(생칠)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1059	1302.19.90	- - - 기타	5%	E7
1060	1302.20.00	- 펙틴질·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0%	E0
		-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		
1061	1302.31.00	- - 한천	3%	EX
1062	1302.32.00	- - 로커스트콩(locust bean)·로커스트콩(locust bean)의 씨나 구아(guar)의 씨로부터 얻은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	0%	E0
	1302.39	- - 기타		
		- - - 카라기난(carrageenan)		
1063	1302.39.11	- - - - 가루[반정제(semi-refined)된 것으로 한정한다]	5%	EX
1064	1302.39.12	- - - - 가루(정제된 것으로 한정한다)	5%	EX
1065	1302.39.13	- - - - 알칼리 처리한 카라기난(carrageenan) 칩[(ATCC)]	5%	EX
1066	1302.39.19	- - - - 기타	5%	EX
1067	1302.39.90	- - - 기타	0%	E0
	14.01	**편조물(編組物)에 주로 사용되는 식물성 재료[예: 대나무, 등나무, 갈대, 골풀, 버드나무 가지(osier), 라피아(raffia), 청정·표백·염색한 곡물의 짚과 라임나무(lime) 껍질]**		
1068	1401.10.00	- 대나무	5%	E0
	1401.20	- 등나무		
1069	1401.20.10	- - 전체인 것	0%	E0
		- - 분할코어(Splitcore)		
1070	1401.20.21	- - - 지름이 12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E0
1071	1401.20.29	- - - 기타	0%	E0
1072	1401.20.30	- - 스킨(skin)을 나눈 것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1073	1401.20.90	- - 기타	0%	E0
1074	1401.90.00	- 기타	0%	E0
	14.04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		
1075	1404.20.00	- 면(綿) 린터(linter)	0%	E0
	1404.90	- 기타		
1076	1404.90.20	- - 주로 유연용이나 염색용의 것	0%	E0
1077	1404.90.30	- - 케이폭(kapok)	0%	E0
		- - 기타		
1078	1404.90.91	- - - 팜핵(核)의 껍데기	0%	E0
1079	1404.90.92	- - - 속이 빈 팜유용 과실다발	0%	E0
1080	1404.90.99	- - - 기타	0%	E0
	15.01	**돼지의 지방[라드(lard)를 포함한다]과 가금(家禽)의 지방(제 0209 호나 제 1503 호의 것은 제외한다)**		
1081	1501.10.00	- 라드(lard)	0%	E0
1082	1501.20.00	- 그 밖의 돼지의 지방	0%	E0
1083	1501.90.00	- 기타	0%	E0
	15.02	**소・면양・산양의 지방(제 1503 호의 것은 제외한다)**		
1084	1502.10.00	- 탤로우(tallow)	0%	E0
	1502.90	- 기타		
1085	1502.90.10	- - 식용인 것	0%	E0
1086	1502.90.90	- - 기타	0%	E0
	15.03	**라드스테아린(lard stearin), 라드유(lard oil), 올레오스테아린(oleostearin), 올레오유(oleo-oil), 탤로우유(tallow oil)로서 유화・혼합 또는 그 밖의 조제를 하지 않은 것**		
1087	1503.00.10	- 라드스테아린(lard stearin)이나 올레오스테아린(oleostearin)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1088	1503.00.90	- 기타	0%	E0
	15.04	**어류나 바다에서 사는 포유동물의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04.10	- 어류의 간유(肝油)와 그 분획물		
1089	1504.10.20	- - 고체 분획물	0%	E0
1090	1504.10.90	- - 기타	0%	E0
	1504.20	- 어류의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간유(肝油)는 제외한다]		
1091	1504.20.10	- - 고체 분획물	0%	E0
1092	1504.20.90	- - 기타	0%	E0
1093	1504.30.00	- 바다에서 사는 포유동물의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	0%	E0
	15.05	**울그리스(wool grease)와 이것에서 얻은 지방성 물질[라놀린(lanolin)을 포함한다]**		
1094	1505.00.10	- 라놀린(lanolin)	0%	E0
1095	1505.00.90	- 기타	0%	E0
1096	**1506.00.00**	**그 밖의 동물성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0%	E0
	15.07	**대두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097	1507.10.00	- 조유(粗油)[검(gum)질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0%	E0
	1507.90	- 기타		
1098	1507.90.10	- - 정제하지 않은 대두유의 분획물	0%	E0
1099	1507.90.90	- - 기타	0%	E0
	15.08	**땅콩기름과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100	1508.10.00	- 조유(粗油)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1101	1508.90.00	- 기타	0%	E0
	15.09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09.10	- 버진(virgin)		
1102	1509.10.10	- - 순 중량이 30 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0%	E0
1103	1509.10.90	- - 기타	0%	E0
	1509.90	- 기타		
		- - 정제하지 않은 오일의 분획물		
1104	1509.90.11	- - - 순 중량이 30 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0%	E0
1105	1509.90.19	- - - 기타	0%	E0
		- - 기타		
1106	1509.90.91	- - - 순 중량이 30 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0%	E0
1107	1509.90.99	- - - 기타	0%	E0
	15.10	**그 밖의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올리브에서 얻은 것으로서 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하고, 이들의 기름이나 그 분획물이 제 1509 호의 기름이나 그 분획물과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		
1108	1510.00.10	- 조유(粗油)	0%	E0
1109	1510.00.20	- 정제하지 않은 오일의 분획물	0%	E0
1110	1510.00.90	- 기타	0%	E0
	15.11	**팜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111	1511.10.00	- 조유(粗油)	0%	E0
	1511.90	- 기타		
1112	1511.90.20	- - 정제유(精製油)	0%	E0
		- - 정제유의 분획물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 - - 고체 분획물		
1113	1511.90.31	- - - - 30 이상 48 이하의 요오드값을 가진 것	0%	E0
1114	1511.90.32	- - - - 기타	0%	E0
		- - - 액상의 분획물		
1115	1511.90.36	- - - - 순 중량이 25 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0%	E0
1116	1511.90.37	- - - - 기타(55 이상 60 이하의 요오드값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0%	E0
1117	1511.90.39	- - - - 기타	0%	E0
		- - 정제하지 않은 오일의 분획물		
1118	1511.90.41	- - - 고체 분획물	0%	E0
1119	1511.90.42	- - - 기타(순 중량이 25 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	E0
1120	1511.90.49	- - - 기타	0%	E0
	15.12	**해바라기씨유·잇꽃유·목화씨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해바라기씨유 또는 잇꽃유와 그 분획물		
1121	1512.11.00	- - 조유(粗油)	0%	E0
	1512.19	- - 기타		
1122	1512.19.10	- - - 해바라기씨유나 잇꽃유 분획물(정제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E0
1123	1512.19.20	- - - 정제된 것	0%	E0
1124	1512.19.90	- - - 기타	0%	E0
		- 목화씨유와 그 분획물		
1125	1512.21.00	- - 조유(粗油)[고시폴(gossypol)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0%	E0
	1512.29	- - 기타		
1126	1512.29.10	- - - 정제하지 않은 목화씨유의 분획물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1127	1512.29.90	- - - 기타	0%	E0
	15.13	야자[코프라(copra)]유, 팜핵유(palm kernel oil), 바바수유(babassu oil)와 이들의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야자[코프라(copra)]유와 그 분획물		
1128	1513.11.00	- - 조유(粗油)	0%	E0
	1513.19	- - 기타		
1129	1513.19.10	- - - 정제하지 않은 야자유의 분획물	0%	E0
1130	1513.19.90	- - - 기타	0%	E0
		- 팜핵유(palm kernel oil)나 바바수유(babassu oil)와 이들의 분획물		
	1513.21	- - 조유(粗油)		
1131	1513.21.10	- - - 팜핵유(palm kernel oil)	0%	E0
1132	1513.21.90	- - - 기타	0%	E0
	1513.29	- - 기타		
		- - - 팜핵유(palm kernel oil)나 바바수유(babassu oil)의 분획물(정제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133	1513.29.11	- - - - 정제되지 않은 팜핵유(palm kernel oil)의 고체 분획물	0%	E0
1134	1513.29.12	- - - - 정제되지 않은 바바수유(babassu oil)의 고체 분획물	0%	E0
1135	1513.29.13	- - - - 기타[정제되지 않은 팜핵유(palm kernel olein)의 것으로 한정한다]	0%	E0
1136	1513.29.14	- - - - 기타[정제되지 않은 바바수유(babassu oil)의 것으로 한정한다]	0%	E0
		- - - 기타		
1137	1513.29.91	- - - - 팜핵유(palm kernel oil)의 고체 분획물	0%	E0
1138	1513.29.92	- - - - 바바수유(babassu oil)의 고체 분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획물		
1139	1513.29.94	- - - - 팜핵올레인[정제·표백 및 탈취(RBD)한 것으로 한정한다]	0%	E0
1140	1513.29.95	- - - - 팜핵유(palm kernel oil)[정제·표백 및 탈취(RBD)한 것으로 한정한다]	0%	E0
1141	1513.29.96	- - - - 기타[팜핵유(palm kernel oil)의 것으로 한정한다]	0%	E0
1142	1513.29.97	- - - - 기타[바바수유(babassu oil)의 것으로 한정한다]	0%	E0
	15.14	유채유(rape oil, colza oil), 겨자유와 이들의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저에루크산(low erucic acid) 유채유(rape oil, colza oil)와 그 분획물		
1143	1514.11.00	- - 조유(粗油)	0%	E0
	1514.19	- - 기타		
1144	1514.19.10	- - - 정제하지 않은 오일의 분획물	5%	E0
1145	1514.19.20	- - - 정제된 것	5%	E0
1146	1514.19.90	- - - 기타	5%	E0
		- 기타		
	1514.91	- - 조유(粗油)		
1147	1514.91.10	- - - 그 밖의 유채유(rape oil, colza oil)	0%	E0
1148	1514.91.90	- - - 기타	0%	E0
	1514.99	- - 기타		
1149	1514.99.10	- - - 정제하지 않은 오일의 분획물	5%	E0
1150	1514.99.90	- - - 기타	5%	E0
	15.15	그 밖의 비휘발성인 식물성 지방과 기름[호호바유(jojoba oil)를 포함한다]과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 아마씨유와 그 분획물		
1151	1515.11.00	- - 조유(粗油)	0%	E0
1152	1515.19.00	- - 기타	0%	E0
		- 옥수수유와 그 분획물		
1153	1515.21.00	- - 조유(粗油)	0%	E0
	1515.29	- - 기타		
		- - - 정제하지 않은 오일의 분획물		
1154	1515.29.11	- - - - 고체 분획물	0%	E0
1155	1515.29.19	- - - - 기타	0%	E0
		- - - 기타		
1156	1515.29.91	- - - - 고체 분획물	0%	E0
1157	1515.29.99	- - - - 기타	0%	E0
	1515.30	- 피마자유와 그 분획물		
1158	1515.30.10	- - 조유(粗油)	0%	E0
1159	1515.30.90	- - 기타	0%	E0
	1515.50	- 참기름과 그 분획물		
1160	1515.50.10	- - 조유(粗油)	5%	E0
1161	1515.50.20	- - 정제하지 않은 오일의 분획물	5%	E0
1162	1515.50.90	- - 기타	5%	E0
	1515.90	- 기타		
		- - 일리프 오일		
1163	1515.90.11	- - - 조유(粗油)	0%	E0
1164	1515.90.12	- - - 정제하지 않은 오일의 분획물	0%	E0
1165	1515.90.19	- - - 기타	0%	E0
		- - 유동 기름		
1166	1515.90.21	- - - 조유(粗油)	0%	E0
1167	1515.90.22	- - - 정제하지 않은 오일의 분획물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1168	1515.90.29	- - - 기타	0%	E0
		- - 호호바유		
1169	1515.90.31	- - - 조유(粗油)	0%	E0
1170	1515.90.32	- - - 정제하지 않은 오일의 분획물	0%	E0
1171	1515.90.39	- - - 기타	0%	E0
		- - 기타		
1172	1515.90.91	- - - 조유(粗油)	5%	E0
1173	1515.90.92	- - - 정제하지 않은 오일의 분획물	5%	E0
1174	1515.90.99	- - - 기타	5%	E0
	15.16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수소를 첨가한 것, 인터에스텔화한(inter-esterified) 것, 리에스텔화한(re-esterified) 것, 엘라이딘화한(elaidinised) 것으로 한정하며, 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더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16.10	- 동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		
1175	1516.10.20	- - 리에스텔화한(reesterified) 것	0%	E0
1176	1516.10.90	- - 기타	0%	E0
	1516.20	- 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		
		- - 리에스텔화한(re-esterified) 것		
1177	1516.20.11	- - - 대두로 만든 것	0%	E0
1178	1516.20.12	- - - 팜유의 과실의 것[조유(粗油)로 한정한다]	0%	E0
1179	1516.20.13	- - - 팜유의 과실의 것[조유(粗油)는 제외한다]	0%	E0
1180	1516.20.14	- - - 코코넛의 것	0%	E0
1181	1516.20.15	- - - 팜핵의 것[조유(粗油)로 한정한다]	0%	E0
1182	1516.20.16	- - - 팜핵의 것[정제·표백 및 탈취(RBD)된 것으로 한정한다]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1183	1516.20.17	- - - 땅콩으로 만든 것	5%	E0
1184	1516.20.18	- - - 아마씨의 것	5%	E0
1185	1516.20.19	- - - 기타	5%	EX
		- - 수소를 첨가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1186	1516.20.31	- - - 땅콩, 코코넛, 대두로 만든 것	5%	E0
1187	1516.20.32	- - - 아마씨의 것	5%	E0
1188	1516.20.33	- - - 올리브의 것	5%	E0
1189	1516.20.34	- - - 팜유의 과실의 것	0%	E0
1190	1516.20.35	- - - 팜핵의 것	0%	E0
1191	1516.20.39	- - - 기타	5%	E0
		- - 수소를 첨가한 것[그 밖의 모양으로 한정한다]		
1192	1516.20.41	- - - 피마자씨의 것(opal wax)	5%	E0
1193	1516.20.42	- - - 코코넛의 것	5%	E0
1194	1516.20.43	- - - 땅콩으로 만든 것	5%	E0
1195	1516.20.44	- - - 아마씨의 것	5%	E0
1196	1516.20.45	- - - 올리브의 것	5%	E0
1197	1516.20.46	- - - 팜유의 과실의 것	5%	E0
1198	1516.20.47	- - - 팜핵의 것	5%	EX
1199	1516.20.48	- - - 대두로 만든 것	0%	E0
1200	1516.20.49	- - - 기타	5%	EX
		- - 인터에스텔화한(inter-esterified) 것		
1201	1516.20.51	- - - 아마씨의 것	5%	E0
1202	1516.20.52	- - - 올리브의 것	5%	E0
1203	1516.20.53	- - - 대두로 만든 것	0%	E0
1204	1516.20.54	- - - 땅콩, 팜유, 코코넛으로 만든 것	5%	E0
1205	1516.20.59	- - - 기타	5%	EX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 - 기타[팜스테아린(48 이하의 요오드값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1206	1516.20.61	- - - 정제하지 않은 것	0%	E0
1207	1516.20.62	- - - 정제·표백 및 탈취(RBD)된 것	0%	E0
1208	1516.20.69	- - - 기타	0%	E0
		- - 기타		
1209	1516.20.91	- - - 팜스테아린(48 초과의 요오드값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5%	EX
1210	1516.20.92	- - - 아마씨의 것	5%	E0
1211	1516.20.93	- - - 올리브의 것	5%	E0
1212	1516.20.94	- - - 대두로 만든 것	0%	E0
1213	1516.20.96	- - - 정제·표백 및 탈취(RBD)된 팜 핵 스테아린(palm kerel stearin)	0%	E0
1214	1516.20.98	- - - 땅콩, 팜유, 코코넛으로 만든 것	5%	E0
1215	1516.20.99	- - - 기타	5%	EX
	15.17	**마가린, 동물성·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제 1516 호의 식용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들의 분획물은 제외한다)**		
	1517.10	- 마가린(액상 마가린은 제외한다)		
1216	1517.10.10	- - 밀폐용기에 넣은 것(소매용으로 한정한다)	0%	E0
1217	1517.10.90	- - 기타	0%	E0
	1517.90	- 기타		
1218	1517.90.10	- - 이미테이션 기(ghee)	0%	E0
1219	1517.90.20	- - 액체 상태의 마가린	0%	E0
1220	1517.90.30	- - 이형(mould release) 조제품용의 것	0%	E0
		- - 이미테이션 라드, 쇼트닝		
1221	1517.90.43	- - - 쇼트닝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1222	1517.90.44	- - - 이미테이션 라드	0%	E0
1223	1517.90.50	- - 식물성 지방 또는 기름 또는 그 분획물의 그 밖의 고체 혼합물 또는 조제품	0%	E0
		- - 기타 식물성 지방, 기름, 이들의 분획물의 액상 혼합물이나 조제품		
1224	1517.90.61	- - - 전중량에서 땅콩기름의 비중이 높은 것	0%	E0
1225	1517.90.62	- - - 전중량에서 천연 팜유의 비중이 높은 것	0%	E0
1226	1517.90.63	- - - 전중량에서 그 밖의 팜유의 비중이 높은 것(순중량이 25 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	E0
1227	1517.90.64	- - - 전중량에서 그 밖의 팜유의 비중이 높은 것(순중량이 25 킬로그램 초과하여 포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	E0
1228	1517.90.65	- - - 전중량에서 팜핵유의 비중이 높은 것	0%	E0
1229	1517.90.66	- - - 전중량에서 팜핵올레인의 비중이 높은것	0%	E0
1230	1517.90.67	- - - 전중량에서 대두유나 코코넛 오일의 비중이 높은 것	0%	E0
1231	1517.90.68	- - - 전중량에서 일리프 오일의 비중이 높은 것	0%	E0
1232	1517.90.69	- - - 기타	0%	E0
1233	1517.90.80	- - 동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들의 분획물의 혼합물이나 조제품의 것	0%	E0
1234	1517.90.90	- - 기타	0%	E0
	15.18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끓이거나 산화·탈수·황화·취입하거나 진공상태나 불활성 가스에서 가열중합하거나 그 밖의 화학적 변성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 1516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동물성·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의**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혼합물이나 조제품		
		- 동물성 또는 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끓이거나 산화·탈수·황화·취입하거나 진공상태나 불활성 가스에서 가열중합하거나 그 밖의 화학적 변성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 1516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1235	1518.00.12	- - 동물성 지방과 기름	0%	E0
1236	1518.00.14	- - 땅콩, 대두, 팜이나 코코넛 유	0%	E0
1237	1518.00.15	- - 아마씨유와 그 분획물	0%	E0
1238	1518.00.16	- -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	0%	E0
1239	1518.00.19	- - 기타	0%	E0
1240	1518.00.20	-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동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의 혼합물이나 조제품	0%	E0
		-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의 혼합물이나 조제품		
1241	1518.00.31	- - 팜유나 팜핵유 과실의 것	0%	E0
1242	1518.00.33	- - 아마씨의 것	0%	E0
1243	1518.00.34	- - 올리브의 것	0%	E0
1244	1518.00.35	- - 땅콩으로 만든 것	0%	E0
1245	1518.00.36	- - 대두나 코코넛의 것	0%	E0
1246	1518.00.37	- - 목화씨의 것	0%	E0
1247	1518.00.39	- - 기타	0%	E0
1248	1518.00.60	-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동물성 및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들의 분획물의 혼합물이나 조제품	0%	E0
	15.20	**글리세롤(glycerol)(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리세롤 수(水), 글리세롤 폐액(廢液)**		
1249	1520.00.10	- 글리세롤(glycerol)(가공하지 않은 것으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로 한정한다)		
1250	1520.00.90	- 기타	0%	E0
	15.21	식물성 납(蠟)[트리글리세라이드(triglyceride)는 제외한다]·밀랍(蜜蠟)과 그 밖의 곤충납(昆蟲蠟)·경납(鯨蠟)(정제했는지 또는 착색했는지에 상관없다)		
1251	1521.10.00	- 식물성 납(蠟)	0%	E0
	1521.90	- 기타		
1252	1521.90.10	- - 밀랍(蜜蠟)과 그 밖의 곤충납(昆蟲蠟)	0%	E0
1253	1521.90.20	- - 경납(鯨蠟)	0%	E0
	15.22	데그라스(degras), 지방성 물질이나 동물성·식물성 납(蠟)을 처리할 때 생기는 잔유물		
1254	1522.00.10	- 데그라스(degras)	0%	E0
1255	1522.00.90	- 기타	0%	E0
	16.01	소시지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육·설육(屑肉)이나 피로 조제한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 물품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식료품		
1256	1601.00.10	- 밀폐용기에 넣은 것(소매용)	30%	EX
1257	1601.00.90	- 기타	30%	EX
	16.02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설육(屑肉)이나 피		
	1602.10	- 균질화한 조제품		
1258	1602.10.10	- - 돼지고기를 함유한 것(밀폐용기에 넣은 것으로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30%	E0
1259	1602.10.90	- - 기타	30%	E0
1260	1602.20.00	- 동물 간으로 만든 것	0%	E0
		- 가금류(家禽類)로 만든 것(제 0105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1602.31	- - 칠면조로 만든 것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1261	1602.31.10	- - - 밀폐용기에 넣은 것(소매용)	0%	E0
		- - - 기타		
1262	1602.31.91	- - - - 기계로 뼈를 발라내거나 분리한 육	0%	E0
1263	1602.31.99	- - - - 기타	0%	E0
	1602.32	- -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의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만든 것		
1264	1602.32.10	- - - 치킨 카레(밀폐용기에 넣은 것으로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30%	E0
1265	1602.32.90	- - - 기타	30%	E0
1266	1602.39.00	- - 기타	30%	E0
		- 돼지로 만든 것		
	1602.41	- - 넓적다리살과 그 절단육		
1267	1602.41.10	- - - 밀폐용기에 넣은 것(소매용)	30%	E0
1268	1602.41.90	- - - 기타	30%	E0
	1602.42	- - 어깨살과 그 절단육		
1269	1602.42.10	- - - 밀폐용기에 넣은 것(소매용)	30%	E0
1270	1602.42.90	- - - 기타	30%	E0
	1602.49	- - 기타(혼합물을 포함한다)		
		- - - 런천 미트		
1271	1602.49.11	- - - - 밀폐용기에 넣은 것(소매용)	30%	E0
1272	1602.49.19	- - - - 기타	30%	E0
		- - - 기타		
1273	1602.49.91	- - - - 밀폐용기에 넣은 것(소매용)	30%	E0
1274	1602.49.99	- - - - 기타	30%	E0
1275	1602.50.00	- 소로 만든 것	30%	EX
	1602.90	- 기타(동물의 피 조제품을 포함한다)		
1276	1602.90.10	- - 양고기 카레(밀폐용기에 넣은 것으로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1277	1602.90.90	- - 기타	0%	E0
1278	1603.00.00	육·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추출물(extract)과 즙	5%	EX
	16.04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캐비아, 어란(魚卵)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		
		- 어류(원래 모양이나 토막낸 것으로 한정하며, 잘게 다진 것은 제외한다)		
	1604.11	- - 연어		
1279	1604.11.10	- - - 밀폐용기에 넣은 것(소매용)	0%	E0
1280	1604.11.90	- - - 기타	0%	E0
	1604.12	- - 청어		
1281	1604.12.10	- - - 밀폐용기에 넣은 것(소매용)	0%	E0
1282	1604.12.90	- - - 기타	0%	E0
	1604.13	- - 정어리·사르디넬라(Sardinella)·브리스링(brisling)·스프랫(sprat)		
		- - - 정어리		
1283	1604.13.11	- - - - 밀폐용기에 넣은 것(소매용)	15%	EX
1284	1604.13.19	- - - - 기타	0%	E0
		- - - 기타		
1285	1604.13.91	- - - - 밀폐용기에 넣은 것(소매용)	0%	E0
1286	1604.13.99	- - - - 기타	0%	E0
	1604.14	- - 다랑어·가다랑어·버니토(bonito)[사르다(Sarda)종]		
		- - - 밀폐용기에 넣은 것(소매용으로 한정한다)		
1287	1604.14.11	- - - - 다랑어	20%	E10
1288	1604.14.19	- - - - 기타	20%	EX
1289	1604.14.90	- - - 기타	20%	EX
	1604.15	- - 고등어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1290	1604.15.10	- - - 밀폐용기에 넣은 것(소매용)	0%	E0
1291	1604.15.90	- - - 기타	0%	E0
	1604.16	- - 멸치		
1292	1604.16.10	- - - 밀폐용기에 넣은 것(소매용)	0%	E0
1293	1604.16.90	- - - 기타	0%	E0
	1604.17	- - 뱀장어		
1294	1604.17.10	- - - 밀폐용기에 넣은 것(소매용)	0%	E0
1295	1604.17.90	- - - 기타	0%	E0
	1604.18	- - 상어 지느러미		
1296	1604.18.10	- - - 그 상태로 식용에 적합한 것	15%	EX
		- - - 기타		
1297	1604.18.91	- - - - 밀폐용기에 넣은 것(소매용)	15%	EX
1298	1604.18.99	- - - - 기타	15%	EX
	1604.19	- - 기타		
1299	1604.19.20	- - - 전갱이(밀폐용기에 넣은 것으로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0%	E0
1300	1604.19.30	- - - 기타(밀폐용기에 넣은 것으로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15%	EX
1301	1604.19.90	- - - 기타	15%	EX
	1604.20	-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1302	1604.20.20	- - 생선소시지	0%	E0
1303	1604.20.30	- - 피쉬볼(Fish ball)	15%	EX
1304	1604.20.40	- - 생선 페이스트(paste)	5%	EX
		- - 기타		
1305	1604.20.91	- - - 밀폐용기에 넣은 것(소매용)	5%	EX
1306	1604.20.99	- - - 기타	5%	EX
		- 캐비아와 캐비아 대용물		
1307	1604.31.00	- - 캐비아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1308	1604.32.00	- - 캐비아 대용물	0%	E0
	16.05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1605.10	- 게		
1309	1605.10.10	- - 밀폐용기에 넣은 것(소매용)	0%	E0
1310	1605.10.90	- - 기타	0%	E0
		- 새우류		
1311	1605.21.00	- - 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	5%	EX
	1605.29	- - 기타		
1312	1605.29.20	- - - 새우 볼(ball)	0%	E0
1313	1605.29.30	- - - 빵가루 입힌 튀김용새우(Breaded shrimp)	0%	E0
1314	1605.29.90	- - - 기타	0%	E0
1315	1605.30.00	- 바닷가재	0%	E0
1316	1605.40.00	- 그 밖의 갑각류	0%	E0
		- 연체동물		
1317	1605.51.00	- - 굴	0%	E0
1318	1605.52.00	- - 가리비과의 조개(여왕 가리비과 조개를 포함한다)	5%	E0
1319	1605.53.00	- - 홍합	0%	E0
	1605.54	- - 갑오징어와 오징어		
1320	1605.54.10	- - - 밀폐용기에 넣은 것(소매용)	5%	EX
1321	1605.54.90	- - - 기타	5%	EX
1322	1605.55.00	- - 문어	5%	E0
1323	1605.56.00	- - 클램(clam), 새조개 및 피조개	0%	E0
	1605.57	- - 전복		
1324	1605.57.10	- - - 밀폐용기에 넣은 것(소매용)	0%	E0
1325	1605.57.90	- - - 기타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1326	1605.58.00	- - 달팽이(바다달팽이는 제외한다)	5%	E0
1327	1605.59.00	- - 기타	5%	EX
		-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1328	1605.61.00	- - 해삼	0%	E0
1329	1605.62.00	- - 성게	5%	E0
1330	1605.63.00	- - 해파리	5%	E0
1331	1605.69.00	- - 기타	5%	E0
	17.01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蔗糖)(고체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 조당(粗糖)[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가 첨가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332	1701.12.00	- - 사탕무당	Rp 790/Kg	EX
1333	1701.13.00	- - 이 류의 소호주 제2호에 규정된 사탕수수당	Rp 550/Kg	EX
1334	1701.14.00	- - 그 밖의 사탕수수당	Rp 550/Kg	EX
		- 기타		
1335	1701.91.00	- - 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가 첨가된 것	Rp 790/Kg	EX
	1701.99	- - 기타		
1336	1701.99.10	- - - 정제당	Rp 790/Kg	EX
1337	1701.99.90	- - - 기타	Rp 790/Kg	EX
	17.02	그 밖의 당류(糖類)[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乳糖)·맥아당·포도당·과당을 포함하며, 고체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당시럽[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인조꿀(천연꿀을 혼합했는지에 상관없다), 캐러멜당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 유당(乳糖)과 유당(乳糖)시럽		
1338	1702.11.00	- - 건조 상태에서 측정한 유당(乳糖)[무수 유당(無水乳糖)]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9 이상인 것	0%	E0
1339	1702.19.00	- - 기타	0%	E0
1340	1702.20.00	- 단풍당과 단풍당시럽	0%	E0
	1702.30	- 포도당과 포도당시럽(과당을 함유하지 않거나 건조 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2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1341	1702.30.10	- - 포도당	5%	E0
1342	1702.30.20	- - 포도당시럽	0%	E0
1343	1702.40.00	- 포도당과 포도당시럽(건조 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20 이상이고 100 분의 5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전화당((轉化糖))은 제외한다]	5%	E0
1344	1702.50.00	- 화학적으로 순수한 과당	0%	E0
	1702.60	- 그 밖의 과당과 과당시럽(건조 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전화당(轉化糖)은 제외한다.		
1345	1702.60.10	- - 과당	5%	E0
1346	1702.60.20	- - 과당시럽	0%	E0
	1702.90	- 기타[전화당(轉化糖)과 그 밖의 당류(糖類)와 당시럽 혼합물(건조 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0 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 - 맥아당과 맥아당 시럽		
1347	1702.90.11	- - - 화학적으로 순수한 맥아당	5%	E0
1348	1702.90.19	- - - 기타	5%	E0
1349	1702.90.20	- - 인조꿀(천연꿀을 혼합했는지에 상관없다)	5%	E0
1350	1702.90.30	- - 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5%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않은 것(맥아당은 제외한다)		
1351	1702.90.40	- - 캐러멜당	5%	E0
		- - 기타		
1352	1702.90.91	- - - 당시럽	5%	E0
1353	1702.90.99	- - - 기타	5%	EX
	17.03	당밀(糖蜜)[당류(糖類)를 추출하거나 정제할 때 생긴 것으로 한정한다]		
	1703.10	- 사탕수수에서 생긴 당밀(糖蜜)		
1354	1703.10.10	- - 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가 첨가된 것	0%	E0
1355	1703.10.90	- - 기타	0%	E0
	1703.90	- 기타		
1356	1703.90.10	- - 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가 첨가된 것	0%	E0
1357	1703.90.90	- - 기타	0%	E0
	17.04	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		
1358	1704.10.00	- 추잉껌(당을 도포하였는지에 상관없다)	0%	E0
	1704.90	- 기타		
1359	1704.90.10	- - 약용 원료가 첨가된 파스텔(pastilles)과 드롭스(drops)	0%	E0
1360	1704.90.20	- - 백색 초콜릿	0%	E0
		- - 기타		
1361	1704.90.91	- - - 부드러운 것(젤라틴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0%	E0
1362	1704.90.99	- - - 기타	0%	E0
1363	1801.00.00	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서 생것이나 볶은 것으로 한정한다)	0%	E0
1364	1802.00.00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 및 그 밖의 코코아 웨이스트(waste)	0%	E0
	18.03	코코아 페이스트(paste)[탈지(脫脂)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1365	1803.10.00	- 탈지(脫脂)하지 않은 것	0%	E0
1366	1803.20.00	- 전부나 일부를 탈지(脫脂)한 것	0%	E0
1367	**1804.00.00**	**코코아 버터, 지방과 기름**	0%	E0
1368	**1805.00.00**	**코코아 가루(설탕 또는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	0%	E0
	18.06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		
1369	1806.10.00	- 코코아 가루(설탕 또는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0%	E0
	1806.20	- 그 밖의 조제 식료품[무게가 2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블록 모양·슬래브 모양·막대(bar) 모양인 것과 용기에 들어 있거나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서 내용물의 무게가 2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액체·페이스트(paste)·가루·알갱이나 그 밖의 벌크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1370	1806.20.10	- - 초콜릿 과자[블록 모양·슬래브 모양 또는 막대(bar)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0%	E0
1371	1806.20.90	- - 기타	0%	E0
		- 기타[블록 모양·슬래브 모양 또는 막대(bar)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1372	1806.31.00	- - 속을 채운 것	0%	E0
1373	1806.32.00	- - 속을 채우지 않은 것	0%	E0
	1806.90	- 기타		
1374	1806.90.10	- - 초콜릿 과자[둥글넓적한(tablet) 것이나 알약(pastilles)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0%	E0
1375	1806.90.30	- - 고운 가루·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100분의 50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E0
1376	1806.90.40	- -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완전히 탈지(脫脂)	5%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 이상이고 100 분의 10 이하인 것으로 유아용으로 특별히 조제되고 소매용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		
1377	1806.90.90	- - 기타	15%	E0
	19.01	**맥아 추출물(extract),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제 0401 호부터 제 0404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901.10	- 영유아·어린이용 조제 식료품(소매용으로 한정한다)		
1378	1901.10.10	- - 맥아 추출물(extract)	0%	E0
1379	1901.10.20	- - 제 0401 호부터 제 0404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것	5%	E0
1380	1901.10.30	- - 대두 가루의 것	0%	E0
		- - 기타		
1381	1901.10.91	- - - 의료용도 식품	0%	E0
1382	1901.10.92	- - - 기타(1 세 초과 3 세 이하 어린이용 제품에 한정한다)	0%	E0
1383	1901.10.99	- - - 기타	0%	E0
	1901.20	- 제 1905 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과 가루반죽		
1384	1901.20.10	- -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것(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0%	EX
1385	1901.20.20	- -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것(코코아	10%	EX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를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1386	1901.20.30	- - 기타(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EX
1387	1901.20.40	- - 기타(코코아를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5%	EX
	1901.90	- 기타		
		- - 영유아·어린이용 조제식료품(소매용으로 한정한다)		
1388	1901.90.11	- - - 의료용 식품	5%	E0
1389	1901.90.19	- - - 기타	5%	E0
1390	1901.90.20	- - 맥아 추출물(extract)	5%	E0
		- - 기타(제 0401 호부터 제 0404 호까지의 상품으로 한정한다)		
1391	1901.90.31	- - - 유지방대체 밀크(milk)	5%	E0
1392	1901.90.32	- - - 기타(코코아 가루를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5%	E0
1393	1901.90.39	- - - 기타	5%	E0
		- - 그 밖의 콩 조제품		
1394	1901.90.41	- - - 가루 모양	5%	E0
1395	1901.90.49	- - - 그 밖의 모양	5%	E0
		- - 기타		
1396	1901.90.91	- - - 의료용 식품	5%	E0
1397	1901.90.99	- - - 기타	5%	E0
	19.02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자니아(lasagne)·뇨키(gnocchi)·라비올리(ravioli)·카넬로니(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와 쿠스쿠스(couscous)(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 조리하지 않은 파스타(속을 채우지 않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398	1902.11.00	- - 새의 알을 넣은 것	0%	E0
	1902.19	- - 기타		
1399	1902.19.20	- - - 라이스 버미셀리(Rice vermicelli) [비훈(bee hoon)을 포함한다]	0%	E0
		- - - 투명한 버미셀리(Transparent vermicelli)		
1400	1902.19.31	- - - - 옥수수의 것	20%	EX
1401	1902.19.39	- - - - 기타	20%	E7
1402	1902.19.40	- - - 그 밖의 국수	5%	E0
1403	1902.19.90	- - - 기타	0%	E0
	1902.20	- 속을 채운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404	1902.20.10	- - 육(肉)이나 설육(屑肉)으로 속을 채운 것	0%	E0
1405	1902.20.30	- - 어류, 갑각류나 연체동물로 속을 채운 것	0%	E0
1406	1902.20.90	- - 기타	0%	E0
	1902.30	- 그 밖의 파스타		
1407	1902.30.20	- - 라이스 버미셀리(Rice vermicelli)[비훈(bee hoon)을 포함한다]	0%	E0
1408	1902.30.30	- - 투명한 버미셀리(Transparent vermicelli)	0%	E0
1409	1902.30.40	- - 그 밖의 인스턴트 면류	0%	E0
1410	1902.30.90	- - 기타	0%	E0
1411	1902.40.00	- 쿠스쿠스(couscous)	0%	E0
1412	1903.00.00	타피오카와 전분으로 조제한 타피오카 대용물[플레이크(flake) 모양·낟알 모양·진주 모양·무거리 모양 또는 이와 유사한 모양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의 것으로 한정한다]		
	19.04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904.10	- 곡물이나 곡물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		
1413	1904.10.10	- - 코코아를 함유한 것	0%	E0
1414	1904.10.90	- - 기타	5%	E5
	1904.20	- 볶지 않은 곡물 플레이크(flake)의 조제 식료품·볶지 않은 곡물 플레이크(flake)와 볶은 곡물 플레이크(flake)나 팽창된 곡물의 혼합물로 만든 조제 식료품		
1415	1904.20.10	- - 볶지 않은 곡물 플레이크(flake)의 조제 식료품	5%	E0
1416	1904.20.90	- - 기타	5%	EX
1417	1904.30.00	- 불거 밀(bulgur wheat)	0%	E0
	1904.90	- 기타		
1418	1904.90.10	- - 쌀 조제품(사전 조리한 쌀을 포함한다)	10%	EX
1419	1904.90.90	- - 기타	5%	EX
	19.05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웨이퍼(sealing wafer)·라이스 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1420	1905.10.00	- 귀리빵	0%	E0
1421	1905.20.00	- 진저브레드와 이와 유사한 것	0%	E0
		- 스위트 비스킷, 와플과 웨이퍼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1905.31	- - 스위트 비스킷		
1422	1905.31.10	- - -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	0%	E0
1423	1905.31.20	- - - 코코아를 함유한 것	0%	E0
	1905.32	- - 와플과 웨이퍼		
1424	1905.32.10	- - - 와플	0%	E0
1425	1905.32.20	- - - 웨이퍼	0%	E0
	1905.40	- 러스크(rusk)·토스트 빵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토스트 물품		
1426	1905.40.10	- - 설탕, 꿀, 새의 알, 지방, 치즈나 과실을 함유하지 않은 것	0%	E0
1427	1905.40.90	- - 기타	0%	E0
	1905.90	- 기타		
1428	1905.90.10	- - 무가당 티딩(teething) 비스킷	0%	E0
1429	1905.90.20	- - 그 밖의 무가당 비스킷	0%	E0
1430	1905.90.30	- - 케이크	0%	E0
1431	1905.90.40	- - 파이	0%	E0
1432	1905.90.50	- - 밀가루가 없는 베이커리 제품	0%	E0
1433	1905.90.60	- - 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과 이와 유사한 물품	0%	E0
1434	1905.90.70	- - 성찬용 웨이퍼·실링웨이퍼(sealing wafer)·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이와 유사한 물품	5%	E0
1435	1905.90.80	- - 그 밖의 바삭바삭한 짭짤한 맛의 식품	0%	E0
1436	1905.90.90	- - 기타	0%	E0
	20.01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1437	2001.10.00	- 오이류	0%	E0
	2001.90	- 기타		
1438	2001.90.10	- - 양파	5%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1439	2001.90.90	- - 기타	5%	E0
	20.02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토마토(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1440	2002.10.00	- 토마토의 전체나 조각	0%	E0
	2002.90	- 기타		
1441	2002.90.10	- - 토마토 페이스트(paste)	0%	E0
1442	2002.90.20	- - 토마토 가루	0%	E0
1443	2002.90.90	- - 기타	0%	E0
	20.03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버섯과 송로(松露)(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1444	2003.10.00	- 아가리쿠스(Agaricus)속의 버섯	0%	E0
	2003.90	- 기타		
1445	2003.90.10	- - 송로(松露)	0%	E0
1446	2003.90.90	- - 기타	0%	E0
	20.04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1447	2004.10.00	- 감자	5%	E0
	2004.90	- 그 밖의 채소와 채소의 혼합물		
1448	2004.90.10	- - 영유아 또는 어린이용	0%	E0
1449	2004.90.90	- - 기타	0%	E0
	20.05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2005.10	- 균질화한 채소		
1450	2005.10.10	- - 밀폐용기에 넣은 것(소매용)	0%	E0
1451	2005.10.90	- - 기타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2005.20	- 감자		
		- - 칩과 봉		
1452	2005.20.11	- - - 밀폐용기에 넣은 것(소매용)	0%	E0
1453	2005.20.19	- - - 기타	0%	E0
		- - 기타		
1454	2005.20.91	- - - 밀폐용기에 넣은 것(소매용)	0%	E0
1455	2005.20.99	- - - 기타	0%	E0
1456	2005.40.00	- 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0%	E0
		- 콩[비그나(Vigna)종·파세러스(Phaseolus)종)]		
1457	2005.51.00	- - 껍데기를 벗긴 콩	0%	E0
	2005.59	- - 기타		
1458	2005.59.10	- - - 밀폐용기에 넣은 것(소매용)	0%	E0
1459	2005.59.90	- - - 기타	0%	E0
1460	2005.60.00	- 아스파라거스(asparagus)	0%	E0
1461	2005.70.00	- 올리브	0%	E0
1462	2005.80.00	- 스위트콘[자메이스 변종 사카라타(Zea mays var. saccharata)]	5%	E0
		- 그 밖의 채소와 채소의 혼합물		
1463	2005.91.00	- - 죽순	0%	E0
	2005.99	- - 기타		
1464	2005.99.10	- - - 밀폐용기에 넣은 것(소매용)	0%	E0
1465	2005.99.90	- - - 기타	5%	EX
1466	2006.00.00	설탕으로 보존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과피와 식물의 그 밖의 부분[드레인한(drained) 것, 설탕을 입히거나 설탕에 절인 것]	20%	E0
	20.07	잼·과실젤리·마멀레이드(marmalade)·과실이나 견과류의 퓨레(purée)·과실이나 견과류의 페이스트(paste)(조리해서 얻은 것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1467	2007.10.00	- 균질화한 조제품	0%	E0
		- 기타		
1468	2007.91.00	- - 감귤류의 과실	5%	E0
	2007.99	- - 기타		
1469	2007.99.10	- - - 과실 페이스트(paste)(망고, 파인애플이나 딸기의 것은 제외한다)	5%	EX
1470	2007.99.20	- - - 잼 및 과실젤리	5%	EX
1471	2007.99.90	- - - 기타	5%	EX
	20.08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견과류·땅콩 및 그 밖의 씨류(서로 혼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2008.11	- - 땅콩		
1472	2008.11.10	- - - 볶은 것	5%	E0
1473	2008.11.20	- - - 피넛 버터	0%	E0
1474	2008.11.90	- - - 기타	5%	E0
	2008.19	- - 기타(혼합물을 포함한다)		
1475	2008.19.10	- - - 캐슈너트(cashew nut)	0%	E0
		- - - 기타		
1476	2008.19.91	- - - - 볶은 것	0%	E0
1477	2008.19.99	- - - - 기타	0%	E0
	2008.20	- 파인애플		
1478	2008.20.10	- - 밀폐용기에 넣은 것(소매용)	5%	EX
1479	2008.20.90	- - 기타	5%	EX
	2008.30	- 감귤류 과실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1480	2008.30.10	- -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한 것	5%	E0
1481	2008.30.90	- - 기타	5%	E0
1482	2008.40.00	- 배	5%	E0
1483	2008.50.00	- 살구	5%	E0
	2008.60	- 체리		
1484	2008.60.10	- -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한 것	5%	E0
1485	2008.60.90	- - 기타	5%	E0
	2008.70	- 복숭아[넥터린(nectarine)을 포함한다]		
1486	2008.70.10	- -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한 것	0%	E0
1487	2008.70.90	- - 기타	0%	E0
1488	2008.80.00	- 초본류 딸기	5%	E0
		- 기타(혼합물을 포함하되, 소호 제2008.19호의 혼합물은 제외한다)		
1489	2008.91.00	- - 팜 하트(palm heart)	0%	E0
	2008.93	- - 크랜베리(cranberry)[바치니움 매크로카르폰(Vaccinium macrocarpon)·바치니움 옥시코코스(Vaccinium oxycoccos)·바치니움 비티스-이다에아(Vaccinium vitis-idaea)]		
1490	2008.93.10	- - -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한 것	5%	E0
1491	2008.93.90	- - - 기타	5%	E0
	2008.97	- - 혼합물		
1492	2008.97.10	- - - 식물의 줄기, 뿌리와 그 밖의 식용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과실이나 견과류를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E0
1493	2008.97.20	- - - 기타(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5%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1494	2008.97.90	- - - 기타	5%	E0
	2008.99	- - 기타		
1495	2008.99.10	- - - 리치(lychees)	5%	E0
1496	2008.99.20	- - - 용안(longans)	5%	E0
1497	2008.99.30	- - - 식물의 줄기, 뿌리와 그 밖의 식용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과실이나 견과류를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E0
1498	2008.99.40	- - - 기타(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5%	E0
1499	2008.99.90	- - - 기타	5%	E0
	20.09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오렌지주스		
1500	2009.11.00	- - 냉동한 것	5%	EX
1501	2009.12.00	- -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서 브릭스(Brix)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은 것	10%	EX
1502	2009.19.00	- - 기타	5%	EX
		- 그레이프프루트(grapefruit)[포멜로(pomelo)를 포함한다] 주스		
1503	2009.21.00	- - 브릭스(Brix)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은 것	0%	E0
1504	2009.29.00	- - 기타	0%	E0
		- 그 밖의 한 가지 감귤류로 된 주스		
1505	2009.31.00	- - 브릭스(Brix)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은 것	10%	EX
1506	2009.39.00	- - 기타	5%	E0
		- 파인애플주스		
1507	2009.41.00	- - 브릭스(Brix)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은	10%	EX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것		
1508	2009.49.00	- - 기타	5%	EX
1509	2009.50.00	- 토마토주스	0%	E0
		- 포도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		
1510	2009.61.00	- - 브릭스(Brix) 값이 30 을 초과하지 않은 것	0%	E0
1511	2009.69.00	- - 기타	5%	E0
		- 사과주스		
1512	2009.71.00	- - 브릭스(Brix) 값이 20 을 초과하지 않은 것	10%	E0
1513	2009.79.00	- - 기타	0%	E0
		- 그 밖의 한 가지 과실이나 채소로 된 주스		
	2009.81	- - 크랜베리(cranberry)[바치니움 매크로카르폰(Vaccinium macrocarpon)·바치니움 옥시코코스(Vaccinium oxycoccos)·바치니움 비티스-이다에아(Vaccinium vitis-idaea)] 주스		
1514	2009.81.10	- - - 영유아 또는 어린이용	10%	E0
1515	2009.81.90	- - - 기타	10%	E0
	2009.89	- - 기타		
1516	2009.89.10	- - - 블랙커런트(blackcurrant) 주스	10%	E0
		- - - 기타		
1517	2009.89.91	- - - - 영유아 또는 어린이용	10%	E0
1518	2009.89.99	- - - - 기타	10%	E0
	2009.90	- 혼합 주스		
1519	2009.90.10	- - 영유아 또는 어린이용	0%	E0
		- - 기타		
1520	2009.90.91	- - - 그 상태로 식용에 적합한 것	0%	E0
1521	2009.90.99	- - - 기타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21.01	**커피·차·마테(maté)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테(maté)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		
		- 커피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 및 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또는 커피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2101.11	- -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		
1522	2101.11.10	- - - 인스턴트 커피	0%	E0
1523	2101.11.90	- - - 기타	0%	E0
	2101.12	- -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을 기본 재료로 하거나 커피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1524	2101.12.10	- - - 볶은 커피를 기본 재료로 한 페이스트(paste) 상태의 혼합물(식물성 지방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E0
		- - - 기타		
1525	2101.12.91	- - - -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 또는 농축물을 기본 재료로 한 커피조제품(설탕을 첨가한 것으로 크리머를 첨가하였는지는 상관없다)	0%	E0
1526	2101.12.92	- - - - 잘게부순 볶은 커피를 기본 재료로 한 커피조제품(설탕을 첨가한 것으로 크리머를 첨가하였는지는 상관없다)	0%	E0
1527	2101.12.99	- - - - 기타	0%	E0
	2101.20	- 차나 마테(maté)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차나 마테(maté)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1528	2101.20.20	- - 차 조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차 추출물	20%	EX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가루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1529	2101.20.30	- - 차·밀크 분말과 자당의 혼합물로 구성된 차의 조제품	20%	EX
1530	2101.20.90	- - 기타	20%	EX
1531	2101.30.00	- 볶은 치커리(chicory)와 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 및 그 농축물	0%	E0
	21.02	**효모(활성이거나 불활성인 것), 그 밖의 단세포 미생물(죽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의 백신은 제외한다)과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		
1532	2102.10.00	- 활성 효모	0%	E0
	2102.20	- 불활성 효모와 그 밖의 죽은 단세포 미생물		
1533	2102.20.10	- - 사료용	0%	E0
1534	2102.20.90	- - 기타	0%	E0
1535	2102.30.00	-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	0%	E0
	21.03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		
1536	2103.10.00	- 간장	8%	E7
1537	2103.20.00	- 토마토 케첩과 그 밖의 토마토로 만든 소스	0%	E0
1538	2103.30.00	- 겨자의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	0%	E0
	2103.90	- 기타		
		- -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1539	2103.90.11	- - - 칠리소스	0%	E0
1540	2103.90.12	- - - 어간장	0%	E0
1541	2103.90.13	- - - 그 밖의 소스	5%	E5
1542	2103.90.19	- - - 기타	5%	EX
		- - 혼합조미료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1543	2103.90.21	- - - 새우 페이스트(paste)[벨라찬(belachan) 블라찬(blachan)을 포함한다]	5%	EX
1544	2103.90.29	- - - 기타	0%	E0
	21.04	**수프·브로드(broth)와 수프·브로드(broth)용 조제품,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		
	2104.10	- 수프·브로드(broth)와 수프·브로드(broth)용 조제품		
		- - 육을 함유하는 것		
1545	2104.10.11	- - - 영유아 또는 어린이용	0%	E0
1546	2104.10.19	- - - 기타	0%	E0
		- - 기타		
1547	2104.10.91	- - - 영유아 또는 어린이용	0%	E0
1548	2104.10.99	- - - 기타	0%	E0
	2104.20	-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		
		- - 육을 함유하는 것		
1549	2104.20.11	- - - 영유아 또는 어린이용	5%	E0
1550	2104.20.19	- - - 기타	5%	E0
		- - 기타		
1551	2104.20.91	- - - 영유아 또는 어린이용	5%	E0
1552	2104.20.99	- - - 기타	5%	E0
1553	**2105.00.00**	**아이스크림과 그 밖의 빙과류(코코아를 함유했는지에 상관없다)**	0%	E0
	21.06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		
1554	2106.10.00	- 단백질 농축물과 텍스처화한(textured) 단백질계 물질	5%	E0
	2106.90	- 기타		
		- - 두부		
1555	2106.90.11	- - - 건조한 두부와 건조한 두부 스틱(stick)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1556	2106.90.12	- - - 신선한 두부	0%	E0
1557	2106.90.19	- - - 기타	0%	E0
1558	2106.90.20	- - 알코올 파우더	150%	EX
1559	2106.90.30	- - 비낙농 크리머(creamer)	0%	E0
		- - 자기소화 효모 추출물		
1560	2106.90.41	- - - 가루 모양	0%	E0
1561	2106.90.49	- - - 기타	0%	E0
		- - 기타(음료를 만들거나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는 조제품으로 한정한다)		
1562	2106.90.53	- - - 인삼을 기본재료로 한 물품	5%	E0
1563	2106.90.54	- - - 혼합 농축물 제조용 원료로 사용되는 그 밖의 조제품	0%	E0
1564	2106.90.55	- - - 기타(음료 제조용으로 물에 단순히 희석한 혼합 농축물)	0%	E0
1565	2106.90.59	- - - 기타	0%	E0
		- - 기타(음료를 만들거나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알코올을 함유지 않는 조제품으로 한정한다)		
		- - - 혼합 농축물 제조용 원료로 사용되는 조제품		
1566	2106.90.61	- - - - 알코올 음료 제조에 사용되는 것(액체 형태의 것으로 한정한다)	150%	EX
1567	2106.90.62	- - - - 알코올 음료 제조에 사용되는 것(그 밖의 형태의 것으로 한정한다)	150%	EX
		- - - 음료 제조용으로 물에 단순히 희석한 혼합 농축물		
1568	2106.90.64	- - - - 알코올 음료 제조에 사용되는 것(액체 형태의 것으로 한정한다)	150%	EX
1569	2106.90.65	- - - - 알코올 음료 제조에 사용되는 것(그 밖의 형태의 것으로 한정한다)	150%	EX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1570	2106.90.66	- - - 기타(알코올 음료제조용으로 사용되는 액체 형태의 것으로 한정한다)	150%	EX
1571	2106.90.67	- - - 기타(알코올 음료제조용으로 사용되는 그 밖의 형태의 것으로 한정한다)	150%	EX
1572	2106.90.69	- - - 기타	150%	EX
		- - 그 밖의 식이 보조제, 강화용 프리믹스(premixes)		
1573	2106.90.71	- - - 인삼을 기본재료로 한 식이 보조제	0%	E0
1574	2106.90.72	- - - 그 밖의 식이 보조제	0%	E0
1575	2106.90.73	- - - 강화용 프리믹스(premixes)	0%	E0
		- - 영유아·어린이용 조제식료품		
1576	2106.90.81	- - - 락타아제(lactase) 결핍 영유아·어린이용 조제 식료품	0%	E0
1577	2106.90.89	- - - 기타	0%	E0
		- - 기타		
1578	2106.90.91	- - - 그 밖의 화학품의 혼합물(식품가공에 사용하는 식료품이나 그 밖의 영양가 있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0%	E0
1579	2106.90.92	- - - 향미제나 착색제를 첨가한 시럽	0%	E0
1580	2106.90.95	- - - 세리 카야(seri kaya)	0%	E0
1581	2106.90.96	- - - 그 밖의 의료용 식품	0%	E0
1582	2106.90.97	- - - 템페	0%	E0
1583	2106.90.98	- - - 그 밖의 향미가 첨가된 조제품	5%	EX
1584	2106.90.99	- - - 기타	0%	E0
	22.01	**물(천연이나 인조 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과 얼음과 눈**		
	2201.10	- 광천수와 탄산수		
1585	2201.10.10	- - 광천수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1586	2201.10.20	- - 탄산수	0%	E0
	2201.90	- 기타		
1587	2201.90.10	- - 얼음과 눈	0%	E0
1588	2201.90.90	- - 기타	0%	E0
	22.02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		
	2202.10	-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1589	2202.10.10	- - 향미를 첨가한 탄산이 든 광천수 또는 탄산수	0%	E0
1590	2202.10.90	- - 기타	0%	E0
		- 기타		
1591	2202.91.00	- -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맥주	5%	EX
	2202.99	- - 기타		
1592	2202.99.10	- - - 향미를 첨가한 초고온 처리(UHT)된 우유를 기본재료로 한 음료	0%	E0
1593	2202.99.20	- - - 두유 음료	0%	E0
1594	2202.99.40	- - - 커피를 기본재료로 한 음료나 커피 향미를 첨가한 음료	5%	E10
1595	2202.99.50	- - - 그 밖의 비탄산수(희석 없이 그 상태로 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	E0
1596	2202.99.90	- - - 기타	5%	EX
	22.03	**맥주**		
		- 스타우트(stout)나 포터(porter)		
1597	2203.00.11	- - 알코올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5.8 이하인 것	40%	EX
1598	2203.00.19	- - 기타	40%	EX
		- 기타[에일(ale)을 포함한다]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1599	2203.00.91	- - 알코올 용량이 전용량의 100 분의 5.8 이하인 것	40%	EX
1600	2203.00.99	- - 기타	40%	EX
	22.04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알코올로 강화한 포도주를 포함한다)와 포도즙(제 2009 호의 것은 제외한다)**		
1601	2204.10.00	- 발포성(發泡性) 포도주	90%	EX
		- 그 밖의 포도주, 알코올 첨가에 따라 발효를 중지한 포도즙		
	2204.21	- - 2 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 - - 포도주		
1602	2204.21.11	- - - - 알코올 용량이 전용량의 100 분의 15 이하인 것	90%	EX
1603	2204.21.13	- - - - 알코올 용량이 전용량의 100 분의 15 를 초과하고 100 분의 23 이하인 것	90%	EX
1604	2204.21.14	- - - - 알코올 용량이 전용량의 100 분의 23 을 초과하는 것	90%	EX
		- - - 알코올 첨가에 따라 발효를 중지한 포도즙		
1605	2204.21.21	- - - - 알코올 용량이 전용량의 100 분의 15 이하인 것	90%	EX
1606	2204.21.22	- - - - 알코올 용량이 전용량의 100 분의 15 를 초과하는 것	90%	EX
	2204.22	- - 2 리터 초과 10 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 - - 포도주		
1607	2204.22.11	- - - - 알코올 용량이 전용량의 100 분의 15 이하인 것	90%	EX
1608	2204.22.12	- - - - 알코올 용량이 전용량의 100 분의 15 를 초과하고 100 분의 23 이하인 것	90%	EX
1609	2204.22.13	- - - - 알코올 용량이 전용량의 100 분의 23 을 초과하는 것	90%	EX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 - - 알코올 첨가에 따라 발효를 중지한 포도즙		
1610	2204.22.21	- - - - 알코올 용량이 전용량의 100 분의 15 이하인 것	90%	EX
1611	2204.22.22	- - - - 알코올 용량이 전용량의 100 분의 15 를 초과하는 것	90%	EX
	2204.29	- - 기타		
		- - - 포도주		
1612	2204.29.11	- - - - 알코올 용량이 전용량의 100 분의 15 이하인 것	90%	EX
1613	2204.29.13	- - - - 알코올 용량이 전용량의 100 분의 15 를 초과하고 100 분의 23 이하인 것	90%	EX
1614	2204.29.14	- - - - 알코올 용량이 전용량의 100 분의 23 을 초과하는 것	90%	EX
		- - - 알코올 첨가에 따라 발효를 중지한 포도즙		
1615	2204.29.21	- - - - 알코올 용량이 전용량의 100 분의 15 이하인 것	90%	EX
1616	2204.29.22	- - - - 알코올 용량이 전용량의 100 분의 15 를 초과하는 것	90%	EX
	2204.30	- 그 밖의 포도즙		
1617	2204.30.10	- - 알코올 용량이 전용량의 100 분의 15 이하인 것	90%	EX
1618	2204.30.20	- - 알코올 용량이 전용량의 100 분의 15 를 초과하는 것	90%	EX
	22.05	**베르무트(vermouth)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으로서 식물이나 방향성(芳香性) 물질로 맛이나 향을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2205.10	- 2 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1619	2205.10.10	- - 알코올 용량이 전용량의 100 분의 15 이하인 것	90%	EX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1620	2205.10.20	- - 알코올 용량이 전용량의 100 분의 15 를 초과하는 것	90%	EX
	2205.90	- 기타		
1621	2205.90.10	- - 알코올 용량이 전용량의 100 분의 15 이하인 것	90%	EX
1622	2205.90.20	- - 알코올 용량이 전용량의 100 분의 15 를 초과하는 것	90%	EX
	22.06	**그 밖의 발효주[예: 사과술·배술·미드(mead)·사케(saké)], 따로 분류되지 않은 발효주의 혼합물, 발효주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와의 혼합물**		
1623	2206.00.10	- 사과술 또는 배술	90%	EX
1624	2206.00.20	- 사케	90%	EX
		- 코코넛팜 토디(toddy)		
1625	2206.00.31	- - 2 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90%	EX
1626	2206.00.39	- - 기타	90%	EX
		- 샌디(shandy)		
1627	2206.00.41	- - 알코올 용량이 전용량의 100 분의 1.14 이하인 것	90%	EX
1628	2206.00.49	- - 기타	90%	EX
		- 기타		
1629	2206.00.91	- - 그 밖의 라이스 와인(rice wine)[약용 라이스 와인(rice wind)을 포함한다]	90%	EX
1630	2206.00.99	- - 기타	90%	EX
	22.07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 분의 8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변성 에틸알코올, 그 밖의 변성 주정(알코올의 용량은 상관없다)**		
1631	2207.10.00	-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 용량이 전용량의 100 분의 8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5%	EX
	2207.20	- 변성 에틸알코올과 그 밖의 변성 주정(알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코올의 용량은 상관없다)		
		- - 변성 알코올을 포함하는 변성된 에틸알콜		
1632	2207.20.11	- - - 에틸알코올(알코올 용량이 전용량의 100 분의 99 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	EX
1633	2207.20.19	- - - 기타	5%	EX
1634	2207.20.90	- - 기타	5%	EX
	22.08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 용량이 전용량의 100 분의 8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리큐르(liqueur)와 그 밖의 주정음료**		
	2208.20	- 포도주나 포도즙을 짜낸 찌꺼기에서 얻은 증류주		
1635	2208.20.50	- - 브랜디(brandy)	150%	EX
1636	2208.20.90	- - 기타	150%	EX
1637	2208.30.00	- 위스키류	150%	EX
1638	2208.40.00	- 럼 및 발효된 사탕수수물품을 증류하여 얻은 그 밖의 주정	150%	EX
1639	2208.50.00	- 진(gin)과 제네바(geneva)	150%	EX
1640	2208.60.00	- 보드카	150%	EX
	2208.70	- 리큐르(liqueur)류와 코디얼(cordial)		
1641	2208.70.10	- - 알코올 용량이 전용량의 100 분의 57 이하인 것	150%	EX
1642	2208.70.90	- - 기타	150%	EX
	2208.90	- 기타		
1643	2208.90.10	- - 약용원료가 첨가된 삼수(samsu)(알코올 용량이 전용량의 100 분의 40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50%	EX
1644	2208.90.20	- - 약용원료가 첨가된 삼수(samsu)(알코올 용량이 전용량의 100 분의 40 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50%	EX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1645	2208.90.30	- - 그 밖의 삼수(samsu)(알코올 용량이 전용량의 100 분의 40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50%	EX
1646	2208.90.40	- - 그 밖의 삼수(samsu)(알코올 용량이 전용량의 100 분의 40 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50%	EX
1647	2208.90.50	- - 아라크나 파인애플 주정(알코올 용량이 전용량의 100 분의 40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50%	EX
1648	2208.90.60	- - 아라크나 파인애플 주정(알코올 용량이 전용량의 100 분의 40 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50%	EX
1649	2208.90.70	- - 비터(bitters)와 이와 유사한 음료(알코올 용량이 전용량의 100 분의 57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50%	EX
1650	2208.90.80	- - 비터(bitters)와 이와 유사한 음료(알코올 용량이 전용량의 100 분의 57 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50%	EX
		- - 기타		
1651	2208.90.91	- - - 알코올 용량이 전용량의 100 분의 1.14 이하인 것	150%	EX
1652	2208.90.99	- - - 기타	150%	EX
1653	**2209.00.00**	**식초와 초산으로 만든 식초 대용물**	0%	E0
	23.01	**육·설육(屑肉)·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과 수지박**		
1654	2301.10.00	- 육이나 설육(屑肉)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 및 펠릿(pellet), 수지박	0%	E0
	2301.20	- 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펠릿(pellet)		
1655	2301.20.10	- - 어류의 것(단백질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6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1656	2301.20.20	- - 어류의 것(단백질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6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0%	E0
1657	2301.20.90	- - 기타	0%	E0
	23.02	**밀기울·쌀겨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곡물·채두류(菜豆類)의 선별·제분이나 그 밖의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것으로 한정한다]**		
1658	2302.10.00	- 옥수수로 만든 것	0%	E0
	2302.30	- 밀에서 나온 것		
1659	2302.30.10	- - 밀기울과 폴라드(pollard)	0%	E0
1660	2302.30.90	- - 기타	0%	E0
	2302.40	- 그 밖의 곡물에서 나온 것		
1661	2302.40.10	- - 쌀에서 나온 것	0%	E0
1662	2302.40.90	- - 기타	0%	E0
1663	2302.50.00	- 채두류(菜豆類)에서 나온 것	0%	E0
	23.03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 비트펄프(beet-pulp), 버개스(bagasse)와 그 밖의 설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웨이스트(waste), 양조하거나 증류할 때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2303.10	-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		
1664	2303.10.10	- - 매니옥(manioc)[카사바(cassava)]이나 사고야자(sago)의 것	0%	E0
1665	2303.10.90	- - 기타	0%	E0
1666	2303.20.00	- 비트펄프(beetpulp), 버개스(bagasse)와 그 밖의 설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웨이스트(waste)	0%	E0
1667	2303.30.00	- 양조하거나 증류할 때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waste)	0%	E0
	23.04	**대두유를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1668	2304.00.10	- 탈지(脫脂)한 대두의 고운 가루(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	E0
1669	2304.00.90	- 기타	0%	E0
1670	2305.00.00	땅콩기름의 추출시 얻어지는 오일케이크 및 그 밖의 고형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0%	E0
	23.06	오일 케이크와 그 밖의 고체 형태인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제 2304 호나 제 2305 호의 것은 제외한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을 추출할 때 생기는 것으로 한정한다]		
1671	2306.10.00	- 목화씨의 것	0%	E0
1672	2306.20.00	- 아마씨의 것	0%	E0
1673	2306.30.00	- 해바라기씨에서 나온 것	0%	E0
		- 유채(rape, colza)씨에서 나온 것		
	2306.41	- - 저에루크산(low erucic acid) 유채(rape, colza)씨에서 나온 것		
1674	2306.41.10	- - - 저에루크산(low erucic acid) 유채(rape)씨의 것	0%	E0
1675	2306.41.20	- - - 저에루크산(low erucic acid) 유채(colza)씨의 것	0%	E0
	2306.49	- - 기타		
1676	2306.49.10	- - - 그 밖의 유채(rape)씨의 것	0%	E0
1677	2306.49.20	- - - 그 밖의 유채(colza)씨의 것	0%	E0
1678	2306.50.00	- 야자나 코프라(copra)에서 나온 것	0%	E0
	2306.60	- 팜 너트(palm nut)나 핵(核)에서 나온 것		
1679	2306.60.10	- - 잘게 부순 것 또는 펠릿(pellet) 모양	0%	E0
1680	2306.60.90	- - 기타	0%	E0
	2306.90	- 기타		
1681	2306.90.10	- - 옥수수 씨눈의 것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1682	2306.90.90	- - 기타	0%	E0
1683	**2307.00.00**	**와인리스(wine lees), 생주석(argol)**	0%	E0
1684	**2308.00.00**	**사료용 식물성 물질과 식물성 웨이스트(waste)·식물성 박(residue)류와 부산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E0
	23.09	**사료용 조제품**		
	2309.10	-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한다)		
1685	2309.10.10	- - 육을 함유하는 것	0%	E0
1686	2309.10.90	- - 기타	0%	E0
	2309.90	- 기타		
		- - 완전사료		
1687	2309.90.11	- - - 가금(家禽)용으로 적합한 것	0%	E0
1688	2309.90.12	- - - 돼지용으로 적합한 것	0%	E0
1689	2309.90.13	- - - 새우용으로 적합한 것	0%	E0
1690	2309.90.14	- - - 영장류용으로 적합한 것	0%	E0
1691	2309.90.19	- - - 기타	0%	E0
1692	2309.90.20	- - 프리믹스(사료 보조제나 사료 첨가제로 한정한다)	0%	E0
1693	2309.90.90	- - 기타	0%	E0
	24.01	**잎담배와 담배 부산물**		
	2401.10	- 잎담배[주맥(主脈)을 제거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694	2401.10.10	- - 버지니아(virginia) 종(황색종으로 한정한다)	0%	E0
1695	2401.10.20	- - 버지니아 종(황색종의 것은 제외한다)	0%	E0
1696	2401.10.40	- - 버어리(burley) 종	0%	E0
1697	2401.10.50	- - 기타(황색종으로 한정한다)	0%	E0
1698	2401.10.90	- - 기타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2401.20	- 잎담배[주맥(主脈)을 일부나 전부 제거한 것으로 한정한다]		
1699	2401.20.10	- - 버지니아(virginia) 종(황색종으로 한정한다)	0%	E0
1700	2401.20.20	- - 버지니아 종(황색종의 것은 제외한다)	0%	E0
1701	2401.20.30	- - 오리엔트 종	0%	E0
1702	2401.20.40	- - 버어리(burley) 종	0%	E0
1703	2401.20.50	- - 기타(황색종으로 한정한다)	0%	E0
1704	2401.20.90	- - 기타	0%	E0
	2401.30	- 담배 부산물		
1705	2401.30.10	- - 담배 주맥(主脈)	0%	E0
1706	2401.30.90	- - 기타	0%	E0
	24.02	시가(cigar)·셔루트(cheroot)·시가릴로(cigarillo)·궐련(담배나 담배 대용물인 것으로 한정한다)		
1707	2402.10.00	- 시가(cigar)·셔루트(cheroot) 및 시가릴로(cigarillo)(담배를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0%	E0
	2402.20	- 궐련(담배를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1708	2402.20.10	- - 실로 묶은 수제 담배	0%	E0
1709	2402.20.20	- - 정향 궐련	0%	E0
1710	2402.20.90	- - 기타	0%	E0
	2402.90	- 기타		
1711	2402.90.10	- - 시가(cigar)·셔루트(cheroot) 및 시가릴로(cigarillo)(담배 대용물인 것으로 한정한다)	0%	E0
1712	2402.90.20	- - 궐련(담배 대용물의 것)	0%	E0
	24.03	그 밖의 제조 담배, 제조한 담배 대용물, 균질화하거나 재구성한 담배·담배 추출물(extract)과 에센스(essence)		
		- 흡연용 담배(담배 대용물의 포함비율은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상관없다)		
1713	2403.11.00	- - 이 류의 소호주 제1호에 규정된 워터 파이프(water pipe) 담배	0%	E0
	2403.19	- - 기타		
		- - - 소매용으로 포장된 것		
1714	2403.19.11	- - - - 앙 훈(Ang Hoon)	0%	E0
1715	2403.19.19	- - - - 기타	0%	E0
1716	2403.19.20	- - - 그 밖의 제조한 담배(궐련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E0
		- - - 기타		
1717	2403.19.91	- - - - 앙 훈(Ang Hoon)	0%	E0
1718	2403.19.99	- - - - 기타	0%	E0
		- 기타		
	2403.91	- - 균질화하거나 재구성한 담배		
1719	2403.91.10	- - - 소매용으로 포장된 것	0%	E0
1720	2403.91.90	- - - 기타	0%	E0
	2403.99	- - 기타		
1721	2403.99.10	- - - 담배의 추출물(extracts)과 에센스(essence)	0%	E0
1722	2403.99.30	- - - 제조한 담배 대용물	0%	E0
1723	2403.99.40	- - - 코 담배(건조하지 않은 것인지에 상관없다)	0%	E0
1724	2403.99.50	- - - 씹는 담배와 빠는 담배	0%	E0
1725	2403.99.90	- - - 기타	0%	E0
	25.01	**소금(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다), 순염화나트륨[수용액(水溶液)인지 또는 고결(固結)방지제나 유동제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바닷물**		
1726	2501.00.10	- 식탁염	0%	E0
1727	2501.00.20	- 가공되지 않은 암염(岩鹽)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1728	2501.00.50	- 바닷물	0%	E0
		- 기타		
1729	2501.00.91	- - 건조한 상태에서 측정한 염화나트륨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 분의 60 을 초과하고 100 분의 97 미만인 것(요드로 강화한 것으로 한정한다)	0%	E0
1730	2501.00.92	- - 기타(건조한 상태에서 측정한 염화나트륨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 분의 97 이상이고 100 분의 99.9 미만인 것)	0%	E0
1731	2501.00.99	- - 기타	0%	E0
1732	2502.00.00	황화철광[배소(焙燒)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E0
1733	2503.00.00	황[승화황(昇華黃)·침강황(沈降黃) 및 콜로이드황은 제외한다]	0%	E0
	25.04	천연 흑연		
1734	2504.10.00	- 가루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	0%	E0
1735	2504.90.00	- 기타	0%	E0
	25.05	천연 모래(착색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26 류의 금속을 함유하는 모래는 제외한다)		
1736	2505.10.00	- 규사	0%	E0
1737	2505.90.00	- 기타	0%	E0
	25.06	석영(천연 모래는 제외한다)과 규암[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738	2506.10.00	- 석영	0%	E0
1739	2506.20.00	- 규암	0%	E0
1740	2507.00.00	고령토와 그 밖의 고령토질의 점토[하소(煆燒)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	E0
	25.08	그 밖의 점토(제 6806 호의 팽창된 점토는 제외한다)·홍주석(紅柱石)·남정석(藍晶石)·규선석(硅線石)[하소(煆燒)한 것인지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에 상관없다], 멀라이트(mullite), 샤모트(chamotte)나 다이나스 어스(dinas earth)		
1741	2508.10.00	- 벤토나이트(bentonite)	0%	E0
1742	2508.30.00	- 내화(耐火)점토	0%	E0
	2508.40	- 그 밖의 점토		
1743	2508.40.10	- - 표포토(漂布土)	0%	E0
1744	2508.40.90	- - 기타	0%	E0
1745	2508.50.00	- 홍주석(紅柱石)·남정석(藍晶石) 및 규선석(硅線石)	0%	E0
1746	2508.60.00	- 멀라이트(mullite)	0%	E0
1747	2508.70.00	- 샤모트(chamotte) 또는 다이나스어스(dinas earth)	0%	E0
1748	2509.00.00	초크	0%	E0
	25.10	천연 인산칼슘·천연 인산알루미늄칼슘·인산염을 함유한 초크		
	2510.10	- 잘게 부수지 않은 것		
1749	2510.10.10	- - 인회석	0%	E0
1750	2510.10.90	- - 기타	0%	E0
	2510.20	- 잘게 부순 것		
1751	2510.20.10	- - 인회석	0%	E0
1752	2510.20.90	- - 기타	0%	E0
	25.11	천연 황산바륨[중정석(重晶石)], 천연 탄산바륨[독중석(毒重石)][하소(煆燒)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2816호의 산화바륨은 제외한다]		
1753	2511.10.00	- 천연 황산바륨[중정석(重晶石)]	0%	E0
1754	2511.20.00	- 천연 탄산바륨[독중석(毒重石)]	0%	E0
1755	2512.00.00	규조토[예: 키절구어(kieselguhr)·트리폴리트(tripolite) 및 다이어토마이트(diatomite)]와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하소(煆燒)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겉보기 비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중이 1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25.13	부석(浮石), 금강사(金剛砂), 천연 커런덤(corundum)·천연 석류석과 그 밖의 천연 연마재료(열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756	2513.10.00	- 부석	0%	E0
1757	2513.20.00	- 금강사(金剛砂), 천연 커런덤(corundum), 천연 석류석과 그 밖의 천연 연마재료	0%	E0
1758	2514.00.00	슬레이트[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	E0
	25.15	대리석·트래버틴(travertine)·에코신(ecaussine)과 그 밖의 석비(石碑)용·건축용 석회질의 암석(겉보기 비중이 2.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과 설화석고(alabaster)[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대리석과 트래버틴(travertine)		
1759	2515.11.00	- -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거칠게 다듬은 것	0%	E0
	2515.12	- -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		
1760	2515.12.10	- - - 블록	0%	E0
1761	2515.12.20	- - - 슬래브	0%	E0
1762	2515.20.00	- 에코신과 그 밖의 석비용 또는 건축용 석회질의 암석, 설화석고(alabaster)	0%	E0
	25.16	화강암·반암(斑巖)·현무암·사암과 그 밖의 석비(石碑)용·건축용 암석[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 화강암		
1763	2516.11.00	- -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거칠게 다듬은 것	0%	E0
	2516.12	- -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		
1764	2516.12.10	- - - 블록	0%	E0
1765	2516.12.20	- - - 슬래브	0%	E0
	2516.20	- 사암		
1766	2516.20.10	- -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거칠게 다듬은 것	0%	E0
1767	2516.20.20	- -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	0%	E0
1768	2516.90.00	- 그 밖의 석비(石碑)용 또는 건축용 암석	0%	E0
	25.17	**자갈·왕자갈·쇄석(碎石)[콘크리트용·도로포장용·철도용이나 그 밖의 밸러스트(ballast)용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싱글(shingle)과 플린트(flint)(열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슬래그(slag)·드로스(dross)나 이와 유사한 산업폐기물의 머캐덤(macadam)(이 호의 앞부분에 열거한 물품들과 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타르 머캐덤(tar macadam), 제2515호나 제2516호의 암석의 알갱이·파편·가루(열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769	2517.10.00	- 자갈·왕자갈·쇄석(碎石)[콘크리트용·도로포장용·철도용이나 그 밖의 밸러스트(ballast)용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싱글(shingle)과 플린트(flint)(열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	E0
1770	2517.20.00	- 슬래그(slag)·드로스(dross)나 이와 유사한 산업폐기물의 머캐덤(macadam)(소호 제2517.10호의 물품을 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1771	2517.30.00	- 타르 머캐덤(tar macadam)	0%	E0
		- 제 2515 호나 제 2516 호의 암석의 알갱이·파편 및 가루(열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772	2517.41.00	- - 대리석으로 만든 것	0%	E0
1773	2517.49.00	- - 기타	0%	E0
	25.18	백운석(白雲石)[하소(煆燒)한 것인지 또는 소결(燒結)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을 포함한다]과 응결(凝結) 백운석(白雲石)		
1774	2518.10.00	- 하소(煆燒)하지 않거나 소결(燒結)하지 않은 백운석(白雲石)	0%	E0
1775	2518.20.00	- 하소(煆燒)하거나 소결(燒結)한 백운석(白雲石)	0%	E0
1776	2518.30.00	- 응결(凝結) 백운석(白雲石)	0%	E0
	25.19	천연 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 용융(溶融) 마그네시아, 소결(燒結)한 마그네시아[소결(燒結)하기 전에 첨가된 기타 산화물을 소량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 밖의 산화마그네슘(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777	2519.10.00	- 천연 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	0%	E0
	2519.90	- 기타		
1778	2519.90.10	- - 용융(溶融) 마그네시아, 소결(燒結)한 마그네시아	0%	E0
1779	2519.90.90	- - 기타	0%	E0
	25.20	석고, 무수(無水)석고, 플라스터(plaster)[하소(煆燒)한 석고나 황산칼슘을 원료로 한 것으로서 착색한 것인지 또는 촉진제나 지연제를 소량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1780	2520.10.00	- 석고, 무수(無水)석고	0%	E0
	2520.20	- 플라스터(plaster)		
1781	2520.20.10	- - 치과용으로 적합한 것	0%	E0
1782	2520.20.90	- - 기타	0%	E0
1783	2521.00.00	석회석 융제(融劑), 석회석과 그 밖의 석회질의 암석(석회나 시멘트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E0
	25.22	생석회(生石灰), 소석회(消石灰), 수경성(水硬性) 석회(제 2825 호의 산화칼슘과 수산화칼슘은 제외한다)		
1784	2522.10.00	- 생석회(生石灰)	0%	E0
1785	2522.20.00	- 소석회(消石灰)	0%	E0
1786	2522.30.00	- 수경성(水硬性) 석회	0%	E0
	25.23	포틀랜드(Portland) 시멘트·알루미나(aluminous) 시멘트·슬래그(slag) 시멘트·슈퍼설페이트(super sulphate) 시멘트와 이와 유사한 수경성(水硬性) 시멘트[착색한 것인지 또는 클링커(clinker) 형태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23.10	- 시멘트 클링커(clinker)		
1787	2523.10.10	- - 백색 시멘트 제조용의 것	0%	E0
1788	2523.10.90	- - 기타	0%	E0
		- 포틀랜드(Portland) 시멘트		
1789	2523.21.00	- - 백색 시멘트(인위적으로 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	E0
	2523.29	- - 기타		
1790	2523.29.10	- - - 착색된 시멘트	0%	E0
1791	2523.29.90	- - - 기타	0%	E0
1792	2523.30.00	- 알루미나(aluminous) 시멘트	0%	E0
1793	2523.90.00	- 그 밖의 수경성(水硬性) 시멘트	0%	E0
	25.24	석면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1794	2524.10.00	- 청(靑)석면	0%	E0
1795	2524.90.00	- 기타	0%	E0
	25.25	**운모(쪼갠 것을 포함한다)와 운모 웨이스트(waste)**		
1796	2525.10.00	- 가공하지 않은 운모와 판(板) 모양의 운모나 쪼갠 운모	0%	E0
1797	2525.20.00	- 운모 가루	0%	E0
1798	2525.30.00	- 운모 웨이스트(waste)	0%	E0
	25.26	**천연 동석(凍石)[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활석**		
1799	2526.10.00	- 부수지 않은 것으로 가루도 아닌 것	0%	E0
	2526.20	- 부수거나 가루인 것		
1800	2526.20.10	- - 활석 분말	0%	E0
1801	2526.20.90	- - 기타	0%	E0
1802	**2528.00.00**	**천연 붕산염과 그 정광(精鑛)[하소(煆燒)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천연 염수(鹽水)에서 분리한 붕산염은 제외한다], 천연 붕산(건조한 상태에서 측정한 붕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E0
	25.29	**장석(長石), 백류석(白榴石), 하석(霞石)과 하석 섬장암(霞石 閃長巖), 형석(螢石)**		
	2529.10	- 장석(長石)		
1803	2529.10.10	- - 가성(苛性)칼륨, 소다 칼륨	0%	E0
1804	2529.10.90	- - 기타	0%	E0
		- 형석(螢石)		
1805	2529.21.00	- - 플루오르화칼슘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7 이하인 것	0%	E0
1806	2529.22.00	- - 플루오르화칼슘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100 분의 97 을 초과하는 것		
1807	2529.30.00	- 백류석(白榴石), 하석(霞石)과 하석 섬장암(霞石 閃長巖)	0%	E0
	25.30	**따로 분류되지 않은 광물**		
1808	2530.10.00	- 질석(蛭石), 진주암(眞珠巖)과 녹니석(綠泥石)(팽창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E0
	2530.20	- 키이저라이트, 에프소마이트(천연 황산마그네슘)		
1809	2530.20.10	- - 키이저라이트	0%	E0
1810	2530.20.20	- - 에프소마이트 (천연 황산마그네슘)	0%	E0
	2530.90	- 기타		
1811	2530.90.10	- - 유백제로 사용되는 종류의 미분말로된 지르콘 모래(규산지르코늄)	0%	E0
1812	2530.90.90	- - 기타	0%	E0
	26.01	**철광과 그 정광(精鑛)[배소(焙燒)한 황화철광을 포함한다]**		
		- 철광과 그 정광[배소(焙燒)한 황화철광은 제외한다]		
	2601.11	- - 응결시키지 않은 것		
1813	2601.11.10	- - - 적(赤)철광과 그 정광(精鑛)	0%	E0
1814	2601.11.90	- - - 기타	0%	E0
	2601.12	- - 응결시킨 것		
1815	2601.12.10	- - - 적(赤)철광과 그 정광(精鑛)	0%	E0
1816	2601.12.90	- - - 기타	0%	E0
1817	2601.20.00	- 배소(焙燒)한 황화철광	0%	E0
1818	**2602.00.00**	**망간광과 그 정광(精鑛)[건조 상태에서 측정한 망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20 이상인 철망간광과 그 정광(精鑛)을 포함한다]**	0%	E0
1819	**2603.00.00**	**구리광과 그 정광(精鑛)**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1820	**2604.00.00**	**니켈광과 그 정광(精鑛)**	0%	E0
1821	**2605.00.00**	**코발트광과 그 정광(精鑛)**	0%	E0
1822	**2606.00.00**	**알루미늄광과 그 정광(精鑛)**	0%	E0
1823	**2607.00.00**	**납광과 그 정광(精鑛)**	0%	E0
1824	**2608.00.00**	**아연광과 그 정광(精鑛)**	0%	E0
1825	**2609.00.00**	**주석광과 그 정광(精鑛)**	0%	E0
1826	**2610.00.00**	**크로뮴광과 그 정광(精鑛)**	0%	E0
1827	**2611.00.00**	**텅스텐광과 그 정광(精鑛)**	0%	E0
	26.12	**우라늄광이나 토륨광과 그 정광(精鑛)**		
1828	2612.10.00	- 우라늄광과 그 정광(精鑛)	0%	E0
1829	2612.20.00	- 토륨광과 그 정광(精鑛)	0%	E0
	26.13	**몰리브덴광과 그 정광(精鑛)**		
1830	2613.10.00	- 배소(焙燒)한 것	0%	E0
1831	2613.90.00	- 기타	0%	E0
	26.14	**티타늄광과 그 정광(精鑛)**		
1832	2614.00.10	- 티타늄철광과 그 정광(精鑛)	0%	E0
1833	2614.00.90	- 기타	0%	E0
	26.15	**니오븀광·탄탈륨광·바나듐광·지르코늄광과 이들의 정광(精鑛)**		
1834	2615.10.00	- 지르코늄광과 그 정광(精鑛)	0%	E0
1835	2615.90.00	- 기타	0%	E0
	26.16	**귀금속광과 그 정광(精鑛)**		
1836	2616.10.00	- 은광과 그 정광(精鑛)	0%	E0
1837	2616.90.00	- 기타	0%	E0
	26.17	**그 밖의 광과 그 정광(精鑛)**		
1838	2617.10.00	- 안티모니광과 그 정광(精鑛)	0%	E0
1839	2617.90.00	- 기타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1840	2618.00.00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알갱이 모양의 슬래그(slag)[슬래그 샌드(slag sand)]	0%	E0
1841	2619.00.00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슬래그(slag)·드로스(dross)[알갱이 모양의 슬래그(slag)는 제외한다], 스케일링(scaling)과 그 밖의 웨이스트(waste)	0%	E0
	26.20	슬래그(slag), 회(灰), 잔재물(금속·비소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하며,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것은 제외한다)		
		- 주로 아연을 함유한 것		
1842	2620.11.00	- - 경(硬)아연 스펠터(spelter)	0%	E0
1843	2620.19.00	- - 기타	0%	E0
		- 주로 납을 함유하는 것		
1844	2620.21.00	- - 유연(有鉛) 가솔린 슬러지(sludge)와 유연(有鉛) 안티녹(antiknock) 화합물 슬러지(sludge)	0%	E0
1845	2620.29.00	- - 기타	0%	E0
1846	2620.30.00	- 주로 구리를 함유하는 것	0%	E0
1847	2620.40.00	- 주로 알루미늄을 함유하는 것	0%	E0
1848	2620.60.00	- 비소, 수은, 탈륨이나 그 혼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비소나 이들 금속들의 채취용이나 그 화합물의 제조용	0%	E0
		- 기타		
1849	2620.91.00	- - 안티모니, 베릴륨, 카드뮴, 크로뮴이나 그 혼합물을 포함하는 것	0%	E0
	2620.99	- - 기타		
1850	2620.99.10	- - - 슬래그(slag)와 주석의 하드헤드(hardhead)	0%	E0
1851	2620.99.90	- - - 기타	0%	E0
	26.21	그 밖의 슬래그(slag)와 회(灰)[해초의 회(켈프)를 포함한다], 생활폐기물의 소각으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로 생기는 회(灰)와 잔재물		
1852	2621.10.00	- 생활폐기물의 소각으로 생기는 회(灰)와 잔재물	0%	E0
1853	2621.90.00	- 기타	0%	E0
	27.01	**석탄과 석탄으로 제조한 연탄·조개탄(ovoid)과 이와 유사한 고체 연료**		
		- 석탄(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으며 응결시킨 것은 제외한다)		
1854	2701.11.00	- - 무연탄	0%	E0
	2701.12	- - 유연탄		
1855	2701.12.10	- - - 점결탄	0%	E0
1856	2701.12.90	- - - 기타	0%	E0
1857	2701.19.00	- - 그 밖의 석탄	0%	E0
1858	2701.20.00	- 석탄으로 제조한 연탄·조개탄(ovoid)과 이와 유사한 고체 연료	0%	E0
	27.02	**갈탄(응결시킨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흑옥은 제외한다)**		
1859	2702.10.00	- 갈탄(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으며 응결시킨 것은 제외한다)	0%	E0
1860	2702.20.00	- 응결시킨 갈탄	0%	E0
	27.03	**토탄(토탄 찌꺼기를 포함하며, 응결시킨 것인지에 상관없다)**		
1861	2703.00.10	- 토탄(응결시킨 것을 제외하며, 압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	E0
1862	2703.00.20	- 응결시킨 토탄	0%	E0
	27.04	**코크스와 반성(半成) 코크스(석탄·갈탄·토탄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응결시킨 것인지에 상관없다), 레토르트 카본(retort carbon)**		
1863	2704.00.10	- 코크스와 반성(半成) 코크스(석탄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1864	2704.00.20	- 코크스와 반성(半成) 코크스(갈탄 또는 토탄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	E0
1865	2704.00.30	- 레토르트 카본(retort carbon)	0%	E0
1866	2705.00.00	석탄가스·수성(水性)가스·발생로(發生爐) 가스와 이와 유사한 가스(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는 제외한다)	0%	E0
1867	2706.00.00	석탄·갈탄 또는 토탄을 증류해서 얻은 타르와 그 밖의 광물성 타르(탈수나 부분 증류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재구성한 타르를 포함한다)	0%	E0
	27.07	콜타르(coal tar)를 고온 증류하여 얻은 오일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방향족(芳香族) 성분의 중량이 비방향족(非芳香族) 성분의 중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868	2707.10.00	- 벤조올(벤젠)	0%	E0
1869	2707.20.00	- 톨루올(톨루엔)	0%	E0
1870	2707.30.00	- 크실롤(크실렌)	0%	E0
1871	2707.40.00	- 나프탈렌	0%	E0
1872	2707.50.00	- 그 밖의 방향족(芳香族) 탄화수소의 혼합물[섭씨 250 도에서 아이·에스·오(ISO) 3405 방법{에이·에스·티·엠 디(ASTM D)86의 방법과 동등}으로 증류한 양이 전 용량의 100 분의 65 이상(손실분을 포함한다)인 것으로 한정한다]	0%	E0
		- 기타		
1873	2707.91.00	- - 크레오소트(creosote)유	0%	E0
	2707.99	- - 기타		
1874	2707.99.10	- - - 카본 블랙(carbon black) 공급 원료	0%	E0
1875	2707.99.90	- - - 기타	0%	E0
	27.08	피치(pitch)와 피치코크스[콜타르(coal tar)나 그 밖의 광물성 타르에서 얻은 것으로 한정한다]		
1876	2708.10.00	- 피치(pitch)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1877	2708.20.00	- 피치코크스(pitch cokes)	0%	E0
	27.09	**석유와 역청유(瀝青油)(원유로 한정한다)**		
1878	2709.00.10	- 석유	0%	E0
1879	2709.00.20	- 콘덴세이트(condensates)	0%	E0
1880	2709.00.90	- 기타	0%	E0
	27.10	**석유와 역청유(瀝青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青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青油)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e oil)**		
		- 석유와 역청유(瀝青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青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青油)인 것으로 한정하며, 바이오디젤을 함유하는 것과 웨이스트 오일(waste oil)은 제외한다]		
	2710.12	- -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 - - 자동차 휘발유[유연(有鉛)의 것으로 한정한다]		
1881	2710.12.11	- - - - 알·오·엔 97 이상의 것	0%	E0
1882	2710.12.12	- - - - 알·오·엔 90 이상이고 알·오·엔 97 미만의 것	0%	E0
1883	2710.12.13	- - - - 그 밖의 알·오·엔인 것	0%	E0
		- - - 자동차 휘발유[무연(無鉛)의 것으로 한정한다]		
		- - - - 알·오·엔 97 이상의 것		
1884	2710.12.21	- - - - - 혼합되지 않은 것	0%	E0
1885	2710.12.22	- - - - - 에탄올과 혼합된 것	0%	E0
1886	2710.12.23	- - - - - 기타	0%	E0
		- - - - 알·오·엔 90 이상이고 알·오·엔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97 미만의 것		
1887	2710.12.24	- - - - - 혼합되지 않은 것	0%	E0
1888	2710.12.25	- - - - - 에탄올과 혼합된 것	0%	E0
1889	2710.12.26	- - - - - 기타	0%	E0
		- - - - 그 밖의 알·오·엔 의 것		
1890	2710.12.27	- - - - - 혼합되지 않은 것	0%	E0
1891	2710.12.28	- - - - - 에탄올과 혼합된 것	0%	E0
1892	2710.12.29	- - - - - 기타	0%	E0
		- - - 항공용 피스톤 내연기관용의 항공휘발유		
1893	2710.12.31	- - - - 옥탄 100 이상의 것	0%	E0
1894	2710.12.39	- - - - 기타	0%	E0
1895	2710.12.40	- - - 테트라프로필렌(tetrapropylene)	0%	E0
1896	2710.12.50	- - - 백정	0%	E0
1897	2710.12.60	- - - 저 방향성 용제(방향성분의 함유량이 총 중량의 100 분의 1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0%	E0
1898	2710.12.70	- - - 그 밖의 휘발성 유기 용제	0%	E0
1899	2710.12.80	- - - 나프타(개질휘발유와 자동차 연료 혼합용의 그 밖의 조제품으로 한정한다)	0%	E0
		- - - 기타		
1900	2710.12.91	- - - - 알파 올레핀	0%	E0
1901	2710.12.92	- - - - 그 밖의 휘발유(인화점이 섭씨 23 도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0%	E0
1902	2710.12.99	- - - - 기타	0%	E0
	2710.19	- - 기타		
1903	2710.19.20	- - - 톱트 크루즈(Topped crudes)	0%	E0
1904	2710.19.30	- - - 카본 블랙(carbon black) 공급 원료	0%	E0
		- - - 윤활유와 그리스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1905	2710.19.41	- - - - 윤활유 재료원료	0%	E0
1906	2710.19.42	- - - - 항공기 엔진용의 윤활유	0%	E0
1907	2710.19.43	- - - - 그 밖의 윤활유	5%	EX
1908	2710.19.44	- - - - 윤활 그리스	5%	E5
1909	2710.19.50	- - - 유압 제동액	5%	E5
1910	2710.19.60	- - - 변환기와 차단기 유	0%	E0
		- - - 디젤연료, 연료유		
1911	2710.19.71	- - - - 자동차용 디젤유	0%	E0
1912	2710.19.72	- - - - 그 밖의 디젤유	0%	E0
1913	2710.19.79	- - - - 연료유	0%	E0
1914	2710.19.81	- - - 항공유(제트연료)(인화점이 섭씨 23 도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0%	E0
1915	2710.19.82	- - - 항공유(제트연료)(인화점이 섭씨 23 도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0%	E0
1916	2710.19.83	- - - 그 밖의 등유	0%	E0
1917	2710.19.89	- - - 그 밖의 중유와 조제품	0%	E0
1918	2710.19.90	- - - 기타	0%	E0
1919	2710.20.00	-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및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서 바이오디젤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웨이스트 오일(waste oil)은 제외한다]	0%	E0
		- 웨이스트 오일(waste oil)		
1920	2710.91.00	- - 폴리염소화 비페닐(PCBs), 폴리염소화 테르페닐(PCTs)이나 폴리브롬화 비페닐(PBBs)을 함유하는 것	0%	E0
1921	2710.99.00	- - 기타	0%	E0
	27.11	**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		
		- 액화한 것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1922	2711.11.00	- - 천연가스	0%	E0
1923	2711.12.00	- - 프로판	0%	E0
1924	2711.13.00	- - 부탄	0%	E0
	2711.14	- - 에틸렌・프로필렌・부틸렌・부타디엔		
1925	2711.14.10	- - - 에틸렌	0%	E0
1926	2711.14.90	- - - 기타	0%	E0
1927	2711.19.00	- - 기타	0%	E0
		- 가스 상태인 것		
	2711.21	- - 천연가스		
1928	2711.21.10	- - -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는 것	0%	E0
1929	2711.21.90	- - - 기타	0%	E0
1930	2711.29.00	- - 기타	0%	E0
	27.12	석유젤리・파라핀왁스・마이크로크리스털린(micro crystalline)석유왁스・슬랙왁스(slack wax)・오조케라이트(ozokerite)・갈탄왁스・토탄왁스, 그 밖의 광물성 왁스와 합성이나 그 밖의 공정에 따라 얻은 이와 유사한 물품(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931	2712.10.00	- 석유젤리	0%	E0
1932	2712.20.00	- 파라핀왁스(기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75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0%	E0
	2712.90	- 기타		
1933	2712.90.10	- - 파라핀왁스	0%	E0
1934	2712.90.90	- - 기타	0%	E0
	27.13	석유코크스・석유역청(瀝青)과 그 밖의 석유나 역청유(瀝青油)의 잔재물		
		- 석유코크스		
1935	2713.11.00	- - 하소(煆燒)하지 않은 것	0%	E0
1936	2713.12.00	- - 하소(煆燒)한 것	0%	E0
1937	2713.20.00	- 석유역청(瀝青)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1938	2713.90.00	- 그 밖의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잔재물	0%	E0
	27.14	천연의 역청(瀝靑)·아스팔트, 역청질 혈암(瀝靑質 頁巖), 유모 혈암(油母 頁巖), 타르샌드(tar sand), 아스팔타이트와 아스팔트질의 암석		
1939	2714.10.00	- 역청질 혈암(瀝靑質 頁巖) 또는 유모 혈암(油母 頁巖) 및 타르샌드(tar sand)	0%	E0
1940	2714.90.00	- 기타	0%	E0
	27.15	역청질(瀝靑質) 혼합물[천연 아스팔트, 천연 역청(瀝靑), 석유역청(瀝靑), 광물성 타르, 광물성 타르 피치(tar pitch)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예: 역청질 매스틱과 컷백)]		
1941	2715.00.10	- 폴리우레탄 타르 코팅제	0%	E0
1942	2715.00.90	- 기타	0%	E0
1943	2716.00.00	전기에너지	0%	E0
		제 1 절 원소		
	28.01	플루오르·염소·브롬·요드		
1944	2801.10.00	- 염소	0%	E0
1945	2801.20.00	- 요드	0%	E0
1946	2801.30.00	- 플루오르, 브롬	0%	E0
1947	2802.00.00	승화황(昇華黃)·침강황(沈降黃)·콜로이드황	0%	E0
	28.03	탄소[카본 블랙(carbon black)과 따로 분류되지 않은 탄소물품을 포함한다]		
1948	2803.00.20	- 아세틸렌 블랙	0%	E0
		- 그 밖의 카본 블랙		
1949	2803.00.41	- - 고무가공용의 것	0%	E0
1950	2803.00.49	- - 기타	0%	E0
1951	2803.00.90	- 기타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28.04	수소·희가스(rare gas)와 그 밖의 비(非)금속원소		
1952	2804.10.00	- 수소	0%	E0
		- 희가스(rare gas)		
1953	2804.21.00	- - 아르곤	0%	E0
1954	2804.29.00	- - 기타	0%	E0
1955	2804.30.00	- 질소	0%	E0
1956	2804.40.00	- 산소	0%	E0
1957	2804.50.00	- 붕소, 텔루르	0%	E0
		- 규소		
1958	2804.61.00	- - 규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9.99 이상인 것	0%	E0
1959	2804.69.00	- - 기타	0%	E0
1960	2804.70.00	- 인	0%	E0
1961	2804.80.00	- 비소	0%	E0
1962	2804.90.00	- 셀렌	0%	E0
	28.05	알칼리금속·알칼리토류금속, 희토류(稀土類)금속, 스칸듐과 이트륨(상호 혼합된 것인지 또는 상호 합금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수은		
		- 알칼리나 알칼리토류 금속		
1963	2805.11.00	- - 나트륨	0%	E0
1964	2805.12.00	- - 칼슘	0%	E0
1965	2805.19.00	- - 기타	0%	E0
1966	2805.30.00	- 희토류(稀土類)금속, 스칸듐과 이트륨(상호 혼합된 것인지 또는 상호 합금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0%	E0
1967	2805.40.00	- 수은	0%	E0
		제 2 절 무기산과 무기 비(非)금속 산화물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28.06	**염화수소(염산)와 클로로황산**		
1968	2806.10.00	- 염화수소(염산)	0%	E0
1969	2806.20.00	- 클로로황산	0%	E0
1970	**2807.00.00**	**황산, 발연황산**	0%	E0
1971	**2808.00.00**	**질산, 황질산**	0%	E0
	28.09	**오산화인, 인산, 폴리인산(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972	2809.10.00	- 오산화인	0%	E0
	2809.20	- 인산과 폴리인산		
		- - 식품용		
1973	2809.20.31	- - - 차인산(次燐酸)	0%	E0
1974	2809.20.32	- - - 인산	0%	E0
1975	2809.20.39	- - - 기타	0%	E0
		- - 기타		
1976	2809.20.91	- - - 차인산(次燐酸)	0%	E0
1977	2809.20.92	- - - 인산	0%	E0
1978	2809.20.99	- - - 기타	0%	E0
1979	**2810.00.00**	**붕소의 산화물, 붕산**	0%	E0
	28.11	**그 밖의 무기산과 무기 비(非)금속 산화물**		
		- 그 밖의 무기산		
1980	2811.11.00	- - 플루오르화수소(플루오르화수소산)	0%	E0
1981	2811.12.00	- - 시안화수소(시안화수소산)	0%	E0
	2811.19	- - 기타		
1982	2811.19.10	- - - 비산	0%	E0
1983	2811.19.20	- - - 아미노술폰산(술파민산)	0%	E0
1984	2811.19.90	- - - 기타	0%	E0
		- 그 밖의 무기 비(非)금속 산화물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1985	2811.21.00	- - 이산화탄소	0%	E0
	2811.22	- - 이산화규소		
1986	2811.22.10	- - - 가루 모양인 것	0%	E0
1987	2811.22.90	- - - 기타	0%	E0
	2811.29	- - 기타		
1988	2811.29.10	- - - 오산화 비소	0%	E0
1989	2811.29.20	- - - 이산화황	0%	E0
1990	2811.29.90	- - - 기타	0%	E0
		제 3 절 비(非)금속 할로겐화합물과 황화합물		
	28.12	**비(非)금속 할로겐화물과 산화할로겐화물**		
		- 염화물과 산화염화물		
1991	2812.11.00	- - 카보닐 디클로라이드(포스겐)	0%	E0
1992	2812.12.00	- - 포스포러스 옥시클로라이드	0%	E0
1993	2812.13.00	- - 포스포러스 트리클로라이드	0%	E0
1994	2812.14.00	- - 포스포러스 펜타클로라이드	0%	E0
1995	2812.15.00	- - 설퍼 모노클로라이드	0%	E0
1996	2812.16.00	- - 설퍼 디클로라이드	0%	E0
1997	2812.17.00	- - 티오닐 클로라이드	0%	E0
1998	2812.19.00	- - 기타	0%	E0
1999	2812.90.00	- 기타	0%	E0
	28.13	**비(非)금속 황화물과 상관습(商慣習)상의 삼황화인**		
2000	2813.10.00	- 이황화탄소	0%	E0
2001	2813.90.00	- 기타	0%	E0
		제 4 절 무기염기, 금속 산화물·수산화물·과산화물		
	28.14	**무수(無水)암모니아나 암모니아수**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2002	2814.10.00	- 무수(無水)암모니아	0%	E0
2003	2814.20.00	- 암모니아수	0%	E0
	28.15	**수산화나트륨[가성(苛性)소다], 수산화칼륨[가성(苛性)칼륨], 과산화나트륨・과산화칼륨**		
		- 수산화나트륨[가성(苛性)소다]		
2004	2815.11.00	- - 고체	5%	EX
2005	2815.12.00	- - 수용액(소다액이나 액체 상태의 소다)	5%	EX
2006	2815.20.00	- 수산화칼륨[가성(苛性)칼륨]	0%	E0
2007	2815.30.00	- 과산화나트륨이나 과산화칼륨	0%	E0
	28.16	**수산화마그네슘・과산화마그네슘, 스트론튬이나 바륨의 산화물・수산화물・과산화물**		
2008	2816.10.00	- 수산화마그네슘과 과산화마그네슘	0%	E0
2009	2816.40.00	- 스트론튬이나 바륨의 산화물, 수산화물 및 과산화물	0%	E0
	28.17	**산화아연과 과산화아연**		
2010	2817.00.10	- 산화아연	5%	EX
2011	2817.00.20	- 과산화아연	0%	E0
	28.18	**인조 커런덤(corundum)(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산화알루미늄, 수산화알루미늄**		
2012	2818.10.00	- 인조 커런덤(corundum)(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	E0
2013	2818.20.00	- 산화알루미늄[인조 커런덤(corundum)은 제외한다]	0%	E0
2014	2818.30.00	- 수산화알루미늄	0%	E0
	28.19	**산화크로뮴과 수산화크로뮴**		
2015	2819.10.00	- 삼산화크로뮴	0%	E0
2016	2819.90.00	- 기타	0%	E0
	28.20	**산화망간**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2017	2820.10.00	- 이산화망간	0%	E0
2018	2820.90.00	- 기타	0%	E0
	28.21	산화철·수산화철·어스컬러(earth colour)[화합철분의 함유량이 산화제이철(Fe_2O_3)로서 계산하여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2019	2821.10.00	- 산화철과 수산화철	0%	E0
2020	2821.20.00	- 어스컬러(earth colour)	0%	E0
2021	2822.00.00	산화코발트와 수산화코발트, 상관습(商慣習)상의 산화코발트	0%	E0
2022	2823.00.00	산화티타늄	0%	E0
	28.24	산화납·연단(鉛丹)·오렌지납		
2023	2824.10.00	- 일산화납[리사지(litharge)·메시코트(massicot)]	0%	E0
2024	2824.90.00	- 기타	0%	E0
	28.25	히드라진·히드록실아민과 이들의 무기염, 그 밖의 무기염기·금속산화물·금속수산화물·금속과산화물		
2025	2825.10.00	- 히드라진과 히드록실아민 및 이들의 무기염	0%	E0
2026	2825.20.00	- 산화리튬과 수산화리튬	0%	E0
2027	2825.30.00	- 산화바나듐과 수산화바나듐	0%	E0
2028	2825.40.00	- 산화니켈과 수산화니켈	0%	E0
2029	2825.50.00	- 산화구리와 수산화구리	0%	E0
2030	2825.60.00	- 산화게르마늄과 이산화지르코늄	0%	E0
2031	2825.70.00	- 산화몰리브덴과 수산화몰리브덴	0%	E0
2032	2825.80.00	- 산화안티모니	0%	E0
2033	2825.90.00	- 기타	0%	E0
		제5절 무기산과 금속의 염과 과산화염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28.26	**플루오르화물, 플루오르화규산염·플루오르화알루미늄산염과 그 밖의 플루오르착염**		
		- 플루오르화물		
2034	2826.12.00	- - 플루오르화알루미늄	0%	E0
2035	2826.19.00	- - 기타	0%	E0
2036	2826.30.00	- 육플루오르화알루미늄산나트륨[인조 빙정석(氷晶石)]	0%	E0
2037	2826.90.00	- 기타	0%	E0
	28.27	**염화물·산화염화물·수산화염화물, 브롬화물·산화브롬화물과 요드화물·산화요드화물**		
2038	2827.10.00	- 염화암모늄	0%	E0
	2827.20	- 염화칼슘		
2039	2827.20.10	- - 전 중량의 100분의 73부터 100분의 80까지를 포함한 것	0%	E0
2040	2827.20.90	- - 기타	0%	E0
		- 그 밖의 염화물		
2041	2827.31.00	- - 마그네슘 염화물	0%	E0
2042	2827.32.00	- - 알루미늄 염화물	0%	E0
2043	2827.35.00	- - 니켈 염화물	0%	E0
	2827.39	- - 기타		
2044	2827.39.10	- - - 바륨이나 코발트의 것	0%	E0
2045	2827.39.20	- - - 철의 것	0%	E0
2046	2827.39.30	- - - 아연의 것	5%	EX
2047	2827.39.90	- - - 기타	5%	EX
		- 산화염화물과 수산화염화물		
2048	2827.41.00	- - 산화염화구리와 수산화염화구리	0%	E0
2049	2827.49.00	- - 기타	0%	E0
		- 브롬화물과 산화브롬화물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2050	2827.51.00	- - 브롬화나트륨이나 브롬화칼륨	0%	E0
2051	2827.59.00	- - 기타	0%	E0
2052	2827.60.00	- 요드화합물과 산화요드화물	0%	E0
	28.28	**하이포아염소산염・상관습(商慣習)상의 하이포아염소산칼슘・아염소산염・하이포아브롬산염**		
2053	2828.10.00	- 상관습(商慣習)상의 하이포아염소산칼슘과 그 밖의 하이포아염소산칼슘	0%	E0
	2828.90	- 기타		
2054	2828.90.10	- - 하이포아염소산나트륨	0%	E0
2055	2828.90.90	- - 기타	0%	E0
	28.29	**염소산염과 과염소산염, 브롬산염과 과브롬산염, 요드산염과 과요드산염**		
		- 염소산염		
2056	2829.11.00	- - 염소산나트륨	0%	E0
2057	2829.19.00	- - 기타	0%	E0
	2829.90	- 기타		
2058	2829.90.10	- - 과염소산나트륨	0%	E0
2059	2829.90.90	- - 기타	0%	E0
	28.30	**황화물과 폴리황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060	2830.10.00	- 황화나트륨	0%	E0
	2830.90	- 기타		
2061	2830.90.10	- - 황화 카드뮴이나 황화 아연	0%	E0
2062	2830.90.90	- - 기타	0%	E0
	28.31	**아이티온산염과 술폭실산염**		
2063	2831.10.00	- 아이티온산나트륨과 술폭실산나트륨	0%	E0
2064	2831.90.00	- 기타	0%	E0
	28.32	**아황산염과 티오황산염**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2065	2832.10.00	- 아황산나트륨	0%	E0
2066	2832.20.00	- 그 밖의 아황산염	0%	E0
2067	2832.30.00	- 티오황산염	0%	E0
	28.33	**황산염・명반・과산화황산염(과황산염)**		
		- 황산나트륨		
2068	2833.11.00	- - 황산이나트륨	0%	E0
2069	2833.19.00	- - 기타	0%	E0
		- 그 밖의 황산염		
2070	2833.21.00	- - 마그네슘 염화물	0%	E0
	2833.22	- - 황산알루미늄		
2071	2833.22.10	- - - 상업용의 것	5%	EX
2072	2833.22.90	- - - 기타	5%	EX
2073	2833.24.00	- - 황산니켈	0%	E0
2074	2833.25.00	- - 황산구리	0%	E0
2075	2833.27.00	- - 황산바륨	0%	E0
	2833.29	- - 기타		
2076	2833.29.20	- - - 삼염기성황산연	0%	E0
2077	2833.29.30	- - - 크로뮴의 것	0%	E0
2078	2833.29.90	- - - 기타	0%	E0
2079	2833.30.00	- 명반	0%	E0
2080	2833.40.00	- 과산화황산염(과황산염)	0%	E0
	28.34	**아질산염과 질산염**		
2081	2834.10.00	- 아질산염	0%	E0
		- 질산염		
2082	2834.21.00	- - 질산칼륨	0%	E0
	2834.29	- - 기타		
2083	2834.29.10	- - - 비스무트의 것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2084	2834.29.90	- - - 기타	0%	E0
	28.35	**포스피네이트(하이포아인산염)·포스포네이트(아인산염)·인산염, 폴리인산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085	2835.10.00	- 포스피네이트(하이포아인산염)와 포스포네이트(아인산염)	0%	E0
		- 인산염		
2086	2835.22.00	- - 인산일나트륨이나 인산이나트륨	0%	E0
2087	2835.24.00	- - 질산칼륨	0%	E0
	2835.25	- - 오르토인산수소칼슘(인산이칼슘)		
2088	2835.25.10	- - - 사료용	0%	E0
2089	2835.25.90	- - - 기타	0%	E0
2090	2835.26.00	- - 그 밖의 인산칼슘	0%	E0
	2835.29	- - 기타		
2091	2835.29.10	- - - 삼나트륨의 것	0%	E0
2092	2835.29.90	- - - 기타	0%	E0
		- 폴리인산염		
2093	2835.31.00	- - 삼인산나트륨(트리폴리인산나트륨)	5%	EX
	2835.39	- - 기타		
2094	2835.39.10	- - - 피로인산사나트륨	0%	E0
2095	2835.39.90	- - - 기타	0%	E0
	28.36	**탄산염, 과산화탄산염(과탄산염), 상관습(商慣習)상의 탄산암모늄(카르밤산암모늄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2096	2836.20.00	- 탄산이나트륨	0%	E0
2097	2836.30.00	- 탄산수소나트륨(중탄산나트륨)	0%	E0
2098	2836.40.00	- 탄산칼륨	0%	E0
	2836.50	- 탄산칼슘		
2099	2836.50.10	- - 식용 또는 의약품용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2100	2836.50.90	- - 기타	5%	E10
2101	2836.60.00	- 탄산바륨	0%	E0
		- 기타		
2102	2836.91.00	- - 탄산리튬	0%	E0
2103	2836.92.00	- - 탄산스트론튬	0%	E0
	2836.99	- - 기타		
2104	2836.99.10	- - - 상관습(商慣習)상의 탄산 암모늄	0%	E0
2105	2836.99.20	- - - 탄산납	0%	E0
2106	2836.99.90	- - - 기타	0%	E0
	28.37	**시안화물·산화시안화물·시안착염**		
		- 시안화물과 산화시안화물		
2107	2837.11.00	- - 시안화나트륨과 산화시안화나트륨	0%	E0
2108	2837.19.00	- - 기타	0%	E0
2109	2837.20.00	- 시안착염	0%	E0
	28.39	**규산염과 상관습(商慣習)상의 알칼리금속의 규산염**		
		- 규산나트륨		
2110	2839.11.00	- - 메타규산나트륨	0%	E0
	2839.19	- - 기타		
2111	2839.19.10	- - - 규산 나트륨	0%	E0
2112	2839.19.90	- - - 기타	0%	E0
2113	2839.90.00	- 기타	0%	E0
	28.40	**붕산염과 과산화붕산염(과붕산염)**		
		- 사붕산이나트륨[정제붕사(精製硼砂)]		
2114	2840.11.00	- - 무수물(無水物)	0%	E0
2115	2840.19.00	- - 기타	0%	E0
2116	2840.20.00	- 그 밖의 붕산염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2117	2840.30.00	- 과산화붕산염(과붕산염)	0%	E0
	28.41	**산화금속산염이나 과산화금속산염**		
2118	2841.30.00	- 중크롬산나트륨	0%	E0
2119	2841.50.00	- 그 밖의 크롬산염과 중크롬산염, 과산화크롬산염	0%	E0
		- 아망간산염·망간산염 및 과망간산염		
2120	2841.61.00	- - 과망간산칼륨	0%	E0
2121	2841.69.00	- - 기타	0%	E0
2122	2841.70.00	- 몰리브덴산염	0%	E0
2123	2841.80.00	- 텅스텐산염[울프라메이트(wolframate)]	0%	E0
2124	2841.90.00	- 기타	0%	E0
	28.42	**그 밖의 무기산염이나 과산화산염(아지드화물은 제외하고,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알루미노실리케이트를 포함한다)**		
2125	2842.10.00	- 규산의 겹염이나 착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알루미노실리케이트를 포함한다)	0%	E0
	2842.90	- 기타		
2126	2842.90.10	- - 아비산나트륨	0%	E0
2127	2842.90.20	- - 구리나 크로뮴 염	0%	E0
2128	2842.90.30	- - 그 밖의 풀민산염, 시안산염과 티오시안산염	0%	E0
2129	2842.90.90	- - 기타	0%	E0
		제 6 절 기타		
	28.43	**콜로이드 귀금속, 귀금속의 무기화합물이나 유기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인지에 상관없다), 귀금속의 아말감(amalgam)**		
2130	2843.10.00	- 콜로이드 귀금속	0%	E0
		- 은 화합물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2131	2843.21.00	- - 질산은	0%	E0
2132	2843.29.00	- - 기타	0%	E0
2133	2843.30.00	- 금 화합물	0%	E0
2134	2843.90.00	- 그 밖의 화합물, 아말감(amalgam)	0%	E0
	28.44	**방사성원소·방사성동위원소(핵분열성이나 연료핵친원소와 동위원소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화합물, 이들의 물품을 함유한 혼합물과 잔재물**		
	2844.10	- 천연 우라늄과 그 화합물, 합금·분산물(分散物)[서멧(cermet)을 포함한다]·도자제품과 이들의 혼합물(천연 우라늄이나 천연 우라늄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135	2844.10.10	- - 천연 우라늄과 그 화합물	0%	E0
2136	2844.10.90	- - 기타	0%	E0
	2844.20	- 우라늄 235를 농축한 우라늄과 그 화합물, 플루토늄과 그 화합물, 합금·분산물(分散物)[서멧(cermet)을 포함한다]·도자제품과 이들의 혼합물(우라늄 235를 농축한 우라늄·플루토늄이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137	2844.20.10	- - 우라늄 235를 농축한 우라늄과 그 화합물, 플루토늄과 그 화합물	0%	E0
2138	2844.20.90	- - 기타	0%	E0
	2844.30	- 우라늄 235를 열화시킨 우라늄과 그 화합물, 토륨과 그 화합물, 합금·분산물(分散物)[서멧(cermet)을 포함한다]·도자제품과 이들의 혼합물(우라늄 235를 열화시킨 우라늄·토륨이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139	2844.30.10	- - 우라늄 235를 열화시킨 우라늄과 그 화합물, 토륨과 그 화합물	0%	E0
2140	2844.30.90	- - 기타	0%	E0
	2844.40	- 방사성원소·방사성동위원소와 소호 제2844.10호·제2844.20호·제2844.30호의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것은 제외한 이들의 화합물, 합금·분산물(分散物)[서멧(cermet)을 포함한다]·도자 제품과 이들의 혼합물(이들의 방사성원소·방사성동위원소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방사성 잔재물		
2141	2844.40.10	- - 방사성 원소 및 방사성동위원소와 화합물, 방사성 잔재물	0%	E0
2142	2844.40.90	- - 기타	0%	E0
2143	2844.50.00	- 핵반응로에서 사용[조사(照射)]된 연료 요소[카트리지(cartridge)]	0%	E0
	28.45	동위원소(제 2844 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동위원소의 무기화합물이나 유기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144	2845.10.00	- 중수(重水)(산화 중수소)	0%	E0
2145	2845.90.00	- 기타	0%	E0
	28.46	희토류(稀土類)금속·이트륨·스칸듐이나 이들 금속혼합물의 무기·유기 화합물		
2146	2846.10.00	- 세륨화합물	0%	E0
2147	2846.90.00	- 기타	0%	E0
	28.47	과산화수소(요소로 고체화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148	2847.00.10	- 액체 상태의 것	0%	E0
2149	2847.00.90	- 기타	0%	E0
	28.49	탄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150	2849.10.00	- 탄화칼슘	5%	EX
2151	2849.20.00	- 탄화규소	0%	E0
2152	2849.90.00	- 기타	0%	E0
2153	2850.00.00	수소화물·질화물·아지드화물·규화물 및 붕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 2849 호의 탄화물은 제외한다)	0%	E0
	28.52	무기나 유기의 수은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아말감(amalgam)은 제외한다]		
	2852.10	-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		
2154	2852.10.10	- - 황산수은	0%	E0
2155	2852.10.20	- - 루미노퍼로 사용되는 수은 화합물	0%	E0
2156	2852.10.90	- - 기타	0%	E0
	2852.90	- 기타		
2157	2852.90.10	- - 수은 타닌산염	0%	E0
2158	2852.90.20	- - 수은황화물, 수은폴리황화물, 수은폴리인산염, 수은탄화물, 소호 제2934.99.90호의 헤테고리수은화합물, 수은펩톤(peptone) 유도체, 그 밖의 단백질계 물질의 유도체	0%	E0
2159	2852.90.90	- - 기타	0%	E0
	28.53	인화물(燐化物)(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인철은 제외한다), 그 밖의 무기화합물[증류수나 전도도수(傳導度水)와 이와 유사한 순도의 물을 포함한다], 액체공기[희가스(rare gas)가 제거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압축 공기, 아말감(amalgam)[귀금속의 아말감(amalgam)은 제외한다]		
2160	2853.10.00	- 시아노겐 클로라이드(염화시아노겐)	0%	E0
	2853.90	- 기타		
2161	2853.90.10	- - 탈염수(脫鹽水)	0%	E0
2162	2853.90.90	- - 기타	0%	E0
		제 1 절 탄화수소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01	비환식탄화수소		
2163	2901.10.00	- 포화비환식탄화수소	0%	E0
		- 불포화비환식탄화수소		
2164	2901.21.00	- - 에틸렌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2165	2901.22.00	- - 프로펜(프로필렌)	0%	E0
2166	2901.23.00	- - 부텐(부틸렌)과 이들의 이성체	0%	E0
2167	2901.24.00	- - 1,3-부타디엔과 이소프렌	0%	E0
	2901.29	- - 기타		
2168	2901.29.10	- - - 아세틸렌	0%	E0
2169	2901.29.20	- - - 헥센과 이들의 이성체	0%	E0
2170	2901.29.90	- - - 기타	0%	E0
	29.02	**환식탄화수소**		
		-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 및 시클로테르펜		
2171	2902.11.00	- - 시클로헥산	0%	E0
2172	2902.19.00	- - 기타	0%	E0
2173	2902.20.00	- 벤젠	0%	E0
2174	2902.30.00	- 톨루엔	0%	E0
		- 크실렌		
2175	2902.41.00	- - 오르토-크실렌	0%	E0
2176	2902.42.00	- - 메타-크실렌	0%	E0
2177	2902.43.00	- - 파라-크실렌	0%	E0
2178	2902.44.00	- - 혼합크실렌이성체	0%	E0
2179	2902.50.00	- 스티렌	0%	E0
2180	2902.60.00	- 에틸벤젠	0%	E0
2181	2902.70.00	- 큐멘	0%	E0
	2902.90	- 기타		
2182	2902.90.10	- - 도데실벤젠	0%	E0
2183	2902.90.20	- - 그 밖의 알킬벤젠	0%	E0
2184	2902.90.90	- - 기타	0%	E0
	29.03	**탄화수소의 할로겐화 유도체**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 포화비환식탄화수소의 염소화유도체		
	2903.11	- - 염화메탄(염화메틸)과 염화에탄(염화에틸)		
2185	2903.11.10	- - - 염화메탄(염화메틸)	0%	E0
2186	2903.11.90	- - - 기타	0%	E0
2187	2903.12.00	- - 이염화메탄(염화메틸렌)	0%	E0
2188	2903.13.00	- - 클로로포름(삼염화메탄)	0%	E0
2189	2903.14.00	- - 사염화탄소	0%	E0
2190	2903.15.00	- - 이염화에틸렌(ISO)(1,2-이염화에탄)	5%	E3
	2903.19	- - 기타		
2191	2903.19.10	- - - 1,2-디클로로프로판(프로필렌 디클로라이드)과 디클로로부탄	0%	E0
2192	2903.19.20	- - - 1,1,1-트리클로로에탄(메틸클로로포름)	0%	E0
2193	2903.19.90	- - - 기타	0%	E0
		- 불포화비환식탄화수소의 염소화유도체		
2194	2903.21.00	- - 염화비닐(염화에틸렌)	5%	E10
2195	2903.22.00	- - 삼염화에틸렌	0%	E0
2196	2903.23.00	- - 사염화에틸렌(과염화에틸렌)	0%	E0
2197	2903.29.00	- - 기타	0%	E0
		- 비환식탄화수소의 플루오르화·브롬화 또는 요드화유도체		
2198	2903.31.00	- - 이브롬화에틸렌(ISO)(1,2-디브로모에탄)	0%	E0
	2903.39	- - 기타		
2199	2903.39.10	- - - 브로모메탄(메틸 브로마이드)	0%	E0
2200	2903.39.90	- - - 기타	0%	E0
		- 비환식탄화수소의 할로겐화유도체(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할로겐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2201	2903.71.00	- - 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0%	E0
2202	2903.72.00	- - 디클로로트리플루오르에탄	0%	E0
2203	2903.73.00	- - 디클로로플루오르에탄	0%	E0
2204	2903.74.00	- - 클로로디플루오르에탄	0%	E0
2205	2903.75.00	- - 디클로로펜타플루오르프로판	0%	E0
2206	2903.76.00	- -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브로모트리플루오르메탄과 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르에탄	0%	E0
2207	2903.77.00	- - 기타(불소와 염소만으로 퍼할로겐화한 것)	0%	E0
2208	2903.78.00	- - 그 밖의 퍼할로겐화유도체	0%	E0
2209	2903.79.00	- - 기타	0%	E0
		-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 또는 시클로테르펜탄화수소의 할로겐화유도체		
2210	2903.81.00	- - 1,2,3,4,5,6-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HCH(ISO)][린데인(ISO, INN)을 포함한다]	0%	E0
2211	2903.82.00	- - 앨드린(ISO), 클로르덴(ISO)과 헵타클로르(ISO)	0%	E0
2212	2903.83.00	- - 미렉스(ISO)	0%	E0
2213	2903.89.00	- - 기타	0%	E0
		- 방향족 탄화수소의 할로겐화유도체		
2214	2903.91.00	- - 클로로벤젠, 오르토-디클로로벤젠과 파라-디클로로벤젠	0%	E0
2215	2903.92.00	- - 헥사클로로벤젠(ISO)과 디·디·티(ISO)[클로페노탄(INN), 1,1,1-트리클로로-2,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	0%	E0
2216	2903.93.00	- - 펜타클로로벤젠(ISO)	0%	E0
2217	2903.94.00	- - 헥사브로모비페닐	0%	E0
2218	2903.99.00	- - 기타	0%	E0
	29.04	**탄화수소의 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할로겐화된 것인지에**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상관없다)		
2219	2904.10.00	- 술폰화유도체, 이들의 염과 에틸에스테르	0%	E0
	2904.20	- 니트로나 니트로소화 유도체		
2220	2904.20.10	- - 트리니트로톨루엔	0%	E0
2221	2904.20.90	- - 기타	0%	E0
		- 과불화옥탄술폰산, 그 염과 과불화옥탄술포닐플루오라이드		
2222	2904.31.00	- - 과불화옥탄술폰산	0%	E0
2223	2904.32.00	- - 과불화옥탄술폰산 암모늄	0%	E0
2224	2904.33.00	- - 과불화옥탄술폰산 리튬	0%	E0
2225	2904.34.00	- - 과불화옥탄술폰산 칼륨	0%	E0
2226	2904.35.00	- - 그 밖의 과불화옥탄술폰산의 염	0%	E0
2227	2904.36.00	- - 과불화옥탄술포닐플루오라이드	0%	E0
		- 기타		
2228	2904.91.00	- - 트리클로로니트로메탄(클로로피크린)	0%	E0
2229	2904.99.00	- - 기타	0%	E0
		제 2 절 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05	**비환식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 포화 1가알코올		
2230	2905.11.00	- - 메탄올(메틸알코올)	0%	E0
2231	2905.12.00	- - 1-프로판올(프로필알코올)과 2-프로판올(이소프로필알코올)	0%	E0
2232	2905.13.00	- - 1-부탄올(노르말-부틸알코올)	5%	E10
2233	2905.14.00	- - 그 밖의 부탄올	0%	E0
2234	2905.16.00	- - 옥탄올(옥틸알코올)과 그 이성체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2235	2905.17.00	- - 1-도데칸올(라우릴알코올), 1-헥사데칸올(세틸알코올) 및 1-옥타데칸올(스테아릴알코올)	0%	E0
2236	2905.19.00	- - 기타	0%	E0
		- 불포화 1가알코올		
2237	2905.22.00	- - 비환식테르펜알코올	0%	E0
2238	2905.29.00	- - 기타	0%	E0
		- 2가알코올		
2239	2905.31.00	- - 에틸렌글리콜(에탄디올)	0%	E0
2240	2905.32.00	- - 프로필렌글리콜(프로판-1,2-디올)	0%	E0
2241	2905.39.00	- - 기타	0%	E0
		- 그 밖의 다가알코올		
2242	2905.41.00	- - 2-에틸-2-(히드록시메틸)프로판-1,3-디올(트리메틸올프로판)	0%	E0
2243	2905.42.00	- - 펜타에리트리톨	0%	E0
2244	2905.43.00	- - 만니톨	5%	E0
2245	2905.44.00	- - 디-글루시톨(소르비톨)	5%	EX
2246	2905.45.00	- - 글리세롤	0%	E0
2247	2905.49.00	- - 기타	0%	E0
		- 비환식알코올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248	2905.51.00	- - 에스클로비놀(INN)	0%	E0
2249	2905.59.00	- - 기타	0%	E0
	29.06	**환식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 또는 시클로테르펜		
2250	2906.11.00	- - 멘톨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2251	2906.12.00	- - 시클로헥산올・메틸시클로헥산올 및 디메틸시클로헥산올	0%	E0
2252	2906.13.00	- - 스테롤과 이노시톨	0%	E0
2253	2906.19.00	- - 기타	0%	E0
		- 방향족(芳香族)		
2254	2906.21.00	- - 벤질알코올	0%	E0
2255	2906.29.00	- - 기타	0%	E0
		제 3 절 페놀・페놀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07	**페놀과 페놀알코올**		
		- 1 가페놀		
2256	2907.11.00	- - 페놀(석탄산)과 그 염	0%	E0
2257	2907.12.00	- - 크레졸과 그 염	0%	E0
2258	2907.13.00	- - 옥틸페놀・노닐페놀과 이들의 이성체, 이들의 염	0%	E0
2259	2907.15.00	- - 나프톨과 이들의 염	0%	E0
2260	2907.19.00	- - 기타	0%	E0
		- 다가페놀, 페놀알코올		
2261	2907.21.00	- - 레소르시놀과 그 염	0%	E0
2262	2907.22.00	- - 히드로퀴논(퀴놀)과 그 염	0%	E0
2263	2907.23.00	- - 4,4'-이소프로필리덴디페놀(비스페놀에이, 디페닐올프로판)과 그 염	0%	E0
	2907.29	- - 기타		
2264	2907.29.10	- - - 페놀알코올	0%	E0
2265	2907.29.90	- - - 기타	0%	E0
	29.08	**페놀이나 페놀알코올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 할로겐화유도체와 이들의 염		
2266	2908.11.00	- - 펜타클로로페놀(ISO)	0%	E0
2267	2908.19.00	- - 기타	0%	E0
		- 기타		
2268	2908.91.00	- - 디노셉(ISO)과 그 염	0%	E0
2269	2908.92.00	- - 4,6-디니트로-오르토-크레졸 [DNOC(ISO)]과 그 염	0%	E0
2270	2908.99.00	- - 기타	0%	E0
		제 4 절 에테르・과산화알코올・과산화에테르・과산화케톤・3 원고리의 에폭시드・아세탈 및 헤미아세탈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09	**에테르・에테르알코올・에테르페놀・에테르알코올페놀・과산화알코올・과산화에테르・과산화케톤(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 비환식에테르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271	2909.11.00	- - 디에틸에테르	0%	E0
2272	2909.19.00	- - 기타	0%	E0
2273	2909.20.00	-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 또는 시클로테르펜에테르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0%	E0
2274	2909.30.00	- 방향족(芳香族)에테르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0%	E0
		- 에테르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2275	2909.41.00	- - 2,2'-옥시디에탄올(디에틸렌글리콜, 디골)	0%	E0
2276	2909.43.00	- - 에틸렌글리콜의 모노부틸에테르 또는 디에틸렌글리콜의 모노부틸에테르	0%	E0
2277	2909.44.00	- - 에틸렌글리콜의 그 밖의 모노알킬에테르 또는 디에틸렌글리콜의 그 밖의 모노알킬에테르	0%	E0
2278	2909.49.00	- - 기타	0%	E0
2279	2909.50.00	- 에테르페놀, 에테르알코올페놀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0%	E0
2280	2909.60.00	- 과산화알코올・과산화에테르・과산화케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0%	E0
	29.10	**3원고리의 에폭시드・에폭시알코올・에폭시페놀・에폭시에테르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281	2910.10.00	- 옥시란(에틸렌옥사이드)	0%	E0
2282	2910.20.00	- 메틸옥시란(프로필렌옥사이드)	0%	E0
2283	2910.30.00	- 1-클로로-2,3-에폭시프로판(에피클로로히드린)	0%	E0
2284	2910.40.00	- 디엘드린(ISO, INN)	0%	E0
2285	2910.50.00	- 엔드린(ISO)	0%	E0
2286	2910.90.00	- 기타	0%	E0
2287	2911.00.00	**아세탈 및 헤미아세탈(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0%	E0
		제 5 절 알데히드관능화합물		
	29.12	**알데히드(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알데히드의 환식중합체, 파라포름알데히드**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 비환식알데히드(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912.11	- - 메탄알(포름알데히드)		
2288	2912.11.10	- - - 포르말린	0%	E0
2289	2912.11.90	- - - 기타	0%	E0
2290	2912.12.00	- - 에탄알(아세트알데히드)	0%	E0
2291	2912.19.00	- - 기타	0%	E0
		- 환식알데히드(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292	2912.21.00	- - 벤즈알데히드	0%	E0
2293	2912.29.00	- - 기타	0%	E0
		- 알데히드-알코올, 알데히드-에테르, 알데히드-페놀과 그 밖의 산소관능 알데히드		
2294	2912.41.00	- - 바닐린(4-히드록시-3-메톡시벤즈알데히드)	0%	E0
2295	2912.42.00	- - 에틸바닐린(3-에톡시-4-히드록시벤즈알데히드)	0%	E0
	2912.49	- - 기타		
2296	2912.49.10	- - - 그 밖의 알데히드-알코올	0%	E0
2297	2912.49.90	- - - 기타	0%	E0
2298	2912.50.00	- 알데히드의 환식중합체	0%	E0
2299	2912.60.00	- 파라포름알데히드	0%	E0
2300	**2913.00.00**	**제 2912 호의 물품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0%	E0
		제 6 절 케톤관능화합물과 퀴논관능화합물		
	29.14	**케톤・퀴논(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 비환식케톤(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301	2914.11.00	- - 아세톤	5%	E0
2302	2914.12.00	- - 부탄온(메틸에틸케톤)	0%	E0
2303	2914.13.00	- - 4-메틸펜탄-2-온(메틸이소부틸케톤)	0%	E0
2304	2914.19.00	- - 기타	0%	E0
		-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 또는 시클로테르펜케톤(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305	2914.22.00	- - 시클로헥사논과 메틸시클로헥사논	0%	E0
2306	2914.23.00	- - 이오논과 메틸이오논	0%	E0
	2914.29	- - 기타		
2307	2914.29.10	- - - 캄퍼	0%	E0
2308	2914.29.90	- - - 기타	0%	E0
		- 방향족 케톤(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309	2914.31.00	- - 페닐아세톤(페닐프로판-2-온)	0%	E0
2310	2914.39.00	- - 기타	0%	E0
2311	2914.40.00	- 케톤-알코올과 케톤-알데히드	0%	E0
2312	2914.50.00	- 케톤-페놀과 그 밖의 산소관능 케톤	0%	E0
		- 퀴논		
2313	2914.61.00	- - 안트라퀴논	0%	E0
2314	2914.62.00	- - 코엔자임 Q10[유비데카레논(INN)]	0%	E0
2315	2914.69.00	- - 기타	0%	E0
		-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316	2914.71.00	- - 클로르데콘(ISO)	0%	E0
2317	2914.79.00	- - 기타	0%	E0
		제7절 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및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15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 포름산, 그 염과 에스테르		
2318	2915.11.00	- - 포름산	0%	E0
2319	2915.12.00	- - 포름산의 염	0%	E0
2320	2915.13.00	- - 포름산의 에스테르	0%	E0
		- 초산과 그 염, 무수(無水)초산		
2321	2915.21.00	- - 초산	5%	E10
2322	2915.24.00	- - 무수(無水)초산	0%	E0
	2915.29	- - 기타		
2323	2915.29.10	- - - 초산나트륨, 초산코발트	0%	E0
2324	2915.29.90	- - - 기타	0%	E0
		- 초산에스테르		
2325	2915.31.00	- - 초산에틸	5%	EX
2326	2915.32.00	- - 초산비닐	0%	E0
2327	2915.33.00	- - 초산노르말부틸	5%	E15
2328	2915.36.00	- - 초산디노셉(ISO)	0%	E0
	2915.39	- - 기타		
2329	2915.39.10	- - - 초산이소부틸	0%	E0
2330	2915.39.20	- - - 초산 2-에톡시에틸	0%	E0
2331	2915.39.90	- - - 기타	0%	E0
2332	2915.40.00	- 모노클로로 아세트산・디클로로 아세트산 또는 트리클로로 아세트산,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	0%	E0
2333	2915.50.00	- 프로피온산, 그 염과 에스테르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2334	2915.60.00	- 부탄산·펜탄산,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	0%	E0
	2915.70	- 팔미트산·스테아르산,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		
2335	2915.70.10	- - 팔미트산, 그 염과 에스테르	0%	E0
2336	2915.70.20	- - 스테아르산	0%	E0
2337	2915.70.30	- - 스테아르산의 염과 에스테르	0%	E0
	2915.90	- 기타		
2338	2915.90.10	- - 염화아세틸	0%	E0
2339	2915.90.20	- - 라우르산, 미리스트 산,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	0%	E0
2340	2915.90.30	- - 카프릴산, 그 염과 에스테르	0%	E0
2341	2915.90.40	- - 카프릭산, 그 염과 에스테르	0%	E0
2342	2915.90.90	- - 기타	0%	E0
	29.16	**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 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및 이들의 유도체		
2343	2916.11.00	- - 아크릴산과 그 염	0%	E0
2344	2916.12.00	- - 아크릴산의 에스테르	0%	E0
2345	2916.13.00	- - 메타아크릴산과 그 염	0%	E0
	2916.14	- - 메타아크릴산의 에스테르		
2346	2916.14.10	- - - 메타아크릴산메틸	0%	E0
2347	2916.14.90	- - - 기타	0%	E0
2348	2916.15.00	- - 올레산·리놀레산 또는 리놀렌산,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	0%	E0
2349	2916.16.00	- - 비나파크릴(ISO)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2350	2916.19.00	- - 기타	0%	E0
2351	2916.20.00	-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 또는 시클로테르펜모노카르복시산,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및 이들의 유도체	0%	E0
		- 방향족(芳香族) 모노카르복시산,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및 이들의 유도체		
2352	2916.31.00	- - 벤조산, 그 염과 에스테르	0%	E0
2353	2916.32.00	- - 과산화벤조일과 염화벤조일	0%	E0
2354	2916.34.00	- - 페닐아세트산과 그 염	0%	E0
	2916.39	- - 기타		
2355	2916.39.10	- - - 2,4-디클로로페녹시 아세트산과 그 염과 에스테르	0%	E0
2356	2916.39.20	- - - 페닐아세트산의 에스테르	0%	E0
2357	2916.39.90	- - - 기타	0%	E0
	29.17	**폴리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 비환식폴리카르복시산・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및 이들의 유도체		
2358	2917.11.00	- - 옥살산, 그 염과 에스테르	0%	E0
	2917.12	- - 아디프산, 그 염과 에스테르		
2359	2917.12.10	- - - 아디프산 디옥틸	0%	E0
2360	2917.12.90	- - - 기타	0%	E0
2361	2917.13.00	- - 아젤라산・세바스산,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	0%	E0
2362	2917.14.00	- - 무수말레산	0%	E0
2363	2917.19.00	- - 기타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2364	2917.20.00	-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 또는 시클로테르펜폴리카르복시산,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및 이들의 유도체	0%	E0
		- 방향족 폴리카르복시산,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및 이들의 유도체		
2365	2917.32.00	- - 오르토프탈산디옥틸	5%	EX
2366	2917.33.00	- - 오르토프탈산디노닐 또는 오르토프탈산디데실	0%	E0
	2917.34	- - 그 밖의 오르토프탈산의 에스테르		
2367	2917.34.10	- - - 오르토프탈산 디부틸	5%	EX
2368	2917.34.90	- - - 기타	5%	EX
2369	2917.35.00	- - 무수프탈산	0%	E0
2370	2917.36.00	- - 테레프탈산과 그 염	0%	E0
2371	2917.37.00	- - 테레프탈산디메틸	0%	E0
	2917.39	- - 기타		
2372	2917.39.10	- - - 트리옥틸트리멜리테이트	0%	E0
2373	2917.39.20	- - - 그 밖의 프탈 화합물(가소제용과 무수프탈산의 에스테르로 한정한다)	0%	E0
2374	2917.39.90	- - - 기타	0%	E0
	29.18	**추가 산소관능을 갖는 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 알코올관능의 카르복시산(그 밖의 산소관능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및 이들의 유도체		
2375	2918.11.00	- - 락트산, 그 염과 에스테르	0%	E0
2376	2918.12.00	- - 타르타르산	0%	E0
2377	2918.13.00	- - 타르타르산의 염과 에스테르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2378	2918.14.00	- - 시트르산	0%	E0
	2918.15	- - 시트르산의 염과 에스테르		
2379	2918.15.10	- - - 시트르산 칼슘	0%	E0
2380	2918.15.90	- - - 기타	0%	E0
2381	2918.16.00	- - 글루콘산, 그 염과 에스테르	0%	E0
2382	2918.17.00	- - 2,2-디페닐-2-하이드록시아세트산(벤질산)	0%	E0
2383	2918.18.00	- - 클로로벤질레이트(ISO)	0%	E0
2384	2918.19.00	- - 기타	0%	E0
		- 페놀관능기의 카르복시산(그 밖의 산소관능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및 이들의 유도체		
2385	2918.21.00	- - 살리실산과 그 염	0%	E0
2386	2918.22.00	- - 오르토-아세틸살리실산, 그 염과 에스테르	0%	E0
2387	2918.23.00	- - 그 밖의 살리실산의 에스테르와 이들의 염	0%	E0
	2918.29	- - 기타		
2388	2918.29.10	- - - 페놀의 알킬술폰 에스테르	5%	E0
2389	2918.29.90	- - - 기타	0%	E0
2390	2918.30.00	- 알데히드 또는 케톤관능기의 카르복시산(그 밖의 산소관능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및 이들의 유도체	0%	E0
		- 기타		
2391	2918.91.00	- - 2,4,5-티(ISO)(2,4,5-트리클로로페녹시아세트산), 그 염과 에스테르	0%	E0
2392	2918.99.00	- - 기타	0%	E0
		제 8 절 **비(非)금속 무기산의 에스테르와 이들의**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19	**인산에스테르와 이들의 염(락토포스페이트를 포함한다),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393	2919.10.00	-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	0%	E0
2394	2919.90.00	- 기타	0%	E0
	29.20	**그 밖의 비(非)금속 무기산의 에스테르(할로겐화수소의 에스테르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 티오인산에스테르(포스포로티오에이트)와 이들의 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395	2920.11.00	- - 파라티온(ISO)과 파라티온메틸(ISO)(메틸파라티온)	0%	E0
2396	2920.19.00	- - 기타	0%	E0
		- 아인산 에스테르와 그 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397	2920.21.00	- - 디메틸 포스파이트	0%	E0
2398	2920.22.00	- - 디에틸 포스파이트	0%	E0
2399	2920.23.00	- - 트리메틸 포스파이트	0%	E0
2400	2920.24.00	- - 트리에틸 포스파이트	0%	E0
2401	2920.29.00	- - 기타	0%	E0
2402	2920.30.00	- 엔도설판(ISO)	0%	E0
2403	2920.90.00	- 기타	0%	E0
		제 9 절 질소관능화합물		
	29.21	**아민관능화합물**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 비환식모노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404	2921.11.00	- - 메틸아민·디메틸아민 또는 트리메틸아민과 이들의 염	0%	E0
2405	2921.12.00	- - 2-(엔,엔-디메틸아미노)에틸클로라이드 염산염	0%	E0
2406	2921.13.00	- - 2-(엔,엔-디에틸아미노)에틸클로라이드 염산염	0%	E0
2407	2921.14.00	- - 2-(엔,엔-디이소프로필아미노)에틸클로라이드 염산염	0%	E0
2408	2921.19.00	- - 기타	0%	E0
		- 비환식폴리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409	2921.21.00	- - 에틸렌디아민과 그 염	0%	E0
2410	2921.22.00	- - 헥사메틸렌디아민과 그 염	0%	E0
2411	2921.29.00	- - 기타	0%	E0
2412	2921.30.00	- 포화지환식아민·불포화지환식아민이나 시클로테르펜 모노아민 또는 폴리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0%	E0
		- 방향족(芳香族) 모노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413	2921.41.00	- - 아닐린과 그 염	0%	E0
2414	2921.42.00	- - 아닐린유도체와 이들의 염	0%	E0
2415	2921.43.00	- - 톨루이딘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0%	E0
2416	2921.44.00	- - 디페닐아민과 그 유도체, 이들의 염	0%	E0
2417	2921.45.00	- - 1-나프틸아민(알파-나프틸아민),2-나프틸아민(베타-나프틸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0%	E0
2418	2921.46.00	- - 암페타민(INN)·벤즈페타민(INN)·덱스암페타민(INN)·에틸암페타민(INN)·펜캄파민(INN)·레페타민(INN)·레브암페타민(INN)·메페노렉스(INN) 및 펜터민(INN),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이들의 염		
2419	2921.49.00	- - 기타	0%	E0
		- 방향족(芳香族) 폴리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420	2921.51.00	- - 오르토-페닐렌디아민·메타-페닐렌디아민·파라-페닐렌디아민·디아미노톨루엔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0%	E0
2421	2921.59.00	- - 기타	0%	E0
	29.22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		
		- 아미노알코올(동종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이들의 에테르 및 에스테르, 이들의 염		
2422	2922.11.00	- - 모노에탄올아민과 그 염	0%	E0
2423	2922.12.00	- - 디에탄올아민과 그 염	0%	E0
2424	2922.14.00	- - 덱스트로프로폭시펜(INN)과 그 염	0%	E0
2425	2922.15.00	- - 트리에탄올아민	0%	E0
2426	2922.16.00	- - 과불화옥탄 술폰산 디에탄올암모늄	0%	E0
2427	2922.17.00	- - 메틸디에탄올아민과 에틸디에탄올아민	0%	E0
2428	2922.18.00	- - 2-(엔,엔-디이소프로필아미노)에탄올	0%	E0
	2922.19	- - 기타		
2429	2922.19.10	- - - 에탐부톨과 그 염, 에스테르와 그 밖의 유도체	0%	E0
2430	2922.19.20	- - - 디-2-아미노-엔-부틸-알코올	0%	E0
2431	2922.19.90	- - - 기타	0%	E0
		- 아미노나프톨 및 그 밖의 아미노페놀(동종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이들의 에테르 및 에스테르, 이들의 염		
2432	2922.21.00	- - 아미노히드록시 나프탈렌술폰산과 이들의 염	0%	E0
2433	2922.29.00	- - 기타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 아미노-알데히드·아미노-케톤과 아미노-퀴논(동종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염		
2434	2922.31.00	- - 암페프라몬(INN)·메타돈(INN)과 노르메타돈(INN), 이들의 염	0%	E0
2435	2922.39.00	- - 기타	0%	E0
		- 아미노산(동종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의 에스테르, 이들의 염		
2436	2922.41.00	- - 리신과 그 에스테르, 이들의 염	0%	E0
	2922.42	- - 글루탐산과 그 염		
2437	2922.42.10	- - - 글루탐산	0%	E0
2438	2922.42.20	- - - 글루타민산나트륨(MSG)	0%	E0
2439	2922.42.90	- - - 그 밖의 염	0%	E0
2440	2922.43.00	- - 안트라닐산과 그 염	0%	E0
2441	2922.44.00	- - 틸리딘(INN)과 그 염	0%	E0
2442	2922.49.00	- - 기타	0%	E0
	2922.50	- 아미노-알코올페놀·아미노산페놀과 그 밖의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		
2443	2922.50.10	- - 파라-아미노살리실산과 그 염, 에스테르와 그 밖의 유도체	0%	E0
2444	2922.50.90	- - 기타	0%	E0
	29.23	**제4암모늄염과 수산화 제4암모늄, 레시틴과 그 밖의 포스포아미노리피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445	2923.10.00	- 콜린과 그 염	0%	E0
	2923.20	- 레시틴과 그 밖의 포스포아미노리피드		
2446	2923.20.10	- - 레시틴(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	E0
2447	2923.20.90	- - 기타	0%	E0
2448	2923.30.00	- 과불화옥탄 술폰산 테트라에틸암모늄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2449	2923.40.00	- 과불화옥탄 술폰산 디데실디메틸암모늄	0%	E0
2450	2923.90.00	- 기타	0%	E0
	29.24	**카르복시 아미드관능화합물, 탄산의 아미드 관능화합물**		
		- 비환식아미드(비환식카르바메이트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451	2924.11.00	- - 메프로바메이트(INN)	0%	E0
	2924.12	- - 플루오로아세트아미드(ISO), 모노크로토포스(ISO), 포스파미돈(ISO)		
2452	2924.12.10	- - - 플루오로아세트아미드(ISO)와 포스파미돈(ISO)	0%	E0
2453	2924.12.20	- - - 모노크로토포스(ISO)	0%	E0
	2924.19	- - 기타		
2454	2924.19.10	- - - 카리소프로돌(Carisophrodol)	0%	E0
2455	2924.19.90	- - - 기타	0%	E0
		- 환식아미드(환식카르바메이트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4.21	- - 우레인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456	2924.21.10	- - - 4-에톡시페닐유리아(둘신)	0%	E0
2457	2924.21.20	- - - 디우론과 모뉴론	0%	E0
2458	2924.21.90	- - - 기타	0%	E0
2459	2924.23.00	- - 2-아세트아미도벤조산(엔-아세틸 안트라닐산)과 그 염	0%	E0
2460	2924.24.00	- - 에치나메이트(INN)	0%	E0
2461	2924.25.00	- - 알라클로르(ISO)	0%	E0
	2924.29	- - 기타		
2462	2924.29.10	- - - 아스파탐	0%	E0
2463	2924.29.20	- - - 뷰틸페닐메틸 카르바메이트, 메틸 이소프로필 페닐 카르바메이트	0%	E0
2464	2924.29.30	- - - 아세트아미노펜(파라세타몰), 살리실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아미드, 에텐자마이드		
2465	2924.29.90	- - - 기타	0%	E0
	29.25	**카르복시이미드 관능화합물(사카린과 그 염을 포함한다)과 이민관능화합물**		
		- 이미드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466	2925.11.00	- - 사카린과 그 염	5%	EX
2467	2925.12.00	- - 구루테치미드(INN)	0%	E0
2468	2925.19.00	- - 기타	0%	E0
		- 이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469	2925.21.00	- - 클로르디메포름(ISO)	0%	E0
2470	2925.29.00	- - 기타	0%	E0
	29.26	**니트릴관능화합물**		
2471	2926.10.00	- 아크릴로니트릴	0%	E0
2472	2926.20.00	- 1-시아노구아니딘(디시안디아미드)	0%	E0
2473	2926.30.00	- 펜프로포렉스(INN)와 그 염, 메사돈(INN) 제조중간체(4-시아노-2-디메틸아미노-4,4-디페닐부탄)	0%	E0
2474	2926.40.00	- 알파-페닐아세토아세토니트릴	0%	E0
2475	2926.90.00	- 기타	0%	E0
	29.27	**디아조화합물·아조화합물·아족시화합물**		
2476	2927.00.10	- 아조디카본아미드	0%	E0
2477	2927.00.90	- 기타	0%	E0
	29.28	**히드라진·히드록실아민의 유기 유도체**		
2478	2928.00.10	- 리누론	0%	E0
2479	2928.00.90	- 기타	0%	E0
	29.29	**그 밖의 질소관능화합물**		
	2929.10	- 이소시아네이트		
2480	2929.10.10	- - 디페닐메탄 디이소시아네이트(MDI)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2481	2929.10.20	- -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0%	E0
2482	2929.10.90	- - 기타	0%	E0
	2929.90	- 기타		
2483	2929.90.10	- - 사이클라민산나트륨	0%	E0
2484	2929.90.20	- - 그 밖의 사이클러메이트	0%	E0
2485	2929.90.90	- - 기타	0%	E0
		제 10 절 유기-무기화합물・헤테로고리화합물・핵산과 이들의 염 및 술폰아미드		
	29.30	**유기-황 화합물**		
2486	2930.20.00	- 티오카르바메이트와 디티오카르바메이트	0%	E0
2487	2930.30.00	- 티우람모노술파이드・티우람디술파이드 또는 티우람테트라술파이드	0%	E0
2488	2930.40.00	- 메티오닌	0%	E0
2489	2930.60.00	- 2-(엔,엔-디에틸아미노)에탄티올	0%	E0
2490	2930.70.00	- 비스(2-하이드록시에틸)술파이드[티오디글리콜(INN)]	0%	E0
2491	2930.80.00	- 알디카브(ISO), 캡타폴(ISO) 및 메타미도포스(ISO)	0%	E0
	2930.90	- 기타		
2492	2930.90.10	- - 디티오탄산염	0%	E0
2493	2930.90.90	- - 기타	0%	E0
	29.31	**그 밖의 유기-무기화합물**		
	2931.10	- 테트라메틸납, 테트라에틸납		
2494	2931.10.10	- - 테트라메틸납	0%	E0
2495	2931.10.20	- - 테트라에틸납	0%	E0
2496	2931.20.00	- 트리부틸틴 화합물	0%	E0
		- 그 밖의 유기-인 유도체		
2497	2931.31.00	- - 디메틸 메틸포스포네이트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2498	2931.32.00	- - 디메틸 프로필포스포네이트	0%	E0
2499	2931.33.00	- - 디에틸 에틸포스포네이트	0%	E0
2500	2931.34.00	- - 3-(트리하이드록시시릴)프로필 메틸포스포네이트 나트륨	0%	E0
2501	2931.35.00	- - 2,4,6-트리프로필-1,3,5,2,4,6-트리옥사트리포스피네인 2,4,6-트리옥사이드	0%	E0
2502	2931.36.00	- - (5-에틸-2-메틸-2-옥시도-1,3,2-디옥사포스피난-5-일)메틸 메틸 메틸포스포네이트	0%	E0
2503	2931.37.00	- - 비스[(5-에틸-2-메틸-2-옥시도-1,3,2-디옥사포스피난-5-일)메틸] 메틸포스포네이트	0%	E0
2504	2931.38.00	- - 메틸포스폰산과 (아미노이미노메틸)우레아의 염(1 : 1)	0%	E0
2505	2931.39.00	- - 기타	0%	E0
	2931.90	- 기타		
		- - 엔-(포스포노메틸) 글리세린과 그 염		
2506	2931.90.21	- - - 엔-(포스포노메틸) 글리세린	0%	E0
2507	2931.90.22	- - - 엔-(포스포노메틸) 글리세린의 염	0%	E0
2508	2931.90.30	- - 에테폰	0%	E0
		- - 유기 비소 화합물		
2509	2931.90.41	- - - 액체 상태의 것	0%	E0
2510	2931.90.49	- - - 기타	0%	E0
2511	2931.90.50	- - 디메틸틴 디클로라이드(Dimethyltin dichloride)	0%	E0
2512	2931.90.90	- - 기타	0%	E0
	29.32	**산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		
		- 붙지 않은 푸란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513	2932.11.00	- - 테트라히드로푸란	0%	E0
2514	2932.12.00	- - 2-푸르알데히드(푸르푸르알데히드)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2515	2932.13.00	- - 푸르푸릴 알코올과 테트라히드로 푸르푸릴 알코올	0%	E0
2516	2932.14.00	- - 수크랄로스	0%	E0
2517	2932.19.00	- - 기타	0%	E0
	2932.20	- 락톤		
2518	2932.20.10	- - 쿠마린 엔-(1,2-벤조피론), 메틸쿠마린 및 에틸쿠마린	0%	E0
2519	2932.20.90	- - 기타	0%	E0
		- 기타		
2520	2932.91.00	- - 이소사프롤	0%	E0
2521	2932.92.00	- - 1-(1,3-벤조디옥솔-5-일)프로판-2-온	0%	E0
2522	2932.93.00	- - 피페로날	0%	E0
2523	2932.94.00	- - 사프롤	0%	E0
2524	2932.95.00	- - 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모든 이성체)	0%	E0
	2932.99	- - 기타		
2525	2932.99.10	- - - 카보퓨란	0%	E0
2526	2932.99.90	- - - 기타	0%	E0
	29.33	**질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		
		- 붙지 않은 피라졸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527	2933.11.00	- - 페나존(안티피린)과 그 유도체	0%	E0
2528	2933.19.00	- - 기타	0%	E0
		- 붙지 않은 이미다졸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529	2933.21.00	- - 히단토인과 그 유도체	0%	E0
2530	2933.29.00	- - 기타	0%	E0
		- 붙지 않은 피리딘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531	2933.31.00	- - 피리딘과 그 염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2532	2933.32.00	- - 피페리딘과 그 염	0%	E0
2533	2933.33.00	- - 알펜타닐(INN)·아닐레리딘(INN)·베지트라마이드(INN)·브로마제팜(INN)·디페녹신(INN)·디펜옥실레이트(INN)·디피파논(INN)·펜타일(INN)·케토베미돈(INN)·메틸페니데이트(INN)·펜타조신(INN)·페치딘(INN)·페치딘(INN) 제조중간체 에이·펜사이클리딘(INN)(PCP)·페노페리딘(INN)·피프라드롤(INN)·피리트라미드(INN)·프로피람(INN) 및 트리메페리딘(INN)과 이들의 염	0%	E0
	2933.39	- - 기타		
2534	2933.39.10	- - - 클로르페니라민과 이소니아지드	0%	E0
2535	2933.39.30	- - - 파라콰트 염	0%	E0
2536	2933.39.90	- - - 기타	0%	E0
		- 퀴놀린고리나 이소퀴놀린고리의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으며 고리가 더 이상 붙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537	2933.41.00	- - 레보파놀(INN)과 그 염	0%	E0
	2933.49	- - 기타		
2538	2933.49.10	- - - 덱스트로메토르판(Dextromethorphan)	0%	E0
2539	2933.49.90	- - - 기타	0%	E0
		- 피리미딘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나 피페라진고리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540	2933.52.00	- - 말로닐우레아(바르비투르산)와 그 염	0%	E0
2541	2933.53.00	- - 아로바르비탈(INN)·아모바르비탈(INN)·바르비탈(INN)·부탈비탈(INN)·부토바르비탈(INN)·싸이클로바르비탈(INN)·메틸페노바르비탈(INN)·펜토바르비탈(INN)·페노바르비탈(INN)·섹부타바르비탈(INN)·세코바르비탈(INN) 및 비닐비탈(INN), 이들의 염	0%	E0
2542	2933.54.00	- - 그 밖의 말로닐우레아 유도체(바르비투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르산), 이들의 염		
2543	2933.55.00	- - 로프라졸람(INN)·메크로콰론(INN)·메타콰론(INN) 및 지페프롤(INN), 이들의 염	0%	E0
	2933.59	- - 기타		
2544	2933.59.10	- - - 다이아지논	0%	E0
2545	2933.59.90	- - - 기타	0%	E0
		- 붙지 않은 트리아진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546	2933.61.00	- - 멜라민	0%	E0
2547	2933.69.00	- - 기타	0%	E0
		- 락탐		
2548	2933.71.00	- - 6-헥산락탐(에프시론-카프로락탐)	0%	E0
2549	2933.72.00	- - 클로바잠(INN)과 메치푸리론(INN)	0%	E0
2550	2933.79.00	- - 그 밖의 락탐	0%	E0
		- 기타		
2551	2933.91.00	- - 알프라졸람(INN)·카마제팜(INN)·클로르디아제폭사이드(INN)·클로나제팜(INN)·클로라제페이트·델로라제팜(INN)·디아제팜(INN)·에스타졸람(INN)·에틸로프라제페이트(INN)·플르디아제팜(INN)·플루니트라제팜(INN)·플루라제팜(INN)·할라제팜(INN)·로라제팜(INN)·로르메타제팜(INN)·마진돌(INN)·메다제팜(INN)·미다졸람(INN)·니메타제팜(INN)·니트라제팜(INN)·놀다제팜(INN)·옥사제팜(INN)·피나제팜(INN)·프라제팜(INN)·피로발레톤(INN)·테마제팜(INN)·테트라제팜(INN) 및 트리아졸람(INN), 이들의 염	0%	E0
2552	2933.92.00	- - 아진포스-메틸(ISO)	0%	E0
	2933.99	- - 기타		
2553	2933.99.10	- - - 메벤다졸과 파르벤다졸	0%	E0
2554	2933.99.90	- - - 기타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29.34	**핵산과 이들의 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 밖의 헤테로고리 화합물**		
2555	2934.10.00	- 붙지 않은 티아졸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0%	E0
2556	2934.20.00	- 벤조티아졸고리의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으며 고리가 더 이상 붙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E0
2557	2934.30.00	- 페노티아진고리의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으며 고리가 더 이상 붙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E0
		- 기타		
2558	2934.91.00	- - 아미노렉스(INN)·브로티졸람(INN)·클로티아제팜(INN)·클록사졸람(INN)·덱스트로모라미드(INN)·할옥사졸람(INN)·케타졸람(INN)·메소카르브(INN)·옥사졸람(INN)·페몰린(INN)·펜디메트라진(INN)·펜메트라진(INN) 및 수펜타닐(INN), 이들의 염	0%	E0
	2934.99	- - 기타		
2559	2934.99.10	- - - 핵산과 이들의 염	0%	E0
2560	2934.99.20	- - - 술톤, 술탐, 딜티아젬	5%	E10
2561	2934.99.30	- - - 6-아미노페니실린산	0%	E0
2562	2934.99.40	- - - 3-아지도-3-디옥시티미딘	0%	E0
2563	2934.99.50	- - - 옥사디아존(순도가 전 중량의 100 분의 94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0%	E0
2564	2934.99.90	- - - 기타	0%	E0
	29.35	**술폰아미드**		
2565	2935.10.00	- 엔-메틸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0%	E0
2566	2935.20.00	- 엔-에틸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0%	E0
2567	2935.30.00	- 엔-에틸-엔-(2-히드록시에틸)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0%	E0
2568	2935.40.00	- 엔-(2-히드록시에틸)-엔-메틸과불화옥탄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술폰아미드		
2569	2935.50.00	- 그 밖의 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0%	E0
2570	2935.90.00	- 기타	0%	E0
		제 11 절 프로비타민·비타민 및 호르몬		
	29.36	**프로비타민과 비타민(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하며, 천연의 프로비타민 농축물과 비타민 농축물을 포함한다), 이들의 유도체로서 주로 비타민으로 사용하는 것과 이들의 상호 혼합물(용매에 용해하였는지에 상관없다)**		
		- 비타민과 이들의 유도체(혼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571	2936.21.00	- - 비타민 A 와 이들의 유도체	0%	E0
2572	2936.22.00	- - 비타민 B1 과 이들의 유도체	0%	E0
2573	2936.23.00	- - 비타민 B2 와 이들의 유도체	0%	E0
2574	2936.24.00	- - 디-판토텐산이나 디엘-판토텐산(비타민 B3 나 비타민 B5)과 이들의 유도체	0%	E0
2575	2936.25.00	- - 비타민 B6 와 이들의 유도체	0%	E0
2576	2936.26.00	- - 비타민 B12 와 이들의 유도체	0%	E0
2577	2936.27.00	- - 비타민 C 와 이들의 유도체	0%	E0
2578	2936.28.00	- - 비타민 E 와 이들의 유도체	0%	E0
2579	2936.29.00	- - 그 밖의 비타민과 이들의 유도체	0%	E0
2580	2936.90.00	- 기타(천연의 프로비타민 농축물과 비타민 농축물을 포함한다)	0%	E0
	29.37	**호르몬·프로스타글란딘·트롬복산·류코트리엔(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유도체와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서 주로 호르몬으로 사용되는 것(변성된 폴리펩타이드 체인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 폴리펩타이드 호르몬, 프로테인 호르몬 및 글리코프로테인 호르몬, 이들의 유도체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와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2581	2937.11.00	- - 소마토트로핀, 그 유도체와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0%	E0
2582	2937.12.00	- - 인슐린과 그 염	0%	E0
2583	2937.19.00	- - 기타	0%	E0
		- 스테로이드 호르몬, 이들의 유도체와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2584	2937.21.00	- - 코르티손·히드로코르티손·프레드니손(데히드로코르티손) 및 프레드니소론(데히드로히드로코르티손)	0%	E0
2585	2937.22.00	- -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호르몬의 할로겐화 유도체	0%	E0
2586	2937.23.00	- -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토겐	0%	E0
2587	2937.29.00	- - 기타	0%	E0
2588	2937.50.00	- 프로스타글렌딘, 트롬복산과 류코트리엔, 이들의 유도체와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0%	E0
	2937.90	- 기타		
2589	2937.90.10	- -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의 것	0%	E0
2590	2937.90.20	- - 에피네프린, 아미노산 유도체	0%	E0
2591	2937.90.90	- - 기타	0%	E0
		제 12 절 글리코시드와 알칼로이드(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한다) 및 이들의 염·에테르·에스테르와 그 밖의 유도체		
	29.38	**글리코시드(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염·에테르·에스테르·그 밖의 유도체**		
2592	2938.10.00	- 루토시드(루틴)와 그 유도체	0%	E0
2593	2938.90.00	- 기타	0%	E0
	29.39	**알칼로이드(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염·에테르·에스테르·그 밖의 유도체		
		- 아편의 알칼로이드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39.11	- - 양귀비 줄기 농축물, 버프레노핀(INN)·코데인·디히드로코데인(INN)·에틸모르핀·에토르핀(INN)·헤로인·히드로코돈(INN)·히드로모르폰(INN)·모르핀·니코모르핀(INN)·옥시코돈(INN)·옥시모르폰(INN)·폴코딘(INN)·테바콘(INN) 및 테바인, 이들의 염		
2594	2939.11.10	- - - 양귀비 줄기 농축물과 이들의 염	0%	E0
2595	2939.11.90	- - - 기타	0%	E0
2596	2939.19.00	- - 기타	0%	E0
	2939.20	- 기나의 알칼로이드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597	2939.20.10	- - 키닌제제와 그 염	0%	E0
2598	2939.20.90	- - 기타	0%	E0
2599	2939.30.00	- 카페인과 그 염	0%	E0
		- 에페드린과 이들의 염		
2600	2939.41.00	- - 에페드린과 그 염	0%	E0
2601	2939.42.00	- - 슈도에페드린(INN)과 그 염	0%	E0
2602	2939.43.00	- - 캐친(INN)과 그 염	0%	E0
2603	2939.44.00	- - 놀에페드린과 그 염	0%	E0
	2939.49	- - 기타		
2604	2939.49.10	- - - 페닐프로판올아민[Phenylpropanolamine (PPA)]	0%	E0
2605	2939.49.90	- - - 기타	0%	E0
		- 테오피린·아미노피린(테오피린-에틸렌디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606	2939.51.00	- - 페네틸린(INN)과 그 염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2607	2939.59.00	- - 기타	0%	E0
		- 맥각 알칼로이드와 그 유도체, 이들의 염		
2608	2939.61.00	- - 엘고메트린(INN)과 그 염	0%	E0
2609	2939.62.00	- - 엘고타민(INN)과 그 염	0%	E0
2610	2939.63.00	- - 리세르그산과 그 염	0%	E0
2611	2939.69.00	- - 기타	0%	E0
		- 기타(식물성의 것에 한정한다)		
2612	2939.71.00	- - 코카인·엑고닌·레보메탐페타민·메탐페타민(INN)·메탐페타민 레이스메이트, 이들의 염·에스테르 및 그 밖의 유도체	0%	E0
2613	2939.79.00	- - 기타	0%	E0
2614	2939.80.00	- 기타	0%	E0
		제 13 절 그 밖의 유기화합물		
2615	2940.00.00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것으로 한정하며, 자당·유당·맥아당·포도당 및 과당은 제외한다), 당에테르·당아세탈과 당에스테르 및 그들의 염(제 2937 호·제 2938 호 또는 제 2939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0%	E0
	29.41	항생물질		
	2941.10	- 페니실린과 페니실린산의 구조를 갖는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 - 아목시실린과 그 염		
2616	2941.10.11	- - - 살균 처리하지 않은 것	5%	EX
2617	2941.10.19	- - - 기타	0%	E0
2618	2941.10.20	- - 암피실린과 그 염	5%	EX
2619	2941.10.90	- - 기타	0%	E0
2620	2941.20.00	- 스트렙토마이신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0%	E0
2621	2941.30.00	- 테트라사이클린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2622	2941.40.00	- 클로람페니콜과 그 유도체, 이들의 염	0%	E0
2623	2941.50.00	- 에리즈로마이신과 그 유도체, 이들의 염	0%	E0
2624	2941.90.00	- 기타	0%	E0
2625	**2942.00.00**	**그 밖의 유기화합물**	0%	E0
	30.01	장기(臟器) 요법용 선(腺)과 그 밖의 기관(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선(腺)과 그 밖의 기관이나 이들의 분비물의 추출물로서 장기(臟器) 요법용의 것, 헤파린과 그 염, 치료용·예방용으로 조제한 그 밖의 인체물질이나 동물의 물질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		
2626	3001.20.00	- 선(腺)이나 그 밖의 기관의 추출물이나 이들의 분비물의 추출물	0%	E0
2627	3001.90.00	- 기타	0%	E0
	30.02	**사람의 피, 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 면역혈청, 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2628	3002.11.00	- - 말라리아 진단 테스트 키트	0%	E0
	3002.12	- - 면역혈청과 그 밖의 혈액 분획물		
2629	3002.12.10	- - - 면역혈청, 혈장(단백)용액, 헤모글로빈 가루	0%	E0
2630	3002.12.90	- - - 기타	0%	E0
2631	3002.13.00	- - 면역물품(혼합하지 않은 것에 한정하며,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은 제외한다)	0%	E0
2632	3002.14.00	- - 면역물품(혼합된 것에 한정하며,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은 제외한다)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2633	3002.15.00	- - 면역물품(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에 한정한다)	0%	E0
2634	3002.19.00	- - 기타	0%	E0
	3002.20	- 백신(인체의약용으로 한정한다)		
2635	3002.20.10	- - 파상풍톡소이드	0%	E0
2636	3002.20.20	- - 백일해(百日咳)·홍역·뇌수막염이나 소아마비 백신	0%	E0
2637	3002.20.90	- - 기타	0%	E0
2638	3002.30.00	- 백신(동물의약용으로 한정한다)	0%	E0
2639	3002.90.00	- 기타	0%	E0
	30.03	**의약품(두 가지 이상의 성분을 혼합한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제3002호·제3005호·제3006호의 물품,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은 제외한다)**		
	3003.10	- 페니실린이나 이들의 유도체(페니실린산 구조를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함유한 것, 스트렙토마이신이나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2640	3003.10.10	- - 아목시실린(INN) 또는 그 염을 함유하는 것	5%	EX
2641	3003.10.20	- - 암피실린(INN) 또는 그 염을 함유하는 것	5%	EX
2642	3003.10.90	- - 기타	5%	EX
2643	3003.20.00	- 기타(항생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0%	E0
		- 기타(제2937호의 호르몬이나 그 밖의 물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2644	3003.31.00	- - 인슐린을 함유한 것	0%	E0
2645	3003.39.00	- - 기타	0%	E0
		- 기타(알칼로이드나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에 한정한다)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2646	3003.41.00	- - 에페드린 또는 그 염을 함유한 것	0%	E0
2647	3003.42.00	- - 슈도에페드린(INN) 또는 그 염을 함유한 것	0%	E0
2648	3003.43.00	- - 놀에페드린 또는 그 염을 함유한 것	0%	E0
2649	3003.49.00	- - 기타	0%	E0
2650	3003.60.00	- 기타(이 류의 소호주 제2호에 열거한 항말라리아 활성성분을 함유한 것에 한정한다)	0%	E0
2651	3003.90.00	- 기타	0%	E0
	30.04	**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제3005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3004.10	- 페니실린이나 이들의 유도체(페니실린산 구조를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함유한 것, 스트렙토마이신이나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 - 페니실린이나 그 유도체를 함유하는 것		
2652	3004.10.15	- - - 페니실린 G(페니실린 G 벤자신은 제외한다), 페녹시메틸 페니실린 또는 이들의 염을 함유한 것	0%	E0
2653	3004.10.16	- - - 암피실린, 아목시실린 또는 이들의 염을 함유한 것(복용용의 것으로 한정한다)	5%	EX
2654	3004.10.19	- - - 기타	0%	E0
		- - 스트렙토마이신이나 그 유도체를 함유하는 것		
2655	3004.10.21	- - - 연고 형태의 것	0%	E0
2656	3004.10.29	- - - 기타	0%	E0
	3004.20	- 기타(항생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2657	3004.20.10	- - 겐타마이신, 링코마이신, 술파메톡사졸 또는 그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복용용이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나 연고 형태로 한정한다)		
		- - 에리트로마이신 또는 그 유도체를 함유한 것		
2658	3004.20.31	- - - 복용용의 것	0%	E0
2659	3004.20.32	- - - 연고 형태의 것	0%	E0
2660	3004.20.39	- - - 기타	0%	E0
		- - 테트라사이클린 또는 클로람페니콜 또는 그 유도체를 함유한 것		
2661	3004.20.71	- - - 복용용의 것이나 연고 형태의 것	0%	E0
2662	3004.20.79	- - - 기타	0%	E0
		- - 기타		
2663	3004.20.91	- - - 복용용의 것이나 연고 형태의 것	0%	E0
2664	3004.20.99	- - - 기타	0%	E0
		- 기타(제 2937 호의 호르몬이나 그 밖의 물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2665	3004.31.00	- - 인슐린을 함유한 것	0%	E0
	3004.32	- - 코르티코스테로이드(corticosteroid) 호르몬을 함유한 것과 이들의 유도체나 그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2666	3004.32.10	- - - 덱사메타손이나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0%	E0
2667	3004.32.40	- - - 호박산히드로코르티손나트륨이나 플루오시놀론 아세토니드를 함유한 것	0%	E0
2668	3004.32.90	- - - 기타	0%	E0
2669	3004.39.00	- - 기타	0%	E0
		- 기타(알칼로이드나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2670	3004.41.00	- - 에페드린 또는 그 염을 함유한 것	0%	E0
2671	3004.42.00	- - 슈도에페드린(INN) 또는 그 염을 함유한 것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2672	3004.43.00	- - 놀에페드린 또는 그 염을 함유한 것	0%	E0
	3004.49	- - 기타		
2673	3004.49.10	- - - 모르핀이나 그 유도체를 함유한 것	0%	E0
2674	3004.49.50	- - - 파파베린이나 베르베린을 함유한 것(복용용으로 한정한다)	0%	E0
2675	3004.49.60	- - - 데오피린을 함유한 것(복용용으로 한정한다)	0%	E0
2676	3004.49.70	- - - 황산 아트로핀을 함유한 것	0%	E0
2677	3004.49.80	- - - 염산 키니네나 염화 디히드로퀴닌을 함유한 것(주사용으로 한정한다), 황산 키니네나 중황산염을 함유한 것(복용용으로 한정한다)	0%	E0
2678	3004.49.90	- - - 기타	0%	E0
	3004.50	- 기타(제 2936 호의 비타민이나 그 밖의 물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2679	3004.50.10	- - 아동용으로 적합한 것(시럽 형태로 한정한다)	0%	E0
		- - 기타(하나 이상의 비타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680	3004.50.21	- - - 복용용의 것	0%	E0
2681	3004.50.29	- - - 기타	0%	E0
		- - 기타		
2682	3004.50.91	- - - 비타민 A · B 나 C 를 함유한 것	0%	E0
2683	3004.50.99	- - - 기타	0%	E0
	3004.60	- 기타(이 류의 소호주 제 2 호에 열거한 항말라리아 활성성분을 함유한 것에 한정한다)		
2684	3004.60.10	- - 알테미시닌을 함유한 것(그 밖의 다른 의약용 활성 성분과 혼합된 것으로 한정한다)	0%	E0
2685	3004.60.20	- - 알테수네이트나 클로로퀸을 함유한 것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2686	3004.60.90	- - 기타	0%	E0
	3004.90	- 기타		
2687	3004.90.10	- - 경피흡수시스템 패치(암이나 심장질환 치료용으로 한정한다)	0%	E0
2688	3004.90.20	- - 내복용 멸균수(밀봉된 제약용으로 한정한다)	0%	E0
2689	3004.90.30	- - 소독제	0%	E0
		- - 마취제		
2690	3004.90.41	- - - 국소마취제를 함유한 것	0%	E0
2691	3004.90.49	- - - 기타	0%	E0
		- - 기침 또는 감기의 치료를 위한 진통제, 해열제 및 그 밖의 의약품(항히스타민제를 함유했는지 상관없다)		
2692	3004.90.51	- - - 아세틸살리실산, 아세트아미노펜 또는 다이피론(INN)을 함유하는 것(복용용으로 한정한다)	0%	E0
2693	3004.90.52	- - -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을 함유한 것	0%	E0
2694	3004.90.53	- - - 디클로페낙을 함유한 것(복용용으로 한정한다)	0%	E0
2695	3004.90.54	- - - 피록시캄(INN)이나 이부프로펜을 함유한 것	0%	E0
2696	3004.90.55	- - - 기타[도찰제(塗擦制) 형태의 것으로 한정한다]	0%	E0
2697	3004.90.59	- - - 기타	0%	E0
		- - 항말라리아		
2698	3004.90.62	- - - 프리마퀸을 함유한 것	0%	E0
2699	3004.90.64	- - - 알테미시닌을 함유한 것(소호 제3004.60.10 호의 것은 제외한다)	0%	E0
		- - - 기타		
2700	3004.90.65	- - - - 한약(한약제)	0%	E0
2701	3004.90.69	- - - - 기타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 - 구충제		
2702	3004.90.71	- - - 피페라진이나 메벤다졸(INN)을 함유한 것	0%	E0
		- - - 기타		
2703	3004.90.72	- - - - 한약(한약제)	0%	E0
2704	3004.90.79	- - - - 기타	0%	E0
		- - 암,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또는 그 밖의 난치병의 치료를 위한 그 밖의 의약품		
2705	3004.90.81	- - - 디페록사민을 함유한 것(주사용으로 한정한다)	0%	E0
2706	3004.90.82	- - - 항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의약품	0%	E0
2707	3004.90.89	- - - 기타	0%	E0
		- - 기타		
2708	3004.90.91	- - - 염화나트륨이나 포도당을 함유하는 것(주입용으로 한정한다)	0%	E0
2709	3004.90.92	- - - 소르비톨이나 살부타몰을 함유하는 것(주입용으로 한정한다)	0%	E0
2710	3004.90.93	- - - 소르비톨이나 살부타몰을 함유하는 것(그 밖의 형태의 것으로 한정한다)	0%	E0
2711	3004.90.94	- - - 시메티딘(INN)이나 라니티딘(INN)을 함유한 것(주사용은 제외한다)	0%	E0
2712	3004.90.95	- - - 페노바르비탈, 디아제팜이나 클로르프로마진을 함유한 것(주사용이나 주입용은 제외한다)	0%	E0
2713	3004.90.96	- - - 점비액(點鼻液) 약품(나파졸린, 키실로메타졸린이나 옥시메타졸린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0%	E0
		- - - 기타		
2714	3004.90.98	- - - - 한약(한약제)	0%	E0
2715	3004.90.99	- - - - 기타	0%	E0
	30.05	**탈지면・거즈・붕대와 이와 유사한 제품 (예: 피복재・반창고・습포제)으로서 내과**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이나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		
	3005.10	- 접착성 피복재와 접착층을 갖는 그 밖의 물품		
2716	3005.10.10	- - 의료물질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	0%	E0
2717	3005.10.90	- - 기타	0%	E0
	3005.90	- 기타		
2718	3005.90.10	- - 붕대	0%	E0
2719	3005.90.20	- - 거즈	0%	E0
2720	3005.90.90	- - 기타	0%	E0
	30.06	**의료용품(이 류의 주 제4호의 물품으로 한정한다)**		
	3006.10	- 살균한 외과용 캣거트(catgut)·이와 유사한 살균한 봉합재[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흡수성 실을 포함한다]·살균한 수술 상처의 봉합용 접착제, 살균한 라미나리아(laminaria)와 살균한 라미나리아(laminaria)의 텐트, 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흡수성 지혈제, 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유착방지제(흡수성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2721	3006.10.10	- - 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흡수성 실, 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유착방지제(흡수성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0%	E0
2722	3006.10.90	- - 기타	0%	E0
2723	3006.20.00	- 혈액형 분류용 시약	0%	E0
	3006.30	- 엑스선 검사용 조영제, 환자에 투여할 진단용 시약		
2724	3006.30.10	- - 황산바륨(복용용으로 한정한다)	0%	E0
2725	3006.30.20	- - 미생물로 된 시약(동물용 생물학적 진단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	E0
2726	3006.30.30	- - 그 밖의 미생물 진단용 시약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2727	3006.30.90	- - 기타	0%	E0
	3006.40	- 치과용 시멘트와 그 밖의 치과용 충전제, 뼈 형성용 시멘트		
2728	3006.40.10	- - 치과용 시멘트와 그 밖의 치과용 충전제	0%	E0
2729	3006.40.20	- - 뼈 형성용 시멘트	0%	E0
2730	3006.50.00	- 구급상자와 구급대	0%	E0
2731	3006.60.00	- 제 2937 호의 호르몬, 그 밖의 제품 또는 살정자제(殺精子劑)를 기본 재료로 하는 피임성의 화학조제품	0%	E0
2732	3006.70.00	- 외과수술이나 신체검사를 할 때 신체 각 부분의 윤활제로 사용되거나 신체와 의료기기 사이의 접착약품으로서 사람이나 수의약에 사용되는 겔(gel) 조제품	0%	E0
		- 기타		
2733	3006.91.00	- - 장루(腸瘻)용으로 인정되는 기구	5%	EX
	3006.92	- - 폐(廢)의료용품		
2734	3006.92.10	- - - 암,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이나 그 밖의 난치병 치료용 의약품의 것	15%	EX
2735	3006.92.90	- - - 기타	15%	EX
	31.01	**동물성·식물성 비료(함께 혼합한 것인지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동물성·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비료**		
2736	3101.00.10	- 식물성 물질로만 만들어진 것	0%	E0
		- 기타		
2737	3101.00.92	- - 동물성 물질(구아노는 제외한다)로 화학적 처리를 한 것	0%	E0
2738	3101.00.99	- - 기타	0%	E0
	31.02	**질소비료(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로 한정한다)**		
2739	3102.10.00	- 요소(수용액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 황산암모늄, 황산암모늄 및 질산암모늄의 겹염과 혼합물		
2740	3102.21.00	- - 황산암모늄	0%	E0
2741	3102.29.00	- - 기타	0%	E0
2742	3102.30.00	- 질산암모늄(수용액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0%	E0
2743	3102.40.00	- 질산암모늄의 혼합물(탄산칼슘이나 그 밖의 비료성분이 아닌 무기물을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0%	E0
2744	3102.50.00	- 질산나트륨	0%	E0
2745	3102.60.00	- 질산칼슘 및 질산암모늄의 겹염과 혼합물	0%	E0
2746	3102.80.00	- 요소 및 질산암모늄의 혼합물(수용액이나 암모니아용액을 혼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	E0
2747	3102.90.00	- 기타(위의 소호에 열거하지 않은 혼합물을 포함한다)	0%	E0
	31.03	**인산비료(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로 한정한다)**		
		- 과인산석회		
	3103.11	- - 오산화인(P205)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35 이상인 것		
2748	3103.11.10	- - - 사료용	0%	E0
2749	3103.11.90	- - - 기타	0%	E0
	3103.19	- - 기타		
2750	3103.19.10	- - - 사료용	0%	E0
2751	3103.19.90	- - - 기타	0%	E0
	3103.90	- 기타		
2752	3103.90.10	- - 하소(煆燒)한 인산비료	0%	E0
2753	3103.90.90	- - 기타	0%	E0
	31.04	**칼륨비료(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로 한정한다)**		
2754	3104.20.00	- 염화칼륨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2755	3104.30.00	- 황산칼륨	0%	E0
2756	3104.90.00	- 기타	0%	E0
	31.05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비료의 필수요소인 질소·인·칼륨 중 두 가지나 세 가지를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비료, 이 류에 열거한 물품을 둥글넓적한(tablet)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 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3105.10	- 이 류에 열거한 물품을 둥글넓적한(tablet)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 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2757	3105.10.10	- - 과인산석회와 하소(煆燒)한 인산비료	0%	E0
2758	3105.10.20	- -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비료의 필수요소인 질소·인 및 칼륨 중 두 가지나 세 가지를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E0
2759	3105.10.90	- - 기타	0%	E0
2760	3105.20.00	- 질소·인 및 칼륨을 함유한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	0%	E0
2761	3105.30.00	- 오르토인산수소 이암모늄(인산이암모늄)	0%	E0
2762	3105.40.00	- 오르토인산이수소암모늄(인산일암모늄) 및 이것과 오르토인산수소이암모늄(인산이암모늄)의 혼합물	0%	E0
		- 질소와 인을 함유한 그 밖의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		
2763	3105.51.00	- - 질산염과 인산염을 함유한 비료	0%	E0
2764	3105.59.00	- - 기타	0%	E0
2765	3105.60.00	- 인과 칼륨을 함유한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	0%	E0
2766	3105.90.00	- 기타	0%	E0
	32.01	식물성 유연용 추출물(extract), 탄닌과 그 염·에테르·에스테르·그 밖의 유도체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2767	3201.10.00	- 퀘브라쵸 추출물(quebracho extract)	0%	E0
2768	3201.20.00	- 왓틀 추출물(wattle extract)	0%	E0
2769	3201.90.00	- 기타	0%	E0
	32.02	합성 유기유연제·무기유연제·조제 유연제(천연 유연제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유연전(柔軟前) 처리용 효소계 조제품		
2770	3202.10.00	- 합성 유기유연제	0%	E0
2771	3202.90.00	- 기타	0%	E0
	32.03	식물성·동물성 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염색용 추출물(extract)을 포함하고 수탄(獸炭)은 제외한다]와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2772	3203.00.10	- 식품공업용이나 음료공업용의 것	0%	E0
2773	3203.00.90	- 기타	0%	E0
	32.04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형광증백제(螢光增白劑)나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품(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합성 유기착색제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3204.11	- - 분산성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2774	3204.11.10	- - - 정제하지 않은 것	0%	E0
2775	3204.11.90	- - - 기타	0%	E0
	3204.12	- - 산성 염료(금속염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매염(媒染)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2776	3204.12.10	- - - 산성 염료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2777	3204.12.90	- - - 기타	0%	E0
2778	3204.13.00	- - 염기성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0%	E0
2779	3204.14.00	- - 직접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0%	E0
2780	3204.15.00	- - 건염(建染) 염료(그 상태에서 안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0%	E0
2781	3204.16.00	- - 반응성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0%	E0
	3204.17	- - 안료 색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2782	3204.17.10	- - - 합성 유기 안료(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0%	E0
2783	3204.17.90	- - - 기타	0%	E0
2784	3204.19.00	- - 기타(소호 제 3204.11 호부터 제 3204.19 호까지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착색제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0%	E0
2785	3204.20.00	- 형광증백제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 생산품	0%	E0
2786	3204.90.00	- 기타	0%	E0
2787	3205.00.00	레이크 안료,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 3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0%	E0
	32.06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 3203 호・제 3204 호・제 3205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 3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이산화티타늄을 기본 재료로 한 안료와 그 조제품		
	3206.11	- - 건조 상태로 계산하여 이산화티타늄의 중량이 100 분의 80 이상 함유된 것		
2788	3206.11.10	- - - 안료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2789	3206.11.90	- - - 기타	0%	E0
	3206.19	- - 기타		
2790	3206.19.10	- - - 안료	0%	E0
2791	3206.19.90	- - - 기타	0%	E0
	3206.20	- 크로뮴화합물을 기본 재료로 한 안료와 그 조제품		
2792	3206.20.10	- - 크로뮴화합물을 기본 재료로 한 황연, 크롬 그린 및 몰리브덴산염 오렌지 또는 적색	0%	E0
2793	3206.20.90	- - 기타	0%	E0
		-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		
	3206.41	- - 군청(群靑)과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2794	3206.41.10	- - - 조제품	0%	E0
2795	3206.41.90	- - - 기타	0%	E0
	3206.42	- - 황아연을 기본 재료로 한 리도폰(lithopone)·그 밖의 안료와 조제품		
2796	3206.42.10	- - - 조제품	0%	E0
2797	3206.42.90	- - - 기타	0%	E0
	3206.49	- - 기타		
2798	3206.49.10	- - - 조제품	0%	E0
2799	3206.49.90	- - - 기타	0%	E0
	3206.50	-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		
2800	3206.50.10	- - 조제품	0%	E0
2801	3206.50.90	- - 기타	0%	E0
	32.07	조제 안료·조제 유백제(乳白劑)·조제 그림물감·법랑·유약·유약용 슬립·액체 상태 러스터(lustre)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요업·에나멜공업·유리공업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유리 프리트(frit)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와 그 밖의 유리[가루·알갱이·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2802	3207.10.00	- 조제 안료·조제 유백제(乳白劑)·조제 그림물감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0%	E0
	3207.20	- 법랑과 유약·유약용 슬립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2803	3207.20.10	- - 에나멜 유약	0%	E0
2804	3207.20.90	- - 기타	0%	E0
2805	3207.30.00	- 액상러스터(lustre)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	0%	E0
2806	3207.40.00	- 유리 프리트(frit)와 그 밖의 유리[가루·알갱이 또는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0%	E0
	32.08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		
	3208.10	- 폴리에스테르를 기본 재료로 한 것		
		- - 바니시(varnish)[래커(lacquer)를 포함한다]		
2807	3208.10.11	- - - 치과용의 것	0%	E0
2808	3208.10.19	- - - 기타	0%	E0
2809	3208.10.20	- - 선체(船體)의 오염 및/또는 부식 방지용 페인트	0%	E0
2810	3208.10.90	- - 기타	0%	E0
	3208.20	- 아크릴이나 비닐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한 것		
2811	3208.20.40	- - 선체(船體)의 오염 및/또는 부식 방지용 페인트	0%	E0
2812	3208.20.70	- - 바니시(varnish)[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치과용의 것으로 한정한다]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2813	3208.20.90	- - 기타	0%	E0
	3208.90	- 기타		
		- - 바니시(varnish)[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내열성(耐熱性)이 섭씨 100 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814	3208.90.11	- - - 치과용의 것	0%	E0
2815	3208.90.19	- - - 기타	0%	E0
		- - 바니시(varnish)[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내열성(耐熱性)이 섭씨 100 도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2816	3208.90.21	- - - 치과용의 것	0%	E0
2817	3208.90.29	- - - 기타	0%	E0
2818	3208.90.30	- - 선체(船體)의 오염 및/또는 부식 방지용 페인트	0%	E0
2819	3208.90.90	- - 기타	0%	E0
	32.09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과 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수성(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3209.10	- 아크릴이나 비닐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한 것		
2820	3209.10.10	- - 바니시(varnish)[래커(lacquer)를 포함한다]	0%	E0
2821	3209.10.40	- - 가죽 페인트	0%	E0
2822	3209.10.50	- - 선체(船體)의 오염 및/또는 부식 방지용 페인트	0%	E0
2823	3209.10.90	- - 기타	0%	E0
2824	3209.90.00	- 기타	0%	E0
	32.10	그 밖의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래커(lacquer)·디스템퍼(distemper)를 포함한다], 가죽의 완성가공용으로 사용하는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조제 수성안료		
2825	3210.00.10	- 바니시(varnish)[래커(lacquer)를 포함한다]	0%	E0
2826	3210.00.20	- 디스템퍼(distemper)	0%	E0
2827	3210.00.30	- 가죽의 완성가공용으로 사용하는 조제 수성안료	0%	E0
		- 기타		
2828	3210.00.91	- - 선체(船體)의 오염 및/또는 부식 방지용 페인트	0%	E0
2829	3210.00.99	- - 기타	0%	E0
2830	**3211.00.00**	**조제 드라이어**	0%	E0
	32.12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시킨 안료[금속 가루·금속플레이크(flake)를 포함하며, 페인트·에나멜 제조에 사용되는 액체나 페이스트(paste)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스탬프용 박(箔),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염료와 그 밖의 착색제**		
2831	3212.10.00	- 스탬프용 박(箔)	0%	E0
	3212.90	- 기타		
		- -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시킨 안료[금속 가루 및 금속플레이크(flake)를 포함하며, 페인트·에나멜 제조에 사용되는 액체나 페이스트(paste)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2832	3212.90.11	- - - 알루미늄 페이스트	0%	E0
2833	3212.90.13	- - - 기름에 분산시킨 연백(鉛白)	0%	E0
2834	3212.90.14	- - - 기타(가죽 페인트 제조용의 것으로 한정한다)	0%	E0
2835	3212.90.19	- - - 기타	0%	E0
		- - 소매용의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염료와 그 밖의 착색제		
2836	3212.90.21	- - - 식품공업용이나 음료공업용의 것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2837	3212.90.22	- - - 그 밖의 염료	0%	E0
2838	3212.90.29	- - - 기타	0%	E0
	32.13	화가용·학생용·간판도장공용·색조 수정용·오락용 물감과 이와 유사한 물감[둥글넓적한(tablet) 모양인 것·튜브들이·병들이·접시들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이나 포장의 것으로 한정한다]		
2839	3213.10.00	- 세트인 것	0%	E0
2840	3213.90.00	- 기타	0%	E0
	32.14	유리 접합용 퍼티(putty)·접목용 퍼티(putty)·수지시멘트·코킹(caulking)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도장용 충전제, 건물의 외면·실내벽·마루·천장과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되는 비내화성 표면처리제		
2841	3214.10.00	- 유리 접합용 퍼티(putty)·접목용 퍼티(putty)·수지시멘트·코킹(caulking)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도장용 충전제	0%	E0
2842	3214.90.00	- 기타	0%	E0
	32.15	인쇄용 잉크·필기용 잉크·제도용 잉크와 그 밖의 잉크(농축하거나 고체화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인쇄용 잉크		
	3215.11	- - 흑색		
2843	3215.11.10	- - - 자외선 경화형 잉크	0%	E0
2844	3215.11.90	- - - 기타	0%	E0
2845	3215.19.00	- - 기타	0%	E0
	3215.90	- 기타		
2846	3215.90.10	- - 카본 매스(mass)(카본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E0
2847	3215.90.60	- - 필기용 잉크 또는 제도용 잉크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2848	3215.90.70	- - 제 8472 호의 등사기용으로 적합한 잉크	0%	E0
2849	3215.90.90	- - 기타	0%	E0
	33.01	정유(essential oil)[콘크리트(concrete)와 앱설루트(absolute)를 포함하며, 테르펜을 제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레지노이드(resinoid), 추출한 올레오레진(oleoresin), 정유(essential oil)의 농축물[냉침법(冷浸法)이나 온침법(溫浸法)에 따라 얻은 것으로서 유지·불휘발성유·왁스나 이와 유사한 물질을 매질(媒質)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정유(essential oil)에서 테르펜을 제거할 때 생기는 테르펜계 부산물, 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		
		- 정유(essential oil)(감귤류로 한정한다)		
2850	3301.12.00	- - 오렌지유	0%	E0
2851	3301.13.00	- - 레몬유	0%	E0
2852	3301.19.00	- - 기타	0%	E0
		- 정유(essential oil)(감귤류 외의 것으로 한정한다)		
2853	3301.24.00	- - 박하유[멘타 피페리타(Mentha piperita)]	0%	E0
2854	3301.25.00	- - 그 밖의 민트류로 만든 것	0%	E0
	3301.29	- - 기타		
2855	3301.29.10	- - - 레몬그라스, 시트로넬라, 육두구(肉荳), 계피, 생강, 소두구(小荳), 회향(茴香) 또는 팜로스(palmrose)의 것	0%	E0
2856	3301.29.20	- - - 백단향(白檀香)의 것	0%	E0
2857	3301.29.90	- - - 기타	0%	E0
2858	3301.30.00	- 레지노이드(resinoid)	0%	E0
	3301.90	- 기타		
2859	3301.90.10	- - 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솔루션(aqueous solution)(의약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2860	3301.90.90	- - 기타	5%	E0
	33.02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혼합물과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알코올의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방향성(芳香性)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조제품(음료제조용으로 한정한다)**		
	3302.10	- 식품공업용이나 음료공업용		
2861	3302.10.10	- - 방향성(芳香性) 알코올 조제품(알코올 음료 제조용으로 액체 상태의 것으로 한정한다)	150%	EX
2862	3302.10.20	- - 방향성(芳香性) 알코올 조제품(알코올 음료 제조용으로 그 밖의 상태의 것으로 한정한다)	150%	EX
2863	3302.10.90	- - 기타	0%	E0
2864	3302.90.00	- 기타	0%	E0
2865	**3303.00.00**	**향수와 화장수**	0%	E0
	33.04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		
2866	3304.10.00	- 입술화장용 제품류	0%	E0
2867	3304.20.00	- 눈화장용 제품류	0%	E0
2868	3304.30.00	-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	0%	E0
		- 기타		
2869	3304.91.00	- - 가루(압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	E0
	3304.99	- - 기타		
2870	3304.99.20	- - - 여드름 억제용 조제품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2871	3304.99.30	- - - 그 밖의 얼굴이나 피부용 크림과 로션	0%	E0
2872	3304.99.90	- - - 기타	0%	E0
	33.05	**두발용 제품류**		
	3305.10	- 샴푸		
2873	3305.10.10	- - 항진균 성분을 갖고 있는 것	8%	EX
2874	3305.10.90	- - 기타	8%	EX
2875	3305.20.00	- 퍼머넌트 웨이빙(permanent waving)용이나 스트레이트닝(straightening)용 제품류	0%	E0
2876	3305.30.00	- 헤어 래커(hair lacquer)	0%	E0
2877	3305.90.00	- 기타	8%	EX
	33.06	**구강·치과 위생용 제품류[치열 교정용 페이스트(paste)와 가루를 포함한다], 치간 청결용 실로서 개별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치실(dental floss)]**		
	3306.10	- 치약		
2878	3306.10.10	- - 예방적 치과치료용 가루와 페이스트(paste)	0%	E0
2879	3306.10.90	- - 기타	0%	E0
2880	3306.20.00	- 치간 청결용 실[치실(dental floss)]	0%	E0
2881	3306.90.00	- 기타	0%	E0
	33.07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2882	3307.10.00	- 면도용 제품류	0%	E0
2883	3307.20.00	- 인체용 탈취제와 땀 억제제	0%	E0
2884	3307.30.00	- 향을 첨가한 목욕용 염과 그 밖의 목욕용 제품류	0%	E0
		- 실내용 가향 또는 방취를 위한 조제품(종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교의식에 사용하는 방향조제품을 포함한다)		
	3307.41	- - 아가바티(agarbatti)와 그 밖의 연소시켜 사용하는 향기성의 조제품		
2885	3307.41.10	- - - 향 가루(incense)(종교의식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E0
2886	3307.41.90	- - - 기타	0%	E0
	3307.49	- - 기타		
2887	3307.49.10	- - - 실내용 가향 조제품(소독제를 포함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	E0
2888	3307.49.90	- - - 기타	0%	E0
	3307.90	- 기타		
2889	3307.90.10	- - 동물용 화장용품	0%	E0
2890	3307.90.30	- - 향수나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와 티슈	0%	E0
2891	3307.90.40	- - 그 밖의 조제향료 또는 화장품(탈모제를 포함한다)	0%	E0
2892	3307.90.50	- - 콘택트렌즈용이나 의안의 수용액	0%	E0
2893	3307.90.90	- - 기타	0%	E0
	34.01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막대(bar) 모양·케이크 모양·주형 모양으로 된 것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		
		- 비누·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막대(bar) 모양·케이크 모양·주형 모양으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및 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 및 부직포		
	3401.11	- - 화장용(약용을 포함한다)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2894	3401.11.40	- - - 살균용 비누를 포함한 약용 비누	0%	E0
2895	3401.11.50	- - - 목용용 비누를 포함한 그 밖의 비누	8%	EX
2896	3401.11.60	- - - 기타[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하거나 피복한 펠트(felt) 또는 부직포의 것으로 한정한다]	8%	E10
2897	3401.11.90	- - - 기타	8%	EX
	3401.19	- - 기타		
2898	3401.19.10	- - - 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하거나 피복한 펠트(felt)나 부직포의 것	0%	E0
2899	3401.19.90	- - - 기타	7%	E0
	3401.20	- 그 밖의 모양의 비누		
2900	3401.20.20	- - 비누 칩(chip)	5%	EX
		- - 기타		
2901	3401.20.91	- - - 재활용 종이의 부유 잉크 제거용의 것	7%	E0
2902	3401.20.99	- - - 기타	7%	E0
2903	3401.30.00	-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	E0
	34.02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 유기계면활성제(소매용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402.11	- - 음이온성		
2904	3402.11.10	- - - 황산화 지방성 알코올	0%	E0
2905	3402.11.40	- - - 설폰화 알킬벤젠	0%	E0
2906	3402.11.90	- - - 기타	0%	E0
2907	3402.12.00	- - 양이온성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3402.13	- - 비이온성		
2908	3402.13.10	- - - 하이드록시터미네이트(Hydroxylterminated) 폴리부타디엔	0%	E0
2909	3402.13.90	- - - 기타	0%	E0
	3402.19	- - 기타		
2910	3402.19.10	- - - 소화용 조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0%	E0
2911	3402.19.90	- - - 기타	0%	E0
	3402.20	- 소매용 조제품		
		- - 액체 상태의 것		
2912	3402.20.14	- - - 조제 계면활성제	0%	E0
2913	3402.20.15	- - - 조제세제나 조제 세척제(표백용·세척용이나 탈지용 조제품을 포함한다)	0%	E0
		- - 기타		
2914	3402.20.94	- - - 조제 계면활성제	0%	E0
2915	3402.20.95	- - - 조제세제나 조제 세척제(표백용·세척용이나 탈지용 조제품을 포함한다)	0%	E0
	3402.90	- 기타		
		- - 액체 상태의 것		
2916	3402.90.11	- - - 음이온성 습윤제	0%	E0
2917	3402.90.12	- - - 음이온성 조제세제나 조제 세척제(표백용·세척용이나 탈지용 조제품을 포함한다)	0%	E0
2918	3402.90.13	- - - 그 밖의 조제세제나 조제 세척제(표백용·세척용이나 탈지용 조제품을 포함한다)	0%	E0
2919	3402.90.14	- - - 그 밖의 음이온성 조제 계면활성제	0%	E0
2920	3402.90.19	- - - 기타	0%	E0
		- - 기타		
2921	3402.90.91	- - - 음이온성 습윤제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2922	3402.90.92	- - - 음이온성 조제세제나 조제 세척제(표백용·세척용이나 탈지용 조제품을 포함한다)	0%	E0
2923	3402.90.93	- - - 그 밖의 조제세제나 조제 세척제(표백용·세척용이나 탈지용 조제품을 포함한다)	0%	E0
2924	3402.90.94	- - - 그 밖의 음이온성 조제 계면활성제	0%	E0
2925	3402.90.99	- - - 기타	0%	E0
	34.03	**조제 윤활유[윤활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절삭제·볼트나 너트 방출제·방청제·부식 방지제·이형(mould release) 조제품을 포함한다], 방직용 재료·가죽·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오일링처리나 가지처리에 사용하는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70 이상인 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은 제외한다]**		
		- 석유나 역청유(瀝靑油)를 함유하는 것		
	3403.11	- - 방직용 재료·가죽·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처리용 조제품		
		- - - 액체 상태의 것		
2926	3403.11.11	- - - - 조제 윤활유	0%	E0
2927	3403.11.19	- - - - 기타	0%	E0
2928	3403.11.90	- - - 기타	0%	E0
	3403.19	- - 기타		
		- - - 액체 상태의 것		
2929	3403.19.11	- - - - 항공기 엔진용 조제품	0%	E0
2930	3403.19.12	- - - - 그 밖의 조제품(실리콘 오일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0%	E0
2931	3403.19.19	- - - - 기타	0%	E0
2932	3403.19.90	- - - 기타	0%	E0
		- 기타		
	3403.91	- - 방직용 재료·가죽·모피나 그 밖의 재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료의 처리용 조제품		
		- - - 액체 상태의 것		
2933	3403.91.11	- - - - 조제품(실리콘 오일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0%	E0
2934	3403.91.19	- - - - 기타	0%	E0
2935	3403.91.90	- - - 기타	0%	E0
	3403.99	- - 기타		
		- - - 액체 상태의 것		
2936	3403.99.11	- - - - 항공기 엔진용 조제품	0%	E0
2937	3403.99.12	- - - - 그 밖의 조제품(실리콘 오일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0%	E0
2938	3403.99.19	- - - - 기타	0%	E0
2939	3403.99.90	- - - 기타	0%	E0
	34.04	**인조 왁스와 조제 왁스**		
2940	3404.20.00	-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글리콜)의 것	0%	E0
	3404.90	- 기타		
2941	3404.90.10	- - 화학적으로 변성한 갈탄왁스의 것	0%	E0
2942	3404.90.90	- - 기타	0%	E0
	34.05	**신발용·가구용·마루용·차체(coachwork)용·유리용·금속용 광택제와 크림, 연마페이스트(paste)·연마가루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이러한 조제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하거나 피복한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셀룰러 플라스틱·셀룰러 고무 형태의 것인지에 상관없다](제 3404 호의 왁스는 제외한다)**		
2943	3405.10.00	- 신발용이나 가죽용 광택제·크림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0%	E0
2944	3405.20.00	- 목제가구·마루나 그 밖의 목제품의 유지용 광택제·크림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2945	3405.30.00	- 차체(coachwork)용 광택제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금속용 광택제는 제외한다)	0%	E0
	3405.40	- 조제 연마페이스트(paste)·조제 연마가루와 그 밖의 연마용 조제품		
2946	3405.40.20	- - 순 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0%	E0
2947	3405.40.90	- - 기타	0%	E0
	3405.90	- 기타		
2948	3405.90.10	- - 금속용 광택제	0%	E0
2949	3405.90.90	- - 기타	0%	E0
2950	**3406.00.00**	**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	0%	E0
	34.07	**조형용 페이스트(paste)(아동 오락용을 포함한다), 치과용 왁스나 치과용 인상재료 [세트로 된 것, 소매용으로 포장된 것 또는 판 모양·말굽 모양·막대(stick)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플라스터(plaster)(소석고나 황산칼슘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치과용 조제품**		
2951	3407.00.10	- 조형용 페이스트(paste)(아동 오락용으로 포장된 것을 포함한다)	0%	E0
2952	3407.00.20	- 치과용 왁스나 치과용 인상재료[세트로 된 것, 소매용으로 포장된 것 또는 판 모양·말굽 모양·막대(stick)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0%	E0
2953	3407.00.30	- 플라스터(plaster)(소석고나 황산칼슘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치과용 조제품	0%	E0
	35.01	**카세인(casein)·카세인산염(caseinate)과 그 밖의 카세인(casein) 유도체, 카세인 글루(casein glue)**		
2954	3501.10.00	- 카세인(casein)	0%	E0
	3501.90	- 기타		
2955	3501.90.10	- - 카세인염(caseinate)과 그 밖의 카세인(casein) 유도체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2956	3501.90.20	- - 카세인 글루(casein glue)	0%	E0
	35.02	알부민(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한 유장단백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0 을 초과하는 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알부민산염과 그 밖의 알부민 유도체		
		- 알의 흰자위(egg albumin)		
2957	3502.11.00	- - 건조한 것	0%	E0
2958	3502.19.00	- - 기타	0%	E0
2959	3502.20.00	- 밀크알부민(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	0%	E0
2960	3502.90.00	- 기타	0%	E0
	35.03	젤라틴[직사각형(정사각형의 것을 포함한다) 시트(sheet) 모양인 것을 포함하며, 표면가공이나 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젤라틴 유도체, 아이징글라스(isinglass), 그 밖의 동물성 글루(glue)[제 3501 호의 카세인 글루(casein glue)는 제외한다]		
		- 글루(glue)		
2961	3503.00.11	- - 어류 아교	0%	E0
2962	3503.00.19	- - 기타	0%	E0
2963	3503.00.30	- 아이징글라스(isinglass)	0%	E0
		- 젤라틴과 젤라틴 유도체		
2964	3503.00.41	- - 가루 모양인 것[팽창 레벨이 블룸 스케일(Bloom scale) 기준으로 에이(A)250 또는 비(B)230 이거나 그 보다 높은 것으로 한정한다]	0%	E0
2965	3503.00.49	- - 기타	0%	E0
2966	3504.00.00	펩톤(peptone)과 이들의 유도체, 그 밖의 단백질계 물질과 이들의 유도체(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하이드파우더(hide powder)(크롬명반을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35.05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예: 프리젤라티나이지드(pregelatinised) 전분이나 에스테르화 전분], 전분·덱스트린이나 그 밖의 변성전분을 기본 재료로 한 글루(glue)		
	3505.10	-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		
2967	3505.10.10	- - 덱스트린, 가용성이나 볶은 전분	0%	E0
2968	3505.10.90	- - 기타	5%	EX
2969	3505.20.00	- 글루(glue)	5%	EX
	35.06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2970	3506.10.00	-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E0
		- 기타		
2971	3506.91.00	- -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의 폴리머(polymer)나 고무를 기본 재료로 한 접착제	0%	E0
2972	3506.99.00	- - 기타	0%	E0
	35.07	효소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효소		
2973	3507.10.00	- 레네트(rennet)와 이들의 농축물	0%	E0
2974	3507.90.00	- 기타	0%	E0
2975	3601.00.00	화약	0%	E0
2976	3602.00.00	폭약(화약은 제외한다)	0%	E0
	36.03	도화선, 도폭선, 뇌관, 점화기, 전기뇌관		
2977	3603.00.10	- 세미 퓨즈, 소자 캡, 시그널 튜브	0%	E0
2978	3603.00.20	- 도화선, 도폭선	0%	E0
2979	3603.00.90	- 기타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36.04	**불꽃제품·신호용 조명탄·레인로켓(rain rocket)·안개 신호용품과 그 밖의 화공품**		
2980	3604.10.00	- 불꽃제품	0%	E0
	3604.90	- 기타		
2981	3604.90.20	- - 발화성 모형 군수품과 장난감용 뇌관	0%	E0
2982	3604.90.30	- - 신호용 조명탄이나 로켓	0%	E0
2983	3604.90.90	- - 기타	0%	E0
2984	**3605.00.00**	**성냥(제 3604 호의 화공품은 제외한다)**	0%	E0
	36.06	**페로세륨·그 밖의 발화성 합금(어떤 모양이라도 가능하다), 이 류의 주 제 2 호의 가연성 재료의 제품**		
2985	3606.10.00	- 흡연용 라이터나 이와 유사한 라이터를 충전하거나 재충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용기(용량이 300 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에 넣은 액체연료 또는 액화가스연료	0%	E0
	3606.90	- 기타		
2986	3606.90.10	- - 고체나 반고체 연료, 고체 알코올과 이와 유사한 조제 연료	0%	E0
2987	3606.90.20	- - 라이터 돌	0%	E0
2988	3606.90.30	- - 그 밖의 페로세륨 및 그 밖의 발화성 합금(어떤 모양이라도 가능하다)	0%	E0
2989	3606.90.40	- - 수지 토치(torch), 불쏘시개(firelighter)와 이와 유사한 물품	0%	E0
2990	3606.90.90	- - 기타	0%	E0
	37.01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평면 모양 사진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종이·판지·직물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평면 모양 인스턴트 프린트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팩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2991	3701.10.00	- 엑스선용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2992	3701.20.00	- 인스턴트 프린트필름	0%	E0
2993	3701.30.00	- 그 밖의 플레이트와 필름(각 변의 길이가 25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E0
		- 기타		
	3701.91	- - 천연색 사진용(폴리크롬)		
2994	3701.91.10	- - - 인쇄 공업용에 적합한 것	0%	E0
2995	3701.91.90	- - - 기타	0%	E0
	3701.99	- - 기타		
2996	3701.99.10	- - - 인쇄 공업용에 적합한 것	0%	E0
2997	3701.99.90	- - - 기타	0%	E0
	37.02	**롤 모양 사진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종이·판지·직물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과 롤 모양 인스턴트 프린트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998	3702.10.00	- 엑스선용	0%	E0
		- 그 밖의 필름(구멍이 없는 것으로서 폭이 105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2999	3702.31.00	- - 천연색 사진용(폴리크롬)	0%	E0
3000	3702.32.00	- - 기타[할로겐화은 에멀션(emulsion)으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0%	E0
3001	3702.39.00	- - 기타	0%	E0
		- 그 밖의 필름(구멍이 없는 것으로서 폭이 10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3002	3702.41.00	- - 폭이 610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길이가 200 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천연색 사진용의 것(폴리크롬)	0%	E0
	3702.42	- - 폭이 610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길이가 200 미터를 초과하는 것(천연색 사진용은 제외한다)		
3003	3702.42.10	- - -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과용이나 인쇄공업용으로 적합한 것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3004	3702.42.90	- - - 기타	0%	E0
3005	3702.43.00	- - 폭이 610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길이가 200 미터 이하인 것	0%	E0
3006	3702.44.00	- - 폭이 105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610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E0
		- 그 밖의 필름[천연색 사진용(폴리크롬)]		
	3702.52	- - 폭이 16 밀리미터 이하인 것		
3007	3702.52.20	- - - 영화용에 적합한 것	0%	E0
3008	3702.52.90	- - - 기타	0%	E0
3009	3702.53.00	- - 폭이 16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35 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 미터 이하인 것(슬라이드용으로 한정한다)	0%	E0
	3702.54	- - 폭이 16 밀리미터 초과 35 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 미터 이하인 것(슬라이드용은 제외한다)		
3010	3702.54.40	- - -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과용이나 인쇄공업용으로 적합한 것	0%	E0
3011	3702.54.90	- - - 기타	0%	E0
	3702.55	- - 폭이 16 밀리미터 초과 35 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 미터를 초과하는 것		
3012	3702.55.20	- - - 영화용에 적합한 것	0%	E0
3013	3702.55.50	- - -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과용이나 인쇄공업용으로 적합한 것	0%	E0
3014	3702.55.90	- - - 기타	0%	E0
	3702.56	- - 폭이 3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3015	3702.56.20	- - - 영화용에 적합한 것	0%	E0
3016	3702.56.90	- - - 기타	0%	E0
		- 기타		
	3702.96	- - 폭이 35 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 미터 이하인 것		
3017	3702.96.10	- - - 영화용에 적합한 것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3018	3702.96.90	- - - 기타	0%	E0
	3702.97	- - 폭이 35 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 미터를 초과하는 것		
3019	3702.97.10	- - - 영화용에 적합한 것	0%	E0
3020	3702.97.90	- - - 기타	0%	E0
	3702.98	- - 폭이 3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3021	3702.98.10	- - - 영화용에 적합한 것	0%	E0
3022	3702.98.30	- - - 기타(길이가 120 미터 이상의 것으로 한정한다)	0%	E0
3023	3702.98.90	- - - 기타	0%	E0
	37.03	**사진 인화지·판지·직물(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703.10	- 롤 모양(폭이 61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3024	3703.10.10	- - 폭이 1,000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E0
3025	3703.10.90	- - 기타	0%	E0
3026	3703.20.00	- 기타[천연색 사진용(폴리크롬)으로 한정한다]	0%	E0
3027	3703.90.00	- 기타	0%	E0
	37.04	**사진플레이트·필름·인화지·판지·직물(노광한 것으로서 현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028	3704.00.10	- 엑스선 플레이트나 필름	0%	E0
3029	3704.00.90	- 기타	0%	E0
	37.05	**사진플레이트와 필름(노광하여 현상한 것으로 한정하며, 영화용 필름은 제외한다)**		
3030	3705.00.10	- 엑스선	0%	E0
3031	3705.00.20	- 마이크로필름	0%	E0
3032	3705.00.90	- 기타	0%	E0
	37.06	**영화용 필름(노광하여 현상한 것으로 한정하며, 사운드트랙이 있는 것인지 또는 사운**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드트랙만으로 구성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3706.10	- 폭이 35 밀리미터 이상인 것		
3033	3706.10.10	- - 뉴스·여행·기술 및 과학 영화용 필름	0%	E0
3034	3706.10.30	- - 그 밖의 다큐멘터리 영화용 필름	0%	E0
3035	3706.10.40	- - 기타(사운드 트랙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0%	E0
3036	3706.10.90	- - 기타	0%	E0
	3706.90	- 기타		
3037	3706.90.10	- - 뉴스·여행·기술 및 과학 영화용 필름	0%	E0
3038	3706.90.30	- - 그 밖의 다큐멘터리 영화용 필름	0%	E0
3039	3706.90.40	- - 기타(사운드 트랙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0%	E0
3040	3706.90.90	- - 기타	0%	E0
	37.07	사진용 화학조제품[바니시(varnish)·글루(glue)·접착제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은 제외한다], 사진용 단일 물품(일정 소량으로 나누거나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모양인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3041	3707.10.00	- 감광유제	0%	E0
	3707.90	- 기타		
3042	3707.90.10	- - 섬광재료	0%	E0
3043	3707.90.90	- - 기타	0%	E0
	38.01	인조흑연, 콜로이드흑연·반콜로이드흑연,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페이스트(paste)·블록·판 모양이나 그 밖의 반제품으로 한정한다]		
3044	3801.10.00	- 인조흑연	0%	E0
3045	3801.20.00	- 콜로이드흑연이나 반콜로이드흑연	0%	E0
3046	3801.30.00	- 전극용 탄소질 페이스트(paste)와 노(爐) 내장용의 이와 유사한 페이스트(paste)	0%	E0
3047	3801.90.00	- 기타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38.02	활성탄, 활성화한 천연의 광물성 생산품, 수탄(獸炭)[폐수탄(廢獸炭)을 포함한다]		
3048	3802.10.00	- 활성탄	0%	E0
	3802.90	- 기타		
3049	3802.90.10	- - 활성 보크사이트	0%	E0
3050	3802.90.20	- - 활성토	0%	E0
3051	3802.90.90	- - 기타	0%	E0
3052	3803.00.00	톨유(tall oil)(정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	E0
	38.04	목재펄프를 제조할 때 생기는 폐액(廢液)[농축한 것인지, 당류를 제거한 것인지 또는 화학적으로 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리그닌 술폰산을 포함하나, 제3803호의 톨유(tall oil)는 제외한다]		
3053	3804.00.10	- 농축 아황산 폐액	0%	E0
3054	3804.00.20	- 내화 벽돌 제조용의 칼슘 리그닌 술폰산(Ca2LS) 바인더	0%	E0
3055	3804.00.90	- 기타	0%	E0
	38.05	검테레빈유·우드테레빈유·황산테레빈유와 그 밖의 테르펜계유(증류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침엽수 목재에서 얻은 것으로 한정한다), 가공하지 않은 디펜틴, 아황산테레빈과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파라시멘, 파인유(pine oil)(주성분이 알파테르피네올인 것으로 한정한다)		
3056	3805.10.00	- 검테레빈유·우드테레빈유 또는 황산테레빈유	0%	E0
3057	3805.90.00	- 기타	0%	E0
	38.06	로진(rosin)·수지산과 이들의 유도체, 로진 스피릿(rosin spirit)과 로진유(rosin oil), 런검(run gum)		
3058	3806.10.00	- 로진(rosin)과 수지산	0%	E0
3059	3806.20.00	- 로진염, 수지산염 또는 로진(rosin)이나 수지산의 유도체의 염[로진(rosin) 부가물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의 염은 제외한다]		
	3806.30	- 에스테르 검(ester gum)		
3060	3806.30.10	- - 블록 모양	0%	E0
3061	3806.30.90	- - 기타	0%	E0
	3806.90	- 기타		
3062	3806.90.10	- - 런검(run gum)(블록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0%	E0
3063	3806.90.90	- - 기타	0%	E0
3064	3807.00.00	목(木)타르, 목(木)타르유, 목(木)크레오소트(creosote), 목(木)나프타, 식물성 피치(pitch), 브루어피치(brewers' pitch)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로진(rosin)·수지산이나 식물성 피치(pitch)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0%	E0
	38.08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조제품으로 한 것·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		
		- 이 류의 소호주 제 1 호의 물품		
	3808.52	- - 디디티(ISO)[클로페노탄(INN)](순중량이 300 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에 한정한다)		
3065	3808.52.10	- - - 목재방부재(살충제나 살균제를 함유한 표면 코팅제는 제외한다)	0%	E0
3066	3808.52.90	- - - 기타	0%	E0
	3808.59	- - 기타		
3067	3808.59.10	- - - 살충제	0%	E0
		- - - 살균제		
3068	3808.59.21	- - - - 에어로졸 용기에 넣은 것	0%	E0
3069	3808.59.29	- - - - 기타	0%	E0
		- - - 제초제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3070	3808.59.31	- - - - 에어로졸 용기에 넣은 것	0%	E0
3071	3808.59.39	- - - - 기타	0%	E0
3072	3808.59.40	- - - 발아억제제	0%	E0
3073	3808.59.50	- - - 식물성장조절제	0%	E0
3074	3808.59.60	- - - 소독제	0%	E0
		- - - 기타		
3075	3808.59.91	- - - - 목재방부제(살충제나 살균제를 함유한 표면 코팅제는 제외한다)	0%	E0
3076	3808.59.99	- - - - 기타	0%	E0
		- 이 류의 소호주 제2호의 물품		
	3808.61	- - 순중량이 300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3077	3808.61.10	- - - 코일 모양의 모기 방충제	0%	E0
3078	3808.61.20	- - - 매트 모양의 모기 방충제	0%	E0
3079	3808.61.30	- - - 에어로졸 용기에 넣은 것	0%	E0
3080	3808.61.40	- - - 그 밖의 액체 상태의 것	0%	E0
3081	3808.61.50	- - - 그 밖의 탈취 기능이 있는 것	0%	E0
3082	3808.61.90	- - - 기타	0%	E0
	3808.62	- - 순중량이 300그램 초과 7.5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3083	3808.62.10	- - - 코일 모양의 모기향 성형용 가루	0%	E0
3084	3808.62.20	- - - 코일 모양의 모기 방충제	0%	E0
3085	3808.62.30	- - - 매트 모양의 모기 방충제	0%	E0
3086	3808.62.40	- - - 에어로졸 용기에 넣은 것	0%	E0
3087	3808.62.50	- - - 그 밖의 액체 상태의 것	0%	E0
3088	3808.62.90	- - - 기타	0%	E0
	3808.69	- - 기타		
3089	3808.69.10	- - - 코일 모양의 모기향 성형용 가루	0%	E0
3090	3808.69.90	- - - 기타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 기타		
	3808.91	- - 살충제		
3091	3808.91.10	- - - 2- (메틸프로필-페놀 카르밤산메틸)을 함유하는 중간 조제품	0%	E0
3092	3808.91.20	- - - 그 밖의 코일 모양의 모기향 성형용 가루	0%	E0
3093	3808.91.30	- - - 에어로졸 용기에 넣은 것	0%	E0
3094	3808.91.40	- - - 코일 모양의 모기 방충제	0%	E0
3095	3808.91.50	- - - 매트 모양의 모기 방충제	0%	E0
3096	3808.91.90	- - - 기타	0%	E0
	3808.92	- - 살균제		
		- - - 에어로졸 용기에 넣은 것		
3097	3808.92.11	- - - - 바리다마이신(validamycin) 함유량이 순중량의 100 분의 3 이하인 것	0%	E0
3098	3808.92.19	- - - - 기타	0%	E0
3099	3808.92.90	- - - 기타	0%	E0
	3808.93	- - 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		
		- - - 제초제		
3100	3808.93.11	- - - - 에어로졸 용기에 넣은 것	0%	E0
3101	3808.93.19	- - - - 기타	0%	E0
3102	3808.93.20	- - - 발아억제제	0%	E0
3103	3808.93.30	- - - 식물성장조절제	0%	E0
	3808.94	- - 소독제		
3104	3808.94.10	- - - 콜타르산과 알칼리의 혼합물을 함유한 것	0%	E0
3105	3808.94.20	- - - 기타(에어로졸 용기에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0%	E0
3106	3808.94.90	- - - 기타	0%	E0
	3808.99	- - 기타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3107	3808.99.10	- - - 목재 방부제(살충제나 살균제를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0%	E0
3108	3808.99.90	- - - 기타	0%	E0
	38.09	완성가공제, 염색 촉진용·염료 고착용 염색캐리어, 드레싱·매염제와 같은 그 밖의 물품과 조제품(섬유산업·제지산업·가죽산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109	3809.10.00	- 전분질을 기본 재료로 한 것	0%	E0
		- 기타		
	3809.91	- - 섬유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용하는 것		
3110	3809.91.10	- - - 유연제	0%	E0
3111	3809.91.90	- - - 기타	0%	E0
3112	3809.92.00	- - 제지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용하는 것	0%	E0
3113	3809.93.00	- - 가죽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용하는 것	0%	E0
	38.10	금속표면처리용 침지 조제품, 납붙임용·땜질용·용접용 융제와 그 밖의 보조 조제품, 납붙임용·땜질용·용접용 가루와 페이스트(paste)로서 금속과 그 밖의 재료로 조성한 것, 용접용 전극·용접봉의 코어나 피복에 사용하는 조제품		
3114	3810.10.00	- 금속표면처리용 침지 조제품, 납붙임용·땜질용 또는 용접용 가루와 페이스트(paste)로서 금속과 그 밖의 재료로 조성한 것	0%	E0
3115	3810.90.00	- 기타	0%	E0
	38.11	안티녹(anti-knock)제·산화억제제·검화억제제(gum inhibitor)·점도향상제·부식방지제와 그 밖의 조제 첨가제[광물유(가솔린을 포함한다)용이나 광물유와 동일한 목적에 사용하는 그 밖의 액체용으로 한정한다]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 안티녹(anti-knock)제		
3116	3811.11.00	- - 납화합물을 기본 재료로 한 것	0%	E0
3117	3811.19.00	- - 기타	0%	E0
		- 윤활유 첨가제		
	3811.21	- - 석유나 역청유(瀝靑油)를 함유하는 것		
3118	3811.21.10	- - - 소매용	5%	E0
3119	3811.21.90	- - - 기타	0%	E0
3120	3811.29.00	- - 기타	0%	E0
	3811.90	- 기타		
3121	3811.90.10	- - 녹 방지제(Rust preventatives)나 부식 억제제(corrosion inhibitors)	0%	E0
3122	3811.90.90	- - 기타	0%	E0
	38.12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고무용·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고무용·플라스틱용 산화방지 조제품과 그 밖의 복합안정제**		
3123	3812.10.00	-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0%	E0
3124	3812.20.00	- 고무용 또는 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	5%	E10
		- 고무용·플라스틱용 산화방지 조제품과 그 밖의 복합안정제		
3125	3812.31.00	- - 2,2,4-트리메틸-1,2-디히드로퀴놀린 올리고머(티엠큐)의 혼합물	0%	E0
3126	3812.39.00	- - 기타	0%	E0
3127	3813.00.00	**소화기용 조제품과 장전물, 장전된 소화탄**	0%	E0
3128	3814.00.00	**유기혼합용제와 시너(thinner)(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제한 페인트 제거제 또는 바니시(vanish) 제거제**	0%	E0
	38.15	**반응시작제·반응촉진제·촉매 조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서포트된(supported) 촉매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3129	3815.11.00	- - 활성물질로서 니켈이나 니켈화합물의 것	0%	E0
3130	3815.12.00	- - 활성물질로서 귀금속이나 귀금속화합물의 것	0%	E0
3131	3815.19.00	- - 기타	0%	E0
3132	3815.90.00	- 기타	0%	E0
	38.16	내화시멘트·내화모르타르·내화콘크리트와 이와 유사한 혼합물(제 3801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3133	3816.00.10	- 내화시멘트	0%	E0
3134	3816.00.90	- 기타	0%	E0
3135	3817.00.00	혼합알킬벤젠과 혼합알킬나프탈렌(제 2707 호 또는 제 2902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0%	E0
3136	3818.00.00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doped) 화학원소(디스크·웨이퍼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정한다),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doped) 화학화합물	0%	E0
3137	3819.00.00	유압제동액과 그 밖의 조제 유압전동액[석유나 역청유(瀝靑油)를 함유하지 않거나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7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0%	E0
3138	3820.00.00	부동(不凍) 조제품과 조제 제빙액	0%	E0
	38.21	미생물(바이러스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식물·인간·동물 세포의 성장이나 보존을 위한 조제 배양제		
3139	3821.00.10	- 미생물 성장용 조제배양제	0%	E0
3140	3821.00.90	- 기타	0%	E0
	38.22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과 조제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뒤편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 3002 호·제 3006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보증된 참조물질		
3141	3822.00.10	- 진단용이나 실험실용 시약으로 도포되거나 침투된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시트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sheet)·필름·박(箔)과 스트립(strip)		
3142	3822.00.20	- 진단용이나 실험실용 시약으로 도포되거나 침투된 판지·셀룰로오스웨딩과 셀룰로오스 섬유의 웹	0%	E0
3143	3822.00.30	- 스트립(strip)과 테이프(tape)된 멸균 지시약	0%	E0
3144	3822.00.90	- 기타	0%	E0
	38.23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 유지를 정제할 때 생긴 애시드유(acid oil),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		
		-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유지를 정제할 때 생긴 애시드유(acid oil)		
3145	3823.11.00	- - 스테아르산	5%	E0
3146	3823.12.00	- - 올레인산	0%	E0
3147	3823.13.00	- - 톨유(tall oil) 지방산	0%	E0
	3823.19	- - 기타		
3148	3823.19.10	- - - 유지를 정제할 때 생긴 애시드유(acid oil)	8%	E7
3149	3823.19.20	- - - 팜(Palm) 지방산 디스틸레이트	0%	E0
3150	3823.19.30	- - - 팜핵(palm kernel) 지방산 디스틸레이트	0%	E0
3151	3823.19.90	- - - 기타	0%	E0
	3823.70	-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		
3152	3823.70.10	- - 왁스 형태의 것	0%	E0
3153	3823.70.90	- - 기타	5%	E0
	38.24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3154	3824.10.00	-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3155	3824.30.00	- 응집하지 않은 금속탄화물(상호 혼합되거나 금속점결제와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	E0
3156	3824.40.00	- 시멘트용·모르타르용 또는 콘크리트용 조제 첨가제	0%	E0
3157	3824.50.00	- 비내화성 모르타르와 비내화성 콘크리트	0%	E0
3158	3824.60.00	- 소르비톨(sorbitol)(소호 제2905.44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0%	E0
		- 메탄, 에탄 또는 프로판의 할로겐화 유도체를 가지는 혼합물		
	3824.71	- - 염화불화탄소(CFCs)를 함유하는것[수소염화불화탄소(HCFCs)·과불화탄소(PFCs)·수소불화탄소(HFCs)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159	3824.71.10	- - - 변압기와 차단기 오일[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0%	E0
3160	3824.71.90	- - - 기타	0%	E0
3161	3824.72.00	- -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브로모트리플루오르메탄 또는 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르에탄을 함유하는 것	0%	E0
3162	3824.73.00	- - 수소브로모플루오르카본(HBFCs)을 함유하는 것	0%	E0
	3824.74	- -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하는 것[과불화탄소(PFCs), 수소불화탄소(HFCs)를 함유한 것인지는 상관없으며 염화불화탄소(CFCs)를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163	3824.74.10	- - - 변압기와 차단기 오일[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0%	E0
3164	3824.74.90	- - - 기타	0%	E0
3165	3824.75.00	- - 사염화탄소를 함유하는 것	0%	E0
3166	3824.76.00	- - 1,1,1-삼염화에탄(메틸 클로로포름)을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함유하는 것		
3167	3824.77.00	- - 브로모메탄(브롬화메틸) 또는 브로모클로로메탄을 함유하는 것	0%	E0
3168	3824.78.00	- - 과불화탄소(PFCs) 또는 수소불화탄소(HFCs)를 함유하는 것[염화불화탄소(CFCs)나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하지 않은 것]	0%	E0
3169	3824.79.00	- - 기타	0%	E0
		- 이 류의 소호주 제3호의 물품		
3170	3824.81.00	- - 옥시란(산화에틸렌)을 함유한 것	0%	E0
3171	3824.82.00	- - 폴리염소화 비페닐(PCBs), 폴리염소화 테르페닐(PCTs)이나 폴리브롬화 비페닐(PBBs)을 함유하는 것	0%	E0
3172	3824.83.00	- -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를 함유한 것	0%	E0
3173	3824.84.00	- - 앨드린(ISO), 캄페클로(ISO)(톡사핀), 클로단(ISO), 클로르데콘(ISO), 디디티(ISO)[클로페노탄(INN), 1,1,1-트리클로로-2,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 디엘드린(ISO, INN), 엔도설판(ISO), 엔드린(ISO), 헵타클로르(ISO) 또는 미렉스(ISO)를 함유한 것	0%	E0
3174	3824.85.00	- - 1,2,3,4,5,6-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HCH(ISO)][린데인(ISO, INN)을 포함하는 것]을 함유한 것	0%	E0
3175	3824.86.00	- - 펜타클로로벤젠(ISO) 또는 헥사클로로벤젠(ISO)을 함유한 것	0%	E0
3176	3824.87.00	- - 과불화옥탄 술폰산과 그 염, 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또는 과불화옥탄술포닐 플루오라이드를 함유한 것	0%	E0
3177	3824.88.00	- - 테트라-, 펜타-, 헥사-, 헵타- 또는 옥타브로모디페닐 에테르를 함유한 것	0%	E0
		- 기타		
3178	3824.91.00	- - (5-에틸-2-메틸-2-옥시도-1,3,2-디옥사포스피난-5-일)메틸 메틸 메틸포스포네이트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와 비스[(5-에틸-2-메틸-2-옥시도-1,3,2-디옥사포스피난-5-일)메틸] 메틸포스포네이트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과 조제품		
	3824.99	- - 기타		
3179	3824.99.10	- - - 소매용으로 포장한 잉크제거제·등사판화지 수정제·그 밖의 수정액과 수정테이프(제 9612 호의 것은 제외한다)	0%	E0
3180	3824.99.30	- - - 젤라틴을 기본재료로 한 복사용 페이스트(pastes)[벌크로 되어있거나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예: 종이나 방직용 섬유로 뒷면을 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	E0
3181	3824.99.40	- - - 혼합무기용제	0%	E0
3182	3824.99.50	- - - 아세톤 오일	0%	E0
3183	3824.99.60	- - - 글루탐산모노나트륨(MSG)을 함유한 화학조제품	0%	E0
3184	3824.99.70	- - - 그 밖의 화학 조제품(식료품 제조용의 것으로 한정한다)	0%	E0
		- - - 기타		
3185	3824.99.91	- - - - 나프텐산, 이들의 수불용성염과 이들의 에스테르	0%	E0
3186	3824.99.99	- - - - 기타	0%	E0
	38.25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잔재물, 생활폐기물, 하수 찌꺼기, 이 류의 주 제 6 호의 그 밖의 폐기물**		
3187	3825.10.00	- 생활폐기물	0%	E0
3188	3825.20.00	- 하수 찌꺼기	0%	E0
	3825.30	- 감염성 폐기물		
3189	3825.30.10	- - 주사기·바늘·케눌러(cannulae)와 이와 유사한 물품	0%	E0
3190	3825.30.90	- - 기타	0%	E0
		- 폐유기용제		
3191	3825.41.00	- - 할로겐을 함유하는 것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3192	3825.49.00	- - 기타	0%	E0
3193	3825.50.00	- 금속세정액, 유압액, 브레이크액 및 부동액 폐기물	0%	E0
		-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서 발생한 그 밖의 폐기물		
3194	3825.61.00	- - 주로 유기성분을 함유하는 것	0%	E0
3195	3825.69.00	- - 기타	0%	E0
3196	3825.90.00	- 기타	0%	E0
	38.26	**바이오디젤과 그 혼합물[석유나 역청유(瀝青油)를 함유하지 않거나 중량기준으로 70 퍼센트 미만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 바이오디젤(석유를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197	3826.00.10	- - 코코넛 메틸에스테르(CME)	0%	E0
		- - 팜 메틸에스테르(팜핵 메틸에스테르를 포함한다)		
3198	3826.00.21	- - - 알킬에스테르(ester alkyl)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6.5 이상 100분의 98 이하인 것	0%	E0
3199	3826.00.22	- - - 알킬에스테르(ester alkyl)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8을 초과하는 것	0%	E0
3200	3826.00.29	- - - 기타	0%	E0
3201	3826.00.30	- - 기타	0%	E0
3202	3826.00.90	- 기타	0%	E0
		제1절 일차제품(primary form)		
	39.01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1.10	-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미만으로 한정한다)		
		- - 액체나 페이스트(paste) 모양인 것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3203	3901.10.12	- - -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LLDPE)	5%	EX
3204	3901.10.19	- - - 기타	5%	EX
		- - 기타		
3205	3901.10.92	- - -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LLDPE)	5%	EX
3206	3901.10.99	- - - 기타	5%	EX
3207	3901.20.00	-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5%	EX
3208	3901.30.00	-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	5%	E0
3209	3901.40.00	- 에틸렌-알파-올레핀 공중합체(비중이 0.94 미만으로 한정한다)	5%	EX
	3901.90	- 기타		
3210	3901.90.40	- - 분산액인 것	5%	EX
3211	3901.90.90	- - 기타	5%	EX
	39.02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2.10	- 폴리프로필렌		
3212	3902.10.30	- - 분산액인 것	5%	EX
3213	3902.10.40	- - 알갱이·펠릿(pellet)·비드(bead)·플레이크(flake)·칩과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	5%	EX
3214	3902.10.90	- - 기타	5%	EX
3215	3902.20.00	- 폴리이소부틸렌	0%	E0
	3902.30	- 프로필렌 공중합체		
3216	3902.30.30	- - 액체나 페이스트(paste) 모양인 것	0%	E0
3217	3902.30.90	- - 기타	0%	E0
	3902.90	- 기타		
3218	3902.90.10	- - 프린트 잉크 배합용으로 적합한 염소화 폴리프로필렌	0%	E0
3219	3902.90.90	- - 기타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39.03	스티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 폴리스티렌		
	3903.11	- - 발포성의 것		
3220	3903.11.10	- - - 알갱이 모양인 것	5%	EX
3221	3903.11.90	- - - 기타	5%	EX
	3903.19	- - 기타		
3222	3903.19.10	- - - 분산액인 것	5%	EX
3223	3903.19.20	- - - 알갱이·펠릿(pellet)·비드(bead)·플레이크(flake)·칩과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	5%	EX
3224	3903.19.90	- - - 기타	5%	EX
	3903.20	- 스티렌-아크릴로니트릴 공중합체(SAN)		
3225	3903.20.40	- - 수성물질에 분산된 것	0%	E0
3226	3903.20.50	- - 비수성물질에 분산된 것	0%	E0
3227	3903.20.90	- - 기타	0%	E0
	3903.30	-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ABS)		
3228	3903.30.40	- - 수성물질에 분산된 것	0%	E0
3229	3903.30.50	- - 비수성물질에 분산된 것	0%	E0
3230	3903.30.60	- - 알갱이 모양인 것	0%	E0
3231	3903.30.90	- - 기타	0%	E0
	3903.90	- 기타		
3232	3903.90.30	- - 분산액인 것	5%	EX
		- - 기타		
3233	3903.90.91	- - - 내충격성 폴리스틸렌[섭씨 23 도에서 노치 아이조드 충격(notched izod impact) 값이 80 J/m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5%	EX
3234	3903.90.99	- - - 기타	5%	EX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39.04	**염화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할로겐화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4.10	- 폴리(염화비닐)(다른 물질을 혼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235	3904.10.10	- - 단일폴리머(서스펜션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7%	EX
		- - 기타		
3236	3904.10.91	- - - 알갱이 모양인 것	5%	EX
3237	3904.10.92	- - - 파우더 형태로 만든 것	5%	EX
3238	3904.10.99	- - - 기타	5%	EX
		- 그 밖의 폴리(염화비닐)		
	3904.21	- - 가소화하지 않은 것		
3239	3904.21.10	- - - 알갱이 모양인 것	5%	EX
3240	3904.21.20	- - - 파우더 형태로 만든 것	5%	EX
3241	3904.21.90	- - - 기타	5%	EX
	3904.22	- - 가소화한 것		
3242	3904.22.10	- - - 분산액인 것	5%	EX
3243	3904.22.20	- - - 알갱이 모양인 것	5%	EX
3244	3904.22.30	- - - 파우더 형태로 만든 것	5%	EX
3245	3904.22.90	- - - 기타	5%	EX
	3904.30	- 염화비닐-초산비닐 공중합체		
3246	3904.30.10	- - 알갱이 모양인 것	5%	EX
3247	3904.30.20	- - 파우더 형태로 만든 것	5%	EX
3248	3904.30.90	- - 기타	5%	EX
	3904.40	- 그 밖의 염화비닐 공중합체		
3249	3904.40.10	- - 알갱이 모양인 것	5%	EX
3250	3904.40.20	- - 파우더 형태로 만든 것	5%	EX
3251	3904.40.90	- - 기타	5%	EX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3904.50	- 염화비닐리덴 중합체		
3252	3904.50.40	- - 분산액인 것	0%	E0
3253	3904.50.50	- - 알갱이 모양인 것	0%	E0
3254	3904.50.60	- - 파우더 형태로 만든 것	0%	E0
3255	3904.50.90	- - 기타	0%	E0
		- 플루오르 중합체		
	3904.61	- - 폴리테트라 플루오르에틸렌		
3256	3904.61.10	- - - 알갱이 모양인 것	0%	E0
3257	3904.61.20	- - - 파우더 형태로 만든 것	0%	E0
3258	3904.61.90	- - - 기타	0%	E0
	3904.69	- - 기타		
3259	3904.69.30	- - - 분산액인 것	0%	E0
3260	3904.69.40	- - - 알갱이 모양인 것	0%	E0
3261	3904.69.50	- - - 파우더 형태로 만든 것	0%	E0
3262	3904.69.90	- - - 기타	0%	E0
	3904.90	- 기타		
3263	3904.90.30	- - 분산액인 것	0%	E0
3264	3904.90.40	- - 알갱이 모양인 것	0%	E0
3265	3904.90.50	- - 파우더 형태로 만든 것	0%	E0
3266	3904.90.90	- - 기타	0%	E0
	39.05	**초산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비닐에스테르의 중합체, 그 밖의 비닐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 폴리(초산비닐)		
3267	3905.12.00	- - 수성물질에 분산된 것	5%	EX
	3905.19	- - 기타		
3268	3905.19.10	- - - 액체나 페이스트(paste) 모양인 것	5%	EX
3269	3905.19.90	- - - 기타	5%	EX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 초산비닐 공중합체		
3270	3905.21.00	- - 수성물질에 분산된 것	5%	EX
3271	3905.29.00	- - 기타	5%	EX
	3905.30	- 폴리(비닐알코올)[가수분해되지 않은 초산기(基)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3272	3905.30.10	- - 분산액인 것	5%	EX
3273	3905.30.90	- - 기타	5%	E0
		- 기타		
	3905.91	- - 공중합체(共重合體)		
3274	3905.91.10	- - - 분산액인 것	0%	E0
3275	3905.91.90	- - - 기타	0%	E0
	3905.99	- - 기타		
3276	3905.99.10	- - - 수성물질에 분산된 것	0%	E0
3277	3905.99.20	- - - 비수성물질에 분산된 것	0%	E0
3278	3905.99.90	- - - 기타	0%	E0
	39.06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6.10	- 폴리(메틸 메타크리레이트)		
3279	3906.10.10	- - 분산액인 것	5%	EX
3280	3906.10.90	- - 기타	5%	EX
	3906.90	- 기타		
3281	3906.90.20	- - 분산액인 것	5%	E15
		- - 기타		
3282	3906.90.92	- - - 폴리아크릴산나트륨	5%	EX
3283	3906.90.99	- - - 기타	5%	EX
	39.07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3284	3907.10.00	- 폴리아세탈수지	0%	E0
	3907.20	- 그 밖의 폴리에테르		
3285	3907.20.10	- - 폴리테트라메틸렌 에테르 글리콜	0%	E0
3286	3907.20.90	- - 기타	5%	E15
	3907.30	- 에폭시수지		
3287	3907.30.20	- - 코팅에 사용되는 것(가루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0%	E0
3288	3907.30.30	- - 액체나 페이스트(paste) 모양인 것	0%	E0
3289	3907.30.90	- - 기타	0%	E0
3290	3907.40.00	- 폴리카보네이트	0%	E0
	3907.50	- 알키드수지		
3291	3907.50.10	- - 액체나 페이스트(paste) 모양인 것	5%	EX
3292	3907.50.90	- - 기타	5%	EX
		-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3293	3907.61.00	- - 점도번호가 그램당 78 밀리리터 이상인 것	0%	E0
	3907.69	- - 기타		
3294	3907.69.10	- - - 알갱이 모양인 것	0%	E0
3295	3907.69.90	- - - 기타	0%	E0
3296	3907.70.00	- 폴리(락트산)	0%	E0
		-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		
	3907.91	- - 불포화의 것		
3297	3907.91.20	- - - 알갱이와 이와 유사한 형태의 것	0%	E0
3298	3907.91.30	- - - 액체나 페이스트(paste) 모양인 것	0%	E0
3299	3907.91.90	- - - 기타	0%	E0
	3907.99	- - 기타		
3300	3907.99.40	- - - 코팅에 사용되는 것(가루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3301	3907.99.90	- - - 기타	0%	E0
	39.08	**폴리아미드[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8.10	- 폴리아미드-6, -11, -12, -6,6, -6,9, -6,10 또는 -6,12		
3302	3908.10.10	- - 폴리아미드 -6	0%	E0
3303	3908.10.90	- - 기타	0%	E0
3304	3908.90.00	- 기타	0%	E0
	39.09	**아미노수지·페놀수지·폴리우레탄[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9.10	- 요소수지와 티오요소수지		
3305	3909.10.10	- - 몰딩 화합물	0%	E0
3306	3909.10.90	- - 기타	0%	E0
	3909.20	- 멜라민수지		
3307	3909.20.10	- - 몰딩 화합물	0%	E0
3308	3909.20.90	- - 기타	0%	E0
		- 그 밖의 아미노수지		
3309	3909.31.00	- - 폴리(메틸렌 페닐 이소시아네이트)(크루드 엠디아이, 중합 엠디아이)	0%	E0
		- - 기타		
3310	3909.39.10	- - - 몰딩 화합물	0%	E0
		- - - 기타		
3311	3909.39.91	- - - - 글리옥살 모노우레인 수지	0%	E0
3312	3909.39.99	- - - - 기타	0%	E0
	3909.40	- 페놀수지		
3313	3909.40.10	- - 몰딩 화합물(페놀포름알데히드는 제외한다)	0%	E0
3314	3909.40.90	- - 기타	0%	E0
3315	3909.50.00	- 폴리우레탄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39.10	실리콘수지[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316	3910.00.20	- 분산액과 용액	0%	E0
3317	3910.00.90	- 기타	0%	E0
	39.11	석유수지·쿠마론-인덴수지·폴리테르펜·폴리술파이드·폴리술폰과 이 류의 주 제3호의 기타 물품[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318	3911.10.00	- 석유수지·쿠마론·인덴 또는 쿠마론-인덴수지 및 폴리테르펜	0%	E0
3319	3911.90.00	- 기타	0%	E0
	39.12	셀룰로오스와 그 화학적 유도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초산셀룰로오스		
3320	3912.11.00	- - 가소화하지 않은 것	0%	E0
3321	3912.12.00	- - 가소화한 것	0%	E0
	3912.20	- 질산셀룰로오스(콜로디온을 포함한다)		
		- - 가소화하지 않은 것		
3322	3912.20.11	- - - 물을 기본 재료로 한 반가공의 니트로셀룰로오스	0%	E0
3323	3912.20.19	- - - 기타	0%	E0
3324	3912.20.20	- - 가소화한 것	0%	E0
		- 셀룰로오스 에테르		
3325	3912.31.00	- -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와 그 염	0%	E0
3326	3912.39.00	- - 기타	0%	E0
	3912.90	- 기타		
3327	3912.90.20	- - 알갱이 모양인 것	0%	E0
3328	3912.90.90	- - 기타	0%	E0
	39.13	천연중합체(예: 알긴산)와 변성한 천연중합체(예: 경화 단백질,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도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329	3913.10.00	- 알긴산, 그 염 및 에스테르	0%	E0
	3913.90	- 기타		
3330	3913.90.10	- - 경화단백질	0%	E0
3331	3913.90.20	- -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	0%	E0
3332	3913.90.30	- - 전분을 기본재료로 한 중합체	0%	E0
3333	3913.90.90	- - 기타	0%	E0
3334	3914.00.00	이온교환수지[제 3901 호부터 제 3913 호까지의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서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0%	E0
		제 2 절 웨이스트(waste)·페어링(paring) 및 스크랩(scrap), 반제품·완제품		
	39.15	플라스틱의 웨이스트(waste)·페어링(paring)·스크랩(scrap)		
	3915.10	-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3335	3915.10.10	- - 비경질 셀룰러 물품으로 만든 것	0%	E0
3336	3915.10.90	- - 기타	0%	E0
	3915.20	- 스티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3337	3915.20.10	- - 비경질 셀룰러 물품으로 만든 것	0%	E0
3338	3915.20.90	- - 기타	0%	E0
	3915.30	-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3339	3915.30.10	- - 비경질 셀룰러 물품으로 만든 것	0%	E0
3340	3915.30.90	- - 기타	0%	E0
3341	3915.90.00	-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0%	E0
	39.16	플라스틱의 모노필라멘트(횡단면의 치수가 1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막대(rod, stick)·형재(形材)(표면 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3916.10	-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3342	3916.10.10	- - 모노필라멘트	0%	E0
3343	3916.10.20	- - 막대(rod · stick)와 형재	0%	E0
	3916.20	-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3344	3916.20.10	- - 모노필라멘트	0%	E0
3345	3916.20.20	- - 막대(rod · stick)와 형재	0%	E0
	3916.90	-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 - 경화 단백질로 만든 것		
3346	3916.90.41	- - - 모노필라멘트	0%	E0
3347	3916.90.42	- - - 막대(rod · stick)와 형재	0%	E0
3348	3916.90.50	- - 벌커나이즈드 파이버의 것	0%	E0
3349	3916.90.60	- -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로 만든 것	0%	E0
3350	3916.90.70	- - 그 밖의 부가중합체로 만든 것, 재생 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질산셀룰로오스의 것, 초산셀룰로오스와 그밖의 셀룰로오스 에스테르, 셀룰로오스에테르와 셀룰로오스의 그밖의 화학적 유도체의 것(가소화한 것으로 한정한다)	0%	E0
3351	3916.90.80	- - 응축이나 재배열된 중합체로 만든 것	0%	E0
		- - 기타		
3352	3916.90.91	- - - 모노필라멘트	0%	E0
3353	3916.90.92	- - - 막대(rod · stick)와 형재	0%	E0
	39.17	**플라스틱의 관·파이프·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		
	3917.10	- 경화 단백질이나 셀룰로오스 물질의 인조 거트(gut)[소시지케이싱(sausage casing)]		
3354	3917.10.10	- - 경화 단백질로 만든 것	0%	E0
3355	3917.10.90	- - 기타	0%	E0
		- 경질(硬質)의 관·파이프 및 호스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3356	3917.21.00	- -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5%	EX
3357	3917.22.00	- -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5%	EX
3358	3917.23.00	- -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5%	EX
	3917.29	- -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 - - 단순히 표면작업 이상의 작업을 한 것		
3359	3917.29.11	- - - - 그 밖의 부가중합체로 만든 것	5%	EX
3360	3917.29.12	- - - - 아미노 수지로 만든 것, 질산셀룰로오스, 초산셀룰로오스와 그 밖의 셀룰로오스의 화학적 유도체로 만든 것(가소화한 것으로 한정한다), 벌커나이즈드 파이버의 것, 경화 단백질의 것,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의 것	5%	EX
3361	3917.29.19	- - - - 기타	5%	EX
		- - - 기타		
3362	3917.29.21	- - - - 그 밖의 부가중합체로 만든 것	5%	EX
3363	3917.29.22	- - - - 페놀수지로 만든 것	5%	EX
3364	3917.29.23	- - - - 아미노 수지로 만든 것, 경화한 단백질의 것,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	5%	EX
3365	3917.29.24	- - - - 질산셀룰로오스, 초산셀룰로오스와 그 밖의 셀룰로오스의 화학적 유도체로 만든 것(가소화한 것으로 한정한다), 벌커나이즈드 파이버의 것	5%	EX
3366	3917.29.25	- - - - 그 밖의 응축이나 재배열된 중합체로 만든 것	5%	EX
3367	3917.29.29	- - - - 기타	5%	EX
		- 그 밖의 관·파이프 및 호스		
	3917.31	- - 연질(軟質)의 관·파이프·호스[파열압(破裂壓)이 27.6 메가파스칼 이상으로 한정한다]		
		- - - 단순히 표면작업 이상의 작업을 한 것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3368	3917.31.11	- - - - 부가중합체로 만든 것	5%	EX
3369	3917.31.12	- - - - 아미노 수지로 만든 것, 페놀수지로 만든 것, 벌커나이즈드 파이버로 만든 것,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로 만든 것	5%	EX
3370	3917.31.19	- - - - 기타	5%	EX
		- - - 기타		
3371	3917.31.21	- - - - 부가중합체로 만든 것	5%	EX
3372	3917.31.23	- - - - 아미노 수지로 만든 것, 페놀수지로 만든 것,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로 만든 것	5%	EX
3373	3917.31.24	- - - - 벌커나이즈드 파이버의 것	5%	EX
3374	3917.31.25	- - - - 그 밖의 응축이나 재배열된 중합체로 만든 것, 질산셀룰로오스의 것, 초산셀룰로오스의 것과 셀룰로오스의 그 밖의 화학적 유도체의 것(가소화한 것으로 한정한다)	5%	EX
3375	3917.31.29	- - - - 기타	5%	EX
	3917.32	- - 기타(연결구가 없는 것으로 한정하며,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376	3917.32.10	- - - 소시지나 햄 케이싱	5%	E5
3377	3917.32.20	- - - 가스 스토브용 열가소성 호스	5%	EX
		- - - 기타		
		- - - - 단순히 표면작업 이상의 작업을 한 것		
3378	3917.32.91	- - - - - 부가중합체로 만든 것, 페놀수지나 아미노 레진의 것,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로 만든 것	5%	EX
3379	3917.32.92	- - - - - 기타	5%	EX
		- - - - 기타		
3380	3917.32.93	- - - - - 부가중합체로 만든 것	5%	EX
3381	3917.32.94	- - - - - 아미노 수지나 페놀 수지로 만든	5%	EX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것,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로 만든 것		
3382	3917.32.95	- - - - - 그 밖의 응축이나 재배열된 중합체의 것, 벌커나이즈드 파이버의 것, 질산셀룰로오스, 초산셀룰로오스와 그 밖의 셀룰로오스의 화학적 유도체로 만든 것(가소화한 것으로 한정한다)	5%	EX
3383	3917.32.99	- - - - - 기타	5%	EX
	3917.33	- - 기타(연결구가 있는 것으로 한정하며,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384	3917.33.10	- - - 그 밖의 것(단순가공 이상의 것으로 한정한다)	5%	E0
		- - - 기타		
3385	3917.33.91	- - - - 그 밖의 부가중합체로 만든 것	5%	E0
3386	3917.33.92	- - - - 응축이나 재배열된 중합체의 것	5%	E0
3387	3917.33.93	- - - - 질산셀룰로오스, 초산셀룰로오스와 셀룰로오스의 그 밖의 화학적 유도체로 만든 것(가소화한 것으로 한정한다)	5%	E0
3388	3917.33.94	- - - - 벌커나이즈드 파이버의 것	5%	E0
3389	3917.33.95	- - - - 경화 단백질로 만든 것	5%	E0
3390	3917.33.96	- - - -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로 만든 것	5%	E0
3391	3917.33.99	- - - - 기타	5%	E0
	3917.39	- - 기타		
		- - - 단순히 표면작업 이상의 작업을 한 것		
3392	3917.39.11	- - - - 부가중합체로 만든 것(벌커나이즈드 파이버의 것)	0%	E0
3393	3917.39.12	- - - - 페놀수지나 아미노 수지로 만든 것,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	0%	E0
3394	3917.39.13	- - - - 질산셀룰로오스, 초산셀룰로오스와 셀룰로오스의 그 밖의 화학적 유도체로 만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든 것(가소화한 것으로 한정한다)		
3395	3917.39.19	- - - - 기타	0%	E0
		- - - 기타		
3396	3917.39.91	- - - - 부가중합체로 만든 것, 벌커나이즈드 파이버의 것	0%	E0
3397	3917.39.92	- - - - 페놀수지나 아미노 수지로 만든 것,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로 만든 것	0%	E0
3398	3917.39.93	- - - - 그 밖의 응축이나 재배열된 중합체의 것	0%	E0
3399	3917.39.94	- - - - 질산셀룰로오스, 초산셀룰로오스와 셀룰로오스의 그 밖의 화학적 유도체로 만든 것(가소화한 것으로 한정한다)	0%	E0
3400	3917.39.99	- - - - 기타	0%	E0
3401	3917.40.00	- 연결구류	0%	E0
	39.18	**플라스틱으로 만든 바닥깔개(접착성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롤이나 타일 모양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9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3918.10	-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 - 바닥깔개		
3402	3918.10.11	- - - 타일	5%	E0
3403	3918.10.19	- - - 기타	5%	E0
3404	3918.10.90	- - 기타	5%	E0
	3918.90	-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 - 바닥깔개		
3405	3918.90.11	- - - 타일(폴리에틸렌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0%	E0
3406	3918.90.13	- - - 기타(폴리에틸렌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0%	E0
3407	3918.90.14	- - -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로 만든 것	5%	E0
3408	3918.90.15	- - - 그 밖의 부가중합으로 만든 것, 응축	5%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이나 재배열된 중합체의 것, 질산셀룰로오스, 초산셀룰로오스나 그 밖의 셀룰로오스의 화학적 유도체로 만든 것(가소화한 것으로 한정한다)		
3409	3918.90.16	- - - 벌커나이즈드 파이버의 것	5%	E0
3410	3918.90.19	- - - 기타	5%	E0
		- - 기타		
3411	3918.90.91	- - - 폴리에틸렌으로 만든 것	0%	E0
3412	3918.90.92	- - -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로 만든 것	5%	E0
3413	3918.90.93	- - - 그 밖의 부가중합으로 만든 것, 응축이나 재배열된 중합체의 것, 질산셀룰로오스, 초산셀룰로오스나 그 밖의 셀룰로오스의 화학적 유도체로 만든 것(가소화한 것으로 한정한다)	5%	E0
3414	3918.90.94	- - - 벌커나이즈드 파이버의 것	5%	E0
3415	3918.90.99	- - - 기타	5%	E0
	39.19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3919.10	- 롤 모양인 것(폭이 20 센티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3416	3919.10.10	- -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0%	E0
3417	3919.10.20	- - 폴리에틸렌으로 만든 것	0%	E0
		- - 기타		
3418	3919.10.91	- - - 경화 단백질로 만든 것이나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의 것	0%	E0
3419	3919.10.92	- - - 부가중합으로 만든 것, 응축이나 재배열된 중합체의 것, 질산셀룰로오스, 초산셀룰로오스와 셀룰로오스의 그 밖의 화학적 유도체로 만든 것(가소화한 것으로 한정한다)	0%	E0
3420	3919.10.99	- - - 기타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3919.90	- 기타		
3421	3919.90.10	- -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5%	E10
3422	3919.90.20	- - 경화 단백질로 만든 것	5%	E10
		- - 기타		
3423	3919.90.91	- - -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로 만든 것	5%	E10
3424	3919.90.92	- - - 부가중합으로 만든 것, 응축이나 재배열된 중합체의 것, 질산셀룰로오스, 초산셀룰로오스와 셀룰로오스의 그 밖의 화학적 유도체로 만든 것(가소화한 것으로 한정한다)	5%	E10
3425	3919.90.99	- - - 기타	5%	E10
	39.20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920.10	-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 - 플레이트와 판		
3426	3920.10.11	- - - 경질의 것	5%	E0
3427	3920.10.19	- - - 기타	5%	E0
3428	3920.10.90	- - 기타	5%	E0
	3920.20	-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3429	3920.20.10	- - 이축연신 폴리프로필렌(BOPP) 필름	5%	EX
		- - 기타		
3430	3920.20.91	- - - 플레이트와 판	5%	E0
3431	3920.20.99	- - - 기타	5%	E0
	3920.30	- 스티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3432	3920.30.20	- - 냉장고 제조용의 아크릴로니트릴 부타디엔 스티렌(ABS) 판	5%	E0
		- - 기타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3433	3920.30.91	- - - 플레이트와 판(경질의 것)	5%	E0
3434	3920.30.92	- - - 기타(플레이트와 판)	5%	E0
3435	3920.30.99	- - - 기타	5%	E0
		-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3920.43	- - 전 중량의 100 분의 6 이상의 가소제를 함유하는 것		
3436	3920.43.10	- - - 플레이트와 판	0%	E0
3437	3920.43.90	- - - 기타	0%	E0
3438	3920.49.00	- - 기타	5%	E0
		- 아크릴 중합체로 만든 것		
	3920.51	- - 폴리(메틸메타크리레이트)로 만든 것		
		- - - 플레이트와 판		
3439	3920.51.11	- - - - 경질의 것	5%	E0
3440	3920.51.19	- - - - 기타	5%	E0
3441	3920.51.90	- - - 기타	5%	E0
	3920.59	- - 기타		
		- - - 플레이트와 판		
3442	3920.59.11	- - - - 경질의 것	5%	E0
3443	3920.59.19	- - - - 기타	5%	E0
3444	3920.59.90	- - - 기타	5%	E0
		-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 또는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3920.61	- -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것		
3445	3920.61.10	- - - 플레이트와 판	5%	E0
3446	3920.61.90	- - - 기타	5%	E0
	3920.62	- -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		
3447	3920.62.10	- - - 플레이트와 판	5%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3448	3920.62.90	- - - 기타	5%	E0
	3920.63	- - 불포화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3449	3920.63.10	- - - 플레이트와 판	5%	E0
3450	3920.63.90	- - - 기타	5%	E0
	3920.69	- -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3451	3920.69.10	- - - 플레이트와 판	0%	E0
3452	3920.69.90	- - - 기타	0%	E0
		- 셀룰로오스나 그 화학적 유도체로 만든 것		
	3920.71	- - 재생 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3453	3920.71.10	- - - 셀로판 필름	5%	E0
		- - - 기타		
3454	3920.71.91	- - - - 인쇄된 시트	5%	E0
3455	3920.71.99	- - - - 기타	5%	E0
3456	3920.73.00	- - 초산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5%	E0
	3920.79	- - 그 밖의 셀룰로오스 유도체로 만든 것		
3457	3920.79.10	- - - 니트로셀룰로오스(솜화약)의 것	5%	E0
3458	3920.79.20	- - - 벌커나이즈드 파이버의 것	5%	E0
		- - - 기타		
3459	3920.79.91	- - - - 플레이트와 판	5%	E0
3460	3920.79.99	- - - - 기타	5%	E0
		-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3920.91	- - 폴리(비닐 부티랄)로 만든 것		
3461	3920.91.10	- - - 안전유리용 필름(두께가 0.38 밀리미터 초과 0.76 밀리미터 이하, 폭이 2 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E0
		- - - 기타		
3462	3920.91.91	- - - - 플레이트와 판	5%	EX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3463	3920.91.99	- - - - 기타	5%	EX
	3920.92	- -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3464	3920.92.10	- - - 폴리아미드-6 으로 만든 것	5%	EX
		- - - 기타		
3465	3920.92.91	- - - - 플레이트와 판	5%	EX
3466	3920.92.99	- - - - 기타	5%	EX
	3920.93	- - 아미노수지로 만든 것		
3467	3920.93.10	- - - 플레이트와 판	5%	E10
3468	3920.93.90	- - - 기타	5%	E10
	3920.94	- - 페놀수지로 만든 것		
3469	3920.94.10	- - - 페놀포름알데히드(베이클라이트) 시트(sheet)	0%	E0
		- - - 기타		
3470	3920.94.91	- - - - 플레이트와 판	5%	E0
3471	3920.94.99	- - - - 기타	5%	E0
	3920.99	- -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3472	3920.99.10	- - - 경화 단백질의 것,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로 만든 것	0%	E0
		- - - 첨가 중합반응 물품으로 만든 것		
3473	3920.99.21	- - - - 플레이트와 판	5%	EX
3474	3920.99.29	- - - - 기타	5%	EX
		- - - 응축 또는 재배열 중합반응 물품으로 만든 것		
3475	3920.99.31	- - - - 플레이트와 판	5%	EX
3476	3920.99.39	- - - - 기타	5%	EX
3477	3920.99.90	- - - 기타	5%	EX
	39.21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		
		- 셀룰러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3921.11	- - 스티렌 중합체로 만든 것		
3478	3921.11.20	- - - 경질의 것	5%	E0
		- - - 기타		
3479	3921.11.91	- - - - 플레이트와 판	5%	EX
3480	3921.11.92	- - - - 필름으로 만든 것	5%	EX
3481	3921.11.99	- - - - 기타	5%	EX
3482	3921.12.00	- -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5%	EX
	3921.13	- -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		
3483	3921.13.10	- - - 경질의 것	5%	E0
		- - - 기타		
3484	3921.13.91	- - - - 플레이트와 판	5%	EX
3485	3921.13.92	- - - - 필름으로 만든 것	5%	EX
3486	3921.13.99	- - - - 기타	5%	EX
	3921.14	- - 재생 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3487	3921.14.20	- - - 경질의 것	5%	E0
		- - - 기타		
3488	3921.14.91	- - - - 플레이트와 판	5%	EX
3489	3921.14.92	- - - - 필름으로 만든 것	5%	EX
3490	3921.14.99	- - - - 기타	5%	EX
	3921.19	- -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3491	3921.19.20	- - - 경질의 것	5%	E0
		- - - 기타		
3492	3921.19.91	- - - - 플레이트와 판	5%	EX
3493	3921.19.92	- - - - 필름으로 만든 것	5%	EX
3494	3921.19.99	- - - - 기타	5%	EX
	3921.90	- 기타		
3495	3921.90.10	- - 벌커나이즈드 파이버의 것	5%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3496	3921.90.20	- - 경화 단백질로 만든 것	5%	E0
3497	3921.90.30	- -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로 만든 것	5%	E0
		- - 응축중합화 또는 재배열 중합 물품으로 만든 것		
3498	3921.90.41	- - - 플레이트와 판	5%	E0
3499	3921.90.42	- - - 필름으로 만든 것	5%	E0
3500	3921.90.43	- - - 직물로 적층된 스트립	5%	E0
3501	3921.90.49	- - - 기타	5%	E0
3502	3921.90.50	- - 재생 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5%	E0
3503	3921.90.60	- - 그 밖의 셀룰로오스나 그것의 화학적 유도체로 만든것	5%	E0
3504	3921.90.90	- - 기타	5%	E0
	39.22	**플라스틱으로 만든 목욕통・샤워통・설거지통・세면기・비데・화장실용 팬・변기용 시트(seat)와 커버・수세용 물탱크와 이와 유사한 위생용품**		
	3922.10	- 목욕통・샤워통・설거지통・세면대		
		- - 목욕통		
3505	3922.10.11	- - - 직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내부 모양의 욕조	5%	EX
3506	3922.10.19	- - - 기타	5%	EX
3507	3922.10.90	- - 기타	5%	EX
3508	3922.20.00	- 변기용 시트(seat)와 커버	5%	EX
	3922.90	- 기타		
		- - 화장실용 팬, 수세식 양변기 및 소변기		
3509	3922.90.11	- - - 수세식 양변기의 부분품	5%	E10
3510	3922.90.12	- - - 수세식 양변기(이들의 메커니즘이 갖춰진 것으로 한정한다)	0%	E0
3511	3922.90.19	- - - 기타	0%	E0
3512	3922.90.90	- - 기타	5%	E1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39.23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3923.10	- 상자·케이스·바구니와 이와 유사한 물품		
3513	3923.10.10	- - 필름, 테이프와 광학 디스크의 케이스	5%	E10
3514	3923.10.90	- - 기타	5%	EX
		- 포장대[콘(cone)을 포함한다]		
	3923.21	- - 에틸렌 중합체로 만든 것		
		- - - 알루미늄 박(레토르트 파우치는 제외한다)으로 보강된 살균백		
3515	3923.21.11	- - - - 폭이 315 밀리미터 이상이고 길이가 410 밀리미터 이상인 것(뚜껑이 결합된 것으로 한정한다)	5%	EX
3516	3923.21.19	- - - - 기타	5%	EX
		- - - 기타		
3517	3923.21.91	- - - - 알루미늄 박(箔)으로 보강하지 않은 살균백[폭이 315 밀리미터 이상, 길이가 410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뚜껑이 결합된 것으로 한정한다(레토르트 포장용은 제외한다)]	5%	EX
3518	3923.21.99	- - - - 기타	5%	EX
	3923.29	- -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3519	3923.29.10	- - - 살균백[알루미늄 박(箔)으로 보강하였는지에 상관없으며, 두께가 315 밀리미터 이상, 길이가 410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뚜껑이 결합된 것으로 한정한다(레토르트 포장용은 제외한다)]	5%	E10
3520	3923.29.90	- - - 기타	5%	E10
	3923.30	- 카보이(carboy)·병·플라스크(flask)와 이와 유사한 물품		
3521	3923.30.20	- - 다층 유리섬유로 보강된 컨테이너(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으로 한정한다)	5%	EX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3522	3923.30.90	- - 기타	5%	EX
	3923.40	- 스풀(spool)·콥(cop)·보빈(bobbin)과 이와 유사한 물품		
3523	3923.40.10	- - 제 8444 호·제 8445 호나 제 8448 호의 기계용으로 적합한 것	0%	E0
3524	3923.40.90	- - 기타	0%	E0
3525	3923.50.00	-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0%	E0
	3923.90	- 기타		
3526	3923.90.10	- - 치약용 튜브	5%	E10
3527	3923.90.90	- - 기타	5%	EX
	39.24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위생용품·화장용품**		
	3924.10	-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3528	3924.10.10	- - 멜라민으로 만든 것	5%	EX
3529	3924.10.90	- - 기타	5%	EX
	3924.90	- 기타		
3530	3924.90.10	- - 변기·소변기(휴대용)나 요강	5%	E15
3531	3924.90.20	- - 젖꼭지형태의 것, 브레스트쉘, 유두보호기, 손으로 젖짜는 깔때기	5%	EX
3532	3924.90.30	- - 아기용 보조제	5%	EX
3533	3924.90.90	- - 기타	5%	EX
	39.25	**플라스틱으로 만든 건축용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534	3925.10.00	- 저장기·탱크·배트(vat)와 이와 유사한 용기(용량이 300 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	E15
3535	3925.20.00	- 문·창과 이들의 틀과 문지방	0%	E0
3536	3925.30.00	- 셔터·블라인드[베네치안 블라인드(venetian blind)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이들의 부분품	5%	EX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3537	3925.90.00	- 기타	5%	EX
	39.26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 3901 호부터 제 3914 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		
3538	3926.10.00	- 사무용품이나 학용품	5%	EX
	3926.20	- 의류와 의류 부속품(장갑, 벙어리장갑을 포함한다)		
3539	3926.20.60	- - 화학물질·방사능이나 화재 보호용 의류	5%	E0
3540	3926.20.90	- - 기타	0%	E0
3541	3926.30.00	- 가구·차체(coachwork)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	5%	EX
3542	3926.40.00	-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용품	5%	E0
	3926.90	- 기타		
3543	3926.90.10	- - 어망용 찌(Float)	5%	E0
3544	3926.90.20	- - 부채·핸드스크린과 이들의 살·자루와 그 부분품	5%	E0
		- - 위생용품, 내과 및 외과 용품		
3545	3926.90.32	- - - 의치 거푸집을 갖춘 플라스틱 몰드	0%	E0
3546	3926.90.39	- - - 기타	5%	EX
		- - 안전과 방호용품		
3547	3926.90.41	- - - 경찰 방패	5%	E0
3548	3926.90.42	- - - 용접이나 이와 유사한 작업용 보호 마스크	5%	E0
3549	3926.90.44	- - - 생명구조 쿠션(높은 곳에서 추락하는 사람 구조용으로 한정한다)	5%	E0
3550	3926.90.49	- - - 기타	5%	E0
		- - 산업용 제품		
3551	3926.90.53	- - - 전동(transmission)용 또는 컨베이어용 벨트 또는 벨팅(belting)	0%	E0
3552	3926.90.55	- - - 기폭장치용 플라스틱 제이형 훅(J-	5%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hook)이나 번치 블록		
3553	3926.90.59	- - - 기타	5%	EX
3554	3926.90.60	- - 가금류 급이기(Poultry feeder)	5%	E10
3555	3926.90.70	- - 의류 또는 의류 부속품용의 패딩	5%	EX
		- - 보석용이나 소형 신변장식용품용 카드, 구슬, 신발의 골		
3556	3926.90.81	- - - 신발의 골	5%	E0
3557	3926.90.82	- - - 묵주용 구슬	5%	E0
3558	3926.90.89	- - - 기타	5%	EX
		- - 기타		
3559	3926.90.91	- - - 곡물 저장용의 것	5%	EX
3560	3926.90.92	- - - 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	5%	E0
3561	3926.90.99	- - - 기타	5%	EX
	40.01	**천연고무·발라타(balata)·구타페르카(gutta-percha)·구아율(guayule)·치클(chicle)과 이와 유사한 천연 검(gum)[일차 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4001.10	- 천연고무의 라텍스[프리-벌커나이즈된(pre-vulcanised) 것인지에 상관없다]		
		- - 암모니아 함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5 를 초과하는 것		
3562	4001.10.11	- - - 원심분리된 농축 천연 라텍스	0%	E0
3563	4001.10.19	- - - 기타	0%	E0
		- - 암모니아 함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5 이하인 것		
3564	4001.10.21	- - - 원심분리된 농축 천연 라텍스	0%	E0
3565	4001.10.29	- - - 기타	0%	E0
		- 천연고무(그 밖의 모양으로 한정한다)		
	4001.21	- - 스모크드 시트(smoked sheet)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3566	4001.21.10	- - - 알・에스・에스(RSS) 1등급	0%	E0
3567	4001.21.20	- - - 알・에스・에스(RSS) 2등급	0%	E0
3568	4001.21.30	- - - 알・에스・에스(RSS) 3등급	0%	E0
3569	4001.21.40	- - - 알・에스・에스(RSS) 4등급	0%	E0
3570	4001.21.50	- - - 알・에스・에스(RSS) 5등급	0%	E0
3571	4001.21.90	- - - 기타	0%	E0
	4001.22	- - 공업 규격화된 천연고무(TSNR)		
3572	4001.22.10	- - - 공업 규격화된 천연고무(TSNR) 10	0%	E0
3573	4001.22.20	- - - 공업 규격화된 천연고무(TSNR) 20	0%	E0
3574	4001.22.30	- - - 공업 규격화된 천연고무(TSNR) L	0%	E0
3575	4001.22.40	- - - 공업 규격화된 천연고무(TSNR) CV	0%	E0
3576	4001.22.50	- - - 공업 규격화된 천연고무(TSNR) GP	0%	E0
3577	4001.22.90	- - - 기타	0%	E0
	4001.29	- - 기타		
3578	4001.29.10	- - - 에어드라이(air-dried)한 시트(sheet)	0%	E0
3579	4001.29.20	- - - 라텍스 크레이프	0%	E0
3580	4001.29.30	- - - 바닥 크레이프	0%	E0
3581	4001.29.40	- - - 리밀 크레이프[플랫 바크 크레이프(flat bark crepe)를 포함한다]	0%	E0
3582	4001.29.50	- - - 그 밖의 크레이프	0%	E0
3583	4001.29.60	- - - 슈퍼리오 가공 고무	0%	E0
3584	4001.29.70	- - - 탈지 고무	0%	E0
3585	4001.29.80	- - - 스크랩(나무, 흙 또는 훈연의 것으로 한정한다) 및 컵 모양의 덩어리	0%	E0
		- - - 기타		
3586	4001.29.91	- - - - 일차제품인 것	0%	E0
3587	4001.29.99	- - - - 기타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4001.30	- 발라타(balata)·구타페르카(gutta-percha)·구아율(guayule)·치클(chicle)과 이와 유사한 천연 검(gum)		
3588	4001.30.20	- - 일차제품인 것	0%	E0
3589	4001.30.90	- - 기타	0%	E0
	40.02	합성고무와 기름에서 제조한 팩티스(factice)[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제4001호의 물품과 제4002호의 물품과의 혼합물[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 스티렌-부타디엔 고무(SBR)·카르복시화한 스티렌-부타디엔 고무(XSBR)		
3590	4002.11.00	- - 라텍스	0%	E0
	4002.19	- - 기타		
3591	4002.19.10	- - - 일차제품 또는 가황하지 않은 비합성 판, 시트 또는 스트립 모양인 것	0%	E0
3592	4002.19.90	- - - 기타	0%	E0
	4002.20	- 부타디엔 고무(BR)		
3593	4002.20.10	- - 일차제품인 것	0%	E0
3594	4002.20.90	- - 기타	0%	E0
		- 이소부텐-이소프렌(부틸)고무(IIR)·할로-이소부텐-이소프렌고무(CIIR이나 BIIR)		
	4002.31	- - 이소부텐-이소프렌 고무(부틸고무)(IIR)		
3595	4002.31.10	- - - 가황하지 않은 비합성 판, 시트 또는 스트립	0%	E0
3596	4002.31.90	- - - 기타	0%	E0
	4002.39	- - 기타		
3597	4002.39.10	- - - 가황하지 않은 비합성 판, 시트 또는 스트립	0%	E0
3598	4002.39.90	- - - 기타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 클로로프렌(클로로부타디엔) 고무(CR)		
3599	4002.41.00	- - 라텍스	0%	E0
	4002.49	- - 기타		
3600	4002.49.10	- - - 일차제품인 것	0%	E0
3601	4002.49.90	- - - 기타	0%	E0
		-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 고무(NBR)		
3602	4002.51.00	- - 라텍스	0%	E0
	4002.59	- - 기타		
3603	4002.59.10	- - - 일차제품인 것	0%	E0
3604	4002.59.90	- - - 기타	0%	E0
	4002.60	- 이소프렌 고무(IR)		
3605	4002.60.10	- - 일차제품인 것	0%	E0
3606	4002.60.90	- - 기타	0%	E0
	4002.70	- 에틸렌-프로필렌-비공액 디엔 고무(EPDM)		
3607	4002.70.10	- - 일차제품인 것	5%	E0
3608	4002.70.90	- - 기타	5%	E0
	4002.80	- 제 4001 호의 물품과 제 4002 호의 물품과의 혼합물		
3609	4002.80.10	- - 천연고무 라텍스와 합성고무 라텍스의 혼합물	0%	E0
3610	4002.80.90	- - 기타	0%	E0
		- 기타		
3611	4002.91.00	- - 라텍스	0%	E0
	4002.99	- - 기타		
3612	4002.99.20	- - - 일차제품 또는 가황하지 않은 비합성 판, 시트 또는 스트립 모양인 것	0%	E0
3613	4002.99.90	- - - 기타	0%	E0
3614	4003.00.00	재생고무[일차제품(primary form) 또는 판·시트(sheet) 또는 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다]		
3615	4004.00.00	고무의 웨이스트(waste)·페어링(paring) 및 스크랩(scrap)[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과 이들의 가루와 알갱이	0%	E0
	40.05	가황하지 않은 배합고무[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4005.10	- 카본블랙이나 실리카와 배합한 것		
3616	4005.10.10	- - 천연 검의 것	0%	E0
3617	4005.10.90	- - 기타	0%	E0
3618	4005.20.00	- 용액, 분산액(소호 제 4005.10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0%	E0
		- 기타		
	4005.91	- - 판·시트(sheet)·스트립		
3619	4005.91.10	- - - 천연 검의 것	0%	E0
3620	4005.91.90	- - - 기타	0%	E0
	4005.99	- - 기타		
3621	4005.99.10	- - - 라텍스	0%	E0
3622	4005.99.20	- - - 카본이나 실리카를 제외한 물질로 배합한 천연고무	0%	E0
3623	4005.99.90	- - - 기타	0%	E0
	40.06	가황하지 않은 고무의 그 밖의 모양[예: 막대(rod)·관·형재(形材)]과 제품(예: 디스크·링)		
3624	4006.10.00	- 고무타이어 재생용 “캐멀백(camel-back)” 스트립	0%	E0
	4006.90	- 기타		
		- - 천연 검의 것		
3625	4006.90.11	- - - 물품	0%	E0
3626	4006.90.19	- - - 기타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3627	4006.90.90	- - 기타	0%	E0
3628	**4007.00.00**	**고무실과 고무끈(가황한 것으로 한정한다)**	5%	E0
	40.08	**고무로 만든 판·시트(sheet)·스트립·막대(rod)·형재(形材)[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		
		- 셀룰러 고무로 만든 것		
	4008.11	- - 판·시트(sheet)·스트립		
3629	4008.11.10	- - - 두께가 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방직용 섬유로 한쪽 면을 댄 것에 한정한다)	0%	E0
3630	4008.11.20	- - - 기타(바닥 타일과 벽 타일의 것으로 한정한다)	0%	E0
3631	4008.11.90	- - - 기타	0%	E0
3632	4008.19.00	- - 기타	0%	E0
		- 셀룰러 고무 외로 만든 것		
	4008.21	- - 판·시트(sheet)·스트립		
3633	4008.21.10	- - - 두께가 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방직용 섬유로 한쪽 면을 댄 것에 한정한다)	0%	E0
3634	4008.21.20	- - - 기타(바닥 타일과 벽 타일의 것으로 한정한다)	0%	E0
3635	4008.21.30	- - - 지수판	0%	E0
3636	4008.21.40	- - - 고무 솔링 시트	0%	E0
3637	4008.21.90	- - - 기타	0%	E0
3638	4008.29.00	- - 기타	0%	E0
	40.09	**고무로 만든 관·파이프·호스[가황한 것으로 한정하고,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하며,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 등 연결구류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것		
3639	4009.11.00	- -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것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4009.12	- -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3640	4009.12.10	- - - 채굴슬러리(slurry) 흡입 및 배출 호스	0%	E0
3641	4009.12.90	- - - 기타	0%	E0
		- 금속으로만 보강되거나 결합된 것		
	4009.21	- -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것		
3642	4009.21.10	- - - 채굴슬러리(slurry) 흡입 및 배출 호스	0%	E0
3643	4009.21.90	- - - 기타	0%	E0
	4009.22	- -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3644	4009.22.10	- - - 채굴슬러리(slurry) 흡입 및 배출 호스	0%	E0
3645	4009.22.90	- - - 기타	0%	E0
		- 방직용 섬유 재료로만 보강되거나 결합된 것		
	4009.31	- -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것		
3646	4009.31.10	- - - 채굴슬러리(slurry) 흡입 및 배출 호스	0%	E0
3647	4009.31.20	- - - 가스 스토브용 고무 호스	0%	E0
		- - - 기타		
3648	4009.31.91	- - - - 제 8702 호·제 8703 호·제 8704 호 또는 제 8711 호의 자동차용 연료호스·히터 호스 및 워터호스	0%	E0
3649	4009.31.99	- - - - 기타	0%	E0
	4009.32	- -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3650	4009.32.10	- - - 채굴슬러리(slurry) 흡입 및 배출 호스	0%	E0
3651	4009.32.20	- - - 가스 스토브용 고무 호스	0%	E0
3652	4009.32.90	- - - 기타	0%	E0
		-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된 것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4009.41	- -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것		
3653	4009.41.10	- - - 가스 스토브용 고무 호스	0%	E0
3654	4009.41.90	- - - 기타	0%	E0
	4009.42	- -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3655	4009.42.10	- - - 채굴슬러리(slurry) 흡입 및 배출 호스	0%	E0
3656	4009.42.20	- - - 가스 스토브용 고무 호스	0%	E0
3657	4009.42.90	- - - 기타	0%	E0
	40.10	고무로 만든 컨베이어용·전동(transmission)용 벨트와 벨팅(belting)(가황한 것으로 한정한다)		
		- 컨베이어용 벨트나 벨팅(belting)		
3658	4010.11.00	- - 금속으로만 보강된 것	0%	E0
3659	4010.12.00	- - 방직용 섬유 재료로만 보강된 것	0%	E0
3660	4010.19.00	- - 기타	0%	E0
		- 전동(transmission)용 벨트나 벨팅(belting)		
3661	4010.31.00	- -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transmission)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 센티미터를 초과하고 180 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파인 것으로 한정한다)	0%	E0
3662	4010.32.00	- -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transmission)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 센티미터를 초과하고 180 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파인 것은 제외한다)	0%	E0
3663	4010.33.00	- -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transmission)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80 센티미터를 초과하고 240 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파인 것으로 한정한다)	0%	E0
3664	4010.34.00	- -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transmission)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80 센티미터를 초과하고 240 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파인 것은 제외한다)		
3665	4010.35.00	- - 엔드리스 싱크러너스(endless synchronous) 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 센티미터를 초과하고 150 센티미터 이하인 것	0%	E0
3666	4010.36.00	- - 엔드리스 싱크러너스(endless synchronous) 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50 센티미터를 초과하고 198 센티미터 이하인 것	0%	E0
3667	4010.39.00	- - 기타	0%	E0
	40.11	**고무로 만든 공기타이어(신품으로 한정한다)**		
3668	4011.10.00	- 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 자동차용을 포함한다]	0%	E0
	4011.20	- 버스용·화물차용		
3669	4011.20.10	- - 폭이 450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E0
3670	4011.20.90	- - 기타	0%	E0
3671	4011.30.00	- 항공기용	0%	E0
3672	4011.40.00	- 모터사이클용	0%	E0
3673	4011.50.00	- 자전거용	0%	E0
3674	4011.70.00	- 농경용 또는 임업용 차량과 기계의 것	0%	E0
	4011.80	- 건설용·광산용·산업용 차량과 기계의 것		
		- - 림(rim)의 지름이 61 센티미터 이하인 것		
3675	4011.80.11	- - - 트랙터, 제 8429 호 또는 제 8430 호의 기계류, 지게차, 일륜 손수레 또는 그 밖의 산업용 차량과 기계의 것	0%	E0
3676	4011.80.19	- - - 기타	0%	E0
		- - 림(rim)의 지름이 61 센티미터 초과인 것		
3677	4011.80.21	- - - 트랙터, 제 8429 호나 제 8430 호의 기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계류, 지게차 또는 그 밖의 산업용 차량과 기계의 것		
3678	4011.80.29	- - - 기타	0%	E0
	4011.90	- 기타		
3679	4011.90.10	- - 제 87 류의 차량용의 것	0%	E0
3680	4011.90.20	- - 제 8429 호나 제 8430 호의 기계류의 것	0%	E0
3681	4011.90.30	- - 기타(폭이 45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E0
3682	4011.90.90	- - 기타	0%	E0
	40.12	**고무로 만든 공기타이어(재생품과 중고품으로 한정한다), 고무로 만든 솔리드(solid)나 쿠션타이어, 타이어 트레드(tread), 타이어 플랩(flap)**		
		- 재생타이어		
3683	4012.11.00	- - 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 자동차용을 포함한다]	0%	E0
	4012.12	- - 버스용·화물자동차용		
3684	4012.12.10	- - - 폭이 450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E0
3685	4012.12.90	- - - 기타	0%	E0
3686	4012.13.00	- - 항공기용	0%	E0
	4012.19	- - 기타		
3687	4012.19.30	- - - 제 8429 호나 제 8430 호 기계류의 것	0%	E0
3688	4012.19.40	- - - 제 87 류의 차량용의 것	0%	E0
3689	4012.19.90	- - - 기타	0%	E0
	4012.20	- 중고 공기타이어		
3690	4012.20.10	- - 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 자동차용을 포함한다]	0%	E0
		- - 버스용 또는 화물차용		
3691	4012.20.21	- - - 폭이 450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E0
3692	4012.20.29	- - - 기타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3693	4012.20.30	- - 항공기용	0%	E0
3694	4012.20.40	- - 모터사이클용	0%	E0
3695	4012.20.50	- - 자전거용	0%	E0
3696	4012.20.60	- - 제 8429 호나 제 8430 호의 기계류의 것	0%	E0
3697	4012.20.70	- - 제 87 류의 그 밖의 차량용의 것	0%	E0
		- - 기타		
3698	4012.20.91	- - - 버프드(buffed) 타이어	0%	E0
3699	4012.20.99	- - - 기타	0%	E0
	4012.90	- 기타		
		- - 솔리드 타이어		
3700	4012.90.14	- - - 솔리드 타이어(바깥지름이 250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폭이 450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E0
3701	4012.90.15	- - - 제 8709 호의 차량용 솔리드 타이어(바깥지름이 250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폭이 45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E0
3702	4012.90.16	- - - 그 밖의 솔리드 타이어(바깥지름이 250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폭이 45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E0
3703	4012.90.19	- - - 기타	0%	E0
		- - 쿠션 타이어		
3704	4012.90.21	- - - 폭이 450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E0
3705	4012.90.22	- - - 폭이 45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	E0
3706	4012.90.70	- - 대체용 타이어 트레드(tread)(폭이 450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E0
3707	4012.90.80	- - 타이어 플랩	0%	E0
3708	4012.90.90	- - 기타	0%	E0
	40.13	**고무로 만든 이너튜브**		
	4013.10	- 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 자동차용을 포함한다]·버스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용・화물차용		
		- - 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 자동차용을 포함한다]		
3709	4013.10.11	- - - 폭이 450 밀리미터 이하인 타이어 부착에 적합한 것	0%	E0
3710	4013.10.19	- - - 폭이 45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타이어 부착에 적합한 것	0%	E0
		- - 버스용 또는 화물차용		
3711	4013.10.21	- - - 폭이 450 밀리미터 이하인 타이어 부착에 적합한 것	0%	E0
3712	4013.10.29	- - - 폭이 45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타이어 부착에 적합한 것	0%	E0
3713	4013.20.00	- 자전거용	0%	E0
	4013.90	- 기타		
		- - 제 8429 호나 제 8430 호의 기계류의 것		
3714	4013.90.11	- - - 폭이 450 밀리미터 이하인 타이어 부착에 적합한 것	0%	E0
3715	4013.90.19	- - - 폭이 45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타이어 부착에 적합한 것	0%	E0
3716	4013.90.20	- - 모터사이클용	0%	E0
		- - 제 87 류의 그 밖의 차량용의 것		
3717	4013.90.31	- - - 폭이 450 밀리미터 이하인 타이어 부착에 적합한 것	0%	E0
3718	4013.90.39	- - - 폭이 45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타이어 부착에 적합한 것	0%	E0
3719	4013.90.40	- - 항공기용	0%	E0
		- - 기타		
3720	4013.90.91	- - - 폭이 450 밀리미터 이하인 타이어 부착에 적합한 것	0%	E0
3721	4013.90.99	- - - 폭이 45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타이어 부착에 적합한 것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40.14	**고무로 만든 위생용품과 의료용품[젖꼭지를 포함하며, 경질(硬質)고무 외의 가황한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경질(硬質)고무로 만든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722	4014.10.00	- 콘돔	0%	E0
	4014.90	- 기타		
3723	4014.90.10	- - 젖병용과 이와 유사한 제품용 젖꼭지	0%	E0
3724	4014.90.40	- - 제약용 마개	0%	E0
3725	4014.90.50	- - 손가락 싸개	0%	E0
3726	4014.90.90	- - 기타	0%	E0
	40.15	**고무로 만든 의류와 의류 부속품[장갑, 벙어리장갑을 포함하고, 경질(硬質)고무 외의 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어떤 용도인지는 상관없다]**		
		- 장갑, 벙어리장갑		
3727	4015.11.00	- - 외과용	0%	E0
3728	4015.19.00	- - 기타	0%	E0
	4015.90	- 기타		
3729	4015.90.10	- - 방사능 방호복	0%	E0
3730	4015.90.20	- - 잠수복(웨트 슈트)	0%	E0
3731	4015.90.90	- - 기타	0%	E0
	40.16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4016.10	- 셀룰러 고무로 만든 것		
3732	4016.10.10	- - 의류 또는 의류 부속품용의 패딩	0%	E0
3733	4016.10.20	- - 바닥 타일과 벽 타일	0%	E0
3734	4016.10.90	- - 기타	0%	E0
		- 기타		
	4016.91	- - 바닥깔개와 매트		
3735	4016.91.10	- - - 매트(mat)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3736	4016.91.20	- - - 타일	0%	E0
3737	4016.91.90	- - - 기타	0%	E0
	4016.92	- - 지우개		
3738	4016.92.10	- - - 지우개 팁(tip)	0%	E0
3739	4016.92.90	- - - 기타	0%	E0
	4016.93	- - 개스킷(gasket)·와셔(washer)·그 밖의 실(seal)		
3740	4016.93.10	- - - 전해질 축전기의 접속 단자 절연용으로 사용되는 것	0%	E0
3741	4016.93.20	- - - 개스킷(gasket)과 오링(제 8702 호·제 8703 호·제 8704 호나 제 8711 호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0%	E0
3742	4016.93.90	- - - 기타	0%	E0
3743	4016.94.00	- - 보트나 도크펜더(dock fender)(팽창성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0%	E0
3744	4016.95.00	- - 그 밖의 팽창성 제품	0%	E0
	4016.99	- - 기타		
		- - - 제 87 류의 차량에 사용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		
3745	4016.99.11	- - - - 제 8702 호·제 8703 호·제 8704 호나 제 8705 호의 자동차용(틈마개용 재료를 제외한다)	0%	E0
3746	4016.99.12	- - - - 제 8711 호의 차량용	0%	E0
3747	4016.99.13	- - - - 틈마개용 재료(제 8702 호·제 8703 호나 제 8704 호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0%	E0
3748	4016.99.15	- - - - 제 8709 호·제 8713 호·제 8715 호나 제 8716 호의 차량용	0%	E0
3749	4016.99.16	- - - - 자전거 흙받이	0%	E0
3750	4016.99.17	- - - - 자전거 부분품	0%	E0
3751	4016.99.18	- - - - 그 밖의 자전거 부속품	0%	E0
3752	4016.99.19	- - - - 기타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3753	4016.99.20	- - - 제 8804 호의 로토슈트의 부분품과 부속품	0%	E0
3754	4016.99.30	- - - 고무밴드	0%	E0
3755	4016.99.40	- - - 벽 타일	0%	E0
		- - - 기계류 또는 기계식 또는 전기식 제품에서, 또는 그 밖의 기술적 용도를 위해 사용된 종류의 그 밖의 제품		
3756	4016.99.51	- - - - 고무 롤러	0%	E0
3757	4016.99.52	- - - - 타이어 주형 주머니	0%	E0
3758	4016.99.53	- - - - 애자 후드	0%	E0
3759	4016.99.54	- - - - 고무로 만든 자동차 와이어링 하네스용 그로밋과 커버	0%	E0
3760	4016.99.59	- - - - 기타	0%	E0
3761	4016.99.60	- - - 레일 패드	0%	E0
3762	4016.99.70	- - - 구조 베어링(브릿지 베어링을 포함한다)	0%	E0
		- - - 기타		
3763	4016.99.91	- - - - 테이블 커버	0%	E0
3764	4016.99.99	- - - - 기타	0%	E0
	40.17	**경질(硬質)고무[예: 에보나이트(ebonite), 각종 모양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와 그 제품**		
3765	4017.00.10	- 바닥 타일과 벽 타일	0%	E0
3766	4017.00.20	- 그 밖의 경질(硬質)고무 제품	0%	E0
3767	4017.00.90	- 기타	0%	E0
	41.01	**소(버팔로를 포함한다)와 마속(馬屬)동물의 원피[생 것·염장한 것·건조한 것·석회처리한 것·산처리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존처리한 것으로 한정하고, 유연처리·파치먼트(parchment) 가공이나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하며, 털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없다]		
3768	4101.20.00	- 스플릿(split)하지 않은 전신 원피(단순 건조시켰을 때의 중량이 8킬로그램 이하, 염처리 후 건조시켰을 때의 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 생 것·습식염장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존처리하였을 때의 중량이 16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E0
3769	4101.50.00	- 전신 원피(16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E0
	4101.90	- 기타[버트(butt), 벤드(bend), 벨리(belly)를 포함한다]		
3770	4101.90.10	- - 유연 전처리 한 것	0%	E0
3771	4101.90.90	- - 기타	0%	E0
	41.02	면양이나 어린 양의 원피[생 것·염장한 것·건조한 것·석회처리한 것·산처리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존처리한 것으로 한정하고, 유연처리·파치먼트(parchment) 가공이나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하며, 털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다만, 이 류의 주 제1호다목에 따라 제외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3772	4102.10.00	- 털을 제거하지 않은 것	0%	E0
		- 털을 제거한 것		
3773	4102.21.00	- - 산처리한 것	0%	E0
3774	4102.29.00	- - 기타	0%	E0
	41.03	그 밖의 원피[생 것·염장한 것·건조한 것·석회처리한 것·산처리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존처리한 것으로 한정하고, 유연처리·파치먼트(parchment) 가공이나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하며, 털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다만, 이 류의 주 제1호나목이나 다목에 따라 제외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3775	4103.20.00	- 파충류의 원피	0%	E0
3776	4103.30.00	- 돼지의 원피	0%	E0
3777	4103.90.00	- 기타	0%	E0
	41.04	**소(버팔로를 포함한다)나 마속(馬屬)동물의 유연처리나 크러스트 처리한 원피[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4104.11	- -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3778	4104.11.10	- - - 소가죽의 것(배저터블 유연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0%	E0
3779	4104.11.90	- - - 기타	0%	E0
3780	4104.19.00	- - 기타	0%	E0
		-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3781	4104.41.00	- -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0%	E0
3782	4104.49.00	- - 기타	0%	E0
	41.05	**면양이나 어린 양의 유연처리·크러스트 처리한 원피[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3783	4105.10.00	- 습윤 상태의 것[웨트 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0%	E0
3784	4105.30.00	-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0%	E0
	41.06	**그 밖의 동물의 유연처리·크러스트 처리한 원피[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산양 또는 어린 산양의 것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3785	4106.21.00	- - 습윤 상태의 것[웨트 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0%	E0
3786	4106.22.00	- -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0%	E0
		- 돼지로 만든 것		
3787	4106.31.00	- - 습윤 상태의 것[웨트 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0%	E0
3788	4106.32.00	- -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0%	E0
3789	4106.40.00	- 파충류의 원피	0%	E0
		- 기타		
3790	4106.91.00	- - 습윤 상태의 것[웨트 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0%	E0
3791	4106.92.00	- -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0%	E0
	41.07	유연처리·크러스트 처리한 후 그 이상의 가공을 한 소(버팔로를 포함한다)나 마속(馬屬)동물의 가죽[파치먼트(parchment) 가공 가죽을 포함한다][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 4114 호의 가죽은 제외한다]		
		- 전신 가죽		
3792	4107.11.00	- -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0%	E0
3793	4107.12.00	- -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0%	E0
3794	4107.19.00	- - 기타	0%	E0
		- 기타(반신의 가죽을 포함한다)		
3795	4107.91.00	- -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0%	E0
3796	4107.92.00	- -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0%	E0
3797	4107.99.00	- - 기타	0%	E0
3798	4112.00.00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 처리한 후 그 이상의 가공을 한 면양이나 어린 양의 가죽[파치먼트(parchment) 가공 가죽을 포함한다][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 4114 호의 가죽은 제외한다]		
	41.13	유연처리·크러스트 처리한 후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그 밖의 동물의 가죽[파치먼트(parchment) 가공 가죽을 포함한다][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 4114 호의 가죽은 제외한다]		
3799	4113.10.00	- 산양의 가죽	0%	E0
3800	4113.20.00	- 돼지의 가죽	0%	E0
3801	4113.30.00	- 파충류의 가죽	0%	E0
3802	4113.90.00	- 기타	0%	E0
	41.14	샤미가죽(chamois leather)[콤비네이션 샤미가죽(chamois leather)을 포함한다],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와 적층한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 메탈라이즈드 레더(metallised leather)		
3803	4114.10.00	- 샤미가죽(chamois leather)[콤비네이션 샤미가죽(chamois leather)을 포함한다]	0%	E0
3804	4114.20.00	-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와 적층한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 메탈라이즈드 레더(metallised leather)	0%	E0
	41.15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가죽이나 가죽섬유를 기본 재료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롤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슬래브 모양·시트(sheet) 모양·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의 페어링(paring)과 그 밖의 웨이스트(waste)(가죽제품의 제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가죽의 더스트(dust)와 가루		
3805	4115.10.00	-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가죽이나 가죽섬유를 기본 재료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롤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슬래브 모양·시트(sheet) 모양 또는 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3806	4115.20.00	-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의 페어링(paring)과 그 밖의 웨이스트(waste)(가죽제품의 제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가죽의 더스트(dust)와 가루	0%	E0
3807	4201.00.00	동물용 마구(고삐줄, 끈, 무릎받이, 재갈, 안장용 방석, 안장에 다는 주머니, 개용 코트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하며, 어떤 재료이든 상관없다)	0%	E0
	42.02	트렁크·슈트 케이스·화장품 케이스·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 케이스·쌍안경 케이스·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플라스틱의 시트(sheet)·방직용 섬유·벌커나이즈드파이버(vulcanised fibre)·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나 종이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식품용이나 음료용 단열가방·화장갑·배낭·핸드백·쇼핑백·돈주머니·지갑·지도용 케이스·담배 케이스·담배쌈지·공구가방·운동용구 가방, 병 케이스·신변장식용품용 상자·분갑·칼붙이집과 이와 유사한 용기		
		- 트렁크·슈트 케이스·화장품 케이스·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서류가방·학생가방과 이와 유사한 용기		
	4202.11	-- 외부 표면을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		
3808	4202.11.10	--- 슈트케이스나 브리프 케이스로 최대 치수가 56 센티미터 x 45 센티미터 x 25 센티미터인 것	0%	E0
3809	4202.11.90	--- 기타	0%	E0
	4202.12	--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이나 방직용 섬유 재료로 만든 것		
		--- 학교가방		
3810	4202.12.11	---- 외부 표면을 벌커나이즈드파이버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vulcanised fibre)로 만든 것		
3811	4202.12.19	- - - - 기타	0%	E0
		- - - 기타		
3812	4202.12.91	- - - - 외부 표면을 벌커나이즈드파이버(vulcanised fibre)로 만든 것	0%	E0
3813	4202.12.99	- - - - 기타	0%	E0
	4202.19	- - 기타		
3814	4202.19.20	- - - 외부 표면을 판지로 만든 것	0%	E0
3815	4202.19.90	- - - 기타	0%	E0
		- 핸드백(멜빵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손잡이가 없는 것을 포함한다)		
3816	4202.21.00	- - 외부 표면을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	0%	E0
3817	4202.22.00	- -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 시트(sheet)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0%	E0
3818	4202.29.00	- - 기타	0%	E0
		- 일반적으로 주머니나 핸드백에 휴대하는 물품		
3819	4202.31.00	- - 외부 표면을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	0%	E0
3820	4202.32.00	- -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 시트(sheet)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0%	E0
3821	4202.39.00	- - 기타	0%	E0
		- 기타		
	4202.91	- - 외부 표면을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		
		- - - 운동용구가방		
3822	4202.91.11	- - - - 볼링용구가방	0%	E0
3823	4202.91.19	- - - - 기타	0%	E0
3824	4202.91.90	- - - 기타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4202.92	- -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 시트(sheet)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3825	4202.92.10	- - - 세면용품 가방(플라스틱 시트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0%	E0
3826	4202.92.20	- - - 볼링용구가방	0%	E0
3827	4202.92.90	- - - 기타	0%	E0
	4202.99	- - 기타		
3828	4202.99.10	- - - 외부 표면을 벌커나이즈드파이버(vulcanised fibre)나 판지로 만든 것	0%	E0
3829	4202.99.20	- - - 구리로 만든 것	0%	E0
3830	4202.99.90	- - - 기타	0%	E0
	42.03	**의류와 의류 부속품[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3831	4203.10.00	- 의류	0%	E0
		- 장갑, 벙어리장갑		
3832	4203.21.00	- - 운동용으로 특수 디자인한 것	0%	E0
	4203.29	- - 기타		
3833	4203.29.10	- - - 작업용 보호 장갑	0%	E0
3834	4203.29.90	- - - 기타	0%	E0
3835	4203.30.00	- 벨트와 띠	0%	E0
3836	4203.40.00	- 그 밖의 의류 부속품	0%	E0
	42.05	**그 밖의 가죽제품과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제품**		
3837	4205.00.10	- 부츠 끈, 매트	0%	E0
3838	4205.00.20	- 산업용 안전 벨트와 하네스	0%	E0
3839	4205.00.30	- 보석이나 신변장식용품에 사용되는 가죽 끈이나 줄	0%	E0
3840	4205.00.40	- 기계류나 기계식의 기구 또는 그 밖의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그 밖의 제품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3841	4205.00.90	- 기타	0%	E0
3842	4206.00.00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골드비터 스킨(goldbeater skin)·방광 또는 건(腱)의 제품	0%	E0
	43.01	생모피(모피 사용에 적합한 머리 부분, 꼬리 부분, 발 부분과 그 밖의 조각이나 절단품을 포함하며, 제 4101 호·제 4102 호·제 4103 호에 해당하는 원피는 제외한다)		
3843	4301.10.00	- 밍크의 것(전신인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꼬리 부분 또는 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0%	E0
3844	4301.30.00	- 어린 양의 것[아스트라칸(Astrakhan)·브로드테일(Broadtail)·카라쿨(Caracul)·페르시아 어린 양과 이와 유사한 어린 양, 인도·중국·몽고 또는 티베트 어린 양의 것으로서 전신인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꼬리 부분 또는 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0%	E0
3845	4301.60.00	- 여우의 것(전신인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꼬리 부분 또는 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0%	E0
3846	4301.80.00	- 그 밖의 모피(전신인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꼬리 부분 또는 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0%	E0
3847	4301.90.00	- 머리 부분·꼬리 부분·발 부분과 그 밖의 조각이나 절단품(모피제품으로 사용하기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	E0
	43.02	모피(유연처리, 드레스가공한 것으로서 머리 부분, 꼬리 부분, 발 부분과 그 밖의 조각이나 절단품을 포함하고, 조합하지 않은 것이나 그 밖의 재료를 가하지 않고 조합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 4303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 전신 모피(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 꼬리 부분 또는 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3848	4302.11.00	- - 밍크의 것	0%	E0
3849	4302.19.00	- - 기타	0%	E0
3850	4302.20.00	- 머리 부분·꼬리 부분·발 부분과 그 밖의 조각이나 절단품(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E0
3851	4302.30.00	- 전신 모피와 그 조각이나 절단품(조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	E0
	43.03	**모피의류·모피의류의 부속품과 그 밖의 모피제품**		
3852	4303.10.00	- 모피의류와 모피의류의 부속품	0%	E0
	4303.90	- 기타		
3853	4303.90.20	- - 산업용 제품	0%	E0
3854	4303.90.90	- - 기타	0%	E0
	43.04	**인조모피와 그 제품**		
3855	4304.00.10	- 인조모피	0%	E0
3856	4304.00.20	- 산업용 제품	0%	E0
		- 기타		
3857	4304.00.91	- - 운동용구가방	0%	E0
3858	4304.00.99	- - 기타	0%	E0
	44.01	**땔나무(통나무, 목편, 작은 가지, 다발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정한다), 칩이나 삭편(削片) 모양인 목재, 톱밥·목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통나무·브리케트(briquette)·펠릿(pellet)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응결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 땔나무(통나무, 목편, 작은 가지, 다발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정한다)		
3859	4401.11.00	- - 침엽수류	0%	E0
3860	4401.12.00	- - 활엽수류	0%	E0
		- 칩이나 삭편(削片) 모양인 목재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3861	4401.21.00	- - 침엽수류	0%	E0
3862	4401.22.00	- - 활엽수류	0%	E0
		- 톱밥, 목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통나무·브리케트(briquette)·펠릿(pellet)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응결된 것으로 한정한다]		
3863	4401.31.00	- - 목재 펠릿(pellet)	0%	E0
3864	4401.39.00	- - 기타	0%	E0
3865	4401.40.00	- 톱밥 및 목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응결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E0
	44.02	**목탄[쉘(shell)이나 너트(nut)의 탄을 포함하며, 응결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3866	4402.10.00	- 대나무로 만든 것	0%	E0
	4402.90	- 기타		
3867	4402.90.10	- - 코코넛 쉘(shell)로 만든 것	0%	E0
3868	4402.90.90	- - 기타	0%	E0
	44.03	**원목[껍질·변재(邊材)를 벗긴 것인지 또는 거칠게 각을 뜬 것인지에 상관없다]**		
		- 페인트, 착색, 크레오소트(creosote)나 그 밖의 방부제로 처리한 것		
	4403.11	- - 침엽수류		
3869	4403.11.10	- - - 바울크스(제재용과 베니어용으로 한정한다)	0%	E0
3870	4403.11.90	- - - 기타	0%	E0
	4403.12	- - 활엽수류		
3871	4403.12.10	- - - 바울크스(제재용과 베니어용으로 한정한다)	0%	E0
3872	4403.12.90	- - - 기타	0%	E0
		- 기타(침엽수류로 한정한다)		
	4403.21	- - 소나무[피너스(Pinus)종]의 것(모든 횡단면의 치수가 15 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한정한다)		
3873	4403.21.10	- - - 바울크스(제재용과 베니어용으로 한정한다)	0%	E0
3874	4403.21.90	- - - 기타	0%	E0
	4403.22	- - 소나무[피너스(Pinus)종]의 것(그 밖의 것으로 한정한다)		
3875	4403.22.10	- - - 바울크스(제재용과 베니어용으로 한정한다)	0%	E0
3876	4403.22.90	- - - 기타	0%	E0
	4403.23	- - 전나무[아비에스(Abies)종]와 가문비나무[피세아(Picea)종]의 것(모든 횡단면의 치수가 15 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3877	4403.23.10	- - - 바울크스(제재용과 베니어용으로 한정한다)	0%	E0
3878	4403.23.90	- - - 기타	0%	E0
	4403.24	- - 전나무[아비에스(Abies)종]와 가문비나무[피세아(Picea)종]의 것(그 밖의 것으로 한정한다)		
3879	4403.24.10	- - - 바울크스(제재용과 베니어용으로 한정한다)	0%	E0
3880	4403.24.90	- - - 기타	0%	E0
	4403.25	- - 기타(모든 횡단면의 치수가 15 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3881	4403.25.10	- - - 바울크스(제재용과 베니어용으로 한정한다)	0%	E0
3882	4403.25.90	- - - 기타	0%	E0
	4403.26	- - 기타		
3883	4403.26.10	- - - 바울크스(제재용과 베니어용으로 한정한다)	0%	E0
3884	4403.26.90	- - - 기타	0%	E0
		- 기타(열대산 목재로 한정한다)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4403.41	- - 다크레드메란티(Dark Red Meranti)·라이트레드메란티(Light Red Meranti)·메란티바카우(Meranti Bakau)		
3885	4403.41.10	- - - 바울크스(제재용과 베니어용으로 한정한다)	0%	E0
3886	4403.41.90	- - - 기타	0%	E0
	4403.49	- - 기타		
3887	4403.49.10	- - - 바울크스(제재용과 베니어용으로 한정한다)	0%	E0
3888	4403.49.90	- - - 기타	0%	E0
		- 기타		
	4403.91	- - 참나무[코커스(Quercus)종]		
3889	4403.91.10	- - - 바울크스(제재용과 베니어용으로 한정한다)	0%	E0
3890	4403.91.90	- - - 기타	0%	E0
	4403.93	- - 너도밤나무[파구스(Fagus)종]의 것(모든 횡단면의 치수가 15 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3891	4403.93.10	- - - 바울크스(제재용과 베니어용으로 한정한다)	0%	E0
3892	4403.93.90	- - - 기타	0%	E0
	4403.94	- - 너도밤나무[파구스(Fagus)종]의 것(그 밖의 것으로 한정한다)		
3893	4403.94.10	- - - 바울크스(제재용과 베니어용으로 한정한다)	0%	E0
3894	4403.94.90	- - - 기타	0%	E0
	4403.95	- - 자작나무[베툴라(Betula)종]의 것(모든 횡단면의 치수가 15 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3895	4403.95.10	- - - 바울크스(제재용과 베니어용으로 한정한다)	0%	E0
3896	4403.95.90	- - - 기타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4403.96	- - 자작나무[베툴라(Betula)종]의 것(그 밖의 것으로 한정한다)		
3897	4403.96.10	- - - 바울크스(제재용과 베니어용으로 한정한다)	0%	E0
3898	4403.96.90	- - - 기타	0%	E0
	4403.97	- - 포플러와 사시나무[포푸러스(Populus)종]의 것		
3899	4403.97.10	- - - 바울크스(제재용과 베니어용으로 한정한다)	0%	E0
3900	4403.97.90	- - - 기타	0%	E0
	4403.98	- - 유칼립투스[유칼립투스(Eucalyptus)종]의 것		
3901	4403.98.10	- - - 바울크스(제재용과 베니어용으로 한정한다)	0%	E0
3902	4403.98.90	- - - 기타	0%	E0
	4403.99	- - 기타		
3903	4403.99.10	- - - 바울크스(제재용과 베니어용으로 한정한다)	0%	E0
3904	4403.99.90	- - - 기타	0%	E0
	44.04	후프우드(hoopwood), 쪼갠 말뚝, 뾰족하게 만든 목재의 말뚝류(길이의 방향으로 톱질한 것은 제외한다), 목재의 막대(stick)[지팡이·산류(傘類)·공구의 자루나 이와 유사한 물품의 제조에 적합한 것으로서 거칠게 깎은 것으로 한정하며, 선반가공·휨 가공이나 그 밖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한다], 칩우드(chipwood)와 이와 유사한 것		
3905	4404.10.00	- 침엽수류	0%	E0
	4404.20	- 활엽수류		
3906	4404.20.10	- - 칩우드(chipwood)	0%	E0
3907	4404.20.90	- - 기타	0%	E0
	44.05	목모(wood wool)와 목분(wood flour)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3908	4405.00.10	- 목모(wood wool)	0%	E0
3909	4405.00.20	- 목분(wood flour)	0%	E0
	44.06	**철도용 또는 궤도용 받침목(크로스타이)**		
		- 주약처리(impregnated)하지 않은 것		
3910	4406.11.00	- - 침엽수류	0%	E0
3911	4406.12.00	- - 활엽수류	0%	E0
		- 기타		
3912	4406.91.00	- - 침엽수류	0%	E0
3913	4406.92.00	- - 활엽수류	0%	E0
	44.07	**제재목[길이의 방향으로 쪼갠 것, 평삭(平削)한 것, 회전식으로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대패질·연마·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인지에 상관없다]**		
		- 침엽수류		
3914	4407.11.00	- - 소나무[피누스(Pinus)종]의 것	0%	E0
3915	4407.12.00	- - 전나무[아비에스(Abies)종] 및 가문비나무[피세아(Picea)종]의 것	0%	E0
3916	4407.19.00	- - 기타	0%	E0
		- 기타(열대산 목재로 한정한다)		
	4407.21	- - 마호가니(Mahogany)[스웨테니아(Swietenia)종]		
3917	4407.21.10	- - - 대패질·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	0%	E0
3918	4407.21.90	- - - 기타	0%	E0
	4407.22	- - 비롤라(Virola)·임부아(Imbua)·발사(Balsa)		
3919	4407.22.10	- - - 대패질·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	0%	E0
3920	4407.22.90	- - - 기타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4407.25	- - 다크레드메란티(Dark Red Meranti)·라이트레드메란티(Light Red Meranti)·메란티바카우(Meranti Bakau)		
		- - - 다크레드메란티(Dark Red Meranti) 또는 라이트레드메란티(Light Red Meranti)		
3921	4407.25.11	- - - - 대패질·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	0%	E0
3922	4407.25.19	- - - - 기타	0%	E0
		- - - 메란티바카우(Meranti Bakau)		
3923	4407.25.21	- - - - 대패질·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	0%	E0
3924	4407.25.29	- - - - 기타	0%	E0
	4407.26	- - 화이트라왕(White Lauan)·화이트메란티(White Meranti)·화이트세라야(White Seraya)·옐로메란티(Yellow Meranti)·아란(Alan)		
3925	4407.26.10	- - - 대패질·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	0%	E0
3926	4407.26.90	- - - 기타	0%	E0
	4407.27	- - 사펠리(Sapelli)		
3927	4407.27.10	- - - 대패질·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	0%	E0
3928	4407.27.90	- - - 기타	0%	E0
	4407.28	- - 이로코(Iroko)		
3929	4407.28.10	- - - 대패질·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	0%	E0
3930	4407.28.90	- - - 기타	0%	E0
	4407.29	- - 기타		
		- - - 제루통(Jelutong)[디에라(Dyera)종]		
3931	4407.29.11	- - - - 대패질·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3932	4407.29.19	- - - - 기타	0%	E0
		- - - 카풀[용뇌수(Dryobalanops)종]		
3933	4407.29.21	- - - - 대패질·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	0%	E0
3934	4407.29.29	- - - - 기타	0%	E0
		- - - 켐파스(Kempas)[쿰파시아(Koompassia)종]		
3935	4407.29.31	- - - - 대패질·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	0%	E0
3936	4407.29.39	- - - - 기타	0%	E0
		- - - 케루잉(Keruing)[딥테로카르푸스속(Dipterocarpus)종]		
3937	4407.29.41	- - - - 대패질·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	0%	E0
3938	4407.29.49	- - - - 기타	0%	E0
		- - - 라민(Ramin)[고니스틸루스속(Gonystylus)종]		
3939	4407.29.51	- - - - 대패질·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	0%	E0
3940	4407.29.59	- - - - 기타	0%	E0
		- - - 티크(Teak)[텍토나(Tectona)종]		
3941	4407.29.61	- - - - 대패질·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	0%	E0
3942	4407.29.69	- - - - 기타	0%	E0
		- - - 발라우(Balau)[쇼레아(Shorea)종]		
3943	4407.29.71	- - - - 대패질·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	0%	E0
3944	4407.29.79	- - - - 기타	0%	E0
		- - - 멩쿠랑(Mengkulang)[헤리티에라(Heritiera)종]		
3945	4407.29.81	- - - - 대패질·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end-jointed) 것		
3946	4407.29.89	- - - - 기타	0%	E0
		- - - 기타		
3947	4407.29.91	- - - - 종콩[닥틸로클라두스(Dactylocladus)종]과 멜바우[인씨아(Intsia)종][대패질·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	0%	E0
3948	4407.29.92	- - - - 종콩[닥틸로클라두스(Dactylocladus)종]과 멜바우[인씨아(Intsia)종](그 밖의 것)	0%	E0
3949	4407.29.94	- - - - 알비지아[파라세리안더스 팔카타리아](Paraserianthes falcataria)[대패질·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	0%	E0
3950	4407.29.95	- - - - 알비지아[파라세리안더스 팔카타리아(Paraserianthes falcataria)](그 밖의 것)	0%	E0
3951	4407.29.96	- - - - 고무(파라고무나무)[대패질·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	0%	E0
3952	4407.29.97	- - - - 고무(파라고무나무)(그 밖의 것)	0%	E0
3953	4407.29.98	- - - - 기타[대패질·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	0%	E0
3954	4407.29.99	- - - - 기타	0%	E0
		- 기타		
	4407.91	- - 참나무[코커스(Quercus)종]		
3955	4407.91.10	- - - 대패질·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	0%	E0
3956	4407.91.90	- - - 기타	0%	E0
	4407.92	- - 너도밤나무[파구스(Fagus)종]		
3957	4407.92.10	- - - 대패질·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	0%	E0
3958	4407.92.90	- - - 기타	0%	E0
	4407.93	- - 단풍나무[아세르(Acer)종]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3959	4407.93.10	- - - 대패질·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	0%	E0
3960	4407.93.90	- - - 기타	0%	E0
	4407.94	- - 체리나무[프루누스(Prunus)종]		
3961	4407.94.10	- - - 대패질·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	0%	E0
3962	4407.94.90	- - - 기타	0%	E0
	4407.95	- - 물푸레나무[프라시너스(Fraxinus)종]		
3963	4407.95.10	- - - 대패질·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	0%	E0
3964	4407.95.90	- - - 기타	0%	E0
	4407.96	- - 자작나무[베툴라(Betula)종]의 것		
3965	4407.96.10	- - - 대패질·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	0%	E0
3966	4407.96.90	- - - 기타	0%	E0
	4407.97	- - 포플러와 사시나무[포푸러스(Populus)종]의 것		
3967	4407.97.10	- - - 대패질·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	0%	E0
3968	4407.97.90	- - - 기타	0%	E0
	4407.99	- - 기타		
3969	4407.99.10	- - - 대패질·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	0%	E0
3970	4407.99.90	- - - 기타	0%	E0
	44.08	베니어용 단판[적층 목재를 평삭(平削)한 것을 포함한다], 합판용 단판이나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용 단판, 그 밖의 목재[길이의 방향으로 톱질한 것, 평삭(平削)한 것, 회전식으로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며, 대패질·연마·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인지에 상관없다]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4408.10	- 침엽수류		
3971	4408.10.10	- - 삼나무 목재 연필 슬랫(slat), 블록보드(blockboard)용에 사용되는 라디아타(radiata) 소나무 목재	0%	E0
3972	4408.10.30	- - 앞판 베니어 시트(sheet)	0%	E0
3973	4408.10.90	- - 기타	0%	E0
		- 열대산 목재의 것		
3974	4408.31.00	- - 다크레드메란티(Dark Red Meranti)·라이트레드메란티(Light Red Meranti)와 메란티바카우(Meranti Bakau)	0%	E0
	4408.39	- - 기타		
3975	4408.39.10	- - - 젤루통 목재 연필 슬랫(slat)	0%	E0
3976	4408.39.20	- - - 앞판 베니어 시트(sheet)	0%	E0
3977	4408.39.90	- - - 기타	0%	E0
	4408.90	- 기타		
3978	4408.90.10	- - 앞판 베니어 시트(sheet)	0%	E0
3979	4408.90.90	- - 기타	0%	E0
	44.09	목재[미조립한 쪽마루판용 스트립(strip)과 프리즈(frieze)를 포함한다]로서 어느 한쪽의 가장자리·마구리·면을 따라 연속적으로 성형한 것[블록가공·홈가공·은촉이음가공·경사이음가공·브이형이음가공·구슬형가공·주형가공·원형가공이나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한 것으로서 대패질·연마·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인지에 상관없다]		
3980	4409.10.00	- 침엽수류	0%	E0
		- 활엽수류		
3981	4409.21.00	- - 대나무로 만든 것	0%	E0
3982	4409.22.00	- - 열대산 목재의 것	0%	E0
3983	4409.29.00	- - 기타	0%	E0
	44.10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배향성(配向性)이 있는 스트랜드 보드(OSB: oriented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strand board)와 이와 유사한 보드[예: 웨이퍼보드(wafer board)](목재나 그 밖의 목질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수지나 그 밖의 유기결합제로 응결시킨 것인지에 상관없다)		
		- 목재로 만든 것		
3984	4410.11.00	- -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5%	SS
3985	4410.12.00	- - 배향성(配向性)이 있는 스트랜드 보드(OSB: oriented strand board)	0%	E0
3986	4410.19.00	- - 기타	0%	E0
3987	4410.90.00	- 기타	5%	SS
	44.11	**섬유판(목재나 그 밖의 목질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수지나 그 밖의 유기물질로 접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중밀도 섬유판(MDF)		
3988	4411.12.00	- -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	5%	SS
3989	4411.13.00	- - 두께가 5밀리미터를 초과하고 9밀리미터 이하인 것	5%	SS
3990	4411.14.00	- - 두께가 9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5%	SS
		- 기타		
3991	4411.92.00	- - 밀도가 1세제곱센티미터당 0.8그램을 초과하는 것	5%	SS
3992	4411.93.00	- - 밀도가 1세제곱센티미터당 0.5그램을 초과하고 0.8그램 이하인 것	5%	SS
3993	4411.94.00	- - 밀도가 1세제곱센티미터당 0.5그램 이하인 것	5%	E0
	44.12	**합판·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		
3994	4412.10.00	- 대나무로 만든 것	10%	E0
		- 그 밖의 합판[각 플라이(ply)의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의 목재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하며, 대나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3995	4412.31.00	- -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열대산 목재인 것	10%	SS
3996	4412.33.00	- -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오리나무[알너스(Alnus)종] · 물푸레나무[프락시너스(Fraxinus)종] · 너도밤나무[파구스(Fagus)종] · 자작나무[베툴라(Betula)종] · 체리나무[프루누스(Prunus)종] · 밤나무[카스타네아(Castanea)종] · 느릅나무[울무스(Ulmus)종] · 유칼립투스[유칼립투스(Eucalyptus)종] · 히커리[카르야(Carya)종] · 칠엽수[아에스쿨러스(Aesculus)종] · 라임[틸리아(Tilia)종] · 단풍나무[아서(Acer)종] · 참나무[코커스(Quercus)종] · 버즘나무[플라타너스(Platanus)종] · 포플러와 사시나무[포푸러스(Populus)종] · 아까시나무[로비니아(Robinia)종] · 백합나무[리리오덴드론(Liriodendron)종] 또는 호두나무[주글란스(Juglans)종]의 활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SS
3997	4412.34.00	- -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소호 제4412.33호에 특정하지 않은 활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SS
3998	4412.39.00	- - 기타[양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침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SS
		- 기타		
3999	4412.94.00	- - 블록보드(blockboard), 라민보드(laminboard) 및 배튼보드(battenboard)	10%	E0
	4412.99	- - 기타		
4000	4412.99.10	- - - 적어도 한쪽 면을 플라스틱으로 표면가공한 것	10%	SS
4001	4412.99.20	- - - 적어도 한쪽 면을 티크(teak)로 표면가공한 것	10%	SS
4002	4412.99.30	- - - 적어도 한쪽 면을 기타 열대산 목재로 표면가공한 것	10%	SS
4003	4412.99.90	- - - 기타	10%	SS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4004	4413.00.00	고밀도화 목재[블록 모양·플레이트(plate) 모양·스트립(strip) 모양 또는 프로파일(profile)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5%	E0
4005	4414.00.00	나무로 만든 그림틀·사진틀·거울틀이나 이와 유사한 틀	0%	E0
	44.15	나무로 만든 케이스·상자·크레이트(crate)·드럼과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 나무로 만든 케이블드럼, 나무로 만든 팰릿(pallet), 박스팰릿(box pallet), 그 밖의 깔판류, 나무로 만든 팰릿칼러(pallet collar)		
4006	4415.10.00	- 케이스·상자·크레이트(crate)·드럼과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 케이블드럼	0%	E0
4007	4415.20.00	- 팰릿(pallet)·박스팰릿(box pallet)과 그 밖의 깔판류, 나무로 만든 팰릿칼러(pallet collar)	0%	E0
	44.16	나무로 만든 통·배럴(barrel)·배트(vat)·텁(tub)·그 밖의 용기와 이들의 부분품(통재와 준재를 포함한다)		
4008	4416.00.10	- 통재와 준재	0%	E0
4009	4416.00.90	- 기타	0%	E0
	44.17	나무로 만든 공구·공구의 몸체·공구의 손잡이·비나 브러시의 몸체와 손잡이·나무로 만든 신발의 골		
4010	4417.00.10	- 부츠나 구두의 골	0%	E0
4011	4417.00.20	- 부츠나 구두의 골	0%	E0
4012	4417.00.90	- 기타	0%	E0
	44.18	나무로 만든 건축용 건구와 목공품[셀룰러 우드패널(cellular wood panel)·조립된 마루판용 패널·지붕을 이는 판자를 포함한다]		
4013	4418.10.00	- 창, 프랑스 창과 이들의 틀	0%	E0
4014	4418.20.00	- 문과 문틀과 문지방	0%	E0
4015	4418.40.00	- 콘크리트 구조물 작업용 거푸집널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4016	4418.50.00	- 지붕을 이는 판자	0%	E0
4017	4418.60.00	- 기둥과 들보	0%	E0
		- 조립된 마루판용 패널		
	4418.73	- - 대나무로 만든 것 또는 최소한 최상층(마모층)을 대나무로 만든 것		
4018	4418.73.10	- - - 모자이크 마루용	0%	E0
4019	4418.73.90	- - - 기타	0%	E0
4020	4418.74.00	- - 기타(모자이크 마루용으로 한정한다)	0%	E0
4021	4418.75.00	- - 기타(다층인 것으로 한정한다)	0%	E0
4022	4418.79.00	- - 기타	0%	E0
		- 기타		
4023	4418.91.00	- - 대나무로 만든 것	0%	E0
	4418.99	- - 기타		
4024	4418.99.10	- - - 셀룰러우드패널	0%	E0
4025	4418.99.90	- - - 기타	0%	E0
	44.19	**나무로 만든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 대나무로 만든 것		
4026	4419.11.00	- - 빵도마, 도마 및 이와 유사한 판	0%	E0
4027	4419.12.00	- - 젓가락	0%	E0
4028	4419.19.00	- - 기타	0%	E0
4029	4419.90.00	- 기타	0%	E0
	44.20	**마르퀘트리(marquetry) 목제품과 상감세공 목제품, 신변장식용품, 칼붙이, 이와 유사한 제품용인 나무로 만든 상자와 용기, 나무로 만든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품, 제 94 류에 해당하지 않는 목제 가구**		
4030	4420.10.00	- 나무로 만든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품	0%	E0
	4420.90	- 기타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4031	4420.90.10	- - 제 94 류에 해당하지 않는 목제 가구	0%	E0
4032	4420.90.90	- - 기타	0%	E0
	44.21	**그 밖의 목제품**		
4033	4421.10.00	- 옷걸이	0%	E0
		- 기타		
	4421.91	- - 대나무로 만든 것		
4034	4421.91.10	- - - 스풀(spool)·콥(cop)과 보빈(bobbin)·릴(reel)과 이와 유사한 것	0%	E0
4035	4421.91.20	- - - 성냥개비의 나무	0%	E0
4036	4421.91.30	- - - 캔디 스틱·아이스크림 스틱과 아이스크림 스푼	0%	E0
4037	4421.91.40	- - - 부채·핸드스크린과 이들의 살·자루와 그 부분품	0%	E0
4038	4421.91.50	- - - 묵주용 구슬	0%	E0
4039	4421.91.60	- - - 이쑤시개	0%	E0
4040	4421.91.90	- - - 기타	0%	E0
	4421.99	- - 기타		
4041	4421.99.10	- - - 스풀(spool)·콥(cop)과 보빈(bobbin)·릴(reel)과 이와 유사한 것	0%	E0
4042	4421.99.20	- - - 성냥개비의 나무	0%	E0
4043	4421.99.30	- - - 신발용 나무 못이나 핀	0%	E0
4044	4421.99.40	- - - 캔디 스틱·아이스크림 스틱과 아이스크림 스푼	0%	E0
4045	4421.99.70	- - - 부채·핸드스크린과 이들의 살·자루와 그 부분품	0%	E0
4046	4421.99.80	- - - 이쑤시개	0%	E0
		- - - 기타		
4047	4421.99.93	- - - - 묵주용 구슬	0%	E0
4048	4421.99.94	- - - - 그 밖의 구슬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4049	4421.99.95	- - - - 조스스틱을 만드는 스틱	0%	E0
4050	4421.99.96	- - - - 베어 코어	10%	E0
4051	4421.99.99	- - - - 기타	0%	E0
	45.01	천연 코르크(cork)(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단순히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 코르크(cork)의 웨이스트(waste), 부순 코르크(cork), 알갱이 모양 코르크(cork), 잘게 부순 코르크(cork)		
4052	4501.10.00	- 천연 코르크(cork)(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단순히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	0%	E0
4053	4501.90.00	- 기타	0%	E0
4054	4502.00.00	천연 코르크(cork)[외피를 제거한 것 또는 거칠게 각을 만든 것 또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판 모양·시트(sheet) 모양 또는 스트립(strip)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고, 각이 예리한 마개용 블랭크(blank)를 포함한다]	0%	E0
	45.03	천연 코르크(cork) 제품		
4055	4503.10.00	- 마개	0%	E0
4056	4503.90.00	- 기타	0%	E0
	45.04	응집 코르크(cork)(응집제를 사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응집 코르크(cork)의 제품		
4057	4504.10.00	- 블록·판·시트(sheet) 및 스트립(strip), 타일(어떤 모양이라도 상관없다), 솔리드실린더(solid cylinder)(디스크를 포함한다)	0%	E0
4058	4504.90.00	- 기타	0%	E0
	46.01	플레이트(plait)와 이와 유사한 조물 재료의 물품[이를 조합하여 스트립(strip)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조물 재료·플레이트(plait)와 이와 유사한 조물 재료의 물품을 평행으로 연결하거나 직조한 물품[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매트류·발 등 최종 제품인지에 상관없다]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 매트류와 발(식물성 재료로 한정한다)		
4059	4601.21.00	- - 대나무로 만든 것	0%	E0
4060	4601.22.00	- - 등나무로 만든 것	0%	E0
4061	4601.29.00	- - 기타	0%	E0
		- 기타		
	4601.92	- - 대나무로 만든 것		
4062	4601.92.10	- - - 플레이트(plait)와 이와 유사한 조물재료의 물품[이를 조합하여 스트립(strip)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	E0
4063	4601.92.20	- - - 부채·핸드스크린과 이들의 살·자루와 그 부분품	0%	E0
4064	4601.92.90	- - - 기타	0%	E0
	4601.93	- - 등나무로 만든 것		
4065	4601.93.10	- - - 플레이트(plait)와 이와 유사한 조물재료의 물품[이를 조합하여 스트립(strip)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	E0
4066	4601.93.20	- - - 부채·핸드스크린과 이들의 살·자루와 그 부분품	0%	E0
4067	4601.93.90	- - - 기타	0%	E0
	4601.94	- - 그 밖의 식물성 재료로 만든 것		
4068	4601.94.10	- - - 플레이트(plait)와 이와 유사한 조물재료의 물품[이를 조합하여 스트립(strip)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	E0
4069	4601.94.20	- - - 부채·핸드스크린과 이들의 살·자루와 그 부분품	0%	E0
4070	4601.94.90	- - - 기타	0%	E0
	4601.99	- - 기타		
4071	4601.99.10	- - - 매트류	0%	E0
4072	4601.99.20	- - - 플레이트(plait)와 이와 유사한 조물재료의 물품[이를 조합하여 스트립(strip)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4073	4601.99.30	- - - 부채·핸드스크린과 이들의 살·자루와 그 부분품	0%	E0
4074	4601.99.90	- - - 기타	0%	E0
	46.02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과 그 밖의 제품(조물 재료로 직접 조형한 것이나 제4601호의 물품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수세미제품		
		- 식물성 재료로 만든 것		
	4602.11	- - 대나무로 만든 것		
4075	4602.11.10	- - - 여행용 가방 및 슈트케이스	0%	E0
4076	4602.11.20	- - - 병용 봉투	0%	E0
4077	4602.11.90	- - - 기타	0%	E0
	4602.12	- - 등나무로 만든 것		
4078	4602.12.10	- - - 여행용 가방 및 슈트케이스	0%	E0
4079	4602.12.20	- - - 병용 봉투	0%	E0
4080	4602.12.90	- - - 기타	0%	E0
	4602.19	- - 기타		
4081	4602.19.10	- - - 여행용 가방 및 슈트케이스	0%	E0
4082	4602.19.20	- - - 병용 봉투	0%	E0
4083	4602.19.90	- - - 기타	0%	E0
	4602.90	- 기타		
4084	4602.90.10	- - 여행용 가방 및 슈트케이스	0%	E0
4085	4602.90.20	- - 병용 봉투	0%	E0
4086	4602.90.90	- - 기타	0%	E0
4087	4701.00.00	기계목재펄프	0%	E0
4088	4702.00.00	화학목재펄프(용해용으로 한정한다)	0%	E0
	47.03	화학목재펄프(소다펄프나 황산펄프로 한정하며, 용해용은 제외한다)		
		- 표백하지 않은 것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4089	4703.11.00	- - 침엽수류로 만든 것	0%	E0
4090	4703.19.00	- - 활엽수류로 만든 것	0%	E0
		- 반표백하거나 표백한 것		
4091	4703.21.00	- - 침엽수류로 만든 것	0%	E0
4092	4703.29.00	- - 활엽수류로 만든 것	0%	E0
	47.04	화학목재펄프(아황산펄프로 한정하며, 용해용은 제외한다)		
		- 표백하지 않은 것		
4093	4704.11.00	- - 침엽수류로 만든 것	0%	E0
4094	4704.19.00	- - 활엽수류로 만든 것	0%	E0
		- 반표백하거나 표백한 것		
4095	4704.21.00	- - 침엽수류로 만든 것	0%	E0
4096	4704.29.00	- - 활엽수류로 만든 것	0%	E0
4097	4705.00.00	기계펄프공정과 화학펄프공정을 결합하여 얻은 목재펄프	0%	E0
	47.06	회수한 종이나 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에서 뽑아낸 섬유펄프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4098	4706.10.00	- 면 린터 펄프(cotton linters pulp)	0%	E0
4099	4706.20.00	- 회수한 종이나 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에서 뽑아낸 섬유펄프	0%	E0
4100	4706.30.00	- 기타(대나무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0%	E0
		- 기타		
4101	4706.91.00	- - 기계펄프	0%	E0
4102	4706.92.00	- - 화학펄프	0%	E0
4103	4706.93.00	- - 기계공정과 화학공정의 결합으로 생산된 펄프	0%	E0
	47.07	회수한 종이나 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104	4707.10.00	- 표백하지 않은 크라프트지 또는 판지나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물결 모양의 종이 또는 판지로 만든 것		
4105	4707.20.00	- 주로 표백화학펄프로 된 그 밖의 종이나 판지(전체를 착색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E0
4106	4707.30.00	- 주로 기계펄프로 만들어진 종이나 판지(예: 신문, 잡지와 이와 유사한 인쇄물)	0%	E0
4107	4707.90.00	- 기타[선별하지 않은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0%	E0
	48.01	**신문용지(롤 모양이나 시트 모양으로 한정한다)**		
		- 1 제곱미터당 중량이 55 그램 이하인 것		
4108	4801.00.11	- - 롤 모양으로 폭이 28 센티미터를 초과하고 36 센티미터 이하인 것	0%	E0
4109	4801.00.12	- - 롤 모양으로 그 밖의 것	0%	E0
4110	4801.00.13	- -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으로 한변이 28 센티미터를 초과하고 36 센티미터 이하이며, 다른 한변이 접지 않은 상태에서 15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시트 모양인 것	0%	E0
4111	4801.00.14	- -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으로 한변이 36 센티미터를 초과하고, 다른 한변이 접지 않은 상태에서 15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시트 모양인 것	0%	E0
		- 1 제곱미터당 중량이 55 그램을 초과하는 것		
4112	4801.00.21	- - 롤 모양으로 폭이 28 센티미터를 초과하고 36 센티미터 이하인 것	0%	E0
4113	4801.00.22	- - 기타	0%	E0
4114	4801.00.23	- -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으로 한변이 28 센티미터를 초과하고 36 센티미터 이하이며, 다른 한변이 접지 않은 상태에서 15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시트 모양인 것	0%	E0
4115	4801.00.24	- -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으로 한변이 36 센티미터를 초과하고 다른 한변이 접지 않은 상태에서 15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시트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모양인 것		
	48.02	**도포하지 않은 종이와 판지(필기용, 인쇄용, 그 밖의 그래픽용으로 한정한다), 구멍을 뚫지 않은 펀치카드와 펀치테이프지[제 4801 호와 제 4803 호의 것은 제외하며, 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수제지(手製紙)와 판지**		
4116	4802.10.00	- 수제지(手製紙)와 판지	0%	E0
	4802.20	- 사진 감광성·열 감응성·전자 감광성 종이나 판지의 기본 재료로 사용되는 종이와 판지		
4117	4802.20.10	- - 폭이 15 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인 것 또는 접지 않은 상태에서 각 변의 길이가 36 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시트	0%	E0
4118	4802.20.90	- - 기타	0%	E0
	4802.40	- 벽지용 원지(原紙)		
4119	4802.40.10	- - 폭이 15 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인 것 또는 접지 않은 상태에서 각 변의 길이가 36 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시트	0%	E0
4120	4802.40.90	- - 기타	0%	E0
		- 그 밖의 종이와 판지(기계공정이나 화학기계공정에 따른 섬유를 함유하지 않거나 그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 분의 10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802.54	- - 1 제곱미터당 중량이 40 그램 미만인 것		
		- - - 탄화 원지(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 그램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4121	4802.54.11	- - - - 폭이 15 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인 것 또는 접지 않은 상태에서 각 변의 길이가 36 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시트	0%	E0
4122	4802.54.19	- - - - 기타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 - - 그 밖의 탄화 원지		
4123	4802.54.21	- - - - 폭이 15 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인 것 또는 접지 않은 상태에서 각 변의 길이가 36 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시트	0%	E0
4124	4802.54.29	- - - - 기타	0%	E0
4125	4802.54.30	- - - 알루미늄 도포종이 제조용 원지(原紙)	0%	E0
4126	4802.54.40	- - - 쓰기, 프린트와 그 밖의 그래픽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롤 모양의 것으로 폭이 15 센티미터 이하이거나 접지 않은 상태에서 각 변의 길이가 36 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시트	0%	E0
4127	4802.54.50	- - -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	0%	E0
4128	4802.54.90	- - - 기타	0%	E0
	4802.55	- - 롤 모양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40 그램 이상 150 그램 이하인 것		
4129	4802.55.20	- - - 팬시 지와 판지(워터마크가 있는 것, 화강암 무늬 펠트로 마무리한 것, 섬유로 마무리한 것, 골동품 피지로 마무리한 것 또는 작은 점들이 혼합된 종이와 판지를 포함한다)	0%	E0
4130	4802.55.40	- - - 알루미늄 도포종이 제조용 원지(原紙)	0%	E0
4131	4802.55.50	- - - 이형지 제조용 원지	0%	E0
		- - - 필기용, 인쇄용, 그 밖의 그래픽용		
4132	4802.55.61	- - - - 폭이 15 센티미터 이하인 것	0%	E0
4133	4802.55.69	- - - - 기타	0%	E0
4134	4802.55.70	- - - 여러층의 종이	0%	E0
4135	4802.55.90	- - - 기타	0%	E0
	4802.56	- - 시트(sheet) 모양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40 그램 이상 150 그램 이하이고,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435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으며, 다른 한 변은 297 밀리미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4136	4802.56.20	- - - 팬시 지와 판지(워터마크가 있는 것, 화강암 무늬 펠트로 마무리한 것, 섬유로 마무리한 것, 골동품 피지로 마무리한 것 또는 작은 점들이 혼합된 종이와 판지를 포함한다)	0%	E0
		- - - 탄화 원지		
4137	4802.56.31	- - - - 접지 않은 상태에서 각 변의 길이가 36 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0%	E0
4138	4802.56.39	- - - - 기타	0%	E0
		- - - 필기용, 인쇄용, 그 밖의 그래픽용		
4139	4802.56.41	- - - - 폭이 36 센티미터 이하인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시트로 접지 않은 것	0%	E0
4140	4802.56.49	- - - - 기타	0%	E0
4141	4802.56.50	- - - 여러층의 종이	0%	E0
4142	4802.56.90	- - - 기타	0%	E0
	4802.57	- - 그 밖의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40 그램 이상 150 그램 이하인 것		
		- - - 탄화 원지		
4143	4802.57.11	- - - - 접지 않은 상태에서 각 변의 길이가 36 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0%	E0
4144	4802.57.19	- - - - 기타	0%	E0
		- - - 필기용, 인쇄용, 그 밖의 그래픽용		
4145	4802.57.21	- - - - 접지 않은 상태에서 각 변의 길이가 36 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0%	E0
4146	4802.57.29	- - - - 기타	0%	E0
4147	4802.57.30	- - - 여러층의 종이	0%	E0
4148	4802.57.90	- - - 기타	0%	E0
	4802.58	- -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을 초과하는 것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 - - 팬시 지와 판지(워터마크가 있는 것, 화강암 무늬 펠트로 마무리한 것, 섬유로 마무리한 것, 골동품 피지로 마무리 한 것 또는 작은 점들이 혼합된 종이와 판지를 포함한다)		
4149	4802.58.21	- - - - 폭이 15 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인 것 또는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36 센티미터 이하이고 다른 한 변이 15 센티미터 이하인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시트 모양인 것	0%	E0
4150	4802.58.29	- - - - 기타	0%	E0
		- - - 필기용, 인쇄용, 그 밖의 그래픽용		
4151	4802.58.31	- - - - 폭이 15 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인 것 또는 접지 않은 상태에서 각 변의 길이가 36 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시트	0%	E0
4152	4802.58.39	- - - - 기타	0%	E0
4153	4802.58.40	- - - 여러층의 종이	0%	E0
		- - - 기타		
4154	4802.58.91	- - - -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을 초과하고 225 그램 미만인 것	0%	E0
4155	4802.58.99	- - - - 기타	0%	E0
		- 그 밖의 종이와 판지(기계공정이나 화학기계공정에 따른 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 중량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802.61	- - 롤 모양인 것		
4156	4802.61.30	- - - 팬시 지와 판지(워터마크가 있는 것, 화강암 무늬 펠트로 마무리한 것, 섬유로 마무리한 것, 골동품 피지로 마무리한 것 또는 작은 점들이 혼합된 종이와 판지를 포함한다)	0%	E0
4157	4802.61.40	- - - 알루미늄 도포종이 제조용 원지(原紙)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 - - 필기용, 인쇄용, 그 밖의 그래픽용		
4158	4802.61.51	- - - - 폭이 15 센티미터 이하인 것	0%	E0
4159	4802.61.59	- - - - 기타	0%	E0
4160	4802.61.60	- - - 여러층의 종이	0%	E0
		- - - 기타		
4161	4802.61.91	- - - -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을 초과하고 225 그램 미만인 것	0%	E0
4162	4802.61.99	- - - - 기타	0%	E0
	4802.62	- - 시트(sheet) 모양으로서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435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다른 한 변은 297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4163	4802.62.10	- - - 팬시 지와 판지[워터마크가 있는 것, 화강암 무늬 펠트로 마무리한 것, 섬유로 마무리한 것, 골동품 피지로 마무리한 것 또는 작은 점들이 혼합된 종이와 판지를 포함하며,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36 센티미터 이하이고 다른 한 변이 15 센티미터 이하인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시트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0%	E0
4164	4802.62.20	- - - 그 밖의 팬시 지와 판지(워터마크가 있는 것, 화강암 무늬 펠트로 마무리한 것, 섬유로 마무리한 것, 골동품 피지로 마무리한 것 또는 작은 점들이 혼합된 종이와 판지를 포함한다)	0%	E0
		- - - 필기용, 인쇄용, 그 밖의 그래픽용		
4165	4802.62.31	- - - -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시트로 접지 않은 상태에서 각 변이 36 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0%	E0
4166	4802.62.39	- - - - 기타	0%	E0
4167	4802.62.40	- - - 여러층의 종이	0%	E0
		- - - 기타		
4168	4802.62.91	- - - -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을 초과하고 225 그램 미만인 것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4169	4802.62.99	- - - - 기타	0%	E0
	4802.69	- - 기타		
		- - - 필기용, 인쇄용, 그 밖의 그래픽용		
4170	4802.69.11	- - - -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시트로 접지 않은 상태에서 각 변이 36 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0%	E0
4171	4802.69.19	- - - - 기타	0%	E0
4172	4802.69.20	- - - 여러층의 종이	0%	E0
		- - - 기타		
4173	4802.69.91	- - - -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을 초과하고 225 그램 미만인 것	0%	E0
4174	4802.69.99	- - - - 기타	0%	E0
	48.03	**화장지·안면용 티슈스톡, 타월·냅킨스톡과 이와 유사한 가정용이나 위생용 종이, 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주름지거나(creped) 구겨진(crinkled) 것, 올록볼록한(embossed) 것, 구멍을 뚫은(perforated) 것, 착색한 것, 표면장식한 것, 인쇄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4175	4803.00.30	- 셀룰로오스워딩 또는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의 것	0%	E0
4176	4803.00.90	- 기타	0%	E0
	48.04	**도포하지 않은 크라프트지와 판지[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제4802 호나 제 4803 호의 것은 제외한다]**		
		- 크라프트라이너(kraftliner)		
4177	4804.11.00	- - 표백하지 않은 것	0%	E0
4178	4804.19.00	- - 기타	0%	E0
		- 자루(sack)용 크라프트지		
	4804.21	- - 표백하지 않은 것		
4179	4804.21.10	- - - 시멘트 백 제조용의 것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4180	4804.21.90	- - - 기타	0%	E0
		- - 기타		
4181	4804.29.10	- - - 시멘트 백 제조용의 것	0%	E0
4182	4804.29.90	- - - 기타	0%	E0
		- 그 밖의 크라프트 지와 판지(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804.31	- - 표백하지 않은 것		
4183	4804.31.10	- - - 전기 절연 크라프트지	0%	E0
4184	4804.31.30	- - - 합판 접착 테이프 제조용으로 습윤 강도가 40 그램에서 60 그램인 것	0%	E0
4185	4804.31.40	- - - 사포 원지	0%	E0
4186	4804.31.50	- - - 시멘트 백 제조용의 것	0%	E0
4187	4804.31.90	- - - 기타	0%	E0
	4804.39	- - 기타		
4188	4804.39.10	- - - 합판 접착 테이프 제조용으로 습윤 강도가 40 그램에서 60 그램인 것	0%	E0
4189	4804.39.20	- - - 식품용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와 판지	0%	E0
4190	4804.39.90	- - - 기타	0%	E0
		- 그 밖의 크라프트지와 판지(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을 초과하고 225 그램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4804.41	- - 표백하지 않은 것		
4191	4804.41.10	- - - 전기 절연 크라프트지	0%	E0
4192	4804.41.90	- - - 기타	0%	E0
	4804.42	- -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표백한 것으로서 화학공정에 따른 목재 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 분의 95 를 초과하는 것		
4193	4804.42.10	- - - 식품용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와 판지	0%	E0
4194	4804.42.90	- - - 기타	0%	E0
	4804.49	- - 기타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4195	4804.49.10	- - - 식품용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와 판지	0%	E0
4196	4804.49.90	- - - 기타	0%	E0
		- 그 밖의 크라프트지와 판지(1 제곱미터당 중량이 225 그램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804.51	- - 표백하지 않은 것		
4197	4804.51.10	- - - 전기 절연 크라프트지	0%	E0
4198	4804.51.20	- - - 1 제곱미터당 중량이 600 그램 이상의 프레스보드(pressboard)	0%	E0
4199	4804.51.30	- - - 합판 접착 테이프 제조용으로 습윤 강도가 40 그램에서 60 그램인 것	0%	E0
4200	4804.51.90	- - - 기타	0%	E0
	4804.52	- -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표백한 것으로서 화학공정에 따른 목재 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 분의 95 를 초과하는 것		
4201	4804.52.10	- - - 식품용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와 판지	0%	E0
4202	4804.52.90	- - - 기타	0%	E0
	4804.59	- - 기타		
4203	4804.59.10	- - - 식품용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와 판지	0%	E0
4204	4804.59.90	- - - 기타	0%	E0
	48.05	**그 밖의 도포하지 않은 종이와 판지[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이 류의 주 제 3 호의 것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플루팅지(fluting paper)		
4205	4805.11.00	- - 반화학 플루팅지(fluting paper)	0%	E0
4206	4805.12.00	- - 스트로 플루팅지(straw fluting paper)	0%	E0
	4805.19	- - 기타		
4207	4805.19.10	- - -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을 초과하고 225 그램 미만인 것	0%	E0
4208	4805.19.90	- - - 기타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 테스트라이너(testliner)(재생라이너판)		
4209	4805.24.00	- -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 이하인 것	0%	E0
	4805.25	- -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을 초과하는 것		
4210	4805.25.10	- - -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25 그램 미만인 것	0%	E0
4211	4805.25.90	- - - 기타	0%	E0
	4805.30	- 아황산포장지		
4212	4805.30.10	- - 나무 성냥갑용 착색한 포장지	0%	E0
4213	4805.30.90	- - 기타	0%	E0
4214	4805.40.00	- 여과지와 판지	0%	E0
4215	4805.50.00	- 펠트지와 판지	0%	E0
		- 기타		
	4805.91	- -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 이하인 것		
4216	4805.91.10	- - - 판유리 제품 포장용 간지로 사용되는 종류의 종이(수지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6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E0
4217	4805.91.20	- - - 조스 페이퍼(Joss paper)제조용에 사용되는 것	0%	E0
4218	4805.91.90	- - - 기타	0%	E0
	4805.92	- -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 초과 225 그램 미만인 것		
4219	4805.92.10	- - -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	0%	E0
4220	4805.92.90	- - - 기타	0%	E0
	4805.93	- -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25 그램 이상인 것		
4221	4805.93.10	- - -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	0%	E0
4222	4805.93.20	- - - 압지(Blotting paper)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4223	4805.93.90	- - - 기타	0%	E0
	48.06	황산지·내지지(耐脂紙)·트레이싱지(tracing paper)·글라신지(glassine paper)와 그 밖의 투명 광택지나 반투명 광택지[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4224	4806.10.00	- 황산지	0%	E0
4225	4806.20.00	- 내지지(耐脂紙)	0%	E0
4226	4806.30.00	- 트레이싱지(tracing paper)	0%	E0
4227	4806.40.00	- 글라신지(glassine paper)와 그 밖의 투명 광택지나 반투명 광택지	0%	E0
4228	4807.00.00	겹붙인 종이와 판지[접착제로 겹붙인 것으로서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표면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은 제외하고, 내면을 보강했는지에 상관없다]	0%	E0
	48.08	물결 모양으로 하거나(corrugated)(평면지가 붙은 것인지에 상관없다) 주름지거나(creped) 구겨지거나(crinkled) 올록볼록하거나(embossed) 구멍을 뚫은(perforated) 종이와 판지[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제 4803 호의 것은 제외한다]		
4229	4808.10.00	- 물결 모양의 종이와 판지(구멍을 뚫었는지에 상관없다)	0%	E0
4230	4808.40.00	- 크라프트지[주름지거나(creped) 구겨진(crinkled) 것으로서 올록볼록한지(embossed) 구멍을 뚫었는지(perforated)에 상관없다]	0%	E0
	4808.90	- 기타		
4231	4808.90.20	- - 주름지거나(creped) 구겨진(crinkled) 종이	0%	E0
4232	4808.90.30	- - 올록볼록한(embossed) 종이	0%	E0
4233	4808.90.90	- - 기타	0%	E0
	48.09	카본지, 셀프복사지, 그 밖의 복사지나 전사지[등사원지나 오프셋 플레이트(offset plate)로 사용하는 도포지와 침투지를 포함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하고, 인쇄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4234	4809.20.00	- 셀프복사지	0%	E0
	4809.90	- 기타		
4235	4809.90.10	- - 카본지와 이와 유사한 복사지	0%	E0
4236	4809.90.90	- - 기타	0%	E0
	48.10	한 면이나 양면을 도포한 종이와 판지[결합재가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고령토(kaolin)[차이나 클레이(China clay)]나 그 밖의 무기물질을 도포한 것(그 밖의 다른 물질을 도포한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표면착색·표면장식·인쇄하였는지에 상관없으며 크기와는 관계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 필기용, 인쇄용 또는 그 밖의 그래픽용 종이와 판지(기계공정이나 화학-기계공정에 따른 섬유를 함유하지 않거나 그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분의 10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810.13	- - 롤 모양인 것		
4237	4810.13.10	- - - 인쇄된 것이며, 자동기록장치용의 것으로 폭이 150밀리미터 이하인 것	0%	E0
		- - - 기타		
4238	4810.13.91	- - - - 폭이 150밀리미터 이하인 것	0%	E0
4239	4810.13.99	- - - - 기타	0%	E0
	4810.14	- - 시트(sheet) 모양인 것으로서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435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다른 한 변은 297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 - - 인쇄된 것이며, 자동기록장치용의 것으로 각 변의 길이가 360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4240	4810.14.11	- - - - 심전도계·초음파 검사·호흡계·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뇌파계와 태아용 모니터링 지		
4241	4810.14.19	- - - - 기타	0%	E0
		- - - 기타		
4242	4810.14.91	- - - - 각 변의 길이가 360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0%	E0
4243	4810.14.99	- - - - 기타	0%	E0
	4810.19	- - 기타		
4244	4810.19.10	- - - 인쇄된 것이며, 자동기록장치용의 것으로 접지 않은 상태에서 각 변의 길이가 360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0%	E0
		- - - 기타		
4245	4810.19.91	- - - - 각 변의 길이가 360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0%	E0
4246	4810.19.99	- - - - 기타	0%	E0
		- 필기용, 인쇄용 또는 그 밖의 그래픽용 종이와 판지(기계공정이나 화학-기계공정에 따른 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810.22	- - 경량(輕量)의 도포한 종이		
4247	4810.22.10	- - - 인쇄된 것이며, 자동기록장치용의 것으로 폭이 150 밀리미터 이하인 롤 모양이거나, 접지않은 상태에서 각 변의 길이가 360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시트 모양인 것	0%	E0
		- - - 기타		
4248	4810.22.91	- - - - 폭이 150 밀리미터 이하인 롤 모양이거나 접지 않은 상태에서 각 변의 길이가 360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시트 모양인 것	0%	E0
4249	4810.22.99	- - - - 기타	0%	E0
	4810.29	- - 기타		
4250	4810.29.10	- - - 인쇄된 것이며, 자동기록장치용의 것으로 폭이 150 밀리미터 이하인 롤 모양이거나, 접지않은 상태에서 각 변의 길이가 360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시트 모양인 것		
		- - - 기타		
4251	4810.29.91	- - - - 폭이 150 밀리미터 이하인 롤 모양이거나 접지 않은 상태에서 각 변의 길이가 360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시트 모양인 것	0%	E0
4252	4810.29.99	- - - - 기타	0%	E0
		- 크라프트지와 판지(필기용, 인쇄용 또는 그 밖의 그래픽용은 제외한다)		
	4810.31	- -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표백한 것(화학공정에 따른 목재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 분의 95 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253	4810.31.30	- - - 폭이 150 밀리미터 이하인 롤 모양이거나 접지 않은 상태에서 각 변의 길이가 360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시트 모양인 것	0%	E0
4254	4810.31.90	- - - 기타	0%	E0
	4810.32	- -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표백한 것(화학공정에 따른 목재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 분의 95 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255	4810.32.30	- - - 폭이 150 밀리미터 이하인 롤 모양이거나 접지 않은 상태에서 각 변의 길이가 360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시트 모양인 것	0%	E0
4256	4810.32.90	- - - 기타	0%	E0
	4810.39	- - 기타		
4257	4810.39.30	- - - 폭이 150 밀리미터 이하인 롤 모양이거나 접지 않은 상태에서 각 변의 길이가 360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시트 모양인 것	0%	E0
4258	4810.39.90	- - - 기타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 그 밖의 종이와 판지		
	4810.92	- - 여러 겹의 것		
4259	4810.92.40	- - - 폭이 150 밀리미터 이하인 롤 모양이거나 접지 않은 상태에서 각 변의 길이가 360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시트 모양인 것	0%	E0
4260	4810.92.90	- - - 기타	0%	E0
	4810.99	- - 기타		
4261	4810.99.40	- - - 폭이 150 밀리미터 이하인 롤 모양이거나 접지 않은 상태에서 각 변의 길이가 360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시트 모양인 것	0%	E0
4262	4810.99.90	- - - 기타	0%	E0
	48.11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서 도포·침투·피복·표면착색·표면장식·인쇄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 4803 호·제 4809 호·제 4810 호에 열거한 것은 제외한다]**		
	4811.10	- 타르·역청물질·아스팔트 처리를 한 종이와 판지		
4263	4811.10.20	- - 폭이 15 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이거나 접지 않은 상태에서 각 변의 길이가 36 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시트 모양인 것	0%	E0
4264	4811.10.90	- - 기타	0%	E0
		- 접착지와 판지		
	4811.41	- - 셀프접착지		
4265	4811.41.20	- - - 폭이 15 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이거나 접지 않은 상태에서 각 변의 길이가 36 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시트 모양인 것	0%	E0
4266	4811.41.90	- - - 기타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4811.49	- - 기타		
4267	4811.49.20	- - - 폭이 15 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이거나 접지 않은 상태에서 각 변의 길이가 36 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시트 모양인 것	0%	E0
4268	4811.49.90	- - - 기타	0%	E0
		- 플라스틱을 도포, 침투 또는 피복한 종이와 판지(접착제는 제외한다)		
	4811.51	- - 표백한 것(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폭이 15 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이거나 접지 않은 상태에서 각 변의 길이가 36 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시트 모양인 것		
4269	4811.51.31	- - - - 바닥깔개	0%	E0
4270	4811.51.39	- - - - 기타	0%	E0
		- - - 기타		
4271	4811.51.91	- - - - 바닥깔개	0%	E0
4272	4811.51.99	- - - - 기타	0%	E0
	4811.59	- - 기타		
4273	4811.59.20	- - - 양 표면을 플라스틱 투명 시트로 피복하고 알루미늄 포일로 안을 도포한 종이와 판지(액체 식품 포장용으로 한정한다)	0%	E0
		- - - 폭이 15 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이거나 접지 않은 상태에서 각 변의 길이가 36 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시트 모양인 것		
4274	4811.59.41	- - - - 바닥깔개	0%	E0
4275	4811.59.49	- - - - 기타	0%	E0
		- - - 기타		
4276	4811.59.91	- - - - 바닥깔개	0%	E0
4277	4811.59.99	- - - - 기타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4811.60	- 왁스·파라핀왁스·스테아린(stearin)·기름·글리세롤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키거나 피복한 종이와 판지		
4278	4811.60.20	- - 폭이 15 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이거나 접지 않은 상태에서 각 변의 길이가 36 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시트 모양인 것	0%	E0
		- - 기타		
4279	4811.60.91	- - - 바닥깔개	0%	E0
4280	4811.60.99	- - - 기타	0%	E0
	4811.90	- 그 밖의 종이와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		
		- - 폭이 15 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이거나 접지 않은 상태에서 각 변의 길이가 36 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시트 모양인 것		
4281	4811.90.41	- - - 바닥깔개	0%	E0
4282	4811.90.42	- - - 대리석 문양의 종이	0%	E0
4283	4811.90.49	- - - 기타	0%	E0
		- - 기타		
4284	4811.90.91	- - - 바닥깔개	0%	E0
4285	4811.90.92	- - - 대리석 문양의 종이	0%	E0
4286	4811.90.99	- - - 기타	0%	E0
4287	**4812.00.00**	**제지용 펄프로 만든 필터블록, 필터슬래브와 필터플레이트**	0%	E0
	48.13	**궐련지(적합한 크기로 절단하였는지 또는 소책자나 튜브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4288	4813.10.00	- 소책자 모양이나 튜브 모양인 것	0%	E0
4289	4813.20.00	- 폭이 5 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인 것	0%	E0
	4813.90	- 기타		
4290	4813.90.10	- - 폭이 5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롤 모양인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것(도포된 것으로 한정한다)		
4291	4813.90.90	- - 기타	0%	E0
	48.14	**벽지와 이와 유사한 벽 피복재와 창용 투명지**		
	4814.20	- 벽지와 이와 유사한 벽 피복재[표면에 그레인한(grained) 것, 올록볼록한(embossed) 것, 착색한 것, 디자인 인쇄한 것, 그 밖의 모양으로 장식한 플라스틱층을 도포하거나 피복한 종이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4292	4814.20.10	- - 폭이 60 센티미터 이하인 것	0%	E0
4293	4814.20.90	- - 기타	0%	E0
4294	4814.90.00	- 기타	0%	E0
	48.16	**카본지, 셀프복사지, 그 밖의 복사지나 전사지(제 4809 호의 것은 제외한다), 종이로 만든 등사원지와 오프셋 플레이트(offset plate)(상자에 든 것인지에 상관없다)**		
	4816.20	- 셀프복사지		
4295	4816.20.10	- - 폭이 15 센티미터를 초과하고 36 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의 것	0%	E0
4296	4816.20.90	- - 기타	0%	E0
	4816.90	- 기타		
4297	4816.90.10	- - 카본지	0%	E0
4298	4816.90.20	- - 그 밖의 복사지	0%	E0
4299	4816.90.30	- - 오프셋 플레이트(offset plate)	0%	E0
4300	4816.90.40	- - 열 전사지	0%	E0
4301	4816.90.50	- - 기타(폭이 15 센티미터를 초과하고 36 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의 것)	0%	E0
4302	4816.90.90	- - 기타	0%	E0
	48.17	**종이나 판지로 만든 봉투・봉함엽서・우편엽서・통신용 카드, 종이나 판지로 만든 상자・파우치・지갑・필기첩(안에 종이로 만든 문구류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4303	4817.10.00	- 봉투	0%	E0
4304	4817.20.00	- 봉함엽서・우편엽서와 통신용카드	0%	E0
4305	4817.30.00	- 종이나 판지로 만든 상자・파우치・지갑과 필기첩(안에 종이로 만든 문구류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	E0
	48.18	화장지와 이와 유사한 종이・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가정용이나 위생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폭이 36 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이나 특정의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손수건・클렌징티슈・타월・책상보・서비에트(serviette)・베드시트와 이와 유사한 가정용품・위생용품이나 병원용품・의류와 의류 부속품[제지용 펄프・종이・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306	4818.10.00	- 화장지	0%	E0
4307	4818.20.00	- 손수건・클렌징티슈 또는 안면용 화장지와 타월	0%	E0
	4818.30	- 책상보와 서비에트(serviette)		
4308	4818.30.10	- - 책상보	0%	E0
4309	4818.30.20	- - 서비에트(serviette)	0%	E0
4310	4818.50.00	- 의류와 의류의 부속품	0%	E0
4311	4818.90.00	- 기타	0%	E0
	48.19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상자・포장대・그 밖의 포장용기, 종이나 판지로 만든 서류상자・서류받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312	4819.10.00	- 상자류(골판지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0%	E0
4313	4819.20.00	- 접는 상자류(골판지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0%	E0
4314	4819.30.00	- 폭이 40 센티미터 이상인 포장대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4315	4819.40.00	- 그 밖의 포장대[콘(cone)을 포함한다]	0%	E0
4316	4819.50.00	- 그 밖의 포장용기[레코드 슬리브(record sleeve)를 포함한다]	0%	E0
4317	4819.60.00	- 서류상자·서류받침·보관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E0
	48.20	**종이나 판지로 만든 장부·회계부·노트북·주문장·영수장·편지지철·메모철·일기장과 이와 유사한 물품·연습장·압지철(blotting-pad)·바인더[예: 루스리프(loose-leaf) 등]·폴더·서류철 표지·각종 사무용 양식·삽입식 카본세트와 그 밖의 문구류, 견본용이나 수집용 앨범과 책커버**		
4318	4820.10.00	- 장부·회계부·노트북·주문장·영수장·편지지철·메모철·일기장과 이와 유사한 물품	0%	E0
4319	4820.20.00	- 연습장	0%	E0
4320	4820.30.00	- 바인더(책표지는 제외한다)·폴더와 서류철 표지	0%	E0
4321	4820.40.00	- 각종 사무용 양식과 삽입식 카본세트	0%	E0
4322	4820.50.00	- 견본용이나 수집용 앨범	0%	E0
4323	4820.90.00	- 기타	0%	E0
	48.21	**종이나 판지로 만든 레이블(인쇄하였는지에 상관없다)**		
	4821.10	- 인쇄한 것		
4324	4821.10.10	- - 보석용 라벨(일반적으로 주머니·핸드백이나 신변에 휴대하여 사용하는 신변장식용품이나 개인용품을 포함한다)	0%	E0
4325	4821.10.90	- - 기타	0%	E0
	4821.90	- 기타		
4326	4821.90.10	- - 보석용 라벨(일반적으로 주머니·핸드백이나 신변에 휴대하여 사용하는 신변장식용품이나 개인용품을 포함한다)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4327	4821.90.90	- - 기타	0%	E0
	48.22	**제지용 펄프·종이·판지로 만든 보빈(bobbin)·스풀(spool)·콥(cop)과 이와 유사한 물품(구멍을 뚫은 것인지 또는 경화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822.10	- 방직용 섬유사를 감는 데에 사용하는 것		
4328	4822.10.10	- - 콘	0%	E0
4329	4822.10.90	- - 기타	0%	E0
	4822.90	- 기타		
4330	4822.90.10	- - 콘	0%	E0
4331	4822.90.90	- - 기타	0%	E0
	48.23	**그 밖의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특정한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지용 펄프·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4823.20	- 여과용 종이와 판지		
4332	4823.20.10	- - 스트립·롤 또는 시트 모양의 것	0%	E0
4333	4823.20.90	- - 기타	0%	E0
	4823.40	- 자동기록장치용으로 인쇄된 롤·시트(sheet)·다이얼		
		- - 전기의학 장치용의 것		
4334	4823.40.21	- - - 심박동 기록지	0%	E0
4335	4823.40.29	- - - 기타	0%	E0
4336	4823.40.90	- - 기타	0%	E0
		- 종이나 판지로 만든 쟁반·접시·플레이트·컵과 이와 유사한 것		
4337	4823.61.00	- - 대나무로 만든 것	0%	E0
4338	4823.69.00	- - 기타	0%	E0
4339	4823.70.00	- 제지용 펄프를 몰드 또는 프레스한 제품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4823.90	- 기타		
4340	4823.90.10	- - 누에용 고치 프레임	0%	E0
4341	4823.90.20	- - 보석용 디스플레이 카드(일반적으로 주머니·핸드백이나 신변에 휴대하는 신변장식용품이나 개인용품을 포함한다)	0%	E0
4342	4823.90.30	- - 폴리에틸렌으로 도포된 종이컵 제조용 다이컷(Die-cut) 판지	0%	E0
4343	4823.90.40	- - 불꽃제품 제조용 종이관 세트	0%	E0
		- - 크라프트지(폭이 209 밀리미터인 롤 모양의 것으로, 다이너마이트 봉 포장지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4344	4823.90.51	- - -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 이하인 것	0%	E0
4345	4823.90.59	- - - 기타	0%	E0
4346	4823.90.60	- - 구멍 뚫은 자카드 카드	0%	E0
4347	4823.90.70	- - 팬과 핸드스크린	0%	E0
		- - 기타		
4348	4823.90.91	- - - 실리콘 종이	0%	E0
4349	4823.90.92	- - - 조스 페이퍼(Joss paper)	0%	E0
4350	4823.90.94	- - - 셀룰로오스워딩과 셀룰로오스섬유의 웹(전체적으로 착색하거나 대리석 무늬를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0%	E0
4351	4823.90.95	- - - 바닥깔개	0%	E0
4352	4823.90.96	- - - 기타(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외의 형태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	0%	E0
4353	4823.90.99	- - - 기타	0%	E0
	49.01	**인쇄서적·소책자·리플릿(leaflet)과 이와 유사한 인쇄물(단매인지에 상관없다)**		
4354	4901.10.00	- 단매인 것(접어 포갠 것인지에 상관없다)	0%	E0
		- 기타		
4355	4901.91.00	- - 사전과 백과사전과 이들의 분할 연속물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4901.99	- - 기타		
4356	4901.99.10	- - - 교육・기술・과학・역사나 문화 서적	0%	E0
4357	4901.99.90	- - - 기타	0%	E0
	49.02	**신문・잡지・정기간행물(그림이나 광고 선전물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4358	4902.10.00	- 1주에 4회 이상 간행되는 것	0%	E0
	4902.90	- 기타		
4359	4902.90.10	- - 교육・기술・과학・역사나 문화 저널과 정기 간행물	0%	E0
4360	4902.90.90	- - 기타	0%	E0
4361	**4903.00.00**	**아동용 그림책과 습화책**	0%	E0
4362	**4904.00.00**	**악보[인쇄나 수제(手製)의 것으로서 제본되었는지 또는 그림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0%	E0
	49.05	**지도・해도나 이와 유사한 차트(제본한 것・벽걸이용의 것・지형도와 지구의를 포함하며, 인쇄한 것으로 한정한다)**		
4363	4905.10.00	- 지구의	0%	E0
		- 기타		
4364	4905.91.00	- - 책자로 된 것	0%	E0
4365	4905.99.00	- - 기타	0%	E0
4366	**4906.00.00**	**설계도와 도안[건축용・공학용・공업용・상업용・지형학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수제(手製) 원도(原圖)로 한정한다], 손으로 쓴 책자, 이들을 감광지에 사진복사 및 카본복사한 것**	0%	E0
	49.07	**사용하지 않은 우표・수입인지나 이와 유사한 물품(해당국에서 통용되거나 발행된 것으로서 액면가를 갖거나 가질 예정인 것으로 한정한다), 스탬프를 찍은 종이, 지폐, 수표, 주식・주권・채권과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		
4367	4907.00.10	- 지폐(법정통화인 것으로 한정한다)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 사용하지 않은 우편, 수입인지나 이와 유사한 물품		
4368	4907.00.21	- - 우표	0%	E0
4369	4907.00.29	- - 기타	0%	E0
4370	4907.00.40	- 주식·주권이나 채권 및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 수표	0%	E0
4371	4907.00.90	- 기타	0%	E0
	49.08	**전사지[디칼커매니어(decalcomania)]**		
4372	4908.10.00	- 전사지[디칼커매니어(decalcomania)]로서 유리화할 수 있는 것	0%	E0
4373	4908.90.00	- 기타	0%	E0
4374	**4909.00.00**	**인쇄된 엽서 또는 그림엽서, 인쇄카드(인사용·전언용 또는 안내용으로서 그림·봉투 또는 장식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0%	E0
4375	**4910.00.00**	**캘린더(인쇄된 것으로서 캘린더 블록을 포함한다)**	0%	E0
	49.11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		
	4911.10	- 광고 선전물·상업용 카탈로그(catalogue)와 이와 유사한 것		
4376	4911.10.10	- - 카탈로그(교육·기술·과학·역사나 문화 서적과 간행물 목록의 것으로 한정한다)	0%	E0
4377	4911.10.90	- - 기타	0%	E0
		- 기타		
	4911.91	- - 서화·디자인·사진		
4378	4911.91.10	- - - 디자인한 것	0%	E0
		- - - 기타(표구용의 교육상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4379	4911.91.21	- - - - 해부학이나 식물학의 것	0%	E0
4380	4911.91.29	- - - - 기타	0%	E0
		- - - 기타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4381	4911.91.31	- - - - 해부학이나 식물학의 것	0%	E0
4382	4911.91.39	- - - - 기타	0%	E0
	4911.99	- - 기타		
4383	4911.99.10	- - - 일반적으로 주머니·핸드백이나 신변에 휴대하는 보석용이나 소형 신변장식용품 또는 개인용품용으로 인쇄된 카드	0%	E0
4384	4911.99.20	- - - 폭발물용으로 인쇄된 라벨	0%	E0
4385	4911.99.30	- - - 카드세트에 인쇄된 교육·기술·과학·역사나 문화 자료	0%	E0
4386	4911.99.90	- - - 기타	0%	E0
4387	5001.00.00	누에고치(생사를 뽑는 데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	E0
4388	5002.00.00	생사(꼰 것은 제외한다)	0%	E0
4389	5003.00.00	견 웨이스트(waste)[생사를 뽑는 데에 적합하지 않은 누에고치, 실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0%	E0
4390	5004.00.00	견사[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견방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0%	E0
4391	5005.00.00	견방사[견 웨이스트(waste)인 것으로 한정하며, 소매용은 제외한다]	0%	E0
4392	5006.00.00	견사와 견방사[견 웨이스트(waste)인 것으로 한정한다](소매용으로 한정한다), 누에의 거트(gut)	0%	E0
	50.07	견직물[견 웨이스트(waste)의 것을 포함한다]		
	5007.10	- 견 노일(noil) 직물		
4393	5007.10.20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0%	E0
4394	5007.10.30	- - 전통바틱(batik)공정으로 날염한 것	0%	E0
4395	5007.10.90	- - 기타	0%	E0
	5007.20	- 그 밖의 직물[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견 노일(noil)의 것은 제외한다]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4396	5007.20.20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0%	E0
4397	5007.20.30	- - 전통바틱(batik)공정으로 날염한 것	0%	E0
4398	5007.20.90	- - 기타	0%	E0
	5007.90	- 기타의 직물		
4399	5007.90.20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0%	E0
4400	5007.90.30	- - 전통바틱(batik)공정으로 날염한 것	0%	E0
4401	5007.90.90	- - 기타	0%	E0
	51.01	양모[카드(card)하지도 코움(comb)하지도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그리지(greasy)[플리스와시한 (fleecewashed) 양모를 포함한다]		
4402	5101.11.00	- - 깎은 양모	0%	E0
4403	5101.19.00	- - 기타	0%	E0
		- 탈지한 것(탄화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4404	5101.21.00	- - 깎은 양모	0%	E0
4405	5101.29.00	- - 기타	0%	E0
4406	5101.30.00	- 탄화처리한 것	0%	E0
	51.02	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카드(card)하지도 코움(comb)하지도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동물의 부드러운 털		
4407	5102.11.00	- - 캐시미어 산양의 것	0%	E0
4408	5102.19.00	- - 기타	0%	E0
4409	5102.20.00	- 동물의 거친 털	0%	E0
	51.03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의 웨이스트(waste)[실의 웨이스트(waste)를 포함하며,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은 제외한다]		
4410	5103.10.00	- 양모 또는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노일(noil)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4411	5103.20.00	- 양모 또는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그 밖의 웨이스트(waste)	0%	E0
4412	5103.30.00	- 동물의 거친 털의 웨이스트(waste)	0%	E0
4413	**5104.00.00**	**양모 또는 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의 가닛스톡(garnetted stock)**	0%	E0
	51.05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으로 한정하며, 코움(comb)한 단편 모양인 양모를 포함한다]**		
4414	5105.10.00	- 카드(card)한 양모	0%	E0
		- 울톱과 그 밖의 코움(comb)한 양모		
4415	5105.21.00	- - 코움(comb)한 양모(단편 모양으로 한정한다)	0%	E0
4416	5105.29.00	- - 기타	0%	E0
		- 동물의 부드러운 털[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으로 한정한다]		
4417	5105.31.00	- - 캐시미어 산양의 것	0%	E0
4418	5105.39.00	- - 기타	0%	E0
4419	5105.40.00	- 동물의 거친 털[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으로 한정한다]	0%	E0
	51.06	**카드(card)한 양모사(소매용은 제외한다)**		
4420	5106.10.00	- 양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5%	E0
4421	5106.20.00	- 양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	5%	E0
	51.07	**코움(comb)한 양모사(소매용은 제외한다)**		
4422	5107.10.00	- 양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5%	E0
4423	5107.20.00	- 양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	5%	E0
	51.08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실[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으로 한정하며, 소**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매용은 제외한다]		
4424	5108.10.00	- 카드(card)한 것	5%	E0
4425	5108.20.00	- 코움(comb)한 것	5%	E0
	51.09	**양모사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실(소매용으로 한정한다)**		
4426	5109.10.0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5%	E0
4427	5109.90.00	- 기타	5%	E0
4428	**5110.00.00**	**동물의 거친 털로 만든 실이나 말의 털로 만든 실[짐프한(gimped) 말의 털로 만든 실을 포함하며, 소매용인지에 상관없다]**	5%	E0
	51.11	**직물[카드(card)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4429	5111.11.00	- - 1 제곱미터당 중량이 300 그램 이하인 것	10%	E0
4430	5111.19.00	- - 기타	0%	E0
4431	5111.20.00	- 기타(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0%	E0
4432	5111.30.00	- 기타(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0%	E0
4433	5111.90.00	- 기타	0%	E0
	51.12	**직물[코움(comb)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4434	5112.11.00	- -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0 그램 이하인 것	0%	E0
	5112.19	- - 기타		
4435	5112.19.10	- - - 전통바틱(batik)공정으로 날염한 것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4436	5112.19.90	- - - 기타	0%	E0
4437	5112.20.00	- 기타(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0%	E0
4438	5112.30.00	- 기타(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0%	E0
4439	5112.90.00	- 기타	0%	E0
4440	**5113.00.00**	**직물(동물의 거친 털이나 말의 털의 것으로 한정한다)**	0%	E0
4441	**5201.00.00**	**면[카드(card)하지도 코움(comb)하지도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E0
	52.02	**면 웨이스트(waste)[실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4442	5202.10.00	- 실(yarn)의 웨이스트(waste)[실(thread)의 웨이스트(waste)를 포함한다]	0%	E0
		- 기타		
4443	5202.91.00	- - 가닛스톡(garnetted stock)	0%	E0
4444	5202.99.00	- - 기타	0%	E0
4445	**5203.00.00**	**면[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으로 한정한다]**	0%	E0
	52.04	**면 재봉사(소매용인지에 상관없다)**		
		- 소매용이 아닌 것		
	5204.11	- - 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4446	5204.11.10	- - - 표백하지 않은 것	5%	E0
4447	5204.11.90	- - - 기타	5%	E0
4448	5204.19.00	- - 기타	5%	E0
4449	5204.20.00	- 소매용	0%	E0
	52.05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 단사[코움(comb)하지 않은 섬유의 것으로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한정한다]		
4450	5205.11.00	- - 714.29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 수 이하)	0%	E0
4451	5205.12.00	- -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0%	E0
4452	5205.13.00	- -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0%	E0
4453	5205.14.00	- -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0%	E0
4454	5205.15.00	- - 125 데시텍스 미만인 것(미터식 번수 80 수 초과)	0%	E0
		- 단사[코움(comb)한 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4455	5205.21.00	- - 714.29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 수 이하)	5%	E0
4456	5205.22.00	- -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5%	E0
4457	5205.23.00	- -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5%	E0
4458	5205.24.00	- -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5%	E0
4459	5205.26.00	- - 125 데시텍스 미만 106.38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80 수 초과 94 수 이하)	5%	E0
4460	5205.27.00	- - 106.38 데시텍스 미만 83.33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94 수 초과 120 수 이하)	5%	E0
4461	5205.28.00	- - 83.33 데시텍스 미만인 것(미터식 번수 120 수 초과)	5%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코움(comb)하지 않은 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4462	5205.31.00	-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 수 이하)	0%	E0
4463	5205.32.00	-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0%	E0
4464	5205.33.00	- - 구성하는 단사가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0%	E0
4465	5205.34.00	- - 구성하는 단사가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0%	E0
4466	5205.35.00	- - 구성하는 단사가 125 데시텍스 미만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80 수 초과)	0%	E0
		-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코움(comb)한 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4467	5205.41.00	-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 수 이하)	5%	E0
4468	5205.42.00	-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5%	E0
4469	5205.43.00	- - 구성하는 단사가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5%	E0
4470	5205.44.00	- - 구성하는 단사가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5%	E0
4471	5205.46.00	- - 구성하는 단사가 125 데시텍스 미만 106.38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80 수 초과 94 수 이하)	5%	E0
4472	5205.47.00	- - 구성하는 단사가 106.38 데시텍스 미만 83.33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94 수 초과 120 수 이하)	5%	E0
4473	5205.48.00	- - 구성하는 단사가 83.33 데시텍스 미만인	5%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20 수 초과)		
	52.06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인 것으로 한정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 단사[코움(comb)하지 않은 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4474	5206.11.00	- - 714.29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 수 이하)	0%	E0
4475	5206.12.00	- -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0%	E0
4476	5206.13.00	- -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0%	E0
4477	5206.14.00	- -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0%	E0
4478	5206.15.00	- - 125 데시텍스 미만인 것(미터식 번수 80 수 초과)	0%	E0
		- 단사[코움(comb)한 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4479	5206.21.00	- - 714.29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 수 이하)	0%	E0
4480	5206.22.00	- -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0%	E0
4481	5206.23.00	- -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0%	E0
4482	5206.24.00	- -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0%	E0
4483	5206.25.00	- - 125 데시텍스 미만인 것(미터식 번수 80 수 초과)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코움(comb)하지 않은 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4484	5206.31.00	-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 수 이하)	0%	E0
4485	5206.32.00	-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0%	E0
4486	5206.33.00	- - 구성하는 단사가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0%	E0
4487	5206.34.00	- - 구성하는 단사가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0%	E0
4488	5206.35.00	- - 구성하는 단사가 125 데시텍스 미만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80 수 초과)	0%	E0
		-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코움(comb)한 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4489	5206.41.00	-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 수 이하)	0%	E0
4490	5206.42.00	-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0%	E0
4491	5206.43.00	- - 구성하는 단사가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0%	E0
4492	5206.44.00	- - 구성하는 단사가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0%	E0
4493	5206.45.00	- - 구성하는 단사가 125 데시텍스 미만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80 수 초과)	0%	E0
	52.07	**면사(재봉사는 제외하며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4494	5207.10.00	- 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4495	5207.90.00	- 기타	0%	E0
	52.08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표백하지 않은 것		
4496	5208.11.00	- -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E0
4497	5208.12.00	- -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EX
4498	5208.13.00	- -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0%	E0
4499	5208.19.00	- - 그 밖의 직물	0%	E0
		- 표백한 것		
4500	5208.21.00	- -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E0
4501	5208.22.00	- -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0%	E0
4502	5208.23.00	- -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0%	E0
4503	5208.29.00	- - 그 밖의 직물	10%	EX
		- 염색한 것		
	5208.31	- -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504	5208.31.10	- - - 보일	0%	E0
4505	5208.31.90	- - - 기타	0%	E0
4506	5208.32.00	- -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0%	E0
4507	5208.33.00	- -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0%	E0
4508	5208.39.00	- - 그 밖의 직물	0%	E0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5208.41	- -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509	5208.41.10	- - - 이카트 직물	0%	E0
4510	5208.41.90	- - - 기타	0%	E0
	5208.42	- -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4511	5208.42.10	- - - 이카트 직물	0%	E0
4512	5208.42.90	- - - 기타	0%	E0
4513	5208.43.00	- -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0%	E0
4514	5208.49.00	- - 그 밖의 직물	0%	E0
		- 날염한 것		
	5208.51	- -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515	5208.51.10	- - - 전통바틱(batik)공정으로 날염한 것	0%	E0
4516	5208.51.90	- - - 기타	0%	E0
	5208.52	- -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4517	5208.52.10	- - - 전통바틱(batik)공정으로 날염한 것	0%	E0
4518	5208.52.90	- - - 기타	0%	E0
	5208.59	- - 그 밖의 직물		
4519	5208.59.10	- - - 전통바틱(batik)공정으로 날염한 것	0%	E0
4520	5208.59.20	- - - 기타{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0%	E0
4521	5208.59.90	- - - 기타	0%	E0
	52.09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0 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표백하지 않은 것		
	5209.11	- - 평직물(平織物)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4522	5209.11.10	- - - 덕과 캔버스 천	0%	E0
4523	5209.11.90	- - - 기타	0%	E0
4524	5209.12.00	- -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0%	E0
4525	5209.19.00	- - 그 밖의 직물	0%	E0
		- 표백한 것		
4526	5209.21.00	- - 평직물(平織物)	0%	E0
4527	5209.22.00	- -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0%	E0
4528	5209.29.00	- - 그 밖의 직물	0%	E0
		- 염색한 것		
4529	5209.31.00	- - 평직물(平織物)	0%	E0
4530	5209.32.00	- -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0%	E0
4531	5209.39.00	- - 그 밖의 직물	0%	E0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532	5209.41.00	- - 평직물(平織物)	0%	E0
4533	5209.42.00	- - 데님(denim)	0%	E0
4534	5209.43.00	- - 3 올이나 4 올의 그 밖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0%	E0
4535	5209.49.00	- - 그 밖의 직물	0%	E0
		- 날염한 것		
	5209.51	- - 평직물(平織物)		
4536	5209.51.10	- - - 전통바틱(batik)공정으로 날염한 것	0%	E0
4537	5209.51.90	- - - 기타	0%	E0
	5209.52	- -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4538	5209.52.10	- - - 전통바틱(batik)공정으로 날염한 것	0%	E0
4539	5209.52.90	- - - 기타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5209.59	- - 그 밖의 직물		
4540	5209.59.10	- - - 전통바틱(batik)공정으로 날염한 것	0%	E0
4541	5209.59.90	- - - 기타	0%	E0
	52.10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이고 주로 인조섬유와 혼방한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표백하지 않은 것		
4542	5210.11.00	- - 평직물(平織物)	0%	E0
4543	5210.19.00	- - 그 밖의 직물	0%	E0
		- 표백한 것		
4544	5210.21.00	- - 평직물(平織物)	0%	E0
4545	5210.29.00	- - 그 밖의 직물	0%	E0
		- 염색한 것		
4546	5210.31.00	- - 평직물(平織物)	0%	E0
4547	5210.32.00	- -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0%	E0
4548	5210.39.00	- - 그 밖의 직물	0%	E0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5210.41	- - 평직물(平織物)		
4549	5210.41.10	- - - 이카트 직물	0%	E0
4550	5210.41.90	- - - 기타	0%	E0
4551	5210.49.00	- - 그 밖의 직물	0%	E0
		- 날염한 것		
	5210.51	- - 평직물(平織物)		
4552	5210.51.10	- - - 전통바틱(batik)공정으로 날염한 것	0%	E0
4553	5210.51.90	- - - 기타	0%	E0
	5210.59	- - 그 밖의 직물		
4554	5210.59.10	- - - 전통바틱(batik)공정으로 날염한 것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4555	5210.59.90	- - - 기타	0%	E0
	52.11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이고 주로 인조섬유와 혼방한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0 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표백하지 않은 것		
4556	5211.11.00	- - 평직물(平織物)	0%	E0
4557	5211.12.00	- -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0%	E0
4558	5211.19.00	- - 그 밖의 직물	0%	E0
4559	5211.20.00	- 표백한 것	0%	E0
		- 염색한 것		
4560	5211.31.00	- - 평직물(平織物)	0%	E0
4561	5211.32.00	- -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0%	E0
4562	5211.39.00	- - 그 밖의 직물	0%	E0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5211.41	- - 평직물(平織物)		
4563	5211.41.10	- - - 이카트 직물	0%	E0
4564	5211.41.90	- - - 기타	0%	E0
4565	5211.42.00	- - 데님(denim)	0%	E0
4566	5211.43.00	- - 3 올이나 4 올의 그 밖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0%	E0
4567	5211.49.00	- - 그 밖의 직물	0%	E0
		- 날염한 것		
	5211.51	- - 평직물(平織物)		
4568	5211.51.10	- - - 전통바틱(batik)공정으로 날염한 것	0%	E0
4569	5211.51.90	- - - 기타	0%	E0
	5211.52	- -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4570	5211.52.10	- - - 전통바틱(batik)공정으로 날염한 것	0%	E0
4571	5211.52.90	- - - 기타	0%	E0
	5211.59	- - 그 밖의 직물		
4572	5211.59.10	- - - 전통바틱(batik)공정으로 날염한 것	0%	E0
4573	5211.59.90	- - - 기타	0%	E0
	52.12	**그 밖의 면직물**		
		-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0 그램 이하인 것		
4574	5212.11.00	- - 표백하지 않은 것	0%	E0
4575	5212.12.00	- - 표백한 것	0%	E0
4576	5212.13.00	- - 염색한 것	0%	E0
4577	5212.14.00	-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0%	E0
	5212.15	- - 날염한 것		
4578	5212.15.10	- - - 전통바틱(batik)공정으로 날염한 것	0%	E0
4579	5212.15.90	- - - 기타	0%	E0
		-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0 그램을 초과하는 것		
4580	5212.21.00	- - 표백하지 않은 것	0%	E0
4581	5212.22.00	- - 표백한 것	0%	E0
4582	5212.23.00	- - 염색한 것	0%	E0
4583	5212.24.00	-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0%	E0
	5212.25	- - 날염한 것		
4584	5212.25.10	- - - 전통바틱(batik)공정으로 날염한 것	0%	E0
4585	5212.25.90	- - - 기타	0%	E0
	53.01	**아마(생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아마의 토우(tow)와 웨이스트(waste)[실의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4586	5301.10.00	- 생아마나 침지(沈漬)아마	0%	E0
		- 줄기를 으깨거나(broken) 두드리거나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scutched) 훑어 내리거나(hackled)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아마(방적한 것은 제외한다)		
4587	5301.21.00	- - 줄기를 으깨거나(broken) 두드린(scutched) 것	0%	E0
4588	5301.29.00	- - 기타	0%	E0
4589	5301.30.00	- 아마 토우(tow)나 웨이스트(waste)	0%	E0
	53.02	대마(생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대마의 토우(tow)와 웨이스트(waste)[실의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4590	5302.10.00	- 생대마나 침지(沈漬)대마	0%	E0
4591	5302.90.00	- 기타	0%	E0
	53.03	황마와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靭皮)섬유[아마·대마·라미(ramie)는 제외하며, 생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 섬유의 토우(tow)와 웨이스트(waste)[실의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4592	5303.10.00	- 황마와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靭皮)섬유[생 것이나 침지(沈漬)한 것으로 한정한다]	0%	E0
4593	5303.90.00	- 기타	0%	E0
	53.05	코코넛·아바카(마닐라마)·라미(ramie)와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생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토우(tow)·노일(noil)·웨이스트(waste)[실의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4594	5305.00.10	- 사이잘(sisal)마와 아가베(agave)속의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이들 섬유의 토우(tow)와 웨이스트(waste)[실 웨이스트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0%	E0
		- 코코넛 섬유(코이어)와 아바카 섬유		
4595	5305.00.21	- - 코코넛섬유(생지에 한정한다)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4596	5305.00.22	- - 그 밖의 코코넛 섬유	0%	E0
4597	5305.00.23	- - 아바카 섬유	0%	E0
4598	5305.00.90	- 기타	0%	E0
	53.06	**아마사**		
4599	5306.10.00	- 단사	0%	E0
4600	5306.20.00	-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0%	E0
	53.07	**제 5303 호의 황마나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靭皮)섬유사**		
4601	5307.10.00	- 단사	0%	E0
4602	5307.20.00	-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0%	E0
	53.08	**그 밖의 식물성 섬유사와 종이실(paper yarn)**		
4603	5308.10.00	- 코이어(coir)사	0%	E0
4604	5308.20.00	- 대마사	0%	E0
	5308.90	- 기타		
4605	5308.90.10	- - 종이실(paper yarn)	0%	E0
4606	5308.90.90	- - 기타	0%	E0
	53.09	**아마직물**		
		- 아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4607	5309.11.00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0%	E0
4608	5309.19.00	- - 기타	0%	E0
		- 아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인 것		
4609	5309.21.00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0%	E0
4610	5309.29.00	- - 기타	0%	E0
	53.10	**제 5303 호의 황마나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靭皮)섬유의 직물**		
	5310.10	- 표백하지 않은 것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4611	5310.10.10	- - 평직물	0%	E0
4612	5310.10.90	- - 기타	0%	E0
4613	5310.90.00	- 기타	0%	E0
	53.11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의 직물과 종이실(paper yarn)의 직물**		
4614	5311.00.10	- 전통바틱(batik)공정으로 날염한 것	0%	E0
4615	5311.00.20	- 아바카 섬유	0%	E0
4616	5311.00.90	- 기타	0%	E0
	54.01	**인조필라멘트의 재봉사(소매용인지에 상관없다)**		
	5401.10	- 합성필라멘트의 것		
4617	5401.10.10	- - 소매용	0%	E0
4618	5401.10.90	- - 기타	0%	E0
	5401.20	- 재생·반(半)합성 필라멘트의 것		
4619	5401.20.10	- - 소매용	0%	E0
4620	5401.20.90	- - 기타	0%	E0
	54.02	**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하며, 67 데시텍스 미만인 합성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		
		- 강력사[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으로 한정하며, 텍스처화한(textured) 것인지에 상관없다]		
4621	5402.11.00	- - 아라미드의 것	0%	E0
4622	5402.19.00	- - 기타	0%	E0
4623	5402.20.00	- 강력사[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 한정하며, 텍스처화한(textured) 것인지에 상관없다]	0%	E0
		- 텍스처드사		
4624	5402.31.00	- -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구성하는 단사가 50 텍스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4625	5402.32.00	- -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구성하는 단사가 50 텍스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0%	E0
4626	5402.33.00	- - 폴리에스테르의 것	5%	E15
4627	5402.34.00	- - 폴리프로필렌의 것	0%	E0
4628	5402.39.00	- - 기타	0%	E0
		- 그 밖의 실(단사로서 꼬임이 없거나 미터당 50 회 이하의 꼬임의 것으로 한정한다)		
	5402.44	- - 탄성사		
4629	5402.44.10	- - - 폴리에스테르의 것	0%	E0
4630	5402.44.20	- - - 폴리프로필렌의 것	0%	E0
4631	5402.44.90	- - - 기타	0%	E0
4632	5402.45.00	- - 기타(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으로 한정한다)	0%	E0
4633	5402.46.00	- - 기타[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서 부분적으로 방향성(方向性)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	E0
4634	5402.47.00	- - 기타(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 한정한다)	5%	E15
4635	5402.48.00	- - 기타(폴리프로필렌의 것으로 한정한다)	0%	E0
4636	5402.49.00	- - 기타	5%	E0
		- 그 밖의 실(단사로서 미터당 꼬임이 50 회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637	5402.51.00	- -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0%	E0
4638	5402.52.00	- - 폴리에스테르의 것	0%	E0
4639	5402.53.00	- - 폴리프로필렌의 것	0%	E0
4640	5402.59.00	- - 기타	0%	E0
		- 그 밖의 실[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4641	5402.61.00	- -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0%	E0
4642	5402.62.00	- - 폴리에스테르의 것	0%	E0
4643	5402.63.00	- - 폴리프로필렌의 것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4644	5402.69.00	- - 기타	0%	E0
	54.03	재생·반(半)합성 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하며, 67 데시텍스 미만인 재생·반(半)합성 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		
4645	5403.10.00	- 강력사[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으로 한정한다]	0%	E0
		- 그 밖의 실(단사)		
	5403.31	- -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꼬임이 없거나, 꼬임이 미터당 120 회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646	5403.31.10	- - - 텍스처드사	0%	E0
4647	5403.31.90	- - - 기타	0%	E0
	5403.32	- -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꼬임이 미터당 120 회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4648	5403.32.10	- - - 텍스처드사	0%	E0
4649	5403.32.90	- - - 기타	0%	E0
	5403.33	- -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4650	5403.33.10	- - - 텍스처드사	0%	E0
4651	5403.33.90	- - - 기타	0%	E0
	5403.39	- - 기타		
4652	5403.39.10	- - - 텍스처드사	0%	E0
4653	5403.39.90	- - - 기타	0%	E0
		- 그 밖의 실[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5403.41	- -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4654	5403.41.10	- - - 텍스처드사	0%	E0
4655	5403.41.90	- - - 기타	0%	E0
	5403.42	- -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4656	5403.42.10	- - - 텍스처드사	0%	E0
4657	5403.42.90	- - - 기타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5403.49	- - 기타		
4658	5403.49.10	- - - 텍스처드사	0%	E0
4659	5403.49.90	- - - 기타	0%	E0
	54.04	합성모노필라멘트(67 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방직용 합성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예: 인조 스트로(straw)](시폭이 5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모노필라멘트		
4660	5404.11.00	- - 탄성사	0%	E0
4661	5404.12.00	- - 기타(폴리프로필렌의 것으로 한정한다)	0%	E0
4662	5404.19.00	- - 기타	0%	E0
4663	5404.90.00	- 기타	0%	E0
4664	5405.00.00	재생·반(半)합성 모노필라멘트(67 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재생·반(半)합성 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예: 인조 스트로(straw)](시폭이 5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E0
4665	5406.00.00	인조필라멘트사(재봉사는 제외하며,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0%	E0
	54.07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 5404 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		
	5407.10	- 강력사(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와 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직물		
		- - 타이어 직물, 컨베이어 덕(duck)		
4666	5407.10.21	- - - 표백하지 않은 것	0%	E0
4667	5407.10.29	- - - 기타	0%	E0
		- - 기타		
4668	5407.10.91	- - - 표백하지 않은 것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4669	5407.10.99	- - - 기타	0%	E0
4670	5407.20.00	-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직조한 직물	0%	E0
4671	5407.30.00	- 제 11 부의 주 제 9 호의 직물	0%	E0
		- 그 밖의 직물(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5407.41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672	5407.41.10	- - - 방수포(tarpaulin) 보강 재료용으로 적합한 꼬임이 없는 필라멘트사로 만든 나일론 메쉬(mesh) 직물	0%	E0
4673	5407.41.90	- - - 기타	0%	E0
4674	5407.42.00	- - 염색한 것	0%	E0
4675	5407.43.00	-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0%	E0
4676	5407.44.00	- - 날염한 것	0%	E0
		- 그 밖의 직물(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677	5407.51.00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0%	E0
4678	5407.52.00	- - 염색한 것	0%	E0
4679	5407.53.00	-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0%	E0
4680	5407.54.00	- - 날염한 것	0%	E0
		- 그 밖의 직물(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5407.61	- - 비(非)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4681	5407.61.10	-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0%	E0
4682	5407.61.90	- - - 기타	0%	E0
	5407.69	- - 기타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4683	5407.69.10	-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0%	E0
4684	5407.69.90	- - - 기타	0%	E0
		- 그 밖의 직물(합성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685	5407.71.00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0%	E0
4686	5407.72.00	- - 염색한 것	0%	E0
4687	5407.73.00	-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0%	E0
4688	5407.74.00	- - 날염한 것	0%	E0
		- 그 밖의 직물(합성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인 것으로 주로 또는 전적으로 면과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4689	5407.81.00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0%	E0
4690	5407.82.00	- - 염색한 것	0%	E0
4691	5407.83.00	-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0%	E0
4692	5407.84.00	- - 날염한 것	0%	E0
		- 그 밖의 직물		
4693	5407.91.00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0%	E0
4694	5407.92.00	- - 염색한 것	0%	E0
4695	5407.93.00	-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0%	E0
4696	5407.94.00	- - 날염한 것	0%	E0
	54.08	**재생·반(半)합성 필라멘트사의 직물(제 5405 호의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		
	5408.10	-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강력사로 직조한 직물		
4697	5408.10.10	- - 표백하지 않은 것	0%	E0
4698	5408.10.90	- - 기타	0%	E0
		- 그 밖의 직물[재생·반(半)합성 필라멘트나 스트립(strip)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으로 한정한다]		
4699	5408.21.00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0%	E0
4700	5408.22.00	- - 염색한 것	0%	E0
4701	5408.23.00	-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0%	E0
4702	5408.24.00	- - 날염한 것	0%	E0
		- 그 밖의 직물		
4703	5408.31.00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0%	E0
4704	5408.32.00	- - 염색한 것	0%	E0
4705	5408.33.00	-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0%	E0
4706	5408.34.00	- - 날염한 것	0%	E0
	55.01	**합성필라멘트 토우(tow)**		
4707	5501.10.00	-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0%	E0
4708	5501.20.00	- 폴리에스테르의 것	0%	E0
4709	5501.30.00	-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0%	E0
4710	5501.40.00	- 폴리프로필렌의 것	0%	E0
4711	5501.90.00	- 기타	0%	E0
	55.02	**재생·반(半)합성 필라멘트 토우(tow)**		
4712	5502.10.00	- 초산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0%	E0
4713	5502.90.00	- 기타	0%	E0
	55.03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card)·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		
		-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4714	5503.11.00	- - 아라미드의 것	0%	E0
4715	5503.19.00	- - 기타	0%	E0
4716	5503.20.00	- 폴리에스테르의 것	0%	E0
4717	5503.30.00	-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0%	E0
4718	5503.40.00	- 폴리프로필렌의 것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5503.90	- 기타		
4719	5503.90.10	- - 폴리비닐알코올의 것	0%	E0
4720	5503.90.90	- - 기타	0%	E0
	55.04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카드(card)·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		
4721	5504.10.00	-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0%	E0
4722	5504.90.00	- 기타	0%	E0
	55.05	**인조섬유의 웨이스트(waste)[노일(noil)·실의 웨이스트·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4723	5505.10.00	- 합성섬유의 것	0%	E0
4724	5505.20.00	- 재생·반(半)합성 섬유의 것	0%	E0
	55.06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card)·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4725	5506.10.00	-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0%	E0
4726	5506.20.00	- 폴리에스테르의 것	0%	E0
4727	5506.30.00	-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0%	E0
4728	5506.40.00	- 폴리프로필렌의 것	0%	E0
4729	5506.90.00	- 기타	0%	E0
4730	**5507.00.00**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카드(card)·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0%	E0
	55.08	**인조스테이플섬유의 재봉사(소매용인지에 상관없다)**		
	5508.10	- 합성스테이플섬유의 것		
4731	5508.10.10	- - 소매용	0%	E0
4732	5508.10.90	- - 기타	0%	E0
	5508.20	-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것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4733	5508.20.10	- - 소매용	0%	E0
4734	5508.20.90	- - 기타	0%	E0
	55.09	**합성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4735	5509.11.00	- - 단사	0%	E0
4736	5509.12.00	- -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0%	E0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4737	5509.21.00	- - 단사	0%	E0
4738	5509.22.00	- -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0%	E0
		-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4739	5509.31.00	- - 단사	0%	E0
4740	5509.32.00	- -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0%	E0
		- 그 밖의 실(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741	5509.41.00	- - 단사	0%	E0
4742	5509.42.00	- -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0%	E0
		- 그 밖의 실(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4743	5509.51.00	- - 주로 또는 전적으로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	0%	E0
	5509.52	- - 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		
4744	5509.52.10	- - - 단사	0%	E0
4745	5509.52.90	- - - 기타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4746	5509.53.00	- - 주로 또는 전적으로 면과 혼방한 것	0%	E0
4747	5509.59.00	- - 기타	0%	E0
		- 그 밖의 실[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 스테이플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4748	5509.61.00	- - 주로 또는 전적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	0%	E0
4749	5509.62.00	- - 주로 또는 전적으로 면과 혼방한 것	0%	E0
4750	5509.69.00	- - 기타	0%	E0
		- 그 밖의 실		
4751	5509.91.00	- - 주로 또는 전적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	0%	E0
4752	5509.92.00	- - 주로 또는 전적으로 면과 혼방한 것	0%	E0
4753	5509.99.00	- - 기타	0%	E0
	55.10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4754	5510.11.00	- - 단사	0%	E0
4755	5510.12.00	- -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0%	E0
4756	5510.20.00	- 그 밖의 실(주로 또는 전적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0%	E0
4757	5510.30.00	- 그 밖의 실(주로 또는 전적으로 면과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0%	E0
4758	5510.90.00	- 그 밖의 실	0%	E0
	55.11	**인조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는 제외하며,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5511.10	- 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4759	5511.10.10	- - 편물실·뜨개질 실과 자수실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4760	5511.10.90	- - 기타	0%	E0
	5511.20	- 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인 것		
4761	5511.20.10	- - 편물실·뜨개질 실과 자수실	0%	E0
4762	5511.20.90	- - 기타	0%	E0
4763	5511.30.00	-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것	0%	E0
	55.12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4764	5512.11.00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0%	E0
4765	5512.19.00	- - 기타	0%	E0
		-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4766	5512.21.00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0%	E0
4767	5512.29.00	- - 기타	0%	E0
		- 기타		
4768	5512.91.00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0%	E0
4769	5512.99.00	- - 기타	0%	E0
	55.13	**주로 면과 혼방한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인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7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770	5513.11.00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0%	E0
4771	5513.12.00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3 올이나 4 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4772	5513.13.00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0%	E0
4773	5513.19.00	- - 그 밖의 직물	0%	E0
		- 염색한 것		
4774	5513.21.00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0%	E0
4775	5513.23.00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0%	E0
4776	5513.29.00	- - 그 밖의 직물	0%	E0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777	5513.31.00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0%	E0
4778	5513.39.00	- - 그 밖의 직물	0%	E0
		- 날염한 것		
4779	5513.41.00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0%	E0
4780	5513.49.00	- - 그 밖의 직물	0%	E0
	55.14	**주로 면과 혼방한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인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70 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781	5514.11.00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0%	E0
4782	5514.12.00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3 올이나 4 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0%	E0
4783	5514.19.00	- - 그 밖의 직물	0%	E0
		- 염색한 것		
4784	5514.21.00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4785	5514.22.00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3올이나 4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0%	E0
4786	5514.23.00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0%	E0
4787	5514.29.00	- - 그 밖의 직물	0%	E0
4788	5514.30.00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0%	E0
		- 날염한 것		
4789	5514.41.00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0%	E0
4790	5514.42.00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3올이나 4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0%	E0
4791	5514.43.00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0%	E0
4792	5514.49.00	- - 그 밖의 직물	0%	E0
	55.15	**합성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		
4793	5515.11.00	- - 주로 또는 전적으로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 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	0%	E0
4794	5515.12.00	- - 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	0%	E0
4795	5515.13.00	- - 주로 또는 전적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	0%	E0
4796	5515.19.00	- - 기타	0%	E0
		-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 스테이플섬유의 것		
4797	5515.21.00	- - 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	0%	E0
4798	5515.22.00	- - 주로 또는 전적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	0%	E0
4799	5515.29.00	- - 기타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 그 밖의 직물		
4800	5515.91.00	- - 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	0%	E0
	5515.99	- - 기타		
4801	5515.99.10	- - - 주로 또는 전적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	0%	E0
4802	5515.99.90	- - - 기타	0%	E0
	55.16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직물**		
		-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4803	5516.11.00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0%	E0
4804	5516.12.00	- - 염색한 것	0%	E0
4805	5516.13.00	-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0%	E0
4806	5516.14.00	- - 날염한 것	0%	E0
		- 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으로서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인 것		
4807	5516.21.00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0%	E0
4808	5516.22.00	- - 염색한 것	0%	E0
4809	5516.23.00	-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0%	E0
4810	5516.24.00	- - 날염한 것	0%	E0
		- 주로 또는 전적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으로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인 것		
4811	5516.31.00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0%	E0
4812	5516.32.00	- - 염색한 것	0%	E0
4813	5516.33.00	-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0%	E0
4814	5516.34.00	- - 날염한 것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 주로 또는 전적으로 면과 혼방한 것으로서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		
4815	5516.41.00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0%	E0
4816	5516.42.00	- - 염색한 것	0%	E0
4817	5516.43.00	-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0%	E0
4818	5516.44.00	- - 날염한 것	0%	E0
		- 기타		
4819	5516.91.00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0%	E0
4820	5516.92.00	- - 염색한 것	0%	E0
4821	5516.93.00	-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0%	E0
4822	5516.94.00	- - 날염한 것	0%	E0
	56.01	**방직용 섬유의 워딩(wadding)과 그 제품, 방직용 섬유로서 길이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플록), 방직용 섬유의 더스트(dust)와 밀네프(mill nep)**		
		- 방직용 섬유의 워딩(wadding)과 그 제품		
4823	5601.21.00	- - 면으로 만든 것	0%	E0
	5601.22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4824	5601.22.10	- - - 포장한 담배 토	0%	E0
4825	5601.22.90	- - - 기타	0%	E0
4826	5601.29.00	- - 기타	0%	E0
	5601.30	- 섬유의 플록(flock), 더스트(dust), 밀네프(mill nep)		
4827	5601.30.10	- - 폴리아미드 섬유 플록(flock)	0%	E0
4828	5601.30.20	- - 폴리프로필렌 섬유 플록(flock)	0%	E0
4829	5601.30.90	- - 기타	0%	E0
	56.02	**펠트(felt)(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830	5602.10.00	- 니들룸펠트(needleloom felt)와 스티치본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드(stitch-bonded) 섬유직물		
		- 그 밖의 펠트(felt)(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831	5602.21.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	E0
4832	5602.29.00	- -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0%	E0
4833	5602.90.00	- 기타	0%	E0
	56.03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인조필라멘트의 것		
4834	5603.11.00	- -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5 그램 이하인 것	0%	E0
4835	5603.12.00	- -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5 그램을 초과하고 70 그램 이하인 것	0%	E0
4836	5603.13.00	- - 1 제곱미터당 중량이 70 그램을 초과하고 150 그램 이하인 것	0%	E0
4837	5603.14.00	- -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을 초과하는 것	0%	E0
		- 기타		
4838	5603.91.00	- -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5 그램 이하인 것	0%	E0
4839	5603.92.00	- -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5 그램을 초과하고 70 그램 이하인 것	0%	E0
4840	5603.93.00	- - 1 제곱미터당 중량이 70 그램을 초과하고 150 그램 이하인 것	0%	E0
4841	5603.94.00	- -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을 초과하는 것	0%	E0
	56.04	**고무실과 고무끈(방직용 섬유로 피복한 것으로 한정한다), 방직용 섬유사·제 5404 호나 제 5405 호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물품[고무나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시드한(sheathed) 것으로 한정한다]**		
4842	5604.10.00	- 고무실과 고무끈(방직용 섬유로 피복한 것으로 한정한다)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5604.90	- 기타		
4843	5604.90.10	- - 모조 캣거트(견사의 것으로 한정한다)	0%	E0
4844	5604.90.20	- - 고무를 침투한 방직용 섬유 사	0%	E0
4845	5604.90.30	- - 강력사[폴리에스테르의 것·나일론의 것 또는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또는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으로 한정한다]	0%	E0
4846	5604.90.90	- - 기타	0%	E0
4847	5605.00.00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짐프한(gimped)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직용 섬유사 또는 제 5404 호나 제 5405 호의 스트립(strip)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실·스트립(strip) 또는 가루 모양으로 금속과 결합한 것이나 금속을 피복한 것으로 한정한다]	0%	E0
4848	5606.00.00	짐프사(Gimped yarn)와 제 5404 호나 제 5405 호에 열거한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짐프한(gimped) 것으로 한정하며 제 5605 호의 것과 짐프한(gimped) 말의 털로 만든 실은 제외한다], 셔닐사(chenille yarn)[플록(flock) 모양의 셔닐사(chenille yarn)를 포함한다], 루프웨일사(loop waleyarn)	0%	E0
	56.07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엮거나 짠 것인지, 고무나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시드한(sheathed) 것인지에 상관없다]		
		- 사이잘(sisal)마나 아가베(agave)속의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4849	5607.21.00	- - 포장용 끈	0%	E0
4850	5607.29.00	- - 기타	0%	E0
		- 폴리에틸렌이나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든 것		
4851	5607.41.00	- - 포장용 끈	0%	E0
4852	5607.49.00	- - 기타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5607.50	- 그 밖의 합성섬유로 만든 것		
4853	5607.50.10	- - 브이벨트 코드(cord)(레소르시놀 포름알데히드를 함유한 인조 섬유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폴리아미드와 폴리테트라 플루오르에틸렌 실로서 10,000 데시텍스를 초과하는 것(실링 펌프·밸브와 이와 유사한 제품용으로 한정한다)	0%	E0
4854	5607.50.90	- - 기타	0%	E0
	5607.90	- 기타		
4855	5607.90.10	- - 재생·반(半)합성 섬유의 것	0%	E0
		- - 아바카[마닐라삼이나 마닐라삼 파초기(Musa textilis Nee)]나 그 밖의 경화(잎) 섬유의 것		
4856	5607.90.21	- - - 마닐라 삼섬유로 만든 것(마닐라 삼이나 바나나 나무)	0%	E0
4857	5607.90.22	- - - 그밖의 강화섬유로 만든 것	0%	E0
4858	5607.90.30	- - 제 5303 호의 황마 또는 그 밖의 방직용 인피섬유로 만든 것	0%	E0
4859	5607.90.90	- - 기타	0%	E0
	56.08	**매듭이 있는 그물감[끈·배의 밧줄(cordage)·로프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만든 어망, 그 밖의 제품으로 만든 그물**		
		- 인조섬유로 만든 것		
4860	5608.11.00	- - 제품으로 된 어망	0%	E0
	5608.19	- - 기타		
4861	5608.19.20	- - - 망태 가방	0%	E0
4862	5608.19.90	- - - 기타	0%	E0
	5608.90	- 기타		
4863	5608.90.10	- - 망태 가방	0%	E0
4864	5608.90.90	- - 기타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4865	5609.00.00	제 5404 호나 제 5405 호의 실・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끈・배의 밧줄(cordage)・로프 또는 케이블의 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E0
	57.01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매듭이 있는 것으로 한정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5701.1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4866	5701.10.10	- - 기도용 깔개	0%	E0
4867	5701.10.90	- - 기타	0%	E0
	5701.9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 면으로 만든 것		
4868	5701.90.11	- - - 기도용 깔개	0%	E0
4869	5701.90.19	- - - 기타	0%	E0
4870	5701.90.20	- - 황마 섬유로 만든 것	0%	E0
		- - 기타		
4871	5701.90.91	- - - 기도용 깔개	0%	E0
4872	5701.90.99	- - - 기타	0%	E0
	57.02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직조한 것으로 한정하고, 터프트(tuft)하거나 플록(flock)한 것은 제외하고,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켈렘(kelem)・슈맥(schumack)・카라마니(karamanie)와 이와 유사한 손으로 짠 러그(rug)를 포함한다]		
4873	5702.10.00	- 켈렘(kelem)・슈맥(schumack)・카라마니(karamanie)와 이와 유사한 손으로 짠 러그(rug)	0%	E0
4874	5702.20.00	- 코코넛섬유(코이어)로 만든 바닥깔개	0%	E0
		- 기타[파일(pile)직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제품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		
4875	5702.31.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4876	5702.32.00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0%	E0
	5702.39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4877	5702.39.10	- - - 면으로 만든 것	0%	E0
4878	5702.39.20	- - - 황마 섬유로 만든 것	0%	E0
4879	5702.39.90	- - - 기타	0%	E0
		- 기타[파일(pile)직물로 만든 것으로서 제품으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5702.41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4880	5702.41.10	- - - 기도용 깔개	0%	E0
4881	5702.41.90	- - - 기타	0%	E0
	5702.42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4882	5702.42.10	- - - 기도용 깔개	0%	E0
4883	5702.42.90	- - - 기타	0%	E0
	5702.49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 - 면으로 만든 것		
4884	5702.49.11	- - - - 기도용 깔개	0%	E0
4885	5702.49.19	- - - - 기타	0%	E0
4886	5702.49.20	- - - 황마 섬유로 만든 것	0%	E0
		- - - 기타		
4887	5702.49.91	- - - - 기도용 깔개	0%	E0
4888	5702.49.99	- - - - 기타	0%	E0
	5702.50	- 기타[파일(pile)직물로 만든 것과 제품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		
4889	5702.50.10	- - 면으로 만든 것	0%	E0
4890	5702.50.20	- - 황마 섬유로 만든 것	0%	E0
4891	5702.50.90	- - 기타	0%	E0
		- 기타[파일(pile)직물로 만든 것은 제외하며, 제품으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5702.91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4892	5702.91.10	- - - 기도용 깔개	0%	E0
4893	5702.91.90	- - - 기타	0%	E0
	5702.92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4894	5702.92.10	- - - 기도용 깔개	0%	E0
4895	5702.92.90	- - - 기타	0%	E0
	5702.99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 - 면으로 만든 것		
4896	5702.99.11	- - - - 기도용 깔개	0%	E0
4897	5702.99.19	- - - - 기타	0%	E0
4898	5702.99.20	- - - 황마 섬유로 만든 것	0%	E0
		- - - 기타		
4899	5702.99.91	- - - - 기도용 깔개	0%	E0
4900	5702.99.99	- - - - 기타	0%	E0
	57.03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터프트(tuft)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5703.1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4901	5703.10.10	- - 제 8702 호·제 8703 호나 제 8704 호의 자동차용 바닥 깔개	0%	E0
4902	5703.10.20	- - 기도용 깔개	0%	E0
4903	5703.10.30	- - 제 8702 호·제 8703 호나 제 8704 호의 자동차용 양탄자	0%	E0
4904	5703.10.90	- - 기타	0%	E0
	5703.20	- 나일론이나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4905	5703.20.10	- - 기도용 깔개	0%	E0
4906	5703.20.90	- - 기타	0%	E0
	5703.30	- 그 밖의 인조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4907	5703.30.10	- - 기도용 깔개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4908	5703.30.90	- - 기타	0%	E0
	5703.9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 면으로 만든 것		
4909	5703.90.11	- - - 기도용 깔개	0%	E0
4910	5703.90.19	- - - 기타	0%	E0
		- - 황마 섬유로 만든 것		
4911	5703.90.21	- - - 제 8702 호·제 8703 호나 제 8704 호의 자동차용 바닥 깔개	0%	E0
4912	5703.90.22	- - - 제 8702 호·제 8703 호나 제 8704 호의 자동차용 양탄자	0%	E0
4913	5703.90.29	- - - 기타	0%	E0
		- - 기타		
4914	5703.90.91	- - - 제 8702 호·제 8703 호나 제 8704 호의 자동차용 바닥 깔개	0%	E0
4915	5703.90.92	- - - 기도용 깔개	0%	E0
4916	5703.90.93	- - - 제 8702 호·제 8703 호나 제 8704 호의 자동차용 양탄자	0%	E0
4917	5703.90.99	- - - 기타	0%	E0
	57.04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펠트(felt)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고, 터프트(tuft)하거나 플록(flock)한 것은 제외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4918	5704.10.00	- 타일(tile)(표면적이 최고 0.3 제곱미터인 것으로 한정한다)	0%	E0
4919	5704.20.00	- 타일(tile)(표면적이 최고 0.3 제곱미터 초과 1 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E0
4920	5704.90.00	- 기타	0%	E0
	57.05	**그 밖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 면으로 만든 것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4921	5705.00.11	- - 기도용 깔개	0%	E0
4922	5705.00.19	- - 기타	0%	E0
		- 황마 섬유로 만든 것		
4923	5705.00.21	- - 부직포로 만든 바닥 깔개(제 8702 호·제 8703 호나 제 8704 호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0%	E0
4924	5705.00.29	- - 기타	0%	E0
		- 기타		
4925	5705.00.91	- - 기도용 깔개	0%	E0
4926	5705.00.92	- - 부직포로 만든 바닥 깔개(제 8702 호·제 8703 호나 제 8704 호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0%	E0
4927	5705.00.99	- - 기타	0%	E0
	58.01	**파일(pile)직물·셔닐(chenille)직물(제 5802 호나 제 5806 호에 해당하는 직물은 제외한다)**		
	5801.1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4928	5801.10.10	- -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	0%	E0
4929	5801.10.90	- - 기타	0%	E0
		- 면으로 만든 것		
	5801.21	- - 절단되지 않은 위(緯)파일(pile)직물		
4930	5801.21.10	- - -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	0%	E0
4931	5801.21.90	- - - 기타	0%	E0
	5801.22	- - 절단된 코듀로이(corduroy)		
4932	5801.22.10	- - -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	0%	E0
4933	5801.22.90	- - - 기타	0%	E0
	5801.23	- - 그 밖의 위(緯)파일(pile)직물		
4934	5801.23.10	- - -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	0%	E0
4935	5801.23.90	- - - 기타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5801.26	- - 셔닐(chenille)직물		
4936	5801.26.10	- - -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	0%	E0
4937	5801.26.90	- - - 기타	0%	E0
	5801.27	- - 경(經)파일(pile)직물		
4938	5801.27.10	- - -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	0%	E0
4939	5801.27.90	- - - 기타	0%	E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5801.31	- - 절단되지 않은 위(緯)파일(pile)직물		
4940	5801.31.10	- - -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	0%	E0
4941	5801.31.90	- - - 기타	0%	E0
	5801.32	- - 절단된 코듀로이(corduroy)		
4942	5801.32.10	- - -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	0%	E0
4943	5801.32.90	- - - 기타	0%	E0
	5801.33	- - 그 밖의 위(緯)파일(pile)직물		
4944	5801.33.10	- - -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	0%	E0
4945	5801.33.90	- - - 기타	0%	E0
	5801.36	- - 셔닐(chenille)직물		
4946	5801.36.10	- - -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	0%	E0
4947	5801.36.90	- - - 기타	0%	E0
	5801.37	- - 경(經)파일(pile) 직물		
4948	5801.37.10	- - -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	0%	E0
4949	5801.37.90	- - - 기타	0%	E0
	5801.90	-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 - 견으로 만든 것		
4950	5801.90.11	- - -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	0%	E0
4951	5801.90.19	- - - 기타	0%	E0
		- - 기타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4952	5801.90.91	- - -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	0%	E0
4953	5801.90.99	- - - 기타	0%	E0
	58.02	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와 이와 유사한 테리(terry)직물[제 5806 호에 해당하는 세폭(細幅)직물은 제외한다], 터프트(tuft)한 직물(제 5703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 면으로 만든 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와 이와 유사한 테리(terry)직물		
4954	5802.11.00	- - 표백하지 않은 것	0%	E0
4955	5802.19.00	- - 기타	0%	E0
	5802.20	- 그 밖의 섬유로 만든 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와 이와 유사한 테리(terry)직물		
4956	5802.20.1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	E0
4957	5802.20.90	- - 기타	0%	E0
	5802.30	- 터프트(tuft)한 직물		
4958	5802.30.10	- - 침투·도포 또는 피복한 것	0%	E0
4959	5802.30.20	- - 면이나 인조 섬유로 만든 직물	0%	E0
4960	5802.30.30	- -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직물	0%	E0
4961	5802.30.90	- - 기타	0%	E0
	58.03	거즈[제 5806 호에 해당하는 세폭(細幅)직물은 제외한다]		
4962	5803.00.10	- 면으로 만든 것	0%	E0
4963	5803.00.2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0%	E0
4964	5803.00.3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	E0
4965	5803.00.90	- 기타	0%	E0
	58.04	튈(tulle)과 그 밖의 망직물(제직한 것·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레이스[원단 상태·스트립(strip)이나 모티프(motif)로 된 것으로 한정하며, 제 6002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호부터 제 6006 호까지의 편물은 제외한다]		
	5804.10	- 튈(tulle)과 그 밖의 망직물		
		- - 견으로 만든 것		
4966	5804.10.11	- - -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	0%	E0
4967	5804.10.19	- - - 기타	0%	E0
		- - 면으로 만든 것		
4968	5804.10.21	- - -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	0%	E0
4969	5804.10.29	- - - 기타	0%	E0
		- - 기타		
4970	5804.10.91	- - -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	0%	E0
4971	5804.10.99	- - - 기타	0%	E0
		- 기계로 만든 레이스		
	5804.21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4972	5804.21.10	- - -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	0%	E0
4973	5804.21.90	- - - 기타	0%	E0
	5804.29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4974	5804.29.10	- - -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	0%	E0
4975	5804.29.90	- - - 기타	0%	E0
4976	5804.30.00	- 손으로 만든 레이스	0%	E0
	58.05	고블랭(gobelin)직・플랜더스(flanders)직・오뷔송(aubusson)직・보베(beauvais)직과 이와 유사한 손으로 짠 태피스트리(tapestry), 자수의 태피스트리(tapestry)[예: 프티포인트(petit point)・십자수](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4977	5805.00.10	- 면으로 만든 것	0%	E0
4978	5805.00.90	- 기타	0%	E0
	58.06	세폭(細幅)직물(제 5807 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과 접착제로 접착한 경사(經絲)만으로 이루어진 세폭(細幅)직물(볼덕)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5806.10	- 파일(pile)직물[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와 이와 유사한 테리(terry)직물], 셔닐(chenille)직물		
4979	5806.10.10	- - 견으로 만든 것	0%	E0
4980	5806.10.20	- - 면으로 만든 것	0%	E0
4981	5806.10.90	- - 기타	0%	E0
	5806.20	- 그 밖의 직물(탄성사나 고무실의 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982	5806.20.10	- - 스포츠 장비 그립을 싸는데 사용하는 스포츠 테이프	0%	E0
4983	5806.20.90	- - 기타	0%	E0
		- 그 밖의 직물		
	5806.31	- - 면으로 만든 것		
4984	5806.31.10	- - - 타자기나 이와 유사한 기계용 잉크리본 제조에 적합한 세폭(細幅)직물	0%	E0
4985	5806.31.20	- - - 전기절연지용으로 뒷면을 보강한 것	0%	E0
4986	5806.31.30	- - - 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에 사용되고 폭이 12밀리미터 이하인 리본	0%	E0
4987	5806.31.90	- - - 기타	0%	E0
	5806.32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4988	5806.32.10	- - - 타자기나 이와 유사한 기계용 잉크리본 제조에 적합한 세폭(細幅)직물, 좌석안전 벨트 직물	0%	E0
4989	5806.32.40	- - - 전기절연지용으로 뒷면을 보강한 것	0%	E0
4990	5806.32.50	- - - 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에 사용되고 폭이 12밀리미터 이하인 리본	0%	E0
4991	5806.32.90	- - - 기타	0%	E0
	5806.39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4992	5806.39.10	- - - 견으로 만든 것	0%	E0
		- - - 기타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4993	5806.39.91	- - - - 전기절연지용으로 뒷면을 보강한 것	0%	E0
4994	5806.39.92	- - - - 타자기나 이와 유사한 기계용 잉크리본 제조에 적합한 세폭(細幅)직물	0%	E0
4995	5806.39.93	- - - - 폭이 12 밀리미터 이하인 슬라이드 파스너용에 사용되는 리본	0%	E0
4996	5806.39.99	- - - - 기타	0%	E0
4997	5806.40.00	- 접착제로 접착한 경사(經絲)만으로 이루어진 세폭(細幅)직물(볼덕)	0%	E0
	58.07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레이블(label), 배지(badge)와 이와 유사한 물품[원단 상태인 것·스트립(strip) 모양인 것·특정한 모양이나 크기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하며, 자수한 것은 제외한다]		
4998	5807.10.00	- 직조한 것	0%	E0
	5807.90	- 기타		
4999	5807.90.10	- - 부직포로 만든 것	0%	E0
5000	5807.90.90	- - 기타	0%	E0
	58.08	원단 상태인 브레이드(braid)와 원단 상태인 장식용 트리밍(trimming)(자수가 없는 것으로 한정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술·폼폼(pompon)과 이와 유사한 물품		
	5808.10	- 브레이드(braid)(원단 상태로 한정한다)		
5001	5808.10.10	- - 고무실과 결합된 것	0%	E0
5002	5808.10.90	- - 기타	0%	E0
	5808.90	- 기타		
5003	5808.90.10	- - 고무실과 결합된 것	0%	E0
5004	5808.90.90	- - 기타	0%	E0
5005	5809.00.00	금속사의 직물과 제 5605 호에 해당하는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의 직물(의류·실내용품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하며, 따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한다)		
	58.10	자수천[원단 상태인 것·스트립(strip) 모양인 것·모티프(motif)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5006	5810.10.00	- 자수천(바탕천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0%	E0
		- 그 밖의 자수천		
5007	5810.91.00	- - 면으로 만든 것	0%	E0
5008	5810.92.00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0%	E0
5009	5810.9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E0
	58.11	원단 상태인 방직용 누비제품(바느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패딩과 조합한 한 층 이상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제 5810 호의 자수천은 제외한다)		
5010	5811.00.10	- 양모 또는 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의 것	0%	E0
5011	5811.00.90	- 기타	0%	E0
	59.01	서적 장정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서 검(gum)이나 전분질의 물품을 도포한 것, 투사포(tracing cloth), 회화용 캔버스, 모자 제조에 사용되는 버크럼(buckram)과 이와 유사한 경화가공된 방직용 섬유의 직물		
5012	5901.10.00	- 서적 장정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서 검(gum)이나 전분질의 물품을 도포한 것	0%	E0
	5901.90	- 기타		
5013	5901.90.10	- - 투사포(tracing cloth)	0%	E0
5014	5901.90.20	- - 회화용 캔버스	0%	E0
5015	5901.90.90	- - 기타	0%	E0
	59.02	강력사의 타이어코드(tyre cord)직물[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폴리에스테르·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으로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한정한다]		
	5902.10	-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 - 고무 가공을 한 체이퍼 직물(Chafer fabric)		
5016	5902.10.11	- - - 나일론6 사의 것	0%	E0
5017	5902.10.19	- - - 기타	0%	E0
		- - 기타		
5018	5902.10.91	- - - 나일론6 사의 것	0%	E0
5019	5902.10.99	- - - 기타	0%	E0
	5902.20	-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5020	5902.20.20	- - 고무 가공을 한 체이퍼 직물(Chafer fabric)	0%	E0
		- - 기타		
5021	5902.20.91	- - - 면을 함유한 것	0%	E0
5022	5902.20.99	- - - 기타	0%	E0
	5902.90	- 기타		
5023	5902.90.10	- - 고무 가공을 한 체이퍼 직물(Chafer fabric)	0%	E0
5024	5902.90.90	- - 기타	0%	E0
	59.03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		
	5903.10	- 폴리(염화비닐)의 것		
5025	5903.10.10	- - 인터라이닝	0%	E0
5026	5903.10.90	- - 기타	0%	E0
5027	5903.20.00	- 폴리우레탄의 것	0%	E0
	5903.90	- 기타		
5028	5903.90.10	- - 캔버스 타입의 직물로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로 침투·도포·피복 또는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적층한 직물		
5029	5903.90.90	- - 기타	0%	E0
	59.04	**리놀륨과 방직용 섬유직물의 뒷면을 도포하거나 피복한 것으로 만든 바닥깔개(특정한 모양으로 절단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030	5904.10.00	- 리놀륨	0%	E0
5031	5904.90.00	- 기타	0%	E0
	59.05	**방직용 섬유로 만든 벽 피복재**		
5032	5905.00.10	- 양모 또는 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의 것	0%	E0
5033	5905.00.90	- 기타	0%	E0
	59.06	**고무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 5902 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		
5034	5906.10.00	- 폭이 20 센티미터 이하인 접착테이프	0%	E0
		- 기타		
5035	5906.91.00	- -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0%	E0
	5906.99	- - 기타		
5036	5906.99.10	- - - 병원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고무가공을 한 시트	0%	E0
5037	5906.99.90	- - - 기타	0%	E0
	59.07	**그 밖의 방법으로 침투·도포하거나 피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극장용 배경이나 스튜디오용 배경막이나 이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그림이 그려진 캔버스**		
5038	5907.00.10	- 오일이나 오일을 기본 재료로 만든 조제품으로 침투·도포하거나 피복한 직물	0%	E0
5039	5907.00.30	- 내화성 물질로 침투·도포하거나 피복한 직물	0%	E0
5040	5907.00.40	- 전체표면이 섬유의 플록으로 도포된 벨벳 플록으로 침투·도포하거나 피복한 직물	0%	E0
5041	5907.00.50	- 왁스·타르·역청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으로 침투·도포하거나 피복한 직물		
5042	5907.00.60	- 그 밖의 물질로 침투·도포하거나 피복한 직물	0%	E0
5043	5907.00.90	- 기타	0%	E0
	59.08	**램프용·스토브용·라이터용·양초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심지(직조·편조·편직한 것으로 한정한다), 백열가스 맨틀(mantle)과 백열가스 맨틀(mantle)용 관 모양의 편물(침투시켰는지에 상관없다)**		
5044	5908.00.10	- 심지, 백열가스 맨틀(mantle)	0%	E0
5045	5908.00.90	- 기타	0%	E0
	59.09	**방직용 섬유로 만든 호스와 이와 유사한 관 모양의 물품(다른 재료를 내장·보강한 것인지 또는 부속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5046	5909.00.10	- 소방 호스	0%	E0
5047	5909.00.90	- 기타	0%	E0
5048	**5910.00.00**	**전동(transmission)용 또는 컨베이어용 벨트나 벨팅(belting)(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 또는 금속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	E0
	59.11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		
5049	5911.10.00	- 침포(針布)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펠트(felt)와 펠트(felt)로 안을 붙인 직물로서 고무·가죽이나 그 밖의 물품을 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물품으로 그 밖의 기술적 용도로 사용하는 이와 유사한 직물[위빙스핀들(weaving spindle)(위빙빔)을 피복하기 위한 고무를 침투시킨 벨벳으로 된 세폭(細幅)직물을 포함한다]	0%	E0
5050	5911.20.00	- 볼팅 클로스(bolting cloth)(제품인지에 상관없다)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 제지용 기계나 이와 유사한 기계(예: 펄프나 석면시멘트 제조용)에 사용하는 것으로 엔드리스(endless)나 연결구를 갖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와 펠트(felt)류		
5051	5911.31.00	- - 1 제곱미터당 중량이 650 그램 미만인 것	0%	E0
5052	5911.32.00	- - 1 제곱미터당 중량이 650 그램 이상인 것	0%	E0
5053	5911.40.00	- 착유기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여과포(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든 것을 포함한다)	0%	E0
	5911.90	- 기타		
5054	5911.90.10	- - 개스켓(gasket)과 실(seal)	0%	E0
5055	5911.90.90	- - 기타	0%	E0
	60.01	**파일(pile) 편물[롱파일(long pile) 편물과 테리(terry) 편물을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5056	6001.10.00	- 롱파일(long pile) 편물	0%	E0
		- 루프파일(looped pile) 편물		
5057	6001.21.00	- - 면으로 만든 것	0%	E0
5058	6001.22.00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0%	E0
5059	6001.2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E0
		- 기타		
5060	6001.91.00	- - 면으로 만든 것	0%	E0
	6001.92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5061	6001.92.20	- - - 파일 편물(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100 이며, 페인트 롤러 제조용에 적합한 것으로, 폭이 63.5 밀리미터 이상이고 76.2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E0
5062	6001.92.30	- - - 탄성사나 고무실을 함유한 것	0%	E0
5063	6001.92.90	- - - 기타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6001.99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 - 표백하지 않은 것, 머서(mercer)처리 하지 않은 것		
5064	6001.99.11	- - - - 탄성사나 고무실을 함유한 것	0%	E0
5065	6001.99.19	- - - - 기타	0%	E0
5066	6001.99.90	- - - 기타	0%	E0
	60.02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폭이 30 센티미터 이하이며 탄성사나 고무실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 이상인 것으로서 제 6001 호의 것은 제외한다)**		
5067	6002.40.00	- 탄성사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 이상이며, 고무실은 함유하지 않은 것	0%	E0
5068	6002.90.00	- 기타	0%	E0
	60.03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폭이 30 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제 6001 호나 제 6002 호의 것은 제외한다)**		
5069	6003.10.0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	E0
5070	6003.20.00	- 면으로 만든 것	0%	E0
5071	6003.30.00	- 합성섬유로 만든 것	0%	E0
5072	6003.40.00	-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0%	E0
5073	6003.90.00	- 기타	0%	E0
	60.04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폭이 30 센티미터를 초과하며 탄성사나 고무실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 이상인 것으로서 제 6001 호의 것은 제외한다)**		
	6004.10	- 탄성사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 이상이며, 고무실은 함유하지 않은 것		
5074	6004.10.10	- - 탄성사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20 이하인 것	0%	E0
5075	6004.10.90	- - 기타	0%	E0
5076	6004.90.00	- 기타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60.05	경(經)편직 편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 6001 호부터 제 6004 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 면으로 만든 것		
5077	6005.21.00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0%	E0
5078	6005.22.00	- - 염색한 것	0%	E0
5079	6005.23.00	-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0%	E0
5080	6005.24.00	- - 날염한 것	0%	E0
		- 합성섬유로 만든 것		
5081	6005.35.00	- - 이 류의 소호주 제 1 호에 규정된 직물	0%	E0
	6005.36	- - 기타(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으로 한정한다)		
5082	6005.36.10	- - - 폴리에스터와 폴리부틸렌 텔레프탈레이트의 수영복용 편물(전중량 중 폴리에스터 비중이 높은 것)	0%	E0
5083	6005.36.90	- - - 기타	0%	E0
	6005.37	- - 기타(염색한 것으로 한정한다)		
5084	6005.37.10	- - - 폴리에스터와 폴리부틸렌 텔레프탈레이트의 수영복용 편물(전중량 중 폴리에스터 비중이 높은 것)	0%	E0
5085	6005.37.90	- - - 기타	0%	E0
	6005.38	- - 기타(서로 다른 색실의 것으로 한정한다)		
5086	6005.38.10	- - - 폴리에스터와 폴리부틸렌 텔레프탈레이트의 수영복용 편물(전중량 중 폴리에스터 비중이 높은 것)	0%	E0
5087	6005.38.90	- - - 기타	0%	E0
	6005.39	- - 기타(날염한 것으로 한정한다)		
5088	6005.39.10	- - - 폴리에스터와 폴리부틸렌 텔레프탈레이트의 수영복용 편물(전중량 중 폴리에스터 비중이 높은 것)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5089	6005.39.90	- - - 기타	0%	E0
		-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5090	6005.41.00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0%	E0
5091	6005.42.00	- - 염색한 것	0%	E0
5092	6005.43.00	-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0%	E0
5093	6005.44.00	- - 날염한 것	0%	E0
	6005.90	- 기타		
5094	6005.90.1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	E0
5095	6005.90.90	- - 기타	0%	E0
	60.06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5096	6006.10.0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	E0
		- 면으로 만든 것		
5097	6006.21.00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0%	E0
5098	6006.22.00	- - 염색한 것	0%	E0
5099	6006.23.00	-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0%	E0
5100	6006.24.00	- - 날염한 것	0%	E0
		- 합성섬유로 만든 것		
	6006.31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5101	6006.31.10	- - - 모자이크 타일의 뒷면 재료용 나일론 섬유 메쉬	0%	E0
5102	6006.31.20	- - - 탄성제품(고무사와 결합한 것)	0%	E0
5103	6006.31.90	- - - 기타	0%	E0
	6006.32	- - 염색한 것		
5104	6006.32.10	- - - 모자이크 타일의 뒷면 재료용 나일론 섬유 메쉬	0%	E0
5105	6006.32.20	- - - 탄성제품(고무사와 결합한 것)	0%	E0
5106	6006.32.90	- - - 기타	0%	E0
	6006.33	- - 서로 다른 색실의 것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5107	6006.33.10	- - - 탄성제품(고무사와 결합한 것)	0%	E0
5108	6006.33.90	- - - 기타	0%	E0
	6006.34	- - 날염한 것		
5109	6006.34.10	- - - 탄성제품(고무사와 결합한 것)	0%	E0
5110	6006.34.90	- - - 기타	0%	E0
		-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6006.41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5111	6006.41.10	- - - 탄성제품(고무사와 결합한 것)	0%	E0
5112	6006.41.90	- - - 기타	0%	E0
	6006.42	- - 염색한 것		
5113	6006.42.10	- - - 탄성제품(고무사와 결합한 것)	0%	E0
5114	6006.42.90	- - - 기타	0%	E0
	6006.43	- - 서로 다른 색실의 것		
5115	6006.43.10	- - - 탄성제품(고무사와 결합한 것)	0%	E0
5116	6006.43.90	- - - 기타	0%	E0
	6006.44	- - 날염한 것		
5117	6006.44.10	- - - 탄성제품(고무사와 결합한 것)	0%	E0
5118	6006.44.90	- - - 기타	0%	E0
5119	6006.90.00	- 기타	0%	E0
	61.01	남성용이나 소년용 오버코트(overcoat)·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록(cloak)·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윈드치터(wind-cheater)·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제6103호의 것은 제외한다)		
5120	6101.20.00	- 면으로 만든 것	0%	E0
5121	6101.30.0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0%	E0
5122	6101.90.0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61.02	여성용이나 소녀용 오버코트(overcoat)·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록(cloak)·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윈드치터(wind-cheater)·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제6104호의 것은 제외한다)		
5123	6102.10.0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	E0
5124	6102.20.00	- 면으로 만든 것	0%	E0
5125	6102.30.0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0%	E0
5126	6102.90.0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E0
	61.03	남성용이나 소년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		
5127	6103.10.00	- 슈트	0%	E0
		- 앙상블(ensemble)		
5128	6103.22.00	- - 면으로 만든 것	0%	E0
5129	6103.23.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0%	E0
5130	6103.2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E0
		- 재킷과 블레이저(blazer)		
5131	6103.31.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	E0
5132	6103.32.00	- - 면으로 만든 것	0%	E0
5133	6103.33.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0%	E0
	6103.39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134	6103.39.10	- - - 라미(ramie)·린넨(linen)이나 실크로 만든 것	0%	E0
5135	6103.39.90	- - - 기타	0%	E0
		- 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 및 반바지(shorts)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5136	6103.41.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	E0
5137	6103.42.00	- - 면으로 만든 것	0%	E0
5138	6103.43.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25%	E0
5139	6103.4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E0
	61.04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		
		- 슈트		
5140	6104.13.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0%	E0
	6104.19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141	6104.19.20	- - - 면으로 만든 것	0%	E0
5142	6104.19.90	- - - 기타	0%	E0
		- 앙상블(ensemble)		
5143	6104.22.00	- - 면으로 만든 것	0%	E0
5144	6104.23.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0%	E0
5145	6104.2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E0
		- 재킷과 블레이저(blazer)		
5146	6104.31.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	E0
5147	6104.32.00	- - 면으로 만든 것	0%	E0
5148	6104.33.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0%	E0
5149	6104.3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E0
		- 드레스		
5150	6104.41.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	E0
5151	6104.42.00	- - 면으로 만든 것	0%	E0
5152	6104.43.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0%	E0
5153	6104.44.00	- -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5154	6104.4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E0
		- 스커트와 치마바지		
5155	6104.51.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	E0
5156	6104.52.00	- - 면으로 만든 것	0%	E0
5157	6104.53.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0%	E0
5158	6104.5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E0
		- 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 및 반바지(shorts)		
5159	6104.61.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	E0
5160	6104.62.00	- - 면으로 만든 것	0%	E0
5161	6104.63.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0%	E0
5162	6104.6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E0
	61.05	남성용이나 소년용 셔츠(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5163	6105.10.00	- 면으로 만든 것	5%	E0
	6105.2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5164	6105.20.1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5%	E0
5165	6105.20.20	- -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5%	E0
5166	6105.90.0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E0
	61.06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셔츠·셔츠블라우스(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5167	6106.10.00	- 면으로 만든 것	5%	E0
5168	6106.20.0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5%	E0
5169	6106.90.0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E0
	61.07	남성용이나 소년용 언더팬츠·브리프(brief)·나이트셔츠·파자마·목욕용 가운·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 언더팬츠와 브리프(brief)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5170	6107.11.00	- - 면으로 만든 것	5%	E10
5171	6107.12.00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5%	E7
5172	6107.1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E0
		- 나이트셔츠와 파자마		
5173	6107.21.00	- - 면으로 만든 것	5%	E10
5174	6107.22.00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5%	E10
5175	6107.2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E0
		- 기타		
5176	6107.91.00	- - 면으로 만든 것	5%	E10
5177	6107.9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E10
	61.08	여성용이나 소녀용 슬립·페티코트(petticoat)·브리프(brief)·팬티·나이트드레스·파자마·네그리제(negligee)·목욕용 가운·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 슬립과 페티코트(petticoat)		
5178	6108.11.00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5%	E10
	6108.19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179	6108.19.20	-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	E0
5180	6108.19.30	- - - 면으로 만든 것	5%	E10
5181	6108.19.40	- - - 견으로 만든 것	5%	E0
5182	6108.19.90	- - - 기타	0%	E0
		- 브리프(brief)와 팬티		
5183	6108.21.00	- - 면으로 만든 것	5%	E10
5184	6108.22.00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5%	E10
5185	6108.2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E0
		- 나이트드레스와 파자마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5186	6108.31.00	- - 면으로 만든 것	5%	E10
5187	6108.32.00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5%	E10
5188	6108.3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E0
		- 기타		
5189	6108.91.00	- - 면으로 만든 것	5%	E10
5190	6108.92.00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5%	E10
5191	6108.9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E0
	61.09	티셔츠·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09.10	- 면으로 만든 것		
5192	6109.10.10	- - 남성용이나 소년용	5%	E10
5193	6109.10.20	- - 여성용이나 소녀용	5%	E10
	6109.9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194	6109.90.10	- - 남성용이나 소년용[라미(ramie)·린넨(linen)이나 실크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5%	E0
5195	6109.90.20	- - 남성용이나 소년용(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5%	E7
5196	6109.90.30	- - 여성용이나 소녀용	5%	E7
	61.10	저지(jersey)·풀오버(pullover)·카디건(cardigan)·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5197	6110.11.00	- - 양모로 만든 것	0%	E0
5198	6110.12.00	- - 캐시미어 산양의 것	0%	E0
5199	6110.19.00	- - 기타	5%	E7
5200	6110.20.00	- 면으로 만든 것	5%	E10
5201	6110.30.0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5%	E10
5202	6110.90.0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E7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61.11	유아용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5203	6111.20.00	- 면으로 만든 것	0%	E0
5204	6111.30.00	- 합성섬유로 만든 것	0%	E0
	6111.9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205	6111.90.1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	E0
5206	6111.90.90	- - 기타	0%	E0
	61.12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 트랙슈트		
5207	6112.11.00	- - 면으로 만든 것	5%	E0
5208	6112.12.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5%	E0
5209	6112.1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E0
5210	6112.20.00	- 스키슈트	0%	E0
		- 남성용 또는 소년용의 수영복		
5211	6112.31.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5%	E0
5212	6112.3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E0
		- 여성용 또는 소녀용의 수영복		
	6112.41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5213	6112.41.10	- - - 유방절제술 수영복(유방수술 받은자용 수영복)	5%	E0
5214	6112.41.90	- - - 기타	5%	E0
	6112.49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215	6112.49.10	- - - 유방절제술 수영복(유방수술 받은자용 수영복)	5%	E0
5216	6112.49.90	- - - 기타	5%	E0
	61.13	의류(제 5903 호·제 5906 호·제 5907 호에 해당하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5217	6113.00.10	- 잠수복(웨트 슈트)	0%	E0
5218	6113.00.30	- 방화복	0%	E0
5219	6113.00.40	- 그 밖의 보호용 작업 의류	0%	E0
5220	6113.00.90	- 기타	0%	E0
	61.14	**그 밖의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5221	6114.20.00	- 면으로 만든 것	0%	E0
	6114.3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5222	6114.30.20	- - 방화복	0%	E0
5223	6114.30.90	- - 기타	0%	E0
	6114.9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224	6114.90.1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	E0
5225	6114.90.90	- - 기타	0%	E0
	61.15	**팬티호스(panty hose)·타이츠(tights)·스타킹과 그 밖의 양말류[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와 바닥을 대지 않은 신발류를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15.10	- 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		
5226	6115.10.10	- -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합성 섬유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0%	E0
5227	6115.10.90	- - 기타	25%	E0
		- 그 밖의 팬티호스(panty hose)와 타이츠(tights)		
5228	6115.21.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구성하는 단사가 67 데시텍스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0%	E0
5229	6115.22.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구성하는 단사가 67 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0%	E0
	6115.29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230	6115.29.10	- - - 면으로 만든 것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5231	6115.29.90	- - - 기타	0%	E0
	6115.30	- 그 밖의 여성용인 전길이(full-length)나 무릎길이(knee-length)의 양말(구성하는 단사가 67 데시텍스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5232	6115.30.10	- - 면으로 만든 것	0%	E0
5233	6115.30.90	- - 기타	0%	E0
		- 기타		
5234	6115.94.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	E0
5235	6115.95.00	- - 면으로 만든 것	0%	E0
5236	6115.96.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0%	E0
5237	6115.9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5%	E0
	61.16	**장갑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16.10	-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하거나 피복한 것		
5238	6116.10.10	- - 잠수부용 장갑	0%	E0
5239	6116.10.90	- - 기타	0%	E0
		- 기타		
5240	6116.91.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	E0
5241	6116.92.00	- - 면으로 만든 것	0%	E0
5242	6116.93.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0%	E0
5243	6116.9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E0
	61.17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부속품과 의류·의류부속품의 부분품**		
	6117.10	- 숄(shawl)·스카프·머플러·만틸라(mantilla)·베일(veil)과 이와 유사한 물품		
5244	6117.10.10	- - 면으로 만든 것	0%	E0
5245	6117.10.90	- - 기타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6117.80	- 그 밖의 부속품		
		- - 넥타이류		
5246	6117.80.11	-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	E0
5247	6117.80.19	- - - 기타	0%	E0
5248	6117.80.20	- - 손목 밴드·무릎 밴드나 발목 밴드	0%	E0
5249	6117.80.90	- - 기타	0%	E0
5250	6117.90.00	- 부분품	0%	E0
	62.01	남성용이나 소년용 오버코트(overcoat)·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록(cloak)·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윈드치터(wind-cheater)·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제 6203 호의 것은 제외한다)		
		- 오버코트(overcoat)·레인코트(raincoat)·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록(cloak)과 이와 유사한 의류		
5251	6201.11.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	E0
5252	6201.12.00	- - 면으로 만든 것	0%	E0
5253	6201.13.00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0%	E0
	6201.19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254	6201.19.10	- - - 견으로 만든 것	0%	E0
5255	6201.19.20	- - - 라미(ramie)로 만든 것	0%	E0
5256	6201.19.90	- - - 기타	0%	E0
		- 기타		
5257	6201.91.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	E0
5258	6201.92.00	- - 면으로 만든 것	0%	E0
5259	6201.93.00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0%	E0
	6201.99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260	6201.99.10	- - - 견으로 만든 것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5261	6201.99.20	- - - 라미(ramie)로 만든 것	0%	E0
5262	6201.99.90	- - - 기타	0%	E0
	62.02	여성용이나 소녀용 오버코트(overcoat)·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록(cloak)·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윈드치터(wind-cheater)·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제 6204 호의 것은 제외한다)		
		- 오버코트(overcoat)·레인코트(raincoat)·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록(cloak)과 이와 유사한 의류		
5263	6202.11.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0%	E0
5264	6202.12.00	- - 면으로 만든 것	0%	E0
5265	6202.13.00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0%	E0
	6202.19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266	6202.19.10	- - - 견으로 만든 것	0%	E0
5267	6202.19.20	- - - 라미(ramie)로 만든 것	0%	E0
5268	6202.19.90	- - - 기타	0%	E0
		- 기타		
5269	6202.91.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	E0
5270	6202.92.00	- - 면으로 만든 것	0%	E0
5271	6202.93.00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0%	E0
	6202.99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272	6202.99.10	- - - 견으로 만든 것	0%	E0
5273	6202.99.20	- - - 라미(ramie)로 만든 것	0%	E0
5274	6202.99.90	- - - 기타	0%	E0
	62.03	남성용이나 소년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 슈트		
5275	6203.11.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0%	E0
5276	6203.12.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0%	E0
	6203.19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 - 면으로 만든 것		
5277	6203.19.11	- - - - 전통바틱(batik)공정으로 날염한 것	0%	E0
5278	6203.19.19	- - - - 기타	0%	E0
		- - - 견으로 만든 것		
5279	6203.19.21	- - - - 전통바틱(batik)공정으로 날염한 것	0%	E0
5280	6203.19.29	- - - - 기타	0%	E0
5281	6203.19.90	- - - 기타	0%	E0
		- 앙상블(ensemble)		
	6203.22	- - 면으로 만든 것		
5282	6203.22.10	- - - 전통바틱(batik)공정으로 날염한 것	0%	E0
5283	6203.22.90	- - - 기타	0%	E0
5284	6203.23.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0%	E0
	6203.29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285	6203.29.10	-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	E0
5286	6203.29.90	- - - 기타	0%	E0
		- 재킷과 블레이저(blazer)		
5287	6203.31.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0%	E0
	6203.32	- - 면으로 만든 것		
5288	6203.32.10	- - - 전통바틱(batik)공정으로 날염한 것	23%	E15
5289	6203.32.90	- - - 기타	25%	EX
5290	6203.33.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5291	6203.3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E0
		- 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 및 반바지(shorts)		
5292	6203.41.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0%	E0
	6203.42	- - 면으로 만든 것		
5293	6203.42.10	- - - 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	0%	E0
5294	6203.42.90	- - - 기타	0%	E0
5295	6203.43.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0%	E0
	6203.49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296	6203.49.10	- - - 견으로 만든 것	0%	E0
5297	6203.49.90	- - - 기타	0%	E0
	62.04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		
		- 슈트		
5298	6204.11.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0%	E0
	6204.12	- - 면으로 만든 것		
5299	6204.12.10	- - - 전통바틱(batik)공정으로 날염한 것	0%	E0
5300	6204.12.90	- - - 기타	0%	E0
5301	6204.13.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0%	E0
	6204.19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 - 견으로 만든 것		
5302	6204.19.11	- - - - 전통바틱(batik)공정으로 날염한 것	0%	E0
5303	6204.19.19	- - - - 기타	0%	E0
5304	6204.19.90	- - - 기타	0%	E0
		- 앙상블(ensemble)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5305	6204.21.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	E0
	6204.22	- - 면으로 만든 것		
5306	6204.22.10	- - - 전통바틱(batik)공정으로 날염한 것	0%	E0
5307	6204.22.90	- - - 기타	0%	E0
5308	6204.23.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0%	E0
	6204.29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309	6204.29.10	- - - 견으로 만든 것	0%	E0
5310	6204.29.90	- - - 기타	0%	E0
		- 재킷과 블레이저(blazer)		
5311	6204.31.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0%	E0
	6204.32	- - 면으로 만든 것		
5312	6204.32.10	- - - 전통바틱(batik)공정으로 날염한 것	23%	E15
5313	6204.32.90	- - - 기타	25%	EX
5314	6204.33.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0%	E0
	6204.39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 - 견으로 만든 것		
5315	6204.39.11	- - - - 전통바틱(batik)공정으로 날염한 것	0%	E0
5316	6204.39.19	- - - - 기타	0%	E0
5317	6204.39.90	- - - 기타	0%	E0
		- 드레스		
5318	6204.41.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	E0
	6204.42	- - 면으로 만든 것		
5319	6204.42.10	- - - 전통바틱(batik)공정으로 날염한 것	0%	E0
5320	6204.42.90	- - - 기타	0%	E0
5321	6204.43.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0%	E0
5322	6204.44.00	- -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6204.49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323	6204.49.10	- - - 전통바틱(batik)공정으로 날염한 것	0%	E0
5324	6204.49.90	- - - 기타	0%	E0
		- 스커트와 치마바지		
5325	6204.51.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0%	E0
	6204.52	- - 면으로 만든 것		
5326	6204.52.10	- - - 전통바틱(batik)공정으로 날염한 것	0%	E0
5327	6204.52.90	- - - 기타	0%	E0
5328	6204.53.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0%	E0
	6204.59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329	6204.59.10	- - - 전통바틱(batik)공정으로 날염한 것	0%	E0
5330	6204.59.90	- - - 기타	0%	E0
		- 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 및 반바지(shorts)		
5331	6204.61.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0%	E0
5332	6204.62.00	- - 면으로 만든 것	25%	E15
5333	6204.63.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0%	E0
5334	6204.6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E0
	62.05	**남성용이나 소년용 셔츠**		
	6205.20	- 면으로 만든 것		
5335	6205.20.10	- - 전통바틱(batik)공정으로 날염한 것	5%	E10
5336	6205.20.20	- - 바롱 타갈로그	5%	E10
5337	6205.20.90	- - 기타	5%	E10
	6205.3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5338	6205.30.10	- - 바롱 타갈로그	5%	E7
5339	6205.30.90	- - 기타	5%	E7
	6205.9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5340	6205.90.1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	E0
		- - 기타		
5341	6205.90.91	- - - 전통바틱(batik)공정으로 날염한 것	0%	E0
5342	6205.90.92	- - - 바롱 타갈로그	0%	E0
5343	6205.90.99	- - - 기타	0%	E0
	62.06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셔츠·셔츠블라우스**		
	6206.10	-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5344	6206.10.10	- - 전통바틱(batik)공정으로 날염한 것	0%	E0
5345	6206.10.90	- - 기타	0%	E0
5346	6206.20.0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	E0
	6206.30	- 면으로 만든 것		
5347	6206.30.10	- - 전통바틱(batik)공정으로 날염한 것	5%	E7
5348	6206.30.90	- - 기타	5%	E10
5349	6206.40.0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5%	E7
5350	6206.90.0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E0
	62.07	**남성용이나 소년용 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언더팬츠·브리프(brief)·나이트셔츠·파자마·목욕용 가운·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		
		- 언더팬츠와 브리프(brief)		
5351	6207.11.00	- - 면으로 만든 것	0%	E0
5352	6207.1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E0
		- 나이트셔츠와 파자마		
	6207.21	- - 면으로 만든 것		
5353	6207.21.10	- - - 전통바틱(batik)공정으로 날염한 것	0%	E0
5354	6207.21.90	- - - 기타	0%	E0
5355	6207.22.00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0%	E0
	6207.29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5356	6207.29.10	- - - 견으로 만든 것	0%	E0
5357	6207.29.90	- - - 기타	0%	E0
		- 기타		
5358	6207.91.00	- - 면으로 만든 것	0%	E0
	6207.99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359	6207.99.10	-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0%	E0
5360	6207.99.90	- - - 기타	0%	E0
	62.08	여성용이나 소녀용 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슬립・페티코트(petticoat)・브리프(brief)・팬티・나이트드레스・파자마・네그리제(negligee)・목욕용 가운・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의류		
		- 슬립과 페티코트(petticoat)		
5361	6208.11.00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0%	E0
5362	6208.1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E0
		- 나이트드레스와 파자마		
	6208.21	- - 면으로 만든 것		
5363	6208.21.10	- - - 전통바틱(batik)공정으로 날염한 것	0%	E0
5364	6208.21.90	- - - 기타	0%	E0
5365	6208.22.00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0%	E0
	6208.29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366	6208.29.10	- - - 전통바틱(batik)공정으로 날염한 것	25%	E15
5367	6208.29.90	- - - 기타	25%	EX
		- 기타		
	6208.91	- - 면으로 만든 것		
5368	6208.91.10	- - - 전통바틱(batik)공정으로 날염한 것	0%	E0
5369	6208.91.90	- - - 기타	0%	E0
	6208.92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5370	6208.92.10	- - - 전통바틱(batik)공정으로 날염한 것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5371	6208.92.90	- - - 기타	0%	E0
	6208.99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372	6208.99.10	-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	E0
5373	6208.99.90	- - - 기타	0%	E0
	62.09	**유아용 의류와 그 부속품**		
	6209.20	- 면으로 만든 것		
5374	6209.20.30	- - 티셔츠・셔츠・파자마와 이들과 유사한 제품	0%	E0
5375	6209.20.40	- - 슈트・팬츠와 이들과 유사한 제품	0%	E0
5376	6209.20.90	- - 기타	0%	E0
	6209.30	- 합성섬유로 만든 것		
5377	6209.30.10	- - 슈트・팬츠와 이들과 유사한 제품	0%	E0
5378	6209.30.30	- - 티셔츠・셔츠・파자마와 이들과 유사한 제품	0%	E0
5379	6209.30.40	- - 의류 부속품	0%	E0
5380	6209.30.90	- - 기타	0%	E0
5381	6209.90.0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E0
	62.10	**의류(제 5602 호・제 5603 호・제 5903 호・제 5906 호・제 5907 호의 직물류의 제품으로 한정한다)**		
	6210.10	- 제 5602 호나 제 5603 호의 직물로 만든 것		
		- - 보호하는 작업 의류		
5382	6210.10.11	- - - 화학 물질, 방사능이나 방화용 의류	0%	E0
5383	6210.10.19	- - - 기타	0%	E0
5384	6210.10.90	- - 기타	0%	E0
	6210.20	- 그 밖의 의류(소호 제 6201.11 호부터 제 6201.19 호까지에 열거된 종류의 것으로 한정한다)		
5385	6210.20.20	- - 방화복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5386	6210.20.30	- - 화학 물질이나 방사능 보호용 의류	0%	E0
5387	6210.20.40	- - 그 밖의 보호용 작업 의류	0%	E0
5388	6210.20.90	- - 기타	0%	E0
	6210.30	- 그 밖의 의류(소호 제 6202.11 호부터 제 6202.19 호까지에 열거된 종류의 것으로 한정한다)		
5389	6210.30.20	- - 방화복	0%	E0
5390	6210.30.30	- - 화학 물질이나 방사능 보호용 의류	0%	E0
5391	6210.30.40	- - 그 밖의 보호용 작업 의류	0%	E0
5392	6210.30.90	- - 기타	0%	E0
	6210.40	- 그 밖의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		
5393	6210.40.10	- - 방화복	0%	E0
5394	6210.40.20	- - 화학 물질이나 방사능 보호용 의류	0%	E0
5395	6210.40.90	- - 기타	0%	E0
	6210.50	- 그 밖의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		
5396	6210.50.10	- - 방화복	0%	E0
5397	6210.50.20	- - 화학 물질이나 방사능 보호용 의류	0%	E0
5398	6210.50.90	- - 기타	0%	E0
	62.11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		
		- 수영복		
5399	6211.11.00	- - 남성용이나 소년용	5%	E0
5400	6211.12.00	- - 여성용이나 소녀용	5%	E0
5401	6211.20.00	- 스키슈트	0%	E0
		- 남성용이나 소년용 그 밖의 의류		
	6211.32	- - 면으로 만든 것		
5402	6211.32.10	- - - 펜싱이나 레슬링용 의류	5%	E0
5403	6211.32.20	- - - 순례자용 로브(에람)	5%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5404	6211.32.90	- - - 기타	5%	E0
	6211.33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5405	6211.33.10	- - - 펜싱이나 레슬링용 의류	0%	E0
5406	6211.33.20	- - - 방화복	0%	E0
5407	6211.33.30	- - - 화학 물질이나 방사능 보호용 의류	0%	E0
5408	6211.33.90	- - - 기타	0%	E0
	6211.39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409	6211.39.10	- - - 펜싱이나 레슬링용 의류	0%	E0
5410	6211.39.20	- - - 방화복	0%	E0
5411	6211.39.30	- - - 화학 물질이나 방사능 보호용 의류	0%	E0
5412	6211.39.90	- - - 기타	0%	E0
		- 그 밖의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		
	6211.42	- - 면으로 만든 것		
5413	6211.42.10	- - - 펜싱이나 레슬링용 의류	5%	E0
5414	6211.42.20	- - - 기도용 클록(cloak)	5%	E0
5415	6211.42.90	- - - 기타	5%	E0
	6211.43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5416	6211.43.10	- - - 외과용 가운	0%	E0
5417	6211.43.20	- - - 기도용 클록(cloak)	5%	E0
5418	6211.43.30	- - - 방폭 보호 슈트	5%	E0
5419	6211.43.40	- - - 펜싱이나 레슬링용 의류	5%	E0
5420	6211.43.50	- - - 화학 물질, 방사능이나 방화용 의류	5%	E0
5421	6211.43.60	- - - 비행사용 작업복	0%	E0
5422	6211.43.90	- - - 기타	5%	E0
	6211.49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423	6211.49.10	- - - 펜싱이나 레슬링용 의류	0%	E0
5424	6211.49.20	- - - 화학 물질, 방사능이나 방화용 의류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 - - 기도용 클록(cloak)		
5425	6211.49.31	- -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5%	E0
5426	6211.49.39	- - - - 기타	5%	E0
5427	6211.49.40	- - - 기타(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5%	E0
5428	6211.49.90	- - - 기타	0%	E0
	62.12	**브래지어·거들·코르셋(corset)·브레이스(braces)·서스펜더(suspender)·가터(garter)와 이와 유사한 제품, 이들의 부분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인지에 상관없다)**		
	6212.10	- 브래지어		
		- - 면으로 만든 것		
5429	6212.10.11	- - - 유방절제술 브라(유방수술 받은자용 브라)	5%	E0
5430	6212.10.19	- - - 기타	5%	E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431	6212.10.91	- - - 유방절제술 브라(유방수술 받은자용 브라)	5%	E0
5432	6212.10.99	- - - 기타	5%	E0
	6212.20	- 거들과 팬티거들		
5433	6212.20.10	- - 면으로 만든 것	5%	E0
5434	6212.20.9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E0
	6212.30	- 코르슬렛(corselette)		
5435	6212.30.10	- - 면으로 만든 것	5%	E0
5436	6212.30.9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E0
	6212.90	- 기타		
		- - 면으로 만든 것		
5437	6212.90.11	- - - 상흔 조직과 피부 이식 처리용 압박	5%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복		
5438	6212.90.12	- - - 애슬레틱(athletic) 서포터(supporter)	5%	E0
5439	6212.90.19	- - - 기타	5%	E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440	6212.90.91	- - - 상흔 조직과 피부 이식 처리용 압박복	5%	E0
5441	6212.90.92	- - - 애슬레틱(athletic) 서포터(supporter)	5%	E0
5442	6212.90.99	- - - 기타	5%	E0
	62.13	**손수건**		
	6213.20	- 면으로 만든 것		
5443	6213.20.10	- - 전통바틱(batik)공정으로 날염한 것	0%	E0
5444	6213.20.90	- - 기타	0%	E0
	6213.9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5445	6213.90.11	- - - 전통바틱(batik)공정으로 날염한 것	0%	E0
5446	6213.90.19	- - - 기타	0%	E0
		- - 기타		
5447	6213.90.91	- - - 전통바틱(batik)공정으로 날염한 것	0%	E0
5448	6213.90.99	- - - 기타	0%	E0
	62.14	**숄(shawl)·스카프·머플러·만틸라(mantilla)·베일(veil)과 이와 유사한 물품**		
	6214.10	-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5449	6214.10.10	- - 전통바틱(batik)공정으로 날염한 것	8%	E0
5450	6214.10.90	- - 기타	8%	E0
5451	6214.20.0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	E0
	6214.30	- 합성섬유로 만든 것		
5452	6214.30.10	- - 전통바틱(batik)공정으로 날염한 것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5453	6214.30.90	- - 기타	0%	E0
	6214.40	-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5454	6214.40.10	- - 전통바틱(batik)공정으로 날염한 것	0%	E0
5455	6214.40.90	- - 기타	0%	E0
	6214.9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456	6214.90.10	- - 전통바틱(batik)공정으로 날염한 것	0%	E0
5457	6214.90.90	- - 기타	0%	E0
	62.15	**넥타이류**		
	6215.10	-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5458	6215.10.10	- - 전통바틱(batik)공정으로 날염한 것	0%	E0
5459	6215.10.90	- - 기타	0%	E0
	6215.2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5460	6215.20.10	- - 전통바틱(batik)공정으로 날염한 것	0%	E0
5461	6215.20.90	- - 기타	0%	E0
	6215.9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462	6215.90.10	- - 전통바틱(batik)공정으로 날염한 것	0%	E0
5463	6215.90.90	- - 기타	0%	E0
	62.16	**장갑류**		
5464	6216.00.10	- 보호용 작업 장갑, 벙어리장갑	8%	E0
		- 기타		
5465	6216.00.91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8%	E0
5466	6216.00.92	- - 면으로 만든 것	8%	E0
5467	6216.00.99	- - 기타	8%	E0
	62.17	**그 밖의 제품으로 된 의류부속품, 의류·의류부속품의 부분품(제 6212 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6217.10	- 부속품		
5468	6217.10.10	- - 유도 밸트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5469	6217.10.90	- - 기타	0%	E0
5470	6217.90.00	- 부분품	0%	E0
		제 1 절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그 밖의 물품		
	63.01	**모포류와 여행용 러그(rug)**		
5471	6301.10.00	- 전기모포	0%	E0
5472	6301.20.0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모포(전기모포는 제외한다)와 여행용 러그(rug)	0%	E0
	6301.30	- 면으로 만든 모포(전기모포는 제외한다)와 여행용 러그(rug)		
5473	6301.30.10	- - 전통바틱(batik)공정으로 날염한 것	0%	E0
5474	6301.30.90	- - 기타	0%	E0
	6301.40	- 합성 섬유로 만든 모포(전기모포는 제외한다)와 여행용 러그(rug)		
5475	6301.40.10	- - 부직포로 만든 것	0%	E0
5476	6301.40.90	- - 기타	0%	E0
	6301.90	- 그 밖의 모포와 여행용 러그(rug)		
5477	6301.90.10	- - 부직포로 만든 것	0%	E0
5478	6301.90.90	- - 기타	0%	E0
	63.02	**베드린넨(bed linen)·테이블린넨(table linen)·토일렛린넨(toilet linen)·주방린넨(kitchen linen)**		
5479	6302.10.00	- 베드린넨(bed linen)(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0%	E0
		- 그 밖의 베드린넨(bed linen)(날염된 것으로 한정한다)		
5480	6302.21.00	- - 면으로 만든 것	0%	E0
	6302.22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5481	6302.22.10	- - - 부직포로 만든 것	0%	E0
5482	6302.22.90	- - - 기타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5483	6302.2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E0
		- 그 밖의 베드린넨(bed linen)		
5484	6302.31.00	- - 면으로 만든 것	0%	E0
	6302.32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5485	6302.32.10	- - - 부직포로 만든 것	0%	E0
5486	6302.32.90	- - - 기타	0%	E0
5487	6302.3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E0
5488	6302.40.00	- 테이블린넨(table linen)(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0%	E0
		- 그 밖의 테이블린넨(table linen)		
	6302.51	- - 면으로 만든 것		
5489	6302.51.10	- - - 전통바틱(batik)공정으로 날염한 것	0%	E0
5490	6302.51.90	- - - 기타	0%	E0
5491	6302.53.00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0%	E0
	6302.59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492	6302.59.10	- - - 아마의 것	0%	E0
5493	6302.59.90	- - - 기타	0%	E0
5494	6302.60.00	- 면으로 만든 토일렛린넨(toilet linen)과 주방린넨(kitchen linen)[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나 이와 유사한 테리(terry)직물의 것으로 한정한다]	0%	E0
		- 기타		
5495	6302.91.00	- - 면으로 만든 것	0%	E0
5496	6302.93.00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0%	E0
	6302.99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497	6302.99.10	- - - 아마의 것	0%	E0
5498	6302.99.90	- - - 기타	0%	E0
	63.03	커튼[드레이프(drape)를 포함한다]·실내용 블라인드(blind), 커튼이나 침대용 밸런스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valance)		
		-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5499	6303.12.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0%	E0
	6303.19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500	6303.19.10	- - - 면으로 만든 것	0%	E0
5501	6303.19.90	- - - 기타	0%	E0
		- 기타		
5502	6303.91.00	- - 면으로 만든 것	0%	E0
5503	6303.92.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0%	E0
5504	6303.9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E0
	63.04	그 밖의 실내용품(제 9404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 침대덮개		
5505	6304.11.00	- -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0%	E0
	6304.19	- - 기타		
5506	6304.19.10	- - - 면으로 만든 것	0%	E0
5507	6304.19.20	- - - 기타(부직포)	0%	E0
5508	6304.19.90	- - - 기타	0%	E0
5509	6304.20.00	- 베드 네트(이 류의 소호주 제 1 호에 규정된 것으로 한정한다)	0%	E0
		- 기타		
	6304.91	- -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		
5510	6304.91.10	- - - 모기장	0%	E0
5511	6304.91.90	- - - 기타	0%	E0
5512	6304.92.00	- - 면으로 만든 것(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0%	E0
5513	6304.93.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5514	6304.9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0%	E0
	63.05	**포장용 빈 포대**		
	6305.10	- 황마나 제5303호의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靭皮)섬유로 만든 것		
		- - 신품		
5515	6305.10.11	- - - 황마사로 만든 것	0%	E0
5516	6305.10.19	- - - 기타	0%	E0
		- - 중고품		
5517	6305.10.21	- - - 황마사로 만든 것	0%	E0
5518	6305.10.29	- - - 기타	0%	E0
5519	6305.20.00	- 면으로 만든 것	0%	E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6305.32	- - 중간 벌크컨테이너(신축성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5520	6305.32.10	- - - 부직포	0%	E0
5521	6305.32.20	- - -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0%	E0
5522	6305.32.90	- - - 기타	0%	E0
	6305.33	- - 기타[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 스트립(strip)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5523	6305.33.10	- - -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0%	E0
5524	6305.33.20	- - - 스트립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직물로 만든 것	0%	E0
5525	6305.33.90	- - - 기타	0%	E0
	6305.39	- - 기타		
5526	6305.39.10	- - - 부직포	0%	E0
5527	6305.39.20	- - -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0%	E0
5528	6305.39.90	- - - 기타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6305.9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529	6305.90.10	- - 제 5305 호의 대마로 만든 것	0%	E0
5530	6305.90.20	- - 제 5305 호의 코코넛(코이어)으로 만든 것	0%	E0
5531	6305.90.90	- - 기타	0%	E0
	63.06	**방수포(tarpaulin)·차양·차일, 텐트, 돛[보트용·세일보드(sailboard)용·랜드크래프트(landcraft)용], 캠프용품**		
		- 방수포(tarpaulin)·천막 및 차양		
5532	6306.12.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0%	E0
	6306.19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533	6306.19.10	- - - 제 5305 호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E0
5534	6306.19.20	- - - 면으로 만든 것	0%	E0
5535	6306.19.90	- - - 기타	0%	E0
		- 텐트		
5536	6306.22.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0%	E0
	6306.29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537	6306.29.10	- - - 면으로 만든 것	0%	E0
5538	6306.29.90	- - - 기타	0%	E0
5539	6306.30.00	- 돛	0%	E0
	6306.40	- 압축공기식 매트리스(mattress)		
5540	6306.40.10	- - 면으로 만든 것	0%	E0
5541	6306.40.90	- - 기타	0%	E0
	6306.90	- 기타		
5542	6306.90.10	- - 부직포로 만든 것	0%	E0
		- - 기타		
5543	6306.90.91	- - - 면으로 만든 것	0%	E0
5544	6306.90.99	- - - 기타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63.07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		
	6307.10	- 마루닦이포·접시닦이포·더스터(duster)와 이와 유사한 청소용 포		
5545	6307.10.10	- - 부직포(펠트는 제외한다)	0%	E0
5546	6307.10.20	- - 펠트로 만든 것	0%	E0
5547	6307.10.90	- - 기타	0%	E0
5548	6307.20.00	- 구명재킷과 구명벨트	0%	E0
	6307.90	- 기타		
5549	6307.90.30	- - 우산 커버(삼각형 형태로 사전에 자른 것으로 한정한다)	0%	E0
5550	6307.90.40	- - 외과용 마스크	0%	E0
		- - 안전 장구		
5551	6307.90.61	- - - 산업용으로 적합한 것	0%	E0
5552	6307.90.69	- - - 기타	0%	E0
5553	6307.90.70	- - 팬과 핸드스크린	0%	E0
5554	6307.90.80	- - 신발,부츠,코르셋과 이와 유사한 제품의 레이스	0%	E0
5555	6307.90.90	- - 기타	0%	E0
		제 2 절 세트		
5556	6308.00.00	러그(rug)용·태피스트리(tapestry)용·자수한 테이블보용 또는 서비에트(serviette)용이나 이와 유사한 방직용 섬유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직물 및 실로 구성된 세트(부속품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	E0
		제 3 절 사용하던 의류·방직용 섬유제품, 넝마		
5557	6309.00.00	사용하던 의류와 그 밖의 사용하던 물품	0%	E0
	63.10	넝마(사용하던 것이나 신품으로 한정한다),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의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스크랩(scrap),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 제품의 폐품(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6310.10	- 선별한 것		
5558	6310.10.10	- - 넝마(사용하던 것이나 신품으로 한정한다)	0%	E0
5559	6310.10.90	- - 기타	0%	E0
	6310.90	- 기타		
5560	6310.90.10	- - 넝마(사용하던 것이나 신품으로 한정한다)	0%	E0
5561	6310.90.90	- - 기타	0%	E0
	64.01	**방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갑피(甲皮)를 바닥에 스티칭(stitching)·리베팅(riveting)·네일링(nailing)·스크루잉(screwing)·플러깅(plugging)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부착하거나 조립한 것은 제외한다]**		
5562	6401.10.00	- 보호용 금속 토캡(toe-cap)을 넣은 신발	0%	E0
		- 그 밖의 신발		
5563	6401.92.00	- - 발목을 덮는 것(무릎을 덮는 것은 제외한다)	0%	E0
	6401.99	- - 기타		
5564	6401.99.10	- - - 무릎을 덮는 것	0%	E0
5565	6401.99.90	- - - 기타	0%	E0
	64.02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 스포츠용 신발류		
5566	6402.12.00	- - 스키부츠·크로스컨트리스키화 및 스노보드부츠	0%	E0
	6402.19	- - 기타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5567	6402.19.10	- - - 레슬링 화	0%	E0
5568	6402.19.90	- - - 기타	0%	E0
5569	6402.20.00	- 신발[갑피(甲皮)끈을 플러그(plug) 삽입식으로 바닥에 조립한 것으로 한정한다]	0%	E0
		- 그 밖의 신발		
	6402.91	- - 발목을 덮는 것		
5570	6402.91.10	- - - 잠수 부츠	0%	E0
		- - - 기타		
5571	6402.91.91	- - - - 보호용 금속 토캡(toe-cap)을 넣은 것	0%	E0
5572	6402.91.99	- - - - 기타	0%	E0
	6402.99	- - 기타		
5573	6402.99.10	- - - 보호용 금속 토캡(toe-cap)을 넣은 것	0%	E0
5574	6402.99.90	- - - 기타	0%	E0
	64.03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 스포츠용 신발류		
5575	6403.12.00	- - 스키부츠·크로스컨트리스키화 및 스노보드부츠	0%	E0
	6403.19	- - 기타		
5576	6403.19.10	- - - 스파이크스·징이나 이와 유사한 것을 붙인 것	0%	E0
5577	6403.19.20	- - - 승마용 부츠, 볼링화	0%	E0
5578	6403.19.30	- - - 레슬링화·역도화나 체조화	0%	E0
5579	6403.19.90	- - - 기타	0%	E0
5580	6403.20.00	- 신발류[바깥 바닥을 가죽으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발등과 엄지발가락의 주위를 감싸는 가죽끈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5581	6403.40.00	- 그 밖의 신발류[보호용 금속 토캡(toe-cap)을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0%	E0
		-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을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5582	6403.51.00	- - 발목을 덮는 것	0%	E0
	6403.59	- - 기타		
5583	6403.59.10	- - - 볼링화	0%	E0
5584	6403.59.90	- - - 기타	0%	E0
		- 그 밖의 신발류		
	6403.91	- - 발목을 덮는 것		
5585	6403.91.10	- - - 나무재질의 신발류[안창이나 보호용 금속 토캡(toe-cap)을 넣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E0
5586	6403.91.20	- - - 승마용 부츠	0%	E0
5587	6403.91.90	- - - 기타	0%	E0
	6403.99	- - 기타		
5588	6403.99.10	- - - 나무재질의 신발류[안창이나 보호용 금속 토캡(toe-cap)을 넣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E0
5589	6403.99.20	- - - 볼링화	0%	E0
5590	6403.99.90	- - - 기타	0%	E0
	64.04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6404.11	- - 스포츠용 신발류, 테니스화·농구화·체조화·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		
5591	6404.11.10	- - - 스파이크스·징이나 이와 유사한 것을 붙인 것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5592	6404.11.20	- - - 레슬링화·역도화나 체조화	0%	E0
5593	6404.11.90	- - - 기타	0%	E0
5594	6404.19.00	- - 기타	0%	E0
5595	6404.20.00	- 신발류[바깥 바닥을 가죽이나 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0%	E0
	64.05	**그 밖의 신발류**		
5596	6405.10.00	- 갑피(甲皮)를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	0%	E0
5597	6405.20.00	-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0%	E0
5598	6405.90.00	- 기타	0%	E0
	64.06	**신발류 부분품[갑피(甲皮)(바깥 바닥을 제외한 바닥에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포함한다], 갈아 끼울 수 있는 안창과 힐쿠션(heel cushion)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 각반·레깅스나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6406.10	- 갑피(甲皮)와 그 부분품(보강재는 제외한다)		
5599	6406.10.10	- - 금속 토캡(toe-cap)	0%	E0
5600	6406.10.90	- - 기타	0%	E0
	6406.20	- 바깥 바닥과 뒷굽(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5601	6406.20.10	- - 고무로 만든 것	0%	E0
5602	6406.20.20	- -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0%	E0
	6406.90	- 기타		
5603	6406.90.10	- - 목재로 만든 것	0%	E0
		- - 금속으로 만든 것		
5604	6406.90.21	- - - 철강으로 만든 것	0%	E0
5605	6406.90.22	- - - 구리로 만든 것	0%	E0
5606	6406.90.23	- - -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5607	6406.90.29	- - - 기타	0%	E0
		- -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5608	6406.90.31	- - - 안창	0%	E0
5609	6406.90.32	- - - 완전한 창	0%	E0
5610	6406.90.33	- - - 기타(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0%	E0
5611	6406.90.39	- - - 기타	0%	E0
		- - 기타		
5612	6406.90.91	- - - 각반·레깅스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0%	E0
5613	6406.90.99	- - - 기타	0%	E0
5614	6501.00.00	모체(hat-form)[펠트(felt)로 만든 성형하지 않은 것으로서 차양을 붙이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펠트(felt)로 만든 플래토우(plateaux)와 망숀(manchon)[슬릿망숀(slit manchon)을 포함한다]	0%	E0
5615	6502.00.00	모체(hat-shape)[각종 재료로 만든 스트립(strip)을 엮거나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서 미성형인 것, 차양을 붙이지 않은 것, 안을 대지 않거나 장식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E0
5616	6504.00.00	모자[각종 재료로 만든 스트립(strip)을 엮거나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안을 댄 것인지 또는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E10
	65.05	모자[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것과 원단 상태(스트립 모양은 제외한다)인 레이스·펠트(felt)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안을 댄 것인지 또는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재료로 만든 헤어네트(hair-net)(안을 대거나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617	6505.00.10	- 종교용 모자	0%	E0
5618	6505.00.20	- 헤어네트	5%	E1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5619	6505.00.90	- 기타	0%	E0
	65.06	**그 밖의 모자(안을 댄 것인지 또는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6506.10	- 안전모자		
5620	6506.10.10	- - 모터사이클 헬멧	0%	E0
5621	6506.10.20	- - 산업 안전 헬멧과 소방관 헬멧(철강 헬멧은 제외한다)	0%	E0
5622	6506.10.30	- - 철강 헬멧	0%	E0
5623	6506.10.40	- - 수구용 헤드기어	0%	E0
5624	6506.10.90	- - 기타	0%	E0
		- 기타		
5625	6506.91.00	- -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0%	E0
	6506.99	- -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5626	6506.99.10	- - - 모피로 만든 것	0%	E0
5627	6506.99.90	- - - 기타	0%	E0
5628	**6507.00.00**	**헤드밴드·내장재·커버·모자의 파운데이션(foundation)·모자의 프레임(frame)·챙 및 턱끈**	0%	E0
	66.01	**산류(傘類)[지팡이 겸용 우산·정원용 산류(傘類)와 이와 유사한 산류(傘類)를 포함한다]**		
5629	6601.10.00	- 정원용 산류(傘類)나 이와 유사한 산류(傘類)	0%	E0
		- 기타		
5630	6601.91.00	- - 대가 절첩식(折疊式)인 것	0%	E0
5631	6601.99.00	- - 기타	0%	E0
5632	**6602.00.00**	**지팡이·시트스틱(seatstick)·채찍·승마용 채찍과 이와 유사한 물품**	0%	E0
	66.03	**제 6601 호나 제 6602 호의 물품의 부분품·트리밍(trimming)·부속품**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5633	6603.20.00	- 산류(傘類)의 틀(대에 부착된 틀을 포함한다)	0%	E0
	6603.90	- 기타		
5634	6603.90.10	- - 제 6601 호의 제품용	0%	E0
5635	6603.90.20	- - 제 6602 호의 제품용	0%	E0
5636	6701.00.00	새의 깃털이나 솜털이 붙은 가죽과 그 밖의 부분·깃털과 그 부분·솜털과 이들의 제품[제 0505 호의 물품과 가공한 깃대(scape) 및 깃촉(quill)은 제외한다]	0%	E0
	67.02	인조 꽃·잎·과실과 이들의 부분품, 인조 꽃·잎·과실로 만든 제품		
5637	6702.10.00	-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5%	E0
	6702.90	-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5638	6702.90.10	- - 종이로 만든 것	5%	E0
5639	6702.90.20	- -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5%	E0
5640	6702.90.90	- - 기타	5%	E0
5641	6703.00.00	사람 머리카락(정돈·표백이나 그 밖의 가공을 한 것으로 한정한다), 가발이나 이와 유사한 것을 제조하기 위한 양모나 그 밖의 동물의 털이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재료	0%	E0
	67.04	가발·가수염·눈썹·속눈썹·스위치와 이와 유사한 것(사람 머리카락·동물의 털·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합성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5642	6704.11.00	- - 전체가발	5%	E0
5643	6704.19.00	- - 기타	5%	E0
5644	6704.20.00	- 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든 것	5%	E0
5645	6704.90.00	-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5%	E0
5646	6801.00.00	포석·연석 및 판석[천연 석재로 한정하며, 슬레이트(slate)는 제외한다]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68.02	가공한 석비용·건축용 석재[슬레이트(slate)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제품(제68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천연 석재의 것으로서 슬레이트(slate) 제품을 포함하며, 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인공적으로 착색한 천연 석재[슬레이트(slate)를 포함한다]의 알갱이·조각·가루		
5647	6802.10.00	- 타일·큐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사각형인지에 상관없으며 최대 표면적이 한 변이 7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로 한정한다), 인공적으로 착색한 알갱이·조각과 가루	0%	E0
		- 그 밖의 석비용 또는 건축용 석재와 이들의 제품(단순히 평판 모양이나 수평 모양으로 절단하였거나 톱질한 것으로 한정한다)		
5648	6802.21.00	- - 대리석·트래버틴(travertine) 및 설화석고(alabaster)	0%	E0
5649	6802.23.00	- - 화강암	0%	E0
	6802.29	- - 그 밖의 돌		
5650	6802.29.10	- - - 그 밖의 석회질 암석	0%	E0
5651	6802.29.90	- - - 기타	0%	E0
		- 기타		
	6802.91	- - 대리석·트래버틴(travertine)·설화석고(alabaster)		
5652	6802.91.10	- - - 대리석	0%	E0
5653	6802.91.90	- - - 기타	0%	E0
5654	6802.92.00	- - 그 밖의 석회질 암석	0%	E0
	6802.93	- - 화강암		
5655	6802.93.10	- - - 연마한 슬래브	0%	E0
5656	6802.93.90	- - - 기타	0%	E0
5657	6802.99.00	- - 그 밖의 돌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5658	6803.00.00	가공한 슬레이트(slate)와 슬레이트(slate) 제품 또는 응결 슬레이트(slate)의 제품	0%	E0
	68.04	밀스톤(millstone)·그라인드스톤(grindstone)·그라인딩휠(grinding wheel)과 이와 유사한 것(연마용·벼리기용·광택용·정형용·절단용인 것으로서 프레임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수지석(手砥石)과 이들의 부분품[천연석, 응결시킨 천연·인조의 연마재료로 만든 것이나 도자(陶瓷)제의 것으로 한정하며, 그 밖의 재료로 만든 부분품이 부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5659	6804.10.00	- 밀스톤(millstone)과 그라인드스톤(grindstone)[밀링(milling)용·그라인딩(grinding)용 또는 펄핑(pulping)용으로 한정한다]	0%	E0
		- 그 밖의 밀스톤(millstone)·그라인드스톤(grindstone)·그라인딩휠(grinding wheel)과 이와 유사한 것		
5660	6804.21.00	- - 합성 또는 천연 다이아몬드로 만든 것(응결된 것으로 한정한다)	0%	E0
5661	6804.22.00	- - 그 밖의 연마재료로 만든 것(응결된 것으로 한정한다)이나 도자제의 것	0%	E0
5662	6804.23.00	- - 천연석으로 만든 것	0%	E0
5663	6804.30.00	- 수지석(手砥石)	0%	E0
	68.05	천연·인조의 연마용 가루나 알갱이를 방직용 섬유재료·종이·판지나 그 밖의 재료에 부착한 물품(특정한 모양으로 절단·봉합한 것인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만든 제품인지에 상관없다)		
5664	6805.10.00	- 방직용 섬유의 직물만을 기본 재료로 한 것	0%	E0
5665	6805.20.00	- 종이나 판지만을 기본 재료로 한 것	0%	E0
5666	6805.30.00	- 그 밖의 재료를 기본 재료로 한 것	0%	E0
	68.06	슬래그 울(slag wool)·암면(rock wool)과 이와 유사한 광물성 울, 박리한 버미큘라이트(vermiculite)·팽창점토·다포슬래그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slag)와 이와 유사하게 팽창하는 광물성 재료, 단열용·방음용·흡음용 광물성 재료의 혼합물과 그 제품(제 6811 호·제 6812 호나 제 69 류의 것은 제외한다)		
5667	6806.10.00	- 슬래그 울(slag wool)·암면(rock wool)과 이와 유사한 광물성 울[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하며 벌크 모양·시트(sheet) 모양 또는 롤 모양으로 한정한다]	0%	E0
5668	6806.20.00	- 박리한 버미큘라이트(vermiculite)·팽창 점토·다포슬래그(slag)와 이와 유사하게 팽창하는 광물성 재료(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0%	E0
5669	6806.90.00	- 기타	0%	E0
	68.07	아스팔트 제품이나 이와 유사한 재료[예: 석유역청이나 콜타르 피치(coal tar pitch)]의 제품		
5670	6807.10.00	- 롤 모양인 것	0%	E0
	6807.90	- 기타		
5671	6807.90.10	- - 타일	0%	E0
5672	6807.90.90	- - 기타	0%	E0
	68.08	패널·보드·타일·블록과 이와 유사한 물품[식물성 섬유·짚·목재의 대팻밥·칩·파티클(particle)·톱밥이나 그 밖의 웨이스트(waste)를 시멘트·플라스터(plaster)나 그 밖의 광물성 결합재로 응결시킨 것으로 한정한다]		
5673	6808.00.20	- 기와(지붕타일)	0%	E0
5674	6808.00.30	- 패널·보드·블록과 이와 유사한 물품	0%	E0
5675	6808.00.90	- 기타	0%	E0
	68.09	플라스터(plaster) 제품이나 플라스터(plaster)를 기본 재료로 조합한 제품		
		- 보드·시트(sheet)·패널·타일과 이와 유사한 제품(장식한 것은 제외한다)		
5676	6809.11.00	- - 종이나 판지만을 입혔거나 보강한 것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6809.19	- - 기타		
5677	6809.19.10	- - - 타일	0%	E0
5678	6809.19.90	- - - 기타	0%	E0
	6809.90	- 그 밖의 제품		
5679	6809.90.10	- - 플라스터(plaster)로 만든 치아 주형	0%	E0
5680	6809.90.90	- - 기타	0%	E0
	68.10	**시멘트 제품·콘크리트 제품·인조석 제품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타일·판석·벽돌과 이와 유사한 제품		
5681	6810.11.00	- - 건축용 블록과 벽돌	0%	E0
	6810.19	- - 기타		
5682	6810.19.10	- - - 타일	0%	E0
5683	6810.19.90	- - - 기타	0%	E0
		- 그 밖의 제품		
5684	6810.91.00	- - 조립식 건축자재(건축용이나 토목 공사용으로 한정한다)	0%	E0
5685	6810.99.00	- - 기타	0%	E0
	68.11	**석면시멘트 제품·셀룰로오스파이버시멘트 제품이나 이와 유사한 것**		
	6811.40	- 석면을 함유한 것		
5686	6811.40.10	- - 물결 모양의 시트(sheet)	0%	E0
		- - 그 밖의 시트(sheet)·패널·타일과 이와 유사한 제품		
5687	6811.40.21	- - - 플라스틱을 함유한 바닥이나 벽 타일	0%	E0
5688	6811.40.22	- - - 지붕, 외장이나 파티셔닝용	0%	E0
5689	6811.40.29	- - - 기타	0%	E0
5690	6811.40.30	- - 관이나 파이프	0%	E0
5691	6811.40.40	- - 관(管) 연결구류	0%	E0
5692	6811.40.50	- - 그 밖의 제품(건물 건설용으로 한정한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다)		
5693	6811.40.90	- - 기타	0%	E0
		- 석면을 함유하지 않은 것		
5694	6811.81.00	- - 물결 모양의 시트(sheet)	0%	E0
	6811.82	- - 그 밖의 시트(sheet)·패널·타일과 이와 유사한 제품		
5695	6811.82.10	- - - 플라스틱을 함유한 바닥이나 벽 타일	0%	E0
5696	6811.82.20	- - - 지붕, 외장이나 파티셔닝용	0%	E0
5697	6811.82.90	- - - 기타	0%	E0
	6811.89	- - 그 밖의 제품		
5698	6811.89.10	- - - 관이나 파이프	0%	E0
5699	6811.89.20	- - - 관(管) 연결구류	0%	E0
5700	6811.89.30	- - - 그 밖의 제품(건물 건설용으로 한정한다)	0%	E0
5701	6811.89.90	- - - 기타	0%	E0
	68.12	**가공한 석면섬유, 석면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 석면과 탄산마그네슘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 그 혼합물들의 제품, 석면제품[예: 석면의 실·직물·의류·모자·신발·개스킷(gasket)](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6811호와 제6813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6812.80	- 청석면의 것		
5702	6812.80.20	- - 의류	0%	E0
5703	6812.80.30	- - 종이·표지용 판지 및 펠트(felt)	0%	E0
5704	6812.80.40	- - 바닥이나 벽 타일	0%	E0
5705	6812.80.50	- - 의류 부속품·신발과 모자류, 가공한 청석면 섬유, 청석면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 또는 청석면과 탄산마그네슘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 사와 실, 코드와 줄(엮은 것인지에 상관없다), 직물이나 메리야스 편물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5706	6812.80.90	- - 기타	0%	E0
		- 기타		
	6812.91	- - 의류·의류 부속품·신발·모자류		
5707	6812.91.10	- - - 의류	0%	E0
5708	6812.91.90	- - - 기타	0%	E0
5709	6812.92.00	- - 종이·표지용 판지 및 펠트(felt)	0%	E0
5710	6812.93.00	- - 압축가공한 시트(sheet) 모양이나 롤 모양인 석면섬유 조인팅(jointing)	0%	E0
	6812.99	- - 기타		
		- - - 가공한 석면섬유(청석면은 제외한다), 석면(청석면은 제외한다)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이나 석면(청석면은 제외한다)과 탄산마그네슘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 사와 실, 코드와 줄(엮은 것인지에 상관없다), 직물이나 메리야스 편물		
5711	6812.99.11	- - - - 석면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이나 석면과 탄산마그네슘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제 6813 호의 물품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E0
5712	6812.99.19	- - - - 기타	0%	E0
5713	6812.99.20	- - - 바닥이나 벽 타일	0%	E0
5714	6812.99.90	- - - 기타	0%	E0
	68.13	**마찰 재료와 그 제품[예: 시트(sheet)·롤·스트립(strip)·세그먼트·디스크(disc)·와셔(washer)·패드](장착되지 않은 것으로서 브레이크용·클러치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의 석면·그 밖의 광물성 재료·셀룰로오스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하며, 직물이나 그 밖의 재료와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6813.20	- 석면을 함유한 것		
5715	6813.20.10	- - 브레이크 라이닝과 패드	0%	E0
5716	6813.20.90	- - 기타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 석면을 함유하지 않은 것		
5717	6813.81.00	- - 브레이크 라이닝과 패드	0%	E0
5718	6813.89.00	- - 기타	0%	E0
	68.14	**운모(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와 운모의 제품(응결시키거나 재생한 운모를 포함하며 종이·판지나 그 밖의 재료로 된 지지물에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719	6814.10.00	- 판·시트(sheet) 및 스트립(strip)(응결시키거나 재생한 운모의 것으로 한정하며 지지물에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	E0
5720	6814.90.00	- 기타	0%	E0
	68.15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탄소섬유의 제품·이탄(泥炭)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6815.10	- 비(非)전기용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제품		
5721	6815.10.10	- - 사(yarn)나 실	0%	E0
5722	6815.10.20	- - 벽돌·포장용 평판·바닥 타일 및 이와 유사한 제품	0%	E0
		- - 기타		
5723	6815.10.91	- - - 카본섬유	0%	E0
5724	6815.10.99	- - - 기타	0%	E0
5725	6815.20.00	- 이탄(泥炭)제품	0%	E0
		- 그 밖의 제품		
5726	6815.91.00	- - 마그네사이트·백운석 또는 크로마이트를 함유한 것	0%	E0
5727	6815.99.00	- - 기타	5%	E0
		제 1 절 규산질의 화석 가루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만든 제품과 내화제품		
5728	6901.00.00	**벽돌·블록·타일과 그 밖의 도자제품[규산질의 화석 가루(예: 규조토·트리폴리트 또**	5%	E5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는 다이어토마이트)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69.02	내화벽돌·내화블록·내화타일과 이와 유사한 건설용 내화 도자제품(규산질의 화석 가루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만든 제품은 제외한다)		
5729	6902.10.00	- 마그네슘·칼슘 또는 크로뮴원소를 산화마그네슘·산화칼슘 또는 산화크로뮴으로 표현하였을 때 하나 이상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	0%	E0
5730	6902.20.00	- 알루미나·실리카 또는 이들의 혼합물이나 화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	0%	E0
5731	6902.90.00	- 기타	0%	E0
	69.03	그 밖의 내화성 도자제품[예: 레토르트(retort)·도가니·머플·노즐·플러그·서포트·큐펠(cupel)·관(管)·쉬드(sheath)·막대(rod)](규산질의 화석 가루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만든 제품은 제외한다)		
5732	6903.10.00	-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 또는 이들 혼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	0%	E0
5733	6903.20.00	- 알루미나 또는 알루미나와 실리카의 혼합물이나 화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	0%	E0
5734	6903.90.00	- 기타	0%	E0
		제2절 그 밖의 도자제품		
	69.04	도자제의 건축용 벽돌·바닥깔개용 블록·서포트타일(support tile)·필러타일(filler tile)과 이와 유사한 것		
5735	6904.10.00	- 건축용 벽돌	0%	E0
5736	6904.90.00	- 기타	0%	E0
	69.05	기와·굴뚝통·굴뚝갓·굴뚝용 내장재·건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축용 장식품과 그 밖의 도자제의 건설용품		
5737	6905.10.00	- 기와(지붕타일)	0%	E0
5738	6905.90.00	- 기타	0%	E0
5739	**6906.00.00**	**도자제의 관(管)·도관(導管)·홈통과 관(管)의 연결구류**	0%	E0
	69.07	**도자제의 판석과 포장(鋪裝)용·노(爐)용·벽용 타일, 도자제의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피니싱 세라믹**		
		- 판석과 포장(鋪裝)용·노(爐)용·벽용 타일(소호 제 6907.30 호 및 제 6907.40 호의 것은 제외한다)		
	6907.21	- - 수분흡수계수가 중량기준으로 100 분의 0.5 이하인 것		
5740	6907.21.10	- - - 그라인딩밀용에 사용하는 라이닝 타일(유약을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E5
		- - - 기타(최대 표면적이 한 변이 7 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로 한정한다)		
5741	6907.21.21	- - - - 포장(鋪裝)용·노(爐)용 또는 벽용 타일(유약을 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E0
5742	6907.21.22	- - - - 기타(유약을 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E0
5743	6907.21.23	- - - - 포장(鋪裝)용·노(爐)용 또는 벽용 타일(유약을 칠한 것으로 한정한다)	0%	E0
5744	6907.21.24	- - - - 기타(유약을 칠한 것으로 한정한다)	0%	E0
		- - - 기타		
5745	6907.21.91	- - - - 포장(鋪裝)용·노(爐)용 또는 벽용 타일(유약을 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	E5
5746	6907.21.92	- - - - 기타(유약을 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	E5
5747	6907.21.93	- - - - 포장(鋪裝)용·노(爐)용 또는 벽용	8%	E5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타일(유약을 칠한 것으로 한정한다)		
5748	6907.21.94	- - - - 기타(유약을 칠한 것으로 한정한다)	8%	E5
	6907.22	- - 수분흡수계수가 중량기준으로 100 분의 0.5 초과 100 분의 10 이하인 것		
		- - - 최대 표면적이 한 변이 7 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의 것		
5749	6907.22.11	- - - - 포장(鋪裝)용·노(爐)용 또는 벽용 타일(유약을 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E0
5750	6907.22.12	- - - - 기타(유약을 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E0
5751	6907.22.13	- - - - 포장(鋪裝)용·노(爐)용 또는 벽용 타일(유약을 칠한 것으로 한정한다)	0%	E0
5752	6907.22.14	- - - - 기타(유약을 칠한 것으로 한정한다)	0%	E0
		- - - 기타		
5753	6907.22.91	- - - - 포장(鋪裝)용·노(爐)용 또는 벽용 타일(유약을 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	E5
5754	6907.22.92	- - - - 기타(유약을 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	E5
5755	6907.22.93	- - - - 포장(鋪裝)용·노(爐)용 또는 벽용 타일(유약을 칠한 것으로 한정한다)	8%	E5
5756	6907.22.94	- - - - 기타(유약을 칠한 것으로 한정한다)	8%	E5
	6907.23	- - 수분흡수계수가 중량기준으로 100 분의 10 초과인 것		
		- - - 최대 표면적이 한 변이 7 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의 것		
5757	6907.23.11	- - - - 포장(鋪裝)용·노(爐)용 또는 벽용 타일(유약을 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E0
5758	6907.23.12	- - - - 기타(유약을 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5759	6907.23.13	- - - - 포장(鋪裝)용·노(爐)용 또는 벽용 타일(유약을 칠한 것으로 한정한다)	0%	E0
5760	6907.23.14	- - - - 기타(유약을 칠한 것으로 한정한다)	0%	E0
		- - - 기타		
5761	6907.23.91	- - - - 포장(鋪裝)용·노(爐)용 또는 벽용 타일(유약을 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	E5
5762	6907.23.92	- - - - 기타(유약을 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	E5
5763	6907.23.93	- - - - 포장(鋪裝)용·노(爐)용 또는 벽용 타일(유약을 칠한 것으로 한정한다)	8%	E5
5764	6907.23.94	- - - - 기타(유약을 칠한 것으로 한정한다)	8%	E5
	6907.30	-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소호 제6907.40 호의 것은 제외한다)		
		- - 유약을 칠하지 않은 것		
5765	6907.30.11	- - - 최대 표면적이 한 변이 7 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의 것	0%	E0
5766	6907.30.19	- - - 기타	8%	E5
		- - 기타		
5767	6907.30.91	- - - 최대 표면적이 한 변이 7 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의 것	0%	E0
5768	6907.30.99	- - - 기타	8%	E5
	6907.40	- 피니싱 세라믹		
5769	6907.40.10	- - 그라인딩밀용에 사용하는 것(유약을 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E5
		- - 그 밖의 제품(장착 후에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최대 표면적이 49 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770	6907.40.21	- - - 유약을 칠하지 않은 것	0%	E0
5771	6907.40.22	- - - 유약을 칠한 것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 - 기타		
5772	6907.40.91	- - - 유약을 칠하지 않은 것	8%	E5
5773	6907.40.92	- - - 유약을 칠한 것	8%	E5
	69.09	**실험실용·화학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도자제품, 농업용 도자제 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 물품의 수송용·포장용으로 사용하는 도자제의 항아리·단지와 이와 유사한 제품**		
		- 실험실용·화학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도자제품		
5774	6909.11.00	- - 자기제의 것	0%	E0
5775	6909.12.00	- - 모스 경도가 9 이상인 물품	0%	E0
5776	6909.19.00	- - 기타	0%	E0
5777	6909.90.00	- 기타	0%	E0
	69.10	**도자제의 설거지통·세면대·세면대용 받침·목욕통·비데·수세식 변기통·수세식 변기용 물통·소변기와 이와 유사한 위생용 물품**		
5778	6910.10.00	- 자기제의 것	8%	E5
5779	6910.90.00	- 기타	0%	E0
	69.11	**자기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화장용품**		
5780	6911.10.00	-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0%	E0
5781	6911.90.00	- 기타	0%	E0
5782	**6912.00.00**	**도자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 및 화장용품(자기제의 것은 제외한다)**	0%	E0
	69.13	**도자제의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용 제품**		
	6913.10	- 자기제의 것		
5783	6913.10.10	- - 장식용 담배상자와 재떨이	0%	E0
5784	6913.10.90	- - 기타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6913.90	- 기타		
5785	6913.90.10	- - 장식용 담배상자와 재떨이	0%	E0
5786	6913.90.90	- - 기타	0%	E0
	69.14	**도자제의 그 밖의 제품**		
5787	6914.10.00	- 자기제의 것	0%	E0
5788	6914.90.00	- 기타	0%	E0
5789	**7001.00.00**	**깨진 유리와 유리의 그 밖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유리 괴(塊)**	0%	E0
	70.02	**유리로 만든 구(球)[제 7018 호의 마이크로스피어(microsphere)는 제외한다], 막대(rod)나 관(管)(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790	7002.10.00	- 구(球)	0%	E0
5791	7002.20.00	- 막대(rod)	0%	E0
		- 관(管)		
	7002.31	- - 석영유리와 용융실리카로 만든 것		
5792	7002.31.10	- - - 진공관 제조용의 것	0%	E0
5793	7002.31.90	- - - 기타	0%	E0
	7002.32	- - 선팽창계수가 섭씨 0 도에서 300 도의 범위 내에서 1 켈빈온도당 1 백만분의 5 를 초과하지 않는 그 밖의 유리로 만든 것		
5794	7002.32.10	- - - 진공관 제조용의 것	0%	E0
5795	7002.32.30	- - - 작은병/앰플용 붕규산 유리 튜브	0%	E0
5796	7002.32.40	- - - 기타(투명하고 중성인 붕규산 유리로 만든 것으로 지름이 3 밀리미터 이상이고 22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E0
5797	7002.32.90	- - - 기타	0%	E0
	7002.39	- - 기타		
5798	7002.39.10	- - - 진공관 제조용의 것	0%	E0
5799	7002.39.20	- - - 기타(투명하고 중성인 붕규산 유리로 만든 것으로 지름이 3 밀리미터 이상이고 22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800	7002.39.90	- - - 기타	0%	E0
	70.03	**주입법과 롤(roll)법으로 제조한 유리[시트(sheet) 모양이나 프로파일(profile) 모양으로 한정하고, 흡수층·반사층·무반사층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망입(網入)하지 않은 시트(sheet) 유리		
	7003.12	- - 전 부분을 착색한 것(엷게 착색한 것을 포함한다), 불투명한 것, 다른 착색유리로 입힌 것, 흡수층·반사층·무반사층을 갖는 것		
5801	7003.12.10	- - - 광학유리(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E0
5802	7003.12.20	- - - 기타(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모양으로 1 또는 그 이상의 코너를 자른 것을 포함한다)	0%	E0
5803	7003.12.90	- - - 기타	0%	E0
	7003.19	- - 기타		
5804	7003.19.10	- - - 광학유리(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E0
5805	7003.19.90	- - - 기타	0%	E0
	7003.20	- 망입(網入) 시트(sheet) 유리		
5806	7003.20.10	- -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모양의 것(1 또는 그 이상의 코너를 자른 것을 포함한다)	0%	E0
5807	7003.20.90	- - 기타	0%	E0
	7003.30	- 프로파일(profile)		
5808	7003.30.10	- -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모양의 것(1 또는 그 이상의 코너를 자른 것을 포함한다)	0%	E0
5809	7003.30.90	- - 기타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70.04	인상법(引上法)과 취입법(吹入法)으로 제조한 유리[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고, 흡수층·반사층·무반사층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004.20	- 전 부분을 착색한 것(엷게 착색한 것을 포함한다), 불투명한 것, 다른 착색유리로 입힌 것, 흡수층·반사층·무반사층을 갖는 것		
5810	7004.20.10	- - 광학유리(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E0
5811	7004.20.90	- - 기타	0%	E0
	7004.90	- 그 밖의 유리		
5812	7004.90.10	- - 광학유리(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E0
5813	7004.90.90	- - 기타	0%	E0
	70.05	플로트유리(float glass)와 표면을 연마한 유리[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고, 흡수층·반사층·무반사층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005.10	- 망입(網入)하지 않은 유리(흡수층·반사층·무반사층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5814	7005.10.10	- - 광학유리(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E0
5815	7005.10.90	- - 기타	0%	E0
		- 그 밖의 망입(網入)하지 않은 유리		
	7005.21	- - 전 부분을 착색한 것(엷게 색상이 있는 색유리를 포함한다), 불투명한 것, 다른 착색유리로 입힌 것, 단순히 표면을 연마한 것		
5816	7005.21.10	- - - 광학유리(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E5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5817	7005.21.90	- - - 기타	5%	E5
	7005.29	- - 기타		
5818	7005.29.10	- - - 광학유리(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E0
5819	7005.29.90	- - - 기타	0%	E0
5820	7005.30.00	- 망입(網入) 유리	0%	E0
	70.06	**제 7003 호・제 7004 호・제 7005 호의 유리(구부린 것・가장자리 가공한 것・조각한 것・구멍을 뚫은 것・에나멜을 칠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하며, 프레임을 붙인 것이나 그 밖의 재료를 붙인 것은 제외한다)**		
5821	7006.00.10	- 광학유리(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E0
5822	7006.00.90	- 기타	0%	E0
	70.07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 강화 안전유리		
	7007.11	- - 차량・항공기・우주선・선박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와 모양인 것		
5823	7007.11.10	- - - 제 87 류의 차량용으로 적합한 것	0%	E0
5824	7007.11.20	- - - 제 88 류의 항공기용이나 우주선용으로 적합한 것	0%	E0
5825	7007.11.30	- - - 제 86 류의 철도용이나 궤도 기관차 또는 철도 차량용으로 적합한 것	0%	E0
5826	7007.11.40	- - - 제 89 류의 선박용으로 적합한 것	0%	E0
	7007.19	- - 기타		
5827	7007.19.10	- - - 제 8429 호나 제 8430 호의 기계류용으로 적합한 것	0%	E0
5828	7007.19.90	- - - 기타	0%	E0
		- 접합 안전유리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7007.21	- - 차량・항공기・우주선・선박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와 모양인 것		
5829	7007.21.10	- - - 제 87 류의 차량용으로 적합한 것	0%	E0
5830	7007.21.20	- - - 제 88 류의 항공기용이나 우주선용으로 적합한 것	0%	E0
5831	7007.21.30	- - - 제 86 류의 철도용이나 궤도 기관차 또는 철도 차량용으로 적합한 것	0%	E0
5832	7007.21.40	- - - 제 89 류의 선박용으로 적합한 것	0%	E0
	7007.29	- - 기타		
5833	7007.29.10	- - - 제 8429 호나 제 8430 호의 기계류용으로 적합한 것	0%	E0
5834	7007.29.90	- - - 기타	0%	E0
5835	**7008.00.00**	**유리로 만든 복층 절연유닛**	0%	E0
	70.09	**유리거울(백미러를 포함하며, 틀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다)**		
5836	7009.10.00	- 백미러(차량용으로 한정한다)	0%	E0
		- 기타		
5837	7009.91.00	- - 틀이 붙지 않은 것	0%	E0
5838	7009.92.00	- - 틀이 붙은 것	0%	E0
	70.10	**유리로 만든 카보이(carboy)・병・플라스크・단지・항아리・약병・앰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기(물품의 수송용・포장용으로 한정한다), 유리로 만든 보존병, 유리로 만든 마개・뚜껑과 그 밖의 마개류**		
5839	7010.10.00	- 앰플	0%	E0
5840	7010.20.00	- 마개・뚜껑과 그 밖의 마개류	0%	E0
	7010.90	- 기타		
5841	7010.90.10	- - 카보이(carboy)와 디미존스(demijohns)	0%	E0
5842	7010.90.40	- - 항생제・혈청과 그 밖의 주사 액체용 병과 약병, 수액용의 병	0%	E0
		- - 기타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5843	7010.90.91	- - - 용량이 1 리터를 초과하는 것	0%	E0
5844	7010.90.99	- - - 기타	0%	E0
	70.11	**밀폐되지 않은 유리로 만든 외피(벌브와 튜브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부분품(전구·음극선관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의 것으로서 부착물이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7011.10	- 전등용		
5845	7011.10.10	- - 스템(Stem)	0%	E0
5846	7011.10.90	- - 기타	0%	E0
5847	7011.20.00	- 음극선관용	0%	E0
5848	7011.90.00	- 기타	0%	E0
	70.13	**유리제품(식탁용·주방용·화장실용·사무용·실내장식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한정하며, 제 7010 호나 제 7018 호의 것은 제외한다)**		
5849	7013.10.00	- 유리 도자제의 것	0%	E0
		- 굽 달린 음료용 유리컵류(유리 도자제의 것은 제외한다)		
5850	7013.22.00	- -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0%	E0
5851	7013.28.00	- - 기타	0%	E0
		- 그 밖의 음료용 유리컵류(유리 도자제의 것은 제외한다)		
5852	7013.33.00	- -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0%	E0
5853	7013.37.00	- - 기타	0%	E0
		- 식탁용 유리제품(음료용 유리컵류는 제외한다) 또는 주방용 유리제품(유리 도자제의 것은 제외한다)		
5854	7013.41.00	- -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0%	E0
5855	7013.42.00	- - 선팽창계수가 섭씨 0 도에서 300 도의 범위 내에서 1 켈빈온도당 백만분의 5 를 초과하지 않는 유리로 만든 것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5856	7013.49.00	- - 기타	0%	E0
		- 그 밖의 유리제품		
5857	7013.91.00	- -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0%	E0
5858	7013.99.00	- - 기타	0%	E0
	70.14	신호용 유리제품과 유리로 만든 광학소자(제 7015 호의 것과 광학적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5859	7014.00.10	- 자동차용으로 적합한 것	0%	E0
5860	7014.00.90	- 기타	0%	E0
	70.15	시계용 유리와 이와 유사한 유리, 안경용(시력교정용인지에 상관없다) 유리[곡면인 것·구부린 것·중공(中空)인 것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제조에 사용하는 중공구면(中空球面)유리와 그 세그먼트		
5861	7015.10.00	- 시력교정용 안경유리	0%	E0
	7015.90	- 기타		
5862	7015.90.10	- - 시계용 유리	0%	E0
5863	7015.90.90	- - 기타	0%	E0
	70.16	압축하거나 주형한 유리로 만든 포장(鋪裝)용 블록·슬래브·벽돌·스퀘어(square)·타일과 그 밖의 제품[망입(網入)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건축용이나 건설용으로 한정한다], 유리로 만든 입방체와 그 밖의 유리 세공품(뒷면을 보강한지에 상관없으며 모자이크용이나 이와 유사한 장식용으로 한정한다), 레드라이트(leaded light)와 이와 유사한 것, 블록(block)·패널(panel)·플레이트(plate)·쉘(shell)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의 다공(多孔)유리나 다포(多泡)유리		
5864	7016.10.00	- 유리로 만든 입방체와 그 밖의 유리 세공품(뒷면을 보강한지에 상관없으며 모자이크용이나 이와 유사한 장식용으로 한정한다)	0%	E0
5865	7016.90.00	- 기타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70.17	**실험실용·위생용·약제용 유리제품(눈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7017.10	- 석영유리 또는 용융실리카로 만든 것		
5866	7017.10.10	- - 반도체 웨이퍼(wafer) 제조용으로 확산로(擴散爐)와 산화로(酸化爐)에 삽입할 수 있도록 고안된 석영 리액터(reactor) 튜브와 홀더	0%	E0
5867	7017.10.90	- - 기타	0%	E0
5868	7017.20.00	- 선팽창계수가 섭씨 0도에서 300도의 범위 내에서 1켈빈온도당 백만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그 밖의 유리로 만든 것	0%	E0
5869	7017.90.00	- 기타	0%	E0
	70.18	**유리로 만든 비드(bead)·모조 진주·모조 귀석과 반귀석·이와 유사한 유리 세공품·모조 신변장식용품을 제외한 유리제품, 인체용을 제외한 유리 안구, 작은 조각상과 램프 가공한(lamp-worked) 그 밖의 장식용 유리제품(모조 신변장식용품은 제외한다), 지름이 1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유리로 만든 마이크로스피어(microsphere)**		
	7018.10	- 유리로 만든 비드(bead)·모조 진주·모조 귀석과 반귀석·이와 유사한 유리 세공품		
5870	7018.10.10	- - 유리로 만든 비드(bead)	0%	E0
5871	7018.10.90	- - 기타	0%	E0
5872	7018.20.00	- 지름이 1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유리로 만든 마이크로스피어(microsphere)	0%	E0
	7018.90	- 기타		
5873	7018.90.10	- - 유리안구	0%	E0
5874	7018.90.90	- - 기타	0%	E0
	70.19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직물)**		
		- 슬리버(sliver)·로빙(roving)·실 및 단연사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5875	7019.11.00	- - 단연사(길이가 50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E0
5876	7019.12.00	- - 로빙(roving)	0%	E0
	7019.19	- - 기타		
5877	7019.19.10	- - - 실	0%	E0
5878	7019.19.90	- - - 기타	0%	E0
		- 얇은 시트(sheet)(보일)·웹(web)·매트(mat)·매트리스(mattress)·보드와 이와 유사한 부직포		
5879	7019.31.00	- - 매트(mat)	0%	E0
5880	7019.32.00	- - 얇은 시트(sheet)(보일)	0%	E0
	7019.39	- - 기타		
5881	7019.39.10	- - - 파이프라인용의 것으로 아스팔트나 콜타르를 침투시킨 유리섬유 외피	0%	E0
5882	7019.39.90	- - - 기타	0%	E0
5883	7019.40.00	- 로빙(roving) 직물	0%	E0
		- 그 밖의 직물		
5884	7019.51.00	- - 폭이 30 센티미터 이하인 것	0%	E0
5885	7019.52.00	- - 폭이 30 센티미터 초과인 것(평직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50 그램 미만이며, 구성하는 단사가 136 텍스 이하의 필라멘트인 것으로 한정한다)	0%	E0
5886	7019.59.00	- - 기타	0%	E0
	7019.90	- 기타		
5887	7019.90.10	- - 유리 섬유[글라스울(glass wool)을 포함한다]	0%	E0
5888	7019.90.20	- - 블라인드	0%	E0
5889	7019.90.90	- - 기타	0%	E0
	70.20	**유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		
		- 유리 주형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5890	7020.00.11	- - 아크릴 물품의 제조용의 것	0%	E0
5891	7020.00.19	- - 기타	0%	E0
5892	7020.00.20	- 반도체 웨이퍼(wafer) 제조용으로 확산로(擴散爐)와 산화로(酸化爐)에 삽입할 수 있도록 고안된 석영 리액터(reactor) 튜브와 홀더	0%	E0
5893	7020.00.30	- 보온병이나 그 밖의 진공용기용 유리로 만든 내부 용기	0%	E0
5894	7020.00.40	- 태양열 집열기용으로 진공처리된 튜브	0%	E0
5895	7020.00.90	- 기타	0%	E0
		제 1 절 천연진주나 양식진주, 귀석이나 반귀석		
	71.01	**천연진주나 양식진주(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실로 꿴 것·장착되거나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 다만,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꿴 것을 포함한다)**		
5896	7101.10.00	- 천연진주	10%	E10
		- 양식진주		
5897	7101.21.00	- - 가공하지 않은 것	0%	E0
5898	7101.22.00	- - 가공한 것	10%	E10
	71.02	**다이아몬드(가공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장착되거나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		
5899	7102.10.00	- 선별하지 않은 것	0%	E0
		- 공업용		
5900	7102.21.00	- - 원석(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쪼갠 것으로 한정한다)	0%	E0
5901	7102.29.00	- - 기타	0%	E0
		- 공업용이 아닌 것		
5902	7102.31.00	- - 원석(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쪼갠 것으로 한정한다)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5903	7102.39.00	- - 기타	0%	E0
	71.03	귀석(다이아몬드는 제외한다)과 반귀석(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실로 꿴 것·장착되거나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 다만, 등급을 매기지 않은 것으로서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꿴 것을 포함한다)		
	7103.10	- 원석(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거칠게 성형한 것으로 한정한다)		
5904	7103.10.10	- - 루비	0%	E0
5905	7103.10.20	- - 비취[연옥(軟玉)과 경옥(硬玉)]	0%	E0
5906	7103.10.90	- - 기타	0%	E0
		-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가공한 것		
	7103.91	- - 루비·사파이어·에메랄드		
5907	7103.91.10	- - - 루비	0%	E0
5908	7103.91.90	- - - 기타	0%	E0
5909	7103.99.00	- - 기타	0%	E0
	71.04	합성·재생한 귀석이나 반귀석(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실로 꿴 것, 장착되거나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 다만, 등급을 매기지 않은 것으로서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꿴 것을 포함한다)		
	7104.10	- 압전기용 석영		
5910	7104.10.10	- - 가공하지 않은 것	0%	E0
5911	7104.10.20	- - 가공한 것	0%	E0
5912	7104.20.00	- 기타(원석, 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거칠게 성형한 것으로 한정한다)	0%	E0
5913	7104.90.00	- 기타	0%	E0
	71.05	천연의 것이나 합성한 귀석·반귀석의 더스트(dust)와 가루		
5914	7105.10.00	- 다이아몬드의 것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5915	7105.90.00	- 기타	0%	E0
		제 2 절 귀금속과 귀금속을 입힌 금속		
	71.06	**은(금이나 백금을 도금한 은을 포함하며, 가공하지 않은 것·반가공한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5916	7106.10.00	- 가루	0%	E0
		- 기타		
5917	7106.91.00	- - 가공하지 않은 것	0%	E0
5918	7106.92.00	- - 반가공한 것	0%	E0
5919	**7107.00.00**	**은을 입힌 비금속(卑金屬)(반가공한 것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E0
	71.08	**금(백금을 도금한 금을 포함하며, 가공하지 않은 것·반가공한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 화폐용이 아닌 것		
5920	7108.11.00	- - 가루	0%	E0
	7108.12	- -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5921	7108.12.10	- - - 럼프(lump), 잉곳(ingot) 또는 캐스트 바	0%	E0
5922	7108.12.90	- - - 기타	0%	E0
5923	7108.13.00	- - 그 밖의 반가공한 모양인 것	0%	E0
5924	7108.20.00	- 화폐용	0%	E0
5925	**7109.00.00**	**금을 입힌 비금속(卑金屬)이나 은(반가공한 것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E0
	71.10	**백금(가공하지 않은 것·반가공한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 플라티늄(platinum)		
	7110.11	- -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5926	7110.11.10	- - - 럼프(lump), 잉곳(ingot), 캐스트 바 또는 파우더 형태의 것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5927	7110.11.90	- - - 기타	0%	E0
5928	7110.19.00	- - 기타	0%	E0
		- 팔라듐(palladium)		
	7110.21	- -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5929	7110.21.10	- - - 럼프(lump), 잉곳(ingot), 캐스트 바 또는 파우더 형태의 것	0%	E0
5930	7110.21.90	- - - 기타	0%	E0
5931	7110.29.00	- - 기타	0%	E0
		- 로듐(rhodium)		
	7110.31	- -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5932	7110.31.10	- - - 럼프(lump), 잉곳(ingot), 캐스트 바 또는 파우더 형태의 것	0%	E0
5933	7110.31.90	- - - 기타	0%	E0
5934	7110.39.00	- - 기타	0%	E0
		- 이리듐(iridium)·오스뮴(osmium) 및 루테늄(ruthenium)		
	7110.41	- -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5935	7110.41.10	- - - 럼프(lump), 잉곳(ingot), 캐스트 바 또는 파우더 형태의 것	0%	E0
5936	7110.41.90	- - - 기타	0%	E0
5937	7110.49.00	- - 기타	0%	E0
	71.11	**백금을 입힌 비금속(卑金屬)·은·금(반가공한 것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938	7111.00.10	- 백금을 입힌 은 또는 금	0%	E0
5939	7111.00.90	- 기타	0%	E0
	71.12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귀금속이나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그 밖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주로 귀금속의 회수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5940	7112.30.00	- 귀금속이나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회(灰)	0%	E0
		- 기타		
5941	7112.91.00	- - 금의 것(금을 입힌 금속을 포함하며, 그 밖의 귀금속을 함유한 부스러기는 제외한다)	0%	E0
5942	7112.92.00	- - 백금의 것(백금을 입힌 금속을 포함하며, 그 밖의 귀금속을 함유한 부스러기는 제외한다)	0%	E0
	7112.99	- - 기타		
5943	7112.99.10	- - - 은의 것(은을 입힌 금속을 포함하며, 그 밖의 귀금속을 함유한 부스러기는 제외한다)	0%	E0
5944	7112.99.90	- - - 기타	0%	E0
		제 3 절 신변장식용품, 금 세공품·은 세공품과 그 밖의 제품		
	71.13	**신변장식용품과 그 부분품(귀금속으로 만들거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 귀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7113.11	- - 은으로 만든 것(그 밖의 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5945	7113.11.10	- - - 부분품	5%	E0
5946	7113.11.90	- - - 기타	5%	E0
	7113.19	- - 그 밖의 귀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5947	7113.19.10	- - - 부분품	5%	E0
5948	7113.19.90	- - - 기타	5%	E0
	7113.20	- 귀금속을 입힌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5949	7113.20.10	- - 부분품	5%	E0
5950	7113.20.90	- - 기타	5%	E0
	71.14	**금 세공품이나 은 세공품과 이들의 부분품 (귀금속으로 만들거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 귀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5951	7114.11.00	- - 은으로 만든 것(그 밖의 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5%	E0
5952	7114.19.00	- - 그 밖의 귀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5%	E0
5953	7114.20.00	- 귀금속을 입힌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	5%	E0
	71.15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그 밖의 제품**		
5954	7115.10.00	- 촉매제[백금으로 만든 와이어 클로스(wire cloth)나 그릴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0%	E0
	7115.90	- 기타		
5955	7115.90.10	- - 금이나 은으로 만든 것	0%	E0
5956	7115.90.20	- - 금이나 은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	0%	E0
5957	7115.90.90	- - 기타	0%	E0
	71.16	**천연진주나 양식진주, 귀석이나 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의 제품**		
5958	7116.10.00	- 천연진주나 양식진주로 만든 것	5%	E0
5959	7116.20.00	- 귀석이나 반귀석(천연의 것, 합성 또는 재생한 것)으로 만든 것	0%	E0
	71.17	**모조 신변장식용품**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7117.11	- - 커프링크(cuff-link)와 장식용 단추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5960	7117.11.10	- - - 부분품	0%	E0
5961	7117.11.90	- - - 기타	0%	E0
	7117.19	- - 기타		
5962	7117.19.10	- - - 뱅글스(Bangles)	5%	E0
5963	7117.19.20	- - - 그 밖의 모조 신변장식용품	5%	E0
5964	7117.19.90	- - - 부분품	5%	E0
	7117.90	- 기타		
		- - 뱅글스(Bangles)		
5965	7117.90.11	- - - 전체가 플라스틱이나 유리인 것	5%	E0
5966	7117.90.12	- - - 전체가 우드·가공한 귀갑(龜甲)·상아·뼈·뿔·산호·자개와 그 밖의 동물성 조각용 재료, 가공한 식물성이나 가공된 광물성 조각용 재료인 것	5%	E0
5967	7117.90.13	- - - 전체가 자기제인 것	5%	E0
5968	7117.90.19	- - - 기타	5%	E0
		- - 그 밖의 모조 신변장식용품		
5969	7117.90.21	- - - 전체가 플라스틱이나 유리인 것	0%	E0
5970	7117.90.22	- - - 전체가 우드·가공한 귀갑(龜甲)·상아·뼈·뿔·산호·자개와 그 밖의 동물성 조각용 재료, 가공한 식물성이나 가공된 광물성 조각용 재료인 것	0%	E0
5971	7117.90.23	- - - 전체가 자기제인 것	0%	E0
5972	7117.90.29	- - - 기타	0%	E0
		- - 부분품		
5973	7117.90.91	- - - 전체가 플라스틱이나 유리인 것	0%	E0
5974	7117.90.92	- - - 전체가 우드·가공한 귀갑(龜甲)·상아·뼈·뿔·산호·자개와 그 밖의 동물성 조각용 재료, 가공한 식물성이나 가공된 광물성 조각용 재료인 것	0%	E0
5975	7117.90.93	- - - 전체가 자기제인 것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5976	7117.90.99	- - - 기타	0%	E0
	71.18	**주화**		
	7118.10	- 주화(금화는 제외한다)로서 법정통화가 아닌 것		
5977	7118.10.10	- - 은화	0%	E0
5978	7118.10.90	- - 기타	0%	E0
	7118.90	- 기타		
5979	7118.90.10	- - 금화(법정통화인지에 상관없다)	0%	E0
5980	7118.90.20	- - 은화(법정통화로 한정한다)	0%	E0
5981	7118.90.90	- - 기타	0%	E0
		제 1 절 일차재료와 알갱이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제품		
	72.01	**선철(銑鐵)과 스피그라이즌(spiegeleisen)[피그(pig)·블록(block) 모양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5982	7201.10.00	- 비합금선철(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5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E0
5983	7201.20.00	- 비합금선철(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5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E0
5984	7201.50.00	- 합금선철, 스피그라이즌(spiegeleisen)	0%	E0
	72.02	**합금철(ferro-alloy)**		
		- 페로망간		
5985	7202.11.00	-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것	0%	E0
5986	7202.19.00	- - 기타	0%	E0
		- 페로실리콘(ferrosilicon)		
5987	7202.21.00	- - 실리콘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5를 초과하는 것	0%	E0
5988	7202.29.00	- - 기타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5989	7202.30.00	- 페로실리코망간(ferro-silico-manganese)	0%	E0
		- 페로크로뮴(ferro-chromium)		
5990	7202.41.00	-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4 를 초과하는 것	0%	E0
5991	7202.49.00	- - 기타	0%	E0
5992	7202.50.00	- 페로실리코크로뮴(ferro-silico-chromium)	0%	E0
5993	7202.60.00	- 페로니켈(ferro-nickel)	0%	E0
5994	7202.70.00	- 페로몰리브데늄(ferro-molybdenum)	0%	E0
5995	7202.80.00	- 페로텅스텐(ferro-tungsten)과 페로실리코 텅스텐(ferro-silico-tungsten)	0%	E0
		- 기타		
5996	7202.91.00	- - 페로티타늄(ferro-titanium)과 페로실리코티타늄(ferro-silico-titanium)	0%	E0
5997	7202.92.00	- - 페로바나듐(ferro-vanadium)	0%	E0
5998	7202.93.00	- - 페로니오븀(ferro-niobium)	0%	E0
5999	7202.99.00	- - 기타	0%	E0
	72.03	**철광석을 직접 환원하여 제조한 철제품과 그 밖의 해면질의 철제품[럼프(lump)·펠릿(pellet)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과 순도가 최저 전 중량의 100 분의 99.94 인 철[럼프(lump)·펠릿(pellet)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6000	7203.10.00	- 철광석을 직접 환원하여 제조한 철제품	0%	E0
6001	7203.90.00	- 기타	0%	E0
	72.04	**철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scrap ingot)**		
6002	7204.10.00	- 주철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E0
		- 합금강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6003	7204.21.00	- - 스테인리스강의 것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6004	7204.29.00	- - 기타	0%	E0
6005	7204.30.00	- 주석을 도금한 철강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E0
		- 그 밖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 (scrap)		
6006	7204.41.00	- - 선삭(旋削)·세이빙(shaving)·칩·밀링 웨이스트(milling waste)·톱밥·파일링(filing)·트리밍(trimming) 및 스탬핑(stamping)(번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0%	E0
6007	7204.49.00	- - 기타	0%	E0
6008	7204.50.00	-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scrap ingot)	0%	E0
	72.05	**알갱이와 가루[선철(銑鐵)·스피그라이즌(spiegeleisen)·철강의 것으로 한정한다]**		
6009	7205.10.00	- 알갱이	0%	E0
		- 가루		
6010	7205.21.00	- - 합금강의 것	0%	E0
6011	7205.29.00	- - 기타	0%	E0
		제 2 절 철과 비합금강		
	72.06	**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철과 비합금강(제 7203 호의 철은 제외한다)**		
	7206.10	- 잉곳(ingot)		
6012	7206.10.10	-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6 을 초과하는 것	0%	E0
6013	7206.10.90	- - 기타	0%	E0
6014	7206.90.00	- 기타	0%	E0
	72.07	**철이나 비합금강의 반제품**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25 미만인 것		
6015	7207.11.00	- -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인 것(폭이 두께의 두 배 미만인 것으로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한정한다)		
	7207.12	- - 그 밖의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인 것		
6016	7207.12.10	- - - 슬래브	0%	E0
6017	7207.12.90	- - - 기타	0%	E0
6018	7207.19.00	- - 기타	0%	E0
	7207.20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25 이상인 것		
		-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6 미만인 것		
6019	7207.20.10	- - - 슬래브	0%	E0
		- - - 기타		
6020	7207.20.21	- - - - 거칠게 성형한 단조된 블록, 시트 바(sheet bar)	0%	E0
6021	7207.20.29	- - - - 기타	0%	E0
		- - 기타		
6022	7207.20.91	- - - 슬래브	0%	E0
		- - - 기타		
6023	7207.20.92	- - - - 거칠게 성형한 단조된 블록, 시트 바(sheet bar)	0%	E0
6024	7207.20.99	- - - - 기타	0%	E0
	72.08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6025	7208.10.00	- 코일 모양인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고 부조(浮彫)된 무늬가 있는 것	3%	EX*
		- 기타[코일 모양인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고 산세(酸洗)한 것으로 한정한다]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6026	7208.25.00	- -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인 것	5%	EX*
6027	7208.26.00	- -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5%	EX*
	7208.27	- - 두께가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 - - 두께가 2 밀리미터 미만인 것		
6028	7208.27.11	- - -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6 이상인 것	5%	EX*
6029	7208.27.19	- - - - 기타	5%	EX*
		- - - 기타		
6030	7208.27.91	- - -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6 이상인 것	5%	EX*
6031	7208.27.99	- - - - 기타	5%	EX*
		- 기타[코일 모양인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6032	7208.36.00	- - 두께가 1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5%	EX*
6033	7208.37.00	- -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 10 밀리미터 이하인 것	5%	EX*
6034	7208.38.00	- -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5%	EX
	7208.39	- - 두께가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6035	7208.39.10	- -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6 미만이며 두께가 0.17 밀리미터 이하인 것	5%	E7
6036	7208.39.90	- - - 기타	5%	E10
6037	7208.40.00	- 코일 모양이 아닌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부조(浮彫)된 무늬가 있는 것	3%	EX*
		- 기타[코일 모양이 아닌 것으로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6038	7208.51.00	- - 두께가 1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3%	EX*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6039	7208.52.00	- -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 10 밀리미터 이하인 것	5%	EX*
6040	7208.53.00	- -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5%	EX*
	7208.54	- - 두께가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6041	7208.54.10	- -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6 미만이며 두께가 0.17 밀리미터 이하인 것	5%	EX*
6042	7208.54.90	- - - 기타	5%	EX*
	7208.90	- 기타		
6043	7208.90.10	- - 물결 모양의 것	3%	EX*
6044	7208.90.20	- - 기타(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6 미만이고 두께가 0.17 밀리미터 이하인 것)	3%	EX*
6045	7208.90.90	- - 기타	3%	EX*
	72.09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 코일 모양인 것으로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6046	7209.15.00	- -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EX*
	7209.16	- - 두께가 1 밀리미터 초과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6047	7209.16.10	- - - 폭이 1,250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E0
6048	7209.16.90	- - - 기타	5%	EX*
	7209.17	- - 두께가 0.5 밀리미터 이상 1 밀리미터 이하인 것		
6049	7209.17.10	- - - 폭이 1,250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E0
6050	7209.17.90	- - - 기타	5%	EX*
	7209.18	- - 두께가 0.5 밀리미터 미만인 것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6051	7209.18.10	- - - 석도강판	0%	E0
		- - - 기타		
6052	7209.18.91	- - -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6 미만이며 두께가 0.17 밀리미터 이하인 것	5%	EX*
6053	7209.18.99	- - - - 기타	6%	EX*
		- 코일 모양이 아닌 것으로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6054	7209.25.00	- -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인 것	5%	EX*
	7209.26	- - 두께가 1 밀리미터 초과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6055	7209.26.10	- - - 폭이 1,250 밀리미터 이하인 것	6%	EX*
6056	7209.26.90	- - - 기타	5%	EX*
	7209.27	- - 두께가 0.5 밀리미터 이상 1 밀리미터 이하인 것		
6057	7209.27.10	- - - 폭이 1,250 밀리미터 이하인 것	6%	EX*
6058	7209.27.90	- - - 기타	5%	EX*
	7209.28	- - 두께가 0.5 밀리미터 미만인 것		
6059	7209.28.10	- -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6 미만이며 두께가 0.17 밀리미터 이하인 것	5%	EX
6060	7209.28.90	- - - 기타	6%	EX*
	7209.90	- 기타		
6061	7209.90.10	- - 물결 모양의 것	5%	E10
6062	7209.90.90	- - 기타	5%	E10
	72.1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으로 한정한다]**		
		- 주석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7210.11	- - 두께가 0.5 밀리미터 이상인 것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6063	7210.11.10	- -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6 이상인 것	13%	E10
6064	7210.11.90	- - - 기타	13%	E10
	7210.12	- - 두께가 0.5 밀리미터 미만인 것		
6065	7210.12.10	- -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6 이상인 것	0%	E0
6066	7210.12.90	- - - 기타	0%	E0
	7210.20	- 납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함석판을 포함한다)		
6067	7210.20.10	-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6 미만이며 두께가 1.5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EX*
6068	7210.20.90	- - 기타	8%	EX*
	7210.30	- 아연을 전해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6 미만인 것		
6069	7210.30.11	- - - 두께가 1.2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E0
6070	7210.30.12	- - - 두께가 1.2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1.5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E0
6071	7210.30.19	- - - 기타	8%	EX*
		- - 기타		
6072	7210.30.91	- - - 두께가 1.2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EX*
6073	7210.30.99	- - - 기타	8%	EX*
		-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7210.41	- - 물결 모양의 것		
		- -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6 미만인 것		
6074	7210.41.11	- - - - 두께가 1.2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E15
6075	7210.41.12	- - - - 두께가 1.2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1.5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E15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6076	7210.41.19	- - - - 기타	8%	E15
		- - - 기타		
6077	7210.41.91	- - - - 두께가 1.2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E15
6078	7210.41.99	- - - - 기타	8%	E15
	7210.49	- - 기타		
		- -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6 미만인 것		
6079	7210.49.11	- - - - 철-아연 합금 코팅 방법으로 처리된 아연으로 도포된 것(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04 미만인 것으로 두께가 1.2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8%	EX*
6080	7210.49.12	- - - - 기타(두께가 1.2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8%	EX*
6081	7210.49.13	- - - - 두께가 1.2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1.5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EX*
6082	7210.49.19	- - - - 기타	8%	EX*
		- - - 기타		
6083	7210.49.91	- - - - 두께가 1.2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E0
6084	7210.49.99	- - - - 기타	8%	EX
6085	7210.50.00	- 산화크로뮴이나 크로뮴과 산화크로뮴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0%	E0
		- 알루미늄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7210.61	- - 알루미늄-아연 합금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 -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6 미만인 것		
6086	7210.61.11	- - - - 두께가 1.2 밀리미터 이하인 것	6%	EX*
6087	7210.61.12	- - - - 두께가 1.2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1.5 밀리미터 이하인 것	6%	EX*
6088	7210.61.19	- - - - 기타	6%	EX*
		- - - 기타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6089	7210.61.91	- - - - 두께가 1.2 밀리미터 이하인 것	6%	EX*
6090	7210.61.92	- - - - 기타(물결모양의 것)	6%	EX
6091	7210.61.99	- - - - 기타	6%	EX*
	7210.69	- - 기타		
		- -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6 미만인 것		
6092	7210.69.11	- - - - 두께가 1.2 밀리미터 이하인 것	6%	EX*
6093	7210.69.12	- - - - 두께가 1.2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1.5 밀리미터 이하인 것	6%	EX*
6094	7210.69.19	- - - - 기타	6%	EX*
		- - - 기타		
6095	7210.69.91	- - - - 두께가 1.2 밀리미터 이하인 것	6%	EX*
6096	7210.69.99	- - - - 기타	6%	EX*
	7210.70	- 페인팅한 것·바니시한 것·플라스틱을 도포한 것		
		-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6 미만이며 두께가 1.5 밀리미터 이하인 것		
6097	7210.70.11	- - - 페인팅한 것	8%	EX*
6098	7210.70.19	- - - 기타	8%	EX*
		- - 기타		
6099	7210.70.91	- - - 페인팅한 것	6%	EX*
6100	7210.70.99	- - - 기타	6%	EX*
	7210.90	- 기타		
6101	7210.90.10	-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6 미만이며 두께가 1.5 밀리미터 이하인 것	15%	EX
6102	7210.90.90	- - 기타	15%	EX
	72.11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7211.13	- - 4 면을 압연한 것이나 크로스드박스패스(closed box pass)로 한 것[폭이 150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두께가 4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코일 모양인 것과 부조(浮彫)된 무늬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		
		- -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6 미만인 것		
6103	7211.13.11	- - - - 후프와 스트립, 압연된 금속판 모양의 것	3%	E10
6104	7211.13.12	- - - - 물결 모양의 것	3%	E10
6105	7211.13.19	- - - - 기타	3%	E10
		- - - 기타		
6106	7211.13.91	- - - - 후프와 스트립, 압연된 금속판 모양의 것	3%	E10
6107	7211.13.99	- - - - 기타	3%	E10
	7211.14	- - 기타(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6 미만인 것		
6108	7211.14.13	- - - - 후프와 스트립, 압연된 금속판 모양의 것	3%	E10
6109	7211.14.14	- - - - 물결 모양의 것	3%	E10
6110	7211.14.15	- - - - 재압연을 위한 코일의 것	3%	E10
6111	7211.14.19	- - - - 기타	3%	E10
		- - - 기타		
6112	7211.14.91	- - - - 후프와 스트립, 압연된 금속판 모양의 것	3%	E10
6113	7211.14.92	- - - - 물결 모양의 것	3%	E10
6114	7211.14.93	- - - - 재압연을 위한 코일의 것	3%	E1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6115	7211.14.99	- - - - 기타	3%	E10
	7211.19	- - 기타		
		- -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6 미만인 것		
6116	7211.19.13	- - - - 후프와 스트립, 압연된 금속판 모양의 것	3%	E10
6117	7211.19.14	- - - - 물결 모양의 것	3%	E10
6118	7211.19.15	- - - - 재압연을 위한 코일의 것	3%	E10
6119	7211.19.19	- - - - 기타	3%	E10
		- - - 기타		
6120	7211.19.91	- - - - 후프와 스트립, 압연된 금속판 모양의 것	3%	E10
6121	7211.19.92	- - - - 물결 모양의 것	3%	E10
6122	7211.19.93	- - - - 재압연을 위한 코일의 것	3%	E10
6123	7211.19.99	- - - - 기타	3%	E10
		-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7211.23	-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25 미만인 것		
6124	7211.23.10	- - - 물결 모양의 것	5%	EX*
6125	7211.23.20	- - - 후프와 스트립(폭이 400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	EX*
6126	7211.23.30	- - - 기타(두께가 0.17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	EX
6127	7211.23.90	- - - 기타	5%	EX*
	7211.29	- - 기타		
6128	7211.29.10	- - - 물결 모양의 것	5%	EX*
6129	7211.29.20	- - - 후프와 스트립(폭이 400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	EX*
6130	7211.29.30	- - - 기타(두께가 0.17 밀리미터 이하인 것	5%	EX*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으로 한정한다)		
6131	7211.29.90	- - - 기타	5%	EX*
	7211.90	- 기타		
		-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6 미만인 것		
6132	7211.90.11	- - - 후프와 스트립(폭이 25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	EX
6133	7211.90.12	- - - 후프와 스트립(폭이 400 밀리미터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	EX
6134	7211.90.13	- - - 물결 모양의 것	5%	EX
6135	7211.90.14	- - - 기타(두께가 0.17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	EX
6136	7211.90.19	- - - 기타	5%	EX
		- - 기타		
6137	7211.90.91	- - - 두께가 0.17 밀리미터 이하인 것	5%	EX
6138	7211.90.99	- - - 기타	5%	EX
	72.12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으로 한정한다]**		
	7212.10	- 주석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6 미만인 것		
6139	7212.10.11	- - - 후프와 스트립(폭이 25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8%	EX
6140	7212.10.13	- - - 후프와 스트립(폭이 25 밀리미터를 초과 400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8%	EX*
6141	7212.10.19	- - - 기타	8%	EX*
		- - 기타		
6142	7212.10.92	- - - 후프와 스트립(폭이 25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8%	EX
6143	7212.10.93	- - - 후프와 스트립(폭이 25 밀리미터를 초	8%	EX*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과 400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6144	7212.10.99	- - - 기타	8%	EX*
	7212.20	- 아연을 전해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6145	7212.20.10	- - 후프와 스트립(폭이 400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5%	EX
6146	7212.20.20	- - 기타(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6 미만이고 두께가 1.5 밀리미터 이하인 것)	15%	EX
6147	7212.20.90	- - 기타	15%	EX
	7212.30	-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6 미만인 것		
6148	7212.30.11	- - - 후프와 스트립(폭이 25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8%	EX*
6149	7212.30.12	- - - 후프와 스트립(폭이 25 밀리미터를 초과 400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8%	EX*
6150	7212.30.13	- - - 기타(두께가 1.5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8%	EX*
6151	7212.30.14	- - - 기타(철-아연 합금 도포 방법으로 처리된 아연으로 도포된 것으로,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04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8%	EX*
6152	7212.30.19	- - - 기타	8%	EX*
6153	7212.30.90	- - 기타	8%	EX*
	7212.40	- 페인팅한 것·바니시한 것·플라스틱을 도포한 것		
		-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6 미만인 것		
6154	7212.40.11	- - - 후프와 스트립(폭이 400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6%	EX
6155	7212.40.12	- - - 그 밖의 후프와 스트립	8%	EX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6156	7212.40.19	- - - 기타	8%	EX*
		- - 기타		
6157	7212.40.91	- - - 후프와 스트립(폭이 400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6%	EX
6158	7212.40.92	- - - 그 밖의 후프와 스트립, 만능 압연기(universal mill)에서 압연된 금속판(板)	8%	EX
6159	7212.40.99	- - - 기타	8%	EX
	7212.50	-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 - 산화크로뮴이나 크로뮴과 산화크로뮴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6160	7212.50.13	- - - 후프와 스트립(폭이 25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8%	EX
6161	7212.50.14	- - - 그 밖의 후프와 스트립, 만능 압연기(universal mill)에서 압연된 금속판(板)	8%	EX*
6162	7212.50.19	- - - 기타	8%	EX*
		- - 알루미늄-아연 합금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6163	7212.50.23	- - - 후프와 스트립(폭이 25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6%	EX
6164	7212.50.24	- - - 그 밖의 후프와 스트립, 만능 압연기(universal mill)에서 압연된 금속판(板)	7%	EX
6165	7212.50.29	- - - 기타	8%	EX
		- - 기타		
6166	7212.50.93	- - - 후프와 스트립(폭이 25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	EX
6167	7212.50.94	- - - 그 밖의 후프와 스트립, 만능 압연기(universal mill)에서 압연된 금속판(板)	8%	EX
6168	7212.50.99	- - - 기타	8%	EX*
	7212.60	- 클래드(clad)한 것		
		-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0.6 미만인 것		
6169	7212.60.11	- - - 후프와 스트립	8%	EX
6170	7212.60.12	- - - 기타(두께가 1.5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8%	EX
6171	7212.60.19	- - - 기타	8%	EX
		- - 기타		
6172	7212.60.91	- - - 후프와 스트립	8%	EX
6173	7212.60.99	- - - 기타	8%	EX
	72.13	**철이나 비합금강의 봉[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7213.10	-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모양의 마디·리브(rib)·홈이나 그 밖의 모양으로 된 것		
6174	7213.10.10	- -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지름이 50 밀리미터 이하인 것	6%	E10
6175	7213.10.90	- - 기타	6%	E10
6176	7213.20.00	- 기타[쾌삭강(快削鋼)의 것으로 한정한다]	5%	EX*
		- 기타		
	7213.91	- -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지름이 14 밀리미터 미만인 것		
6177	7213.91.10	- - - 납땜 스틱 제조용의 것	5%	EX*
6178	7213.91.20	- - - 콘크리트 보강(리바)용의 것	5%	EX*
6179	7213.91.90	- - - 기타	5%	EX*
	7213.99	- - 기타		
6180	7213.99.10	- - - 납땜 스틱 제조용의 것	5%	EX*
6181	7213.99.20	- - - 콘크리트 보강(리바)용의 것	5%	EX*
6182	7213.99.90	- - - 기타	5%	EX*
	72.14	**철이나 비합금강의 그 밖의 봉[단조(鍛造)·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열간(熱間)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한정하고, 압연 후 꼬임가공된 것을 포함한다]		
	7214.10	- 단조(鍛造)한 것		
		-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6 미만인 것		
6183	7214.10.11	- - - 횡단면이 원형인 것	5%	EX*
6184	7214.10.19	- - - 기타	5%	EX*
		- - 기타		
6185	7214.10.21	- - - 횡단면이 원형인 것	5%	E10
6186	7214.10.29	- - - 기타	5%	E10
	7214.20	-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 모양의 마디·리브(rib)·홈이나 그 밖의 모양으로 된 것, 압연 후 꼬임가공된 것		
		-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6 미만인 것		
		- - - 횡단면이 원형인 것		
6187	7214.20.31	- - - - 콘크리트 보강(리바)용의 것	6%	EX
6188	7214.20.39	- - - - 기타	6%	EX
		- - - 기타		
6189	7214.20.41	- - - - 콘크리트 보강(리바)용의 것	6%	E10
6190	7214.20.49	- - - - 기타	6%	E10
		- - 기타		
		- - - 횡단면이 원형인 것		
6191	7214.20.51	- - - - 콘크리트 보강(리바)용의 것	6%	EX
6192	7214.20.59	- - - - 기타	6%	EX
		- - - 기타		
6193	7214.20.61	- - - - 콘크리트 보강(리바)용의 것	6%	E10
6194	7214.20.69	- - - - 기타	6%	E10
	7214.30	- 기타[쾌삭강(快削鋼)의 것으로 한정한다]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6195	7214.30.10	- - 횡단면이 원형인 것	0%	E0
6196	7214.30.90	- - 기타	0%	E0
		- 기타		
	7214.91	- -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정사각형인 것은 제외한다)		
		- -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6 미만인 것		
6197	7214.91.11	- - -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38 이상이고 망간의 함유량은 전 중량의 100 분의 1.15 미만인 것	3%	EX*
6198	7214.91.12	- - -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17 이상 100 분의 0.46 이하이고 망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1.2 이상 100 분의 1.65 미만인 것	3%	EX*
6199	7214.91.19	- - - - 기타	6%	EX
		- -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6 이상인 것		
6200	7214.91.21	- - - - 망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1.15 미만인 것	5%	EX*
6201	7214.91.29	- - - - 기타	5%	E10
	7214.99	- - 기타		
		- -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6 이상인 것(횡단면이 원형인 것은 제외한다)		
6202	7214.99.11	- - - - 망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1.15 미만인 것	5%	EX*
6203	7214.99.19	- - - - 기타	5%	EX*
		- - - 기타		
6204	7214.99.91	- - -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38 미만인 것(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05 이하이고 황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05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6%	EX*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6205	7214.99.92	- - -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38 이상이고 망간의 함유량은 전 중량의 100 분의 1.15 미만인 것	5%	EX*
6206	7214.99.93	- - -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17 이상 100 분의 0.46 미만이고 망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1.2 이상 100 분의 1.65 미만인 것	5%	EX*
6207	7214.99.99	- - - - 기타	6%	EX*
	72.15	**철이나 비합금강의 그 밖의 봉**		
	7215.10	- 쾌삭강(快削鋼)의 것[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6208	7215.10.10	- - 횡단면이 원형인 것	5%	EX*
6209	7215.10.90	- - 기타	5%	EX*
	7215.50	- 기타[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6210	7215.50.10	-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6 이상인 것(횡단면이 원형인 것은 제외한다)	6%	EX
		- - 기타		
6211	7215.50.91	- - - 콘크리트 보강(리바)용의 것	6%	EX
6212	7215.50.99	- - - 기타	6%	EX
	7215.90	- 기타		
6213	7215.90.10	- - 콘크리트 보강(리바)용의 것	5%	EX*
6214	7215.90.90	- - 기타	0%	E0
	72.16	**철이나 비합금강의 형강(形鋼)**		
6215	7216.10.00	- 유(U)형강・아이(I)형강 또는 에이치(H)형강[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서 높이가 80 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20%	EX
		- 엘(L)형강이나 티(T)형강[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 또는 압출보다 더 가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공하지 않은 것으로서 높이가 80 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7216.21	- - 엘(L)형강		
6216	7216.21.10	- -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6 미만인 것	20%	EX
6217	7216.21.90	- - - 기타	20%	EX
6218	7216.22.00	- - 티(T)형강	10%	EX
		- 유(U)형강·아이(I)형강 또는 에이치(H)형강[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서 높이가 80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7216.31	- - 유(U)형강		
6219	7216.31.10	- -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6 이상인 것	10%	EX
6220	7216.31.90	- - - 기타	10%	EX
	7216.32	- - 아이(I)형강		
6221	7216.32.10	- - - 두께가 5 밀리미터 이하인 것	20%	EX
6222	7216.32.90	- - - 기타	20%	EX
	7216.33	- - 에이치(H)형강		
		- -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6 미만인 것		
6223	7216.33.11	- - - - 플랜지의 두께가 웹의 두께 이상인 것	20%	EX
6224	7216.33.19	- - - - 기타	20%	EX
6225	7216.33.90	- - - 기타	20%	EX
	7216.40	- 엘(L)형강이나 티(T)형강[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서 높이가 80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6226	7216.40.10	-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6 이상인 것	10%	EX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6227	7216.40.90	- - 기타	10%	EX
	7216.50	- 그 밖의 형강[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높이가 80 밀리미터 미만인 것		
6228	7216.50.11	- -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6 이상인 것	15%	EX
6229	7216.50.19	- - - 기타	15%	EX
		- - 기타		
6230	7216.50.91	- -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6 이상인 것	15%	EX
6231	7216.50.99	- - - 기타	15%	EX
		- 형강(形鋼)[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6232	7216.61.00	- - 평판압연제품으로부터 만든 것	10%	EX
6233	7216.69.00	- - 기타	10%	EX
		- 기타		
	7216.91	- - 평판압연제품으로부터 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한 것		
6234	7216.91.10	- - - 형강(천공이된 형강을 제외하며,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6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EX
6235	7216.91.90	- - - 기타	10%	EX
6236	7216.99.00	- - 기타	10%	EX
	72.17	**철이나 비합금강의 선(線)**		
	7217.10	- 도금하거나 도포하지 않은 것(연마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6237	7217.10.10	-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25 미만인 것	5%	E7
		-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0.25 이상 100 분의 0.6 미만인 것		
6238	7217.10.22	- - - 비드와이어, 리드와이어, 프리스트레싱 콘크리트용 스트랜드 제작에 사용되는 와이어, 쾌삭강(快削鋼)선	5%	EX*
6239	7217.10.29	- - - 기타	6%	EX*
		-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6 이상인 것		
6240	7217.10.32	- - - 스포크와이어, 비드와이어, 리드와이어, 쾌삭강(快削鋼)선	8%	EX
6241	7217.10.33	- - - 프리스트레싱 콘크리트용 연선 제조에 사용되는 선	8%	EX
6242	7217.10.39	- - - 기타	8%	E7
	7217.20	-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6243	7217.20.10	-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25 미만인 것	5%	E10
6244	7217.20.20	-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25 이상이고 0.45 미만인 것	8%	E10
		-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45 이상인 것		
6245	7217.20.91	- - - 강심선[강심 알루미늄 도체(ACSR)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	E10
6246	7217.20.99	- - - 기타	8%	E7
	7217.30	-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25 미만인 것		
6247	7217.30.11	- - - 주석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13%	E10
6248	7217.30.19	- - - 기타	13%	E10
		-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25 이상 100 분의 0.6 미만인 것		
6249	7217.30.21	- - - 주석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13%	E1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6250	7217.30.29	- - - 기타	13%	E10
		-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6 이상인 것		
6251	7217.30.33	- - - 구리-아연(brass) 합금으로 도포한 강선(공기타이어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E0
6252	7217.30.34	- - - 그 밖의 구리합금으로 도포한 강선(공기타이어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10%	EX
6253	7217.30.35	- - - 기타(주석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으로 한정한다)	13%	EX
6254	7217.30.39	- - - 기타	13%	EX
	7217.90	- 기타		
6255	7217.90.10	-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25 미만인 것	5%	E10
6256	7217.90.90	- - 기타	5%	E10
		제 3 절 스테인리스강		
	72.18	**스테인리스강[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것으로 한정한다]과 스테인리스강의 반제품**		
6257	7218.10.00	- 잉곳(ingot)과 그 밖의 일차제품 형태(primary form)인 것	0%	E0
		- 기타		
6258	7218.91.00	- -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정사각형인 것은 제외한다)	0%	E0
6259	7218.99.00	- - 기타	0%	E0
	72.19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코일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6260	7219.11.00	- - 두께가 1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	E0
6261	7219.12.00	- -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 10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6262	7219.13.00	- -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0%	E0
6263	7219.14.00	- - 두께가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0%	E0
		-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코일 모양인 것은 제외한다)		
6264	7219.21.00	- - 두께가 1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	E0
6265	7219.22.00	- -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 10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E0
6266	7219.23.00	- -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0%	E0
6267	7219.24.00	- - 두께가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0%	E0
		-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6268	7219.31.00	- -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인 것	5%	EX*
6269	7219.32.00	- -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5%	EX*
6270	7219.33.00	- - 두께가 1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0%	E0
6271	7219.34.00	- - 두께가 0.5 밀리미터 이상 1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E0
6272	7219.35.00	- - 두께가 0.5 밀리미터 미만인 것	10%	EX*
6273	7219.90.00	- 기타	5%	EX*
	72.20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7220.11	- -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인 것		
6274	7220.11.10	- - - 후프와 스트립(폭이 400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E0
6275	7220.11.90	- - - 기타	0%	E0
	7220.12	- - 두께가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6276	7220.12.10	- - - 후프와 스트립(폭이 400 밀리미터 이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6277	7220.12.90	- - - 기타	0%	E0
	7220.20	-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6278	7220.20.10	- - 후프와 스트립(폭이 400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EX*
6279	7220.20.90	- - 기타	10%	EX*
	7220.90	- 기타		
6280	7220.90.10	- - 후프와 스트립(폭이 400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	EX*
6281	7220.90.90	- - 기타	5%	EX*
6282	**7221.00.00**	**스테인리스강의 봉[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0%	E0
	72.22	**스테인리스강의 그 밖의 봉과 스테인리스강의 형강(形鋼)**		
		- 봉[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6283	7222.11.00	- - 횡단면이 원형인 것	0%	E0
6284	7222.19.00	- - 기타	0%	E0
	7222.20	- 봉[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6285	7222.20.10	- - 횡단면이 원형인 것	0%	E0
6286	7222.20.90	- - 기타	0%	E0
	7222.30	- 그 밖의 봉		
6287	7222.30.10	- - 횡단면이 원형인 것	0%	E0
6288	7222.30.90	- - 기타	0%	E0
	7222.40	- 형강(形鋼)		
6289	7222.40.10	- - 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5%	E1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6290	7222.40.90	- - 기타	5%	E10
	72.23	**스테인리스강의 선(線)**		
6291	7223.00.10	- 횡단면이 13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	E0
6292	7223.00.90	- 기타	0%	E0
		제 4 절 그 밖의 합금강과 합금이나 비합금강의 중공(中空)드릴봉		
	72.24	**그 밖의 합금강[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것으로 한정한다]과 그 밖의 합금강의 반제품**		
6293	7224.10.00	- 잉곳(ingot)과 그 밖의 일차제품 형태(primary form)인 것	0%	E0
6294	7224.90.00	- 기타	0%	E0
	72.25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규소전기강의 것		
6295	7225.11.00	- - 방향성(方向性)인 것	0%	E0
6296	7225.19.00	- - 기타	0%	E0
	7225.30	- 기타[코일 모양인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6297	7225.30.10	- - 고속도강의 것	0%	E0
6298	7225.30.90	- - 기타	0%	E0
	7225.40	- 기타[코일 모양은 제외하고,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6299	7225.40.10	- - 고속도강의 것	0%	E0
6300	7225.40.90	- - 기타	0%	E0
	7225.50	- 기타[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6301	7225.50.10	- - 고속도강의 것	0%	E0
6302	7225.50.90	- - 기타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 기타		
	7225.91	- - 아연을 전해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6303	7225.91.10	- - - 고속도강의 것	0%	E0
6304	7225.91.90	- - - 기타	0%	E0
	7225.92	- - 그 밖의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6305	7225.92.10	- - - 고속도강의 것	0%	E0
6306	7225.92.90	- - - 기타	0%	E0
	7225.99	- - 기타		
6307	7225.99.10	- - - 고속도강의 것	0%	E0
6308	7225.99.90	- - - 기타	0%	E0
	72.26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 규소전기강의 것		
	7226.11	- - 방향성(方向性)인 것		
6309	7226.11.10	- - - 후프와 스트립(폭이 400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E0
6310	7226.11.90	- - - 기타	0%	E0
	7226.19	- - 기타		
6311	7226.19.10	- - - 후프와 스트립(폭이 400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E0
6312	7226.19.90	- - - 기타	0%	E0
	7226.20	- 고속도강의 것		
6313	7226.20.10	- - 후프와 스트립(폭이 400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E0
6314	7226.20.90	- - 기타	0%	E0
		- 기타		
	7226.91	- -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6315	7226.91.10	- - - 후프와 스트립(폭이 400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E0
6316	7226.91.90	- - - 기타	0%	E0
	7226.92	- -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6317	7226.92.10	- - - 후프와 스트립(폭이 400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E0
6318	7226.92.90	- - - 기타	0%	E0
	7226.99	- - 기타		
		- - - 후프와 스트립(폭이 400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6319	7226.99.11	- - - -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0%	E0
6320	7226.99.19	- - - - 기타	0%	E0
		- - - 기타		
6321	7226.99.91	- - - -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0%	E0
6322	7226.99.99	- - - - 기타	0%	E0
	72.27	**그 밖의 합금강의 봉[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으로 한정한다]**		
6323	7227.10.00	- 고속도강의 것	0%	E0
6324	7227.20.00	- 실리코망간강의 것	0%	E0
6325	7227.90.00	- 기타	0%	E0
	72.28	**그 밖의 합금강의 그 밖의 봉, 그 밖의 합금강의 형강(形鋼), 합금강이나 비합금강의 중공(中空)드릴봉**		
	7228.10	- 고속도강의 봉		
6326	7228.10.10	- - 횡단면이 원형인 것	0%	E0
6327	7228.10.90	- - 기타	0%	E0
	7228.20	- 실리코망간강의 봉		
		- - 횡단면이 원형인 것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6328	7228.20.11	- - - 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0%	E0
6329	7228.20.19	- - - 기타	0%	E0
		- - 기타		
6330	7228.20.91	- - - 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0%	E0
6331	7228.20.99	- - - 기타	0%	E0
	7228.30	- 그 밖의 봉[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6332	7228.30.10	- - 횡단면이 원형인 것	0%	E0
6333	7228.30.90	- - 기타	0%	E0
	7228.40	- 그 밖의 봉[단조(鍛造)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6334	7228.40.10	- - 횡단면이 원형인 것	0%	E0
6335	7228.40.90	- - 기타	0%	E0
	7228.50	- 그 밖의 봉[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6336	7228.50.10	- - 횡단면이 원형인 것	0%	E0
6337	7228.50.90	- - 기타	0%	E0
	7228.60	- 그 밖의 봉		
6338	7228.60.10	- - 횡단면이 원형인 것	0%	E0
6339	7228.60.90	- - 기타	0%	E0
	7228.70	- 형강(形鋼)		
6340	7228.70.10	- - 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5%	E3
6341	7228.70.90	- - 기타	5%	E3
	7228.80	- 중공(中空)드릴봉		
		-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0.6 이상인 것		
6342	7228.80.11	- - - 횡단면이 원형인 것	0%	E0
6343	7228.80.19	- - - 기타	0%	E0
6344	7228.80.90	- - 기타	0%	E0
	72.29	그 밖의 합금강의 선(線)		
6345	7229.20.00	- 실리코망간강의 것	0%	E0
	7229.90	- 기타		
6346	7229.90.20	- - 횡단면이 5.5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E0
6347	7229.90.30	- - 기타(고속도강의 것으로 한정한다)	0%	E0
		- - 기타		
6348	7229.90.91	- - - 크로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0.5 이상인 것	0%	E0
6349	7229.90.99	- - - 기타	0%	E0
	73.01	철강으로 만든 널말뚝(sheet piling)(구멍을 뚫은 것인지 또는 조립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용접된 형강(形鋼)		
6350	7301.10.00	- 널말뚝(sheet piling)	0%	E0
6351	7301.20.00	- 형강(形鋼)	10%	E15
	73.02	철강으로 만든 철도용이나 궤도용 선로의 건설재료[레일(rail)·첵레일(check-rail)과 랙레일(rack rail)·스위치 블레이드(switch blade)·교차구류(crossing frog)·전철봉(point rod)과 그 밖의 크로싱피스(crossing piece)·받침목(크로스타이)·이음매판(fish-plate)·좌철(座鐵)·좌철(座鐵)쐐기·밑판(sole plate)(베이스플레이트)·레일 클립·받침판(bedplate)·격재(tie)와 레일의 접속이나 고착에 전용되는 그 밖의 재료로 한정한다]		
6352	7302.10.00	- 레일(rail)	0%	E0
6353	7302.30.00	- 스위치 블레이드(switch blade)·교차구류(crossing frog)·전철봉(point rod)과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그 밖의 크로싱피스(crossing piece)		
6354	7302.40.00	- 이음매판(fishplate)과 받침판(sole plate)	0%	E0
	7302.90	- 기타		
6355	7302.90.10	- - 받침목(크로스타이)	0%	E0
6356	7302.90.90	- - 기타	0%	E0
	73.03	**주철로 만든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		
		- 관(管)		
6357	7303.00.11	- - 허브리스(hubless) 관	8%	E3
6358	7303.00.19	- - 기타	8%	E3
		- 기타		
6359	7303.00.91	- - 바깥지름이 100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E3
6360	7303.00.99	- - 기타	8%	E3
	73.04	**철강(주철은 제외한다)으로 만든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무계목(無繼目)으로 한정한다]**		
		- 오일이나 가스 배관용 파이프라인		
6361	7304.11.00	- - 스테인리스강의 것	0%	E0
6362	7304.19.00	- - 기타	0%	E0
		- 유정용이나 가스정용 케이싱·튜빙 및 드릴파이프		
	7304.22	- -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드릴파이프		
6363	7304.22.10	- - - 항복강도가 80,000psi 미만이고, 끝을 나선가공 하지 않은 파이프-엔드(pipe-end)의 것	5%	E10
6364	7304.22.90	- - - 기타	8%	E7
	7304.23	- - 그 밖의 드릴파이프		
6365	7304.23.10	- - - 항복강도가 80,000psi 미만이고, 끝을 나선가공 하지 않은 파이프-엔드(pipe-	5%	E7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end)의 것		
6366	7304.23.90	- - - 기타	8%	E15
	7304.24	- - 기타(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6367	7304.24.10	- - - 케이싱과 튜빙[항복강도가 80,000psi 미만이고, 끝을 나선가공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	E10
6368	7304.24.90	- - - 기타	8%	E7
	7304.29	- - 기타		
6369	7304.29.10	- - - 케이싱과 튜빙[항복강도가 80,000psi 미만이고, 끝을 나선가공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	E10
6370	7304.29.90	- - - 기타	8%	E7
		- 기타(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철이나 비합금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7304.31	- - 냉간인발(冷間引拔)하거나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6371	7304.31.10	- - - 드릴로드 케이싱과 튜빙(tubing)[핀(pin)과 박스 스레드(box threads)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	E0
6372	7304.31.20	- - - 42,000psi 이상의 압력을 견뎌낼 수 있는 고압파이프의 것	0%	E0
6373	7304.31.40	- - - 기타(바깥지름이 140 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탄소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45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0%	E0
6374	7304.31.90	- - - 기타	0%	E0
	7304.39	- - 기타		
6375	7304.39.20	- - - 42,000psi 이상의 압력을 견뎌낼 수 있는 고압파이프의 것	0%	E0
6376	7304.39.40	- - - 기타(바깥지름이 140 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탄소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45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6377	7304.39.90	- - - 기타	0%	E0
		- 기타(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6378	7304.41.00	- - 냉간인발(冷間引拔)하거나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0%	E0
6379	7304.49.00	- - 기타	0%	E0
		- 기타(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그 밖의 합금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7304.51	- - 냉간인발(冷間引拔)하거나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6380	7304.51.10	- - - 드릴로드 케이싱과 튜빙(tubing)[핀(pin)과 박스 스레드(box thread)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	E0
6381	7304.51.20	- - - 42,000psi 이상의 압력을 견뎌낼 수 있는 고압파이프의 것	0%	E0
6382	7304.51.90	- - - 기타	0%	E0
	7304.59	- - 기타		
6383	7304.59.10	- - - 42,000psi 이상의 압력을 견뎌낼 수 있는 고압파이프의 것	0%	E0
6384	7304.59.90	- - - 기타	0%	E0
	7304.90	- 기타		
6385	7304.90.10	- - 42,000psi 이상의 압력을 견뎌낼 수 있는 고압파이프의 것	0%	E0
6386	7304.90.30	- - 기타(바깥지름이 140 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탄소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45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0%	E0
6387	7304.90.90	- - 기타	0%	E0
	73.05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管)[예: 용접·리벳(rivet)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으로서 횡단면이 원형이고, 바깥지름이 406.4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 오일이나 가스 배관용 파이프라인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6388	7305.11.00	- - 세로 방향으로 서브머지드아크(submerged arc) 용접한 것	10%	E10
	7305.12	- - 기타(세로 방향으로 용접한 것으로 한정한다)		
6389	7305.12.10	- - - 전기저항용접(ERW)한 것	10%	E15
6390	7305.12.90	- - - 기타	10%	E10
	7305.19	- - 기타		
6391	7305.19.10	- - - 나선이나 나선형 서브머지드아크 용접한 것	15%	E15
6392	7305.19.90	- - - 기타	15%	E10
6393	7305.20.00	- 유정용이나 가스정용 케이싱	10%	E10
		-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한다)		
	7305.31	- - 세로 방향으로 용접한 것		
6394	7305.31.10	- - - 스테인리스강 관	10%	E10
6395	7305.31.90	- - - 기타	10%	E10
	7305.39	- - 기타		
6396	7305.39.10	- - - 42,000psi 이상의 압력을 견뎌낼 수 있는 고압파이프의 것	10%	E15
6397	7305.39.90	- - - 기타	10%	E15
6398	7305.90.00	- 기타	10%	E10
	73.06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예: 오픈심(open seam)·용접·리벳(rivet)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		
		- 오일이나 가스 배관용 파이프라인		
	7306.11	- - 용접한 것(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6399	7306.11.10	- - - 세로방향으로 전기저항용접(ERW)한 것	10%	E15
6400	7306.11.20	- - - 나선이나 나선형 서브머지드아크 용접한 것	10%	E15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6401	7306.11.90	- - - 기타	10%	E10
	7306.19	- - 기타		
6402	7306.19.10	- - - 세로방향으로 전기저항용접(ERW)한 것	10%	E10
6403	7306.19.20	- - - 나선이나 나선형 서브머지드아크 용접한 것	10%	E15
6404	7306.19.90	- - - 기타	10%	E10
		- 유정용이나 가스정용 케이싱과 튜빙		
6405	7306.21.00	- - 용접한 것(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10%	E15
6406	7306.29.00	- - 기타	10%	E15
	7306.30	-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철이나 비합금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 - 보일러 관		
6407	7306.30.11	- - - 바깥지름 12.5 밀리미터 미만인 것	0%	E0
6408	7306.30.19	- - - 기타	0%	E0
		- - 바깥지름이 15 밀리미터 이하인 강 튜브(구리로 도금하거나 불소수지로 도포하거나 크롬산아연으로 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6409	7306.30.21	- - - 바깥지름 12.5 밀리미터 미만인 것	0%	E0
6410	7306.30.29	- - - 기타	0%	E0
6411	7306.30.30	- - 바깥지름이 12 밀리미터 이하인 파이프[전기다리미나 전기밥솥용 발열체로 사용하는 시드(sheath) 파이프(히터 파이프)용으로 한정한다]	0%	E0
		- - 42,000psi 이상의 압력을 견뎌낼 수 있는 고압파이프의 것		
6412	7306.30.41	- - - 바깥지름 12.5 밀리미터 미만인 것	0%	E0
6413	7306.30.49	- - - 기타	13%	E7
		- - 기타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6414	7306.30.91	- - - 내부지름이 12.5 밀리미터 이상, 바깥지름이 140 밀리미터 미만인 것(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45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13%	E7
6415	7306.30.92	- - - 내부지름이 12.5 밀리미터 미만인 것	5%	E0
6416	7306.30.99	- - - 기타	13%	E7
	7306.40	-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 - 보일러 관		
6417	7306.40.11	- - - 바깥지름이 12.5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E0
6418	7306.40.19	- - - 기타	5%	E0
6419	7306.40.20	- - 스테인리스강의 관(바깥지름이 10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	E0
6420	7306.40.30	- - 니켈을 전 중량의 100 분의 30 이상 함유하는 관(바깥지름이 10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E0
6421	7306.40.90	- - 기타	5%	E0
	7306.50	-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그 밖의 합금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 - 보일러 관		
6422	7306.50.11	- - - 바깥지름 12.5 밀리미터 미만인 것	0%	E0
6423	7306.50.19	- - - 기타	5%	E5
		- - 기타		
6424	7306.50.91	- - - 바깥지름 12.5 밀리미터 미만인 것	0%	E0
6425	7306.50.99	- - - 기타	10%	E5
		-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		
	7306.61	- - 횡단면이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인 것		
6426	7306.61.10	- - - 바깥 대각선 단면적이 12.5 밀리미터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미만인 것		
6427	7306.61.90	- - - 기타	15%	E15
	7306.69	- - 그 밖의 횡단면이 원형이 아닌 것		
6428	7306.69.10	- - - 바깥 대각선 단면적이 12.5 밀리미터 미만인 것	0%	E0
6429	7306.69.90	- - - 기타	15%	E15
	7306.90	- 기타		
		- - 구리로 땜질한 관		
6430	7306.90.11	- - - 바깥 대각선 단면적이 12.5 밀리미터 미만인 것	0%	E0
6431	7306.90.19	- - - 기타	10%	E15
		- - 기타		
6432	7306.90.91	- - - 42,000psi 이상의 압력을 견뎌낼 수 있는 고압파이프의 것(내부지름이 12.5 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E15
6433	7306.90.92	- - - 그 밖의 고압파이프	10%	E15
6434	7306.90.93	- - - 기타(바깥 대각선 단면적이 12.5 밀리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0%	E0
6435	7306.90.99	- - - 기타	10%	E10
	73.07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		
		- 주조한 연결구류		
	7307.11	- - 비가단주철(非可鍛鑄鐵)로 만든 것		
6436	7307.11.10	- - - 허브리스(hubless) 관 연결구류	8%	E5
6437	7307.11.90	- - - 기타	8%	E5
6438	7307.19.00	- - 기타	8%	E5
		- 기타(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7307.21	- - 플랜지(flange)		
6439	7307.21.10	- - - 내부 지름이 15 센티미터 미만인 것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6440	7307.21.90	- - - 기타	0%	E0
	7307.22	- - 나선가공한 엘보(elbow)·벤드(bend)·슬리브(sleeve)		
6441	7307.22.10	- - - 내부 지름이 15 센티미터 미만인 것	0%	E0
6442	7307.22.90	- - - 기타	0%	E0
	7307.23	- - 버트(butt)용접용 연결구		
6443	7307.23.10	- - - 내부 지름이 15 센티미터 미만인 것	0%	E0
6444	7307.23.90	- - - 기타	0%	E0
	7307.29	- - 기타		
6445	7307.29.10	- - - 내부 지름이 15 센티미터 미만인 것	0%	E0
6446	7307.29.90	- - - 기타	0%	E0
		- 기타		
	7307.91	- - 플랜지(flange)		
6447	7307.91.10	- - - 내부 지름이 15 센티미터 미만인 것	0%	E0
6448	7307.91.90	- - - 기타	0%	E0
	7307.92	- - 나선가공한 엘보(elbow)·벤드(bend)·슬리브(sleeve)		
6449	7307.92.10	- - - 내부 지름이 15 센티미터 미만인 것	0%	E0
6450	7307.92.90	- - - 기타	0%	E0
	7307.93	- - 버트(butt)용접용 연결구		
6451	7307.93.10	- - - 내부 지름이 15 센티미터 미만인 것	0%	E0
6452	7307.93.90	- - - 기타	0%	E0
	7307.99	- - 기타		
6453	7307.99.10	- - - 내부 지름이 15 센티미터 미만인 것	0%	E0
6454	7307.99.90	- - - 기타	0%	E0
	73.08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 9406 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대·봉·형재(形材)·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		
	7308.10	- 다리와 교량		
6455	7308.10.10	- - 시어(shear) 커넥터로 결합한 조립식 모듈형의 것	8%	E7
6456	7308.10.90	- - 기타	8%	E7
	7308.20	- 탑과 격자주(格子柱)		
		- - 탑		
6457	7308.20.11	- - - 시어(shear) 커넥터로 결합한 조립식 모듈형의 것	8%	E7
6458	7308.20.19	- - - 기타	8%	E7
		- - 격자주		
6459	7308.20.21	- - - 시어(shear) 커넥터로 결합한 조립식 모듈형의 것	8%	E7
6460	7308.20.29	- - - 기타	8%	E7
	7308.30	- 문·창과 이들의 틀과 문지방		
6461	7308.30.10	- - 문(두께가 6 밀리미터 이상 8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8%	E7
6462	7308.30.90	- - 기타	8%	E7
	7308.40	- 비계(飛階)·차단기·지주·굉도 받침에 사용되는 기구		
6463	7308.40.10	- - 시어(shear) 커넥터로 결합한 조립식 모듈형의 것	8%	E7
6464	7308.40.90	- - 기타	8%	E7
	7308.90	- 기타		
6465	7308.90.20	- - 시어(shear) 커넥터로 결합한 조립식 모듈형의 것	8%	E7
6466	7308.90.40	- - 물결모양과 곡면으로 된 판이나 시트(sheet)[도관(conduit), 지하수로(culvert)나 터널용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	8%	E7
6467	7308.90.50	- - 선박용 레일	8%	E7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6468	7308.90.60	- - 구멍을 뚫은 케이블 트레이	8%	E7
		- - 기타		
6469	7308.90.92	- - - 가드레일	8%	E7
6470	7308.90.99	- - - 기타	8%	E7
	73.09	**철강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저장조·탱크·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냉각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 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물품 운반 또는 포장용의 것		
6471	7309.00.11	- - 내장이나 열절연한 것	5%	E3
6472	7309.00.19	- - 기타	5%	E3
		- 기타		
6473	7309.00.91	- - 내장이나 열절연한 것	5%	E3
6474	7309.00.99	- - 기타	5%	E3
	73.10	**철강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탱크·통·드럼·캔·상자와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냉각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용적이 300 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7310.10	- 용적이 50 리터 이상인 것		
6475	7310.10.10	- - 주석도금한 것	0%	E0
		- - 기타		
6476	7310.10.91	- - - 주조용, 단조용이나 스탬핑용(거친 상태의 것으로 한정한다)	0%	E0
6477	7310.10.99	- - - 기타	10%	E15
		- 용적이 50 리터 미만인 것		
	7310.21	- - 납땜이나 크림핑(crimping)으로 봉합되는 통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6478	7310.21.10	- - - 용적이 1 리터 미만인 것	6%	E0
		- - - 기타		
6479	7310.21.91	- - - - 주석도금한 것	10%	E0
6480	7310.21.99	- - - - 기타	10%	E15
	7310.29	- - 기타		
6481	7310.29.10	- - - 용적이 1 리터 미만인 것	10%	E15
		- - - 기타		
6482	7310.29.91	- - - - 주석도금한 것	10%	E15
6483	7310.29.92	- - - - 그 밖의 주조용, 단조용이나 스탬핑용(거친 상태의 것으로 한정한다)	3%	E3
6484	7310.29.99	- - - - 기타	10%	E15
	73.11	**철강으로 만든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으로 한정한다)**		
		- 이음새가 없는 철제실린더		
6485	7311.00.23	- - 용적이 30 리터 미만인 것[액화석유가스(LPG)용으로 한정한다]	0%	E0
6486	7311.00.24	- - 용적이 30 리터 이상 110 리터 미만인 것[액화석유가스(LPG)용으로 한정한다]	0%	E0
6487	7311.00.25	- - 기타[액화석유가스용(LPG)의 것으로 한정한다]	0%	E0
6488	7311.00.26	- - 기타(용적이 30 리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0%	E0
6489	7311.00.27	- - 기타(용적이 30 리터 이상 110 리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0%	E0
6490	7311.00.29	- - 기타	0%	E0
		- 기타		
6491	7311.00.91	- - 용적이 7.3 리터 이하인 것	8%	E7
6492	7311.00.92	- - 용적이 7.3 리터 초과 30 리터 미만인 것	8%	E7
6493	7311.00.94	- - 용적이 30 리터 이상 110 리터 미만인	8%	E7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것		
6494	7311.00.99	- - 기타	8%	E7
	73.12	**철강으로 만든 연선(stranded wire)·로프·케이블·엮은 밴드·사슬과 이와 유사한 것(전기절연한 것은 제외한다)**		
	7312.10	- 연선(stranded wire)·로프·케이블		
6495	7312.10.10	- - 록트(locked) 코일, 플렛튼드(flattened) 스트랜드와 비자전(non-rotating) 와이어로프	10%	E0
6496	7312.10.20	- - 지름이 3 밀리미터 이하인 황동을 도금이나 도포한 것	10%	E5
		- - 기타		
6497	7312.10.91	- - - 철강제의 연선(프레스트레싱 콘크리트의 것으로 한정한다)	10%	E5
6498	7312.10.99	- - - 기타	10%	E0
6499	7312.90.00	- 기타	10%	E0
6500	**7313.00.00**	**철강으로 만든 유자선(有刺銑), 대 또는 평선을 꼰 것[유자(有刺)의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느슨하게 꼰 2 중선으로서 울타리용으로 사용하는 것**	10%	E15
	73.14	**철강선으로 만든 클로스(cloth)[엔드리스 밴드(endless band)를 포함한다]·그릴·망·울타리·익스팬디드 메탈(expanded metal)**		
		- 직조한 클로스(cloth)		
6501	7314.12.00	- - 기계용 엔드리스 밴드(endless band)(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0%	E0
6502	7314.14.00	- - 그 밖의 직조한 클로스(cloth)(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0%	E0
	7314.19	- - 기타		
6503	7314.19.10	- - - 기계용 엔드리스 밴드(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6504	7314.19.90	- - - 기타	3%	E3
6505	7314.20.00	- 그릴·망 및 울타리[접점을 용접한 것으로 선의 횡단면의 최대치가 3 밀리미터 이상이고, 메시(mesh)의 크기가 100 제곱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E7
		- 그 밖의 그릴·망 및 울타리(접점을 용접한 것으로 한정한다)		
6506	7314.31.00	- -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10%	E7
6507	7314.39.00	- - 기타	10%	E7
		- 그 밖의 클로스(cloth)·그릴·망 및 울타리		
6508	7314.41.00	- -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10%	E7
6509	7314.42.00	- - 플라스틱으로 도포한 것	10%	E7
6510	7314.49.00	- - 기타	10%	E7
6511	7314.50.00	- 익스팬디드 메탈(expanded metal)	10%	E7
	73.15	**철강으로 만든 체인과 그 부분품**		
		- 마디가 있는 링크체인(link chain)과 그 부분품		
	7315.11	- - 롤러체인(roller chain)		
6512	7315.11.10	- - - 자전거나 모터사이클용 체인	5%	E5
		- - - 기타		
6513	7315.11.91	- - - - 트랜스미션 형[피치(pitch)의 길이가 6 밀리미터 이상이고 32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	E5
6514	7315.11.99	- - - - 기타	5%	E5
	7315.12	- - 그 밖의 체인		
6515	7315.12.10	- - - 자전거나 모터사이클용 체인	5%	E5
6516	7315.12.90	- - - 기타	5%	E5
	7315.19	- - 부분품		
6517	7315.19.10	- - - 자전거나 모터사이클용 체인의 것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6518	7315.19.90	- - - 기타	5%	E5
6519	7315.20.00	- 스키드체인(skid chain)	5%	E5
		- 그 밖의 체인		
6520	7315.81.00	- - 스터드링크(stud-link)	10%	E5
6521	7315.82.00	- - 기타(용접한 링크의 것으로 한정한다)	10%	E5
	7315.89	- - 기타		
6522	7315.89.10	- - - 자전거나 모터사이클용 체인	5%	E5
6523	7315.89.90	- - - 기타	5%	E5
	7315.90	- 그 밖의 부분품		
6524	7315.90.20	- - 자전거나 모터사이클용 체인의 것	0%	E0
6525	7315.90.90	- - 기타	0%	E0
6526	**7316.00.00**	**철강으로 만든 닻과 그 부분품**	0%	E0
	73.17	**철강으로 만든 못·압정·제도용 핀·물결 모양 못·스테이플(제 8305 호의 것은 제외한다)과 이와 유사한 물품[두부(頭部)가 그 밖의 다른 재료로 만든 것인지에 상관없으나 구리를 재료로 한 것은 제외한다]**		
6527	7317.00.10	- 머리가 둥근 못(wire nail)	5%	E5
6528	7317.00.20	- 스테이플	0%	E0
6529	7317.00.30	- 철도레일 침목용 큰 못, 갱 네일(gang nail)	0%	E0
6530	7317.00.90	- 기타	8%	E5
	73.18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코치 스크루(coach screw)·스크루 훅(screw hook)·리벳(rivet)·코터(cotter)·코터핀(cotter-pin)·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 나선가공한 제품		
6531	7318.11.00	- - 코치 스크루(coach screw)	8%	E5
	7318.12	- - 그 밖의 목재용 스크루(screw)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6532	7318.12.10	- - - 바깥지름이 16 밀리미터 이하인 생크를 갖는 것	8%	E5
6533	7318.12.90	- - - 기타	8%	E5
6534	7318.13.00	- - 스크루 훅(screw hook)과 스크루 링(screw ring)	8%	E7
	7318.14	- - 셀프태핑 스크루(self-tapping screw)		
6535	7318.14.10	- - - 바깥지름이 16 밀리미터 이하인 생크를 갖는 것	8%	E7
6536	7318.14.90	- - - 기타	8%	E7
	7318.15	- - 그 밖의 스크루(screw)와 볼트(bolt)[너트(nut)나 와셔(washer)가 붙어있는지에 상관없다]		
6537	7318.15.10	- - - 바깥지름이 16 밀리미터 이하인 생크를 갖는 것	8%	E15
6538	7318.15.90	- - - 기타	8%	E15
	7318.16	- - 너트(nut)		
6539	7318.16.10	- - - 바깥지름이 16 밀리미터 이하인 생크를 갖는 볼트용	8%	E7
6540	7318.16.90	- - - 기타	8%	E7
	7318.19	- - 기타		
6541	7318.19.10	- - - 바깥지름이 16 밀리미터 이하인 생크를 갖는 것	8%	E5
6542	7318.19.90	- - - 기타	8%	E5
		- 나선가공하지 않은 제품		
6543	7318.21.00	- - 스프링 와셔(spring washer)와 그 밖의 록 와셔(lock washer)	8%	E7
6544	7318.22.00	- - 그 밖의 와셔(washer)	8%	E15
	7318.23	- - 리벳(rivet)		
6545	7318.23.10	- - - 바깥지름이 16 밀리미터 이하인 것	10%	E15
6546	7318.23.90	- - - 기타	10%	E15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6547	7318.24.00	- - 코터(cotter)와 코터핀(cotter-pin)	8%	E5
	7318.29	- - 기타		
6548	7318.29.10	- - - 바깥지름이 16 밀리미터 이하인 생크를 갖는 것	8%	E15
6549	7318.29.90	- - - 기타	8%	E15
	73.19	**철강으로 만든 수봉침·수편침·돗바늘·코바늘·자수용 천공수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손으로 사용하는 것, 철강으로 만든 안전핀과 그 밖의 핀(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319.40	- 안전핀과 그 밖의 핀		
6550	7319.40.10	- - 안전핀	10%	E15
6551	7319.40.20	- - 그 밖의 핀	10%	E15
	7319.90	- 기타		
6552	7319.90.10	- - 수봉침·수편침 또는 자수침	5%	E0
6553	7319.90.90	- - 기타	5%	E0
	73.20	**철강으로 만든 스프링과 스프링판**		
	7320.10	- 판상 스프링과 그 판		
		- - 제 8429 호나 제 8430 호의 차량이나 기계류에 적합한 것		
6554	7320.10.11	- - - 제 8702 호, 제 8703 호나 제 8704 호의 차량용에 적합한 것	8%	E10
6555	7320.10.12	- - - 그 밖의 차량용에 적합한 것	8%	E10
6556	7320.10.19	- - - 기타	8%	E10
6557	7320.10.90	- - 기타	8%	E5
	7320.20	- 나선용 스프링		
		- - 제 8429 호나 제 8430 호의 차량이나 기계류에 적합한 것		
6558	7320.20.11	- - - 차량용	8%	E10
6559	7320.20.12	- - - 토목용 기계용	8%	E1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6560	7320.20.19	- - - 기타	8%	E10
6561	7320.20.90	- - 기타	6%	E5
	7320.90	- 기타		
6562	7320.90.10	- - 차량용에 적합한 것	0%	E0
6563	7320.90.90	- - 기타	0%	E0
	73.21	철강으로 만든 스토브(stove)·레인지(range)·화상(火床)·조리기(중앙난방용 보조보일러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바비큐(barbecue)·화로·가스풍로·가열판과 이와 유사한 비전기식 가정용 기구와 이들의 부분품		
		- 조리용 기구와 가열판		
6564	7321.11.00	- - 가스연료용이나 가스와 그 밖의 연료 겸용	5%	E5
6565	7321.12.00	- - 액체연료용	5%	E5
	7321.19	- - 기타(고체연료용 기구를 포함한다)		
6566	7321.19.10	- - - 고체연료용	5%	E15
6567	7321.19.90	- - - 기타	5%	E15
		- 그 밖의 기구		
6568	7321.81.00	- - 가스연료용이나 가스와 그 밖의 연료 겸용	5%	E5
6569	7321.82.00	- - 액체연료용	5%	E5
6570	7321.89.00	- - 기타(고체연료용 기구를 포함한다)	5%	E15
	7321.90	- 부분품		
6571	7321.90.10	- - 등유 스토브의 것	5%	E5
6572	7321.90.20	- - 가스 연료를 이용한 조리용 기구와 가열판의 것	5%	E5
6573	7321.90.90	- - 기타	5%	E5
	73.22	철강으로 만든 방열기(중앙난방용으로 한정하고, 전기가열식은 제외한다)와 이들의 부분품, 동력구동식 송풍기를 갖춘 공기가열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기와 온풍배분기(냉풍이나 조절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배분기를 포함하고, 전기가열식은 제외한다)와 이들의 부분품		
		- 방열기와 그 부분품		
6574	7322.11.00	- - 주철로 만든 것	0%	E0
6575	7322.19.00	- - 기타	0%	E0
6576	7322.90.00	- 기타	0%	E0
	73.23	**철강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철강의 울, 철강으로 만든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6577	7323.10.00	- 철강의 울, 철강으로 만든 용기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10%	E0
		- 기타		
	7323.91	- - 주철로 만든 것으로 법랑제가 아닌 것		
6578	7323.91.10	- - - 주방용품	10%	E15
6579	7323.91.20	- - - 재떨이	10%	E0
6580	7323.91.90	- - - 기타	10%	E15
6581	7323.92.00	- - 주철로 만든 것으로 법랑제의 것	10%	E15
	7323.93	- -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		
6582	7323.93.10	- - - 주방용품	0%	E0
6583	7323.93.20	- - - 재떨이	10%	E0
6584	7323.93.90	- - - 기타	10%	E15
6585	7323.94.00	- - 철강(주철은 제외한다)으로 만든 것으로 법랑제의 것	0%	E0
	7323.99	- - 기타		
6586	7323.99.10	- - - 주방용품	10%	E15
6587	7323.99.20	- - - 재떨이	1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6588	7323.99.90	- - - 기타	10%	E15
	73.24	**철강으로 만든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7324.10	- 설거지통과 세면대(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6589	7324.10.10	- - 주방용 설거지통	10%	E0
6590	7324.10.90	- - 기타	10%	E15
		- 목욕통		
	7324.21	- - 주철로 만든 것(법랑제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6591	7324.21.10	- - - 내부 모양이 직사각형이나 장방형인 욕조의 것	5%	E0
6592	7324.21.90	- - - 기타	5%	E0
	7324.29	- - 기타		
6593	7324.29.10	- - - 내부 모양이 직사각형이나 장방형인 욕조의 것	5%	E0
6594	7324.29.90	- - - 기타	5%	E0
	7324.90	-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6595	7324.90.10	- - 수세식 화장실이나 소변기(고정 형태)	5%	E0
6596	7324.90.30	- - 변기와 이동식 소변기	10%	E0
		- - 기타		
6597	7324.90.91	- - - 주방용 설거지통이나 욕조의 부분품	10%	E0
6598	7324.90.93	- - - 수세식 화장실이나 소변기(고정형태)의 부분품	10%	E0
6599	7324.90.99	- - - 기타	10%	E0
	73.25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주물제품**		
	7325.10	- 비가단주철(非可鍛鑄鐵)로 만든 것		
6600	7325.10.20	- - 맨홀 커버·그레이팅과 그들의 프레임	5%	E3
6601	7325.10.30	- - 라텍스 수집용 스파우트와 컵	0%	E0
6602	7325.10.90	- - 기타	5%	E3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 기타		
6603	7325.91.00	- - 분쇄기용 그라인딩볼(grinding ball)과 이와 유사한 물품	5%	E5
	7325.99	- - 기타		
6604	7325.99.20	- - - 맨홀 커버·그레이팅과 그들의 프레임	5%	E5
6605	7325.99.90	- - - 기타	5%	E5
	73.26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 단조물(鍛造物)(이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6606	7326.11.00	- - 분쇄기용 그라인딩볼(grinding ball)과 이와 유사한 물품	3%	E3
6607	7326.19.00	- - 기타	0%	E0
	7326.20	- 철강선으로 만든 제품		
6608	7326.20.50	- - 가금류 우리와 이와 유사한 것	10%	E0
6609	7326.20.60	- - 쥐덫	5%	E0
6610	7326.20.90	- - 기타	10%	E15
	7326.90	- 기타		
6611	7326.90.10	- - 배의 키(rudder)	0%	E0
6612	7326.90.20	- - 라텍스 수집용 스파우트와 컵	5%	E0
6613	7326.90.30	- - 스테인리스강 클램프 조립품(고무 슬리브가 있는 것으로, 허브리스 주철 관과 관 연결구류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5%	E5
6614	7326.90.60	- - 분젠 버너	5%	E5
6615	7326.90.70	- - 편자, 승마구두 스퍼(spur)	5%	E0
		- - 기타		
6616	7326.90.91	- - - 담배 케이스와 박스	5%	E0
6617	7326.90.99	- - - 기타	5%	E3
6618	**7401.00.00**	**구리의 매트(mat), 시멘트동(침전동)**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6619	7402.00.00	정제하지 않은 구리와 전해정제용 구리 양극	0%	E0
	74.03	정제한 구리와 구리합금(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정제한 구리		
6620	7403.11.00	- - 음극과 음극의 형재	0%	E0
6621	7403.12.00	- - 와이어바(wire-bar)	0%	E0
6622	7403.13.00	- - 빌릿(billet)	0%	E0
6623	7403.19.00	- - 기타	0%	E0
		- 구리합금		
6624	7403.21.00	- - 구리-아연의 합금(황동)	0%	E0
6625	7403.22.00	- - 구리-주석의 합금(청동)	0%	E0
6626	7403.29.00	- - 그 밖의 구리합금[제 7405 호의 모합금(master alloy)은 제외한다]	0%	E0
6627	7404.00.00	구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E0
6628	7405.00.00	구리의 모합금(master alloy)	0%	E0
	74.06	구리의 가루와 플레이크(flake)		
6629	7406.10.00	- 비(非)층상조직인 가루	0%	E0
6630	7406.20.00	- 층상조직인 가루, 플레이크(flake)	0%	E0
	74.07	구리의 봉과 프로파일(profile)		
	7407.10	-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6631	7407.10.30	- - 프로파일(profile)	0%	E0
6632	7407.10.40	- - 봉(bar, rod)	0%	E0
		-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6633	7407.21.00	- - 구리-아연 합금(황동)으로 만든 것	0%	E0
6634	7407.29.00	- - 기타	0%	E0
	74.08	구리의 선		
		-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7408.11	- -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6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6635	7408.11.10	- - -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14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5%	E3
6636	7408.11.90	- - - 기타	5%	E3
6637	7408.19.00	- - 기타	0%	E0
		-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6638	7408.21.00	- - 구리-아연 합금(황동)으로 만든 것	0%	E0
6639	7408.22.00	- - 구리-니켈 합금(백동)으로 만든 것이나 구리-니켈-아연 합금(양백)으로 만든 것	0%	E0
6640	7408.29.00	- - 기타	0%	E0
	74.09	**구리의 판·시트(sheet)·스트립(두께가 0.1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6641	7409.11.00	- - 코일 모양인 것	0%	E0
6642	7409.19.00	- - 기타	0%	E0
		- 구리-아연 합금(황동)으로 만든 것		
6643	7409.21.00	- - 코일 모양인 것	0%	E0
6644	7409.29.00	- - 기타	0%	E0
		- 구리-주석 합금으로 만든 것(청동)		
6645	7409.31.00	- - 코일 모양인 것	0%	E0
6646	7409.39.00	- - 기타	0%	E0
6647	7409.40.00	- 구리-니켈 합금(백동)으로 만든 것이나 구리-니켈-아연 합금(양백)으로 만든 것	0%	E0
6648	7409.90.00	- 그 밖의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0%	E0
	74.10	**구리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판지·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15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 뒷면을 붙이지 않은 것		
6649	7410.11.00	- -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0%	E0
6650	7410.12.00	- -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0%	E0
		- 뒷면을 붙인 것		
	7410.21	- -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6651	7410.21.10	- - - 인쇄회로판을 위한 동박적층기판	0%	E0
6652	7410.21.90	- - - 기타	0%	E0
6653	7410.22.00	- -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0%	E0
	74.11	**구리로 만든 관(管)**		
6654	7411.10.00	-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0%	E0
		-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6655	7411.21.00	- - 구리-아연 합금(황동)으로 만든 것	0%	E0
6656	7411.22.00	- - 구리-니켈 합금(백동)으로 만든 것이나 구리-니켈-아연 합금(양백)으로 만든 것	0%	E0
6657	7411.29.00	- - 기타	0%	E0
	74.12	**구리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		
6658	7412.10.00	-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0%	E0
	7412.20	-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6659	7412.20.20	- - 호스 연결구류	0%	E0
		- - 기타		
6660	7412.20.91	- - - 구리-아연 합금(황동)으로 만든 것	0%	E0
6661	7412.20.99	- - - 기타	0%	E0
	74.13	**구리로 만든 연선·케이블·엮은 밴드와 이와 유사한 것(전기 절연한 것은 제외한다)**		
6662	7413.00.10	- 지름이 28.28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E0
6663	7413.00.90	- 기타	0%	E0
	74.15	**구리로 만든 못·압정·제도용 핀·스테이플(제 8305 호의 것은 제외한다)과 이와 유**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사한 물품[구리로 만든 것이나 구리로 만든 두부(頭部)를 가진 철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구리로 만든 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스크루훅(screw hook)·리벳(rivet)·코터(cotter)·코터핀(cotter-pin)·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7415.10	- 못과 압정, 제도용 핀·스테이플과 이와 유사한 물품		
6664	7415.10.10	- - 못	0%	E0
6665	7415.10.20	- - 스테이플	0%	E0
6666	7415.10.90	- - 기타	0%	E0
		- 나선가공을 하지 않은 그 밖의 물품		
6667	7415.21.00	- - 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	0%	E0
6668	7415.29.00	- - 기타	0%	E0
		- 그 밖의 나선가공한 물품		
	7415.33	- - 스크루(screw), 볼트(bolt)와 너트(nut)		
6669	7415.33.10	- - - 스크루	0%	E0
6670	7415.33.20	- - - 볼트와 너트	0%	E0
6671	7415.39.00	- - 기타	0%	E0
	74.18	**구리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구리로 만든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구리로 만든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7418.10	-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6672	7418.10.10	- -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용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6673	7418.10.30	- - 조리나 가열용 기구(가정용에 사용되는 전기식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와 그 부분품	0%	E0
6674	7418.10.90	- - 기타	0%	E0
6675	7418.20.00	-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0%	E0
	74.19	**구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		
6676	7419.10.00	- 체인과 그 부분품	0%	E0
		- 기타		
	7419.91	- - 주조·주형·압착·단조(鍛造)된 것(이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6677	7419.91.10	- - - 저장기·탱크·배트와 이와 유사한 용기(기계장치나 가열·냉각 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E0
6678	7419.91.90	- - - 기타	0%	E0
	7419.99	- - 기타		
		- - - 구리선으로 만든 클로스(cloth)(엔드리스밴드를 포함한다)·그릴 및 망, 구리로 만든 익스팬디드메탈		
6679	7419.99.31	- - - - 기계류의 것	0%	E0
6680	7419.99.39	- - - - 기타	0%	E0
6681	7419.99.40	- - - 스프링	0%	E0
6682	7419.99.50	- - - 담배 케이스나 박스	0%	E0
6683	7419.99.60	- - - 조리나 가열용 기구(가정용에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	0%	E0
6684	7419.99.70	- - - 특별히 종교 의식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제품	0%	E0
		- - - 기타		
6685	7419.99.91	- - - - 전기 도금용의 양극과 용적측정구(가정용의 것은 제외한다)	0%	E0
6686	7419.99.92	- - - - 저장기·탱크·배트와 이와 유사한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용기(용적이 300 리터 이하인 기계장치나 가열·냉각 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6687	7419.99.99	- - - - 기타	0%	E0
	75.01	**니켈의 매트(mat)·소결(燒結)한 산화니켈·니켈 제련으로 생산된 그 밖의 중간생산물**		
6688	7501.10.00	- 니켈의 매트(mat)	0%	E0
6689	7501.20.00	- 소결(燒結)한 산화니켈과 니켈 제련으로 생산된 그 밖의 중간생산물	0%	E0
	75.02	**니켈의 괴(塊)**		
6690	7502.10.00	- 합금하지 않은 니켈	0%	E0
6691	7502.20.00	- 니켈 합금	0%	E0
6692	**7503.00.00**	**니켈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E0
6693	**7504.00.00**	**니켈의 가루와 플레이크(flake)**	0%	E0
	75.05	**니켈의 봉·프로파일(profile)·선(線)**		
		- 봉과 프로파일(profile)		
6694	7505.11.00	- -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0%	E0
6695	7505.12.00	- -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0%	E0
		- 선(線)		
6696	7505.21.00	- -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0%	E0
6697	7505.22.00	- -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0%	E0
	75.06	**니켈의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		
6698	7506.10.00	-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0%	E0
6699	7506.20.00	-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0%	E0
	75.07	**니켈로 만든 관(管)이나 관(管) 연결구류 [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		
		- 관(管)		
6700	7507.11.00	- -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6701	7507.12.00	- -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0%	E0
6702	7507.20.00	- 관(管) 연결구류	0%	E0
	75.08	**니켈로 만든 그 밖의 제품**		
6703	7508.10.00	- 니켈선으로 만든 클로스(cloth)·그릴 및 망	0%	E0
	7508.90	- 기타		
6704	7508.90.30	- - 볼트와 너트	0%	E0
6705	7508.90.50	- - 전기도금용 양극(전기분해에 의해 생산된 것을 포함한다)	0%	E0
6706	7508.90.90	- - 기타	0%	E0
	76.01	**알루미늄의 괴(塊)**		
6707	7601.10.00	-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	0%	E0
6708	7601.20.00	- 알루미늄 합금	0%	E0
6709	**7602.00.00**	**알루미늄 웨이스트와 스크랩**	0%	E0
	76.03	**알루미늄의 가루와 플레이크(flake)**		
6710	7603.10.00	- 비(非)층상조직인 가루	0%	E0
	7603.20	- 층상조직인 가루와 플레이크(flake)		
6711	7603.20.10	- - 플레이크(flake)	0%	E0
6712	7603.20.20	- - 층상조직인 가루	0%	E0
	76.04	**알루미늄의 봉과 프로파일(profile)**		
	7604.10	-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6713	7604.10.10	- - 봉(bar, rod)	0%	E0
6714	7604.10.90	- - 기타	0%	E0
		-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7604.21	- -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		
6715	7604.21.10	- - - 천공된 튜브 프로파일(자동차용 에어컨디셔닝 기계의 증발기 코일용으로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	E0
6716	7604.21.20	- - - 알루미늄 스페이서(한 면에 전체 길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이에 걸쳐 작은 구멍이 있는 중공프로파일)		
6717	7604.21.90	- - - 기타	0%	E0
	7604.29	- - 기타		
6718	7604.29.10	- - - 압출한 봉	0%	E0
6719	7604.29.30	- - - 지퍼용의 와이(Y)형 프로파일(코일 모양으로 한정한다)	0%	E0
6720	7604.29.90	- - - 기타	0%	E0
	76.05	**알루미늄의 선**		
		-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6721	7605.11.00	- -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7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	E0
	7605.19	- - 기타		
6722	7605.19.10	- - - 지름이 0.0508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E0
6723	7605.19.90	- - - 기타	0%	E0
		-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6724	7605.21.00	- -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7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	E0
	7605.29	- - 기타		
6725	7605.29.10	- - - 지름이 0.254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E0
6726	7605.29.90	- - - 기타	0%	E0
	76.06	**알루미늄의 판·시트(sheet)·스트립(두께가 0.2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직사각형인 것(정사각형인 것을 포함한다)		
	7606.11	- -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6727	7606.11.10	- - - 롤링이나 프레싱으로 평평하거나 무늬가 있는 것(그 밖의 방법으로 표면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E0
6728	7606.11.90	- - - 기타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7606.12	- -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6729	7606.12.20	- - - 알루미늄 판(감광처리하지 않은 것으로서 인쇄산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E0
		- - - 판		
6730	7606.12.32	- - - - 캔 스톡 제조용(엔드 스톡과 탭 스톡을 포함하며, 코일 모양으로 한정한다)	0%	E0
6731	7606.12.33	- - - - 기타(코일의 폭이 1 미터를 초과하는 제 5082 호나 제 5182 호의 알루미늄 합금의 것으로 한정한다)	0%	E0
6732	7606.12.34	- - - - 기타(석판 시트 합금 HA 1052 견고성 H19 및 합금 HA 1050 견고성 H18)	0%	E0
6733	7606.12.35	- - - - 기타(표면가공 한 것으로 한정한다)	0%	E0
6734	7606.12.39	- - - - 기타	0%	E0
6735	7606.12.90	- - - 기타	0%	E0
		- 기타		
6736	7606.91.00	- -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0%	E0
6737	7606.92.00	- -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0%	E0
	76.07	**알루미늄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판지·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 뒷면을 붙이지 않은 것		
6738	7607.11.00	- - 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0%	E0
6739	7607.19.00	- - 기타	0%	E0
	7607.20	- 뒷면을 붙인 것		
6740	7607.20.10	- - 단열 호일	0%	E0
6741	7607.20.90	- - 기타	0%	E0
	76.08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管)**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6742	7608.10.00	-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0%	E0
6743	7608.20.00	-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0%	E0
6744	7609.00.00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	0%	E0
	76.10	알루미늄으로 만든 구조물(제 9406 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알루미늄으로 만든 판·봉·프로파일(profile)·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		
	7610.10	- 문·창과 이들의 틀과 문지방		
6745	7610.10.10	- - 문과 이들의 틀과 문지방	0%	E0
6746	7610.10.90	- - 기타	0%	E0
	7610.90	- 기타		
6747	7610.90.30	- - 석유 저장탱크용 내부나 외부용 플로팅 루프	0%	E0
		- - 기타		
6748	7610.90.91	- - - 다리와 교량, 탑 또는 격자주(格子柱)	0%	E0
6749	7610.90.99	- - - 기타	0%	E0
6750	7611.00.00	알루미늄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저장조·탱크·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냉각 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 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	E0
	76.12	알루미늄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통·드럼·캔·상자와 이와 유사한 용기(경질이나 연질의 튜브형 용기를 포함하고, 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며, 기계장치나 가열·냉각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 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고, 내장한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6751	7612.10.00	- 연질의 튜브형 용기	0%	E0
	7612.90	- 기타		
6752	7612.90.10	- - 신선한 밀크용의 이음매 없는 용기	0%	E0
6753	7612.90.90	- - 기타	0%	E0
6754	7613.00.00	알루미늄으로 만든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으로 한정한다)	0%	E0
	76.14	알루미늄으로 만든 연선·케이블·엮은 밴드와 이와 유사한 것(전기 절연한 것은 제외한다)		
	7614.10	- 철강심으로 되어 있는 것		
		- - 케이블		
6755	7614.10.11	- - - 지름이 25.3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E0
6756	7614.10.12	- - - 지름이 25.3 밀리미터 초과 28.28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E0
6757	7614.10.19	- - - 기타	0%	E0
6758	7614.10.90	- - 기타	0%	E0
	7614.90	- 기타		
		- - 케이블		
6759	7614.90.11	- - - 지름이 25.3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E0
6760	7614.90.12	- - - 지름이 25.3 밀리미터 초과 28.28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E0
6761	7614.90.19	- - - 기타	0%	E0
6762	7614.90.90	- - 기타	0%	E0
	76.15	알루미늄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알루미늄으로 만든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알루미늄으로 만든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7615.10	-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용(polishing)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6763	7615.10.10	- -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0%	E0
6764	7615.10.90	- - 기타	0%	E0
	7615.20	-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6765	7615.20.20	- - 요강·소변기와 침실용 변기	0%	E0
6766	7615.20.90	- - 기타	0%	E0
	76.16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7616.10	- 못·압정·스테이플(제 8305 호의 것은 제외한다)·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스크루 훅(screw hook)·리벳(rivet)·코터(cotter)·코터핀(cotter-pin)·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물품		
6767	7616.10.10	- - 못	0%	E0
6768	7616.10.20	- - 스테이플과 훅, 볼트와 너트	0%	E0
6769	7616.10.90	- - 기타	0%	E0
		- 기타		
6770	7616.91.00	- - 알루미늄선으로 만든 클로스(cloth)·그릴·망 및 울타리	0%	E0
	7616.99	- - 기타		
6771	7616.99.20	- - - 연필 제조용의 끼움고리(ferrules)	0%	E0
6772	7616.99.30	- - - 슬러그(slug)(둥근 것으로, 치수는 두께가 직경의 10 분의 1 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E0
6773	7616.99.40	- - - 보빈·스풀·릴 및 이와 유사한 지지구(방직용 섬유실용으로 한정한다)	0%	E0
		- - - 블라인드		
6774	7616.99.51	- - - - 베네치안 블라인드	0%	E0
6775	7616.99.59	- - - - 기타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6776	7616.99.60	- - - 라텍스 수집용 스파우트와 컵	0%	E0
6777	7616.99.70	- - - 담배 케이스나 박스	0%	E0
6778	7616.99.80	- - - 익스팬디드 메탈(expanded metal)	0%	E0
6779	7616.99.90	- - - 기타	0%	E0
	78.01	**납의 괴(塊)**		
6780	7801.10.00	- 정제한 납	0%	E0
		- 기타		
6781	7801.91.00	- - 안티모니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주된 그 밖의 원소의 것	0%	E0
6782	7801.99.00	- - 기타	0%	E0
6783	**7802.00.00**	**납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E0
	78.04	**납의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 가루와 플레이크(flake)**		
		- 판·시트(sheet)·스트립 및 박(箔)		
	7804.11	- - 시트(sheet)·스트립·박(箔)[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6784	7804.11.10	- - - 두께가 0.15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E0
6785	7804.11.90	- - - 기타	0%	E0
6786	7804.19.00	- - 기타	0%	E0
6787	7804.20.00	- 가루와 플레이크(flake)	0%	E0
	78.06	**납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6788	7806.00.20	- 봉·프로파일(profile)과 선(線)	0%	E0
6789	7806.00.30	- 관(管)과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	0%	E0
6790	7806.00.40	- 연모, 와셔, 전기도금용의 양극	0%	E0
6791	7806.00.90	- 기타	0%	E0
	79.01	**아연의 괴(塊)**		
		- 합금하지 않은 아연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6792	7901.11.00	- - 아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9.99 이상인 것	0%	E0
6793	7901.12.00	- - 아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9.99 미만인 것	0%	E0
6794	7901.20.00	- 아연 합금	0%	E0
6795	**7902.00.00**	**아연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E0
	79.03	**아연의 더스트(dust)·가루·플레이크(flake)**		
6796	7903.10.00	- 아연 더스트(dust)	0%	E0
6797	7903.90.00	- 기타	0%	E0
6798	**7904.00.00**	**아연의 봉·프로파일(profile)과 선(線)**	0%	E0
	79.05	**아연의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		
6799	7905.00.40	- 두께가 0.15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E0
6800	7905.00.90	- 기타	0%	E0
	79.07	**아연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6801	7907.00.30	- 홈통·지붕덮개·채광 창틀과 그 밖의 가공한 건축용 재료	0%	E0
6802	7907.00.40	- 관(管)과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	0%	E0
		- 기타		
6803	7907.00.91	- - 담배케이스나 박스, 재떨이	0%	E0
6804	7907.00.92	- - 그 밖의 가정용 물품	0%	E0
6805	7907.00.93	- - 전기도금용의 아연양극, 등사판, 못·압정·너트(nut)·볼트(bolt)·스크루(screw), 리벳(rivet)과 유사한 잠금장치, 베터리 셀을 위한 아연 납형	0%	E0
6806	7907.00.99	- - 기타	0%	E0
	80.01	**주석의 괴(塊)**		
6807	8001.10.00	- 합금하지 않은 주석	0%	E0
6808	8001.20.00	- 주석 합금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6809	**8002.00.00**	**주석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E0
	80.03	**주석의 봉·프로파일(profile)·선(線)**		
6810	8003.00.10	- 납땜 바	0%	E0
6811	8003.00.90	- 기타	0%	E0
	80.07	**주석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6812	8007.00.20	- 판·시트(sheet)와 스트립(두께가 0.2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E0
6813	8007.00.30	- 박[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판지·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가루와 플레이크	0%	E0
6814	8007.00.40	- 관(管)과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	0%	E0
		- 기타		
6815	8007.00.91	- - 담배케이스나 박스, 재떨이	0%	E0
6816	8007.00.92	- - 그 밖의 가정용 물품	0%	E0
6817	8007.00.93	- - 접을수 있는 관	0%	E0
6818	8007.00.99	- - 기타	0%	E0
	81.01	**텅스텐(월프람)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6819	8101.10.00	- 가루	0%	E0
		- 기타		
6820	8101.94.00	- - 텅스텐의 괴(塊)[단순히 소결(燒結)로 얻어지는 봉을 포함한다]	0%	E0
6821	8101.96.00	- - 선	0%	E0
6822	8101.97.00	-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E0
	8101.99	- - 기타		
6823	8101.99.10	- - - 봉[단순히 소결(燒結)로 얻어지는 것은 제외한다], 프로파일(profile)·시트(sheet)·스트립 및 박(箔)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6824	8101.99.90	- - - 기타	0%	E0
	81.02	**몰리브데늄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6825	8102.10.00	- 가루	0%	E0
		- 기타		
6826	8102.94.00	- - 몰리브데늄의 괴(塊)[단순히 소결(燒結)로 얻어지는 봉을 포함한다]	0%	E0
6827	8102.95.00	- - 봉[단순히 소결(燒結)로 얻어지는 것은 제외한다], 프로파일(profile)·판·시트(sheet)·스트립 및 박(箔)	0%	E0
6828	8102.96.00	- - 선	0%	E0
6829	8102.97.00	-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E0
6830	8102.99.00	- - 기타	0%	E0
	81.03	**탄탈륨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6831	8103.20.00	- 탄탈륨의 괴(塊)[단순히 소결(燒結)로 얻어지는 봉을 포함한다], 가루	0%	E0
6832	8103.30.00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E0
6833	8103.90.00	- 기타	0%	E0
	81.04	**마그네슘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 마그네슘의 괴(塊)		
6834	8104.11.00	- - 마그네슘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9.8 이상인 것	0%	E0
6835	8104.19.00	- - 기타	0%	E0
6836	8104.20.00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E0
6837	8104.30.00	- 크기에 따라 등급을 매긴 줄밥(rasping)·연삭설(turning) 및 알갱이, 가루	0%	E0
6838	8104.90.00	- 기타	0%	E0
	81.05	**코발트의 매트(mat)와 코발트 제련으로 생산된 그 밖의 중간생산물, 코발트와 그 제**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5.20	- 코발트의 매트(mat)와 코발트 제련으로 생산된 그 밖의 중간생산물, 괴(塊), 가루		
6839	8105.20.10	- - 코발트의 괴(塊)	0%	E0
6840	8105.20.90	- - 기타	0%	E0
6841	8105.30.00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E0
6842	8105.90.00	- 기타	0%	E0
	81.06	**비스무트(bismuth)와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6843	8106.00.10	- 비스무트(bismuth)의 괴(塊),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가루	0%	E0
6844	8106.00.90	- 기타	0%	E0
	81.07	**카드뮴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6845	8107.20.00	- 카드뮴의 괴(塊), 가루	0%	E0
6846	8107.30.00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E0
6847	8107.90.00	- 기타	0%	E0
	81.08	**티타늄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6848	8108.20.00	- 티타늄의 괴(塊), 가루	0%	E0
6849	8108.30.00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E0
6850	8108.90.00	- 기타	0%	E0
	81.09	**지르코늄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6851	8109.20.00	- 지르코늄의 괴(塊), 가루	0%	E0
6852	8109.30.00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E0
6853	8109.90.00	- 기타	0%	E0
	81.10	**안티모니와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6854	8110.10.00	- 안티모니의 괴(塊), 가루	0%	E0
6855	8110.20.00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E0
6856	8110.90.00	- 기타	0%	E0
	81.11	망간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6857	8111.00.10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E0
6858	8111.00.90	- 기타	0%	E0
	81.12	베릴륨·크로뮴·게르마늄·바나듐·갈륨·하프늄·인듐·니오븀(컬럼븀)·레늄·탈륨과 이것으로 만든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 베릴륨		
6859	8112.12.00	- - 괴(塊), 가루	0%	E0
6860	8112.13.00	-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E0
6861	8112.19.00	- - 기타	0%	E0
		- 크로뮴		
6862	8112.21.00	- - 괴(塊), 가루	0%	E0
6863	8112.22.00	-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E0
6864	8112.29.00	- - 기타	0%	E0
		- 탈륨		
6865	8112.51.00	- - 괴(塊), 가루	0%	E0
6866	8112.52.00	-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E0
6867	8112.59.00	- - 기타	0%	E0
		- 기타		
6868	8112.92.00	- - 괴(塊),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가루	0%	E0
6869	8112.99.00	- - 기타	0%	E0
6870	8113.00.00	서멧(cermet)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2.01	**수공구에 해당하는 것 중 가래·삽·곡괭이·픽스(picks)·괭이·포크와 쇠스랑, 도끼·빌훅(bill hook)과 이와 유사한 절단용 공구, 각종 전지가위, 낫·초절기(草切機)·울타리 전단기(剪斷機)·제재(製材)용 쐐기와 그 밖의 농업용·원예용·임업용 공구**		
6871	8201.10.00	- 가래와 삽	0%	E0
	8201.30	- 곡괭이·픽스(picks)·괭이·쇠스랑		
6872	8201.30.10	- - 괭이와 쇠스랑	0%	E0
6873	8201.30.90	- - 기타	0%	E0
6874	8201.40.00	- 도끼·빌훅(bill hook)과 이와 유사한 절단용 도구	0%	E0
6875	8201.50.00	- 전정가위와 이와 유사한 한손용 전정가위[가금(家禽)용 가위를 포함한다]	0%	E0
6876	8201.60.00	- 울타리 전단기(剪斷機)·양손용 전지가위와 이와 유사한 양손용 전지가위	0%	E0
6877	8201.90.00	- 그 밖의 농업용·원예용 또는 임업용 수공구	0%	E0
	82.02	**수동식 톱, 각종 톱날[슬리팅(slitting)·슬로팅(slotting)·이가 없는 톱날을 포함한다]**		
6878	8202.10.00	- 수동식 톱	0%	E0
6879	8202.20.00	- 띠톱의 날	0%	E0
		- 원형 톱날[슬리팅(slitting)이나 슬로팅(slotting) 톱날을 포함한다]		
6880	8202.31.00	- - 작용하는 부분을 강(鋼)으로 만든 것	0%	E0
6881	8202.39.00	- -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0%	E0
6882	8202.40.00	- 체인톱의 날	0%	E0
		- 그 밖의 톱날		
6883	8202.91.00	- - 금속가공용 직선형 톱날	0%	E0
	8202.99	- - 기타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6884	8202.99.10	- - - 직선형 톱날	0%	E0
6885	8202.99.90	- - - 기타	0%	E0
	82.03	줄·플라이어(plier)[절단용 플라이어(plier)를 포함한다]·집게·핀셋·금속 절단용 가위·파이프커터(pipe-cutter)·볼트크로퍼(bolt cropper)·천공펀치와 이와 유사한 수공구		
6886	8203.10.00	- 줄과 이와 유사한 공구	0%	E0
6887	8203.20.00	- 플라이어(plier)[절단용 플라이어(plier)를 포함한다]·집게·핀셋과 이와 유사한 공구	0%	E0
6888	8203.30.00	- 금속 절단용 가위와 이와 유사한 공구	0%	E0
6889	8203.40.00	- 파이프커터(pipe-cutter)·볼트크로퍼(bolt cropper)·천공펀치와 이와 유사한 공구	0%	E0
	82.04	수동식 스패너(spanner)와 렌치(wrench)(토크미터렌치)를 포함하나 탭렌치(tap wrench)는 제외한다], 호환성 스패너소켓(spanner socket)(손잡이가 달린 것인지에 상관없다)		
		- 수동식 스패너(spanner)와 렌치(wrench)		
6890	8204.11.00	- - 조절할 수 없는 것	0%	E0
6891	8204.12.00	- - 조절할 수 있는 것	0%	E0
6892	8204.20.00	- 호환성 스패너소켓(spanner socket)(손잡이가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0%	E0
	82.05	수공구(유리 가공용 다이아몬드공구를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블로램프(blow lamp), 공작기계 또는 워터제트 절단기의 부분품·부속품 외의 바이스(vice)·클램프(clamp)와 이와 유사한 것, 모루, 휴대용 화덕, 프레임을 갖춘 수동식이나 페달식 그라인딩휠(grinding wheel)		
6893	8205.10.00	- 드릴링·드레딩(threading)이나 태핑용(tapping) 공구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6894	8205.20.00	- 망치(hammer, sledge hammer)	0%	E0
6895	8205.30.00	- 목재 가공용 대패·끌·둥근끌과 이와 유사한 절단공구	0%	E0
6896	8205.40.00	- 스크루드라이버(screwdriver)	0%	E0
		- 그 밖의 수공구(유리 가공용 다이아몬드 공구를 포함한다)		
6897	8205.51.00	- - 가정용 공구	0%	E0
6898	8205.59.00	- - 기타	0%	E0
6899	8205.60.00	- 블로램프(blow lamp)	0%	E0
6900	8205.70.00	- 바이스(vice)·클램프(clamp)와 이와 유사한 것	0%	E0
6901	8205.90.00	- 기타(이 호의 둘 이상의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트를 포함한다)	0%	E0
6902	**8206.00.00**	**제 8202 호부터 제 8205 호까지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공구가 소매용 세트로 되어 있는 것**	0%	E0
	82.07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pressing)용·스탬핑(stamping)용·펀칭(punching)용·태핑(tapping)용·드레딩(threading)용·드릴링(drilling)용·보링(boring)용·브로칭(broaching)용·밀링(milling)용·터닝(turning)용·스크루드라이빙(screw driving)용][금속의 인발(引拔)용이나 압출용 다이(die)와 착암용이나 굴착용 공구를 포함한다]**		
		- 착암용이나 굴착용 공구		
6903	8207.13.00	- - 작용하는 부분을 서멧(cermet)으로 만든 것	0%	E0
6904	8207.19.00	- -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0%	E0
6905	8207.20.00	- 금속의 인발(引拔)용이나 압출용 다이(die)	0%	E0
6906	8207.30.00	- 프레싱(pressing)용·스탬핑(stamping)용 또는 펀칭(punching)용 공구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6907	8207.40.00	- 태핑(tapping)용이나 드레딩(threading)용 공구	0%	E0
6908	8207.50.00	- 드릴링(drilling)용 공구(착암기용은 제외한다)	0%	E0
6909	8207.60.00	- 보링(boring)용이나 브로칭(broaching)용 공구	0%	E0
6910	8207.70.00	- 밀링(milling)용 공구	0%	E0
6911	8207.80.00	- 터닝(turning)용 공구	0%	E0
6912	8207.90.00	- 그 밖의 호환성 공구	0%	E0
	82.08	**기계용이나 기구용 칼과 절단용 칼날**		
6913	8208.10.00	- 금속 가공용	0%	E0
6914	8208.20.00	- 목재 가공용	0%	E0
6915	8208.30.00	- 주방기구용이나 식품공업에 사용되는 기계용	0%	E0
6916	8208.40.00	- 농업용·원예용 또는 임업용 기계의 것	0%	E0
6917	8208.90.00	- 기타	0%	E0
6918	**8209.00.00**	**공구용 판·봉·팁과 이와 유사한 것[서멧(cermet)으로 만든 것으로서 장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E0
6919	**8210.00.00**	**수동식 기계기구(음식물의 조리·제공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 개의 중량이 10 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E0
	82.11	**칼(톱니가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절단용 칼날을 갖춘 것으로 한정하고 전정용 칼을 포함하며 제 8208 호의 칼은 제외한다)과 그 날**		
6920	8211.10.00	- 위 물품이 조합된 세트	0%	E0
		- 기타		
6921	8211.91.00	- - 칼날이 고정된 식탁용 칼	0%	E0
	8211.92	- - 칼날이 고정된 그 밖의 칼		
6922	8211.92.50	- - - 농업용·원예용 또는 임업용의 것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 - - 기타		
6923	8211.92.91	- - - - 잭 나이프 또는 스프링 나이프, 헌팅 나이프·다이빙 나이프 및 스카우트 나이프, 날의 길이가 15 센티미터 이상인 펜 나이프	0%	E0
6924	8211.92.99	- - - - 기타	0%	E0
	8211.93	- - 칼날이 고정된 것 외의 칼		
		- - - 농업용·원예용 또는 임업용의 것		
6925	8211.93.21	- - - - 비금속으로 만든 손잡이의 것	0%	E0
6926	8211.93.29	- - - - 기타	0%	E0
6927	8211.93.90	- - - 기타	0%	E0
	8211.94	- - 칼날		
6928	8211.94.10	- - - 농업용·원예용 또는 임업용 나이프용	0%	E0
6929	8211.94.90	- - - 기타	0%	E0
6930	8211.95.00	-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손잡이	0%	E0
	82.12	**면도기와 면도날[면도날의 블랭크(blank)로서 스트립 모양인 것을 포함한다]**		
6931	8212.10.00	- 면도기	0%	E0
	8212.20	- 안전면도날[면도날의 블랭크(blank)로서 스트립 모양인 것을 포함한다]		
6932	8212.20.10	- - 양쪽날의 레이저(razor) 면도기	0%	E0
6933	8212.20.90	- - 기타	0%	E0
6934	8212.90.00	- 그 밖의 부분품	0%	E0
6935	**8213.00.00**	**가위, 재단용 가위와 이와 유사한 가위 및 이들의 날**	0%	E0
	82.14	**그 밖의 칼붙이 제품[예: 이발기·정육점용이나 주방용 칼붙이·토막용 칼(chopper)과 다지기(mincing)용 칼·종이용 칼], 매니큐어·페디큐어(pedicure) 세트와 용구(손톱줄을 포함한다)**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6936	8214.10.00	- 종이용 칼·편지 개봉기·지우개용 칼·연필깎이와 그 날	0%	E0
6937	8214.20.00	- 매니큐어나 페디큐어(pedicure) 세트와 용구(손톱줄을 포함한다)	0%	E0
6938	8214.90.00	- 기타	0%	E0
	82.15	**스푼·포크·국자·스키머(skimmer)·케이크서버(cake-server)·생선용 칼·버터용 칼·설탕집게와 이와 유사한 주방용품이나 식탁용품**		
6939	8215.10.00	- 위 물품이 조합된 세트(최소한 한 가지는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으로 한정한다)	0%	E0
6940	8215.20.00	- 위 물품이 조합된 그 밖의 세트	0%	E0
		- 기타		
6941	8215.91.00	- -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	0%	E0
6942	8215.99.00	- - 기타	0%	E0
	83.01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자물쇠(열쇠식·다이얼식·전기작동식),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걸쇠와 걸쇠가 붙은 프레임으로 자물쇠가 결합되어 있는 것, 이들 물품에 사용되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열쇠**		
6943	8301.10.00	- 자물쇠	0%	E0
6944	8301.20.00	- 모터차량에 사용되는 자물쇠	0%	E0
6945	8301.30.00	- 가구에 사용되는 자물쇠	0%	E0
	8301.40	- 그 밖의 자물쇠		
6946	8301.40.10	- - 수갑	0%	E0
6947	8301.40.20	- - 도어 록	0%	E0
6948	8301.40.90	- - 기타	0%	E0
6949	8301.50.00	- 걸쇠와 걸쇠가 붙은 프레임으로 자물쇠가 결합된 것	0%	E0
6950	8301.60.00	- 부분품	0%	E0
6951	8301.70.00	- 별도로 제시되는 열쇠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3.02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블라인드·차체(coachwork)·마구·트렁크·장·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모자걸이·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castor),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자동도어 폐지기		
6952	8302.10.00	- 경첩	0%	E0
	8302.20	- 카스터(castor)		
6953	8302.20.10	- - 지름(타이어를 포함한다)이 100 밀리미터 초과하고 250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E0
6954	8302.20.90	- - 기타	0%	E0
	8302.30	-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6955	8302.30.10	- - 잠금쇠	0%	E0
6956	8302.30.90	- - 기타	0%	E0
		- 그 밖의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8302.41	- - 건물용으로 적합한 것		
		- - - 문에 사용되는 잠금쇠와 꺽쇠, 훅과 아이(eye), 볼트		
6957	8302.41.31	- - - - 잠금쇠	0%	E0
6958	8302.41.39	- - - - 기타	0%	E0
6959	8302.41.90	- - - 기타	0%	E0
	8302.42	- - 기타(가구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6960	8302.42.20	- - - 잠금쇠	0%	E0
6961	8302.42.90	- - - 기타	0%	E0
	8302.49	- - 기타		
6962	8302.49.10	- - - 마구용으로 적합한 것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 - - 기타		
6963	8302.49.91	- - - - 잠금쇠	0%	E0
6964	8302.49.99	- - - - 기타	0%	E0
6965	8302.50.00	- 모자걸이·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0%	E0
6966	8302.60.00	- 자동도어 폐지기	0%	E0
6967	8303.00.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갑하거나(armoured) 보강한 금고, 스트롱박스(strong-box) 및 스트롱룸(strong-room)용 문과 저장실, 현금함이나 손금고와 이와 유사한 것	0%	E0
	83.04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서류정리함·카드인덱스함·페이퍼 트레이(paper tray)·페이퍼 레스트(paper rest)·펜 트레이(pen tray)·사무실용 스탬프스탠드(stamp stand)와 이와 유사한 사무실용이나 책상용 비품(제 9403 호에 해당하는 사무실용 가구는 제외한다)		
6968	8304.00.10	- 서류정리함과 카드인덱스함	0%	E0
		- 기타		
6969	8304.00.91	- -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0%	E0
6970	8304.00.92	- - 니켈로 만든 것	0%	E0
6971	8304.00.93	- - 구리나 납으로 만든 것	0%	E0
6972	8304.00.99	- - 기타	0%	E0
	83.05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루스-리프(loose-leaf)식 바인더용이나 서류철용 피팅(fitting)·서신용 클립·레터코너(letter corner)·서류용 클립·색인용 태그와 이와 유사한 사무용품,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스트립 모양인 스테이플(staple)(예: 사무실용·가구류용·포장용의 것)		
	8305.10	- 루스-리프(loose-leaf)식 바인더용이나 서류철용 피팅(fitting)		
6973	8305.10.10	- - 이중 고리 와이어 바인더용의 것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6974	8305.10.90	- - 기타	0%	E0
	8305.20	- 스트립 모양인 스테이플(staple)		
6975	8305.20.10	- - 사무용으로 만든 것	0%	E0
6976	8305.20.20	- - 기타(철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0%	E0
6977	8305.20.90	- - 기타	0%	E0
	8305.90	-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6978	8305.90.10	- - 서류용 클립	0%	E0
6979	8305.90.90	- - 기타	0%	E0
	83.06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벨·징과 이와 유사한 것(전기식은 제외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품,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사진틀·그림틀이나 이와 유사한 틀,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거울		
6980	8306.10.00	- 벨·징과 이와 유사한 것	0%	E0
		-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품		
6981	8306.21.00	- -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	0%	E0
	8306.29	- - 기타		
6982	8306.29.10	- - - 구리나 납으로 만든 것	0%	E0
6983	8306.29.20	- - - 니켈로 만든 것	0%	E0
6984	8306.29.30	- - -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0%	E0
6985	8306.29.90	- - - 기타	0%	E0
	8306.30	- 사진틀·그림틀이나 이와 유사한 틀, 거울		
6986	8306.30.10	- - 구리로 만든 것	0%	E0
		- - 기타		
6987	8306.30.91	- - - 교차로 또는 급커브 구간에 교통현황을 보여주는 금속제 거울	0%	E0
6988	8306.30.99	- - - 기타	0%	E0
	83.07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플렉시블 튜빙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flexible tubing)(연결구류가 붙은 것인지에 상관없다)		
6989	8307.10.00	- 철강으로 만든 것	0%	E0
6990	8307.90.00	-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	0%	E0
	83.08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걸쇠·걸쇠가 붙은 프레임·버클(buckle)·버클(buckle)걸쇠·훅(hook)·아이(eye)·아일릿(eyelet)과 이와 유사한 것(의류 또는 의류 부속품·신발류·신변장식용품·손목시계·서적·차양·가죽제품·여행구나 마구 또는 그 밖의 제품으로 된 물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관 리벳(tubular rivet)이나 두 가닥 리벳(bifurcated rivet),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구슬과 스팽글(spangle)		
6991	8308.10.00	- 훅(hook)·아이(eye) 및 아일릿(eyelet)	0%	E0
6992	8308.20.00	- 관 리벳(tubular rivet)이나 두 가닥 리벳(bifurcated rivet)	0%	E0
	8308.90	-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6993	8308.90.10	- - 비드(bead)	0%	E0
6994	8308.90.20	- - 스팽글(spangle)	0%	E0
6995	8308.90.90	- - 기타	0%	E0
	83.09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전(栓)·캡·뚜껑[병마개·스크루캡(screw cap)·점적구용 전(栓)을 포함한다]·병용 캡슐·나선형 마개·마개용 커버·실(seal)과 그 밖의 포장용 부속품		
6996	8309.10.00	- 크라운코르크(crown cork)	0%	E0
	8309.90	- 기타		
6997	8309.90.10	- - 병용 마개	0%	E0
6998	8309.90.20	- - 알루미늄 캔의 탑 엔드(Top end)	0%	E0
6999	8309.90.60	- - 에어졸 캔의 엔드(end)(주석도금한 것으로 한정한다)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7000	8309.90.70	- - 그 밖의 캔용 캡	0%	E0
		- - 그 밖의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7001	8309.90.81	- - - 병캡과 스크루캡	0%	E0
7002	8309.90.89	- - - 기타	0%	E0
		- - 기타		
7003	8309.90.91	- - - 병캡과 스크루캡	0%	E0
7004	8309.90.92	- - - 금속 드럼용 마개, 마개용 커버, 실(seal), 케이스 모서리 보호물	0%	E0
7005	8309.90.99	- - - 기타	0%	E0
7006	8310.00.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사인판·명판·주소판과 이와 유사한 판, 숫자·문자와 그 밖의 심벌(제 9405 호의 것은 제외한다)	0%	E0
	83.11	비금속(卑金屬)이나 금속탄화물로 만든 선·봉·관·판·용접봉과 이와 유사한 물품[금속이나 금속탄화물의 납땜·납접·용접·용착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플럭스(flux)를 도포하였거나 심(芯)에 충전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 가루를 응결시켜 제조한 금속 스프레이(metal spraying)용 선과 봉		
	8311.10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용접봉[플럭스(flux)를 봉에 도포한 것으로서 전기아크용접용으로 한정한다]		
7007	8311.10.10	- - 롤 모양인 것	0%	E0
7008	8311.10.90	- - 기타	0%	E0
	8311.20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선[플럭스(flux)를 심(芯)에 충전한 것으로서 전기아크용접용으로 한정한다]		
		- - 플럭스를 심에 충전한 합금강선(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4.5 이상이며 크로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2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7009	8311.20.21	- - - 롤 모양인 것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7010	8311.20.29	- - - 기타	0%	E0
7011	8311.20.90	- - 기타	0%	E0
	8311.30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봉과 선[플럭스(flux)를 봉에 도포하였거나 심(芯)에 충전한 것으로서 불로 납땜·납접·용접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플럭스를 심에 충전한 합금강선(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4.5 이상이며 크로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2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7012	8311.30.21	- - - 롤 모양인 것	0%	E0
7013	8311.30.29	- - - 기타	0%	E0
		- - 기타		
7014	8311.30.91	- - - 롤 모양인 것	0%	E0
7015	8311.30.99	- - - 기타	0%	E0
7016	8311.90.00	- 기타	0%	E0
	84.01	**원자로, 방사선을 조사(照射)하지 않은 원자로용 연료 요소(카트리지)와 동위원소 분리용 기기**		
7017	8401.10.00	- 원자로	0%	E0
7018	8401.20.00	- 동위원소 분리용 기기와 그 부분품	0%	E0
7019	8401.30.00	- 방사선을 조사(照射)하지 않은 연료요소(카트리지)	0%	E0
7020	8401.40.00	- 원자로의 부분품	0%	E0
	84.02	**증기발생보일러(저압증기도 발생시킬 수 있는 중앙난방용 온수보일러는 제외한다)와 과열수보일러(super-heated water boiler)**		
		- 증기발생보일러		
	8402.11	- - 증기발생량이 시간당 45 톤을 초과하는 수관(水管)보일러		
7021	8402.11.10	- - - 전기 작동식의 것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7022	8402.11.20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8402.12	- - 증기발생량이 시간당 45 톤 이하인 수관(水管)보일러		
		- - - 전기 작동식의 것		
7023	8402.12.11	- - - - 증기생산량이 시간당 15 톤을 초과하는 보일러	0%	E0
7024	8402.12.19	- - - - 기타	0%	E0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7025	8402.12.21	- - - - 증기생산량이 시간당 15 톤을 초과하는 보일러	0%	E0
7026	8402.12.29	- - - - 기타	0%	E0
	8402.19	- - 그 밖의 증기발생보일러(복합보일러를 포함한다)		
		- - - 전기 작동식의 것		
7027	8402.19.11	- - - - 증기생산량이 시간당 15 톤을 초과하는 보일러	0%	E0
7028	8402.19.19	- - - - 기타	0%	E0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7029	8402.19.21	- - - - 증기생산량이 시간당 15 톤을 초과하는 보일러	0%	E0
7030	8402.19.29	- - - - 기타	0%	E0
	8402.20	- 과열수보일러(super-heated water boiler)		
7031	8402.2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0%	E0
7032	8402.2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8402.90	- 부분품		
7033	8402.90.10	- - 보일러 몸체, 동체나 케이싱	0%	E0
7034	8402.90.90	- - 기타	0%	E0
	84.03	**중앙난방용 보일러(제 8402 호의 것은 제외한다)**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7035	8403.10.00	- 보일러	5%	E10
	8403.90	- 부분품		
7036	8403.90.10	- - 보일러 몸체, 동체나 케이싱	5%	E10
7037	8403.90.90	- - 기타	5%	E10
	84.04	**제 8402 호나 제 8403 호의 보일러용 부속기기(예: 연료절약기・과열기・그을음제거기・가스회수기)와 증기원동기용 응축기**		
	8404.10	- 제 8402 호나 제 8403 호의 보일러용 부속기기		
		- - 제 8402 호의 보일러에 사용되는 것		
7038	8404.10.11	- - - 그을음제거기	0%	E0
7039	8404.10.19	- - - 기타	0%	E0
7040	8404.10.20	- - 제 8403 호의 보일러에 사용되는 것	0%	E0
7041	8404.20.00	- 증기원동기용 응축기	0%	E0
	8404.90	- 부분품		
		- - 소호 제 8404.10.11 호・제 8404.10.19 호의 물품의 것		
7042	8404.90.11	- - - 몸체, 동체나 케이싱	0%	E0
7043	8404.90.19	- - - 기타	0%	E0
		- - 소호 제 8404.10.20 호의 물품의 것		
7044	8404.90.21	- - - 몸체, 동체나 케이싱	0%	E0
7045	8404.90.29	- - - 기타	0%	E0
7046	8404.90.90	- - 기타	0%	E0
	84.05	**발생로가스(producer gas)나 수성(水性)가스 발생기, 아세틸렌가스 발생기와 이와 유사한 습식가스 발생기(청정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7047	8405.10.00	- 발생로가스(producer gas)나 수성(水性)가스 발생기, 아세틸렌가스 발생기와 이와 유사한 습식가스 발생기(청정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7048	8405.90.00	- 부분품	0%	E0
	84.06	**증기터빈**		
7049	8406.10.00	- 선박추진용 터빈	0%	E0
		- 그 밖의 터빈		
7050	8406.81.00	- - 출력이 40 메가와트를 초과하는 것	0%	E0
	8406.82	- - 출력이 40 메가와트 이하인 것		
7051	8406.82.10	- - - 출력이 5 메가와트 이하인 것	0%	E0
7052	8406.82.90	- - - 기타	0%	E0
7053	8406.90.00	- 부분품	0%	E0
	84.07	**왕복이나 로터리 방식으로 움직이는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		
7054	8407.10.00	- 항공기용 엔진	0%	E0
		- 선박추진용 엔진		
	8407.21	- - 아웃보드(outboard) 모터		
7055	8407.21.10	- - - 출력이 22.38 킬로와트(30hp) 이하인 것	0%	E0
7056	8407.21.90	- - - 기타	0%	E0
	8407.29	- - 기타		
7057	8407.29.20	- - - 출력이 22.38 킬로와트(30hp) 이하인 것	0%	E0
7058	8407.29.90	- - - 기타	0%	E0
		- 제 87 류의 차량 추진용 왕복 피스톤엔진		
7059	8407.31.00	- - 실린더용량이 50 시시 이하인 것	0%	E0
	8407.32	- - 실린더용량이 50 시시 초과 250 시시 이하인 것		
		- - - 50 시시를 초과하고 110 시시 이하인 것		
7060	8407.32.11	- - - - 제 8701 호의 차량용	5%	E10
7061	8407.32.12	- - - - 제 8711 호의 차량용	5%	E1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7062	8407.32.19	- - - - 기타	5%	E10
		- - - 110 시시를 초과하고 250 시시 이하인 것		
7063	8407.32.21	- - - - 제 8701 호의 차량용	5%	E10
7064	8407.32.22	- - - - 제 8711 호의 차량용	5%	E10
7065	8407.32.29	- - - - 기타	5%	E10
	8407.33	- - 실린더용량이 250 시시 초과 1,000 시시 이하인 것		
7066	8407.33.10	- - - 제 8701 호의 차량용	5%	E10
7067	8407.33.20	- - - 제 8711 호의 차량용	5%	E10
7068	8407.33.90	- - - 기타	5%	E10
	8407.34	- - 실린더용량이 1,0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 - - 완전히 조립된 것		
7069	8407.34.40	- - - - 보행운전형 트랙터용으로 실린더용량이 1,100 시시 이하인 것	0%	E0
7070	8407.34.50	- - - - 제 8701 호의 그 밖의 차량용	0%	E0
7071	8407.34.60	- - - - 제 8711 호의 차량용	0%	E0
		- - - - 기타		
7072	8407.34.71	- - - - - 실린더용량이 2,000 시시 이하인 것	5%	E10
7073	8407.34.72	- - - - - 실린더용량이 2,000 시시를 초과하고 3,000 시시 이하인 것	5%	E10
7074	8407.34.73	- - - - - 실린더용량이 3,0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5%	E0
		- - - 기타		
7075	8407.34.91	- - - - 보행운전형 트랙터용으로 실린더용량이 1,100 시시 이하인 것	0%	E0
7076	8407.34.92	- - - - 제 8701 호의 그 밖의 차량용	0%	E0
7077	8407.34.93	- - - - 제 8711 호의 차량용	0%	E0
		- - - - 기타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7078	8407.34.94	- - - - - 실린더용량이 2,000 시시 이하인 것	5%	E10
7079	8407.34.95	- - - - - 실린더용량이 2,000 시시를 초과하고 3,000 시시 이하인 것	5%	E10
7080	8407.34.99	- - - - - 실린더용량이 3,0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5%	E0
	8407.90	- 그 밖의 엔진		
7081	8407.90.10	- - 출력이 18.65 킬로와트 이하인 것	0%	E0
7082	8407.90.20	- - 출력이 18.65 킬로와트 초과 22.38 킬로와트 이하인 것	0%	E0
7083	8407.90.90	- - 기타	0%	E0
	84.08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엔진이나 세미디젤엔진)**		
	8408.10	- 선박추진용 엔진		
7084	8408.10.10	- - 출력이 22.38 킬로와트 이하인 것	5%	E10
7085	8408.10.20	- - 출력이 22.38 킬로와트 초과 100 킬로와트 이하인 것	5%	E10
7086	8408.10.30	- - 출력이 100 킬로와트 초과 750 킬로와트 이하인 것	5%	E10
7087	8408.10.90	- - 기타	0%	E0
	8408.20	- 제 87 류의 차량 추진용 엔진		
		- - 완전히 조립된 것		
7088	8408.20.10	- - - 소호 제 8701.10 호의 차량용	0%	E0
		- - - 기타		
7089	8408.20.21	- - - - 실린더용량이 2,000 시시 이하인 것	0%	E0
7090	8408.20.22	- - - - 실린더용량이 2,000 시시를 초과하고 3,500 시시 이하인 것	0%	E0
7091	8408.20.23	- - - - 실린더용량이 3,5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0%	E0
		- - 기타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7092	8408.20.93	- - - 소호 제 8701.10 호의 차량용	0%	E0
		- - - 기타		
7093	8408.20.94	- - - - 실린더용량이 2,000 시시 이하인 것	0%	E0
7094	8408.20.95	- - - - 실린더용량이 2,000 시시를 초과하고 3,500 시시 이하인 것	0%	E0
7095	8408.20.96	- - - - 실린더용량이 3,5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0%	E0
	8408.90	- 그 밖의 엔진		
7096	8408.90.10	- - 출력이 18.65 킬로와트 이하인 것	5%	E0
		- - 출력이 100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7097	8408.90.51	- - - 제 8429 호나 제 8430 호의 기계에 사용되는 것	0%	E0
7098	8408.90.52	- - - 기관차·철도 차량용의 것	0%	E0
7099	8408.90.59	- - - 기타	5%	E0
		- - 기타		
7100	8408.90.91	- - - 제 8429 호나 제 8430 호의 기계류용	0%	E0
7101	8408.90.92	- - - 기관차·철도 차량용의 것	0%	E0
7102	8408.90.99	- - - 기타	5%	E7
	84.09	**제 8407 호나 제 8408 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7103	8409.10.00	- 항공기 엔진용	0%	E0
		- 기타		
	8409.91	- -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에 전용되는 것		
		- - - 제 8429 호나 제 8430 호의 기계류용		
7104	8409.91.11	- - - - 기화기와 그 부분품	0%	E0
7105	8409.91.12	- - - - 실린더 블록, 크랭크 케이스	0%	E0
7106	8409.91.13	- - - - 실린더 라이너(내부 지름이 50 밀리미터 이상 155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7107	8409.91.14	- - - - 그 밖의 실린더 라이너	0%	E0
7108	8409.91.15	- - - - 실린더 헤드와 헤드 커버	0%	E0
7109	8409.91.16	- - - - 피스톤(바깥지름이 50 밀리미터 이상 155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E0
7110	8409.91.17	- - - - 그 밖의 피스톤	0%	E0
7111	8409.91.18	- - - - 피스톤 링과 거드전 핀	0%	E0
7112	8409.91.19	- - - - 기타	0%	E0
		- - - 제 8701 호의 차량용		
7113	8409.91.21	- - - - 기화기와 그 부분품	0%	E0
7114	8409.91.22	- - - - 실린더 블록, 크랭크 케이스	0%	E0
7115	8409.91.23	- - - - 실린더 라이너(내부 지름이 50 밀리미터 이상 155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E0
7116	8409.91.24	- - - - 그 밖의 실린더 라이너	0%	E0
7117	8409.91.26	- - - - 피스톤(바깥지름이 50 밀리미터 이상 155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E0
7118	8409.91.28	- - - - 피스톤 링과 거드전 핀	0%	E0
7119	8409.91.29	- - - - 기타	0%	E0
		- - - 제 8711 호의 차량용		
7120	8409.91.31	- - - - 기화기와 그 부분품	0%	E0
7121	8409.91.32	- - - - 실린더 블록, 크랭크 케이스	0%	E0
7122	8409.91.34	- - - - 실린더 라이너	0%	E0
7123	8409.91.35	- - - - 실린더 헤드와 헤드 커버	0%	E0
7124	8409.91.37	- - - - 피스톤	0%	E0
7125	8409.91.38	- - - - 피스톤 링과 거드전 핀	0%	E0
7126	8409.91.39	- - - - 기타	0%	E0
		- - - 제 87 류의 그 밖의 차량용		
7127	8409.91.41	- - - - 기화기와 그 부분품	0%	E0
7128	8409.91.42	- - - - 실린더 블록, 크랭크 케이스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7129	8409.91.43	- - - - 실린더 라이너(내부 지름이 50 밀리미터 이상 155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E0
7130	8409.91.44	- - - - 그 밖의 실린더 라이너	0%	E0
7131	8409.91.45	- - - - 실린더 헤드와 헤드 커버	0%	E0
7132	8409.91.46	- - - - 피스톤(바깥지름이 50 밀리미터 이상 155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E0
7133	8409.91.47	- - - - 그 밖의 피스톤	0%	E0
7134	8409.91.48	- - - - 피스톤 링과 거드전 핀	0%	E0
7135	8409.91.49	- - - - 기타	0%	E0
		- - - 제 89 류의 선박용		
		- - - - 동력이 22.38 킬로와트 이하인 선박추진용 엔진용		
7136	8409.91.51	- - - - - 실린더 블록, 크랭크 케이스	0%	E0
7137	8409.91.52	- - - - - 실린더 라이너(내부 지름이 50 밀리미터 이상 155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E0
7138	8409.91.53	- - - - - 그 밖의 실린더 라이너	0%	E0
7139	8409.91.54	- - - - - 피스톤(바깥지름이 50 밀리미터 이상 155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E0
7140	8409.91.55	- - - - - 그 밖의 피스톤	0%	E0
7141	8409.91.59	- - - - - 기타	0%	E0
		- - - - 동력이 22.38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선박추진용 엔진용		
7142	8409.91.61	- - - - - 실린더 블록, 크랭크 케이스	0%	E0
7143	8409.91.62	- - - - - 실린더 라이너(내부 지름이 50 밀리미터 이상 155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E0
7144	8409.91.63	- - - - - 그 밖의 실린더 라이너	0%	E0
7145	8409.91.64	- - - - - 피스톤(바깥지름이 50 밀리미터 이상 155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7146	8409.91.69	- - - - - 기타	0%	E0
		- - - 그 밖의 엔진용		
7147	8409.91.71	- - - - 기화기와 그 부분품	0%	E0
7148	8409.91.72	- - - - 실린더 블록, 크랭크 케이스	0%	E0
7149	8409.91.73	- - - - 실린더 라이너(내부 지름이 50 밀리미터 이상 155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E0
7150	8409.91.74	- - - - 그 밖의 실린더 라이너	0%	E0
7151	8409.91.76	- - - - 피스톤(바깥지름이 50 밀리미터 이상 155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E0
7152	8409.91.77	- - - - 그 밖의 피스톤	0%	E0
7153	8409.91.78	- - - - 피스톤링과 거드전 핀	0%	E0
7154	8409.91.79	- - - - 기타	0%	E0
	8409.99	- - 기타		
		- - - 제 8429 호 또는 제 8430 호의 기계류의 엔진용		
7155	8409.99.11	- - - - 기화기와 그 부분품	0%	E0
7156	8409.99.12	- - - - 실린더 블록, 크랭크 케이스	0%	E0
7157	8409.99.13	- - - - 실린더 라이너(내부 지름이 50 밀리미터 이상 155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E0
7158	8409.99.14	- - - - 그 밖의 실린더 라이너	0%	E0
7159	8409.99.15	- - - - 실린더 헤드와 헤드 커버	0%	E0
7160	8409.99.16	- - - - 피스톤(바깥지름이 50 밀리미터 이상 155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E0
7161	8409.99.17	- - - - 그 밖의 피스톤	0%	E0
7162	8409.99.18	- - - - 피스톤 링과 거드전 핀	0%	E0
7163	8409.99.19	- - - - 기타	0%	E0
		- - - 제 8701 호의 차량의 엔진용		
7164	8409.99.21	- - - - 기화기와 그 부분품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7165	8409.99.22	- - - - 실린더 블록, 크랭크 케이스	0%	E0
7166	8409.99.23	- - - - 실린더 라이너(내부 지름이 50 밀리미터 이상 155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E0
7167	8409.99.24	- - - - 그 밖의 실린더 라이너	0%	E0
7168	8409.99.25	- - - - 실린더 헤드와 헤드 커버	0%	E0
7169	8409.99.26	- - - - 피스톤(바깥지름이 50 밀리미터 이상 155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E0
7170	8409.99.27	- - - - 그 밖의 피스톤	0%	E0
7171	8409.99.28	- - - - 피스톤 링과 거드전 핀	0%	E0
7172	8409.99.29	- - - - 기타	0%	E0
		- - - 제 8711 호의 차량의 엔진용		
7173	8409.99.31	- - - - 기화기와 그 부분품	0%	E0
7174	8409.99.32	- - - - 실린더 블록, 크랭크 케이스	0%	E0
7175	8409.99.33	- - - - 실린더 라이너	0%	E0
7176	8409.99.34	- - - - 실린더 헤드와 헤드 커버	0%	E0
7177	8409.99.35	- - - - 피스톤	0%	E0
7178	8409.99.36	- - - - 피스톤 링과 거드전 핀	0%	E0
7179	8409.99.39	- - - - 기타	0%	E0
		- - - 제 87 류의 그 밖의 차량의 엔진용		
7180	8409.99.41	- - - - 기화기와 그 부분품	0%	E0
7181	8409.99.42	- - - - 실린더 블록, 크랭크 케이스	0%	E0
7182	8409.99.43	- - - - 실린더 라이너(내부 지름이 50 밀리미터 이상 155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E0
7183	8409.99.44	- - - - 그 밖의 실린더 라이너	0%	E0
7184	8409.99.45	- - - - 실린더 헤드와 헤드 커버	0%	E0
7185	8409.99.46	- - - - 피스톤(바깥지름이 50 밀리미터 이상 155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7186	8409.99.47	- - - - 그 밖의 피스톤	0%	E0
7187	8409.99.48	- - - - 피스톤 링과 거드전 핀	0%	E0
7188	8409.99.49	- - - - 기타	0%	E0
		- - - 제 89 류의 선박의 엔진용		
		- - - - 동력이 22.38 킬로와트 이하인 선박 추진용 엔진용		
7189	8409.99.51	- - - - - 실린더 블록, 크랭크 케이스	0%	E0
7190	8409.99.52	- - - - - 실린더 라이너(내부 지름이 50 밀리미터 이상 155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E0
7191	8409.99.53	- - - - - 그 밖의 실린더 라이너	0%	E0
7192	8409.99.54	- - - - - 피스톤(바깥지름이 50 밀리미터 이상 155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E0
7193	8409.99.55	- - - - - 그 밖의 피스톤	0%	E0
7194	8409.99.59	- - - - - 기타	0%	E0
		- - - - 동력이 22.38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선박추진용 엔진용		
7195	8409.99.61	- - - - - 실린더 블록, 크랭크 케이스	0%	E0
7196	8409.99.62	- - - - - 실린더 라이너(내부 지름이 50 밀리미터 이상 155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E0
7197	8409.99.63	- - - - - 그 밖의 실린더 라이너	0%	E0
7198	8409.99.64	- - - - - 피스톤(바깥지름이 50 밀리미터 이상 155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E0
7199	8409.99.65	- - - - - 그 밖의 피스톤	0%	E0
7200	8409.99.69	- - - - - 기타	0%	E0
		- - - 그 밖의 엔진용		
7201	8409.99.71	- - - - 기화기와 그 부분품	0%	E0
7202	8409.99.72	- - - - 실린더 블록, 크랭크 케이스	0%	E0
7203	8409.99.73	- - - - 실린더 라이너(내부 지름이 50 밀리미터 이상 155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한다)		
7204	8409.99.74	- - - - 그 밖의 실린더 라이너	0%	E0
7205	8409.99.75	- - - - 실린더 헤드와 헤드 커버	0%	E0
7206	8409.99.76	- - - - 피스톤(바깥지름이 50 밀리미터 이상 155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E0
7207	8409.99.77	- - - - 그 밖의 피스톤	0%	E0
7208	8409.99.78	- - - - 피스톤링과 거드전 핀	0%	E0
7209	8409.99.79	- - - - 기타	0%	E0
	84.10	**수력터빈·수차와 이들의 조정기**		
		- 수력터빈과 수차		
7210	8410.11.00	- - 동력이 1,000 킬로와트 이하인 것	0%	E0
7211	8410.12.00	- - 동력이 1,000 킬로와트를 초과하고 10,000 킬로와트 이하인 것	0%	E0
7212	8410.13.00	- - 동력이 10,000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0%	E0
7213	8410.90.00	- 부분품(조정기를 포함한다)	0%	E0
	84.11	**터보제트·터보프로펠러와 그 밖의 가스터빈**		
		- 터보제트		
7214	8411.11.00	- - 추진력이 25 킬로뉴턴 이하인 것	0%	E0
7215	8411.12.00	- - 추진력이 25 킬로뉴턴을 초과하는 것	0%	E0
		- 터보프로펠러		
7216	8411.21.00	- - 출력이 1,100 킬로와트 이하인 것	0%	E0
7217	8411.22.00	- - 출력이 1,100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0%	E0
		- 그 밖의 가스터빈		
7218	8411.81.00	- - 출력이 5,000 킬로와트 이하인 것	0%	E0
7219	8411.82.00	- - 출력이 5,000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0%	E0
		- 부분품		
7220	8411.91.00	- - 터보제트나 터보프로펠러의 것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7221	8411.99.00	- - 기타	0%	E0
	84.12	**그 밖의 엔진과 모터**		
7222	8412.10.00	- 터보제트 외의 반동 엔진	0%	E0
		- 수력엔진과 수력모터		
7223	8412.21.00	- - 리니어 액팅식(실린더)	0%	E0
7224	8412.29.00	- - 기타	0%	E0
		- 압축공기식 엔진과 모터		
7225	8412.31.00	- - 리니어 액팅식(실린더)	0%	E0
7226	8412.39.00	- - 기타	0%	E0
7227	8412.80.00	- 기타	0%	E0
	8412.90	- 부분품		
7228	8412.90.10	- - 소호 제 8412.10 호의 엔진용의 것	0%	E0
7229	8412.90.20	- - 보일러를 갖춘 증기원동기용	0%	E0
7230	8412.90.90	- - 기타	0%	E0
	84.13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		
		- 펌프(계기를 갖춘 것이나 갖출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7231	8413.11.00	- - 연료나 윤활유 급유용 펌프(주유소나 정비소에서 사용하는 형태로 한정한다)	0%	E0
	8413.19	- - 기타		
7232	8413.19.10	- - - 전기 작동식의 것	0%	E0
7233	8413.19.20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8413.20	- 수지식 펌프(소호 제 8413.11 호나 제 8413.19 호의 것은 제외한다)		
7234	8413.20.10	- - 워터펌프	0%	E0
7235	8413.20.20	- - 유축기	0%	E0
7236	8413.20.90	- - 기타	0%	E0
	8413.30	- 연료·윤활유 급유용이나 냉각 냉매용 펌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프(피스톤 내연기관용으로 한정한다)		
7237	8413.30.30	- - 제 8702 호, 제 8703 호나 제 8704 호의 차량용 엔진에 사용되는 연료 펌프	0%	E0
7238	8413.30.40	- - 제 8702 호, 제 8703 호나 제 8704 호의 차량용 엔진에 사용되는 워터 펌프	0%	E0
		- - 기타(원심 타입으로 한정한다)		
7239	8413.30.51	- - - 흡입구 지름이 200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E0
7240	8413.30.52	- - - 흡입구 지름이 20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	E0
7241	8413.30.90	- - 기타	0%	E0
7242	8413.40.00	- 콘크리트 펌프	0%	E0
	8413.50	- 그 밖의 용적형 왕복펌프		
		- - 워터 펌프(유속이 1 시간당 8,000 세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7243	8413.50.31	- - - 전기 작동식의 것	0%	E0
7244	8413.50.32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7245	8413.50.40	- - 워터펌프(유속이 1 시간당 8,000 세제곱미터 초과 13,000 세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E0
7246	8413.50.90	- - 기타	0%	E0
	8413.60	- 그 밖의 용적형 회전펌프		
		- - 워터 펌프(유속이 1 시간당 8,000 세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7247	8413.60.31	- - - 전기 작동식의 것	0%	E0
7248	8413.60.32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7249	8413.60.40	- - 워터펌프(유속이 1 시간당 8,000 세제곱미터 초과 13,000 세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E0
7250	8413.60.90	- - 기타	0%	E0
	8413.70	- 그 밖의 원심펌프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 - 싱글 스테이지, 편흡입 수평방향 샤프트 워터펌프(벨트 드라이브 방식 또는 직접 결합을 위해 적합한 것이며, 원동기와 마찬가지로 샤프트를 가진 펌프는 제외한다)		
7251	8413.70.11	- - - 흡입구 지름이 200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E0
7252	8413.70.19	- - - 기타	0%	E0
		- - 물속에 잠길 수 있는 워터 펌프		
7253	8413.70.31	- - - 흡입구 지름이 200 밀리미터 이하인 것	5%	E7
7254	8413.70.39	- - - 기타	5%	E7
		- - 그 밖의 워터 펌프(유속이 1 시간당 8,000 세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7255	8413.70.42	- - - 흡입구 지름이 200 밀리미터 이하이면서 전기작동식의 것	5%	E7
7256	8413.70.43	- - - 흡입구 지름이 200 밀리미터 이하이면서 전기작동식이 아닌 것	5%	E7
7257	8413.70.49	- - - 기타	5%	E7
		- - 그 밖의 워터 펌프(유속이 1 시간당 8,000 세제곱미터 초과 13,000 세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7258	8413.70.51	- - - 흡입구 지름이 200 밀리미터 이하인 것	5%	E7
7259	8413.70.59	- - - 기타	5%	E7
		- - 기타		
7260	8413.70.91	- - - 흡입구 지름이 200 밀리미터 이하인 것	5%	E7
7261	8413.70.99	- - - 기타	5%	E7
		- 그 밖의 펌프, 액체엘리베이터		
	8413.81	- - 펌프		
7262	8413.81.13	- - - 워터펌프(유속이 1 시간당 8,000 세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전기작동식의 것으로 한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정한다)		
7263	8413.81.14	- - - 워터펌프(유속이 1 시간당 8,000 세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전기작동식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	0%	E0
7264	8413.81.15	- - - 워터펌프(유속이 1 시간당 8,000 세제곱미터 초과 13,000 세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E0
7265	8413.81.19	- - - 기타	0%	E0
	8413.82	- - 액체엘리베이터		
7266	8413.82.10	- - - 전기 작동식의 것	0%	E0
7267	8413.82.20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 부분품		
	8413.91	- - 펌프의 것		
7268	8413.91.10	- - - 소호 제 8413.20.10 호의 펌프의 것	0%	E0
7269	8413.91.20	- - - 소호 제 8413.20.20 호와 제 8413.20.90 호의 펌프의 것	0%	E0
7270	8413.91.30	- - - 소호 제 8413.70.11 호와 제 8413.70.19 호의 펌프의 것	0%	E0
7271	8413.91.40	- - - 그 밖의 원심펌프의 것	0%	E0
7272	8413.91.90	- - - 그 밖의 펌프의 것	0%	E0
7273	8413.92.00	- - 액체엘리베이터의 것	0%	E0
	84.14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7274	8414.10.00	- 진공펌프	0%	E0
	8414.20	- 손이나 발로 작동하는 기체펌프		
7275	8414.20.10	- - 자전거 펌프	0%	E0
7276	8414.20.90	- - 기타	0%	E0
	8414.30	- 냉장·냉동 설비용 압축기		
7277	8414.30.40	- - 냉장고 용량이 21.10 킬로와트를 초과하거나 220 시시 이상의 회전당 변위를 가지고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있는 것		
7278	8414.30.90	- - 기타	0%	E0
7279	8414.40.00	- 예인용 바퀴달린 섀시 위에 장착된 기체 압축기	0%	E0
		- 팬		
	8414.51	- - 테이블용·바닥용·벽용·창용·천장용·지붕용 팬(출력이 125 와트 이하인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7280	8414.51.10	- - - 테이블 팬과 박스 팬	5%	EX
		- - - 기타		
7281	8414.51.91	- - - - 보호용 차폐가 있는 것	5%	EX
7282	8414.51.99	- - - - 기타	5%	EX
	8414.59	- - 기타		
		- - - 용적이 125 킬로와트 이하인 것		
7283	8414.59.20	- - - - 광산에 쓰이는 방폭용 에어팬	0%	E0
7284	8414.59.30	- - - - 송풍기	0%	E0
		- - - - 기타		
7285	8414.59.41	- - - - - 보호용 차폐가 있는 것	0%	E0
7286	8414.59.49	- - - - - 기타	0%	E0
		- - - 기타		
7287	8414.59.50	- - - - 송풍기	0%	E0
		- - - - 기타		
7288	8414.59.91	- - - - - 보호용 차폐가 있는 것	0%	E0
7289	8414.59.92	- - - - - 광산에 쓰이는 방폭용 에어팬	0%	E0
7290	8414.59.99	- - - - - 기타	0%	E0
	8414.60	- 후드(hood)(수평면의 최대길이가 120 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필터를 갖춘 것		
7291	8414.60.11	- - - 층류 방식 캐비닛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7292	8414.60.19	- - - 기타	0%	E0
		- - 필터를 갖추지 않은 것		
7293	8414.60.91	- - - 산업용으로 적합한 것	0%	E0
7294	8414.60.99	- - - 기타	0%	E0
	8414.80	- 기타		
		- - 후드(수평면의 최대길이가 120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필터를 갖춘 것		
7295	8414.80.11	- - - - 층류 방식 캐비닛	0%	E0
7296	8414.80.19	- - - - 기타	0%	E0
		- - - 필터를 갖추지 않은 것		
7297	8414.80.21	- - - - 산업용으로 적합한 것	0%	E0
7298	8414.80.29	- - - - 기타	0%	E0
7299	8414.80.30	- - 가스 터빈용 자유 피스톤식 제너레이터	0%	E0
		- - 소호 제 8414.30 호 또는 제 8414.40 호를 제외한 압축기		
7300	8414.80.41	- - - 오일 드릴링 작업용으로 적합한 가스 압축기	0%	E0
7301	8414.80.42	- - - 자동차용 공기 조절기용	0%	E0
7302	8414.80.43	- - - 공기조절기용 실드 유닛	0%	E0
7303	8414.80.49	- - - 기타	0%	E0
7304	8414.80.50	- - 기체펌프	0%	E0
7305	8414.80.90	- - 기타	0%	E0
	8414.90	- 부분품		
		- - 팬의 것		
7306	8414.90.21	- - - 제 8415 호, 제 8418 호, 제 8509 호나 제 8516 호의 물품의 것	0%	E0
7307	8414.90.22	- - - 송풍기의 것	0%	E0
7308	8414.90.29	- - - 기타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 - 후드의 것		
7309	8414.90.31	- - - 소호 제 8414.60 호의 물품의 것	0%	E0
7310	8414.90.32	- - - 소호 제 8414.80 호의 물품의 것	0%	E0
		- - 소호 제 8414.10 호의 물품의 것		
7311	8414.90.41	- - - 전기 작동식 기계용	0%	E0
7312	8414.90.42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기계용	0%	E0
7313	8414.90.50	- - 소호 제 8414.20 호의 물품의 것	0%	E0
7314	8414.90.60	- - 소호 제 8414.30 호의 물품의 것	0%	E0
		- - 소호 제 8414.40 호의 물품의 것		
7315	8414.90.71	- - - 전기 작동식 기계용	0%	E0
7316	8414.90.72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기계용	0%	E0
		- - 그 밖의 펌프 또는 압축기의 것		
7317	8414.90.91	- - - 전기 작동식 기계용	0%	E0
7318	8414.90.92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기계용	0%	E0
	84.15	**공기조절기(동력구동식 팬과 온도나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		
	8415.10	- 창문, 벽, 천장 또는 바닥에 고정되도록 설계된 것(일체형이나 분리형으로 한정한다)		
7319	8415.10.10	- - 냉각 용량이 26.38 킬로와트 이하인 것	0%	E0
7320	8415.10.90	- - 기타	0%	E0
	8415.20	- 자동차용(탑승자용으로 한정한다)		
7321	8415.20.10	- - 냉각 용량이 26.38 킬로와트 이하인 것	0%	E0
7322	8415.20.90	- - 기타	0%	E0
		- 기타		
	8415.81	- - 냉각유닛과 냉·열순환 반전용 밸브를 결합한 것(반전가능 열펌프를 포함한다)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 - - 항공기용의 것		
7323	8415.81.11	- - - - 냉각 용량이 21.10 킬로와트 이하인 것	0%	E0
7324	8415.81.12	- - - - 냉각 용량이 21.10 킬로와트를 초과하면서 각 증발기의 송풍량이 1 분당 67.96 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0%	E0
7325	8415.81.19	- - - - 기타	0%	E0
		- - - 철도 차량용의 것		
7326	8415.81.21	- - - - 냉각 용량이 26.38 킬로와트 이하인 것	0%	E0
7327	8415.81.29	- - - - 기타	0%	E0
		- - - 자동차용의 것(소호 제 8415.20 호의 것은 제외한다)		
7328	8415.81.31	- - - - 냉각 용량이 26.38 킬로와트 이하인 것	0%	E0
7329	8415.81.39	- - - - 기타	0%	E0
		- - - 기타		
7330	8415.81.91	- - - - 냉각 용량이 21.10 킬로와트를 초과하면서 각 증발기의 송풍량이 1 분당 67.96 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0%	E0
		- - - - 기타		
7331	8415.81.93	- - - - - 냉각 용량이 21.10 킬로와트 이하인 것	0%	E0
7332	8415.81.94	- - - - - 냉각 용량이 21.10 킬로와트를 초과하지만 26.38 킬로와트 이하인 것	0%	E0
7333	8415.81.99	- - - - - 기타	0%	E0
	8415.82	- - 기타(냉각유닛을 결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항공기용의 것		
7334	8415.82.11	- - - - 냉각 용량이 21.10 킬로와트를 초과하면서 각 증발기의 송풍량이 1 분당 67.96 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7335	8415.82.19	- - - - 기타	0%	E0
		- - - 철도 차량의 것		
7336	8415.82.21	- - - - 냉각 용량이 26.38 킬로와트 이하인 것	0%	E0
7337	8415.82.29	- - - - 기타	0%	E0
		- - - 자동차용의 것(소호 제 8415.20 호의 것은 제외한다)		
7338	8415.82.31	- - - - 냉각 용량이 26.38 킬로와트 이하인 것	0%	E0
7339	8415.82.39	- - - - 기타	0%	E0
		- - - 기타		
7340	8415.82.91	- - - - 냉각 용량이 26.38 킬로와트 이하인 것	0%	E0
7341	8415.82.99	- - - - 기타	0%	E0
	8415.83	- - 냉각유닛을 결합하지 않은 것		
		- - - 항공기용의 것		
7342	8415.83.11	- - - - 냉각 용량이 21.10 킬로와트를 초과하면서 각 증발기의 송풍량이 1 분당 67.96 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0%	E0
7343	8415.83.19	- - - - 기타	0%	E0
		- - - 철도 차량용의 것		
7344	8415.83.21	- - - - 냉각 용량이 26.38 킬로와트 이하인 것	0%	E0
7345	8415.83.29	- - - - 기타	0%	E0
		- - - 자동차용의 것(소호 제 8415.20 호의 것은 제외한다)		
7346	8415.83.31	- - - - 냉각 용량이 26.38 킬로와트 이하인 것	0%	E0
7347	8415.83.39	- - - - 기타	0%	E0
		- - - 기타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7348	8415.83.91	- - - - 냉각 용량이 26.38 킬로와트 이하인 것	0%	E0
7349	8415.83.99	- - - - 기타	0%	E0
	8415.90	- 부분품		
		- - 냉각 용량이 21.10 킬로와트 이하의 기계의 것		
7350	8415.90.13	- - - 항공기나 철도차량용의 것	0%	E0
7351	8415.90.14	- - - 차량용에 사용되는 공기정화용 증발기나 압축기	0%	E0
7352	8415.90.15	- - - 소호 제 8415.90.13 호 외의 용접 및 페인팅한 섀시	0%	E0
7353	8415.90.19	- - - 기타	0%	E0
		- - 냉각 용량이 21.10 킬로와트 초과 26.38 킬로와트 이하인 기계의 것		
		- - - 각 증발기의 송풍량이 1 분당 67.96 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7354	8415.90.24	- - - - 항공기나 철도차량용의 것	0%	E0
7355	8415.90.25	- - - - 기타	0%	E0
		- - - 기타		
7356	8415.90.26	- - - - 항공기나 철도차량용의 것	0%	E0
7357	8415.90.29	- - - - 기타	0%	E0
		- - 냉각 용량이 26.38 킬로와트 초과 52.75 킬로와트 이하인 기계의 것		
		- - - 각 증발기의 송풍량이 1 분당 67.96 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7358	8415.90.34	- - - - 항공기나 철도차량용의 것	0%	E0
7359	8415.90.35	- - - - 기타	0%	E0
		- - - 기타		
7360	8415.90.36	- - - - 항공기나 철도차량용의 것	0%	E0
7361	8415.90.39	- - - - 기타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 - 냉각 용량이 52.75 킬로와트 초과하는 기계의 것		
		- - - 각 증발기의 송풍량이 1 분당 67.96 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7362	8415.90.44	- - - - 항공기나 철도차량용의 것	0%	E0
7363	8415.90.45	- - - - 기타	0%	E0
		- - - 기타		
7364	8415.90.46	- - - - 항공기나 철도차량용의 것	0%	E0
7365	8415.90.49	- - - - 기타	0%	E0
	84.16	**액체연료·잘게 부순 고체연료·기체연료를 사용하는 노(爐)용 버너, 기계식 스토커(stoker)[이들의 기계식 불판·기계식 회(灰) 배출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를 포함한다]**		
7366	8416.10.00	-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노(爐)용 버너	0%	E0
7367	8416.20.00	- 그 밖의 노(爐)용 버너[콤비네이션 버너(combination burner)를 포함한다]	0%	E0
7368	8416.30.00	- 기계식 스토커(stoker)[이들의 기계식 불판·기계식 회(灰) 배출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를 포함한다]	0%	E0
7369	8416.90.00	- 부분품	0%	E0
	84.17	**비전기식 공업용이나 실험실용 노(爐)와 오븐(소각로를 포함한다)**		
7370	8417.10.00	- 배소(焙燒)용·용해용이나 그 밖의 열처리용 노(爐)와 오븐(광석·황철광이나 금속의 처리용으로 한정한다)	0%	E0
7371	8417.20.00	- 베이커리용 오븐(비스킷용 오븐을 포함한다)	0%	E0
7372	8417.80.00	- 기타	0%	E0
7373	8417.90.00	- 부분품	0%	E0
	84.18	**냉장고·냉동고와 그 밖의 냉장기구나 냉동기구(전기식인지에 상관없다), 열펌프(제**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415 호의 공기조절기는 제외한다)		
	8418.10	- 냉장고·냉동고(분리된 외부 문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 - 가정형		
7374	8418.10.11	- - - 용량이 230 리터 이하인 것	0%	E0
7375	8418.10.19	- - - 기타	5%	E15
7376	8418.10.20	- - 기타(용량이 350 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	E15
7377	8418.10.90	- - 기타	5%	E15
		- 가정형 냉장고		
	8418.21	- - 압축식		
7378	8418.21.10	- - - 용량이 230 리터 이하인 것	5%	E15
7379	8418.21.90	- - - 기타	5%	E15
7380	8418.29.00	- - 기타	5%	E15
	8418.30	- 체스트(chest)형 냉동고(용량이 800 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7381	8418.30.10	- - 용량이 200 리터 이하인 것	0%	E0
7382	8418.30.90	- - 기타	0%	E0
	8418.40	- 직립형 냉동고(용량이 900 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7383	8418.40.10	- - 용량이 200 리터 이하인 것	0%	E0
7384	8418.40.90	- - 기타	0%	E0
	8418.50	- 냉장용이나 냉동용 장치를 갖춘 저장과 전시 목적의 그 밖의 가구[체스트(chest), 캐비닛, 전시용 카운터, 쇼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한정한다]		
		- - 냉장용 장치를 갖춘 전시용 카운터, 쇼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것(용량이 200 리터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7385	8418.50.11	- - - 내과용·외과용 또는 실험실용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7386	8418.50.19	- - - 기타	0%	E0
		- - 기타		
7387	8418.50.91	- - - 내과용・외과용 또는 실험실용	0%	E0
7388	8418.50.99	- - - 기타	0%	E0
		- 그 밖의 냉장기구나 냉동기구, 열펌프		
7389	8418.61.00	- - 열펌프(제 8415 호의 공기조절기는 제외한다)	0%	E0
	8418.69	- - 기타		
7390	8418.69.10	- - - 음료 쿨러	0%	E0
7391	8418.69.30	- - - 냉수 디스펜서	0%	E0
		- - - 21.10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냉동 용량을 가진 수냉기		
7392	8418.69.41	- - - - 공기조절기용	0%	E0
7393	8418.69.49	- - - - 기타	0%	E0
7394	8418.69.50	- - - 스케일 얼음제조 기기	0%	E0
7395	8418.69.90	- - - 기타	0%	E0
		- 부분품		
7396	8418.91.00	- - 냉장기구나 냉동기구를 넣을 수 있도록 설계된 가구	0%	E0
	8418.99	- - 기타		
7397	8418.99.10	- - - 증발기나 응축기	0%	E0
7398	8418.99.40	- - - 소호 제 8418.10.11 호, 제 8418.10.19 호, 제 8418.21.10 호, 제 8418.21.90 호 또는 제 8418.29.00 호의 제품용 알루미늄 롤 밴드 패널	0%	E0
7399	8418.99.90	- - - 기타	0%	E0
	84.19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실험실장치 [전기가열식(제 8514 호의 노(爐)와 오븐과**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 실험실용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 가열기		
		-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 가열기(비전기식으로 한정한다)		
	8419.11	- - 가스식인 즉시식 물가열기		
7400	8419.11.10	- - - 가정형	0%	E0
7401	8419.11.90	- - - 기타	0%	E0
	8419.19	- - 기타		
7402	8419.19.10	- - - 가정형	0%	E0
7403	8419.19.90	- - - 기타	0%	E0
7404	8419.20.00	- 내과용·외과용 또는 실험실용 살균기	0%	E0
		- 건조기		
	8419.31	- - 농산물용		
7405	8419.31.30	- - - 증발기	0%	E0
7406	8419.31.40	- - - 기타(전기 작동식의 것)	0%	E0
7407	8419.31.90	- - - 기타	0%	E0
	8419.32	- - 목재용·제지펄프용·종이용·판지용		
7408	8419.32.10	- - - 전기 작동식의 것	0%	E0
7409	8419.32.20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8419.39	- - 기타		
		- - - 전기 작동식의 것		
7410	8419.39.11	- - - - 인쇄회로기판, 인쇄 배선 기판 또는 인쇄된 회로 어셈블리의 제조를 위한, 가열을 포함한 공정에 의한 재료의 처리를 위한 기계류	0%	E0
7411	8419.39.19	- - - - 기타	0%	E0
7412	8419.39.20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8419.40	- 증류기나 정류기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7413	8419.4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0%	E0
7414	8419.4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8419.50	- 열교환기		
7415	8419.50.10	- - 냉각탑	0%	E0
		- - 기타		
7416	8419.50.91	- - - 전기 작동식의 것	0%	E0
7417	8419.50.92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8419.60	- 기체 액화용 기기		
7418	8419.6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0%	E0
7419	8419.6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 그 밖의 기기		
	8419.81	- - 뜨거운 음료 제조용이나 음식물의 조리용이나 가열용		
7420	8419.81.10	- - - 전기 작동식의 것	0%	E0
7421	8419.81.20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8419.89	- - 기타		
		- - - 전기 작동식의 것		
7422	8419.89.13	- - - - 인쇄회로기판, 인쇄 배선 기판 또는 인쇄된 회로 어셈블리의 제조를 위한, 가열을 포함한 공정에 의한 재료의 처리를 위한 기계류	0%	E0
7423	8419.89.19	- - - - 기타	0%	E0
7424	8419.89.20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8419.90	- 부분품		
		- - 전기 작동식 제품의 것		
7425	8419.90.12	- - - 인쇄회로기판, 인쇄 배선 기판 또는 인쇄된 회로 어셈블리의 제조를 위한, 가열을 포함한 공정에 의한 재료의 처리를 위한 기계류의 부분품	0%	E0
7426	8419.90.13	- - - 냉각탑용 케이싱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7427	8419.90.19	- - - 기타	0%	E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제품의 것		
7428	8419.90.22	- - - 가정용에 적합한 가스식인 즉시식 물 가열기	0%	E0
7429	8419.90.29	- - - 기타	0%	E0
	84.20	**캘린더기(calendering machine)나 그 밖의 로울기(rolling machine)(금속이나 유리 가공용은 제외한다)와 이것에 사용되는 실린더**		
	8420.10	- 캘린더기(calendering machine)나 그 밖의 로울기(rolling machine)		
7430	8420.10.10	- - 인쇄 회로판이나 인쇄 배선판 또는 그 구성부품에 드라이 필름 또는 액상 포토레지스트, 감광층, 납땜 페이스트, 납땜 또는 접착 물질을 바르기 위한 기계	0%	E0
7431	8420.10.20	- - 가정용에 적합한 다리미나 탈수기	0%	E0
7432	8420.10.90	- - 기타	0%	E0
		- 부분품		
	8420.91	- - 실린더		
7433	8420.91.10	- - - 소호 제 8420.10.10 호의 물품의 것	0%	E0
7434	8420.91.90	- - - 기타	0%	E0
	8420.99	- - 기타		
7435	8420.99.10	- - - 소호 제 8420.10.10 호의 물품의 것	0%	E0
7436	8420.99.90	- - - 기타	0%	E0
	84.21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7437	8421.11.00	- - 크림분리기	0%	E0
7438	8421.12.00	- - 의류탈수기	0%	E0
	8421.19	- - 기타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7439	8421.19.10	- - - 설탕 제조용에 사용하는 것	0%	E0
7440	8421.19.90	- - - 기타	0%	E0
		- 액체용 여과기 또는 청정기		
	8421.21	- - 물의 여과용이나 청정용		
		- - - 용적이 1 시간당 500 리터 이하인 것		
7441	8421.21.11	- - - - 가정용 여과기	0%	E0
7442	8421.21.19	- - - - 기타	0%	E0
		- - - 용적이 1 시간당 500 리터를 초과하는 것		
7443	8421.21.22	- - - - 전기 작동식의 것	0%	E0
7444	8421.21.23	-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8421.22	- - 물 외의 음료의 여과용이나 청정용		
7445	8421.22.30	- - - 용적이 1 시간당 500 리터를 초과하는 전기 작동식의 것	0%	E0
7446	8421.22.90	- - - 기타	0%	E0
	8421.23	- - 내연기관용 유류 여과기		
		- - - 제 8429 호나 제 8430 호의 기계류용		
7447	8421.23.11	- - - - 오일 필터	0%	E0
7448	8421.23.19	- - - - 기타	0%	E0
		- - - 제 87 류의 자동차용		
7449	8421.23.21	- - - - 오일 필터	0%	E0
7450	8421.23.29	- - - - 기타	0%	E0
		- - - 기타		
7451	8421.23.91	- - - - 오일 필터	0%	E0
7452	8421.23.99	- - - - 기타	0%	E0
	8421.29	- - 기타		
7453	8421.29.10	- - - 내과용·외과용 또는 실험실용	0%	E0
7454	8421.29.20	- - - 설탕 제조용에 사용하는 것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7455	8421.29.30	- - - 오일 드릴링 작업에 사용하는 것	0%	E0
7456	8421.29.40	- - - 기타(휘발유 여과기로 한정한다)	0%	E0
7457	8421.29.50	- - - 기타(유류 여과기로 한정한다)	0%	E0
7458	8421.29.90	- - - 기타	0%	E0
		- 기체의 여과기 또는 청정기		
	8421.31	- - 내연기관용 공기 여과기		
7459	8421.31.10	- - - 제 8429 호나 제 8430 호의 기계류용	0%	E0
7460	8421.31.20	- - - 제 87 류의 자동차용	0%	E0
7461	8421.31.90	- - - 기타	0%	E0
	8421.39	- - 기타		
7462	8421.39.20	- - - 공기 정화기	0%	E0
7463	8421.39.90	- - - 기타	0%	E0
		- 부분품		
	8421.91	- -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의 것		
7464	8421.91.10	- - - 소호 제 8421.12.00 호의 물품의 것	0%	E0
7465	8421.91.20	- - - 소호 제 8421.19.10 호의 물품의 것	0%	E0
7466	8421.91.90	- - - 소호 제 8421.11.00 호나 제 8421.19.90 호의 물품의 것	0%	E0
	8421.99	- - 기타		
		- - - 소호 제 8421.23 호의 필터용 필터 카트리지		
7467	8421.99.21	- - - - 소호 제 8421.23.11 호 또는 제 8421.23.21 호용	0%	E0
7468	8421.99.29	- - - - 기타	0%	E0
7469	8421.99.30	- - - 소호 제 8421.31 호의 물품의 것	0%	E0
		- - - 기타		
7470	8421.99.91	- - - - 소호 제 8421.29.20 호의 물품의 것	0%	E0
7471	8421.99.94	- - - - 소호 제 8421.21.11 호의 물품의 것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7472	8421.99.96	- - - - 소호 제8421.23.11호 또는 제8421.23.91호의 물품의 것	0%	E0
7473	8421.99.97	- - - - 소호 제8421.23.19호 또는 제8421.23.99호의 물품의 것	0%	E0
7474	8421.99.98	- - - - 소호 제8421.29.50호 또는 제8421.39.90호의 물품의 것	0%	E0
7475	8421.99.99	- - - - 기타	0%	E0
	84.22	**접시세척기,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 병·깡통·상자·자루·그 밖의 용기의 충전용·봉함용·실링(sealing)용·레이블 부착용 기계, 병·단지·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 부착(capsuling)용 기계, 그 밖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포함한다), 음료용 탄산가스 주입기**		
		- 접시세척기		
7476	8422.11.00	- - 가정형의 것	0%	E0
7477	8422.19.00	- - 기타	0%	E0
7478	8422.20.00	-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	0%	E0
7479	8422.30.00	- 병·깡통·상자·자루 또는 그 밖의 용기의 충전용·봉함용·실링(sealing)용 또는 레이블 부착용 기계, 병·단지·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 부착(capsuling)용 기계, 음료용 탄산가스 주입기	0%	E0
7480	8422.40.00	- 그 밖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포함한다)	0%	E0
	8422.90	- 부분품		
7481	8422.90.10	- - 소호 제8422.11호의 기계용의 것	0%	E0
7482	8422.90.90	- - 기타	0%	E0
	84.23	**중량 측정기기[감량(感量)이 50밀리그램 이하인 저울은 제외하며, 중량측정식 계수기와 검사기를 포함한다]와 각종 저울 추**		
	8423.10	- 체중기(유아용 저울을 포함한다)와 가정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형 저울		
7483	8423.1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0%	E0
7484	8423.1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8423.20	- 컨베이어용 연속계량식 저울		
7485	8423.2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0%	E0
7486	8423.2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8423.30	- 정량저울과 설정된 양의 재료를 포대나 용기에 주입하기 위한 저울[호퍼스케일(hopper scale)을 포함한다]		
7487	8423.3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0%	E0
7488	8423.3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 그 밖의 중량 측정기기		
	8423.81	- - 최대 측정용량이 30 킬로그램 이하인 것		
7489	8423.81.10	- - - 전기 작동식의 것	0%	E0
7490	8423.81.20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8423.82	- - 최대 측정용량이 30 킬로그램 초과 5,000 킬로그램 이하인 것		
		- - - 전기 작동식의 것		
7491	8423.82.11	- - - - 최대 측정용량이 1,000 킬로그램 이하인 것	0%	E0
7492	8423.82.19	- - - - 기타	0%	E0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7493	8423.82.21	- - - - 최대 측정용량이 1,000 킬로그램 이하인 것	0%	E0
7494	8423.82.29	- - - - 기타	0%	E0
	8423.89	- - 기타		
7495	8423.89.10	- - - 전기 작동식의 것	0%	E0
7496	8423.89.20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8423.90	- 각종 저울 추와 저울 부분품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7497	8423.90.10	- - 저울 추	0%	E0
		- - 중량 측정기기의 그 밖의 부분품		
7498	8423.90.21	- - - 전기 작동식의 기계의 것	0%	E0
7499	8423.90.29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기계의 것	0%	E0
	84.24	**액체나 가루의 분사용·살포용·분무용 기기(수동식인지에 상관없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		
	8424.10	-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7500	8424.10.10	- - 항공기용으로 적합한 것	0%	E0
7501	8424.10.90	- - 기타	0%	E0
	8424.20	-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 - 전기 작동식의 것		
7502	8424.20.11	- - - 농업용이나 원예용	0%	E0
7503	8424.20.19	- - - 기타	0%	E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7504	8424.20.21	- - - 농업용이나 원예용	0%	E0
7505	8424.20.29	- - - 기타	0%	E0
7506	8424.30.00	-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	0%	E0
		- 농업용이나 원예용 스프레이		
	8424.41	- - 휴대용 방제기		
7507	8424.41.10	- - - 수동식 살충 스프레이	5%	E3
7508	8424.41.20	- - - 기타(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5%	E3
7509	8424.41.90	- - - 기타	5%	E3
	8424.49	- - 기타		
7510	8424.49.10	- - - 전기 작동식의 것	5%	E3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7511	8424.49.20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5%	E3
		- 그 밖의 기구		
	8424.82	- - 농업용이나 원예용		
7512	8424.82.10	- - - 점적 관개 시스템	5%	E3
7513	8424.82.20	- - - 기타(전기 작동식의 것)	5%	E3
7514	8424.82.30	- - - 기타(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5%	E3
	8424.89	- - 기타		
7515	8424.89.10	- - - 용량이 3 리터 이하인 수동식 가정용 스프레이	0%	E0
7516	8424.89.20	- - - 딥 튜브가 부착된 분무기 노즐	0%	E0
7517	8424.89.40	- - - 인쇄회로판이나 인쇄배선판 물질에 화학 또는 전기화학 솔루션을 분사, 살포 또는 분무하는 습식프로세싱기구, 인쇄회로판이나 인쇄배선판 또는 그 구성부품에 액체, 납땜 페이스트, 솔더 볼(solder ball), 접착제 또는 밀봉제를 점처리 하기 위한 기기, 인쇄회로판이나 인쇄배선판 물질 또는 그 구성부품에 건식 필름 또는 액상포토 레지스트, 감광층, 납땜 페이스트, 납땜 또는 접착 물질을 바르기 위한 기기	0%	E0
7518	8424.89.50	- - - 기타(전기 작동식의 것)	0%	E0
7519	8424.89.90	- - - 기타(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8424.90	- 부분품		
7520	8424.90.10	- - 소화기의 것	0%	E0
		- - 스프레이 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의 것		
		- - - 전기 작동식의 것		
7521	8424.90.21	- - - - 소호 제 8424.20.11 호의 물품의 것	0%	E0
7522	8424.90.23	- - - - 기타	0%	E0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7523	8424.90.24	- - - - 소호 제 8424.20.21 호의 물품의 것	0%	E0
7524	8424.90.29	- - - - 기타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7525	8424.90.30	- -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의 것	0%	E0
		- - 그 밖의 기기의 것		
7526	8424.90.93	- - - 소호 제 8424.82.10 호의 물품의 것	0%	E0
7527	8424.90.94	- - - 소호 제 8424.41.10 호, 제 8424.41.20 호, 제 8424.49.20 호나 제 8424.82.30 호의 물품의 것	0%	E0
7528	8424.90.95	- - - 소호 제 8424.41.90 호, 제 8424.49.10 호나 제 8424.82.20 호의 물품의 것	0%	E0
7529	8424.90.99	- - - 기타	0%	E0
	84.25	**풀리 태클(Pulley tackle)과 호이스트(hoist)[스킵호이스트(skip hoist)는 제외한다], 윈치(winch)와 캡스턴(capstan), 잭(jack)**		
		- 풀리 태클(Pulley tackle)과 호이스트(hoist)[스킵호이스트(skip hoist)나 차량을 들어 올리는 데에 사용하는 호이스트(hoist)는 제외한다]		
7530	8425.11.00	- - 전동식	0%	E0
7531	8425.19.00	- - 기타	0%	E0
		- 윈치(winch), 캡스턴(capstan)		
7532	8425.31.00	- - 전동식	0%	E0
7533	8425.39.00	- - 기타	0%	E0
		- 잭(jack), 차량을 들어 올리는 데에 사용하는 호이스트(hoist)		
7534	8425.41.00	- - 차고용 고정식 재킹시스템(jacking system)	0%	E0
	8425.42	- - 그 밖의 잭(jack)과 호이스트(hoist)(액압식으로 한정한다)		
7535	8425.42.10	- - - 대형 트럭용 티핑 기계장치에 사용되는 잭	0%	E0
7536	8425.42.90	- - - 기타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425.49	- - 기타		
7537	8425.49.10	- - - 전기 작동식의 것	0%	E0
7538	8425.49.20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84.26	**선박의 데릭(derrick), 크레인(케이블크레인을 포함한다), 이동식 양하대·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 크레인이 결합된 작업트럭**		
		- 천장주행 크레인·트랜스포터 크레인·갠트리 크레인(gantry crane)·교각(橋脚)형 크레인·이동식 양하대와 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		
7539	8426.11.00	- - 고정식 천장주행 크레인	0%	E0
7540	8426.12.00	- - 타이어가 달린 이동식 양하대와 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	0%	E0
	8426.19	- - 기타		
7541	8426.19.20	- - - 교각(橋脚)형 크레인	0%	E0
7542	8426.19.30	- - - 갠트리 크레인	0%	E0
7543	8426.19.90	- - - 기타	0%	E0
7544	8426.20.00	- 타워크레인(tower crane)	0%	E0
7545	8426.30.00	- 문형이나 정치형 지브 크레인(jib crane)	0%	E0
		- 그 밖의 기계[자주식(自走式)으로 한정한다]		
7546	8426.41.00	- - 타이어가 달린 것	0%	E0
7547	8426.49.00	- - 기타	0%	E0
		- 그 밖의 기계		
7548	8426.91.00	- - 도로주행 차량에 장착하도록 제작된 것	0%	E0
7549	8426.99.00	- - 기타	0%	E0
	84.27	**포크리프트트럭(fork-lift truck), 그 밖의 작업트럭[권양(捲揚)용이나 취급용 장비가 결합된 것으로 한정한다]**		
7550	8427.10.00	- 전동기로 구동되는 자주식(自走式) 트럭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7551	8427.20.00	- 그 밖의 자주식(自走式) 작업트럭	0%	E0
7552	8427.90.00	- 그 밖의 작업트럭	0%	E0
	84.28	**그 밖의 권양(捲揚)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릭(teleferic)]**		
	8428.10	- 리프트와 스킵호이스트(skip hoist)		
		- - 리프트		
7553	8428.10.31	- - - 승객용	0%	E0
7554	8428.10.39	- - - 기타	0%	E0
7555	8428.10.40	- - 스킵호이스트(skip hoist)	0%	E0
	8428.20	- 뉴매틱식 엘리베이터와 컨베이어		
7556	8428.20.10	- -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것	0%	E0
7557	8428.20.90	- - 기타	0%	E0
		- 그 밖의 연속작동(continuous-action)식 물품용이나 재료용 엘리베이터와 컨베이어		
7558	8428.31.00	- - 지하 작업용으로 특수 설계된 것	0%	E0
	8428.32	- - 그 밖의 버켓형		
7559	8428.32.10	- - -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것	0%	E0
7560	8428.32.90	- - - 기타	0%	E0
	8428.33	- - 그 밖의 벨트형		
7561	8428.33.10	- - -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것	0%	E0
7562	8428.33.90	- - - 기타	0%	E0
	8428.39	- - 기타		
7563	8428.39.10	- - -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것	0%	E0
7564	8428.39.90	- - - 기타	0%	E0
7565	8428.40.00	- 에스컬레이터와 무빙 워크웨이(moving walkway)	0%	E0
7566	8428.60.00	- 텔레페릭(teleferic)・의자 양하기・스키용 드래그라인(dragline), 퓨니쿨러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funicular)용 견인장치		
	8428.90	- 그 밖의 기계		
7567	8428.90.20	- - 인쇄 회로판·인쇄 배선판 또는 인쇄 회로 조립품의 운송·하역 및 보관용 자동화 기계	0%	E0
7568	8428.90.30	- - 광산용 왜건푸셔·기관차 또는 화차의 트레버서·화차 경사기 및 이와 유사한 철도화차 취급 장비	0%	E0
7569	8428.90.90	- - 기타	0%	E0
	84.29	**자주식(自走式) 불도저(bulldozer)·앵글도저(angledozer)·그레이더(grader)·레벨러(leveller)·스크래퍼(scraper)·메커니컬셔블(mechanical shovel)·엑스커베이터(excavator)·셔블로더(shovel loader)·탬핑머신(tamping machine)·로드롤러(road roller)**		
		- 불도저(bulldozer)와 앵글도저(angledozer)		
7570	8429.11.00	- - 무한 궤도식	0%	E0
7571	8429.19.00	- - 기타	0%	E0
7572	8429.20.00	- 그레이더(grader)와 레벨러(leveller)	0%	E0
7573	8429.30.00	- 스크래퍼(scraper)	0%	E0
	8429.40	- 탬핑머신(tamping machine)과 로드롤러(road roller)		
7574	8429.40.30	- - 탬핑머신(tamping machine)	0%	E0
7575	8429.40.40	- - 진동 드럼 롤러(중량이 20톤 이하인 원심 드럼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	E0
7576	8429.40.50	- - 그 밖의 진동 로드 롤러	0%	E0
7577	8429.40.90	- - 기타	0%	E0
		- 메커니컬셔블(mechanical shovel), 엑스커베이터(excavator)와 셔블로더(shovel loader)		
7578	8429.51.00	- - 프론트엔드 셔블로더(frontend shovel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loader)		
7579	8429.52.00	- - 360 도 회전의 상부구조를 가진 기계	0%	E0
7580	8429.59.00	- - 기타	0%	E0
	84.30	**그 밖의 이동용・정지(整地)용・지균(地均)용・스크래핑(scraping)용・굴착용・탬핑(tamping)용・콤팩팅(compacting)용・채굴용・천공용 기계(토양용・광석용・광물용으로 한정한다), 항타기와 항발기, 스노플라우(snow-plough)와 스노블로어(snow-blower)**		
7581	8430.10.00	- 항타기(杭打機)와 항발기(抗拔機)	0%	E0
7582	8430.20.00	- 스노플라우(snow-plough)와 스노블로어(snow-blower)	0%	E0
		- 석탄이나 암석 절단기와 터널 뚫는 기계		
7583	8430.31.00	- - 자주식(自走式)	0%	E0
7584	8430.39.00	- - 기타	0%	E0
		- 그 밖의 천공용이나 시굴용 기계		
7585	8430.41.00	- - 자주식(自走式)	0%	E0
	8430.49	- - 기타		
7586	8430.49.10	- - - 드릴 작업용에 적합한 웰헤드 플랫폼과 통합생산 모듈	0%	E0
7587	8430.49.90	- - - 기타	0%	E0
7588	8430.50.00	- 그 밖의 기계[자주식(自走式)으로 한정한다]	0%	E0
		- 그 밖의 기계[자주식(自走式)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		
7589	8430.61.00	- - 탬핑(tamping)용이나 콤팩팅(compacting)용 기계	0%	E0
7590	8430.69.00	- - 기타	0%	E0
	84.31	**제 8425 호부터 제 8430 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8431.10	- 제 8425 호의 기계의 것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 - 전기 작동식의 기계의 것		
7591	8431.10.13	- - - 소호 제 8425.11.00 호, 제 8425.31.00 호나 제 8425.49.10 호의 물품의 것	0%	E0
7592	8431.10.19	- - - 기타	0%	E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기계의 것		
7593	8431.10.22	- - - 소호 제 8425.19.00 호, 제 8425.39.00 호, 제 8425.41.00 호, 제 8425.42.10 호 또는 제 8425.42.90 호의 물품의 것	0%	E0
7594	8431.10.29	- - - 기타	0%	E0
		- 제 8427 호의 기계의 것		
7595	8431.20.10	- - 소호 제 8427.10 호나 제 8427.20 호의 물품의 것	0%	E0
7596	8431.20.90	- - 기타	0%	E0
		- 제 8428 호의 기계의 것		
	8431.31	- - 리프트·스킵호이스트(skip hoist)·에스컬레이터의 것		
7597	8431.31.10	- - - 소호 제 8428.10.39 호나 제 8428.10.40 호의 물품의 것	0%	E0
7598	8431.31.20	- - - 소호 제 8428.10.31 호나 제 8428.40.00 호의 물품의 것	0%	E0
	8431.39	- - 기타		
7599	8431.39.10	- - - 소호 제 8428.20.10 호, 제 8428.32.10 호, 제 8428.33.10 호나 제 8428.39.10 호의 물품의 것	0%	E0
7600	8431.39.40	- - - 인쇄 회로판·인쇄 배선판 또는 인쇄 회로 조립품의 운송·하역 및 보관용 자동화 기계의 것	0%	E0
7601	8431.39.50	- - - 기타(소호 제 8428.90 호의 물품의 것으로 한정한다)	0%	E0
7602	8431.39.90	- - - 기타	0%	E0
		- 제 8426 호·제 8429 호 또는 제 8430 호의 기계의 것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431.41	- - 버켓(bucket)·셔블(shovel)·그랩(grab)과 그립(grip)		
7603	8431.41.10	- - - 제 8426 호의 기계류용	0%	E0
7604	8431.41.90	- - - 기타	0%	E0
7605	8431.42.00	- - 불도저(bulldozer)나 앵글도저(angledozer)의 블레이드(blade)	0%	E0
7606	8431.43.00	- - 소호 제 8430.41 호나 제 8430.49 호의 천공용이나 시굴용 기계의 부분품	0%	E0
	8431.49	- - 기타		
7607	8431.49.10	- - - 제 8426 호의 기계류의 부분품	0%	E0
7608	8431.49.20	- - - 스크래퍼, 그레이더나 레벨러용의 절단면이나 엔드(end)	0%	E0
7609	8431.49.40	- - - 불도저나 앵글도저 블레이드용의 절단면이나 엔드(end)	0%	E0
7610	8431.49.50	- - - 로드 롤러의 것	0%	E0
7611	8431.49.60	- - - 소호 제 8430.20.00 호의 물품의 것	0%	E0
7612	8431.49.90	- - - 기타	0%	E0
	84.32	**농업용·원예용·임업용 기계(토양 정리용이나 경작용으로 한정한다)와 잔디용이나 운동장용 롤러**		
7613	8432.10.00	- 플라우(쟁기)	0%	E0
		- 하로우(쇄토기)·스카리파이어·컬티베이터(중경기)·제초기와 호우		
7614	8432.21.00	- - 디스크 하로우(쇄토기)	0%	E0
7615	8432.29.00	- - 기타	0%	E0
		- 파종기·식부기(植付機) 및 이식기		
7616	8432.31.00	- - 무경간(無耕墾) 직접 농법용 파종기·식부기(植付機)·이식기	0%	E0
7617	8432.39.00	- - 기타	0%	E0
		- 퇴비 살포기와 비료 살포기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7618	8432.41.00	- - 퇴비 살포기	0%	E0
7619	8432.42.00	- - 비료 살포기	0%	E0
	8432.80	- 그 밖의 기계		
7620	8432.80.10	- - 농업용이나 원예용	0%	E0
7621	8432.80.20	- - 잔디나 운동장용의 롤러	0%	E0
7622	8432.80.90	- - 기타	0%	E0
	8432.90	- 부분품		
7623	8432.90.10	- - 소호 제 8432.80.90 호의 기계의 것	0%	E0
7624	8432.90.20	- - 잔디나 운동장용의 롤러의 것	0%	E0
7625	8432.90.90	- - 기타	0%	E0
	84.33	**수확기나 탈곡기(짚이나 건초 결속기를 포함한다), 풀 베는 기계, 새의 알·과실이나 그 밖의 농산물의 세정기·분류기·선별기 (제 8437 호의 기계는 제외한다)**		
		- 공원이나 운동장의 잔디 깎는 기계		
7626	8433.11.00	- - 동력식(수평으로 회전하는 절단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0%	E0
	8433.19	- - 기타		
7627	8433.19.10	- - - 동력식이 아닌 것	0%	E0
7628	8433.19.90	- - - 기타	0%	E0
7629	8433.20.00	- 그 밖의 풀 베는 기계[트랙터 장착용 커터바(cutter bar)를 포함한다]	0%	E0
7630	8433.30.00	- 그 밖의 건초제조용 기계	0%	E0
7631	8433.40.00	- 짚이나 건초 결속기[픽업(pickup)결속기를 포함한다]	0%	E0
		- 그 밖의 수확기, 탈곡기		
7632	8433.51.00	- - 수확·탈곡 겸용기	0%	E0
7633	8433.52.00	- - 그 밖의 탈곡기	0%	E0
7634	8433.53.00	- - 구경(球莖)이나 괴경(塊莖)의 수확기[근채(根菜) 수확기]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433.59	- - 기타		
7635	8433.59.20	- - - 채면기	0%	E0
7636	8433.59.90	- - - 기타	0%	E0
	8433.60	- 새의 알·과실이나 그 밖의 농산물의 세정기·분류기·선별기		
7637	8433.6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0%	E0
7638	8433.6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8433.90	- 부분품		
7639	8433.90.10	- - 타이어를 포함한 바퀴(어떠한 바퀴나 타이어의 폭이 30 밀리미터를 초과할 경우, 지름이 100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250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E0
7640	8433.90.20	- - 기타(소호 제 8433.11 호나 제 8433.19.90 호의 물품의 것으로 한정한다)	0%	E0
7641	8433.90.30	- - 기타(소호 제 8433.19.10 호의 물품의 것으로 한정한다)	0%	E0
7642	8433.90.90	- - 기타	0%	E0
	84.34	**착유기와 낙농기계**		
	8434.10	- 착유기		
7643	8434.1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0%	E0
7644	8434.1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8434.20	- 낙농기계		
7645	8434.2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0%	E0
7646	8434.2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8434.90	- 부분품		
7647	8434.90.10	- - 전기작동식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	0%	E0
7648	8434.90.90	- - 기타	0%	E0
	84.35	**포도주·사과술·과실주스나 이와 유사한 음료의 제조에 사용되는 프레스(press)·크**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러셔(crusher)와 이와 유사한 기계		
	8435.10	- 기계		
7649	8435.1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0%	E0
7650	8435.1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8435.90	- 부분품		
7651	8435.90.10	- - 전기 작동식의 기계의 것	0%	E0
7652	8435.9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기계의 것	0%	E0
	84.36	**그 밖의 농업용·원예용·임업용·가금(家禽) 사육용·양봉용 기계(기계장치나 가열장치를 갖춘 발아용 기기를 포함한다)와 가금(家禽)의 부란기와 양육기**		
	8436.10	- 동물사료 조제용 기계		
7653	8436.1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0%	E0
7654	8436.1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 가금(家禽) 사육용 기계, 가금(家禽)의 부란기와 양육기		
	8436.21	- - 가금(家禽)의 부란기와 양육기		
7655	8436.21.10	- - - 전기 작동식의 것	0%	E0
7656	8436.21.20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8436.29	- - 기타		
7657	8436.29.10	- - - 전기 작동식의 것	0%	E0
7658	8436.29.20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8436.80	- 그 밖의 기계		
		- - 전기 작동식의 것		
7659	8436.80.11	- - - 농업용이나 원예용	0%	E0
7660	8436.80.19	- - - 기타	0%	E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7661	8436.80.21	- - - 농업용이나 원예용	0%	E0
7662	8436.80.29	- - - 기타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 부분품		
	8436.91	- - 가금(家禽) 사육용 기계나 가금(家禽)의 부란기와 양육기의 것		
7663	8436.91.10	- - - 전기 작동식의 기계와 기구의 것	0%	E0
7664	8436.91.20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기계와 기구의 것	0%	E0
	8436.99	- - 기타		
		- - - 전기 작동식의 기계와 기구의 것		
7665	8436.99.11	- - - - 농업용이나 원예용	0%	E0
7666	8436.99.19	- - - - 기타	0%	E0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기계와 기구의 것		
7667	8436.99.21	- - - - 농업용이나 원예용	0%	E0
7668	8436.99.29	- - - - 기타	0%	E0
	84.37	**종자·곡물·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세정기·분류기·선별기, 제분업용 기계나 곡물·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가공기계(농장형은 제외한다)**		
	8437.10	- 종자·곡물·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세정기·분류기·선별기		
7669	8437.10.10	- - 곡물용으로 전기식으로 작동하는 것, 전기식으로 작동하는 키질(winnowing) 및 이와 유사한 세정용 기계	0%	E0
7670	8437.10.20	- - 곡물용으로 전기식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 전기식으로 작동하지 않는 키질(winnowing) 및 이와 유사한 세정용 기계	0%	E0
7671	8437.10.30	- - 기타(전기 작동식의 것)	0%	E0
7672	8437.10.40	- - 기타(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8437.80	- 그 밖의 기계		
7673	8437.80.10	- - 정미기와 원뿔형 정미기(전기 작동식의 것)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7674	8437.80.20	- - 정미기와 원뿔형 정미기(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7675	8437.80.30	- - 산업용 커피와 옥수수 제분기(전기 작동식의 것)	0%	E0
7676	8437.80.40	- - 산업용 커피와 옥수수 제분기(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 - 기타(전기 작동식의 것)		
7677	8437.80.51	- - - 쌀용 광택기·시프팅기와 체분석기·겨 세척 기구와 옥수수 껍질 벗기기 기계	0%	E0
7678	8437.80.59	- - - 기타	0%	E0
		- - 기타(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7679	8437.80.61	- - - 쌀용 광택기·시프팅기와 체분석기·겨 세척 기구와 옥수수 껍질 벗기기 기계	0%	E0
7680	8437.80.69	- - - 기타	0%	E0
	8437.90	- 부분품		
		- - 전기 작동식의 기계의 것		
7681	8437.90.11	- - - 소호 제 8437.10 호의 기계의 것	0%	E0
7682	8437.90.19	- - - 기타	0%	E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기계의 것		
7683	8437.90.21	- - - 소호 제 8437.10 호의 기계의 것	0%	E0
7684	8437.90.29	- - - 기타	0%	E0
	84.38	**식음료의 조제·제조 산업용 기계(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동물성 또는 비휘발성인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의 추출용이나 조제용 기계는 제외한다)**		
	8438.10	- 베이커리 기계와 마카로니·스파게티·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품의 제조용 기계		
7685	8438.1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0%	E0
7686	8438.1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8438.20	- 과자·코코아·초콜릿 제조용 기계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7687	8438.2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0%	E0
7688	8438.2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8438.30	- 설탕 제조용 기계		
7689	8438.3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0%	E0
7690	8438.3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7691	8438.40.00	- 양조용 기계	0%	E0
	8438.50	- 육류나 가금(家禽)육의 조제용 기계		
7692	8438.5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0%	E0
7693	8438.5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8438.60	- 과실·견과·채소의 조제용 기계		
7694	8438.6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0%	E0
7695	8438.6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8438.80	- 그 밖의 기계		
		- - 커피 채취기		
7696	8438.80.11	- - - 전기 작동식의 것	0%	E0
7697	8438.80.12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 - 어류, 갑각류 또는 연체동물 조제용 기계		
7698	8438.80.21	- - - 전기 작동식의 것	0%	E0
7699	8438.80.22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 - 기타		
7700	8438.80.91	- - - 전기 작동식의 것	0%	E0
7701	8438.80.92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8438.90	- 부분품		
		- - 전기 작동식의 기계의 것		
7702	8438.90.11	- - - 소호 제 8438.30.10 호의 물품의 것	0%	E0
7703	8438.90.12	- - - 커피 채취기의 것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7704	8438.90.19	- - - 기타	0%	E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기계의 것		
7705	8438.90.21	- - - 소호 제 8438.30.20 호의 물품의 것	0%	E0
7706	8438.90.22	- - - 커피 채취기의 것	0%	E0
7707	8438.90.29	- - - 기타	0%	E0
	84.39	**섬유소 펄프의 제조용 기계와 종이·판지의 제조용이나 완성가공용 기계**		
7708	8439.10.00	- 섬유소 펄프의 제조용 기계	0%	E0
7709	8439.20.00	- 종이 또는 판지의 제조용 기계	0%	E0
7710	8439.30.00	- 종이 또는 판지의 완성가공용 기계	0%	E0
		- 부분품		
7711	8439.91.00	- - 섬유소 펄프 제조용 기계의 것	0%	E0
7712	8439.99.00	- - 기타	0%	E0
	84.40	**제본기계(제본용 재봉기를 포함한다)**		
	8440.10	- 기계		
7713	8440.1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0%	E0
7714	8440.1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8440.90	- 부분품		
7715	8440.90.10	- - 전기 작동식의 기계의 것	0%	E0
7716	8440.9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기계의 것	0%	E0
	84.41	**그 밖의 제지용 펄프·종이·판지의 가공기계(각종 절단기를 포함한다)**		
	8441.10	- 절단기		
7717	8441.1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0%	E0
7718	8441.1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8441.20	- 종이백·봉지·봉투 제조용 기계		
7719	8441.2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0%	E0
7720	8441.2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441.30	- 카톤(carton)·박스·케이스·튜브·드럼·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기의 제조기계[몰딩(moulding)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7721	8441.3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0%	E0
7722	8441.3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8441.40	- 제지용 펄프·종이·판지 제품의 몰딩(moulding)용 기계		
7723	8441.4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0%	E0
7724	8441.4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8441.80	- 그 밖의 기계		
7725	8441.8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0%	E0
7726	8441.8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8441.90	- 부분품		
7727	8441.90.10	- - 전기 작동식의 기계의 것	0%	E0
7728	8441.9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기계의 것	0%	E0
	84.42	**플레이트·실린더나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의 조제용이나 제조용 기계류·장치 및 장비(제 8456 호부터 제 8465 호까지의 기계는 제외한다),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 인쇄용으로 조제가공[예: 평삭(平削)·그레인 또는 연마]한 플레이트·실린더와 석판석**		
	8442.30	- 기계류·장치·장비		
7729	8442.3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0%	E0
7730	8442.3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8442.40	- 위의 기계류·장치·장비의 부분품		
7731	8442.40.10	- - 전기 작동식의 기계·장치 또는 장비의 것	0%	E0
7732	8442.4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기계·장치 또는 장비의 것	0%	E0
7733	8442.50.00	-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 인쇄용으로 조제가공[예: 평삭(平削)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그레인 또는 연마]한 플레이트・실린더와 석판석		
	84.43	**제 8442 호의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복사기・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제 8442 호의 플레이트, 실린더 및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7734	8443.11.00	- - 오프셋(offset) 인쇄기계[릴(reel)식으로 한정한다]	0%	E0
7735	8443.12.00	- - 오프셋(offset) 인쇄기계[시트(sheet)식 사무실용으로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22 센티미터 이하, 다른 변이 36 센티미터 이하인 시트(sheet)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E0
7736	8443.13.00	- - 그 밖의 오프셋(offset) 인쇄기계	0%	E0
7737	8443.14.00	- - 활판인쇄용 기계[릴(reel)식의 것으로 곡면인쇄용은 제외한다]	0%	E0
7738	8443.15.00	- - 활판인쇄용 기계[릴(reel)식 외의 것으로 곡면인쇄용은 제외한다]	0%	E0
7739	8443.16.00	- - 곡면인쇄용 기계	0%	E0
7740	8443.17.00	- - 그라비어(gravure) 인쇄용 기계	0%	E0
7741	8443.19.00	- - 기타	0%	E0
		- 그 밖의 인쇄기・복사기 및 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8443.31	- - 자동자료처리기계나 네트워크로 연결되며, 인쇄・복사・팩시밀리 전송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		
		- - - 프린터복사기(잉크젯 형식으로 프린트 되는 것)		
7742	8443.31.11	- - - - 천연색	0%	E0
7743	8443.31.19	- - - - 기타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 - - 프린터복사기(레이저 형식으로 프린트 되는 것)		
7744	8443.31.21	- - - - 천연색	0%	E0
7745	8443.31.29	- - - - 기타	0%	E0
		- - - 프린터-복사기-팩시밀리 복합기		
7746	8443.31.31	- - - - 천연색	0%	E0
7747	8443.31.39	- - - - 기타	0%	E0
		- - - 기타		
7748	8443.31.91	- - - - 프린터-복사기-스캐너-팩시밀리 복합기	0%	E0
7749	8443.31.99	- - - - 기타	0%	E0
	8443.32	- - 자동자료처리기계나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그 밖의 기기		
		- - - 도트 프린터		
7750	8443.32.11	- - - - 천연색	0%	E0
7751	8443.32.19	- - - - 기타	0%	E0
		- - - 잉크젯 프린터		
7752	8443.32.21	- - - - 천연색	0%	E0
7753	8443.32.29	- - - - 기타	0%	E0
		- - - 레이저 프린터		
7754	8443.32.31	- - - - 천연색	0%	E0
7755	8443.32.39	- - - - 기타	0%	E0
		- - - 팩시밀리 기계		
7756	8443.32.41	- - - - 천연색	0%	E0
7757	8443.32.49	- - - - 기타	0%	E0
7758	8443.32.50	- - - 인쇄 회로판 또는 인쇄 배선판 제조용 스크린 인쇄 기계	0%	E0
7759	8443.32.60	- - - 플로터	0%	E0
7760	8443.32.90	- - - 기타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443.39	- - 기타		
7761	8443.39.10	- - - 원래의 영상을 직접 복사지에 복사하는 정전기식의 사진식 복사기(직접 처리식으로 한정한다)	0%	E0
7762	8443.39.20	- - - 원래의 영상을 매개체를 통하여 복사지에 복사하는 정전기식의 사진식 복사기(간접처리식으로 한정한다)	0%	E0
7763	8443.39.30	- - - 그 밖의 사진식 복사기(광학기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0%	E0
7764	8443.39.40	- - - 잉크젯 프린터	0%	E0
7765	8443.39.90	- - - 기타	0%	E0
		- 부분품과 부속품		
7766	8443.91.00	- - 제 8442 호의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0%	E0
	8443.99	- - 기타		
7767	8443.99.10	- - - 인쇄 회로판 또는 인쇄 배선판 제조용 스크린 인쇄 기계의 것	0%	E0
7768	8443.99.20	- - - 잉크로 채워진 프린터 카트리지	0%	E0
7769	8443.99.30	- - - 종이 공급기, 종이 분류기	0%	E0
7770	8443.99.90	- - - 기타	0%	E0
	84.44	**인조섬유의 방사(紡絲)용·늘림(drawing)용·텍스처(texture)용·절단용 기계**		
7771	8444.00.10	- 전기 작동식의 것	0%	E0
7772	8444.00.20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84.45	**방적준비기계, 방적기·합사기(合絲機)·연사기(撚絲機)와 그 밖의 방직사 제조기계, 권사기(捲絲機)[위권기(緯捲機)를 포함한다]와 제 8446 호나 제 8447 호의 기계에 사용되는 방직사를 제조하는 기계와 준비기계**		
		- 방적준비기계		
	8445.11	- - 카드기(carding machine)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7773	8445.11.10	- - - 전기 작동식의 것	0%	E0
7774	8445.11.20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8445.12	- - 코밍기(combing machine)		
7775	8445.12.10	- - - 전기 작동식의 것	0%	E0
7776	8445.12.20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8445.13	- - 연조기나 조방기		
7777	8445.13.10	- - - 전기 작동식의 것	0%	E0
7778	8445.13.20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8445.19	- - 기타		
7779	8445.19.30	- - - 조면기	0%	E0
7780	8445.19.40	- - - 기타(전기 작동식의 것)	0%	E0
7781	8445.19.50	- - - 기타(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8445.20	- 방적기계		
7782	8445.2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0%	E0
7783	8445.2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8445.30	- 합사기(合絲機)나 연사기(撚絲機)		
7784	8445.3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0%	E0
7785	8445.3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8445.40	- 권사기(捲絲機)[위권기(緯捲機)를 포함한다]		
7786	8445.4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0%	E0
7787	8445.4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8445.90	- 기타		
7788	8445.9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0%	E0
7789	8445.9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84.46	**직기(직조기)**		
	8446.10	- 폭이 30 센티미터 이하인 소폭직기용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7790	8446.1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0%	E0
7791	8446.1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 폭이 30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직기용(셔틀형으로 한정한다)		
7792	8446.21.00	- - 직조기(동력구동식으로 한정한다)	0%	E0
7793	8446.29.00	- - 기타	0%	E0
7794	8446.30.00	- 폭이 30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직기용[셔틀리스(shuttleless)형으로 한정한다]	0%	E0
	84.47	편직기, 스티치본딩기(stitch-bonding machine), 짐프사(gimped yarn)·튈(tulle)·레이스·자수천·트리밍(trimming)·브레이드(braid)나 망의 제조용 기계·터프팅(tufting) 기계		
		- 원형 편기		
	8447.11	- - 실린더 지름이 165 밀리미터 이하인 것		
7795	8447.11.10	- - - 전기 작동식의 것	0%	E0
7796	8447.11.20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8447.12	- - 실린더 지름이 16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7797	8447.12.10	- - - 전기 작동식의 것	0%	E0
7798	8447.12.20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8447.20	- 횡(横) 편직기와 스티치 본딩기(stitch-bonding machine)		
7799	8447.2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0%	E0
7800	8447.2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8447.90	- 기타		
7801	8447.9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0%	E0
7802	8447.9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84.48	제 8444 호·제 8445 호·제 8446 호·제 8447 호의 기계의 보조기계[예: 도비(dobby)기·자카드기·자동정지기·셔틀교환기], 이 호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나 제 8444 호・제 8445 호・제 8446 호・제 8447 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예: 스핀들・스핀들 플라이어・침포・코움(comb)・방사니플・셔틀・종광(heald)・종광 프레임・메리야스용 바늘]		
		- 제 8444 호・제 8445 호・제 8446 호 또는 제 8447 호 기계의 보조기계		
	8448.11	- - 도비(dobby)기・자카드기와 이들을 사용하기 위한 카드의 축소용・복사용・천공용・조립용 기계		
7803	8448.11.10	- - - 전기 작동식의 것	0%	E0
7804	8448.11.20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8448.19	- - 기타		
7805	8448.19.10	- - - 전기 작동식의 것	0%	E0
7806	8448.19.20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7807	8448.20.00	- 제 8444 호에서 규정한 기계나 이들의 보조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0%	E0
		- 제 8445 호의 기계나 이들의 보조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7808	8448.31.00	- - 침포	0%	E0
7809	8448.32.00	- - 침포를 제외한 방적준비기계의 것	0%	E0
7810	8448.33.00	- - 스핀들・스핀들 플라이어・스피닝 링 및 링트래블러	0%	E0
7811	8448.39.00	- - 기타	0%	E0
		- 직기(직조기)나 그 보조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7812	8448.42.00	- - 직조기용 바디・종광(heald)과 종광 프레임	0%	E0
	8448.49	- - 기타		
		- - - 셔틀		
7813	8448.49.11	- - - - 전기 작동식 기계용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7814	8448.49.12	-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기계용	0%	E0
		- - - 기타		
7815	8448.49.91	- - - - 전기 작동식 기계용의 것	0%	E0
7816	8448.49.92	-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기계의 것	0%	E0
		- 제 8447 호의 기계나 그 보조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7817	8448.51.00	- - 바늘땀(stitch) 형성에 사용하는 싱커(sinker)·바늘과 그 밖의 물품	0%	E0
7818	8448.59.00	- - 기타	0%	E0
	84.49	**펠트나 부직포(성형인 것을 포함한다)의 제조·완성가공용 기계(펠트모자 제조용 기계를 포함한다)와 모자 제조용 형(型)**		
7819	8449.00.10	- 전기 작동식의 것	0%	E0
7820	8449.00.20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84.50	**가정형이나 세탁소형 세탁기(세탁·건조 겸용기를 포함한다)**		
		- 1 회의 세탁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 킬로그램 이하인 것		
	8450.11	- - 완전자동 세탁기		
7821	8450.11.10	- - - 1 회의 세탁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6 킬로그램 이하인 것	5%	EX
7822	8450.11.90	- - - 기타	0%	E0
	8450.12	- - 그 밖의 세탁기(원심탈수기를 내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7823	8450.12.10	- - - 1 회의 세탁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6 킬로그램 이하인 것	5%	EX
7824	8450.12.90	- - - 기타	0%	E0
	8450.19	- - 기타		
		- - - 전기 작동식의 것		
7825	8450.19.11	- - - - 1 회의 세탁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6 킬로그램 이하인 것	5%	EX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7826	8450.19.19	- - - - 기타	0%	E0
		- - - 기타		
7827	8450.19.91	- - - - 1 회의 세탁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6 킬로그램 이하인 것	5%	E0
7828	8450.19.99	- - - - 기타	0%	E0
7829	8450.20.00	- 기계(1 회의 세탁 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0%	E0
	8450.90	- 부분품		
7830	8450.90.10	- - 소호 제 8450.20.00 호의 기계의 것	0%	E0
7831	8450.90.20	- - 소호 제 8450.11 호, 제 8450.12 호나 제 8450.19 호의 기계의 것	0%	E0
	84.51	세탁용・클리닝용・쥐어짜기용・건조용・다림질용・프레스용[퓨징프레스(fusing press)를 포함한다]・표백용・염색용・드레싱용・완성가공용・도포용・침지(沈漬)용 기계류[제 8450 호의 것은 제외하며, 방적용실・직물류나 이들 제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와 리놀륨과 같은 바닥깔개의 제조에 사용되는 직물이나 그 밖의 지지물에 페이스트를 입히는 기계, 직물류의 감기(reeling)용・풀기(unreeling)용・접음용・절단용・핑킹(pinking)용 기계		
7832	8451.10.00	- 드라이클리닝기	0%	E0
		- 건조기		
7833	8451.21.00	- - 1 회의 건조 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 킬로그램 이하인 것	0%	E0
7834	8451.29.00	- - 기타	0%	E0
	8451.30	- 다림질기와 프레스[퓨징프레스(fusing press)를 포함한다]		
7835	8451.30.10	- - 싱글 롤러 타입의 가정용 다리미기기	0%	E0
7836	8451.30.90	- - 기타	0%	E0
7837	8451.40.00	- 세탁기・표백기 또는 염색기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7838	8451.50.00	- 감기(reeling)용 기계·풀기(unreeling)용 기계·접음기·절단기 또는 핑킹(pinking)용 기계(직물용으로 한정한다)	0%	E0
7839	8451.80.00	- 그 밖의 기계	0%	E0
	8451.90	- 부분품		
7840	8451.90.10	- - 건조 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이 10 킬로그램 이하인 기계의 것	0%	E0
7841	8451.90.90	- - 기타	0%	E0
	84.52	**재봉기(제 8440 호의 제본용 재봉기는 제외한다), 재봉기용으로 특수 제작된 가구·밑판·덮개, 재봉기용 바늘**		
7842	8452.10.00	- 가정형 재봉기	0%	E0
		- 그 밖의 재봉기		
7843	8452.21.00	- - 자동식	0%	E0
7844	8452.29.00	- - 기타	0%	E0
7845	8452.30.00	- 재봉기용 바늘	0%	E0
	8452.90	- 재봉기용으로 특수 제작된 가구·밑판·덮개와 그 부분품, 그 밖의 재봉기의 부분품		
		- - 소호 제 8452.10.00 호의 기계류의 것		
7846	8452.90.11	- - - 암즈엔베드(arms and beds), 중심 프레임 부착여부에 상관없는 스탠드, 플라이휠, 벨트 가드, 발판이나 페달	0%	E0
7847	8452.90.12	- - - 가구·밑판 및 덮개와 그 부분품	0%	E0
7848	8452.90.19	- - - 기타	0%	E0
		- - 기타		
7849	8452.90.91	- - - 암즈엔베드(arms and beds), 중심 프레임 부착여부에 상관없는 스탠드, 플라이휠, 벨트 가드, 발판이나 페달	0%	E0
7850	8452.90.92	- - - 가구·밑판 및 덮개와 그 부분품	0%	E0
7851	8452.90.99	- - - 기타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4.53	**원피나 가죽의 유피(柔皮)준비기·유피(柔皮)기·가공기계, 원피·가죽으로 만든 신발이나 그 밖의 물품의 제조용·수선용 기계(재봉기는 제외한다)**		
	8453.10	- 원피·가죽의 유피(柔皮)준비기·유피(柔皮)기·가공기계		
7852	8453.1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0%	E0
7853	8453.1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8453.20	- 신발의 제조용이나 수선용 기계		
7854	8453.2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0%	E0
7855	8453.2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8453.80	- 그 밖의 기계		
7856	8453.8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0%	E0
7857	8453.8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7858	8453.90.00	- 부분품	0%	E0
	84.54	**전로·레이들(ladle)·잉곳(ingot)용 주형과 주조기(야금용이나 금속 주조용으로 한정한다)**		
7859	8454.10.00	- 전로	0%	E0
7860	8454.20.00	- 잉곳(ingot)용 주형과 레이들(ladle)	0%	E0
7861	8454.30.00	- 주조기	0%	E0
7862	8454.90.00	- 부분품	0%	E0
	84.55	**금속 압연기와 그 롤**		
7863	8455.10.00	- 관 압연기	0%	E0
		- 그 밖의 압연기		
7864	8455.21.00	- - 열간(熱間)이나 열·냉간(熱冷間) 겸용 압연기	0%	E0
7865	8455.22.00	- - 냉간(冷間) 압연기	0%	E0
7866	8455.30.00	- 압연기용 롤	0%	E0
7867	8455.90.00	- 그 밖의 부분품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4.56	각종 재료의 가공 공작기계[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광자빔·초음파·방전·전기화학·전자빔·이온빔·플라즈마아크(plasma arc) 방식으로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와 워터제트 절단기		
		- 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 또는 광자빔 방식으로 하는 것		
7868	8456.11.00	- - 레이저 방식으로 하는 것	0%	E0
7869	8456.12.00	- - 그 밖의 광선 또는 광자빔 방식으로 하는 것	0%	E0
7870	8456.20.00	- 초음파 방식으로 하는 것	0%	E0
7871	8456.30.00	- 방전 방식으로 하는 것	0%	E0
	8456.40	- 플라즈마아크(plasma arc) 방식으로 하는 것		
7872	8456.40.10	- - 각종 재료를 절단, 플라즈마 아크 공법으로 가공하는 공작기계로 수치제어식의 것(인쇄회로판이나 인쇄 배선판 제조용의 것으로 한정한다)	0%	E0
7873	8456.40.90	- - 기타	0%	E0
7874	8456.50.00	- 워터제트 절단기	0%	E0
	8456.90	- 기타		
7875	8456.90.20	- - 전기화학 용액 투입으로 작동하는 인쇄회로판 또는 인쇄 배선판의 물질을 제거하는 습식 프로세싱 기구	0%	E0
7876	8456.90.90	- - 기타	0%	E0
	84.57	금속 가공용 머시닝센터(machining centre)·유닛 컨스트럭션 머신(unit construction machine)(싱글스테이션)·멀티스테이션(multi-station)의 트랜스퍼머신(transfer machine)		
	8457.10	- 머시닝센터(machining centre)		
7877	8457.10.10	- - 스핀들의 출력이 4킬로와트 이하인 것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7878	8457.10.90	- - 기타	0%	E0
7879	8457.20.00	- 유닛 컨스트럭션 머신(unit construction machine)(싱글스테이션)	0%	E0
7880	8457.30.00	- 멀티스테이션(multistation)의 트랜스퍼 머신(transfer machine)	0%	E0
	84.58	**금속 절삭가공용 선반(터닝센터를 포함한다)**		
		- 수평 선반		
	8458.11	- - 수치제어식		
7881	8458.11.10	- - - 스핀들의 출력이 4 킬로와트 이하인 것	0%	E0
7882	8458.11.90	- - - 기타	0%	E0
	8458.19	- - 기타		
7883	8458.19.10	- - - 주축과 베드 간의 거리가 300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E0
7884	8458.19.90	- - - 기타	0%	E0
		- 그 밖의 선반		
7885	8458.91.00	- - 수치제어식	0%	E0
	8458.99	- - 기타		
7886	8458.99.10	- - - 주축과 베드 간의 거리가 300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E0
7887	8458.99.90	- - - 기타	0%	E0
	84.59	**금속 절삭가공용 공작기계[웨이타입(way-type) 유닛헤드머신(unit head machine)을 포함한다]로서 드릴링(drilling)·보링(boring)·밀링(milling)·나선가공·태핑(tapping)에 사용되는 것[제 8458 호의 선반(터닝센터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8459.10	- 웨이타입(way-type) 유닛헤드머신(unit head machine)		
7888	8459.1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7889	8459.1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 그 밖의 드릴링머신(drilling machine)		
7890	8459.21.00	- - 수치제어식	0%	E0
	8459.29	- - 기타		
7891	8459.29.10	- - - 전기 작동식의 것	0%	E0
7892	8459.29.20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 그 밖의 보링밀링머신(boring-milling machine)		
7893	8459.31.00	- - 수치제어식	0%	E0
	8459.39	- - 기타		
7894	8459.39.10	- - - 전기 작동식의 것	0%	E0
7895	8459.39.20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 그 밖의 보링머신(boring machine)		
7896	8459.41.00	- - 수치제어식	0%	E0
	8459.49	- - 기타		
7897	8459.49.10	- - - 전기 작동식의 것	0%	E0
7898	8459.49.20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 무릎형 밀링머신(milling machine)		
7899	8459.51.00	- - 수치제어식	0%	E0
	8459.59	- - 기타		
7900	8459.59.10	- - - 전기 작동식의 것	0%	E0
7901	8459.59.20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 그 밖의 밀링머신(milling machine)		
7902	8459.61.00	- - 수치제어식	0%	E0
	8459.69	- - 기타		
7903	8459.69.10	- - - 전기 작동식의 것	0%	E0
7904	8459.69.20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459.70	- 그 밖의 나사 절삭용 기계나 태핑머신(tapping machine)		
7905	8459.7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0%	E0
7906	8459.7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84.60	디버링(deburring)·샤프닝(sharpening)·그라인딩(grinding)·호닝(honing)·래핑(lapping)·폴리싱(polishing)이나 그 밖의 완성가공용 공작기계로서 연마석·연마재·광택재로 금속이나 서멧(cermet)을 가공하는 것(제8461호의 기어절삭기·기어연삭기·기어완성가공기는 제외한다)		
		- 평면연삭기		
7907	8460.12.00	- - 수치제어식	0%	E0
7908	8460.19.00	- - 기타	0%	E0
		- 그 밖의 연삭기		
7909	8460.22.00	- - 무심연삭기(수치제어식으로 한정한다)	0%	E0
7910	8460.23.00	- - 그 밖의 원통연삭기(수치제어식으로 한정한다)	0%	E0
7911	8460.24.00	- - 기타(수치제어식으로 한정한다)	0%	E0
	8460.29	- - 기타		
7912	8460.29.10	- - - 전기 작동식의 것	0%	E0
7913	8460.29.20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 샤프닝머신(sharpening machine)(공구나 커터를 연삭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460.31	- - 수치제어식		
7914	8460.31.10	- - - 가공 공작기계로 수치제어식의 것[카바이드(carbide) 드릴 날(drilling bits)을 샤프닝하기 위한, 생크 지름이 3.175밀리미터 이하인, 고정된 콜릿(collet)과 함께 제공되고 출력이 0.74킬로와트를 초과하지 않는 것]	0%	E0
7915	8460.31.90	- - - 기타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460.39	- - 기타		
7916	8460.39.10	- - - 전기 작동식의 것	0%	E0
7917	8460.39.20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8460.40	- 호닝머신(honing machine)이나 래핑머신(lapping machine)		
7918	8460.4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0%	E0
7919	8460.4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8460.90	- 기타		
7920	8460.9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0%	E0
7921	8460.9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84.61	플레이닝(planing)용·쉐이핑(shaping)용·슬로팅(slotting)용·브로칭(broaching)용·기어절삭용·기어연삭용·기어완성가공용·톱질용·절단용 공작기계와 금속이나 서멧(cermet)을 절삭하는 방식으로 가공하는 그 밖의 공작기계(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461.20	- 쉐이핑머신(shaping machine)이나 슬로팅머신(slotting machine)		
7922	8461.2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0%	E0
7923	8461.2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8461.30	- 브로칭머신(broaching machine)		
7924	8461.3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0%	E0
7925	8461.3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8461.40	- 기어절삭기·기어연삭기·기어완성가공기		
7926	8461.4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0%	E0
7927	8461.4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8461.50	- 톱기계나 절단기		
7928	8461.5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0%	E0
7929	8461.5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461.90	- 기타		
		- - 전기 작동식의 것		
7930	8461.90.11	- - - 평삭기	0%	E0
7931	8461.90.19	- - - 기타	0%	E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7932	8461.90.91	- - - 평삭기	0%	E0
7933	8461.90.99	- - - 기타	0%	E0
	84.62	단조(鍛造)용・해머링(hammering)용・다이스탬핑(die-stamping)용 금속가공 공작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 굽힘용・접음용・교정용・펼침용・전단용・펀칭용・낫칭(notching)용 금속가공 공작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와 그 외의 가공방법에 의한 금속이나 금속탄화물 가공용 프레스		
	8462.10	- 단조기(鍛造機)・다이스탬핑기(die-stamping machine)(프레스를 포함한다)와 해머		
7934	8462.1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0%	E0
7935	8462.1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 굽힘기・접음기・교정기 또는 펼침기(프레스를 포함한다)		
7936	8462.21.00	- - 수치제어식	0%	E0
	8462.29	- - 기타		
7937	8462.29.10	- - - 전기 작동식의 것	0%	E0
7938	8462.29.20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 전단기(프레스를 포함하며, 펀칭기와 전단기가 결합된 것은 제외한다)		
7939	8462.31.00	- - 수치제어식	0%	E0
	8462.39	- - 기타		
7940	8462.39.10	- - - 전기 작동식의 것	0%	E0
7941	8462.39.20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 펀칭기나 낫칭기(notching machine)(프레스를 포함하며, 펀칭기와 전단기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7942	8462.41.00	- - 수치제어식	0%	E0
	8462.49	- - 기타		
7943	8462.49.10	- - - 전기 작동식의 것	0%	E0
7944	8462.49.20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 기타		
7945	8462.91.00	- - 액압 프레스	0%	E0
	8462.99	- - 기타		
7946	8462.99.10	- - - 주석 판의 박스, 캔과 이와 유사한 용기 제조용 기계(전기 작동식의 것)	0%	E0
7947	8462.99.20	- - - 주석 판의 박스, 캔과 이와 유사한 용기 제조용 기계(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7948	8462.99.50	- - - 기타(전기 작동식의 것)	0%	E0
7949	8462.99.60	- - - 기타(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84.63	**그 밖의 금속이나 서멧(cermet)의 가공용 공작기계(재료를 절삭하지 않는 방식으로 한정한다)**		
	8463.10	- 드로우벤치(draw-bench)[봉·관·프로파일(profile)·선이나 이와 유사한 것을 인발(引拔)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7950	8463.1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0%	E0
7951	8463.1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8463.20	- 나사 전조기		
7952	8463.2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0%	E0
7953	8463.2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8463.30	- 선 가공기		
7954	8463.3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0%	E0
7955	8463.3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463.90	- 기타		
7956	8463.9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0%	E0
7957	8463.9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84.64	**돌·도자기·콘크리트·석면시멘트나 이와 유사한 광물성 물질의 가공용 공작기계와 유리의 냉간(冷間) 가공기계**		
	8464.10	- 톱기계		
7958	8464.1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0%	E0
7959	8464.1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8464.20	- 연마기나 광택기		
7960	8464.2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0%	E0
7961	8464.2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8464.90	- 기타		
7962	8464.9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0%	E0
7963	8464.9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84.65	**목재·코르크·뼈·경질 고무·경질 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경질물의 가공용 공작기계(네일용·스테이플용·접착용과 그 밖의 조립용 기계를 포함한다)**		
7964	8465.10.00	-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는 기계(공구의 교환없이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	E0
7965	8465.20.00	- 머시닝센터(machining centre)	0%	E0
		- 기타		
	8465.91	- - 톱 기계		
7966	8465.91.10	- - - 인쇄회로판 또는 인쇄배선판 또는 인쇄회로판 물질 또는 인쇄배선판 물질을 스코어링(scoring)하는 용도의 것(전기 구동식의 것)	0%	E0
7967	8465.91.20	- - - 기타(전기 작동식의 것)	0%	E0
7968	8465.91.30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465.92	- - 평삭기·밀링머신(milling machine)·몰딩머신(moulding machine)(절단 방식으로 한정한다)		
7969	8465.92.10	- - - 인쇄회로판 또는 인쇄배선판 또는 인쇄 회로판 물질 또는 인쇄배선판 물질을 라우팅(routing)하는 용도로, 생크지름이 3.175 밀리미터 이하인 라우터 비트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인쇄회로판 또는 인쇄배선판 또는 인쇄회로판 물질 또는 인쇄배선판 물질을 스코어링(scoring)하는 용도의 것	0%	E0
7970	8465.92.20	- - - 기타(전기 작동식의 것)	0%	E0
7971	8465.92.30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8465.93	- - 연삭기·샌딩머신(sanding machine)·광택기		
7972	8465.93.10	- - - 전기 작동식의 것	0%	E0
7973	8465.93.20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8465.94	- - 굽힘기나 조립기		
7974	8465.94.10	- - - 전기 작동식의 것	0%	E0
7975	8465.94.20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8465.95	- - 드릴링머신(drilling machine)이나 모티싱머신(morticing machine)		
7976	8465.95.10	- - - 인쇄회로판이나 인쇄배선판 제조용 드릴링 머신(drilling machine)(스핀들 속도가 50,000 알피엠을 초과하고 생크지름이 3.175 밀리미터 이하인 단말수신 드릴 비트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	E0
7977	8465.95.30	- - - 기타(전기 작동식의 것)	0%	E0
7978	8465.95.40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8465.96	- - 스플리팅(splitting)기·슬라이싱(slicing)기·박피기		
7979	8465.96.10	- - - 전기 작동식의 것	0%	E0
7980	8465.96.20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465.99	- - 기타		
7981	8465.99.30	- - - 선반(전기 작동식의 것)	0%	E0
7982	8465.99.40	- - - 선반(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7983	8465.99.50	- - - 제조중 인쇄회로판 또는 인쇄배선판의 표면을 디버링(deburring)하는 기기, 인쇄회로판이나 인쇄배선판 또는 인쇄회로판 물질이나 인쇄배선판 물질을 스코어링 하는 기기, 인쇄회로판 또는 인쇄배선판의 제조용 적층 압축기	0%	E0
7984	8465.99.60	- - - 기타(전기 작동식의 것)	0%	E0
7985	8465.99.90	- - - 기타	0%	E0
	84.66	**제 8456 호부터 제 8465 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 [가공물홀더・툴홀더(tool holder)・자동개폐식 다이헤드(diehead)・분할대와 그 밖의 기계용 특수 부착물을 포함한다]과 수지식 공구에 사용되는 각종 툴홀더(tool holder)**		
	8466.10	- 툴홀더(tool holder)와 자동개폐식 다이헤드(diehead)		
7986	8466.10.10	- - 소호 제 8456.40.10 호・제 8456.90.20 호・제 8460.31.10 호・제 8465.91.10 호・제 8465.92.10 호・제 8465.95.10 호나 제 8465.99.50 호의 기계용	0%	E0
7987	8466.10.90	- - 기타	0%	E0
	8466.20	- 가공용 홀더		
7988	8466.20.10	- - 소호 제 8456.40.10 호・제 8456.90.20 호・제 8460.31.10 호・제 8465.91.10 호・제 8465.92.10 호・제 8465.95.10 호나 제 8465.99.50 호의 기계용	0%	E0
7989	8466.20.90	- - 기타	0%	E0
	8466.30	- 분할대와 그 밖의 기계용 특수 부착물		
7990	8466.30.10	- - 소호 제 8456.40.10 호・제 8456.90.20 호・제 8460.31.10 호・제 8465.91.10 호・제 8465.92.10 호・제 8465.95.10 호나 제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465.99.50 호의 기계용		
7991	8466.30.90	- - 기타	0%	E0
		- 기타		
7992	8466.91.00	- - 제 8464 호의 기계용	0%	E0
	8466.92	- - 제 8465 호의 기계용		
7993	8466.92.10	- - - 소호 제 8465.91.10 호, 제 8465.92.10 호, 제 8465.95.10 호나 제 8465.99.50 호의 기계용	0%	E0
7994	8466.92.90	- - - 기타	0%	E0
	8466.93	- - 제 8456 호부터 제 8461 호까지의 기계용		
7995	8466.93.20	- - - 소호 제 8456.40.10 호・제 8456.90.20 호나 제 8460.31.10 호의 기계용	0%	E0
7996	8466.93.90	- - - 기타	0%	E0
7997	8466.94.00	- - 제 8462 호나 제 8463 호의 기계용	0%	E0
	84.67	**수지식 공구(압축공기식, 유압식, 전동기를 갖추거나 비전기식 모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 압축공기식의 것		
7998	8467.11.00	- - 회전방식의 것(회전 진동자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0%	E0
7999	8467.19.00	- - 기타	0%	E0
		- 전동기를 갖춘 것		
8000	8467.21.00	- - 각종 드릴	0%	E0
8001	8467.22.00	- - 톱	0%	E0
8002	8467.29.00	- - 기타	0%	E0
		- 그 밖의 공구		
8003	8467.81.00	- - 체인톱	0%	E0
8004	8467.89.00	- - 기타	0%	E0
		- 부분품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467.91	- - 체인톱의 것		
8005	8467.91.10	- - - 전기 기계식의 것	0%	E0
8006	8467.91.90	- - - 기타	0%	E0
8007	8467.92.00	- - 압축공기식 공구의 것	0%	E0
	8467.99	- - 기타		
8008	8467.99.10	- - - 소호 제 8467.21.00 호, 제 8467.22.00 호나 제 8467.29.00 호의 물품의 것	0%	E0
8009	8467.99.90	- - - 기타	0%	E0
	84.68	**납땜용·땜질용이나 용접용 기기(절단이 가능한지에 상관없으며 제 8515 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표면 열처리용 기기(가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010	8468.10.00	- 수지식 취관(吹管)	0%	E0
	8468.20	- 가스를 사용하는 그 밖의 기기		
8011	8468.20.10	- - 수동식(수지식이 아닌 것) 가스 용접기나 금속용 땜질 기구	0%	E0
8012	8468.20.90	- - 기타	0%	E0
8013	8468.80.00	- 그 밖의 기기	0%	E0
	8468.90	- 부분품		
8014	8468.90.20	- - 소호 제 8468.20.10 호의 물품의 것	0%	E0
8015	8468.90.90	- - 기타	0%	E0
	84.70	**계산기와 계산 기능을 갖춘 포켓사이즈형 전자수첩·회계기·우편요금계기·표권발행기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계(계산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금전등록기**		
8016	8470.10.00	- 전자계산기(외부의 전원 공급 없이 작동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와 계산 기능을 갖춘 포켓사이즈형 전자수첩	0%	E0
		- 그 밖의 전자계산기		
8017	8470.21.00	- - 인쇄 장치를 갖추고 있는 것	0%	E0
8018	8470.29.00	- - 기타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019	8470.30.00	- 그 밖의 계산기	0%	E0
8020	8470.50.00	- 금전 등록기	0%	E0
	8470.90	- 기타		
8021	8470.90.10	- - 우편요금계기	0%	E0
8022	8470.90.20	- - 회계기	0%	E0
8023	8470.90.90	- - 기타	0%	E0
	84.71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이나 광학식 판독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471.30	-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 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8024	8471.30.20	- - 랩탑(노트북 및 서브노트북을 포함한다)	0%	E0
8025	8471.30.90	- - 기타	0%	E0
		- 그 밖의 자동자료처리기계		
	8471.41	- - 적어도 동일 하우징 속에 중앙처리장치와 입출력장치를 내장한 것(이들이 상호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8026	8471.41.10	- - - 소호 제 8471.30 호의 휴대용 컴퓨터를 제외한 개인용 컴퓨터	0%	E0
8027	8471.41.90	- - - 기타	0%	E0
	8471.49	- - 기타(시스템 형태로 제시된 것으로 한정한다)		
8028	8471.49.10	- - - 소호 제 8471.30 호의 휴대용 컴퓨터를 제외한 개인용 컴퓨터	0%	E0
8029	8471.49.90	- - - 기타	0%	E0
	8471.50	- 처리장치(소호 제 8471.41 호나 제 8471.49 호 외의 것으로서 기억장치·입력장치·출력장치 중 한 가지나 두 가지 장치를 동일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하우징 속에 내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8030	8471.50.10	- - 개인용 컴퓨터용 처리장치(휴대용을 포함한다)	0%	E0
8031	8471.50.90	- - 기타	0%	E0
	8471.60	- 입력장치나 출력장치(동일 하우징 속에 기억장치를 내장하였는지에 상관없다)		
8032	8471.60.30	- - 컴퓨터 키보드	0%	E0
8033	8471.60.40	- - 마우스· 라이트 펜·조이스틱·트랙볼과 터치 센서티브 스크린을 포함하는 X-Y 좌표 입력 기구	0%	E0
8034	8471.60.90	- - 기타	0%	E0
	8471.70	- 기억장치		
8035	8471.70.10	- -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	0%	E0
8036	8471.70.20	- -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0%	E0
8037	8471.70.30	- - 테이프 드라이브	0%	E0
8038	8471.70.40	- - 씨디-롬 드라이브· 디브이디 드라이브와 씨디-알 드라이브를 포함하는 광디스크 드라이브	0%	E0
8039	8471.70.50	- - 독점적 포맷 저장 장치(자동 데이터 처리 기계용 매체를 포함하고 제거가능한 매체 여부와 자석·광학 또는 그 밖의 기술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0%	E0
		- - 기타		
8040	8471.70.91	- - - 자동백업 시스템	0%	E0
8041	8471.70.99	- - - 기타	0%	E0
	8471.80	- 그 밖의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 기기		
8042	8471.80.10	- - 제어용과 접속용의 기기	0%	E0
8043	8471.80.70	- - 사운드 카드 또는 비디오 카드	0%	E0
8044	8471.80.90	- - 기타	0%	E0
	8471.90	- 기타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045	8471.90.10	- - 바 코드 리더	0%	E0
8046	8471.90.30	- - 전자 지문 인식 시스템	0%	E0
8047	8471.90.40	- - 그 밖의 광학식 문자 판독 장치	0%	E0
8048	8471.90.90	- - 기타	0%	E0
	84.72	**그 밖의 사무용 기계[예: 헥토그래프(hectograph)·스텐실(stencil) 등사기·주소인쇄기·현금 자동지불기·주화분류기·주화계수기나 주화포장기·연필깎이·천공기·지철기(stapling machine)]**		
	8472.10	- 등사기		
8049	8472.1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0%	E0
8050	8472.1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8472.30	- 우편물의 분류기·접음기, 우편물을 봉투나 밴드에 삽입하는 기계, 우편물의 개봉기·봉함기·실링기, 우표의 첨부기나 소인기		
8051	8472.3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0%	E0
8052	8472.3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8472.90	- 기타		
8053	8472.90.10	- - 현금 자동 처리기	0%	E0
		- - 타자기(제 8443 호의 프린터기는 제외한다)		
8054	8472.90.41	- - - 자동식	0%	E0
8055	8472.90.49	- - - 기타	0%	E0
8056	8472.90.50	- - 워드프로세싱 머신	0%	E0
8057	8472.90.60	- - 기타(전기 작동식의 것)	0%	E0
8058	8472.90.90	- - 기타(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84.73	**제 8470 호부터 제 8472 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커버·휴대용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		
		- 제 8470 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부속품		
8059	8473.21.00	- - 소호 제 8470.10.00 호・제 8470.21.00 호 또는 제 8470.29.00 호에 해당하는 전자 계산기의 것	0%	E0
8060	8473.29.00	- - 기타	0%	E0
	8473.30	- 제 8471 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8061	8473.30.10	- - 조립된 인쇄회로판	0%	E0
8062	8473.30.90	- - 기타	0%	E0
	8473.40	- 제 8472 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8063	8473.40.10	- - 전기 작동식 기계용의 것	0%	E0
8064	8473.4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기계용의 것	0%	E0
	8473.50	- 제 8470 호부터 제 8472 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 중에서 두 개 이상의 기계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		
8065	8473.50.10	- - 제 8471 호의 기계와 함께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0%	E0
8066	8473.50.90	- - 기타	0%	E0
	84.74	**선별기・기계식 체・분리기・세척기・파쇄기・분쇄기・혼합기・반죽기(고체 모양・분말 모양・페이스트 모양인 토양・돌・광석이나 그 밖의 광물성 물질의 처리용으로 한정한다), 조괴기(造塊機)・형입기・성형기(成形機)(고체의 광물성 연료・세라믹페이스트・굳지 않은 시멘트・석고・가루 모양이나 페이스트 모양인 그 밖의 광물성 생산품의 처리용으로 한정한다), 주물용 사형(砂型)의 성형기(成形機)**		
	8474.10	- 선별기・기계식 체・분리기・세척기		
8067	8474.1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0%	E0
8068	8474.1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8474.20	- 파쇄기나 분쇄기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 - 전기 작동식의 것		
8069	8474.20.11	- - - 석재용	0%	E0
8070	8474.20.19	- - - 기타	0%	E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8071	8474.20.21	- - - 석재용	0%	E0
8072	8474.20.29	- - - 기타	0%	E0
		- 혼합기나 반죽기		
	8474.31	- - 콘크리트 혼합기나 모르타르 혼합기		
8073	8474.31.10	- - - 전기 작동식의 것	0%	E0
8074	8474.31.20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8474.32	- - 역청질과 광물성 재료의 혼합기		
		- - - 전기 작동식의 것		
8075	8474.32.11	- - - - 출력이 시간당 80 톤 이하인 것	0%	E0
8076	8474.32.19	- - - - 기타	0%	E0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8077	8474.32.21	- - - - 출력이 시간당 80 톤 이하인 것	0%	E0
8078	8474.32.29	- - - - 기타	0%	E0
	8474.39	- - 기타		
8079	8474.39.10	- - - 전기 작동식의 것	0%	E0
8080	8474.39.20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8474.80	- 그 밖의 기계		
8081	8474.8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0%	E0
8082	8474.8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8474.90	- 부분품		
8083	8474.90.10	- - 전기 작동식의 기계의 것	0%	E0
8084	8474.9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기계의 것	0%	E0
	84.75	전기램프나 전자램프·튜브·밸브·플래시 벌브(flashbulb)(외피를 유리로 만든 것으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로 한정한다)의 조립기계와 유리나 유리제품의 제조용이나 열간(熱間)가공용 기계		
	8475.10	- 전기램프나 전자램프·튜브·밸브·플래시벌브(flashbulb)(외피를 유리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의 조립기계		
8085	8475.1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0%	E0
8086	8475.1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 유리나 유리제품의 제조용이나 열간(熱間)가공용 기계		
8087	8475.21.00	- - 광섬유와 광섬유 예비성형품 제조용 기계	0%	E0
8088	8475.29.00	- - 기타	0%	E0
	8475.90	- 부분품		
8089	8475.90.10	- - 전기 작동식의 기계의 것	0%	E0
8090	8475.9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기계의 것	0%	E0
	84.76	**물품의 자동판매기(예: 우표·담배·식품·음료의 자동판매기)와 화폐교환기**		
		- 음료 자동판매기		
8091	8476.21.00	- - 가열장치나 냉장장치를 갖춘 것	0%	E0
8092	8476.29.00	- - 기타	0%	E0
		- 그 밖의 기계		
8093	8476.81.00	- - 가열장치나 냉장장치를 갖춘 것	0%	E0
8094	8476.89.00	- - 기타	0%	E0
8095	8476.90.00	- 부분품	0%	E0
	84.77	**고무나 플라스틱을 가공하거나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477.10	- 사출 성형기		
8096	8477.10.10	- - 고무 성형용	0%	E0
		- - 플라스틱 성형용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097	8477.10.31	- - - 폴리(염화 비닐)사출 성형기	0%	E0
8098	8477.10.39	- - - 기타	0%	E0
	8477.20	- 압출기		
8099	8477.20.10	- - 고무 압출용	0%	E0
8100	8477.20.20	- - 플라스틱 압출용	0%	E0
8101	8477.30.00	- 취입 성형기	0%	E0
	8477.40	- 진공성형기와 그 밖의 열성형기		
8102	8477.40.10	- - 고무 성형용	0%	E0
8103	8477.40.20	- - 플라스틱 성형용	0%	E0
		- 그 밖의 성형기		
8104	8477.51.00	- - 공기를 넣는 타이어 성형기나 재생기 또는 그 밖의 이너튜브(inner tube) 성형기	0%	E0
	8477.59	- - 기타		
8105	8477.59.10	- - - 고무용	0%	E0
8106	8477.59.20	- - - 플라스틱용	0%	E0
	8477.80	- 그 밖의 기계		
8107	8477.80.10	- - 고무를 가공하거나 고무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전기 작동식의 것)	0%	E0
8108	8477.80.20	- - 고무를 가공하거나 고무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 - 플라스틱을 가공하거나 플라스틱으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전기 작동식의 것)		
8109	8477.80.31	- - - 인쇄 회로판이나 인쇄 배선판의 제조용 라미네이션 압축기	0%	E0
8110	8477.80.39	- - - 기타	0%	E0
8111	8477.80.40	- - 플라스틱을 가공하거나 플라스틱으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8477.90	- 부분품		
8112	8477.90.10	- - 고무를 가공하거나 고무로 제품을 제조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하는 기계(전기 작동식의 것)		
8113	8477.90.20	- - 고무를 가공하거나 고무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 - 플라스틱을 가공하거나 플라스틱으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전기 작동식의 것)		
8114	8477.90.32	- - - 인쇄회로판이나 인쇄배선판의 제조용 라미네이션 압축기의 부분품	0%	E0
8115	8477.90.39	- - - 기타	0%	E0
8116	8477.90.40	- - 플라스틱을 가공하거나 플라스틱으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84.78	**담배의 조제기나 제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478.10	- 기계류		
8117	8478.1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0%	E0
8118	8478.1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8478.90	- 부분품		
8119	8478.90.10	- - 전기 작동식의 기계의 것	0%	E0
8120	8478.9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기계의 것	0%	E0
	84.79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8479.10	- 토목공사·건축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기계류		
8121	8479.1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0%	E0
8122	8479.1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8479.20	- 동물성이나 비휘발성인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의 추출용·조제용 기계류		
8123	8479.2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0%	E0
8124	8479.2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8479.30	-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나 건축용 섬유판(목재나 그 밖의 목질 물질로 제조된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것으로 한정한다)의 제조용 프레스, 목재나 코르크 처리용 그 밖의 기계		
8125	8479.3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0%	E0
8126	8479.3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8479.40	- 로프나 케이블 제조기		
8127	8479.4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0%	E0
8128	8479.4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8129	8479.50.00	- 산업용 로봇(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E0
8130	8479.60.00	- 증발식 에어쿨러	0%	E0
		- 탑승교		
8131	8479.71.00	- - 공항에서 사용되는 것	0%	E0
8132	8479.79.00	- - 기타	0%	E0
		- 그 밖의 기기		
	8479.81	- - 금속 처리용(전선권선기를 포함한다)		
8133	8479.81.10	- - - 전기 작동식의 것	0%	E0
8134	8479.81.20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8479.82	- - 혼합기・반죽기・파쇄기・분쇄기・기계식 체・시프팅기(sifting machine)・균질기・유화기・교반기		
8135	8479.82.10	- - - 전기 작동식의 것	0%	E0
8136	8479.82.20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8479.89	- - 기타		
8137	8479.89.20	- - - 플라스틱 케이스 또는 하우징 안의 중앙처리장치(CPU) 도터보드(daughter boards)를 조립하는 기계, 인쇄회로판 또는 인쇄배선판의 제조에 사용되는 화학적 솔루션의 재생용 기기, 인쇄회로판 또는 인쇄배선판의 제조중의 그 표면을 기계적으로 세정하는 장비, 구성품 또는 인쇄회로판 또는 인쇄배선판 또는 그 밖의 물질의 접촉요소(contact elements)의 배치 또는 제거용 자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동화 기계, 인쇄회로판 또는 인쇄배선판 또는 인쇄 회로 조립품의 제조 과정 중 정렬(alignment)용 등록 장비		
		- - - 기타(전기 작동식의 것)		
8138	8479.89.31	- - - - 자동판매기	0%	E0
8139	8479.89.39	- - - - 기타	0%	E0
8140	8479.89.40	- - - 기타(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8479.90	- 부분품		
8141	8479.90.20	- - 소호 제8479.89.20호의 물품의 것	0%	E0
8142	8479.90.30	- - 그 밖의 전기 작동식 기계의 것	0%	E0
8143	8479.90.4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기계의 것	0%	E0
	84.80	**금속 주조용 주형틀, 주형 베이스, 주형 제조용 모형, 금속[잉곳(ingot)용은 제외한다]·금속탄화물·유리·광물성 물질·고무·플라스틱 성형용 주형**		
8144	8480.10.00	- 금속 주조용 주형틀	0%	E0
8145	8480.20.00	- 주형 베이스	0%	E0
	8480.30	- 주형 제조용 모형		
8146	8480.30.10	- - 구리의 것	0%	E0
8147	8480.30.90	- - 기타	0%	E0
		- 금속이나 금속탄화물 성형용 주형		
8148	8480.41.00	- - 사출식이나 압축식	0%	E0
8149	8480.49.00	- - 기타	0%	E0
8150	8480.50.00	- 유리 성형용 주형	0%	E0
8151	8480.60.00	- 광물성 물질 성형용 주형	0%	E0
		- 고무나 플라스틱 성형용 주형		
	8480.71	- - 사출식이나 압축식		
8152	8480.71.10	- - - 신발 바닥용 몰드	0%	E0
8153	8480.71.90	- - - 기타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480.79	- - 기타		
8154	8480.79.10	- - - 신발 바닥용 몰드	0%	E0
8155	8480.79.90	- - - 기타	0%	E0
	84.81	**파이프·보일러 동체·탱크·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		
	8481.10	- 감압밸브		
		- - 철강으로 만든 것		
8156	8481.10.11	- - - 내부 지름이 5 센티미터를 초과하고 40 센티미터 이하인 주입구나 배출구가 있는 수동식의 수문 또는 게이트 밸브	0%	E0
8157	8481.10.19	- - - 기타	0%	E0
		- - 구리나 구리합금의 것		
8158	8481.10.21	- - - 내부 지름이 2.5 센티미터 이하인 것	0%	E0
8159	8481.10.22	- - - 내부 지름이 2.5 센티미터 초과하는 것	0%	E0
		- - 기타		
8160	8481.10.91	- - - 내부 지름이 1 센티미터 이상 2.5 센티미터 이하인 플라스틱의 것	0%	E0
8161	8481.10.99	- - - 기타	0%	E0
	8481.20	- 유압이나 공기압 전송용 밸브		
8162	8481.20.10	- - 내부 지름이 5 센티미터를 초과하고 40 센티미터 이하인 주입구나 배출구가 있는 수동식의 수문 또는 게이트 밸브	0%	E0
8163	8481.20.20	- - 구리 또는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으로 내부 지름이 2.5 센티미터 이하인 것 또는 플라스틱으로 내부 지름이 1 센티미터 이상 2.5 센티미터 이하인 것	0%	E0
8164	8481.20.90	- - 기타	0%	E0
	8481.30	- 체크(논리턴)밸브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165	8481.30.10	- - 스윙 체크 밸브, 주철의 것으로, 주입구의 내부 지름이 4 센티미터 이상 60 센티미터 이하인 것	0%	E0
8166	8481.30.20	- - 구리나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으로 내부 지름이 2.5 센티미터 이하인 것	0%	E0
8167	8481.30.40	- - 내부 지름이 1 센티미터 이상 2.5 센티미터 이하인 플라스틱의 것	0%	E0
8168	8481.30.90	- - 기타	0%	E0
	8481.40	- 안전밸브		
8169	8481.40.10	- - 구리나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으로 내부 지름이 2.5 센티미터 이하인 것	0%	E0
8170	8481.40.30	- - 내부 지름이 1 센티미터 이상 2.5 센티미터 이하인 플라스틱의 것	0%	E0
8171	8481.40.90	- - 기타	0%	E0
	8481.80	- 그 밖의 기기		
		- - 이너튜브를 위한 밸브		
8172	8481.80.11	- - - 구리나 구리합금의 것	0%	E0
8173	8481.80.12	- - -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0%	E0
		- - 튜브 없는 타이어를 위한 밸브		
8174	8481.80.13	- - - 구리나 구리합금의 것	0%	E0
8175	8481.80.14	- - -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0%	E0
		- - 구리 또는 구리합금으로 만든 액화 석유가스(LPG) 실린더 밸브		
8176	8481.80.21	- - - 주입구나 배출구 내부 지름이 2.5 센티미터 이하인 것	0%	E0
8177	8481.80.22	- - - 주입구나 배출구 내부 지름이 2.5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0%	E0
8178	8481.80.30	- - 코크와 밸브(가스 스토브나 레인지용 압전식 점화기 장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0%	E0
8179	8481.80.40	- - 탄산이 든 액체 병의 밸브, 가스 작동식의 맥주 디스펜서의 밸브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180	8481.80.50	- - 혼합 탭과 밸브	0%	E0
		- - 송수관로 밸브		
		- - - 내부 지름이 4 센티미터 이상인 주철제의 게이트 밸브, 내부 지름이 8 센티미터 이상인 주철제의 버터플라이 밸브		
8181	8481.80.61	- - - - 내부 지름이 5 센티미터 초과 40 센티미터 이하인 수동으로 작동하는 게이트 벨브	0%	E0
8182	8481.80.62	- - - - 기타	0%	E0
8183	8481.80.63	- - - 기타	0%	E0
		- - 니플형 급수기		
8184	8481.80.64	- - - 플라스틱의 것으로 내부 지름이 1 센티미터 이상 2.5 센티미터 이하의 것	0%	E0
8185	8481.80.65	- - - 기타	0%	E0
		- - 니플 조인트 밸브		
8186	8481.80.66	- - - 플라스틱의 것으로 내부 지름이 1 센티미터 이상 2.5 센티미터 이하의 것	0%	E0
8187	8481.80.67	- - - 기타	0%	E0
		- - 기타		
		- - - 볼밸브		
8188	8481.80.71	- - - - 플라스틱의 것으로 내부 지름이 1 센티미터 이상 2.5 센티미터 이하의 것	0%	E0
8189	8481.80.72	- - - - 기타	0%	E0
		- - - 철강으로 만든 수동식의 게이트 밸브		
8190	8481.80.73	- - - - 주입구와 배출구 내부 지름이 5 센티미터 초과 40 센티미터 이하인 것	0%	E0
8191	8481.80.74	- - - - 주입구와 배출구 내부 지름이 40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0%	E0
8192	8481.80.77	- - - - 주입구와 배출구 내부 지름이 5 센티미터 이하의 것	0%	E0
		- - - 매니폴드 밸브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193	8481.80.78	- - - - 플라스틱의 것으로 내부 지름이 1 센티미터 이상 2.5 센티미터 이하의 것	0%	E0
8194	8481.80.79	- - - - 기타	0%	E0
		- - - 기압식으로 제어된 밸브		
8195	8481.80.81	- - - - 플라스틱의 것으로 내부 지름이 1 센티미터 이상 2.5 센티미터 이하의 것	0%	E0
8196	8481.80.82	- - - - 기타	0%	E0
		- - - 플라스틱의 그 밖의 밸브		
8197	8481.80.85	- - - - 주입구와 배출구 내부 지름이 1 센티미터 이상의 것	0%	E0
		- - - - 기타		
8198	8481.80.87	- - - - - 제 8702 호·제 8703 호나 제 8704 호의 차량용 연료 공급 차단 밸브	0%	E0
8199	8481.80.88	- - - - - 기타	0%	E0
8200	8481.80.89	- - - 기타(수동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중량이 3 킬로그램 미만이며 표면처리가 된 것 또는 스테인리스강 또는 니켈로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한다)	0%	E0
		- - - 기타		
8201	8481.80.91	- - - - 구리나 구리합금의 수도꼭지로 내부 지름이 2.5 센티미터 이하인 것	0%	E0
		- - - - 기타		
8202	8481.80.92	- - - - - 제 8702 호·제 8703 호나 제 8704 호의 차량용 연료 공급 차단 밸브	0%	E0
8203	8481.80.99	- - - - - 기타	0%	E0
	8481.90	- 부분품		
8204	8481.90.10	- - 수문이나 게이트밸브용 하우징으로 흡입구나 배출구의 내부 지름이 50 밀리미터 초과 400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E0
		- - 탭, 코크, 밸브(이너 튜브 밸브와 튜브 없는 타이어를 위한 밸브는 제외한다) 및 이와 유사한 장치용(내부 지름이 25 밀리미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8205	8481.90.21	- - - 수도꼭지용 몸체	0%	E0
8206	8481.90.22	- - - 액화 석유가스(LPG) 실린더 밸브용 몸체	0%	E0
8207	8481.90.23	- - - 그 밖의 몸체	0%	E0
8208	8481.90.29	- - - 기타	0%	E0
		- - 이너 튜브 또는 튜브 없는 타이어 밸브의 밸브 몸체 또는 밸브 스템		
8209	8481.90.31	- - - 구리나 구리합금의 것	0%	E0
8210	8481.90.39	- - - 기타	0%	E0
		- - 이너 튜브 또는 튜브 없는 타이어 밸브의 밸브 코어		
8211	8481.90.41	- - - 구리나 구리합금의 것	0%	E0
8212	8481.90.49	- - - 기타	0%	E0
8213	8481.90.90	- - 기타	0%	E0
	84.82	볼베어링(ball bearing)이나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8214	8482.10.00	- 볼베어링(ball bearing)	5%	E0
8215	8482.20.00	- 원추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콘과 결합된 원추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을 포함한다]	0%	E0
8216	8482.30.00	- 구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0%	E0
8217	8482.40.00	- 니들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0%	E0
8218	8482.50.00	- 그 밖의 원통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0%	E0
8219	8482.80.00	- 그 밖의 베어링[볼베어링(ball bearing)과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이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0%	E0
		- 부분품		
8220	8482.91.00	- - 볼·니들 및 롤러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221	8482.99.00	- - 기타	0%	E0
	84.83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 볼이나 롤러스크루(roller screw), 기어박스(gear box),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를 포함한다], 플라이휠(flywheel)과 풀리(pulley)[풀리블록(pulley block)을 포함한다], 클러치(clutch)와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유니버설조인트(universal joint)를 포함한다]		
	8483.10	-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8222	8483.10.10	- - 제 8429 호나 제 8430 호의 기계류용	0%	E0
		- - 제 87 류의 차량의 엔진을 위한 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		
8223	8483.10.24	- - - 제 8711 호의 차량용	0%	E0
		- - - 기타		
8224	8483.10.25	- - - - 차량용으로 실린더 용량이 2,000 시시 이하인 것	0%	E0
8225	8483.10.26	- - - - 차량용으로 실린더 용량이 2,000 시시를 초과하고 3,000 시시 이하인 것	0%	E0
8226	8483.10.27	- - - - 차량용으로 실린더 용량이 3,0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0%	E0
		- - 선박추진용 엔진용		
8227	8483.10.31	- - - 출력이 22.38 킬로와트 이하인 것	0%	E0
8228	8483.10.39	- - - 기타	0%	E0
8229	8483.10.90	- - 기타	0%	E0
	8483.20	-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볼베어링(ball bearing)이나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230	8483.20.20	- - 제 8429 호나 제 8430 호의 기계류용	0%	E0
8231	8483.20.30	- - 제 87 류 차량의 엔진용	0%	E0
8232	8483.20.90	- - 기타	0%	E0
	8483.30	-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볼베어링(ball bearing)이나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8233	8483.30.30	- - 제 87 류 차량의 엔진용	0%	E0
8234	8483.30.90	- - 기타	0%	E0
	8483.40	-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날이 붙은 휠·체인스프로켓(chain sprocket)과 분리되어 제시된 그 밖의 전동(transmission)용 엘리먼트는 제외한다], 볼이나 롤러스크루(roller screw), 기어박스와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를 포함한다]		
8235	8483.40.20	- - 선박용	0%	E0
8236	8483.40.30	- - 제 8429 호나 제 8430 호의 기계류용	0%	E0
8237	8483.40.40	- - 제 87 류의 차량용	0%	E0
8238	8483.40.90	- - 기타	0%	E0
8239	8483.50.00	- 플라이휠(flywheel)과 풀리(pulley)[풀리블록(pulley block)을 포함한다]	0%	E0
8240	8483.60.00	- 클러치(clutch)와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유니버설조인트(universal joint)를 포함한다]	0%	E0
	8483.90	- 날이 붙은 휠, 체인스프로켓(chain sprocket), 분리되어 제시된 그 밖의 전동(transmission)용 엘리먼트와 부분품		
		- - 소호 제 8483.10 호의 물품의 부분품		
8241	8483.90.11	- - - 소호 제 8701.10 호 또는 제 8701.91 호부터 제 8705.95 호까지의 트랙터용	0%	E0
8242	8483.90.13	- - - 제 8701 호의 그 밖의 트랙터용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243	8483.90.14	- - - 제 8711 호의 물품용	0%	E0
8244	8483.90.15	- - - 제 87 류의 그 밖의 물품용	0%	E0
8245	8483.90.19	- - - 기타	0%	E0
		- - 기타		
8246	8483.90.91	- - - 소호 제 8701.10 호 또는 제 8701.91 호부터 제 8705.95 호까지의 물품용	0%	E0
8247	8483.90.93	- - - 제 8701 호의 그 밖의 트랙터용	0%	E0
8248	8483.90.94	- - - 제 8711 호의 물품용	0%	E0
8249	8483.90.95	- - - 제 87 류의 그 밖의 물품용	0%	E0
8250	8483.90.99	- - - 기타	0%	E0
	84.84	개스킷(gasket)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금속 외의 재료와 결합한 금속판으로 만든 것이나 금속을 두 개 이상 적층한 것으로 한정한다), 재질이 다른 것을 세트로 하거나 소포장한 개스킷(gasket)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작은 주머니와 봉투에 넣은 것이나 이와 유사한 포장을 한 것으로 한정한다), 메커니컬 실(mechanical seal)		
8251	8484.10.00	- 개스킷(gasket)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금속 외의 재료와 결합한 금속판으로 만든 것이나 금속을 두 개 이상 적층한 것으로 한정한다)	0%	E0
8252	8484.20.00	- 메커니컬 실(mechanical seal)	0%	E0
8253	8484.90.00	- 기타	0%	E0
	84.86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 9 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		
	8486.10	-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 제조용 기계와 기기		
8254	8486.10.10	- - 반도체 웨이퍼 급속가열기	0%	E0
8255	8486.10.20	- - 반도체 웨이퍼 가공용의 스핀 드라이어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256	8486.10.30	- - 각종 재료의 가공기계(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이나 광자빔의 방식에 의하여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반도체 웨이퍼의 생산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E0
8257	8486.10.40	- - 단결정 반도체 보울을 얇게 절단하거나 웨이퍼를 칩으로 절단하는 기계	0%	E0
8258	8486.10.50	- - 반도체 웨이퍼의 가공용 연삭기·광택기와 래핑기계	0%	E0
8259	8486.10.60	- - 단결정 반도체 보울을 성장 또는 풀링용 기계	0%	E0
8260	8486.10.90	- - 기타	0%	E0
	8486.20	- 반도체디바이스나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		
		- - 막 형성 장비		
8261	8486.20.11	- - - 반도체 생산용 화학 기상 증착기	0%	E0
8262	8486.20.12	- - - 반도체 웨이퍼용 에피택시얼 증착기, 반도체 웨이퍼 위에 감광 유제를 도포 하는 스피너	0%	E0
8263	8486.20.13	- - - 반도체 웨이퍼의 스퍼터링(sputtering)방식의 물리적 증착기, 반도체 생산용 물리적 증착기	0%	E0
8264	8486.20.19	- - - 기타	0%	E0
		- - 도핑 장비		
8265	8486.20.21	- - - 반도체재료 도핑용 이온주입기	0%	E0
8266	8486.20.29	- - - 기타	0%	E0
		- - 식각 및 스트리핑 장비		
8267	8486.20.31	- - - 전기도금공정에 앞서 반도체패키지의 금속리드의 세척과 오염물질제거기, 반도체 웨이퍼의 식각·스트리핑이나 세척을 위한 분사기	0%	E0
8268	8486.20.32	- - - 반도체재료용 건식 식각 패턴용의 기기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269	8486.20.33	- - - 반도체 웨이퍼를 습식 식각·현상·스트리핑하거나 세척하는 기계	0%	E0
8270	8486.20.39	- - - 기타	0%	E0
		- - 리소그래피 장비		
8271	8486.20.41	- - - 웨이퍼 위에 직접 그리는 기기	0%	E0
8272	8486.20.42	- - - 스텝 앤 리피트 얼라이너	0%	E0
8273	8486.20.49	- - - 기타	0%	E0
		- - 노출된 웨이퍼를 현상하기 위한 장비		
8274	8486.20.51	- - - 반도체 웨이퍼의 스크라이빙이나 스코어링을 위한 다이싱기	0%	E0
8275	8486.20.59	- - - 기타	0%	E0
		- - 기타		
8276	8486.20.91	- - - 반도체 제조시 레이저빔에 의하여 연결통로를 절단하는 레이저절단기	0%	E0
8277	8486.20.92	- - - 반도체 리드의 굽힘용·접음용 및 교정용 기계	0%	E0
8278	8486.20.93	- - - 반도체 웨이퍼 위에 반도체 디바이스의 제조를 위한 저항 가열식의 노와 오븐	0%	E0
8279	8486.20.94	- - - 반도체 웨이퍼 위에 반도체 디바이스의 제조를 위한 유도용량이나 유전체 노와 오븐	0%	E0
8280	8486.20.95	- - - 반도체 재료의 구성품 또는 접촉 요소(contact element)의 배치 또는 제거용 자동화 기계	0%	E0
8281	8486.20.99	- - - 기타	0%	E0
	8486.30	-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와 기기		
8282	8486.30.10	- - 평판디스플레이 기판의 건식식각 패턴용 기기	0%	E0
8283	8486.30.20	- - 평판디스플레이의 습식 식각·현상·스트리핑이나 세척하는 기기	0%	E0
8284	8486.30.30	- - 평판 디스플레이 생산용 화학적 기상 증착법, 평판 디스플레이 기판에 감광 유제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를 도포하는 스피너, 평판 디스플레이의 물리적 증착용 기구		
8285	8486.30.90	- - 기타	0%	E0
	8486.40	- 이 류의 주 제9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8286	8486.40.10	- - 반도체 디바이스의 패턴용의 마스크와 레티클의 생산이나 수리를 하기 위한 포커스드 이온빔 밀링기	0%	E0
8287	8486.40.20	- - 반도체 조립용의 다이 부착기·테이프 자동 접착기·와이어 접착기와 인캡슐레이션(encapsulation) 기기, 반도체 웨이퍼·웨이퍼 카세트·웨이퍼상자와 그 밖의 반도체 디바이스용 재료의 이송·취급 및 저장을 위한 자동 기기	0%	E0
8288	8486.40.30	- - 반도체 디바이스의 제조용 몰드	0%	E0
8289	8486.40.40	- - 광학 입체현미경(반도체 웨이퍼나 레티클의 취급과 이송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0%	E0
8290	8486.40.50	- - 사진 촬영용 현미경(반도체 웨이퍼나 레티클의 취급과 이송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0%	E0
8291	8486.40.60	- - 전자 빔 현미경(반도체 웨이퍼나 레티클의 취급과 이송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0%	E0
8292	8486.40.70	- - 패턴형성기(사진 감광액이 도포된 감광판으로부터 마스크 또는 레티클을 제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E0
8293	8486.40.90	- - 기타	0%	E0
	8486.90	- 부분품과 부속품		
		- - 보울 또는 웨이퍼 제조용 기계와 기기의 것		
8294	8486.90.11	- - - 반도체 웨이퍼 급속가열기의 것	0%	E0
8295	8486.90.12	- - - 반도체 웨이퍼 가공용의 스핀 드라이어의 것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296	8486.90.13	- - - 각종 재료의 가공기계(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이나 광자빔의 방식에 의하여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반도체 웨이퍼의 생산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것	0%	E0
		- - - 단결정 반도체 보울을 얇게 절단하거나 웨이퍼를 칩으로 절단하는 기계의 것		
8297	8486.90.14	- - - - 툴홀더와 자동 개폐식 다이헤드(diehead), 가공용 홀더(holder), 분할대와 그 밖의 공작기계용 특수 부착물	0%	E0
8298	8486.90.15	- - - - 기타	0%	E0
8299	8486.90.16	- - - 반도체 웨이퍼 가공용의 연마기·광택기 및 래핑기의 것	0%	E0
8300	8486.90.17	- - - 단결정 반도체 보울의 성장 또는 풀링용 기기의 것	0%	E0
8301	8486.90.19	- - - 기타	0%	E0
		- - 반도체 디바이스 또는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장치의 것		
8302	8486.90.21	- - - 반도체생산품용의 화학 기상 증착기의 것	0%	E0
8303	8486.90.22	- - - 반도체 웨이퍼용 에피택시얼 증착기의 것, 반도체 웨이퍼 위에 감광 유제를 도포 하는 스피너의 것	0%	E0
8304	8486.90.23	- - - 반도체 재료의 도핑용 이온주입기의 것, 반도체 웨이퍼의 스퍼터링(sputtering) 방식의 물리적 증착기의 것, 반도체 생산용 물리적 증착기의 것, 반도체 웨이퍼 상에 직접 그리는 기기·스텝 앤 리피트 얼라이너 및 그 밖의 리소그래피 장비의 것	0%	E0
		- - - 반도체 웨이퍼의 식각, 스트리핑하거나 세척을 위한 분사기의 것, 반도체 웨이퍼의 습식 식각, 현상, 스트리핑하거나 세척하는 기기의 것, 반도체재료의 건식식각 패턴용의 것		
8305	8486.90.24	- - - - 툴홀더와 자동 개폐식 다이헤드(diehead), 가공용 홀더(holder), 분할대와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그 밖의 공작기계용 특수 부착물		
8306	8486.90.25	- - - - 기타	0%	E0
		- - - 반도체 웨이퍼의 스크라이빙 이나 스코어링을 위한 다이싱기의 것, 레이저 빔에 의한 반도체 생산시 트랙을 자르기 위한 레이저절단기의 것, 반도체 리드의 굽힘용, 접음용, 교정용 기계의 것		
8307	8486.90.26	- - - - 툴홀더와 자동 개폐식 다이헤드(diehead), 가공용 홀더(holder), 분할대와 그 밖의 공작기계용 특수 부착물	0%	E0
8308	8486.90.27	- - - - 기타	0%	E0
8309	8486.90.28	- - - 반도체 웨이퍼 위에 반도체 소자를 제조하는 용도의 저항가열식의 노와 오븐, 반도체 웨이퍼위에 반도체 소자를 제조하는 용도의 전자유도식이나 유전식 노와 오븐	0%	E0
8310	8486.90.29	- - - 기타	0%	E0
		- -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와 기기의 것		
8311	8486.90.31	- - - 평판 디스플레이 기판의 건식식각 패턴용 기기의 것	0%	E0
		- - - 평판 디스플레이를 습식 식각, 현상, 스트리핑하거나 세척하는 기기의 것		
8312	8486.90.32	- - - - 툴홀더와 자동 개폐식 다이헤드(diehead), 가공용 홀더(holder), 분할대와 그 밖의 공작기계용 특수 부착물	0%	E0
8313	8486.90.33	- - - - 기타	0%	E0
8314	8486.90.34	- - - 평판 디스플레이 생산용 화학적 기상증착기의 것	0%	E0
8315	8486.90.35	- - - 평판 디스플레이용 기판에 사용하는 감광 유제 도포용 스피너의 것	0%	E0
8316	8486.90.36	- - - 평판 디스플레이용 기판에 사용하는 물리적 증착용 기기의 것	0%	E0
8317	8486.90.39	- - - 기타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 - 이 류의 주 제9호다목에서 열거된 기계 또는 기기의 것		
8318	8486.90.41	- - - 반도체디바이스의 패턴용의 마스크 또는 레티클을 생산하거나 수리하기 위한 포커스드 이온빔 밀링기의 것	0%	E0
8319	8486.90.42	- - - 반도체 조립용의 다이 부착기·테이프 자동 접착기·와이어 접착기 및 인캡슐레이션(encapsulation) 기기의 것	0%	E0
8320	8486.90.43	- - - 반도체 웨이퍼, 웨이퍼 카세트, 웨이퍼 박스 및 그 밖의 반도체기기 재료의 운송, 취급 및 저장용 자동화 기계의 것	0%	E0
8321	8486.90.44	- - - 광학 입체 현미경과 사진 촬영용 현미경의 것(반도체 웨이퍼나 레티클의 취급과 이송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0%	E0
8322	8486.90.45	- - - 전자빔 현미경의 것(반도체 웨이퍼나 레티클의 취급과 이송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0%	E0
8323	8486.90.46	- - - 패턴형성기의 것(사진 감광액이 도포된 감광판으로부터 마스크나 레티클을 제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인쇄 회로 조립품을 포함한다)	0%	E0
8324	8486.90.49	- - - 기타	0%	E0
	84.87	**기계류의 부분품(접속자·절연체·코일·접촉자와 그 밖의 전기용품을 포함하지 않으며,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325	8487.10.00	- 선박이나 보트의 추진기와 그 블레이드(blade)	0%	E0
8326	8487.90.00	- 기타	0%	E0
	85.01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		
	8501.10	- 전동기(출력이 37.5 와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직류 전동기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 - - 스테퍼 모터		
8327	8501.10.21	- - - - 제 8415 호, 제 8418 호, 제 8450 호, 제 8509 호나 제 8516 호의 물품용으로 사용되는 것	0%	E0
8328	8501.10.22	- - - - 기타(출력이 5 와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E0
8329	8501.10.29	- - - - 기타	0%	E0
8330	8501.10.30	- - - 스핀들 모터	0%	E0
		- - - 기타		
8331	8501.10.41	- - - - 제 8415 호, 제 8418 호, 제 8450 호, 제 8509 호나 제 8516 호의 물품용으로 사용되는 것	0%	E0
8332	8501.10.49	- - - - 기타	0%	E0
		- - 교류·직류 겸용 전동기를 포함하는 그 밖의 모터		
		- - - 스테퍼 모터		
8333	8501.10.51	- - - - 제 8415 호, 제 8418 호, 제 8450 호, 제 8509 호나 제 8516 호의 물품용으로 사용되는 것	0%	E0
8334	8501.10.59	- - - - 기타	0%	E0
8335	8501.10.60	- - - 스핀들 모터	0%	E0
		- - - 기타		
8336	8501.10.91	- - - - 제 8415 호, 제 8418 호, 제 8450 호, 제 8509 호나 제 8516 호의 물품용으로 사용되는 것	0%	E0
8337	8501.10.99	- - - - 기타	0%	E0
	8501.20	- 교류·직류 겸용 전동기(출력이 37.5 와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출력이 1 킬로와트 이하인 것		
8338	8501.20.12	- - - 제 8415 호, 제 8418 호, 제 8450 호, 제 8509 호나 제 8516 호의 물품용으로 사용되는 것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339	8501.20.19	- - - 기타	0%	E0
		- - 출력이 1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8340	8501.20.21	- - - 제 8415 호, 제 8418 호, 제 8450 호, 제 8509 호나 제 8516 호의 물품용으로 사용되는 것	0%	E0
8341	8501.20.29	- - - 기타	0%	E0
		- 그 밖의 직류 전동기, 직류 발전기		
	8501.31	- - 출력이 750 와트 이하인 것		
8342	8501.31.30	- - - 제 8415 호, 제 8418 호, 제 8450 호, 제 8509 호나 제 8516 호의 물품용으로 사용되는 모터	0%	E0
8343	8501.31.40	- - - 그 밖의 모터	0%	E0
8344	8501.31.50	- - - 발전기	0%	E0
	8501.32	- - 출력이 750 와트 초과 75 킬로와트 이하인 것		
		- - - 출력이 750 와트 초과 37.5 킬로와트 이하인 것		
8345	8501.32.21	- - - - 제 8415 호, 제 8418 호, 제 8450 호, 제 8509 호나 제 8516 호의 물품용으로 사용되는 모터	0%	E0
8346	8501.32.22	- - - - 그 밖의 모터	0%	E0
8347	8501.32.23	- - - - 발전기	0%	E0
		- - - 출력이 37.5 킬로와트 초과 75 킬로와트 이하인 것		
8348	8501.32.31	- - - - 제 8415 호, 제 8418 호, 제 8450 호, 제 8509 호나 제 8516 호의 물품용으로 사용되는 모터	0%	E0
8349	8501.32.32	- - - - 그 밖의 모터	0%	E0
8350	8501.32.33	- - - - 발전기	0%	E0
8351	8501.33.00	- - 출력이 75 킬로와트 초과 375 킬로와트 이하인 것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352	8501.34.00	- - 출력이 375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0%	E0
	8501.40	- 그 밖의 단상(單相) 교류 전동기		
		- - 출력이 1 킬로와트 이하인 것		
8353	8501.40.11	- - - 제 8415 호, 제 8418 호, 제 8450 호, 제 8509 호나 제 8516 호의 물품용으로 사용되는 것	0%	E0
8354	8501.40.19	- - - 기타	0%	E0
		- - 출력이 1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8355	8501.40.21	- - - 제 8415 호, 제 8418 호, 제 8450 호, 제 8509 호나 제 8516 호의 물품용으로 사용되는 것	0%	E0
8356	8501.40.29	- - - 기타	0%	E0
		- 그 밖의 다상(多相) 교류 전동기		
	8501.51	- - 출력이 750 와트 이하인 것		
8357	8501.51.11	- - - 제 8415 호, 제 8418 호, 제 8450 호, 제 8509 호나 제 8516 호의 물품용으로 사용되는 것	0%	E0
8358	8501.51.19	- - - 기타	0%	E0
	8501.52	- - 출력이 750 와트 초과 75 킬로와트 이하인 것		
		- - - 출력이 1 킬로와트 이하인 것		
8359	8501.52.11	- - - - 제 8415 호, 제 8418 호, 제 8450 호, 제 8509 호나 제 8516 호의 물품용으로 사용되는 것	0%	E0
8360	8501.52.19	- - - - 기타	0%	E0
		- - - 출력이 1 킬로와트 초과 37.5 킬로와트 이하인 것		
8361	8501.52.21	- - - - 제 8415 호, 제 8418 호, 제 8450 호, 제 8509 호나 제 8516 호의 물품용으로 사용되는 것	0%	E0
8362	8501.52.29	- - - - 기타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 - - 출력이 37.5 킬로와트 초과 75 킬로와트 이하인 것		
8363	8501.52.31	- - - - 제 8415 호, 제 8418 호, 제 8450 호, 제 8509 호나 제 8516 호의 물품용으로 사용되는 것	0%	E0
8364	8501.52.39	- - - - 기타	0%	E0
8365	8501.53.00	- - 출력이 75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0%	E0
		- 교류 발전기		
	8501.61	- - 출력이 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366	8501.61.10	- - - 출력이 12.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0%	E0
8367	8501.61.20	- - - 출력이 12.5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0%	E0
	8501.62	- - 출력이 75 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368	8501.62.10	- - - 출력이 75 킬로볼트암페어 초과 15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0%	E0
8369	8501.62.20	- - - 출력이 150 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0%	E0
8370	8501.63.00	- - 출력이 375 킬로볼트암페어 초과 75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0%	E0
8371	8501.64.00	- - 출력이 75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0%	E0
	85.02	**발전세트와 회전변환기**		
		-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디젤엔진이나 세미디젤엔진의 것으로 한정한다)		
8372	8502.11.00	- - 출력이 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0%	E0
	8502.12	- - 출력이 75 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373	8502.12.10	- - - 출력이 75 킬로볼트암페어 초과 12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374	8502.12.20	- - - 출력이 125 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0%	E0
	8502.13	- - 출력이 375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8375	8502.13.20	- - - 출력이 12,500 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인 것	0%	E0
8376	8502.13.90	- - - 기타	0%	E0
	8502.20	-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		
8377	8502.20.10	- - 출력이 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0%	E0
8378	8502.20.20	- - 출력이 75 킬로볼트 암페어 초과 10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0%	E0
8379	8502.20.30	- - 출력이 100 킬로볼트암페어 초과 10,00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0%	E0
		- - 출력이 10,00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8380	8502.20.42	- - - 출력이 12,500 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인 것	0%	E0
8381	8502.20.49	- - - 기타	0%	E0
		- 그 밖의 발전세트		
	8502.31	- - 풍력의 것		
8382	8502.31.10	- - - 출력이 10,00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0%	E0
8383	8502.31.20	- - - 출력이 10,00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0%	E0
	8502.39	- - 기타		
8384	8502.39.10	- - - 출력이 1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0%	E0
8385	8502.39.20	- - - 출력이 10 킬로볼트암페어 초과 10,00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0%	E0
		- - - 출력이 10,00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386	8502.39.32	- - - - 출력이 12,500 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인 것	0%	E0
8387	8502.39.39	- - - - 기타	0%	E0
8388	8502.40.00	- 회전변환기	0%	E0
	85.03	**부분품(제 8501 호나 제 8502 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8389	8503.00.20	- 제 8501 호나 제 8502 호의 출력이 12,500 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인 발전기의 부분품(발전기 세트를 포함한다)	0%	E0
8390	8503.00.90	- 기타	0%	E0
	85.04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		
8391	8504.10.00	- 방전등용이나 방전관용 안정기	0%	E0
		- 유입식 변압기		
	8504.21	- - 용량이 65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 - - 선로전압조정장치(자동 변압기), 용량이 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계기용 변압기		
8392	8504.21.11	- - - - 계기용 변압기(용량이 1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이고, 고압전력이 110 킬로볼트 이상인 것)	0%	E0
8393	8504.21.19	- - - - 기타	0%	E0
		- - - 기타		
8394	8504.21.92	- - - - 용량이 1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고 고압전력이 110 킬로볼트 이상인 것	0%	E0
8395	8504.21.93	- - - - 용량이 1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고 고압전력이 66 킬로볼트 이상 110 킬로볼트 미만인 것	0%	E0
8396	8504.21.99	- - - - 기타	0%	E0
	8504.22	- - 용량이 650 킬로볼트암페어 초과 10,00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 - - 선로전압조정장치(자동 변압기)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397	8504.22.11	- - - - 고압전력이 66 킬로볼트 이상인 것	0%	E0
8398	8504.22.19	- - - - 기타	0%	E0
		- - - 기타		
8399	8504.22.92	- - - - 고압전력이 110 킬로볼트 이상인 것	0%	E0
8400	8504.22.93	- - - - 고압전력이 66 킬로볼트 이상 110 킬로볼트 미만인 것	0%	E0
8401	8504.22.99	- - - - 기타	0%	E0
	8504.23	- - 용량이 10,00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8402	8504.23.10	- - - 용량이 15,00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0%	E0
		- - - 용량이 15,00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8403	8504.23.21	- - - - 20,00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0%	E0
8404	8504.23.22	- - - - 20,000 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0,00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0%	E0
8405	8504.23.29	- - - - 기타	0%	E0
		- 그 밖의 변압기		
	8504.31	- - 용량이 1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 - - 기기 계기용 변압기		
8406	8504.31.11	- - - - 전압정격이 110 킬로볼트 이상인 것	0%	E0
8407	8504.31.12	- - - - 전압정격이 66 킬로볼트 이상 110 킬로볼트 미만인 것	0%	E0
8408	8504.31.13	- - - - 전압정격이 1 킬로볼트 이상 66 킬로볼트 미만인 것	0%	E0
8409	8504.31.19	- - - - 기타	0%	E0
		- - - 기기 전류 변압기		
		- - - - 전압정격이 110 킬로볼트 이상인 것		
8410	8504.31.21	- - - - - 전압정격이 220 킬로볼트 이하의 링타입(환상) 전류변압기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411	8504.31.22	- - - - - 기타	0%	E0
8412	8504.31.23	- - - - 전압정격이 66 킬로볼트 이상 110 킬로볼트 미만인 것	0%	E0
8413	8504.31.24	- - - - 전압정격이 1 킬로볼트 이상 66 킬로볼트 미만인 것	0%	E0
8414	8504.31.29	- - - - 기타	0%	E0
8415	8504.31.30	- - - 고압 변압기	0%	E0
8416	8504.31.40	- - - 중간 주파 변압기	0%	E0
		- - - 기타		
8417	8504.31.91	- - - - 장난감, 축소 모형 또는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과 함께 사용하는 것	0%	E0
8418	8504.31.92	- - - - 그 밖의 매칭 변압기	0%	E0
8419	8504.31.93	- - - - 강압/승압 변압기, 슬라이드 전압 조정기	0%	E0
8420	8504.31.99	- - - - 기타	0%	E0
	8504.32	- - 용량이 1 킬로볼트암페어 초과 16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 - - 용량이 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계기용 변압기(포텐셜과 전류)		
8421	8504.32.11	- - - - 매칭 변압기	0%	E0
8422	8504.32.19	- - - - 기타	0%	E0
8423	8504.32.20	- - - 기타(장난감, 축소 모형이나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과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E0
8424	8504.32.30	- - - 기타(3 메가헤르츠의 최소 주파수로 한정한다)	0%	E0
		- - - 기타(용량이 1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425	8504.32.41	- - - - 매칭 변압기	0%	E0
8426	8504.32.49	- - - - 기타	0%	E0
		- - - 기타(용량이 1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과하는 것)		
8427	8504.32.51	- - - - 매칭 변압기	0%	E0
8428	8504.32.59	- - - - 기타	0%	E0
	8504.33	- - 용량이 16 킬로볼트암페어 초과 50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 - - 고압전력이 66 킬로볼트 이상인 것		
8429	8504.33.11	- - - - 매칭 변압기	0%	E0
8430	8504.33.19	- - - - 기타	0%	E0
		- - - 기타		
8431	8504.33.91	- - - - 매칭 변압기	0%	E0
8432	8504.33.99	- - - - 기타	0%	E0
	8504.34	- - 용량이 50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 - - 용량이 15,00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 - - - 용량이 10,00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고 고압전력이 66 킬로볼트 이상인 것		
8433	8504.34.11	- - - - - 매칭 변압기	0%	E0
8434	8504.34.12	- - - - - 방폭형 건식 타입 변압기	0%	E0
8435	8504.34.13	- - - - - 기타	0%	E0
		- - - - 기타		
8436	8504.34.14	- - - - - 매칭 변압기	0%	E0
8437	8504.34.15	- - - - - 방폭형 건식 타입 변압기	0%	E0
8438	8504.34.16	- - - - - 기타	0%	E0
		- - - 용량이 15,00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 - - - 고압전력이 66 킬로볼트 이상인 것		
8439	8504.34.22	- - - - - 매칭 변압기	0%	E0
8440	8504.34.23	- - - - - 방폭형 건식 타입 변압기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441	8504.34.24	- - - - - 기타	0%	E0
		- - - - 기타		
8442	8504.34.25	- - - - - 매칭 변압기	0%	E0
8443	8504.34.26	- - - - - 방폭형 건식 타입 변압기	0%	E0
8444	8504.34.29	- - - - - 기타	0%	E0
	8504.40	- 정지형 변환기		
		- -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8445	8504.40.11	- - - 무정전 전원 장치(UPS)	0%	E0
8446	8504.40.19	- - - 기타	0%	E0
8447	8504.40.20	- - 출력이 10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배터리 충전기	0%	E0
8448	8504.40.30	- - 그 밖의 정류기	0%	E0
8449	8504.40.40	- - 인버터	0%	E0
8450	8504.40.90	- - 기타	0%	E0
	8504.50	- 그 밖의 유도자		
8451	8504.50.10	- -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그리고 전기통신용 기기의 전원 공급기용 유도자	0%	E0
8452	8504.50.20	- - 칩 유형의 고정 유도자	0%	E0
		- - 기타		
8453	8504.50.93	- - - 용량이 2,50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0%	E0
8454	8504.50.94	- - - 용량이 2,500 킬로볼트암페어 초과 10,00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0%	E0
8455	8504.50.95	- - - 용량이 10,00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0%	E0
	8504.90	- 부분품		
8456	8504.90.10	- - 소호 제 8504.10 호의 물품의 것	0%	E0
8457	8504.90.20	- - 소호 제 8504.40.11 호・제 8504.40.19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호나 제 8504.50.10 호의 상품용 인쇄회로조립품		
		- - 용량이 10,00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변압기용		
8458	8504.90.31	- - - 방열기 패널, 배전용과 전력변압기용의 편평한 튜브 방열기 조립품	0%	E0
8459	8504.90.39	- - - 기타	0%	E0
		- 용량이 10,00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변압기용		
8460	8504.90.41	- - - 방열기 패널, 배전용과 전력변압기용의 편평한 튜브 방열기 조립품	0%	E0
8461	8504.90.49	- - - 기타	0%	E0
8462	8504.90.90	- - 기타	0%	E0
	85.05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磁化)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전자석이나 영구자석식 척(chuck)·클램프와 이와 유사한 가공물 홀더, 전자석 커플링(coupling)·클러치와 브레이크, 전자석 리프팅헤드(lifting head)**		
		- 영구자석과 자화(磁化)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8463	8505.11.00	- - 금속으로 만든 것	0%	E0
8464	8505.19.00	- - 기타	0%	E0
8465	8505.20.00	- 전자석 커플링(coupling)·클러치와 브레이크	0%	E0
8466	8505.90.00	-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0%	E0
	85.06	**일차전지**		
	8506.10	- 이산화망간으로 만든 것		
8467	8506.10.10	- - 외부 용적이 300 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것	15%	EX
8468	8506.10.90	- - 기타	15%	EX
8469	8506.30.00	- 산화수은으로 만든 것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470	8506.40.00	- 산화은으로 만든 것	0%	E0
8471	8506.50.00	- 리튬으로 만든 것	0%	E0
	8506.60	- 에어징크로 만든 것		
8472	8506.60.10	- - 외부 용적이 300 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것	0%	E0
8473	8506.60.90	- - 기타	0%	E0
	8506.80	- 그 밖의 일차전지		
8474	8506.80.10	- - 아연 탄소(외부 용적이 300 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E0
8475	8506.80.20	- - 아연 탄소(외부용적이 300 세제곱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E0
		- - 기타		
8476	8506.80.91	- - - 외부 용적이 300 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것	0%	E0
8477	8506.80.99	- - - 기타	0%	E0
8478	8506.90.00	- 부분품	0%	E0
	85.07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인지에 상관없다)**		
	8507.10	- 피스톤식 엔진 시동용 연산(鉛酸)축전지		
8479	8507.10.10	- - 항공기용의 것	0%	E0
		- - 기타		
		- - - 공칭전압 6 볼트 또는 12 볼트(방전 용량이 200 암페어 시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8480	8507.10.92	- - - - 높이(터미널과 핸들은 제외한다)가 13 센티미터 이하인 것	0%	E0
8481	8507.10.95	- - - - 높이(터미널과 핸들은 제외한다)가 13 센티미터 초과 23 센티미터 이하인 것	0%	E0
8482	8507.10.96	- - - - 높이(터미널과 핸들은 제외한다)가 23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0%	E0
		- - - 기타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483	8507.10.97	- - - - 높이(터미널과 핸들은 제외한다)가 13 센티미터 이하인 것	0%	E0
8484	8507.10.98	- - - - 높이(터미널과 핸들은 제외한다)가 13 센티미터 초과 23 센티미터 이하인 것	0%	E0
8485	8507.10.99	- - - - 높이(터미널과 핸들은 제외한다)가 23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0%	E0
	8507.20	- 그 밖의 연산(鉛酸)축전지		
8486	8507.20.10	- - 항공기용	0%	E0
		- - 기타		
		- - - 공칭전압 6 볼트 또는 12 볼트(방전 용량이 200 암페어 시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8487	8507.20.94	- - - - 높이(터미널과 핸들은 제외한다)가 13 센티미터 이하인 것	0%	E0
8488	8507.20.95	- - - - 높이(터미널과 핸들은 제외한다)가 13 센티미터 초과 23 센티미터 이하인 것	0%	E0
8489	8507.20.96	- - - - 높이(터미널과 핸들은 제외한다)가 23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0%	E0
		- - - 기타		
8490	8507.20.97	- - - - 높이(터미널과 핸들은 제외한다)가 13 센티미터 이하인 것	0%	E0
8491	8507.20.98	- - - - 높이(터미널과 핸들은 제외한다)가 13 센티미터 초과 23 센티미터 이하인 것	0%	E0
8492	8507.20.99	- - - - 높이(터미널과 핸들은 제외한다)가 23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0%	E0
	8507.30	- 니켈-카드뮴 축전지		
8493	8507.30.10	- - 항공기용의 것	0%	E0
8494	8507.30.90	- - 기타	0%	E0
	8507.40	- 니켈-철 축전지		
8495	8507.40.10	- - 항공기용의 것	0%	E0
8496	8507.40.90	- - 기타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507.50	- 니켈-수소합금 축전지		
8497	8507.50.10	- - 항공기용의 것	0%	E0
8498	8507.50.90	- - 기타	0%	E0
	8507.60	- 리튬이온 축전지		
8499	8507.60.10	- - 랩탑용의 것(노트북과 서브노트북을 포함한다)	0%	E0
8500	8507.60.20	- - 항공기용의 것	0%	E0
8501	8507.60.90	- - 기타	0%	E0
	8507.80	- 그 밖의 축전지		
8502	8507.80.10	- - 항공기용의 것	0%	E0
8503	8507.80.20	- - 랩탑용의 것(노트북과 서브노트북을 포함한다)	0%	E0
8504	8507.80.90	- - 기타	0%	E0
	8507.90	- 부분품		
		- - 판		
8505	8507.90.11	- - - 소호 제 8507.10.92 호, 제 8507.10.95 호, 제 8507.10.96 호, 제 8507.10.97 호, 제 8507.10.98 호나 제 8507.10.99 호의 물품의 것	0%	E0
8506	8507.90.12	- - - 항공기용의 것	0%	E0
8507	8507.90.19	- - - 기타	0%	E0
		- - 기타		
8508	8507.90.91	- - - 항공기용의 것	0%	E0
8509	8507.90.92	- - -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 분리기 [폴리(염화 비닐)는 제외한다]	0%	E0
8510	8507.90.93	- - - 기타(소호 제 8507.10.92 호, 제 8507.10.95 호, 제 8507.10.96 호, 제 8507.10.97 호, 제 8507.10.98 호나 제 8507.10.99 호의 물품의 것으로 한정한다)	0%	E0
8511	8507.90.99	- - - 기타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5.08	**진공청소기**		
		- 전동기를 갖춘 것		
8512	8508.11.00	- - 출력이 1,500 와트 이하이고 먼지 백이나 그 밖의 20 리터 이하 용량의 저장조를 갖춘 것	0%	E0
	8508.19	- - 기타		
8513	8508.19.10	- - - 가정용으로 적합한 것	0%	E0
8514	8508.19.90	- - - 기타	0%	E0
8515	8508.60.00	- 그 밖의 진공청소기	0%	E0
	8508.70	- 부분품		
8516	8508.70.10	- - 진공청소기(소호 제 8508.11.00 호나 제 8508.19.10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0%	E0
8517	8508.70.90	- - 기타	0%	E0
	85.09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 8508 호의 진공청소기는 제외한다)**		
8518	8509.40.00	- 식품용 그라인더와 믹서, 과즙 또는 채소즙 추출기	0%	E0
	8509.80	- 그 밖의 기기		
8519	8509.80.10	- - 바닥광택기	0%	E0
8520	8509.80.20	- - 주방용 쓰레기처리기	0%	E0
8521	8509.80.90	- - 기타	0%	E0
	8509.90	- 부분품		
8522	8509.90.10	- - 소호 제 8509.80.10 호의 물품의 것	0%	E0
8523	8509.90.90	- - 기타	0%	E0
	85.10	**면도기·이발기·모발제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8524	8510.10.00	- 면도기	0%	E0
8525	8510.20.00	- 이발기	0%	E0
8526	8510.30.00	- 모발제거기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527	8510.90.00	- 부분품	0%	E0
	85.11	**불꽃점화식이나 압축점화식 내연기관의 점화용·시동용 전기기기(예: 점화용 자석발전기·자석발전기·점화코일·점화플러그·예열플러그·시동전동기), 내연기관에 부속되는 발전기(예: 직류발전기·교류발전기)와 개폐기**		
	8511.10	- 점화플러그		
8528	8511.10.10	- - 항공기엔진에 적합한 것	0%	E0
8529	8511.10.20	- - 차량엔진에 적합한 것	0%	E0
8530	8511.10.90	- - 기타	0%	E0
	8511.20	- 점화용 자석발전기, 직류 자석발전기와 마그네틱 플라이휠		
8531	8511.20.10	- - 항공기엔진에 적합한 것	0%	E0
		- - 차량엔진에 적합한 것		
8532	8511.20.21	- - - 조립되지 않은 것	0%	E0
8533	8511.20.29	- - - 기타	0%	E0
		- - 기타		
8534	8511.20.91	- - - 조립되지 않은 것	0%	E0
8535	8511.20.99	- - - 기타	0%	E0
	8511.30	- 배전기와 점화코일		
8536	8511.30.30	- - 항공기엔진에 적합한 것	0%	E0
		- - 차량엔진에 적합한 것		
8537	8511.30.41	- - - 조립되지 않은 것	0%	E0
8538	8511.30.49	- - - 기타	0%	E0
		- - 기타		
8539	8511.30.91	- - - 조립되지 않은 것	0%	E0
8540	8511.30.99	- - - 기타	0%	E0
	8511.40	- 시동전동기와 겸용 시동발전기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541	8511.40.10	- - 항공기엔진용	0%	E0
		- - 그 밖의 조립되지 않은 시동전동기		
8542	8511.40.21	- - - 차량엔진용(제 8702 호, 제 8703 호, 제 8704 호나 제 8705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0%	E0
8543	8511.40.29	- - - 기타	0%	E0
		- - 제 8701 호부터 제 8705 호까지의 차량의 엔진을 위한 조립된 시동전동기		
8544	8511.40.31	- - - 차량엔진용(제 8701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0%	E0
8545	8511.40.32	- - - 차량엔진용(제 8702 호, 제 8703 호나 제 8704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0%	E0
8546	8511.40.33	- - - 차량엔진용(제 8705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0%	E0
		- - 기타		
8547	8511.40.91	- - - 차량엔진용(제 8702 호, 제 8703 호, 제 8704 호나 제 8705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0%	E0
8548	8511.40.99	- - - 기타	0%	E0
	8511.50	- 그 밖의 발전기		
8549	8511.50.10	- - 항공기엔진용	0%	E0
		- - 그 밖의 조립되지 않은 교류발전기		
8550	8511.50.21	- - - 차량엔진용(제 8702 호, 제 8703 호, 제 8704 호나 제 8705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0%	E0
8551	8511.50.29	- - - 기타	0%	E0
		- - 제 8701 호부터 제 8705 호까지의 차량 엔진용 조립된 교류발전기		
8552	8511.50.31	- - - 차량엔진용(제 8701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0%	E0
8553	8511.50.32	- - - 차량엔진용(제 8702 호, 제 8703 호나 제 8704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0%	E0
8554	8511.50.33	- - - 차량엔진용(제 8705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 - 기타		
8555	8511.50.91	- - - 차량엔진용(제 8702 호, 제 8703 호, 제 8704 호나 제 8705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0%	E0
8556	8511.50.99	- - - 기타	0%	E0
	8511.80	- 그 밖의 기기		
8557	8511.80.10	- - 항공기엔진용	0%	E0
8558	8511.80.20	- - 차량엔진에 적합한 것	0%	E0
8559	8511.80.90	- - 기타	0%	E0
	8511.90	- 부분품		
8560	8511.90.10	- - 항공기엔진	0%	E0
8561	8511.90.20	- - 차량엔진에 적합한 것	0%	E0
8562	8511.90.90	- - 기타	0%	E0
	85.12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제 8539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제상기(defroster)·제무기(demister)(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8563	8512.10.00	- 자전거에 사용되는 조명용이나 시각 신호용 기구	0%	E0
	8512.20	- 그 밖의 조명용이나 시각 신호용 기구		
8564	8512.20.20	- - 조립되지 않은 조명용이나 시각 신호용 기구	0%	E0
		- - 기타		
8565	8512.20.91	- - - 모터사이클용	0%	E0
8566	8512.20.99	- - - 기타	0%	E0
	8512.30	- 음향신호용 기구		
8567	8512.30.10	- - 혼(horn)과 사이렌(조립된 것으로 한정한다)	0%	E0
8568	8512.30.20	- - 조립되지 않은 음향신호용 기구	0%	E0
		- - 기타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569	8512.30.91	- - - 차량용 장애물 감지(경고) 장치	0%	E0
8570	8512.30.99	- - - 기타	0%	E0
8571	8512.40.00	- 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제상기(defroster)와 제무기(demister)	0%	E0
	8512.90	- 부분품		
8572	8512.90.10	- - 소호 제 8512.10 호의 물품	0%	E0
8573	8512.90.20	- - 소호 제 8512.20 호, 제 8512.30 호나 제 8512.40 호의 물품의 것	0%	E0
	85.13	**휴대용 전등(건전지·축전지·자석발전기와 같은 자체 전원기능을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 8512 호의 조명기구는 제외한다)**		
	8513.10	- 전등		
8574	8513.10.30	- - 광부용 헬멧 램프나 채석용 램프	0%	E0
8575	8513.10.90	- - 기타	0%	E0
	8513.90	- 부분품		
8576	8513.90.10	- - 광부용 헬멧 램프나 채석용 램프의 것	0%	E0
8577	8513.90.30	- - 섬광 반사기, 플라스틱의 손전등 스위치 슬라이드	0%	E0
8578	8513.90.90	- - 기타	0%	E0
	85.14	**공업용이나 실험실용 전기식 노(爐)와 오븐[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dielectric loss)식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공업용이나 실험실용의 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dielectric loss)식 가열기**		
8579	8514.10.00	- 저항가열식의 노(爐)와 오븐	0%	E0
	8514.20	- 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dielectric loss)식 노(爐)와 오븐		
8580	8514.20.20	- - 전기식 노(爐) 또는 오븐(인쇄회로판/인쇄배선판 또는 인쇄회로판 조립품 제조용)	0%	E0
8581	8514.20.90	- - 기타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514.30	- 그 밖의 노(爐)와 오븐		
8582	8514.30.20	- - 전기식 노(爐) 또는 오븐(인쇄회로판/인쇄배선판 또는 인쇄회로판 조립품 제조용)	0%	E0
8583	8514.30.90	- - 기타	0%	E0
8584	8514.40.00	- 그 밖의 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dielectric loss)식 가열기	0%	E0
	8514.90	- 부분품		
8585	8514.90.20	- - 공업용이나 실험용 전기식 노(爐) 또는 오븐의 부분품(인쇄회로판/인쇄배선판 또는 인쇄회로판 조립품 제조용)	0%	E0
8586	8514.90.90	- - 기타	0%	E0
	85.15	**전기식(전기발열에 따른 가스식을 포함한다)·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식·광자빔식·초음파식·전자빔식·자기펄스(magnetic pulse)식·플라즈마 아크(plasma arc)식 납땜용·땜질용이나 용접용 기기(절단기능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금속이나 서멧(cermet)의 가열분사용 전기식 기기**		
		- 땜질 또는 납땜기기		
8587	8515.11.00	- - 납땜용 인두와 건(gun)	0%	E0
	8515.19	- - 기타		
8588	8515.19.10	- - - 인쇄회로판/인쇄배선판 납땜 구성부품용 기기	0%	E0
8589	8515.19.90	- - - 기타	0%	E0
		- 금속의 저항용접용 기기		
8590	8515.21.00	- - 전자동식이나 반자동식	0%	E0
8591	8515.29.00	- - 기타	0%	E0
		- 금속의 아크[플라즈마 아크(plasma arc)를 포함한다] 용접기기		
8592	8515.31.00	- - 전자동식이나 반자동식	0%	E0
	8515.39	- - 기타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593	8515.39.10	- - - 교류아크 용접기(트랜스포머 방식)	0%	E0
8594	8515.39.90	- - - 기타	0%	E0
	8515.80	- 그 밖의 기기		
8595	8515.80.10	- - 금속 또는 소결한 금속카바이드 가열분사용 전기기기	0%	E0
8596	8515.80.90	- - 기타	0%	E0
	8515.90	- 부분품		
8597	8515.90.10	- - 교류아크 용접기의 것(트랜스포머 방식)	0%	E0
8598	8515.90.20	- - 인쇄회로판/인쇄배선판 납땜 구성부품용 기기의 부분품	0%	E0
8599	8515.90.90	- - 기타	0%	E0
	85.16	**전기식의 즉시식·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기기[예: 헤어드라이어·헤어컬러(hair curler)·컬링통히터(curling tong heater)], 손 건조기, 전기다리미,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전열용 저항체(제 8545 호의 것은 제외한다)**		
	8516.10	- 전기식의 즉시식·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 -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		
8600	8516.10.11	- - - 가정용으로 적합한 물 가열기에만 부착되는 물 디스펜서	0%	E0
8601	8516.10.19	- - - 기타	0%	E0
8602	8516.10.30	- - 투입식 가열기	0%	E0
		- 전기식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8603	8516.21.00	- - 저장식 가열 라디에이터	0%	E0
8604	8516.29.00	- - 기타	0%	E0
		- 전기가열식 이용기기나 손 건조기		
8605	8516.31.00	- - 헤어드라이어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606	8516.32.00	- - 그 밖의 이용기기	0%	E0
8607	8516.33.00	- - 손 건조기	0%	E0
	8516.40	- 전기다리미		
8608	8516.40.10	- - 상업용 보일러의 스팀 사용을 위해 설계된 것	0%	E0
8609	8516.40.90	- - 기타	0%	E0
8610	8516.50.00	- 마이크로웨이브 오븐(microwave oven)	0%	E0
	8516.60	- 그 밖의 오븐, 쿠커・조리판・보일링링・그릴러・로스터		
8611	8516.60.10	- - 밥솥	5%	EX
8612	8516.60.90	- - 기타	5%	EX
		-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8613	8516.71.00	- - 커피 또는 차를 끓이는 기기	0%	E0
8614	8516.72.00	- - 토스터	0%	E0
	8516.79	- - 기타		
8615	8516.79.10	- - - 주전자	0%	E0
8616	8516.79.90	- - - 기타	0%	E0
	8516.80	- 전열용 저항체		
8617	8516.80.10	- - 활자주조나 주식기(鑄植機)용, 공업 노(爐)용	0%	E0
8618	8516.80.30	- - 가정용 기기용	0%	E0
8619	8516.80.90	- - 기타	0%	E0
	8516.90	- 부분품		
		- - 소호 제 8516.33 호, 제 8516.50 호, 제 8516.60 호, 제 8516.71 호 또는 제 8516.79.10 호의 물품의 것		
8620	8516.90.21	- - - 가정용 기기의 봉인된 전열판	0%	E0
8621	8516.90.29	- - - 기타	0%	E0
8622	8516.90.30	- - 소호 제 8516.10 호의 물품의 것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623	8516.90.40	- - 활자 주조 또는 주식기(鑄植機)용 전열용 저항체의 것	0%	E0
8624	8516.90.90	- - 기타	0%	E0
	85.17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 또는 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 8443 호·제 8525 호·제 8527 호 또는 제 8528 호의 송신용 또는 수신용 기기는 제외한다)**		
		-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8625	8517.11.00	- - 유선전화기 세트[무선 송수화기(cordless handset)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	E0
8626	8517.12.00	- -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0%	E0
8627	8517.18.00	- - 기타	0%	E0
		-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 또는 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		
8628	8517.61.00	- - 기지국	0%	E0
	8517.62	- -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8629	8517.62.10	- - - 무선 송신기기와 무선 수신기기(다국어 회의에서 동시통역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E0
		- - - 제 8471 호의 단위기기를 제외한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		
8630	8517.62.21	- - - - 제어 및 어댑터 유닛(게이트 웨이·브리지와 라우터를 포함한다)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631	8517.62.29	- - - - 기타	0%	E0
8632	8517.62.30	- - -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 교환기	0%	E0
		- - - 반송전류라인시스템 또는 디지털라인시스템용 기기		
8633	8517.62.41	- - - - 모뎀(케이블 모뎀과 모뎀카드를 포함한다)	0%	E0
8634	8517.62.42	- - - - 컨센트레이터나 멀티플렉서	0%	E0
8635	8517.62.49	- - - - 기타	0%	E0
		- - - 그 밖의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		
8636	8517.62.51	- - - - 무선랜	0%	E0
8637	8517.62.52	- - - - 송신기기와 수신기기(다국어 회의에서 동시통역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E0
8638	8517.62.53	- - - - 그 밖의 송신기기(무선전화나 무선전신용)	0%	E0
8639	8517.62.59	- - - - 기타	0%	E0
		- - - 그 밖의 송신기기		
8640	8517.62.61	- - - - 무선전화나 무선전신용	0%	E0
8641	8517.62.69	- - - - 기타	0%	E0
		- - - 기타		
8642	8517.62.91	- - - - 호출, 경보 또는 페이징용의 휴대용 수신기기 및 페이징 알람기기(무선호출기를 포함한다)	0%	E0
8643	8517.62.92	- - - - 무선전화나 무선전신용	0%	E0
8644	8517.62.99	- - - - 기타	0%	E0
8645	8517.69.00	- - 기타	0%	E0
	8517.70	- 부분품		
8646	8517.70.10	- - 제어 및 어댑터 유닛(게이트웨이·브리지와 라우터를 포함한다)의 것	0%	E0
		- - 라디오 방송용이나 텔레비전용 송신기기를 제외한 송신기기의 것이나 호출, 경보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또는 페이징용의 휴대용 수신기기 및 페이징 알람기기(무선호출기를 포함한다)의 것		
8647	8517.70.21	- - - 휴대전화의 것	0%	E0
8648	8517.70.29	- - - 기타	0%	E0
		- - 그 밖의 인쇄회로판(조립된 것으로 한정한다)		
8649	8517.70.31	- - - 유선전화나 유선전신용 물품의 것	0%	E0
8650	8517.70.32	- - - 무선전화나 무선전신용 물품의 것	0%	E0
8651	8517.70.39	- - - 기타	0%	E0
8652	8517.70.40	- - 무선전화와 무선전신용 기기에 사용되는 안테나	0%	E0
		- - 기타		
8653	8517.70.91	- - - 유선전화나 유선전신용 물품의 것	0%	E0
8654	8517.70.92	- - - 무선전화나 무선전신용 물품의 것	0%	E0
8655	8517.70.99	- - - 기타	0%	E0
	85.18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음향증폭세트**		
	8518.10	-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 - 마이크로폰		
8656	8518.10.11	- - - 전기통신용 마이크로폰(지름이 10 밀리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3 밀리미터 이하이며, 주파수 대역이 300 헤르츠부터 3,400 헤르츠까지인 것으로 한정한다)	0%	E0
8657	8518.10.19	- - - 그 밖의 마이크로폰(스탠드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0%	E0
8658	8518.10.90	- - 기타	0%	E0
		-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518.21	- - 단일형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8659	8518.21.10	- - - 박스 스피커 타입	0%	E0
8660	8518.21.90	- - - 기타	0%	E0
	8518.22	- - 복합형 확성기[동일 인클로저 (enclosure)에 장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8661	8518.22.10	- - - 박스 스피커 타입	0%	E0
8662	8518.22.90	- - - 기타	0%	E0
	8518.29	- - 기타		
8663	8518.29.20	- - - 전기통신용 확성기[인클로저 (enclosure)에 장착되지 않은 것으로 지름이 50 밀리미터 이하이고, 주파수 대역이 300 헤르츠부터 3,400 헤르츠까지인 것으로 한정한다]	0%	E0
8664	8518.29.90	- - - 기타	0%	E0
	8518.30	-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8665	8518.30.10	- - 헤드폰	0%	E0
8666	8518.30.20	- - 이어폰	0%	E0
8667	8518.30.40	- - 유선전화 핸드세트	0%	E0
		- - 그 밖의 마이크로폰/스피커가 결합된 세트		
8668	8518.30.51	- - - 소호 제 8517.12.00 호의 물품용	0%	E0
8669	8518.30.59	- - - 기타	0%	E0
8670	8518.30.90	- - 기타	0%	E0
	8518.40	- 가청주파증폭기		
8671	8518.40.20	- - 유선전화 중계기	0%	E0
8672	8518.40.30	- - 유선전화를 제외한 전화중계기	0%	E0
8673	8518.40.40	- - 기타(입력 신호라인을 6 개 이상 가진 것으로, 용량 증폭기의 구성요소가 있는 것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인지에 상관없다)		
8674	8518.40.90	- - 기타	5%	E7
	8518.50	- 음향증폭세트		
8675	8518.50.10	- - 240 와트 이상의 동력을 가진 것	0%	E0
8676	8518.50.20	- - 기타[확성기를 가진 것으로 방송용에 적합한 것(전압정격이 50 볼트 이상 100 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E0
8677	8518.50.90	- - 기타	0%	E0
	8518.90	- 부분품		
8678	8518.90.10	- - 소호 제 8518.10.11 호, 제 8518.29.20 호, 제 8518.30.40 호나 제 8518.40.20 호의 물품의 것(인쇄회로조립품을 포함한다)	0%	E0
8679	8518.90.20	- - 소호 제 8518.40.40 호의 물품의 것	0%	E0
8680	8518.90.30	- - 소호 제 8518.21 호나 제 8518.22 호의 물품의 것	0%	E0
8681	8518.90.40	- - 소호 제 8518.29.90 호의 물품의 것	0%	E0
8682	8518.90.90	- - 기타	0%	E0
	85.19	**음성 녹음용이나 재생용 기기**		
	8519.20	- 코인・은행권・은행카드・토큰이나 그 밖의 지급 수단으로 작동하는 기기		
8683	8519.20.10	- - 코인이나 디스크 작동식 레코드 플레이어	0%	E0
8684	8519.20.90	- - 기타	0%	E0
8685	8519.30.00	- 턴 테이블(레코드 데크)	0%	E0
8686	8519.50.00	- 전화응답기	0%	E0
		- 그 밖의 기기		
	8519.81	- - 자기식・광학식이나 그 밖의 반도체 매체를 이용하는 기기		
8687	8519.81.10	- - - 포켓 사이즈형 카세트 레코더(치수가 170 밀리미터 x 100 밀리미터 x 45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688	8519.81.20	- - - 카세트 레코더(증폭기가 장착되어 있고, 하나 이상의 확성기가 있는 것으로 외부전원으로만 작동하는 것)	0%	E0
8689	8519.81.30	- - - 컴팩트 디스크 플레이어	0%	E0
		- - - 트랜스크라이빙 머신		
8690	8519.81.41	- - - - 영화용이나 방송용에 적합한 것	0%	E0
8691	8519.81.49	- - - - 기타	0%	E0
8692	8519.81.50	- - - 딕테이팅기(외부전원 없이는 작동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0%	E0
		- - - 음성 재생기를 갖춘 마그네틱 테이프 녹음기(디지털 오디오형으로 한정한다)		
8693	8519.81.61	- - - - 영화용이나 방송용에 적합한 것	0%	E0
8694	8519.81.69	- - - - 기타	0%	E0
		- - - 그 밖의 음성재생기(카세트형으로 한정한다)		
8695	8519.81.71	- - - - 영화용이나 방송용에 적합한 것	0%	E0
8696	8519.81.79	- - - - 기타	0%	E0
		- - - 기타		
8697	8519.81.91	- - - - 영화용이나 방송용에 적합한 것	5%	E7
8698	8519.81.99	- - - - 기타	5%	EX
	8519.89	- - 기타		
		- - - 영화용 음성 재생기		
8699	8519.89.11	- - - - 필름 폭이 16 밀리미터 미만인 것	0%	E0
8700	8519.89.12	- - - - 필름 폭이 16 밀리미터 이상인 것	0%	E0
8701	8519.89.20	- - - 레코드 플레이어(확성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0%	E0
8702	8519.89.30	- - - 영화용이나 방송용에 적합한 것	0%	E0
8703	8519.89.90	- - - 기타	0%	E0
	85.21	**영상기록용이나 재생용 기기(비디오튜너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521.10	- 마그네틱 테이프형		
8704	8521.10.10	- - 영화용이나 텔레비전 방송용의 것	0%	E0
8705	8521.10.90	- - 기타	0%	E0
	8521.90	- 기타		
		- - 레이저 디스크 플레이어		
8706	8521.90.11	- - - 영화용이나 텔레비전 방송용의 것	0%	E0
8707	8521.90.19	- - - 기타	0%	E0
		- - 기타		
8708	8521.90.91	- - - 영화용이나 텔레비전 방송용의 것	0%	E0
8709	8521.90.99	- - - 기타	0%	E0
	85.22	**제 8519 호나 제 8521 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		
8710	8522.10.00	- 픽업 카트리지	0%	E0
	8522.90	- 기타		
8711	8522.90.20	- - 인쇄회로판 조립품(전화응답기용)	0%	E0
8712	8522.90.30	- - 인쇄회로판 조립품(영화 음성기록기 또는 재생기용)	0%	E0
8713	8522.90.40	- - 오디오나 비디오 테입데크(tapedeck)와 컴팩트 디스크 기계장치	0%	E0
8714	8522.90.50	- - 오디오나 비디오 복제기 헤드· 마그네틱 유형, 마그네틱 이레이징 헤드와 로드	0%	E0
		- - 기타		
8715	8522.90.91	- - -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영화 음성기록이나 재생기용)	0%	E0
8716	8522.90.92	- - - 그 밖의 전화응답기의 부분품	0%	E0
8717	8522.90.93	- - -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소호 제 8519.81 호나 제 8521 호의 물품용)	0%	E0
8718	8522.90.99	- - - 기타	0%	E0
	85.23	**디스크·테이프·솔리드 스테이트(solid-state)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스마트카드와**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음성이나 그 밖의 현상의 기록용 기타 매체 [기록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디스크 제조용 매트릭스(matrices)와 마스터(master)를 포함하되, 제 37 류의 물품은 제외한다]		
		- 자기식 매체		
	8523.21	- - 마그네틱 스트라이프(magnetic stripe)를 갖춘 카드(기록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8719	8523.21.10	- - - 기록이 안 된 것	0%	E0
8720	8523.21.90	- - - 기타	0%	E0
	8523.29	- - 기타		
		- - - 폭이 4 밀리미터 이하인 자기 테이프류		
		- - - - 기록이 안 된 것		
8721	8523.29.11	- - - - - 컴퓨터 테이프	0%	E0
8722	8523.29.19	- - - - - 기타	0%	E0
		- - - - 기타		
8723	8523.29.21	- - - - - 비디오 테이프	0%	E0
8724	8523.29.29	- - - - - 기타	0%	E0
		- - - 폭이 4 밀리미터 초과 6.5 밀리미터 이하인 자기 테이프류		
		- - - - 기록이 안 된 것		
8725	8523.29.31	- - - - - 컴퓨터 테이프	0%	E0
8726	8523.29.33	- - - - - 비디오 테이프	0%	E0
8727	8523.29.39	- - - - - 기타	0%	E0
		- - - - 기타		
8728	8523.29.41	- - - - - 컴퓨터 테이프	0%	E0
8729	8523.29.42	- - - - - 영화용에 적합한 것	0%	E0
8730	8523.29.43	- - - - - 그 밖의 비디오 테이프	0%	E0
8731	8523.29.49	- - - - - 기타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 - - 폭이 6.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자기 테이프류		
		- - - - 기록이 안 된 것		
8732	8523.29.51	- - - - - 컴퓨터 테이프	0%	E0
8733	8523.29.52	- - - - - 비디오 테이프	0%	E0
8734	8523.29.59	- - - - - 기타	0%	E0
		- - - - 기타		
8735	8523.29.61	- - - - - 명령・데이타・음성 및 영상을 재생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영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독점적 포멧 저장(기록)미디어	0%	E0
8736	8523.29.62	- - - - - 영화용에 적합한 것	0%	E0
8737	8523.29.63	- - - - - 그 밖의 비디오 테이프	0%	E0
8738	8523.29.69	- - - - - 기타	0%	E0
		- - - 마그네틱 디스크		
		- - - - 기록이 안 된 것		
8739	8523.29.71	- - - - -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디스켓	0%	E0
8740	8523.29.79	- - - - - 기타	0%	E0
		- - - - 기타		
		- - - - - 음성 또는 영상을 제외한 현상 재생용의 것		
8741	8523.29.81	- - - - - - 컴퓨터 사용에 적합한 것	0%	E0
8742	8523.29.82	- - - - - - 기타	0%	E0
8743	8523.29.83	- - - - - 기타[명령・데이타・음성 및 영상을 재생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영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독점적 포멧 저장(기록)미디어	0%	E0
8744	8523.29.85	- - - - - 기타(뉴스・여행기・기술・과학 영화 및 그 밖의 다큐영화를 제외한 영사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영화를 수록한 것으로 한정한다)		
8745	8523.29.86	- - - - - 기타(영화용에 적합한 것)	0%	E0
8746	8523.29.89	- - - - - 기타	0%	E0
		- - - 기타		
		- - - - 기록이 안 된 것		
8747	8523.29.91	- - - - - 컴퓨터 사용에 적합한 것	0%	E0
8748	8523.29.92	- - - - - 기타	0%	E0
		- - - - 기타		
		- - - - - 음성 또는 영상을 제외한 현상 재생용의 것		
8749	8523.29.93	- - - - - - 컴퓨터 사용에 적합한 것	0%	E0
8750	8523.29.94	- - - - - - 기타	0%	E0
8751	8523.29.95	- - - - - 기타[명령·데이타·음성 및 영상을 재생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영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독점적 포멧 저장(기록)미디어	0%	E0
8752	8523.29.99	- - - - - 기타	0%	E0
		- 광학식 매체		
	8523.41	- - 기록이 안 된 것		
8753	8523.41.10	- - - 컴퓨터 사용에 적합한 것	0%	E0
8754	8523.41.90	- - - 기타	0%	E0
	8523.49	- - 기타		
		- - - 레이저 판독장치용 디스크		
8755	8523.49.11	- - - - 음성 또는 영상을 제외한 현상 재생용의 것	0%	E0
		- - - - 음성만을 재생하는 것		
8756	8523.49.12	- - - - - 교육용, 기술용, 과학용, 역사적이거나 문화적 디스크	0%	E0
8757	8523.49.13	- - - - - 기타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758	8523.49.14	- - - - 기타[명령·데이타·음성 및 영상을 재생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영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독점적 포멧 저장(기록)미디어	0%	E0
8759	8523.49.15	- - - - 기타(뉴스·여행기·기술·과학 영화 및 그 밖의 다큐영화를 제외한 영사 영화를 수록한 것으로 한정한다)	0%	E0
8760	8523.49.16	- - - - 기타(영화용에 적합한 것)	0%	E0
8761	8523.49.19	- - - - 기타	0%	E0
		- - - 기타		
8762	8523.49.91	- - - - 음성 또는 영상을 제외한 현상 재생용의 것	0%	E0
8763	8523.49.92	- - - - 음성만을 재생하는 것	0%	E0
8764	8523.49.93	- - - - 기타[명령·데이타·음성 및 영상을 재생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영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독점적 포멧 저장(기록)미디어	0%	E0
8765	8523.49.99	- - - - 기타	0%	E0
		- 반도체 매체		
	8523.51	- - 솔리드 스테이트(solid-state)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 - - 기록이 안 된 것		
8766	8523.51.11	- - - - 컴퓨터 사용에 적합한 것	0%	E0
8767	8523.51.19	- - - - 기타	0%	E0
		- - - 기타		
		- - - - 음성 또는 영상을 제외한 현상 재생용의 것		
8768	8523.51.21	- - - - - 컴퓨터 사용에 적합한 것	0%	E0
8769	8523.51.29	- - - - - 기타	0%	E0
8770	8523.51.30	- - - - 기타[명령·데이타·음성 및 영상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을 재생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영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독점적 포멧 저장(기록)미디어		
		- - - - 기타		
8771	8523.51.91	- - - - - 기타(뉴스·여행기·기술·과학 영화 및 그 밖의 다큐영화를 제외한 영사 영화를 수록한 것으로 한정한다)	0%	E0
8772	8523.51.92	- - - - - 기타(영화용에 적합한 것)	0%	E0
8773	8523.51.99	- - - - - 기타	0%	E0
8774	8523.52.00	- - 스마트카드	0%	E0
	8523.59	- - 기타		
8775	8523.59.10	- - - 프록시미티 카드(Proximity card)와 태그	0%	E0
		- - - 기타(기록이 안 된 것)		
8776	8523.59.21	- - - - 컴퓨터 사용에 적합한 것	0%	E0
8777	8523.59.29	- - - - 기타	0%	E0
		- - - 기타		
8778	8523.59.30	- - - - 음성 또는 영상을 제외한 현상 재생용의 것	0%	E0
8779	8523.59.40	- - - - 기타[명령·데이타·음성 및 영상을 재생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영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독점적 포멧 저장(기록)미디어	0%	E0
8780	8523.59.90	- - - - 기타	0%	E0
	8523.80	- 기타		
8781	8523.80.40	- - 축음기용 레코드판	0%	E0
		- - 기타(기록이 안 된 것)		
8782	8523.80.51	- - - 컴퓨터 사용에 적합한 것	0%	E0
8783	8523.80.59	- - - 기타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 - 기타		
8784	8523.80.91	- - - 음성 또는 영상을 제외한 현상 재생용의 것	0%	E0
8785	8523.80.92	- - - 기타[명령·데이타·음성 및 영상을 재생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영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독점적 포멧 저장(기록)미디어	0%	E0
8786	8523.80.99	- - - 기타	0%	E0
	85.25	**라디오 방송용이나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음성기록기기·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비디오카메라레코더**		
8787	8525.50.00	- 송신기기	0%	E0
8788	8525.60.00	-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	0%	E0
	8525.80	-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비디오카메라레코더		
8789	8525.80.10	- - 웹 카메라	0%	E0
		- - 비디오카메라레코더		
8790	8525.80.31	- - - 방송용의 것	5%	E7
8791	8525.80.39	- - - 기타	5%	E7
8792	8525.80.40	- - 텔레비전 카메라	0%	E0
		- - 그 밖의 디지털 카메라		
8793	8525.80.51	- - - 디지털 일안 반사식 카메라(DSLR)	0%	E0
8794	8525.80.59	- - - 기타	0%	E0
	85.26	**레이더기기·항행용 무선기기·무선원격조절기기**		
	8526.10	- 레이더기기		
8795	8526.10.10	- - 레이더 기기(지상에 설치된 것이나 민항기에 사용되는 것이나 항양선에 단독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796	8526.10.90	- - 기타	0%	E0
		- 기타		
	8526.91	- - 항행용 무선기기		
8797	8526.91.10	- - - 항행용 무선기기(민항기에 사용되는 것이나 항양선에 단독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E0
8798	8526.91.90	- - - 기타	0%	E0
8799	8526.92.00	- - 무선원격조절기기	0%	E0
	85.27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음성기록기기·재생기기, 시계가 동일한 하우징 내에 결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외부 전원 없이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8800	8527.12.00	- - 포켓사이즈형 라디오카세트플레이어	0%	E0
	8527.13	- - 그 밖의 기기(음성기록기기나 음성재생기기와 결합된 것으로 한정한다)		
8801	8527.13.10	- - - 휴대용	0%	E0
8802	8527.13.90	- - - 기타	0%	E0
	8527.19	- - 기타		
8803	8527.19.20	- - - 휴대용	5%	EX
8804	8527.19.90	- - - 기타	5%	EX
		- 라디오방송 수신용 기기(자동차용으로서 외부 전원 없이는 작동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8805	8527.21.00	- - 음성기록기기나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	5%	EX
8806	8527.29.00	- - 기타	5%	EX
		- 기타		
	8527.91	- - 음성기록기기나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		
8807	8527.91.10	- - - 휴대용	5%	E15
8808	8527.91.90	- - - 기타	5%	EX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527.92	- - 시계와 결합된 것(음성기록기기나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은 제외한다)		
8809	8527.92.20	- - - 주 작동식의 것	5%	EX
8810	8527.92.90	- - - 기타	5%	EX
	8527.99	- - 기타		
8811	8527.99.20	- - - 주 작동식의 것	0%	E0
8812	8527.99.90	- - - 기타	0%	E0
	85.28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음극선관 모니터		
8813	8528.42.00	- - 제 8471 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	0%	E0
	8528.49	- - 기타		
8814	8528.49.10	- - - 천연색	5%	EX
8815	8528.49.20	- - - 단색	0%	E0
		- 그 밖의 모니터		
8816	8528.52.00	- - 제 8471 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	0%	E0
	8528.59	- - 기타		
8817	8528.59.10	- - - 천연색	5%	E15
8818	8528.59.20	- - - 단색	0%	E0
		- 프로젝터(projector)		
8819	8528.62.00	- - 제 8471 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	0%	E0
	8528.69	- - 기타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820	8528.69.10	- - - 300 인치 이상(대각선측정) 스크린에 프로젝팅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	0%	E0
8821	8528.69.90	- - - 기타	0%	E0
		-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 또는 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8528.71	- - 영상디스플레이나 스크린을 갖추지 않은 것		
		- - - 통신 기능이 있는 셋 톱 박스		
8822	8528.71.11	- - - - 주 작동식의 것	5%	E15
8823	8528.71.19	- - - - 기타	5%	E15
		- - - 기타		
8824	8528.71.91	- - - - 주 작동식의 것	5%	E15
8825	8528.71.99	- - - - 기타	5%	E15
	8528.72	- - 기타(천연색으로 한정한다)		
8826	8528.72.10	- - - 배터리 작동식의 것	5%	EX
		- - - 기타		
8827	8528.72.91	- - - - 음극선관 방식	5%	E15
8828	8528.72.92	- - - - 액정 디바이스(엘시디)나 발광다이오드(엘이디) 및 그 밖의 평판디스플레이 유형	5%	EX
8829	8528.72.99	- - - - 기타	5%	EX
8830	8528.73.00	- - 기타(단색)	0%	E0
	85.29	**부분품(제 8525 호부터 제 8528 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8529.10	- 각종 안테나와 반사식 안테나, 그 부분품		
		- - 직접적인 방송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위한 파라볼라 안테나 반사판과 그 부분품		
8831	8529.10.21	- - - 텔레비전 수신용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832	8529.10.29	- - - 기타	0%	E0
8833	8529.10.30	- -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수신기용 망원경·실내 소형 안테나 및 쌍극 안테나	0%	E0
8834	8529.10.40	- - 안테나 필터와 분리기	0%	E0
8835	8529.10.60	- - 피드혼(도파관)	0%	E0
		- - 기타		
8836	8529.10.92	- - - 라디오 방송이나 텔레비전용의 송신기기에 사용되는 것	0%	E0
8837	8529.10.99	- - - 기타	0%	E0
	8529.90	- 기타		
8838	8529.90.20	- - 디코더(decoder)의 것	0%	E0
8839	8529.90.40	- - 디지털 카메라나 비디오 카메라 기록기의 것	0%	E0
		- - 그 밖의 조립된 인쇄회로판		
8840	8529.90.51	- - - 소호 제 8525.50 호나 제 8525.60 호의 물품용	0%	E0
8841	8529.90.52	- - - 소호 제 8527.13 호, 제 8527.19 호, 제 8527.21 호, 제 8527.29 호, 제 8527.91 호나 제 8527.99 호의 물품용	0%	E0
		- - - 제 8528 호의 물품용		
8842	8529.90.53	- - - - 평판디스플레이용	0%	E0
8843	8529.90.54	- - - - 기타(텔레비전 수신기용)	0%	E0
8844	8529.90.55	- - - - 기타	0%	E0
8845	8529.90.59	- - - 기타	0%	E0
		- - 기타		
8846	8529.90.91	- - - 텔레비전 수신기용	0%	E0
8847	8529.90.94	- - - 평판디스플레이용	0%	E0
8848	8529.90.99	- - - 기타	0%	E0
	85.30	**철도용·궤도용·도로용·내륙수로용·주차장용·항만용·공항용 전기식 신호기기·안**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전기기·교통관제기기(제 8608 호의 것은 제외한다)		
8849	8530.10.00	-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기	0%	E0
8850	8530.80.00	- 그 밖의 기기	0%	E0
8851	8530.90.00	- 부분품	0%	E0
	85.31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화재경보기). 다만, 제 8512 호나 제 8530 호의 것은 제외한다.**		
	8531.10	- 도난경보기나 화재경보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		
8852	8531.10.10	- - 도난경보기	0%	E0
8853	8531.10.20	- - 화재경보기	0%	E0
8854	8531.10.30	- - 연기 탐지기, 휴대용 개인용 알람(슈릴 알람)	0%	E0
8855	8531.10.90	- - 기타	0%	E0
8856	8531.20.00	- 액정 디바이스(엘시디)나 발광다이오드(엘이디)가 결합된 표시반	0%	E0
	8531.80	- 그 밖의 기기		
8857	8531.80.10	- - 전자 벨과 그 밖의 소리 신호용 기기	0%	E0
		- - 평판 디스플레이(전자 발광, 플라즈마 및 그 밖의 기술을 포함한다)		
8858	8531.80.21	- - - 진공 형광 디스플레이 패널	0%	E0
8859	8531.80.29	- - - 기타	0%	E0
8860	8531.80.90	- - 기타	0%	E0
	8531.90	- 부분품		
8861	8531.90.10	- - 소호 제 8531.20 호, 제 8531.80.21 호나 제 8531.80.29 호의 인쇄 배선 조립품을 포함하는 부분품	0%	E0
8862	8531.90.20	- - 도어벨이나 그 밖의 도어의 소리 신호용 기기의 것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863	8531.90.30	- - 그 밖의 벨이나 소리 신호용 기기	0%	E0
8864	8531.90.90	- - 기타	0%	E0
	85.32	**축전기[고정식·가변식·조정식(프리세트)으로 한정한다]**		
8865	8532.10.00	- 고정식 축전기로 50/60 헤르츠 회로에서 사용하고, 무효(無效)전력 용량이 0.5 킬로바르 이상인 것(전력용 축전기)	0%	E0
		- 그 밖의 고정식 축전기		
8866	8532.21.00	- - 탄탈륨의 것	0%	E0
8867	8532.22.00	- - 알루미늄 전해의 것	0%	E0
8868	8532.23.00	- - 세라믹 유전체의 것(단층)	0%	E0
8869	8532.24.00	- - 세라믹 유전체의 것(다층)	0%	E0
8870	8532.25.00	- - 종이나 플라스틱 유전체의 것	0%	E0
8871	8532.29.00	- - 기타	0%	E0
8872	8532.30.00	- 가변식이나 조정식(프리세트) 축전기	0%	E0
8873	8532.90.00	- 부분품	0%	E0
	85.33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rheostat)와 전위차계(potentiometer)를 포함하며, 전열용 저항체는 제외한다]**		
	8533.10	- 탄소피막형 고정식 저항기(콤퍼지션형이나 필름형으로 한정한다)		
8874	8533.10.10	- - 표면을 고정시킨 것	0%	E0
8875	8533.10.90	- - 기타	0%	E0
		- 그 밖의 고정식 저항기		
8876	8533.21.00	- - 용량이 20 와트 이하인 것	0%	E0
8877	8533.29.00	- - 기타	0%	E0
		- 권선(捲線) 가변저항기[가감저항기(rheostat)와 전위차계(potentiometer)를 포함한다]		
8878	8533.31.00	- - 용량이 20 와트 이하인 것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879	8533.39.00	- - 기타	0%	E0
8880	8533.40.00	- 그 밖의 가변저항기[가감저항기(rheostat)와 전위차계(potentiometer)를 포함한다]	0%	E0
8881	8533.90.00	- 부분품	0%	E0
	85.34	**인쇄회로**		
8882	8534.00.10	- 단면의 것	0%	E0
8883	8534.00.20	- 양면의 것	0%	E0
8884	8534.00.30	- 다층의 것	0%	E0
8885	8534.00.90	- 기타	0%	E0
	85.35	**전기회로의 개폐용 또는 보호용 또는 접속용 기기[예: 개폐기・퓨즈・피뢰기・전압제한기・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 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886	8535.10.00	- 퓨즈	0%	E0
		- 자동차단기		
	8535.21	- - 전압이 72.5 킬로볼트 미만인 것		
8887	8535.21.10	- - - 몰드 유형의 것	0%	E0
8888	8535.21.20	- - - 누전차단기	0%	E0
8889	8535.21.90	- - - 기타	0%	E0
	8535.29	- - 기타		
8890	8535.29.10	- - - 누전차단기	0%	E0
8891	8535.29.90	- - - 기타	0%	E0
	8535.30	- 격리용 개폐기와 회로단속용 개폐기		
		- - 전압이 1 킬로볼트 초과 40 킬로볼트 이하인 것에 적합한 것		
8892	8535.30.11	- - - 단로기(전압이 36 킬로볼트 미만인 것)	0%	E0
8893	8535.30.19	- - - 기타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894	8535.30.20	- - 전압이 66 킬로볼트 이상인 것	0%	E0
8895	8535.30.90	- - 기타	0%	E0
8896	8535.40.00	- 피뢰기・전압제한기와 서지(surge)억제기	0%	E0
	8535.90	- 기타		
8897	8535.90.10	- - 전기 공급이나 전력 변압기용 투관 조립품과 탭 전환기 조립품	0%	E0
8898	8535.90.20	- - 전동기 시동에 사용되는 전환스위치(change-over switche)	0%	E0
8899	8535.90.90	- - 기타	0%	E0
	85.36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 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 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		
	8536.10	- 퓨즈		
		- - 온도 퓨즈, 유리형 퓨즈		
8900	8536.10.11	- - - 전기팬용으로 적합한 것	0%	E0
8901	8536.10.12	- - - 기타(전류가 16 암페어 미만인 것)	0%	E0
8902	8536.10.13	- - - 차량용 퓨즈 블록	0%	E0
8903	8536.10.19	- - - 기타	0%	E0
		- - 기타		
8904	8536.10.91	- - - 전기팬용으로 적합한 것	0%	E0
8905	8536.10.92	- - - 기타(전류가 16 암페어 미만인 것)	0%	E0
8906	8536.10.93	- - - 차량용 퓨즈 블록	0%	E0
8907	8536.10.99	- - - 기타	0%	E0
	8536.20	- 자동차단기		
		- - 몰드 유형의 것		
8908	8536.20.11	- - - 전류가 16 암페어 미만인 것	0%	E0
8909	8536.20.12	- - - 전류가 16 암페어 이상 32 암페어 이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하인 것		
8910	8536.20.13	- - - 전류가 32 암페어 초과 1,000 암페어 이하인 것	0%	E0
8911	8536.20.19	- - - 기타	0%	E0
8912	8536.20.20	- - 제 8516 호의 전기가열식 가정용 기기에 부착되어 있는 것	0%	E0
		- - 기타		
8913	8536.20.91	- - - 전류가 16 암페어 미만인 것	0%	E0
8914	8536.20.99	- - - 기타	0%	E0
	8536.30	- 전기회로 보호용 그 밖의 기기		
8915	8536.30.10	- - 피뢰기	0%	E0
8916	8536.30.20	- - 무선장치나 전기팬에 사용되는 것	0%	E0
8917	8536.30.90	- - 기타	0%	E0
		- 계전기(繼電器)		
	8536.41	- - 전압이 60 볼트 이하인 것		
8918	8536.41.10	- - - 디지털 계전기	0%	E0
8919	8536.41.20	- - - 무선장비에 사용되는 것	0%	E0
8920	8536.41.30	- - - 전기팬에 사용되는 것	0%	E0
8921	8536.41.40	- - - 기타(전류가 16 암페어 미만인 것)	0%	E0
		- - - 기타		
8922	8536.41.91	- - - - 전압이 28 볼트 이하인 반도체 소자 또는 전기자석식 계전기	0%	E0
8923	8536.41.99	- - - - 기타	0%	E0
	8536.49	- - 기타		
8924	8536.49.10	- - - 디지털 계전기	0%	E0
8925	8536.49.90	- - - 기타	0%	E0
	8536.50	- 그 밖의 개폐기		
8926	8536.50.20	- - 과전류 및 잔류전류 자동 계폐기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 - 스토브와 레인지용 높은 인러시 스위치와 정류자, 마이크 스위치, 텔레비전 또는 무선 수신기용 전원 스위치, 전기팬용 스위치, 에어컨디셔닝 기계용 로터리·슬라이드·시이소 및 자기 스위치		
8927	8536.50.32	- - - 전기팬이나 라디오 장비에 적합한 것	0%	E0
8928	8536.50.33	- - - 기타(정격 전류 용량이 16 암페어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0%	E0
8929	8536.50.39	- - - 기타	0%	E0
8930	8536.50.40	- - 전기밭솥 또는 토스터-오븐용 소형 계폐기	0%	E0
		- - 교류(AC)방식의 전자 스위치(입출력 회로가 광학적으로 짝지워진 것으로 한정한다), 전자 스위치(온도보호용의 것을 포함하며 1,000 볼트 이하의 전압용 트랜지스터와 논리칩으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전기기계식 스냅동작방식의 스위치(11 암페어 이하로 한정한다)		
8931	8536.50.51	- - - 전류가 16 암페어 미만인 것	0%	E0
8932	8536.50.59	- - - 기타	0%	E0
		- - 기타[회로단속용 개폐기(전압이 500 볼트 이하이고 정격전류용량이 20 암페어 이하인 가정용 전기 와이어링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8933	8536.50.61	- - - 전류가 16 암페어 미만인 것	0%	E0
8934	8536.50.69	- - - 기타	0%	E0
		- - 기타		
8935	8536.50.92	- - - 전기팬에 적합한 것	0%	E0
8936	8536.50.95	- - - 기타[전동기 시동에 사용되는 전환스위치(change-over switch), 퓨즈 스위치]	0%	E0
8937	8536.50.99	- - - 기타	0%	E0
		- 램프홀더·플러그와 소켓		
	8536.61	- - 램프홀더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938	8536.61.10	- - - 컴팩트 램프나 할로겐 램프용	0%	E0
		- - - 기타		
8939	8536.61.91	- - - - 전류가 16 암페어 미만인 것	0%	E0
8940	8536.61.99	- - - - 기타	0%	E0
	8536.69	- - 기타		
		- - - 전화 플러그		
8941	8536.69.11	- - - - 전류가 16 암페어 미만인 것	0%	E0
8942	8536.69.19	- - - - 기타	0%	E0
		- - -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수신기를 위한 음성 / 비디오 소켓과 음극선관 소켓		
8943	8536.69.23	- - - - 전류가 1.5 암페어 이하인 것	0%	E0
8944	8536.69.24	- - - - 전류가 1.5 암페어 초과 16 암페어 미만인 것	0%	E0
8945	8536.69.29	- - - - 기타	0%	E0
		- - - 동축 케이블과 인쇄회로를 위한 소켓과 플러그		
8946	8536.69.32	- - - - 전류가 16 암페어 미만인 것	0%	E0
8947	8536.69.39	- - - - 기타	0%	E0
		- - - 기타		
8948	8536.69.92	- - - - 전류가 16 암페어 미만인 것	0%	E0
8949	8536.69.99	- - - - 기타	0%	E0
	8536.70	- 광섬유용・광섬유 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		
8950	8536.70.10	- - 도자제의 것	0%	E0
8951	8536.70.20	- - 구리의 것	0%	E0
8952	8536.70.90	- - 기타	0%	E0
	8536.90	- 그 밖의 기기		
		- - 선과 케이블의 접속용 구성품, 웨이퍼 프로버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953	8536.90.12	- - - 전류가 16 암페어 미만인 것	0%	E0
8954	8536.90.19	- - - 기타	0%	E0
		- - 접속함		
8955	8536.90.22	- - - 전류가 16 암페어 미만인 것	0%	E0
8956	8536.90.29	- - - 기타	0%	E0
		- - 핀, 동축 케이블용 커넥터와 어댑터가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잭 플러그, 단자로 구성되는 케이블 커넥터, 정류자		
8957	8536.90.32	- - - 전류가 16 암페어 미만인 것	0%	E0
8958	8536.90.39	- - - 기타	0%	E0
		- - 기타		
		- - - 전류가 16 암페어 미만인 것		
8959	8536.90.93	- - - - 전화기 패치패널	0%	E0
8960	8536.90.94	- - - - 기타	0%	E0
8961	8536.90.99	- - - 기타	0%	E0
	85.37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 8535 호나 제 8536 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 90 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 8517 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		
	8537.10	- 전압이 1,000 볼트 이하인 것		
		- - 배전반과 제어반		
8962	8537.10.11	- - - 분산제어시스템에 사용되는 제어반	0%	E0
8963	8537.10.12	- - - 프로그램 가능한 프로세서가 부착된 제어반	0%	E0
8964	8537.10.13	- - - 제 8415 호, 제 8418 호, 제 8450 호, 제 8508 호, 제 8509 호나 제 8516 호의 물품에 적합한 그 밖의 제어반	0%	E0
8965	8537.10.19	- - - 기타	0%	E0
8966	8537.10.20	- - 제 8471 호·제 8517 호나 제 8525 호의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배선판 (백 패널과 백 플레인을 포함한다)		
8967	8537.10.30	- - 반도체기기를 위한 다이(die)의 이송·취급 및 저장용 자동화 기계의 프로그램 가능한 로직 컨트롤러	0%	E0
		- - 기타		
8968	8537.10.91	- - - 무선장치나 전기팬에 사용되는 것	0%	E0
8969	8537.10.92	- - - 분산제어시스템에 적합한 것	0%	E0
8970	8537.10.99	- - - 기타	0%	E0
	8537.20	- 전압이 1,000 볼트를 초과하는 것		
		- - 배전반		
8971	8537.20.11	- - - 전압이 66 킬로볼트 이상인 전기 회로의 차단, 연결이나 보호용 전기 기기가 결합된 것	0%	E0
8972	8537.20.19	- - - 기타	0%	E0
		- - 제어반		
8973	8537.20.21	- - - 전압이 66 킬로볼트 이상인 전기 회로의 차단, 연결이나 보호용 전기 기기가 결합된 것	0%	E0
8974	8537.20.29	- - - 기타	0%	E0
8975	8537.20.90	- - 기타	0%	E0
	85.38	**부분품(제 8535 호·제 8536 호·제 8537 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8538.10	-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 8537 호의 물품용으로 한정하며, 이들 기기를 장착하여 조립한 것은 제외한다)		
		- - 전압이 1,000 볼트 이하인 것		
8976	8538.10.11	- - - 반도체기기를 위한 다이(die)의 이송·취급 및 저장용 자동화 기계의 프로그램 가능한 로직 컨트롤러의 부분품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977	8538.10.12	- - - 무선장비용의 것	0%	E0
8978	8538.10.19	- - - 기타	0%	E0
		- - 전압이 1,000 볼트를 초과하는 것		
8979	8538.10.21	- - - 반도체기기를 위한 다이(die)의 이송·취급 및 저장용 자동화 기계의 프로그램 가능한 로직 컨트롤러의 부분품	0%	E0
8980	8538.10.22	- - - 무선장비용의 것	0%	E0
8981	8538.10.29	- - - 기타	0%	E0
	8538.90	- 기타		
		- - 전압이 1,000 볼트 이하인 것		
8982	8538.90.11	- - - 전화 플러그의 인쇄 회로 조립품을 포함하는 부분품, 선과 케이블의 접속용 구성품, 웨이퍼 프로버	0%	E0
8983	8538.90.12	- - - 부분품(소호 제 8536.50.51 호, 제 8536.50.59 호, 제 8536.69.32 호, 제 8536.69.39 호, 제 8536.90.12 호나 제 8536.90.19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0%	E0
8984	8538.90.13	- - - 부분품(소호 제 8537.10.20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0%	E0
8985	8538.90.19	- - - 기타	0%	E0
8986	8538.90.20	- - 전압이 1,000 볼트를 초과하는 것	0%	E0
	85.39	**필라멘트램프나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닛(sealed beam lamp unit)과 자외선램프나 적외선램프를 포함한다], 아크램프, 발광다이오드(엘이디)램프**		
	8539.10	- 실드빔 램프 유닛(sealed beam lamp unit)		
8987	8539.10.10	- - 제 87 류의 자동차용	0%	E0
8988	8539.10.90	- - 기타	0%	E0
		- 그 밖의 필라멘트 램프(자외선램프나 적외선램프는 제외한다)		
	8539.21	- - 텅스텐 할로겐의 것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989	8539.21.20	- - - 의료장비용의 것	0%	E0
8990	8539.21.30	- - - 차량용의 것	0%	E0
8991	8539.21.40	- - - 그 밖의 반사형 전구	0%	E0
8992	8539.21.90	- - - 기타	0%	E0
	8539.22	- - 기타(전력이 200 와트 이하 전압이 100 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993	8539.22.20	- - - 의료장비용	0%	E0
		- - - 그 밖의 반사형 전구		
8994	8539.22.31	- - - - 장식 조명용의 것(전력이 60 와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E0
8995	8539.22.32	- - - - 장식 조명용의 것(전력이 60 와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E0
8996	8539.22.33	- - - - 기타(가정용)	0%	E0
8997	8539.22.39	- - - - 기타	0%	E0
		- - - 기타		
8998	8539.22.91	- - - - 장식 조명용의 것(전력이 60 와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E0
8999	8539.22.92	- - - - 장식 조명용의 것(전력이 60 와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E0
9000	8539.22.93	- - - - 기타(가정용)	0%	E0
9001	8539.22.99	- - - - 기타	0%	E0
	8539.29	- - 기타		
		- - - 의료장비용의 것		
9002	8539.29.11	- - - - 수술용 램프 전구	0%	E0
9003	8539.29.19	- - - - 기타	0%	E0
9004	8539.29.20	- - - 차량용의 것	0%	E0
9005	8539.29.30	- - - 그 밖의 반사형 전구	0%	E0
		- - - 섬광 전구, 2.25 볼트에 달하는 소형 표시형 전구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9006	8539.29.41	- - - - 의료기기용에 적합한 것	0%	E0
9007	8539.29.49	- - - - 기타	0%	E0
9008	8539.29.50	- - - 기타(전력이 200 와트 초과 300 와트 이하이며 전압이 100 볼트를 초과하는 것)	0%	E0
9009	8539.29.60	- - - 기타(전력이 200 와트 이하이고 전압이 100 볼트 이하인 것)	0%	E0
9010	8539.29.90	- - - 기타	0%	E0
		- 방전램프(자외선램프는 제외한다)		
	8539.31	- - 형광램프(열음극형으로 한정한다)		
9011	8539.31.10	- - - 소형 형광등 튜브	0%	E0
9012	8539.31.20	- - - 기타(그 밖의 형광등용 직선 튜브)	0%	E0
9013	8539.31.30	- - - 안정기 내장형 소형 형광등	0%	E0
9014	8539.31.90	- - - 기타	0%	E0
9015	8539.32.00	- - 수은램프나 나트륨증기 램프, 메탈 할라이드(metal halide) 램프	0%	E0
	8539.39	- - 기타		
9016	8539.39.10	- - - 소형 형광등 튜브	0%	E0
9017	8539.39.30	- - - 그 밖의 냉음극형 형광등	0%	E0
9018	8539.39.90	- - - 기타	0%	E0
		- 자외선램프나 적외선램프, 아크램프		
9019	8539.41.00	- - 아크램프	0%	E0
9020	8539.49.00	- - 기타	0%	E0
9021	8539.50.00	- 발광다이오드(엘이디)램프	0%	E0
	8539.90	- 부분품		
9022	8539.90.10	- - 형광등용 알루미늄 엔드캡(end cap), 백열등용 알루미늄 스크루 캡(screw cap)	0%	E0
9023	8539.90.20	- - 기타(승용차 램프에 적합한 것)	0%	E0
9024	8539.90.90	- - 기타	0%	E0
	85.40	**열전자관·냉음극관·광전관[예: 진공관·**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증기나 가스를 봉입한 관・수은아크정류관・음극선관・텔레비전용 촬상관(camera tube)]		
		- 텔레비전용 음극선관(영상 모니터용 음극선관을 포함한다)		
9025	8540.11.00	- - 천연색	0%	E0
9026	8540.12.00	- - 단색	0%	E0
9027	8540.20.00	- 텔레비전용 촬상관(camera tube), 영상변환관과 영상증강관(image intensifier), 그 밖의 광전관(photo-cathode tube)	0%	E0
	8540.40	- 데이터/그래픽 직시관(display tube)(단색), 데이터/그래픽 직시관(display tube)(천연색으로서 인광물질 도트화면 간격이 0.4 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9028	8540.40.10	- - 데이터/그래픽 직시관(천연색으로서 제8525 호 물품용의 것으로 한정한다)	0%	E0
9029	8540.40.90	- - 기타	0%	E0
9030	8540.60.00	- 그 밖의 음극선관	0%	E0
		- 마이크로웨이브관[예: 자전관(magnetron)・속도변조관(klystron)・진행파관(travelling wave tube)・카시노트론(carcinotron)]. 다만, 그리드(grid)제어관은 제외한다.		
9031	8540.71.00	- - 자전관(magnetron)	0%	E0
9032	8540.79.00	- - 기타	0%	E0
		- 그 밖의 관		
9033	8540.81.00	- - 수신관이나 증폭관	0%	E0
9034	8540.89.00	- - 기타	0%	E0
		- 부분품		
9035	8540.91.00	- - 음극선관의 것	0%	E0
	8540.99	- - 기타		
9036	8540.99.10	- - - 마이크로웨이브관의 것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9037	8540.99.90	- - - 기타	0%	E0
	85.41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엘이디),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9038	8541.10.00	- 다이오드(감광성 다이오드나 발광다이오드는 제외한다)	0%	E0
		- 트랜지스터(감광성 트랜지스터는 제외한다)		
9039	8541.21.00	- - 전력 낭비율이 1 와트 미만인 것	0%	E0
9040	8541.29.00	- - 기타	0%	E0
9041	8541.30.00	- 사이리스터(thyristor), 다이액(diac) 및 트라이액(triac)(감광성 디바이스는 제외한다)	0%	E0
	8541.40	-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와 발광다이오드(엘이디)		
9042	8541.40.10	- - 발광다이오드	0%	E0
		- - 광전자다이오드와 광트랜지스터를 포함하는 광전지		
9043	8541.40.21	- - - 광전지(조립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E0
9044	8541.40.22	- - - 광전지(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0%	E0
9045	8541.40.29	- - - 기타	0%	E0
9046	8541.40.90	- - 기타	0%	E0
9047	8541.50.00	- 그 밖의 반도체 디바이스	0%	E0
9048	8541.60.00	-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0%	E0
9049	8541.90.00	- 부분품	0%	E0
	85.42	**전자집적회로**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 전자집적회로		
9050	8542.31.00	- -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변환기·논리회로·증폭기·클록(clock) 및 타이밍(timing) 회로나 그 밖의 회로를 갖춘 것인지는 상관없다]	0%	E0
9051	8542.32.00	- - 메모리	0%	E0
9052	8542.33.00	- - 증폭기	0%	E0
9053	8542.39.00	- - 기타	0%	E0
9054	8542.90.00	- 부분품	0%	E0
	85.43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9055	8543.10.00	- 입자가속기	0%	E0
9056	8543.20.00	- 신호발생기	0%	E0
	8543.30	- 전기도금용·전기분해용·전기영동(泳動)용 기기		
9057	8543.30.20	- - 화학 또는 전기화학 용액의 투입식(immersion) 습식 프로세싱 기구(인쇄회로판/인쇄배선판의 물질을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되는지 여부는 상관없다)	0%	E0
9058	8543.30.90	- - 기타	0%	E0
	8543.70	- 그 밖의 기기		
9059	8543.70.10	- - 일렉트릭 펜스 에너자이저	0%	E0
9060	8543.70.20	- - 리모컨(무선원격조절기기는 제외한다)	0%	E0
9061	8543.70.30	- - 번역이나 사전 기능이 있는 전자 기기	0%	E0
9062	8543.70.40	- - 인쇄회로판/인쇄배선판 또는 인쇄 회로 조립품의 생산 중 먼지 제거 또는 정전하 제거용 장비, 인쇄회로판/인쇄배선판 또는 인쇄 회로 조립품 제조용 자외선에 의한 양생재(curing material)용 기계	0%	E0
9063	8543.70.90	- - 기타	0%	E0
	8543.90	- 부분품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9064	8543.90.10	- - 소호 제 8543.10 호나 제 8543.20 호의 물품의 것	0%	E0
9065	8543.90.20	- - 소호 제 8543.30.20 호의 물품의 것	0%	E0
9066	8543.90.30	- - 소호 제 8543.70.30 호의 물품의 것	0%	E0
9067	8543.90.40	- - 소호 제 8543.70.40 호의 물품의 것	0%	E0
9068	8543.90.90	- - 기타	0%	E0
	85.44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 권선(捲線)용 전선		
	8544.11	- - 구리로 만든 것		
9069	8544.11.20	- - - 종이, 섬유 또는 폴리(염화 비닐)로 외부가 도포되거나 피복된 것	0%	E0
9070	8544.11.30	- - - 래커로 외부 코팅한 것	0%	E0
9071	8544.11.40	- - - 에나멜로 외부 코팅한 것	0%	E0
9072	8544.11.90	- - - 기타	0%	E0
9073	8544.19.00	- - 기타	0%	E0
	8544.20	- 동축케이블과 그 밖의 동축 도체		
		- - 전압이 66 킬로볼트 이하인 절연 케이블(접속자가 부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9074	8544.20.11	- - - 고무나 플라스틱의 절연체	0%	E0
9075	8544.20.19	- - - 기타	0%	E0
		- - 커넥터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전압이 66 킬로볼트 이하인 절연 케이블		
9076	8544.20.21	- - - 고무나 플라스틱의 절연체	0%	E0
9077	8544.20.29	- - - 기타	0%	E0
		- - 전압이 66 킬로볼트를 초과하는 절연 케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이블(접속자가 부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9078	8544.20.31	- - - 고무나 플라스틱의 절연체	0%	E0
9079	8544.20.39	- - - 기타	0%	E0
		- - 커넥터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전압이 66 킬로볼트를 초과하는 절연 케이블		
9080	8544.20.41	- - - 고무나 플라스틱의 절연체	0%	E0
9081	8544.20.49	- - - 기타	0%	E0
	8544.30	-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그 밖의 와이어링 세트(자동차용・항공기용・선박용으로 한정한다)		
		- - 자동차용 와이어링 하네스		
		- - - 고무나 플라스틱의 절연체		
9082	8544.30.12	- - - - 제 8702 호, 제 8703 호, 제 8704 호 또는 제 8711 호 차량용의 것	0%	E0
9083	8544.30.13	- - - - 기타	0%	E0
		- - - 기타		
9084	8544.30.14	- - - - 제 8702 호, 제 8703 호, 제 8704 호 또는 제 8711 호 차량용의 것	0%	E0
9085	8544.30.19	- - - - 기타	0%	E0
		- - 기타		
9086	8544.30.91	- - - 고무나 플라스틱의 절연체	0%	E0
9087	8544.30.99	- - - 기타	0%	E0
		- 그 밖의 전기도체(전압이 1,000 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8544.42	- - 접속자가 부착된 것		
		- - - 전기통신용의 것(전압이 80 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9088	8544.42.11	- - - - 전화기, 전신과 무선 중계 케이블(해저용)	0%	E0
9089	8544.42.13	- - - - 기타(고무, 플라스틱 또는 종이로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절연된 것)		
9090	8544.42.19	- - - - 기타	0%	E0
		- - - 전기통신용의 것(전압이 80 볼트 초과 1,000 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9091	8544.42.21	- - - - 전화기, 전신과 무선 중계 케이블(해저용)	0%	E0
9092	8544.42.23	- - - - 기타(고무, 플라스틱 또는 종이로 절연된 것)	0%	E0
9093	8544.42.29	- - - - 기타	0%	E0
		- - - 배터리 케이블		
		- - - - 고무나 플라스틱의 절연체		
9094	8544.42.32	- - - - - 제 8702 호, 제 8703 호, 제 8704 호 또는 제 8711 호 차량용	0%	E0
9095	8544.42.33	- - - - - 기타	0%	E0
		- - - - 기타		
9096	8544.42.34	- - - - - 제 8702 호, 제 8703 호, 제 8704 호 또는 제 8711 호 차량용	0%	E0
9097	8544.42.39	- - - - - 기타	0%	E0
		- - - 기타		
9098	8544.42.94	- - - - 플라스틱으로 절연된 전기 케이블(코어지름이 5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E0
9099	8544.42.95	- - - - 플라스틱으로 절연된 전기 케이블(코어지름이 5 밀리미터 초과 19.5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E0
9100	8544.42.96	- - - - 그 밖의 전기 케이블(플라스틱으로 절연된 것)	0%	E0
9101	8544.42.97	- - - - 고무나 종이로 절연된 전기 케이블	0%	E0
9102	8544.42.98	- - - - 전선이 두 개 이상인 플랫데이터케이블	0%	E0
9103	8544.42.99	- - - - 기타	0%	E0
	8544.49	- - 기타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 - - 전기통신용의 것(전압이 80 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9104	8544.49.11	- - - - 전화기, 전신과 무선 중계 케이블(해저용)	0%	E0
9105	8544.49.13	- - - - 기타(고무, 플라스틱 또는 종이로 절연된 것)	0%	E0
9106	8544.49.19	- - - - 기타	0%	E0
		- - - 전기통신용이 아닌 것(전압이 80 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9107	8544.49.21	- - - - 자동차 와이어링 하네스의 제조에 사용되는 차폐된 선	0%	E0
		- - - - 기타		
9108	8544.49.22	- - - - - 플라스틱으로 절연된 전기 케이블(코어지름이 19.5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E0
9109	8544.49.23	- - - - - 그 밖의 전기 케이블(플라스틱으로 절연된 것)	0%	E0
9110	8544.49.24	- - - - - 기타(고무, 플라스틱 또는 종이로 절연된 것)	0%	E0
9111	8544.49.29	- - - - - 기타	0%	E0
		- - - 전기통신용의 것(전압이 80 볼트 초과 1,000 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9112	8544.49.31	- - - - 전화기, 전신과 무선 중계 케이블(해저용)	0%	E0
9113	8544.49.32	- - - - 기타(플라스틱으로 절연된 것)	0%	E0
9114	8544.49.39	- - - - 기타	0%	E0
		- - - 전기통신용이 아닌 것(전압이 80 볼트 초과 1,000 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9115	8544.49.41	- - - - 플라스틱으로 절연된 케이블	0%	E0
9116	8544.49.42	- - - - 기타(고무, 플라스틱 또는 종이로 절연된 것)	0%	E0
9117	8544.49.49	- - - - 기타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544.60	- 그 밖의 전기도체(전압이 1,000 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전압이 1 킬로볼트 초과 36 킬로볼트 이하인 것		
9118	8544.60.11	- - - 플라스틱으로 절연된 케이블(코어지름이 22.7 밀리미터 미만인 것)	0%	E0
9119	8544.60.12	- - - 기타(고무, 플라스틱 또는 종이로 절연된 것)	0%	E0
9120	8544.60.19	- - - 기타	0%	E0
		- - 전압이 36 킬로볼트 초과 66 킬로볼트 이하인 것		
9121	8544.60.21	- - - 플라스틱으로 절연된 케이블(코어지름이 22.7 밀리미터 미만인 것)	0%	E0
9122	8544.60.22	- - - 기타(고무, 플라스틱 또는 종이로 절연된 것)	0%	E0
9123	8544.60.29	- - - 기타	0%	E0
		- - 전압이 66 킬로볼트를 초과하는 것		
9124	8544.60.31	- - - 고무, 플라스틱 또는 종이로 절연된 것	8%	E5
9125	8544.60.39	- - - 기타	8%	E5
	8544.70	- 광섬유 케이블		
9126	8544.70.10	- - 전화기, 전신과 무선 중계 케이블(해저용)	0%	E0
9127	8544.70.90	- - 기타	0%	E0
	85.45	**탄소전극·탄소브러시·램프용 탄소·전지용 탄소와 그 밖의 흑연이나 탄소제품(전기용으로 한정하며, 금속이 함유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 전극		
9128	8545.11.00	- - 노(爐)용	0%	E0
9129	8545.19.00	- - 기타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9130	8545.20.00	- 브러시	0%	E0
9131	8545.90.00	- 기타	0%	E0
	85.46	**애자(어떤 재료라도 가능하다)**		
9132	8546.10.00	- 유리로 만든 것	0%	E0
	8546.20	- 도자제의 것		
9133	8546.20.10	- - 변압기 부싱 및 회로 차단기 절연체	0%	E0
9134	8546.20.90	- - 기타	0%	E0
9135	8546.90.00	- 기타	0%	E0
	85.47	**전기기기용으로서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절연용 물품(나선가공 소켓과 같이 단순히 조립을 위하여 주조 과정에서 소량의 금속이 주입된 것을 포함하며, 제 8546 호의 애자는 제외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전기용 도관(導管)과 그 연결구류(절연재료로 속을 댄 것으로 한정한다)**		
9136	8547.10.00	- 도자제의 절연용 물품	0%	E0
9137	8547.20.00	- 플라스틱으로 만든 절연용 물품	0%	E0
	8547.90	- 기타		
9138	8547.90.10	- - 전기용 도관과 그 연결구류[절연재료로 속을 댄 비금속(卑金屬)의 것으로 한정한다]	0%	E0
9139	8547.90.90	- - 기타	0%	E0
	85.48	**일차전지와 축전지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와 축전지, 기기의 전기식 부분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548.10	- 일차전지와 축전지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와 축전지		
		- - 리드 산 스크랩 축전지(드레인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9140	8548.10.13	- - - 높이가(터미널과 손잡이는 제외한다) 23 센티미터 이하인 6 볼트와 12 볼트의 축전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지		
9141	8548.10.19	- - - 기타	0%	E0
9142	8548.10.20	- - 웨이스트와 스크랩(주로 철을 포함한 것으로 한정한다)	0%	E0
9143	8548.10.30	- - 웨이스트와 스크랩(주로 구리를 포함한 것으로 한정한다)	0%	E0
		- - 기타		
9144	8548.10.91	- - - 일차전지의 것	0%	E0
9145	8548.10.92	- - - 항공기용 축전지의 것	0%	E0
9146	8548.10.99	- - - 기타	0%	E0
	8548.90	- 기타		
9147	8548.90.10	- - 광전도형 센서 요소, 전하 저장 콘덴서, 발광 다이오드의 광원, 박막 트랜지스터 매트릭스 및 문자 스캔이 가능한 스캐닝 콘덴서를 구성하는 밀착식 이미지 센서	0%	E0
9148	8548.90.20	- - 인쇄 회로 조립품(외부 커넥터용 조립품을 포함한다)	0%	E0
9149	8548.90.90	- - 기타	0%	E0
	86.01	**철도용 기관차(외부 전원이나 축전지로 주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9150	8601.10.00	- 외부 전원으로 주행하는 것	0%	E0
9151	8601.20.00	- 축전지로 주행하는 것	0%	E0
	86.02	**그 밖의 철도용 기관차와 탄수차(炭水車)**		
9152	8602.10.00	- 디젤 전기기관차	0%	E0
9153	8602.90.00	- 기타	0%	E0
	86.03	**자주식(自走式) 철도용이나 궤도용 객차와 화차(제 8604 호의 것은 제외한다)**		
9154	8603.10.00	- 외부 전원으로 주행하는 것	0%	E0
9155	8603.90.00	- 기타	0%	E0
9156	**8604.00.00**	**철도나 궤도의 유지용이나 보수용 차량[자주식(自走式)의 것인지에 상관없다][예: 공**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작차(workshop)·기중기차(crane)·밸러스트 템퍼(ballast tamper)·트랙라이너 (trackliner)·검사차 및 궤도검사차]		
9157	8605.00.00	철도용이나 궤도용 객차[자주식(自走式)은 제외한다], 수하물차·우편차와 그 밖의 철도용이나 궤도용 특수용도차[자주식(自走式)과 제 8604 호의 것은 제외한다]	0%	E0
	86.06	철도용이나 궤도용 화차[자주식(自走式)은 제외한다]		
9158	8606.10.00	- 탱크차와 이와 유사한 차	0%	E0
9159	8606.30.00	- 자기양하식(self-discharging) 화차(소호 제 8606.10 호의 것은 제외한다)	0%	E0
		- 기타		
9160	8606.91.00	- - 덮개가 있는 것으로서 밀폐되어 있는 것	0%	E0
9161	8606.92.00	- - 무개차로서 고정된 측면의 높이가 60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0%	E0
9162	8606.99.00	- - 기타	0%	E0
	86.07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나 차량의 부분품		
		- 보기(bogie)·비셀보기(bissel-bogie)·차축 및 차륜과 이들의 부분품		
9163	8607.11.00	- - 구동식 보기(bogie)와 비셀보기 (bissel-bogie)	0%	E0
9164	8607.12.00	- - 그 밖의 보기(bogie)와 비셀보기 (bissel-bogie)	0%	E0
9165	8607.19.00	- -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0%	E0
		-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9166	8607.21.00	- - 공기식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0%	E0
9167	8607.29.00	- - 기타	0%	E0
9168	8607.30.00	- 훅과 그 밖의 연결장치·완충장치와 이들의 부분품	0%	E0
		- 기타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9169	8607.91.00	- - 기관차용	0%	E0
9170	8607.99.00	- - 기타	0%	E0
	86.08	**철도나 궤도선로용 장치물, 철도·궤도·도로·내륙수로·주차장·항만·비행장에서 사용되는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 신호용·안전용·교통관제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		
9171	8608.00.20	- 전기기계식 기기	0%	E0
9172	8608.00.90	- 기타	0%	E0
	86.09	**컨테이너(액체운반용 컨테이너를 포함하며, 하나 이상의 운송수단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거나 구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9173	8609.00.10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	0%	E0
9174	8609.00.90	- 기타	0%	E0
	87.01	**트랙터(제 8709 호의 트랙터는 제외한다)**		
	8701.10	- 차축이 하나인 트랙터		
		- - 동력이 22.5 킬로와트 이하인 것(전기작동식인지에 상관없다)		
9175	8701.10.11	- - - 농업용	10%	EX
9176	8701.10.19	- - - 기타	6%	EX
		- - 기타		
9177	8701.10.91	- - - 농업용	10%	EX
9178	8701.10.99	- - - 기타	6%	EX
	8701.20	- 세미트레일러(semi-trailer) 견인용 도로주행식 트랙터		
9179	8701.20.10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0%	E0
		- - 기타		
9180	8701.20.91	- - - 신차	0%	E0
9181	8701.20.99	- - - 기타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9182	8701.30.00	- 무한궤도식 트랙터	0%	E0
		- 기타(엔진동력에 의한 것으로 한정한다)		
	8701.91	- - 엔진의 동력이 18 킬로와트 이하인 것		
9183	8701.91.10	- - - 농업용 트랙터	0%	E0
9184	8701.91.90	- - - 기타	0%	E0
	8701.92	- - 엔진의 동력이 18 킬로와트 초과 37 킬로와트 이하인 것		
9185	8701.92.10	- - - 농업용 트랙터	0%	E0
9186	8701.92.90	- - - 기타	0%	E0
	8701.93	- - 엔진의 동력이 37 킬로와트 초과 75 킬로와트 이하인 것		
9187	8701.93.10	- - - 농업용 트랙터	0%	E0
9188	8701.93.90	- - - 기타	0%	E0
	8701.94	- - 엔진의 동력이 75 킬로와트 초과 130 킬로와트 이하인 것		
9189	8701.94.10	- - - 농업용 트랙터	0%	E0
9190	8701.94.90	- - - 기타	0%	E0
	8701.95	- - 엔진의 동력이 130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9191	8701.95.10	- - - 농업용 트랙터	0%	E0
9192	8701.95.90	- - - 기타	0%	E0
	87.02	**10 인 이상(운전자를 포함한다) 수송용 자동차**		
	8702.10	-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만을 갖춘 것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9193	8702.10.10	- - - 승용자동차[스트레치 리무진을 포함하나 코치(coach), 버스, 미니버스나 밴은 제외한다]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 - - 코치, 버스 또는 미니버스		
9194	8702.10.41	- - - - 총중량이 6 톤 이상이고 18 톤 이하인 것	0%	E0
9195	8702.10.42	- - - - 총중량이 24 톤을 초과하는 것	0%	E0
9196	8702.10.49	- - - - 기타	0%	E0
9197	8702.10.50	- - - 기타	0%	E0
		- - 기타		
9198	8702.10.60	- - - 승용자동차[스트레치 리무진을 포함하나 코치(coach), 버스, 미니버스나 밴은 제외한다]	5%	EX
		- - - 기타(30 인 이상 수송용 및 공항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9199	8702.10.71	- - - - 총중량이 6 톤 이상이고 18 톤 이하인 것	5%	EX
9200	8702.10.72	- - - - 총중량이 24 톤을 초과하는 것	0%	E0
9201	8702.10.79	- - - - 기타	5%	E10
		- - - 그 밖의 코치, 버스 또는 미니버스		
9202	8702.10.81	- - - - 총중량이 6 톤 이상이고 18 톤 이하인 것	5%	EX
9203	8702.10.82	- - - - 총중량이 24 톤을 초과하는 것	0%	E0
9204	8702.10.89	- - - - 기타	5%	EX
		- - - 기타		
9205	8702.10.91	- - - - 총중량이 24 톤을 초과하는 것	5%	EX
9206	8702.10.99	- - - - 기타	5%	EX
	8702.20	-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9207	8702.20.10	- - - 승용자동차[스트레치 리무진을 포함하나 코치(coach), 버스, 미니버스나 밴은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제외한다]		
		- - - 기타(30 인 이상 수송용으로 한정한다)		
9208	8702.20.21	- - - - 총중량이 24 톤을 초과하는 것	0%	E0
9209	8702.20.29	- - - - 기타	0%	E0
		- - - 그 밖의 코치, 버스 또는 미니버스		
9210	8702.20.31	- - - - 총중량이 6 톤 이상이고 18 톤 이하인 것	0%	E0
9211	8702.20.32	- - - - 총중량이 24 톤을 초과하는 것	0%	E0
9212	8702.20.39	- - - - 기타	0%	E0
		- - - 기타		
9213	8702.20.41	- - - - 총중량이 24 톤을 초과하는 것	0%	E0
9214	8702.20.49	- - - - 기타	0%	E0
		- - 기타		
9215	8702.20.50	- - - 승용자동차[스트레치 리무진을 포함하나 코치(coach), 버스, 미니버스나 밴은 제외한다]	5%	EX
		- - - 기타(30 인 이상 수송용 및 공항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9216	8702.20.61	- - - - 총중량이 6 톤 이상이고 18 톤 이하인 것	5%	EX
9217	8702.20.62	- - - - 총중량이 24 톤을 초과하는 것	0%	E0
9218	8702.20.69	- - - - 기타	5%	E10
		- - - 그 밖의 코치, 버스 또는 미니버스		
9219	8702.20.71	- - - - 총중량이 6 톤 이상이고 18 톤 이하인 것	5%	EX
9220	8702.20.72	- - - - 총중량이 24 톤을 초과하는 것	0%	E0
9221	8702.20.79	- - - - 기타	5%	EX
		- - - 기타		
9222	8702.20.91	- - - - 총중량이 24 톤을 초과하는 것	5%	EX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9223	8702.20.99	- - - - 기타	5%	EX
	8702.30	- 불꽃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9224	8702.30.10	- - - 승용자동차[스트레치 리무진을 포함하나 코치(coach), 버스, 미니버스나 밴은 제외한다]	0%	E0
		- - - 기타(30인 이상의 수송용으로 한정한다)		
9225	8702.30.21	- - - - 총중량이 24톤을 초과하는 것	0%	E0
9226	8702.30.29	- - - - 기타	0%	E0
		- - - 그 밖의 코치, 버스 또는 미니버스		
9227	8702.30.31	- - - - 총중량이 24톤을 초과하는 것	0%	E0
9228	8702.30.39	- - - - 기타	0%	E0
		- - - 기타		
9229	8702.30.41	- - - - 총중량이 24톤을 초과하는 것	0%	E0
9230	8702.30.49	- - - - 기타	0%	E0
		- - 기타		
9231	8702.30.50	- - - 승용자동차[스트레치 리무진을 포함하나 코치(coach), 버스, 미니버스나 밴은 제외한다]	0%	E0
		- - - 기타(30인 이상 수송용 및 공항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9232	8702.30.61	- - - - 총중량이 24톤을 초과하는 것	0%	E0
9233	8702.30.69	- - - - 기타	0%	E0
		- - - 그 밖의 코치, 버스 또는 미니버스		
9234	8702.30.71	- - - - 총중량이 24톤을 초과하는 것	0%	E0
9235	8702.30.79	- - - - 기타	0%	E0
		- - - 기타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9236	8702.30.91	- - - - 총중량이 24 톤을 초과하는 것	0%	E0
9237	8702.30.99	- - - - 기타	0%	E0
	8702.40	- 추진용 전동기만 갖춘 것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9238	8702.40.10	- - - 승용자동차[스트레치 리무진을 포함하나 코치(coach), 버스, 미니버스나 밴은 제외한다]	0%	E0
		- - - 기타(30 인 이상 수송용으로 한정한다)		
9239	8702.40.21	- - - - 총중량이 24 톤을 초과하는 것	0%	E0
9240	8702.40.29	- - - - 기타	0%	E0
		- - - 그 밖의 코치, 버스 또는 미니버스		
9241	8702.40.31	- - - - 총중량이 24 톤을 초과하는 것	0%	E0
9242	8702.40.39	- - - - 기타	0%	E0
		- - - 기타		
9243	8702.40.41	- - - - 총중량이 24 톤을 초과하는 것	0%	E0
9244	8702.40.49	- - - - 기타	0%	E0
		- - 기타		
9245	8702.40.50	- - - 승용자동차[스트레치 리무진을 포함하나 코치(coach), 버스, 미니버스나 밴은 제외한다]	0%	E0
		- - - 기타(30 인 이상 수송용 및 공항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9246	8702.40.61	- - - - 총중량이 24 톤을 초과하는 것	0%	E0
9247	8702.40.69	- - - - 기타	0%	E0
		- - - 그 밖의 코치, 버스 또는 미니버스		
9248	8702.40.71	- - - - 총중량이 24 톤을 초과하는 것	0%	E0
9249	8702.40.79	- - - - 기타	0%	E0
		- - - 기타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9250	8702.40.91	- - - - 총중량이 24 톤을 초과하는 것	0%	E0
9251	8702.40.99	- - - - 기타	0%	E0
	8702.90	- 기타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9252	8702.90.10	- - - 승용자동차[스트레치 리무진을 포함하나 코치(coach), 버스, 미니버스나 밴은 제외한다]	0%	E0
		- - - 코치, 버스 또는 미니버스(30 인 이상 수송용으로 한정한다)		
9253	8702.90.21	- - - - 총중량이 24 톤을 초과하는 것	0%	E0
9254	8702.90.29	- - - - 기타	0%	E0
		- - - 그 밖의 코치, 버스 또는 미니버스		
9255	8702.90.31	- - - - 총중량이 24 톤을 초과하는 것	0%	E0
9256	8702.90.32	- - - - 기타	0%	E0
9257	8702.90.33	- - - 기타(총중량이 24 톤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E0
9258	8702.90.39	- - - 기타	0%	E0
		- - 기타		
9259	8702.90.40	- - - 승용자동차[스트레치 리무진을 포함하나 코치(coach), 버스, 미니버스나 밴은 제외한다]	0%	E0
		- - - 코치, 버스 또는 미니버스(30 인 이상 수송용 및 공항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9260	8702.90.51	- - - - 총중량이 24 톤을 초과하는 것	0%	E0
9261	8702.90.59	- - - - 기타	0%	E0
		- - - 그 밖의 코치, 버스 또는 미니버스(30 인 이상 수송용으로 한정한다)		
9262	8702.90.61	- - - - 총중량이 24 톤을 초과하는 것	0%	E0
9263	8702.90.69	- - - - 기타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 - - 그 밖의 코치, 버스 또는 미니버스		
9264	8702.90.71	- - - - 총중량이 24 톤 이하인 것	0%	E0
9265	8702.90.79	- - - - 기타	0%	E0
9266	8702.90.80	- - - 기타(총중량이 24 톤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E0
9267	8702.90.90	- - - 기타	0%	E0
	87.03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 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제 8702 호의 것은 제외하며, 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8703.10	- 설상(雪上)주행용 차량, 골프용 차와 이와 유사한 차량		
9268	8703.10.10	- - 골프용 차(골프 버기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차량	0%	E0
9269	8703.10.90	- - 기타	0%	E0
		-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만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8703.21	- - 실린더용량이 1,000 시시 이하인 것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9270	8703.21.11	- - - - 고카트(Go-cart)	0%	E0
9271	8703.21.12	- - - - 전지형(全地形) 만능차(ATV)	0%	E0
9272	8703.21.13	- - - - 구급차	0%	E0
9273	8703.21.14	- - - - 모터홈(motor-home)	0%	E0
9274	8703.21.15	- - - - 승용차(Sedan)	0%	E0
		- - - - 그 밖의 승용자동차(스테이션 왜건과 스포츠카를 포함하며, 밴은 제외한다)		
9275	8703.21.21	- - - - - 사륜 구동식의 것	0%	E0
9276	8703.21.29	- - - - - 기타	0%	E0
9277	8703.21.30	- - - - 기타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 - - 기타		
9278	8703.21.41	- - - - 고카트(Go-cart)	0%	E0
9279	8703.21.42	- - - - 전지형(全地形) 만능차(ATV)	5%	E10
9280	8703.21.43	- - - - 구급차	5%	EX
9281	8703.21.44	- - - - 모터홈(motor-home)	5%	EX
9282	8703.21.45	- - - - 승용차(Sedan)	5%	EX
		- - - - 그 밖의 승용자동차(스테이션 왜건과 스포츠카를 포함하며, 밴은 제외한다)		
9283	8703.21.51	- - - - - 사륜 구동식의 것	5%	EX
9284	8703.21.59	- - - - - 기타	5%	EX
9285	8703.21.90	- - - - 기타	5%	EX
	8703.22	- - 실린더용량이 1,000 시시 초과 1,500 시시 이하인 것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9286	8703.22.11	- - - - 고카트(Go-cart)	0%	E0
9287	8703.22.12	- - - - 전지형(全地形) 만능차(ATV)	0%	E0
9288	8703.22.13	- - - - 구급차	0%	E0
9289	8703.22.14	- - - - 영구차	0%	E0
9290	8703.22.15	- - - - 수인용차량	0%	E0
9291	8703.22.16	- - - - 모터홈(motor-home)	0%	E0
9292	8703.22.17	- - - - 승용차(Sedan)	0%	E0
		- - - - 그 밖의 승용자동차(스테이션 왜건과 스포츠카를 포함하며, 밴은 제외한다)		
9293	8703.22.21	- - - - - 사륜 구동식의 것	0%	E0
9294	8703.22.29	- - - - - 기타	0%	E0
9295	8703.22.30	- - - - 기타	0%	E0
		- - - 기타		
9296	8703.22.41	- - - - 고카트(Go-cart)	5%	E1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9297	8703.22.42	- - - - 전지형(全地形) 만능차(ATV)	5%	E10
9298	8703.22.43	- - - - 구급차	5%	EX
9299	8703.22.44	- - - - 영구차	5%	EX
9300	8703.22.45	- - - - 수인용차량	5%	EX
9301	8703.22.46	- - - - 모터홈(motor-home)	5%	E10
9302	8703.22.47	- - - - 승용차(Sedan)	5%	EX
		- - - - 그 밖의 승용자동차(스테이션 왜건과 스포츠카를 포함하며, 밴은 제외한다)		
9303	8703.22.51	- - - - - 사륜 구동식의 것	5%	EX
9304	8703.22.59	- - - - - 기타	5%	EX
9305	8703.22.90	- - - - 기타	5%	EX
	8703.23	- - 실린더용량이 1,500 시시 초과 3,000 시시 이하인 것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9306	8703.23.11	- - - - 구급차	0%	E0
9307	8703.23.12	- - - - 영구차	0%	E0
9308	8703.23.13	- - - - 수인용차량	0%	E0
9309	8703.23.14	- - - - 모터홈(motor-home)	5%	E10
		- - - - 세단형(sedan)		
9310	8703.23.21	- - - - - 실린더용량이 1,500 시시 초과하고 1,800 시시 이하인 것	0%	E0
9311	8703.23.22	- - - - - 실린더용량이 1,800 시시를 초과하고 2,000 시시 이하인 것	0%	E0
9312	8703.23.23	- - - - - 실린더용량이 2,000 시시를 초과하고 2,500 시시 이하인 것	0%	E0
9313	8703.23.24	- - - - - 실린더용량이 2,5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0%	E0
		- - - - 그 밖의 사륜구동 방식의 승용자동차(스테이션 왜건과 스포츠카를 포함하며,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밴은 제외한다)		
9314	8703.23.31	- - - - - 실린더용량이 1,500 시시를 초과하고 1,800 시시 이하인 것	0%	E0
9315	8703.23.32	- - - - - 실린더용량이 1,800 시시를 초과하고 2,000 시시 이하인 것	0%	E0
9316	8703.23.33	- - - - - 실린더용량이 2,000 시시를 초과하고 2,500 시시 이하인 것	0%	E0
9317	8703.23.34	- - - - - 실린더용량이 2,5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0%	E0
		- - - - 그 밖의 사륜구동 방식이 아닌 승용자동차(스테이션 왜건과 스포츠카를 포함하며, 밴은 제외한다)		
9318	8703.23.35	- - - - - 실린더용량이 1,500 시시를 초과하고 2,000 시시 이하인 것	0%	E0
9319	8703.23.36	- - - - - 실린더용량이 2,0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0%	E0
		- - - - 기타		
9320	8703.23.41	- - - - - 실린더용량이 1,500 시시를 초과하고 2,000 시시 이하인 것	0%	E0
9321	8703.23.42	- - - - - 실린더용량이 2,0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0%	E0
		- - - 기타		
9322	8703.23.51	- - - - 구급차	0%	E0
9323	8703.23.52	- - - - 영구차	0%	E0
9324	8703.23.53	- - - - 수인용차량	0%	E0
9325	8703.23.54	- - - - 모터홈(motor-home)	5%	E10
		- - - - 세단형(sedan)		
9326	8703.23.55	- - - - - 실린더용량이 1,500 시시를 초과하고 1,800 시시 이하인 것	5%	EX
9327	8703.23.56	- - - - - 실린더용량이 1,800 시시를 초과하고 2,000 시시 이하인 것	5%	EX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9328	8703.23.57	- - - - - 실린더용량이 2,000 시시를 초과하고 2,500 시시 이하인 것	5%	EX
9329	8703.23.58	- - - - - 실린더용량이 2,5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5%	EX
		- - - - 그 밖의 사륜구동 방식의 승용자동차(스테이션 왜건과 스포츠카를 포함하며, 밴은 제외한다)		
9330	8703.23.61	- - - - - 실린더용량이 1,500 시시를 초과하고 1,800 시시 이하인 것	5%	EX
9331	8703.23.62	- - - - - 실린더용량이 1,800 시시를 초과하고 2,000 시시 이하인 것	5%	EX
9332	8703.23.63	- - - - - 실린더용량이 2,000 시시를 초과하고 2,500 시시 이하인 것	5%	EX
9333	8703.23.64	- - - - - 실린더용량이 2,5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5%	EX
		- - - - 그 밖의 사륜구동 방식이 아닌 승용자동차(스테이션 왜건과 스포츠카를 포함하며, 밴은 제외한다)		
9334	8703.23.65	- - - - - 실린더용량이 1,500 시시를 초과하고 1,800 시시 이하인 것	5%	EX
9335	8703.23.66	- - - - - 실린더용량이 1,800 시시를 초과하고 2,000 시시 이하인 것	5%	EX
9336	8703.23.67	- - - - - 실린더용량이 2,000 시시를 초과하고 2,500 시시 이하인 것	5%	EX
9337	8703.23.68	- - - - - 실린더용량이 2,5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5%	EX
		- - - - 기타		
9338	8703.23.71	- - - - - 실린더용량이 1,500 시시를 초과하고 1,800 시시 이하인 것	5%	EX
9339	8703.23.72	- - - - - 실린더용량이 1,800 시시를 초과하고 2,000 시시 이하인 것	29%	EX
9340	8703.23.73	- - - - - 실린더용량이 2,000 시시를 초과하고 2,500 시시 이하인 것	29%	EX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9341	8703.23.74	- - - - - 실린더용량이 2,5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29%	EX
	8703.24	- - 실린더용량이 3,0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9342	8703.24.11	- - - - 구급차	0%	E0
9343	8703.24.12	- - - - 영구차	0%	E0
9344	8703.24.13	- - - - 수인용차량	0%	E0
9345	8703.24.14	- - - - 모터홈(motor-home)	0%	E0
9346	8703.24.15	- - - - 승용차(Sedan)	0%	E0
		- - - - 그 밖의 승용자동차(스테이션 왜건과 스포츠카를 포함하며, 밴은 제외한다)		
9347	8703.24.21	- - - - - 사륜 구동식의 것	0%	E0
9348	8703.24.29	- - - - - 기타	0%	E0
9349	8703.24.30	- - - - 기타	0%	E0
		- - - 기타		
9350	8703.24.41	- - - - 구급차	0%	E0
9351	8703.24.42	- - - - 영구차	0%	E0
9352	8703.24.43	- - - - 수인용차량	0%	E0
9353	8703.24.44	- - - - 모터홈(motor-home)	0%	E0
		- - - - 세단형(sedan)		
9354	8703.24.45	- - - - - 사륜 구동식의 것	0%	E0
9355	8703.24.49	- - - - - 기타	0%	E0
		- - - - 그 밖의 승용자동차(스테이션 왜건과 스포츠카를 포함하며, 밴은 제외한다)		
9356	8703.24.51	- - - - - 사륜 구동식의 것	0%	E0
9357	8703.24.59	- - - - - 기타	0%	E0
		- - - - 기타		
9358	8703.24.61	- - - - - 사륜 구동식의 것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9359	8703.24.69	- - - - - 기타	0%	E0
		- 그밖의 차량[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만을 갖춘 것]		
	8703.31	- - 실린더용량이 1,500 시시 이하인 것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9360	8703.31.11	- - - - 고카트(Go-cart)	0%	E0
9361	8703.31.12	- - - - 전지형(全地形) 만능차(ATV)	0%	E0
9362	8703.31.13	- - - - 구급차	0%	E0
9363	8703.31.14	- - - - 영구차	0%	E0
9364	8703.31.15	- - - - 수인용차량	0%	E0
9365	8703.31.16	- - - - 모터홈(motor-home)	0%	E0
9366	8703.31.17	- - - - 승용차(Sedan)	0%	E0
		- - - - 그 밖의 승용자동차(스테이션 왜건과 스포츠카를 포함하며, 밴은 제외한다)		
9367	8703.31.21	- - - - - 사륜 구동식의 것	0%	E0
9368	8703.31.29	- - - - - 기타	0%	E0
9369	8703.31.30	- - - - 기타	0%	E0
		- - - 기타		
9370	8703.31.41	- - - - 고카트(Go-cart)	5%	E10
9371	8703.31.42	- - - - 전지형(全地形) 만능차(ATV)	5%	E10
9372	8703.31.43	- - - - 구급차	0%	E0
9373	8703.31.44	- - - - 영구차	5%	EX
9374	8703.31.45	- - - - 수인용차량	5%	EX
9375	8703.31.46	- - - - 모터홈(motor-home)	0%	E0
9376	8703.31.47	- - - - 승용차(Sedan)	5%	EX
		- - - - 그 밖의 승용자동차(스테이션 왜건과 스포츠카를 포함하며, 밴은 제외한다)		
9377	8703.31.51	- - - - - 사륜 구동식의 것	5%	EX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9378	8703.31.59	- - - - - 기타	5%	EX
9379	8703.31.90	- - - - 기타	5%	EX
	8703.32	- - 실린더용량이 1,500 시시 초과 2,500 시시 이하인 것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9380	8703.32.11	- - - - 구급차	0%	E0
9381	8703.32.12	- - - - 영구차	0%	E0
9382	8703.32.13	- - - - 수인용차량	0%	E0
9383	8703.32.14	- - - - 모터홈(motor-home)	5%	E10
		- - - - 세단형(sedan)		
9384	8703.32.21	- - - - - 실린더용량이 1,500 시시를 초과하고 1,800 시시 이하인 것	0%	E0
9385	8703.32.22	- - - - - 실린더용량이 1,800 시시를 초과하고 2,000 시시 이하인 것	0%	E0
9386	8703.32.23	- - - - - 실린더용량이 2,0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0%	E0
		- - - - 그 밖의 사륜 구동식의 승용자동차(스테이션 왜건과 스포츠카를 포함하며, 밴은 제외한다)		
9387	8703.32.31	- - - - - 실린더용량이 1,500 시시를 초과하고 1,800 시시 이하인 것	0%	E0
9388	8703.32.32	- - - - - 실린더용량이 1,800 시시를 초과하고 2,000 시시 이하인 것	0%	E0
9389	8703.32.33	- - - - - 실린더용량이 2,0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0%	E0
		- - - - 그 밖의 사륜 구동식이 아닌 승용자동차(스테이션 왜건과 스포츠카를 포함하며, 밴은 제외한다)		
9390	8703.32.34	- - - - - 실린더용량이 1,500 시시를 초과하고 1,800 시시 이하인 것	0%	E0
9391	8703.32.35	- - - - - 실린더용량이 1,800 시시를 초과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하고 2,000 시시 이하인 것		
9392	8703.32.36	- - - - - 실린더용량이 2,0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0%	E0
		- - - - 기타		
9393	8703.32.41	- - - - - 실린더용량이 1,500 시시를 초과하고 1,800 시시 이하인 것	0%	E0
9394	8703.32.42	- - - - - 실린더용량이 1,800 시시를 초과하고 2,000 시시 이하인 것	0%	E0
9395	8703.32.43	- - - - - 실린더용량이 2,0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0%	E0
		- - - 기타		
9396	8703.32.51	- - - - 구급차	0%	E0
9397	8703.32.52	- - - - 영구차	0%	E0
9398	8703.32.53	- - - - 수인용차량	0%	E0
9399	8703.32.54	- - - - 모터홈(motor-home)	5%	E10
		- - - - 세단형(sedan)		
9400	8703.32.61	- - - - - 실린더용량이 1,500 시시를 초과하고 1,800 시시 이하인 것	5%	EX
9401	8703.32.62	- - - - - 실린더용량이 1,800 시시를 초과하고 2,000 시시 이하인 것	5%	EX
9402	8703.32.63	- - - - - 실린더용량이 2,0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5%	EX
		- - - - 그 밖의 사륜 구동식의 승용자동차(스테이션 왜건과 스포츠카를 포함하며, 밴은 제외한다)		
9403	8703.32.71	- - - - - 실린더용량이 1,500 시시를 초과하고 1,800 시시 이하인 것	5%	EX
9404	8703.32.72	- - - - - 실린더용량이 1,800 시시를 초과하고 2,000 시시 이하인 것	5%	EX
9405	8703.32.73	- - - - - 실린더용량이 2,0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5%	EX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 - - - 그 밖의 사륜 구동식이 아닌 승용 자동차(스테이션 왜건과 스포츠카를 포함하며, 밴은 제외한다)		
9406	8703.32.74	- - - - - 실린더용량이 1,500 시시를 초과하고 1,800 시시 이하인 것	5%	EX
9407	8703.32.75	- - - - - 실린더용량이 1,800 시시를 초과하고 2,000 시시 이하인 것	5%	EX
9408	8703.32.76	- - - - - 실린더용량이 2,0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5%	EX
		- - - - 기타		
9409	8703.32.81	- - - - - 실린더용량이 1,500 시시를 초과하고 1,800 시시 이하인 것	5%	EX
9410	8703.32.82	- - - - - 실린더용량이 1,800 시시를 초과하고 2,000 시시 이하인 것	5%	EX
9411	8703.32.83	- - - - - 실린더용량이 2,0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5%	EX
	8703.33	- - 실린더용량이 2,5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9412	8703.33.11	- - - - 구급차	0%	E0
9413	8703.33.12	- - - - 영구차	0%	E0
9414	8703.33.13	- - - - 수인용차량	0%	E0
9415	8703.33.14	- - - - 모터홈(motor-home)	0%	E0
		- - - - 세단형(sedan)		
9416	8703.33.21	- - - - - 실린더용량이 2,500 시시를 초과하고 3,000 시시 이하인 것	0%	E0
9417	8703.33.22	- - - - - 실린더용량이 3,0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0%	E0
		- - - - 그 밖의 사륜 구동식의 승용자동차(스테이션 왜건과 스포츠카를 포함하며, 밴은 제외한다)		
9418	8703.33.31	- - - - - 실린더용량이 2,500 시시를 초과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하고 3,000 시시 이하인 것		
9419	8703.33.32	- - - - - 실린더용량이 3,0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0%	E0
		- - - - 그 밖의 사륜 구동식이 아닌 승용 자동차(스테이션 왜건과 스포츠카를 포함하며, 밴은 제외한다)		
9420	8703.33.33	- - - - - 실린더용량이 2,500 시시를 초과하고 3,000 시시 이하인 것	0%	E0
9421	8703.33.34	- - - - - 실린더용량이 3,0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0%	E0
9422	8703.33.40	- - - - 기타	0%	E0
		- - - 기타		
9423	8703.33.51	- - - - 구급차	0%	E0
9424	8703.33.52	- - - - 영구차	0%	E0
9425	8703.33.53	- - - - 수인용차량	0%	E0
9426	8703.33.54	- - - - 모터홈(motor-home)	0%	E0
		- - - - 세단형(sedan)		
9427	8703.33.61	- - - - - 실린더용량이 2,500 시시를 초과하고 3,000 시시 이하인 것	5%	EX
9428	8703.33.62	- - - - - 실린더용량이 3,0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0%	E0
		- - - - 그 밖의 사륜 구동식의 승용자동차(스테이션 왜건과 스포츠카를 포함하며, 밴은 제외한다)		
9429	8703.33.71	- - - - - 실린더용량이 2,500 시시를 초과하고 3,000 시시 이하인 것	5%	EX
9430	8703.33.72	- - - - - 실린더용량이 3,0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0%	E0
9431	8703.33.80	- - - - 그 밖의 사륜 구동식이 아닌 승용 자동차[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스포츠카를 포함하며, 밴(van)은 제외한다]	5%	EX
9432	8703.33.90	- - - - 기타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703.40	-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은 제외한다)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9433	8703.40.11	- - - 고카트(Go-cart)	0%	E0
9434	8703.40.12	- - - 전지형(全地形) 만능차(ATV)	0%	E0
9435	8703.40.13	- - - 구급차	0%	E0
9436	8703.40.14	- - - 영구차	0%	E0
9437	8703.40.15	- - - 수인용차량	0%	E0
		- - - 모터홈(motor-home)		
9438	8703.40.16	- - - - 실린더용량이 2,000 시시 이하인 것	5%	EX
9439	8703.40.17	- - - - 실린더용량이 2,0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0%	E0
		- - - 세단형(sedan)		
9440	8703.40.18	- - - - 실린더용량이 1,500 시시 이하인 것	0%	E0
9441	8703.40.19	- - - - 실린더용량이 1,500 시시를 초과하고 2,000 시시 이하인 것	0%	E0
9442	8703.40.21	- - - - 실린더용량이 2,0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0%	E0
		- - - 그 밖의 사륜 구동식의 승용자동차(스테이션 왜건과 스포츠카를 포함하며, 밴은 제외한다)		
9443	8703.40.22	- - - - 실린더용량이 1,500 시시 이하인 것	0%	E0
9444	8703.40.23	- - - - 실린더용량이 1,500 시시를 초과하고 2,000 시시 이하인 것	0%	E0
9445	8703.40.24	- - - - 실린더용량이 2,0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0%	E0
		- - - 그 밖의 사륜 구동식이 아닌 승용자동차(스테이션 왜건과 스포츠카를 포함하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며, 밴은 제외한다)		
9446	8703.40.25	- - - - 실린더용량이 2,000 시시 이하인 것	0%	E0
9447	8703.40.26	- - - - 실린더용량이 2,0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0%	E0
		- - - 기타		
9448	8703.40.27	- - - - 실린더용량이 2,000 시시 이하인 것	0%	E0
9449	8703.40.28	- - - - 실린더용량이 2,0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0%	E0
		- - 기타		
9450	8703.40.31	- - - 고카트(Go-cart)	5%	E10
		- - - 전지형(全地形) 만능차(ATV)		
9451	8703.40.32	- - - - 실린더용량이 1,000 시시 이하인 것	5%	E10
9452	8703.40.33	- - - - 실린더용량이 1,0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5%	E10
		- - - 구급차		
9453	8703.40.34	- - - - 실린더용량이 1,000 시시를 초과하고 1,500 시시 이하인 것	5%	E10
9454	8703.40.35	- - - - 실린더용량이 1,500 시시를 초과하고 3,000 시시 이하인 것	0%	E0
9455	8703.40.36	- - - - 기타	0%	E0
		- - - 영구차		
9456	8703.40.41	- - - - 실린더용량이 1,000 시시 이하인 것	5%	EX
9457	8703.40.42	- - - - 실린더용량이 1,000 시시를 초과하고 1,500 시시 이하인 것	5%	EX
9458	8703.40.43	- - - - 실린더용량이 1,500 시시를 초과하고 1,800 시시 이하인 것	0%	E0
9459	8703.40.44	- - - - 실린더용량이 1,800 시시를 초과하고 2,000 시시 이하인 것	0%	E0
9460	8703.40.45	- - - - 실린더용량이 2,000 시시를 초과하고 2,500 시시 이하인 것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9461	8703.40.46	- - - - 실린더용량이 2,500 시시를 초과하고 3,000 시시 이하인 것	0%	E0
9462	8703.40.47	- - - - 실린더용량이 3,0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0%	E0
		- - - 수인용차량		
9463	8703.40.51	- - - - 실린더용량이 1,000 시시 이하인 것	5%	EX
9464	8703.40.52	- - - - 실린더용량이 1,000 시시를 초과하고 1,500 시시 이하인 것	5%	EX
9465	8703.40.53	- - - - 실린더용량이 1,500 시시를 초과하고 1,800 시시 이하인 것	0%	E0
9466	8703.40.54	- - - - 실린더용량이 1,800 시시를 초과하고 3,000 시시 이하인 것	0%	E0
9467	8703.40.55	- - - - 실린더용량이 3,0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0%	E0
		- - - 모터홈(motor-home)		
9468	8703.40.56	- - - - 실린더용량이 1,500 시시 이하인 것	5%	E10
9469	8703.40.57	- - - - 실린더용량이 1,500 시시를 초과하고 2,000 시시 이하인 것	5%	E10
9470	8703.40.58	- - - - 실린더용량이 2,0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5%	E10
		- - - 세단형(sedan)		
9471	8703.40.61	- - - - 실린더용량이 1,000 시시 이하인 것	5%	EX
9472	8703.40.62	- - - - 실린더용량이 1,000 시시를 초과하고 1,500 시시 이하인 것	5%	EX
9473	8703.40.63	- - - - 실린더용량이 1,500 시시를 초과하고 1,800 시시 이하인 것	5%	EX
9474	8703.40.64	- - - - 실린더용량이 1,800 시시를 초과하고 2,000 시시 이하인 것	5%	EX
9475	8703.40.65	- - - - 실린더용량이 2,000 시시를 초과하고 2,500 시시 이하인 것	5%	EX
9476	8703.40.66	- - - - 실린더용량이 2,500 시시를 초과하고 3,000 시시 이하인 것	5%	EX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9477	8703.40.67	- - - - 실린더용량이 3,000 시시를 초과하는 것(사륜 구동식의 것)	0%	E0
9478	8703.40.68	- - - - 실린더용량이 3,000 시시를 초과하는 것(사륜 구동식이 아닌 것)	0%	E0
		- - - 그 밖의 사륜 구동식의 승용자동차(스테이션 왜건과 스포츠카를 포함하며, 밴은 제외한다)		
9479	8703.40.71	- - - - 실린더용량이 1,000 시시 이하인 것	5%	EX
9480	8703.40.72	- - - - 실린더용량이 1,000 시시를 초과하고 1,500 시시 이하인 것	5%	EX
9481	8703.40.73	- - - - 실린더용량이 1,500 시시를 초과하고 1,800 시시 이하인 것	5%	EX
9482	8703.40.74	- - - - 실린더용량이 1,800 시시를 초과하고 2,000 시시 이하인 것	5%	EX
9483	8703.40.75	- - - - 실린더용량이 2,000 시시를 초과하고 2,500 시시 이하인 것	5%	EX
9484	8703.40.76	- - - - 실린더용량이 2,500 시시를 초과하고 3,000 시시 이하인 것	5%	EX
9485	8703.40.77	- - - - 실린더용량이 3,0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0%	E0
		- - - 그 밖의 사륜 구동식이 아닌 승용자동차(스테이션 왜건과 스포츠카를 포함하며, 밴은 제외한다)		
9486	8703.40.81	- - - - 실린더용량이 1,000 시시 이하인 것	5%	EX
9487	8703.40.82	- - - - 실린더용량이 1,000 시시를 초과하고 1,500 시시 이하인 것	5%	EX
9488	8703.40.83	- - - - 실린더용량이 1,500 시시를 초과하고 1,800 시시 이하인 것	5%	EX
9489	8703.40.84	- - - - 실린더용량이 1,800 시시를 초과하고 2,000 시시 이하인 것	5%	EX
9490	8703.40.85	- - - - 실린더용량이 2,000 시시를 초과하고 2,500 시시 이하인 것	5%	EX
9491	8703.40.86	- - - - 실린더용량이 2,500 시시를 초과하	5%	EX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고 3,000 시시 이하인 것		
9492	8703.40.87	- - - - 실린더용량이 3,0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0%	E0
		- - - 기타		
9493	8703.40.91	- - - - 실린더용량이 1,000 시시 이하인 것	5%	EX
9494	8703.40.92	- - - - 실린더용량이 1,000 시시를 초과하고 1,500 시시 이하인 것	5%	EX
9495	8703.40.93	- - - - 실린더용량이 1,500 시시를 초과하고 1,800 시시 이하인 것	5%	EX
9496	8703.40.94	- - - - 실린더용량이 1,800 시시를 초과하고 2,000 시시 이하인 것	29%	EX
9497	8703.40.95	- - - - 실린더용량이 2,000 시시를 초과하고 2,500 시시 이하인 것	29%	EX
9498	8703.40.96	- - - - 실린더용량이 2,500 시시를 초과하고 3,000 시시 이하인 것	29%	EX
9499	8703.40.97	- - - - 실린더용량이 3,000 시시를 초과하는 것(사륜 구동식의 것)	0%	E0
9500	8703.40.98	- - - - 실린더용량이 3,000 시시를 초과하는 것(사륜 구동식이 아닌 것)	0%	E0
	8703.50	- 그 밖의 차량[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은 제외한다]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9501	8703.50.11	- - - 고카트(Go-cart)	0%	E0
9502	8703.50.12	- - - 전지형(全地形) 만능차(ATV)	0%	E0
9503	8703.50.13	- - - 구급차	0%	E0
9504	8703.50.14	- - - 영구차	0%	E0
9505	8703.50.15	- - - 수인용차량	0%	E0
		- - - 모터홈(motor-home)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9506	8703.50.16	- - - - 실린더용량이 2,000 시시 이하인 것	5%	E10
9507	8703.50.17	- - - - 실린더용량이 2,0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5%	E10
		- - - 세단형(sedan)		
9508	8703.50.18	- - - - 실린더용량이 1,500 시시 이하인 것	0%	E0
9509	8703.50.19	- - - - 실린더용량이 1,500 시시를 초과하고 2,000 시시 이하인 것	0%	E0
9510	8703.50.21	- - - - 실린더용량이 2,0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0%	E0
		- - - 그 밖의 사륜구동 방식의 승용자동차(스테이션 왜건과 스포츠카를 포함하며, 밴은 제외한다)		
9511	8703.50.22	- - - - 실린더용량이 1,500 시시 이하인 것	0%	E0
9512	8703.50.23	- - - - 실린더용량이 1,500 시시를 초과하고 2,000 시시 이하인 것	0%	E0
9513	8703.50.24	- - - - 실린더용량이 2,0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0%	E0
		- - - 그 밖의 사륜 구동식이 아닌 승용자동차(스테이션 왜건과 스포츠카를 포함하며, 밴은 제외한다)		
9514	8703.50.25	- - - - 실린더용량이 2,000 시시 이하인 것	0%	E0
9515	8703.50.26	- - - - 실린더용량이 2,0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0%	E0
		- - - 기타		
9516	8703.50.27	- - - - 실린더용량이 2,000 시시 이하인 것	0%	E0
9517	8703.50.28	- - - - 실린더용량이 2,0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0%	E0
		- - 기타		
9518	8703.50.31	- - - 고카트(Go-cart)	5%	E10
		- - - 전지형(全地形) 만능차(ATV)		
9519	8703.50.32	- - - - 실린더용량이 1,000 시시 이하인 것	5%	E1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9520	8703.50.33	- - - - 실린더용량이 1,0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5%	E10
		- - - 구급차		
9521	8703.50.34	- - - - 실린더용량이 1,500 시시 이하인 것	0%	E0
9522	8703.50.35	- - - - 실린더용량이 1,500 시시를 초과하고 2,500 시시 이하인 것	0%	E0
9523	8703.50.36	- - - - 실린더용량이 2,5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0%	E0
		- - - 영구차		
9524	8703.50.41	- - - - 실린더용량이 1,000 시시 이하인 것	5%	EX
9525	8703.50.42	- - - - 실린더용량이 1,000 시시를 초과하고 1,500 시시 이하인 것	5%	EX
9526	8703.50.43	- - - - 실린더용량이 1,500 시시를 초과하고 1,800 시시 이하인 것	0%	E0
9527	8703.50.44	- - - - 실린더용량이 1,800 시시를 초과하고 2,000 시시 이하인 것	0%	E0
9528	8703.50.45	- - - - 실린더용량이 2,000 시시를 초과하고 2,500 시시 이하인 것	0%	E0
9529	8703.50.46	- - - - 실린더용량이 2,500 시시를 초과하고 3,000 시시 이하인 것	0%	E0
9530	8703.50.47	- - - - 실린더용량이 3,0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0%	E0
		- - - 수인용차량		
9531	8703.50.51	- - - - 실린더용량이 1,000 시시 이하인 것	5%	EX
9532	8703.50.52	- - - - 실린더용량이 1,000 시시를 초과하고 1,500 시시 이하인 것	5%	EX
9533	8703.50.53	- - - - 실린더용량이 1,500 시시를 초과하고 1,800 시시 이하인 것	0%	E0
9534	8703.50.54	- - - - 실린더용량이 1,800 시시를 초과하고 2,500 시시 이하인 것	0%	E0
9535	8703.50.55	- - - - 실린더용량이 2,5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 - - 모터홈(motor-home)		
9536	8703.50.56	- - - - 실린더용량이 1,500 시시 이하인 것	0%	E0
9537	8703.50.57	- - - - 실린더용량이 1,500 시시를 초과하고 2,000 시시 이하인 것	5%	E10
9538	8703.50.58	- - - - 실린더용량이 2,0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5%	E10
		- - - 세단형(sedan)		
9539	8703.50.61	- - - - 실린더용량이 1,000 시시 이하인 것	5%	EX
9540	8703.50.62	- - - - 실린더용량이 1,000 시시를 초과하고 1,500 시시 이하인 것	5%	EX
9541	8703.50.63	- - - - 실린더용량이 1,500 시시를 초과하고 1,800 시시 이하인 것	5%	EX
9542	8703.50.64	- - - - 실린더용량이 1,800 시시를 초과하고 2,000 시시 이하인 것	5%	EX
9543	8703.50.65	- - - - 실린더용량이 2,000 시시를 초과하고 2,500 시시 이하인 것	5%	EX
9544	8703.50.66	- - - - 실린더용량이 2,500 시시를 초과하고 3,000 시시 이하인 것	5%	EX
9545	8703.50.67	- - - - 실린더용량이 3,0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0%	E0
		- - - 그 밖의 사륜 구동식의 승용자동차 (스테이션 왜건과 스포츠카를 포함하며, 밴은 제외한다)		
9546	8703.50.71	- - - - 실린더용량이 1,000 시시 이하인 것	5%	EX
9547	8703.50.72	- - - - 실린더용량이 1,000 시시를 초과하고 1,500 시시 이하인 것	5%	EX
9548	8703.50.73	- - - - 실린더용량이 1,500 시시를 초과하고 1,800 시시 이하인 것	5%	EX
9549	8703.50.74	- - - - 실린더용량이 1,800 시시를 초과하고 2,000 시시 이하인 것	5%	EX
9550	8703.50.75	- - - - 실린더용량이 2,000 시시를 초과하고 2,500 시시 이하인 것	5%	EX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9551	8703.50.76	- - - - 실린더용량이 2,500 시시를 초과하고 3,000 시시 이하인 것	5%	EX
9552	8703.50.77	- - - - 실린더용량이 3,0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0%	E0
		- - - 그 밖의 사륜 구동식이 아닌 승용자동차(스테이션 왜건과 스포츠카를 포함하며, 밴은 제외한다)		
9553	8703.50.81	- - - - 실린더용량이 1,000 시시 이하인 것	5%	EX
9554	8703.50.82	- - - - 실린더용량이 1,000 시시를 초과하고 1,500 시시 이하인 것	5%	EX
9555	8703.50.83	- - - - 실린더용량이 1,500 시시를 초과하고 1,800 시시 이하인 것	5%	EX
9556	8703.50.84	- - - - 실린더용량이 1,800 시시를 초과하고 2,000 시시 이하인 것	5%	EX
9557	8703.50.85	- - - - 실린더용량이 2,000 시시를 초과하고 2,500 시시 이하인 것	5%	EX
9558	8703.50.86	- - - - 실린더용량이 2,500 시시를 초과하고 3,000 시시 이하인 것	5%	EX
9559	8703.50.87	- - - - 실린더용량이 3,0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0%	E0
		- - - 기타		
9560	8703.50.91	- - - - 실린더용량이 1,000 시시 이하인 것	5%	EX
9561	8703.50.92	- - - - 실린더용량이 1,000 시시를 초과하고 1,500 시시 이하인 것	5%	EX
9562	8703.50.93	- - - - 실린더용량이 1,500 시시를 초과하고 1,800 시시 이하인 것	5%	EX
9563	8703.50.94	- - - - 실린더용량이 1,800 시시를 초과하고 2,000 시시 이하인 것	5%	EX
9564	8703.50.95	- - - - 실린더용량이 2,000 시시를 초과하고 2,500 시시 이하인 것	5%	EX
9565	8703.50.96	- - - - 실린더용량이 2,500 시시를 초과하고 3,000 시시 이하인 것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9566	8703.50.97	- - - - 실린더용량이 3,0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0%	E0
	8703.60	-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으로 한정한다)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9567	8703.60.11	- - - 고카트(Go-cart)	0%	E0
9568	8703.60.12	- - - 전지형(全地形) 만능차(ATV)	0%	E0
9569	8703.60.13	- - - 구급차	0%	E0
9570	8703.60.14	- - - 영구차	0%	E0
9571	8703.60.15	- - - 수인용차량	0%	E0
		- - - 모터홈(motor-home)		
9572	8703.60.16	- - - - 실린더용량이 2,000 시시 이하인 것	5%	E10
9573	8703.60.17	- - - - 실린더용량이 2,0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5%	E10
		- - - 세단형(sedan)		
9574	8703.60.18	- - - - 실린더용량이 1,500 시시 이하인 것	0%	E0
9575	8703.60.19	- - - - 실린더용량이 1,500 시시를 초과하고 2,000 시시 이하인 것	0%	E0
9576	8703.60.21	- - - - 실린더용량이 2,0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0%	E0
		- - - 그 밖의 사륜 구동식의 승용자동차(스테이션 왜건과 스포츠카를 포함하며, 밴은 제외한다)		
9577	8703.60.22	- - - - 실린더용량이 1,500 시시 이하인 것	0%	E0
9578	8703.60.23	- - - - 실린더용량이 1,500 시시를 초과하고 2,000 시시 이하인 것	0%	E0
9579	8703.60.24	- - - - 실린더용량이 2,0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 - - 그 밖의 사륜 구동식이 아닌 승용자동차(스테이션 왜건과 스포츠카를 포함하며, 밴은 제외한다)		
9580	8703.60.25	- - - - 실린더용량이 2,000 시시 이하인 것	0%	E0
9581	8703.60.26	- - - - 실린더용량이 2,0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0%	E0
		- - - 기타		
9582	8703.60.27	- - - - 실린더용량이 2,000 시시 이하인 것	0%	E0
9583	8703.60.28	- - - - 실린더용량이 2,0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0%	E0
		- - 기타		
9584	8703.60.31	- - - 고카트(Go-cart)	5%	E10
		- - - 전지형(全地形) 만능차(ATV)		
9585	8703.60.32	- - - - 실린더용량이 1,000 시시 이하인 것	5%	E10
9586	8703.60.33	- - - - 실린더용량이 1,0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5%	E10
		- - - 구급차		
9587	8703.60.34	- - - - 실린더용량이 1,000 시시를 초과하고 1,500 시시 이하인 것	5%	EX
9588	8703.60.35	- - - - 실린더용량이 1,500 시시를 초과하고 3,000 시시 이하인 것	0%	E0
9589	8703.60.36	- - - - 기타	0%	E0
		- - - 영구차		
9590	8703.60.41	- - - - 실린더용량이 1,000 시시 이하인 것	5%	EX
9591	8703.60.42	- - - - 실린더용량이 1,000 시시를 초과하고 1,500 시시 이하인 것	5%	EX
9592	8703.60.43	- - - - 실린더용량이 1,500 시시를 초과하고 1,800 시시 이하인 것	0%	E0
9593	8703.60.44	- - - - 실린더용량이 1,800 시시를 초과하고 2,000 시시 이하인 것	0%	E0
9594	8703.60.45	- - - - 실린더용량이 2,000 시시를 초과하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고 2,500 시시 이하인 것		
9595	8703.60.46	- - - - 실린더용량이 2,500 시시를 초과하고 3,000 시시 이하인 것	0%	E0
9596	8703.60.47	- - - - 실린더용량이 3,0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0%	E0
		- - - 수인용차량		
9597	8703.60.51	- - - - 실린더용량이 1,000 시시 이하인 것	5%	EX
9598	8703.60.52	- - - - 실린더용량이 1,000 시시를 초과하고 1,500 시시 이하인 것	5%	EX
9599	8703.60.53	- - - - 실린더용량이 1,500 시시를 초과하고 1,800 시시 이하인 것	0%	E0
9600	8703.60.54	- - - - 실린더용량이 1,800 시시를 초과하고 3,000 시시 이하인 것	0%	E0
9601	8703.60.55	- - - - 실린더용량이 3,0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0%	E0
		- - - 모터홈(motor-home)		
9602	8703.60.56	- - - - 실린더용량이 1,500 시시 이하인 것	5%	E10
9603	8703.60.57	- - - - 실린더용량이 1,500 시시를 초과하고 2,000 시시 이하인 것	5%	E10
9604	8703.60.58	- - - - 실린더용량이 2,0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5%	E10
		- - - 세단형(sedan)		
9605	8703.60.61	- - - - 실린더용량이 1,000 시시 이하인 것	5%	EX
9606	8703.60.62	- - - - 실린더용량이 1,000 시시를 초과하고 1,500 시시 이하인 것	5%	EX
9607	8703.60.63	- - - - 실린더용량이 1,500 시시를 초과하고 1,800 시시 이하인 것	5%	EX
9608	8703.60.64	- - - - 실린더용량이 1,800 시시를 초과하고 2,000 시시 이하인 것	5%	EX
9609	8703.60.65	- - - - 실린더용량이 2,000 시시를 초과하고 2,500 시시 이하인 것	5%	EX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9610	8703.60.66	- - - - 실린더용량이 2,500 시시를 초과하고 3,000 시시 이하인 것	5%	EX
9611	8703.60.67	- - - - 실린더용량이 3,000 시시를 초과하는 것(사륜 구동식의 것)	0%	E0
9612	8703.60.68	- - - - 실린더용량이 3,000 시시를 초과하는 것(사륜 구동식이 아닌 것)	0%	E0
		- - - 그 밖의 사륜 구동식의 승용자동차(스테이션 왜건과 스포츠카를 포함하며, 밴은 제외한다)		
9613	8703.60.71	- - - - 실린더용량이 1,000 시시 이하인 것	5%	EX
9614	8703.60.72	- - - - 실린더용량이 1,000 시시를 초과하고 1,500 시시 이하인 것	5%	EX
9615	8703.60.73	- - - - 실린더용량이 1,500 시시를 초과하고 1,800 시시 이하인 것	5%	EX
9616	8703.60.74	- - - - 실린더용량이 1,800 시시를 초과하고 2,000 시시 이하인 것	5%	EX
9617	8703.60.75	- - - - 실린더용량이 2,000 시시를 초과하고 2,500 시시 이하인 것	5%	EX
9618	8703.60.76	- - - - 실린더용량이 2,500 시시를 초과하고 3,000 시시 이하인 것	5%	EX
9619	8703.60.77	- - - - 실린더용량이 3,0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0%	E0
		- - - 그 밖의 사륜 구동식이 아닌 승용자동차(스테이션 왜건과 스포츠카를 포함하며, 밴은 제외한다)		
9620	8703.60.81	- - - - 실린더용량이 1,000 시시 이하인 것	5%	EX
9621	8703.60.82	- - - - 실린더용량이 1,000 시시를 초과하고 1,500 시시 이하인 것	5%	EX
9622	8703.60.83	- - - - 실린더용량이 1,500 시시를 초과하고 1,800 시시 이하인 것	5%	EX
9623	8703.60.84	- - - - 실린더용량이 1,800 시시를 초과하고 2,000 시시 이하인 것	5%	EX
9624	8703.60.85	- - - - 실린더용량이 2,000 시시를 초과하	5%	EX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고 2,500 시시 이하인 것		
9625	8703.60.86	- - - - 실린더용량이 2,500 시시를 초과하고 3,000 시시 이하인 것	5%	EX
9626	8703.60.87	- - - - 실린더용량이 3,0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0%	E0
		- - - 기타		
9627	8703.60.91	- - - - 실린더용량이 1,000 시시 이하인 것	5%	EX
9628	8703.60.92	- - - - 실린더용량이 1,000 시시를 초과하고 1,500 시시 이하인 것	5%	EX
9629	8703.60.93	- - - - 실린더용량이 1,500 시시를 초과하고 1,800 시시 이하인 것	5%	EX
9630	8703.60.94	- - - - 실린더용량이 1,800 시시를 초과하고 2,000 시시 이하인 것	29%	EX
9631	8703.60.95	- - - - 실린더용량이 2,000 시시를 초과하고 2,500 시시 이하인 것	29%	EX
9632	8703.60.96	- - - - 실린더용량이 2,500 시시를 초과하고 3,000 시시 이하인 것	29%	EX
9633	8703.60.97	- - - - 실린더용량이 3,000 시시를 초과하는 것(사륜 구동식의 것)	0%	E0
9634	8703.60.98	- - - - 실린더용량이 3,000 시시를 초과하는 것(사륜 구동식이 아닌 것)	0%	E0
	8703.70	- 그 밖의 차량[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으로 한정한다]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9635	8703.70.11	- - - 고카트(Go-cart)	0%	E0
9636	8703.70.12	- - - 전지형(全地形) 만능차(ATV)	0%	E0
9637	8703.70.13	- - - 구급차	0%	E0
9638	8703.70.14	- - - 영구차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9639	8703.70.15	- - - 수인용차량	0%	E0
		- - - 모터홈(motor-home)		
9640	8703.70.16	- - - - 실린더용량이 2,000 시시 이하인 것	5%	E10
9641	8703.70.17	- - - - 실린더용량이 2,0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5%	E10
		- - - 세단형(sedan)		
9642	8703.70.18	- - - - 실린더용량이 1,500 시시 이하인 것	0%	E0
9643	8703.70.19	- - - - 실린더용량이 1,500 시시를 초과하고 2,000 시시 이하인 것	0%	E0
9644	8703.70.21	- - - - 실린더용량이 2,0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0%	E0
		- - - 그 밖의 사륜 구동식의 승용자동차(스테이션 왜건과 스포츠카를 포함하며, 밴은 제외한다)		
9645	8703.70.22	- - - - 실린더용량이 1,500 시시 이하인 것	0%	E0
9646	8703.70.23	- - - - 실린더용량이 1,500 시시를 초과하고 2,000 시시 이하인 것	0%	E0
9647	8703.70.24	- - - - 실린더용량이 2,0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0%	E0
		- - - 그 밖의 사륜 구동식이 아닌 승용자동차(스테이션 왜건과 스포츠카를 포함하며, 밴은 제외한다)		
9648	8703.70.25	- - - - 실린더용량이 2,000 시시 이하인 것	0%	E0
9649	8703.70.26	- - - - 실린더용량이 2,0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0%	E0
		- - - 기타		
9650	8703.70.27	- - - - 실린더용량이 2,000 시시 이하인 것	0%	E0
9651	8703.70.28	- - - - 실린더용량이 2,0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0%	E0
		- - 기타		
9652	8703.70.31	- - - 고카트(Go-cart)	5%	E1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 - - 전지형(全地形) 만능차(ATV)		
9653	8703.70.32	- - - - 실린더용량이 1,000 시시 이하인 것	5%	E10
9654	8703.70.33	- - - - 실린더용량이 1,0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5%	E10
		- - - 구급차		
9655	8703.70.34	- - - - 실린더용량이 1,500 시시 이하인 것	0%	E0
9656	8703.70.35	- - - - 실린더용량이 1,500 시시를 초과하고 2,500 시시 이하인 것	0%	E0
9657	8703.70.36	- - - - 실린더용량이 2,5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0%	E0
		- - - 영구차		
9658	8703.70.41	- - - - 실린더용량이 1,000 시시 이하인 것	5%	EX
9659	8703.70.42	- - - - 실린더용량이 1,000 시시를 초과하고 1,500 시시 이하인 것	5%	EX
9660	8703.70.43	- - - - 실린더용량이 1,500 시시 초과 1,800 시시 이하인 것	0%	E0
9661	8703.70.44	- - - - 실린더용량이 1,800 시시를 초과하고 2,000 시시 이하인 것	0%	E0
9662	8703.70.45	- - - - 실린더용량이 2,000 시시를 초과하고 2,500 시시 이하인 것	0%	E0
9663	8703.70.46	- - - - 실린더용량이 2,500 시시를 초과하고 3,000 시시 이하인 것	0%	E0
9664	8703.70.47	- - - - 실린더용량이 3,0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0%	E0
		- - - 수인용차량		
9665	8703.70.51	- - - - 실린더용량이 1,000 시시 이하인 것	5%	EX
9666	8703.70.52	- - - - 실린더용량이 1,000 시시를 초과하고 1,500 시시 이하인 것	5%	EX
9667	8703.70.53	- - - - 실린더용량이 1,500 시시를 초과하고 1,800 시시 이하인 것	0%	E0
9668	8703.70.54	- - - - 실린더용량이 1,800 시시를 초과하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고 2,500 시시 이하인 것		
9669	8703.70.55	- - - - 실린더용량이 2,5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0%	E0
		- - - 모터홈(motor-home)		
9670	8703.70.56	- - - - 실린더용량이 1,500 시시 이하인 것	0%	E0
9671	8703.70.57	- - - - 실린더용량이 1,500 시시를 초과하고 2,000 시시 이하인 것	5%	E10
9672	8703.70.58	- - - - 실린더용량이 2,0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5%	E10
		- - - 세단형(sedan)		
9673	8703.70.61	- - - - 실린더용량이 1,000 시시 이하인 것	5%	EX
9674	8703.70.62	- - - - 실린더용량이 1,000 시시를 초과하고 1,500 시시 이하인 것	5%	EX
9675	8703.70.63	- - - - 실린더용량이 1,500 시시를 초과하고 1,800 시시 이하인 것	5%	EX
9676	8703.70.64	- - - - 실린더용량이 1,800 시시를 초과하고 2,000 시시 이하인 것	5%	EX
9677	8703.70.65	- - - - 실린더용량이 2,000 시시를 초과하고 2,500 시시 이하인 것	5%	EX
9678	8703.70.66	- - - - 실린더용량이 2,500 시시를 초과하고 3,000 시시 이하인 것	5%	EX
9679	8703.70.67	- - - - 실린더용량이 3,0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0%	E0
		- - - 그 밖의 사륜 구동식의 승용자동차 (스테이션 왜건과 스포츠카를 포함하며, 밴은 제외한다)		
9680	8703.70.71	- - - - 실린더용량이 1,000 시시 이하인 것	5%	EX
9681	8703.70.72	- - - - 실린더용량이 1,000 시시를 초과하고 1,500 시시 이하인 것	5%	EX
9682	8703.70.73	- - - - 실린더용량이 1,500 시시를 초과하고 1,800 시시 이하인 것	5%	EX
9683	8703.70.74	- - - - 실린더용량이 1,800 시시를 초과하	5%	EX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고 2,000 시시 이하인 것		
9684	8703.70.75	- - - - 실린더용량이 2,000 시시를 초과하고 2,500 시시 이하인 것	5%	EX
9685	8703.70.76	- - - - 실린더용량이 2,500 시시를 초과하고 3,000 시시 이하인 것	5%	EX
9686	8703.70.77	- - - - 실린더용량이 3,0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0%	E0
		- - - 그 밖의 사륜 구동식이 아닌 승용자동차(스테이션 왜건과 스포츠카를 포함하며, 밴은 제외한다)		
9687	8703.70.81	- - - - 실린더용량이 1,000 시시 이하인 것	5%	EX
9688	8703.70.82	- - - - 실린더용량이 1,000 시시를 초과하고 1,500 시시 이하인 것	5%	EX
9689	8703.70.83	- - - - 실린더용량이 1,500 시시를 초과하고 1,800 시시 이하인 것	5%	EX
9690	8703.70.84	- - - - 실린더용량이 1,800 시시를 초과하고 2,000 시시 이하인 것	5%	EX
9691	8703.70.85	- - - - 실린더용량이 2,000 시시를 초과하고 2,500 시시 이하인 것	5%	EX
9692	8703.70.86	- - - - 실린더용량이 2,500 시시를 초과하고 3,000 시시 이하인 것	5%	EX
9693	8703.70.87	- - - - 실린더용량이 3,0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0%	E0
		- - - 기타		
9694	8703.70.91	- - - - 실린더용량이 1,000 시시 이하인 것	5%	EX
9695	8703.70.92	- - - - 실린더용량이 1,000 시시를 초과하고 1,500 시시 이하인 것	5%	EX
9696	8703.70.93	- - - - 실린더용량이 1,500 시시를 초과하고 1,800 시시 이하인 것	5%	EX
9697	8703.70.94	- - - - 실린더용량이 1,800 시시를 초과하고 2,000 시시 이하인 것	5%	EX
9698	8703.70.95	- - - - 실린더용량이 2,000 시시를 초과하	5%	EX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고 2,500 시시 이하인 것		
9699	8703.70.96	- - - - 실린더용량이 2,500 시시를 초과하고 3,000 시시 이하인 것	0%	E0
9700	8703.70.97	- - - - 실린더용량이 3,0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0%	E0
	8703.80	- 그 밖의 차량(추진용 전동기만을 갖춘 것)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9701	8703.80.11	- - - 고카트(Go-cart)	0%	E0
9702	8703.80.12	- - - 전지형(全地形) 만능차(ATV)	0%	E0
9703	8703.80.13	- - - 구급차	0%	E0
9704	8703.80.14	- - - 영구차	0%	E0
9705	8703.80.15	- - - 수인용차량	0%	E0
9706	8703.80.16	- - - 모터홈(motor-home)	0%	E0
9707	8703.80.17	- - - 승용차(Sedan)	0%	E0
9708	8703.80.18	- - - 그 밖의 승용자동차(스테이션왜건과 스포츠카를 포함하며, 밴은 제외한다)	0%	E0
9709	8703.80.19	- - - 기타	0%	E0
		- - 기타		
9710	8703.80.91	- - - 고카트(Go-cart)	0%	E0
9711	8703.80.92	- - - 전지형(全地形) 만능차(ATV)	5%	E10
9712	8703.80.93	- - - 구급차	0%	E0
9713	8703.80.94	- - - 영구차	5%	EX
9714	8703.80.95	- - - 수인용차량	5%	EX
9715	8703.80.96	- - - 모터홈(motor-home)	5%	E10
9716	8703.80.97	- - - 승용차(Sedan)	5%	EX
9717	8703.80.98	- - - 그 밖의 승용자동차(스테이션왜건과 스포츠카를 포함하며, 밴은 제외한다)	5%	EX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9718	8703.80.99	- - - 기타	5%	EX
	8703.90	- 기타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9719	8703.90.11	- - - 고카트(Go-cart)	0%	E0
9720	8703.90.12	- - - 전지형(全地形) 만능차(ATV)	0%	E0
9721	8703.90.13	- - - 구급차	0%	E0
9722	8703.90.14	- - - 영구차	0%	E0
9723	8703.90.15	- - - 수인용차량	0%	E0
9724	8703.90.16	- - - 모터홈(motor-home)	0%	E0
9725	8703.90.17	- - - 승용차(Sedan)	0%	E0
9726	8703.90.18	- - - 그 밖의 승용자동차(스테이션왜건과 스포츠카를 포함하며, 밴은 제외한다)	0%	E0
9727	8703.90.19	- - - 기타	0%	E0
		- - 기타		
9728	8703.90.91	- - - 고카트(Go-cart)	5%	E10
9729	8703.90.92	- - - 전지형(全地形) 만능차(ATV)	5%	E10
9730	8703.90.93	- - - 구급차	5%	EX
9731	8703.90.94	- - - 영구차	5%	EX
9732	8703.90.95	- - - 수인용차량	5%	EX
9733	8703.90.96	- - - 모터홈(motor-home)	5%	E10
9734	8703.90.97	- - - 승용차(Sedan)	5%	EX
9735	8703.90.98	- - - 그 밖의 승용자동차(스테이션왜건과 스포츠카를 포함하며, 밴은 제외한다)	5%	EX
9736	8703.90.99	- - - 기타	5%	EX
	87.04	**화물자동차**		
	8704.10	- 덤프차(비고속도로용으로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태로 제시된 것		
9737	8704.10.13	- - - 총중량이 5 톤 이하인 것	0%	E0
9738	8704.10.14	- - - 총중량이 5 톤을 초과하고 10 톤 이하인 것	0%	E0
9739	8704.10.15	- - - 총중량이 10 톤을 초과하고 20 톤 이하인 것	0%	E0
9740	8704.10.16	- - - 총중량이 20 톤을 초과하고 24 톤 이하인 것	0%	E0
9741	8704.10.17	- - - 총중량이 24 톤을 초과하고 45 톤 이하인 것	0%	E0
9742	8704.10.18	- - - 총중량이 45 톤을 초과하는 것	0%	E0
		- - 기타		
9743	8704.10.31	- - - 총중량이 5 톤 이하인 것	0%	E0
9744	8704.10.32	- - - 총중량이 5 톤을 초과하고 10 톤 이하인 것	0%	E0
9745	8704.10.33	- - - 총중량이 10 톤을 초과하고 20 톤 이하인 것	0%	E0
9746	8704.10.34	- - - 총중량이 20 톤을 초과하고 24 톤 이하인 것	0%	E0
9747	8704.10.35	- - - 총중량이 24 톤을 초과하고 38 톤 이하인 것	0%	E0
9748	8704.10.36	- - - 총중량이 38 톤을 초과하고 45 톤 이하인 것	0%	E0
9749	8704.10.37	- - - 총중량이 45 톤을 초과하는 것	0%	E0
		- 기타{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의 것}		
	8704.21	- - 총중량이 5 톤 이하인 것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9750	8704.21.11	- - - - 냉장차(트럭)	0%	E0
9751	8704.21.19	- - - - 기타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 - - 기타		
9752	8704.21.21	- - - - 냉장차(트럭)	5%	EX
9753	8704.21.22	- - - - 폐기물/쓰레기 수거용 차량(폐기물 압축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5%	EX
9754	8704.21.23	- - - - 탱크차, 벌크 시멘트차(트럭)	5%	EX
9755	8704.21.24	- - - - 장갑차(귀중품 수송용)	5%	EX
9756	8704.21.25	- - - - 후크 리프트차(트럭)	5%	EX
9757	8704.21.29	- - - - 기타	5%	EX
	8704.22	- - 총중량이 5톤 초과 20톤 이하인 것		
		- - - 총중량이 6톤 이하인 것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9758	8704.22.11	- - - - - 냉장차(트럭)	0%	E0
9759	8704.22.19	- - - - - 기타	0%	E0
		- - - - 기타		
9760	8704.22.21	- - - - - 냉장차(트럭)	5%	EX
9761	8704.22.22	- - - - - 폐기물/쓰레기 수거용 차량(폐기물 압축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5%	EX
9762	8704.22.23	- - - - - 탱크차, 벌크 시멘트차(트럭)	5%	EX
9763	8704.22.24	- - - - - 장갑차(귀중품 수송용)	5%	EX
9764	8704.22.25	- - - - - 후크 리프트차(트럭)	5%	EX
9765	8704.22.29	- - - - - 기타	5%	EX
		- - - 총중량이 6톤을 초과하고 20톤 이하인 것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9766	8704.22.31	- - - - - 냉장차(트럭)	0%	E0
9767	8704.22.39	- - - - - 기타	0%	E0
		- - - - 기타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9768	8704.22.41	- - - - - 냉장차(트럭)	5%	EX
9769	8704.22.42	- - - - - 폐기물/쓰레기 수거용 차량(폐기물 압축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5%	EX
9770	8704.22.43	- - - - - 탱크차, 벌크 시멘트차(트럭)	5%	EX
9771	8704.22.45	- - - - - 후크 리프트차(트럭)	5%	EX
9772	8704.22.46	- - - - - 장갑차(귀중품 수송용으로 총중량이 6톤을 초과하고 10톤 이하인 것)	5%	EX
9773	8704.22.47	- - - - - 장갑차(귀중품 수소용으로 총중량이 10톤을 초과하고 20톤 이하인 것)	5%	EX
		- - - - - 기타		
9774	8704.22.51	- - - - - - 총중량이 6톤을 초과하고 10톤 이하인 것	5%	EX
9775	8704.22.59	- - - - - - 기타	5%	EX
	8704.23	- - 총중량이 20톤을 초과하는 것		
		- - - 총중량이 24톤 이하인 것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9776	8704.23.11	- - - - - 냉장차(트럭)	0%	E0
9777	8704.23.19	- - - - - 기타	0%	E0
		- - - - 기타		
9778	8704.23.21	- - - - - 냉장차(트럭)	5%	EX
9779	8704.23.22	- - - - - 폐기물/쓰레기 수거용 차량(폐기물 압축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5%	EX
9780	8704.23.23	- - - - - 탱크차, 벌크 시멘트차(트럭)	5%	EX
9781	8704.23.24	- - - - - 장갑차(귀중품 수송용)	5%	EX
9782	8704.23.25	- - - - - 후크 리프트차(트럭)	5%	EX
9783	8704.23.29	- - - - - 기타	5%	EX
		- - - 총중량이 24톤을 초과하고 45톤 이하인 것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n) 형태로 제시된 것		
9784	8704.23.51	- - - - - 냉장차(트럭)	0%	E0
9785	8704.23.59	- - - - - 기타	0%	E0
		- - - - 기타		
9786	8704.23.61	- - - - - 냉장차(트럭)	0%	E0
9787	8704.23.62	- - - - - 폐기물/쓰레기 수거용 차량(폐기물 압축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0%	E0
9788	8704.23.63	- - - - - 탱크차, 벌크 시멘트차(트럭)	0%	E0
9789	8704.23.64	- - - - - 장갑차(귀중품 수송용)	0%	E0
9790	8704.23.65	- - - - - 후크 리프트차(트럭)	0%	E0
9791	8704.23.66	- - - - - 덤프차	0%	E0
9792	8704.23.69	- - - - - 기타	0%	E0
		- - - 총중량이 45 톤을 초과하는 것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9793	8704.23.71	- - - - - 냉장차(트럭)	0%	E0
9794	8704.23.79	- - - - - 기타	0%	E0
		- - - - 기타		
9795	8704.23.81	- - - - - 냉장차(트럭)	0%	E0
9796	8704.23.82	- - - - - 폐기물/쓰레기 수거용 차량(폐기물 압축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0%	E0
9797	8704.23.84	- - - - - 장갑차(귀중품 수송용)	0%	E0
9798	8704.23.85	- - - - - 후크 리프트차(트럭)	0%	E0
9799	8704.23.86	- - - - - 덤프차	0%	E0
9800	8704.23.89	- - - - - 기타	0%	E0
		- 기타(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으로 한정한다)		
	8704.31	- - 총중량이 5 톤 이하인 것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형태로 제시된 것		
9801	8704.31.11	- - - - 냉장차(트럭)	0%	E0
9802	8704.31.19	- - - - 기타	0%	E0
		- - - 기타		
9803	8704.31.21	- - - - 냉장차(트럭)	5%	EX
9804	8704.31.22	- - - - 폐기물/쓰레기 수거용 차량(폐기물 압축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5%	EX
9805	8704.31.23	- - - - 탱크차, 벌크 시멘트차(트럭)	5%	EX
9806	8704.31.24	- - - - 장갑차(귀중품 수송용)	5%	EX
9807	8704.31.25	- - - - 후크 리프트차(트럭)	5%	EX
9808	8704.31.29	- - - - 기타	5%	EX
	8704.32	- - 총중량이 5톤을 초과하는 것		
		- - - 총중량이 6톤 이하인 것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9809	8704.32.11	- - - - - 냉장차(트럭)	0%	E0
9810	8704.32.19	- - - - - 기타	0%	E0
		- - - - 기타		
9811	8704.32.21	- - - - - 냉장차(트럭)	5%	EX
9812	8704.32.22	- - - - - 폐기물/쓰레기 수거용 차량(폐기물 압축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5%	EX
9813	8704.32.23	- - - - - 탱크차, 벌크 시멘트차(트럭)	5%	EX
9814	8704.32.24	- - - - - 장갑차(귀중품 수송용)	5%	EX
9815	8704.32.25	- - - - - 후크 리프트차(트럭)	5%	EX
9816	8704.32.29	- - - - - 기타	5%	EX
		- - - 총중량이 6톤을 초과하고 20톤 이하인 것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9817	8704.32.31	- - - - - 냉장차(트럭)	0%	E0
9818	8704.32.39	- - - - - 기타	0%	E0
		- - - - 기타		
9819	8704.32.41	- - - - - 냉장차(트럭)	5%	EX
9820	8704.32.42	- - - - - 폐기물/쓰레기 수거용 차량(폐기물 압축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5%	EX
9821	8704.32.43	- - - - - 탱크차, 벌크 시멘트차(트럭)	5%	EX
9822	8704.32.44	- - - - - 장갑차(귀중품 수송용)	5%	EX
9823	8704.32.45	- - - - - 후크 리프트차(트럭)	5%	EX
9824	8704.32.48	- - - - - 기타(총중량이 6톤을 초과하고 10톤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	EX
9825	8704.32.49	- - - - - 기타	5%	EX
		- - - 총중량이 20톤을 초과하고 24톤 이하인 것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9826	8704.32.51	- - - - - 냉장차(트럭)	0%	E0
9827	8704.32.59	- - - - - 기타	0%	E0
		- - - - 기타		
9828	8704.32.61	- - - - - 냉장차(트럭)	0%	E0
9829	8704.32.62	- - - - - 폐기물/쓰레기 수거용 차량(폐기물 압축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0%	E0
9830	8704.32.63	- - - - - 탱크차, 벌크 시멘트차(트럭)	0%	E0
9831	8704.32.64	- - - - - 장갑차(귀중품 수송용)	0%	E0
9832	8704.32.65	- - - - - 후크 리프트차(트럭)	0%	E0
9833	8704.32.69	- - - - - 기타	0%	E0
		- - - 총중량이 24톤을 초과하고 45톤 이하인 것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9834	8704.32.72	- - - - - 냉장차(트럭)	0%	E0
9835	8704.32.79	- - - - - 기타	0%	E0
		- - - - 기타		
9836	8704.32.81	- - - - - 냉장차(트럭)	0%	E0
9837	8704.32.82	- - - - - 폐기물/쓰레기 수거용 차량(폐기물 압축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0%	E0
9838	8704.32.83	- - - - - 탱크차, 벌크 시멘트차(트럭)	0%	E0
9839	8704.32.84	- - - - - 장갑차(귀중품 수송용)	0%	E0
9840	8704.32.85	- - - - - 후크 리프트차(트럭)	0%	E0
9841	8704.32.86	- - - - - 덤프차	0%	E0
9842	8704.32.89	- - - - - 기타	0%	E0
		- - - 총중량이 45 톤을 초과하는 것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9843	8704.32.91	- - - - - 냉장차(트럭)	0%	E0
9844	8704.32.92	- - - - - 기타	0%	E0
		- - - - 기타		
9845	8704.32.93	- - - - - 냉장차(트럭)	0%	E0
9846	8704.32.94	- - - - - 폐기물/쓰레기 수거용 차량(폐기물 압축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0%	E0
9847	8704.32.95	- - - - - 탱크차, 벌크 시멘트차(트럭)	0%	E0
9848	8704.32.96	- - - - - 장갑차(귀중품 수송용)	0%	E0
9849	8704.32.97	- - - - - 후크 리프트차(트럭)	0%	E0
9850	8704.32.98	- - - - - 덤프차	0%	E0
9851	8704.32.99	- - - - - 기타	0%	E0
	8704.90	- 기타		
9852	8704.90.10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0%	E0
		- - 기타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9853	8704.90.91	- - - 총중량이 5 톤 이하인 것	5%	EX
9854	8704.90.92	- - - 총중량이 5 톤을 초과하고 10 톤 이하인 것	5%	E15
9855	8704.90.93	- - - 총중량이 10 톤을 초과하고 20 톤 이하인 것	5%	E15
9856	8704.90.94	- - - 총중량이 20 톤을 초과하고 45 톤 이하인 것	5%	EX
9857	8704.90.95	- - - 총중량이 45 톤을 초과하는 것	5%	E15
	87.05	**특수용도차량(주로 사람이나 화물 수송용으로 설계된 것은 제외한다)[예: 구난차(breakdown lorry)·기중기차(crane lorry)·소방차·콘크리트믹서 운반차·도로청소차·살포차·이동공작차·이동방사선차]**		
9858	8705.10.00	- 기중기차(crane lorry)	0%	E0
9859	8705.20.00	- 이동식 시추용 데릭(derrick)차	0%	E0
9860	8705.30.00	- 소방차	0%	E0
9861	8705.40.00	- 콘크리트믹서 운반차	0%	E0
	8705.90	- 기타		
9862	8705.90.50	- - 도로 청소차, 분뇨차, 이동진료차, 모든 종류의 살포차	0%	E0
9863	8705.90.60	- - 이동식 폭발물 제조 차량	0%	E0
9864	8705.90.90	- - 기타	0%	E0
	87.06	**엔진을 갖춘 섀시(제 8701 호부터 제 8705 호까지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 제 8701 호의 차량용		
9865	8706.00.11	- - 소호 제 8701.10.11 호, 제 8701.10.91 호, 제 8701.91.10 호, 제 8701.92.10 호, 제 8701.93.10 호, 제 8701.94.10 호 또는 제 8701.95.10 호의 농업용 트랙터용	0%	E0
9866	8706.00.19	- - 기타	0%	E0
		- 제 8702 호의 차량용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9867	8706.00.21	- - 승용자동차용[스트레치 리무진을 포함하나 코치(coach), 버스, 미니버스나 밴은 제외한다]	5%	E10
9868	8706.00.22	- - 그 밖의 차량용(총중량이 24 톤 이하인 것)	5%	E10
9869	8706.00.23	- - 그 밖의 차량용(총중량이 24 톤을 초과하는 것)	5%	E10
		- 제 8703 호의 차량용		
9870	8706.00.31	- - 고-카트(go-kart) 및 골프용 차(골프 버기를 포함한다)나 이와 유사한 차량용	5%	E0
9871	8706.00.32	- - 구급차용	5%	E10
9872	8706.00.33	- - 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하나, 밴(van)은 제외한다]	5%	E10
9873	8706.00.39	- - 기타	5%	E10
		- 제 8704 호의 차량용		
9874	8706.00.41	- - 총중량이 24 톤 이하인 차량용	5%	E10
9875	8706.00.42	- - 총중량이 24 톤을 초과하는 차량용	5%	E10
9876	8706.00.50	- 제 8705 호의 차량용	0%	E0
	87.07	**차체(운전실을 포함하며, 제 8701 호부터 제 8705 호까지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8707.10	- 제 8703 호의 차량용		
9877	8707.10.10	- - 고-카트(go-kart) 및 골프용 차(골프 버기를 포함한다) 나 이와 유사한 차량용	5%	E0
9878	8707.10.20	- - 구급차용	5%	E10
9879	8707.10.90	- - 기타	5%	E10
	8707.90	- 기타		
		- - 제 8701 호의 차량용		
9880	8707.90.11	- - - 소호 제 8701.20 호용의 운전실	0%	E0
9881	8707.90.19	- - - 기타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 - 제 8702 호의 차량용		
9882	8707.90.21	- - - 승용자동차용[스트레치 리무진을 포함하나 코치(coach), 버스, 미니버스나 밴은 제외한다]	5%	E10
9883	8707.90.29	- - - 기타	5%	E10
9884	8707.90.30	- - 제 8705 호의 차량용	0%	E0
9885	8707.90.40	- - 운전실(비고속도로용으로 설계된 덤프차의 것)	5%	E10
9886	8707.90.90	- - 기타	5%	E10
	87.08	**부분품과 부속품(제 8701 호부터 제 8705 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		
	8708.10	- 완충기와 그 부분품		
9887	8708.10.10	- - 제 8701 호의 차량용	0%	E0
9888	8708.10.90	- - 기타	5%	E0
		-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		
9889	8708.21.00	- - 안전벨트	0%	E0
	8708.29	- - 기타		
		- - - 도어 트림 어셈블리의 구성품		
9890	8708.29.11	- - - - 제 8701 호의 차량용	0%	E0
9891	8708.29.15	- - - - 제 8703 호의 차량용 문 팔걸이	5%	E0
9892	8708.29.16	- - - - 기타(제 8703 호의 차량용)	5%	E0
9893	8708.29.17	- - - - 소호 제 8704.10 호의 차량용	5%	E10
9894	8708.29.18	- - - - 제 8702 호 차량 또는 제 8704 호의 그 밖의 차량용	5%	E0
9895	8708.29.19	- - - - 기타	5%	E0
9896	8708.29.20	- - - 안전벨트 부분품	5%	E0
		- - - 기타		
9897	8708.29.92	- - - - 제 8701 호의 차량용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 - - - 제 8703 호의 차량용		
9898	8708.29.93	- - - - - 인테리어트림 연결구류, 흙받기	5%	E10
9899	8708.29.94	- - - - - 후드 로드	5%	E10
9900	8708.29.95	- - - - - 기타	5%	E0
		- - - - 제 8702 호나 제 8704 호의 차량용		
9901	8708.29.96	- - - - - 인테리어트림 연결구류, 흙받기	5%	E10
9902	8708.29.97	- - - - - 후드 로드	5%	E10
9903	8708.29.98	- - - - - 기타	5%	E10
9904	8708.29.99	- - - - 기타	5%	E0
	8708.30	-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9905	8708.30.10	- - 제 8701 호의 차량용	0%	E0
		- - 제 8703 호의 차량용		
9906	8708.30.21	- - - 브레이크 드럼· 브레이크 디스크나 브레이크 파이프	0%	E0
9907	8708.30.29	- - - 기타	0%	E0
9908	8708.30.30	- - 브레이크 드럼·브레이크 디스크나 브레이크 파이프(제 8702 호나 제 8704 호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	5%	E10
9909	8708.30.90	- - 기타	5%	E0
	8708.40	-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		
		- - 기어 박스(조립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9910	8708.40.11	- - - 제 8703 호의 차량용	5%	E0
9911	8708.40.13	- - - 제 8704 호나 제 8705 호의 차량용	5%	E0
9912	8708.40.14	- - - 제 8701 호의 차량용	5%	E0
9913	8708.40.19	- - - 기타	5%	E0
		- - 기어 박스(조립된 것으로 한정한다)		
9914	8708.40.25	- - - 제 8701 호의 차량용	5%	E0
9915	8708.40.26	- - - 제 8703 호의 차량용	5%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9916	8708.40.27	- - - 제 8704 호나 제 8705 호의 차량용	5%	E0
9917	8708.40.29	- - - 기타	5%	E0
		- - 부분품		
9918	8708.40.91	- - - 제 8701 호의 차량용	5%	E0
9919	8708.40.92	- - - 제 8703 호의 차량용	5%	E0
9920	8708.40.99	- - - 기타	5%	E0
	8708.50	-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그 밖의 동력 전달장치의 부분품과 구성품을 갖추었는지는 상관없다), 비구동 차축, 그 부분품		
		- - 조립되지 않은 것		
9921	8708.50.11	- - - 제 8703 호의 차량용	5%	E10
9922	8708.50.13	- - - 제 8704 호나 제 8705 호의 차량용	5%	E0
9923	8708.50.15	- - - 제 8701 호의 차량용	0%	E0
9924	8708.50.19	- - - 기타	0%	E0
		- - 조립된 것		
9925	8708.50.25	- - - 제 8701 호의 차량용	0%	E0
9926	8708.50.26	- - - 제 8703 호의 차량용	5%	E10
9927	8708.50.27	- - - 제 8704 호나 제 8705 호의 차량용	5%	E10
9928	8708.50.29	- - - 기타	5%	E10
		- - 부분품		
		- - - 제 8701 호의 차량용		
9929	8708.50.91	- - - - 크라운 휠(wheels)과 피니언	0%	E0
9930	8708.50.92	- - - - 기타	0%	E0
		- - - 제 8703 호의 차량용		
9931	8708.50.94	- - - - 크라운 휠(wheels)과 피니언	0%	E0
9932	8708.50.95	- - - - 기타	0%	E0
		- - - 기타		
9933	8708.50.96	- - - - 크라운 휠(wheels)과 피니언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9934	8708.50.99	- - - - 기타	0%	E0
	8708.70	- 로드 휠(road wheel)과 그 부분품・부속품		
		- - 휠캡		
9935	8708.70.15	- - - 제 8701 호의 차량용	0%	E0
9936	8708.70.16	- - - 제 8703 호의 차량용	5%	E10
		- - - 제 8702 호나 제 8704 호의 차량용		
9937	8708.70.17	- - - - 소호 제 8704.10 호의 차량용	5%	E10
9938	8708.70.18	- - - - 기타	5%	E10
9939	8708.70.19	- - - 기타	5%	E10
		- - 타이어를 갖춘 차륜		
9940	8708.70.21	- - - 제 8701 호의 차량용	0%	E0
9941	8708.70.22	- - - 제 8703 호의 차량용	5%	E10
9942	8708.70.23	- - - 제 8702 호 또는 제 8704 호의 차량용 (소호 제 8704.10 호는 제외한다)	5%	E10
9943	8708.70.29	- - - 기타	5%	E10
		- - 타이어를 갖추지 아니한 차륜		
9944	8708.70.31	- - - 제 8701 호의 차량용	0%	E0
9945	8708.70.32	- - - 제 8703 호의 차량용	5%	E10
9946	8708.70.33	- - - 총 중량이 45 톤을 초과하는 비고속도로용으로 설계된 덤프차용	5%	E0
9947	8708.70.34	- - - 제 8702 호의 차량용이나 제 8704 호의 그 밖의 차량용	5%	E10
9948	8708.70.39	- - - 기타	5%	E10
		- - 기타		
9949	8708.70.95	- - - 제 8701 호의 차량용	0%	E0
9950	8708.70.96	- - - 제 8702 호 또는 제 8704 호의 차량용	5%	E10
9951	8708.70.97	- - - 제 8703 호의 차량용	5%	E10
9952	8708.70.99	- - - 기타	5%	E1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708.80	- 서스펜션 시스템(suspension system)과 그 부분품[쇼크업소버(shock-absorber)를 포함한다]		
		- - 서스펜션 시스템		
9953	8708.80.15	- - - 제 8701 호의 차량용	0%	E0
9954	8708.80.16	- - - 제 8703 호의 차량용	5%	E0
9955	8708.80.17	- - - 소호 제 8704.10 호나 제 8705 호의 차량용	5%	E10
9956	8708.80.19	- - - 기타	5%	E0
		- - 부분품		
9957	8708.80.91	- - - 제 8701 호의 차량용	5%	E10
9958	8708.80.92	- - - 제 8703 호의 차량용	5%	E0
9959	8708.80.99	- - - 기타	5%	E0
		-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		
	8708.91	- - 방열기와 그 부분품		
		- - - 방열기		
9960	8708.91.15	- - - - 제 8701 호의 차량용	0%	E0
9961	8708.91.16	- - - - 제 8703 호의 차량용	5%	E10
		- - - - 제 8702 호나 제 8704 호의 차량용		
9962	8708.91.17	- - - - - 소호 제 8704.10 호의 차량용	5%	E10
9963	8708.91.18	- - - - - 기타	5%	E0
9964	8708.91.19	- - - - 기타	5%	E0
		- - - 부분품		
9965	8708.91.91	- - - - 제 8701 호의 차량용	5%	E10
9966	8708.91.93	- - - - 드레인 플러그(Drain plug)(제 8703 호의 차량용)	5%	E10
9967	8708.91.94	- - - - 제 8702 호 또는 제 8704 호의 차량용 드레인 플러그(Drain plug)(소호 제 8404.10 호는 제외한다)	5%	E1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9968	8708.91.95	- - - - 기타(제 8703 호의 차량용)	5%	E10
9969	8708.91.99	- - - - 기타	5%	E10
	8708.92	- - 소음기(머플러), 배기관, 그 부분품		
9970	8708.92.10	- - - 제 8701 호의 차량용	0%	E0
9971	8708.92.20	- - - 제 8703 호의 차량용	5%	E10
		- - - 소호 제 8704.10 호의 차량용		
9972	8708.92.51	- - - - 소음기(머플러), 배기관	5%	E10
9973	8708.92.52	- - - - 부분품	5%	E10
		- - - 제 8702 호 차량용이나 제 8704 호의 그 밖의 차량용		
9974	8708.92.61	- - - - 소음기(머플러), 배기관	5%	E10
9975	8708.92.62	- - - - 부분품	5%	E10
9976	8708.92.90	- - - 기타	5%	E0
	8708.93	- - 클러치와 그 부분품		
9977	8708.93.50	- - - 제 8701 호의 차량용	0%	E0
9978	8708.93.60	- - - 제 8703 호의 차량용	5%	E0
9979	8708.93.70	- - - 제 8704 호나 제 8705 호의 차량용	5%	E10
9980	8708.93.90	- - - 기타	5%	E0
	8708.94	- - 운전대・스티어링칼럼(steering column)・운전박스와 그 부분품		
		- - - 에어백 어셈블리를 갖춘 운전대		
9981	8708.94.11	- - - - 제 8701 호의 차량용	0%	E0
9982	8708.94.19	- - - - 기타	0%	E0
		- - - 기타		
9983	8708.94.94	- - - - 제 8701 호의 차량용	0%	E0
9984	8708.94.95	- - - - 제 8703 호의 차량용	0%	E0
9985	8708.94.99	- - - - 기타	0%	E0
	8708.95	- - 팽창 시스템을 갖춘 안전 에어백과 그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부분품		
9986	8708.95.10	- - - 팽창 시스템을 갖춘 안전 에어백	0%	E0
9987	8708.95.90	- - - 부분품	0%	E0
	8708.99	- - 기타		
		- - - 제 8701 호의 차량용		
9988	8708.99.11	- - - - 미조립된 연료탱크, 엔진 브래킷	0%	E0
9989	8708.99.19	- - - - 기타	0%	E0
		- - - 제 8702 호・제 8703 호 또는 제 8704 호의 차량용		
		- - - - 연료탱크와 그 부분품		
9990	8708.99.21	- - - - - 연료 탱크	0%	E0
9991	8708.99.24	- - - - - 연료탱크의 하단부, 연료캡, 연료주입파이프, 연료주입호스부속품, 연료탱크밴드	0%	E0
9992	8708.99.25	- - - - - 그 밖의 부분품	0%	E0
9993	8708.99.30	- - - - 가속기・ 브레이크나 클러치 페달	0%	E0
9994	8708.99.40	- - - - 배터리 캐리어나 트레이와 그들의 브래킷	0%	E0
9995	8708.99.50	- - - - 방열기 보호판(shroud)	0%	E0
		- - - - 섀시 프레임 또는 그 부분품		
9996	8708.99.61	- - - - - 제 8702 호의 차량용	0%	E0
9997	8708.99.62	- - - - - 제 8703 호의 차량용	0%	E0
9998	8708.99.63	- - - - - 제 8704 호의 차량용	0%	E0
9999	8708.99.70	- - - - 엔진 브래킷(Engine bracket)	0%	E0
10000	8708.99.80	- - - - 기타	0%	E0
		- - - 기타		
10001	8708.99.91	- - - - 미조립된 연료탱크, 엔진 브래킷	0%	E0
10002	8708.99.99	- - - - 기타	0%	E0
	87.09	**공장・창고・부두・공항에서 화물의 단거리**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운반에 사용하는 형으로 권양(捲揚)용이나 취급용 장비가 결합되지 않은 자주식(自走式) 작업차, 철도역의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형의 트랙터, 이들의 부분품		
		- 차량		
10003	8709.11.00	- - 전기식의 것	0%	E0
10004	8709.19.00	- - 기타	0%	E0
10005	8709.90.00	- 부분품	0%	E0
10006	8710.00.00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자주식(自走式)으로 한정하며, 무기를 장비하였는지에 상관없다] 및 이들의 부분품	0%	E0
	87.11	모터사이클[모페드(moped)를 포함한다]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사이드카(side-car)를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사이드카(side-car)		
	8711.10	- 실린더용량이 50 시시 이하인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10007	8711.10.12	- - - 모페드와 모터를 갖춘 자전거	0%	E0
10008	8711.10.14	- - - 동력 킥 스쿠터, 미니 모터사이클	0%	E0
10009	8711.10.15	- - - 그 밖의 모터사이클과 모터스쿠터	0%	E0
10010	8711.10.19	- - - 기타	0%	E0
		- - 기타		
10011	8711.10.92	- - - 모페드와 모터를 갖춘 자전거	19%	E10
10012	8711.10.94	- - - 동력 킥 스쿠터, 미니 모터사이클	19%	EX
10013	8711.10.95	- - - 그 밖의 모터사이클과 모터스쿠터	19%	E10
10014	8711.10.99	- - - 기타	19%	EX
	8711.20	- 실린더용량이 50 시시 초과 250 시시 이하인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태로 제시된 것		
10015	8711.20.11	- - - 모터크로스 모터사이클	0%	E0
10016	8711.20.12	- - - 모페드와 모터를 갖춘 자전거	13%	E15
10017	8711.20.13	- - - 미니 모터사이클	0%	E0
		- - - 그 밖의 모터사이클[모터 스쿠터를 포함하며 사이드카(side-car)를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		
10018	8711.20.14	- - - - 실린더용량이 150 시시를 초과하고 200 시시 이하인 것	0%	E0
10019	8711.20.15	- - - - 실린더용량이 200 시시를 초과하고 250 시시 이하인 것	0%	E0
10020	8711.20.16	- - - - 기타	0%	E0
10021	8711.20.19	- - - 기타	0%	E0
		- - 기타		
10022	8711.20.91	- - - 모터크로스 모터사이클	19%	E10
10023	8711.20.92	- - - 모페드와 모터를 갖춘 자전거	13%	E10
10024	8711.20.93	- - - 미니 모터사이클	19%	E10
		- - - 그 밖의 모터사이클[모터 스쿠터를 포함하며 사이드카(side-car)를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		
10025	8711.20.94	- - - - 실린더용량이 150 시시를 초과하고 200 시시 이하인 것	19%	E10
10026	8711.20.95	- - - - 실린더용량이 200 시시를 초과하고 250 시시 이하인 것	19%	E10
10027	8711.20.96	- - - - 기타	19%	E10
10028	8711.20.99	- - - 기타	19%	EX
	8711.30	- 실린더용량이 250 시시 초과 500 시시 이하인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		
		- - 모터크로스 모터사이클		
10029	8711.30.11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10030	8711.30.19	- - - 기타	0%	E0
10031	8711.30.30	- - 기타(완전분해식 형태로 제시된 것)	0%	E0
10032	8711.30.90	- - 기타	0%	E0
	8711.40	- 실린더용량이 500 시시 초과 800 시시 이하인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		
		- - 모터크로스 모터사이클		
10033	8711.40.11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0%	E0
10034	8711.40.19	- - - 기타	0%	E0
10035	8711.40.20	- - 기타(완전분해식 형태로 제시된 것)	0%	E0
10036	8711.40.90	- - 기타	0%	E0
	8711.50	- 실린더용량이 800 시시를 초과하는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		
10037	8711.50.20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0%	E0
10038	8711.50.90	- - 기타	5%	E10
	8711.60	- 추진을 위해 전동기를 갖춘 것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10039	8711.60.11	- - - 자전거	0%	E0
10040	8711.60.12	- - - 킥 스쿠터, 셀프 밸런싱 사이클, 미니 모터사이클	0%	E0
10041	8711.60.13	- - - 그 밖의 모터사이클	0%	E0
10042	8711.60.19	- - - 기타	0%	E0
		- - 기타		
10043	8711.60.91	- - - 자전거	0%	E0
10044	8711.60.92	- - - 킥 스쿠터, 셀프 밸런싱 사이클, 미니 모터사이클	0%	E0
10045	8711.60.93	- - - 그 밖의 모터사이클	0%	E0
10046	8711.60.99	- - - 기타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711.90	- 기타		
10047	8711.90.40	- - 사이드카	0%	E0
10048	8711.90.60	- - 기타(완전분해식 형태로 제시된 것)	0%	E0
10049	8711.90.90	- - 기타	0%	E0
	87.12	**모터를 갖추지 않은 이륜자전거와 그 밖의 자전거(배달용 삼륜 자전거를 포함한다)**		
10050	8712.00.10	- 경기용 자전거	8%	E10
10051	8712.00.20	- 어린이용 자전거	8%	EX
10052	8712.00.30	- 그 밖의 자전거	8%	E10
10053	8712.00.90	- 기타	8%	E10
	87.13	**신체장애인용 차량(모터를 갖추었는지 또는 기계구동식인지에 상관없다)**		
10054	8713.10.00	- 기계구동식이 아닌 것	0%	E0
10055	8713.90.00	- 기타	0%	E0
	87.14	**부분품과 부속품(제 8711 호부터 제 8713 호까지의 차량의 것으로 한정한다)**		
	8714.10	- 모터사이클의 것[모페드(moped)의 것을 포함한다]		
10056	8714.10.10	- - 안장	5%	E10
10057	8714.10.20	- - 스포크와 니플(spoke and nipple)	0%	E0
10058	8714.10.30	- - 프레임 및 포크[차륜포크(telescopic fork), 리어 서스펜션 및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0%	E0
10059	8714.10.40	- - 기어링·기어박스·클러치 및 그 밖의 전동 장치와 그 부분품	0%	E0
10060	8714.10.50	- - 휠 림	0%	E0
10061	8714.10.60	- -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0%	E0
10062	8714.10.70	- - 소음기(머플러)와 그 부분픔	0%	E0
10063	8714.10.90	- - 기타	0%	E0
	8714.20	- 신체장애인용 차량의 것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 - 캐스터바퀴(다리바퀴)		
10064	8714.20.11	- - - 지름이(타이어를 포함한다) 75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100 밀리미터 이하인 것(장착된 모든 바퀴 또는 타이어의 폭이 30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0%	E0
10065	8714.20.12	- - - 지름이(타이어를 포함한다) 100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250 밀리미터 이하인 것(장착된 모든 바퀴 또는 타이어의 폭이 30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0%	E0
10066	8714.20.19	- - - 기타	0%	E0
10067	8714.20.90	- - 기타	0%	E0
		- 기타		
	8714.91	- - 프레임과 포크, 이들의 부분품		
10068	8714.91.10	- - - 소호 제 8712.00.20 호의 자전거용	8%	E0
		- - - 기타		
10069	8714.91.91	- - - - 포크(fork)용 부분품	8%	E0
10070	8714.91.99	- - - - 기타	8%	E0
	8714.92	- - 휠 림(wheel rim)과 스포크(spoke)		
10071	8714.92.10	- - - 소호 제 8712.00.20 호의 자전거용	8%	E0
10072	8714.92.90	- - - 기타	8%	E0
	8714.93	- - 허브(hub)[코스터 브레이킹허브(coaster braking hub)와 허브브레이크(hub brake)는 제외한다], 프리휠(free-wheel) 스프로켓 휠(sprocket-wheel)		
10073	8714.93.10	- - - 소호 제 8712.00.20 호의 자전거용	8%	E0
10074	8714.93.90	- - - 기타	8%	E0
	8714.94	- - 브레이크[코스터 브레이킹허브(coaster braking hub)와 허브브레이크(hub brake)를 포함한다], 그 부분품		
10075	8714.94.10	- - - 소호 제 8712.00.20 호의 자전거용	8%	E0
10076	8714.94.90	- - - 기타	8%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8714.95	- - 안장		
10077	8714.95.10	- - - 소호 제 8712.00.20 호의 자전거용	8%	E0
10078	8714.95.90	- - - 기타	8%	E0
	8714.96	- - 페달과 크랭크기어(crankgear), 이들의 부분품		
10079	8714.96.10	- - - 소호 제 8712.00.20 호의 자전거용	8%	E0
10080	8714.96.90	- - - 기타	8%	E0
	8714.99	- - 기타		
		- - - 소호 제 8712.00.20 호의 자전거용		
10081	8714.99.11	- - - - 핸들 바(bar)·필라(pillar)·흙받기·반사경·캐리어·컨트롤케이블·램프 브래킷이나 브래킷용 러그, 그 밖의 부속품	8%	E0
10082	8714.99.12	- - - - 체인 휠과 크랭크, 그 밖의 부분품	8%	E0
		- - - 기타		
10083	8714.99.91	- - - - 핸들 바(bar)·필라(pillar)·흙받기·반사경·캐리어·컨트롤케이블·램프 브래킷이나 브래킷용 러그, 그 밖의 부속품	8%	E0
10084	8714.99.93	- - - - 스포크용 니플(nipple)	8%	E0
10085	8714.99.94	- - - - 체인 휠과 크랭크, 그 밖의 부분품	8%	E0
10086	**8715.00.00**	**유모차와 그 부분품**	0%	E0
	87.16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기계구동식이 아닌 그 밖의 차량, 이들의 부분품**		
10087	8716.10.00	-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이동주택형으로서 주거용 또는 캠핑용으로 한정한다)	0%	E0
10088	8716.20.00	- 농업용 자동적재식이나 자동양하식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0%	E0
		- 화물수송용 그 밖의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10089	8716.31.00	- - 탱커 트레일러(Tanker trailer)와 탱커 세미트레일러(tanker semi-trailer)	0%	E0
	8716.39	- - 기타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10090	8716.39.40	- - - 농업용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0%	E0
		- - - 기타		
10091	8716.39.91	- - - - 적재량(페이로드)이 200 톤을 초과하는 것	0%	E0
10092	8716.39.99	- - - - 기타	0%	E0
10093	8716.40.00	- 그 밖의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0%	E0
	8716.80	- 그 밖의 차량		
10094	8716.80.10	- - 카트와 왜건·색 트럭(sack truck)·핸드 트롤리와 이와 유사한 수동구동식의 차량(공장이나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외바퀴 손수레는 제외한다)	0%	E0
10095	8716.80.20	- - 외바퀴 손수레	0%	E0
10096	8716.80.90	- - 기타	0%	E0
	8716.90	- 부분품		
		- -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용		
10097	8716.90.13	- - - 소호 제 8716.20 호의 물품용	0%	E0
10098	8716.90.19	- - - 기타	0%	E0
		- - 소호 제 8716.80.10 호나 제 8716.80.20 호의 차량용		
10099	8716.90.21	- - - 카스터 휠[지름이(타이어를 포함한다) 100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250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장착된 휠 또는 타이어의 폭이 3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E0
10100	8716.90.22	- - - 그 밖의 카스터 휠	0%	E0
10101	8716.90.23	- - - 기타(소호 제 8716.80.10 호의 물품용)	0%	E0
10102	8716.90.24	- - - 기타(소호 제 8716.80.20 호의 물품용)	0%	E0
		- - 그 밖의 차량용		
10103	8716.90.94	- - - 스포크와 니플(spoke and nipple)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10104	8716.90.95	- - - 카스터 휠[지름이(타이어를 포함한다) 100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250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장착된 휠 또는 타이어의 폭이 3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E0
10105	8716.90.96	- - - 그 밖의 카스터 휠	0%	E0
10106	8716.90.99	- - - 기타	0%	E0
10107	**8801.00.00**	**기구 및 비행선, 글라이더·행글라이더와 그 밖의 무동력 항공기**	0%	E0
	88.02	**그 밖의 항공기(예: 헬리콥터·비행기),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 서보비틀(suborbital), 우주선 운반로켓**		
		- 헬리콥터		
10108	8802.11.00	- - 자체 중량이 2,000 킬로그램 이하인 것	0%	E0
10109	8802.12.00	- - 자체 중량이 2,00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0%	E0
	8802.20	- 자체 중량이 2,000 킬로그램 이하인 비행기와 그 밖의 항공기		
10110	8802.20.10	- - 비행기	0%	E0
10111	8802.20.90	- - 기타	0%	E0
	8802.30	- 자체 중량이 2,000 킬로그램 초과 15,000 킬로그램 이하인 비행기와 그 밖의 항공기		
10112	8802.30.10	- - 비행기	0%	E0
10113	8802.30.90	- - 기타	0%	E0
	8802.40	- 자체 중량이 15,00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와 그 밖의 항공기		
10114	8802.40.10	- - 비행기	0%	E0
10115	8802.40.90	- - 기타	0%	E0
10116	8802.60.00	-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과 서보비틀(suborbital)과 우주선 운반로켓	0%	E0
	88.03	**부분품(제 8801 호나 제 8802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10117	8803.10.00	- 프로펠러 및 로터(rotor)와 이들의 부분품	0%	E0
10118	8803.20.00	- 기체 지지부와 그 부분품	0%	E0
10119	8803.30.00	- 비행기나 헬리콥터의 그 밖의 부분품	0%	E0
	8803.90	- 기타		
10120	8803.90.10	- - 전기통신위성의 것	0%	E0
10121	8803.90.90	- - 기타	0%	E0
	88.04	**낙하산(조종 가능한 낙하산과 패러글라이더를 포함한다)과 로토슈트(rotochute),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10122	8804.00.10	- 로토슈트(rotochute)와 그 부분품	0%	E0
10123	8804.00.90	- 기타	0%	E0
	88.05	**항공기 발진장치, 갑판 착륙장치나 이와 유사한 장치, 지상비행 훈련장치, 이들의 부분품**		
10124	8805.10.00	- 항공기 발진장치와 그 부분품, 갑판착륙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기어와 그 부분품	0%	E0
		- 지상비행 훈련장치와 그 부분품		
10125	8805.21.00	- - 모의공중전장치와 그 부분품	0%	E0
	8805.29	- - 기타		
10126	8805.29.10	- - - 지상비행 훈련장치	0%	E0
10127	8805.29.90	- - - 기타	0%	E0
	89.01	**순항선·유람선·페리보트(ferry-boat)·화물선·부선(barge)과 이와 유사한 선박(사람이나 화물 수송용으로 한정한다)**		
	8901.10	- 순항선·유람선과 이와 유사한 선박(주로 사람 수송용으로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각종 페리보트(ferry-boat)		
10128	8901.10.10	- - 총톤수 26톤 이하인 것	0%	E0
10129	8901.10.20	- - 총톤수 26톤을 초과하고 500톤 이하인 것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10130	8901.10.60	- - 총톤수 500 톤을 초과하고 1,000 톤 이하인 것	0%	E0
10131	8901.10.70	- - 총톤수 1,000 톤을 초과하고 4,000 톤 이하인 것	0%	E0
10132	8901.10.80	- - 총톤수 4,000 톤을 초과하고 5,000 톤 이하인 것	0%	E0
10133	8901.10.90	- - 총톤수 5,000 톤을 초과하는 것	0%	E0
	8901.20	- 탱커(tanker)		
10134	8901.20.50	- - 총톤수 5,000 톤 이하인 것	0%	E0
10135	8901.20.70	- - 총톤수 5,000 톤을 초과하고 50,000 톤 이하인 것	0%	E0
10136	8901.20.80	- - 총톤수 50,000 톤을 초과하는 것	0%	E0
	8901.30	- 냉동선(소호 제 8901.20 호의 것은 제외한다)		
10137	8901.30.50	- - 총톤수 5,000 톤 이하인 것	0%	E0
10138	8901.30.70	- - 총톤수 5,000 톤을 초과하고 50,000 톤 이하인 것	0%	E0
10139	8901.30.80	- - 총톤수 50,000 톤을 초과하는 것	0%	E0
	8901.90	- 그 밖의 화물선과 화객선		
		- - 모터를 갖추지 아니한 것		
10140	8901.90.11	- - - 총톤수 26 톤 이하인 것	0%	E0
10141	8901.90.12	- - - 총톤수 26 톤을 초과하고 500 톤 이하인 것	0%	E0
10142	8901.90.14	- - - 총톤수가 500 톤을 초과하는 것	0%	E0
		- - 모터를 갖춘 것		
10143	8901.90.31	- - - 총톤수 26 톤 이하인 것	0%	E0
10144	8901.90.32	- - - 총톤수 26 톤을 초과하고 500 톤 이하인 것	0%	E0
10145	8901.90.33	- - - 총톤수 500 톤을 초과하고 1,000 톤 이하인 것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10146	8901.90.34	- - - 총톤수 1,000 톤을 초과하고 4,000 톤 이하인 것	0%	E0
10147	8901.90.35	- - - 총톤수 4,000 톤을 초과하고 5,000 톤 이하인 것	0%	E0
10148	8901.90.36	- - - 총톤수 5,000 톤을 초과하고 50,000 톤 이하인 것	0%	E0
10149	8901.90.37	- - - 총톤수 50,000 톤을 초과하는 것	0%	E0
	89.02	**어선과 어획물의 가공용이나 저장용 선박**		
		- 어선		
10150	8902.00.31	- - 총톤수 26 톤 이하인 것	0%	E0
10151	8902.00.32	- - 총톤수 26 톤을 초과하고 40 톤 미만의 것	0%	E0
10152	8902.00.33	- - 총톤수 40 톤 이상 101 톤 이하인 것	0%	E0
10153	8902.00.34	- - 총톤수 101 톤을 초과하고 250 톤 이하인 것	0%	E0
10154	8902.00.35	- - 총톤수 250 톤을 초과하고 1,000 톤 이하인 것	0%	E0
10155	8902.00.36	- - 총톤수 1,000 톤을 초과하고 4,000 톤 이하인 것	0%	E0
10156	8902.00.37	- - 총톤수 4,000 톤을 초과하는 것	0%	E0
		- 기타		
10157	8902.00.41	- - 총톤수 26 톤 이하인 것	0%	E0
10158	8902.00.42	- - 총톤수 26 톤을 초과하고 40 톤 미만의 것	0%	E0
10159	8902.00.43	- - 총톤수 40 톤 이상 101 톤 이하인 것	0%	E0
10160	8902.00.44	- - 총톤수 101 톤을 초과하고 250 톤 이하인 것	0%	E0
10161	8902.00.45	- - 총톤수 250 톤을 초과하고 1,000 톤 이하인 것	0%	E0
10162	8902.00.46	- - 총톤수 1,000 톤을 초과하고 4,000 톤 이하인 것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10163	8902.00.47	- - 총톤수 4,000 톤을 초과하는 것	0%	E0
	89.03	**요트, 유람용이나 운동용 그 밖의 선박, 노를 젓는 보트와 카누**		
10164	8903.10.00	- 인플랫터블(inflatable)식	0%	E0
		- 기타		
10165	8903.91.00	- - 범선(보조모터를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	0%	E0
10166	8903.92.00	- - 모터보트[아웃보드 모터보트(outboard motorboat)는 제외한다]	0%	E0
10167	8903.99.00	- - 기타	0%	E0
	89.04	**예인선과 푸셔크라프트(pusher craft)**		
10168	8904.00.10	- 총톤수 26 톤 이하인 것	0%	E0
		- 총톤수 26 톤을 초과하는 것		
10169	8904.00.31	- - 동력이 4,000 마력(hp) 이하인 것	0%	E0
10170	8904.00.39	- - 기타	0%	E0
	89.05	**조명선·소방선·준설선·기중기선과 주로 항해 외의 특수기능을 가지는 그 밖의 특수선박, 부선거(艀船渠), 물에 뜨거나 잠길 수 있는 시추대나 작업대**		
10171	8905.10.00	- 준설선	0%	E0
10172	8905.20.00	- 시추대나 작업대(물에 뜨거나 잠길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	E0
	8905.90	- 기타		
10173	8905.90.10	- - 부선거(艀船渠)	0%	E0
10174	8905.90.90	- - 기타	0%	E0
	89.06	**그 밖의 선박(군함·노를 젓는 보트 외의 구명보트를 포함한다)**		
10175	8906.10.00	- 군함	0%	E0
	8906.90	- 기타		
10176	8906.90.10	- - 배수량이 30 톤 이하인 것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10177	8906.90.20	- - 배수량이 30 톤을 초과하고 300 톤 이하인 것	0%	E0
10178	8906.90.90	- - 기타	0%	E0
	89.07	**그 밖의 물에 뜨는 구조물[예: 부교·탱크·코퍼댐(coffer-dam)·부잔교(landing stage)·부표·수로부표]**		
10179	8907.10.00	- 인플랫터블(inflatable)식 부교	0%	E0
	8907.90	- 기타		
10180	8907.90.10	- - 부표	0%	E0
10181	8907.90.90	- - 기타	0%	E0
10182	8908.00.00	선박과 그 밖의 물에 뜨는 구조물(해체용으로 한정한다)	0%	E0
	90.01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 8544 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 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않은 것(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광학소자는 제외한다)**		
	9001.10	- 광섬유·광섬유 다발과 광섬유 케이블		
10183	9001.10.10	- - 전기통신용과 그 밖의 전기용	0%	E0
10184	9001.10.90	- - 기타	0%	E0
10185	9001.20.00	- 편광재료(polarising material)로 만든 판	0%	E0
10186	9001.30.00	- 콘택트렌즈	0%	E0
10187	9001.40.00	- 유리로 만든 안경렌즈	0%	E0
10188	9001.50.00	-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안경렌즈	0%	E0
	9001.90	- 기타		
10189	9001.90.10	- - 사진용 또는 영화용 카메라 또는 프로젝터용	0%	E0
10190	9001.90.90	- - 기타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90.02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소자(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사용하거나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 대물렌즈		
10191	9002.11.00	- - 카메라용·영사기용 또는 사진 확대기용이나 사진 축소기용	0%	E0
10192	9002.19.00	- - 기타	0%	E0
	9002.20	- 필터		
10193	9002.20.10	- - 영화 프로젝터용	0%	E0
10194	9002.20.20	- - 영상카메라, 사진기와 그 밖의 프로젝터용	0%	E0
10195	9002.20.90	- - 기타	0%	E0
	9002.90	- 기타		
10196	9002.90.20	- - 영화 프로젝터용	0%	E0
10197	9002.90.30	- - 영상카메라, 사진기와 그 밖의 프로젝터용	0%	E0
10198	9002.90.90	- - 기타	0%	E0
	90.03	안경·고글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의 테와 장착구, 이들의 부분품		
		- 테와 장착구		
10199	9003.11.00	- -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0%	E0
10200	9003.19.00	- -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0%	E0
10201	9003.90.00	- 부분품	0%	E0
	90.04	시력교정용·보호용이나 그 밖의 용도의 안경·고글과 이와 유사한 물품		
10202	9004.10.00	- 선글라스	0%	E0
	9004.90	- 기타		
10203	9004.90.10	- - 시력교정용 안경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10204	9004.90.50	- - 보호용 고글	0%	E0
10205	9004.90.90	- - 기타	0%	E0
	90.05	**쌍안경·단안경·그 밖의 광학식 망원경과 이들의 장착구, 그 밖의 천체관측용 기기와 그 장착구(전파관측용 기기는 제외한다)**		
10206	9005.10.00	- 쌍안경	0%	E0
	9005.80	- 그 밖의 기기		
10207	9005.80.10	- - 천체관측용 기기(전파관측용 기기는 제외한다)	0%	E0
10208	9005.80.90	- - 기타	0%	E0
	9005.90	- 부분품과 부속품(장착구를 포함한다)		
10209	9005.90.10	- - 천체관측 기기용(전파관측용 기기는 제외한다)	0%	E0
10210	9005.90.90	- - 기타	0%	E0
	90.06	**사진기(영화용은 제외한다), 사진용 섬광기구와 제 8539 호의 방전램프 외의 섬광전구**		
10211	9006.30.00	- 수중촬영용·공중측량용 또는 장기(臟器)의 내과나 외과 검사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사진기, 법정비교용 사진기	0%	E0
10212	9006.40.00	- 즉석인화 사진기	0%	E0
		- 그 밖의 사진기		
10213	9006.51.00	- - 렌즈를 통하여 볼 수 있는 뷰파인더(viewfinder)[싱글렌즈리플렉스(SLR)]를 갖춘 것(폭이 35 밀리미터 이하인 롤필름용으로 한정한다)	0%	E0
10214	9006.52.00	- - 기타(폭이 35 밀리미터 미만인 롤필름용으로 한정한다)	0%	E0
10215	9006.53.00	- - 기타(폭이 35 밀리미터의 롤필름용으로 한정한다)	0%	E0
	9006.59	- - 기타		
		- - - 인쇄제판용 사진기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10216	9006.59.21	- - - - 레이저 포토플로터	0%	E0
10217	9006.59.29	- - - - 기타	0%	E0
10218	9006.59.30	- - - 레스터 이미지 프로세서가 있는 레이저 포토플로터나 이미지 세터	0%	E0
10219	9006.59.90	- - - 기타	0%	E0
		- 사진용 섬광기구와 섬광전구		
10220	9006.61.00	- - 섬광기구(전자식 방전램프를 사용한 것으로 한정한다)	0%	E0
10221	9006.69.00	- - 기타	0%	E0
		- 부분품과 부속품		
	9006.91	- - 카메라용		
10222	9006.91.10	- - - 제 9006.59.21 호의 레이저 포토플로터용	0%	E0
10223	9006.91.30	- - - 기타(소호 제 9006.40 호부터 제 9006.53 호까지의 카메라용의 것으로 한정한다)	0%	E0
10224	9006.91.90	- - - 기타	0%	E0
	9006.99	- - 기타		
10225	9006.99.10	- - - 사진용 섬광기구	0%	E0
10226	9006.99.90	- - - 기타	0%	E0
	90.07	**영화용 촬영기와 영사기(음성의 기록기기나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10227	9007.10.00	- 촬영기	0%	E0
	9007.20	- 영사기		
10228	9007.20.10	- - 필름의 폭이 16 밀리미터 미만인 것	0%	E0
10229	9007.20.90	- - 기타	0%	E0
		- 부분품과 부속품		
10230	9007.91.00	- - 카메라용	0%	E0
10231	9007.92.00	- - 영사기용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90.08	**투영기·사진 확대기와 사진 축소기(영화용은 제외한다)**		
	9008.50	- 프로젝터, 확대기와 축소기		
10232	9008.50.10	- - 마이크로필름·마이크로피셰나 그 밖의 마이크로폼 리더(복사기능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0%	E0
10233	9008.50.90	- - 기타	0%	E0
	9008.90	- 부분품과 부속품		
10234	9008.90.20	- - 사진 확대기와 사진 축소기(영화용의 것은 제외한다)	0%	E0
10235	9008.90.90	- - 기타	0%	E0
	90.10	**사진(영화를 포함한다) 현상실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네가토스코프(negatoscope), 영사용 스크린**		
10236	9010.10.00	- 롤 모양인 사진용(영화용을 포함한다) 필름이나 감광지를 자동현상하는 기기 또는 현상된 필름을 사진용 감광지에 자동노출시키는 기기	0%	E0
	9010.50	- 사진(영화용을 포함한다) 현상실(現像室)용의 그 밖의 기기와 네가토스코프(negatoscope)		
10237	9010.50.10	- - 인쇄회로판/인쇄배선판 제조용 감광성 물질에 회로패턴을 투사하거나 그리는 기기	0%	E0
10238	9010.50.20	- - 영화 편집과 자막 장비, 엑스선용 네가토스코프(negatoscope), 필름의 색깔 분리 공정 전처리에 사용되는 접촉 노출 기기, 자동식 제판기	0%	E0
10239	9010.50.90	- - 기타	0%	E0
	9010.60	- 영사용 스크린		
10240	9010.60.10	- - 300 인치 이상의 것	0%	E0
10241	9010.60.90	- - 기타	0%	E0
	9010.90	- 부분품과 부속품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10242	9010.90.10	- - 소호 제 9010.10 호나 제 9010.60 호의 물품의 것	0%	E0
10243	9010.90.30	- - 인쇄회로판/인쇄배선판 제조용 감광성 물질에 회로패턴을 투사하거나 그리는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0%	E0
10244	9010.90.90	- - 기타	0%	E0
	90.11	**광학현미경(마이크로 사진용·마이크로 영화촬영용·마이크로 영사용을 포함한다)**		
10245	9011.10.00	- 입체현미경	0%	E0
10246	9011.20.00	- 그 밖의 현미경(마이크로 사진용·마이크로 영화촬영용 또는 마이크로 영사용으로 한정한다)	0%	E0
10247	9011.80.00	- 그 밖의 현미경	0%	E0
10248	9011.90.00	- 부분품과 부속품	0%	E0
	90.12	**광학현미경 외의 현미경과 회절기기(diffraction apparatus)**		
10249	9012.10.00	- 광학현미경 외의 현미경, 회절기기(diffraction apparatus)	0%	E0
10250	9012.90.00	- 부분품과 부속품	0%	E0
	90.13	**액정 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은 제외한다),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laser diode)는 제외한다], 그 밖의 광학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0251	9013.10.00	- 무기용 망원조준기, 잠망경, 이 류나 제 16 부의 기기 부분품용 망원경	0%	E0
10252	9013.20.00	-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laser diode)는 제외한다]	0%	E0
	9013.80	- 그 밖의 기기		
10253	9013.80.10	- - 인쇄회로판/인쇄배선판 및 인쇄 배선 회로 조립품용 광학 오류 검사 및 수리 기기	0%	E0
10254	9013.80.20	- - 액정 디바이스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10255	9013.80.90	- - 기타	0%	E0
	9013.90	- 부분품과 부속품		
10256	9013.90.10	- - 소호 제 9013.20 호의 물품의 것	0%	E0
10257	9013.90.50	- - 소호 제 9013.80.20 호의 물품의 것	0%	E0
10258	9013.90.60	- - 소호 제 9013.80.10 호의 물품의 것	0%	E0
10259	9013.90.90	- - 기타	0%	E0
	90.14	**방향탐지용 컴퍼스(compass)와 그 밖의 항행용 기기**		
10260	9014.10.00	- 방향탐지용 컴퍼스(compass)	0%	E0
10261	9014.20.00	- 항공용이나 우주항행용 기기[컴퍼스(compass)는 제외한다]	0%	E0
	9014.80	- 그 밖의 항행용 기기		
		- - 선박용의 것(자동자료처리기계와 관련하여 결합하거나 작동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0262	9014.80.11	- - - 소나(Sonar) 또는 반향 측심기	0%	E0
10263	9014.80.19	- - - 기타	0%	E0
10264	9014.80.90	- - 기타	0%	E0
	9014.90	- 부분품과 부속품		
10265	9014.90.10	- - 선박용의 기기(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된 것으로 한정한다)	0%	E0
10266	9014.90.90	- - 기타	0%	E0
	90.15	**토지측량기기(사진측량용을 포함한다)·수로측량기기·해양측량기기·수리계측기기·기상관측기기·지구물리학용 기기[컴퍼스(compass)는 제외한다]·거리측정기**		
	9015.10	- 거리측정기		
10267	9015.10.10	- - 사진용이나 영화용의 것	0%	E0
10268	9015.10.90	- - 기타	0%	E0
10269	9015.20.00	- 경위의(經緯儀)와 시거의(視距儀)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10270	9015.30.00	- 수준기(水準器)	0%	E0
10271	9015.40.00	- 사진측량기기	0%	E0
	9015.80	- 그 밖의 기기		
10272	9015.80.10	- - 라디오존데(radiosonde)와 무선 풍력기기	0%	E0
10273	9015.80.90	- - 기타	0%	E0
10274	9015.90.00	- 부분품과 부속품	0%	E0
10275	9016.00.00	감량(感量) 50 밀리그램 이하인 저울(추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0%	E0
	90.17	제도용구・설계용구・계산용구(예: 제도기・축소확대기・분도기・제도세트・계산척・계산반), 수지식 길이 측정용구[예: 곧은 자와 줄자・마이크로미터・캘리퍼스(callipers)](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9017.10	- 제도판을 갖춘 제도기(자동식인지에 상관없다)		
10276	9017.10.10	- - 플로터	0%	E0
10277	9017.10.90	- - 기타	0%	E0
	9017.20	- 그 밖의 제도용구・설계용구・계산용구		
10278	9017.20.10	- - 자	0%	E0
10279	9017.20.30	- - 인쇄회로판/인쇄배선판 제조용 감광성 물질에 회로패턴을 투사하거나 그리는 기기	0%	E0
10280	9017.20.40	- - 인쇄회로판/인쇄배선판 제조용 포토플로터	0%	E0
10281	9017.20.50	- - 그 밖의 플로터	0%	E0
10282	9017.20.90	- - 기타	0%	E0
10283	9017.30.00	- 마이크로미터・캘리퍼스(callipers)와 게이지류	0%	E0
10284	9017.80.00	- 그 밖의 기기	0%	E0
	9017.90	- 부분품과 부속품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10285	9017.90.20	- - 인쇄회로판/인쇄배선판 제조용 감광성 물질에 회로패턴을 투사하거나 그리는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0%	E0
10286	9017.90.30	- - 인쇄회로판/인쇄배선판 제조용의 포토 플로터 부분품과 부속품	0%	E0
10287	9017.90.40	- - 그 밖의 플로터의 부분품과 부속품(인쇄회로 조립품을 포함한다)	0%	E0
10288	9017.90.90	- - 기타	0%	E0
	90.18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		
		- 전기식 진단용 기기(기능 검사용이나 생리적 변화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		
10289	9018.11.00	- - 심전계	0%	E0
10290	9018.12.00	- - 초음파 영상진단기	0%	E0
10291	9018.13.00	- - 자기공명 촬영기기	0%	E0
10292	9018.14.00	- - 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	0%	E0
10293	9018.19.00	- - 기타	0%	E0
10294	9018.20.00	- 자외선이나 적외선 응용기기	0%	E0
		- 주사기·바늘·카테터(catheter)·케눌러(cannulae)와 이와 유사한 물품		
	9018.31	- - 주사기(바늘이 부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10295	9018.31.10	- - - 일회용 주사기	0%	E0
10296	9018.31.90	- - - 기타	0%	E0
10297	9018.32.00	- - 관 모양의 금속으로 만든 바늘과 봉합용 바늘	0%	E0
	9018.39	- - 기타		
10298	9018.39.10	- - - 카테터(catheter)	0%	E0
10299	9018.39.90	- - - 기타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 치과용 그 밖의 기기		
10300	9018.41.00	- - 치과용 드릴엔진(하나의 베이스 위에 그 밖의 치과기기를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	0%	E0
10301	9018.49.00	- - 기타	0%	E0
10302	9018.50.00	- 안과용 그 밖의 기기	0%	E0
	9018.90	- 그 밖의 기기		
10303	9018.90.20	- - 수액투여 세트	0%	E0
10304	9018.90.30	- - 전기식 기기	0%	E0
10305	9018.90.90	- - 기타	0%	E0
	90.19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오존 흡입기·산소 흡입기·에어로졸 치료기·인공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		
	9019.10	-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10306	9019.1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0%	E0
10307	9019.10.90	- - 기타	0%	E0
10308	9019.20.00	- 오존 흡입기·산소 흡입기·에어로졸 치료기·인공 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	0%	E0
10309	9020.00.00	그 밖의 호흡용 기기와 가스마스크(기계적인 부분품과 교환용 필터를 모두 갖추지 않은 보호용 마스크는 제외한다)	0%	E0
	90.21	정형외과용 기기(목발·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절 치료용 부목과 그 밖의 골절 치료구, 인조 인체 부분, 보청기, 결함·장애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하거나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그 밖의 기기		
10310	9021.10.00	- 정형외과용이나 골절치료용 기기	0%	E0
		- 의치와 치과용품		
10311	9021.21.00	- - 의치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10312	9021.29.00	- - 기타	0%	E0
		- 그 밖의 인조 인체 부분		
10313	9021.31.00	- - 인조관절	0%	E0
10314	9021.39.00	- - 기타	0%	E0
10315	9021.40.00	- 보청기(부분품과 부속품은 제외한다)	0%	E0
10316	9021.50.00	- 심장박동기(부분품과 부속품은 제외한다)	0%	E0
10317	9021.90.00	- 기타	0%	E0
	90.22	**엑스선이나 알파선·베타선·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사선 사진용이나 방사선 치료용 기기·엑스선관과 그 밖의 엑스선 발생기·고압 발생기·조절반·스크린·검사용이나 치료용 테이블·의자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		
		- 엑스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과용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사선 사진용이나 방사선 치료용 기기를 포함한다)		
10318	9022.12.00	- - 컴퓨터 단층촬영기기	0%	E0
10319	9022.13.00	- - 기타(치과용으로 한정한다)	0%	E0
10320	9022.14.00	- - 기타(내과용·외과용 또는 수의과용으로 한정한다)	0%	E0
	9022.19	- - 그 밖의 용도의 것		
10321	9022.19.10	- - - 인쇄회로판/인쇄배선판 조립체의 납땜 이음의 물리적 검사용 엑스선 기기	0%	E0
10322	9022.19.90	- - - 기타	0%	E0
		- 알파선·베타선 또는 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과용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사선 사진용이나 방사선 치료용 기기를 포함한다)		
10323	9022.21.00	- -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과용	0%	E0
10324	9022.29.00	- - 그 밖의 용도의 것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10325	9022.30.00	- 엑스선관	0%	E0
	9022.90	- 기타(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		
10326	9022.90.10	- - 인쇄회로 조립품의 납땜 이음의 물리적 검사용 엑스선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0%	E0
10327	9022.90.90	- - 기타	0%	E0
10328	**9023.00.00**	**전시용으로 설계된 기구와 모형(예: 교육용이나 전람회용)(다른 용도에 사용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0%	E0
	90.24	**재료(예: 금속·목재·직물·종이·플라스틱)의 경도·항장력·압축성·탄성이나 그 밖의 기계적 성질의 시험용 기기**		
	9024.10	- 금속재료 시험기기		
10329	9024.1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0%	E0
10330	9024.1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9024.80	- 그 밖의 기기		
10331	9024.8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0%	E0
10332	9024.8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9024.90	- 부분품과 부속품		
10333	9024.90.10	- - 전기 작동식 기기용	0%	E0
10334	9024.9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기기용	0%	E0
	90.25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온도계·고온계·기압계·습도계와 건습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기록장치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 온도계와 고온계(다른 기기와 결합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0335	9025.11.00	- - 액체를 넣은 것(직시식으로 한정한다)	0%	E0
	9025.19	- - 기타		
		- - - 전기 작동식의 것		
10336	9025.19.11	- - - - 차량용 온도계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10337	9025.19.19	- - - - 기타	0%	E0
10338	9025.19.20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9025.80	- 그 밖의 기기		
10339	9025.80.20	- - 전기 작동식의 것	0%	E0
10340	9025.80.3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9025.90	- 부분품과 부속품		
10341	9025.90.10	- - 전기 작동식 기기용	0%	E0
10342	9025.9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기기용	0%	E0
	90.26	액체나 기체의 유량·액면·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變量)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예: 유량계·액면계·압력계·열 측정계). 다만, 제 9014 호·제 9015 호·제 9028 호·제 9032 호의 것은 제외한다.		
	9026.10	- 액체의 유량이나 액면의 측정용·검사용		
10343	9026.10.10	- - 차량용 액면계(전기 작동식)	0%	E0
10344	9026.10.20	- - 차량용 액면계(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10345	9026.10.30	- - 기타(전기 작동식의 것)	0%	E0
10346	9026.10.40	- - 기타(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9026.20	- 압력의 측정용·검사용		
10347	9026.20.10	- - 차량용 압력계(전기 작동식)	0%	E0
10348	9026.20.20	- - 차량용 압력계(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10349	9026.20.30	- - 기타(전기 작동식의 것)	0%	E0
10350	9026.20.40	- - 기타(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9026.80	- 그 밖의 기기		
10351	9026.8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0%	E0
10352	9026.8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9026.90	- 부분품과 부속품		
10353	9026.90.10	- - 전기 작동식 기기용	0%	E0
10354	9026.9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기기용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90.27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굴절계·분광계·가스나 매연 분석기), 점도·포로서티(porosity)·팽창·표면장력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열·소리·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마이크로톰(microtome)		
	9027.10	- 가스나 매연 분석용 기기		
10355	9027.1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0%	E0
10356	9027.1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9027.20	- 크로마토그래프와 전기영동 장치		
10357	9027.2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0%	E0
10358	9027.2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9027.30	- 분광계·분광광도계·분광사진기(자외선·가시광선·적외선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0359	9027.3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0%	E0
10360	9027.3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9027.50	- 그 밖의 기기(자외선·가시광선·적외선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0361	9027.5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0%	E0
10362	9027.5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9027.80	- 그 밖의 기기		
10363	9027.80.10	- - 노출계	0%	E0
10364	9027.80.30	- - 기타(전기 작동식의 것)	0%	E0
10365	9027.80.40	- - 기타(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9027.90	- 마이크로톰(microtome)과 이 호의 부분품과 부속품		
10366	9027.90.10	- - 부분품과 부속품(제 9027 호의 물품용 인쇄회로조립품을 포함하나 가스나 매연 분석기나 마이크로톰은 제외한다)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 - 기타		
10367	9027.90.91	- - - 전기 작동식의 것	0%	E0
10368	9027.90.99	- - - 기타	0%	E0
	90.28	**기체·액체·전기의 적산(積算)용 계기(그 검정용 계기를 포함한다)**		
	9028.10	- 기체용 계기		
10369	9028.10.10	- - 기체용 계기(가스 컨테이너에 장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0%	E0
10370	9028.10.90	- - 기타	0%	E0
	9028.20	- 액체용 계기		
10371	9028.20.20	- - 수량계	0%	E0
10372	9028.20.90	- - 기타	0%	E0
	9028.30	- 전기용 계기		
10373	9028.30.10	- - 킬로와트 시계	0%	E0
10374	9028.30.90	- - 기타	0%	E0
	9028.90	- 부분품과 부속품		
10375	9028.90.10	- - 수량계 하우징이나 바디(body)	0%	E0
10376	9028.90.90	- - 기타	0%	E0
	90.29	**적산(積算)회전계·생산량계·택시미터·주행거리계·보수계와 이와 유사한 계기, 속도계와 회전속도계(제 9014 호나 제 9015 호의 것은 제외한다), 스트로보스코프(stroboscope)**		
	9029.10	- 적산(積算)회전계·생산량계·택시미터·주행거리계·보수계와 이와 유사한 계기		
10377	9029.10.20	- - 택시미터	0%	E0
10378	9029.10.90	- - 기타	0%	E0
	9029.20	- 속도계와 회전속도계, 스트로보스코프(stroboscope)		
10379	9029.20.10	- - 차량용 속도계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10380	9029.20.20	- - 차량용 회전 속도계(Tachometer)	0%	E0
10381	9029.20.90	- - 기타	0%	E0
	9029.90	- 부분품과 부속품		
10382	9029.90.10	- - 소호 제 9029.10 호의 물품의 것, 소호 제 9029.20 호의 스트로보스코우프(stroboscope)의 것	0%	E0
10383	9029.90.20	- - 그 밖의 소호 제 9029.20 호의 물품의 것	0%	E0
	90.30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스펙트럼 분석기와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제 9028 호의 것은 제외한다), 알파선·베타선·감마선·엑스선·우주선이나 그 밖의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기**		
10384	9030.10.00	-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기	0%	E0
10385	9030.20.00	-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와 오실로그래프(Oscillograph)	0%	E0
		- 전압·전류·저항 또는 전력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그 밖의 기기		
10386	9030.31.00	- - 기록장치가 없는 멀티미터	0%	E0
10387	9030.32.00	- - 기록장치를 갖춘 멀티미터	0%	E0
	9030.33	- - 기타(기록장치가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10388	9030.33.10	- - - 인쇄회로판/인쇄배선판이나 인쇄회로 조립품의 전압·전류·저항 또는 전력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0%	E0
10389	9030.33.20	- - - 전기 회로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정전기 방전 상태에 대한 시각적 및/또는 청각적 경보를 제공하도록 설계된 임피던스 측정 기기, 정전기 제어 기구 및 정전기 지락 장치/부착물용 검사 기기	0%	E0
10390	9030.33.30	- - - 차량용 전류계와 전압계	0%	E0
10391	9030.33.90	- - - 기타	0%	E0
10392	9030.39.00	- - 기타(기록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다)		
10393	9030.40.00	-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그 밖의 기기[예: 누화계(cross-talk meter)·게인 측정계(gain measuring instrument)·만곡률계(distortion factor meter)·잡음전압계(psophometer)]	0%	E0
		- 그 밖의 기기		
	9030.82	- - 반도체 웨이퍼나 소자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10394	9030.82.10	- - - 웨이퍼 프로버(Wafer prober)	0%	E0
10395	9030.82.90	- - - 기타	0%	E0
	9030.84	- - 기타(기록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10396	9030.84.10	- - - 인쇄회로판/인쇄배선판 및 인쇄회로조립품의 전기량 측정이나 검사용 기기	0%	E0
10397	9030.84.90	- - - 기타	0%	E0
	9030.89	- - 기타		
10398	9030.89.10	- - - 기록장치를 갖추지 않은 인쇄회로판/인쇄배선판 및 인쇄회로조립품의 전기량 측정이나 검사에 이용되는 기기(소호 제9030.39호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제외한다)	0%	E0
10399	9030.89.90	- - - 기타	0%	E0
	9030.90	- 부분품과 부속품		
10400	9030.90.10	- - 소호 제9030.40호 또는 소호 제9030.82호의 물품의 부분품 및 부속품(인쇄회로 조립품을 포함한다)	0%	E0
10401	9030.90.30	- - 인쇄회로판/인쇄배선판 및 인쇄회로조립품의 측정이나 검사용 광학 기기 및 기구의 부분품과 부속품	0%	E0
10402	9030.90.40	- - 인쇄회로판/인쇄배선판 및 인쇄회로조립품의 전기량 측정이나 검사용 그 밖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10403	9030.90.90	- - 기타	0%	E0
	90.31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		
	9031.10	- 균형시험기		
10404	9031.1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0%	E0
10405	9031.1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9031.20	- 테스트벤치(Test bench)		
10406	9031.2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0%	E0
10407	9031.2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 그 밖의 광학식 기기		
10408	9031.41.00	- - 반도체 웨이퍼 또는 소자 검사용이나 반도체 소자 제조에 사용되는 포토마스크(photomask)나 레티클(reticle) 검사용	0%	E0
	9031.49	- - 기타		
10409	9031.49.10	- - - 반도체 웨이퍼의 표면 미립자 오염 측정용 광학기구 및 기기	0%	E0
10410	9031.49.20	- - - 인쇄회로판/인쇄배선판 및 인쇄회로 조립품용 광학 오류 검사 및 수리 기기	0%	E0
10411	9031.49.30	- - - 인쇄회로판/인쇄배선판 및 인쇄회로 조립품 측정용 또는 검사용 그 밖의 광학 기구 및 기기	0%	E0
10412	9031.49.90	- - - 기타	0%	E0
	9031.80	- 그 밖의 기기		
10413	9031.80.10	- - 케이블 테스터(cable tester)	0%	E0
10414	9031.80.90	- - 기타	0%	E0
	9031.90	- 부분품과 부속품		
		- - 전기 작동식의 것		
10415	9031.90.11	- - - 부분품과 부속품[반도체 웨이퍼나 소자 검사용 또는 반도체 소자 제조에 사용되는 마스크, 포토마스크(photomask)나 레티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클(reticle) 검사용 광학식 기기의 인쇄회로조립품을 포함한다], 반도체웨이퍼 표면의 파티클 오염상태 측정용 광학식 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		
10416	9031.90.12	- - - 인쇄회로판/인쇄배선판 및 인쇄회로조립품용 광학 오차 검증 및 수리 기기의 것	0%	E0
10417	9031.90.13	- - - 인쇄회로판/인쇄배선판 및 인쇄회로조립품 측정 또는 검사용 그 밖의 광학 기기의 것	0%	E0
10418	9031.90.19	- - - 기타	0%	E0
10419	9031.9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기기용	0%	E0
	90.32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		
	9032.10	- 온도 자동조절용 기기		
10420	9032.1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0%	E0
10421	9032.1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9032.20	- 매노우스타트(manostat)		
10422	9032.2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0%	E0
10423	9032.2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E0
		- 그 밖의 기기		
10424	9032.81.00	- - 액압식이나 공기식	0%	E0
	9032.89	- - 기타		
10425	9032.89.10	- - -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된 기기(선박의 추진력·밸러스트나 화물 처리시스템의 자동 조절이나 제어용으로 한정한다)	0%	E0
10426	9032.89.20	- - - 인쇄회로판/인쇄배선판 또는 인쇄회로조립품 생산의 화학적 또는 전기화학적 솔루션의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	0%	E0
		- - - 기타(전기 작동식의 것)		
10427	9032.89.31	- - - - 자동 조정 전압기(스태빌라이저)	0%	E0
10428	9032.89.39	- - - - 기타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10429	9032.89.90	- - - 기타	0%	E0
	9032.90	- 부분품과 부속품		
10430	9032.90.10	- - 소호 제9032.89.10호의 물품의 것	0%	E0
10431	9032.90.20	- - 소호 제9032.89.20호의 물품의 것	0%	E0
10432	9032.90.30	- - 그 밖의 전기 작동식의 물품의 것	0%	E0
10433	9032.90.90	- - 기타	0%	E0
	90.33	**제90류의 기계·기기·장치·장비용 부분품과 부속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0434	9033.00.10	- 전기 작동식 기기용	0%	E0
10435	9033.00.20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기기용	0%	E0
	91.01	**손목시계·회중시계와 그 밖의 휴대용 시계(스톱워치를 포함하며, 케이스를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 손목시계(전기작동식으로 한정하며, 스톱워치 기능을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10436	9101.11.00	- -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0%	E0
10437	9101.19.00	- - 기타	0%	E0
		- 그 밖의 손목시계(스톱워치 기능을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10438	9101.21.00	- - 자동권(自動捲)식	0%	E0
10439	9101.29.00	- - 기타	0%	E0
		- 기타		
10440	9101.91.00	- - 전기구동식	0%	E0
10441	9101.99.00	- - 기타	0%	E0
	91.02	**손목시계·회중시계와 그 밖의 휴대용 시계(스톱워치를 포함하되 제9101호의 것은 제외한다)**		
		- 손목시계(전기구동식으로 한정하며, 스톱워치 기능을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10442	9102.11.00	- -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0%	E0
10443	9102.12.00	- -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0%	E0
10444	9102.19.00	- - 기타	0%	E0
		- 그 밖의 손목시계(스톱워치 기능을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10445	9102.21.00	- - 자동권(自動捲)식	0%	E0
10446	9102.29.00	- - 기타	0%	E0
		- 기타		
10447	9102.91.00	- - 전기구동식	0%	E0
10448	9102.99.00	- - 기타	0%	E0
	91.03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를 갖춘 클록(clock)(제 9104 호의 것은 제외한다)		
10449	9103.10.00	- 전기구동식	0%	E0
10450	9103.90.00	- 기타	0%	E0
	91.04	차량용・항공기용・우주선용・선박용 계기반 클록(clock)과 이와 유사한 클록(clock)		
10451	9104.00.10	- 차량용	0%	E0
10452	9104.00.90	- 기타	0%	E0
	91.05	그 밖의 클록(clock)		
		- 자명종시계		
10453	9105.11.00	- - 전기구동식	0%	E0
10454	9105.19.00	- - 기타	0%	E0
		- 벽시계		
10455	9105.21.00	- - 전기구동식	0%	E0
10456	9105.29.00	- - 기타	0%	E0
		- 기타		
	9105.91	- - 전기구동식		
10457	9105.91.10	- - - 항해용시계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10458	9105.91.90	- - - 기타	0%	E0
	9105.99	- - 기타		
10459	9105.99.10	- - - 항해용시계	0%	E0
10460	9105.99.90	- - - 기타	0%	E0
	91.06	시각을 기록하는 기기와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나 동기(同期)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서 시간을 측정·기록하거나 알리는 기기[예: 타임레지스터(time-register)·타임레코더(time-recorder)]		
10461	9106.10.00	- 타임레지스터(time-register), 타임레코더(time-recorder)	0%	E0
	9106.90	- 기타		
10462	9106.90.10	- - 주차시간 기록계	0%	E0
10463	9106.90.90	- - 기타	0%	E0
10464	9107.00.00	타임스위치[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나 동기(同期)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0%	E0
	91.08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완전한 것으로서 조립된 것으로 한정한다)		
		- 전기구동식		
10465	9108.11.00	- -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이나 기계식 표시부를 내장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것	0%	E0
10466	9108.12.00	- -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0%	E0
10467	9108.19.00	- - 기타	0%	E0
10468	9108.20.00	- 자동권(自動捲)식	0%	E0
10469	9108.90.00	- 기타	0%	E0
	91.09	클록 무브먼트(clock movement)(완전한 것으로서 조립된 것으로 한정한다)		
10470	9109.10.00	- 전기구동식	0%	E0
10471	9109.90.00	- 기타	0%	E0
	91.10	완전한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미조립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이나 부분적으로 조립된 것으로 한정한다)(무브먼트세트), 불완전한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조립된 것으로 한정한다), 러프(rough)한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		
		- 휴대용 시계의 것		
10472	9110.11.00	- - 완전한 무브먼트(movement)(미조립이나 부분적으로 조립한 것으로 한정한다)(무브먼트세트)	0%	E0
10473	9110.12.00	- - 불완전한 무브먼트(movement)(조립된 것으로 한정한다)	0%	E0
10474	9110.19.00	- - 러프 무브먼트(rough movement)	0%	E0
10475	9110.90.00	- 기타	0%	E0
	91.11	**휴대용 시계의 케이스와 그 부분품**		
10476	9111.10.00	-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케이스	0%	E0
10477	9111.20.00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케이스(금이나 은을 도금하였는지에 상관없다)	0%	E0
10478	9111.80.00	- 그 밖의 케이스	0%	E0
10479	9111.90.00	- 부분품	0%	E0
	91.12	**클록(clock) 케이스, 이 류의 그 밖의 물품에 사용되는 이와 유사한 유형의 케이스와 이들의 부분품**		
10480	9112.20.00	- 케이스	0%	E0
10481	9112.90.00	- 부분품	0%	E0
	91.13	**휴대용 시곗줄·휴대용 시계밴드·휴대용 시계팔찌와 이들의 부분품**		
10482	9113.10.00	-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	0%	E0
10483	9113.20.00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금이나 은을 도금하였는지에 상관없다)	0%	E0
10484	9113.90.00	- 기타	0%	E0
	91.14	**그 밖의 시계의 부분품**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10485	9114.10.00	- 스프링(헤어스프링을 포함한다)	0%	E0
10486	9114.30.00	- 문자판	0%	E0
10487	9114.40.00	- 지판과 브리지(bridge)	0%	E0
10488	9114.90.00	- 기타	0%	E0
	92.01	피아노(자동피아노를 포함한다)·하프시코드(harpsichord)와 그 밖의 건반이 있는 현악기		
10489	9201.10.00	- 업라이트(upright) 피아노	0%	E0
10490	9201.20.00	- 그랜드 피아노	0%	E0
10491	9201.90.00	- 기타	0%	E0
	92.02	그 밖의 현악기(예: 기타·바이올린·하프)		
10492	9202.10.00	- 활을 사용하는 것	0%	E0
10493	9202.90.00	- 기타	0%	E0
	92.05	관악기(예: 키보드 파이프 오르간·아코디언·클라리넷·트럼펫·백파이프)[페어그라운드 오르간(fairground organ)과 메커니컬 스트리트 오르간(mechanical street organ)은 제외한다]		
10494	9205.10.00	- 금관악기	0%	E0
	9205.90	- 기타		
10495	9205.90.10	- - 건반이 있는 파이프 오르간, 하모늄과 이와 유사한 프리메탈 리드식 건반악기	0%	E0
10496	9205.90.90	- - 기타	0%	E0
10497	9206.00.00	타악기[예: 북·목금·심벌·캐스터네츠·마라카스(maracas)]	0%	E0
	92.07	전기적으로 음이 발생하거나 증폭되는 악기(예: 오르간·기타·아코디언)		
10498	9207.10.00	- 건반악기(아코디언은 제외한다)	0%	E0
10499	9207.90.00	- 기타	0%	E0
	92.08	뮤지컬박스·페어그라운드 오르간(fairground organ)·메커니컬 스트리트 오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르간(mechanical street organ)·기계식 자명조(singing bird)·뮤지컬소(musical saw)와 그 밖의 악기로서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각종 데코이 콜(decoy call), 휘슬·호각과 그 밖의 입으로 불어서 나는 소리로 신호하는 기구		
10500	9208.10.00	- 뮤지컬박스	0%	E0
	9208.90	- 기타		
10501	9208.90.10	- - 데코이 콜(decoy call)· 휘슬·호각과 그 밖의 입으로 불어서 나는 소리로 신호하는 기구	0%	E0
10502	9208.90.90	- - 기타	0%	E0
	92.09	악기의 부분품(예: 뮤지컬박스용 메카니즘)과 부속품(예: 기계식 악기용 카드·디스크·롤), 박절기(metronom)·소리굽쇠, 각종 조율관(調律管)		
10503	9209.30.00	- 악기용 현	0%	E0
		- 기타		
	9209.91	- - 피아노의 부분품과 부속품		
10504	9209.91.10	- - - 업라이트(upright) 피아노용 스트렁백(Strung back)·키보드와 금속프레임	0%	E0
10505	9209.91.90	- - - 기타	0%	E0
10506	9209.92.00	- - 제 9202 호 악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0%	E0
10507	9209.94.00	- - 제 9207 호 악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0%	E0
10508	9209.99.00	- - 기타	0%	E0
	93.01	군용 무기[리볼버(revolver)·피스톨(pistol)과 제 9307 호의 무기는 제외한다]		
10509	9301.10.00	- 포병 무기(예: 평사포·곡사포와 박격포)	0%	E0
10510	9301.20.00	- 로켓발사기, 화염발사기, 유탄발사기, 어뢰발사관과 이와 유사한 발사장치	0%	E0
10511	9301.90.00	- 기타	0%	E0
10512	9302.00.00	리볼버(revolver)와 피스톨(pistol)(제 9303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호나 제 9304 호의 것은 제외한다)		
	93.03	그 밖의 화기와 폭약으로 점화되는 이와 유사한 장치[예: 경기용 산탄총과 라이플(rifle), 총구장전 화기, 베리식 피스톨(Very pistol), 신호용 화염만을 발생하는 그 밖의 장치, 공포탄용 피스톨(pistol)·리볼버(revolver), 캡티브볼트(captive-bolt)형 무통(無痛) 도살기, 줄 발사총(line-throwing gun)]		
10513	9303.10.00	- 총구장전 화기	0%	E0
	9303.20	- 그 밖의 스포츠용·수렵용·표적사격용 산탄총[산탄총과 라이플(rifle) 기능이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10514	9303.20.10	- - 수렵용 산탄총	0%	E0
10515	9303.20.90	- - 기타	0%	E0
	9303.30	- 그 밖의 스포츠용·수렵용·표적사격용 라이플(rifle)		
10516	9303.30.10	- - 수렵용 라이플(rifle)	0%	E0
10517	9303.30.90	- - 기타	0%	E0
10518	9303.90.00	- 기타	0%	E0
	93.04	그 밖의 무기(예: 스프링총·공기총·가스총·경찰봉)(제 9307 호의 것은 제외한다)		
10519	9304.00.10	- 공기총(1 제곱센티미터당 7 킬로그램중 미만의 압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0%	E0
10520	9304.00.90	- 기타	0%	E0
	93.05	부분품과 부속품(제 9301 호부터 제 9304 호까지의 것으로 한정한다)		
10521	9305.10.00	- 리볼버(revolver)나 피스톨(pistol)의 것	0%	E0
10522	9305.20.00	- 산탄총 또는 라이플(rifle)의 것(제 9303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0%	E0
		- 기타		
	9305.91	- - 제 9301 호의 군용 무기의 것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10523	9305.91.10	- - - 가죽 또는 방직용 재료로 만든 것	0%	E0
10524	9305.91.90	- - - 기타	0%	E0
	9305.99	- - 기타		
		- - - 소호 제 9304.00.90 호의 물품의 것		
10525	9305.99.11	- - - - 가죽 또는 방직용 재료로 만든 것	0%	E0
10526	9305.99.19	- - - - 기타	0%	E0
		- - - 기타		
10527	9305.99.91	- - - - 가죽 또는 방직용 재료로 만든 것	0%	E0
10528	9305.99.99	- - - - 기타	0%	E0
	93.06	**폭탄·유탄·어뢰·지뢰·미사일과 이와 유사한 군수품과 이들의 부분품, 탄약·그 밖의 총포탄·탄두와 이들의 부분품[산탄알과 탄약 안에 충전되는 와드(wad)를 포함한다]**		
		- 산탄총용 탄약과 그 부분품, 공기총 탄환		
10529	9306.21.00	- - 탄약	0%	E0
10530	9306.29.00	- - 기타	0%	E0
	9306.30	- 그 밖의 탄약과 그 부분품		
		- - 제 9302 호의 리볼버와 피스톨용		
10531	9306.30.11	- - - 22 구경 탄약	0%	E0
10532	9306.30.19	- - - 기타	0%	E0
10533	9306.30.20	- - 리베팅용이나 이와 유사한 공구용·무통 도살기용 탄약과 이들의 부분품	0%	E0
10534	9306.30.30	- - 경기용(sporting)·수렵용(hunting)·표적사격용(target shooting)의 총(gun)·라이플(rifle) 및 카빈총(carbine)(산탄총은 제외한다)	0%	E0
		- - 기타		
10535	9306.30.91	- - - 22 구경 탄약	0%	E0
10536	9306.30.99	- - - 기타	0%	E0
10537	9306.90.00	- 기타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10538	9307.00.00	검류·창과 이와 유사한 무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집	0%	E0
	94.01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제 9402 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		
10539	9401.10.00	- 항공기용 의자	0%	E0
	9401.20	- 차량용 의자		
10540	9401.20.10	- - 제 8702 호·제 8703 호 또는 제 8704 호의 차량용의 것	0%	E0
10541	9401.20.90	- - 기타	0%	E0
10542	9401.30.00	- 회전의자(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	E0
10543	9401.40.00	- 침대 겸용 의자[가든시트(garden seat)나 캠핑용은 제외한다]	0%	E0
		- 등나무·버드나무 가지(osier)·대나무나이와 유사한 재료로 만든 의자		
10544	9401.52.00	- - 대나무로 만든 것	0%	E0
10545	9401.53.00	- - 등나무로 만든 것	0%	E0
10546	9401.59.00	- - 기타	0%	E0
		- 그 밖의 의자(프레임이 나무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10547	9401.61.00	- - 의자의 속·용수철·커버 등을 댄 것	0%	E0
	9401.69	- - 기타		
10548	9401.69.10	- - - 등나무로 만든 등받이의자 및/또는 의자	0%	E0
10549	9401.69.90	- - - 기타	0%	E0
		- 그 밖의 의자(프레임이 금속으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10550	9401.71.00	- - 의자의 속·용수철·커버 등을 댄 것	0%	E0
	9401.79	- - 기타		
10551	9401.79.10	- - - 등나무로 만든 등받이의자 및/또는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의자		
10552	9401.79.90	- - - 기타	0%	E0
10553	9401.80.00	- 그 밖의 의자	0%	E0
	9401.90	- 부분품		
10554	9401.90.10	- - 소호 제 9401.10.00 호의 의자의 것	0%	E0
		- - 소호 제 9401.20 호의 의자의 것		
10555	9401.90.31	- - - 헤드레스트(headrest) 보강제(소호 제 9401.20.10 호의 의자용)	0%	E0
10556	9401.90.39	- - - 기타	0%	E0
10557	9401.90.40	- - 소호 제 9401.30.00 호의 의자의 것	0%	E0
		- - 기타		
10558	9401.90.92	- - -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0%	E0
10559	9401.90.99	- - - 기타	0%	E0
	94.02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과용 가구류(예: 수술대・검사대・기계식 장비를 갖춘 병원용 침대・치과용 의자), 회전・뒤로 젖힘・상하 조절 기능을 갖춘 이발용 의자와 이와 유사한 의자, 이들의 부분품**		
	9402.10	- 치과용 의자・이발용 의자나 이와 유사한 의자와 이들의 부분품		
10560	9402.10.10	- - 치과용 의자와 이들의 부분품	0%	E0
10561	9402.10.30	- - 이발용 의자나 이와 유사한 의자와 이들의 부분품	0%	E0
	9402.90	- 기타		
10562	9402.90.10	- - 내과용・외과용이나 수의과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가구와 이들의 부분품	0%	E0
10563	9402.90.20	- - 변기 겸용 의자	0%	E0
10564	9402.90.90	- - 기타	0%	E0
	94.03	**그 밖의 가구와 그 부분품**		
10565	9403.10.00	- 금속으로 만든 사무실용 가구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9403.20	- 금속으로 만든 그 밖의 가구		
10566	9403.20.10	- - 환기통	0%	E0
10567	9403.20.90	- - 기타	0%	E0
10568	9403.30.00	- 사무실용 목제가구	0%	E0
10569	9403.40.00	- 주방용 목제가구	0%	E0
10570	9403.50.00	- 침실용 목제가구	0%	E0
	9403.60	- 그 밖의 목제가구		
10571	9403.60.10	- - 환기통	0%	E0
10572	9403.60.90	- - 기타	0%	E0
	9403.70	- 플라스틱으로 만든 가구		
10573	9403.70.10	- - 보행기	0%	E0
10574	9403.70.20	- - 환기통	0%	E0
10575	9403.70.90	- - 기타	0%	E0
		-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가구[등나무·버드나무 가지(osier)·대나무나 이와 유사한 재료로 만든 것을 포함한다]		
10576	9403.82.00	- - 대나무로 만든 것	0%	E0
10577	9403.83.00	- - 등나무로 만든 것	0%	E0
	9403.89	- - 기타		
10578	9403.89.10	- - - 환기통	0%	E0
10579	9403.89.90	- - - 기타	0%	E0
	9403.90	- 부분품		
10580	9403.90.10	- - 제 9403.70.10 호의 것	0%	E0
10581	9403.90.90	- - 기타	0%	E0
	94.04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예: 매트리스·이불·우모이불·쿠션·푸프(pouff)·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한 것이나 각종 재료를 채우거나 내부에 끼워 넣은 것이나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피복하였는지에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상관없다)		
10582	9404.10.00	-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	0%	E0
		- 매트리스		
	9404.21	- -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피복하였는지에 상관없다)		
10583	9404.21.10	- - - 셀룰러 고무로 만든 것(피복하였는지에 상관없다)	0%	E0
10584	9404.21.20	- - - 셀룰러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피복하였는지에 상관없다)	0%	E0
	9404.29	- -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10585	9404.29.10	- - - 스프링 매트리스	0%	E0
10586	9404.29.20	- - - 기타(발열형의 것)	0%	E0
10587	9404.29.90	- - - 기타	0%	E0
10588	9404.30.00	- 침낭(sleeping bag)	0%	E0
	9404.90	- 기타		
10589	9404.90.10	- - 퀼트(quilts)·침대덮개와 매트리스 보호용품	0%	E0
10590	9404.90.90	- - 기타	0%	E0
	94.05	램프·조명기구[서치라이트(searchlight)·스포트라이트(spotlight)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부분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9405.10	- 샹들리에(chandelier)와 그 밖의 천장용·벽 부착용 전기식 조명기구[공공공지(公共空地)나 통행로에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10591	9405.10.20	- - 수술실용 램프	0%	E0
		- - 기타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10592	9405.10.91	- - - 스포트라이트(spotlight)	0%	E0
10593	9405.10.92	- - - 형광등과 조명기구	0%	E0
10594	9405.10.99	- - - 기타	0%	E0
	9405.20	- 전기식의 테이블・책상・침대・마루스탠드 램프		
10595	9405.20.10	- - 수술실용 램프	0%	E0
10596	9405.20.90	- - 기타	0%	E0
10597	9405.30.00	- 크리스마스 장식용 조명세트	0%	E0
	9405.40	- 그 밖의 전기램프와 조명기구		
10598	9405.40.20	- - 서치라이트(searchlight)	0%	E0
10599	9405.40.40	- - 그 밖의 스포트라이트(spotlight)	0%	E0
10600	9405.40.50	- - 기타(공공장소나 통행로에 사용되는 조명으로 한정한다)	0%	E0
10601	9405.40.60	- - 그 밖의 옥외조명	0%	E0
10602	9405.40.70	- - 비섬광성 비행장용 표지,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기관차・철도차량・항공기・선박・등대용 램프	0%	E0
10603	9405.40.80	- - 제8516호의 가정용 전열기기의 장착용 파일럿 램프(pilot lamp)	0%	E0
		- - 기타		
10604	9405.40.91	- - - 의학용으로 설계제작된 광섬유 헤드밴드 램프	0%	E0
10605	9405.40.99	- - - 기타	0%	E0
	9405.50	- 비전기식 램프와 조명기구		
		- - 기름 연소형의 것		
10606	9405.50.11	- - - 종교의식에 사용하는 촛대	0%	E0
10607	9405.50.19	- - - 기타	0%	E0
10608	9405.50.40	- - 허리케인 램프(Hurricane lamp)	0%	E0
10609	9405.50.50	- - 광부용 램프 및 채석공용 램프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10610	9405.50.90	- - 기타	0%	E0
	9405.60	-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		
10611	9405.60.10	- - 경보사인·도로명 사인·선로와 교통 사인	0%	E0
10612	9405.60.90	- - 기타	0%	E0
		- 부분품		
	9405.91	- - 유리로 만든 것		
10613	9405.91.10	- - - 수술실 램프용	0%	E0
10614	9405.91.20	- - - 스포트라이트(spotlight)용	0%	E0
10615	9405.91.40	- - - 글로브(globe)나 굴뚝	0%	E0
10616	9405.91.50	- - - 서치라이트(searchlight)용	0%	E0
10617	9405.91.90	- - - 기타	0%	E0
	9405.92	- -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10618	9405.92.10	- - - 수술실 램프용	0%	E0
10619	9405.92.20	- - - 스포트라이트(spotlight)용	0%	E0
10620	9405.92.30	- - - 서치라이트(searchlight)용	0%	E0
10621	9405.92.90	- - - 기타	0%	E0
	9405.99	- - 기타		
10622	9405.99.10	- - -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램프갓	0%	E0
10623	9405.99.20	- - - 그 밖의 재료로 만든 램프갓	0%	E0
10624	9405.99.30	- - - 소호 제9405.50.11호나 제9405.50.19호의 램프의 것	0%	E0
10625	9405.99.40	- - - 서치라이트(searchlight)나 스포트라이트(spotlight)용	0%	E0
10626	9405.99.50	- - - 기타(금속 또는 도자제로 만든 것)	0%	E0
10627	9405.99.90	- - - 기타	0%	E0
	94.06	**조립식 건축물**		
	9406.10	- 나무로 만든 것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10628	9406.10.10	- - 기계식 또는 열 장비를 갖춘 온실	0%	E0
10629	9406.10.90	- - 기타	8%	E10
	9406.90	- 기타		
		- - 기계식 또는 열 장비를 갖춘 온실		
10630	9406.90.11	- - - 철강 또는 철강재로 만든 것	0%	E0
10631	9406.90.19	- - - 기타	0%	E0
10632	9406.90.20	- - 기타(플라스틱 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0%	E0
10633	9406.90.30	- - 기타(철강 또는 철강재로 만든 것)	0%	E0
10634	9406.90.40	- - 기타(시멘트·콘크리트·인조석으로 만든 것)	0%	E0
10635	9406.90.90	- - 기타	0%	E0
	95.03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		
10636	9503.00.10	-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0%	E0
		- 인형		
10637	9503.00.21	- - 인형(옷을 입힌 것인지는 상관없다)	5%	E10
		- - 부분품과 부속품		
10638	9503.00.22	- - - 의류와 의류부속품, 신발과 모자류	0%	E0
10639	9503.00.29	- - - 기타	0%	E0
10640	9503.00.30	- 전기식 기차(궤도·신호기기와 그 밖의 부속품을 포함한다)	0%	E0
10641	9503.00.40	-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0%	E0
10642	9503.00.50	- 그 밖의 조립세트와 조립식완구(플라스틱 재료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0%	E0
10643	9503.00.60	- 속이 채워져 있는 동물을 모방한 완구나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사람을 모방하지 않은 완구		
10644	9503.00.70	- 각종 퍼즐	0%	E0
		- 기타		
10645	9503.00.91	- - 숫자·알파벳 또는 동물 블록이나 오리기 완구, 낱말 쌓기 세트, 낱말 만들기 및 말하기 세트, 완구 미술세트, 완구용 주판(주판), 완구용 재봉틀, 완구용 타자기 완구	0%	E0
10646	9503.00.92	- - 줄넘기 줄	0%	E0
10647	9503.00.93	- - 구슬	0%	E0
10648	9503.00.94	- - 그 밖의 완구(고무로 만든 것)	0%	E0
10649	9503.00.99	- - 기타	0%	E0
	95.04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오락용구·테이블게임용구나 실내게임용구(핀테이블용구·당구용구·카지노게임용 특수테이블·자동식 볼링장용구를 포함한다)**		
	9504.20	- 각종 당구용구와 부속품		
10650	9504.20.20	- - 모든 종류의 당구용 테이블	0%	E0
10651	9504.20.30	- - 당구분필	0%	E0
10652	9504.20.90	- - 기타	0%	E0
	9504.30	- 그 밖의 게임용구(코인·은행권·은행카드·토큰과 그 밖의 지급수단으로 작동되는 것으로 한정하며 자동식 볼링장용구는 제외한다)		
10653	9504.30.10	- - 핀테이블이나 슬롯 기계	0%	E0
10654	9504.30.20	- - 목재·종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부분품	0%	E0
10655	9504.30.90	- - 기타	0%	E0
10656	9504.40.00	- 오락용 카드	0%	E0
	9504.50	-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소호 제9504.30 호의 것들은 제외한다)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10657	9504.50.10	- - 텔레비전 수상기와 함께 사용하는 것	0%	E0
10658	9504.50.90	- - 기타	0%	E0
	9504.90	- 기타		
10659	9504.90.10	- - 모든 종류의 볼링 필수품	0%	E0
		- - 다트(dart)와 그 부분품과 부속품		
10660	9504.90.21	- - - 목재·종이·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0%	E0
10661	9504.90.29	- - - 기타	0%	E0
		- - 갬블링 장비와 용품		
10662	9504.90.32	- - - 카지노 게임용으로 제작된 테이블(목재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0%	E0
10663	9504.90.33	- - - 그 밖의 테이블(카지노 게임용으로 제작된 것)	0%	E0
10664	9504.90.34	- - - 마작 패(목재·종이·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0%	E0
10665	9504.90.35	- - - 그 밖의 마작 패	0%	E0
10666	9504.90.36	- - - 기타(목재·종이·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0%	E0
10667	9504.90.39	- - - 기타	0%	E0
		- - 기타		
		- - - 게임용으로 설계된 테이블		
10668	9504.90.92	- - - - 목재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0%	E0
10669	9504.90.93	- - - - 기타	0%	E0
		- - - 기타		
10670	9504.90.95	- - - - 목재·종이·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0%	E0
10671	9504.90.99	- - - - 기타	0%	E0
	95.05	**축제용품·카니발용품이나 그 밖의 오락용품[마술용품과 기술(奇術)용품을 포함한다]**		
10672	9505.10.00	- 크리스마스 축제용품	0%	E0
10673	9505.90.00	- 기타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95.06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탁구용품을 포함한다), 옥외게임용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paddling pool)용품		
		- 설상 스키와 그 밖의 설상 스키용품		
10674	9506.11.00	- - 스키	0%	E0
10675	9506.12.00	- - 스키파스닝(skifastening)(스키바인딩)	0%	E0
10676	9506.19.00	- - 기타	0%	E0
		- 수상스키·서프보드(surf board)·세일보드(sailboard)와 그 밖의 수상 운동용구		
10677	9506.21.00	- - 세일보드(sailboard)	0%	E0
10678	9506.29.00	- - 기타	0%	E0
		- 골프채와 그 밖의 골프용품		
10679	9506.31.00	- - 골프채(완제품으로 한정한다)	0%	E0
10680	9506.32.00	- - 구(球)	0%	E0
10681	9506.39.00	- - 기타	0%	E0
	9506.40	- 탁구용구		
10682	9506.40.10	- - 탁구대	0%	E0
10683	9506.40.90	- - 기타	0%	E0
		- 테니스용 라켓·배드민턴용 라켓이나 이와 유사한 라켓(줄을 맨 것인지에 상관없다)		
10684	9506.51.00	- - 론테니스(lawntennis) 라켓(줄을 맨 것인지에 상관없다)	0%	E0
10685	9506.59.00	- - 기타	0%	E0
		- 공(골프공과 탁구공은 제외한다)		
10686	9506.61.00	- - 론테니스(lawntennis) 공	0%	E0
10687	9506.62.00	- - 공기를 넣어 부풀게 하는 것	5%	E10
10688	9506.69.00	- - 기타	5%	EX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10689	9506.70.00	- 아이스스케이트와 롤러스케이트(스케이트가 부착된 스케이팅부츠를 포함한다)	0%	E0
		- 기타		
10690	9506.91.00	- -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 또는 육상 경기에 사용하는 물품	0%	E0
	9506.99	- - 기타		
10691	9506.99.10	- - - 활(석궁을 포함한다) 및 화살	0%	E0
10692	9506.99.20	- - - 네트, 크리켓 패드나 정강이 보호대	0%	E0
10693	9506.99.30	- - - 셔틀콕	0%	E0
10694	9506.99.90	- - - 기타	0%	E0
	95.07	**낚싯대·낚싯바늘과 그 밖의 낚시용구, 낚시용 망·포충망(捕蟲網)과 이와 유사한 망, 조류 유인용구(제 9208 호나 제 9705 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수렵용구**		
10695	9507.10.00	- 낚싯대	0%	E0
10696	9507.20.00	- 낚싯바늘(낚싯줄에 매는 짧은 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0%	E0
10697	9507.30.00	- 낚시 릴	0%	E0
10698	9507.90.00	- 기타	0%	E0
	95.08	**회전목마·그네·실내사격연습장용품과 그 밖의 놀이공원용품과 순회서커스·순회동물원·순회극장 용품**		
10699	9508.10.00	- 순회서커스와 순회동물원 용품	0%	E0
10700	9508.90.00	- 기타	0%	E0
	96.01	**가공한 아이보리(ivory)·뼈·귀갑(龜甲)·뿔·가지진 뿔·산호·자개·그 밖의 동물성 조각용 재료와 그 제품(성형품을 포함한다)**		
	9601.10	- 가공한 아이보리(ivory)와 그 제품		
10701	9601.10.10	- - 시가나 담배 케이스·담배항아리, 장식용 물품	5%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10702	9601.10.90	- - 기타	5%	E0
	9601.90	- 기타		
		- - 가공한 자개 또는 귀갑(龜甲) 및 앞에 열거한 것의 제품		
10703	9601.90.11	- - - 시가나 담배 케이스·담배항아리, 장식용 물품	0%	E0
10704	9601.90.12	- - - 진주핵	0%	E0
10705	9601.90.19	- - - 기타	0%	E0
10706	9601.90.90	- - 기타	5%	E0
	96.02	가공한 식물성이나 광물성 조각용 재료와 그 제품, 성형품이나 조각품[왁스·스테아린(stearin)·천연수지·모델링페이스트(modelling paste)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그 밖의 성형품이나 조각품, 가공한 비경화(非硬化) 젤라틴(제 3503 호의 젤라틴은 제외한다)과 비경화(非硬化) 젤라틴의 제품		
10707	9602.00.10	- 제약용 젤라틴 캡슐	0%	E0
10708	9602.00.20	- 시가나 담배 케이스·담배항아리, 장식용 물품	0%	E0
10709	9602.00.90	- 기타	0%	E0
	96.03	비·브러시(기계·기구·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모터를 갖추지 않은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으로 한정한다)·모프(mop)·깃 먼지털이, 비나 브러시의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tuft)의 모양으로 정돈한 물품, 페인트용 패드·롤러·스퀴지(squeegee)[롤러스퀴지(roller squeegee)는 제외한다]		
	9603.10	- 비와 브러시(작은 가지나 그 밖의 식물성 재료를 단순히 묶은 것으로 한정하며, 자루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10710	9603.10.10	- - 브러시	0%	E0
10711	9603.10.20	- - 비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 칫솔·면도용 브러시·헤어 브러시·네일 브러시·아이래쉬(eyelash) 브러시와 그 밖의 인체용인 화장용 브러시(화장기구의 일부를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		
10712	9603.21.00	- - 칫솔[덴탈플레이트(dentalplate) 브러시를 포함한다]	0%	E0
10713	9603.29.00	- - 기타	0%	E0
10714	9603.30.00	- 회화용 붓·필기용 붓과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붓	0%	E0
10715	9603.40.00	- 페인트용·디스템퍼(distemper)용·바니시(varnish)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의 브러시(소호 제 9603.30 호의 브러시는 제외한다), 페인트용 패드와 롤러	0%	E0
10716	9603.50.00	- 그 밖의 브러시(기계·기구나 차량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E0
	9603.90	- 기타		
10717	9603.90.10	- - 비나 브러시의 제조용으로 묶고 술(tufts)의 모양으로 정돈한 물품	0%	E0
10718	9603.90.20	- - 모터를 갖추지 않은 기계식 바닥 청소기(수동식으로 한정한다)	0%	E0
10719	9603.90.40	- - 그 밖의 브러시	0%	E0
10720	9603.90.90	- - 기타	0%	E0
	96.04	**수동식 체와 어레미**		
10721	9604.00.10	- 금속으로 만든 것	0%	E0
10722	9604.00.90	- 기타	0%	E0
10723	**9605.00.00**	**개인용 여행세트(화장용·바느질용 또는 신발이나 의류 청소용으로 한정한다)**	0%	E0
	96.06	**단추·프레스파스너(press-fastener)·스냅파스너(snap-fastener)·프레스스터드(press-stud)·단추의 몰드(mould)와 이들의 부분품, 단추 블랭크(blank)**		
	9606.10	- 프레스파스너(press-fastener)·스냅파스너(snap-fastener)·프레스스터드(press-st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ud)와 이들의 부분품		
10724	9606.10.10	- -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0%	E0
10725	9606.10.90	- - 기타	0%	E0
		- 단추		
10726	9606.21.00	- -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서 방직용 섬유재료로 피복되어 있지 않은 것	0%	E0
10727	9606.22.00	-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으로서 방직용 섬유재료로 피복되어 있지 않은 것	0%	E0
10728	9606.29.00	- - 기타	0%	E0
	9606.30	- 단추의 몰드(mould)와 단추의 부분품, 단추 블랭크(blank)		
10729	9606.30.10	- -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0%	E0
10730	9606.30.90	- - 기타	0%	E0
	96.07	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와 그 부분품		
		- 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		
10731	9607.11.00	- - 체인스쿠프(chain scoop)를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	0%	E0
10732	9607.19.00	- - 기타	0%	E0
10733	9607.20.00	- 부분품	0%	E0
	96.08	볼펜, 팁(tip)이 펠트로 된 것과 그 밖의 포러스팁(porous-tip)으로 된 펜과 마커, 만년필·철필(鐵筆)형 만년필(stylograph pen)과 그 밖의 펜, 복사용 철필(鐵筆), 프로펠링펜슬(propelling pencil)이나 슬라이딩펜슬(sliding pencil), 펜홀더·펜슬홀더와 이와 유사한 홀더, 이들의 부분품[캡과 클립(clip)을 포함하며 제9609호의 것은 제외한다]		
	9608.10	- 볼펜		
10734	9608.10.10	- -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0%	E0
10735	9608.10.90	- - 기타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10736	9608.20.00	- 팁(tip)이 펠트로 된 것과 그 밖의 포러스팁(porous-tip)으로 된 펜과 마커	0%	E0
	9608.30	- 만년필·철필(鐵筆)형 만년필(stylograph pen)과 그 밖의 펜		
10737	9608.30.20	- - 만년필	0%	E0
10738	9608.30.90	- - 기타	0%	E0
10739	9608.40.00	- 프로펠링펜슬(propelling pencil)이나 슬라이딩펜슬(sliding pencil)	0%	E0
10740	9608.50.00	- 위 소호들의 물품이 두 개 이상으로 세트를 이루는 것	0%	E0
	9608.60	- 볼펜용 심(볼포인트와 잉크 저장기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10741	9608.60.10	- -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0%	E0
10742	9608.60.90	- - 기타	0%	E0
		- 기타		
	9608.91	- - 펜촉과 닙포인트(nib point)		
10743	9608.91.10	- - - 금이나 금으로 도금한 것	0%	E0
10744	9608.91.90	- - - 기타	0%	E0
	9608.99	- - 기타		
10745	9608.99.10	- - - 복사용 만년필	0%	E0
		- - - 기타		
10746	9608.99.91	- - - - 플라스틱으로 만든 볼펜 부분품	0%	E0
10747	9608.99.99	- - - - 기타	0%	E0
	96.09	**연필(제 9608 호의 펜슬은 제외한다)·크레용·연필심·파스텔·도화용 목탄·필기용이나 도화용 초크와 재단사용 초크**		
	9609.10	- 연필과 크레용(견고한 집 속에 심을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10748	9609.10.10	- - 검은색 연필	0%	E0
10749	9609.10.90	- - 기타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10750	9609.20.00	- 연필심(검은색이나 색깔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	E0
	9609.90	- 기타		
10751	9609.90.10	- - 칠판용 필기구	0%	E0
10752	9609.90.30	- - 연필과 크레용(소호 제 9609.10 호의 것은 제외한다)	0%	E0
		- - 기타		
10753	9609.90.91	- - - 필기용이나 도화용 초크	0%	E0
10754	9609.90.99	- - - 기타	0%	E0
	96.10	석판과 보드(필기용이나 도화용 면을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틀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10755	9610.00.10	- 칠판	0%	E0
10756	9610.00.90	- 기타	0%	E0
10757	9611.00.00	날짜 도장·봉합용 스탬프·넘버링스탬프(numbering stamp)와 이와 유사한 물품[레이블(label)에 날인하거나 양각하는 기구를 포함하며, 수동식으로 한정한다], 수동식 조판용 스틱과 조판용 스틱을 결합한 수동식 인쇄용 세트	0%	E0
	96.12	타자기용 리본이나 이와 유사한 리본(잉크가 침투되어 있거나 인쇄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 것을 포함하며, 스풀에 감긴 것이거나 카트리지 모양인지에 상관없다)과 잉크 패드(잉크가 침투되어 있는지 또는 상자들이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9612.10	- 리본		
10758	9612.10.10	- - 방직용 직물로 만든 것	0%	E0
10759	9612.10.90	- - 기타	0%	E0
10760	9612.20.00	- 잉크 패드	0%	E0
	96.13	담배 라이터와 그 밖의 라이터(기계식이나 전기식인지에 상관없다)와 이들의 부분품(라이터 돌과 심지는 제외한다)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9613.10	- 포켓형 라이터(가스 주입식으로 다시 채울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10761	9613.10.10	- -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0%	E0
10762	9613.10.90	- - 기타	0%	E0
	9613.20	- 포켓형 라이터(가스 주입식으로 다시 채울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10763	9613.20.10	- -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0%	E0
10764	9613.20.90	- - 기타	0%	E0
	9613.80	- 그 밖의 라이터		
10765	9613.80.10	- - 스토브와 레인지용 압전 라이터	0%	E0
10766	9613.80.20	- - 플라스틱으로 만든 담배라이터나 테이블 라이터	0%	E0
10767	9613.80.30	- - 담배라이터나 테이블 라이터(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0%	E0
10768	9613.80.90	- - 기타	0%	E0
	9613.90	- 부분품		
10769	9613.90.10	- - 다시 채울 수 있는 카트리지 또는 그 밖의 용기(기계식 라이터를 구성하는 부분품으로, 액체 연료 또는 액체 가스를 담을 수 있는 것)	0%	E0
10770	9613.90.90	- - 기타	0%	E0
	96.14	**흡연용 파이프[파이프 볼(pipe bowl)을 포함한다]·시가홀더·시가렛홀더, 이들의 부분품**		
10771	9614.00.10	- 나무나 뿌리로 거칠게 성형한 블록(파이프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E0
10772	9614.00.90	- 기타	0%	E0
	96.15	**빗·헤어슬라이드(hair-slide)와 이와 유사한 물품·머리핀·컬링핀(curling pin)·컬링그립(curling grip)·헤어컬러(hair curler)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851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과 이들의 부분**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품		
		- 빗·헤어슬라이드(hairslide)와 이와 유사한 물품		
	9615.11	- - 경화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10773	9615.11.20	- - - 경화고무로 만든 것	0%	E0
10774	9615.11.30	- - -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0%	E0
10775	9615.19.00	- - 기타	0%	E0
	9615.90	- 기타		
		- - 장식용 머리핀		
10776	9615.90.11	- - -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0%	E0
10777	9615.90.12	- - - 철강으로 만든 것	0%	E0
10778	9615.90.13	- - -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0%	E0
10779	9615.90.19	- - - 기타	0%	E0
		- - 부분품		
10780	9615.90.21	- - -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0%	E0
10781	9615.90.22	- - - 철강으로 만든 것	0%	E0
10782	9615.90.23	- - -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0%	E0
10783	9615.90.29	- - - 기타	0%	E0
		- - 기타		
10784	9615.90.91	- - -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0%	E0
10785	9615.90.92	- - - 철강으로 만든 것	0%	E0
10786	9615.90.93	- - -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0%	E0
10787	9615.90.99	- - - 기타	0%	E0
	96.16	**향수용 분무기와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 이들의 마운트(mount)와 두부(頭部), 화장용 분첩과 패드**		
	9616.10	- 향수용 분무기와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 이들의 마운트(mount)와 두부(頭部)		
10788	9616.10.10	- - 향수용 분무기와 이와 유사한 화장용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분무기		
10789	9616.10.20	- - 마운트(mount)와 두부(頭部)	0%	E0
10790	9616.20.00	- 화장용 분첩과 패드	0%	E0
	96.17	**보온병과 그 밖의 진공용기(케이스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와 그 부분품(유리로 만든 내부용기는 제외한다)**		
10791	9617.00.10	- 보온병과 그 밖의 진공용기(케이스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0%	E0
10792	9617.00.20	- 그 부분품(유리로 만든 내부용기는 제외한다)	0%	E0
10793	**9618.00.00**	**마네킹 인형과 그 밖의 모델형 인형, 자동 인형과 그 밖의 쇼윈도 장식용인 움직이는 전시용품**	0%	E0
	96.19	**위생 타월(패드)·탐폰(tampon), 유아용 냅킨·냅킨라이너(napkin liner)와 이와 유사한 물품(어떤 재질이라도 가능하다)**		
		- 일회용 물품		
10794	9619.00.11	- - 흡수성 코어가 방직용 섬유재료의 워딩으로 된 것	0%	E0
10795	9619.00.12	- - 위생 타월과 탐폰(tampon)[종이·제지용 펄프·셀룰로오스워딩(cellulose wadding) 또는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것]	0%	E0
10796	9619.00.13	- - 유아 실금용 냅킨과 패드[종이·제지용 펄프·셀룰로오스워딩(cellulose wadding) 또는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것]	0%	E0
10797	9619.00.14	- - 기타[종이·제지용 펄프·셀룰로오스워딩(cellulose wadding) 또는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것]	0%	E0
10798	9619.00.19	- - 기타	0%	E0
		- 기타		
10799	9619.00.91	- -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0%	E0

번호	HS 코드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10800	9619.00.99	- - 기타	0%	E0
	96.20	일각대·양각대·삼각대와 이와 유사한 물품		
10801	9620.00.10	-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5%	EX
10802	9620.00.20	- 탄소나 흑연으로 만든 것	0%	E0
10803	9620.00.30	- 철과 강철로 만든것	5%	E7
10804	9620.00.40	-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0%	E0
10805	9620.00.90	- 기타	0%	E0
	97.01	회화·데생·파스텔(손으로 직접 그린 것으로 한정하며, 제 4906 호의 도안과 손으로 그렸거나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콜라주(collage)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10806	9701.10.00	- 회화·데생과 파스텔	0%	E0
10807	9701.90.00	- 기타	0%	E0
10808	9702.00.00	오리지널 판화·인쇄화와 석판화	0%	E0
10809	9703.00.00	오리지널 조각과 조상(彫像)(어떤 재료라도 가능하다)	0%	E0
10810	9704.00.00	우표 또는 수입인지·우편요금 별납증서·초일(初日)봉투·우편엽서류와 이와 유사한 것(이미 사용한 것이나 제 4907 호의 것은 제외한 사용하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	0%	E0
	97.05	수집품과 표본[동물학·식물학·광물학·해부학·사학·고고학·고생물학·민족학·고전학(古錢學)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10811	9705.00.10	- 사학·고고학·고생물학·민족학에 관한 것	0%	E0
10812	9705.00.90	- 기타	0%	E0
10813	9706.00.00	골동품(제작 후 100 년을 초과한 것으로 한정한다)	0%	E0

제 3 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제 1 절
원산지 규정

제 3.1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운임보험료포함가격(CIF)이란 수입된 상품의 가격을 말하며, 수입국으로 들어오는 항구 또는 반입지점까지의 화물운송 및 보험 비용을 포함한다. 평가는 1994 년도 GATT 제 7 조 및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실시한다.

수출자란 수출 당사국에 소재하며 상품을 수출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본선인도가격(FOB)이란 생산자로부터 해외 최종 선적 항구 또는 장소까지 드는 운송 비용을 포함한 상품의 본선인도가격(FOB)의 가치를 말한다. 평가는 1994 년도 GATT 제 7 조 및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실시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이란 수입, 경비, 비용, 자산 및 부채의 기록, 정보의 공개, 그리고 재무제표의 작성에 대하여 당사국의 영역에서 인정된 컨센서스 또는 실질적이고 권위 있는 지지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은 세부 표준, 관행 및 절차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적용을 위한 폭넓은 지침을 포함할 수 있다.

동일하고 대체 가능한 상품 또는 재료란 동종이고 상업적으로 동질이며, 동일한 기술적 및 물리적 특성을 보유하고, 일단 최종 상품에 결합되는 경우 원산지 목적상 어떤 표시 등에 의해서도 서로 구별될 수 없는 상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수입자란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며 상품을 수입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재료는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원료, 원재료, 부품, 구성품, 하위 조립품을 포함한다.

비원산지 상품이란 이 장에 따라 원산지 자격을 갖추지 않은 생산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운송을 위한 포장재료와 용기란 운송 동안 상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상품을 말하며, 소매를 위하여 사용되는 재료 또는 용기와는 다르다.

생산자란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을 수행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품목별 원산지 규정이란 재료가 세번의 변경이나 특정 제조 또는 가공 공정을 거쳤거나, 역내가치포함비율/인정가치포함비율(RVC/QVC)[1] 또는 이러한 기준들이 결합된 기준을 충족함을 명시하는 규정을 말한다. 그리고

생산이란 상품의 재배, 채굴, 수확, 사육, 번식, 추출, 채집, 수집, 포획, 어로, 덫사냥, 수렵, 제조, 가공 또는 조립을 포함한 상품의 획득 방법을 말한다.

제 3.2 조
원산지 기준

1. 이 협정의 목적상,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은 그것이 다음의 어느 하나의 원산지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이고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제3.3조에 규정되고 정의된 바와 같이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1] 역내가치포함비율(이하 "RVC"라 한다)과 인정가치포함비율(이하 "QVC"라 한다)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완전히 대체 가능하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RVC 는 상품이 어느 한도에서 한국 또는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는지 표시하는 백분율이다.

나. 원산지 재료로만 전적으로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 또는

다.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전적으로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 이 경우 그 상품은 부속서 3-가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 제 3.6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에 규정된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조건은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중단 없이 충족되어야 한다.

제 3.3 조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제3.2조제1항가호의 의미 내에서, 다음은 전적으로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으로 간주된다.

가.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식물과 식물 생산품

나. 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다. 나호에서 언급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된 상품

라. 당사국의 영토에서 수렵 또는 덫사냥에 의하여 획득된 상품, 또는 당사국의 내수 또는 영해에서 수행된 어로 또는 양식에 의하여 획득된 상품

마. 당사국의 영역에서 추출되거나 채취된 가호부터 라호까지에 포함되지 않는 광물 및 그 밖의 천연 자원

바. 당사국에 등록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하여 당사국 영해 밖의 바다, 해저 또는 하부토양에서 획득한 어로 상품 및 그 밖의 해

양생물. 이 경우 그 당사국은 국제법[2]에 따라 그러한 바다, 해저 또는 하부토양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

사. 당사국에 등록되고 그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가공선박에서 바호에 언급된 상품만으로 생산되거나 만들어진 상품

아. 당사국의 영역 밖의 해저 또는 하부토양으로부터 당사국 또는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채취된 상품. 이 경우 그 당사국은 국제법[3]에 따라 그러한 해저 또는 하부토양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

자. 우주에서 취득된 상품. 이 경우 이 상품은 그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획득되어야 한다.

차.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집된 물품으로서 더 이상 본래 목적을 수행할 수 없고 저장 또는 수리할 수 없으며 그리고 부품 또는 원재료의 처분이나 회수 또는 재활용 목적으로만 적합한 물품

카. 다음으로부터 얻어진 폐기물 및 부스러기

1) 당사국 영역에서의 생산, 또는

2) 당사국 영역에서 수집된 중고품. 다만, 그러한 상품은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타. 가호부터 카호까지에 언급된 상품으로만 그 당사국 영역에서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제 3.4 조
역내/인정가치포함비율의 산정

[2] "국제법"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과 같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을 지칭한다.
[3] "국제법"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과 같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을 지칭한다.

제 3.2 조제 1 항다호의 목적상, 양 당사국은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다음 방법 중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 역내/인정가치포함비율(RVC/QVC)을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가. 집적법

$$\text{RVC 또는 QVC} = \frac{\text{원산지재료가치(VOM)}}{\text{본선인도가격(FOB)}} \times 100\%$$

원산지재료가치(VOM)란 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말하며, 원산지 재료,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운송비 및 이윤의 가치를 포함한다.

나. 공제법

$$\text{RVC 또는 QVC} = \frac{\text{본선인도가격(FOB)} - \text{비원산지재료가치(VNM)}}{\text{본선인도가격(FOB)}} \times 100\%$$

비원산지재료가치(VNM)란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말하며, 1) 그 재료, 부품 또는 상품의 수입 시 운임보험료포함가격, 또는 2) 작업 또는 공정이 발생한 당사국의 영역에서 원산지가 결정되지 않은 재료, 부품 또는 상품에 지불된, 최초로 확인된 가격이다.

제 3.5 조
특정상품의 취급

1. 특정상품의 취급은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의 부속서 3 의 제 6 조와 제 6 조의 이행과 감독에 관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간 2009 년 2 월

27 일자 교환각서(이하 “교환각서”라 한다)에 의하여 규율된다. 그리고 그 교환각서는 이 장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2. 제 1 항에 따른 취급의 대상이 되는 상품 목록은 제 1 항에서 언급된 교환각서에 첨부된 상품 목록이다. 양 당사국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1 년 내에 상기 언급된 상품 목록을 추가 교환각서를 통하여 수정 또는 개정한다.

제 3.6 조
누적

이 장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한쪽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은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서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완성상품의 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그 완성상품의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다른 쪽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제 3.7 조
불인정 공정

1. 이 장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국 영역에서 다음의 공정이 그 자체로만 또는 결합되어 수행된 경우, 상품은 그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가. 운송되고 보관되는 동안 상품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보존 공정

나. 포장의 변경, 포장물의 해체 및 조립

다. 단순한[4] 세탁, 세척, 먼지, 녹, 기름, 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거

[4] “단순한”이란 일반적으로 특별한 기술,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기계, 기기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라. 방직용 섬유의 다림질 또는 압착

마. 단순한[5] 페인팅 및 광택 공정

바. 곡물 및 쌀의 탈각, 부분 또는 전체 표백, 연마 및 도정

사. 당류 착색 또는 각설탕 제조 공정

아. 단순한[6] 탈피, 씨 제거 또는 탈각

자. 연마, 단순 분쇄 또는 단순 절단

차. 감별, 체질, 선별, 분류, 등급화, 매칭

카. 병, 캔, 플라스크, 가방, 케이스, 상자에 단순히 넣기, 카드 또는 판에 붙이기,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단순 포장 공정

타. 마크, 라벨, 로고 및 그 밖의 유사한 구별 표시를 제품 또는 제품의 포장에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것

파. 다른 종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의 단순한 혼합[7]

하.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는 물품 부품의 단순 조립 또는 제품의 부품으로의 분해

거. 단순한[8] 시험 또는 측정, 또는

---

5 "단순한" 이란 일반적으로 특별한 기술,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기계, 기기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6 "단순한" 이란 일반적으로 특별한 기술,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기계, 기기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7 "단순한 혼합" 이란 일반적으로 특별한 기술,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기계, 기기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그러나 "단순한 혼합" 은 화학반응을 포함하지 않는다. 화학반응이란 분자 내 결합의 파괴 및 새로운 분자 내 결합의 생성, 또는 분자 내 원자의 공간배열 변경을 통하여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를 만들어내는 가공(생화학 가공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너. 동물의 도살[9]

2. 한쪽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은,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 수출되었을 때, 제 1 항에 언급된 것 이상의 공정이 수행되지 않았을 경우, 최초의 원산지 지위를 유지한다.

제 3.8 조
중간재[10]

1. 원산지 상품이 그 이후 다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그 이후에 생산된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결정하는 목적상 원산지 상품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는 고려되지 않는다.

2. 비원산지 상품이 그 이후 다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가. 그 이후에 생산된 상품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산정하는 목적상 그 비원산지 상품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만이 고려된다. 그리고

나. 그 이후에 생산된 상품의 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산정하는 목적상 비원산지 상품에 포함된 원산지 재료를 고려한다.

제 3.9 조
직접운송

---

[8] "단순한" 이란 일반적으로 특별한 기술,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기계, 기기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9] "도살" 이란 동물의 단순한 도살 및 저장과 운송을 위한 보존을 목적으로 한 절단, 냉장 또는 냉동과 같은 그 이후 이루어지는 과정을 말한다.
[10]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는 당사국 내의 생산공정에만 적용된다.

1. 특혜관세대우는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의 영역 간에 직접 운송되는 상품에 적용된다.

2.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수출 당사국 및 수입 당사국의 영역 외에 하나 이상의 중간 제 3 국을 경유하여 운송되더라도, 다음의 경우 직접 운송된 것으로 간주한다.

가. 그 통과가 지리적 이유로 또는 오직 운송 요건에만 관련된 고려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경우

나. 그 상품이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다. 그 상품이 하역 및 재선적이나 그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공정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않은 경우

3. 제 2 항의 이행의 목적상, 양 당사국 외에 하나 이상의 중간 경유국들의 영역을 통하여 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수입 당사국의 관련 정부 당국에 제출한다.

가.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발급된 통과선하증권. 이는 수출 당사국부터 수입 당사국까지의 상품의 전체 운송 경로를 포함한 운송 문서를 결합한 것을 포함한다. 또는

나. 제2항의 요건이 준수되고 있다는 증거로서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

제 3.10 조
최소허용수준

1. 부속서 3-가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상품은 다음의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규정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는, 요구되는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본선인도가격(FOB) 가치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나.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규정된 상품에 대해서는, 요구되는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중량이 그 상품의 총중량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가호 및 나호에 명시된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이 장에 규정된 그 밖의 모든 적용 가능한 기준을 충족한다.

2. 그러나 제 1 항에 언급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는 그 상품에 적용 가능한 역내가치포함비율/인정가치포함비율(RVC/QVC) 요건을 위하여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에 포함된다.

제 3.11 조
포장 및 포장재료의 취급

1. 가. 상품이 역내가치포함비율/인정가치포함비율(RVC/QVC) 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소매용 판매를 위한 포장 및 포장재료의 가치는 그 포장 및 포장재료가 그 상품과 함께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간주되면 그 상품의 원산지 결정 시 고려된다.

나. 가호가 적용 가능하지 않은 경우, 소매용 판매를 위한 포장 및 포장재료는, 그 포장된 상품과 같이 분류되는 경우,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가 그 상품의 세번변경에 상응하는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고려되지 않는다.

2. 상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는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데 고려되지 않는다.

제 3.12 조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1. 양 당사국은 상품과 함께 인도된 상품의 표준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는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고,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가 부속서 3-가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고려되지 않도록 규정한다. 다만,

가. 그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가 그 상품과 같이 분류되고, 그 상품과 별도로 송장이 발부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나. 그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의 수량과 가치는 그 상품에 대하여 통상적인 수준이어야 한다.

2.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역내가치포함비율/인정가치포함비율(RVC/QVC) 요건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제 1 항에 기술된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의 가치는 그 상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인정가치포함비율(RVC/QVC) 산정 시 각 경우에 맞게 원산지 또는 비원산지 재료로 고려된다.

제 3.13 조
중립재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될 수 있으나 그 상품에 결합되지 않을 수 있는 다음의 원산지는 결정할 필요가 없다.

가. 연료 및 에너지

나. 도구, 형판 및 주형

다. 설비 및 건물의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품 및 재료

라. 생산에 사용되거나 설비 및 건물의 운영에 사용되는 윤활제, 그리스, 혼합물 및 그 밖의 재료

마. 장갑, 안경, 신발, 의류, 안전장비 및 보급품

바. 상품의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는 설비, 장치 및 보급품, 그리고

사. 상품에 결합되지는 않으나 그 상품 생산의 일부로 사용되었음이 합리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상품

제 3.14 조
동일하고 대체 가능한 상품 또는 재료

1. 동일하고 대체 가능한 상품 또는 재료가 원산지인지 여부는 다음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가. 각 상품 또는 재료의 물리적 분리, 또는

나.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시행되는 재고관리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2. 재고관리기법이 일단 결정되면, 그 기법이 그 회계연도 내내 사용된다.

제 2 절
원산지 절차

제 3.15 조
원산지 증명

1. 한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이, 다른 쪽 당사국으로 수입될 때, 원산지 증명에 근거하여 이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는다.

2. 다음은 원산지 증명으로 간주된다.

가. 제3.16조에 언급된 발급 기관에 의하여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

나. 인증수출자에 의하여 작성된 원산지 신고서, 그리고

다.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원산지 신고서

3.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의미 내에서 원산지 상품은 제 3.19 조에 명시된 경우 제 2 항에 언급된 서류 없이도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 후 10 년 내에 제 2 항다호에 언급된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원산지 신고서를 이행한다.

5. 제 4 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그 조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최대 10 년까지 더욱 긴 연장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6.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2년 내에 제4.12조(관세 및 무역원활화 위원회)에 언급된 관세 및 무역원활화 위원회를 통하여 규정 및 서식에 대한 협상을 타결한 후 제2항나호 및 제2항다호에 언급된 원산지 증명을 이행할 수 있다.

7. 수출 당사국이 이 항을 이행한다고 수입 당사국에 통보한 후에만 제6항이 적용된다.

8. 각 당사국은 원산지 증명이 발급 또는 작성된 날부터 1년 동안 유효하다고 규정한다.

제 3.16 조
원산지 증명서 [11]

1. 원산지 증명서는 생산자나 수출자 또는 그의 책임하에서 그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에 의한 신청으로 수출 당사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수출 당사국의

[11] 원산지 증명서의 모든 정보가 제 3.25 조에 따라 각 당사국의 관세 당국 간에 교환되는 경우, 각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수입자에 대하여 수입 시 원산지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수입자에 대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다. 이 각주는 이 장에 따른 그 밖의 어떠한 요건도 저해하지 않는다.

발급 기관에 의하여 발급된다.

2. 이 협정의 목적상, 원산지 증명서는 다음과 같다.

가. 종이 서식의 원산지 증명서, 또는

나. 전자 원산지 증명서

3. 종이 서식의 원산지 증명서는,

가. A4 크기의 용지 그리고 부속서 3-나-1에 규정된 첨부 서식이 된다. 다수의 품목을 신고할 경우, 양 당사국은 부속서 3-나-2에 규정된 첨부 서식을 원산지 증명서의 추가면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한 장의 원본과 두 장의 사본으로 구성된다. 원본은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제출하도록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전달한다. 제2사본은 수출 당사국의 발급 기관이 보관한다. 제3사본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보관한다.

다. 영어로 작성되며, 하나의 탁송물에 있는 하나 이상의 상품을 포함할 수 있다. 그리고

라. 인쇄본[12] 또는 전자본을 포함한 그러한 그 밖의 매체로 작성된다.

4. 전자 원산지 증명서란 제3.25조에 언급된 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 시스템을 통하여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에 전자적으로 전달되는 원산지 증명서 정보를 말한다.

5. 원산지 증명서는 선적 전이나 선적 시, 또는 선적일 후 달력상의 7일[13] 내에 발급된다. 원산지 증명서가 비자발적인 오류, 누락 또는 그 밖의 유효한 사유로 인하여

---

[12] "인쇄본"이란 수출 당사국에서 발급 기관 시스템으로부터 직접 수기로 또는 전자적으로 서명되고 인장이 찍히고 발급되며, 발급 기관, 생산자나 수출자, 또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에 의하여 인쇄된 원산지 증명서를 말한다.

[1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달력상의 7 일"은 선적일 자체를 포함한다.

선적 전이나 선적 시, 또는 선적일부터 달력상의 7일 내에 발급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 원산지 증명서는 선적일부터 1년 내에, “소급 발급”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소급하여 발급될 수 있다.

6.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수출자는, 국내 법과 규정에 따른 공급자 또는 생산자의 진술서를 포함하여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장의 그 밖의 요건의 충족을 증명하는 모든 적절한 서류를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수출 당사국의 발급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언제라도 제출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7. 원산지 증명서가 도난, 분실 또는 멸실된 경우, 생산자나 수출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은 진정 등본을 발급하여 줄 것을 수출 당사국의 발급 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전에 발급된 원본이 사용되지 않은 것이 입증되었어야 한다. 이 등본에는 부속서 3-나-1의 제4란에 “진정 등본”이라는 문구가 기재된다. 이 등본에는 부속서 3-나-1의 제12란에 원산지 증명서 원본의 발급날짜가 기재된다. 원산지 증명서의 진정 등본은 원산지 증명서 원본의 발급일부터 1년 내에 발급된다.

8. 원산지 증명서상의 삭제와 덮어쓰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변경 시에는 잘못된 부분은 줄을 그어 지우고 필요한 추가 사항을 기재한다. 그러한 변경은 발급 기관에 의하여 인증받는다. 사용하지 않는 여백은 차후의 추가 기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줄을 그어 지운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원산지 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신규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다. 발급 기관은 본래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일을 신규 원산지 증명서에 명시한다.

제 3.17 조
발급 기관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발급 기관 이름과 인장의 최신 등록부를 유지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발급 기관의 이름, 견본 서명 및 견본 관인을 접촉선을 통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한다. 해당 목록의 모든 변경은 신속하게 동일한 방식으로 제공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한쪽 당사국은 참조번호,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 상품명, 수량, 발급일 및 수출자의 이름과 같은 수출 당사국에 의하여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의 핵심 정보를 포함하는 안전한 웹사이트를 개설하면 자국 발급 기관의 견본 서명을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

4. 발급 기관은 각 원산지 증명서 신청 시 다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최선의 자격과 능력으로 그 당사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적절한 검사를 수행한다.

가. 원산지 증명서가 서명권자에 의하여 적절히 작성되고 서명되고,

나. 상품의 원산지가 이 장에 합치되며,

다. 원산지 증명서에 기재된 그 밖의 내용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된 증명서류와 일치하고,

라. 상품의 품목명, 수량 및 중량, 포장의 수량 및 종류가 명시된 대로 수출되는 상품에 부합하며, 그리고

마.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는 연속적으로 번호가 부여된다.

제 3.18 조
특혜관세대우의 신청

1. 각 당사국은 수입자가 수입 시 원산지 증명에 근거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에게 다음을 요구할 수 있다.

가.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서면 진술서를 세관신고 시 작성할 것

나. 적용 가능한 관세율을 적시할 것

다. 가호에 언급된 신고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제3.15조에 기술된 서면 또는 전자 원산지 증명을 소지할 것

라.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원산지 증명을 제공할 것, 그리고

마. 수입자가 가호의 신고가 부정확한 정보에 기초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을 때, 수입서류를 정정하고 자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모든 관세를 납부할 것

3. 각 당사국은 원산지 증명이 발급된 날 후 1년 동안 유효하도록 규정한다.

4. 각 당사국은 상품이 그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될 때 원산지 상품 자격을 갖춘 경우 그 상품의 수입자는 상품이 수입된 날 후 수입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명시된 기간 내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다음을 제시하는 경우 그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상품에 특혜관세대우가 부여되지 않은 결과로 납부한 모든 초과 관세,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가.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원산지 증명 및 그 밖의 증거, 그리고

나. 신청된 특혜관세를 충분히 입증하기 위하여 관세 당국이 요구할 수 있는 수입과 관련된 그 밖의 서류

5. 제 4 항에도 불구하고,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수입자가 특혜관세대우신청 의사를 수입 시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 3.19 조

원산지 증명의 면제

1. 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원산지 증명이 요구되지 않도록 규정한다.

가. 수입의 관세가격이 본선인도가격조건(FOB) 기준 미화 200달러 또는 수입 당사국의 통화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나 수입 당사국이 설정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다만, 이는 그 수입이 이 협정에 따라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규율하는 당사국의 법과 규정의 준수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거나 계획된 일련의 수입의 일부라고 수입 당사국이 간주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나. 수입 당사국이 수입자에게 원산지 증명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 상품인 경우

2.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상품의 원산지 지위의 진실성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수입자에게 원산지 증명 및 상품의 원산지와 관련된 그 밖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 3.20 조
기록 유지 요건

1. 각 당사국은 원산지 증명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다음에 관한 기록을 포함하여 원산지 증명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록을 원산지 증명이 발급된 날부터 최소 3년간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가. 수출된 상품의 구매, 비용, 가치와 그에 대한 지불

나. 수출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중립재를 포함한 모든 재료의 구매, 비용, 가치와 그에 대한 지불

다. 수출되었던 형태로의 상품의 생산, 그리고

라. 수출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서 요구되는 그 밖의 서류

2. 각 당사국은 원산지 증명에 기초하여 그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가 수입에 관한 서류를 상품의 수입일부터 최소 3년간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3. 각 당사국은 제3.17조에서 언급된 발급 기관이 원산지 증명서의 사본과 증명을 위하여 요구되는 뒷받침하는 정보를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된 날부터 최소 3년간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4. 각 당사국은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또는 발급 기관이 디지털, 전자, 광학, 자기 또는 서면 형태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신속한 검색이 가능한 매체를 이용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명시된 기록을 유지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제 3.21 조
불일치 및 형식적 오류

1. 원산지 증명에 기재된 내용과 상품을 수입하기 위한 절차를 수행할 목적으로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 간 사소한 불일치가 발견되더라도, 그러한 서류가 수입된 상품에 상응한다는 것이 적절히 입증되는 경우,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산지 증명이 무효화되지는 않는다.

2. 원산지 증명에서 타자 오류와 같은 명백한 형식적 오류는, 이러한 오류가 이 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한 의심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 경우, 이 서류가 거부되는 원인이 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3. 동일한 원산지 증명으로 다수의 품목이 신고된 경우, 열거된 품목들 중 하나에 발생된 문제로 인하여 그 원산지 증명에 열거된 나머지 품목에 대한 특혜관세대우의 부여 및 통관이 영향을 받거나 지연되지 않는다.

제 3.22 조
비당사국 송장

수입 당사국은 송장이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발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원산지 증명을 거부하지 않는다.

제 3.23 조
검증

1. 수입 당사국은 수출 당사국의 발급 기관 [14] 에 무작위로 또는 수입 당사국이 그 서류의 진정성에 대하여 또는 해당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특정 부분품의 진정한 원산지에 관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는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사후 검증을 수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가. 사후 검증이 무작위로 요청된 것이 아닌 한, 사후 검증에 대한 수입 당사국의 요청은 관련 원산지 증명을 수반하고, 그 이유와 해당 원산지 증명상의 특정 사항이 부정확할 수 있음을 제시하는 추가 정보를 명시한다.

나. 사후 검증에 대한 요청을 접수한 수출 당사국의 발급 기관은 그 요청에 신속하게 응답하고 그 요청 접수 후 2개월 내에 그 결과를 회신한다.

다.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상품의 원산지에 관한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의하여 추가 정보가 요청되는 경우, 수출 당사국의 발급 기관은 그 요청을 받은 날 후 4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에 요청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라.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검증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특혜관세대우 제

[14] 한국의 경우, 원산지 검증의 발급 기관은 한국의 관세법과 규정에 따른 관세 당국을 지칭한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원산지 검증의 발급 기관은 인도네시아의 법과 규정에 따른다.

공을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정 조치를 조건으로 수입자에게 상품을 반출할 수 있다. 다만, 상품이 수입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이 아니어야 하고 사기에 대한 의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

2.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제 1 항에 따른 사후 검증을 요청하기 전에 자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수입자에게 수입된 상품의 원산지와 관련한 정보 또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3. 수입 당사국이 사후 검증의 결과에 대하여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수입 당사국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수출 당사국에 검증방문을 요청할 수 있다.

4. 제 3 항에 따른 검증방문을 수행하기 전에,

가. 수입 당사국은 검증방문을 수행하려는 의사를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동시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1) 방문할 사업장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

2) 검증방문이 이루어지는 영역의 당사국의 발급 기관

3) 검증방문이 이루어지는 영역의 당사국의 관세 당국, 그리고

4) 검증방문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수입자

나. 가호에서 언급된 서면통보는 가능한 한 포괄적이고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1) 통보서를 발급한 관세 당국의 이름

2) 방문할 사업장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이름

3) 제안된 검증방문 날짜

4) 검증대상 상품에 대한 언급을 포함한 제안된 검증방문의 범위, 그리고

5) 검증방문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이름과 직함

다. 수입 당사국은 방문할 사업장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서면동의를 받는다.

라. 가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생산자 또는 수출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통보 당사국은 검증방문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해당 원산지 증명에 언급된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있다. 그리고

마. 통보를 받은 발급 기관은 제안된 검증방문을 연기할 수 있으며,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그러한 의사를 수입 당사국에 통보할 수 있다. 연기에도 불구하고, 모든 검증방문은 그러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기간 내에 수행된다.

5. 검증방문을 수행하는 당사국은 그러한 검증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와 관련 발급 기관에 그러한 검증의 대상이 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서면 결정서를 제공한다.

6. 정지된 특혜관세대우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다는 제 5 항에 언급된 서면 결정서에 따라 복원된다.

7.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서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 일 동안 특혜관세대우를 위한 상품의 자격에 대한 서면 의견 또는 추가 정보를 제출하도록 허용된다. 상품이 여전히 비원산지 상품인 것으로 판명되면, 최종 서면 결정서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로부터 그 의견 또는 추가 정보를 수령한 날부터 30 일 내에 관련 발급 기관에 통지된다.

8. 최초의 검증방문이 수행된 첫날부터 최대 6 개월의 기간 내에, 실제 방문과 그러한 검증 대상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에 대한 제 5 항의 결정을 포함한 검증방문 절차가 수행되고, 그 결과가 관련 발급 기관에 통보된다. 검증절차가 수행되는 동안에는 제 1 항라호가 적용된다.

제 3.24 조
특혜관세대우의 거부

1.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다음의 경우 원산지 증명이 적용될 수 없다고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원산지 증명에 대한 검증 없이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있다.

가. 제3.9조의 직접운송에 관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나. 원산지 증명이 처음에 부정하게 수입되었던 상품에 대하여 그 이후 작성되었을 경우

다. 원산지 증명이 이 협정의 비당사국에서 발급되었을 경우

라. 수입자가 수입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명시된 기간 내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증명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마.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2. 검증 절차 동안, 수출 당사국의 발급 기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3.20조 또는 제3.23조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있다.

제3.25조

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 시스템

양 당사국은 이 장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다.

제3.26조
통과 및 보관 중인 상품에 대한 경과 규정

당사국은 그 당사국에 대한 이 협정의 발효일에 다음의 경우 원산지 상품에 특혜관세대우를 부여한다.

가. 제3.9조의 직접운송 규정에 따라 그 당사국으로 운송되고 있었던 경우, 또는

나. 그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되지 않았던 경우

다만, 그 당사국에 대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180 일 내에 제 3.18 조에 따라 유효한 특혜관세대우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로 한정한다.

부속서 3-나-1

원산지 증명서

원본(제2사본/제3사본)

<table>
<tr><td colspan="3">1. 수출자의 이름 및 주소:

2. 수입자의 이름 및 주소:</td><td colspan="4">참조번호:
한국-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원산지 증명서
(원산지 신고 및 증명 병용)

서식 KI-CEPA

발행국 _____ (국가)

(뒷면 참조)</td></tr>
<tr><td colspan="3">3. 운송수단 및 경로(아는 범위까지 기재합니다)

출항일:

선박/항공/기차/차량 편명:

선적항:

하역항:</td><td colspan="4">4. 비고:</td></tr>
<tr><td>5. 품목 번호</td><td>6. 상품명(포장의 수량 및 종류 그리고 번호를 포함합니다)</td><td>7.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6단위)</td><td>8.원산지 기준</td><td>9. 총중량 또는 그 밖의 치수 및 본선인도가격(FOB) 가치(RVC/QVC기준이 사용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td><td>10. 송장 번호 및 날짜</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3">11. 수출자 신고:

아래의 서명자는 위의 세부사항과 기재된 내용은 사실이고 모든 상품은 다음 국가에서 생산되었으며,

.....
(국가)

다음 국가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하여 한국-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규정된 원산지 요건을 준수함을 신고합니다.

.....
(수입국)

.....
(장소 및 날짜, 서명권자의 서명)</td><td colspan="4">12. 증명:

여기에 기재된 정보가 사실이며, 기술된 상품이 한국-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규정된 원산지 요건을 준수함을 증명합니다.

.....
(장소 및 날짜, 발급 기관의 서명 및 관인)</td></tr>
</table>

뒷면 주해

1. 한국-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KICEPA)에 따른 특혜관세대우의 목적상 이 서식을 수용한 당사국들은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이다.

2. 조건: 한국-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특혜관세의 혜택을 향유하기 위하여, 위에 명시된 당사국에 송부된 상품은,

    1) 수입 당사국에서 양허를 받을 자격이 있는 상품명에 해당되어야 한다.

    2) 제3.9조(직접운송)에 따라 운송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3)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의 원산지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참조번호: 발급 기관이 부여한 원산지 증명서의 일련번호

제1란: 수출자의 법적 이름과 주소(국가를 포함한다)를 기재한다.

제2란: 수입자의 법적 이름과 주소(국가를 포함한다)를 기재한다.

제3란: 운송수단 및 경로를 작성하고, 출발일, 운송수단의 편명, 선적항 및 하역항을 명시한다.

제4란: 추가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조건에서 비고는 다음과 같다.

조건	비고
비당사국 운영자가 상품에 대한 송장을 발급한다.	“비당사국 송장” 및 송장을 발급하는 운영자의 법적 이름과 국가를 명시한다.
원산지 증명서가 소급하여 발급된다.	“소급 발급”
진정 등본이 발급된다.	“진정 등본”

제5란: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제6란: 각 상품의 품명을 제공한다. 품명은 그 상품을 검사하는 세관 공무원이 상품을 식별할 수 있고, 그 상품을 송장 품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자세하게 기재되어야 할 것이다. 포장의 수량 및 종류 그리고 번호를 명시한다. 상품이 포장되지 않은 경우, “포장되지 않음”이라고 기재한다.

제7란: 제6란에 기술된 각 상품에 대하여,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 세번 6단위까지 기재한다.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 번호는 수입 당사국의 번호를 말한다.

제8란: 수출자는 제8란에 상품이 특혜관세대우를 위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원산지 기준을 다음의 표에 기재된 방식으로 기재해야 한다.

원산지 기준	제 8 란에 기입
가. 전적으로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WO”
나.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에 부합하는 원산지 재료로만 전적으로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	“PE”

다. 품목별원산지규정을 충족하는 상품 – 세번변경 – 역내가치포함비율/인정가치포함비율(RVC/QVC) – 세번변경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인정가치포함비율(RVC/QVC) – 그 밖의 사항	 “CC” / “CTH” / “CTSH” “RVC/QVC40” “CC” / “CTH” / “CTSH” 또는 “RVC/QVC40” “CC ex” / “CTH ex” / “CTSH ex” 또는 “RVC/QVC40”
라. 제3.5조(특정상품의 취급)를 충족하는 상품	“제3.5조”

상품이 역내가치포함비율/인정가치포함비율(RVC/QVC)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역내가치포함비율/인정가치포함비율(RVC/QVC)이 공제법에 따라 계산된 경우에는 “BD”를, 집적법에 따라 계산된 경우에는 “BU”를 기재한다.

제9란: 킬로그램으로 표시된 총중량이 이 난에 기입되어야 할 것이다. 관례적인 경우, 정확한 수량을 표시하는 그 밖의 측정 단위(예: 부피)가 사용될 수 있다.

제10란: 송장 번호 및 날짜가 이 난에 기입되어야 할 것이다. 비당사국 운영자가 상품에 대한 송장을 발급하여 상업용 송장의 번호 및 날짜를 알 수 없는 경우, 수출 당사국에서 발급된 상업용 송장 원본의 번호 및 날짜가 이 난에 명시된다.

제11란: 이 난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 및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한다.

제12란: 이 난은 권한 있는 당국 또는 발급 기관의 권한 있는 인이 작성 및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하며, 관인을 찍는다.

주: 여기의 지침은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기 위한 참고용으로만 사용되므로, 뒤쪽에 기재되거나 인쇄될 필요는 없다.

부속서 3-나-2

원산지 증명서(추가면)

원본(제2사본/제3사본)

참조번호

5. 품목 번호	6. 상품명(포장의 수량 및 종류 그리고 번호를 포함합니다)	7.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6단위)	8. 원산지 기준	9. 총중량 또는 그 밖의 치수 및 본선인도가격(FOB) 가치(RVC/QVC기준이 사용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10. 송장 번호 및 날짜

11. 수출자 신고:	12. 증명:
아래의 서명자는 위의 세부사항과 기재된 내용은 사실이고 모든 상품은 다른 국가에서 생산되었으며, ... (국가) 다음 국가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하여 한국-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규정된 원산지 요건을 준수함을 신고합니다. ..... (수입국) ..... (장소 및 날짜, 서명권자의 서명)	여기에 기재된 정보가 사실이며, 기술된 상품이 한국-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규정된 원산지 요건을 준수함을 증명합니다. ..... (장소 및 날짜, 발급 기관의 서명 및 관인)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제1부
표 두주

1. 제3.2조다호에 따라, 이 부속서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되기 위하여 요구되는 조건들을 규정한다.

2. 특정 소호에 적용되는 특정 규정 또는 특정 규정들은 소호 바로 옆에 규정된다.

3. 소호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상 선택 기준의 대상이 되는 경우, 상품이 선택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면, 그 규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4. 세번변경의 요건은 비원산지 재료에만 적용된다.

5. 세번변경 규정이 그 밖의 세번으로부터의 변경을 명시적으로 제외한 경우, 그 제외는 비원산지 재료에만 적용된다.

6. 이 부속서에 규정된 품목별 원산지 규정표의 해석 목적상,

부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부를 말한다.

류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에 따른 세번에서 처음 2단위를 말한다.

호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에 따른 세번에서 처음 4단위를 말한다. 그리고

소호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에 따른 세번에서 처음 6단위를 말한다.

7. 이 부속서의 제3열의 목적상,

완전생산기준(WO)이란 제3.3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되는 경우를 말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CC)이란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에 2단위 수준에서 세번변경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이란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에 4단위 수준에서 세번변경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이란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에 6단위 수준에서 세번변경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RVC/QVC40)이란 제3.4조에 따라 계산된 해당 상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인정가치포함비율(RVC/QVC)이 40퍼센트 이상일 것을 말한다.

제2부
품목별 원산지 규정표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제 1 부 살아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		
제 01 류	살아 있는 동물	
0101	살아 있는 말・당나귀・노새・버새	
0101.2	-말	
0101.21	--번식용	완전생산기준
0101.29	--기타	완전생산기준
0101.30	-당나귀	완전생산기준
0101.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102	살아 있는 소	
0102.2	-축우(畜牛)	
0102.21	--번식용	완전생산기준
0102.29	--기타	완전생산기준
0102.3	-버팔로	
0102.31	--번식용	완전생산기준
0102.39	--기타	완전생산기준
0102.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103	살아 있는 돼지	
0103.10	-번식용	완전생산기준
0103.9	-기타	
0103.91	--중량이 50 킬로그램 미만인 것	완전생산기준
0103.92	--중량이 50 킬로그램 이상인 것	완전생산기준
0104	살아 있는 면양과 산양	
0104.10	-면양	완전생산기준
0104.20	-산양	완전생산기준
0105	살아 있는 가금(家禽)류[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오리・거위・칠면조・기니아새로 한정한다]	
0105.1	-중량이 185 그램 이하인 것	
0105.11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105.12	--칠면조	완전생산기준
0105.13	--오리	완전생산기준
0105.14	--거위	완전생산기준
0105.15	--기니아새	완전생산기준
0105.9	-기타	
0105.94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	완전생산기준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종으로 한정한다]	
0105.99	--기타	완전생산기준
0106	**그 밖의 살아 있는 동물**	
0106.1	**-포유동물**	
0106.11	--영장류	완전생산기준
0106.12	--고래·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바다소(바다소목의 포유동물), 물개·바다사자·바다코끼리(기각아목의 포유동물)	완전생산기준
0106.13	--낙타와 그 밖의 낙타과의 동물[카멜리대(*Camelidae*)과]	완전생산기준
0106.14	--토끼	완전생산기준
0106.19	--기타	완전생산기준
0106.20	-파충류(뱀과 거북을 포함한다)	완전생산기준
0106.3	**-조류**	
0106.31	--맹금류	완전생산기준
0106.32	--앵무류[패럿류(parrots)·패러키트류(parakeets)·금강앵무류·유황앵무류를 포함한다]	완전생산기준
0106.33	--타조와 에뮤(emus)[드로마이어스 노배홀란디애(*Dromaius novaehollandiae*)]	완전생산기준
0106.39	--기타	완전생산기준
0106.4	**-곤충류**	
0106.41	--벌	완전생산기준
0106.49	--기타	완전생산기준
0106.90	-기타	완전생산기준
제 02 류	**육과 식용 설육(屑肉)**	
0201	**쇠고기(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1.1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완전생산기준
0201.20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완전생산기준
0201.30	-뼈 없는 것	완전생산기준
0202	**쇠고기(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2.1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완전생산기준
0202.20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완전생산기준
0202.30	-뼈 없는 것	완전생산기준
0203	**돼지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3.1	**-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	
0203.11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완전생산기준
0203.12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를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203.19	--기타	완전생산기준
0203.2	**-냉동한 것**	
0203.21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완전생산기준
0203.22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를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203.29	--기타	완전생산기준
0204	**면양과 산양의 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4.10	-어린 면양의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204.2	**-그 밖의 면양의 고기(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4.21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완전생산기준
0204.22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완전생산기준
0204.23	--뼈 없는 것	완전생산기준
0204.30	-어린 면양의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204.4	**-그 밖의 면양의 고기(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4.41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완전생산기준
0204.42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완전생산기준
0204.43	--뼈 없는 것	완전생산기준
0204.50	-산양의 고기	완전생산기준
0205	**말·당나귀·노새·버새의 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5.00	-말·당나귀·노새·버새의 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206	**소·돼지·면양·산양·말·당나귀·노새·버새의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6.10	-소의 것(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206.2	**-소의 것(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6.21	--혀	완전생산기준
0206.22	--간	완전생산기준
0206.29	--기타	완전생산기준
0206.30	-돼지의 것(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206.4	**-돼지의 것(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6.41	--간	완전생산기준
0206.49	--기타	완전생산기준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206.80	-기타(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206.90	-기타(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207	**제 0105 호의 가금(家禽)류의 육과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7.1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0207.11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207.12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207.13	--절단육과 설육(屑肉)(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207.14	--절단육과 설육(屑肉)(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207.2	**-칠면조의 것**	
0207.24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207.25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207.26	--절단육과 설육(屑肉)(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207.27	--절단육과 설육(屑肉)(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207.4	**-오리의 것**	
0207.41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207.42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207.43	--지방간(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207.44	--기타(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207.45	--기타(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207.5	**-거위의 것**	
0207.51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207.52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207.53	--지방간(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207.54	--기타(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207.55	--기타(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207.60	-기니아새의 것	완전생산기준
0208	**그 밖의 육과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8.10	-토끼의 것	완전생산기준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208.30	-영장류의 것	완전생산기준
0208.40	-고래·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바다소(바다소목의 포유동물), 물개·바다사자·바다코끼리(기각아목의 포유동물)의 것	완전생산기준
0208.50	-파충류의 것(뱀과 거북을 포함한다)	완전생산기준
0208.60	-낙타와 그 밖의 낙타과[카멜리대(*Camelidae*)과]의 것	완전생산기준
0208.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209	**살코기가 없는 돼지 비계와 가금(家禽)의 비계(기름을 빼지 않은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추출하지 않은 것으로서 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9.10	-돼지의 것	완전생산기준
0209.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210	**육과 식용 설육(屑肉)(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육이나 설육(屑肉)의 식용 고운 가루·거친 가루**	
0210.1	**-돼지고기**	
0210.11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를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210.12	--복부살과 이를 절단한 것	완전생산기준
0210.19	--기타	완전생산기준
0210.20	-쇠고기	완전생산기준
0210.9	**-기타[육이나 설육(屑肉)의 식용 고운 가루·거친 가루를 포함한다]**	
0210.91	--영장류의 것	완전생산기준
0210.92	--고래·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바다소(바다소목의 포유동물), 물개·바다사자·바다코끼리(기각아목의 포유동물)의 것	완전생산기준
0210.93	--파충류의 것(뱀과 거북을 포함한다)	완전생산기준
0210.99	--기타	완전생산기준
제 03 류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0301	**활어**	
0301.1	**-관상용**	
0301.11	--민물의 것	완전생산기준
0301.19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1.9	**-그 밖의 활어**	
0301.91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옹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옹코링쿠스 클	완전생산기준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라키(*Oncorhynchus clarki*)・옹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옹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옹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옹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0301.92	--뱀장어[앙귈라(*Anguilla*)종]	완전생산기준
0301.93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종・카라시우스(*Carassius*)종・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시리누스(*Cirrhinus*)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라베오(*Labeo*)종・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 렙토바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종]	완전생산기준
0301.94	--대서양 참다랑어와 태평양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Thunnus thynnus*)・터너스 오리엔탈리스(*Thunnus orientalis*)]	완전생산기준
0301.95	--남방 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Thunnus maccoyii*)]	완전생산기준
0301.99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2	**신선하거나 냉장한 어류[제 0304 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그 밖의 어육은 제외한다]**	
0302.1	**-연어과. 다만, 제 0302.91 호부터 제 0302.99 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0302.11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옹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옹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옹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옹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옹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옹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완전생산기준
0302.13	--태평양 연어[옹코링쿠스 넬카(*Oncorhynchus nerka*)・옹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cha*)・옹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옹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chawytscha*)옹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옹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옹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완전생산기준
0302.14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와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완전생산기준
0302.19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2.2	**-넙치류[플루로넥티대(*Pleuronectidae*)과 ・바디대(*Bothidae*)과・사이노글로시대(*Cynoglossidae*)과・솔레이대(*Soleidae*)과・스코프탈미대**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Scophthalmidae*)과・시타리대(*Citharidae*)과]. 다만, 제 0302.91 호부터 제 0302.99 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0302.21	--넙치[레인하드티우스 히포글러소이데스(*Reinhardtius hippoglossoides*)・히포글러서스 히포글러서스(*Hippoglossus hippoglossus*)・히포글러서스 스테노레피스(*Hippoglossus stenolepis*)]	완전생산기준
0302.22	--가자미[플루로넥테스 플라테사(*Pleuronectes platessa*)]	완전생산기준
0302.23	--서대[솔레아(*Solea*)종]	완전생산기준
0302.24	--터벗(turbots)[프세타 맥시마(*Psetta maxima*)]	완전생산기준
0302.29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2.3	-다랑어[터너스(*Thunnus*)속의 것으로 한정한다]・가다랑어・줄무늬 버니토[유티너스(카추워누스) 펠라미스(*Euthynnus (Katsuwonus) pelamis*)]. 다만, 제 0302.91 호부터 제 0302.99 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0302.31	--날개다랑어나 긴지느러미 다랑어[터너스 알라룽가(*Thunnus alalunga*)]	완전생산기준
0302.32	--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Thunnus albacares*)]	완전생산기준
0302.33	--가다랑어・줄무늬 버니토	완전생산기준
0302.34	--눈다랑어[터너스 오베서스(*Thunnus obesus*)]	완전생산기준
0302.35	--대서양 참다랑어와 태평양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Thunnus thynnus*)・터너스 오리엔탈리스(*Thunnus orientalis*)]	완전생산기준
0302.36	--남방 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Thunnus maccoyii*)]	완전생산기준
0302.39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2.4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멸치[엔그라울리스(*Engraulis*)종],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Sardina pilchardus*)・사르디노프스(*Sardinops*)종],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Sardinella*)종], 브리스링(brisling)이나 스프랫(sprats)[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Sprattus sprattus*)],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Scomber scombrus*)・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Scomber australasicus*)・스콤버 자포니쿠스(*Scomber japonicus*)], 줄무늬 고등어(*Indian mackerels*)[라스트렐리거(*Rastrelliger*)종], 삼치[스콤버로모러스(*Scomberomorus*)종], 전갱이[트라커러스(*Trachurus*)종], 줄전갱이류[카랑크스(*Caranx*)종], 날쌔기[라키센트론 카나둠(*Rachycentron canadum*)], 병어[팜푸스(*Pampus*)종], 꽁치[콜로라비스 사이라(*Cololabis saira*)], 가라지[데캅테러스(*Decapterus*)종], 열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빙어[말로투스 빌로서스(*Mallotus villosus*)],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점다랑어[유티너스 아피니스(*Euthynnus affinis*)], 버니토[사르다(*Sarda*)종], 새치류, 돛새치, 청새치[이스티오포리대(*Istiophoridae*)].다만, 제 0302.91 호부터 제 0302.99 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0302.41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완전생산기준
0302.42	--멸치[엔그라울리스(*Engraulis*)종]	완전생산기준
0302.43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Sardina pilchardus*)·사르디노프스(*Sardinops*)종],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Sardinella*)종], 브리스링(brisling)이나 스프랫(sprats)[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Sprattus sprattus*)]	완전생산기준
0302.44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Scomber scombrus*)·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Scomber australasicus*)·스콤버 자포니쿠스(*Scomber japonicus*)]	완전생산기준
0302.45	--전갱이[트라커러스(*Trachurus*)종]	완전생산기준
0302.46	--날쌔기[라키센트론 카나둠(*Rachycentron canadum*)]	완전생산기준
0302.47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완전생산기준
0302.49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2.5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 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가디대(*Gadidae*)과·마크로우리대(*Macrouridae*)과·멜라노니대(*Melanonidae*)과·메르루치대(*Merlucciidae*)과·모리대(*Moridae*)과·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과의 어류. 다만, 제 0302.91 호부터 제 0302.99 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0302.51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가두스 오각(*Gadus ogac*)·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완전생산기준
0302.52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Melanogrammus aeglefinus*)]	완전생산기준
0302.53	--검정대구[폴라치우스 비렌스(*Pollachius virens*)]	완전생산기준
0302.54	--민대구[메루키우스(*Merluccius*)종·유르피키스(*Urophycis*)종]	완전생산기준
0302.55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	완전생산기준
0302.56	--블루 화이팅스(blue whitings)[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포우타소우(*Micromesistius poutassou*)·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오스트랄리스	완전생산기준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Micromesistius australis*)]	
0302.59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2.7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종·카라시우스(*Carassius*)종·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시리누스(*Cirrhinus*)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라베오(*Labeo*)종·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렙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종], 뱀장어[앙귈라(*Anguilla*)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나(*Channa*)종]. 다만, 제 0302.91 호부터 제 0302.99 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0302.71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완전생산기준
0302.72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완전생산기준
0302.73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종·카라시우스(*Carassius*)종·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시리누스(*Cirrhinus*)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 라베오(*Labeo*)종·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렙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메글로브라마(*Megalobrama*)종]	완전생산기준
0302.74	--뱀장어[앙귈라(*Anguilla*)종]	완전생산기준
0302.79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2.8	**-그 밖의 어류. 다만, 제 0302.91 호부터 제 0302.99 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0302.81	--곱상어와 그 밖의 상어	완전생산기준
0302.82	--가오리와 홍어[라지대(*Rajidae*)과]	완전생산기준
0302.83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종]	완전생산기준
0302.84	--농어[디센트라르쿠스(*Dicentrarchus*)종]	완전생산기준
0302.85	--돔[스파리대(*Sparidae*)과]	완전생산기준
0302.89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2.9	**-간·어란(魚卵)·어백(魚白)·어류의 지느러미·머리·꼬리·부레와 그 밖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	
0302.91	--간·어란(魚卵)·어백(漁白)	완전생산기준
0302.92	--상어지느러미	완전생산기준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302.99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3	**냉동어류[제 0304 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그 밖의 어육은 제외한다]**	
0303.1	**-연어과. 다만, 제 0303.91 호부터 제 0303.99 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0303.11	--소크아이 연어[홍연어(red salmon)][옹코링쿠스 넬카(*Oncorhynchus nerka*)]	완전생산기준
0303.12	--그 밖의 태평양 연어[옹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cha*)·옹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옹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chawytscha*)·옹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옹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옹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완전생산기준
0303.13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와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완전생산기준
0303.14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옹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옹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옹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옹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옹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옹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완전생산기준
0303.19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3.2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 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잉어 [사이프리너스(*Cyprinus*)종·카라시우스 (*Carassius*)종·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 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시리누스(*Cirrhinus*)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라베오(*Labeo*)종·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렙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종], 뱀장어[앙귈라(*Anguilla*)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나(*Channa*)종]. 다만, 제 0303.91 호부터 제 0303.99 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0303.23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완전생산기준
0303.24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완전생산기준
0303.25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종·카라시우스(*Carassius*)종·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시리누스(*Cirrhinus*)	완전생산기준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라베오(*Labeo*)종・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렙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메가로브라마(*Megalobrama*)종]	
0303.26	--뱀장어[앙귈라(*Anguilla*)종]	완전생산기준
0303.29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3.3	**-넙치류[플루로넥티대(*Pleuronectidae*)과・바디대(*Bothidae*)과・사이노글로시대(*Cynoglossidae*)과・솔레이대(*Soleidae*)과・스코프탈미대(*Scophthalmidae*)과・시타리대(*Citharidae*)과]. 다만, 제 0303.91 호부터 제 0303.99 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0303.31	--넙치[레인하드티우스 히포글러소이데스(*Reinhardtius hippoglossoides*)・히포글러서스 히포글러서스(*Hippoglossus hippoglossus*)・히포글러서스 스테노레피스(*Hippoglossus stenolepis*)]	완전생산기준
0303.32	--가자미[플루로넥테스 플라테사(*Pleuronectes platessa*)]	완전생산기준
0303.33	--서대[솔레아(*Solea*)종]	완전생산기준
0303.34	--터벗(turbot)[프세타 맥시마(*Psetta maxima*)]	완전생산기준
0303.39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3.4	**-다랑어[터너스(*Thunnus*)속의 것으로 한정한다]・가다랑어・줄무늬 버니토[유티너스(카추워누스) 펠라미스(*Euthynnus(Katsuwonus) pelamis*)]. 다만, 제 0303.91 호부터 제 0303.99 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0303.41	--날개다랑어나 긴지느러미 다랑어[터너스 알라룽가(*Thunnus alalunga*)]	완전생산기준
0303.42	--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Thunnus albacares*)]	완전생산기준
0303.43	--가다랑어・줄무늬 버니토	완전생산기준
0303.44	--눈다랑어[터너스 오베서스(*Thunnus obesus*)]	완전생산기준
0303.45	--대서양 참다랑어와 태평양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Thunnus thynnus*)・터너스 오리엔탈리스(*Thunnus orientalis*)]	완전생산기준
0303.46	--남방 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Thunnus maccoyii*)]	완전생산기준
0303.49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3.5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멸치[엔그라울리스(*Engraulis*)종],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Sardina pilchardus)・사르디노프스(*Sardinops*)종],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Sardinella*)종], 브리스링(brisling)이나 스프랫(sprats)[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Sprattus sprattus*)], 고등어[스콤버 스**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콤브루스(*Scomber scombrus*)·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Scomber australasicus*)·스콤버 자포니쿠스(*Scomber japonicus*)], 줄무늬 고등어(Indian mackerels)[라스트렐리거(*Rastrelliger*)종], 삼치[스콤버로모러스(*Scomberomorus*)종], 전갱이[트라커러스(*Trachurus*)종], 전갱이류[카랑크스(*Caranx*)종], 날쌔기[라키센트론 카나둠(*Rachycentron canadum*)], 병어[팜푸스(*Pampus*)종], 꽁치[콜로라비스 사이라(*Cololabis saira*)], 가라지[데캅테러스(*Decapterus*)종], 열빙어[말로투스 빌로서스(*Mallotus villosus*)],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점다랑어[유티너스 아피니스(*Euthynnus affinis*)], 버니토[사르다(*Sarda*)종], 새치류, 돛새치, 청새치[이스티오포리대(*Istiophoridae*)]. 다만, 제 0303.91 호부터 제 0303.99 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0303.51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완전생산기준
0303.53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Sardina pilchardus*)·사르디노프스(*Sardinops*)종],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Sardinella*)종], 브리스링(brisling)이나 스프랫(sprats)[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Sprattus sprattus*)]	완전생산기준
0303.54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Scomber scombrus*)·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Scomber australasicus*)·스콤버 자포니쿠스(*Scomber japonicus*)]	완전생산기준
0303.55	--전갱이[트라커러스(*Trachurus*)종]	완전생산기준
0303.56	--날쌔기[라키센트론 카나둠(*Rachycentron canadum*)]	완전생산기준
0303.57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완전생산기준
0303.59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3.6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가디대(Gadidae)과·마크로우리대(Macrouridae)과·멜라노니대(Melanonidae)과·메르루치대(Merlucciidae)과·모리대(Moridae)과·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과의 어류. 다만, 제 0303.91 호부터 제 0303.99 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0303.63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가두스 오각(*Gadus ogac*)·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완전생산기준
0303.64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Melanogrammus aeglefinus*)]	완전생산기준
0303.65	--검정대구[폴라치우스 비렌스(*Pollachius*	완전생산기준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virens)]	
0303.66	--민대구[메루키우스(*Merluccius*)종・유르피키스(*Urophycis*)종]	완전생산기준
0303.67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	완전생산기준
0303.68	--블루 화이팅스(blue whitings)[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포우타소우(*Micromesistius poutassou*)・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오스트랄리스(*Micromesistius australis*)]	완전생산기준
0303.69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3.8	**-그 밖의 어류. 다만, 제 0303.91 호부터 제 0303.99 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0303.81	--곱상어와 그 밖의 상어	완전생산기준
0303.82	--가오리와 홍어[라지대(*Rajidae*)과]	완전생산기준
0303.83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종]	완전생산기준
0303.84	--농어[디센트라르쿠스(*Dicentrarchus*)종]	완전생산기준
0303.89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3.9	**-간・어란(魚卵)・어백(魚白)・어류의 지느러미・머리・꼬리・부레와 그 밖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	
0303.91	--간・어란(魚卵)・어백(漁白)	완전생산기준
0303.92	--상어지느러미	완전생산기준
0303.99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4	**어류의 필레(fillet)와 그 밖의 어육(잘게 썰었는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 냉장・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304.3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종・카라시우스(*Carassius*)종・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시리누스(*Cirrhinus*)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라베오(*Labeo*)종・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렙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종], 뱀장어[앙귈라(*Anguilla*)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나(*Channa*)종]의 신선하거나 냉장한 필레(fillet)**	
0304.31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4.32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4.33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niloticus)]	
0304.3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4.4	**-그 밖의 어류의 신선하거나 냉장한 필레(fillet)**	
0304.41	--태평양 연어[옹코링쿠스 넬카(*Oncorhynchus nerka*)·옹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cha*)·옹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옹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chawytscha*)·옹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옹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옹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4.42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옹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옹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옹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옹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옹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옹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4.43	--넙치류[플루로넥티대(*Pleuronectidae*)과·바디대(*Bothidae*)과·사이노글로시대(*Cynoglossidae*)과·솔레이대(*Soleidae*)과·스코프탈미대(Scophthal midae)과·시타리대(*Citharidae*)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4.44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가디대(*Gadidae*)과·마크로우리대(*Macrouridae*)과·멜라노니대(*Melanonidae*)과·메르루치대(*Merlucciidae*)과·모리대(*Moridae*)과·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과의 어류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4.45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4.46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종]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4.47	--곱상어와 그 밖의 상어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4.48	--가오리와 홍어[라지대(*Rajidae*)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4.4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4.5	**-그 밖의 신선하거나 냉장한 것**	
0304.51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종·카라시우스(*Carassius*)종·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시리누스(*Cirrhinus*)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카틀라 카틀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Catla catla*), 라베오(*Labeo*)종, 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 렙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 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종], 뱀장어[앙귈라(*Anguilla*)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나(*Channa*)종]	
0304.52	--연어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4.53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가디대(*Gadidae*)과・마크로우리대(*Macrouridae*)과・멜라노니대(*Melanonidae*)과・메르루치대(*Merlucciidae*)과・모리대(*Moridae*)과・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과의 어류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4.54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4.55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종]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4.56	--곱상어와 그 밖의 상어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4.57	--가오리와 홍어[라지대(*Rajidae*)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4.5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4.6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종・카라시우스(*Carassius*)종・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시리누스(*Cirrhinus*)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라베오(*Labeo*)종・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렙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종], 뱀장어[앙귈라(*Anguilla*)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나(*Channa*)종]의 냉동한 필레	
0304.61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4.62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4.63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4.6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4.7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가디대(*Gadidae*)과・마크로우리대(*Macrouridae*)과・멜라노니대(*Melanonidae*)과・메르루치대(*Merlucciidae*)과・모리대(*Moridae*)과・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과의 어류의 냉동한 필레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fillet)	
0304.71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가두스 오각(*Gadus ogac*)·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4.72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Melanogrammus aeglefinus*)]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4.73	--검정대구[폴라치우스 비렌스(*Pollachius virens*)]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4.74	--민대구[메루키우스(*Merluccius*)종·유르피키스(*Urophycis*)종]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4.75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4.7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4.8	-그 밖의 어류의 냉동한 필레(fillet)	
0304.81	--태평양 연어[옹코링쿠스 넬카(*Oncorhynchus nerka*)·옹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cha*)·옹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옹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chawytscha*)·옹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옹코링쿠스마소(*Oncorhynchus masou*)·옹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4.82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옹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옹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옹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옹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옹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옹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4.83	--넙치류[플루로넥티대(*Pleuronectidae*)과·바디대(*Bothidae*)과·사이노글로시대(*Cynoglossidae*)과·솔레이대(*Soleidae*)과·스코프탈미대(*Scophthal midae*)과·시타리대(*Citharidae*)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4.84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4.85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종]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4.86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4.87	--다랑어[터너스(*Thunnus*)속의 것으로 한정한다]·가다랑어·줄무늬 버니토[유티너스(카추워누스) 펠라미스(*Euthynnus (Katsuwonus) pelamis*)]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4.88	--곱상어, 그 밖의 상어, 가오리와 홍어[라지대(*Rajidae*)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304.8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4.9	**-그 밖의 냉동한 것**	
0304.91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4.92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종]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4.93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종·카라시우스(*Carassius*)종·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시리누스(*Cirrhinus*)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 라베오(*Labeo*)종, 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 렙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 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종], 뱀장어[앙귈라(*Anguilla*)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나(*Channa*)종]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4.94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4.95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가디대(*Gadidae*)과·마크로우리대(*Macrouridae*)과·멜라노니대(*Melanonidae*)과·메르루치대(*Merlucciidae*)과·모리대(*Moridae*)과·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과의 어류[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는 제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4.96	--곱상어와 그 밖의 상어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4.97	--가오리와 홍어[라지대(*Rajidae*)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4.9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5	**건조한 어류, 염장이나 염수장한 어류, 훈제한 어류(훈제과정 중이나 훈제 전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어류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305.10	-어류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5.20	-어류의 간·어란(魚卵)·어백(漁白)(건조한 것·훈제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5.3	**-어류의 필레(fillet)(건조하거나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하며,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0305.31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종·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카라시우스(*Carassius*)종・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시리누스(*Cirrhinus*)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 라베오(*Labeo*)종, 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 렙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 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종], 뱀장어[앙귈라(*Anguilla*)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나(*Channa*)종]	
0305.32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가디대(*Gadidae*)과・마크로우리대(*Macrouridae*)과・멜라노니대(*Melanonidae*)과・메르루치대(*Merlucciidae*)과・모리대(*Moridae*)과・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과의 어류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5.3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5.4	**-훈제한 어류[필레(fillet)를 포함하며,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0305.41	--태평양 연어[옹코링쿠스 넬카(*Oncorhynchus nerka*)・옹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cha*)・옹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옹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chawytscha*)・옹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옹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옹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5.42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5.43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옹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옹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옹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옹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옹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옹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5.44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종・카라시우스(*Carassius*)종・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시리누스(*Cirrhinus*)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카틀라 카틀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Catla catla*), 라베오(*Labeo*)종, 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 렙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 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종], 뱀장어[앙귈라(*Anguilla*)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나(*Channa*)종]	
0305.4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5.5	**-건조한 어류[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 것으로서 염장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0305.51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가두스 오각(*Gadus ogac*)·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5.52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종·카라시우스(*Carassius*)종·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시리누스(*Cirrhinus*)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 라베오(*Labeo*)종, 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 렙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 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종], 뱀장어[앙귈라(*Anguilla*)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나(*Channa*)종]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5.53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가두스 오각(*Gadus ogac*)·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이외의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가디대(*Gadidae*)과·마크로우리대(*Macrouridae*)과·멜라노니대(*Melanonidae*)과·메르루치대(*Merlucciidae*)과·모리대(*Moridae*)과·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과의 어류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5.54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멸치[엔그라울리스(*Engraulis*)종],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Sardina pilchardus*)·사르디노프스(*Sardinops*)종],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Sardinella*)종], 브리스링(brisling)이나 스프랫(sprats)[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Sprattus sprattus*)],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Scomber scombrus*)·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Scomber australasicus*)·스콤버 자포니쿠스(*Scomber japonicus*)], 줄무니고등어[라스트렐리거(*Rastrelliger*)종], 삼치[스콤버로모루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Scomberomorus*)종], 전갱이[트라커러스(*Trachurus*)종], 줄전갱이류[카랑크스(*Caranx*)종], 날쌔기[라키센트론 카나둠(*Rachycentron canadum*)], 병어[팜프스(*Pampus*)종], 꽁치[콜로라비스 사이라(*Cololabis saira*)], 가라지[데칼테루스(*Decapterus*)종], 열빙어[말로투스 빌로서스(*Mallotus villosus*)],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점다랑어[유티누스 아피니스(*Euthynnus affinis*)], 버니토[사르다(*Sarda*)종], 새치류, 돛새치, 청새치[이스티오포리대(*Istiophoridae*)]	
0305.5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5.6	**-건조하지도 훈제하지도 않은 염장한 어류, 염수장한 어류[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0305.61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5.62	--대구[가두스모르화(*Gadus morhua*)·가두스 오각(*Gadus ogac*)·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5.63	--멸치[엔그로리스(*Engraulis*)종]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5.64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종·카라시우스(*Carassius*)종·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시리누스(*Cirrhinus*)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 라베오(*Labeo*)종, 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 렙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 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종], 뱀장어[앙귈라(*Anguilla*)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나(*Channa*)종]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5.6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5.7	**-어류의 지느러미·머리·꼬리·부레와 그 밖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	
0305.71	--상어 지느러미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5.72	--어류의 머리·꼬리·부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5.7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6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은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갑각류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0306.1	**-냉동한 것**	
0306.11	--닭새우류[팔리누루스(*Palinurus*)종·파누리루스(*Panulirus*)종·자수스(*Jasus*)종]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6.12	--바닷가재[호마루스(*Homarus*)종]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6.14	--게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6.15	--노르웨이 바닷가재[네프로프스 노르베지쿠스(*Nephrops norvegicus*)]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6.16	--냉수성(冷水性) 새우류[판달러스(*Pandalus*)종·크란곤 크란곤(*Crangon crangon*)]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6.17	--그 밖의 새우류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6.19	--기타[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을 포함한다(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6.3	**-살아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0306.31	--닭새우류[팔리누루스(*Palinurus*)종·파누리루스(*Panulirus*)종·자수스(*Jasus*)종]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6.32	--바닷가재[호마루스(*Homarus*)종]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6.33	--게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6.34	--노르웨이 바닷가재[네프로프스 노르베지쿠스(*Nephrops norvegicus*)]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6.35	--냉수성(冷水性) 새우류[판달러스(*Pandalus*)종·크란곤 크란곤(*Crangon crangon*)]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6.36	--그 밖의 새우류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6.39	--기타[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을 포함한다(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6.9	**-기타**	
0306.91	--닭새우류[팔리누루스(*Palinurus*)종·파누리루스(*Panulirus*)종·자수스(*Jasus*)종]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6.92	--바닷가재[호마루스(*Homarus*)종]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6.93	--게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6.94	--노르웨이 바닷가재[네프로프스 노르베지쿠스(*Nephrops norvegicus*)]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6.95	--새우류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6.99	--기타[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을 포함한다(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7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 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연체동물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0307.1	**-굴**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307.11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7.12	--냉동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0307.1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0307.2	-가리비과의 조개[펙텐(*Pecten*)·클라미스(*Chlamys*)·프라코펙텐(*Placopecten*)속의 것으로서 여왕가리비과 조개를 포함한다]	
0307.21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7.22	--냉동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0307.2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0307.3	-홍합[미틸루스(*Mytilus*)종·페르나(*Perna*)종]	
0307.31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7.32	--냉동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0307.3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0307.4	-갑오징어와 오징어	
0307.42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7.43	--냉동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7.4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7.5	-문어[옥토퍼스(*Octopus*)종]	
0307.51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7.52	--냉동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7.5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7.60	-달팽이(바다달팽이는 제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0307.7	-클램(clam), 새조개와 피조개[아르치대(*Arcidae*)과·아르크티치대(*Arcticidae*)과·카르디대(*Cardiidae*)과·도나치대(*Donacidae*)과·히아텔리대(*Hiatellidae*)과·마르크트리대(*Mactridae*)과·메소데스마티대(*Mesodesmatidae*)과·마이이대(*Myidae*)과·세멜리대(*Semelidae*)과·솔레쿠르티대(*Solecurtidae*)과·솔레니대(*Solenidae*)과·트리다크니대(*Tridacnidae*)과·베네리대(*Veneridae*)과]	
0307.71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307.72	--냉동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7.7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7.8	-전복[할리오티스(*Haliotis*)종]과 수정고둥류[스트롬버스(*Strombus*)종]	
0307.81	--살아있거나, 신선하거나 냉장한 전복[할리오티스(*Haliotis*)종]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7.82	--살아 있거나, 신선하거나 냉장한 수정고둥류[스트롬버스(*Strombus*)종]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7.83	--냉동한 전복[할리오티스(*Haliotis*)종]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7.84	--냉동한 수정고둥류[스트롬버스(*Strombus*)종]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7.87	--그 밖의 전복[할리오티스(*Haliotis*)종]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7.88	--그 밖의 수정고둥류[스트롬버스(*Strombus*)종]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7.9	-기타[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을 포함한다(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307.91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7.92	--냉동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7.9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8	수생(水生) 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은 제외하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갑각류와 연체동물은 제외하며,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수생(水生) 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은 제외한다)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0308.1	-해삼[스티코푸스 자포니쿠스(*Stichopus japonicus*), 홀로투로이대(*Holothuroidea*)]	
0308.11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8.12	--냉동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8.1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8.2	-성게[스트론길로센트로투스(*Strongylocentrotus*)종·파라센트로투스 리비두스(*Paracentrotus lividus*)·록세치누스 알버스(*Loxechinus albus*)·에치누스 에스쿨렌투스(*Echinus esculentus*)]	
0308.21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8.22	--냉동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8.2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8.30	-해파리[로필레마(*Rhopilema*)종]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308.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04 류	낙농품, 새의 알, 천연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0401	밀크와 크림(농축하지 않은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401.10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 분의 1 이하인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401.20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 분의 1 초과 100 분의 6 이하인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401.40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 분의 6 초과 100 분의 10 이하인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401.50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는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402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0402.10	-가루 모양·알갱이 모양이나 그 밖의 고체 상태인 것으로서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 분의 1.5 이하인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402.2	**-가루 모양·알갱이 모양이나 그 밖의 고체 상태인 것으로서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 분의 1.5 를 초과하는 것**	
0402.21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402.2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402.9	**-기타**	
0402.91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402.9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0403	**버터밀크·응고밀크와 응고크림·요구르트·케피어(kephir)와 그 밖의 발효되거나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 또는 향·과실·견과류·코코아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403.10	-요구르트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0403.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0404	**유장(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따로 분류된 것 외의 천연밀크의 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404.10	-유장과 변성유장(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0404.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0405	**버터와 그 밖의 지방과 기름(밀크에서 얻은 것으로 한정한다), 데어리 스프레드(dairy spread)**	
0405.10	-버터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0405.20	-데어리 스프레드(dairy spread)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0405.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0406	**치즈와 커드(curd)**	
0406.10	-신선한(숙성되지 않은 것이나 처리하지 않은 것) 치즈(유장치즈를 포함한다)와 커드(curd)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0406.20	-갈았거나 가루 모양으로 한 모든 종류의 치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0406.30	-가공치즈(갈았거나 가루 모양의 것은 제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0406.40	-블루바인 치즈(blue-veined cheese)와 페니실리움 로우크포티(Penicillium roqueforti)로 생산된 바인(vein)을 함유한 그 밖의 치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0406.90	-그 밖의 치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0407	**새의 알(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한 것, 보존처리하거나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0407.1	**-부화용 수정란**	
0407.11	--닭[갈루스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완전생산기준
0407.19	--기타	완전생산기준
0407.2	**-그 밖의 신선란**	
0407.21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 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완전생산기준
0407.29	--기타	완전생산기준
0407.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408	**새의 알(껍질이 붙지 않은 것)과 알의 노른자위(신선한 것, 건조한 것, 물에 삶았거나 찐 것, 성형한 것, 냉동한 것이나 그 밖의 보존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408.1	**-알의 노른자위**	
0408.11	--건조한 것	완전생산기준
0408.19	--기타	완전생산기준
0408.9	**-기타**	
0408.91	--건조한 것	완전생산기준
0408.99	--기타	완전생산기준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409	천연꿀	
0409.00	-천연꿀	완전생산기준
0410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0410.00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완전생산기준
제 05 류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0501	사람 머리카락(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세척이나 세정을 했는지에 상관없다)과 그 웨이스트(waste)	
0501.00	-사람 머리카락(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세척이나 세정을 했는지에 상관없다)과 그 웨이스트(waste)	완전생산기준
0502	돼지털·멧돼지털·오소리털과 그 밖의 브러시 제조용 동물의 털과 이들의 웨이스트(waste)	
0502.10	-돼지털·멧돼지털과 이들의 웨이스트(waste)	완전생산기준
0502.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504	동물(어류는 제외한다)의 장·방광 및 위의 전체나 부분(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염장한 것·염수장한 것·건조한 것·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0504.00	-동물(어류는 제외한다)의 장·방광· 위의 전체나 부분(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건조한 것·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505	새의 깃털이나 솜털이 붙은 가죽과 그 밖의 부분, 깃털과 그 부분(가장자리를 정리했는지에 상관없다), 새의 솜털(청정·소독·보존을 위한 처리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새의 깃털이나 그 부분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	
0505.10	-솜털과 충전재용 깃털	완전생산기준
0505.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506	뼈와 혼코어(horn-core)[가공하지 않은 것, 탈지(脫脂)한 것, 단순히 정리한 것(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은 제외한다), 산(酸)처리를 하거나 탈교한(degelatinised) 것], 이들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	
0506.10	-골소(骨素)와 뼈[산(酸)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506.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507	아이보리(ivory)·귀갑(龜甲)·고래수염과 그 털·뿔(horn)·사슴뿔·발굽·발톱·부리(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단순히 정리한 것으로 한정하며, 특정한 모양으로 깎은 것은 제외한다), 이들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507.10	-아이보리(ivory), 아이보리(ivory) 가루와 웨이스트(waste)	완전생산기준
0507.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508	**산호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공하지 않은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한다), 연체동물·갑각류·극피동물의 껍데기와 오징어뼈(가공하지 않은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으로 한정하며, 특정한 모양으로 깎은 것은 제외한다)와 이들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	
0508.00	-산호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단순히 정리한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한다), 연체동물·갑각류·극피동물의 껍데기와 오징어뼈(가공하지 않은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으로 한정하며, 특정한 모양으로 깎은 것은 제외한다)와 이들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	완전생산기준
0510	**용연향(ambergris)·해리향(castoreum)·시빗(civet)과 사향, 캔대리디즈(cantharides), 쓸개즙(건조했는지에 상관없다), 의약품 제조용 선(腺)이나 그 밖의 동물성 생산품(신선한 것, 냉장·냉동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0510.00	-용연향(ambergris)·해리향(castoreum)·시빗(civet)과 사향, 캔대리디즈(cantharides), 쓸개즙(건조했는지에 상관없다), 의약품 제조용 선(腺)이나 그 밖의 동물성 생산품(신선한 것, 냉장·냉동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511	**따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과 제 1 류나 제 3 류의 동물의 사체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	
0511.10	-소의 정액	완전생산기준
0511.9	**-기타**	
0511.91	--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생산품, 제 3 류에 해당하는 동물의 사체	완전생산기준
0511.99	--기타	완전생산기준
제 2 부 식물성 생산품		
제 06 류	**살아 있는 수목과 그 밖의 식물, 인경(鱗莖)·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절화(切花)와 장식용 잎**	
0601	**인경(鱗莖)·괴경(塊莖)·괴근(塊根)·구경(球莖)·관근(冠根)·근경(根莖)으로서 휴면(休眠)상태이거나 자라고 있거나 꽃이 피어 있는 것, 치커리·치커리뿌리(제 1212 호의 뿌리는 제외한다)**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601.10	-인경(鱗莖)·괴경(塊莖)·괴근(塊根)·구경(球莖)·관근(冠根)·근경(根莖)으로서 휴면(休眠)상태인 것	완전생산기준
0601.20	-인경(鱗莖)·괴경(塊莖)·괴근(塊根)·구경(球莖)·관근(冠根)·근경(根莖)으로서 자라고 있거나 꽃이 피어 있는 것, 치커리·치커리 뿌리	완전생산기준
0602	**그 밖의 살아 있는 식물(뿌리를 포함한다)·꺾꽂이용 가지·접붙임용 가지, 버섯의 종균(種菌)**	
0602.10	-뿌리가 없는 꺾꽂이용 가지와 접붙임용 가지	완전생산기준
0602.20	-수목과 관목(식용 과실이나 견과류의 것으로서 접목했는지에 상관없다)	완전생산기준
0602.30	-철쭉과 진달래속의 식물(접목했는지에 상관없다)	완전생산기준
0602.40	-장미(접목했는지에 상관없다)	완전생산기준
0602.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603	**절화(切花)와 꽃봉오리(신선한 것과 건조·염색·표백·침투나 그 밖의 가공을 한 것으로서 꽃다발용이나 장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603.1	**-신선한 것**	
0603.11	--장미	완전생산기준
0603.12	--카네이션	완전생산기준
0603.13	--난	완전생산기준
0603.14	--국화	완전생산기준
0603.15	--백합[릴리움(*Lilium*)종]	완전생산기준
0603.19	--기타	완전생산기준
0603.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604	**식물의 잎·가지와 그 밖의 부분(꽃이나 꽃봉오리가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풀·이끼·지의(地衣)(신선한 것·건조·염색·표백·침투나 그 밖의 가공을 한 것으로서 꽃다발용이나 장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604.20	-신선한 것	완전생산기준
0604.90	-기타	완전생산기준
제 07 류	**식용의 채소·뿌리·괴경(塊莖)**	
0701	**감자(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1.10	-종자용	완전생산기준
0701.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702	**토마토(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2.00	-토마토(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703	**양파·쪽파·마늘·리크(leek)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703.10	-양파와 쪽파	완전생산기준
0703.20	-마늘	완전생산기준
0703.90	-리크(leek)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	완전생산기준
0704	**양배추·꽃양배추·구경(球莖)양배추·케일(kale)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배추속(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4.10	-꽃양배추와 결구(結球) 브로콜리(broccoli)	완전생산기준
0704.20	-방울다다기 양배추	완전생산기준
0704.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705	**상추[락투카 사티바(*Lactuca sativa*)]와 치커리(chicory)[시커리엄(*Cichorium*)종](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5.1	**-상추**	
0705.11	--결구(結球) 상추	완전생산기준
0705.19	--기타	완전생산기준
0705.2	**-치커리(chicory)**	
0705.21	--위트루프 치커리(Witloof chicory)[시코리엄 인티부스 변종 포리오섬(*Cichorium intybus var. foliosum*)]	완전생산기준
0705.29	--기타	완전생산기준
0706	**당근·순무·샐러드용 사탕무뿌리·선모(仙茅)·셀러리액(celeriac)·무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뿌리(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6.10	-당근과 순무	완전생산기준
0706.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707	**오이류(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7.00	-오이류(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708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8.10	-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완전생산기준
0708.20	-콩[비그나(*Vigna*)종·파세러스(*Phaseolus*)종)]	완전생산기준
0708.90	-그 밖의 채두류(菜豆類)	완전생산기준
0709	**그 밖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9.20	-아스파라거스(asparagus)	완전생산기준
0709.30	-가지(에그플랜트)	완전생산기준
0709.40	-셀러리(celery)[셀러리액(celeriac)은 제외한다]	완전생산기준
0709.5	**-버섯과 송로(松露)**	
0709.51	--아가리쿠스(*Agaricus*)속의 버섯	완전생산기준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709.59	--기타	완전생산기준
0709.60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	완전생산기준
0709.70	-시금치류	완전생산기준
0709.9	**-기타**	
0709.91	--글로브 아티초크(globe artichoke)	완전생산기준
0709.92	--올리브	완전생산기준
0709.93	--호박류[쿠쿠르비타(*Cucurbita*)종]	완전생산기준
0709.99	--기타	완전생산기준
0710	**냉동채소(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0710.10	-감자	완전생산기준
0710.2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0710.21	--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완전생산기준
0710.22	--콩[비그나(*Vigna*)종·파세러스(*Phaseolus*)종)]	완전생산기준
0710.29	--기타	완전생산기준
0710.30	-시금치류	완전생산기준
0710.40	-스위트콘	완전생산기준
0710.80	-그 밖의 채소	완전생산기준
0710.90	-채소류의 혼합물	완전생산기준
0711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예: 이산화유황가스·염수·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한 채소(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711.20	-올리브	완전생산기준
0711.40	-오이류	완전생산기준
0711.5	**-버섯과 송로(松露)**	
0711.51	--아가리쿠스(*Agaricus*)속의 버섯	완전생산기준
0711.59	--기타	완전생산기준
0711.90	-그 밖의 채소와 채소류의 혼합물	완전생산기준
0712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	
0712.20	-양파	완전생산기준
0712.3	**-버섯, 목이버섯[오리쿨라리아(*Auricularia*)종], 젤리균류[트레멜라(*Tremella*)종], 송로(松露)**	
0712.31	--아가리쿠스(*Agaricus*)속의 버섯	완전생산기준
0712.32	--목이버섯[오리쿨라리아(*Auricularia*)종]	완전생산기준
0712.33	--젤리균류[트레멜라(*Tremella*)종]	완전생산기준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712.39	--기타	완전생산기준
0712.90	-그 밖의 채소와 채소류의 혼합물	완전생산기준
0713	**건조한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에 상관없다)**	
0713.10	-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완전생산기준
0713.20	-이집트 콩[가반조스(*garbanzos*)]	완전생산기준
0713.3	**-콩[비그나(*Vigna*)종·파세러스(*Phaseolus*)종)]**	
0713.31	--녹두[비그나 멍고(엘) 헤파(*Vigna mungo (L) Hepper*)종·비그나 라디에이타(엘) 윌크젝(*Vigna radiata (L) Wilczek*)종]	완전생산기준
0713.32	--팥[아주기(*Adzuki*)][파세러스(*Phaseolus*)·비그나 앵구라리스(*Vigna angularis*)]	완전생산기준
0713.33	--강낭콩(흰 완두콩을 포함한다)[파세러스 불가리스(*Phaseolus vulgaris*)]	완전생산기준
0713.34	--밤바라콩[비그나 서브터라니아(*Vigna subterranea*)·보안드제이아 서브터라니아(*Voandzeia subterranea*)]	완전생산기준
0713.35	--동부콩[비그나 운구이쿨라타(*Vigna unguiculata*)]	완전생산기준
0713.39	--기타	완전생산기준
0713.40	-렌즈콩	완전생산기준
0713.50	-누에콩[비시아 파바 변종 메이저(*Vicia faba var. major*)]과 말먹이용 누에콩[비시아 파바 변종 에퀴나(*Vicia faba var. equina*)·비시아 파바 변종 마이너(*Vicia faba var. minor*)]	완전생산기준
0713.60	-비둘기콩[카자누스 카잔(*Cajanus cajan*)]	완전생산기준
0713.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714	**매니옥(manioc)·칡뿌리·살렙(salep)·돼지감자(Jerusalem artichoke)·고구마와 이와 유사한 전분이나 이눌린(inulin)을 다량 함유한 뿌리·괴경(塊莖)[자른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 냉장·냉동한 것,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사고야자(sago)의 심(pith)**	
0714.10	-매니옥(manioc)[카사바(cassava)]	완전생산기준
0714.20	-고구마	완전생산기준
0714.30	-얌[디오스코레아(*Dioscorea*)종]	완전생산기준
0714.40	-토란[콜로카시아(*Colocasia*)종]	완전생산기준
0714.50	-아메리카 토란[크산토소마(*Xanthosoma*)종]	완전생산기준
0714.90	-기타	완전생산기준
제 08 류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멜론의 껍질**	
0801	**코코넛·브라질너트·캐슈너트(cashew nut)(신선**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한 것이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에 상관없다)	
0801.1	-코코넛	
0801.11	--말린 것	완전생산기준
0801.12	-내피[내과피(內果皮)]를 벗기지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801.19	--기타	완전생산기준
0801.2	-브라질너트	
0801.21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801.22	--껍데기를 벗긴 것	완전생산기준
0801.3	-캐슈너트(cashew nut)	
0801.31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801.32	--껍데기를 벗긴 것	완전생산기준
0802	그 밖의 견과류(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에 상관없다)	
0802.1	-아몬드	
0802.11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802.12	--껍데기를 벗긴 것	완전생산기준
0802.2	-헤즐너트(hazelnut)나 필버트(filbert)[코리루스(*Corylus*)종]	
0802.21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802.22	--껍데기를 벗긴 것	완전생산기준
0802.3	-호두	
0802.31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802.32	--껍데기를 벗긴 것	완전생산기준
0802.4	-밤[카스타네아(*Castanea*)종]	
0802.41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802.42	--껍데기를 벗긴 것	완전생산기준
0802.5	-피스타치오(pistachio)	
0802.51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802.52	--껍데기를 벗긴 것	완전생산기준
0802.6	-마카다미아 너트(macadamia nut)	
0802.61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802.62	--껍데기를 벗긴 것	완전생산기준
0802.70	-콜라 너트(kola nut)[콜라(Cola)종]	완전생산기준
0802.80	-빈랑자(areca nut)	완전생산기준
0802.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803	바나나[플랜틴(plantain)을 포함하며,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3.10	-플랜틴(plantain)	완전생산기준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803.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804	**대추야자・무화과・파인애플・아보카도(avocado)・구아바(guava)・망고(mango)・망고스틴(mangosteen)(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4.10	-대추야자	완전생산기준
0804.20	-무화과	완전생산기준
0804.30	-파인애플	완전생산기준
0804.40	-아보카도(avocado)	완전생산기준
0804.50	-구아바(guava)・망고(mango)・망고스틴(mangosteen)	완전생산기준
0805	**감귤류의 과실(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5.10	-오렌지	완전생산기준
0805.2	**-만다린(mandarins)[탄제린(tangerines)・세트수머(satsumas)를 포함한다], 클레멘타인(clementines), 윌킹(wilkings)과 이와 유사한 감귤류 잡종**	
0805.21	--만다린(mandarins)[탄제린(tangerines)・세트수머(satsumas)를 포함한다]	완전생산기준
0805.22	--클레멘타인(clementines)	완전생산기준
0805.29	--기타	완전생산기준
0805.40	-그레이프프루트(grapefruit)[포멜로(pomelos)를 포함한다]	완전생산기준
0805.50	-레몬[시트러스 리몬(*Citrus limon*)・시트러스 리머늄(*Citrus limonum*)], 라임(lime)[시트러스 오란티폴리아(*Citrus aurantifolia*)・시트러스 라티폴리아(*Citrus latifolia*)]	완전생산기준
0805.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806	**포도(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6.10	-신선한 것	완전생산기준
0806.20	-건조한 것	완전생산기준
0807	**멜론(수박을 포함한다)과 포포(papaw)[파파야(papaya)](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7.1	**-멜론(수박을 포함한다)**	
0807.11	--수박	완전생산기준
0807.19	--기타	완전생산기준
0807.20	-포포(papaw)[파파야(papaya)]	완전생산기준
0808	**사과・배・마르멜로(quince)(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8.10	-사과	완전생산기준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808.30	-배	완전생산기준
0808.40	-마르멜로(quince)	완전생산기준
0809	**살구・체리・복숭아[넥터린(nectarine)을 포함한다]・자두・슬로(sloe)(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9.10	-살구	완전생산기준
0809.2	**-체리**	
0809.21	--신 체리[프루너스 체라서스(*Prunus cerasus*)]	완전생산기준
0809.29	--기타	완전생산기준
0809.30	-복숭아[넥터린(nectarine)을 포함한다]	완전생산기준
0809.40	-자두와 슬로(sloe)	완전생산기준
0810	**그 밖의 과실(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10.10	-초본류 딸기	완전생산기준
0810.20	-나무딸기・검은나무딸기・오디・로간베리(loganberry)	완전생산기준
0810.30	-흑색・백색・적색의 커런트(currant)와 구즈베리(gooseberry)	완전생산기준
0810.40	-크랜베리(cranberry)・빌베리(bilberry)와 그 밖의 박시니엄(*Vaccinium*)속의 과실	완전생산기준
0810.50	-키위프루트(kiwifruit)	완전생산기준
0810.60	-두리안(durian)	완전생산기준
0810.70	-감	완전생산기준
0810.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811	**냉동 과실과 냉동 견과류(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찐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0811.10	-초본류 딸기	완전생산기준
0811.20	-나무딸기, 검은나무딸기, 오디, 로간베리(loganberry), 흑색・백색 ・적색의 커런트(currant), 구즈베리(gooseberry)	완전생산기준
0811.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812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예: 이산화유황 가스・염수・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한 과실과 견과류(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812.10	-체리	완전생산기준
0812.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813	**건조한 과실(제 0801 호부터 제 0806 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 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0813.10	-살구	완전생산기준
0813.20	-프룬(prune)	완전생산기준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813.30	-사과	완전생산기준
0813.40	-그 밖의 과실	완전생산기준
0813.50	-이 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완전생산기준
0814	**감귤류의 껍질이나 멜론(수박을 포함한다)의 껍질(신선한 것, 냉동하거나 건조한 것, 염수·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0814.00	-감귤류의 껍질이나 멜론(수박을 포함한다)의 껍질(신선한 것, 냉동하거나 건조한 것, 염수·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제 09 류	**커피·차·마테(maté)·향신료**	
0901	**커피(볶았는지, 카페인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 커피를 함유한 커피 대용물(커피의 포함비율은 상관없다)**	
0901.1	**-커피(볶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901.11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901.12	--카페인을 제거한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0901.2	**-커피(볶은 것으로 한정한다)**	
0901.21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0901.22	--카페인을 제거한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0901.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0902	**차류(맛과 향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0902.10	-녹차(발효하지 않은 것으로서 내용물의 무게가 3 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902.20	-그 밖의 녹차(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902.30	-홍차(발효차)와 부분 발효차(내용물의 무게가 3 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902.40	-그 밖의 홍차(발효차)와 그 밖의 부분 발효차	완전생산기준
0903	**마테(maté)**	
0903.00	-마테(maté)	완전생산기준
0904	**후추[파이퍼(Piper)속의 것으로 한정한다], 건조하거나 부수거나 잘게 부순 고추류[캡시컴**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	
0904.1	-후추	
0904.11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904.12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완전생산기준
0904.2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	
0904.21	--건조한 것(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904.22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완전생산기준
0905	바닐라	
0905.1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905.2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완전생산기준
0906	계피와 계피나무의 꽃	
0906.1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0906.11	--계피[신나모멈 제이나이쿰 블룸(*Cinnamomum zeylanicum Blume*)]	완전생산기준
0906.19	--기타	완전생산기준
0906.2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완전생산기준
0907	정향(丁香)(과실·꽃·꽃대로 한정한다)	
0907.1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907.2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완전생산기준
0908	육두구(肉荳蔻)·메이스(mace)·소두구(小荳蔻)	
0908.1	-육두구(肉荳蔻)	
0908.11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908.12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완전생산기준
0908.2	-메이스(mace)	
0908.21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908.22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완전생산기준
0908.3	-소두구(小荳蔻)	
0908.31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908.32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완전생산기준
0909	아니스(anise)·대회향(大茴香)·회향(茴香)·코리앤더(coriander)·커민(cumin)·캐러웨이(caraway)의 씨와 주니퍼(juniper)의 열매	
0909.2	-코리앤더(coriander)의 씨	
0909.21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909.22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완전생산기준
0909.3	-커민(cumin)의 씨	
0909.31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0909.32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완전생산기준
0909.6	**-아니스(anise)·대회향(大茴香)·캐러웨이(caraway)·회향(茴香)의 씨와 주니퍼(juniper)의 열매**	
0909.61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909.62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완전생산기준
0910	**생강·사프란(saffron)·심황[강황(薑黃)]·타임(thyme)·월계수 잎·카레와 그 밖의 향신료**	
0910.1	**-생강**	
0910.11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910.12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완전생산기준
0910.20	-사프란(saffron)	완전생산기준
0910.30	-심황[강황(薑黃)]	완전생산기준
0910.9	**-그 밖의 향신료**	
0910.91	--혼합물(제 09 류의 주 제 1 호나목의 것으로 한정한다)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0910.99	--기타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10 류	**곡물**	
1001	**밀과 메슬린(meslin)**	
1001.1	**-듀럼종 밀(Durum wheat)**	
1001.11	--종자	완전생산기준
1001.19	--기타	완전생산기준
1001.9	**-기타**	
1001.91	--종자	완전생산기준
1001.99	--기타	완전생산기준
1002	**호밀**	
1002.10	-종자	완전생산기준
1002.90	-기타	완전생산기준
1003	**보리**	
1003.10	-종자	완전생산기준
1003.90	-기타	완전생산기준
1004	**귀리**	
1004.10	-종자	완전생산기준
1004.90	-기타	완전생산기준
1005	**옥수수**	
1005.10	-종자용	완전생산기준
1005.90	-기타	완전생산기준
1006	**쌀**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1006.10	-벼	완전생산기준
1006.20	-현미	완전생산기준
1006.30	-정미(연마·광택 여부에 상관없다)	완전생산기준
1006.40	-쇄미(broken rice)	완전생산기준
1007	**수수**	
1007.10	-종자	완전생산기준
1007.90	-기타	완전생산기준
1008	**메밀·밀리트(millet)·카나리시드(canary seed)와 그 밖의 곡물**	
1008.10	-메밀	완전생산기준
1008.2	**-밀리트(millet)**	
1008.21	--종자	완전생산기준
1008.29	--기타	완전생산기준
1008.30	-카나리시드(canary seed)	완전생산기준
1008.40	-포니오(Fonio)[디지타리아(*Digitaria*)종]	완전생산기준
1008.50	-퀴노아(quinoa)[체노포디움 퀴노아 (*Chenopodium quinoa*)]	완전생산기준
1008.60	-라이밀(triticale)	완전생산기준
1008.90	-그 밖의 곡물	완전생산기준
제 11 류	**제분공업의 생산품, 맥아, 전분, 이눌린(inulin), 밀의 글루텐(gluten)**	
1101	**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	
1101.00	-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102	**곡물의 고운 가루[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는 제외한다]**	
1102.20	-옥수수가루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102.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1003 호 및 제 1006 호는 제외한다)
1103	**곡물의 부순 알곡·거친 가루와 펠릿(pellet)**	
1103.1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	
1103.11	--밀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103.13	--옥수수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103.19	--그 밖의 곡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10 류는 제외한다)
1103.20	-펠릿(pellet)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10 류는 제외한다)
1104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제 1006 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원래 모양인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잘게 부순 것	
1104.1	**-압착한 것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1104.12	--귀리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104.19	--그 밖의 곡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10 류는 제외한다)
1104.2	**-그 밖의 가공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	
1104.22	--귀리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104.23	--옥수수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104.29	--그 밖의 곡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10 류는 제외한다)
1104.30	-곡물의 씨눈[원래 모양인 것・압축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잘게 부순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1003 호 및 제 1006 호는 제외한다)
1105	**감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플레이크(flake)・알갱이・펠릿(pellet)**	
1105.10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105.20	-플레이크(flake)・알갱이・펠릿(pellet)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106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제 0713 호의 것), 사고(sago) ・뿌리나 괴경(塊莖)(제 0714 호의 것), 제 8 류 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	
1106.10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것(제 0713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106.20	-사고(sago)・뿌리나 괴경(塊莖)의 것(제 0714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106.30	-제 08 류 물품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107	**맥아(볶은 것인지에 상관없다)**	
1107.10	-볶지 않은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10 류는 제외한다)
1107.20	-볶은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10 류는 제외한다)
1108	**전분과 이눌린(inulin)**	
1108.1	**-전분**	
1108.11	--밀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108.12	--옥수수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108.13	--감자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108.14	--매니옥(manioc)[카사바(cassava)]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108.19	--그 밖의 전분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1108.20	-이눌린(inulin)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109	**밀의 글루텐(gluten)(건조했는지에 상관없다)**	
1109.00	-밀의 글루텐(gluten)(건조했는지에 상관없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12 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 공업용·의약용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1201	**대두(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01.10	-종자	완전생산기준
1201.90	-기타	완전생산기준
1202	**땅콩(볶거나 그 밖의 조리를 한 것은 제외하며, 껍데기를 벗겼는지,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02.30	-종자	완전생산기준
1202.4	**-기타**	
1202.41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1202.42	--껍데기를 벗긴 것(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완전생산기준
1203	**코프라(copra)**	
1203.00	-코프라(copra)	완전생산기준
1204	**아마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04.00	-아마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완전생산기준
1205	**유채(rape, colza)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05.10	-저에루크산(low erucic acid) 유채(rape, colza)의 씨	완전생산기준
1205.90	-기타	완전생산기준
1206	**해바라기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06.00	-해바라기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완전생산기준
1207	**그 밖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07.10	-팜너트(palm nut)와 핵(核)	완전생산기준
1207.2	**-목화씨**	
1207.21	--종자	완전생산기준
1207.29	--기타	완전생산기준
1207.30	-피마자	완전생산기준
1207.40	-참깨	완전생산기준
1207.50	-겨자씨	완전생산기준
1207.60	-잇꽃[카르타무스 틴크토리우스(*Carthamus tinctorius*)] 종자	완전생산기준
1207.70	-멜론 종자	완전생산기준
1207.9	**-기타**	
1207.91	--양귀비씨	완전생산기준
1207.99	--기타	완전생산기준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1208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나 과실의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겨자의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는 제외한다)**	
1208.10	-대두로 만든 것	완전생산기준
1208.90	-기타	완전생산기준
1209	**파종용 종자·과실·포자(胞子)**	
1209.10	-사탕무 종자	완전생산기준
1209.2	**-사료용 식물의 종자**	
1209.21	--루우산(lucerne)(알팔파) 종자	완전생산기준
1209.22	--클로버(clover)[트리폴리엄(*Trifolium*)종] 종자	완전생산기준
1209.23	--페스큐(fescue) 종자	완전생산기준
1209.24	--켄터키블루그래스(kentucky blue grass)[포아 프래텐시스 엘(*Poa pratensis L*)] 종자	완전생산기준
1209.25	--라이그래스(rye grass) 종자[로리엄 멀티플로럼 램(*Lolium multiflorum Lam*)·로리엄 페레네 엘(*Lolium perenne L*)]	완전생산기준
1209.29	--기타	완전생산기준
1209.30	-화초용 초본(草本)식물의 종자	완전생산기준
1209.9	**-기타**	
1209.91	--채소 종자	완전생산기준
1209.99	--기타	완전생산기준
1210	**홉(hop)[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나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루플린(lupulin)**	
1210.10	-홉(hop)[잘게 부순 것·가루 모양· 펠릿(pellet) 모양은 제외한다]	완전생산기준
1210.20	-홉(hop)[잘게 부순 것·가루 모양· 펠릿(pellet) 모양으로 한정한다], 루플린(lupulin)	완전생산기준
1211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1211.20	-인삼	완전생산기준
1211.30	-코카잎	완전생산기준
1211.40	-양귀비줄기	완전생산기준
1211.50	-마황(麻黃)	완전생산기준
1211.90	-기타	완전생산기준
1212	**로커스트콩(locust bean)·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藻類)·사탕무와 사탕수수(신선한 것·냉장한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냉동한 것・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核)과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볶지 않은 시코리엄 인티부스 새티범(*Cichorium intybus sativum*) 변종의 치커리(chicory) 뿌리를 포함한다]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	
1212.2	-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	
1212.21	--식용	완전생산기준
1212.29	--기타	완전생산기준
1212.9	-기타	
1212.91	--사탕무	완전생산기준
1212.92	--로커스트콩(locust bean)(캐롭)	완전생산기준
1212.93	--사탕수수	완전생산기준
1212.94	--치커리(chicory) 뿌리	완전생산기준
1212.99	--기타	완전생산기준
1213	곡물의 짚과 껍질[조제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수거나 압착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1213.00	-곡물의 짚과 껍질[조제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수거나 압착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완전생산기준
1214	스위드(swede)・맹골드(mangold)・사료용 뿌리 채소류(根菜類)・건초・루우산(lucerne)(알팔파)・클로버(clover)・샌포인(sainfoin)・사료용 케일(kale)・루핀(lupine)・베치(vetch)와 이와 유사한 사료용 식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1214.10	-루우산(lucerne)(알팔파)의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	완전생산기준
1214.90	-기타	완전생산기준
제 13 류	락(lac), 검・수지・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1301	락(lac), 천연 검・수지・검 수지・ 올레오레진(oleoresin)[예: 발삼(balsam)]	
1301.20	-아라비아 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301.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302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	
1302.1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1302.11	--아편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302.12	--감초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1302.13	--홉(hop)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302.14	--마황(麻黃)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1211.20 호는 제외한다)
1302.1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1211.20 호는 제외한다)
1302.20	-펙틴질·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302.3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	
1302.31	--한천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302.32	--로커스트콩(locust bean)·로커스트콩(locust bean)의 씨나 구아(guar)의 씨로부터 얻은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302.3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14 류	**식물성 편조물(編組物)용 재료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	
1401	**편조물(編組物)에 주로 사용되는 식물성 재료[예: 대나무, 등나무, 갈대, 골풀, 버드나무 가지(osier), 라피아(raffia), 청정·표백·염색한 곡물의 짚과 라임나무(lime) 껍질]**	
1401.10	-대나무	완전생산기준
1401.20	-등나무	완전생산기준
1401.90	-기타	완전생산기준
1404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	
1404.20	-면(綿) 린터(linter)	완전생산기준
1404.90	-기타	완전생산기준
제 3 부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식물성 납(蠟)		
제 15 류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식물성 납(蠟)**	
1501	**돼지의 지방[라드(lard)를 포함한다]과 가금(家禽)의 지방(제 0209 호나 제 1503 호의 것은 제외한다)**	
1501.10	-라드(lard)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501.20	-그 밖의 돼지의 지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50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1502	소·면양·산양의 지방(제 1503 호의 것은 제외한다)	
1502.10	-탤로우(tallow)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5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503	라드스테아린(lard stearin), 라드유(lard oil), 올레오스테아린(oleostearin), 올레오유(oleo-oil), 탤로우유(tallow oil)로서 유화·혼합 또는 그 밖의 조제를 하지 않은 것	
1503.00	-라드스테아린(lard stearin), 라드유(lard oil), 올레오스테아린(oleostearin), 올레오유(oleo-oil), 탤로우유(tallow oil)로서 유화·혼합 또는 그 밖의 조제를 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504	어류나 바다에서 사는 포유동물의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04.10	-어류의 간유(肝油)와 그 분획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504.20	-어류의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간유(肝油)는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504.30	-바다에서 사는 포유동물의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505	울그리스(wool grease)와 이것에서 얻은 지방성 물질[라놀린(lanolin)을 포함한다]	
1505.00	-울그리스(wool grease)와 이것에서 얻은 지방성 물질[라놀린(lanolin)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506	그 밖의 동물성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06.00	-그 밖의 동물성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507	대두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07.10	-조유(粗油)[검(gum)질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150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508	**땅콩기름과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08.10	-조유(粗油)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508.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509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09.10	-버진(virgin)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509.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510	**그 밖의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올리브에서 얻은 것으로서 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하고, 이들의 기름이나 그 분획물이 제 1509 호의 기름이나 그 분획물과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	
1510.00	-그 밖의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올리브에서 얻은 것으로서 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하고, 이들의 기름이나 그 분획물이 제 1509 호의 기름이나 그 분획물과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511	**팜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11.10	-조유(粗油)	완전생산기준
1511.90	-기타	완전생산기준
1512	**해바라기씨유·잇꽃유·목화씨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12.1	**-해바라기씨유·잇꽃유와 그 분획물**	
1512.11	--조유(粗油)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이상일 것
1512.1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512.2	**-목화씨유와 그 분획물**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1512.21	--조유(粗油)[고시폴(gossypol)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512.2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513	야자[코프라(copra)]유, 팜핵유(palm kernel oil), 바바수유(babassu oil)와 이들의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13.1	-야자[코프라(copra)]유와 그 분획물	
1513.11	--조유(粗油)	완전생산기준
1513.19	--기타	완전생산기준
1513.2	-팜핵유(palm kernel oil)나 바바수유(babassu oil)와 이들의 분획물	
1513.21	--조유(粗油)	완전생산기준
1513.29	--기타	완전생산기준
1514	유채유(rape oil, colza oil), 겨자유와 이들의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14.1	-저에루크산(low erucic acid) 유채유(rape oil, colza oil)와 그 분획물	
1514.11	--조유(粗油)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514.1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514.9	-기타	
1514.91	--조유(粗油)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514.9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515	그 밖의 비휘발성인 식물성 지방과 기름[호호바유(jojoba oil)를 포함한다]과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15.1	-아마씨유와 그 분획물	
1515.11	--조유(粗油)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1515.1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515.2	**-옥수수유와 그 분획물**	
1515.21	--조유(粗油)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515.2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515.30	-피마자유와 그 분획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515.50	-참기름과 그 분획물	완전생산기준
1515.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516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수소를 첨가한 것, 인터에스텔화한(inter-esterified) 것, 리에스텔화한(re-esterified) 것, 엘라이딘화한(elaidinised) 것으로 한정하며, 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더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16.10	-동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516.20	-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517	**마가린, 동물성·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제 1516 호의 식용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들의 분획물은 제외한다)**	
1517.10	-마가린(액상 마가린은 제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517.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518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 (끓이거나 산화·탈수·황화·취입하거나 진공상태나 불활성 가스에서 가열중합하거나 그 밖의 화학적 변성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 1516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동물성·식물성 지방이나**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의 혼합물이나 조제품	
1518.00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끓이거나 산화・탈수・황화・취입하거나 진공상태나 불활성 가스에서 가열중합하거나 그 밖의 화학적 변성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 1516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동물성・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의 혼합물이나 조제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520	**글리세롤(glycerol)(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리세롤 수(水), 글리세롤 폐액(廢液)**	
1520.00	-글리세롤(glycerol)(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리세롤 수(水), 글리세롤 폐액(廢液)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521	**식물성 납(蠟)[트리글리세라이드(triglyceride)는 제외한다]・밀랍(蜜蠟)과 그 밖의 곤충납(昆蟲蠟)・경납(鯨蠟)(정제했는지 또는 착색했는지에 상관없다)**	
1521.10	-식물성 납(蠟)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521.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522	**데그라스(degras), 지방성 물질이나 동물성・식물성 납(蠟)을 처리할 때 생기는 잔유물**	
1522.00	-데그라스(degras), 지방성 물질이나 동물성・식물성 납(蠟)을 처리할 때 생기는 잔유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4 부 조제 식료품, 음료・주류・식초, 담배・제조한 담배 대용물		
제 16 류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조제품**	
1601	**소시지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육・설육(屑肉)이나 피로 조제한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 물품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식료품**	
1601.00	-소시지와 이와 유사한 물품[육・설육(屑肉)이나 피로 조제한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 물품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식료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602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설육(屑肉)이나 피**	
1602.10	-균질화한 조제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602.20	-동물 간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602.3	**-가금류(家禽類)로 만든 것(제 0105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1602.31	--칠면조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602.32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 종의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602.3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602.4	**-돼지로 만든 것**	
1602.41	--넓적다리살과 그 절단육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602.42	--어깨살과 그 절단육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602.49	--기타(혼합물을 포함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602.50	-소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602.90	-기타(동물의 피 조제품을 포함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603	**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추출물(extract)과 즙**	
1603.00	-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추출물(extract)과 즙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604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캐비아, 어란(魚卵)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	
1604.1	**-어류(원래 모양이나 토막낸 것으로 한정하며, 잘게 다진 것은 제외한다)**	
1604.11	--연어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604.12	--청어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1604.13	--정어리・사르디넬라(Sardinella)・브리스링(brisling)・스프랫(sprat)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604.14	--다랑어・가다랑어・버니토(bonito)[사르다(*Sarda*)종]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604.15	--고등어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604.16	--멸치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604.17	--뱀장어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604.18	--상어지느러미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604.1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604.20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604.3	**-캐비아와 캐비아 대용물**	
1604.31	--캐비아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604.32	--캐비아 대용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605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1605.10	-게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605.2	**-새우류**	
1605.21	--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605.2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605.30	-바닷가재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605.40	-그 밖의 갑각류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605.5	**-연체동물**	
1605.51	--굴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605.52	--가리비과의 조개(여왕 가리비과 조개를 포함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605.53	--홍합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605.54	--갑오징어와 오징어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605.55	--문어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605.56	--클램(clam), 새조개, 피조개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605.57	--전복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605.58	--달팽이(바다달팽이는 제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605.5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605.6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1605.61	--해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605.62	--성게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605.63	--해파리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605.6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17 류	당류(糖類)와 설탕과자	
1701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蔗糖)(고체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1701.1	-조당(粗糖)[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가 첨가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701.12	--사탕무당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701.13	--이 류의 소호주 제 2 호에 규정된 사탕수수당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701.14	--그 밖의 사탕수수당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701.9	-기타	
1701.91	--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가 첨가된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701.9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702	그 밖의 당류(糖類)[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乳糖)·맥아당·포도당·과당을 포함하며, 고체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당시럽[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인조꿀(천연꿀을 혼합했는지에 상관없다), 캐러멜당	
1702.1	-유당(乳糖)과 유당(乳糖)시럽	
1702.11	--건조 상태에서 측정한 유당(乳糖)[무수유당(無水乳糖)]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9 이상인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702.1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702.20	-단풍당과 단풍당시럽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702.30	-포도당과 포도당시럽(과당을 함유하지 않거나 건조 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2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702.40	-포도당과 포도당시럽(건조 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20 이상이고 100 분의 5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전화당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轉化糖)은 제외한다.	
1702.50	-화학적으로 순수한 과당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702.60	-그 밖의 과당과 과당시럽(건조 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전화당(轉化糖)은 제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702.90	-기타[전화당(轉化糖)과 그 밖의 당류(糖類)와 당시럽 혼합물(건조 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0 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703	**당밀(糖蜜)[당류(糖類)를 추출하거나 정제할 때 생긴 것으로 한정한다]**	
1703.10	-사탕수수에서 생긴 당밀(糖蜜)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703.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704	**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	
1704.10	-추잉껌(당을 도포하였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70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18 류	**코코아와 그 조제품**	
1801	**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서 생 것이나 볶은 것으로 한정한다)**	
1801.00	-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서 생 것이나 볶은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802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 그 밖의 코코아 웨이스트(waste)**	
1802.00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 그 밖의 코코아 웨이스트(waste)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803	**코코아 페이스트(paste)[탈지(脫脂)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803.10	-탈지(脫脂)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803.20	-전부나 일부를 탈지(脫脂)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1804	코코아 버터, 지방과 기름	
1804.00	-코코아 버터, 지방과 기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805	코코아 가루(설탕 또는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	
1805.00	-코코아 가루(설탕 또는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806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	
1806.10	-코코아 가루(설탕 또는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806.20	-그 밖의 조제 식료품[무게가 2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블록 모양·슬래브 모양·막대(bar) 모양인 것과 용기에 들어 있거나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서 내용물의 무게가 2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액체·페이스트(paste)·가루·알갱이나 그 밖의 벌크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806.3	-기타[블록 모양·슬래브 모양·막대(bar)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1806.31	--다른 것으로 속을 채운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806.32	--속을 채우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80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19 류	곡물·고운 가루·전분·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1901	맥아 추출물(extract),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제 0401 호부터 제 0404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901.10	-영유아·어린이용 조제 식료품(소매용으로 한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정한다)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901.20	-제 1905 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과 가루반죽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901.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902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자니아(lasagne)・뇨키(gnocchi)・라비올리(ravioli)・카넬로니(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와 쿠스쿠스(couscous)(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902.1	**-조리하지 않은 파스타(속을 채우지 않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902.11	--새의 알을 넣은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902.1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902.20	-속을 채운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902.30	-그 밖의 파스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902.40	-쿠스쿠스(couscous)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903	**타피오카와 전분으로 조제한 타피오카 대용물[플레이크(flake) 모양・낟알 모양・진주 모양・무거리 모양・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1903.00	-타피오카와 전분으로 조제한 타피오카 대용물[플레이크(flake) 모양・낟알 모양・진주 모양・무거리 모양・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904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1904.10	-곡물이나 곡물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904.20	-볶지 않은 곡물 플레이크(flake)의 조제 식료품・볶지 않은 곡물 플레이크(flake)와 볶은 곡물 플레이크(flake)나 팽창된 곡물의 혼합물로 만든 조제 식료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904.30	-불거 밀(bulgur wheat)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904.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905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웨이퍼(sealing wafer)・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1905.10	-귀리빵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905.20	-생강과자(gingerbread)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905.3	**-스위트 비스킷, 와플, 웨이퍼**	
1905.31	--스위트 비스킷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905.32	--와플과 웨이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905.40	-러스크(rusk)・토스트 빵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토스트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9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20 류	**채소・과실・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2001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2001.10	-오이류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001.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2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토마토(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2002.10	-토마토의 전체나 조각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2.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3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버섯과 송로(松露)(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2003.10	-아가리쿠스(*Agaricus*)속의 버섯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3.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4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 2006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2004.10	-감자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4.90	-그 밖의 채소와 채소의 혼합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5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 2006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2005.10	-균질화한 채소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5.20	-감자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5.40	-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5.5	**-콩[비그나(*Vigna*)종・파세러스(*Phaseolus*)종]**	
2005.51	--껍데기를 벗긴 콩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005.5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5.60	-아스파라거스(asparagus)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5.70	-올리브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5.80	-스위트콘[자메이스 변종 사카라타(*Zea mays var. saccharata*)]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5.9	**-그 밖의 채소와 채소의 혼합물**	
2005.91	--죽순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5.9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6	**설탕으로 보존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과피와 식물의 그 밖의 부분[드레인한(drained) 것, 설탕을 입히거나 설탕에 절인 것]**	
2006.00	-설탕으로 보존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과피와 식물의 그 밖의 부분[드레인한(drained) 것, 설탕을 입히거나 설탕에 절인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7	**잼·과실젤리·마멀레이드(marmalade)·과실이나 견과류의 퓨레(purée)·과실이나 견과류의 페이스트(paste)(조리해서 얻은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2007.10	-균질화한 조제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7.9	**-기타**	
2007.91	--감귤류의 과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7.9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8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008.1	-견과류·땅콩 및 그 밖의 씨류(서로 혼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2008.11	--땅콩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8.19	--기타(혼합물을 포함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8.20	-파인애플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008.30	-감귤류 과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8.40	-배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8.50	-살구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8.60	-체리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8.70	-복숭아[넥터린(nectarine)을 포함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8.80	-초본류 딸기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8.9	-기타(혼합물을 포함하되, 소호 제 2008.19 호의 혼합물은 제외한다)	
2008.91	--팜 하트(palm heart)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8.93	--크랜베리(cranberry)[바치니움 매크로카르폰(*Vaccinium macrocarpon*)·바치니움 옥시코코스(*Vaccinium oxycoccos*)·바치니움 비티스-이다에아(*Vaccinium vitis-idaea*)]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8.97	--혼합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8.9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9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009.1	-오렌지주스	
2009.11	--냉동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9.12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서 브릭스(Brix) 값이 20 을 초과하지 않은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9.1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9.2	-그레이프프루트(grapefruit)[포멜로(pomelo)를 포함한다] 주스	
2009.21	--브릭스(Brix) 값이 20 을 초과하지 않은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9.2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9.3	-그 밖의 한 가지 감귤류로 된 주스	
2009.31	--브릭스(Brix) 값이 20 을 초과하지 않은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9.3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9.4	-파인애플주스	
2009.41	--브릭스(Brix) 값이 20 을 초과하지 않은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9.4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9.50	-토마토주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9.6	-포도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	
2009.61	--브릭스(Brix) 값이 30 을 초과하지 않은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9.6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009.7	-사과주스	
2009.71	--브릭스(Brix) 값이 20 을 초과하지 않은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9.7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9.8	-그 밖에 한 가지 과실이나 채소로 된 주스	
2009.81	--크랜베리(cranberry)[바치니움 매크로카르폰(*Vaccinium macrocarpon*)·바치니움 옥시코코스(*Vaccinium oxycoccos*)·바치니움 비티스-이다에아(*Vaccinium vitis-idaea*)] 주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9.8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9.90	-혼합 주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21 류	각종 조제 식료품	
2101	커피·차·마테(maté)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차 ·마테(maté)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	
2101.1	-커피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2101.11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101.12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을 기본 재료로 하거나 커피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101.20	-차나 마테(maté)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차나 마테(maté)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101.30	-볶은 치커리(chicory)·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102	효모(활성이거나 불활성인 것), 그 밖의 단세포 미생물(죽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 3002 호의 백신은 제외한다)과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102.10	-활성 효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102.20	-불활성 효모와 그 밖의 죽은 단세포 미생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102.30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103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	
2103.10	-간장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103.20	-토마토 케첩과 그 밖의 토마토로 만든 소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103.30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1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104	**수프·브로드(broth)와 수프· 브로드(broth)용 조제품,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	
2104.10	-수프·브로드(broth)와 수프·브로드(Broth)용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104.20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105	**아이스크림과 그 밖의 빙과류(코코아를 함유했는지에 상관없다)**	
2105.00	-아이스크림과 그 밖의 빙과류(코코아를 함유했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106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	
2106.10	-단백질 농축물과 텍스처화한(textured) 단백질계 물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10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1211.20 호, 제 1212.21 호 및 제 1302.19 호는 제외한다)
제 22 류	**음료·주류·식초**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201	**물(천연이나 인조 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얼음과 눈**	
2201.10	-광천수와 탄산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20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202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 2009 호의 과실 주스나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	
2202.10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202.9	**-기타**	
2202.91	-알콜올을 함유하지 않은 맥주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1211.20 호 및 제 1302.19 호는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202.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1211.20 호 및 제 1302.19 호는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203	**맥주**	
2203.00	-맥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204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알코올로 강화한 포도주를 포함한다)와 포도즙(제 2009 호의 것은 제외한다)**	
2204.10	-발포성(發泡性) 포도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204.2	**-그 밖의 포도주와 알코올 첨가에 따라 발효를 중지한 포도즙**	
2204.21	--2 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2204.22 호 및 제 2204.29 호는 제외한다)
2204.22	--2 리터 초과 10 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2204.21 호 및 제 2204.29 호는 제외한다)
2204.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2204.21 호 및 제 2204.22 호는 제외한다)
2204.30	-그 밖의 포도즙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205	**베르무트(vermouth)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으로서 식물이나 방향성(芳香性) 물질로 맛이나 향을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2205.10	-2 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2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206	**그 밖의 발효주[예: 사과술·배술·미드(mead)·사케(saké)], 따로 분류되지 않은 발효주의 혼합물, 발효주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와의 혼합물**	
2206.00	-그 밖의 발효주[예: 사과술·배술·미드(mead)·사케(saké)], 따로 분류되지 않은 발효주의 혼합물, 발효주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와의 혼합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207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 분의 8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변성 에틸알코올, 그 밖의 변성 주정(알코올의 용량은 상관없다)**	
2207.10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 분의 8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207.20	-변성 에틸알코올과 그 밖의 변성 주정(알코올의 용량은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208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 분의 8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리큐르(liqueur)와 그 밖의 주정음료**	
2208.20	-포도주나 포도즙을 짜낸 찌꺼기에서 얻은 증류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208.30	-위스키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208.40	-럼(rum)과 발효된 사탕수수제품을 증류하여 얻은 그 밖의 증류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208.50	-진(gin)과 제네바(geneva)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208.60	-보드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208.70	-리큐르(liqueur)류와 코디얼(cordial)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20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209	**식초와 초산으로 만든 식초 대용물**	
2209.00	-식초와 초산으로 만든 식초 대용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23 류	**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과 웨이스트(waste), 조제 사료**	
2301	**육·설육(屑肉)·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과 수지박**	
2301.10	-육이나 설육(屑肉)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펠릿(pellet)과 수지박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301.20	-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펠릿(pellet)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302	**밀기울·쌀겨와 그 밖의 박(residue)류[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곡물·채두류(菜豆類)의 선별·제분 또는 그 밖의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것으로 한정한다]**	
2302.10	-옥수수에서 나온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302.30	-밀에서 나온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302.40	-그 밖의 곡물에서 나온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302.50	-채두류(菜豆類)에서 나온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303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 비트펄프(beet-pulp), 버개스(bagasse)와 그 밖의 설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웨이스트(waste), 양조하거나 증류할 때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펠릿(pellet) 모**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양인지에 상관없다]	
2303.10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303.20	-비트펄프(beet-pulp), 버개스(bagasse)와 그 밖의 설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웨이스트(wast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303.30	-양조하거나 증류할 때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wast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304	**대두유를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그 밖의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2304.00	-대두유를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그 밖의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305	**땅콩기름을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그 밖의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2305.00	-땅콩기름을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그 밖의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306	**오일 케이크와 그 밖의 고체 형태인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제 2304 호나 제 2305 호의 것은 제외한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을 추출할 때 생기는 것으로 한정한다]**	
2306.10	-목화씨에서 나온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306.20	-아마씨에서 나온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306.30	-해바라기씨에서 나온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306.4	**-유채(rape, colza)씨에서 나온 것**	
2306.41	--저에루크산(low erucic acid) 유채(rape, colza)씨에서 나온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306.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306.50	-야자나 코프라(copra)에서 나온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306.60	-팜 너트(palm nut)나 핵(核)에서 나온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306.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307	**와인리스(wine lees)와 생주석(argol)**	
2307.00	-와인리스(wine lees)와 생주석(argol)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308	**사료용 식물성 물질·식물성 웨이스트(waste)·식물성 박(residue)류와 부산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308.00	-사료용 식물성 물질·식물성 웨이스트(waste)·식물성 박(residue)류와 부산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309	**사료용 조제품**	
2309.10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30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24 류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2401	**잎담배와 담배 부산물**	
2401.10	-잎담배[주맥(主脈)을 제거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401.20	-잎담배[주맥(主脈)을 일부나 전부 제거한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401.30	-담배 부산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402	**시가(cigar)·셔루트(cheroot)·시가릴로(cigarillo)·궐련(담배나 담배 대용물인 것으로 한정한다)**	
2402.10	-시가(cigar)·셔루트(cheroot)·시가릴로(cigarillo)(담배를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402.20	-궐련(담배를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4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403	그 밖의 제조 담배, 제조한 담배 대용물, 균질화하거나 재구성한 담배・담배 추출물(extract)과 에센스(essence)	
2403.1	-흡연용 담배(담배 대용물의 포함비율은 상관없다)	
2403.11	--이 류의 소호주 제 1 호에 규정된 워터파이프(water pipe) 담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403.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403.9	-기타	
2403.91	--균질화하거나 재구성한 담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403.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5 부 광물성 생산품		
제 25 류	소금, 황, 토석류(土石類), 석고・석회・시멘트	
2501	소금(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다), 순염화나트륨[수용액(水溶液)인지 또는 고결(固結)방지제나 유동제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바닷물	
2501.00	-소금(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다), 순염화나트륨[수용액(水溶液)인지 또는 고결(固結)방지제나 유동제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바닷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02	황화철광[배소(焙燒)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502.00	-황화철광[배소(焙燒)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03	황[승화황(昇華黃)・침강황(沈降黃)・콜로이드황은 제외한다]	
2503.00	-황[승화황(昇華黃)・침강황(沈降黃)・콜로이드황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04	천연 흑연	
2504.10	-가루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0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05	천연 모래(착색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 26 류의 금속을 함유하는 모래는 제외한다)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505.10	-규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06	**석영(천연 모래는 제외한다)과 규암[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06.10	-석영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06.20	-규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07	**고령토와 그 밖의 고령토질의 점토[하소(煆燒)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07.00	-고령토와 그 밖의 고령토질의 점토[하소(煆燒)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08	**그 밖의 점토(제 6806 호의 팽창된 점토는 제외한다)・홍주석(紅柱石)・남정석(藍晶石) ・규선석(硅線石) [하소(煆燒)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멀라이트(mullite), 샤모트(chamotte)나 다이나스 어스(dinas earth)**	
2508.10	-벤토나이트(bentonit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08.30	-내화(耐火)점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08.40	-그 밖의 점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08.50	-홍주석(紅柱石)・남정석(藍晶石)・규선석(硅線石)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08.60	-멀라이트(mullit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08.70	-샤모트(chamotte), 다이나스 어스(dinas earth)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09	**초크**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509.00	-초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10	**천연 인산칼슘·천연 인산알루미늄칼슘·인산염을 함유한 초크**	
2510.10	-잘게 부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10.20	-잘게 부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11	**천연 황산바륨[중정석(重晶石)], 천연 탄산바륨[독중석(毒重石)][하소(煅燒)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 2816 호의 산화바륨은 제외한다]**	
2511.10	-천연 황산바륨[중정석(重晶石)]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11.20	-천연 탄산바륨[독중석(毒重石)]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12	**규조토[예: 키절구어(kieselguhr)·트리폴리트(tripolite)·다이어토마이트(diatomite)]와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하소(煅燒)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겉보기 비중이 1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2512.00	-규조토[예: 키절구어(kieselguhr)·트리폴리트(tripolite)·다이어토마이트(diatomite)]와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하소(煅燒)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겉보기 비중이 1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13	**부석(浮石), 금강사(金剛砂), 천연 커런덤(corundum)·천연 석류석과 그 밖의 천연 연마재료(열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13.10	-부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13.20	-금강사(金剛砂), 천연 커런덤(corundum), 천연 석류석과 그 밖의 천연 연마재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14	**슬레이트[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14.00	-슬레이트[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것인지에 상관없다]	
2515	대리석·트래버틴(travertine)·에코신(ecaussine)과 그 밖의 석비(石碑)용·건축용 석회질의 암석(겉보기 비중이 2.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과 설화석고(alabaster)[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15.1	-대리석과 트래버틴(travertine)	
2515.11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거칠게 다듬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15.12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15.20	-에코신(ecaussine)과 그 밖의 석비(碑石)용·건축용 석회질의 암석과 설화 석고(alabast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16	화강암·반암(斑巖)·현무암·사암과 그 밖의 석비(石碑)용·건축용 암석[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16.1	-화강암	
2516.11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거칠게 다듬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16.12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16.20	-사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16.90	-그 밖의 석비(石碑)용·건축용 암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17	자갈·왕자갈·쇄석(碎石)[콘크리트용·도로포장용·철도용이나 그 밖의 밸러스트(ballast)용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싱글(shingle)과 플린트(flint)(열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슬래그(slag)·드로스(dross)나 이와 유사한 산업폐기물의 머캐덤(macadam)(이 호의 앞부분에 열거한 물품들과 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타르 머캐덤(tar macadam), 제 2515 호나 제 2516 호의 암석의 알갱이·파편·가루(열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517.10	-자갈・왕자갈・쇄석(碎石)[콘크리트용・도로포장용・철도용이나 그 밖의 밸러스트(ballast)용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싱글(shingle)과 플린트(flint)(열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17.20	-슬래그(slag)・드로스(dross)나 이와 유사한 산업폐기물의 머캐덤(macadam)(소호 제 2517.10 호의 물품을 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17.30	-타르 머캐덤(tar macadam)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17.4	**-제 2515 호나 제 2516 호의 암석의 알갱이・파편・가루(열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17.41	--대리석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17.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18	**백운석(白雲石)[하소(煆燒)한 것인지 또는 소결(燒結)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을 포함한다]과 응결(凝結) 백운석(白雲石)**	
2518.10	-하소(煆燒)하지 않거나 소결(燒結)하지 않은 백운석(白雲石)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18.20	-하소(煆燒)하거나 소결(燒結)한 백운석(白雲石)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18.30	-응결(凝結) 백운석(白雲石)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19	**천연 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 용융(溶融) 마그네시아, 소결(燒結)한 마그네시아[소결(燒結)하기 전에 첨가된 그 밖의 산화물을 소량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 밖의 산화마그네슘(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19.10	-천연 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1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520	석고, 무수(無水)석고, 플라스터(plaster)[하소(煆燒)한 석고나 황산칼슘을 원료로 한 것으로서 착색한 것인지 또는 촉진제나 지연제를 소량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20.10	-석고와 무수(無水)석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20.20	-플라스터(plast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21	석회석 융제(融劑), 석회석과 그 밖의 석회질의 암석(석회나 시멘트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2521.00	-석회석 융제(融劑), 석회석과 그 밖의 석회질의 암석(석회나 시멘트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22	생석회(生石灰), 소석회(消石灰), 수경성(水硬性) 석회(제 2825 호의 산화칼슘과 수산화칼슘은 제외한다)	
2522.10	-생석회(生石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22.20	-소석회(消石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22.30	-수경성(水硬性) 석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23	포틀랜드(Portland) 시멘트・알루미나(aluminous) 시멘트・슬래그(slag) 시멘트・슈퍼설페이트(super sulphate) 시멘트와 이와 유사한 수경성(水硬性) 시멘트[착색한 것인지 또는 클링커(clinker) 형태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23.10	-시멘트 클링커(clink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23.2	-포틀랜드(Portland) 시멘트	
2523.21	--백색 시멘트(인위적으로 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23.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23.30	-알루미나(aluminous) 시멘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523.90	-그 밖의 수경성(水硬性) 시멘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24	**석면**	
2524.10	-청(靑)석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2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25	**운모(쪼갠 것을 포함한다)와 운모 웨이스트 (waste)**	
2525.10	-가공하지 않은 운모와 판(板) 모양의 운모나 쪼갠 운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25.20	-운모 가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25.30	-운모 웨이스트(wast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26	**천연 동석(凍石)[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활석**	
2526.10	-부수지 않은 것으로 가루도 아닌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26.20	-부수거나 가루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28	**천연 붕산염과 그 정광(精鑛)[하소(煆燒)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천연 염수(鹽水)에서 분리한 붕산염은 제외한다], 천연 붕산(건조한 상태에서 측정한 붕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2528.00	-천연 붕산염과 그 정광(精鑛)[하소(煆燒)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천연 염수(鹽水)에서 분리한 붕산염은 제외한다], 천연 붕산(건조한 상태에서 측정한 붕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29	**장석(長石), 백류석(白榴石), 하석(霞石)과 하석 섬장암(霞石 閃長巖), 형석(螢石)**	
2529.10	-장석(長石)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29.2	**-형석(螢石)**	
2529.21	--플루오르화칼슘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7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29.22	--플루오르화칼슘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7 을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29.30	-백류석(白榴石), 하석(霞石)과 하석 섬장암(霞石閃長巖)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30	**따로 분류되지 않은 광물**	
2530.10	-질석(蛭石), 진주암(眞珠巖), 녹니석(綠泥石)(팽창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30.20	-키이저라이트, 에프소마이트(천연 황산마그네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3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26 류	**광(鑛)·슬래그(slag)·회(灰)**	
2601	**철광과 그 정광(精鑛)[배소(焙燒)한 황화철광을 포함한다]**	
2601.1	**-철광과 그 정광[배소(焙燒)한 황화철광은 제외한다]**	
2601.11	--응결시키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601.12	--응결시킨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601.20	-배소(焙燒)한 황화철광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602	**망간광과 그 정광(精鑛)[건조 상태에서 측정한 망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20 이상인 철망간광과 그 정광(精鑛)을 포함한다]**	
2602.00	-망간광과 그 정광(精鑛)[건조 상태에서 측정한 망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20 이상인 철망간광과 그 정광(精鑛)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603	**구리광과 그 정광(精鑛)**	
2603.00	-구리광과 그 정광(精鑛)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604	**니켈광과 그 정광(精鑛)**	
2604.00	-니켈광과 그 정광(精鑛)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605	**코발트광과 그 정광(精鑛)**	
2605.00	-코발트광과 그 정광(精鑛)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606	**알루미늄광과 그 정광(精鑛)**	
2606.00	-알루미늄광과 그 정광(精鑛)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607	**납광과 그 정광(精鑛)**	
2607.00	-납광과 그 정광(精鑛)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608	**아연광과 그 정광(精鑛)**	
2608.00	-아연광과 그 정광(精鑛)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609	**주석광과 그 정광(精鑛)**	
2609.00	-주석광과 그 정광(精鑛)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610	**크로뮴광과 그 정광(精鑛)**	
2610.00	-크로뮴광과 그 정광(精鑛)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611	**텅스텐광과 그 정광(精鑛)**	
2611.00	-텅스텐광과 그 정광(精鑛)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612	**우라늄광이나 토륨광과 그 정광(精鑛)**	
2612.10	-우라늄광과 그 정광(精鑛)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612.20	-토륨광과 그 정광(精鑛)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613	**몰리브덴광과 그 정광(精鑛)**	
2613.10	-배소(焙燒)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61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614	**티타늄광과 그 정광(精鑛)**	
2614.00	-티타늄광과 그 정광(精鑛)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615	**니오븀광·탄탈륨광·바나듐광·지르코늄광과 이들의 정광(精鑛)**	
2615.10	-지르코늄광과 그 정광(精鑛)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61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616	**귀금속광과 그 정광(精鑛)**	
2616.10	-은광과 그 정광(精鑛)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61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617	**그 밖의 광과 그 정광(精鑛)**	
2617.10	-안티모니광과 그 정광(精鑛)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61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618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알갱이 모양의 슬래그(slag)[슬래그 샌드(slag sand)]**	
2618.00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알갱이 모양의 슬래그(slag)[슬래그 샌드(slag sand)]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619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슬래그(slag)·드로스(dross)[알갱이 모양의 슬래그(slag)는 제외한다], 스케일링(scaling)과 그 밖의 웨이스트(waste)**	
2619.00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슬래그(slag)·드로스(dross)[알갱이 모양의 슬래그(slag)는 제외한다], 스케일링(scaling)과 그 밖의 웨이스트(wast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620	**슬래그(slag), 회(灰), 잔재물(금속·비소나 이들**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의 화합물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하며,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것은 제외한다)	
2620.1	-주로 아연을 함유한 것	
2620.11	--경(硬)아연 스펠터(spelt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620.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620.2	-주로 납을 함유하는 것	
2620.21	--유연(有鉛) 가솔린 슬러지(sludge)와 유연(有鉛) 안티녹(anti-knock) 화합물 슬러지(sludg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620.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620.30	-주로 구리를 함유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620.40	-주로 알루미늄을 함유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620.60	-비소, 수은, 탈륨이나 그 혼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비소나 이들 금속들의 채취용이나 그 화합물의 제조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620.9	-기타	
2620.91	--안티모니, 베릴륨, 카드뮴, 크로뮴이나 그 혼합물을 포함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620.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621	그 밖의 슬래그(slag)와 회(灰)[해초의 회(켈프)를 포함한다], 생활폐기물의 소각으로 생기는 회(灰)와 잔재물	
2621.10	-생활폐기물의 소각으로 생기는 회(灰)와 잔재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62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27 류	광물성 연료·광물유(鑛物油)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瀝靑)물질, 광물성 왁스	
2701	석탄, 석탄으로 제조한 연탄·조개탄(ovoid)과 이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와 유사한 고체 연료	
2701.1	-석탄(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으며 응결시킨 것은 제외한다)	
2701.11	--무연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701.12	--유연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701.19	--그 밖의 석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701.20	-석탄으로 제조한 연탄·조개탄(ovoid)과 이와 유사한 고체 연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702	갈탄(응결시킨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흑옥은 제외한다)	
2702.10	-갈탄(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으며 응결시킨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702.20	-응결시킨 갈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703	토탄(토탄 찌꺼기를 포함하며, 응결시킨 것인지에 상관없다)	
2703.00	-토탄(토탄 찌꺼기를 포함하며, 응결시킨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704	코크스와 반성(半成) 코크스(석탄·갈탄·토탄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응결시킨 것인지에 상관없다), 레토르트 카본(retort carbon)	
2704.00	-코크스와 반성(半成) 코크스(석탄·갈탄·토탄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응결시킨 것인지에 상관없다), 레토르트 카본(retort carbon)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705	석탄가스·수성(水性)가스·발생로(發生爐)가스와 이와 유사한 가스(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는 제외한다)	
2705.00	-석탄가스·수성(水性)가스·발생로(發生爐)가스와 이와 유사한 가스(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는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706	석탄·갈탄·토탄을 증류해서 얻은 타르와 그 밖의 광물성 타르(탈수나 부분 증류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재구성한 타르를 포함한다)	
2706.00	-석탄·갈탄·토탄을 증류해서 얻은 타르와 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밖의 광물성 타르(탈수나 부분 증류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재구성한 타르를 포함한다)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707	**콜타르(coal tar)를 고온 증류하여 얻은 오일과 그 밖의 물품, 이와 유사한 물품[방향족(芳香族) 성분의 중량이 비방향족(非芳香族) 성분의 중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707.10	-벤조올(벤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707.20	-톨루올(톨루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707.30	-크실롤(크실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707.40	-나프탈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707.50	-그 밖의 방향족(芳香族) 탄화수소의 혼합물{국제표준규격(ISO) 3405 방법[에이・에스・티・엠 디(ASTM D) 86 의 방법과 동등]으로 섭씨 250 도에서 증류한 양이 전 용량의 100 분의 65 이상(손실분을 포함한다)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707.9	**-기타**	
2707.91	--크레오소트(creosote)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707.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708	**피치(pitch)와 피치코크스[콜타르(coal tar)나 그 밖의 광물성 타르에서 얻은 것으로 한정한다]**	
2708.10	-피치(pitch)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708.20	-피치코크스(pitch cokes)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709	**석유와 역청유(瀝青油)(원유로 한정한다)**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青油)(원유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710	**석유와 역청유(瀝青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青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70 이상인 것으로**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青油)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e oil)	
2710.1	-석유와 역청유(瀝青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青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青油)인 것으로 한정하며, 바이오디젤을 함유하는 것과 웨이스트 오일(waste oil)은 제외한다]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710.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710.20	-석유와 역청유(瀝青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青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70 이상이고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青油)인 것으로서 바이오디젤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웨이스트 오일(waste oil)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710.9	-웨이스트 오일(waste oil)	
2710.91	--폴리염소화 비페닐(PCBs), 폴리염소화 테르페닐(PCTs)이나 폴리브롬화 비페닐(PBBs)을 함유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710.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711	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	
2711.1	-액화한 것	
2711.11	--천연가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711.12	--프로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711.13	--부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711.14	--에틸렌·프로필렌·부틸렌·부타디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711.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711.2	-가스 상태인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711.21	--천연가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711.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712	**석유젤리, 파라핀왁스・마이크로크리스털린(micro crystalline)석유왁스・슬랙왁스(slack wax)・오조케라이트(ozokerite)・갈탄왁스・토탄왁스, 그 밖의 광물성 왁스와 합성이나 그 밖의 공정에 따라 얻은 이와 유사한 물품(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712.10	-석유젤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712.20	-파라핀왁스(기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75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71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713	**석유코크스・석유역청(瀝青)과 그 밖의 석유나 역청유(瀝青油)의 잔재물**	
2713.1	**-석유코크스**	
2713.11	--하소(煆燒)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713.12	--하소(煆燒)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713.20	-석유역청(瀝青)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713.90	-그 밖의 석유나 역청유(瀝青油)의 잔재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714	**천연의 역청(瀝青)・아스팔트, 역청질 혈암(瀝青質 頁巖), 유모 혈암(油母 頁巖), 타르샌드(tar sand), 아스팔타이트와 아스팔트질의 암석**	
2714.10	-역청질 혈암(瀝青質 頁巖)・유모 혈암(油母 頁巖), 타르샌드(tar sand)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71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715	**역청질(瀝青質) 혼합물[천연 아스팔트, 천연 역청(瀝青), 석유역청(瀝青), 광물성 타르, 광물성 타르 피치(tar pitch)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예: 역청질 매스틱, 컷백)]**	
2715.00	-역청질(瀝青質) 혼합물[천연 아스팔트, 천연 역청(瀝青), 석유역청(瀝青), 광물성 타르, 광물성 타르 피치(tar pitch)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예: 역청질 매스틱, 컷백)]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716	**전기에너지**	
2716.00	-전기에너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6 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의 생산품		
제 28 류	**무기화학품, 귀금속·희토류(稀土類)금속·방사성 원소·동위원소의 유기화합물이나 무기화합물**	
2801	**플루오르·염소·브롬·요드**	
2801.10	-염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01.20	-요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01.30	-플루오르와 브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02	**승화황(昇華黃)·침강황(沈降黃)· 콜로이드황**	
2802.00	-승화황(昇華黃)·침강황(沈降黃)· 콜로이드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03	**탄소[카본 블랙(carbon black)과 따로 분류되지 않은 그 밖의 탄소물품을 포함한다]**	
2803.00	-탄소[카본 블랙(carbon black)과 따로 분류되지 않은 그 밖의 탄소물품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04	**수소·희가스(rare gas)와 그 밖의 비(非)금속원소**	
2804.10	-수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04.2	**-희가스(rare gas)**	
2804.21	--아르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04.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04.30	-질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04.40	-산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04.50	-붕소와 텔루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04.6	**-규소**	
2804.61	--규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9.99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04.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04.70	-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04.80	-비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04.90	-셀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05	**알칼리금속·알칼리토류금속, 희토류(稀土類)금속, 스칸듐과 이트륨(상호 혼합된 것인지 또는 상호 합금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수은**	
2805.1	**-알칼리나 알칼리토류 금속**	
2805.11	--나트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05.12	--칼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0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05.30	-희토류(稀土類)금속, 스칸듐과 이트륨(상호 혼합된 것인지 또는 상호 합금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05.40	-수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06	**염화수소(염산)와 클로로황산**	
2806.10	-염화수소(염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06.20	-클로로황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07	**황산과 발연황산**	
2807.00	-황산과 발연황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08	**질산과 황질산**	
2808.00	-질산과 황질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09	**오산화인, 인산, 폴리인산(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809.10	-오산화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09.20	-인산과 폴리인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10	**붕소의 산화물과 붕산**	
2810.00	-붕소의 산화물과 붕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11	**그 밖의 무기산과 그 밖의 무기 비(非)금속 산화물**	
2811.1	**-그 밖의 무기산**	
2811.11	--플루오르화수소(플루오르화수소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11.12	--시안화수소(시안화수소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11.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11.2	**-그 밖의 무기 비(非)금속 산화물**	
2811.21	--이산화탄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11.22	--이산화규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11.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12	**비(非)금속 할로겐화물과 산화할로겐화물**	
2812.1	**-염화물과 산화염화물**	
2812.11	--카보닐 디클로라이드(포스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12.12	--포스포러스 옥시클로라이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12.13	--포스포러스 트리클로라이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12.14	--포스포러스 펜타클로라이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12.15	--설퍼 모노클로라이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12.16	--설퍼 디클로라이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12.17	--티오닐 클로라이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1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1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13	**비(非)금속 황화물과 상관습(商慣習)상의 삼황화인**	
2813.10	-이황화탄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1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14	**무수(無水)암모니아나 암모니아수**	
2814.10	-무수(無水)암모니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14.20	-암모니아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15	**수산화나트륨[가성(苛性)소다], 수산화칼륨[가성(苛性)칼륨], 과산화나트륨・과산화칼륨**	
2815.1	**-수산화나트륨[가성(苛性)소다]**	
2815.11	--고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15.12	--수용액(소다액이나 액체 상태의 소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15.20	-수산화칼륨[가성(苛性)칼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15.30	-과산화나트륨이나 과산화칼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16	**수산화마그네슘・과산화마그네슘, 스트론튬이나 바륨의 산화물・수산화물・과산화물**	
2816.10	-수산화마그네슘과 과산화마그네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16.40	-스트론튬이나 바륨의 산화물, 수산화물, 과산화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17	**산화아연과 과산화아연**	
2817.00	-산화아연과 과산화아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18	**인조 커런덤(corundum)(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산화알루미늄, 수산화알루미늄**	
2818.10	-인조 커런덤(corundum)(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18.20	-산화알루미늄[인조 커런덤(corundum)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18.30	-수산화알루미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19	**산화크로뮴과 수산화크로뮴**	
2819.10	-삼산화크로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1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20	**산화망간**	
2820.10	-이산화망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2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21	**산화철·수산화철·어스컬러(earth colour)[화합철분의 함유량이 산화제이철(Fe_2O_3)로서 계산하여 전 중량의 100 분의 7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2821.10	-산화철과 수산화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21.20	-어스컬러(earth colou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22	**산화코발트, 수산화코발트, 상관습(商慣習)상의 산화코발트**	
2822.00	-산화코발트, 수산화코발트, 상관습(商慣習)상의 산화코발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23	**산화티타늄**	
2823.00	-산화티타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24	**산화납·연단(鉛丹)·오렌지납**	
2824.10	-일산화납[리사지(litharge)·메시코트(massico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2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25	**히드라진·히드록실아민과 이들의 무기염, 그 밖의 무기염기·금속산화물·금속수산화물·금속과**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산화물	
2825.10	-히드라진·히드록실아민과 이들의 무기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25.20	-산화리튬과 수산화리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25.30	-산화바나듐과 수산화바나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25.40	-산화니켈과 수산화니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25.50	-산화구리와 수산화구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25.60	-산화게르마늄과 이산화지르코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25.70	-산화몰리브덴과 수산화몰리브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25.80	-산화안티모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2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26	**플루오르화물, 플루오르화규산염·플루오르화알루미늄산염과 그 밖의 플루오르착염**	
2826.1	**-플루오르화물**	
2826.12	--플루오르화알루미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26.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26.30	-육플루오르화알루미늄산나트륨[인조 빙정석(氷晶石)]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2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27	**염화물·산화염화물·수산화염화물, 브롬화물·**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산화브롬화물과 요드화물・산화요드화물	
2827.10	-염화암모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27.20	-염화칼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27.3	**-그 밖의 염화물**	
2827.31	--마그네슘 염화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27.32	--알루미늄 염화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27.35	--니켈 염화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27.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27.4	**-산화염화물과 수산화염화물**	
2827.41	--산화염화구리와 수산화염화구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27.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27.5	**-브롬화물과 산화브롬화물**	
2827.51	--브롬화나트륨이나 브롬화칼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27.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27.60	-요드화합물과 산화요드화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28	**하이포아염소산염・상관습(商慣習)상의 하이포아염소산칼슘・아염소산염・하이포아브롬산염**	
2828.10	-상관습(商慣習)상의 하이포아염소산칼슘과 그 밖의 하이포아염소산칼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2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29	**염소산염과 과염소산염, 브롬산염과 과브롬산염, 요드산염과 과요드산염**	
2829.1	**-염소산염**	
2829.11	--염소산나트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29.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2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30	**황화물과 폴리황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830.10	-황화나트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3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31	**아이티온산염과 술폭실산염**	
2831.10	-아이티온산나트륨과 술폭실산나트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3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32	**아황산염과 티오황산염**	
2832.10	-아황산나트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32.20	-그 밖의 아황산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32.30	-티오황산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33	**황산염・명반・과산화황산염(과황산염)**	
2833.1	**-황산나트륨**	
2833.11	--황산이나트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833.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33.2	**-그 밖의 황산염**	
2833.21	--황산마그네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33.22	--황산알루미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33.24	--황산니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33.25	--황산구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33.27	--황산바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33.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33.30	-명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33.40	-과산화황산염(과황산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34	**아질산염과 질산염**	
2834.10	-아질산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34.2	**-질산염**	
2834.21	--질산칼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34.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35	**포스피네이트(하이포아인산염)·포스포네이트(아인산염) 및 인산염·폴리인산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835.10	-포스피네이트(하이포아인산염)와 포스포네이트(아인산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35.2	-인산염	
2835.22	--인산일나트륨이나 인산이나트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35.24	--인산칼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35.25	--오르토인산수소칼슘(인산이칼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35.26	--그 밖의 인산칼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35.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35.3	-폴리인산염	
2835.31	--삼인산나트륨(트리폴리인산나트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35.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36	탄산염, 과산화탄산염(과탄산염), 상관습(商慣習) 상의 탄산암모늄(카르밤산암모늄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2836.20	-탄산이나트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36.30	-탄산수소나트륨(중탄산나트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36.40	-탄산칼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36.50	-탄산칼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36.60	-탄산바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36.9	-기타	
2836.91	--탄산리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36.92	--탄산스트론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36.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37	**시안화물・산화시안화물・시안착염**	
2837.1	**-시안화물과 산화시안화물**	
2837.11	--시안화나트륨과 산화시안화나트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이상일 것
2837.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37.20	-시안착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39	**규산염과 상관습(商慣習)상의 알칼리금속의 규산염**	
2839.1	**-규산나트륨**	
2839.11	--메타규산나트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39.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3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40	**붕산염과 과산화붕산염(과붕산염)**	
2840.1	**-사붕산이나트륨[정제붕사(精製硼砂)]**	
2840.11	--무수물(無水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40.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40.20	-그 밖의 붕산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40.30	-과산화붕산염(과붕산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41	**산화금속산염이나 과산화금속산염**	
2841.30	-중크롬산나트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41.50	-그 밖의 크롬산염과 중크롬산염, 과산화크롬산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41.6	**-아망간산염 · 망간산염 · 과망간산염**	
2841.61	--과망간산칼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41.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41.70	-몰리브덴산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41.80	-텅스텐산염[울프라메이트(wolframat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4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42	**그 밖의 무기산염이나 과산화산염(아지드화물은 제외하고,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알루미노실리케이트를 포함한다)**	
2842.10	-규산의 겹염이나 착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알루미노실리케이트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4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43	**콜로이드 귀금속, 귀금속의 무기화합물이나 유기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인지에 상관없다), 귀금속의 아말감(amalgam)**	
2843.10	-콜로이드 귀금속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43.2	**-은 화합물**	
2843.21	--질산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43.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43.30	-금 화합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43.90	-그 밖의 화합물과 아말감(amalgam)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44	**방사성원소·방사성동위원소(핵분열성이나 연료 핵친원소와 동위원소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화합물, 이들의 물품을 함유한 혼합물과 잔재물**	
2844.10	-천연 우라늄과 그 화합물, 합금·분산물(分散物)[서멧(cermet)을 포함한다]·도자제품과 이들의 혼합물(천연 우라늄이나 천연 우라늄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44.20	-우라늄 235 를 농축한 우라늄과 그 화합물, 플루토늄과 그 화합물, 합금·분산물(分散物)[서멧(cermet)을 포함한다]·도자제품과 이들의 혼합물(우라늄 235 를 농축한 우라늄·플루토늄이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44.30	-우라늄 235 를 열화시킨 우라늄과 그 화합물, 토륨과 그 화합물, 합금·분산물(分散物)[서멧(cermet)을 포함한다]·도자제품과 이들의 혼합물(우라늄 235 를 열화시킨 우라늄·토륨이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44.40	-방사성원소·방사성동위원소와 소호 제 2844.10 호·제 2844.20 호·제 2844.30 호의 것은 제외한 이들의 화합물, 합금·분산물(分散物)[서멧(cermet)을 포함한다]·도자제품과 이들의 혼합물(이들의 방사성원소·방사성동위원소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방사성 잔재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44.50	-핵반응로에서 사용[조사(照射)]된 연료 요소[카트리지(cartridg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45	**동위원소(제 2844 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동위원소의 무기화합물이나 유기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845.10	-중수(重水)(산화 중수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4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46	**희토류(稀土類)금속·이트륨·스칸듐이나 이들 금속혼합물의 무기·유기 화합물**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846.10	-세륨화합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4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47	**과산화수소(요소로 고체화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847.00	과산화수소(요소로 고체화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49	**탄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849.10	-탄화칼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49.20	-탄화규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4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50	**수소화물・질화물・아지드화물・규화물・붕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2849 호의 탄화물은 제외한다)**	
2850.00	-수소화물・질화물・아지드화물・규화물・붕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2849 호의 탄화물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52	**무기나 유기의 수은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아말감(amalgam)은 제외한다]**	
2852.10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5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53	**인화물(燐化物)(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인철은 제외한다), 그 밖의 무기화합물[증류수나 전도도수(傳導度水)와 이와 유사한 순도의 물을 포함한다], 액체 공기[희가스(rare gas)가 제거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압축 공기, 아말감(amalgam)[귀금속의 아말감(amalgam)은 제외한다]**	
2853.10	-시아노겐 클로라이드(클로로시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85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29 류	**유기화학품**	
2901	**비환식탄화수소**	
2901.10	-포화비환식탄화수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1.2	**-불포화비환식탄화수소**	
2901.21	--에틸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1.22	--프로펜(프로필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1.23	--부텐(부틸렌)과 이들의 이성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1.24	--1,3-부타디엔과 이소프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1.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2	**환식탄화수소**	
2902.1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시클로테르펜**	
2902.11	--시클로헥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2.20	-벤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2.30	-톨루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2.4	**-크실렌**	
2902.41	--오르토-크실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2.42	--메타-크실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2.43	--파라-크실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2.44	--혼합크실렌이성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2.50	-스티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2.60	-에틸벤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2.70	-큐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3	**탄화수소의 할로겐화 유도체**	
2903.1	**-포화비환식탄화수소의 염소화유도체**	
2903.11	--염화메탄(염화메틸)과 염화에탄(염화에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3.12	--이염화메탄(염화메틸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3.13	--클로로포름(삼염화메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3.14	--사염화탄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3.15	--이염화에틸렌(ISO)(1,2-이염화에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3.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3.2	**-불포화비환식탄화수소의 염소화유도체**	
2903.21	--염화비닐(염화에틸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3.22	--삼염화에틸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3.23	--사염화에틸렌(과염화에틸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3.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3.3	**-비환식탄화수소의 플루오르화·브롬화·요드화 유도체**	
2903.31	-이브롬화에틸렌(ISO)(1,2-디브로모에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3.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3.7	**-비환식탄화수소의 할로겐화유도체(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할로겐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	
2903.71	--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3.72	--디클로로트리플루오르에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3.73	--디클로로플루오르에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3.74	--클로로디플루오르에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3.75	--디클로로펜타플루오르프로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3.76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브로모트리플루오르메탄 및 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르에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3.77	--기타(불소와 염소만으로 퍼할로겐화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3.78	--그 밖의 퍼할로겐화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3.7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903.8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시클로테르펜탄화수소의 할로겐화유도체**	
2903.81	--1,2,3,4,5,6-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 [HCH(ISO)][린데인(ISO, INN)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3.82	--앨드린(ISO), 클로르덴(ISO), 헵타클로르(ISO)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3.83	--미렉스(ISO)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3.8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3.9	**-방향족 탄화수소의 할로겐화유도체**	
2903.91	--클로로벤젠, 오르토-디클로로벤젠, 파라-디클로로벤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3.92	--헥사클로로벤젠(ISO)과 디·디·티(ISO)[클로페노탄(INN), 1,1,1-트리클로로-2,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3.93	--펜타클로로벤젠(ISO)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3.94	--헥사브로모비페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3.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4	**탄화수소의 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할로겐화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2904.10	-술폰화유도체와 이들의 염과 에틸에스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4.20	-니트로나 니트로소화 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4.3	**-과불화옥탄술폰산, 그 염과 과불화옥탄술포닐플루오라이드**	
2904.31	--과불화옥탄술폰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4.32	--과불화옥탄술폰산 암모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4.33	--과불화옥탄술폰산 리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4.34	--과불화옥탄술폰산 칼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4.35	--그 밖의 과불화옥탄술폰산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4.36	--과불화옥탄술포닐플루오라이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4.9	-기타	
2904.91	--트리클로로니트로메탄(클로로피크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4.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5	비환식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05.1	-포화 1 가알코올	
2905.11	--메탄올(메틸알코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5.12	--1-프로판올(프로필알코올)과 2-프로판올(이소프로필알코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5.13	--1-부탄올(노르말-부틸알코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5.14	--그 밖의 부탄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5.16	--옥탄올(옥틸알코올)과 그 이성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5.17	--1-도데칸올(라우릴알코올), 1-헥사데칸올(세틸알코올), 1-옥타데칸올(스테아릴알코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5.2	-불포화 1 가알코올	
2905.22	--비환식테르펜알코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5.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5.3	-2 가알코올	
2905.31	--에틸렌글리콜(에탄디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5.32	--프로필렌글리콜(프로판-1,2-디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5.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5.4	-그 밖의 다가알코올	
2905.41	--2-에틸-2-(히드록시메틸)프로판-1,3-디올(트리메틸올프로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5.42	--펜타에리트리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5.43	--만니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5.44	--디-글루시톨(소르비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5.45	--글리세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5.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5.5	-비환식알코올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05.51	--에스클로비놀(INN)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5.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6	환식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06.1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시클로테르펜	
2906.11	--멘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6.12	--시클로헥산올・메틸시클로헥산올・디메틸시클로헥산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6.13	--스테롤과 이노시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6.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6.2	-방향족(芳香族)	
2906.21	--벤질알코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6.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7	페놀, 페놀알코올	
2907.1	-1 가페놀	
2907.11	--페놀(석탄산)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7.12	--크레졸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7.13	--옥틸페놀・노닐페놀과 이들의 이성체,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7.15	--나프톨과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7.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7.2	-다가페놀과 페놀알코올	
2907.21	--레소르시놀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907.22	--히드로퀴논(퀴놀)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7.23	--4,4 ' -이소프로필리덴디페놀(비스페놀에이, 디페닐올프로판)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7.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8	**페놀이나 페놀알코올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08.1	**-할로겐화유도체와 이들의 염**	
2908.11	--펜타클로로페놀(ISO)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8.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8.9	**-기타**	
2908.91	--디노셉(ISO)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8.92	--4,6-디니트로-오르토-크레졸[DNOC(ISO)]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8.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9	**에테르・에테르알코올・에테르페놀・에테르알코올페놀・과산화알코올・과산화에테르・과산화케톤(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09.1	**-비환식에테르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09.11	--디에틸에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9.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9.20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시클로테르펜에테르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909.30	-방향족(芳香族) 에테르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9.4	**-에테르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09.41	--2,2'-옥시디에탄올(디에틸렌글리콜, 디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9.43	--에틸렌글리콜의 모노부틸에테르나 디에틸렌글리콜의 모노부틸에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9.44	--에틸렌글리콜의 그 밖의 모노알킬에테르나 디에틸렌글리콜의 그 밖의 모노알킬에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9.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9.50	-에테르페놀, 에테르알코올페놀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9.60	-과산화알코올・과산화에테르・과산화케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0	**3 원고리의 에폭시드・에폭시알코올・에폭시페놀・에폭시에테르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10.10	-옥시란(에틸렌옥사이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0.20	-메틸옥시란(프로필렌옥사이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0.30	-1-클로로-2,3-에폭시프로판(에피클로로히드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0.40	-디엘드린(ISO, INN)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0.50	-엔드린(ISO)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911	**아세탈・헤미아세탈(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11.00	-아세탈・헤미아세탈(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2	**알데히드(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알데히드의 환식중합체, 파라포름알데히드**	
2912.1	**-비환식알데히드(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912.11	--메탄알(포름알데히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2.12	--에탄알(아세트알데히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2.2	**-환식알데히드(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912.21	--벤즈알데히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2.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2.4	**-알데히드-알코올, 알데히드-에테르・알데히드-페놀과 그 밖의 산소관능 알데히드**	
2912.41	--바닐린(4-히드록시-3-메톡시벤즈알데히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2.42	--에틸바닐린(3-에톡시-4-히드록시벤즈알데히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2.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2.50	-알데히드의 환식중합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912.60	-파라포름알데히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3	**제 2912 호의 물품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13.00	-제 2912 호의 물품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4	**케톤・퀴논(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14.1	**-비환식케톤(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914.11	--아세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4.12	--부탄온(메틸에틸케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4.13	--4-메틸펜탄-2-온(메틸이소부틸케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4.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4.2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시클로테르펜케톤(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914.22	--시클로헥사논과 메틸시클로헥사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4.23	--이오논과 메틸이오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4.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4.3	**-방향족 케톤(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914.31	--페닐아세톤(페닐프로판-2-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4.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4.40	-케톤-알코올과 케톤-알데히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4.50	-케톤-페놀과 그 밖의 산소관능 케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4.6	**-퀴논**	
2914.61	--안트라퀴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4.62	--코엔자임 큐(Q) 10[유비데카레논(INN)]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4.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4.7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14.71	--클로르데콘(ISO)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4.7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5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15.1	**-포름산, 그 염과 에스테르**	
2915.11	--포름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5.12	--포름산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5.13	--포름산의 에스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5.2	**-초산과 그 염, 무수(無水)초산**	
2915.21	--초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5.24	--무수(無水)초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5.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5.3	**-초산에스테르**	
2915.31	--초산에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5.32	--초산비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5.33	--초산노르말부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5.36	--초산디노셉(ISO)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5.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5.40	-모노클로로 아세트산·디클로로 아세트산·트리클로로 아세트산,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5.50	-프로피온산, 그 염과 에스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5.60	-부탄산·펜탄산,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5.70	-팔미트산·스테아르산,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6	**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16.1	**-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2916.11	--아크릴산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6.12	--아크릴산의 에스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6.13	--메타아크릴산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6.14	--메타아크릴산의 에스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6.15	--올레산・리놀레산・리놀렌산,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6.16	--비나파크릴(ISO)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6.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6.20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시클로테르펜모노카르복시산,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6.3	**-방향족(芳香族) 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2916.31	--벤조산, 그 염과 에스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6.32	--과산화벤조일과 염화벤조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6.34	--페닐아세트산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6.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7	**폴리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17.1	**-비환식폴리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2917.11	--옥살산, 그 염과 에스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7.12	--아디프산, 그 염과 에스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7.13	--아젤라산·세바스산,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7.14	--무수말레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7.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7.20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시클로테르펜폴리카르복시산,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7.3	**-방향족 폴리카르복시산,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2917.32	--오르토프탈산디옥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7.33	--오르토프탈산디노닐 또는 오르토프탈산디데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7.34	--그 밖의 오르토프탈산의 에스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7.35	--무수프탈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7.36	--테레프탈산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7.37	--테레프탈산디메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7.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8	**추가 산소관능을 갖는 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918.1	**-알코올관능의 카르복시산(그 밖의 산소관능을 가지지는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2918.11	--락트산, 그 염과 에스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8.12	--타르타르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8.13	--타르타르산의 염과 에스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8.14	--시트르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8.15	--시트르산의 염과 에스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8.16	--글루콘산, 그 염과 에스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8.17	--2,2-디페닐-2-하이드록시아세트산(벤질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8.18	--클로로벤질레이트(ISO)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8.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8.2	**-페놀관능기의 카르복시산(그 밖의 산소관능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2918.21	--살리실산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8.22	--오르토-아세틸살리실산, 그 염과 에스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8.23	--그 밖의 살리실산의 에스테르와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8.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8.30	-알데히드・케톤관능기의 카르복시산(그 밖의 산소관능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8.9	**-기타**	
2918.91	--2,4,5-티(ISO)(2,4,5-트리클로로페녹시아세트산), 그 염과 에스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8.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9	**인산에스테르와 이들의 염(락토포스페이트를 포함한다),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19.10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0	**그 밖의 비(非)금속 무기산의 에스테르(할로겐화수소의 에스테르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20.1	**-티오인산에스테르(포스포로티오에이트)와 이들의 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20.11	--파라티온(ISO)과 파라티온-메틸(ISO)(메틸-파라티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0.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0.2	**-아인산 에스테르와 그 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20.21	--디메틸 포스파이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0.22	--디에틸 포스파이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0.23	--트리메틸 포스파이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0.24	--트리에틸 포스파이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0.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0.30	-엔도설판(ISO)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1	**아민관능화합물**	
2921.1	**-비환식모노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1.11	--메틸아민·디메틸아민·트리메틸아민과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1.12	--2-(엔,엔-디메틸아미노)에틸클로라이드 염산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1.13	--2-(엔,엔-디에틸아미노)에틸클로라이드 염산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1.14	--2-(엔,엔-디이소프로필아미노)에틸클로라이드 염산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1.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1.2	**-비환식폴리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1.21	--에틸렌디아민과 그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1.22	--헥사메틸렌디아민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1.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1.30	-포화지환식아민·불포화지환식아민·시클로테르펜 모노아민·폴리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921.4	**-방향족(芳香族) 모노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1.41	--아닐린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1.42	--아닐린유도체와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1.43	--톨루이딘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1.44	--디페닐아민과 그 유도체,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1.45	--1-나프틸아민(알파-나프틸아민), 2-나프틸아민(베타-나프틸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1.46	--암페타민(INN)·벤즈페타민(INN)·덱스암페타민(INN)·에틸암페타민(INN)·펜캄파민(INN)·레페타민(INN)·레브암페타민(INN)·메페노렉스(INN)·펜터민(INN),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1.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1.5	**-방향족(芳香族) 폴리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1.51	--오르토-페닐렌디아민·메타-페닐렌디아민·파라-페닐렌디아민·디아미노톨루엔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1.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2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	
2922.1	**-아미노알코올(동종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의 에테르·에스테르, 이들의 염**	
2922.11	--모노에탄올아민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2.12	--디에탄올아민과 그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2.14	--덱스트로프로폭시펜(INN)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922.15	--트리에탄올아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2.16	--과불화옥탄 술폰산 디에탄올암모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2.17	--메틸디에탄올아민과 에틸디에탄올아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2.18	--2-(엔,엔-디이소프로필이미노)에탄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2.2	**-아미노나프톨·그 밖의 아미노페놀(동종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의 에테르·에스테르, 이들의 염**	
2922.21	--아미노히드록시 나프탈렌술폰산과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2.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2.3	**-아미노-알데히드·아미노-케톤과 아미노-퀴논(동종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염**	
2922.31	--암페프라몬(INN)·메타돈(INN)·노르메타돈(INN)과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2.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2.4	**-아미노산(동종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의 에스테르, 이들의 염**	
2922.41	--리신과 그 에스테르, 이들의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2.42	--글루탐산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2.43	--안트라닐산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922.44	--틸리딘(INN)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2.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2.50	-아미노-알코올페놀·아미노산페놀과 그 밖의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3	**제 4 암모늄염과 수산화 제 4 암모늄, 레시틴과 그 밖의 포스포아미노리피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923.10	-콜린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3.20	-레시틴과 그 밖의 포스포아미노리피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3.30	-과불화옥탄 술폰산 테트라에틸암모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3.40	-과불화옥탄 술폰산 디데실디메틸암모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3.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4	**카르복시 아미드관능화합물, 탄산의 아미드관능화합물**	
2924.1	**-비환식아미드(비환식카르바메이트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4.11	--메프로바메이트(INN)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4.12	--플루오로아세트아미드(ISO), 모노크로토포스(ISO), 포스파미돈(ISO)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4.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4.2	**-환식아미드(환식카르바메이트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4.21	--우레인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4.23	--2-아세트아미도벤조산(엔-아세틸 안트라닐산)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4.24	--에치나메이트(INN)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4.25	--알라클로르(ISO)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4.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5	**카르복시이미드 관능화합물(사카린과 그 염을 포함한다)과 이민관능화합물**	
2925.1	**-이미드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5.11	--사카린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5.12	--구루테치미드(INN)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5.2	**-이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5.21	--클로르디메포름(ISO)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5.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6	**니트릴관능화합물**	
2926.10	-아크릴로니트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6.20	-1-시아노구아니딘(디시안디아미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6.30	-펜프로포렉스(INN)와 그 염, 메사돈(INN) 제조 중간체(4-시아노-2-디메틸아미노-4,4-디페닐부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6.40	-알파-페닐아세토아세토니트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7	**디아조화합물・아조화합물・아족시화합물**	
2927.00	-디아조화합물・아조화합물・아족시화합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8	**히드라진・히드록실아민의 유기 유도체**	
2928.00	-히드라진・히드록실아민의 유기 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9	**그 밖의 질소관능화합물**	
2929.10	-이소시아네이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0	**유기-황 화합물**	
2930.20	-티오카르바메이트와 디티오카르바메이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0.30	-티우람모노술파이드・티우람디술파이드・티우람테트라술파이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0.40	-메티오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0.60	-2-(엔,엔-디에틸아미노)에탄티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0.70	-비스(2-하이드록시에틸) 술파이드[티오디글리콜(INN)]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0.80	-알디카브(ISO), 캡타폴(ISO) 및 메타미도포스(ISO)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1	**그 밖의 유기-무기화합물**	
2931.10	-테트라메칠납, 테트라에칠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1.20	-트리부틸틴 화합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1.3	**-그 밖의 유기-인 유도체**	
2931.31	--디메틸 메틸포스포네이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1.32	--디메틸 프로필포스포네이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1.33	--디에틸 에틸포스포네이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1.34	--3-(트리하이드록시시릴)프로필 메틸포스포네이트 나트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1.35	--2,4,6-트리프로필-1,3,5,2,4,6-트리옥사트리포스피네인 2,4,6-트리옥사이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1.36	--(5-에틸-2-메틸-2-옥시도-1,3,2-디옥사포스피난-5-일)메틸 메틸 메틸포스포네이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1.37	--비스[(5-에틸-2 메틸-2-옥사이드-1,3,2-디옥사포스피난-5-일)메틸] 메틸포스포네이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1.38	--메틸포스폰산과 (아미노이미노메틸)우레아의 염(1:1)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1.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2	**산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	
2932.1	**-붙지 않은 푸란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2.11	--테트라히드로푸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2.12	--2-푸르알데히드(푸르푸르알데히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932.13	--푸르푸릴 알코올, 테트라히드로 푸르푸릴 알코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2.14	--수크랄로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2.20	-락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2.9	**-기타**	
2932.91	--이소사프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2.92	--1-(1,3-벤조디옥솔-5-일)프로판-2-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2.93	--피페로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2.94	--사프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2.95	--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모든 이성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2.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3	**질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	
2933.1	**-붙지 않은 피라졸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3.11	--페나존(안티피린)과 그 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3.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3.2	**-붙지 않은 이미다졸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3.21	--히단토인과 그 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3.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3.3	**-붙지 않은 피리딘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3.31	--피리딘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3.32	--피페리딘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3.33	--알펜타닐(INN)·아닐레리딘(INN)·베지트라마이드(INN)·브로마제팜(INN)·디페녹신(INN)·디펜옥실레이트(INN)·디피파논(INN)·펜타일(INN)·케토베미돈(INN)·메틸페니데이트(INN)·펜타조신(INN)·페치딘(INN)·페치딘(INN) 제조중간체 에이·펜사이클리딘(INN)(PCP)·페노페리딘(INN)·피프라드롤(INN)·피리트라미드(INN)·프로피람(INN)·트리메페리딘(INN)과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3.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3.4	**-퀴놀린고리나 이소퀴놀린고리의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으며 고리가 더 이상 붙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933.41	--레보파놀(INN)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3.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3.5	**-피리미딘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나 피페라진고리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3.52	--말로닐우레아(바르비투르산)와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3.53	--아로바르비탈(INN)·아모바르비탈(INN)·바르비탈(INN)·부탈비탈(INN)·부토바르비탈(INN)·싸이클로바르비탈(INN)·메틸페노바르비탈(INN)·펜토바르비탈(INN)·페노바르비탈(INN)·섹부타바르비탈(INN)·세코바르비탈(INN)·비닐비탈(INN)과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3.54	--그 밖의 말로닐우레아 유도체(바르비투르산)와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3.55	--로프라졸람(INN)·메크로콰론(INN)·메타콰론(INN)·지페프롤(INN)과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3.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3.6	**-붙지 않은 트리아진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3.61	--멜라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3.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3.7	**-락탐**	
2933.71	--6-헥산락탐(에프시론-카프로락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3.72	--클로바잠(INN)과 메치푸리론(INN)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3.79	--그 밖의 락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3.9	**-기타**	
2933.91	--알프라졸람(INN)·카마제팜(INN)·클로르디아제폭사이드(INN)·클로나제팜(INN)·클로라제페이트·델로라제팜(INN)·디아제팜(INN)·에스타졸람(INN)·에틸로프라제페이트(INN)·플르디아제팜(INN)·플루니트라제팜(INN)·플루라제팜(INN)·할라제팜(INN)·로라제팜(INN)·로르메타제팜(INN)·마진돌(INN)·메다제팜(INN)·미다졸람(INN)·니메타제팜(INN)·니트라제팜(INN)·놀다제팜(INN)·옥사제팜(INN)·피나제팜(INN)·프라제팜(INN)·피로발레톤(INN)·테마제팜(INN)·테트라제팜(INN)·트리아졸람(INN)과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3.92	--아진포스-메틸(ISO)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3.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4	**핵산과 이들의 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 밖의 헤테로고리 화합물**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934.10	-붙지 않은 티아졸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4.20	-벤조티아졸고리의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으며 고리가 더 이상 붙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4.30	-페노티아진고리의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으며 고리가 더 이상 붙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4.9	-기타	
2934.91	--아미노렉스(INN)·브로티졸람(INN)·클로티아제팜(INN)·클록사졸람(INN)·덱스트로모라마이드(INN)·할록사졸람(INN)·케타졸람(INN)·메소카브(INN)·옥사졸람(INN)·페몰린(INN)·펜디메트라진(INN)·펜메트라진(INN)·서펜타닐(INN)과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4.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5	술폰아미드	
2935.10	-엔-메틸과불화옥탄술폰아미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5.20	-엔-에틸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5.30	-엔-에틸-엔-(2-하이드록시에틸)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5.40	-엔-(2-하이드록시에틸)-엔-메틸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5.50	-그 밖의 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6	프로비타민과 비타민(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하며, 천연의 프로비타민 농축물과 비타민 농축물을 포함한다), 이들의 유도체로서 주로 비타민으로 사용하는 것과 이들의 상호 혼합물(용매에 용해하였는지에 상관없다)	
2936.2	-비타민과 이들의 유도체(혼합하지 않은 것으로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한정한다)	
2936.21	--비타민 A 와 이들의 유도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6.22	--비타민 B1 과 이들의 유도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6.23	--비타민 B2 와 이들의 유도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6.24	--디-판토텐산이나 디엘-판토텐산(비타민 B3 나 비타민 B5)과 이들의 유도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6.25	--비타민 B6 와 이들의 유도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6.26	--비타민 B12 와 이들의 유도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6.27	--비타민 C 와 이들의 유도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6.28	--비타민 E 와 이들의 유도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6.29	--그 밖의 비타민과 이들의 유도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6.90	-기타(천연의 프로비타민 농축물과 비타민 농축물을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7	**호르몬·프로스타글란딘·트롬복산·류코트리엔(천연의 것이나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유도체와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서 주로 호르몬으로 사용되는 것(변성된 폴리펩타이드 체인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2937.1	**-폴리펩타이드 호르몬, 프로테인 호르몬, 글리코프로테인 호르몬, 이들의 유도체와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2937.11	--소마토트로핀, 그 유도체와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7.12	--인슐린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7.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7.2	**-스테로이드 호르몬, 이들의 유도체와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2937.21	--코르티손·히드로코르티손·프레드니손(데히드로코르티손)·프레드니소론(데히드로히드로코르티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7.22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호르몬의 할로겐화 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7.23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토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7.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7.50	-프로스타글렌딘, 트롬복산과 류코트리엔, 이들의 유도체와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8	**글리코시드(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염·에테르·에스테르·그 밖의 유도체**	
2938.10	-루토시드(루틴)와 그 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9	**알칼로이드(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염·에테르·에스테르·그 밖의 유도체**	
2939.1	**-아편의 알칼로이드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39.11	--양귀비 줄기 농축물, 버프레노핀(INN)·코데인·디히드로코데인(INN)·에틸모르핀·에토르핀(INN)·헤로인·히드로코돈(INN)·히드로모르폰(INN)·모르핀·니코모르핀(INN)·옥시코돈(INN)·옥시모르폰(INN)·폴코딘(INN)·테바콘(INN)·테바인,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9.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9.20	-기나의 알칼로이드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9.30	-카페인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9.4	**-에페드린과 이들의 염**	
2939.41	--에페드린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9.42	--슈도에페드린(INN)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9.43	--캐친(INN)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9.44	--놀에페드린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9.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9.5	**-테오피린·아미노피린(테오피린-에틸렌디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39.51	--페네틸린(INN)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9.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9.6	**-맥각 알칼로이드와 그 유도체, 이들의 염**	
2939.61	--엘고메트린(INN)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9.62	--엘고타민(INN)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9.63	--리세르그산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9.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2939.7	-기타(식물성의 것으로 한정한다)	
2939.71	--코카인・엑고닌・레보메탐페타민・메탐페타민(INN)・메탐페타민 레이스메이트 및 이들의 염・에스테르・그 밖의 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9.7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9.8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40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것으로 한정하며, 자당・유당・맥아당・포도당・과당은 제외한다), 당에테르・당아세탈・당에스테르와 이들의 염(제 2937 호・제 2938 호・제 2939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2940.00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것으로 한정하며, 자당・유당・맥아당・포도당・과당은 제외한다), 당에테르・당아세탈・당에스테르와 이들의 염(제 2937 호・제 2938 호・제 2939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41	항생물질	
2941.10	-페니실린과 페니실린산의 구조를 갖는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41.20	-스트렙토마이신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41.30	-테트라사이클린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41.40	-클로람페니콜과 그 유도체,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41.50	-에리즈로마이신과 그 유도체,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4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42	그 밖의 유기화합물	
2942.00	-그 밖의 유기화합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30 류	의료용품	
3001	장기(臟器) 요법용 선(腺)과 그 밖의 기관(건조한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것으로 한정하며,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선(腺)과 그 밖의 기관이나 이들의 분비물의 추출물로서 장기(臟器) 요법용의 것, 헤파린과 그 염, 치료용·예방용으로 조제한 그 밖의 인체물질이나 동물의 물질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	
3001.20	-선(腺)이나 그 밖의 기관의 추출물이나 이들의 분비물의 추출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00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002	**사람의 피, 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3002.1	**-면역혈청, 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3002.11	--말라리아 진단용 테스트 키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002.12	--면역혈청과 그 밖의 혈액 분획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002.13	--면역물품(혼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002.14	--면역물품(혼합된 것으로 한정하며,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002.15	--면역물품(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00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002.20	-백신(인체의약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002.30	-백신(동물의약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0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003	**의약품(두 가지 이상의 성분을 혼합한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제 3002 호·제 3005 호·제 3006 호의 물품,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은 제외한다)**	
3003.10	-페니실린이나 이들의 유도체(페니실린산 구조를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함유한 것, 스트렙토마이신이나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003.20	-기타(항생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003.3	**-기타(제 2937 호의 호르몬이나 그 밖의 물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3003.31	--인슐린을 함유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003.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003.4	**-기타(알칼로이드나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3003.41	--에페트린 또는 그 염을 함유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003.42	--슈도에페드린(INN) 또는 그 염을 함유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003.43	--놀에페드린 또는 그 염을 함유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003.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003.60	-기타(이 류의 소호주 제 2 호에 열거한 항말라리아 활성성분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0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004	**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 또는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 3002 호·제 3005 호·제 3006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004.10	-페니실린이나 이들의 유도체(페니실린산 구조를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함유한 것, 스트렙토마이신이나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3003 호는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004.20	-기타(항생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3003 호는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004.3	**-기타(제 2937 호의 호르몬이나 그 밖의 물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3004.31	--인슐린을 함유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3003 호는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004.32	--코르티코스테로이드(corticosteroid) 호르몬을 함유한 것과 이들의 유도체나 그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3003 호는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004.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3003 호는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004.4	**-기타(알칼로이드나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3004.41	--에페드린 또는 그 염을 함유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3003 호는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004.42	--슈도에페드린(INN) 또는 그 염을 함유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3003 호는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004.43	--놀에페드린 또는 그 염을 함유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3003 호는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004.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3003 호는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004.50	-기타(제 2936 호의 비타민이나 그 밖의 물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3003 호는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004.60	-기타(이 류의 소호주 제 2 호에 열거한 항말라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3003 호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리아 활성성분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는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00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3003 호는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005	**탈지면・거즈・붕대와 이와 유사한 제품(예: 피복재・반창고・습포제)으로서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이나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	
3005.10	-접착성 피복재와 접착층을 갖는 그 밖의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0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006	**의료용품(이 류의 주 제 4 호의 물품으로 한정한다)**	
3006.10	-살균한 외과용 캣거트(catgut)・이와 유사한 살균한 봉합재(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흡수성 실을 포함한다)・살균한 수술상처의 봉합용 접착제, 살균한 라미나리아(laminaria)와 살균한 라미나리아(laminaria)의 텐트, 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흡수성 지혈제, 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유착방지제(흡수성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006.20	-혈액형 분류용 시약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006.30	-엑스선 검사용 조영제, 환자에 투여할 진단용 시약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006.40	-치과용 시멘트와 그 밖의 치과용 충전제, 뼈 형성용 시멘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006.50	-구급상자와 구급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006.60	-제 2937 호의 호르몬과 기타 제품이나 살정자제(殺精子劑)를 기본 재료로 하는 피임성의 화학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006.70	-외과수술이나 신체검사를 할 때 신체 각 부분의 윤활제로 사용되거나 신체와 의료기기 사이의 접착약품으로서 사람이나 수의약에 사용되는 겔(gel)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006.9	-기타	
3006.91	--장루(腸瘻)용으로 인정되는 기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006.92	--폐(廢)의료용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31 류	비료	
3101	동물성·식물성 비료(함께 혼합한 것인지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동물성·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비료	
3101.00	-동물성·식물성 비료(함께 혼합한 것인지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동물성·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비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2	질소비료(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로 한정한다)	
3102.10	-요소(수용액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2.2	-황산암모늄, 황산암모늄·질산암모늄의 겹염과 혼합물	
3102.21	--황산암모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2.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2.30	-질산암모늄(수용액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2.40	-질산암모늄의 혼합물(탄산칼슘이나 그 밖의 비료성분이 아닌 무기물을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2.50	-질산나트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2.60	-질산칼슘·질산암모늄의 겹염과 혼합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2.80	-요소·질산암모늄의 혼합물(수용액이나 암모니아용액을 혼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2.90	-기타(위의 소호에 열거하지 않은 혼합물을 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함한다)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3	**인산비료(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로 한정한다)**	
3103.1	**-과인산석회**	
3103.11	--오산화인(P2O5)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35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3.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4	**칼륨비료(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로 한정한다)**	
3104.20	-염화칼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4.30	-황산칼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5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비료의 필수요소인 질소·인·칼륨 중 두 가지나 세 가지를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비료, 이 류에 열거한 물품을 둥글넓적한(tablet)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 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3105.10	-이 류에 열거한 물품을 둥글넓적한(tablet)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 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5.20	-질소·인·칼륨을 함유한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5.30	-오르토인산수소 이암모늄(인산이암모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5.40	-오르토인산이수소암모늄(인산일암모늄), 이것과 오르토인산수소이암모늄(인산이암모늄)의 혼합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5.5	**-질소와 인을 함유한 그 밖의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105.51	--질산염과 인산염을 함유한 비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5.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5.60	-인과 칼륨을 함유한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32 류	**유연용・염색용 추출물(extract), 탄닌과 이들의 유도체, 염료・안료와 그 밖의 착색제, 페인트 및 바니시(varnish), 퍼티(putty)와 그 밖의 매스틱(mastic), 잉크**	
3201	**식물성 유연용 추출물(extract), 탄닌과 그 염・에테르・에스테르・그 밖의 유도체**	
3201.10	-퀘브라쵸 추출물(quebracho extrac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1.20	-왓틀 추출물(wattle extrac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2	**합성 유기유연제・무기유연제・조제 유연제(천연 유연제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유연전(柔軟前) 처리용 효소계 조제품**	
3202.10	-합성 유기유연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3	**식물성・동물성 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염색용 추출물(extract)을 포함하고 수탄(獸炭)은 제외한다], 식물성 또는 동물성 착색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 3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3203.00	-식물성・동물성 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염색용 추출물(extract)을 포함하고 수탄(獸炭)은 제외한다], 식물성 또는 동물성 착색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주 제 3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3204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합성 유기착색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 3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형광증백제(螢光增白劑)나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품(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204.1	**-합성 유기착색제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 3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3204.11	--분산성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4.12	--산성 염료(금속염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매염(媒染)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4.13	--염기성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4.14	--직접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4.15	--건염(建染) 염료(그 상태에서 안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4.16	--반응성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4.17	--안료 색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4.19	--기타(소호 제 3204.11 호부터 제 3204.19 호까지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착색제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4.20	-형광증백제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5	**레이크 안료, 레이크 안료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 3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3205.00	-레이크 안료, 레이크 안료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 3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6	**그 밖의 착색제, 조제품(제 3203 호·제 3204 호·**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제 3205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 3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206.1	-이산화티타늄을 기본 재료로 한 안료와 그 조제품	
3206.11	--건조 상태로 계산하여 이산화티타늄의 중량이 100 분의 80 이상 함유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6.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6.20	-크로뮴화합물을 기본 재료로 한 안료와 그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6.4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	
3206.41	--군청(群青)과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6.42	--황아연을 기본 재료로 한 리도폰(lithopone)·그 밖의 안료와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6.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6.50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7	조제 안료·조제 유백제(乳白劑)·조제 그림물감·법랑·유약·유약용 슬립·액체 상태 러스터(lustre)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요업·에나멜공업·유리공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유리 프리트(frit)와 그 밖의 유리[가루·알갱이·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3207.10	-조제 안료·조제 유백제(乳白劑)·조제 그림물감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7.20	-법랑과 유약·유약용 슬립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7.30	-액체 상태 러스터(lustre)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7.40	-유리 프리트(frit)와 그 밖의 유리[가루·알갱이·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8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	
3208.10	-폴리에스테르를 기본 재료로 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8.20	-아크릴이나 비닐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9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수성(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3209.10	-아크릴이나 비닐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10	그 밖의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래커(lacquer)·디스템퍼(distemper)를 포함한다], 가죽의 완성가공용으로 사용하는 조제 수성안료	
3210.00	-그 밖의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래커(lacquer)·디스템퍼(distemper)를 포함한다], 가죽의 완성가공용으로 사용하는 조제 수성안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11	조제 드라이어	
3211.00	-조제 드라이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12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시킨 안료[금속가루·금속플레이크(flake)를 포함하며, 페인트(에나멜을 포함한다) 제조에 사용되는 액체나 페이스트(paste)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스탬프용 박(箔),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염료와 그 밖의 착색제	
3212.10	-스탬프용 박(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1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13	화가용・학생용・간판도장공용・색조 수정용・오락용 물감과 이와 유사한 물감[둥글넓적한(tablet) 모양인 것・튜브들이・병들이・접시들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이나 포장의 것으로 한정한다]	
3213.10	-세트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1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14	유리 접합용 퍼티(putty)・접목용 퍼티(putty)・수지시멘트・코킹(caulking)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도장용 충전제, 건물의 외면・실내벽・마루・천장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되는 비내화성 표면처리제	
3214.10	-유리 접합용 퍼티(putty)・접목용 퍼티(putty)・수지시멘트・코킹(caulking)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도장용 충전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1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15	인쇄용 잉크・필기용 잉크・제도용 잉크와 그 밖의 잉크(농축하거나 고체화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215.1	-인쇄용 잉크	
3215.11	--흑색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1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1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33 류	정유(essential oil)와 레지노이드(resinoid), 조제향료와 화장품・화장용품	
3301	정유(essential oil)[콘크리트(concrete)와 앱설루트(absolute)를 포함하며, 테르펜을 제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레지노이드(resinoid), 추출한 올레오레진(oleoresin), 정유(essential oil)의 농축물[냉침법(冷浸法)이나 온침법(溫浸法)에 따라 얻은 것으로서 유지・불휘발성유・왁스나 이와 유사한 물질을 매질(媒質)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정유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essential oil)에서 테르펜을 제거할 때 생기는 테르펜계 부산물, 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	
3301.1	-정유(essential oil)(감귤류로 한정한다)	
3301.12	--오렌지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301.13	--레몬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301.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301.2	-정유(essential oil)(감귤류 외의 것으로 한정한다)	
3301.24	--박하유[멘타 피페리타(Mentha piperita)]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301.25	--그 밖의 민트류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301.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301.30	-레지노이드(resinoid)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30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302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혼합물과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알코올의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방향성(芳香性)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조제품(음료제조용으로 한정한다)	
3302.10	-식품공업용이나 음료공업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3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303	향수와 화장수	
3303.00	-향수와 화장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304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이나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나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	
3304.10	-입술화장용 제품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304.20	-눈화장용 제품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304.30	-매니큐어용 제품류나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304.9	**-기타**	
3304.91	--가루(압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304.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305	**두발용 제품류**	
3305.10	-샴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305.20	-퍼머넌트 웨이빙(permanent waving)용이나 스트레이트닝(straightening)용 제품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305.30	-헤어 래커(hair lacqu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3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306	**구강·치과 위생용 제품류[치열 교정용 페이스트(paste)와 가루를 포함한다], 치간 청결용 실[치실(dental floss)]로서 개별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3306.10	-치약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306.20	-치간 청결용 실[치실(dental floss)]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30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307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3307.10	-면도용 제품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307.20	-인체용 탈취제와 땀 억제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307.30	-향을 첨가한 목욕용 염과 그 밖의 목욕용 제품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307.4	-실내용 방향 조제품이나 탈취 조제품(종교의식에 사용하는 방향 조제품을 포함한다)	
3307.41	--아가바티(agarbatti)와 그 밖의 연소시켜 사용하는 향기성의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307.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30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34 류	비누・유기계면활성제・조제 세제・조제 윤활제・인조 왁스・조제 왁스・광택용이나 연마용 조제품・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조형용 페이스트(paste)・치과용 왁스와 플라스터(plaster)를 기본 재료로 한 치과용 조제품	
3401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막대(bar) 모양・케이크 모양・주형 모양으로 된 것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	
3401.1	-비누・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막대(bar) 모양・케이크 모양・주형 모양으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401.11	--화장용(약용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401.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401.20	-그 밖의 모양의 비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401.30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402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 3401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3402.1	-유기계면활성제(소매용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402.11	--음이온성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402.12	--양이온성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402.13	--비이온성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40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402.20	-소매용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4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403	조제 윤활유[윤활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절삭제・볼트나 너트 방출제・방청제・부식방지제・이형(mould release) 조제품을 포함한다], 방직용 재료・가죽・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오일링처리나 가지처리에 사용하는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青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70 이상인 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은 제외한다]	
3403.1	-석유나 역청유(瀝青油)를 함유하는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403.11	--방직용 재료·가죽·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처리용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403.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403.9	**-기타**	
3403.91	--방직용 재료·가죽·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처리용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403.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404	**인조 왁스와 조제 왁스**	
3404.20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글리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40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405	**신발용·가구용·마루용·차체(coachwork)용·유리용·금속용 광택제와 크림, 연마페이스트(paste)·연마가루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이러한 조제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하거나 피복한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셀룰러 플라스틱·셀룰러 고무 형태의 것인지에 상관없다](제 3404 호의 왁스는 제외한다)**	
3405.10	-신발용이나 가죽용 광택제·크림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405.20	-목제가구·마루나 그 밖의 목제품의 유지용 광택제·크림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405.30	-차체(coachwork)용 광택제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금속용 광택제는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405.40	-조제 연마페이스트(paste)·조제 연마가루와 그 밖의 연마용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4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406	**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406.00	-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407	**조형용 페이스트(paste)(아동 오락용을 포함한다), 치과용 왁스나 치과용 인상재료[세트로 된 것, 소매용으로 포장된 것, 판 모양·말굽 모양·막대(stick)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플라스터(plaster)(소석고나 황산칼슘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치과용 조제품**	
3407.00	-조형용 페이스트(paste)(아동 오락용을 포함한다), 치과용 왁스나 치과용 인상재료[세트로 된 것, 소매용으로 포장된 것, 판 모양·말굽 모양·막대(stick)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플라스터(plaster)(소석고나 황산칼슘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치과용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35 류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glue), 효소**	
3501	**카세인(casein)·카세인산염(caseinate)과 그 밖의 카세인(casein) 유도체, 카세인 글루(casein glue)**	
3501.10	-카세인(casein)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50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502	**알부민(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한 유장단백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0 을 초과하는 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알부민산염과 그 밖의 알부민 유도체**	
3502.1	**-알의 흰자위(egg albumin)**	
3502.11	--건조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50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502.20	-밀크알부민(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5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503	젤라틴[직사각형(정사각형의 것을 포함한다) 시트(sheet) 모양인 것을 포함하며, 표면가공이나 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젤라틴 유도체, 아이징글라스(isinglass), 그 밖의 동물성 글루(glue)[제 3501 호의 카세인 글루(casein glue)는 제외한다]	
3503.00	-젤라틴[직사각형(정사각형의 것을 포함한다) 시트(sheet) 모양인 것을 포함하며, 표면가공이나 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젤라틴 유도체, 아이징글라스(isinglass), 그 밖의 동물성 글루(glue)[제 3501 호의 카세인 글루(casein glue)는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504	펩톤(peptone)과 이들의 유도체, 그 밖의 단백질계 물질과 이들의 유도체(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하이드파우더(hide powder)(크롬명반을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504.00	-펩톤(peptone)과 이들의 유도체, 그 밖의 단백질계 물질과 이들의 유도체(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하이드파우더(hide powder)(크롬명반을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505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예: 프리젤라티나이지드(pregelatinised) 전분이나 에스테르화 전분], 전분·덱스트린이나 그 밖의 변성전분을 기본 재료로 한 글루(glue)	
3505.10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505.20	-글루(glu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506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 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3506.10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 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506.9	-기타	
3506.91	--제 3901 호부터 제 3913 호까지의 폴리머(polymer)나 고무를 기본 재료로 한 접착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506.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507	효소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효소	
3507.10	-레네트(rennet)와 이들의 농축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50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36 류	화약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 합금, 특정 가연성 조제품	
3601	화약	
3601.00	-화약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602	폭약(화약은 제외한다)	
3602.00	-폭약(화약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603	도화선, 도폭선, 뇌관, 점화기, 전기뇌관	
3603.00	-도화선, 도폭선, 뇌관, 점화기, 전기뇌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604	불꽃제품・신호용 조명탄・레인로켓(rain rocket)・안개 신호용품과 그 밖의 화공품	
3604.10	-불꽃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60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605	성냥(제 3604 호의 화공품은 제외한다)	
3605.00	-성냥(제 3604 호의 화공품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606	페로세륨・그 밖의 발화성 합금(어떤 모양이라도 가능하다), 이 류의 주 제 2 호의 가연성 재료의 제품	
3606.10	-흡연용 라이터나 이와 유사한 라이터를 충전하거나 재충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용기(용량이 300 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에 넣은 액체연료・액화가스연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60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37 류	사진용이나 영화용 재료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701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평면 모양 사진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종이·판지·직물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평면 모양 인스턴트 프린트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팩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3701.10	-엑스선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701.20	-인스턴트 프린트필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701.30	-그 밖의 플레이트와 필름(각 변의 길이가 25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701.9	**-기타**	
3701.91	--천연색 사진용(폴리크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701.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702	**롤 모양 사진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종이·판지·직물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롤 모양 인스턴트 프린트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702.10	-엑스선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702.3	**-그 밖의 필름(구멍이 없는 것으로서 폭이 105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3702.31	--천연색 사진용(폴리크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702.32	--기타[할로겐화은 에멀션(emulsion)으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702.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702.4	**-그 밖의 필름(구멍이 없는 것으로서 폭이 10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3702.41	--폭이 610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길이가 200 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천연색 사진용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폴리크롬)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702.42	--폭이 610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길이가 200 미터를 초과하는 것(천연색 사진용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702.43	--폭이 610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길이가 200 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702.44	--폭이 105 밀리미터 초과 610 밀리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702.5	**-그 밖의 필름[천연색 사진용(폴리크롬)]**	
3702.52	--폭이 16 밀리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702.53	--폭이 16 밀리미터 초과 35 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 미터 이하인 것(슬라이드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702.54	--폭이 16 밀리미터 초과 35 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 미터 이하인 것(슬라이드용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702.55	--폭이 16 밀리미터 초과 35 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 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702.56	--폭이 3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702.9	**-기타**	
3702.96	--폭이 35 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 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702.97	--폭이 35 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 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702.98	--폭이 3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703	**사진 인화지·판지·직물(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703.10	-롤 모양(폭이 61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703.20	-기타[천연색 사진용(폴리크롬)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7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704	**사진플레이트·필름·인화지·판지·직물(노광한 것으로서 현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704.00	-사진플레이트·필름·인화지·판지·직물(노광한 것으로서 현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705	**사진플레이트와 필름(노광하여 현상한 것으로 한정하며, 영화용 필름은 제외한다)**	
3705.00	-사진플레이트와 필름(노광하여 현상한 것으로 한정하며, 영화용 필름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706	**영화용 필름(노광하여 현상한 것으로 한정하며, 사운드트랙이 있는 것인지 또는 사운드트랙만으로 구성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3706.10	-폭이 35 밀리미터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70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707	**사진용 화학조제품[바니시(varnish)·글루(glue)·접착제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은 제외한다], 사진용 단일 물품(일정 소량으로 나누거나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모양인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3707.10	-감광유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70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38 류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3801	**인조흑연, 콜로이드흑연·반콜로이드흑연,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페이스트(paste)·블록·판 모양이나 그 밖의 반제품으로 한정한다]**	
3801.10	-인조흑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801.20	-콜로이드흑연이나 반콜로이드흑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01.30	-전극용 탄소질 페이스트(paste)와 노(爐) 내장용의 이와 유사한 페이스트(past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0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02	**활성탄, 활성화한 천연의 광물성 생산품, 수탄(獸炭)[폐수탄(廢獸炭)을 포함한다]**	
3802.10	-활성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03	**톨유(tall oil)(정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803.00	-톨유(tall oil)(정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04	**목재펄프를 제조할 때 생기는 폐액(廢液)[농축한 것인지, 당류를 제거한 것인지 또는 화학적으로 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리그닌 술폰산을 포함하나, 제 3803 호의 톨유(tall oil)는 제외한다]**	
3804.00	-목재펄프를 제조할 때 생기는 폐액(廢液)[농축한 것인지, 당류를 제거한 것인지 또는 화학적으로 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리그닌 술폰산을 포함하나, 제 3803 호의 톨유(tall oil)는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05	**검테레빈유·우드테레빈유·황산테레빈유와 그 밖의 테르펜계유(증류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침엽수 목재에서 얻은 것으로 한정한다), 가공하지 않은 디펜틴, 아황산테레빈과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파라시멘, 파인유(pine oil)(주성분이 알파테르피네올인 것으로 한정한다)**	
3805.10	-검테레빈유·우드테레빈유·황산테레빈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06	**로진(rosin)·수지산과 이들의 유도체, 로진 스피릿(rosin spirit)과 로진유(rosin oil), 런검(run gum)**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806.10	-로진(rosin)과 수지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06.20	-로진염, 수지산염, 로진(rosin) · 수지산 유도체의 염[로진(rosin) 부가물의 염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06.30	-에스테르 검(ester gum)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0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07	**목(木)타르, 목(木)타르유, 목(木)크레오소트(creosote), 목(木)나프타, 식물성 피치(pitch), 브루어피치(brewers' pitch)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로진(rosin)·수지산이나 식물성 피치(pitch)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3807.00	-목(木)타르, 목(木)타르유, 목(木)크레오소트(creosote), 목(木)나프타, 식물성 피치(pitch), 브루어피치(brewers' pitch)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로진(rosin)·수지산이나 식물성 피치(pitch)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08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조제품으로 한 것·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	
3808.5	**-이 류의 소호주 제 1 호의 물품**	
3808.52	--디디티(ISO)[클로페노탄(INN)](순중량이 300 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에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08.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08.6	**-이 류의 소호주 제 2 호의 물품**	
3808.61	--순중량이 300 그램 이하로 포장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08.62	--순중량이 300 그램 초과 7.5 킬로그램 이하로 포장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08.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808.9	-기타	
3808.91	--살충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08.92	--살균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08.93	--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08.94	--소독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08.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09	완성가공제, 염색 촉진용・염료 고착용 염색캐리어, 드레싱・매염제와 같은 그 밖의 물품과 조제품(섬유산업・제지산업・가죽산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809.10	-전분질을 기본 재료로 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09.9	-기타	
3809.91	--섬유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용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09.92	--제지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용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09.93	--가죽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용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10	금속표면처리용 침지 조제품, 납붙임용・땜질용・용접용 융제와 그 밖의 보조 조제품, 납붙임용・땜질용・용접용 가루와 페이스트(paste)로서 금속과 그 밖의 재료로 조성한 것, 용접용 전극・용접봉의 코어나 피복에 사용하는 조제품	
3810.10	-금속표면처리용 침지 조제품, 납붙임용・땜질용・용접용 가루와 페이스트(paste)로서 금속과 그 밖의 재료로 조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1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11	안티녹(anti-knock)제 · 산화억제제 · 검화억제제 (gum inhibitor) · 점도향상제 · 부식방지제와 그 밖의 조제 첨가제[광물유(가솔린을 포함한다)용이나 광물유와 동일한 목적에 사용하는 그 밖의 액체용으로 한정한다]	
3811.1	-안티녹(anti-knock)제	
3811.11	--납화합물을 기본 재료로 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11.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11.2	-윤활유 첨가제	
3811.21	--석유나 역청유(瀝青油)를 함유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11.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1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12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고무용 · 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고무용 · 플라스틱용 산화방지 조제품과 그 밖의 복합안정제	
3812.10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12.20	-고무용 · 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12.3	-고무용 · 플라스틱용 산화방지 조제품과 그 밖의 복합안정제	
3812.31	--2,2,4-트리메틸-1,2-디하이드로퀴놀린 올리고머(티엠큐)의 혼합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12.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13	소화기용 조제품과 장전물, 장전된 소화탄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813.00	-소화기용 조제품과 장전물, 장전된 소화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14	**유기혼합용제와 시너(thinner)(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제한 페인트·바니시 (vanish) 제거제**	
3814.00	-유기혼합용제와 시너(thinner)(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제한 페인트·바니시 (vanish) 제거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15	**반응시작제·반응촉진제·촉매 조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815.1	**-서포트된(supported) 촉매**	
3815.11	--활성물질로서 니켈이나 니켈화합물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15.12	--활성물질로서 귀금속이나 귀금속화합물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1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1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16	**내화시멘트·내화모르타르·내화콘크리트와 이와 유사한 혼합물(제 3801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3816.00	-내화시멘트·내화모르타르·내화콘크리트와 이와 유사한 혼합물(제 3801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17	**혼합알킬벤젠과 혼합알킬나프탈렌(제 2707 호·제 2902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3817.00	-혼합알킬벤젠과 혼합알킬나프탈렌(제 2707 호·제 2902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18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doped) 화학원소(디스크·웨이퍼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정한다),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doped) 화학화합물**	
3818.00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 (doped) 화학원소(디스크·웨이퍼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정한다),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doped) 화학화합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819	유압제동액과 그 밖의 조제 유압전동액[석유나 역청유(瀝青油)를 함유하지 않거나 석유나 역청유(瀝青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7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3819.00	-유압제동액과 그 밖의 조제 유압전동액[석유나 역청유(瀝青油)를 함유하지 않거나 석유나 역청유(瀝青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7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20	부동(不凍) 조제품과 조제 제빙액	
3820.00	-부동(不凍) 조제품과 조제 제빙액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21	미생물(바이러스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식물·인간·동물 세포의 성장이나 보존을 위한 조제 배양제	
3821.00	-미생물(바이러스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식물·인간·동물 세포의 성장이나 보존을 위한 조제 배양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22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과 조제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뒤편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 3002 호·제 3006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보증된 참조물질	
3822.00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과 조제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뒤편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 3002 호·제 3006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보증된 참조물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23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 유지를 정제할 때 생긴 애시드유(acid oil),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	
3823.1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유지를 정제할 때 생긴 애시드유(acid oil)	
3823.11	--스테아린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23.12	--올레인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23.13	--톨유(tall oil) 지방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23.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823.70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24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3824.10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24.30	-응집하지 않은 금속탄화물(상호 혼합되거나 금속점결제와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24.40	-시멘트용·모르타르용·콘크리트용 조제 첨가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24.50	-비내화성 모르타르와 비내화성 콘크리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24.60	-소르비톨(sorbitol)(소호 제 2905.44 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24.7	**-메탄, 에탄, 프로판의 할로겐화 유도체를 가지는 혼합물**	
3824.71	--염화불화탄소(CFCs)를 함유하는 것[수소염화불화탄소(HCFCs)·과불화탄소(PFCs)·수소불화탄소(HFCs)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24.72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브로모트리플루오르메탄, 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르에탄을 함유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24.73	--수소브로모플루오르카본(HBFCs)을 함유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24.74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하는 것[과불화탄소(PFCs), 수소불화탄소(HFCs)를 함유한 것인지는 상관없으며 염화불화탄소(CFCs)를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24.75	--사염화탄소를 함유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24.76	--1,1,1-삼염화에탄(메틸 클로로포름)을 함유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824.77	--브로모메탄(브롬화메틸), 브로모클로로메탄을 함유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24.78	--과불화탄소(PFCs), 수소불화탄소(HFCs)를 함유하는 것[염화불화탄소(CFCs)나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24.7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24.8	-이 류의 소호주 제 3 호의 물품	
3824.81	--옥시란(산화에틸렌)을 함유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24.82	--폴리염소화 비페닐(PCBs), 폴리염소화 테르페닐(PCTs), 폴리브롬화 비페닐(PBBs)을 함유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24.83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를 함유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24.84	--앨드린(ISO), 캄페클로(ISO)(톡사핀), 클로단(ISO), 클로르데콘(ISO), 디디티(ISO)[클로페노탄(INN), 1,1,1-트리클로로-2,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 디엘드린(ISO, INN), 엔도술판(ISO), 엔드린(ISO), 헵타클로르(ISO) 또는 미렉스(ISO)를 함유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24.85	--1,2,3,4,5,6-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HCH(ISO)], [린데인(ISO, INN)을 포함하는 것]을 함유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24.86	--펜타클로로벤젠(ISO) 또는 헥사클로로벤젠(ISO)을 함유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24.87	--과불화옥탄 술폰산과 그 염, 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또는 과불화옥탄술포닐 플루오라이드를 함유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24.88	--테트라-, 펜타-, 헥사-, 헵타- 또는 옥타브로모디페닐 에테르를 함유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24.9	-기타	
3824.91	--(5-에틸-2-메틸-2-옥시도-1,3,2-디옥사포스피난-5-일)메틸 메틸 메틸포스포네이트와 비스[(5-에틸-2-메틸-2-옥시도-1,3,2-디옥사포스피난-5-일)메틸] 메틸포스포네이트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과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824.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25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잔재물, 생활폐기물, 하수 찌꺼기, 이 류의 주 제 6 호의 그 밖의 폐기물**	
3825.10	-생활폐기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25.20	-하수 찌꺼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25.30	-감염성 폐기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25.4	**-폐유기용제**	
3825.41	--할로겐을 함유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25.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25.50	-금속세정액, 유압액, 브레이크액, 부동액 폐기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25.6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서 발생한 그 밖의 폐기물**	
3825.61	--주로 유기성분을 함유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25.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2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26	**바이오디젤과 그 혼합물[석유나 역청유(瀝青油)를 함유하지 않거나 그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 분의 7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3826.00	-바이오디젤과 그 혼합물[석유나 역청유(瀝青油)를 함유하지 않거나 그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 분의 7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7 부 플라스틱과 그 제품, 고무와 그 제품		
제 39 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901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1.10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미만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01.20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이상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01.30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01.40	-에틸렌-알파-올레핀공중합체(비중이 0.94 미만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0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02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2.10	-폴리프로필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02.20	-폴리이소부틸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02.30	-프로필렌 공중합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03	**스티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3.1	**-폴리스티렌**	
3903.11	--발포성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03.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03.20	-스티렌-아크릴로니트릴 공중합체(SAN)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903.30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 (ABS)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04	**염화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할로겐화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4.10	-폴리(염화비닐)(다른 물질을 혼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04.2	**-그 밖의 폴리(염화비닐)**	
3904.21	--가소화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04.22	--가소화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04.30	-염화비닐-초산비닐 공중합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04.40	-그 밖의 염화비닐 공중합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04.50	-염화비닐리덴 중합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04.6	**-플루오르 중합체**	
3904.61	--폴리테트라 플루오르에틸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04.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0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05	**초산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비닐에스테르의 중합체, 그 밖의 비닐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5.1	**-폴리(초산비닐)**	
3905.12	--물에 분산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90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05.2	**-초산비닐 공중합체**	
3905.21	--물에 분산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05.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05.30	-폴리(비닐알코올)[가수분해되지 않은 초산기(基)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05.9	**-기타**	
3905.91	--공중합체(共重合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05.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06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6.10	-폴리(메틸 메타크리레이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0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07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7.10	-폴리아세탈수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07.20	-그 밖의 폴리에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07.30	-에폭시수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07.40	-폴리카보네이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907.50	-알키드수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07.6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3907.61	--점도번호가 그램당 78 밀리리터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07.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07.70	-폴리(락트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07.9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	
3907.91	--불포화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07.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08	**폴리아미드[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8.10	-폴리아미드-6, -11, -12, -6,6, -6,9, -6,10 또는 -6,12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0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09	**아미노수지·페놀수지·폴리우레탄[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9.10	-요소수지와 티오요소수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09.20	-멜라민수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09.3	**-그 밖의 아미노수지**	
3909.31	--폴리(메틸렌 페닐 이소시아네이트) [가공하지 않은 엠디아이(MDI), 중합 엠디아이(MDI)]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09.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909.40	-페놀수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09.50	-폴리우레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10	**실리콘수지[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10.00	-실리콘수지[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11	**석유수지·쿠마론-인덴수지·폴리테르펜·폴리술파이드·폴리술폰과 이 류의 주 제 3 호의 그 밖의 물품[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911.10	-석유수지·쿠마론·인덴·쿠마론-인덴수지·폴리테르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1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12	**셀룰로오스와 그 화학적 유도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912.1	**-초산셀룰로오스**	
3912.11	--가소화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12.12	--가소화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12.20	-질산셀룰로오스(콜로디온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12.3	**-셀룰로오스 에테르**	
3912.31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와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12.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1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913	천연중합체(예: 알긴산)와 변성한 천연중합체(예: 경화 단백질,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913.10	-알긴산과 그 염・에스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1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14	이온교환수지[제 3901 호부터 제 3913 호까지의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서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14.00	-이온교환수지[제 3901 호부터 제 3913 호까지의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서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15	플라스틱의 웨이스트(waste)・페어링(paring)・스크랩(scrap)	
3915.1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15.20	-스티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15.3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15.90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16	플라스틱의 모노필라멘트(횡단면의 치수가 1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막대(rod, stick)・형재(形材)(표면 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3916.1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16.2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16.90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917	**플라스틱의 관·파이프·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 [예: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	
3917.10	-경화 단백질이나 셀룰로오스 물질의 인조 거트(gut)[소시지케이싱(sausage casing)]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17.2	**-경질(硬質)의 관·파이프·호스**	
3917.21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17.22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17.23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17.29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17.3	**-그 밖의 관·파이프·호스**	
3917.31	--연질(軟質)의 관·파이프·호스[파열압(破裂壓)이 27.6 메가파스칼 이상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17.32	--기타(연결구가 없는 것으로 한정하며,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17.33	--기타(연결구가 있는 것으로 한정하며,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17.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17.40	-연결구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18	**플라스틱으로 만든 바닥깔개(접착성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롤이나 타일 모양으로 한정한다), 이류의 주 제 9 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3918.1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18.90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919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3919.10	-롤 모양인 것(폭이 20 센티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1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20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920.1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20.20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20.30	-스티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20.4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3920.43	--전 중량의 100 분의 6 이상의 가소제를 함유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20.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20.5	**-아크릴 중합체로 만든 것**	
3920.51	--폴리(메틸메타크리레이트)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20.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20.6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 에스테르·그 밖의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3920.61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20.62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920.63	--불포화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20.69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20.7	**-셀룰로오스나 그 화학적 유도체로 만든 것**	
3920.71	--재생 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20.73	--초산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20.79	--그 밖의 셀룰로오스 유도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20.9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3920.91	--폴리(비닐 부티랄)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20.92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20.93	--아미노수지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20.94	--페놀수지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20.99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21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	
3921.1	**-셀룰러**	
3921.11	--스티렌 중합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21.12	--염화비닐 중합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21.13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921.14	--재생 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21.19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2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22	**플라스틱으로 만든 목욕통·샤워통·설거지통·세면기·비데·화장실용 팬·변기용 시트(seat)와 커버·수세용 물탱크와 이와 유사한 위생용품**	
3922.10	-목욕통·샤워통·설거지통·세면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22.20	-변기용 시트(seat)와 커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2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23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3923.10	-상자·케이스·바구니와 이와 유사한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23.2	**-포장대[콘(cone)을 포함한다]**	
3923.21	--에틸렌 중합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23.29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23.30	-카보이(carboy)·병·플라스크(flask)와 이와 유사한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23.40	-스풀(spool)·콥(cop)·보빈(bobbin)과 이와 유사한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23.50	-뚜껑·마개·캡과 그 밖의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392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24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위생용품·화장용품**	
3924.10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2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25	**플라스틱으로 만든 건축용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925.10	-저장기·탱크·배트(vat)와 이와 유사한 용기(용량이 300 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25.20	-문·창과 이들의 틀과 문지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25.30	-셔터·블라인드[베네치안 블라인드(venetian blind)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이들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2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26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 3901 호부터 제 3914 호까지의 그 밖의 물품의 제품**	
3926.10	-사무용품이나 학용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26.20	-의류와 의류 부속품(장갑, 벙어리장갑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26.30	-가구·차체(coachwork)나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26.40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용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2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40 류	**고무와 그 제품**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001	천연고무·발라타(balata)·구타페르카(gutta-percha)·구아율(guayule)·치클(chicle)과 이와 유사한 천연 검(gum)[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4001.10	-천연고무의 라텍스[프리-벌커나이즈된(pre-vulcanised)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01.2	-천연고무(그 밖의 모양으로 한정한다)	
4001.21	--스모크드 시트(smoked shee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01.22	--공업 규격화된 천연고무(TSN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01.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01.30	-발라타(balata)·구타페르카(gutta-percha)·구아율(guayule)·치클(chicle)과 이와 유사한 천연 검(gum)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02	합성고무와 기름에서 제조한 팩티스(factice)[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제 4001 호의 물품과 제 4002 호의 물품과의 혼합물[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4002.1	-스티렌-부타디엔 고무(SBR)·카르복시화한 스티렌-부타디엔 고무(XSBR)	
4002.11	--라텍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0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02.20	-부타디엔 고무(B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02.3	-이소부텐-이소프렌(부틸)고무(IIR)·할로-이소부텐-이소프렌고무(CIIR 이나 BIIR)	
4002.31	--이소부텐-이소프렌 고무(부틸고무)(II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02.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02.4	**-클로로프렌(클로로부타디엔) 고무(CR)**	
4002.41	--라텍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02.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02.5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 고무(NBR)**	
4002.51	--라텍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02.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02.60	-이소프렌 고무(I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02.70	-에틸렌-프로필렌-비공액 디엔 고무(EPDM)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02.80	-제 4001 호의 물품과 제 4002 호의 물품과의 혼합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02.9	**-기타**	
4002.91	--라텍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02.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03	**재생고무[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4003.00	-재생고무[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04	**고무의 웨이스트(waste)·페어링(paring)·스크랩(scrap)[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과 이들의 가루와 알갱이**	
4004.00	-고무의 웨이스트(waste)·페어링(paring)·스크랩(scrap)[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과 이들의 가루와 알갱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005	가황하지 않은 배합고무[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4005.10	-카본블랙이나 실리카와 배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05.20	-용액과 분산액(소호 제 4005.10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05.9	-기타	
4005.91	--판·시트(sheet)·스트립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05.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06	가황하지 않은 고무의 그 밖의 모양[예: 막대(rod)·관·형재(形材)]과 제품(예: 디스크·링)	
4006.10	-고무타이어 재생용 "캐멀-백(camel-back)" 스트립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0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07	고무실과 고무끈(가황한 것으로 한정한다)	
4007.00	-고무실과 고무끈(가황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08	고무로 만든 판·시트(sheet)·스트립·막대(rod)·형재(形材)[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	
4008.1	-셀룰러 고무로 만든 것	
4008.11	--판·시트(sheet)·스트립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08.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08.2	-셀룰러 고무 외로 만든 것	
4008.21	--판·시트(sheet)·스트립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008.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09	고무로 만든 관·파이프·호스[가황한 것으로 한정하고,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하며,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 등 연결구류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4009.1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것	
4009.11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09.12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09.2	-금속으로만 보강되거나 결합된 것	
4009.21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09.22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09.3	-방직용 섬유 재료로만 보강되거나 결합된 것	
4009.31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09.32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09.4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된 것	
4009.41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09.42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10	고무로 만든 컨베이어용·전동(transmission)용 벨트 또는 벨팅(belting)(가황한 것으로 한정한다)	
4010.1	-컨베이어용 벨트나 벨팅(belting)	
4010.11	--금속으로만 보강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010.12	--방직용 섬유 재료로만 보강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10.19	--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10.3	**-전동(transmission)용 벨트와 벨팅(belting)**	
4010.31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transmission)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 센티미터 초과 180 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파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10.32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transmission)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 센티미터 초과 180 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파인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10.33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transmission)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80 센티미터 초과 240 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파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10.34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transmission)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80 센티미터 초과 240 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파인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10.35	--엔드리스 싱크러너스(endless synchronous) 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 센티미터 초과 150 센티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10.36	--엔드리스 싱크러너스(endless synchronous) 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50 센티미터 초과 198 센티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10.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11	**고무로 만든 공기타이어(신품으로 한정한다)**	
4011.10	-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 자동차용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11.20	-버스용·화물차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11.30	-항공기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11.40	-모터사이클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11.50	-자전거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11.70	-농경용・임업용 차량과 기계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11.80	-건설용・광업용・산업용 차량과 기계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1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12	**고무로 만든 공기타이어(재생품이나 중고품으로 한정한다), 고무로 만든 솔리드(solid)나 쿠션타이어, 타이어 트레드(tread), 타이어 플랩(flap)**	
4012.1	**-재생타이어**	
4012.11	--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 자동차용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12.12	--버스용・화물자동차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12.13	--항공기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1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12.20	-중고 공기타이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1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13	**고무로 만든 이너튜브**	
4013.10	-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 자동차용을 포함한다]・버스용・화물차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13.20	-자전거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01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14	**고무로 만든 위생용품 또는 의료용품[젖꼭지를 포함하며, 경질(硬質)고무 외의 가황한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경질(硬質)고무로 만든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014.10	-콘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1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15	**고무로 만든 의류와 의류 부속품[장갑, 벙어리장갑을 포함하고, 경질(硬質)고무 외의 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어떤 용도인지는 상관없다]**	
4015.1	**-장갑, 벙어리장갑**	
4015.11	--외과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1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1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16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4016.10	-셀룰러 고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16.9	**-기타**	
4016.91	--바닥깔개와 매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16.92	--지우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16.93	--개스킷(gasket)·와셔(washer)·그 밖의 실(seal)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16.94	--보트나 도크펜더(dock fender)(팽창성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016.95	--그 밖의 팽창성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16.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17	**경질(硬質)고무[예: 에보나이트(ebonite), 각종 모양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와 그 제품**	
4017.00	-경질(硬質)고무[예: 에보나이트(ebonite), 각종 모양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와 그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8 부 원피·가죽·모피와 이들의 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제 41 류	**원피(모피는 제외한다)와 가죽**	
4101	**소(버팔로를 포함한다)나 마속(馬屬)동물의 원피[생 것·염장한 것·건조한 것·석회처리한 것·산처리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존처리한 것으로 한정하고, 유연처리·파치먼트(parchment) 가공이나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하며, 털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101.20	-스플릿(split)하지 않은 전신 원피(단순 건조시켰을 때의 중량이 8 킬로그램 이하, 염처리 후 건조시켰을 때의 중량이 10 킬로그램 이하, 생 것·습식염장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존처리하였을 때의 중량이 16 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101.50	-전신 원피(16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101.90	-기타[버트(butt), 벤드(bend), 벨리(belly)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102	**면양이나 어린 양의 원피[생 것·염장한 것·건조한 것·석회처리한 것·산처리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존처리한 것으로 한정하고, 유연처리·파치먼트(parchment) 가공이나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하며, 털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다만, 이 류의 주 제 1 호다목에 따라 제외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4102.10	-털을 제거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102.2	-털을 제거한 것	
4102.21	--산처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102.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103	그 밖의 원피[생 것·염장한 것·건조한 것·석회처리한 것·산처리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존처리한 것으로 한정하고, 유연처리·파치먼트(parchment) 가공이나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하며, 털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다만, 이 류의 주 제 1 호나목이나 다목에 따라 제외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4103.20	-파충류의 원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103.30	-돼지의 원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1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104	소(버팔로를 포함한다)나 마속(馬屬)동물의 유연처리나 크러스트 처리한 원피[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4104.1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4104.11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104.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104.4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4104.41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104.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105	면양이나 어린 양의 유연처리나 크러스트 처리한 원피[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4105.10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105.30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106	그 밖의 동물의 유연처리·크러스트 처리한 원피[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4106.2	-산양의 원피	
4106.21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106.22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106.3	-돼지의 원피	
4106.31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106.32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106.40	-파충류의 원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106.9	-기타	
4106.91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106.92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107	유연처리·크러스트 처리한 후 그 이상의 가공을 한 소(버팔로를 포함한다)나 마속(馬屬)동물의 가죽[파치먼트(parchment) 가공 가죽을 포함한다][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 4114 호의 가죽은 제외한다]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107.1	**-전신 가죽**	
4107.11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107.12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107.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107.9	**-기타(반신의 가죽을 포함한다)**	
4107.91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107.92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107.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112	**유연처리·크러스트 처리한 후 그 이상의 가공을 한 면양이나 어린 양의 가죽[파치먼트(parchment) 가공 가죽을 포함한다][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 4114 호의 가죽은 제외한다]**	
4112.00	-유연처리·크러스트 처리한 후 그 이상의 가공을 한 면양이나 어린 양의 가죽[파치먼트(parchment) 가공 가죽을 포함한다][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 4114 호의 가죽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113	**유연처리·크러스트 처리한 후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그 밖의 동물의 가죽[파치먼트(parchment) 가공 가죽을 포함한다][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 4114 호의 가죽은 제외한다]**	
4113.10	-산양의 가죽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113.20	-돼지의 가죽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113.30	-파충류의 가죽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11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114	**샤미가죽(chamois leather)[콤비네이션 샤미가죽(chamois leather)을 포함한다],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와 적층한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 메탈라이즈드 레더(metallised leather)**	
4114.10	-샤미가죽(chamois leather)[콤비네이션 샤미가죽(chamois leather)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114.20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와 적층한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 메탈라이즈드 레더(metallised leath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115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가죽이나 가죽섬유를 기본 재료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롤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슬래브 모양·시트(sheet) 모양·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의 페어링(paring)과 그 밖의 웨이스트(waste)(가죽제품의 제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가죽의 더스트(dust)와 가루**	
4115.10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가죽이나 가죽섬유를 기본 재료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롤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슬래브 모양·시트(sheet) 모양·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115.20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의 페어링(paring)과 그 밖의 웨이스트(waste)(가죽제품의 제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가죽의 더스트(dust)와 가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42 류	**가죽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4201	**동물용 마구(고삐줄, 끈, 무릎받이, 재갈, 안장용 방석, 안장에 다는 주머니, 개용 코트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하며, 어떤 재료이든 상관없다)**	
4201.00	-동물용 마구(고삐줄, 끈, 무릎받이, 재갈, 안장용 방석, 안장에 다는 주머니, 개용 코트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하며, 어떤 재료이든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202	트렁크・슈트 케이스・화장품 케이스・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 케이스・쌍안경 케이스・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플라스틱의 시트(sheet)・방직용 섬유・벌커나이즈드파이버(vulcanised fibre)・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나 종이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식품용이나 음료용 단열가방・화장갑・배낭・핸드백・쇼핑백・돈주머니・지갑・지도용 케이스・담배 케이스・담배쌈지・공구가방・운동용구 가방, 병 케이스・신변장식용품용 상자・분갑・칼붙이집과 이와 유사한 용기	
4202.1	-트렁크・슈트 케이스・화장품 케이스・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서류가방・학생가방과 이와 유사한 용기	
4202.11	--외부 표면을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202.12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이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20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202.2	-핸드백(멜빵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손잡이가 없는 것을 포함한다)	
4202.21	--외부 표면을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202.22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 시트(sheet)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202.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202.3	-통상 포켓이나 핸드백에 넣어 다니는 물품	
4202.31	--외부 표면을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202.32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 시트(sheet)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202.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202.9	**-기타**	
4202.91	--외부 표면을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 (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202.92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 시트(sheet)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202.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203	**의류와 의류 부속품[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 (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203.10	-의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203.2	**-장갑류**	
4203.21	--운동용으로 특수 디자인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203.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203.30	-벨트와 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203.40	-그 밖의 의류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205	**그 밖의 가죽제품이나 콤퍼지션 레더 (composition leather)제품**	
4205.00	-그 밖의 가죽제품이나 콤퍼지션 레더 (composition leather)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206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골드비터 스킨(Goldbeater skin)·방광·건(腱)의 제품**	
4206.00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골드비터 스킨(Goldbeater skin)·방광·건(腱)의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43 류	**모피·인조모피와 이들의 제품**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301	**생모피(모피 사용에 적합한 머리 부분, 꼬리 부분, 발 부분과 그 밖의 조각이나 절단품을 포함하며, 제 4101 호・제 4102 호・제 4103 호에 해당하는 원피는 제외한다)**	
4301.10	-밍크의 것(전신인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꼬리 부분・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301.30	-어린 양의 것[아스트라칸(Astrakhan)・브로드테일(Broadtail)・카라쿨(Caracul)・페르시아 어린 양과 이와 유사한 어린 양, 인도・중국・몽고・티베트 어린 양의 것으로서 전신인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꼬리 부분・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301.60	-여우의 것(전신인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꼬리 부분・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301.80	-그 밖의 모피(전신인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 꼬리 부분, 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301.90	-머리 부분・꼬리 부분・발 부분과 그 밖의 조각이나 절단품으로서 모피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302	**모피(유연처리, 드레스가공한 것으로서 머리 부분, 꼬리 부분, 발 부분과 그 밖의 조각이나 절단품을 포함하고, 조합하지 않은 것이나 그 밖의 재료를 가하지 아니하고 조합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 4303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4302.1	**-전신 모피(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 꼬리 부분, 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4302.11	--밍크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30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302.20	-머리 부분・꼬리 부분・발 부분과 그 밖의 조각이나 절단품(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302.30	-전신 모피와 그 조각이나 절단품(조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303	**모피의류・모피의류의 부속품과 그 밖의 모피제품**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303.10	-모피의류와 모피의류의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3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304	**인조모피와 그 제품**	
4304.00	인조모피와 그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9 부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코르크와 그 제품, 짚・에스파르토(esparto)나 그 밖의 조물 재료의 제품, 바구니 세공물(basketward)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		
제 44 류	**목재와 그 제품, 목탄**	
4401	**땔나무(통나무, 목편, 작은 가지, 다발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정한다), 칩이나 삭편(削片) 모양인 목재, 톱밥・목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통나무・브리케트(briquette)・펠릿(pellet)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응결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4401.1	**-땔나무(통나무, 목편, 작은 가지, 다발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정한다)**	
4401.11	--침엽수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01.12	--활엽수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01.2	**-칩이나 삭편(削片) 모양인 목재**	
4401.21	--침엽수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01.22	--활엽수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01.3	**-톱밥, 목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통나무・브리케트(briquette)・펠릿(pellet)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응결된 것으로 한정한다]**	
4401.31	--목재 펠릿(pelle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01.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401.40	-톱밥, 목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응결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02	**목탄[쉘(shell)이나 너트(nut)의 탄을 포함하며, 응결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4402.10	-대나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03	**원목[껍질이나 변재(邊材)를 벗긴 것인지 또는 거칠게 각을 뜬 것인지에 상관없다]**	
4403.1	**-페인트, 착색, 크레오소트(creosote)나 그 밖의 방부제로 처리한 것**	
4403.11	--침엽수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03.12	--활엽수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03.2	**-기타(침엽수류로 한정한다)**	
4403.21	--소나무[피너스(*Pinus*)종]의 것(모든 횡단면의 치수가 15 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03.22	--소나무[피너스(*Pinus*)종]의 것(그 밖의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03.23	--전나무[아비에스(*Abies*)종]와 가문비나무[피세아(*Picea*)종]의 것(모든 횡단면의 치수가 15 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03.24	--전나무[아비에스(*Abies*)종]와 가문비나무[피세아(*Picea*)종]의 것(그 밖의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03.25	--기타(모든 횡단면의 치수가 15 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03.26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03.4	**-기타(열대산 목재로 한정한다)**	
4403.41	--다크레드메란티(Dark Red Meranti)·라이트레드메란티(Light Red Meranti)·메란티바카우(Meranti Bakau)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403.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03.9	**-기타**	
4403.91	--참나무[코커스(*Quercus*)종]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03.93	--너도밤나무[파구스(*Fagus*)종]의 것(모든 횡단면의 치수가 15 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03.94	--너도밤나무[파구스(*Fagus*)종]의 것(그 밖의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03.95	--자작나무[베툴라(*Betula*)종]의 것(모든 횡단면의 치수가 15 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03.96	--자작나무[베툴라(*Betula*)종]의 것(그 밖의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03.97	--포플러와 사시나무[포푸러스(*Populus*)종]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03.98	--유칼립투스[유칼립투스(*Eucalyptus*)종]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03.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04	**후프우드(Hoopwood), 쪼갠 말뚝, 뾰족하게 만든 목재의 말뚝류(길이의 방향으로 톱질한 것은 제외한다), 목재의 막대(stick)[지팡이·산류(傘類)·공구의 자루나 이와 유사한 물품의 제조에 적합한 것으로서 거칠게 깎은 것으로 한정하며, 선반가공·휨 가공이나 그 밖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한다], 칩우드(chipwood)와 이와 유사한 것**	
4404.10	-침엽수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04.20	-활엽수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05	**목모(wood wool)와 목분(wood flour)**	
4405.00	-목모(wood wool)와 목분(wood flou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406	철도용 또는 궤도용 침목(크로스타이)	
4406.1	-주약처리(impregnated)하지 않은 것	
4406.11	--침엽수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06.12	--활엽수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06.9	-기타	
4406.91	--침엽수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06.92	--활엽수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07	제재목[길이의 방향으로 쪼갠 것, 평삭(平削)한 것, 회전식으로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대패질·연마·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인지에 상관없다]	
4407.1	-침엽수류	
4407.11	--적송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07.12	--전나무[아비에스(*Abies*)종] 및 가문비나무[피세아(*Picea*)종]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07.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07.2	-열대산의 목재의 것	
4407.21	--마호가니(Mahogany)[스웨테니아(*Swietenia*)종]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07.22	--비롤라(Virola)·임부아(Imbua)·발사(Balsa)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07.25	--다크레드메란티(Dark Red Meranti)·라이트레드메란티(Light Red Meranti)·메란티바카우(Meranti Bakau)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07.26	--화이트라왕(White Lauan)·화이트메란티(White Meranti)·화이트세라야(White Seraya)·옐로메란티(Yellow Meranti)·아란(Alan)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407.27	--사펠리(Sapelli)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07.28	--이로코(Iroko)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07.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07.9	**-기타**	
4407.91	--참나무[코커스(*Quercus*)종]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07.92	--너도밤나무[파구스(*Fagus*)종]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07.93	--단풍나무[아세르(*Acer*)종]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07.94	--체리나무[프루누스(*Prunus*)종]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07.95	--물푸레나무[프라시너스(*Fraxinus*)종]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07.96	--자작나무[베툴라(Betula)종]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07.97	--포플러와 사시나무[포푸러스(Populus)종]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07.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08	**베니어용 단판[적층 목재를 평삭(平削)한 것을 포함한다], 합판용 단판이나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용 단판, 그 밖의 목재[길이의 방향으로 톱질한 것, 평삭(平削)한 것, 회전식으로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며, 대패질・연마・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인지에 상관없다]**	
4408.10	-침엽수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08.3	**-열대산 목재의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408.31	--다크레드메란티(Dark Red Meranti)·라이트레드메란티(Light Red Meranti)·메란티바카우(Meranti Bakau)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08.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0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09	**목재[미조립한 쪽마루판용 스트립(strip)과 프리즈(frieze)를 포함한다]로서 어느 한쪽의 가장자리·마구리·면을 따라 연속적으로 성형한 것[블록가공·홈가공·은촉이음가공·경사이음가공·브이형이음가공·구술형가공·주형가공·원형가공이나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한 것으로서 대패질·연마·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인지에 상관없다]**	
4409.10	-침엽수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09.2	**-활엽수류**	
4409.21	--대나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09.22	--열대산 목재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09.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10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배향성(配向性)이 있는 스트랜드 보드(OSB: oriented strand board)와 이와 유사한 보드[예: 웨이퍼보드(wafer board)](목재나 그 밖의 목질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수지나 그 밖의 유기결합제로 응결시킨 것인지에 상관없다)**	
4410.1	**-목재로 만든 것**	
4410.11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0.12	--배향성(配向性)이 있는 스트랜드 보드(OSB: oriented strand board)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0.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1	**섬유판(목재나 그 밖의 목질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수지나 그 밖의 유기물질로 접착한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인지에 상관없다)	
4411.1	-중밀도 섬유판(MDF)	
4411.12	--두께가 5 밀리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1.13	--두께가 5 밀리미터 초과 9 밀리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1.14	--두께가 9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1.9	-기타	
4411.92	--밀도가 1 세제곱센티미터당 0.8 그램을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1.93	--밀도가 1 세제곱센티미터당 0.5 그램 초과 0.8 그램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1.94	--밀도가 1 세제곱센티미터당 0.5 그램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2	합판·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	
4412.10	-대나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2.3	-그 밖의 합판[각 플라이(ply)가 6 밀리미터 이하의 목재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하며, 대나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4412.31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열대산 목재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2.33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오리나무[알너스(*Alnus*)종]·물푸레나무[프락시너스(*Fraxinus*)종]·너도밤나무[파구스(*Fagus*)종]·자작나무[베툴라(*Betula*)종]·체리나무[프루누스(*Prunus*)종]·밤나무[카스타네아(*Castanea*)종]·느릅나무[울무스(*Ulmus*)종]·유칼립투스[유칼립투스(*Eucalyptus*)종]·히커리[카르야(*Carya*)종]·칠엽수[아에스쿨러스(*Aesculus*)종]·라임[틸리아(*Tilia*)종]·단풍나무[아서(*Acer*)종]·참나무[코커스(*Quercus*)종]·버짐나무 [플라타너스(*Platanus*)종]·포플러와 사시나무[포푸러스(*Populus*)종] ·아까시나무[로비니아(*Robinia*)종] ·백합나무[리리오덴드론(*Liriodendron*)종] 또는 호두나무[주글란스(*Juglans*)종]의 활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2.34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소호제 4412.33 호에 특정하지 않은 활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2.39	--기타[양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침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2.9	-기타	
4412.94	--블록보드(blockboard), 라민보드(laminboard),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배튼보드(battenboard)	
4412.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4413	**고밀도화 목재[블록 모양・플레이트(plate) 모양・스트립(strip) 모양・프로파일(profile)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4413.00	-고밀도화 목재[블록 모양・플레이트(plate) 모양・스트립(strip) 모양・프로파일(profile)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14	**나무로 만든 그림틀・사진틀・거울틀이나 이와 유사한 틀**	
4414.00	-나무로 만든 그림틀・사진틀・거울틀이나 이와 유사한 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15	**나무로 만든 케이스・상자・크레이트(crate)・드럼과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 나무로 만든 케이블드럼, 나무로 만든 팰릿(pallet), 박스팰릿(box pallet), 그 밖의 깔판류, 나무로 만든 팰릿칼러(pallet collar)**	
4415.10	-케이스・상자・크레이트(crate)・드럼과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 케이블드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15.20	-팰릿(pallet)・박스팰릿(box pallet)・그 밖의 깔판류, 나무로 만든 팰릿칼러(pallet colla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16	**나무로 만든 통・배럴(barrel)・배트(vat)・텁(tub)・그 밖의 용기와 이들의 부분품(통재와 준재를 포함한다)**	
4416.00	-나무로 만든 통・배럴(barrel)・배트(vat)・텁(tub)・그 밖의 용기와 이들의 부분품(통재와 준재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17	**나무로 만든 공구・공구의 몸체・공구의 손잡이・비나 브러시의 몸체와 손잡이・나무로 만든 신발의 골**	
4417.00	-나무로 만든 공구・공구의 몸체・공구의 손잡이・비나 브러시의 몸체와 손잡이・나무로 만든 신발의 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18	**나무로 만든 건축용 건구와 목공품[셀룰러우드패널(cellular wood panel)・조립된 마루판용 패널・지붕을 이는 판자를 포함한다]**	
4418.10	-창, 프랑스 창과 이들의 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418.20	-문·문틀·문지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18.40	-콘크리트 구조물 작업용 거푸집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18.50	-지붕을 이는 판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18.60	-기둥과 들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18.7	**-조립된 마루판용 패널**	
4418.73	--대나무로 만든 것 또는 최소한 최상층(마모층)을 대나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18.74	--기타(모자이크 마루용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18.75	--기타(다층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18.7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18.9	**-기타**	
4418.91	--대나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18.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19	**나무로 만든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4419.1	**-대나무로 만든 것**	
4419.11	--빵 도마, 도마 및 이와 유사한 도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19.12	--젓가락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19.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41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20	**마르퀘트리(marquetry) 목제품과 상감세공 목제품, 신변장식용품이나 칼붙이, 이와 유사한 제품용인 나무로 만든 상자와 용기, 나무로 만든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품, 제 94 류에 해당하지 않는 목제 가구**	
4420.10	-나무로 만든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2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21	**그 밖의 목제품**	
4421.10	-옷걸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21.9	**-기타**	
4421.91	--대나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21.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45 류	**코르크(cork)와 그 제품**	
4501	**천연 코르크(cork)(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단순히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 코르크(cork)의 웨이스트(waste), 부순 코르크(cork), 알갱이 모양 코르크(cork), 잘게 부순 코르크(cork)**	
4501.10	-천연 코르크(cork)(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단순히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50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502	**천연 코르크(cork)[외피를 제거한 것, 거칠게 각을 만든 것,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판 모양・시트(sheet) 모양・스트립(strip)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고, 각이 예리한 마개용 블랭크(blank)를 포함한다]**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502.00	-천연 코르크(cork)[외피를 제거한 것, 거칠게 각을 만든 것,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판 모양·시트(sheet) 모양·스트립(strip)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고, 각이 예리한 마개용 블랭크(blank)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503	**천연 코르크(cork) 제품**	
4503.10	-마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5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504	**응집 코르크(cork)(응집제를 사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응집 코르크(cork)의 제품**	
4504.10	-블록·판·시트(sheet)·스트립(strip)·타일(어떤 모양이라도 상관없다)·솔리드실린더(solid cylinder)(디스크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50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46 류	**짚·에스파르토(esparto)나 그 밖의 조물 재료의 제품,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	
4601	**플레이트(plait)와 이와 유사한 조물 재료의 물품[이를 조합하여 스트립(strip)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조물 재료·플레이트(plait)와 이와 유사한 조물 재료의 물품을 평행으로 연결하거나 직조한 물품[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매트류·발 등 최종 제품인지에 상관없다]**	
4601.2	**-매트류와 발(식물성 재료로 한정한다)**	
4601.21	--대나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601.22	--등나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601.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601.9	**-기타**	
4601.92	--대나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601.93	--등나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601.94	--그 밖의 식물성 재료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601.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602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과 그 밖의 제품(조물 재료로 직접 조형한 것이나 제 4601 호의 물품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수세미제품	
4602.1	-식물성 재료로 만든 것	
4602.11	--대나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602.12	--등나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60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6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10 부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종이·판지와 이들의 제품		
제 47 류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701	기계목재펄프	
4701.00	-기계목재펄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702	화학목재펄프(용해용으로 한정한다)	
4702.00	-화학목재펄프(용해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703	화학목재펄프(소다펄프나 황산펄프로 한정하며, 용해용은 제외한다)	
4703.1	-표백하지 않은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703.11	--침엽수류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703.19	--활엽수류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703.2	**-반표백하거나 표백한 것**	
4703.21	--침엽수류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703.29	--활엽수류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704	**화학목재펄프(아황산펄프로 한정하며, 용해용은 제외한다)**	
4704.1	**-표백하지 않은 것**	
4704.11	--침엽수류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704.19	--활엽수류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704.2	**-반표백하거나 표백한 것**	
4704.21	--침엽수류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704.29	--활엽수류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705	**기계펄프공정과 화학펄프공정을 결합하여 얻은 목재펄프**	
4705.00	-기계펄프공정과 화학펄프공정을 결합하여 얻은 목재펄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706	**회수한 종이나 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에서 뽑아낸 섬유펄프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4706.10	-면 린터 펄프(cotton linters pulp)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706.20	-회수한 종이나 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에서 뽑아낸 섬유펄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706.30	-기타(대나무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706.9	**-기타**	
4706.91	--기계펄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706.92	--화학펄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706.93	--기계공정과 화학공정의 결합으로 생산된 펄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707	**회수한 종이나 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707.10	-표백하지 않은 크라프트지·판지나 물결 모양의 종이·판지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707.20	-주로 표백화학펄프로 된 그 밖의 종이나 판지(전체를 착색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707.30	-주로 기계펄프로 만들어진 종이나 판지(예: 신문, 잡지, 이와 유사한 인쇄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707.90	-기타[선별하지 않은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48 류	**종이와 판지, 제지용 펄프·종이·판지의 제품**	
4801	**신문용지(롤 모양이나 시트 모양으로 한정한다)**	
4801.00	-신문용지(롤 모양이나 시트 모양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02	**도포하지 않은 종이와 판지(필기용, 인쇄용, 그 밖의 그래픽용으로 한정한다), 구멍을 뚫지 않은 펀치카드와 펀치테이프지[제 4801 호나 제 4803 호의 것은 제외하며, 크기와는 관계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수제지(手製紙)와 판지**	
4802.10	-수제지(手製紙)와 판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02.20	-사진 감광성·열 감응성·전자 감광성 종이나 판지의 기본 재료로 사용되는 종이와 판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02.40	-벽지용 원지(原紙)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02.5	**-그 밖의 종이와 판지(기계공정이나 화학-기계공정에 따른 섬유를 함유하지 않거나 그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 분의 10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802.54	--1 제곱미터당 중량이 40 그램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02.55	--롤 모양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40 그램 이상 150 그램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02.56	--시트(sheet) 모양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40 그램 이상 150 그램 이하이고,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435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으며, 다른 한 변은 297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02.57	--그 밖의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40 그램 이상 150 그램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02.58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을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02.6	**-그 밖의 종이와 판지(기계공정이나 화학-기계공정에 따른 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802.61	--롤 모양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02.62	--시트(sheet) 모양으로서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435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다른 한 변은 297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02.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803	화장지·안면용 티슈스톡, 타월·냅킨스톡과 이와 유사한 가정용이나 위생용 종이, 셀룰로오스 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주름지거나(creped) 구겨진(crinkled) 것, 올록볼록한(embossed) 것, 구멍을 뚫은(perforated) 것, 착색한 것, 표면장식한 것, 인쇄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4803.00	-화장지·안면용 티슈스톡, 타월·냅킨스톡과 이와 유사한 가정용이나 위생용 종이, 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주름지거나(creped) 구겨진(crinkled) 것, 올록볼록한(embossed) 것, 구멍을 뚫은(perforated) 것, 착색한 것, 표면장식한 것, 인쇄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04	도포하지 않은 크라프트지와 판지[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제 4802 호나 제 4803 호의 것은 제외한다]	
4804.1	-크라프트라이너(kraftliner)	
4804.11	--표백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04.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04.2	-자루(sack)용 크라프트지	
4804.21	--표백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04.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04.3	-그 밖의 크라프트지와 판지(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804.31	--표백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04.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04.4	-그 밖의 크라프트지와 판지(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 초과 225 그램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804.41	--표백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04.42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표백한 것으로서 화학공정에 따른 목재 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 분의 95 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04.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04.5	**-그 밖의 크라프트지와 판지(1 제곱미터당 중량이 225 그램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804.51	--표백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04.52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표백한 것으로서 화학공정에 따른 목재 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 분의 95 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04.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05	**그 밖의 도포하지 않은 종이와 판지[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이 류의 주 제 3 호의 것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805.1	**-플루팅지(fluting paper)**	
4805.11	--반화학 플루팅지(fluting pap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05.12	--스트로 플루팅지(straw fluting pap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0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05.2	**-테스트라이너(testliner)(재생라이너판)**	
4805.24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05.25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을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05.30	-아황산포장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805.40	-여과지와 판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05.50	-펠트지와 판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05.9	**-기타**	
4805.91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05.92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 초과 225 그램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05.93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25 그램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06	**황산지·내지지(耐脂紙)·트레이싱지(tracing paper)·글라신지(glassine paper)와 그 밖의 투명 광택지나 반투명 광택지[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4806.10	-황산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06.20	-내지지(耐脂紙)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06.30	-트레이싱지(tracing pap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06.40	-글라신지(glassine paper)와 그 밖의 투명 광택지나 반투명 광택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07	**겹붙인 종이와 판지[접착제로 겹붙인 것으로서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표면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은 제외하고, 내면을 보강했는지에 상관없다]**	
4807.00	-겹붙인 종이와 판지[접착제로 겹붙인 것으로서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표면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은 제외하고, 내면을 보강했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808	물결 모양으로 하거나(corrugated)(평면지가 붙은 것인지에 상관없다) 주름지거나(creped) 구겨지거나(crinkled) 올록볼록하거나(embossed) 구멍을 뚫은(perforated) 종이와 판지[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제 4803 호의 것은 제외한다]	
4808.10	-물결 모양의 종이와 판지(구멍을 뚫었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08.40	-크라프트지[주름지거나(creped) 구겨진(crinkled) 것으로서 올록볼록한지(embossed), 구멍을 뚫었는지(perforated)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0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09	카본지, 셀프복사지, 그 밖의 복사지나 전사지[등사원지나 오프셋 플레이트(offset plate)로 사용하는 도포지나 침투지를 포함하고, 인쇄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4809.20	-셀프복사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0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10	한 면이나 양면을 도포한 종이와 판지[결합재가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고령토(kaolin)[차이나 클레이(China clay)]나 그 밖의 무기물질을 도포한 것(그 밖의 다른 물질을 도포한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표면착색·표면장식·인쇄하였는지에 상관없으며 크기와는 관계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4810.1	-필기용, 인쇄용, 그 밖의 그래픽용 종이와 판지(기계공정이나 화학-기계공정에 따른 섬유를 함유하지 않거나 그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 분의 10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810.13	--롤 모양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10.14	--시트(sheet) 모양인 것으로서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435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다른 한 변은 297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810.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10.2	**-필기용, 인쇄용, 그 밖의 그래픽용 종이와 판지(기계공정이나 화학-기계공정에 따른 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810.22	--경량(輕量)의 도포한 종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10.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10.3	**-크라프트지와 판지(필기용, 인쇄용, 그 밖의 그래픽용은 제외한다)**	
4810.31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표백한 것(화학공정에 따른 목재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 분의 95 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10.32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표백한 것(화학공정에 따른 목재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 분의 95 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10.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10.9	**-그 밖의 종이와 판지**	
4810.92	--여러 겹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10.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11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크기와는 관계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서 도포・침투・피복・표면착색・표면장식・인쇄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 4803 호・제 4809 호・제 4810 호에 열거한 것은 제외한다]**	
4811.10	-타르・역청물질・아스팔트 처리를 한 종이와 판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11.4	**-접착지와 판지**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811.41	--셀프접착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11.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11.5	**-플라스틱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키거나 피복한 종이와 판지(접착제는 제외한다)**	
4811.51	--표백한 것(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11.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11.60	-왁스・파라핀왁스・스테아린(stearin)・기름・글리세롤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키거나 피복한 종이와 판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11.90	-그 밖의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12	**제지용 펄프로 만든 필터블록, 필터슬래브, 필터플레이트**	
4812.00	-제지용 펄프로 만든 필터블록, 필터슬래브, 필터플레이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13	**궐련지(적합한 크기로 절단하였는지 또는 소책자나 튜브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4813.10	-소책자 모양이나 튜브 모양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13.20	-폭이 5 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1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14	**벽지와 이와 유사한 벽 피복재와 창용 투명지**	
4814.20	-벽지와 이와 유사한 벽 피복재[표면에 그레인한(grained) 것, 올록볼록한(embossed) 것, 착색한 것, 디자인 인쇄한 것, 그 밖의 모양으로 장식한 플라스틱층을 도포하거나 피복한 종이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1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16	**카본지, 셀프복사지, 그 밖의 복사지나 전사지(제 4809 호의 것은 제외한다), 종이로 만든 등사원지와 오프셋 플레이트(offset plate)(상자에 든 것인지에 상관없다)**	
4816.20	-셀프복사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1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17	**종이나 판지로 만든 봉투·봉함엽서·우편엽서·통신용 카드, 종이나 판지로 만든 상자·파우치·지갑·필기첩(안에 종이로 만든 문구류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4817.10	-봉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17.20	-봉함엽서·우편엽서·통신용카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17.30	-종이나 판지로 만든 상자·파우치·지갑·필기첩(안에 종이로 만든 문구류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18	**화장지와 이와 유사한 종이·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가정용이나 위생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폭이 36 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이나 특정의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손수건·클렌징티슈·타월·책상보·서비에트(serviette)·베드시트와 이와 유사한 가정용품·위생용품이나 병원용품·의류와 의류 부속품[제지용 펄프·종이·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818.10	-화장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18.20	-손수건·클렌징티슈·안면용 화장지·타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18.30	-책상보와 서비에트(serviett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818.50	-의류와 의류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1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19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상자·포장대·그 밖의 포장용기, 종이나 판지로 만든 서류상자·서류받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819.10	-상자류(골판지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19.20	-접는 상자류(골판지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19.30	-폭이 40 센티미터 이상인 포장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19.40	-그 밖의 포장대[콘(cone)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19.50	-그 밖의 포장용기[레코드 슬리브(record sleeve)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19.60	-서류상자·서류받침·보관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20	**종이나 판지로 만든 장부·회계부·노트북·주문장·영수장·편지지철·메모철·일기장과 이와 유사한 물품·연습장·압지철(blotting-pad)·바인더[예: 루스리프(loose-leaf) 등]·폴더·서류철 표지·각종 사무용 양식·삽입식 카본세트와 그 밖의 문구류, 견본용이나 수집용 앨범과 책커버**	
4820.10	-장부·회계부·노트북·주문장·영수장·편지지철·메모철·일기장과 이와 유사한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20.20	-연습장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20.30	-바인더(책표지는 제외한다)·폴더·서류철 표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820.40	-각종 사무용 양식과 삽입식 카본세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20.50	-견본용이나 수집용 앨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2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21	**종이나 판지로 만든 각종 레이블(인쇄하였는지에 상관없다)**	
4821.10	-인쇄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2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22	**제지용 펄프·종이·판지로 만든 보빈(bobbin)·스풀(spool)·콥(cop)과 이와 유사한 물품(구멍을 뚫은 것인지 또는 경화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822.10	-방직용 섬유사를 감는 데에 사용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2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23	**그 밖의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특정한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지용 펄프·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4823.20	-여과용 종이와 판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23.40	-자동기록장치용으로 인쇄된 롤·시트(sheet)·다이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23.6	**-종이나 판지로 만든 쟁반·접시·플레이트·컵과 이와 유사한 것**	
4823.61	--대나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23.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23.70	-제지용 펄프로 만든 몰드・프레스한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2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49 류	**인쇄서적・신문・회화・그 밖의 인쇄물, 수제(手製)문서・타자문서・도면**	
4901	**인쇄서적・소책자・리플릿(leaflet)과 이와 유사한 인쇄물(단매인지에 상관없다)**	
4901.10	-단매인 것(접어 포갠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901.9	**-기타**	
4901.91	--사전・백과사전과 이들의 분할 연속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901.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902	**신문・잡지・정기간행물(그림이나 광고 선전물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4902.10	-1 주에 4 회 이상 간행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9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903	**아동용 그림책과 습화책**	
4903.00	-아동용 그림책과 습화책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904	**악보[인쇄나 수제(手製)의 것으로서 제본되었는지 또는 그림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4904.00	-악보[인쇄나 수제(手製)의 것으로서 제본되었는지 또는 그림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905	**지도・해도나 이와 유사한 차트(제본한 것・벽걸이용의 것・지형도와 지구의를 포함하며, 인쇄한 것으로 한정한다)**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905.10	-지구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905.9	**-기타**	
4905.91	--책자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905.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906	**설계도와 도안[건축용・공학용・공업용・상업용・지형학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수제(手製) 원도(原圖)로 한정한다], 손으로 쓴 책자와 이들을 감광지에 사진복사・카본복사한 것**	
4906.00	-설계도와 도안[건축용・공학용・공업용・상업용・지형학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수제(手製) 원도(原圖)로 한정한다], 손으로 쓴 책자와 이들을 감광지에 사진복사・카본복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907	**사용하지 않은 우표・수입인지나 이와 유사한 물품(해당국에서 통용되거나 발행된 것으로서 액면가를 갖거나 가질 예정인 것으로 한정한다), 스탬프를 찍은 종이, 지폐, 수표, 주식・주권・채권과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	
4907.00	-사용하지 않은 우표・수입인지나 이와 유사한 물품(해당국에서 통용되거나 발행된 것으로서 액면가를 갖거나 가질 예정인 것으로 한정한다), 스탬프를 찍은 종이, 지폐, 수표, 주식・주권・채권과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908	**전사지[디칼커매니어(decalcomania)]**	
4908.10	-전사지[디칼커매니어(decalcomania)]로서 유리화할 수 있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90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909	**인쇄된 엽서 또는 그림엽서, 인쇄카드(인사용・전언용・안내용으로서 그림・봉투・장식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4909.00	-인쇄된 엽서 또는 그림엽서, 인쇄카드(인사용・전언용・안내용으로서 그림・봉투・장식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910	**캘린더(인쇄된 것으로서 캘린더 블록을 포함한다)**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910.00	-캘린더(인쇄된 것으로서 캘린더 블록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911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	
4911.10	-광고 선전물·상업용 카탈로그(catalogue)와 이와 유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911.9	**-기타**	
4911.91	--서화·디자인·사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911.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11 부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제 50 류	**견**	
5001	**누에고치(생사를 뽑는 데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5001.00	-누에고치(생사를 뽑는 데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002	**생사(꼰 것은 제외한다)**	
5002.00	-생사(꼰 것은 제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003	**견 웨이스트(waste)[생사를 뽑는 데에 적합하지 않은 누에고치, 실 웨이스트(waste),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5003.00	-견 웨이스트(waste)[생사를 뽑는 데에 적합하지 않은 누에고치, 실 웨이스트(waste),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004	**견사[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견방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5004.00	-견사[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견방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005	**견방사[견 웨이스트(waste)인 것으로 한정하며, 소매용은 제외한다]**	
5005.00	-견방사[견 웨이스트(waste)인 것으로 한정하며, 소매용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006	**견사·견방사[견 웨이스트(waste)인 것으로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누에의 거트(gut)**	
5006.00	-견사·견방사[견 웨이스트(waste)인 것으로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누에의 거트(gu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007	**견직물[견 웨이스트(waste)의 것을 포함한다]**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007.10	-견 노일(noil)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007.20	-그 밖의 직물[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견 노일(noil)의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007.90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 류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말의 털로 만든 실과 직물**	
5101	**양모[카드(card)하지도 코움(comb)하지도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101.1	**-그리지(greasy)[플리스와시한(fleece-washed) 양모를 포함한다]**	
5101.11	--깎은 양모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101.1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101.2	**-탈지한 것(탄화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5101.21	--깎은 양모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101.2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101.30	-탄화처리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102	**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카드(card)하지도 코움(comb)하지도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102.1	**-동물의 부드러운 털**	
5102.11	--캐시미어 산양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102.1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102.20	-동물의 거친 털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103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의 웨이스트(waste)[실의 웨이스트(waste)를 포함하며,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은 제외한다]**	
5103.1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노일(noil)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103.2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그 밖의 웨이스트(waste)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103.30	-동물의 거친 털의 웨이스트(waste)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104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의 가닛스톡(garnetted stock)**	
5104.00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의 가닛스톡(garnetted stock)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105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으로 한정하며, 코움(comb)한 단편 모양인 양모를 포함한다]**	
5105.10	-카드(card)한 양모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105.2	**-울톱과 그 밖의 코움(comb)한 양모**	
5105.21	--코움(comb)한 양모(단편 모양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105.2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105.3	**-동물의 부드러운 털[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으로 한정한다]**	
5105.31	--캐시미어 산양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105.3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105.40	-동물의 거친 털[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106	**카드(card)한 양모사(소매용은 제외한다)**	
5106.10	-양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106.20	-양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107	**코움(comb)한 양모사(소매용은 제외한다)**	
5107.10	-양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107.20	-양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108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실[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으로 한정하며, 소매용은 제외한다]**	
5108.10	-카드(card)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108.20	-코움(comb)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109	**양모사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실(소매용으로 한정한다)**	
5109.1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10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110	**동물의 거친 털로 만든 실이나 말의 털로 만든 실[짐프한(gimped) 말의 털로 만든 실을 포함하며, 소매용인지에 상관없다]**	
5110.00	-동물의 거친 털로 만든 실이나 말의 털로 만든 실[짐프한(gimped) 말의 털로 만든 실을 포함하며, 소매용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111	**직물[카드(card)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5111.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5111.11	--1 제곱미터당 중량이 300 그램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111.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111.20	-기타(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111.30	-기타(주로 인조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11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112	**직물[코움(comb)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5112.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5112.11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0 그램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11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112.20	-기타(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112.30	-기타(주로 인조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11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113	**직물(동물의 거친 털이나 말의 털의 것으로 한정한다)**	
5113.00	-직물(동물의 거친 털이나 말의 털의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2 류	**면**	
5201	**면[카드(card)하지도 코움(comb)하지도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201.00	-면[카드(card)하지도 코움(comb)하지도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2	**면 웨이스트(waste)[실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5202.10	-실(yarn)의 웨이스트(waste)[실(thread)의 웨이스트(waste)를 포함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2.9	**-기타**	
5202.91	--가닛스톡(garnetted stock)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2.9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3	**면[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으로 한정한다]**	
5203.00	-면[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4	**면 재봉사(소매용인지에 상관없다)**	
5204.1	**-소매용이 아닌 것**	
5204.11	--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4.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4.20	-소매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205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5205.1	-단사[코움(comb)하지 않은 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5205.11	--714.29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12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13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14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15	--125 데시텍스 미만인 것(미터식 번수 80 수 초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2	-단사[코움(comb)한 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5205.21	--714.29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22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23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24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26	--125 데시텍스 미만 106.38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80 수 초과 94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27	--106.38 데시텍스 미만 83.33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94 수 초과 120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28	--83.33 데시텍스 미만인 것(미터식 번수 120 수 초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3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코움(comb)하지 않은 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5205.31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32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33	--구성하는 단사가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34	--구성하는 단사가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205.35	--구성하는 단사가 125 데시텍스 미만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80 수 초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4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코움(comb)한 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5205.41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42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43	--구성하는 단사가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44	--구성하는 단사가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46	--구성하는 단사가 125 데시텍스 미만 106.38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80 수 초과 94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47	--구성하는 단사가 106.38 데시텍스 미만 83.33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94 수 초과 120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5.48	--구성하는 단사가 83.33 데시텍스 미만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20 수 초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6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인 것으로 한정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5206.1	**-단사[코움(comb)하지 않은 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5206.11	--714.29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6.12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6.13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6.14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6.15	--125 데시텍스 미만인 것(미터식 번수 80 수 초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6.2	**-단사[코움(comb)한 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5206.21	--714.29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6.22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206.23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6.24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6.25	--125 데시텍스 미만인 것(미터식 번수 80 수 초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6.3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코움(comb)하지 않은 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5206.31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6.32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6.33	--구성하는 단사가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6.34	--구성하는 단사가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6.35	--구성하는 단사가 125 데시텍스 미만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80 수 초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6.4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코움(comb)한 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5206.41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6.42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6.43	--구성하는 단사가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6.44	--구성하는 단사가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6.45	--구성하는 단사가 125 데시텍스 미만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80 수 초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7	**면사(재봉사는 제외하며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5207.10	-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8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208.1	-표백하지 않은 것	
5208.11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8.12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8.13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8.19	--그 밖의 직물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8.2	-표백한 것	
5208.21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8.22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8.23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8.29	--그 밖의 직물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8.3	-염색한 것	
5208.31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8.32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8.33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8.3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8.4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5208.41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8.42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8.43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8.4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8.5	-날염한 것	
5208.51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8.52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8.5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9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0 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209.1	-표백하지 않은 것	
5209.11	--평직물(平織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9.12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9.1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9.2	-표백한 것	
5209.21	--평직물(平織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9.22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9.2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9.3	-염색한 것	
5209.31	--평직물(平織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9.32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9.3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9.4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5209.41	--평직물(平織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9.42	--데님(denim)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9.43	--3 올이나 4 올의 그 밖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9.4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9.5	-날염한 것	
5209.51	--평직물(平織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9.52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09.5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10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이고 주로 인조섬유와 혼방한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210.1	-표백하지 않은 것	
5210.11	--평직물(平織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10.1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10.2	-표백한 것	
5210.21	--평직물(平織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10.2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10.3	-염색한 것	
5210.31	--평직물(平織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10.32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210.3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10.4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5210.41	--평직물(平織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10.4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10.5	**-날염한 것**	
5210.51	--평직물(平織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10.5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11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이고 주로 인조섬유와 혼방한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0 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211.1	**-표백하지 않은 것**	
5211.11	--평직물(平織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11.12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11.1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11.20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11.3	**-염색한 것**	
5211.31	--평직물(平織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11.32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11.3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11.4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5211.41	--평직물(平織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11.42	--데님(denim)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11.43	--3 올이나 4 올의 그 밖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11.4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11.5	**-날염한 것**	
5211.51	--평직물(平織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11.52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11.5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12	**그 밖의 면직물**	
5212.1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0 그램 이하인 것**	
5212.11	--표백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12.12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12.13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12.14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212.15	--날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12.2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0 그램 초과인 것	
5212.21	--표백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12.22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12.23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12.24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212.25	--날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3 류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 종이실(paper yarn)과 종이실로 만든 직물	
5301	아마(생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아마의 토우(tow)와 웨이스트(waste)[실의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5301.10	-생아마나 침지(沈漬)아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301.2	-줄기를 으깨거나(broken) 두드리거나(scutched) 훑어 내리거나(hackled)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아마(방적한 것은 제외한다)	
5301.21	--줄기를 으깨거나(broken) 두드린(scutched)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301.2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301.30	-아마의 토우(tow)와 웨이스트(waste)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302	대마(생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대마의 토우(tow)와 웨이스트(waste)[실의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5302.10	-생대마나 침지(沈漬)대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302.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303	황마와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靭皮)섬유[아마·대마·라미(ramie)는 제외하며, 생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 섬유의 토우(tow)와 웨이스트(waste)[실의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5303.10	-황마와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靭皮)섬유[생것이나 침지(沈漬)한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303.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305	코코넛·아바카(마닐라마)·라미(ramie)와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생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토우(tow)·노일(noil)·웨이스트(waste)[실의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다]	
5305.00	-코코넛·아바카(마닐라마)·라미(ramie)와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생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토우(tow)·노일(noil)·웨이스트(waste)[실의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306	**아마사**	
5306.10	-단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306.20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307	**제 5303 호의 황마나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靭皮) 섬유사**	
5307.10	-단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307.20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308	**그 밖의 식물성 섬유사와 종이실(paper yarn)**	
5308.10	-코이어(coir)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308.20	-대마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30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309	**아마직물**	
5309.1	**-아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85 이상인 것**	
5309.1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309.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309.2	**-아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인 것**	
5309.2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309.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310	**제 5303 호의 황마나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靭皮) 섬유의 직물**	
5310.10	-표백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31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311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의 직물, 종이실(paper yarn)의 직물**	
5311.00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의 직물, 종이실(paper yarn)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제 54 류	인조필라멘트, 인조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	
5401	인조필라멘트의 재봉사(소매용인지에 상관없다)	
5401.10	-합성필라멘트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1.20	-재생·반(半)합성 필라멘트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	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하며, 67 데시텍스 미만인 합성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	
5402.1	-강력사[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으로 한정하며, 텍스처화한(textured) 것인지에 상관없다]	
5402.11	--아라미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1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20	-강력사[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 한정하며, 텍스처화한(textured) 것인지에 상관없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3	-텍스처드사	
5402.31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구성하는 단사가 50 텍스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32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구성하는 단사가 50 텍스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33	--폴리에스테르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34	--폴리프로필렌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3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4	-그 밖의 실(단사로서 꼬임이 없거나 미터당 50 회 이하의 꼬임의 것으로 한정한다)	
5402.44	--탄성사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45	--기타(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46	--기타[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서 부분적으로 방향성(方向性)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47	--기타(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48	--기타(폴리프로필렌의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4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5	-그 밖의 실(단사로서 미터당 꼬임이 50 회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402.51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52	--폴리에스테르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53	--폴리프로필렌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5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6	-그 밖의 실[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402.61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62	--폴리에스테르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63	--폴리프로필렌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6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3	**재생·반(半)합성 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하며, 67 데시텍스 미만인 재생·반(半)합성 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	
5403.10	-강력사[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3.3	**-그 밖의 실(단사)**	
5403.31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꼬임이 없거나, 꼬임이 미터당 120 회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3.32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꼬임이 미터당 120 회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3.33	--초산셀룰로오스의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3.3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3.4	**-그 밖의 실[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5403.41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3.42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3.4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4	**합성모노필라멘트(67 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방직용 합성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예: 인조스트로(straw)](시폭이 5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404.1	**-모노필라멘트**	
5404.11	--탄성사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4.12	--기타(폴리프로필렌의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4.1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4.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5	**재생·반(半)합성 모노필라멘트(67 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재생·반(半)합성 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예: 인조 스트로(straw)](시폭이 5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405.00	-재생·반(半)합성 모노필라멘트(67 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재생·반(半)합성 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예: 인조 스트로(straw)](시폭이 5 밀리미터 이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406	**인조필라멘트사(재봉사는 제외하며,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5406.00	-인조필라멘트사(재봉사는 제외하며,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7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 5404 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	
5407.10	-강력사(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 또는 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7.20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직조한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7.30	-제 11 부의 주 제 9 호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7.4	**-그 밖의 직물(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5407.4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7.42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7.43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7.44	--날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7.5	**-그 밖의 직물(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5407.5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7.52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7.53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7.54	--날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7.6	-그 밖의 직물(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5407.61	--비(非)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7.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7.7	-그 밖의 직물(합성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5407.7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7.72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7.73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407.74	--날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7.8	-그 밖의 직물(합성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인 것으로 주로 면과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5407.8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7.82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7.83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7.84	--날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7.9	-그 밖의 직물	
5407.9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7.92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7.93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7.94	--날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8	재생·반(半)합성 필라멘트사의 직물 (제 5405 호의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	
5408.1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강력사로 직조한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8.2	-그 밖의 직물[재생·반(半)합성 필라멘트·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5408.2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8.22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8.23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8.24	--날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8.3	-그 밖의 직물	
5408.3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8.32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8.33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8.34	--날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5 류	**인조스테이플섬유**	
5501	합성필라멘트 토우(tow)	
5501.1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1.20	-폴리에스테르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1.30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1.40	-폴리프로필렌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1.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2	재생·반(半)합성 필라멘트 토우(tow)	
5502.1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2.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503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card)·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	
5503.1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5503.11	--아라미드(aramid)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3.1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3.20	-폴리에스테르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3.30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3.40	-폴리프로필렌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3.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4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카드(card)·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	
5504.1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4.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5	인조섬유의 웨이스트(waste)[노일(noil)· 실의 웨이스트·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5505.10	-합성섬유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5.20	-재생·반(半)합성 섬유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6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card)·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5506.1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6.20	-폴리에스테르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6.30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6.40	-폴리프로필렌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6.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7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카드(card) 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5507.00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카드(card)·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8	인조스테이플섬유의 재봉사(소매용인지에 상관없다)	
5508.10	-합성스테이플섬유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8.20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9	합성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5509.1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509.11	--단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9.12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9.2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5509.21	--단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9.22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9.3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5509.31	--단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9.32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9.4	-그 밖의 실(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5509.41	--단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9.42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9.5	-그 밖의 실(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5509.51	--주로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9.52	--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9.53	--주로 면과 혼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9.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9.6	-그 밖의 실[아크릴이나 모다크릴 (modacrylic) 스테이플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5509.61	--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9.62	--주로 면과 혼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9.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9.9	-그 밖의 실	
5509.91	--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9.92	--주로 면과 혼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09.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0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사 (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5510.1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5510.11	--단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0.12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0.20	-그 밖의 실(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0.30	-그 밖의 실(주로 면과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510.90	-그 밖의 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1	인조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는 제외하며,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5511.10	-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1.20	-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1.30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2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 (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5512.1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5512.1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2.2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5512.2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2.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2.9	-기타	
5512.9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2.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3	주로 면과 혼방한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 (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인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7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513.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5513.11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3.12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3 올이나 4 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3.13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3.1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3.2	-염색한 것	
5513.21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3.23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3.2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3.3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513.31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3.3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3.4	-날염한 것	
5513.41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3.4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4	주로 면과 혼방한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인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70 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514.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5514.11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4.12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3 올이나 4 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4.1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4.2	-염색한 것	
5514.21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4.22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3 올이나 4 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4.23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4.2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4.3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4.4	-날염한 것	
5514.41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4.42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3 올이나 4 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4.43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4.4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5	합성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5515.1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	
5515.11	--주로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 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5.12	--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5.13	--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51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5.2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 스테이플섬유의 것	
5515.21	--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5.22	--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5.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5.9	-그 밖의 직물	
5515.91	--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5.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6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직물	
5516.1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5516.1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6.12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6.13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6.14	--날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6.2	-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으로서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인 것	
5516.2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6.22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6.23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6.24	--날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6.3	-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으로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인 것	
5516.3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6.32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6.33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6.34	--날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6.4	-주로 면과 혼방한 것으로서 재생· 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인 것	
5516.4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6.42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6.43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6.44	--날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6.9	-기타	
5516.9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516.92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6.93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5516.94	--날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6 류	**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 특수사,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 케이블과 이들의 제품**	
5601	방직용 섬유의 워딩(wadding)과 그 제품, 방직용 섬유로서 길이가 5 밀리미터 이하인 것(플록), 방직용 섬유의 더스트(dust)와 밀네프(mill nep)	
5601.2	-워딩(wadding)과 워딩(wadding)의 그 밖의 제품	
5601.21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1.22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1.2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1.30	-섬유의 플록(flock), 더스트(dust), 밀네프(mill nep)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2	펠트(felt)(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602.10	-니들룸펠트(needleloom felt)와 스티치본드(stitch-bonded) 섬유직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2.2	-그 밖의 펠트(felt)(침투·도포· 피복하거나 적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602.2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2.29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2.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3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603.1	-인조필라멘트의 것	
5603.11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5 그램 이하인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3.12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5 그램 초과 70 그램 이하인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3.13	--1 제곱미터당 중량이 70 그램 초과 150 그램 이하인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3.14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을 초과하는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3.9	-기타	
5603.91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5 그램 이하인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3.92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5 그램 초과 70 그램 이하인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3.93	--1 제곱미터당 중량이 70 그램 초과 150 그램 이하인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603.94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을 초과하는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4	고무실과 고무끈(방직용 섬유로 피복한 것으로 한정한다), 방직용 섬유사· 제 5404 호나 제 5405 호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물품[고무나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시드한(sheathed) 것으로 한정한다]	
5604.10	-고무실과 고무끈(방직용 섬유로 피복한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4.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5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짐프한 (gimped)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직용 섬유사, 제 5404 호나 제 5405 호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실·스트립(strip)·가루 모양으로 금속과 결합한 것이나 금속을 피복한 것으로 한정한다]	
5605.00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짐프한 (gimped)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직용 섬유사, 제 5404 호나 제 5405 호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실·스트립(strip)·가루 모양의 금속과 결합한 것이나 금속을 피복한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6	짐프사(Gimped yarn)와 제 5404 호나 제 5405 호에 열거한 스트립(strip)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짐프한(gimped) 것으로 한정하며 제 5605 호의 것과 짐프한(gimped) 말의 털로 만든 실은 제외한다], 셔닐사(chenille yarn)[플록(flock) 모양의 셔닐사(chenille yarn)를 포함한다], 루프웨일사(loop wale-yarn)	
5606.00	-짐프사(Gimped yarn)와 제 5404 호나 제 5405 호에 열거한 스트립(strip)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짐프한(gimped) 것으로 한정하며 제 5605 호의 것과 짐프한(gimped) 말의 털로 만든 실은 제외한다], 셔닐사(chenille yarn)[플록(flock) 모양의 셔닐사(chenille yarn)를 포함한다], 루프웨일사(loop wale-yarn)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7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엮거나 짠 것인지, 고무나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시드한(sheathed) 것인지에 상관없다]	
5607.2	-사이잘(sisal)마나 아가베(Agave)속의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607.21	--포장용 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7.2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7.4	-폴리에틸렌이나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든 것	
5607.41	--포장용 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7.4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607.50	-그 밖의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7.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8	매듭이 있는 그물감[끈·배의 밧줄 (cordage)·로프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만든 어망, 그 밖의 제품으로 만든 그물	
5608.1	-인조섬유로 만든 것	
5608.11	--제품으로 된 어망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8.1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8.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609	제 5404 호나 제 5405 호의 실·스트립 (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의 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609.00	-실·제 5404 호나 제 5405 호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의 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7 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	
5701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매듭이 있는 것으로 한정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5701.1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701.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702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직조한 것으로 한정하고, 터프트(tuft)하거나 플록(flock)한 것은 제외하고,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켈렘(kelem)·슈맥(schumack)·카라마니(karamanie)와 이와 유사한 손으로 짠 러그(rug)를 포함한다]	
5702.10	-켈렘(kelem)·슈맥(schumack)·카라마니(karamanie)와 이와 유사한 손으로 짠 러그(rug)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702.20	-코코넛섬유(코이어)로 만든 바닥깔개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702.3	-기타[파일(pile)직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제품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	
5702.3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702.32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702.3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702.4	-기타[파일(pile)직물로 만든 것으로서 제품으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5702.4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702.42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702.4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702.50	-기타[파일(pile)직물로 만든 것과 제품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702.9	-기타[파일(pile)직물로 만든 것은 제외하며, 제품으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5702.9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702.92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702.9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703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터프트(tuft)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5703.1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703.20	-나일론이나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703.30	-그 밖의 인조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703.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704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펠트(felt)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고, 터프트(tuft)하거나 플록(flock)한 것은 제외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5704.10	-타일(tile)(표면적이 최고 0.3 제곱미터인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704.20	-타일(tile)(표면적이 최고 0.3 제곱미터 초과 1 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704.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705	그 밖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5705.00	-그 밖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8 류	**특수직물, 터프트(tuft)한 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tapestry), 트리밍(trimming), 자수천**	
5801	파일(pile)직물・셔닐(chenille)직물 (제 5802 호나 제 5806 호에 해당하는 직물은 제외한다)	
5801.1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1.2	-면으로 만든 것	
5801.21	--절단되지 않은 위(緯)파일(pile)직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1.22	--절단된 코듀로이(corduroy)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1.23	--그 밖의 위(緯)파일(pile)직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1.26	--셔닐(chenille)직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1.27	--경(經)파일(pile)직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1.3	-인조섬유로 만든 것	
5801.31	--절단되지 않은 위(緯)파일(pile)직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801.32	--절단된 코듀로이(corduroy)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1.33	--그 밖의 위(緯)파일(pile)직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1.36	--셔닐(chenille)직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1.37	--경(經)파일(pile) 직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1.90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2	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와 이와 유사한 테리(terry)직물[제 5806 호에 해당하는 세폭(細幅)직물은 제외한다], 터프트(tuft)한 직물(제 5703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5802.1	-면으로 만든 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와 이와 유사한 테리(terry)직물	
5802.11	--표백하지 않은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2.1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2.20	-그 밖의 섬유로 만든 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와 이와 유사한 테리(terry)직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2.30	-터프트(tuft)한 직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3	거즈[제 5806 호에 해당하는 세폭(細幅) 직물은 제외한다]	
5803.00	-거즈[제 5806 호에 해당하는 세폭(細幅)직물은 제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4	튈(tulle)과 그 밖의 망직물(제직한것·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레이스[원단 상태·스트립 (strip)이나 모티프(motif)로 된 것으로 한정하며, 제 6002 호부터 제 6006 호까지의 편물은 제외한다]	
5804.10	-튈(tulle)과 그 밖의 망직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4.2	-기계로 만든 레이스	
5804.21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4.2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4.30	-손으로 만든 레이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5	고블랭(gobelin)직·플랜더스(flanders)직·오뷔송(aubusson)직·보베(beauvais)직과 이와 유사한 손으로 짠 태피스트리 (tapestry), 자수의 태피스트리 (tapestry)[예: 프티포인트(petit point)·십자수](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5805.00	-고블랭(gobelin)직·플랜더스(flanders)직·오뷔송(aubusson)직·보베(beauvais)직과 이와 유사한 손으로 짠 태피스트리(tapestry), 자수의 태피스트리(tapestry)[예: 프티포인트(petit point)·십자수](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6	세폭(細幅)직물(제 5807 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과 접착제로 접착한 경사(經絲) 만으로 이루어진 세폭(細幅)직물(볼덕)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806.10	-파일(pile)직물[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와 이와 유사한 테리(terry)직물], 셔닐(chenille)직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6.20	-그 밖의 직물(탄성사나 고무실의 중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6.3	-그 밖의 직물	
5806.31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6.32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6.3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6.40	-접착제로 접착한 경사(經絲)만으로 이루어진 세폭(細幅)직물(볼덕)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7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레이블(label), 배지(badge)와 이와 유사한 물품[원단 상태인 것·스트립(strip) 모양인 것·특정한 모양이나 크기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하며, 자수한 것은 제외한다]	
5807.10	-직조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7.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8	원단 상태인 브레이드(braid)와 원단 상태인 장식용 트리밍(trimming)(자수가 없는 것으로 한정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술·폼퐁 (pompon)과 이와 유사한 물품	
5808.10	-브레이드(braid)(원단 상태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8.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09	금속사의 직물과 제 5605 호에 해당하는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의 직물(의류·실내용품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하며, 따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5809.00	-금속사의 직물과 제 5605 호에 해당하는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의 직물(의류·실내용품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하며, 따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10	자수천[원단 상태인 것·스트립(strip) 모양인 것·모티프(motif)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5810.10	-자수천(바탕천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10.9	-그 밖의 자수천	
5810.91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10.92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10.9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811	원단 상태인 방직용 누비제품(바느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패딩과 조합한 한 층 이상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제 5810 호의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자수천은 제외한다)	
5811.00	-원단 상태인 방직용 누비제품(바느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패딩과 조합한 한 층 이상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제 5810 호의 자수천은 제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9 류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공업용인 방직용 섬유제품**	
5901	서적 장정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서 검(gum)이나 전분질의 물품을 도포한 것, 투사포(tracing cloth), 회화용 캔버스, 모자 제조에 사용되는 버크럼(buckram)과 이와 유사한 경화가공된 방직용 섬유의 직물	
5901.10	-서적 장정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서 검(gum)이나 전분질의 물품을 도포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901.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902	강력사의 타이어코드(tyre cord)직물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폴리에스테르・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으로 한정한다]	
5902.1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902.20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902.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903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 5902 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	
5903.10	-폴리(염화비닐)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903.20	-폴리우레탄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903.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904	리놀륨과 방직용 섬유직물의 뒷면을 도포하거나 피복한 것으로 만든 바닥깔개(특정한 모양으로 절단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904.10	-리놀륨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904.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905	방직용 섬유로 만든 벽 피복재	
5905.00	-방직용 섬유로 만든 벽 피복재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906	고무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제 5902 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	
5906.10	-폭이 20 센티미터 이하인 접착테이프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906.9	-기타	
5906.91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906.9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907	그 밖의 방법으로 침투·도포하거나 피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극장용 배경이나 스튜디오용 배경막이나 이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그림이 그려진 캔버스	
5907.00	-그 밖의 방법으로 침투·도포하거나 피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극장용 배경이나 스튜디오용 배경막이나 이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그림이 그려진 캔버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908	램프용·스토브용·라이터용·양초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심지(직조·편조·편직한 것으로 한정한다), 백열가스 맨틀(mantle) 과 백열가스 맨틀(mantle)용 관 모양의 편물(침투시켰는지에 상관없다)	
5908.00	-램프용·스토브용·라이터용·양초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심지(직조·편조·편직한 것으로 한정한다), 백열가스 맨틀(mantle)과 백열가스 맨틀(mantle)용 관 모양의 편물(침투시켰는지에 상관없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909	방직용 섬유로 만든 호스와 이와 유사한 관 모양의 물품(다른 재료를 내장·보강한 것인지 또는 부속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5909.00	-방직용 섬유로 만든 호스와 이와 유사한 관 모양의 물품(다른 재료를 내장·보강한 것인지 또는 부속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910	전동(transmission)용·컨베이어용 벨트 또는 벨팅(belting)(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 또는 금속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910.00	-전동(transmission)용·컨베이어용 벨트 또는 벨팅(belting)(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 또는 금속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911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 7 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	
5911.10	-침포(針布)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펠트(felt), 펠트(felt)로 안을 붙인 직물로서 고무·가죽·그 밖의 물품을 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물품으로 그 밖의 기술적 용도로 사용하는 이와 유사한 직물[위빙스핀들(weaving spindle)(위빙빔)을 피복하기 위한 고무를 침투시킨 벨벳으로 된 세폭(細幅)직물을 포함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911.20	-볼팅 클로스(bolting cloth)(제품인지에 상관없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5911.3	-제지용 기계나 이와 유사한 기계(예: 펄프나 석면시멘트 제조용)에 사용하는 것으로 엔드리스(endless)나 연결구를 갖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와 펠트(felt)류	
5911.31	--1 제곱미터당 중량이 650 그램 미만인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911.32	--1 제곱미터당 중량이 650 그램 이상인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911.40	-착유기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여과포(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든 것을 포함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911.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60 류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	
6001	파일(pile) 편물[롱파일(long pile) 편물과 테리(terry) 편물을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001.10	-롱파일(long pile) 편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1.2	-루프파일(looped pile) 편물	
6001.21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1.22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1.2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1.9	-기타	
6001.91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1.92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1.9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2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폭이 30 센티미터 이하이며 탄성사나 고무실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 이상인 것으로서 제 6001 호의 것은 제외한다)	
6002.40	-탄성사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 이상이며, 고무실은 함유하지 않은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2.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3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폭이 30 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제 6001 호나 제 6002 호의 것은 제외한다)	
6003.1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3.20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3.30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3.4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3.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4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폭이 30 센티미터를 초과하며 탄성사나 고무실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 이상인 것으로서 제 6001 호의 것은 제외한다)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004.10	-탄성사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 이상이며, 고무실은 함유하지 않은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4.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5	경(經)편직 편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 6001 호부터 제 6004 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6005.2	-면으로 만든 것	
6005.2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5.22	--염색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5.23	--서로 다른 색실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5.24	--날염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5.3	-합성섬유로 만든 것	
6005.35	--이 류의 소호주 제 1 호에 규정된 직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5.36	--기타(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5.37	--기타(염색한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5.38	--기타(서로 다른 색실의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5.39	--기타(날염한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5.4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6005.4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5.42	--염색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5.43	--서로 다른 색실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5.44	--날염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5.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6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6006.1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6.2	-면으로 만든 것	
6006.2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6.22	--염색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6.23	--서로 다른 색실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6.24	--날염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6.3	-합성섬유로 만든 것	
6006.3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6.32	--염색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6.33	--서로 다른 색실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6.34	--날염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6.4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6006.4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006.42	--염색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6.43	--서로 다른 색실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6.44	--날염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006.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61 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에만 적용한다)**	
6101	남성용이나 소년용 오버코트(overcoat)·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록(cloak)·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윈드치터(wind-cheater)·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제 6103 호의 것은 제외한다)	
6101.20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1.30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1.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2	여성용이나 소녀용 오버코트(overcoat)·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록(cloak)·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윈드치터(wind-cheater)·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제 6104 호의 것은 제외한다)	
6102.1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2.20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2.30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2.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3	남성용이나 소년용 슈트·앙상블 (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긴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	
6103.10	-슈트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3.2	-앙상블(ensemble)	
6103.2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3.23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3.2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3.3	-재킷과 블레이저(blazer)	
6103.3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3.3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3.33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3.3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3.4	-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	
6103.4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3.4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3.43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3.4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4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	
6104.1	-슈트	
6104.13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4.1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4.2	-앙상블(ensemble)	
6104.2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4.23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4.2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4.3	-재킷과 블레이저(blazer)	
6104.3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4.3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4.33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4.3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4.4	-드레스	
6104.4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4.4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4.43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4.44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4.4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4.5	-스커트와 치마바지	
6104.5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4.5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4.53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4.5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4.6	-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	
6104.6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4.6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4.63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104.6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5	남성용이나 소년용 셔츠(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05.10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5.20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5.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6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셔츠·셔츠블라우스(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06.10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6.20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6.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7	남성용이나 소년용 언더팬츠·브리프 (brief)·나이트셔츠·파자마·목욕용 가운·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07.1	-언더팬츠와 브리프(brief)	
6107.11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7.12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7.1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7.2	-나이트셔츠와 파자마	
6107.21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7.22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7.2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7.9	-기타	
6107.91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7.9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8	여성용이나 소녀용 슬립·페티코트 (petticoat)·브리프(brief)·팬티·나이트드레스·파자마·네그리제(negligee)·목욕용 가운·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08.1	-슬립과 페티코트(petticoat)	
6108.11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8.1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8.2	-브리프(brief)와 팬티	
6108.21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8.22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8.2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8.3	-나이트드레스와 파자마	
6108.31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108.32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8.3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8.9	-기타	
6108.91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8.92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8.9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9	티셔츠·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09.10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09.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0	저지(jersey)·풀오버(pullover)·카디건(cardigan)·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10.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6110.11	--양모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0.12	--캐시미어 산양의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0.1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0.20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0.30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0.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1	유아용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11.20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1.30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1.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2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12.1	-트랙슈트	
6112.11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2.12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2.1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2.20	-스키슈트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2.3	-남성용이나 소년용 수영복	
6112.31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2.3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2.4	-여성용이나 소녀용 수영복	
6112.41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2.4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113	의류(제 5903 호・제 5906 호・제 5907 호에 해당하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13.00	-의류(제 5903 호・제 5906 호・제 5907 호에 해당하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4	그 밖의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14.20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4.30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4.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5	팬티호스(panty hose)・타이츠(tights) ・스타킹과 그 밖의 양말류[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와 바닥을 대지 않은 신발류를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15.10	-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5.2	-그 밖의 팬티호스(panty hose)와 타이츠(tights)	
6115.21	--합성섬유로 만든 것(구성하는 단사가 67 데시텍스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5.22	--합성섬유로 만든 것(구성하는 단사가 67 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5.2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5.30	-그 밖의 여성용인 전길이(full-length)나 무릎길이(knee-length)의 양말(구성하는 단사가 67 데시텍스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5.9	-기타	
6115.94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5.95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5.96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5.9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6	장갑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16.10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하거나 피복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6.9	-기타	
6116.9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6.9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6.93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6.9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7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의류부속품과 의류·의류부속품의 부분품	
6117.10	-숄(shawl)·스카프·머플러·만틸라(mantilla)·베일(veil)과 이와 유사한 물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7.80	-그 밖의 부속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117.90	-부분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62 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편물은 제외한다)**	
6201	남성용이나 소년용 오버코트(overcoat)·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록(cloak)·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윈드치터(wind-cheater)·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제 6203 호의 것은 제외한다)	
6201.1	-오버코트(overcoat)·레인코트(raincoat) ·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록(cloak)과 이와 유사한 의류	
6201.1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1.1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1.13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1.1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1.9	-기타	
6201.9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1.9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1.93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1.9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2	여성용이나 소녀용 오버코트(overcoat)·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록(cloak)·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윈드치터(wind-cheater)·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제 6204 호의 것은 제외한다)	
6202.1	-오버코트(overcoat)·레인코트(raincoat) ·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록(cloak)과 이와 유사한 의류	
6202.1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2.1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2.13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2.1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2.9	-기타	
6202.9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2.9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2.93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2.9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203	남성용이나 소년용 슈트・앙상블 (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긴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	
6203.1	-슈트	
6203.1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3.12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3.1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3.2	-앙상블(ensemble)	
6203.2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3.23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3.2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3.3	-재킷과 블레이저(blazer)	
6203.3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3.3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3.33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3.3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3.4	-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	
6203.4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3.4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3.43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3.4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	
6204.1	-슈트	
6204.1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1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13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1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2	-앙상블(ensemble)	
6204.2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2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23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2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3	-재킷과 블레이저(blazer)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204.3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3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33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3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4	-드레스	
6204.4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4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43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44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4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5	-스커트와 치마바지	
6204.5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5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53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5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6	-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	
6204.6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6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63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4.6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5	남성용이나 소년용 셔츠	
6205.20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5.30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5.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6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셔츠·셔츠블라우스	
6206.10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6.2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6.30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6.40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6.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7	남성용이나 소년용 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언더팬츠·브리프(brief)·나이트셔츠·파자마·목욕용 가운·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	
6207.1	-언더팬츠와 브리프(brief)	
6207.11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7.1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207.2	-나이트셔츠와 파자마	
6207.21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7.22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7.2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7.9	-기타	
6207.91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7.9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8	여성용이나 소녀용 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슬립・페티코트 (petticoat)・브리프(brief)・팬티・나이트드레스・파자마・네그리제(negligee)・목욕용 가운・ 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의류	
6208.1	-슬립과 페티코트(petticoat)	
6208.11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8.1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8.2	-나이트드레스와 파자마	
6208.21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8.22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8.2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8.9	-기타	
6208.91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8.92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8.9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9	유아용 의류와 그 부속품	
6209.20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9.30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09.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0	의류(제 5602 호・제 5603 호・제 5903 호・제 5906 호・제 5907 호의 직물류의 제품으로 한정한다)	
6210.10	-제 5602 호나 제 5603 호의 직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0.20	-그 밖의 의류(소호 제 6201.11 호부터 제 6201.19 호까지에 열거된 종류의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0.30	-그 밖의 의류(소호 제 6202.11 호부터 제 6202.19 호까지에 열거된 종류의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0.40	-그 밖의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0.50	-그 밖의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1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211.1	-수영복	
6211.11	--남성용이나 소년용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1.12	--여성용이나 소녀용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1.20	-스키슈트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1.3	-남성용이나 소년용 그 밖의 의류	
6211.3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1.33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1.3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1.4	-여성용이나 소녀용 그 밖의 의류	
6211.4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1.43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1.4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2	브래지어·거들·코르셋(corset)·브레이스(braces)·서스펜더(suspender)·가터 (garter)와 이와 유사한 제품, 이들의 부분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인지에 상관없다)	
6212.10	-브래지어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2.20	-거들과 팬티거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2.30	-코르슬렛(corselette)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2.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3	손수건	
6213.20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3.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4	숄(shawl)·스카프·머플러·만틸라 (mantilla)·베일(veil)과 이와 유사한 물품	
6214.10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4.2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4.30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4.4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4.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5	넥타이류	
6215.10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5.20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5.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6	장갑류	
6216.00	-장갑류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7	그 밖의 제품으로 된 의류부속품, 의류·의류부속품의 부분품(제 6212 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한다)	
6217.10	-부속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217.90	-부분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63 류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그 밖의 물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방직용 섬유제품, 넝마**	
6301	모포류와 여행용 러그(rug)	
6301.10	-전기모포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301.2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모포(전기모포는 제외한다)와 여행용 러그(rug)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301.30	-면으로 만든 모포(전기모포는 제외한다)와 여행용 러그(rug)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301.40	-합성섬유로 만든 모포(전기모포는 제외한다)와 여행용 러그(rug)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301.90	-그 밖의 모포와 여행용 러그(rug)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302	베드린넨(bed linen)·테이블린넨(table linen)·토일렛린넨(toilet linen)·주방린넨(kitchen linen)	
6302.10	-베드린넨(bed linen)(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302.2	-그 밖의 베드린넨(bed linen)(날염된 것으로 한정한다)	
6302.21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302.22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302.2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302.3	-그 밖의 베드린넨(bed linen)	
6302.31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302.32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302.3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302.40	-테이블린넨(table linen)(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302.5	-그 밖의 테이블린넨(table linen)	
6302.51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302.53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302.5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302.60	-면으로 만든 토일렛린넨(toilet linen)과 주방린넨(kitchen linen)[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테리(terry)직물의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302.9	-기타	
6302.91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302.93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302.9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303	커튼[드레이프(drape)를 포함한다]·실내용 블라인드(blind), 커튼이나 침대용 밸런스(valance)	
6303.1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	
6303.12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303.1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303.9	-기타	
6303.91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303.92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303.9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304	그 밖의 실내용품(제 9404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6304.1	-침대덮개	
6304.11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304.1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304.20	-베드 네트(이 류의 소호주 제 1 호에 규정된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304.9	-기타	
6304.91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304.92	--면으로 만든 것(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304.93	--합성섬유로 만든 것(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304.9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305	포장용 빈 포대	
6305.10	-황마나 제 5303 호의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靭皮)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305.20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305.3	-인조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305.32	--중간 벌크컨테이너(신축성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305.33	--기타[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 스트립(strip)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305.3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305.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306	방수포(tarpaulin)·차양·차일, 텐트, 돛[보트용·세일보드(sailboard)용·랜드크래프트(landcraft)용], 캠프용품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306.1	-방수포(tarpaulin)·천막·차양	
6306.12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306.1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306.2	-텐트	
6306.22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6.2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6.30	-돛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6.40	-압축공기식 매트리스(mattress)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306.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307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	
6307.10	-마루닦이포·접시닦이포·더스터(duster)와 이와 유사한 청소용 포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307.20	-구명재킷과 구명벨트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307.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308	러그(rug)용·태피스트리(tapestry)용·자수한 테이블보용·서비에트 (serviette)용 직물이나 실로 구성된 세트(부속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와 유사한 방직용 섬유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6308.00	-러그(rug)용·태피스트리(tapestry)용·자수한 테이블보용·서비에트(serviette)용 직물이나 실로 구성된 세트(부속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와 유사한 방직용 섬유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309	사용하던 의류와 그 밖의 사용하던 물품	
6309.00	-사용하던 의류와 그 밖의 사용하던 물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310	넝마(사용하던 것이나 신품으로 한정한다),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의 스크랩(scrap),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 제품의 폐품(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6310.10	-선별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6310.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12 부 신발류·모자류·산류(傘類)·지팡이·시트스틱(seat-stick)·채찍·승마용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조제 깃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제 64 류	신발류・각반과 이와 유사한 것, 이들의 부분품	
6401	방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갑피(甲皮)를 바닥에 스티칭(stitching)・리베팅(riveting)・네일링(nailing)・스크루잉(screwing)・플러깅(plugging)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부착하거나 조립한 것은 제외한다]	
6401.10	-보호용 금속 토캡(toe-cap)을 넣은 신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401.9	-그 밖의 신발	
6401.92	--발목을 덮는 것(무릎을 덮는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401.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402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6402.1	-스포츠용 신발류	
6402.12	--스키부츠・크로스컨트리스키화・스노보드부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40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402.20	-신발[갑피(甲皮)끈을 플러그(plug) 삽입식으로 바닥에 조립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402.9	-그 밖의 신발	
6402.91	--발목을 덮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402.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403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6403.1	-스포츠용 신발류	
6403.12	--스키부츠・크로스컨트리스키화・스노보드부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403.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403.20	-신발류[바깥 바닥을 가죽으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발등과 엄지발가락의 주위를 감싸는 가죽끈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403.40	-그 밖의 신발류[보호용 금속 토캡(toe-cap)을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403.5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을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6403.51	--발목을 덮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403.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403.9	**-그 밖의 신발류**	
6403.91	--발목을 덮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403.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404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6404.1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6404.11	--스포츠용 신발류, 테니스화・농구화・체조화・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404.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404.20	-신발류[바깥 바닥을 가죽이나 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405	**그 밖의 신발류**	
6405.10	-갑피(甲皮)를 가죽이나 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405.20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4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406	**신발류 부분품[갑피(甲皮)(바깥 바닥을 제외한 바닥에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포함한다], 갈아 끼울 수 있는 안창과 힐쿠션(heel cushion) 및 이와 유사한 물품, 각반·레깅스나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6406.10	-갑피(甲皮)와 그 부분품(보강재는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406.20	-바깥 바닥과 뒷굽(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40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65 류	**모자류와 그 부분품**	
6501	**모체(hat-form)[펠트(felt)로 만든 성형하지 않은 것으로서 차양을 붙이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펠트(felt)로 만든 플래토우(plateaux)와 망숑(manchon)[슬릿망숑(slit manchon)을 포함한다]**	
6501.00	-모체(hat-form)[펠트(felt)로 만든 성형하지 않은 것으로서 차양을 붙이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펠트(felt)로 만든 플래토우(plateaux)와 망숑(manchon)[슬릿망숑(slit manchon)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502	**모체(hat-shape)[각종 재료로 만든 스트립(strip)을 엮거나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서 미성형인 것, 차양을 붙이지 않은 것, 안을 대지 않거나 장식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6502.00	-모체(hat-shape)[각종 재료로 만든 스트립(strip)을 엮거나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서 미성형인 것, 차양을 붙이지 않은 것, 안을 대지 않거나 장식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504	**모자[각종 재료로 만든 스트립(strip)을 엮거나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안을 댄 것인지 또는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6504.00	-모자[각종 재료로 만든 스트립(strip)을 엮거나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안을 댄 것인지 또는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505	모자[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것과 원단 상태(스트립 모양은 제외한다)인 레이스·펠트(felt)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안을 댄 것인지 또는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재료로 만든 헤어네트(hair-net)(안을 대거나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6505.00	-모자[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것과 원단 상태(스트립 모양은 제외한다)인 레이스·펠트(felt)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안을 댄 것인지 또는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재료로 만든 헤어네트(hair-net)(안을 대거나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506	그 밖의 모자(안을 댄 것인지 또는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6506.10	-안전모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506.9	-기타	
6506.91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506.99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507	헤드밴드·내장재·커버·모자의 파운데이션(foundation)·모자의 프레임(frame)·챙·턱끈	
6507.00	-헤드밴드·내장재·커버·모자의 파운데이션(foundation)·모자의 프레임(frame)·챙·턱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66 류	산류(傘類)·지팡이·시트스틱(seat-stick)·채찍·승마용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6601	산류(傘類)[지팡이 겸용 우산·정원용 산류(傘類)와 이와 유사한 산류(傘類)를 포함한다]	
6601.10	-정원용 산류(傘類)나 이와 유사한 산류(傘類)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601.9	-기타	
6601.91	--대가 절첩식(折疊式)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601.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602	**지팡이·시트스틱(seat-stick)·채찍·승마용 채찍과 이와 유사한 물품**	
6602.00	-지팡이·시트스틱(seat-stick)·채찍·승마용 채찍과 이와 유사한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603	**제 6601 호나 제 6602 호의 물품의 부분품·트리밍(trimming)·부속품**	
6603.20	-산류(傘類)의 틀(대에 부착된 틀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6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67 류	**조제 깃털·솜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	
6701	**새의 깃털이나 솜털이 붙은 가죽과 그 밖의 부분·깃털과 그 부분·솜털과 이들의 제품[제 0505 호의 물품과 가공한 깃대(scape)·깃촉(quill)은 제외한다]**	
6701.00	-새의 깃털이나 솜털이 붙은 가죽과 그 밖의 부분·깃털과 그 부분·솜털과 이들의 제품[제 0505 호의 물품과 가공한 깃대(scape)·깃촉(quill)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702	**인조 꽃·잎·과실과 이들의 부분품, 인조 꽃·잎·과실로 만든 제품**	
6702.1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702.90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703	**사람 머리카락(정돈·표백이나 그 밖의 가공을 한 것으로 한정한다), 가발이나 이와 유사한 것을 제조하기 위한 양모나 그 밖의 동물의 털이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재료**	
6703.00	-사람 머리카락(정돈·표백이나 그 밖의 가공을 한 것으로 한정한다), 가발이나 이와 유사한 것을 제조하기 위한 양모나 그 밖의 동물의 털이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재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704	가발・가수염・눈썹・속눈썹・스위치와 이와 유사한 것(사람 머리카락・동물의 털・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6704.1	-합성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6704.11	--전체가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704.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704.20	-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704.90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13 부 돌・플라스터(plaster)・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자제품, 유리와 유리제품		
제 68 류	돌・플라스터(plaster)・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6801	포석・연석・판석[천연 석재로 한정하며, 슬레이트(slate)는 제외한다]	
6801.00	-포석・연석・판석[천연 석재로 한정하며, 슬레이트(slate)는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802	가공한 석비용・건축용 석재[슬레이트(slate)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제품(제 6801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천연 석재의 것으로서 슬레이트(slate) 제품을 포함하며, 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인공적으로 착색한 천연 석재[슬레이트(slate)를 포함한다]의 알갱이・조각・가루	
6802.10	-타일・큐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사각형인지에 상관없으며 최대 표면적이 한 변이 7 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로 한정한다), 인공적으로 착색한 알갱이・조각・가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802.2	-그 밖의 석비용・건축용 석재와 이들의 제품(단순히 평판 모양이나 수평 모양으로 절단하였거나 톱질한 것으로 한정한다)	
6802.21	--대리석・트래버틴(travertine)・설화석고(alabast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802.23	--화강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802.29	--그 밖의 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802.9	**-기타**	
6802.91	--대리석·트래버틴(travertine)·설화석고(alabast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802.92	--그 밖의 석회질 암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802.93	--화강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802.99	--그 밖의 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803	**가공한 슬레이트(slate)와 슬레이트(slate) 제품, 응결 슬레이트(slate)의 제품**	
6803.00	-가공한 슬레이트(slate)와 슬레이트(slate) 제품, 응결 슬레이트(slate)의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804	**밀스톤(millstone)·그라인드스톤(grindstone)·그라인딩휠(grinding wheel)과 이와 유사한 것(연마용·벼리기용·광택용·정형용·절단용인 것으로서 프레임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수지석(手砥石)과 이들의 부분품[천연석, 응결시킨 천연·인조의 연마재료로 만든 것이나 도자(陶瓷)제의 것으로 한정하며, 그 밖의 재료로 만든 부분품이 부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6804.10	-밀스톤(millstone)과 그라인드스톤(grindstone)[밀링(milling)용·그라인딩(grinding)용·펄핑(pulping)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804.2	**-그 밖의 밀스톤(millstone)·그라인드스톤(grindstone)·그라인딩휠(grinding wheel)과 이와 유사한 것**	
6804.21	--합성·천연 다이아몬드로 만든 것(응결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804.22	--그 밖의 연마재료로 만든 것(응결된 것으로 한정한다)이나 도자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804.23	--천연석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804.30	-수지석(手砥石)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805	**천연·인조의 연마용 가루나 알갱이를 방직용 섬유재료·종이·판지나 그 밖의 재료에 부착한 물품(특정한 모양으로 절단·봉합한 것인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만든 제품인지에 상관없다)**	
6805.10	-방직용 섬유의 직물만을 기본 재료로 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805.20	-종이나 판지만을 기본 재료로 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805.30	-그 밖의 재료를 기본 재료로 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806	**슬래그 울(slag wool)·암면(rock wool)과 이와 유사한 광물성 울, 박리한 버미큘라이트(vermiculite)·팽창점토·다포슬래그(slag)와 이와 유사하게 팽창하는 광물성 재료, 단열용·방음용·흡음용 광물성 재료의 혼합물과 그 제품(제 6811 호·제 6812 호나 제 69 류의 것은 제외한다)**	
6806.10	-슬래그 울(slag wool)·암면(rock wool)과 이와 유사한 광물성 울[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하며 벌크모양·시트(sheet) 모양·롤 모양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806.20	-박리한 버미큘라이트(vermiculite)·팽창점토·다포슬래그(slag)와 이와 유사하게 팽창하는 광물성 재료(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80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807	**아스팔트 제품이나 이와 유사한 재료[예: 석유역청이나 콜타르 피치(coal tar pitch)]의 제품**	
6807.10	-롤 모양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80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808	패널・보드・타일・블록과 이와 유사한 물품[식물성 섬유・짚・목재의 대팻밥・칩・파티클(particle)・톱밥이나 그 밖의 웨이스트(waste)를 시멘트・플라스터(plaster)나 그 밖의 광물성 결합재로 응결시킨 것으로 한정한다]	
6808.00	-패널・보드・타일・블록과 이와 유사한 물품[식물성 섬유・짚・목재의 대팻밥・칩・파티클(particle)・톱밥이나 그 밖의 웨이스트(waste)를 시멘트・플라스터(plaster)나 그 밖의 광물성 결합재로 응결시킨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809	플라스터(plaster) 제품이나 플라스터(plaster)를 기본 재료로 조합한 제품	
6809.1	-보드・시트(sheet)・패널・타일과 이와 유사한 제품(장식한 것은 제외한다)	
6809.11	--종이나 판지만을 입혔거나 보강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809.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809.90	-그 밖의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810	시멘트 제품・콘크리트 제품・인조석 제품(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6810.1	-타일・판석・벽돌과 이와 유사한 제품	
6810.11	--건축용 블록과 벽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810.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810.9	-그 밖의 제품	
6810.91	--조립식 건축자재(건축용이나 토목 공사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810.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811	석면시멘트 제품・셀룰로오스파이버시멘트 제품이나 이와 유사한 것	
6811.40	-석면을 함유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811.8	-석면을 함유하지 않은 것	
6811.81	--물결 모양의 시트(shee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811.82	--그 밖의 시트(sheet)·패널·타일과 이와 유사한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811.89	--그 밖의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812	가공한 석면섬유, 석면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 석면과 탄산마그네슘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 그 혼합물들의 제품, 석면제품[예: 석면의 실·직물·의류·모자·신발·개스킷(gasket)](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 6811 호나 제 6813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6812.80	-청석면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812.9	-기타	
6812.91	--의류·의류부속품·신발·모자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812.92	--종이·표지용 판지·펠트(fel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812.93	--압축가공한 시트(sheet) 모양이나 롤 모양인 석면섬유 조인팅(jointing)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812.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813	마찰 재료와 그 제품[예: 시트(sheet)·롤·스트립(strip)·세그먼트·디스크(disc)·와셔(washer)·패드](장착되지 않은 것으로서 브레이크용·클러치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의 석면·그 밖의 광물성 재료·셀룰로오스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하며, 직물이나 그 밖의 재료와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6813.20	-석면을 함유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813.8	-석면을 함유하지 않은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813.81	--브레이크 라이닝(brake lining)과 패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813.8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814	**운모(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와 운모의 제품(응결시키거나 재생한 운모를 포함하며 종이·판지나 그 밖의 재료로 된 지지물에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6814.10	-판·시트(sheet)·스트립(strip)(응결시키거나 재생한 운모의 것으로 한정하며 지지물에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81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815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탄소섬유의 제품·이탄(泥炭)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6815.10	-비(非)전기용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815.20	-이탄(泥炭)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815.9	**-그 밖의 제품**	
6815.91	--마그네사이트·백운석·크로마이트를 함유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815.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69 류	**도자제품**	
6901	**벽돌·블록·타일과 그 밖의 도자제품[규산질의 화석 가루(예: 규조토·트리폴리트·다이어토마이트)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6901.00	-벽돌·블록·타일과 그 밖의 도자제품[규산질의 화석 가루(예: 규조토·트리폴리트·다이어토마이트)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902	**내화벽돌·내화블록·내화타일과 이와 유사한 건설용 내화 도자제품(규산질의 화석 가루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만든 제품은 제외한다)**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902.10	-마그네슘·칼슘·크로뮴원소를 산화마그네슘·산화칼슘·산화크로뮴으로 표현하였을 때 하나 이상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902.20	-알루미나·실리카, 이들의 혼합물이나 화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9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903	**그 밖의 내화성 도자제품[예: 레토르트(retort)·도가니·머플·노즐·플러그·서포트·큐펠(cupel)·관(管)·쉬드(sheath)·막대(rod)](규산질의 화석 가루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만든 제품은 제외한다)**	
6903.10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 또는 이들 혼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903.20	-알루미나(Al_2O_3) 또는 알루미나와 실리카(SiO_2)의 혼합물이나 화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9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904	**도자제의 건축용 벽돌·바닥깔개용 블록·서포트타일(support tile)·필러타일(filler tile)과 이와 유사한 것**	
6904.10	-건축용 벽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90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905	**기와·굴뚝통·굴뚝갓·굴뚝용 내장재·건축용 장식품과 그 밖의 도자제의 건설용품**	
6905.10	-기와(지붕타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9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906	**도자제의 관(管)·도관(導管)·홈통과 관(管)의 연결구류**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906.00	-도자제의 관(管)·도관(導管)·홈통과 관(管)의 연결구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907	**도자제의 판석과 포장(鋪裝)용·노(爐)용·벽용 타일, 도자제의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피니싱 세라믹**	
6907.2	**-판석과 포장(鋪裝)용·노(爐)용·벽용 타일(소호 제 6907.30 호 및 제 6907.40 호의 것은 제외한다)**	
6907.21	--수분흡수계수가 중량기준으로 100 분의 0.5 이하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907.22	--수분흡수계수가 중량기준으로 100 분의 0.5 초과 100 분의 10 이하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907.23	--수분흡수계수가 중량기준으로 100 분의 10 을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907.30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소호 제 6907.40 호의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907.40	-피니싱 세라믹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909	**실험실용·화학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도자제품, 농업용 도자제 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 물품의 수송용·포장용으로 사용하는 도자제의 항아리·단지와 이와 유사한 제품**	
6909.1	**-실험실용·화학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도자제품**	
6909.11	--자기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909.12	--모스 경도가 9 이상인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909.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90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910	**도자제의 설거지통·세면대·세면대용 받침·목욕통·비데·수세식 변기통·수세식 변기용 물통·소변기와 이와 유사한 위생용 물품**	
6910.10	-자기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91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911	**자기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화장용품**	
6911.10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91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912	**도자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화장용품(자기제의 것은 제외한다)**	
6912.00	-도자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화장용품(자기제의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913	**도자제의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용 제품**	
6913.10	-자기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91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914	**도자제의 그 밖의 제품**	
6914.10	-자기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91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70 류	**유리와 유리제품**	
7001	**깨진 유리, 유리의 그 밖의 웨이스트(waste)·스크랩(scrap), 유리 괴(塊)**	
7001.00	-깨진 유리, 유리의 그 밖의 웨이스트(waste)·스크랩(scrap), 유리 괴(塊)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002	유리로 만든 구(球)[제 7018 호의 마이크로스피어(microsphere)는 제외한다], 막대(rod)나 관(管)(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002.10	-구(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02.20	-막대(rod)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02.3	-관(管)	
7002.31	--석영유리와 용융실리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02.32	--선팽창계수가 섭씨 0 도에서 300 도의 범위 내에서 1 켈빈온도당 1 백만분의 5 를 초과하지 않는 그 밖의 유리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02.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03	주입법과 롤(roll)법으로 제조한 유리[시트(sheet) 모양이나 프로파일(profile) 모양으로 한정하고, 흡수층·반사층·무반사층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003.1	-망입(網入)하지 않은 시트(sheet) 유리	
7003.12	--전 부분을 착색한 것(엷게 착색한 것을 포함한다), 불투명한 것, 다른 착색유리로 입힌 것, 흡수층·반사층·무반사층을 갖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03.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03.20	-망입(網入) 시트(sheet) 유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03.30	-프로파일(profil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04	인상법(引上法)과 취입법(吹入法)으로 제조한 유리[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고, 흡수층·반사층·무반사층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004.20	-전 부분을 착색한 것(엷게 착색한 것을 포함한다), 불투명한 것, 다른 착색유리로 입힌 것, 흡수층·반사층·무반사층을 갖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004.90	-그 밖의 유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05	**플로트유리(float glass)와 표면을 연마한 유리[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고, 흡수층·반사층·무반사층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005.10	-망입(網入)하지 않은 유리(흡수층·반사층·무반사층을 갖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05.2	**-그 밖의 망입(網入)하지 않은 유리**	
7005.21	--전 부분을 착색한 것(엷게 색상이 있는 색유리를 포함한다), 불투명한 것, 다른 착색유리로 입힌 것, 단순히 표면을 연마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05.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05.30	-망입(網入) 유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06	**제 7003 호·제 7004 호·제 7005 호의 유리(구부린 것·가장자리 가공한 것·조각한 것·구멍을 뚫은 것·에나멜을 칠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하며, 프레임을 붙인 것이나 그 밖의 재료를 붙인 것은 제외한다)**	
7006.00	-제 7003 호·제 7004 호·제 7005 호의 유리(구부린 것·가장자리 가공한 것·조각한 것·구멍을 뚫은 것·에나멜을 칠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하며, 프레임을 붙인 것이나 그 밖의 재료를 붙인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07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7007.1	**-강화 안전유리**	
7007.11	--차량·항공기·우주선·선박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와 모양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07.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07.2	**-접합 안전유리**	
7007.21	--차량·항공기·우주선·선박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와 모양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007.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08	**유리로 만든 복층 절연유닛**	
7008.00	-유리로 만든 복층 절연유닛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003 호부터 제 7009 호까지는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09	**유리거울(백미러를 포함하며, 틀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다)**	
7009.10	-백미러(차량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09.9	**-기타**	
7009.91	--틀이 붙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09.92	--틀이 붙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10	**유리로 만든 카보이(carboy)·병·플라스크·단지·항아리·약병·앰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기(물품의 수송용·포장용으로 한정한다), 유리로 만든 보존병, 유리로 만든 마개·뚜껑과 그 밖의 마개류**	
7010.10	-앰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10.20	-마개·뚜껑과 그 밖의 마개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1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11	**밀폐되지 않은 유리로 만든 외피(벌브와 튜브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부분품(전구·음극선관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의 것으로서 부착물이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7011.10	-전등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11.20	-음극선관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01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13	**유리제품(식탁용・주방용・화장실용・사무용・실내장식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한정하며, 제 7010 호나 제 7018 호의 것은 제외한다)**	
7013.10	-유리 도자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13.2	**-굽 달린 음료용 유리컵류(유리 도자제의 것은 제외한다)**	
7013.22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13.28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13.3	**-그 밖의 음료용 유리컵류(유리 도자제의 것은 제외한다)**	
7013.33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13.37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13.4	**-식탁용 유리제품(음료용 유리컵류는 제외한다)과 주방용 유리제품(유리 도자제의 것은 제외한다)**	
7013.41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13.42	--선팽창계수가 섭씨 0 도에서 300 도의 범위 내에서 1 켈빈온도당 백만분의 5 를 초과하지 않는 유리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13.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13.9	**-그 밖의 유리제품**	
7013.91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13.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014	**신호용 유리제품과 유리로 만든 광학소자(제 7015 호의 것과 광학적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7014.00	-신호용 유리제품과 유리로 만든 광학소자(제 7015 호의 것과 광학적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15	**시계용 유리와 이와 유사한 유리, 안경용(시력교정용인지에 상관없다) 유리[곡면인 것・구부린 것・중공(中空)인 것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제조에 사용하는 중공구면(中空球面)유리와 그 세그먼트**	
7015.10	-시력교정용 안경유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1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16	**압축하거나 주형한 유리로 만든 포장(鋪裝)용 블록・슬래브・벽돌・스퀘어(square)・타일과 그 밖의 제품[망입(網入)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건축용이나 건설용으로 한정한다], 유리로 만든 입방체와 그 밖의 유리 세공품(뒷면을 보강한지에 상관없으며 모자이크용이나 이와 유사한 장식용으로 한정한다), 레드라이트(leaded light)와 이와 유사한 것, 블록(block)・패널(panel)・플레이트(plate)・쉘(shell)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의 다공(多孔)유리나 다포(多泡)유리**	
7016.10	-유리로 만든 입방체와 그 밖의 유리 세공품(뒷면을 보강한지에 상관없으며 모자이크용이나 이와 유사한 장식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1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17	**실험실용・위생용・약제용 유리제품(눈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7017.10	-석영유리 또는 용융실리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17.20	-선팽창계수가 섭씨 0 도에서 300 도의 범위 내에서 1 켈빈온도당 백만분의 5 를 초과하지 않는 그 밖의 유리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1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018	유리로 만든 비드(bead)·모조진주·모조 귀석과 반귀석·이와 유사한 유리 세공품·모조 신변장식용품을 제외한 유리제품, 인체용을 제외한 유리 안구, 작은 조각상과 램프 가공한(lamp-worked) 그 밖의 장식용 유리제품(모조 신변장식용품은 제외한다), 지름이 1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유리로 만든 마이크로스피어(microsphere)	
7018.10	-유리로 만든 비드(bead)·모조진주·모조 귀석과 반귀석·이와 유사한 유리 세공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18.20	-1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유리로 만든 마이크로스피어(microspher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1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19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직물)	
7019.1	-슬리버(sliver)·로빙(roving)·실·단연사	
7019.11	--단연사(길이가 50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19.12	--로빙(roving)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19.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19.3	-얇은 시트(sheet)(보일)·웹(web)·매트(mat)·매트리스(mattress)·보드와 이와 유사한 부직포	
7019.31	--매트(ma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19.32	--얇은 시트(sheet)(보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19.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19.40	-로빙(roving)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19.5	-그 밖의 직물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019.51	--폭이 30 센티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19.52	--폭이 30 센티미터 초과인 것(평직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50 그램 미만이며, 구성하는 단사가 136 텍스 이하의 필라멘트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19.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1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20	**유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	
7020.00	-유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14 부 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제 71 류	**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7101	**천연진주나 양식진주(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실로 꿴 것·장착되거나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 다만,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꿴 것을 포함한다)**	
7101.10	-천연진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1.2	**-양식진주**	
7101.21	--가공하지 않은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1.22	--가공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7102	**다이아몬드(가공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장착되거나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	
7102.10	-선별하지 않은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02.2	**-공업용**	
7102.21	--원석(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쪼갠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02.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02.3	**-공업용이 아닌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102.31	--원석(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쪼갠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02.3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03	**귀석(다이아몬드는 제외한다)과 반귀석(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실로 꿴 것·장착되거나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 다만, 등급을 매기지 않은 것으로서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꿴 것을 포함한다)**	
7103.10	-원석, 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거칠게 성형한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03.9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가공한 것**	
7103.91	--루비·사파이어·에메랄드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03.9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04	**합성·재생한 귀석이나 반귀석(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실로 꿴 것, 장착되거나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 다만, 등급을 매기지 않은 것으로서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꿴 것을 포함한다)**	
7104.10	-압전기용 석영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04.20	-기타(원석, 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거칠게 성형한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04.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05	**천연의 것이나 합성한 귀석·반귀석의 더스트(dust)와 가루**	
7105.10	-다이아몬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106	은(금이나 백금을 도금한 은을 포함하며, 가공하지 않은 것·반가공한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7106.10	-가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06.9	-기타	
7106.91	--가공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06.92	--반가공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07	은을 입힌 비금속(卑金屬)(반가공한 것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107.00	-은을 입힌 비금속(卑金屬)(반가공한 것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08	금(백금을 도금한 금을 포함하며, 가공하지 않은 것·반가공한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7108.1	-화폐용이 아닌 것	
7108.11	--가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08.13	--그 밖의 반가공한 모양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08.20	-화폐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09	금을 입힌 비금속(卑金屬)이나 은(반가공한 것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109.00	-금을 입힌 비금속(卑金屬)이나 은(반가공한 것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10	백금(가공하지 않은 것·반가공한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7110.1	-플라티늄(platinum)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110.11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10.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10.2	**-팔라듐(palladium)**	
7110.21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10.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10.3	**-로듐(rhodium)**	
7110.31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10.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10.4	**-이리듐(iridium)·오스뮴(osmium)·루테늄(ruthenium)**	
7110.41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10.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11	**백금을 입힌 비금속(卑金屬)·은·금(반가공한 것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111.00	-백금을 입힌 비금속(卑金屬)·은·금(반가공한 것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12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귀금속이나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그 밖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주로 귀금속의 회수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7112.30	-귀금속이나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회(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12.9	**-기타**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112.91	--금의 것(금을 입힌 금속을 포함하며, 그 밖의 귀금속을 함유한 부스러기는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12.92	--백금의 것(백금을 입힌 금속을 포함하며, 그 밖의 귀금속을 함유한 부스러기는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12.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13	**신변장식용품과 그 부분품(귀금속으로 만들거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7113.1	**-귀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7113.11	--은으로 만든 것(그 밖의 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13.19	--그 밖의 귀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13.20	-귀금속을 입힌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14	**금 세공품이나 은 세공품과 이들의 부분품(귀금속으로 만들거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7114.1	**-귀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7114.11	--은으로 만든 것(그 밖의 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14.19	--그 밖의 귀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14.20	-귀금속을 입힌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15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그 밖의 제품**	
7115.10	-촉매제[백금으로 만든 와이어 클로스(wire cloth)나 그릴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15.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116	**천연진주나 양식진주, 귀석이나 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의 제품**	
7116.10	-천연진주나 양식진주로 만든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16.20	-귀석이나 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으로 만든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17	**모조 신변장식용품**	
7117.1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7117.11	--커프링크(cuff-link)와 장식용 단추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17.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17.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18	**주화**	
7118.10	-주화(금화는 제외한다)로서 법정통화가 아닌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1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15 부 비금속(卑金屬)과 그 제품		
제 72 류	**철강**	
7201	**선철(銑鐵)과 스피그라이즌(spiegeleisen)[피그(pig)·블록(block) 모양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7201.10	-비합금선철(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5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1.20	-비합금선철(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5 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1.50	-합금선철과 스피그라이즌(spiegeleisen)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2	**합금철(ferro-alloy)**	
7202.1	**-페로망간**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202.11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2 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2.2	**-페로실리콘(ferro-silicon)**	
7202.21	--실리콘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5 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2.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2.30	-페로실리코망간(ferro-silico-manganes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2.4	**-페로크로뮴(ferro-chromium)**	
7202.41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4 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2.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2.50	-페로실리코크로뮴(ferro-silico-chromium)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2.60	-페로니켈(ferro-nickel)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2.70	-페로몰리브데늄(ferro-molybdenum)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2.80	-페로텅스텐(ferro-tungsten)과 페로실리코 텅스텐(ferro-silico-tungsten)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2.9	**-기타**	
7202.91	--페로티타늄(ferrotitanium)과 페로실리코티타늄(ferro-silico-titanium)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2.92	--페로바나듐(ferro-vanadium)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2.93	--페로니오븀(ferro-niobium)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2.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3	**철광석을 직접 환원하여 제조한 철제품과 그 밖의 해면질의 철제품[럼프(lump)·펠릿(pellet)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과 순도가 최저 전 중량의 100 분의 99.94 인 철[럼프(lump)·펠릿(pellet)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7203.10	-철광석을 직접 환원하여 제조한 철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4	**철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scrap ingot)**	
7204.10	-주철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4.2	**-합금강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7204.21	--스테인리스강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4.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4.30	-주석을 도금한 철강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4.4	**-그 밖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7204.41	--선삭(旋削)·세이빙(shaving)·칩·밀링 웨이스트(milling waste)·톱밥·파일링(filing)·트리밍(trimming)·스탬핑(stamping)(번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4.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4.50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scrap ingo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205	알갱이와 가루[선철(銑鐵)·스피그라이즌(spiegeleisen)·철강의 것으로 한정한다]	
7205.10	-알갱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5.2	-가루	
7205.21	--합금강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5.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6	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철과 비합금강(제 7203 호의 철은 제외한다)	
7206.10	-잉곳(ingo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7	철이나 비합금강의 반제품	
7207.1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25 미만인 것	
7207.11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인 것(폭이 두께의 두 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7.12	--그 밖의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7.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7.20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25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8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7208.10	-코일 모양인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고 부조(浮彫)된 무늬가 있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208.2	**-기타[코일 모양인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고 산세(酸洗)한 것으로 한정한다]**	
7208.25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8.26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8.27	--두께가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8.3	**-기타[코일 모양인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208.36	--두께가 1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8.37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 10 밀리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8.38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8.39	--두께가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8.40	-코일 모양이 아닌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부조(浮彫)된 무늬가 있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8.5	**-기타[코일 모양이 아닌 것으로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208.51	--두께가 1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8.52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 10 밀리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8.53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8.54	--두께가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20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9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7209.1	**-코일 모양인 것으로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7209.15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208 호는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9.16	--두께가 1 밀리미터 초과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208 호는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9.17	--두께가 0.5 밀리미터 이상 1 밀리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208 호는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9.18	--두께가 0.5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208 호는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9.2	**-코일 모양이 아닌 것으로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7209.25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208 호는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9.26	--두께가 1 밀리미터 초과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208 호는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9.27	--두께가 0.5 밀리미터 이상 1 밀리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208 호는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9.28	--두께가 0.5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208 호는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20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208 호는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으로 한정한다]**	
7210.1	**-주석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7210.11	--두께가 0.5 밀리미터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0.12	--두께가 0.5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0.20	-납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함석판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0.30	-아연을 전해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0.4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7210.41	--물결 모양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0.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0.50	-산화크로뮴이나 크로뮴과 산화크로뮴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0.6	**-알루미늄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7210.61	--알루미늄-아연 합금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0.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0.70	-페인팅한 것·바니시한 것·플라스틱을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211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7211.1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7211.13	--4 면을 압연한 것이나 크로스드박스패스(closed box pass)로 한 것[폭이 150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두께가 4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코일 모양인 것과 부조(浮彫)된 무늬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1.14	--기타(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1.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1.2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7211.23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25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1.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2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으로 한정한다]**	
7212.10	-주석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2.20	-아연을 전해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2.30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2.40	-페인팅한 것·바니시한 것·플라스틱을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2.50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212.60	-클래드(clad)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3	**철이나 비합금강의 봉[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7213.10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모양의 마디·리브(rib)·홈이나 그 밖의 모양으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3.20	-기타[쾌삭강(快削鋼)의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3.9	**-기타**	
7213.91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지름이 14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3.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4	**철이나 비합금강의 그 밖의 봉[단조(鍛造)·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열간(熱間)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고, 압연 후 꼬임가공된 것을 포함한다]**	
7214.10	-단조(鍛造)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4.20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 모양의 마디·리브(rib)·홈이나 그 밖의 모양으로 된 것, 압연 후 꼬임가공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4.30	-기타[쾌삭강(快削鋼)의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4.9	**-기타**	
7214.91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정사각형인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4.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5	**철이나 비합금강의 그 밖의 봉**	
7215.10	-쾌삭강(快削鋼)의 것[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215.50	-기타[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6	**철이나 비합금강의 형강(形鋼)**	
7216.10	-유(U)형강・아이(I)형강・에이치(H)형강[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서 높이가 80 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6.2	**-엘(L)형강이나 티(T)형강[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서 높이가 80 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7216.21	--엘(L)형강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6.22	--티(T)형강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6.3	**-유(U)형강・아이(I)형강・에이치(H)형강[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서 높이가 80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7216.31	--유(U)형강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6.32	--아이(I)형강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6.33	--에이치(H)형강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6.40	-엘(L)형강이나 티(T)형강[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서 높이가 80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6.50	-그 밖의 형강[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6.6	**-형강(形鋼)[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216.61	--평판압연제품으로부터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6.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6.9	**-기타**	
7216.91	--평판압연제품으로부터 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6.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7	**철이나 비합금강의 선(線)**	
7217.10	-도금하거나 도포하지 않은 것(연마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7.20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7.30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8	**스테인리스강[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것으로 한정한다]과 스테인리스강의 반제품**	
7218.10	-잉곳(ingot)과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8.9	**-기타**	
7218.91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정사각형인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8.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9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7219.1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코일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219.11	--두께가 1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9.12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 10 밀리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9.13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9.14	--두께가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9.2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코일 모양인 것은 제외한다)**	
7219.21	--두께가 1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9.22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 10 밀리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9.23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9.24	--두께가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9.3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7219.31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9.32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9.33	--두께가 1 밀리미터 초과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9.34	--두께가 0.5 밀리미터 이상 1 밀리미터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9.35	--두께가 0.5 밀리미터 미만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219.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20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7220.1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7220.11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219 호는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20.12	--두께가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219 호는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20.20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219 호는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2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219 호는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21	**스테인리스강의 봉[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7221.00	-스테인리스강의 봉[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22	**스테인리스강의 그 밖의 봉과 스테인리스강의 형강(形鋼)**	
7222.1	**-봉[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222.11	--횡단면이 원형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2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22.20	-봉[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22.30	-그 밖의 봉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222.40	-형강(形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23	**스테인리스강의 선(線)**	
7223.00	-스테인리스강의 선(線)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24	**그 밖의 합금강[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것으로 한정한다]과 그 밖의 합금강의 반제품**	
7224.10	-잉곳(ingot) 및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2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25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7225.1	**-규소전기강의 것**	
7225.11	--방향성(方向性)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2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25.30	-기타[코일 모양인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25.40	-기타[코일 모양은 제외하고,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25.50	-기타[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25.9	**-기타**	
7225.91	--아연을 전해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25.92	--그 밖의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25.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226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7226.1	-규소전기강의 것	
7226.11	--방향성(方向性)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26.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26.20	--고속도강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26.9	-기타	
7226.91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26.92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26.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27	그 밖의 합금강의 봉[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으로 한정한다]	
7227.10	-고속도강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27.20	-실리코망간강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2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28	그 밖의 합금강의 그 밖의 봉, 그 밖의 합금강의 형강(形鋼), 합금강이나 비합금강의 중공(中空)드릴봉	
7228.10	-고속도강의 봉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28.20	-실리코망간강의 봉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228.30	-그 밖의 봉[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28.40	-그 밖의 봉[단조(鍛造)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28.50	-그 밖의 봉[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28.60	-그 밖의 봉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28.70	-형강(形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28.80	-중공(中空)드릴봉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29	**그 밖의 합금강의 선(線)**	
7229.20	-실리코망간강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2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73 류	**철강의 제품**	
7301	**철강으로 만든 널말뚝(sheet piling)(구멍을 뚫은 것인지 또는 조립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용접된 형강(形鋼)**	
7301.10	-널말뚝(sheet piling)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1.20	-형강(形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2	**철강으로 만든 철도용이나 궤도용 선로의 건설재료[레일(rail)・첵레일(check-rail)과 랙레일(rack rail)・스위치 블** **레이드(switch blade)・교차구류(crossing frog)・전철봉(point rod)과 그 밖의 크로싱피스(crossing piece)・받침목(크로스타이)・이음매판(fish-plate)・좌철(座鐵)・좌철(座鐵)쐐기・밑판(sole plate)(베이스플레이트)・레일클립・받침판(bedplate)・격재(tie)와 레일의 접속이나 고착에 전용되는 그 밖의 재료로 한정한다]**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302.10	-레일(rail)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2.30	-스위치 블레이드(switch blade)·교차구류(crossing frog)·전철봉(point rod)과 그 밖의 크로싱피스(crossing piec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2.40	-이음매판(fish-plate)과 받침판(sole plat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3	**주철로 만든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	
7303.00	-주철로 만든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4	**철강(주철은 제외한다)으로 만든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무계목(無繼目)으로 한정한다]**	
7304.1	**-오일이나 가스 배관용 파이프라인**	
7304.11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4.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4.2	**-유정용이나 가스정용 케이싱·튜빙·드릴파이프**	
7304.22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드릴파이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4.23	--그 밖의 드릴파이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4.24	--기타(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4.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4.3	**-기타(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철이나 비합금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7304.31	--냉간인발(冷間引拔)하거나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4.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4.4	**-기타(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7304.41	--냉간인발(冷間引拔)하거나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4.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4.5	**-기타(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그 밖의 합금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7304.51	--냉간인발(冷間引拔)하거나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4.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5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管)[예: 용접·리벳(rivet)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으로서 횡단면이 원형이고, 바깥지름이 406.4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7305.1	**-오일이나 가스 배관용 파이프라인**	
7305.11	--세로 방향으로 서브머지드아크(submerged arc) 용접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5.12	--기타(세로 방향으로 용접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5.20	-유정용이나 가스정용 케이싱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5.3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한다)**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305.31	--세로 방향으로 용접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5.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6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예: 오픈심(open seam)·용접·리벳(rivet)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	
7306.1	**-오일이나 가스 배관용 파이프라인**	
7306.11	--용접한 것(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6.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6.2	**-유정용이나 가스정용 케이싱과 튜빙**	
7306.21	--용접한 것(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6.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6.30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철이나 비합금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6.40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6.50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그 밖의 합금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6.6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	
7306.61	--횡단면이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6.69	--그 밖의 횡단면이 원형이 아닌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30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7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	
7307.1	**-주조한 연결구류**	
7307.11	--비가단주철(非可鍛鑄鐵)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7.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7.2	**-기타(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7307.21	--플랜지(flang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7.22	--나선가공한 엘보(elbow)·벤드(bend)·슬리브(sleev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7.23	--버트(butt)용접용 연결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7.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7.9	**-기타**	
7307.91	--플랜지(flang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7.92	--나선가공한 엘보(elbow)·벤드(bend)·슬리브(sleev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7.93	--버트(butt)용접용 연결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7.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308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 9406 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대・봉・형재(形材)・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	
7308.10	-다리와 교량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8.20	-탑과 격자주(格子柱)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8.30	-문・창과 이들의 틀과 문지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8.40	-비계(飛階)・차단기・지주・굉도 받침에 사용되는 기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9	**철강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저장조・탱크・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냉각 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 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7309.00	-철강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저장조・탱크・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냉각 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 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10	**철강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탱크・통・드럼・캔・상자와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냉각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용적이 300 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7310.10	-용적이 50 리터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10.2	**-용적이 50 리터 미만인 것**	
7310.21	--납땜이나 크림핑(crimping)으로 봉합되는 통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310.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11	**철강으로 만든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으로 한정한다)**	
7311.00	-철강으로 만든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12	**철강으로 만든 연선(stranded wire)·로프·케이블·엮은 밴드·사슬과 이와 유사한 것(전기절연한 것은 제외한다)**	
7312.10	-연선(stranded wire)·로프·케이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1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13	**철강으로 만든 유자선(有刺銑)·대·평선을 꼰 것[유자(有刺)의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느슨하게 꼰 2 중선으로서 울타리용으로 사용하는 것**	
7313.00	-철강으로 만든 유자선(有刺銑)·대·평선을 꼰 것[유자(有刺)의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느슨하게 꼰 2 중선으로서 울타리용으로 사용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14	**철강선으로 만든 클로스(cloth)[엔드리스 밴드(endless band)를 포함한다]·그릴·망·울타리·익스팬디드 메탈(expanded metal)**	
7314.1	**-직조한 클로스(cloth)**	
7314.12	--기계용 엔드리스 밴드(endless band)(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14.14	--그 밖의 직조한 클로스(cloth)(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14.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14.20	-그릴·망·울타리[접점을 용접한 것으로 선의 횡단면의 최대치가 3 밀리미터 이상이고, 메시(mesh)의 크기가 100 제곱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14.3	**-그 밖의 그릴·망·울타리(접점을 용접한 것으로 한정한다)**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314.31	--아연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14.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14.4	**-그 밖의 클로스(cloth)·그릴·망·울타리**	
7314.41	--아연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14.42	--플라스틱으로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14.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14.50	-익스팬디드 메탈(expanded metal)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15	**철강으로 만든 체인과 그 부분품**	
7315.1	**-마디가 있는 링크체인(link chain)과 그 부분품**	
7315.11	--롤러체인(roller chain)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15.12	--그 밖의 체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15.19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15.20	-스키드체인(skid chain)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15.8	**-그 밖의 체인**	
7315.81	--스터드링크(stud-link)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15.82	--기타(용접한 링크의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15.8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315.90	-그 밖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16	**철강으로 만든 닻과 그 부분품**	
7316.00	-철강으로 만든 닻과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17	**철강으로 만든 못・압정・제도용 핀・물결 모양 못・스테이플(제 8305 호의 것은 제외한다)과 이와 유사한 물품[두부(頭部)가 그 밖의 다른 재료로 만든 것인지에 상관없으나 구리를 재료로 한 것은 제외한다]**	
7317.00	-철강으로 만든 못・압정・제도용 핀・물결 모양 못・스테이플(제 8305 호의 것은 제외한다)과 이와 유사한 물품[두부(頭部)가 그 밖의 다른 재료로 만든 것인지에 상관없으나 구리를 재료로 한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18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코치 스크루(coach screw)・스크루 훅(screw hook)・리벳(rivet)・코터(cotter)・코터핀(cotter-pin)・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7318.1	**-나선가공한 제품**	
7318.11	--코치 스크루(coach screw)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18.12	--그 밖의 목재용 스크루(screw)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18.13	--스크루 훅(screw hook)과 스크루 링(screw ring)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18.14	--셀프태핑 스크루(self-tapping screw)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18.15	--그 밖의 스크루(screw)와 볼트(bolt)[너트(nut)나 와셔(washer)가 붙어있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18.16	--너트(nu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18.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18.2	**-나선가공하지 않은 제품**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318.21	--스프링 와셔(spring washer)와 그 밖의 록 와셔(lock wash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18.22	--그 밖의 와셔(wash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18.23	--리벳(rive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18.24	--코터(cotter)와 코터핀(cotter-pin)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18.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19	**철강으로 만든 수봉침·수편침·돗바늘·코바늘·자수용천공수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손으로 사용하는 것, 철강으로 만든 안전핀과 그 밖의 핀(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319.40	-안전핀과 그 밖의 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1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20	**철강으로 만든 스프링과 스프링판**	
7320.10	-판상 스프링과 그 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20.20	-나선용 스프링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2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21	**철강으로 만든 스토브(stove)·레인지(range)·화상(火床)·조리기(중앙난방용 보조보일러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바비큐(barbecue)·화로·가스풍로·가열판과 이와 유사한 비전기식 가정용 기구와 이들의 부분품**	
7321.1	**-조리용 기구와 가열판**	
7321.11	--가스연료용이나 가스와 그 밖의 연료 겸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321.12	--액체연료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21.19	--기타(고체연료용 기구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21.8	**-그 밖의 기구**	
7321.81	--가스연료용이나 가스와 그 밖의 연료 겸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21.82	--액체연료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21.89	--기타(고체연료용 기구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21.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22	**철강으로 만든 방열기(중앙난방용으로 한정하고, 전기가열식은 제외한다)와 이들의 부분품, 동력구동식 송풍기를 갖춘 공기가열기와 온풍배분기(냉풍이나 조절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배분기를 포함하고, 전기가열식은 제외한다)와 이들의 부분품**	
7322.1	**-방열기와 그 부분품**	
7322.11	--주철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2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2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23	**철강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철강의 울, 철강으로 만든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7323.10	-철강의 울, 철강으로 만든 용기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23.9	**-기타**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323.91	--주철로 만든 것으로 법랑제가 아닌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23.92	--주철로 만든 것으로 법랑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23.93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23.94	--철강(주철은 제외한다)으로 만든 것으로 법랑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23.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24	**철강으로 만든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7324.10	-설거지통과 세면대(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24.2	**-목욕통**	
7324.21	--주철로 만든 것(법랑제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24.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24.90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25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주물제품**	
7325.10	-비가단주철(非可鍛鑄鐵)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25.9	**-기타**	
7325.91	--분쇄기용 그라인딩볼(grinding ball)과 이와 유사한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25.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26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7326.1	**-단조물(鍛造物)(이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326.11	--분쇄기용 그라인딩볼(grinding ball)과 이와 유사한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26.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26.20	-철강선으로 만든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2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74 류	**구리와 그 제품**	
7401	**구리의 매트(mat)와 시멘트동(침전동)**	
7401.00	-구리의 매트(mat)와 시멘트동(침전동)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402	**정제하지 않은 구리와 전해정제용 구리 양극**	
7402.00	-정제하지 않은 구리와 전해정제용 구리 양극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403	**정제한 구리와 구리합금(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403.1	**-정제한 구리**	
7403.11	--음극과 음극의 형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403.12	--와이어바(wire-ba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403.13	--빌릿(bille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403.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403.2	**-구리합금**	
7403.21	--구리-아연의 합금(황동)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403.22	--구리-주석의 합금(청동)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403.29	--그 밖의 구리합금[제 7405 호의 모합금 (master alloy)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404	**구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7404.00	-구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405	**구리의 모합금(master alloy)**	
7405.00	-구리의 모합금(master alloy)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406	**구리의 가루와 플레이크(flake)**	
7406.10	-비(非)층상조직인 가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406.20	-층상조직인 가루와 플레이크(flak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407	**구리의 봉과 프로파일(profile)**	
7407.10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407.2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7407.21	--구리-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황동)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407.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408	**구리의 선**	
7408.1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7408.11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6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407 호는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408.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407 호는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408.2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7408.21	--구리-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황동)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407 호는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408.22	--구리-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백동)이나 구리-니켈-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양백)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407 호는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408.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407 호는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409	**구리의 판·시트(sheet)·스트립(두께가 0.1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7409.1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7409.11	--코일 모양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409.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409.2	**-구리-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황동)**	
7409.21	--코일 모양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409.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409.3	**-구리-주석 합금으로 만든 것(청동)**	
7409.31	--코일 모양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409.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409.40	-구리-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백동)이나 구리-니켈-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양백)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409.90	-그 밖의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410	**구리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판지·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15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7410.1	**-뒷면을 붙이지 않은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410.11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410.12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410.2	**-뒷면을 붙인 것**	
7410.21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410.22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411	**구리로 만든 관(管)**	
7411.10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411.2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7411.21	--구리-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황동)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411.22	--구리-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백동)이나 구리-니켈-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양백)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411.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412	**구리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	
7412.10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412.20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413	**구리로 만든 연선·케이블·엮은 밴드와 이와 유사한 것(전기 절연한 것은 제외한다)**	
7413.00	-구리로 만든 연선·케이블·엮은 밴드와 이와 유사한 것(전기 절연한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415	구리로 만든 못・압정・제도용 핀・스테이플(제8305호의 것은 제외한다)과 이와 유사한 물품 [구리로 만든 것이나 구리로 만든 두부(頭部)를 가진 철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구리로 만든 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스크루훅(screw hook)・리벳(rivet)・코터(cotter)・코터핀(cotter-pin)・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7415.10	-못과 압정, 제도용 핀・스테이플과 이와 유사한 물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415.2	-나선가공을 하지 않은 그 밖의 물품	
7415.21	--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415.29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415.3	-그 밖의 나선가공한 물품	
7415.33	--스크루(screw), 볼트(bolt)와 너트(nut)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415.39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418	구리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구리로 만든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구리로 만든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7418.10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418.20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419	구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	
7419.10	-체인과 그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419.9	-기타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419.91	--주조·주형·압착·단조(鍛造)된 것(이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419.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75 류	**니켈과 그 제품**	
7501	**니켈의 매트(mat)·소결(燒結)한 산화니켈·니켈 제련으로 생산된 그 밖의 중간생산물**	
7501.10	-니켈의 매트(ma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501.20	-소결(燒結)한 산화니켈과 니켈 제련으로 생산된 그 밖의 중간생산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502	**니켈의 괴(塊)**	
7502.10	-합금하지 않은 니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502.20	-니켈 합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503	**니켈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7503.00	-니켈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504	**니켈의 가루와 플레이크(flake)**	
7504.00	-니켈의 가루와 플레이크(flak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505	**니켈의 봉·프로파일(profile)·선(線)**	
7505.1	**-봉과 프로파일(profile)**	
7505.11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505.12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505.2	**-선(線)**	
7505.21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505.22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506	**니켈의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	
7506.10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506.20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507	**니켈로 만든 관(管)이나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	
7507.1	**-관(管)**	
7507.11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507.12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507.20	-관(管) 연결구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508	**니켈로 만든 그 밖의 제품**	
7508.10	-니켈선으로 만든 클로스(cloth)・그릴・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50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76 류	**알루미늄과 그 제품**	
7601	**알루미늄의 괴(塊)**	
7601.10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601.20	-알루미늄 합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602	**알루미늄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7602.00	-알루미늄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603	**알루미늄의 가루와 플레이크(flake)**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603.10	-비(非)층상조직인 가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603.20	-층상조직인 가루와 플레이크(flak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604	**알루미늄의 봉과 프로파일(profile)**	
7604.10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604.2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7604.21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604.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605	**알루미늄의 선**	
7605.1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7605.11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7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604 호는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60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604 호는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605.2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7605.21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7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604 호는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605.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604 호는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606	**알루미늄의 판・시트(sheet)・스트립(두께가 0.2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7606.1	**-직사각형인 것(정사각형인 것을 포함한다)**	
7606.11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606.12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606.9	-기타	
7606.91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606.92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607	알루미늄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판지·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7607.1	-뒷면을 붙이지 않은 것	
7607.11	--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607.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607.20	-뒷면을 붙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608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管)	
7608.10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608.20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609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	
7609.00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610	알루미늄으로 만든 구조물(제 9406 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알루미늄으로 만든 판·봉·프로파일(profile)·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610.10	-문·창과 이들의 틀과 문지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61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611	**알루미늄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저장조·탱크·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냉각 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 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7611.00	-알루미늄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저장조·탱크·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냉각 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 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612	**알루미늄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통·드럼·캔·상자와 이와 유사한 용기(경질이나 연질의 튜브형 용기를 포함하고, 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며, 기계장치나 가열·냉각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 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고,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7612.10	-연질의 튜브형 용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61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613	**알루미늄으로 만든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으로 한정한다)**	
7613.00	-알루미늄으로 만든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614	**알루미늄으로 만든 연선·케이블·엮은 밴드와 이와 유사한 것(전기 절연한 것은 제외한다)**	
7614.10	-철강심으로 되어 있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605 호는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61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605 호는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센트 이상일 것
7615	알루미늄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알루미늄으로 만든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알루미늄으로 만든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7615.10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용(polishing)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615.20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616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7616.10	-못·압정·스테이플(제 8305 호의 것은 제외한다)·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스크루 훅(screw hook)·리벳(rivet)·코터(cotter)·코터핀(cotter-pin)·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616.9	-기타	
7616.91	--알루미늄선으로 만든 클로스(cloth)·그릴·망·울타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616.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78 류	납과 그 제품	
7801	납의 괴(塊)	
7801.10	-정제한 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801.9	-기타	
7801.91	--안티모니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주된 그 밖의 원소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801.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802	납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7802.00	-납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804	**납의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 가루와 플레이크(flake)**	
7804.1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	
7804.11	--시트(sheet)・스트립・박(箔)[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804.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804.20	-가루와 플레이크(flak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806	**납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7806.00	-납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79 류	**아연과 그 제품**	
7901	**아연의 괴(塊)**	
7901.1	**-합금하지 않은 아연**	
7901.11	--아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9.99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901.12	--아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9.99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901.20	-아연 합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902	**아연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7902.00	-아연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903	**아연의 더스트(dust)・가루・플레이크(flake)**	
7903.10	-아연 더스트(dus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9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904	**아연의 봉・프로파일(profile)・선(線)**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904.00	-아연의 봉・프로파일(profile)・선(線)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905	**아연의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	
7905.00	-아연의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907	**아연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7907.00	-아연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80 류	**주석과 그 제품**	
8001	**주석의 괴(塊)**	
8001.10	-합금하지 않은 주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001.20	-주석 합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002	**주석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8002.00	-주석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003	**주석의 봉・프로파일(profile)・선(線)**	
8003.00	-주석의 봉・프로파일(profile)・선(線)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007	**주석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8007.00	-주석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81 류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 서멧(cermet), 이들의 제품**	
8101	**텅스텐(월프람)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1.10	-가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01.9	**-기타**	
8101.94	--괴(塊)[단순히 소결(燒結)로 얻어지는 봉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101.96	--선(線)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01.97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01.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02	**몰리브데늄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2.10	-가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02.9	**-기타**	
8102.94	--괴(塊)[단순히 소결(燒結)로 얻어지는 봉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02.95	--봉[단순히 소결(燒結)로 얻어지는 것은 제외한다], 프로파일(profile)·판·시트(sheet)·스트립·박(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02.96	--선(線)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02.97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02.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03	**탄탈륨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3.20	-괴(塊)[단순히 소결(燒結)로 얻어지는 봉을 포함한다], 가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03.3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04	**마그네슘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4.1	**-괴(塊)**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104.11	--마그네슘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9.8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04.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04.2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04.30	-크기에 따라 등급을 매긴 줄밥(rasping)·연삭설(tuming)·알갱이, 가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0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05	**코발트의 매트(mat)와 코발트 제련으로 생산된 그 밖의 중간생산물, 코발트와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5.20	-코발트의 매트(mat)와 코발트 제련으로 생산된 그 밖의 중간생산물, 코발트의 괴(塊), 가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05.3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06	**비스무트(bismuth)와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6.00	-비스무트(bismuth)와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07	**카드뮴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7.20	-카드뮴의 괴(塊), 가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07.3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0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108	티타늄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8.20	-티타늄의 괴(塊), 가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08.3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0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09	지르코늄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9.20	-지르코늄의 괴(塊), 가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09.3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0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10	안티모니와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10.10	-안티모니의괴(塊), 가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10.2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1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11	망간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11.00	-망간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12	베릴륨・크로뮴・게르마늄・바나듐・갈륨・하프늄・인듐・니오븀(컬럼븀)・레늄・탈륨과 이것으로 만든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12.1	-베릴륨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112.12	--괴(塊), 가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12.13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1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12.2	**-크로뮴**	
8112.21	--괴(塊), 가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12.22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12.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12.5	**-탈륨**	
8112.51	--괴(塊), 가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12.52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12.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12.9	**-기타**	
8112.92	--괴(塊),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가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12.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13	**서멧(cermet)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13.00	-서멧(cermet)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82 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공구・도구・칼붙이・스푼・포크, 이들의 부분품**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201	수공구에 해당하는 것 중 가래・삽・곡괭이・픽스(picks)・괭이・포크와 쇠스랑, 도끼・빌훅(bill hook)과 이와 유사한 절단용 공구, 각종 전지가위, 낫・초절기(草切機)・울타리 전단기(剪斷機)・제재(製材)용 쐐기와 그 밖의 농업용・원예용・임업용 공구	
8201.10	-가래와 삽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1.30	-곡괭이・픽스(picks)・괭이・쇠스랑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1.40	-도끼・빌훅(bill hook)과 이와 유사한 절단용 도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1.50	-전정가위와 이와 유사한 한손용 전정가위[가금(家禽)용 가위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1.60	-울타리 전단기(剪斷機)・양손용 전지가위와 이와 유사한 양손용 전지가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1.90	-그 밖의 농업용・원예용・임업용 수공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2	수동식 톱, 각종 톱날[슬리팅(slitting)・슬로팅(slotting)・이가 없는 톱날을 포함한다]	
8202.10	-수동식 톱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2.20	-띠톱의 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2.3	-원형 톱날[슬리팅(slitting)이나 슬로팅(slotting) 톱날을 포함한다]	
8202.31	--작용하는 부분을 강(鋼)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2.39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2.40	-체인톱의 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2.9	-그 밖의 톱날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202.91	--금속가공용 직선형 톱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2.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3	**줄・플라이어(plier)[절단용 플라이어(plier)를 포함한다]・집게・핀셋・금속 절단용 가위・파이프커터(pipe-cutter)・볼트크로퍼(bolt cropper)・천공펀치와 이와 유사한 수공구**	
8203.10	-줄과 이와 유사한 공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3.20	-플라이어(plier)[절단용 플라이어(plier)를 포함한다]・집게・핀셋과 이와 유사한 공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3.30	-금속 절단용 가위와 이와 유사한 공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3.40	-파이프커터(pipe-cutter)・볼트크로퍼(bolt cropper)・천공펀치와 이와 유사한 공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4	**수동식 스패너(spanner)와 렌치(wrench)[토크미터렌치(torque meter wrench)를 포함하나 탭렌치(tap wrench)는 제외한다], 호환성 스패너소켓(spanner socket)(손잡이가 달린 것인지에 상관없다)**	
8204.1	**-수동식 스패너(spanner)와 렌치(wrench)**	
8204.11	--조절할 수 없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4.12	--조절할 수 있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4.20	-호환성 스패너소켓(spanner socket)(손잡이가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5	**수공구(유리 가공용 다이아몬드공구를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블로램프(blow lamp), 공작기계 또는 워터제트 절단기의 부분품・부속품 외의 바이스(vice)・클램프(clamp)와 이와 유사한 것, 모루, 휴대용 화덕, 프레임을 갖춘 수동식이나 페달식 그라인딩휠(grinding wheel)**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205.10	-드릴링・드레딩(threading)이나 태핑용 (tapping) 공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5.20	-망치(hammer, sledge hamm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5.30	-목재 가공용 대패・끌・둥근끌과 이와 유사한 절단공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5.40	-스크루드라이버(screwdriv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5.5	**-그 밖의 수공구(유리 가공용 다이아몬드공구를 포함한다)**	
8205.51	--가정용 공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5.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5.60	-블로램프(blow lamp)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5.70	-바이스(vice)・클램프(clamp)와 이와 유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5.90	-기타(이 호의 둘 이상의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트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6	**제 8202 호부터 제 8205 호까지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공구가 소매용 세트로 되어 있는 것**	
8206.00	-제 8202 호부터 제 8205 호까지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공구가 소매용 세트로 되어 있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7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pressing)용・스탬핑(stamping)용・펀칭(punching)용・태핑(tapping)용・드레딩(threading)용・드릴링(drilling)용・보링(boring)용・브로칭(broaching)용・밀링(milling)용・터닝(turning)용・스크루드라이빙(screw driving)용][금속의 인발(引拔)용이나 압출용 다이(die)와 착암용이나 굴착용 공구를 포함한다]**	
8207.1	**-착암용이나 굴착용 공구**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207.13	--작용하는 부분을 서멧(cermet)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7.19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7.20	-금속의 인발(引拔)용이나 압출용 다이(di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7.30	-프레싱(pressing)용・스탬핑(stamping)용・펀칭(punching)용 공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7.40	-태핑(tapping)용이나 드레딩(threading)용 공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7.50	-드릴링(drilling)용 공구(착암기용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7.60	-보링(boring)용이나 브로칭(broaching)용 공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7.70	-밀링(milling)용 공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7.80	-터닝(turning)용 공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7.90	-그 밖의 호환성 공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8	**기계용이나 기구용 칼과 절단용 칼날**	
8208.10	-금속 가공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8.20	-목재 가공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8.30	-주방기구용이나 식품공업에 사용되는 기계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8.40	-농업용・원예용・임업용 기계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20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9	**공구용 판·봉·팁과 이와 유사한 것[서멧(cermet)으로 만든 것으로서 장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209.00	-공구용 판·봉·팁과 이와 유사한 것[서멧(cermet)으로 만든 것으로서 장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10	**수동식 기계기구(음식물의 조리·제공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 개의 중량이 10 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8210.00	-수동식 기계기구(음식물의 조리·제공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 개의 중량이 10 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11	**칼(톱니가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절단용 칼날을 갖춘 것으로 한정하고 전정용 칼을 포함하며 제8208 호의 칼은 제외한다)과 그 날**	
8211.10	-위 물품이 조합된 세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11.9	**-기타**	
8211.91	--칼날이 고정된 식탁용 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11.92	--칼날이 고정된 그 밖의 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11.93	--칼날이 고정된 것 외의 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11.94	--칼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11.95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손잡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12	**면도기와 면도날[면도날의 블랭크(blank)로서 스트립 모양인 것을 포함한다]**	
8212.10	-면도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12.20	-안전면도날[면도날의 블랭크(blank)로서 스트립 모양인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12.90	-그 밖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13	**가위, 재단용 가위와 이와 유사한 가위, 이들의 날**	
8213.00	-가위, 재단용 가위와 이와 유사한 가위, 이들의 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14	**그 밖의 칼붙이 제품[예: 이발기·정육점용이나 주방용 칼붙이·토막용 칼(chopper)과 다지기(mincing)용 칼·종이용 칼], 매니큐어·페디큐어(pedicure) 세트와 용구(손톱줄을 포함한다)**	
8214.10	-종이용 칼·편지개봉기·지우개용 칼·연필깎이와 그 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14.20	-매니큐어나 페디큐어(pedicure) 세트와 용구(손톱줄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1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15	**스푼·포크·국자·스키머(skimmer)·케이크서버(cake-server)·생선용 칼·버터용 칼·설탕집게와 이와 유사한 주방용품이나 식탁용품**	
8215.10	-위 물품이 조합된 세트(최소한 한 가지는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15.20	-위 물품이 조합된 그 밖의 세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15.9	**-기타**	
8215.91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15.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83 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각종 제품**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301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자물쇠(열쇠식・다이얼식・전기작동식),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걸쇠와 걸쇠가 붙은 프레임으로 자물쇠가 결합되어 있는 것, 이들 물품에 사용되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열쇠	
8301.10	-자물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01.20	-모터차량에 사용되는 자물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01.30	-가구에 사용되는 자물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01.40	-그 밖의 자물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01.50	-걸쇠와 걸쇠가 붙은 프레임으로 자물쇠가 결합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01.6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01.70	-별도로 제시되는 열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02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블라인드・차체(coachwork)・마구・트렁크・장・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모자걸이・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castor),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자동도어 폐지기	
8302.10	-경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02.20	-카스터(casto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02.30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02.4	-그 밖의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302.41	--건물용으로 적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02.42	--기타(가구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02.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02.50	-모자걸이·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02.60	-자동도어 폐지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03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갑하거나(armoured) 보강한 금고, 스트롱박스(strong-box), 스트롱룸(strong-room)용 문과 저장실, 현금함이나 손금고와 이와 유사한 것**	
8303.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갑하거나 (armoured) 보강한 금고, 스트롱박스(strong-box), 스트롱룸(strong-room)용 문과 저장실, 현금함이나 손금고와 이와 유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04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서류정리함·카드인덱스함·페이퍼 트레이(paper tray)·페이퍼 레스트(paper rest)·펜 트레이(pen tray)·사무실용스탬프스탠드(stamp stand)와 이와 유사한 사무실용이나 책상용 비품(제 9403 호에 해당하는 사무실용 가구는 제외한다)**	
8304.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서류정리함·카드인덱스함·페이퍼 트레이(paper tray)·페이퍼 레스트(paper rest)·펜 트레이(pen tray)·사무실용스탬프스탠드(stamp stand)와 이와 유사한 사무실용이나 책상용 비품(제 9403 호에 해당하는 사무실용 가구는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05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루스-리프(loose-leaf)식 바인더용이나 서류철용 피팅(fitting)·서신용 클립·레터코너(letter corner)·서류용 클립·색인용 태그와 이와 유사한 사무용품,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스트립 모양인 스테이플(staple)(예: 사무실용·가구류용·포장용의 것)**	
8305.10	-루스-리프(loose-leaf)식 바인더용이나 서류철용 피팅(fitting)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305.20	-스트립 모양인 스테이플(stapl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05.90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06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벨·징과 이와 유사한 것(전기식은 제외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품,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사진틀·그림틀이나 이와 유사한 틀,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거울**	
8306.10	-벨·징과 이와 유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06.2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품**	
8306.21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06.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06.30	-사진틀·그림틀이나 이와 유사한 틀, 거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07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플렉시블 튜빙(flexible tubing)(연결구류가 붙은 것인지에 상관없다)**	
8307.10	-철강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07.90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08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걸쇠·걸쇠가 붙은 프레임·버클(buckle)·버클(buckle)걸쇠·훅(hook)·아이(eye)·아일릿(eyelet)과 이와 유사한 것(의류 또는 의류 부속품·신발류·신변장식용품·손목시계·서적·차양·가죽제품·여행구나 마구 또는 그 밖의 제품으로 된 물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관 리벳(tubular rivet)이나 두 가닥 리벳(bifurcated rivet),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구슬과 스팽글(spangle)**	
8308.10	-훅(hook)·아이(eye)·아일릿(eyele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308.20	-관 리벳(tubular rivet)이나 두 가닥 리벳 (bifurcated rive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08.90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09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전(栓)·캡·뚜껑[병마개·스크루캡(screw cap)·점적구용 전(栓)을 포함한다]·병용 캡슐·나선형 마개·마개용 커버·실(seal)과 그 밖의 포장용 부속품**	
8309.10	-크라운코르크(crown cork)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0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1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사인판·명판·주소판과 이와 유사한 판, 숫자·문자와 그 밖의 심벌(제 9405 호의 것은 제외한다)**	
8310.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사인판·명판·주소판과 이와 유사한 판, 숫자·문자와 그 밖의 심벌(제 9405 호의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11	**비금속(卑金屬)이나 금속탄화물로 만든 선·봉·관·판·용접봉과 이와 유사한 물품[금속이나 금속탄화물의 납땜·납접·용접·용착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플럭스(flux)를 도포하였거나 심(芯)에 충전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 가루를 응결시켜 제조한 금속 스프레이(metal spraying)용 선과 봉**	
8311.1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용접봉[플럭스(flux)를 봉에 도포한 것으로서 전기아크용접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11.2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선[플럭스(flux)를 심(芯)에 충전한 것으로서 전기아크용접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11.3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봉과 선[플럭스(flux)를 봉에 도포하였거나 심(芯)에 충전한 것으로서 불로 납땜·납접·용접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1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16 부 기계류·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제 84 류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01	**원자로, 방사선을 조사(照射)하지 않은 원자로용 연료 요소(카트리지)와 동위원소 분리용 기기**	
8401.10	-원자로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1.20	-동위원소 분리용 기기와 그 부분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1.30	-방사선을 조사(照射)하지 않은 연료요소(카트리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1.40	-원자로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2	**증기발생보일러(저압증기도 발생시킬 수 있는 중앙난방용 온수보일러는 제외한다)와 과열수보일러(super-heated water boiler)**	
8402.1	**-증기발생보일러**	
8402.11	--증기발생량이 시간당 45 톤을 초과하는 수관(水管)보일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2.12	--증기발생량이 시간당 45 톤 이하인 수관(水管)보일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2.19	--그 밖의 증기발생보일러(복합보일러를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2.20	-과열수보일러(super-heated water boiler)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2.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3	**중앙난방용 보일러(제 8402 호의 것은 제외한다)**	
8403.10	-보일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3.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4	**제 8402 호나 제 8403 호의 보일러용 부속기기(예: 연료절약기・과열기・그을음제거기・가스회수기)와 증기원동기용 응축기**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04.10	-제 8402 호나 제 8403 호의 보일러용 부속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4.20	-증기원동기용 응축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4.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5	**발생로가스(producer gas)나 수성(水性)가스 발생기, 아세틸렌가스 발생기와 이와 유사한 습식가스 발생기(청정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8405.10	-발생로가스(producer gas)나 수성(水性)가스 발생기, 아세틸렌가스 발생기와 이와 유사한 습식가스 발생기(청정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5.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6	**증기터빈**	
8406.10	-선박추진용 터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6.8	**-그 밖의 터빈**	
8406.81	--출력이 40 메가와트를 초과하는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6.82	--출력이 40 메가와트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6.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7	**왕복이나 로터리 방식으로 움직이는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	
8407.10	-항공기용 엔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7.2	**-선박추진용 엔진**	
8407.21	--아웃보드(outboard) 모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7.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7.3	**-제 87 류의 차량 추진용 왕복 피스톤엔진**	
8407.31	--실린더용량이 50 시시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7.32	--실린더용량이 50 시시 초과 250 시시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7.33	--실린더용량이 250 시시 초과 1,000 시시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7.34	--실린더용량이 1,0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7.90	-그 밖의 엔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8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엔진이나 세미디젤엔진)**	
8408.10	-선박추진용 엔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8.20	-제 87 류의 차량 추진용 엔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8.90	-그 밖의 엔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9	**제 8407 호나 제 8408 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8409.10	-항공기 엔진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9.9	**-기타**	
8409.91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에 전용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9.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0	**수력터빈·수차와 이들의 조정기**	
8410.1	**-수력터빈과 수차**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10.11	-동력이 1,000 킬로와트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0.12	--동력이 1,000 킬로와트 초과 10,000 킬로와트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0.13	-동력이 10,000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0.90	-부분품(조정기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1	**터보제트·터보프로펠러와 그 밖의 가스터빈**	
8411.1	**-터보제트**	
8411.11	--추진력이 25 킬로뉴턴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1.12	--추진력이 25 킬로뉴턴을 초과하는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1.2	**-터보프로펠러**	
8411.21	--출력이 1,100 킬로와트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1.22	--출력이 1,100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1.8	**-그 밖의 가스터빈**	
8411.81	--출력이 5,000 킬로와트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1.82	--출력이 5,000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1.9	**-부분품**	
8411.91	--터보제트나 터보프로펠러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1.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2	**그 밖의 엔진과 모터**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12.10	-터보제트 외의 반동 엔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2.2	**-수력엔진과 수력모터**	
8412.21	--리니어 액팅식(실린더)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2.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2.3	**-압축공기식 엔진과 모터**	
8412.31	--리니어 액팅식(실린더)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2.3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2.8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2.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3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 엘리베이터**	
8413.1	**-펌프(계기를 갖춘 것이나 갖출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8413.11	--연료나 윤활유 급유용 펌프(주유소나 정비소에서 사용하는 형태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3.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3.20	-수지식 펌프(소호 제 8413.11 호나 제 8413.19 호의 것은 제외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3.30	-연료·윤활유 급유용이나 냉각 냉매용 펌프(피스톤 내연기관용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3.40	-콘크리트 펌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3.50	-그 밖의 용적형 왕복펌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3.60	-그 밖의 용적형 회전펌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3.70	-그 밖의 원심펌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3.8	**-그 밖의 펌프와 액체엘리베이터**	
8413.81	--펌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3.82	--액체엘리베이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3.9	**-부분품**	
8413.91	--펌프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3.92	--액체엘리베이터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4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8414.10	-진공펌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4.20	-손이나 발로 작동하는 기체펌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4.30	-냉장·냉동 설비용 압축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4.40	-예인용 바퀴달린 섀시 위에 장착된 기체압축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4.5	**-팬**	
8414.51	--테이블용·바닥용·벽용·창용·천장용·지붕용 팬(출력이 125 와트 이하인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4.5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14.60	-후드(hood)(수평면의 최대길이가 120 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4.8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4.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5	**공기조절기(동력구동식 팬과 온도 및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	
8415.10	-창문, 벽, 천장 또는 바닥에 고정되도록 설계된 것(일체형이나 분리형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5.20	-자동차용(탑승자용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5.8	**-기타**	
8415.81	--냉각유닛과 냉·열순환 반전용 밸브를 결합한 것(반전가능 열펌프를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5.82	--기타(냉각유닛을 결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5.83	--냉각유닛을 결합하지 않은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5.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6	**액체연료·잘게 부순 고체연료·기체연료를 사용하는 노(爐)용 버너, 기계식 스토커(stoker)[이들의 기계식 불판·기계식 회(灰) 배출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를 포함한다]**	
8416.10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노(爐)용 버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6.20	-그 밖의 노(爐)용 버너[콤비네이션 버너(combination burner)를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6.30	-기계식 스토커(stoker)[이들의 기계식 불판·기계식 회(灰)배출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를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16.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7	**비전기식 공업용이나 실험실용 노(爐)와 오븐(소각로를 포함한다)**	
8417.10	-배소(焙燒)용·용해용이나 그 밖의 열처리용 노(爐)와 오븐(광석·황철광이나 금속의 처리용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7.20	-베이커리용 오븐(비스킷용 오븐을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7.8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7.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8	**냉장고·냉동고와 그 밖의 냉장기구나 냉동기구(전기식인지에 상관없다), 열펌프(제 8415 호의 공기조절기는 제외한다)**	
8418.10	-냉장고·냉동고(분리된 외부 문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8.2	**-가정형 냉장고**	
8418.21	--압축식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8.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8.30	-체스트(chest)형 냉동고(용량이 800 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8.40	-직립형 냉동고(용량이 900 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8.50	-냉장용이나 냉동용 장치를 갖춘 저장과 전시 목적의 그 밖의 가구[체스트(chest), 캐비닛, 전시용 카운터, 쇼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8.6	**-그 밖의 냉장기구나 냉동기구와 열펌프**	
8418.61	--열펌프(제 8415 호의 공기조절기는 제외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18.6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8.9	**-부분품**	
8418.91	--냉장기구나 냉동기구를 넣을 수 있도록 설계된 가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8.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9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실험실장치[전기가열식(제 8514 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인지에 상관없으며,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기계 또는 설비는 제외한다]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 가열기**	
8419.1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 가열기(비전기식으로 한정한다)**	
8419.11	--가스식인즉시식 물가열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9.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9.20	-내과용・외과용・실험실용 살균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9.3	**-건조기**	
8419.31	--농산물용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9.32	--목재용・제지펄프용・종이용・판지용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9.3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9.40	-증류기나 정류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9.50	-열교환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19.60	-기체 액화용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9.8	**-그 밖의 기기**	
8419.81	--뜨거운 음료 제조용이나 음식물의 조리용이나 가열용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9.8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9.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0	**캘린더기(calendering machine)나 그 밖의 로울기(rolling machine)(금속이나 유리 가공용은 제외한다)와 이것에 사용되는 실린더**	
8420.10	-캘린더기(calendering machine)나 그 밖의 로울기(rolling machine)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0.9	**-부분품**	
8420.91	--실린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0.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1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8421.1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8421.11	--크림분리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1.12	--의류탈수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1.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1.2	**-액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8421.21	--물의 여과용이나 청정용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21.22	--물 외의 음료의 여과용이나 청정용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1.23	--내연기관용 유류 여과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1.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1.3	**-기체의 여과기나 청정기**	
8421.31	--내연기관용 공기 여과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1.3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1.9	**-부분품**	
8421.91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1.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2	**접시세척기,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 병·깡통·상자·자루·그 밖의 용기의 충전용·봉함용·실링(sealing)용·레이블 부착용 기계, 병·단지·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 부착(capsuling)용 기계, 그 밖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포함한다), 음료용 탄산가스 주입기**	
8422.1	**-접시세척기**	
8422.11	--가정형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2.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2.20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2.30	-병·깡통·상자·자루·그 밖의 용기의 충전용·봉함용·실링(sealing)용·레이블 부착용 기계, 병·단지·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 부착(capsuling)용 기계, 음료용 탄산가스 주입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22.40	-그 밖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2.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3	**중량 측정기기[감량(感量)이 50 밀리그램 이하인 저울은 제외하며, 중량측정식 계수기와 검사기를 포함한다]와 각종 저울 추**	
8423.10	-체중기(유아용 저울을 포함한다)와 가정형 저울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3.20	-컨베이어용 연속계량식 저울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3.30	-정량저울과 설정된 양의 재료를 포대나 용기에 주입하기 위한 저울[호퍼스케일(hopper scale)을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3.8	**-그 밖의 중량 측정기기**	
8423.81	--최대 측정용량이 30 킬로그램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3.82	--최대 측정용량이 30 킬로그램 초과 5,000 킬로그램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3.8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3.90	-각종 저울 추와 저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4	**액체나 가루의 분사용·살포용·분무용 기기(수동식인지에 상관없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	
8424.10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4.20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4.30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24.4	-농업용 또는 원예용 방제기	
8424.41	--휴대용 분무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4.4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4.8	-그 밖의 기기	
8424.82	--농업용이나 원예용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4.8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4.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5	풀리 태클(Pulley tackle)과 호이스트(hoist)[스킵 호이스트(skip hoist)는 제외한다], 윈치(winch)와 캡스턴(capstan), 잭(jack)	
8425.1	-풀리 태클(Pulley tackle)과 호이스트(hoist)[스킵 호이스트(skip hoist)나 차량을 들어 올리는 데에 사용하는 호이스트(hoist)는 제외한다]	
8425.11	--전동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5.3	-윈치(winch)와 캡스턴(capstan)	
8425.31	--전동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5.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5.4	-잭(jack)과 차량을 들어 올리는 데에 사용하는 호이스트(hoist)	
8425.41	--차고용 고정식 재킹시스템(jacking system)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5.42	--그 밖의 잭(jack)과 호이스트(hoist)(액압식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5.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6	**선박의 데릭(derrick), 크레인(케이블크레인을 포함한다), 이동식 양하대·스트래들 캐리어 (straddle carrier), 크레인이 결합된 작업트럭**	
8426.1	**-천장주행 크레인·트랜스포터크레인·갠트리 크레인(gantry crane)·교각(橋脚)형 크레인·이동식 양하대·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	
8426.11	--고정식 천장주행 크레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6.12	--타이어가 달린 이동식 양하대와 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6.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6.20	-타워크레인(tower cran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6.30	-문형이나 정치형 지브 크레인(jib cran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6.4	**-그 밖의 기계[자주식(自走式)으로 한정한다]**	
8426.41	--타이어가 달린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6.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6.9	**-그 밖의 기계**	
8426.91	--도로주행 차량에 장착하도록 제작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6.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7	**포크리프트트럭(fork-lift truck), 그 밖의 작업트럭[권양(捲揚)용이나 취급용 장비가 결합된 것으로 한정한다]**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27.10	-전동기로 구동되는 자주식(自走式) 트럭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7.20	-그 밖의 자주식(自走式) 작업트럭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7.90	-그 밖의 작업트럭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8	**그 밖의 권양(捲揚)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릭(teleferic)]**	
8428.10	-리프트와 스킵호이스트(skip hois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8.20	-뉴매틱식 엘리베이터와 컨베이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8.3	**-그 밖의 연속작동(continuous-action)식 물품용이나 재료용 엘리베이터와 컨베이어**	
8428.31	--지하 작업용으로 특수 설계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8.32	--그 밖의 버켓형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8.33	--그 밖의 벨트형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8.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8.40	-에스컬레이터와 무빙 워크웨이(moving walkway)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8.60	-텔레페릭(teleferic)・의자 양하기・스키용 드래그라인(dragline)・퓨니쿨러(funicular)용 견인장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8.90	-그 밖의 기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29	자주식(自走式) 불도저(bulldozer)·앵글도저(angledozer)·그레이더(grader)·레벨러(leveller)·스크래퍼(scraper)·메커니컬셔블(mechanical shovel)·엑스커베이터(excavator)·셔블로더(shovel loader)·탬핑머신(tamping machine)·로드롤러(road roller)	
8429.1	-불도저(bulldozer)·앵글도저(angledozer)	
8429.11	--무한 궤도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9.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9.20	-그레이더(grader)와 레벨러(levell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9.30	-스크래퍼(scrap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9.40	-탬핑머신(tamping machine)과 로드롤러(road roll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9.5	-메커니컬셔블(mechanical shovel)과 엑스커베이터(excavator)·셔블로더(shovel loader)	
8429.51	--프론트엔드 셔블로더(front-end shovel load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9.52	--360 도 회전의 상부구조를 가진 기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9.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0	그 밖의 이동용·정지(整地)용·지균(地均)용·스크래핑(scraping)용·굴착용·탬핑(tamping)용·콤팩팅(compacting)용·채굴용·천공용 기계(토양용·광석용·광물용으로 한정한다), 항타기와 항발기, 스노플라우(snow-plough)와 스노블로어(snow-blower)	
8430.10	-항타기(杭打機)와 항발기(抗拔機)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30.20	-스노플라우(snow-plough)와 스노블로어 (snow-blow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0.3	**-석탄이나 암석 절단기와 터널 뚫는 기계**	
8430.31	--자주식(自走式)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0.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0.4	**-그 밖의 천공용이나 시굴용 기계**	
8430.41	--자주식(自走式)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0.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0.50	-그 밖의 기계[자주식(自走式)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0.6	**-그 밖의 기계[자주식(自走式)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	
8430.61	--탬핑(tamping)용이나 콤팩팅(compacting)용 기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0.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1	**제 8425 호부터 제 8430 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8431.10	-제 8425 호의 기계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1.20	-제 8427 호의 기계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1.3	**-제 8428 호의 기계의 것**	
8431.31	--리프트·스킵호이스트(skip hoist)·에스컬레이터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1.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31.4	**-제 8426 호・제 8429 호・제 8430 호의 기계의 것**	
8431.41	--버켓(bucket)・셔블(shovel)・그랩(grab)과 그립(grip)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1.42	--불도저(bulldozer)나 앵글도저(angledozer)의 블레이드(blad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1.43	--소호 제 8430.41 호나 제 8430.49 호의 천공용이나 시굴용 기계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1.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2	**농업용・원예용・임업용 기계(토양 정리용이나 경작용으로 한정한다)와 잔디용이나 운동장용 롤러**	
8432.10	-플라우(쟁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2.2	**-하로우(쇄토기)・스카리파이어・컬티베이터(중경기)・제초기와 호우**	
8432.21	--디스크 하로우(쇄토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2.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2.3	**-파종기・식부기(植付機)・이식기**	
8432.31	--무경간(無耕墾) 직접 농업용 파종기・식부기(植付機)・이식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2.3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2.4	**-퇴비 살포기와 비료 살포기**	
8432.41	--퇴비 살포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2.42	--비료 살포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2.80	-그 밖의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2.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3	**수확기나 탈곡기(짚이나 건초 결속기를 포함한다), 풀 베는 기계, 새의 알·과실이나 그 밖의 농산물의 세정기·분류기·선별기(제 8437 호의 기계는 제외한다)**	
8433.1	**-공원이나 운동장의 잔디 깎는 기계**	
8433.11	--동력식(수평으로 회전하는 절단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3.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3.20	-그 밖의 풀 베는 기계[트랙터 장착용 커터바(cutter bar)를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3.30	-그 밖의 건초제조용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3.40	-짚이나 건초 결속기[픽업(pick-up)결속기를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3.5	**-그 밖의 수확기와 탈곡기**	
8433.51	--수확·탈곡 겸용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3.52	--그 밖의 탈곡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3.53	--구경(球莖)이나 괴경(塊莖)의 수확기[근채(根菜) 수확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3.5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3.60	-새의 알·과실이나 그 밖의 농산물의 세정기·분류기·선별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3.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34	**착유기와 낙농기계**	
8434.10	-착유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4.20	-낙농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4.90	-부분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5	**포도주·사과술·과실주스나 이와 유사한 음료의 제조에 사용되는 프레스(press)·크러셔(crusher)와 이와 유사한 기계**	
8435.10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5.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6	**그 밖의 농업용·원예용·임업용·가금(家禽) 사육용·양봉용 기계(기계장치나 가열장치를 갖춘 발아용 기기를 포함한다)와 가금(家禽)의 부란기와 양육기**	
8436.10	-동물사료 조제용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6.2	**-가금(家禽) 사육용 기계, 가금(家禽)의 부란기와 양육기**	
8436.21	--가금(家禽)의 부란기와 양육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6.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6.80	-그 밖의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6.9	**-부분품**	
8436.91	--가금(家禽) 사육용 기계나 가금(家禽)의 부란기와 양육기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6.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37	**종자・곡물・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세정기・분류기・선별기, 제분업용 기계나 곡물・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가공기계(농장형은 제외한다)**	
8437.10	-종자・곡물・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세정기・분류기・선별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7.80	-그 밖의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7.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8	**식음료의 조제・제조 산업용 기계(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동물성 또는 비휘발성인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의 추출용이나 조제용 기계는 제외한다)**	
8438.10	-베이커리 기계와 마카로니・스파게티・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품의 제조용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8.20	-과자・코코아・초콜릿 제조용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8.30	-설탕 제조용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8.40	-양조용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8.50	-육류나 가금(家禽)육의 조제용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8.60	-과실・견과・채소의 조제용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8.80	-그 밖의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8.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9	**섬유소 펄프의 제조용 기계와 종이・판지의 제조용이나 완성가공용 기계**	
8439.10	-섬유소 펄프의 제조용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9.20	-종이·판지의 제조용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9.30	-종이·판지의 완성가공용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9.9	**-부분품**	
8439.91	--섬유소 펄프 제조용 기계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9.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0	**제본기계(제본용 재봉기를 포함한다)**	
8440.10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0.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1	**그 밖의 제지용 펄프·종이·판지의 가공기계(각종 절단기를 포함한다)**	
8441.10	-절단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1.20	-종이백·봉지·봉투 제조용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1.30	-카톤(carton)·박스·케이스·튜브·드럼·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기의 제조기계[몰딩(moulding)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1.40	-제지용 펄프·종이·판지 제품의 몰딩(moulding)용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1.80	-그 밖의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1.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42	**플레이트·실린더나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의 조제용이나 제조용 기계류·장치·장비(제 8456 호부터 제 8465 호까지의 기계는 제외한다),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 인쇄용으로 조제가공[예: 평삭(平削)·그레인·연마]한 플레이트·실린더와 석판석**	
8442.30	-기계류·장치·장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2.40	-위의 기계류·장치·장비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2.50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부품, 인쇄용으로 조제가공[예: 평삭(平削)·그레인·연마]한 플레이트·실린더와 석판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3	**제 8442 호의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복사기·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8443.1	**-제 8442 호의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8443.11	--오프셋(offset) 인쇄기계[릴(reel)식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3.12	--오프셋(offset) 인쇄기계[시트(sheet)식 사무실용으로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22 센티미터 이하, 다른 변이 36 센티미터 이하인 시트(sheet)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3.13	--그 밖의 오프셋(offset) 인쇄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3.14	--활판인쇄용 기계[릴(reel)식의 것으로 곡면인쇄용은 제외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3.15	--활판인쇄용 기계[릴(reel)식 외의 것으로 곡면인쇄용은 제외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3.16	--곡면인쇄용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3.17	--그라비어(gravure) 인쇄용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43.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3.3	**-그 밖의 인쇄기·복사기·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8443.31	--자동자료처리기계나 네트워크로 연결되며, 인쇄·복사·팩시밀리 전송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3.32	--자동자료처리기계나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그 밖의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3.3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3.9	**-부분품과 부속품**	
8443.91	--제 8442 호의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3.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4	**인조섬유의 방사(紡絲)용·늘림(drawing)용·텍스처(texture)용·절단용 기계**	
8444.00	-인조섬유의 방사(紡絲)용·늘림(drawing)용·텍스처(texture)용·절단용 기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5	**방적준비기계, 방적기·합사기(合絲機)·연사기(撚絲機)와 그 밖의 방직사 제조기계, 권사기(捲絲機)[위권기(緯捲機)를 포함한다]와 제 8446 호나 제 8447 호의 기계에 사용되는 방직사를 제조하는 기계와 준비기계**	
8445.1	**-방적준비기계**	
8445.11	--카드기(carding machin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5.12	--코밍기(combing machin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5.13	--연조기나 조방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45.20	-방적기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5.30	-합사기(合絲機)나 연사기(撚絲機)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5.40	-권사기(捲絲機)[위권기(緯捲機)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6	**직기(직조기)**	
8446.10	-폭이 30 센티미터 이하인 소폭직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6.2	**-폭이 30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직기(셔틀형으로 한정한다)**	
8446.21	--직조기(동력구동식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6.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6.30	-폭이 30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직기[셔틀리스(shuttleless)형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7	**편직기, 스티치본딩기(stitch-bonding machine), 짐프사(gimped yarn)·튈(tulle)·레이스·자수천·트리밍(trimming)·브레이드(braid)나 망의 제조용 기계·터프팅(tufting) 기계**	
8447.1	**-원형 편기**	
8447.11	--실린더 지름이 165 밀리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7.12	--실린더 지름이 16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7.20	-횡(橫) 편직기와 스티치 본딩기(stitch-bonding machin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48	제 8444 호・제 8445 호・제 8446 호・제 8447 호의 기계의 보조기계[예: 도비(dobby)기・자카드기・자동정지기・셔틀교환기], 이 호나 제 8444 호・제 8445 호・제 8446 호・제 8447 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예: 스핀들・스핀들 플라이어・침포・코움(comb)・방사니플・셔틀・종광(heald)・종광 프레임・메리야스용 바늘]	
8448.1	-제 8444 호・제 8445 호・제 8446 호・제 8447 호의 기계의 보조기계	
8448.11	--도비(dobby)기・자카드기와 이들을 사용하기 위한 카드의 축소용・복사용・천공용・조립용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8.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8.20	-제 8444 호에서 규정한 기계나 이들의 보조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8.3	-제 8445 호의 기계나 이들의 보조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8448.31	--침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8.32	--침포를 제외한 방적준비기계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8.33	--스핀들・스핀들 플라이어・스피닝 링・링트래블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8.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8.4	-직기(직조기)나 그 보조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8448.42	--직조기용 바디・종광(heald)과 종광 프레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8.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8.5	-제 8447 호의 기계나 그 보조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8448.51	--바늘땀(stitch) 형성에 사용하는 싱커(sinker)・바늘과 그 밖의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8.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9	**펠트나 부직포(성형인 것을 포함한다)의 제조·완성가공용 기계(펠트모자 제조용 기계를 포함한다)와 모자 제조용 형(型)**	
8449.00	-펠트나 부직포(성형인 것을 포함한다)의 제조·완성가공용 기계(펠트모자 제조용 기계를 포함한다)와 모자 제조용 형(型)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0	**가정형이나 세탁소형 세탁기(세탁·건조 겸용기를 포함한다)**	
8450.1	**-1 회의 세탁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 킬로그램 이하인 것**	
8450.11	--완전자동 세탁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0.12	--그 밖의 세탁기(원심탈수기를 내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0.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0.20	-1 회의 세탁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0.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1	**세탁용·클리닝용·쥐어짜기용·건조용·다림질용·프레스용[퓨징프레스(fusing press)를 포함한다]·표백용·염색용·드레싱용·완성가공용·도포용·침지(沈漬)용 기계류[제 8450 호의 것은 제외하며, 방적용 실·직물류나 이들 제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와 리놀륨과 같은 바닥깔개의 제조에 사용되는 직물이나 그 밖의 지지물에 페이스트를 입히는 기계, 직물류의 감기(reeling)용·풀기(unreeling)용·접음용·절단용·핑킹(pinking)용 기계**	
8451.10	-드라이클리닝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1.2	**-건조기**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51.21	--1 회의 건조 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 킬로그램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1.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1.30	-다림질기와 프레스[퓨징프레스(fusing press)를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1.40	-세탁기・표백기・염색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1.50	-감기(reeling)용 기계・풀기(unreeling)용 기계・접음기・절단기・핑킹(pinking)용 기계(직물용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1.80	-그 밖의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1.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2	**재봉기(제 8440 호의 제본용 재봉기는 제외한다), 재봉기용으로 특수 제작된 가구・밑판・덮개, 재봉기용 바늘**	
8452.10	-가정형 재봉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2.2	**-그 밖의 재봉기**	
8452.21	--자동식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2.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2.30	-재봉기용 바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2.90	-재봉기용으로 특수 제작된 가구・밑판・덮개와 그 부분품, 그 밖의 재봉기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3	**원피나 가죽의 유피(柔皮)준비기・유피(柔皮)기・가공기계, 원피・가죽으로 만든 신발이나 그 밖의 물품의 제조용・수선용 기계(재봉기는 제외한다)**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53.10	-원피·가죽의 유피(柔皮)준비기·유피(柔皮)기·가공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3.20	-신발의 제조용이나 수선용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3.80	-그 밖의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3.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4	**전로·레이들(ladle)·잉곳(ingot)용 주형과 주조기(야금용이나 금속 주조용으로 한정한다)**	
8454.10	-전로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4.20	-잉곳(ingot)용 주형과 레이들(ladle)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4.30	-주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4.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5	**금속 압연기와 그 롤**	
8455.10	-관 압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5.2	**-그 밖의 압연기**	
8455.21	--열간(熱間)이나 열·냉간(熱冷間) 겸용 압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5.22	--냉간(冷間) 압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5.30	-압연기용 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5.90	-그 밖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56	각종 재료의 가공 공작기계[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광자빔·초음파·방전·전기화학·전자빔·이온빔·플라즈마아크(plasma arc) 방식으로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와 워터제트 절단기	
8456.1	-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광자빔 방식으로 하는 것	
8456.11	--레이저 방식으로 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6.12	--광선·광자빔 방식으로 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6.20	-초음파 방식으로 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6.30	-방전 방식으로 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6.40	-플라즈마아크(plasma arc) 방식으로 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6.50	-워터제트 절단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7	금속 가공용 머시닝센터(machining centre)·유닛 컨스트럭션 머신(unit construction machine)(싱글스테이션)·멀티스테이션(multi-station)의 트랜스퍼머신(transfer machine)	
8457.10	-머시닝센터(machining centr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7.20	-유닛 컨스트럭션 머신(unit construction machine)(싱글스테이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7.30	-멀티스테이션(multi-station)의 트랜스퍼머신(transfer machin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8	금속 절삭가공용 선반(터닝센터를 포함한다)	
8458.1	-수평 선반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58.11	--수치제어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8.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8.9	-그 밖의 선반	
8458.91	--수치제어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8.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9	금속 절삭가공용 공작기계[웨이타입(way-type) 유닛헤드머신(unit head machine)을 포함한다]로서 드릴링(drilling)·보링(boring)·밀링(milling)·나선가공·태핑(tapping)에 사용되는 것[제 8458 호의 선반(터닝센터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8459.10	-웨이타입(way-type) 유닛헤드머신(unit head machin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9.2	-그 밖의 드릴링머신(drilling machine)	
8459.21	--수치제어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9.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9.3	-그 밖의 보링밀링머신(boring-milling machine)	
8459.31	--수치제어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9.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9.4	-그 밖의 보링머신(boring machine)	
8459.41	--수치제어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9.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9.5	-무릎형 밀링머신(milling machine)	
8459.51	--수치제어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9.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9.6	**-그 밖의 밀링머신(milling machine)**	
8459.61	--수치제어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9.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9.70	-그 밖의 나사 절삭용 기계나 태핑머신(tapping machin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0	**디버링(deburring)·샤프닝(sharpening)·그라인딩(grinding)·호닝(honing)·래핑(lapping)·폴리싱(polishing)이나 그 밖의 완성가공용 공작기계로서 연마석·연마재·광택재로 금속이나 서멧(cermet)을 가공하는 것(제 8461 호의 기어절삭기·기어연삭기·기어완성가공기는 제외한다)**	
8460.1	**-평면 연삭기**	
8460.12	--수치제어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0.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0.2	**-그 밖의 연삭기**	
8460.22	--무심연삭기(수치제어식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0.23	--그 밖의 원통연삭기(수치제어식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0.24	--기타(수치제어식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0.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0.3	**-샤프닝머신(sharpening machine)(공구나 커터를 연삭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460.31	--수치제어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0.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0.40	-호닝머신(honing machine)이나 래핑머신(lapping machin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1	**플레이닝(planing)용・쉐이핑(shaping)용・슬로팅(slotting)용・브로칭(broaching)용・기어절삭용・기어연삭용・기어완성가공용・톱질용・절단용 공작기계와 금속이나 서멧(cermet)을 절삭하는 방식으로 가공하는 그 밖의 공작기계(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461.20	-쉐이핑머신(shaping machine)이나 슬로팅머신(slotting machin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1.30	-브로칭머신(broaching machin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1.40	-기어절삭기・기어연삭기・기어완성가공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1.50	-톱기계나 절단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2	**단조(鍛造)용・해머링(hammering)용・다이스탬핑(die-stamping)용 금속가공 공작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 굽힘용・접음용・교정용・펼침용・전단용・펀칭용・낫칭(notching)용 금속가공 공작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와 그 외의 가공방법에 의한 금속이나 금속탄화물 가공용 프레스**	
8462.10	-단조기(鍛造機)・다이스탬핑기(die-stamping machine)(프레스를 포함한다)와 해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2.2	**-굽힘기・접음기・교정기・펼침기(프레스를 포함한다)**	
8462.21	--수치제어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2.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2.3	**-전단기(프레스를 포함하며, 펀칭기와 전단기가 결합된 것은 제외한다)**	
8462.31	--수치제어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2.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2.4	**-펀칭기나 낫칭기(notching machine)(프레스를 포함하며, 펀칭기와 전단기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8462.41	--수치제어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2.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2.9	**-기타**	
8462.91	--액압 프레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2.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3	**그 밖의 금속이나 서멧(cermet)의 가공용 공작기계(재료를 절삭하지 않는 방식으로 한정한다)**	
8463.10	-드로우벤치(draw-bench)[봉·관·프로파일(profile)·선이나 이와 유사한 것을 인발(引拔)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3.20	-나사 전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3.30	-선 가공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4	**돌·도자기·콘크리트·석면시멘트나 이와 유사한 광물성 물질의 가공용 공작기계와 유리의 냉**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간(冷間) 가공기계	
8464.10	-톱기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4.20	-연마기나 광택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5	**목재・코르크・뼈・경질 고무・경질 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경질물의 가공용 공작기계(네일용・스테이플용・접착용과 그 밖의 조립용 기계를 포함한다)**	
8465.10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는 기계(공구의 교환없이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5.20	-머시닝센터(machining centr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5.9	**-기타**	
8465.91	--톱 기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5.92	--평삭기・밀링머신(milling machine)・몰딩머신(moulding machine)(절단 방식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5.93	--연삭기・샌딩머신(sanding machine)・광택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5.94	--굽힘기나 조립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5.95	--드릴링머신(drilling machine)이나 모티싱머신(morticing machin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5.96	--스플리팅(splitting)기・슬라이싱(slicing)기・박피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5.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6	**제 8456 호부터 제 8465 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가공물홀더・툴홀더(tool holder)・자동개폐식 다이헤드**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diehead)·분할대와 그 밖의 기계용 특수 부착물을 포함한다]과 수지식 공구에 사용되는 각종 툴홀더(tool holder)	
8466.10	-툴홀더(tool holder)와 자동개폐식 다이헤드(diehead)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6.20	-가공용 홀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6.30	-분할대와 그 밖의 기계용 특수 부착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6.9	-기타	
8466.91	--제 8464 호의 기계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6.92	--제 8465 호의 기계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6.93	--제 8456 호부터 제 8461 호까지의 기계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6.94	--제 8462 호나 제 8463 호의 기계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7	수지식 공구(압축공기식, 유압식, 전동기를 갖추거나 비전기식 모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8467.1	-압축공기식의 것	
8467.11	--회전방식의 것(회전 진동자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7.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7.2	-전동기를 갖춘 것	
8467.21	--각종 드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7.22	--톱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7.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67.8	**-그 밖의 공구**	
8467.81	--체인톱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7.8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7.9	**-부분품**	
8467.91	--체인톱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7.92	--압축공기식 공구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7.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8	**납땜용·땜질용이나 용접용 기기(절단이 가능한지에 상관없으며 제 8515 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표면 열처리용 기기(가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468.10	-수지식 취관(吹管)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8.20	-가스를 사용하는 그 밖의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8.80	-그 밖의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8.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0	**계산기와 계산 기능을 갖춘 포켓사이즈형 전자수첩·회계기·우편요금계기·표권발행기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계(계산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금전등록기**	
8470.10	-전자계산기(외부의 전원 공급 없이 작동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와 계산 기능을 갖춘 포켓사이즈형 전자수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0.2	**-그 밖의 전자계산기**	
8470.21	--인쇄 장치를 갖추고 있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70.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0.30	-그 밖의 계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0.50	-금전 등록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1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이나 광학식 판독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 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1.4	**-그 밖의 자동자료처리기계**	
8471.41	--적어도 동일 하우징 속에 중앙처리장치와 입출력장치를 내장한 것(이들이 상호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1.49	--기타(시스템 형태로 제시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1.50	-처리장치(소호 제 8471.41 호나 제 8471.49 호 외의 것으로서 기억장치·입력장치·출력장치 중 한 가지나 두 가지 장치를 동일 하우징 속에 내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1.60	-입력장치나 출력장치(동일 하우징 속에 기억장치를 내장하였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1.70	-기억장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1.80	-그 밖의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2	**그 밖의 사무용 기계[예: 헥토그래프(hectograph)·스텐실(stencil) 등사기·주소인쇄기·현금 자동지불기·주화분류기·주화계수기나**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주화포장기・연필깎이・천공기・지철기(stapling machine)]	
8472.10	-등사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2.30	-우편물의 분류기・접음기, 우편물을 봉투나 밴드에 삽입하는 기계, 우편물의 개봉기・봉함기・실링기, 우표의 첨부기나 소인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3	**제 8470 호부터 제 8472 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커버・휴대용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	
8473.2	**-제 8470 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8473.21	--소호 제 8470.10 호・제 8470.21 호・제 8470.29 호에 해당하는 전자 계산기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3.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3.30	-제 8471 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3.40	-제 8472 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3.50	-제 8470 호부터 제 8472 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 중에서 두 개 이상의 기계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4	**선별기・기계식 체・분리기・세척기・파쇄기・분쇄기・혼합기・반죽기(고체 모양・분말 모양・페이스트 모양인 토양・돌・광석이나 그 밖의 광물성 물질의 처리용으로 한정한다), 조괴기(造塊機)・형입기・성형기(成形機)(고체의 광물성 연료・세라믹페이스트・굳지 않은 시멘트・석고・가루 모양이나 페이스트 모양인 그 밖의 광물성 생산품의 처리용으로 한정한다), 주물용 사형(砂型)의 성형기(成形機)**	
8474.10	-선별기・기계식 체・분리기・세척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4.20	-파쇄기나 분쇄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4.3	**-혼합기나 반죽기**	
8474.31	--콘크리트 혼합기나 모르타르 혼합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4.32	--역청질과 광물성 재료의 혼합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4.3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4.80	-그 밖의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4.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5	**전기램프나 전자램프·튜브·밸브·플래시벌브(flashbulb)(외피를 유리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의 조립기계와 유리나 유리제품의 제조용이나 열간(熱間)가공용 기계**	
8475.10	-전기램프나 전자램프·튜브·밸브·플래시벌브(flashbulb)(외피를 유리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의 조립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5.2	**-유리나 유리제품의 제조용이나 열간(熱間)가공용 기계**	
8475.21	--광섬유와 광섬유 예비성형품 제조용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5.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5.90	-부분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6	**물품의 자동판매기(예: 우표·담배·식품·음료의 자동판매기)와 화폐교환기**	
8476.2	**-음료 자동판매기**	
8476.21	--가열장치나 냉장장치를 갖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6.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76.8	**-그 밖의 기계**	
8476.81	--가열장치나 냉장장치를 갖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6.8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6.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7	**고무나 플라스틱을 가공하거나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477.10	-사출 성형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7.20	-압출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7.30	-취입 성형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7.40	-진공성형기와 그 밖의 열성형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7.5	**-그 밖의 성형기**	
8477.51	--공기를 넣는 타이어 성형기나 재생기와 그 밖의 이너튜브(inner tube) 성형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7.5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7.80	-그 밖의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7.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8	**담배의 조제기나 제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478.10	-기계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8.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9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8479.10	-토목공사·건축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기계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9.20	-동물성이나 비휘발성인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의 추출용·조제용 기계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9.30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나 건축용 섬유판(목재나 그 밖의 목질 물질로 제조된 것으로 한정한다)의 제조용 프레스, 목재나 코르크 처리용 그 밖의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9.40	-로프나 케이블 제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9.50	-산업용 로봇(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9.60	-증발식에어쿨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9.7	**-탑승교**	
8479.71	--공항에서 사용되는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9.7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9.8	**-그 밖의 기기**	
8479.81	--금속 처리용(전선권선기를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9.82	--혼합기·반죽기·파쇄기·분쇄기·기계식체·시프팅기(sifting machine)·균질기·유화기·교반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9.8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9.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0	**금속 주조용 주형틀, 주형 베이스, 주형 제조용**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모형, 금속[잉곳(ingot)용은 제외한다]·금속탄화물·유리·광물성 물질·고무·플라스틱 성형용 주형	
8480.10	-금속 주조용 주형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0.20	-주형 베이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0.30	-주형 제조용 모형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0.4	**-금속이나 금속탄화물 성형용 주형**	
8480.41	--사출식이나 압축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0.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0.50	-유리 성형용 주형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0.60	-광물성 물질 성형용 주형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0.7	**-고무나 플라스틱 성형용 주형**	
8480.71	--사출식이나 압축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0.7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1	**파이프·보일러 동체·탱크·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	
8481.10	-감압밸브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1.20	-유압이나 공기압 전송용 밸브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1.30	-체크(논리턴)밸브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81.40	-안전밸브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1.80	-그 밖의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1.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2	**볼베어링(ball bearing)이나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8482.10	-볼베어링(ball bearing)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2.20	-원추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콘과 결합된 원추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을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2.30	-구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2.40	-니들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2.50	-그 밖의 원통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2.80	-그 밖의 베어링[볼베어링(ball bearing)과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이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2.9	**-부분품**	
8482.91	--볼・니들・롤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2.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3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 볼이나 롤러 스크루(roller screw), 기어박스(gear box),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를 포함한다], 플라이휠(flywheel)과 풀리(pulley)[풀리블록(pulley block)을 포함한다], 클러치(clutch)와 샤프트커플링**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shaft coupling)[유니버설조인트(universal joint)를 포함한다]	
8483.10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3.20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볼베어링(ball bearing)이나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3.30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볼베어링(ball bearing)이나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3.40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날이 붙은 휠·체인스프로켓(chain sprocket)과 분리되어 제시된 그 밖의 전동(transmission)용 엘리먼트는 제외한다], 볼이나 롤러스크루(roller screw), 기어박스와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를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3.50	-플라이휠(flywheel)과 풀리(pulley)[풀리블록(pulley block)을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3.60	-클러치(clutch)와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유니버설조인트(universal joint)를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3.90	-날이 붙은 휠, 체인스프로켓(chain sprocket), 분리되어 제시된 그 밖의 전동(transmission)용 엘리먼트와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4	**개스킷(gasket)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금속 외의 재료와 결합한 금속판으로 만든 것이나 금속을 두 개 이상 적층한 것으로 한정한다), 재질이 다른 것을 세트로 하거나 소포장한 개스킷(gasket)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작은 주머니와 봉투에 넣은 것이나 이와 유사한 포장을 한 것으로 한정한다), 메커니컬 실(mechanical seal)**	
8484.10	-개스킷(gasket)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금속 외의 재료와 결합한 금속판으로 만든 것이나 금속을 두 개 이상 적층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4.20	-메커니컬 실(mechanical seal)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6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주 제 9 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	
8486.10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 제조용 기계와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6.20	-반도체디바이스나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6.30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와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6.40	-이 류의 주 제 9 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6.90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7	**기계류의 부분품(접속자·절연체·코일·접촉자와 그 밖의 전기용품을 포함하지 않으며,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487.10	-선박이나 보트의 추진기와 그 블레이드(blad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85 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8501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	
8501.10	-전동기(출력이 37.5 와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1.20	-교류·직류 겸용 전동기(출력이 37.5 와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1.3	**-그 밖의 직류 전동기와 직류 발전기**	
8501.31	--출력이 750 와트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1.32	--출력이 750 와트 초과 75 킬로와트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1.33	--출력이 75 킬로와트 초과 375 킬로와트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인 것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1.34	--출력이 375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1.40	-그 밖의 단상(單相) 교류 전동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1.5	**-그 밖의 다상(多相) 교류 전동기**	
8501.51	--출력이 750 와트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1.52	--출력이 750 와트 초과 75 킬로와트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1.53	--출력이 75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1.6	**-교류 발전기**	
8501.61	--출력이 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1.62	--출력이 75 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1.63	--출력이 375 킬로볼트암페어 초과 75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1.64	--출력이 75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2	**발전세트와 회전변환기**	
8502.1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 (디젤엔진이나 세미디젤엔진의 것으로 한정한다)**	
8502.11	--출력이 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2.12	--출력이 75 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2.13	--출력이 375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2.20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2.3	**-그 밖의 발전세트**	
8502.31	--풍력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2.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2.40	-회전변환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3	**부분품(제 8501 호나 제 8502 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8503.00	-부분품(제 8501 호나 제 8502 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4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	
8504.10	-방전등용이나 방전관용 안정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4.2	**-유입식 변압기**	
8504.21	--용량이 65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4.22	--용량이 650 킬로볼트암페어 초과 10,00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4.23	--용량이 10,00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4.3	**-그 밖의 변압기**	
8504.31	--용량이 1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4.32	--용량이 1 킬로볼트암페어 초과 16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4.33	--용량이 16 킬로볼트암페어 초과 50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4.34	--용량이 50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504.40	-정지형 변환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4.50	-그 밖의 유도자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4.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5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磁化)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전자석이나 영구자석식 척(chuck)·클램프와 이와 유사한 가공물 홀더, 전자석 커플링(coupling)·클러치와 브레이크, 전자석 리프팅헤드(lifting head)**	
8505.1	**-영구자석과 자화(磁化)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8505.11	--금속으로 만든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5.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5.20	-전자석 커플링(coupling)·클러치·브레이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5.90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6	**일차전지**	
8506.10	-이산화망간으로 만든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6.30	-산화수은으로 만든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6.40	-산화은으로 만든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6.50	-리튬으로 만든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6.60	-에어징크로 만든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506.80	-그 밖의 일차전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6.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7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인지에 상관없다)**	
8507.10	-피스톤식 엔진 시동용 연산(鉛酸)축전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7.20	-그 밖의 연산(鉛酸)축전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7.30	-니켈-카드뮴 축전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7.40	-니켈-철 축전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7.50	-니켈-수소합금 축전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7.60	-리튬이온 축전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7.80	-그 밖의 축전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7.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8	**진공청소기**	
8508.1	**-전동기를 갖춘 것**	
8508.11	--출력이 1,500 와트 이하이고, 먼지 백이나 그 밖의 20 리터 이하 용량의 저장조를 갖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8.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8.60	-그 밖의 진공청소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8.7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9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 8508 호의 진공청소기는 제외한다)**	
8509.40	-식품용 그라인더와 믹서, 과즙·채소즙 추출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9.80	-그 밖의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9.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0	**면도기·이발기·모발제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8510.10	-면도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0.20	-이발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0.30	-모발제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0.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1	**불꽃점화식이나 압축점화식 내연기관의 점화용·시동용 전기기기(예: 점화용 자석발전기·자석발전기·점화코일·점화플러그·예열플러그·시동전동기), 내연기관에 부속되는 발전기(예: 직류발전기·교류발전기)와 개폐기**	
8511.10	-점화플러그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1.20	-점화용 자석발전기, 직류 자석발전기와 마그네틱 플라이휠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1.30	-배전기와 점화코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1.40	-시동전동기와 겸용 시동발전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1.50	-그 밖의 발전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1.80	-그 밖의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1.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2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제 8539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제상기(defroster)·제무기(demister)(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8512.10	-자전거에 사용되는 조명용이나 시각 신호용 기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2.20	-그 밖의 조명용이나 시각 신호용 기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2.30	-음향신호용 기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2.40	-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제상기(defroster)·제무기(demister)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2.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3	**휴대용 전등(건전지·축전지·자석발전기와 같은 자체 전원기능을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 8512 호의 조명기구는 제외한다)**	
8513.10	-전등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3.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4	**공업용이나 실험실용 전기식 노(爐)와 오븐[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dielectric loss)식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공업용이나 실험실용의 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dielectric loss)식 가열기**	
8514.10	-저항가열식 노(爐)와 오븐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4.20	-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dielectric loss)식 노(爐)와 오븐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4.30	-그 밖의 노(爐)와 오븐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4.40	-그 밖의 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dielectric loss)식 가열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4.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5	**전기식(전기발열에 따른 가스식을 포함한다)·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식·광자빔식·초음파식·전자빔식·자기펄스(magnetic pulse)식·플라즈마 아크(plasma arc)식 납땜용·땜질용이나 용접용 기기(절단기능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금속이나 서멧(cermet)의 가열분사용 전기식 기기**	
8515.1	**-땜질용이나 납땜용기기**	
8515.11	--납땜용 인두와 건(gun)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5.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5.2	**-금속의 저항용접용 기기**	
8515.21	--전자동식이나 반자동식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5.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5.3	**-금속의 아크[플라즈마 아크(plasma arc)를 포함한다] 용접기기**	
8515.31	--자동식이나 반자동식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5.3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5.80	-그 밖의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5.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516	**전기식의 즉시식·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기기[예: 헤어드라이어·헤어컬러(hair curler)·컬링 통히터(curling tong heater)], 손 건조기, 전기다리미,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전열용 저항체 (제 8545 호의 것은 제외한다)**	
8516.10	-전기식의 즉시식·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6.2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8516.21	--저장식 가열 라디에이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6.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6.3	**-전기가열식 이용기기나 손 건조기**	
8516.31	--헤어드라이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6.32	--그 밖의 이용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6.33	--손 건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6.40	-전기다리미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6.50	-마이크로웨이브 오븐(microwave oven)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6.60	-그 밖의 오븐, 쿠커·조리판·보일링링·그릴러·로스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6.7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8516.71	--커피·차를 끓이는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6.72	--토스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6.7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6.80	-전열용 저항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6.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7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 8443 호·제 8525 호·제 8527 호·제 8528 호의 송신용·수신용 기기는 제외한다)**	
8517.1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8517.11	--유선전화기[무선 송수화기(cordless handset)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7.18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7.6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통신망이나 원거리통신망과 같은 유선·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	
8517.61	--기지국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7.62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7.6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7.70	-부분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8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음향증폭세트	
8518.10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8.2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8518.21	--단일형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8.22	--복합형 확성기[동일 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8.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8.30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8.40	-가청주파증폭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8.50	-음향증폭세트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8.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9	**음성 녹음용이나 재생용 기기**	
8519.20	-코인·은행권·은행카드·토큰이나 그 밖의 지급 수단으로 작동하는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9.30	-턴 테이블(레코드 데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9.50	-전화응답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9.8	**-그 밖의 기기**	
8519.81	--자기식·광학식이나 그 밖의 반도체 매체를 이용하는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9.8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521	**영상기록용이나 재생용 기기(비디오튜너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8521.10	-마그네틱 테이프형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2	**제 8519 호나 제 8521 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	
8522.10	-픽업 카트리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3	**디스크·테이프·솔리드 스테이트(solid-state)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스마트카드와 음성이나 그 밖의 현상의 기록용 그 밖의 매체[기록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디스크 제조용 매트릭스(matrices)와 마스터(master)를 포함하되, 제 37 류의 물품은 제외한다]**	
8523.2	**-자기식 매체**	
8523.21	--마그네틱 스트라이프(magnetic stripe)를 갖춘 카드(기록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3.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3.4	**-광학식 매체**	
8523.41	--기록이 안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3.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3.5	**-반도체 매체**	
8523.51	--솔리드 스테이트(solid-state)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3.52	--스마트카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3.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3.8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5	**라디오 방송용이나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음성기록기기·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비디오카메라레코더**	
8525.50	-송신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5.60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5.80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비디오카메라레코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6	**레이더기기·항행용 무선기기·무선원격조절기기**	
8526.10	-레이더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6.9	**-기타**	
8526.91	--항행용 무선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6.92	--무선원격조절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7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음성기록기기·재생기기, 시계가 동일한 하우징 내에 결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8527.1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외부 전원 없이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8527.12	--포켓사이즈형 라디오카세트플레이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7.13	--그 밖의 기기(음성기록기기나 음성재생기기와 결합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7.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7.2	**-라디오방송 수신용 기기(자동차용으로서 외부**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전원 없이는 작동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8527.21	--음성기록기기나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7.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7.9	-기타	
8527.91	--음성기록기기나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7.92	--시계와 결합된 것(음성기록기기나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7.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8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8528.4	-음극선관 모니터	
8528.42	--제 8471 호의 자동자료처리장치에 사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8.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8.5	-그 밖의 모니터	
8528.52	--제 8471 호의 자동자료처리장치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8.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8.6	-프로젝터(projector)	
8528.62	--제 8471 호의 자동자료처리장치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8.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8.7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8528.71	--영상디스플레이나 스크린을 갖추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8.72	--기타(천연색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8.73	--기타(단색)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9	**부분품(제 8525 호부터 제 8528 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8529.10	-각종 안테나와 반사식 안테나,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0	**철도용·궤도용·도로용·내륙수로용·주차장용·항만용·공항용 전기식 신호기기·안전기기·교통관제기기(제 8608 호의 것은 제외한다)**	
8530.10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0.80	-그 밖의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0.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1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화재경보기). 다만, 제 8512 호나 제 8530 호의 것은 제외한다.**	
8531.10	-도난경보기나 화재경보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1.20	-액정 디바이스(엘시디)나 발광다이오드(엘이디)가 결합된 표시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1.80	-그 밖의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1.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2	**축전기[고정식·가변식·조정식(프리세트)으로 한정한다]**	
8532.10	-고정식 축전기로 50/60 헤르츠 회로에서 사용하고, 무효(無效)전력 용량이 0.5 킬로바르 이상인 것(전력용 축전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2.2	**-그 밖의 고정식 축전기**	
8532.21	--탄탈륨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2.22	--알루미늄 전해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2.23	--세라믹 유전체의 것(단층)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2.24	--세라믹 유전체의 것(다층)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2.25	--종이나 플라스틱 유전체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2.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2.30	-가변식이나 조정식(프리세트) 축전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2.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3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rheostat)와 전위차계(potentiometer)를 포함하며, 전열용 저항체는 제외한다]**	
8533.10	-탄소피막형 고정식 저항기(콤퍼지션형이나 필름형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3.2	**-그 밖의 고정식 저항기**	
8533.21	--용량이 20 와트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3.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533.3	-권선(捲線) 가변저항기[가감저항기(rheostat)와 전위차계(potentiometer)를 포함한다]	
8533.31	--용량이 20 와트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3.3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3.40	-그 밖의 가변저항기[가감저항기(rheostat)와 전위차계(potentiometer)를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3.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4	인쇄회로	
8534.00	-인쇄회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5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퓨즈·피뢰기·전압제한기·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 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535.10	-퓨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5.2	-자동차단기	
8535.21	--전압이 72.5 킬로볼트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5.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5.30	-격리용 개폐기와 회로단속용 개폐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5.40	-피뢰기·전압제한기와 서지(surge)억제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6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압이 1,000 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 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	
8536.10	-퓨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6.20	-자동차단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6.30	-전기회로 보호용 그 밖의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6.4	-계전기(繼電器)	
8536.41	--전압이 60 볼트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6.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6.50	-그 밖의 개폐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6.6	-램프홀더・플러그와 소켓	
8536.61	--램프홀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6.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6.70	-광섬유용・광섬유 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6.90	-그 밖의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7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 8535 호나 제 8536 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 90 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 8517 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	
8537.10	-전압이 1,000 볼트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7.20	-전압이 1,000 볼트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8	**부분품(제 8535 호・제 8536 호・제 8537 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8538.10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 8537 호의 물품용으로 한정하며, 이들 기기를 장착하여 조립한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9	**필라멘트램프나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닛(sealed beam lamp unit)과 자외선램프나 적외선램프를 포함한다], 아크램프, 발광다이오드(엘이디)램프**	
8539.10	-실드빔 램프 유닛(sealed beam lamp unit)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9.2	**-그 밖의 필라멘트 램프(자외선램프나 적외선램프는 제외한다)**	
8539.21	--텅스텐 할로겐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9.22	--기타(전력이 200 와트 이하이고 전압이 100 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9.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9.3	**-방전램프(자외선램프는 제외한다)**	
8539.31	--형광램프(열음극형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9.32	--수은램프나 나트륨증기 램프, 메탈 할라이드(metal halide)램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9.3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9.4	**-자외선램프나 적외선램프, 아크램프**	
8539.41	--아크램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9.4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9.50	-발광다이오드(엘이디)램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9.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0	**열전자관・냉음극관・광전관[예: 진공관・증기나 가스를 봉입한 관・수은아크정류관・음극선관・텔레비전용 촬상관(camera tube)]**	
8540.1	**-텔레비전용 음극선관(영상 모니터용 음극선관을 포함한다)**	
8540.11	--천연색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0.12	--단색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0.20	-텔레비전용 촬상관(camera tube), 영상변환관・영상증강관(image intensifier), 그 밖의 광전관(photocathode tube)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0.40	-데이터/그래픽 직시관(display tube)(단색), 데이터/그래픽 직시관(display tube)(천연색으로서 인광물질 도트화면 간격이 0.4 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0.60	-그 밖의 음극선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0.7	**-마이크로웨이브관[예: 자전관(magnetron)・속도변조관(klystron)・진행파관(traveling wave tube)・카시노트론(carcinotron)]. 다만, 그리드(grid)제어관은 제외한다.**	
8540.71	--자전관(magnetron)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0.7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0.8	**-그 밖의 관**	
8540.81	--수신관이나 증폭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0.8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540.9	**-부분품**	
8540.91	--음극선관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0.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1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엘이디),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8541.10	-다이오드(감광성 다이오드나 발광다이오드는 제외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1.2	**-트랜지스터(감광성 트랜지스터는 제외한다)**	
8541.21	--전력 낭비율이 1 와트 미만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1.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1.30	-사이리스터(thyristor), 다이액(diac), 트라이액(triac)(감광성 디바이스는 제외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1.40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와 발광다이오드(엘이디)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1.50	-그 밖의 반도체 디바이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1.60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1.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2	**전자집적회로**	
8542.3	**-전자집적회로**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변환기・논리회로・증폭기・클록(clock)・타이밍(timing) 회로나 그 밖의 회로를 갖춘 것인지는 상관없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2.32	--메모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2.33	--증폭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2.3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2.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3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8543.10	-입자가속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3.20	-신호발생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3.30	-전기도금용·전기분해용·전기영동(泳動)용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3.70	-그 밖의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3.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4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8544.1	**-권선(捲線)용 전선**	
8544.11	--구리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4.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4.20	-동축케이블과 그 밖의 동축 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4.30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그 밖의 와이어링 세트(자동차용·항공기용·선박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4.4	**-그 밖의 전기도체(전압이 1,000 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8544.42	--접속자가 부착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4.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4.60	-그 밖의 전기도체(전압이 1,000 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4.70	-광섬유 케이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5	**탄소전극·탄소브러시·램프용탄소·전지용 탄소와 그 밖의 흑연이나 탄소제품(전기용으로 한정하며, 금속이 함유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8545.1	**-전극**	
8545.11	--노(爐)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5.20	-브러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6	**애자(어떤 재료라도 가능하다)**	
8546.10	-유리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6.20	-도자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7	**전기기기용으로서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절연용 물품(나선가공 소켓과 같이 단순히 조립을 위하여 주조 과정에서 소량의 금속이 주입된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을 포함하며, 제 8546 호의 애자는 제외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전기용 도관(導管)과 그 연결구류(절연재료로 속을 댄 것으로 한정한다)	
8547.10	-도자제의 절연용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7.20	-플라스틱으로 만든 절연용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8	일차전지와 축전지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와 축전지, 기기의 전기식 부분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548.10	-일차전지와 축전지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와 축전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17 부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제 86 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차량과 이들의 부분품, 철도용이나 궤도용 장비품과 그 부분품,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 각종 교통신호용 기기	
8601	철도용 기관차(외부 전원이나 축전지로 주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601.10	-외부 전원으로 주행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601.20	-축전지로 주행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602	그 밖의 철도용 기관차와 탄수차(炭水車)	
8602.10	-디젤 전기기관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6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603	자주식(自走式) 철도용이나 궤도용 객차와 화차(제 8604 호의 것은 제외한다)	
8603.10	-외부 전원으로 주행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6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604	**철도나 궤도의 유지용이나 보수용 차량[자주식(自走式)의 것인지에 상관없다][예: 공작차(workshop)·기중기차(crane)·밸러스트 템퍼(ballast tamper)·트랙라이너(trackliner)·검사차·궤도검사차]**	
8604.00	-철도나 궤도의 유지용이나 보수용 차량[자주식(自走式)의 것인지에 상관없다][예: 공작차(workshop)·기중기차(crane)·밸러스트 템퍼(ballast tamper)·트랙라이너(trackliner)·검사차·궤도검사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605	**철도용이나 궤도용 객차[자주식(自走式)은 제외한다], 수하물차·우편차와 그 밖의 철도용이나 궤도용 특수용도차[자주식(自走式)과 제 8604 호의 것은 제외한다]**	
8605.00	-철도용이나 궤도용 객차[자주식(自走式)은 제외한다], 수하물차·우편차와 그 밖의 철도용이나 궤도용 특수용도차[자주식(自走式)과 제 8604 호의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606	**철도용이나 궤도용 화차[자주식(自走式)은 제외한다]**	
8606.10	-탱크차와 이와 유사한 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606.30	-자기양하식(self-discharging) 화차(소호 제 8606.10 호의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606.9	**-기타**	
8606.91	--덮개가 있는 것으로서 밀폐되어 있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606.92	--무개차로서 고정된 측면의 높이가 60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606.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607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나 차량의 부분품**	
8607.1	**-보기(bogie)·비셀보기(bissel-bogie)·차축·차륜과 이들의 부분품**	
8607.11	--구동식 보기(bogie)와 비셀보기(bissel-bogi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607.12	--그 밖의 보기(bogie)와 비셀보기(bissel-bogi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607.19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607.2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8607.21	--공기식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607.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607.30	-훅과 그 밖의 연결장치·완충장치와 이들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607.9	**-기타**	
8607.91	--기관차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607.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608	**철도나 궤도선로용 장치물, 철도·궤도·도로·내륙수로·주차장·항만·비행장에서 사용되는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 신호용·안전용·교통관제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	
8608.00	-철도나 궤도선로용 장치물, 철도·궤도·도로·내륙수로·주차장·항만·비행장에서 사용되는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 신호용·안전용·교통관제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609	**컨테이너(액체운반용 컨테이너를 포함하며, 하나 이상의 운송수단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거나 구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8609.00	-컨테이너(액체운반용 컨테이너를 포함하며, 하나 이상의 운송수단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거나 구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87 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부속품**	
8701	**트랙터(제 8709 호의 트랙터는 제외한다)**	
8701.10	-차축이 하나인 트랙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1.20	-세미트레일러(semi-trailer) 견인용 도로주행식 트랙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1.30	-무한궤도식 트랙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1.9	**-기타(엔진동력에 의한 것으로 한정한다)**	
8701.91	--엔진의 동력이 18 킬로와트 이하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1.92	--엔진의 동력이 18 킬로와트 초과 37 킬로와트 이하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1.93	--엔진의 동력이 37 킬로와트 초과 75 킬로와트 이하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1.94	--엔진의 동력이 75 킬로와트 초과 130 킬로와트 이하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1.95	--엔진의 동력이 130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2	**10 인 이상(운전자를 포함한다) 수송용 자동차**	
8702.10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만을 갖춘 것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2.20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2.30	-불꽃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2.40	-추진용 전동기만 갖춘 것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2.90	-기타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3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제 8702 호의 것은 제외하며, 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8703.10	-설상(雪上)주행용 차량, 골프용 차와 이와 유사한 차량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3.2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만을 갖춘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703.21	--실린더용량이 1,000 시시 이하인 것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 시시 초과 1,500 시시 이하인 것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 시시 초과 3,000 시시 이하인 것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3.24	--실린더용량이 3,0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3.3	**-그 밖의 차량[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만을 갖춘 것]**	
8703.31	--실린더용량이 1,500 시시 이하인 것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 시시 초과 2,500 시시 이하인 것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3.33	--실린더용량이 2,5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3.40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은 제외한다)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3.50	-그 밖의 차량[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은 제외한다]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3.60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으로 한정한다)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3.70	-그 밖의 차량[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으로 한정한다]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3.80	-그 밖의 차량(추진용 전동기만을 갖춘 것)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3.90	-기타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4	**화물자동차**	
8704.10	-덤프차(비고속도로용으로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4.2	**-그 밖의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의 것**	
8704.21	--총중량이 5 톤 이하인 것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4.22	--총중량이 5 톤 초과 20 톤 이하인 것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4.23	--총중량이 20 톤을 초과하는 것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4.3	**-기타(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으로 한정한다)**	
8704.31	--총중량이 5 톤 이하인 것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4.32	--총중량이 5 톤을 초과하는 것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4.90	-기타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 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5	**특수용도차량(주로 사람이나 화물 수송용으로 설계된 것은 제외한다)[예: 구난차(breakdown lorry)·기중기차(crane lorry)·소방차·콘크리트 믹서 운반차·도로청소차·살포차·이동공작차·이동방사선차]**	
8705.10	-기중기차(crane lorry)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5.20	-이동식 시추용 데릭(derrick)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5.30	-소방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5.40	-콘크리트믹서 운반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6	**엔진을 갖춘 섀시(제 8701 호부터 제 8705 호까지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8706.00	-엔진을 갖춘 섀시(제 8701 호부터 제 8705 호까지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7	**차체(운전실을 포함하며, 제 8701 호부터 제 8705 호까지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8707.10	-제 8703 호의 차량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708	**부분품과 부속품(제 8701 호부터 제 8705 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	
8708.10	-완충기와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8.2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	
8708.21	--안전벨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8.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8.30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8.40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8.50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그 밖의 동력전달 장치의 부분품과 구성품을 갖추었는지는 상관없다), 비구동 차축,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8.70	-로드 휠(road wheel)과 그 부분품・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8.80	-서스펜션 시스템(suspension system)과 그 부분품[쇼크업소버(shock-absorber)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8.9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	
8708.91	--방열기와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8.92	--소음기(머플러), 배기관,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8.93	--클러치와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8.94	--운전대・스티어링칼럼(steering column)・운전박스와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8.95	--팽창 시스템을 갖춘 안전 에어백과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708.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9	**공장·창고·부두·공항에서 화물의 단거리 운반에 사용하는 형으로 권양(捲揚)용이나 취급용 장비가 결합되지 않은 자주식(自走式) 작업차, 철도역의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형의 트랙터, 이들의 부분품**	
8709.1	**-차량**	
8709.11	--전기식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9.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9.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0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자주식(自走式)으로 한정하며, 무기를 장비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	
8710.00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자주식(自走式)으로 한정하며, 무기를 장비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1	**모터사이클[모페드(moped)를 포함한다]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사이드카(side-car)를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사이드카(side-car)**	
8711.10	-실린더용량이 50 시시 이하인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1.20	-실린더용량이 50 시시 초과 250 시시 이하인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1.30	-실린더용량이 250 시시 초과 500 시시 이하인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1.40	-실린더용량이 500 시시 초과 800 시시 이하인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1.50	-실린더용량이 800 시시를 초과하는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1.60	-추진을 위해 전동기를 갖춘 것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1.90	-기타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2	**모터를 갖추지 않은 이륜자전거와 그 밖의 자전거(배달용 삼륜 자전거를 포함한다)**	
8712.00	-모터를 갖추지 않은 이륜자전거와 그 밖의 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전거(배달용 삼륜 자전거를 포함한다)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3	**신체장애인용 차량(모터를 갖추었는지 또는 기계구동식인지에 상관없다)**	
8713.10	-기계구동식이 아닌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4	**부분품과 부속품(제 8711 호부터 제 8713 호까지의 차량의 것으로 한정한다)**	
8714.10	-모터사이클의 것[모페드(moped)의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4.20	-신체장애인용 차량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4.9	**-기타**	
8714.91	--프레임과 포크, 이들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4.92	--휠 림(wheel rim)과 스포크(spok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4.93	--허브(hub)[코스터 브레이킹허브(coaster braking hub)와 허브브레이크(hub brake)는 제외한다], 프리휠(free-wheel) 스프로켓 휠(sprocket-wheel)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4.94	--브레이크[코스터 브레이킹허브(coaster braking hub)와 허브브레이크(hub brake)를 포함한다],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4.95	--안장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4.96	--페달과 크랭크기어(crankgear), 이들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4.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5	**유모차와 그 부분품**	
8715.00	-유모차와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6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기계구동식이 아닌 그 밖의 차량, 이들의 부분품**	
8716.10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이동주택형으로서 주거용과 캠핑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6.20	-농업용 자동적재식이나 자동양하식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6.3	**-화물수송용 그 밖의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8716.31	--탱커 트레일러(Tanker trailer)와 탱커 세미트레일러(tanker semi-trail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6.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6.40	-그 밖의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6.80	-그 밖의 차량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6.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88 류	**항공기와 우주선, 이들의 부분품**	
8801	**기구·비행선·글라이더·행글라이더와 그 밖의 무동력 항공기**	
8801.00	-기구·비행선·글라이더·행글라이더와 그 밖의 무동력 항공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802	**그 밖의 항공기(예: 헬리콥터·비행기),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 서보비틀(suborbital), 우주선 운반로켓**	
8802.1	**-헬리콥터**	
8802.11	--자체 중량이 2,000 킬로그램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802.12	--자체 중량이 2,00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802.20	-자체 중량이 2,000 킬로그램 이하인 비행기와 그 밖의 항공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8802.30	-자체 중량이 2,000 킬로그램 초과 15,000 킬로그램 이하인 비행기와 그 밖의 항공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802.40	-자체 중량이 15,00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와 그 밖의 항공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802.60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서보비틀(suborbital)·우주선 운반로켓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803	**부분품(제 8801 호나 제 8802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8803.10	-프로펠러·로터(rotor)와 이들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803.20	-기체 지지부와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803.30	-비행기나 헬리콥터의 그 밖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8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804	**낙하산(조종 가능한 낙하산과 패러글라이더를 포함한다)과 로토슈트(rotochute),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8804.00	-낙하산(조종 가능한 낙하산과 패러글라이더를 포함한다)과 로토슈트(rotochute),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805	**항공기 발진장치, 갑판 착륙장치나 이와 유사한 장치, 지상비행 훈련장치, 이들의 부분품**	
8805.10	-항공기 발진장치와 그 부분품, 갑판 착륙장치나 이와 유사한 장치,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805.2	**-지상비행 훈련장치와 그 부분품**	
8805.21	--모의공중전장치와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805.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89 류	**선박과 수상 구조물**	
8901	**순항선·유람선·페리보트(ferry-boat)·화물선·부선(barge)과 이와 유사한 선박(사람이나 화물**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수송용으로 한정한다)	
8901.10	-순항선·유람선과 이와 유사한 선박(주로 사람 수송용으로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각종 페리보트(ferry-boa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901.20	-탱커(tank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901.30	-냉동선(소호 제 8901.20 호의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901.90	-그 밖의 화물선과 화객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902	**어선과 어획물의 가공용이나 저장용 선박**	
8902.00	-어선과 어획물의 가공용이나 저장용 선박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903	**요트, 유람용이나 운동용 그 밖의 선박, 노를 젓는 보트와 카누**	
8903.10	-인플랫터블(inflatable)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903.9	**-기타**	
8903.91	--범선(보조모터를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903.92	--모터보트[아웃보드 모터보트(outboard motorboat)는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903.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904	**예인선과 푸셔크라프트(pusher craft)**	
8904.00	-예인선과 푸셔크라프트(pusher craf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905	**조명선·소방선·준설선·기중기선과 주로 항해 외의 특수기능을 가지는 그 밖의 특수선박, 부선거(艀船渠), 물에 뜨거나 잠길 수 있는 시추대나 작업대**	
8905.10	-준설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905.20	-시추대나 작업대(물에 뜨거나 잠길 수 있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으로 한정한다)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9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906	**그 밖의 선박(군함·노를 젓는 보트 외의 구명보트를 포함한다)**	
8906.10	-군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90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907	**그 밖의 물에 뜨는 구조물[예: 부교·탱크·코퍼댐(coffer-dam)·부잔교(landing stage)·부표·수로부표]**	
8907.10	-인플랫터블(inflatable)식 부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90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908	**선박과 그 밖의 물에 뜨는 구조물(해체용으로 한정한다)**	
8908.00	-선박과 그 밖의 물에 뜨는 구조물(해체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18 부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의료용 기기, 시계, 악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 90 류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의료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001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 8544 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 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않은 것(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광학소자는 제외한다)**	
9001.10	-광섬유·광섬유 다발과 광섬유 케이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1.20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1.30	-콘택트렌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1.40	-유리로 만든 안경렌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1.50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안경렌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2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소자(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사용하거나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9002.1	**-대물렌즈**	
9002.11	--카메라용·영사기용·사진 확대기용·사진 축소기용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2.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2.20	-필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2.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3	**안경·고글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의 테와 장착구, 이들의 부분품**	
9003.1	**-테와 장착구**	
9003.11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3.19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3.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4	**시력교정용·보호용이나 그 밖의 용도의 안경·고글과 이와 유사한 물품**	
9004.10	-선글라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5	**쌍안경・단안경・그 밖의 광학식 망원경과 이들의 장착구, 그 밖의 천체관측용 기기와 그 장착구(전파관측용 기기는 제외한다)**	
9005.10	-쌍안경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5.80	-그 밖의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5.90	-부분품과 부속품(장착구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6	**사진기(영화용은 제외한다), 사진용 섬광기구와 제 8539 호의 방전램프 외의 섬광전구**	
9006.30	-수중촬영용・공중측량용・장기(臟器)의 내과나 외과 검사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사진기와 법정 비교용 사진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6.40	-즉석인화 사진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6.5	**-그 밖의 사진기**	
9006.51	--렌즈를 통하여 볼 수 있는 뷰파인더(viewfinder)[싱글렌즈리플렉스(SLR)]를 갖춘 것(폭이 35 밀리미터 이하인 롤필름용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6.52	--기타(폭이 35 밀리미터 미만인 롤필름용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6.53	--기타(폭이 35 밀리미터인 롤필름용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6.5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6.6	**-사진용 섬광기구와 섬광전구**	
9006.61	--섬광기구(전자식 방전램프를 사용한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6.6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6.9	**-부분품과 부속품**	
9006.91	--카메라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6.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7	**영화용 촬영기와 영사기(음성의 기록기기나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9007.10	-촬영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7.20	-영사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7.9	**-부분품과 부속품**	
9007.91	--촬영기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7.92	--영사기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8	**투영기·사진 확대기와 사진 축소기(영화용은 제외한다)**	
9008.50	-프로젝터, 확대기와 축소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8.90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0	**사진(영화를 포함한다) 현상실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네가토스코프(negatoscope), 영사용 스크린**	
9010.10	-롤 모양인 사진용(영화용을 포함한다) 필름이나 감광지를 자동현상하는 기기, 현상된 필름을 사진용 감광지에 자동노출시키는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0.50	-사진(영화를 포함한다) 현상실(現像室)용의 그 밖의 기기와 네가토스코프(negatoscope)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0.60	-영사용 스크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0.90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1	**광학현미경(마이크로 사진용·마이크로 영화촬영용·마이크로 영사용을 포함한다)**	
9011.10	-입체현미경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1.20	-그 밖의 현미경(마이크로 사진용·마이크로 영화촬영용·마이크로 영사용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1.80	-그 밖의 현미경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1.90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2	**광학현미경 외의 현미경과 회절기기(diffraction apparatus)**	
9012.10	-광학현미경 외의 현미경과 회절기기(diffraction apparatus)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2.90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3	**액정 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은 제외한다),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laser diode)는 제외한다], 그 밖의 광학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9013.10	-무기용 망원조준기, 잠망경, 이 류나 제 16 부의 기기 부분품용 망원경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3.20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laser diode)는 제외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3.80	-그 밖의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3.90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014	**방향탐지용 컴퍼스(compass)와 그 밖의 항행용 기기**	
9014.10	-방향탐지용 컴퍼스(compass)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4.20	-항공용이나 우주항행용 기기[컴퍼스(compass)는 제외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4.80	-그 밖의 항행용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4.90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5	**토지측량기기(사진측량용을 포함한다)·수로측량기기·해양측량기기·수리계측기기·기상관측기기·지구물리학용 기기[컴퍼스(compass)는 제외한다]·거리측정기**	
9015.10	-거리측정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5.20	-경위의(經緯儀)와 시거의(視距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5.30	-수준기(水準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5.40	-사진측량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5.80	-그 밖의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5.90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6	**감량(感量) 50 밀리그램 이하인 저울(추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9016.00	-감량(感量) 50 밀리그램 이하인 저울(추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7	**제도용구·설계용구·계산용구(예: 제도기·축소확대기·분도기·제도세트·계산척·계산반), 수지식 길이 측정용구[예: 곧은 자와 줄자·마이크로미터·캘리퍼스(callipers)](이 류에 따로 분류**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9017.10	-제도판을 갖춘 제도기(자동식인지에 상관없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7.20	-그 밖의 제도용구・설계용구・계산용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7.30	-마이크로미터・캘리퍼스(callipers)와 게이지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7.80	-그 밖의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7.90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8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	
9018.1	-전기식 진단용 기기(기능 검사용이나 생리적 변화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	
9018.11	--심전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8.12	--초음파 영상진단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8.13	--자기공명 촬영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8.14	--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8.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8.20	-자외선이나 적외선 응용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8.3	-주사기・바늘・카테터(catheter)・케눌러(cannulae)와 이와 유사한 물품	
9018.31	--주사기(바늘이 부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018.32	--관 모양의 금속으로 만든 바늘과 봉합용 바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8.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8.4	**-치과용 그 밖의 기기**	
9018.41	--치과용 드릴엔진(하나의 베이스 위에 그 밖의 치과기기를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8.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8.50	-안과용 그 밖의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8.90	-그 밖의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9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오존 흡입기·산소 흡입기·에어로졸 치료기·인공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	
9019.10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9.20	-오존 흡입기·산소 흡입기·에어로졸 치료기·인공 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0	**그 밖의 호흡용 기기와 가스마스크(기계적인 부분품과 교환용 필터를 모두 갖추지 않은 보호용 마스크는 제외한다)**	
9020.00	-그 밖의 호흡용 기기와 가스마스크(기계적인 부분품과 교환용 필터를 모두 갖추지 않은 보호용 마스크는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1	**정형외과용 기기(목발·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절 치료용 부목과 그 밖의 골절 치료구, 인조 인체 부분, 보청기, 결함·장애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하거나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그 밖의 기기**	
9021.10	-정형외과용이나 골절치료용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1.2	**-의치와 치과용품**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021.21	--의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1.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1.3	**-그 밖의 인조 인체 부분**	
9021.31	--인조관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1.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1.40	-보청기(부분품과 부속품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1.50	-심장박동기(부분품과 부속품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2	**엑스선이나 알파선·베타선·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사선 사진용이나 방사선 치료용 기기·엑스선관과 그 밖의 엑스선 발생기·고압 발생기·조절반·스크린·검사용이나 치료용 테이블·의자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	
9022.1	**-엑스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사선 사진용이나 방사선 치료용 기기를 포함한다)**	
9022.12	--컴퓨터 단층촬영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2.13	--기타(치과용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2.14	--기타(내과용·외과용·수의과용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2.19	--그 밖의 용도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2.2	**-알파선·베타선·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인지에 상관없으며**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방사선 사진용이나 방사선 치료용 기기를 포함한다)	
9022.21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2.29	--그 밖의 용도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2.30	-엑스선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2.90	-기타(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3	**전시용으로 설계된 기구와 모형(예: 교육용이나 전람회용)(다른 용도에 사용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9023.00	-전시용으로 설계된 기구와 모형(예: 교육용이나 전람회용)(다른 용도에 사용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4	**재료(예: 금속・목재・직물・종이・플라스틱)의 경도・항장력・압축성・탄성이나 그 밖의 기계적 성질의 시험용 기기**	
9024.10	-금속재료 시험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4.80	-그 밖의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4.90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5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온도계・고온계・기압계・습도계와 건습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기록장치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9025.1	**-온도계와 고온계(다른 기기와 결합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9025.11	--액체를 넣은 것(직시식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5.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5.80	-그 밖의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5.90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6	**액체나 기체의 유량·액면·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變量)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예: 유량계·액면계·압력계·열 측정계). 다만, 제 9014 호·제 9015 호·제 9028 호·제 9032 호의 것은 제외한다.**	
9026.10	-액체의 유량이나 액면의 측정용·검사용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6.20	-압력의 측정용·검사용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6.80	-그 밖의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6.90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7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굴절계·분광계·가스나 매연 분석기), 점도·포로서티(porosity)·팽창·표면장력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열·소리·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마이크로톰(microtome)**	
9027.10	-가스나 매연 분석용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7.20	-크로마토그래프와 전기영동 장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7.30	-분광계·분광광도계·분광사진기(자외선·가시광선·적외선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7.50	-그 밖의 기기(자외선·가시광선·적외선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7.80	-그 밖의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7.90	-마이크로톰(microtome)과 이 호의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8	**기체·액체·전기의 적산(積算)용 계기(그 검정용 계기를 포함한다)**	
9028.10	-기체용 계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8.20	-액체용 계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8.30	-전기용 계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8.90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9	**적산(積算)회전계·생산량계·택시미터·주행거리계·보수계와 이와 유사한 계기, 속도계와 회전속도계(제 9014 호나 제 9015 호의 것은 제외한다), 스트로보스코프(stroboscope)**	
9029.10	-적산(積算)회전계·생산량계·택시미터·주행거리계·보수계와 이와 유사한 계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9.20	-속도계와 회전속도계, 스트로보스코프 (stroboscope)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9.90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30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스펙트럼 분석기와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제 9028 호의 것은 제외한다), 알파선·베타선·감마선·엑스선·우주선이나 그 밖의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기**	
9030.10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30.20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와 오실로그래프 (Oscillograph)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30.3	**-전압·전류·저항·전력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9030.31	--기록장치가 없는 멀티미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30.32	--기록장치를 갖춘 멀티미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30.33	--기타(기록장치가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30.39	--기타(기록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30.40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그 밖의 기기 [예: 누화계(cross-talk meter)·게인측정계(gain measuring instrument)·만곡률계(distortion factor meter)·잡음전압계(psophometer)]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30.8	**-그 밖의 기기**	
9030.82	--반도체 웨이퍼나 소자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30.84	--기타(기록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30.8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30.90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31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	
9031.10	-균형시험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31.20	-테스트벤치(Test bench)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31.4	**-그 밖의 광학식 기기**	
9031.41	--반도체 웨이퍼와 소자 검사용이나 반도체 소자 제조에 사용되는 포토마스크(photomask)나 레티클(reticle) 검사용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31.4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31.80	-그 밖의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31.90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32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	
9032.10	-온도 자동조절용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32.20	-매노우스타트(manostat)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32.8	**-그 밖의 기기**	
9032.81	--액압식이나 공기식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32.8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32.90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33	**제 90 류의 기계・기기・장치・장비용 부분품과 부속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9033.00	-제 90 류의 기계・기기・장치・장비용 부분품과 부속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91 류	**시계와 그 부분품**	
9101	**손목시계・회중시계와 그 밖의 휴대용 시계(스톱워치를 포함하며, 케이스를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9101.1	**-손목시계(전기구동식으로 한정하며, 스톱워치 기능을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9101.11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1.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1.2	**-그 밖의 손목시계(스톱워치 기능을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9101.21	--자동권(自動捲)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1.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1.9	**-기타**	
9101.91	--전기구동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1.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2	**손목시계·회중시계와 그 밖의 휴대용 시계(스톱워치를 포함하되 제 9101 호의 것은 제외한다)**	
9102.1	**-손목시계(전기구동식으로 한정하며, 스톱워치 기능을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9102.11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2.12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2.2	**-그 밖의 손목시계(스톱워치 기능을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9102.21	--자동권(自動捲)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2.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2.9	**-기타**	
9102.91	--전기구동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2.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3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를 갖춘 클록(clock)(제 9104 호의 것은 제외한다)**	
9103.10	-전기구동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4	**차량용・항공기용・우주선용・선박용 계기반 클록(clock)과 이와 유사한 클록(clock)**	
9104.00	-차량용・항공기용・우주선용・선박용 계기반 클록(clock)과 이와 유사한 클록(clock)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5	**그 밖의 클록(clock)**	
9105.1	**-자명종시계**	
9105.11	--전기구동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5.2	**-벽시계**	
9105.21	--전기구동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5.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5.9	**-기타**	
9105.91	--전기구동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5.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6	**시각을 기록하는 기기와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나 동기(同期)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서 시간을 측정・기록하거나 알리는 기기[예: 타임레지스터(time-register)・타임레코더(time-recorder)]**	
9106.10	-타임레지스터(time-register)와 타임레코더(time-record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7	**타임스위치[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나 동기(同期)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9107.00	-타임스위치[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나 동기(同期)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108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완전한 것으로서 조립된 것으로 한정한다)	
9108.1	-전기구동식	
9108.11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이나 기계식 표시부를 내장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8.12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8.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8.20	-자동권(自動捲)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9	클록 무브먼트(clock movement)(완전한 것으로서 조립된 것으로 한정한다)	
9109.10	-전기구동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10	완전한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미조립이나 부분적으로 조립된 것으로 한정한다)(무브먼트세트), 불완전한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조립된 것으로 한정한다), 러프(rough)한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	
9110.1	-휴대용 시계의 것	
9110.11	--완전한 무브먼트(movement)(미조립이나 부분적으로 조립한 것으로 한정한다)(무브먼트세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10.12	--불완전한 무브먼트(movement)(조립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10.19	--러프 무브먼트(rough movemen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1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111	**휴대용 시계의 케이스와 그 부분품**	
9111.10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케이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11.2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케이스(금이나 은을 도금하였는지에 상관없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11.80	-그 밖의 케이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11.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12	**클록(clock) 케이스, 이 류의 그 밖의 물품에 사용되는 이와 유사한 유형의 케이스와 이들의 부분품**	
9112.20	-케이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12.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13	**휴대용 시곗줄·휴대용 시계밴드·휴대용 시계팔찌와 이들의 부분품**	
9113.10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13.2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금이나 은을 도금하였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1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14	**그 밖의 시계의 부분품**	
9114.10	-스프링(헤어스프링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14.30	-문자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14.40	-지판과 브리지(bridg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1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92 류	악기와 그 부분품과 부속품	
9201	피아노(자동피아노를 포함한다)・하프시코드(harpsichord)와 그 밖의 건반이 있는 현악기	
9201.10	-업라이트(upright) 피아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201.20	-그랜드 피아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20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202	그 밖의 현악기(예: 기타・바이올린・하프)	
9202.10	-활을 사용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2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205	관악기(예: 키보드 파이프 오르간・아코디언・클라리넷・트럼펫・백파이프)[페어그라운드 오르간(fairground organ)과 메커니컬 스트리트 오르간(mechanical street organ)은 제외한다]	
9205.10	-금관악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2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206	타악기[예: 북・목금・심벌・캐스터네츠・마라카스(maracas)]	
9206.00	-타악기[예: 북・목금・심벌・캐스터네츠・마라카스(maracas)]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207	전기적으로 음이 발생하거나 증폭되는 악기(예: 오르간・기타・아코디언)	
9207.10	-건반악기(아코디언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20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208	뮤지컬박스・페어그라운드 오르간 (fairground organ)・메커니컬 스트리트 오르간 (mechanical street organ)・기계식 자명조 (singing bird)・뮤지컬소(musical saw)와 그 밖의 악기로서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각종 데코이 콜(decoy call), 휘슬・호각과 그 밖의 입으로 불어서 나는 소리로 신호하는 기구	
9208.10	-뮤지컬박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20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209	악기의 부분품(예: 뮤지컬박스용 메카니즘)과 부속품(예: 기계식 악기용 카드・디스크・롤), 박절기(metronom)・소리굽쇠, 각종 조율관(調律管)	
9209.30	-악기용 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209.9	-기타	
9209.91	--피아노의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209.92	--제 9202 호 악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209.94	--제 9207 호 악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209.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19 부 무기・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 93 류	무기・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301	군용무기[리볼버(revolver)・피스톨(pistol)과 제 9307 호의 무기는 제외한다]	
9301.10	-포병 무기(예: 평사포・곡사포・박격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1.20	-로켓발사기, 화염발사기, 유탄발사기, 어뢰발사관과 이와 유사한 발사장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2	**리볼버(revolver)와 피스톨(pistol)(제 9303 호·제 9304 호의 것은 제외한다)**	
9302.00	-리볼버(revolver)와 피스톨(pistol)(제 9303 호·제 9304 호의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3	**그 밖의 화기와 폭약으로 점화되는 이와 유사한 장치[예: 경기용 산탄총과 라이플(rifle), 총구장전 화기, 베리식 피스톨(Very pistol), 신호용 화염만을 발생하는 그 밖의 장치, 공포탄용 피스톨(pistol)·리볼버(revolver), 캡티브볼트(captive-bolt)형 무통(無痛) 도살기, 줄 발사총(line-throwing gun)]**	
9303.10	-총구장전 화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3.20	-그 밖의 스포츠용·수렵용·표적사격용 산탄총[산탄총과 라이플(rifle) 기능이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3.30	-그 밖의 스포츠용·수렵용·표적사격용 라이플(rifl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4	**그 밖의 무기(예: 스프링총·공기총·가스총·경찰봉)(제 9307 호의 것은 제외한다)**	
9304.00	-그 밖의 무기(예: 스프링총·공기총·가스총·경찰봉)(제 9307 호의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5	**부분품과 부속품(제 9301 호부터 제 9304 호까지의 것으로 한정한다)**	
9305.10	-리볼버(revolver)나 피스톨(pistol)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5.20	-산탄총 또는 라이플(rifle)의 것(제 9303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5.9	**-기타**	
9305.91	--제 9301 호의 군용 무기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5.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306	폭탄・유탄・어뢰・지뢰・미사일과 이와 유사한 군수품과 이들의 부분품, 탄약・그 밖의 총포탄・탄두와 이들의 부분품[산탄알과 탄약 안에 충전되는 와드(wad)를 포함한다]	
9306.2	-산탄총용 탄약과 그 부분품, 공기총 탄환	
9306.21	--탄약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6.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6.30	-그 밖의 탄약과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7	검류・창과 이와 유사한 무기, 이들의 부분품과 집	
9307.00	-검류・창과 이와 유사한 무기, 이들의 부분품과 집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20 부 잡품		
제 94 류	가구, 침구・매트리스・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램프・조명기구,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 조립식 건축물	
9401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제 9402 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	
9401.10	-항공기용 의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1.20	-차량용 의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1.30	-회전의자(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1.40	-침대 겸용 의자[가든시트(garden seat)나 캠핑용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1.5	-등나무・버드나무 가지(osier)・대나무나 이와 유사한 재료로 만든 의자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401.52	--대나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1.53	--등나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1.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1.6	**-그 밖의 의자(프레임이 나무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9401.61	--의자의 속·용수철·커버 등을 댄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1.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1.7	**-그 밖의 의자(프레임이 금속으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9401.71	--의자의 속·용수철·커버 등을 댄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1.7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1.80	-그 밖의 의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1.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2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가구류(예: 수술대·검사대·기계식 장비를 갖춘 병원용침대·치과용 의자), 회전·뒤로젖힘·상하 조절 기능을 갖춘 이발용 의자와 이와 유사한 의자, 이들의 부분품**	
9402.10	-치과용 의자·이발용 의자나 이와 유사한 의자와 이들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3	**그 밖의 가구와 그 부분품**	
9403.10	-금속으로 만든 사무실용 가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3.20	-금속으로 만든 그 밖의 가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3.30	-사무실용 목제가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3.40	-주방용 목제가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3.50	-침실용 목제가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3.60	-그 밖의 목제가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3.70	-플라스틱으로 만든 가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3.8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가구[등나무·버드나무 가지(osier)·대나무나 이와 유사한 재료로 만든 것을 포함한다]**	
9403.82	--대나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3.83	--등나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3.8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3.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4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예: 매트리스·이불·우모이불·쿠션·푸프(pouff)·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한 것이나 각종 재료를 채우거나 내부에 끼워 넣은 것이나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피복하였는지에 상관없다)**	
9404.10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4.2	**-매트리스**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404.21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피복하였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4.29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4.30	-침낭(sleeping bag)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5	**램프·조명기구[서치라이트(searchlight)·스포트라이트(spotlight)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부분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9405.10	-샹들리에(chandelier)와 그 밖의 천장용·벽 부착용 전기식 조명기구[공공공지(公共空地)나 통행로에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5.20	-전기식의 테이블·책상·침대·마루스탠드 램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5.30	-크리스마스 장식용 조명세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5.40	-그 밖의 전기램프와 조명기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5.50	-비전기식 램프와 조명기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5.60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5.9	**-부분품**	
9405.91	--유리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5.92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5.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6	**조립식 건축물**	
9406.10	-나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95 류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와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503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	
9503.00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4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오락용구·테이블게임용구나 실내게임용구(핀테이블용구·당구용구·카지노게임용특수테이블·자동식 볼링장용구를 포함한다)**	
9504.20	-각종 당구용구와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4.30	-그 밖의 게임용구(코인·은행권·은행카드·토큰과 그 밖의 지급수단으로 작동되는 것으로 한정하며 자동식 볼링장용구는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4.40	-오락용 카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4.50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소호 제 9504.30 호의 것들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5	**축제용품·카니발용품이나 그 밖의 오락용품[마술용품과 기술(奇術)용품을 포함한다]**	
9505.10	-크리스마스 축제용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6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탁구용품을 포함한다), 옥외게임용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paddling pool)용품	
9506.1	-설상 스키와 그 밖의 설상 스키용품	
9506.11	--스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6.12	--스키파스닝(ski-fastening)(스키바인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6.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6.2	-수상스키·서프보드(surf board)·세일보드(sailboard)와 그 밖의 수상 운동용구	
9506.21	--세일보드(sailboard)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6.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6.3	-골프채와 그 밖의 골프용품	
9506.31	--골프채(완제품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6.32	--골프공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6.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6.40	-탁구용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6.5	-테니스용 라켓·배드민턴용 라켓이나 이와 유사한 라켓(줄을 맨 것인지에 상관없다)	
9506.51	--론테니스(lawn-tennis) 라켓(줄을 맨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6.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6.6	**-공(골프공과 탁구공은 제외한다)**	
9506.61	--론테니스(lawn-tennis) 공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6.62	--공기를 넣어 부풀게 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6.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6.70	-아이스스케이트와 롤러스케이트(스케이트가 부착된 스케이팅부츠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6.9	**-기타**	
9506.91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 경기에 사용하는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6.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7	**낚싯대·낚싯바늘과 그 밖의 낚시용구, 낚시용 망·포충망(捕蟲網)과 이와 유사한 망, 조류 유인용구(제 9208 호나 제 9705 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수렵용구**	
9507.10	-낚싯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7.20	-낚싯바늘(낚싯줄에 매는 짧은 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7.30	-낚시 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8	**회전목마·그네·실내사격연습장용품과 그 밖의 놀이공원용품과 순회서커스·순회동물원·순회극장 용품**	
9508.10	-순회서커스와 순회동물원 용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96 류	잡품	
9601	가공한 아이보리(ivory)・뼈・귀갑(龜甲)・뿔・가지진뿔・산호・자개・그 밖의 동물성 조각용 재료와 그 제품(성형품을 포함한다)	
9601.10	-가공한 아이보리(ivory)와 그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2	가공한 식물성이나 광물성 조각용 재료와 그 제품, 성형품이나 조각품[왁스・스테아린(stearin)・천연수지・모델링페이스트(modelling paste)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그 밖의 성형품이나 조각품, 가공한 비경화(非硬化) 젤라틴(제 3503 호의 젤라틴은 제외한다)과 비경화(非硬化) 젤라틴의 제품	
9602.00	-가공한 식물성이나 광물성 조각용 재료와 그 제품, 성형품이나 조각품[왁스・스테아린(stearin)・천연수지・모델링페이스트(modelling paste)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그 밖의 성형품이나 조각품, 가공한 비경화(非硬化) 젤라틴(제 3503 호의 젤라틴은 제외한다)과 비경화(非硬化) 젤라틴의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3	비・브러시(기계・기구・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모터를 갖추지 않은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으로 한정한다)・모프(mop)・깃 먼지털이, 비나 브러시의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tuft)의 모양으로 정돈한 물품, 페인트용 패드・롤러・스퀴지(squeegee)[롤러스퀴지(roller squeegee)는 제외한다]	
9603.10	-비와 브러시(작은 가지나 그 밖의 식물성 재료를 단순히 묶은 것으로 한정하며, 자루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3.2	-칫솔・면도용 브러시・헤어 브러시・네일 브러시・아이래쉬(eyelash) 브러시와 그 밖의 인체용인 화장용 브러시(화장기구의 일부를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	
9603.21	--칫솔[덴탈플레이트(dental-plate) 브러시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3.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603.30	-회화용 붓·필기용 붓과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붓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3.40	-페인트용·디스템퍼(distemper)용·바니시(varnish)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의 브러시(소호 제 9603.30 호의 브러시는 제외한다), 페인트용 패드와 롤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3.50	-그 밖의 브러시(기계·기구·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4	**수동식 체와 어레미**	
9604.00	-수동식 체와 어레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5	**개인용 여행세트(화장용·바느질용·신발이나 의류 청소용으로 한정한다)**	
9605.00	-개인용 여행세트(화장용·바느질용·신발이나 의류 청소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6	**단추·프레스파스너(press-fastener)·스냅파스너(snap- fastener)·프레스스터드(press-stud)·단추의 몰드(mould)와 이들의 부분품, 단추 블랭크(blank)**	
9606.10	-프레스파스너(press-fastener)·스냅파스너(snap fastener)·프레스스터드(press-stud)와 이들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6.2	**-단추**	
9606.21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서 방직용 섬유재료로 피복되어 있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6.22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으로서 방직용 섬유재료로 피복되어 있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6.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6.30	-단추의 몰드(mould)와 단추의 부분품, 단추 블랭크(blank)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7	**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와 그 부분품**	
9607.1	**-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607.11	--체인스쿠프(chain scoop)를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7.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7.2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8	**볼펜, 팁(tip)이 펠트로 된 것과 그 밖의 포러스팁(porous-tip)으로 된 펜과 마커, 만년필·철필(鐵筆)형 만년필(stylograph pen)과 그 밖의 펜, 복사용 철필(鐵筆), 프로펠링펜슬(propelling pencil)이나 슬라이딩펜슬(sliding pencil), 펜홀더·펜슬홀더와 이와 유사한 홀더, 이들의 부분품[캡과 클립(clip)을 포함하며 제 9609 호의 것은 제외한다]**	
9608.10	-볼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8.20	-팁(tip)이 펠트로 된 것과 그 밖의 포러스팁(porous-tip)으로 된 펜과 마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8.30	-만년필·철필(鐵筆)형 만년필(stylograph pen)과 그 밖의 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8.40	-프로펠링펜슬(propelling pencil)이나 슬라이딩펜슬(sliding pencil)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8.50	-위 소호들의 물품이 두 개 이상으로 세트를 이루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8.60	-볼펜용 심(볼포인트와 잉크 저장기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8.9	**-기타**	
9608.91	--펜촉과 닙포인트(nib poin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8.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9	**연필(제 9608 호의 펜슬은 제외한다)·크레용·연필심·파스텔·도화용 목탄·필기용이나 도화용 초크와 재단사용 초크**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9609.10	-연필과 크레용(견고한 집 속에 심을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9.20	-연필심(검은색이나 색깔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10	**석판과 보드(필기용이나 도화용 면을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틀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9610.00	-석판과 보드(필기용이나 도화용 면을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틀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11	**날짜 도장·봉합용 스탬프·넘버링스탬프(numbering stamp)와 이와 유사한 물품[레이블(label)에 날인하거나 양각하는 기구를 포함하며, 수동식으로 한정한다], 수동식 조판용 스틱과 조판용 스틱을 결합한 수동식 인쇄용 세트**	
9611.00	-날짜 도장·봉합용 스탬프·넘버링스탬프(numbering stamp)와 이와 유사한 물품[레이블(label)에 날인하거나 양각하는 기구를 포함하며, 수동식으로 한정한다], 수동식 조판용 스틱과 조판용 스틱을 결합한 수동식 인쇄용 세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12	**타자기용 리본이나 이와 유사한 리본(잉크가 침투되어 있거나 인쇄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 것을 포함하며, 스풀에 감긴 것이거나 카트리지 모양인지에 상관없다)과 잉크 패드(잉크가 침투되어 있는지 또는 상자들이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9612.10	-리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12.20	-잉크 패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13	**담배 라이터와 그 밖의 라이터(기계식이나 전기식인지에 상관없다)와 이들의 부분품(라이터 돌과 심지는 제외한다)**	
9613.10	-포켓형 라이터(가스 주입식으로 다시 채울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13.20	-포켓형 라이터(가스 주입식으로 다시 채울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13.80	-그 밖의 라이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13.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14	**흡연용 파이프[파이프 볼(pipe bowl)을 포함한다]·시가홀더·시가렛홀더, 이들의 부분품**	
9614.00	-흡연용 파이프[파이프 볼(pipe bowl)을 포함한다]·시가홀더·시가렛홀더, 이들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15	**빗·헤어슬라이드(hair-slide)와 이와 유사한 물품·머리핀·컬링핀(curling pin)·컬링그립(curling grip)·헤어컬러(hair curler)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 8516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과 이들의 부분품**	
9615.1	**-빗·헤어슬라이드(hair-slide)와 이와 유사한 물품**	
9615.11	--경화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1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1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16	**향수용 분무기와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 이들의 마운트(mount)와 두부(頭部), 화장용 분첩과 패드**	
9616.10	-향수용 분무기와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 이들의 마운트(mount)와 두부(頭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16.20	-화장용 분첩과 패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17	**보온병과 그 밖의 진공용기(케이스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와 그 부분품(유리로 만든 내부용기는 제외한다)**	
9617.00	-보온병과 그 밖의 진공용기(케이스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와 그 부분품(유리로 만든 내부용기는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18	**마네킹 인형과 그 밖의 모델형 인형, 자동인형과 그 밖의 쇼윈도 장식용인 움직이는 전시용품**	
9618.00	-마네킹 인형과 그 밖의 모델형 인형, 자동인형과 그 밖의 쇼윈도 장식용인 움직이는 전시용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19	위생 타월(패드)·탐폰(tampon), 유아용 냅킨·냅킨라이너(napkin liner)와 이와 유사한 물품(어떤 재질이라도 가능하다)	
9619.00	-위생 타월(패드)·탐폰(tampon), 유아용 냅킨·냅킨라이너(napkin liner)와 이와 유사한 물품(어떤 재질이라도 가능하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20	일각대·양각대·삼각대와 이와 유사한 물품	
9620.00	-일각대·양각대·삼각대와 이와 유사한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21 부 예술품·수집품·골동품		
제 97 류	예술품·수집품·골동품	
9701	회화·데생·파스텔(손으로 직접 그린 것으로 한정하며, 제 4906 호의 도안과 손으로 그렸거나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콜라주(collage)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9701.10	-회화·데생·파스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70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702	오리지널 판화·인쇄화·석판화	
9702.00	-오리지널 판화·인쇄화·석판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703	오리지널 조각과 조상(彫像)(어떤 재료라도 가능하다)	
9703.00	-오리지널 조각과 조상(彫像)(어떤 재료라도 가능하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704	우표·수입인지·우편요금 별납증서·초일(初日)봉투·우편엽서류와 이와 유사한 것(이미 사용한 것이나 제 4907 호의 것은 제외한 사용하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	
9704.00	-우표·수입인지·우편요금 별납증서·초일(初日)봉투·우편엽서류와 이와 유사한 것(이미 사용한 것이나 제 4907 호의 것은 제외한 사용하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705	수집품과 표본[동물학·식물학·광물학·해부학·사학·고고학·고생물학·민족학·고전학(古錢學)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9705.00	-수집품과 표본[동물학·식물학·광물학·해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세번 (HS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학・사학・고고학・고생물학・민족학・고전학(古錢學)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706	**골동품(제작 후 100 년을 초과한 것으로 한정한다)**	
9706.00	-골동품(제작 후 100 년을 초과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4장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제4.1조
공표

1. 각 당사국은 수입 및 수출에 관련된 법, 규정 및 일반 행정절차를 인터넷을 포함하여 공표한다.

2. 각 당사국은 관세 사안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합리적인 질의를 다루는 하나 이상의 문의처를 지정하거나 유지하며, 그러한 문의 절차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3. 가능한 한도에서, 각 당사국은 이해관계인에게 수입 및 수출에 관련된 일반법, 규정 및 일반 행정절차의 제안된 도입 또는 개정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와 합리적인 기간을 제공한다.

제4.2조
상품의 반출

1. 양자 간 무역을 원활화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상품의 효율적인 반출을 위한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2. 제1항에 따라, 각 당사국은 다음의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가. 자국의 관세법과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간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 상품을 반출하도록 규정하는 절차

나. 상품이 도착하는 즉시 반출될 수 있도록 상품이 도착하기 전에 통관 정

보가 수기로 또는 전자적으로 제출되고 처리되도록 규정하는 절차

다. 창고 또는 그 밖의 시설로 일시적으로 이동시키지 않고 도착지점에서 상품이 반출되도록 허용하는 절차, 그리고

라. 적용 가능한 관세, 조세 및 수수료에 대하여 자국 관세 당국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리고 그러한 결정을 저해함이 없이, 수입자가 보증과 함께 상품을 세관으로부터 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절차

제4.3조
자동화

가능한 한도에서, 각 당사국은 상품의 반출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정보기술을 활용하고,

가. 세관 이용자가 전자시스템에 접근 가능하도록 한다.

나. 국제 표준을 사용하도록 노력한다.

다. 국제무역 데이터의 양국 간 교환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시스템과 호환 가능한 전자시스템을 개발하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라. 세계관세기구(이하 “WCO”라 한다)의 관세데이터모델과 WCO의 관련 권고사항 및 지침에 따라 일련의 공통적인 데이터 요소와 처리절차를 개발하도록 노력한다.

제4.4조
위험관리

각 당사국은 자국 관세 당국이 검사 활동을 고위험 탁송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저위험 탁송물의 통관 및 이동을 간소화하는 평가 및 선별을 위한 전자 또는 자동화된 위험관리시스템을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제4.5조
협력

1. 이 협정의 효과적인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행정정책의 중요한 수정이나 수입 및 수출을 규율하는 자국의 법 또는 규정에 관련된 그 밖의 유사한 진행사항에 대한 사전통보를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2. 양 당사국은 상품의 합법적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약속을 확인하며, 통관 기술 및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와 전산화 시스템에 관한 전문성을 교환한다.

3. 양 당사국은 다음을 약속한다.

가. 상품의 수입, 수출 및 통과에 대한 관세 관련 사안에서 양 당사국 간 무역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국제표준에 따라 무역에 사용된 문서 및 자료 요소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

나. 관세분석소와 과학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고 관세분석 방법의 조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

다. 세관 직원을 교환하는 것

라. 관세 절차에 직접 참여하는 공무원을 위하여 관세 관련 문제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조직하는 것

마. 무역 및 비즈니스 공동체와 의사소통을 위한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개발하는 것

바.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수입 상품의 품목분류, 평가 및 원산지 결정에 상호 지원하는 것

사. 수입, 수출, 재수출, 통과, 환적 및 그 밖의 통관절차에 대하여, 그리고 특히 위조품에 대하여 관세 당국의 강력하고 효율적인 지식재산권 집행을 증진하는 것, 그리고

아. 무역을 원활히 하면서, 모든 장소로부터 양 당사국으로 수입, 환적 또는 통과되는 해상화물과 그 밖의 화물의 보안을 증진하는 것. 양 당사국은 강화되고 확대된 협력의 목적이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한다.

1) 국제무역의 물류망을 확보하기 위한 세관 관련 측면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조하는 것, 그리고

2) 실행 가능한 최대 한도에서, 화물 보안과 관련된 문제가 적절히 제기되고 논의될 수 있는 모든 다자간 포럼에서 입장을 조율하는 것

제4.6조
비밀유지

1. 이 장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 정보를 제공하는 한쪽 당사국이 그 정보를 비밀로 지정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은 그 정보를 비밀로 유지한다.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국은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될 것이며 다른 쪽 당사국이 정보 요청에 명시한 목적으로만 이용될 것이고 그 정보를 제공한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에게 정보를 제공한 인의 명시적 허락 없이는 공개되지 않을 것임을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보장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2. 한쪽 당사국이 제1항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정보를 접수한 경우, 그 정보를 접수한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아 자국의 국내법 및 법 제도에

따라 법 집행의 목적상 또는 사법절차 과정에서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공개할 수 있다.

3.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제1항에 합치되게 행동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당사국이 요청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4. 각 당사국은 공개되면 그 정보를 제공한 인의 경쟁적 지위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 그 당사국의 관세법 행정에 따라 제출된 비밀 정보의 무단 공개로부터 보호하는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제4.7조
특송화물

각 당사국은 적절한 통관 통제 및 선별을 유지하면서 특송화물을 위한 신속한 통관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도록 권장된다. 이러한 절차는,

가. 특송화물을 위한 별도의 신속한 통관 절차를 규정하고, 적용 가능한 경우, WCO 탁송물 즉시반출 지침을 활용한다.

나. 특송화물이 도착하기 전에 그 화물의 처리에 필요한 정보가 수기로 또는 전자적으로 제출되도록 규정한다. 그리고

다. 가능한 한도에서, 특정 상품이 최소한의 서류로 통관되도록 규정한다.

제4.8조
재심 또는 불복청구

각 당사국은 관세 사안에 대한 자국의 결정에 대하여, 자국 영역에 있는 수입자가 다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가. 그 결정을 내린 직원 또는 부서보다 높거나 독립된 한 단계의 행정적 재

심 또는 불복청구, 그리고

나. 그 결정에 대한 사법적 재심 또는 불복청구

제4.9조
벌칙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법 및 규정의 위반에 대하여 민사상 또는 행정상의 벌칙, 그리고 적절한 경우 형사상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제4.10조
사전심사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 있는 수입자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자국 영역으로 상품이 수입되기 전에 자국의 관세 당국을 통하여 다음에 대한 사전심사서 또는 정보를 발급한다.

가. 품목분류에 대한 심사

나. 1994년도 GATT 제7조 및 관세평가협정에 따른 특정한 사안에 대한 관세평가기준의 적용에 관한 정보, 또는

다.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사안

2. 당사국이 발급한 사전심사 및 정보는 그것을 구한 신청인과 관련하여 그 당사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3. 각 당사국은 자국 관세 당국이 요청을 접수한 후 90일 내에 사전심사를 발급한다. 다만, 신청인은 당사국이 요청하는 경우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상품의 견본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제출했어야 한다. 사전심사를 발급할 때, 그 당사국

은 신청인이 제공한 사실 및 상황을 고려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사전심사의 근거가 되는 사실과 상황이 행정적 또는 사법적 재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 사전심사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라 사전심사의 발급을 거부하는 당사국은 사전심사의 발급거부결정에 관한 관련 사실 및 근거를 적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신속하게 통보한다.

4. 각 당사국은 사전심사의 근거가 되는 사실 또는 상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 사전심사가 발급된 날 또는 사전심사에 명시된 다른 날에 사전심사가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한다.

5. 발급 당사국은 사전심사 결과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고, 신청인에게 신속하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6. 각 당사국은 신청인에게 사전심사의 행정적 재심에 대한 접근을 보장한다.

7. 신청인이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전심사에 관한 관련 사실 또는 상황을 누락하는 경우, 또는 사전심사의 조건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민사, 형사 및 행정적 조치, 금전상의 벌칙, 또는 그 밖의 제재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제4.11조
협의

1. 어느 한쪽 관세 당국은 이 장 및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의 운영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요청 당사국이 제공한 합리적 근거 또는 사실이 있는 경우 다른 쪽 관세 당국에 언제라도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협의는 관련 접촉선을 통하여 수행된다.

2. 그러한 협의가 그러한 사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요청 당사국은 그 사안을 제4.12조에 언급된 관세 및 무역원활화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4.12조 관세 및 무역원활화 위원회

1.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의 관세 당국으로 구성된 관세 및 무역원활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양 당사국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양 당사국의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이 장과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의 적절한 기능을 보장하고, 이 장들의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안을 검토한다.

3.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이 장 및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의 효과적이고, 통일되며, 일관된 운영의 검토, 논의 및 제안

나. 이 장과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의 효과적이고, 통일되며, 일관된 해석을 위한 통일된 규정의 검토, 논의 및 제안

다.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이하 “HS”라 한다) 전환에 기초한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의 개정

라. HS에 따른 상품의 분류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양 당사국 간 발생할 수 있는 차이에 대하여 협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

마. 이 장과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의 개정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고 개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

4. 위원회는 매년 또는 달리 합의하는 바에 따라 양국 간 교대로 회합한다.

제 5 장
무역구제

제 1 절
긴급수입제한조치

제 5.1 조
정의

제 1 절의 목적상,

권한 있는 당국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무역위원회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나. 인도네시아의 경우, 통상부 또는 그 승계기관

국내 산업이란, 수입 상품에 대하여, 당사국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동종의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의 생산자 전체, 또는 동종의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의 총산출량이 그 상품의 국내 총생산의 상당한 부분을 구성하는 생산자를 말한다.

긴급수입제한조치란 제 5.2 조에 기술된 조치를 말한다.

심각한 피해란 국내 산업의 입지에 대한 중대하고 전반적인 손상을 말한다.

실질적 원인이란 중요하고 다른 어떠한 원인보다 덜 중요하지 않은 원인을 말한다.

심각한 피해의 우려란 단순히 주장, 추측 또는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하여 명백히 임박한 심각한 피해를 말한다. 그리고

과도기간이란 이 협정의 발효일 후 10 년간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는 당사국의 부속서 2-가(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양허표가 그 당사국이 그 상품에 대한 관세를 10 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쳐 철폐하도록 규정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과도기간**은 그 양허표에 규정된 그 상품의 관세 철폐 기간을 말한다.

제 5.2 조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

이 협정상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의 수입이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인 원인을 구성할 정도로 절대적 또는 국내 생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증가된 물량과 조건하에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이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 수입되고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음을 할 수 있다.

가. 이 협정에 규정된 그 상품에 대한 관세율의 추가 인하를 정지하는 것

나. 다음 중 더 낮은 것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까지 그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는 것

1) 그 조치가 취하여지는 시점에 유효한 그 상품에 대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또는

2) 제 2.4 조(관세 인하 또는 철폐)에 따라 부속서 2-가(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양허표에 명시된 기준 관세율, 또는

3) 이 협정의 발효일 직전일에 유효한 그 상품에 대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제 5.3 조
조건 및 제한

1. 한쪽 당사국은 제 2 항에 기술된 조사 개시 직후에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으로 통보하며, 조사 개시로부터 얻어지는 정보를 검토하기 위하여, 조사 개시 후 실행 가능한 한 공청회 및 협의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2.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 3 조 및 제 4 조제 2 항다호에 따라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사한 후에만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 3 조 및 제 4 조제 2 항다호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3. 제 2 항에 기술된 조사에서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 4 조제 2 항가호의 요건을 준수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 4 조제 2 항가호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4.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러한 모든 조사를 그 개시일부터 6 개월 내에 완료하도록 보장한다.

5. 어떠한 당사국도,

가.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그리고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및 기간 동안을 제외하고,

나.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의 총기간이 최초 적용기간과 이에 대한 연장을 포함하여 3 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수입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 조치가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그리고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과 그 산업이 구조조정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는 것을 이 조에 명시된 절차에 합치되게 판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1 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 2 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에, 또는

다. 다른 쪽 당사국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도기간의 만료 후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6. 당사국은 이전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종료부터, 연장을 포함하여 이전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존속기간과 동일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1 회를 초과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비적용기간이 최소 2 년이어야 한다.

7.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예상존속기간이 1 년이 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이를 점진적으로 자유화한다.

8. 당사국이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종료하는 경우, 관세율은 그 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면 부속서 2-가(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그 당사국의 양허표에 따라 유효하였을 관세율이 된다.

제 5.4 조
잠정조치

1. 지연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초래될 중대한 상황에서,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의 수입이 이 협정상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증가하였으며 그러한 수입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 원인을 구성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예비판정에 따라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잠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예비판정을 내리기 전에, 그 당사국은 수입자 및 수출자를 포함한 이해당사자가 잠정적인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요청하는 신청서의 공개본을 어떻게 취득할 수 있는지를 규정한 공고를 자국의 관보에 공표하고, 이해당사자들이 잠정조치의 적용에 관하여 증거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 공고를 공표한 날 후 최소한 20 일의 기간을 부여한다.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사를 개시한 날 후 최소한 45 일까지는 잠정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3. 적용 당사국은 잠정적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기 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하고, 그 조치의 적용 후 즉시 협의를 개시한다.

4. 모든 잠정 조치의 존속기간은 180 일을 초과하지 않으며, 그 기간 동안 그 당사국은 제 5.3 조제 2 항 및 제 5.3 조제 3 항의 요건을 준수한다.

5. 그 당사국은 제 5.3 조제 2 항에 기술된 조사에서 제 5.2 조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조사결과에 이르지 않는 경우 모든 관세 인상분을 신속하게 반환한다. 모든 잠정조치의 존속기간은 제 5.3 조제 5 항나호에 기술된 기간의 일부로 계산된다.

제 5.5 조
보상

1. 한쪽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한 후 30 일 내에,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가지거나 그 조치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추가적인 관세액과 동등한 양허의 형태로 된 적절한 무역자유화 보상에 관하여 자국과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다른 쪽 당사국에 부여한다. 적용 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하는 보상을 제공한다.

2. 양 당사국이 협의 개시 후 30 일 내에 제 1 항에 따른 협의를 통한 보상에 대하여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조치가 적용되는 원산지 상품의 당사국은 적용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가지는 양허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3.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수입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행해져 왔고 그러한 조치가 이 절의 규정에 합치하는 한, 제 2 항에 언급된 정지할 수 있는 권리는 그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유효한 최초 2 년간 행사되지 않는다.

4. 제 1 항에 따라 보상을 제공할 적용 당사국의 의무와 제 2 항에 따라 양허를 정지할 수 있는 다른 쪽 당사국의 권리는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종료하는 날에 소멸된다.

5. 모든 보상은 잠정 긴급수입제한조치와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총적용기간을 기초로 한다.

제 5.6 조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

1. 각 당사국은 1994 년도 GATT 제 19 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른 자국의 권리 및 의무를 유지한다. 이 협정은,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의 수입이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하는 당사국이 그러한 수입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 1994 년도 GATT 제 19 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라 행해진 조치에 대하여 양 당사국에 어떠한 추가적인 권리나 의무도 부여하지 않는다.

2.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하려는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조사의 개시, 그 조사의 예비판정 및 최종 결과에 관한 모든 관련 정보에 대하여 임시 서면 통보를 즉시 제공할 수 있다.

3. 어떠한 당사국도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동시에 다음의 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가. 긴급수입제한조치, 그리고

나. 1994 년도 GATT 제 19 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른 조치

이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1994 년도 GATT 제 19 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라 조치가 적용되고 있는 상품에 대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부과할 수 없다. 당사국이 1994 년 GATT 제 19 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라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적용되고 있는 상품에 대하여 조치를 적용하려는 경우, 그 당사국은 1994 년 GATT 제 19 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라 적용될 조치를 부과하기 전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종료한다.

제 2 절
반덤핑 및 상계 관세

제 5.7 조

일반 규정

1.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반덤핑 및 상계 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세계무역기구협정상의 자국의 권리 및 의무를 유지한다.

2. 양 당사국은 잠정조치의 부과 후 즉시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최종판정 전에, 반덤핑 협정 제 6.5 조와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 12.4 조를 저해함이 없이, 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결정의 근거를 형성하는 모든 필수적인 사실 및 고려사항의 완전하고 의미 있는 공개를 보장한다. 공개는 서면으로 하고, 이해당사자들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허용한다.

3. 양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 이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양국 간 반덤핑 또는 상계 조치 사안에 대해 다음의 관행을 준수한다.

가. 반덤핑 협정 제 2.4 조제 2 항상의 비교 기준에 관계없이, 반덤핑 협정 제 2 조, 제 9.3 조, 제 9.5 조 및 제 11 조에 따라 반덤핑 마진을 산정, 평가, 또는 검토하는 경우, 모든 개별 마진은 양의 값인지 음의 값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평균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이다.

나. 반덤핑 협정 제 9.1 조에 따라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그러한 결정을 하는 당사국은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를 제거하기에 '최소 관세'가 적절할 경우 덤핑 마진보다 적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최소부과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다. 한쪽 당사국은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고려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이익을 주의를 가지고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라. 조사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 있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자국의 질의서에 대한 적시의 대답을 요청한다. 조사 당사국이 마감시한 전에 관련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받은 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 정보의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발견하거나 또는 조사의 목적을 위하여 명확화를 요구하는 경우 조사 당사국은 누락된 정보를 요구하거나 그 질의서에 대한 답변에

관한 정보의 명확화를 요청한다. 이 절차는 조사의 부당한 지연을 초래하거나 마감시한을 우회하기 위하여 사용되지 않는다.

제 5.8 조
통보 및 협의

1. 한쪽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하여 적절하게 서류를 갖춘 반덤핑 신청을 접수할 때, 그리고 조사를 개시하기 15 일 전에, 그 당사국은 신청의 접수에 관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 통보를 제공한다.

2. 한쪽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 수입에 대하여 적절하게 서류를 갖춘 상계 관세 신청을 접수할 때, 그리고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그 당사국은 신청의 접수에 관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 통보를 제공하고 신청에 관하여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협의하기 위한 회의를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

3. 양 당사국은 반덤핑 협정 부속서 2 및 특히 제 5 항, 그리고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 12.7 조 및 제 12.8 조에 따른 자국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한다. 조사 당국이 반덤핑 협정 제 6.8 조 및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 12.7 조에 따라 이용 가능한 사실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리려는 경우, 조사 당국은 다음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적절한 설명을 제공한다.

가. 이용 가능한 사실의 사용이 적용 가능한 조건에 대한 설명

나. 이해당사자가 조사 당국에 제출하지 못한 정보, 그리고

다. 조사 당국이 나호에 언급된 정보를 대체하기로 결정한 사실

제 5.9 조
재심에 의한 종료 후 조사

한쪽 당사국은 재심의 결과로 이전 12 개월 내에 반덤핑 조치가 종료된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의 개시를 위한 신청을 특별한 주의를 가지고 검토한다. 이 개시 전 검토로 사정이 변경되었음이 나타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사가 진행되지 않는다.

제 5.10 조
누적적 평가

2 개국 이상으로부터의 수입이 동시에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조사의 대상이 될 때,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 효과에 대한 누적적 평가가 수입 상품 간 경쟁 조건 및 수입 상품과 동종의 국내 상품 간 경쟁 조건에 비추어 적절한지를 특별한 주의를 가지고 검토한다.

제 5.11 조
반 우회덤핑 조사 협력

1. 양 당사국은 반덤핑 협정 제 5 조 및 제 6 조에 따라 우회덤핑을 방지하기 위하여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2. 양 당사국은 투명한 방식으로 반 우회덤핑 조사를 수행하고, 반 우회덤핑 조사의 모든 단계에서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그들의 우려를 방어할 권리를 존중하기로 합의한다.

3.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반 우회덤핑 조사를 수행하는 당사국은 조사 대상인 기업에 대한 비밀이 아닌 정보를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

4.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현지실사를 수행하기로 결정하는 모든 절차에서, 한쪽 당사국은 조사 대상인 기업에 사전 통보한다.

5. 반 우회덤핑 조사를 수행하는 당사국은 최종판정 전에,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조치를 적용할지 또는 면제를 부여할지 여부에 대한 평가의 근거를 형성하는 고려 중인 필수적 사실을 알린다. 그 당사국은 그러한 평가에 대하여 모든

이해당사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그러한 필수적인 사실의 공개는 이해당사자가 그들의 이익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해당사자는 또한 청문을 신청할 수 있다.

제 6 장
서비스무역

제 6.1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항공기 수리 및 정비 서비스란 항공기가 취항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항공기 자체 또는 항공기의 부분에 대하여 행해지는 그러한 활동을 말하며, 이른바 비행 전 운항정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상업적 주재란 서비스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국 영역의 모든 유형의 영업적 또는 전문적 설립체를 말하며 다음을 통한 것을 포함한다.

가. 법인의 구성, 인수 또는 유지, 또는

나. 지점이나 대표 사무소의 설치 또는 유지

컴퓨터 예약 시스템 서비스(CRS)란 항공사의 운항 일정, 가용성, 요금 및 요금 규칙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예약을 하거나 항공권을 발행할 수 있는 전산화 체제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다른 쪽 당사국의 법인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서 설립되거나 달리 조직되고,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나. 상업적 주재를 통한 서비스의 공급인 경우 다음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법인

1) 다른 쪽 당사국의 자연인, 또는

2) 가호에 명시된 다른 쪽 당사국의 법인

법인은,

가.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그 법인 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수익성 있게 소유되는 경우, 그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소유된다.

나. 당사국의 인이 그 법인 이사의 과반수를 임명할 권한을 가지거나 달리 그 법인의 행위를 법적으로 지시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러한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지배된다.

다. 자신이 다른 인을 지배하거나 다른 인에 의하여 지배받을 경우, 또는 자신과 다른 인이 모두 동일한 인에 의하여 지배받을 경우, 그 다른 인과 계열관계에 있다.

조치란 제 1.1 조(일반 정의)에 정의된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국에 의한 모든 조치를 말하며, 다음에 관한 조치를 포함한다.

가. 서비스의 구매, 대가 지불 또는 이용

나.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대중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도록 요구하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 그리고

다. 상업적 주재를 포함하여, 다른 쪽 당사국 서비스 공급자의 자국 영역 내 주재

독점 서비스 공급자란 당사국 영역의 관련 시장에서 그 서비스의 유일한 공급자로서 당사국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또는 사실상 승인을 받거나 설립된 모든 공인 또는 사인을 말한다.

다른 쪽 당사국의 자연인이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또는 그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연인으로서 다른 쪽 당사국의 법에 따른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을 말한다.

인이란 자연인 또는 법인 중 어느 하나를 말한다.

서비스 분야란 다음을 말한다.

가. 구체적 약속과 관련하여, 당사국의 양허표에 명시되어 있는, 그 서비스의 하나 이상 또는 모든 하위 분야,

나. 그 외의 경우에는 서비스의 하위 분야 모두를 포함하는 그 서비스 분야 전체

항공 운송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이란 시장 조사, 광고 및 유통과 같은 마케팅의 모든 측면을 포함하여 관련 항공사가 자신의 항공 운송 서비스를 자유로이 판매하고 시장을 확대하는 기회를 말한다. 이러한 활동은 항공 운송 서비스의 가격 책정이나 적용 가능 조건은 포함하지 않는다.

서비스는 정부 권한의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의 모든 서비스를 포함한다.

정부 권한의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란 상업적 기초에서 공급되지도 않고, 하나 이상의 서비스 공급자와의 경쟁하에 공급되지도 않는 서비스를 말한다.

서비스 소비자란 서비스를 받거나 이용하는 모든 인을 말한다.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란 다음을 말한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또는 영역에서 공급되는 서비스, 또는 해상운송의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에 의하여, 또는 선박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운영 및/또는 사용하여 그 서비스를 공급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공급되는 서비스, 또는

나. 상업적 주재나 자연인의 주재를 통한 서비스의 공급인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하여 공급되는 서비스

서비스 공급자란 서비스를 공급하는 모든 인을 말한다.[1]

서비스의 공급은 서비스의 생산, 유통, 마케팅, 판매 및 배달을 포함한다.

서비스무역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의 공급으로 정의된다.

가. 한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의 서비스 공급

나.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공급

다. 한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의 상업적 주재를 통한 서비스 공급, 그리고

라. 한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서의 자연인의 주재를 통한 서비스 공급, 그리고

운송권이란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영역으로, 영역에서 또는 영역 상공으로 대가나 사용료를 목적으로 운항 및/또는 여객, 화물 및 우편을 운송하는 정기적 및 비정기적 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말하며, 여기에는 운항지점, 취항항로, 운송대상의 형태, 운송능력, 부과운임 및 조건, 그리고 항공사의 수, 소유권 및 지배를 포함한 항공사의 지정에 관한 기준이 포함된다.

제 6.2 조

[1] 서비스가 법인에 의하여 직접 공급되지 않고 지점이나 대표 사무소 같은 다른 형태의 상업적 주재를 통하여 공급되는 경우, 서비스 공급자(즉, 그 법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재를 통하여 이 장에 따라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제공되는 대우를 부여받는다. 그러한 대우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재에 대하여 확장되며 서비스가 공급되는 영역 밖에 위치한 공급자의 다른 부분에까지 확장될 필요는 없다.

적용범위

1. 이 장은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국에 의한 조치에 적용된다.

2. 이 장의 목적상, 당사국에 의한 조치란 다음에 의하여 취해진 조치를 말한다.

   가. 중앙, 지역 또는 지방 정부와 당국, 그리고

   나. 중앙, 지역 또는 지방 정부 또는 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비정부 기관

3. 이 장은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가. 각 당사국의 영역에서 정부 권한의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

   나. 다음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제외하고, 부여방식에 관계없이 항공 운송권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또는 항공 운송권의 행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1) 항공기 수리 및 정비 서비스

      2) 항공 운송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 그리고

      3) 컴퓨터 예약 시스템 서비스

   다. 해상운송 서비스의 연안운송

   라. 정부지원 융자, 보증 및 보험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제공하는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

   마. 정부조달, 그리고

바. 당사국의 고용시장에 접근하려는 자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치 및 영구적인 차원에서의 시민권, 거주 또는 고용에 관한 조치

4.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한쪽 당사국이 자국 국경의 일체성을 보호하고 자국 국경을 통과하는 자연인의 질서 있는 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포함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자연인의 자국 영역으로의 입국 또는 자국 영역에서의 일시 체류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를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구체적 약속의 조건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 발생하는 혜택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2]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제 6.3 조
내국민 대우

1. 자국의 양허표에 기재된 분야에서, 그리고 양허표에 명시된 조건 및 제한에 따라,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와 관련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한다.[3]

2. 제 1 항에 따라 당사국이 부여하는 대우란, 지역 정부에 대해서는, 동종의 상황에서 그 지역 정부가 자신이 일부를 구성하는 당사국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말한다.

3. 한쪽 당사국은 자국의 동종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과 형식적으로 동일한 대우 또는 형식적으로 상이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함으로써 제 1 항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4. 형식적으로 동일하거나 형식적으로 상이한 대우는 그것이 다른 쪽 당사국의

---

[2] 특정 국가의 자연인에게 사증을 요구하고 그 밖의 국가의 자연인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구체적 약속의 혜택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3] 이 조에서 상정되는 구체적 약속은 어떠한 당사국으로 하여금 관련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외국산이라는 성격으로부터 기인하는 내재적인 경쟁상의 불리함을 보상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동종의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와 비교하여 당사국의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유리하도록 경쟁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불리한 대우로 간주된다.

제 6.4 조
최혜국 대우

1. 양 당사국은 부속서 6-라와 6-마의 자국 양허표에 열거되고 '최혜국 대우' 로 명시된 서비스 분야와 하위 분야에 대하여, 그리고 그 양허표에 규정된 조건 및 제한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국이 비당사국의 동종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한다.

2.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각 당사국은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 발효일 전에 서명된 양자 간 또는 다자간 국제협정에 따라 비당사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3.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 간 경제통합의 보다 광범위한 과정의 일부로서 상품이나 서비스무역 또는 투자 자유화에 대한 협정에 따라 취해지는 그 밖의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4. 이 장의 규정은 현지에서 생산되고 소비되는 서비스의 인접 접경 지대에 국한된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어떠한 당사국이 인접국에 이점을 부여하거나 허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 6.5 조
시장접근

1. 제 6.1 조에 명시된 공급형태를 통한 시장접근과 관련하여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자국의 양허표에 합의되고 명시된 제한 및 조건에 따라 규정된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한다.[4]

2. 시장접근 약속이 행해진 분야에서, 자국의 양허표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당사국이 지역적 소구분에 기초하거나 자국의 전 영역에 기초하여 유지하거나 채택하지 않는 조치는 다음으로 정의된다.

가. 수량쿼터, 독점,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인지에 관계없이 서비스 공급자의 수에 대한 제한

나.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서비스 거래 또는 자산의 총액에 대한 제한

다. 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지정된 숫자단위로 표시된 서비스 영업의 총수 또는 서비스의 총산출량에 대한 제한[5]

라.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특정 서비스 분야에 고용될 수 있거나 서비스 공급자가 고용할 수 있으며, 특정 서비스의 공급에 필요하고 직접 관련되는 자연인의 총수에 대한 제한

마.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법적 실체 또는 합작투자를 제한하거나 요구하는 조치, 그리고

바. 외국인 지분 소유의 최대 비율 한도 또는 외국인 투자의 개인별 또는 총액에 의한 외국 자본 참여에 대한 제한

---

[4] 당사국이 제 6.1 조 **서비스무역** 가호에 언급된 공급형태를 통한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하여 시장접근 약속을 하는 경우와 국경 간 자본 이동이 그 서비스 자체의 필수적 부분인 경우, 그 당사국은 이로써 그러한 자본의 이동을 허용하기로 약속하는 것이다. 당사국이 제 6.1 조 **서비스무역** 다호에 언급된 공급형태를 통한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하여 시장접근 약속을 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이로써 자국 영역 내로의 관련 자본의 이전을 허용하기로 약속하는 것이다.

[5] 제 2 항다호는 서비스 공급을 위한 투입요소를 제한하는 당사국의 조치는 적용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제 6.6 조
추가적 약속

양 당사국은 자격, 표준 또는 면허사항에 관한 조치를 포함하여 제 6.3 조 또는 제 6.5 조에 따른 양허표 기재사항은 아니나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관한 약속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그러한 약속은 당사국의 양허표에 기재된다.

제 6.7 조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1. 각 당사국은 자국이 제 6.3 조, 제 6.5 조 및 제 6.6 조에 따라 행하는 자국의 구체적 약속을 양허표에 규정한다. 그러한 약속이 행해진 분야에 대하여, 각 양허표는 다음 사항을 명시한다.

가.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및 조건

나. 내국민 대우에 대한 조건 및 자격

다. 추가적 약속과 관련된 조치

라. 적절한 경우, 그러한 약속의 이행을 위한 기간, 그리고

마. 그러한 약속의 발효일

2. 제 6.3 조와 일치하지 않는 조치는 제 6.3 조와 관련된 열에 기재하고, 제 6.5 조와 일치하지 않는 조치는 제 6.5 조와 관련된 열에 기재한다.

3. 제 1 항에 언급된 약속에 추가하여, 각 당사국은 제 6.4 조에 따라 약속을 행한다.

4. 양허표는 이 장에 부속되어 이 장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5.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제 1 항과 합치되게 행해진 구체적 약속에 따라 부여된 대우와 비교하여 새로운 또는 더 차별적인 조치를 채택할 수 없다.

6. 각 당사국은 자국의 양허표에 미래 자유화를 위한 분야와 하위 분야를 'FL'로 명시한다. 이러한 분야와 하위 분야에서, 제 1 항에 언급된 모든 적용 가능한 조건, 제한, 자격 및 약속은 이 협정의 발효일에 그 당사국이 유지하는 조치에 제한된다.

7. 당사국이 개정 직전에 존재하였던 제 6 항에 언급된 조치와 제 6.3 조 또는 제 6.5 조의 불합치성을 줄이거나 제거하는 방식으로 제 6 항에 언급된 조치를 개정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이후에 그 조치와 제 6.3 조 또는 제 6.5 조의 불합치성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그 조치를 개정하지 않는다.

제 6.8 조
양허표의 수정

1. 제 6.7 조에도 불구하고, 한쪽 당사국이 약속의 수정 또는 철회의 가능성을 논의하고 필요한 보상조정에 이르기 위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은 요청당사국과 협의를 개시한다. 요청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보상조정에 대한 합의에 이를 때까지 자국의 약속을 수정 또는 철회할 수 없다.

2. 보상조정을 할 때 양 당사국은 그러한 협상 전에 양허표에 규정된 것보다 무역에 더 불리하지 않은 상호 호혜적 약속의 일반적 수준을 보장한다.

3. 관련 당사국들이 보상조정에 대한 합의에 이를 수 없는 경우, 그 사안은 이 협정의 제 10 장(분쟁해결)에 따른 중재에 의하여 해결된다. 수정 당사국은 중재의 결과에 합치되게 보상조정을 할 때까지 자국의 약속을 수정 또는 철회할 수 없다.

4. 수정 당사국이 자국의 제안된 수정 또는 철회를 이행하고 중재의 결과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중재에 참여한 다른 쪽 당사국은 그 결과에 합치되게 실질적으로

동등한 혜택을 수정 또는 철회할 수 있다. 그러한 수정 또는 철회는 수정 당사국에 대해서만 이행될 수 있다.

제 6.9 조
투명성

1. 양 당사국은 서비스무역을 규율하는 투명한 조치가 상대국 시장에 대한 접근과 상대국 시장에서의 영업을 위한 서비스 공급자의 능력을 원활히 하는 데에 중요함을 인정한다. 각 당사국은 서비스무역에서 규제의 투명성을 증진한다.

2. 각 당사국은 비상 상황을 제외하고, 늦어도 발효시점까지 다음을 신속하게 공표한다.

   가.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관련 조치, 그리고

   나. 서비스무역에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당사국이 서명국인 모든 국제협정

3. 가능한 한도에서, 각 당사국은 제 2 항에 언급된 종류의 조치 및 국제협정이 인터넷에서 그리고, 자국의 국내 법률 체제에 규정된 한도에서, 영어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4. 제 2 항과 제 3 항에 언급된 공표가 실행 불가능한 경우, 그러한 정보[6]는 달리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5. 각 당사국은 제2항의 의미 내의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자국의 조치 또는 국제협정에 관한 특정 정보에 대한 다른 쪽 당사국의 모든 요청에 대하여 신속하게 응답한다. 각 당사국은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제6항의 통보 요건에 따른 사안뿐만

[6]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그러한 정보가 각 당사국이 선택한 언어로 공표될 수 있음에 합의한다.

아니라 모든 그러한 사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문의처를 설치한다. 그러한 문의처는 이 협정이 발효된 날부터 2년 내에 설치된다.

6. 각 당사국은 공동위원회에 이 장에 따른 자국의 구체적 약속의 적용대상이 되는 서비스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새로운 법, 규정 또는 행정지침의 도입 또는 기존의 법, 규정 또는 행정지침에 대한 모든 변경에 관하여 즉시 그리고 적어도 매년 통보한다.

7.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한 어떠한 조치가 이 장의 운영에 영향을 미친다고 고려하는 경우 공동위원회에 그러한 조치를 통보할 수 있다.

제 6.10 조
국내 규제

1. 구체적 약속이 행해진 분야에서, 각 당사국은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한다.

2. 가. 각 당사국은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결정을, 영향을 받는 서비스 공급자의 요청에 따라, 신속하게 검토하고, 정당한 경우 그에 대한 적절한 구제를 제공할 사법, 중재 또는 행정 재판소 절차를 실행 가능한 한 조속히 유지하거나 수립한다. 그러한 절차가 관련 행정결정을 위임받은 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이지 않은 경우, 그 당사국은 그 절차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토를 실제로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나. 가호의 규정은 가호의 규정이 자국의 헌법구조나 법체계의 성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재판소나 절차를 수립할 것을 당사국에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3. 당사국이 구체적 약속이 이루어진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승인을 요구하는 경우,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음을 하도록 보장한다.

가. 관련 신청 절차의 완료를 위하여 부과되는 모든 승인 수수료가 합리적이고 투명하며 그 자체로 서비스의 공급을 제한하지 않음을 보장한다. 이 호의 목적상, 승인 수수료는 천연자원의 사용에 대한 수수료, 경매, 입찰이나 그 밖의 허가를 부여하는 비차별적 수단에 대한 지급, 또는 보편적인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의무적 출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나.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는 신청의 제출 이후 합리적인 기간 내 신청인에게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을 통보한다.

다.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신청의 처리를 위한 예시적 기간을 수립한다.

라.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과도한 지체 없이 신청의 처리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마. 불완전한 신청의 경우,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실행 가능한 경우, 신청을 완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모든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기회를 제공한다.

바. 신청이 종료되거나 거부된 경우, 가능한 한도에서, 그러한 처분의 이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그리고 과도한 지체 없이 통지한다. 신청인은 자신의 재량에 따라, 새로운 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을 것이다.

사.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허용 가능한 한도에서, 면허 또는 자격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당사국의 영역에서의 물리적 주재를 요구하지 않는다.

아.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서면 제출과 진정성이 동등한 조건하에서 신청을 전자적 형식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그리고

자.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원본 문서를 대신하여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증명된 문서의 사본을 수용한다.

4. GATS 제 6 조제 4 항과 관련된 협상의 결과가 발효하는 경우, 양 당사국은 그러한 세계무역기구의 협상 결과를 공동으로 검토하고, 그러한 세계무역기구의 협상 결과가 이 장에 따라 발효되도록 양 당사국 간의 협의 후에 적절한 경우 이 조를 개정한다. 자국의 정책목적에 합치하기 위하여 서비스 공급을 규제하고 서비스 공급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면서, 자격요건 및 절차, 기술표준, 그리고 면허요건과 관련된 조치가 서비스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을 구성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자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그러한 조치가 다음을 보장하도록 노력한다.

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자격 및 능력과 같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기초할 것

나.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 이상의 부담을 지우지 않을 것, 그리고

다. 면허절차의 경우, 그러한 조치 자체가 서비스 공급에 대한 제한이 아닐 것

5. 가. 당사국이 구체적 약속을 한 분야에서는 제 4 항에 따라 마련되는 각 분야별 규율이 발효될 때까지 당사국은 그러한 구체적 약속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면허 및 자격요건과 기술표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제4항가호, 나호 또는 다호에 규정된 기준과 합치하지 않는 방식, 그리고

2) 그 분야에서 구체적 약속이 이루어졌을 당시 그 당사국으로부터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었던 방식

나. 당사국이 제 5 항가호의 의무와 합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그 당사국이 적용하는 관련 국제기구[7]의 국제표준이 고려된다.

6. 전문직 서비스와 관련하여 구체적 약속이 행해진 분야에서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전문직업인의 자격을 검증할 충분한 절차를 규정한다.

제 6.11 조
인정

1. 서비스 공급자의 승인, 면허 또는 증명에 관한 각국의 표준 또는 기준을 충족할 목적으로, 그리고 이 조 제 4 항을 조건으로,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서 습득된 교육이나 경험, 충족된 요건 또는 부여받은 면허나 증명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한 인정은 조화 또는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으며, 양 당사국 간 또는 권한 있는 관련 기관 간의 협정 또는 약정에 근거하거나 자율적으로 부여될 수 있다.

2. 기존의 것인지 또는 미래의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 1 항에 언급된 유형의 협정 또는 약정의 당사자인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관심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에 자국과 그러한 협정 또는 약정에의 가입을 교섭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협정 또는 약정을 교섭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한다. 한쪽 당사국이 자율적으로 인정을 부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습득된 교육, 경험, 면허 또는 증명이나 충족된 요건이 인정되어야 할 것임을 다른 쪽 당사국이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한다.

3. 제 6.4 조의 어떠한 규정도 그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서 습득된 교육 또는 경험, 충족된 요건, 또는 부여받은 면허 또는 증명에 대하여 그러한 인정을 부여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

[7] "관련 국제기구"라는 용어는 적어도 모든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의 관련 기관에 가입이 개방된 국제기구를 지칭한다.

4. 당사국은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승인, 면허 또는 증명을 위한 자국의 표준이나 기준을 적용할 때 국가 간의 차별 수단을 구성하거나 서비스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인정을 부여하지 않는다.

5. 각 당사국은,

가. 이 협정이 자국에 대하여 발효하는 날부터 12개월 내에 공동위원회에 자국의 기존 인정 조치를 통보하고, 그러한 조치가 제1항에 언급된 유형의 협정이나 약정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를 설명하며,

나. 제1항에 언급된 유형의 협정 또는 약정에 관한 교섭이 실질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다른 쪽 당사국이 그 교섭에서의 참여에 대한 관심을 표명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최대한 사전에 그러한 협정 또는 약정에 관한 교섭의 개시를 공동위원회에 신속하게 통보하고, 그리고

다. 새로운 인정 조치를 채택하거나 기존의 인정 조치에 중대한 수정을 가하는 경우 신속하게 공동위원회에 통보하고, 그 조치가 제1항에 언급된 유형의 협정이나 약정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를 설명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6. 적절한 경우에는 언제나 인정은 다자적으로 합의된 기준에 근거해야 할 것이다. 적절한 경우 양 당사국은 인정에 대한 국제공통표준과 기준 그리고 관련 서비스무역과 전문직의 수행을 위한 국제공통표준의 수립과 채택을 위하여 관련 정부 간 기구 그리고 비정부 기구와 협력하여 작업한다.

7. 부속서 6-다에 규정된 바와 같이, 양 당사국은 전문직 서비스의 교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 6.12 조
독점 및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서의 모든 독점 서비스 공급자가 관련시장에서 독점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 장에 따른 그 당사국의 약속과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2. 당사국의 독점 공급자가 자신의 독점권 범위 밖에 있는, 그리고 그 당사국의 구체적 약속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의 공급에서 직접 또는 제휴 법인을 통하여 경쟁을 할 경우, 당사국은 그러한 공급자가 자국의 영역에서 그러한 약속에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하기 위하여 자신의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3.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독점 서비스 공급자가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한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러한 공급자를 설립, 유지 또는 승인하는 다른 쪽 당사국에 관련된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4. 당사국이 공식적으로 또는 사실상 다음과 같은 경우, 이 조의 규정은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의 경우에도 또한 적용된다.

가. 소수의 서비스 공급자를 승인하거나 설립하는 경우, 그리고

나. 자국의 영역에서 그러한 공급자들 간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막는 경우

제 6.13 조
영업 관행

1. 양 당사국은 제 6.12 조에 해당하는 서비스 공급자의 영업 관행 외의 서비스 공급자의 일정 영업 관행이 경쟁을 제약할 수 있으며 따라서 서비스무역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2.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요청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 1 항에 언급된 관행의 폐지를 위하여 협의를 개시한다. 요청을 받은

당사국(“피요청당사국”)은 그러한 요청에 대하여 충분하고 호의적인 고려를 부여하며, 해당 사안과 관련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비밀이 아닌 정보의 제공을 통하여 협력한다. 피요청당사국은 또한 자국의 국내 법에 따라, 그리고 요청당사국에 의한 해당 정보의 비밀성 보호와 관련된 만족스러운 합의의 도달을 조건으로, 그 밖의 이용 가능한 정보를 요청당사국에 제공한다.

제 6.14 조
긴급수입제한조치

1. 양 당사국은 GATS 제 10 조에 따라 다자적 포럼에서 추가적인 진전이 있을 시 긴급수입제한조치의 포함에 대하여 검토한다.

2. 이 협정의 발효 후 한쪽 당사국이 이 장에서의 약속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 6.15 조
지불 및 송금[8]

1. 각 당사국은 서비스무역에서 자국의 약속과 관련된 모든 송금 및 지불이 자국 영역 내외로 자유롭고 지체 없이 이루어지도록 허용한다.

2. 각 당사국은 서비스무역에 관한 그러한 송금 및 지불이 송금 시점에 일반적인 시장환율에 따라 자유사용가능통화로 이루어지도록 허용한다.

3. 제 1 항 및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다음과 관련한 자국의 법과 규정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선의에 입각한 적용을 통하여 송금 또는 지불을 금지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8]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속서 7-다(임시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이 조에 적용된다.

가. 파산, 지급불능 또는 채권자의 권리 보호

나. 유가증권, 선물, 옵션 또는 파생상품의 발행, 거래 또는 취급

다. 형사범죄

라. 사법 또는 행정 절차에서의 판결의 준수 보장

마. 법 집행 또는 금융규제당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송금에 대한 재무보고 또는 기록보존

바. 과세, 또는

사. 피고용인의 퇴직금

제 6.16 조
혜택의 부인

1. 한쪽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법인인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가. 비당사국의 인이 그 법인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경우, 그리고

나. 혜택부인 당사국이 그 법인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 또는 이 장의 혜택이 그 법인에 부여될 경우 위반되거나 우회될 조치를 그 비당사국 또는 그 비당사국의 인에 대하여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2. 당사국은 다음에 의하여 서비스가 공급된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 해상운송 서비스 공급에 대한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가. 비당사국의 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 그리고

나. 선박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운영 및/또는 사용하는 비당사국의 인

3.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비당사국의 인 또는 혜택부인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소유 또는 지배되거나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법인인 경우, 그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혜택부인 당사국이 그 법인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비당사국의 인 또는 혜택부인 당사국의 인이 그 법인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사실을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하기 전에 아는 경우, 혜택부인 당사국은 혜택을 부인하기 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통보한다.

제 6.17 조
점진적 자유화

양 당사국은 제 13.5 조(협정의 검토)에 따른 검토 시에 양 당사국 간의 서비스무역을 점진적으로 자유화하기 위하여 이 장에 따른 구체적 약속을 추가적으로 교섭하기 위한 순차적인 협상을 개시한다.

제 6.18 조
협력

양 당사국은 기존 협력 약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분야들을 포함하여 서비스 분야에서 협력 노력을 강화한다. 양 당사국은 협력 분야에 대하여 논의하고 상호 합의하며, 양 당사국의 국내 역량, 효율성 및 경쟁력을 개선하기 위하여 그러한 분야에서의 협력 프로그램을 발전시킨다.

부속서 6-가
금융 서비스

적용범위 및 정의

1. 이 부속서는 금융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적용된다. 이 부속서의 금융 서비스의 공급에 대한 언급은 제 6.1 조의 서비스무역에 따라 정의된 서비스의 공급을 말한다.

2. 제 6.1 조에 따른 '서비스' 정의의 목적상, "정부 권한의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란 다음을 말한다.

가. 중앙은행이나 통화당국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이 통화 또는 환율 정책 추진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

나. 법정사회보장제도 또는 공적퇴직연금제도의 일부를 구성하는 활동, 그리고

다. 공공기관이 정부의 계좌로, 또는 정부의 보증 하에, 또는 정부의 금융재원을 사용하여 수행하는 그 밖의 활동

3. 제 6.1 조에 따른 '서비스' 정의의 목적상, 당사국이 자국의 금융 서비스 공급자에게 제 2 항나호 또는 제 2 항다호에 언급된 모든 활동을 공공기관 또는 금융 서비스 공급자와 경쟁하여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서비스"는 그러한 활동을 포함한다.

4. 제 6.1 조에 따른 '정부 권한의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의 정의는 이 부속서의 적용대상이 되는 서비스에 적용되지 않는다.

건전성 조치, 환율 및 금융 안정성

5. 이 협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이 투자자, 예금자, 보험 계약자 또는 금융 서비스 공급자가 수탁인으로서 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이 되는 인의 보호, 금융제도의 무결성과 안정성의 보장, 또는 투기성 자본 유출 방지를 포함한 환율 안정성 보장을 위한 것[1]을 포함하여, 건전성 사유로 조치를 하는 것은 다음을 조건으로 하여 금지되지 않는다.

가. 그러한 조치가 이 협정의 규정과 합치되지 않는 경우, 그러한 조치는 이 협정에 따른 당사국의 약속 또는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는다.

나. 투기성 자본 유출 방지를 포함한 환율 안정성 보장을 위한 조치의 경우, 그러한 조치는 일시적이며 1 년 내 또는 조건들이 그 시행 또는 유지를 더 이상 정당화하지 않을 시 해제된다. 그리고

다. 투기성 자본 유출 방지를 포함한 환율 안정성 보장을 위한 조치의 경우, 그러한 조치는 최혜국을 기초로 적용된다.

6.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개인 고객의 사적 사항 및 계정과 관련되는 정보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비밀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의 공개를 당사국에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인정

7. 당사국은 금융 서비스와 관련된 그 당사국의 조치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른 쪽 당사국의 건전성 조치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한 인정은 조화 또는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으며, 비당사국과의 협정 또는 약정에 기초하거나 자율적으로 부여될 수 있다.

[1] 투기성 자본 유출 방지를 포함한 환율 안정성 보장을 위한 조치는 어느 특정 분야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 또는 유지되지 않는다.

8. 미래의 것인지 또는 기존의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 7 항에 언급된 협정이나 약정의 당사자인 한쪽 당사국은, 동등한 규제, 감독, 그러한 규제의 이행, 그리고 적절한 경우 그 협정 또는 약정의 당사자들 간의 정보공유에 관한 절차가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다른 쪽 당사국이 그러한 협정 또는 약정에의 가입을 교섭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협정 또는 약정을 교섭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다. 당사국이 자율적으로 인정을 부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그러한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다.

9. 당사국이 비당사국의 건전성 조치에 대하여 인정을 부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 제 6.11 조제 5 항나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분쟁해결

10. 건전성 사안과 그 밖의 금융사안에 대한 분쟁 패널은 분쟁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 금융 서비스와 관련된 필요한 전문성을 구비한다.

정의

이 부속서의 목적상,

11. **금융 서비스**란 당사국의 금융 서비스 공급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융적 성격을 가지는 모든 서비스이다. 금융 서비스는 모든 보험과 보험 관련 서비스, 그리고 모든 은행 및 그 밖의 금융 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금융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포함한다.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가. 직접보험(공동보험을 포함한다)

1) 생명보험

2) 손해보험

나. 재보험 및 재재보험

다. 중개 및 대리와 같은 보험 중개

라. 상담, 계리, 위험평가 및 손해사정 서비스와 같은 보험 부수 서비스

은행 및 그 밖의 금융 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마. 대중으로부터의 예금 및 그 밖의 상환성 자금의 인수

바. 소비자대출, 주택담보대출, 팩토링 및 상업거래 융자를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여신

사. 금융 리스

아. 신용, 선불 및 직불 카드, 여행자수표 및 은행수표를 포함하는 모든 지급 및 송금 서비스

자. 보증 및 약정

차. 거래소, 장외시장 또는 다른 방법으로 다음을 자기 계좌 또는 고객 계좌로 거래하는 것

1) 화폐시장 상품(수표, 어음, 양도성 예금증서를 포함한다)

2) 외환

3) 선물 및 옵션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파생상품

4) 스왑, 선도금리계약과 같은 상품을 포함하는 환율 및 이자율 상품

5) 양도성 증권

6) 금괴를 포함한 그 밖의 유통증권 및 금융자산

카. 주간사로서의 인수 및 모집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증권 발행에의 참여(공모 또는 사모) 및 그러한 발행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타. 자금중개업

파. 현금 또는 포트폴리오 운용, 모든 형태의 집합투자운용, 연기금 운용, 보관, 예탁 및 신탁 서비스와 같은 자산 운용

하. 증권, 파생상품 및 그 밖의 유통증권을 포함한 금융 자산의 결제 및 청산 서비스

거. 그 밖의 금융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금융 정보와 금융 자료 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전

너. 신용조회와 분석, 투자 및 포트폴리오 조사와 자문, 인수 및 기업의 구조조정과 전략에 대한 자문을 포함하여, 마호부터 거호까지에서 열거된 모든 활동에 대한 자문, 중개 및 그 밖의 부수 금융 서비스

12. **금융 서비스 공급자**란 금융 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하거나 공급하는 당사국의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하나, “금융 서비스 공급자”라는 용어는 공공기관을 포함하지 않는다.

13. **공공기관**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정부의 목적을 위하여 정부 기능 또는 활동을 수행하는 데 주로 종사하는 기관으로서 당사국의 정부, 중앙은행, 통화당국이나 금융규제당국, 또는 당사국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기관으로, 상업적인 조건 하에 금융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주로 종사하는 기관은 포함하지 않는다. 또는

나. 중앙은행이나 통화당국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수행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기관으로서 그러한 기능을 행사하는 때의 민간기관

접촉선

14. 이 부속서의 목적상, 금융 서비스를 담당하는 당국은 다음과 같다.

가. 한국의 경우, 금융위원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나. 인도네시아의 경우, 통상부, 금융부, 인도네시아 금융 서비스 당국(OJK) 및 인도네시아은행 또는 그 승계기관

15. 한쪽 당사국은 자국의 접촉선의 변경을 다른 쪽 당사국에 신속하게 통보한다.

부속서 6-나
자연인의 이동

적용범위

1. 이 부속서는 다른 쪽 당사국의 자연인의 자국 영역으로의 입국 또는 일시 체류에 영향을 미치는 한쪽 당사국에 의한 조치에 적용된다. 그러한 자연인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상용 방문자

나. 독립전문가

다. 계약 서비스 공급자

라. 기업 내 전근자

2. 이 부속서는 다른 쪽 당사국의 고용시장에 접근하고자 하는 한쪽 당사국의 자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영구적인 차원에서의 시민권, 거주나 고용에 관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원칙

3. 이 부속서는 양 당사국간의 특혜적인 무역관계, 상호주의에 근거하고 양 당사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따른 자연인의 입국, 일시 체류를 촉진하려는 공동의 목적, 국경의 안전을 보장하고 각 당사국의 영역에서 국내 노동력과 영구적 고용을 보호하면서 입국, 일시 체류에 대한 투명한 기준 및 절차를 수립할 필요성을 반영한다.

4. 이 부속서에 포함된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자국 영역의 일체성을 보호하고 자국 국경을 통과하는 자연인의 질서 있는 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포함하여 다른 쪽 당사국 자연인의 자국 영역에서의 입국 또는 일시 체류를 규제하는 조치를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구체적 약속의 조건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게 발생하는 혜택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5. 자연인에게 당사국 영역으로 입국하기 전에 비자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는 사실만으로 이 부속서에 따른 혜택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정의

6. 이 부속서의 목적상, 다음의 정의가 적용된다.

가. **허용 당사국**이란 제 1 항 및 제 2 항의 적용을 받는 다른 쪽 당사국의 자연인으로부터 입국, 일시 체류 또는 취업 신청을 접수하는 당사국을 말한다.

나. **출입국 절차**란 한쪽 당사국의 자연인에게 허용 당사국의 영역에 입국 및 일시 체류 또는 상업적 주재를 설립할 권리를 허용하는 사증, 허가, 또는 그 밖의 문서나 전자적 허가를 말한다.

다. **일시 체류**란 영구적인 차원에서의 체류 또는 거주의 의도가 없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연인의 체류를 말한다.

입국 및 일시 체류의 허용

7. 각 당사국은 부록 6-나-1 부터 6-나-4 까지의 그 당사국의 약속의 양허표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자연인에게 다음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 부속서에 따른 일시 입국 또는 일시 체류를 허용한다.

가. 규정된 출입국 절차를 위한 소정의 신청 절차를 따를 것, 그리고

나. 허용 당사국으로의 일시 입국 또는 일시 체류를 위한 모든 관련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것

8. 일시 입국 또는 일시 체류 신청의 처리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수수료는 합리적이며 국내법에 부합하게 한다.

9. 한쪽 당사국은 제 7 항가호 및 제 7 항나호를 준수하지 않는 다른 쪽 당사국 자연인에게 일시 입국 또는 일시 체류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10. 기업인의 입국이 다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당사국은 그 인의 고용을 허가하는 출입국 절차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가. 고용의 장소 또는 고용이 예정된 장소에서 진행 중인 노동분쟁의 해결, 또는

나. 그러한 분쟁에 관여된 인의 고용

11. 한쪽 당사국이 이 부속서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자연인의 일시 입국을 허용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자연인이 직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사업 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적용 가능한 어떠한 면허 또는 의무적 행동 규범을 포함한 그 밖의 요건을 충족시킬 것으로부터 면제된다고 해석되지 않는다.

정보의 제공

12. 제 6.9 조를 적용함에 있어,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 일시 입국 또는 일시 체류 및 취업 허가를 효율적으로 신청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하거나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 정보를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하도록 보장한다. 그러한 정보는 계속 갱신된다.

13. 제 12 항에 언급된 정보는 특히 다음의 기술을 포함한다.

가. 이 부속서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연인의 입국, 일시 체류 및 취업과 관련된 모든 범주의 사증 및 취업 허가

나. 요구되는 서류에 대한 정보, 충족해야 할 조건 및 제출 방법을 포함하여 최초 입국, 일시 체류 및 취업 허가의 신청과 발급을 위한 요건 및 절차, 그리고

다. 일시 체류 및 취업 허가의 신청 및 발급, 갱신을 위한 요건 및 절차

14. 이 부속서의 발효 시,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 13 항에 언급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관련 간행물이나 웹사이트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공한다.

신속한 신청 절차

15. 한쪽 당사국이 출입국 절차를 위한 신청을 요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자연인으로부터 접수한 출입국 절차 또는 그 연장을 위한 완전한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16.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신청의 처리를 위하여 신청인에게 추가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그 당국은 과도한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17.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자연인으로부터 출입국 절차 입국, 일시 체류 또는 취업을 위한 완전한 신청을 접수한 후 합리적 기간 내에, 허용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신청인에게 다음을 통보한다.

가. 신청의 접수, 그리고

나. 신청의 상태

18. 각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결정이 내려진 후 신속하게 입국, 일시 체류 또는 취업 허가 신청의 결과를 그에 대한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통보는 체류 기간과 그 밖의 관련 조건을 포함한다.

19. 불완전한 신청의 경우,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그 당사국은 신청을 완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모든 추가적인 정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기회를 제공한다.

20. 신청이 종료되거나 거부된 경우, 각 당사국은 적용 가능한 경우, 그러한 처분의 이유를 신청인에게 서면, 전자메일로 그리고 과도한 지체없이 통지한다. 신청인은 자신의 재량에 따라, 새로운 신청을 다시 제출할 수 있을 것이다.

접촉선

21. 각 당사국은 제 12 항, 제 13 항 및 제 14 항에 언급된 정보에 대한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의 접근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접촉선을 수립한다.

22. 제 21 항에 언급된 접촉선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과장, 그리고

나. 인도네시아공화국의 경우,

통상부 국제무역협상국 서비스무역협상 과장,

또는 그 각각의 승계인

분쟁해결

23. 양 당사국은 이 부속서의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이견에 대하여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4.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한, 어떠한 당사국도 일시 입국 허용의 거부에 대하여 제 10 장(분쟁해결)을 이용하지 않는다.

가. 그 사안이 반복된 관행과 관련되는 경우, 그리고

나. 영향을 받은 자연인이 그 특정 사안에 대하여 이용 가능한 모든 행정 구제 절차를 완료하였을 경우

부록 6-나-1

자연인의 입국 및 일시 체류에 관한 약속의 양허표

(한국)

1. 다음은 부속서 6-나의 제 7 항에 따른 인도네시아 자연인의 한국 영역으로의 일시 입국 또는 인도네시아 자연인의 한국 영역에서의 일시 체류에 관한 한국의 약속을 규정한다.

2. 한국은 다음의 약속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인도네시아 자연인의 한국 영역으로의 일시 입국 또는 인도네시아 자연인의 일시 체류와 관련하여 미양허를 유지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 아래에 명시된 범주별 사증에 대한 필요한 사증 요건 및 입국과 일시 체류에 부가되는 조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 또는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다.

3.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이 장을 제외한 출입국 조치에 대하여 한국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4. 다음의 약속의 양허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일시 입국과 체류가 자연인에게 허용된다. 다만, 그 자연인은 적용 가능한 국내 법과 규정에 규정된 서류와 자격을 제시한다.

5. 투명성을 목적으로,

가. 입국과 일시 체류가 허가된 자연인은 「출입국관리법」과 노동법 및 규정을 포함하여 한국의 국내 법과 규정을 준수한다.

나. 자연인의 일시적 이동과 관련된 한국의 약속은 노사분쟁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연인의 범주	조건 및 제한 (체류 기간을 포함한다)

자연인의 범주	조건 및 제한 (체류 기간을 포함한다)
가. 기업 내 전근자 한국에 설립된 자회사, 지점[1] 또는 지정된 계열사[2]를 통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의 피고용인이며 입국 신청일 직전 1 년 이상의 기간 동안 그 기업에 고용된 자로서 **조건** 열에 명시된 조건의 적용을 받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인 1) **임원** – 조직 내에서 주로 조직의 경영을 지휘하고, 의사결정에 있어 넓은 재량을 행사하며, 그 회사의 고위급 임원, 이사회 또는 주주로부터 일반적인 감독 또는 지휘만을 받는 인. 임원은 그 조직의 서비스의 실질적인 공급과 관련된 임무는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않는다. 2) **고위관리자** – 조직 내에서 주로 조직 또는 그 조직의 부서를 지휘하고, 다른 감독직, 전문직 또는 관리직	가열에 정의된 자연인의 입국 및 체류는 3 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으로 제한되며, 신청인에 의하여 상기 조건이 여전히 충족된다면, 체류 기간의 갱신이 가능하다.

[1] "지점"은 동일한 조직의 운영부서 또는 대표사무소로 정의되고, 그 운영부서 또는 대표사무소는 인도네시아 영역에 소재한 모회사를 대표할 포괄적 권한을 가진 피고용인을 보유한다.

[2] "지정된 계열사"는 동일한 모기업에 의하여 소유 또는 지배되는 두 개의 자회사 중의 하나, 또는 파트너십, 기업 또는 다른 법적 실체의 파트너로 두 법적 실체의 각각의 총지분의 50 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두 법적 실체 각각의 총투자액의 50 퍼센트를 초과하여 책임을 지는 동일한 주주단체에 의하여 소유 또는 지배되는 두 개의 법적 실체 중 하나로 정의된다.

자연인의 범주	조건 및 제한 (체류 기간을 포함한다)
피고용인의 업무를 감독하고 통제하며, 채용 및 해고 권한이나 채용, 해고 또는 다른 인사 조치를 권고하는 권한을 보유하고, 일상적 업무에 대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인. 고위관리자는 감독을 받는 피고용인이 전문직이 아닌 한 제일선의 감독자는 포함하지 않으며, 주로 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피고용인도 포함하지 않는다. 3) **전문가** – 조직 내에서 지속적인 전문성을 지닌 고급 수준의 지식과 조직의 서비스, 연구설비, 기술 또는 경영에 대하여 재산권적 지식을 보유하는 인	
나. 상용 방문자 서비스 공급자가 일반대중에 대하여 직접 서비스를 판매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공급자의 서비스 판매를 교섭할 목적으로 그 서비스 공급자를 대표하고, 직접적으로 서비스 공급에 종사하지 않으며, 한국 영역에 소재하지 않고, 한국 내에 소재한 소득원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나열에 정의된 자연인의 입국 및 체류는 90 일의 기간으로 제한된다.

자연인의 범주	조건 및 제한 (체류 기간을 포함한다)
자연인	
다. 계약 서비스 공급자 한국에 상업적 주재를 하지 않는 법인의 피고용인으로서 계약된 서비스의 공급에 관여하는 자연인으로서 **조건** 열에 명시된 조건의 적용을 받는다. 입국하고자 하는 자연인은 그 법인의 피고용인으로서 입국허가 신청 직전일로부터 최소 1 년 이상의 기간 동안 서비스를 공급해야 한다. 한국의 직업적 명칭을 사용할 권한을 부여함이 없이, 다음의 서비스 공급 활동 또는 하위 분야에서 계약을 취득할 것이 요구된다. – 인도네시아에 소재한 자연인을 고용하고 있는 법인으로부터 장비 또는 기계를 구입하는 한국의 법인을	다열에 정의된 자연인의 입국 및 체류는 1 년을 초과하지 않는 계약 기간으로 제한된다. 자연인은 한국의 법, 규정 또는 요건 및 워싱턴 어코드, EMF 국제 등록 전문 엔지니어와 APEC 엔지니어와 같은 관련국제기구의 인정에 따라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문적 그리고 전문적 자격과 전문적 자격을 갖춘 능력에 기반한 경험을 보유해야 한다. 자연인이 고용된 법인은 공급되는 서비스의 최종소비자인 한국에 설립된 법인과 1 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서비스 계약을 취득해야 한다. 그 계약은 한국의 법과 규정을 준수한다. 자연인은 한국에 소재한 법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지 않도록 요구된다.

자연인의 범주	조건 및 제한 (체류 기간을 포함한다)
위한 건설 및 발전 장비 외의 산업 장비 또는 기계의 설치, 관리 또는 수리와 관련된 서비스 – 정보기술, 전자상거래, 생명공학, 나노기술, 디지털 전자공학 및 환경 산업에 적용되는 자연과학에 관한 기술적 지식 또는 기술과 관련된 자문 서비스 – 한국의 회계법인 또는 회원 계약을 통한 사무소에 대한 외국의 회계 표준 및 감사, 공인회계사 연수, 감사 기술의 이전 및 회계, 감사와 부기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의 교환을 위한 자문 서비스 – 공동계약의 형태로 한국의 법에 따라 등록된 건축사와 협업을 조건으로 하는 건축 서비스 – 경영 컨설팅 서비스 다음 서비스 분야의 전문 엔지니어 – 컴퓨터 하드웨어 설치와 관련된 자문 서비스 –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기반 이행 서비스	자연인은 수적 상한, 수적 제한 및 경제적 수요심사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자연인의 범주	조건 및 제한 (체류 기간을 포함한다)
– 자료관리 서비스 – 자료 시스템 서비스 – 자동차에 대한 특수 엔지니어링 설계 서비스	

부록 6-나-2
자연인의 입국 및 일시 체류에 관한 약속의 양허표
(인도네시아)

주해

인도네시아의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약속의 양허표는 다음을 규정한다.

1. 인도네시아의 자연인의 범주에 대한 약속과 부속서 6-나의 제7항에 따른 체류 기간을 포함한 입국 및 일시 체류를 위한 각각의 조건 및 제한

2. 이 부록은 부속서 6-나에 비추어 해석된다. 이 부록에 명시된 범주에 해당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자연인은 인도네시아의 적용 가능한 조건 및 제한을 조건으로 인도네시아에 입국 및 체류가 허용된다.

3. 부속서 6-마에 명시된 분야와 관련하여 입국 및 체류가 허용된 범주에 있는 다른 쪽 당사국의 자연인인 경우,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이 부록의 각 범주에 명시된 모든 조건 및 제한이 적용된다.

4. 다음의 약속의 양허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일시 입국과 체류가 자연인에게 허용된다. 다만, 그 자연인은 적용 가능한 국내 법과 규정에 규정된 서류와 자격을 제시한다.

5. 투명성을 목적으로,

   가. 입국과 일시 체류가 허용된 자연인은 이민 그리고 노동법 및 규정을 포함하여 인도네시아의 국내 법과 규정을 준수한다.

   나. 자연인의 일시적 이동과 관련된 인도네시아의 약속은 노사분쟁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범주에 대한 설명	조건 및 제한 (체류 기간을 포함한다)
가. 기업 내 전근자	
1) **이사**: 서비스 제공기관의 주주에 의하여 기업의 최종 총괄 및 지휘를 위임받고, 법원의 내부 및/또는 외부에서 기업을 대신하여 행동하도록 법적 책임을 가진 하나의 인 또는 인의 단체	체류는 2 년까지 허용되며 매회 2 년 연장을 조건으로 최대 두 차례 연장될 수 있다. 서비스를 공급하는 모든 외국 자연인은 정부에 의하여 부과되는 부과금의 대상이다. 인도네시아의 영역에서 고용된 모든 외국 자연인은 노동부가 발급한 유효한 취업 허가를 소지해야 한다.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경제적 수요심사는 모든 분야의 관리자와 기술 전문가에게 적용된다. 인적자원 또는 인사 기능은 인도네시아인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2) **관리자:** 조직/부서/하부조직을 주로 지휘하고 다른 감독직, 관리직 또는 전문직 직원에 대한 감독 및 통제 기능을 행사하는 조직 내 자연인이고, 감독을 받는 피고용인이 전문직이 아닌 한 제일선의 감독자는 포함하지 않으며, 주로 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피고용인은 포함하지 않는다.	
3) **기술 전문가/자문가:** 1) 구체적인 기술적 지식을 요구하는 업무나 거래의 유형에 관한 자격 또는 2) 서비스, 연구설비, 기술 또는 경영에 대하여 필수적 또는 재산권적 지식을 높은 또는 보통의 수준으로 보유하고 서비스 공급자에 의하여 고용된 인	
나. 상용 방문자	

범주에 대한 설명	조건 및 제한 (체류 기간을 포함한다)
인도네시아에서 상업적 주재의 설립 준비, 회의 참석 또는 인도네시아 내에서 보수를 받지 않으며 강의를 하는 자를 포함하여 서비스 판매를 위한 교섭을 포함한 사업 회의, 사업 접촉의 참여 및/또는 그 밖의 유사한 활동에의 참여를 목적으로 인도네시아에 체류하고, 일반대중에 대하여 직접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연인	입국과 일시 체류는 60 일의 기간 동안 허용되며 최대 120 일까지 연장 가능하다.

부록 6-나-3
독립전문가

제1절
독립전문가

1. 독립전문가란 공급되는 서비스 관련 적절한 교육 및 그 밖의 자격을 갖추고 다른 쪽 당사국의 법인으로부터 서비스 공급 계약을 취득한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입국 및 일시 체류하며 계약된 서비스의 공급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를 말한다.

2. 독립전문가는 1 년 또는 계약기간 중 더 짧은 기간까지의 체류기간이 최대 허용될 것이다. 체류기간은 각 당사국의 국내 법과 규정을 조건으로 연장될 수 있다.

3. 독립전문가의 체류와 관련하여 당사국은 경제적 수요심사를 적용하거나 수적 제한을 수립할 수 있다.

4. 각 당사국은 후원 계약과 관련된 불법이민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독립전문가의 입국 및 체류를 한정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다. 불법이민의 경우, 양 당사국은 각각의 적용 가능한 법과 규정을 고려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정보를 공유하도록 노력한다.

5. 적용 가능한 경우, 한쪽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독립전문가에게 부과될 수 있는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부과는 이 협정에 따른 약속의 혜택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하지 않는다.

제2절
독립전문가를 위한 일시 입국의 허용

각 당사국은, 부록 6-나-4에 규정된 직업에서 독립전문가 또는 후원을 받는 전문가로서 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전문가가 일시 입국에 적용 가능한 출입국 조치를 달리 준수하고 다음을 제출하는 경우, 그 자연인에게 최초 1년까지의 기간 또는 계약

기간 중 더 짧은 기간 동안의 일시 입국을 허용한다.

가. 다른 쪽 당사국 국적의 증명

나. 독립전문가가 활동에 종사할 것임을 입증하고 주재국에서 자연인의 서비스를 고용한 기관으로부터의 계약서를 포함하여 입국의 목적을 기술하는 문서, 그리고

다. 관련된 최소한의 교육 요건 또는 대체 자격의 취득을 입증하는 서류

부록 6-나-4
독립전문가 목록

한국

다음은 부록 6-나-3의 제2절에 따른 약속의 적용을 받는 한국의 전문가 목록이다.

이 부록에 열거된 전문가는 부록 6-나-3의 제1절의 제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경제적 수요심사의 적용을 받는다.

1	컴퓨터 하드웨어 설계기술자
2	컴퓨터 네트워크 장비개발자
3	기록장치 개발자
4	하드디스크 개발자
5	콘트롤러 개발자
6	컴퓨터 기기 기술자
7	컴퓨터 제어시스템 개발자
8	디스크드라이브 개발자
9	컴퓨터 메인보드 개발자
10	입・출력장치 개발자
11	통신기기 연구원
12	통신장비 연구원
13	통신기술 연구원
14	통신망운용 연구원

15	모바일 회로 개발자
16	모뎀개발 설계 기술자
17	인터폰 또는 전화기 개발자
18	DMB수신기 개발자
19	HFC망 운영 기술자
20	SMS장비 운용원
21	무선통신망 관리자
22	전기 회선 관리자
23	교환기 개발자
24	광단국장치 개발자
25	VMS장비 개발자
26	RF통신연구 개발자
27	유선통신망 기획자
28	통신선로 설계 기술자
29	인공위성TV수신기개발설계 기술자
30	광통신기기 설계 개발자
31	문자 서비스 장비 운용원
32	전송기 개발자
33	무선전화기 개발자
34	디지털수신기 개발자
35	DMB폰 개발자

36	ADSL 장비 개발자
37	VMS 장비 운용원
38	통신망운용 기술자
39	인터넷통신망운용 기술자
40	통신공사 감리원
41	무선중계장치개발 설계 기술자
42	통신응용 서비스 장비 개발자
43	CDMA기술연구 개발자
44	무선데이터망 개발자
45	통신지능망연구 개발자
46	네트워크통신기기개발 설계 기술자
47	통신기기개발 설계 기술자
48	교환기개발 설계 기술자
49	디지털방송 장비 개발자
50	통신망 설계 기술자
51	정보통신 컨설턴트
52	컴퓨터시스템 감리 전문가
53	컴퓨터 시스템 설계가 및 분석가
54	네트워크 컨설턴트
55	데이터베이스 컨설턴트
56	정보보안 컨설턴트

57	정보시스템 컨설턴트
58	시스템 소프트웨어 설계가 및 분석가
59	시스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60	EMBEDED프로그램 개발자
61	리눅스 개발자
62	MICOM제어 기술자
63	운영체제소프트웨어 개발자
64	FIRMWARE 개발자
65	응용 소프트웨어 설계가 및 분석가
66	네트워크 프로그래머
67	달리 분류되지 않은 응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68	자료관리 응용 프로그래머
69	재무관리 응용 프로그래머
70	정보처리 응용 프로그래머
71	프로토콜 개발자
72	데이터베이스 설계가 및 분석가
73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머
74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75	데이터베이스 전문가
76	네트워크 기술자
77	네트워크시스템 분석가

78	인트라넷 기술자
79	LAN 기술자
80	VAN 기술자
81	WAN 기술자
82	네트워크서버구축운영 기술자
83	웹 마스터
84	웹 프로그래머
85	재무 관리 컨설턴트
86	마케팅 관리 컨설턴트
87	인사 관리 컨설턴트
88	송・배전 연구원
89	전기계측제어 연구원
90	전기감리 감독가 및 연구원
91	시멘트 연구원
92	항공기 기술자
93	항공기기계 기술자
94	인공위성 기술자
95	산업용 로봇 설계 기술자
96	자동차에 대한 특수엔지니어링 설계 서비스(자동차 설계가)
97	항공기 설계가
98	석유 및 화학 연구원

99	고무 및 플라스틱 연구원
100	농약 및 비료 연구원
101	도료제품 연구원
102	화장품 및 비누제품 연구원
103	천연가스화학 기술자
104	천연 가스 생산 및 유통 기술자
105	양조생산 기술자
106	금속 연구원
107	전기제품개발 연구원
108	발전설비 연구원
109	금형공학 연구원
110	식물 연구원
111	냉・난방 및 공조 연구원
112	건설기계 연구원
113	산업기계 연구원
114	비행기 및 철도차량 연구원
115	생물학자
116	생화학자
117	컴퓨터 게임 프로그래머
118	게임그래픽 디자이너

인도네시아

다음은 부록 6-나-3의 제2절에 따른 약속의 적용을 받는 인도네시아의 전문가 목록이다.

이 부록에 열거된 전문가는 부록 6-나-3의 제1절의 제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경제적 수요심사의 적용을 받는다.

1	통신 운영시스템개발 기술자
2	프로그래밍, 컴퓨터 컨설턴트 및 관련 활동 시스템 기술자
3	화학산업 및 화학제품을 위한 화학제조 기술자
4	화학산업 및 화학제품을 위한 화학공정 계측 기술자
5	비기계 금형제품산업 및 관련 장비를 위한 커미셔닝 기술자
6	폐수관리 커미셔닝 기술자
7	음료산업 미생물학 전문가
8	지열 시추 발전설비제어 기술자
9	지열 시추 사업전략 고문
10	석유 및 천연가스 시추를 위한 사업 및 기업 위기관리 고문

부속서 6-다
전문직 서비스

1. 각 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전문직 자격, 면허 또는 등록의 인정과 관련한 대화를 수립하는 데 상호 관심 있는 전문직 서비스 분야를 확인하고자 자국 영역의 관련 기관과 협의한다.

2. 각 당사국은 상호 수용한 분야에서 전문직 자격을 인정하고, 면허 또는 등록 절차를 촉진하며, 상호 수용 가능한 전문직 표준 및 기준을 개발하기 위하여, 자국 영역에서의 관련 기관이 다른 쪽 당사국의 관련 기관과 대화를 수립하도록 장려한다.

3.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련 기관에 다음을 장려한다.

가. 상호 관심 있는 전문직 서비스 분야의 전문적 자격, 면허 또는 등록의 상호 인정을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관련 기관과 모든 형태의 약정을 협상한다. 그리고

나. 전문적 자격, 면허 및 등록의 인정에 대한 그러한 약정을 개발함에 있어 전문직 서비스와 관련 있는 그 밖의 관련 다자 협정을 고려한다.

4. 각 당사국은 적용 가능한 경우, 관련 직종을 위한 공동의 표준 및 기준을 개발함에 있어 국제적인 틀을 원용하도록 관련 기관을 장려하고, 제 2 항에 언급된 표준 및 기준은 다음의 사안과 관련하여 포함하고 개발될 수 있다.

가. 교육

나. 시험

다. 경험

라. 행동 및 윤리

마. 전문성 개발 및 재증명

바. 활동 범위

사. 현지 지식, 그리고

아. 소비자 보호

5. 당사국은 가능한 경우, 추가 서면 검토 없이, 외국인 공급자의 본국 면허 또는 공인 전문직 기구 회원 자격에 근거하여 다음을 고려할 수 있다.

가. 임시 또는 프로젝트별 면허 또는 등록제도를 이행하기 위하여 조치를 한다. 또는

나. 적절한 경우, 그러한 면허 또는 등록을 허용한다.

임시 또는 제한된 면허 제도는 외국인 공급자가 적용 가능한 현지 면허 요건을 충족하면 그 외국인 공급자가 현지 면허를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운영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6. 투명성을 목적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한쪽 당사국은 실행 가능한 경우 전문직 서비스 공급자의 증명 및 면허를 위한 표준 및 기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그러한 표준 및 기준에 관하여 협의할 적절한 규제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과 관련된 정보를 달리 제공한다.

7. 양 당사국은 제 12.4 조(위원회 및 부속기관)에 따라 설립될 수 있는 서비스무역 및 투자에 대한 위원회를 통하여 이 부속서의 이행을 주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8. 이 부속서의 이행을 검토할 때, 양 당사국은 전문직 서비스 일반에 대하여, 그리고 적절한 경우 개별 전문직 서비스에 대하여 다음을 포함한 사안들을 고려하도록 노력한다.

가. 관련 기관 간의 상호인정약정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절차

나. 전문직 서비스 공급자의 면허 및 증명을 위한 표준 절차 개발의 타당성, 그리고

다. 전문직 서비스의 공급에 관련된 그 밖의 상호관심사안

부속서 6-라
한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주해

1. 아래 약속 리스트는 (이하 "이 양허표"라 한다) 제 6.7 조에 따라 자유화된 서비스분야와 유보로써 그러한 분야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되는 시장접근 및 내국민 대우 제한을 나타낸다. 이 양허표는 다음의 요소로 구성된다.

   (가) 첫 번째 열은 한국에 의하여 약속이 행해지는 분야 또는 하위 분야와, 유보가 적용되는 자유화의 범위를 나타낸다.
   (나) 두 번째 열은 제 6.5 조에 대하여 첫 번째 열에서 제시된 분야 또는 하위 분야에서 적용 가능한 유보를 말한다.
   (다) 세 번째 열은 제 6.3 조에 대하여 첫 번째 열에서 제시된 분야 또는 하위 분야에서 적용 가능한 유보를 말한다. 그리고
   (라) 네 번째 열은 제 6.5 조 및 제 6.3 조에 따른 양허표 기재사항은 아니나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한 추가적 약속을 말한다.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나 이 양허표에 언급되지 않은 분야 또는 하위 분야에서의 서비스 공급은 약속되지 않는다.

2. 제 6.5 조와 일치하지 않는 조치가 제 6.3 조와도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러한 조치는 제 6.5 조와 관련된 열에 기재된다. 이러한 경우 그러한 기재는 제 6.3 조에도 조건 또는 제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3. 이 양허표에는 네 가지 다른 공급형태가 기재되어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이 이해된다.

   (가) "1) 국경간 공급" 공급형태는 제 6.1 조 서비스무역 가호에 따른 한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다른 쪽 당사국 영역 내로의 서비스 공급으로 이해된다.
   (나) "2) 해외소비" 공급형태는 제 6.1 조 서비스무역 나호에 따른 한쪽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공급으로 이해된다.
   (다) "3) 상업적 주재" 공급형태는 제 6.1 조 서비스무역 다호에 따른 한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의 상업적 주재를 통한 서비스 공급으로 이해된다.
   (라) "4) 자연인의 주재" 공급형태는 제 6.1 조 서비스무역 라호에 따른 한쪽 당사국의 자연인의 임시 주재를 통한 서비스 공급으로써 사업을 목적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로 입국 후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4. 한국은 한국의 고용시장에 접근하고자 하는 자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치 및 영구적인 차원에서의 시민권, 거주 또는 고용에 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추가자유화 요소' 열에 기재된 래칫(FL) 또는 MFN 은 서비스 공급형태 1, 2 및 3 에만 적용되며, 자연인의 주재에 의한 서비스 공급(서비스 공급형태 4)에 관한 조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추가자유화 요소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I. 수평적 양허				
CPC (UN 잠정 중앙상품분류: 통계문서시리즈 M No.77, 국제 경제사회국, UN 통계사무소, 뉴욕, 1991) 코드 번호 위의 별표(*)는 이 양허표 상의 해당 서비스 하위 분야가 주어진 CPC 코드 번호에 따라 분류된 서비스 하위 분야의 일부 또는 일부들만을 포함하는 것을 표시한다. "약속 안함*" 이란 기술적 실현가능성의 부족을 이유로 약속하지 않음을 말한다.				
이 양허표에 포함된 모든 분야		3) 인도네시아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 에너지 및 항공과 같은 분야에서 기존 국내 기업의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음. 신규로 민영화된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제한될 수 있음.	3) 토지취득은 다음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i)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 기업으로 간주되지 않는 기업의 토지취득은 허용됨. 그리고 (ii)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 기업으로 간주되는 기업과 외국기업의 지점의 토지취득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조건으로 하여 다음의 합법적 사업목적으로 허용됨. – 정상적인 사업활동 과정 중 서비스 공급에 사용되는 토지 – 해당 법령상 기업 고위임원의 주거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그리고 – 해당 법령에 규정된 토지 보유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으로 취급되는 거주자는 한국 주식에 포트폴리오 투자 시 내국민 대우를 부여 받음.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사용되는 토지 세제 혜택을 포함한 보조금 수혜 자격은 해당 법에 따라 한국에 설립된 기업에 제한될 수 있음. 연구 및 개발 보조금은 약속 안함. 4) 토지취득은 임차권 허용 외에는 약속 안함. 세제 혜택을 포함한 보조금 수혜 자격은 관련법상의 거주자에 제한될 수 있음.	

다음의 정의는 투명성 목적으로 규정한다.

1. “자회사”는 그 회사의 모회사가 총 지분의 50 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한 기업, 회사 또는 그 밖의 법적 실체로 정의함. 그리고
2. “지점”은 동일한 조직의 운영부서 또는 대표 사무소로 정의하고, 그 운영부서 또는 대표 사무소는 인도네시아 영역 내에 소재한 모회사를 대표할 포괄적 권한을 가진 피고용인을 보유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추가자유화 요소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Ⅱ. 분야별 구체적 약속				
1. 사업 서비스 A. 전문직 서비스 a. 법률 서비스 (CPC 861*) 서비스 공급자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관할지역에 관한 법 및 국제공법에 대한 자문 서비스로서 다음을 제외함. (i) 법원 및 그 밖의 정부 기관에서의 사법 절차 또는 법적 절차를 위한 대리 및 그러한 절차를 위한 법적 문서의 준비 (ii) 공증 증서의 준비 위탁을 위한 법적 대리 (iii) 노동 분야 자문 서비스 또는 한국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 지식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대표 사무소 형태로만 가능. 한국의 변호사 자격 또는 이와 유사한 자격을 가진 변호사와의 제휴 또는 고용은 허용되지 않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상업적 주재가 요구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법자문사는 일년에 최소 180 일 이상 한국에 체류할 것이 요구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와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i) 단기출장근무 (fly-in, fly-out) 형태로 일시적으로 외국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다만 한국 체류 기간이 1년에 90일 미만인 경우, 외국 변호사는 한국에 외국법 자문사로 등록하지 않고도 국제중재 사건에 관하여 일시적 업무 수행 및 대리를 할 수 있음. "국제중재사건"이란 대한민국을 중재지로 하고, 대한민국 외 국가의 법령, 대한민국과 외국 간 체결된 조약, 대한민국 외 국가들 간의 조약 또는 일반 적으로 인정되는 국제관습법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수 있는 민사·상사의 중재 사건을 말함. (ii) 회사 이름의 사용은 허용됨. 다만, 한글로 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라는 명칭과 함께 사용되어야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재산권, 광업권 또는 한국의 정부 기관에 등록함으로써 발생하는 그 밖의 권리의 취득, 상실 또는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사건에 관한 행위, 그리고 (iv) 한국 국민이 당사자이거나, 관련된 재산이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의 가족관계 또는 상속에 관한 법률사건들에 관한 행위				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주석

다음 정보는 오직 투명성 목적으로만 규정함.

1. 한국에서 외국법 자문사로서 활동하고자 하는 외국 변호사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해야 하며, 동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관할국에서 최소 3 년 동안 법률실무에 종사했어야 하고, 그 관할국의 법조계에서 유효하고 적정하게 종사하고 있어야 함.

2. 한국에 대표 사무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어야 함. 해당 대표 사무소는 법무부장관이 승인한 외국법자문사 1 명 이상으로 구성됨. 해당 대표 사무소는 신용과 전문성을 보유해야 하며,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어야 함. 대표 사무소의 대표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관할국에서 쌓은 3 년의 경력을 포함하여 최소 5 년 동안 법률실무에 종사했어야 함.

3. 대표 사무소는 이윤추구행위를 할 수 있음. 다만, 한국 내에서의 그러한 주재는 적절한 사업계획과 재정기반을 유지해야 하고, 「외국법자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준수해야 함.

4. 이 분야의 약속의 목적상, 인도네시아의 관련 법률에 따라 조직되고 인도네시아에 본사를 둔 법무회사(로펌)만이 한국에 대표 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음. 인도네시아가 아닌 국가의 지점, 현지 사무소, 자회사 또는 합작기업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법무회사(로펌)의 어떠한 종류의 종속적 또는 의존적 법적 실체도 한국에 대표 사무소를 설립할 수 없음.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추가자유화 요소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 회계, 감사 및 부기 서비스 (CPC 862)		1) 감사 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 2) 감사 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 3)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공인회계사에 의한 개인 사무소, 감사반 및 회계 법인(유한회사)만 허용됨. 감사반 및 회계 법인(유한회사)의 공인회계사만 감사 서비스 공급이 허용됨. 4) 부록 6-나-1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 및 부록 6-나-1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인회계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공인회계사 시험 통과 후 한국에서 2년의 실무 수습을 받아야 함.	1)2)3) 한국 회계법인 또는 회계사무소는 연회비를 납부하고, 전 세계적인 영업망을 가지고 있는 국제회계조직의 회원자격을 취득 할 수 있음. 한국 회계법인 또는 회계사무소에 대하여는 회원 계약을 통하여 다음의 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음. - 외국회계기준 및 회계감사에 대한 자문, 공인회계사 연수, 감사기법전수, 그리고 정보 교환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추가자유화 요소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c. 세무 서비스 (CPC 863)		1) 세무조정 서비스 및 세무대리 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 2) 세무조정 서비스 및 세무대리 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 3)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에 의한 개인 사무소, 세무 조정반, 그리고 세무대리법인(유한회사)만이 허용됨. 세무조정반 및 세무대리법인(유한 회사)의 세무사만이 세무조정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허용됨. 4) 부록 6-나-1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 및 부록 6-나-1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세무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세무사 시험 통과 후 한국에서 6개월의 실무 수습을 받아야 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추가자유화 요소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d. 건축 서비스 (CPC 8671)		1) 한국법상 자격 있는 건축사와의 공동계약을 통하여 외국 건축사에 의하여 서비스가 공급되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상업적 주재가 요구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 및 부록 6-나-1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2)4) 한국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건축사와의 공동계약에 의한 외국 건축사의 서비스 공급은 허용됨. 5년의 전문 경력을 이수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하여 그 자격이 한국 건축사와 동등한 전문직으로 인정되는 외국 건축사 자격자는 한국에서 시행되는 인턴 개발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고도 건축사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이들은 건축사 자격시험의 다음 두 과목에 합격함으로써 한국 건축사 자격 취득이 가능함. (a) 건축설계 Ⅰ, 그리고 (b) 건축설계 Ⅱ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추가자유화 요소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e. 엔지니어링 서비스 (CPC 8672)	FL MFN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 및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f.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 (CPC 8673)	FL MFN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 및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g. 도시계획 및 경관 건축 서비스 (CPC 8674)	FL MFN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 및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i. 수의료 서비스 (CPC 932)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추가자유화 요소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a. 컴퓨터설비 설치 관련 자문 서비스 (CPC 841)	FL MFN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 및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소프트웨어 시행 서비스 (CPC 842)	FL MFN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 및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c. 데이터 프로세싱 서비스 (CPC 843)	FL MFN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 및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d.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CPC 844)	FL MFN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 및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e. 기타 (CPC 845, 84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 및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추가자유화 요소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C. 연구개발 서비스 a. 자연과학 연구개발 서비스 (CPC 85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해양과학조사에 대하여, 한국의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한국 기업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사전에 허가 또는 동의를 획득해야 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 및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인문사회과학 연구개발 서비스 (CPC 852)	FL MFN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 및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c. 학제간 연구개발 서비스 (CPC 853)	FL MFN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 및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추가자유화 요소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D. 부동산 서비스				
중개 서비스 (CPC 82203*, 82204*, 82205*, 82206*)		1) 약속 안함. 2) 해외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해외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 및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감정평가 서비스 (CPC 82201*, 82202*) 토지 가격 책정과 수용에 대한 보상과 같은 정부의 권한행사로 공급 되는 서비스와 관련된 감정평가 서비스는 제외함.		1) 약속 안함. 2) 해외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해외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 및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E. 운영자를 동반하지 않는 임대/리스 서비스				
a. 선박 관련 (CPC 83103)	FL MFN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 및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추가자유화 요소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 항공기 관련 (CPC 83104)	FL MFN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외국인 지분참여 50 퍼센트 미만의 합작투자에 한정하여 허용.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합작투자회사의 대표자는 한국 국민이어야 함. 4) 수평적 양허 분야 및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c. 그 밖의 운송장비 관련 (CPC 83101, 83105*)[1]	FL MFN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 및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d.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관련 (CPC 83106-83109)	FL MFN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 및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e. 기타 개인 또는 가정 용품 관련 리스 또는 임대 서비스 (CPC 83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 및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83105*: CPC 83105 중 15인승 미만의 승합차로 한정한다.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추가자유화 요소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u>그 밖의 사업 서비스</u> a. 광고 서비스 (CPC 871)	FL MFN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 및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 서비스 (CPC 864)	FL MFN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 및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c. 경영컨설팅 서비스 (CPC 865)	FL MFN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 및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d. 프로젝트 경영 서비스 (CPC 86601)	FL MFN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 및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e. 성분과 순도 검사 및 분석 서비스 (CPC 86761*)[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상업적 주재의 설립은 경제적 수요 심사를 조건으로 함. 주요 기준: 기존의 국내 공급자의 수 및 이들에 대해 미치는 영향, 공중 보건, 안전 및 환경의 보호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 및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2] 86761*: CPC 86761 중 대기, 수질, 소음 수준 및 진동 수준에 대한 검사, 시험 및 분석만을 포함한다.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추가자유화 요소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e. 물리적 성질 검사 및 분석 서비스 (CPC 86762)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 및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e. 기술적 진단 서비스 (CPC 86764)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 및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e. 통합 기계 및 전기 시스템 검사 및 분석 서비스 (CPC 86763*, 86769*)[3]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약속 안함.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 및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f. 농업 및 축산업 관련 자문 서비스 (CPC 8811*, 881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 및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f. 가금류 감별 서비스 (CPC 8811*, 881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 및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3] 86763*, 86769*: CPC 86763, 86769 중 전자 제품의 검사 및 분석 서비스만을 포함한다.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추가자유화 요소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f. 항공에 의한 산불 진화 및 병해충 방제 서비스를 제외한 임업 부수 서비스 (CPC 8814*)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 및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g. 어업 관련 자문 서비스 (CPC 88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 및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h. 광업 부수 서비스 (CPC 883)	FL MFN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 및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i. 제조업 부수 서비스 신제품 제조 기술 관련 자문 서비스만 포함 (CPC 884* 및 885*, 다만, 88411, 88450, 88442 및 88493 제외)	FL MFN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 및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추가자유화 요소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l. 보안 서비스 (CPC 873*): 보안 자문 서비스 (CPC 87302), 경보 모니터링 서비스 (CPC 87303), 장갑차 서비스 (87304), 경비 서비스 (CPC 87305), 그리고 그 밖의 보안 서비스 (CPC 87309) 포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한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만이 한국 내 보안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음. 한국에서는 다음 5 가지 종류의 경비 서비스만이 허용됨: (a) 시설경비: 보안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설립체와 장소에서 도난, 화재, 그리고 혼잡과 같은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서비스 (b) 호송경비: 현금, 증권, 귀금속, 상품, 및 그 밖의 물품의 이송과 관련된 도난 및 화재와 같은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서비스 (c) 신변보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가해지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러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서비스 (d) 기계경비: 경비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설립체에 설치된 장비 및 그러한 서비스의 적용 대상이 되는 설립체 외의 장소에 설치된 통제시설 장비에 의하여 감지 및 전송되는 정보 수신을 통하여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서비스, 그리고 (e) 특수경비: 시행령에 의하여 규정된 공항과 같은 핵심 국가 시설의 방호를 위하여 제공되는 서비스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 및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추가자유화 요소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k. 직업 소개 서비스 (CPC 87201*, 87202*)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에 대한 직업 소개는 제외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 서비스 공급자는 「상법」에 따른 회사 형태로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 및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직업 소개 서비스에 대한 투명성 목적의 주석

1. 회사는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하여 결정되고 공표된 서비스 요금에 대한 규칙을 준수함.
2. 회사는 5천만원 이상의 납입자본금으로 설립됨. 공급자가 추가로 지점 사업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지점 사업소당 2천만원씩 총 납입자본금이 가산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추가자유화 요소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m. 과학 및 기술 관련 자문 서비스 지질학적, 지구물리학적 및 그 밖의 과학적 예측 서비스 (CPC 86751) 지각조사 서비스 (CPC 8675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 및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지표조사 서비스 (CPC 86753*) 지적 측량과 관련된 서비스는 제외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 및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지도제작 서비스 (CPC 86754*) 지적도 관련 서비스 는 제외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 및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n. 장비의 유지 및 보수 (CPC 633, 8861, 8862, 8863, 8864, 8865, 8866)	FL MFN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 및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추가자유화 요소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o. 빌딩 청소 서비스 (CPC 874*, 다만, 87409 제외)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 및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p. 사진 서비스 (CPC 875)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 및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q. 포장 서비스 (CPC 876)	FL MFN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 및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r. 인쇄 (CPC 88442*)[4]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r. 출판 (CPC 88442*) 신문 및 정기 간행물 출판 서비스는 제외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 및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88442*: CPC 88442 중 스크린 인쇄, 그라비어 인쇄 및 인쇄 관련 서비스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추가자유화 요소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s. 국제회의 대행 서비스 (CPC 8790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 및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s. 속기 서비스 (CPC 8790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 및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t. 전화 응대 서비스 (CPC 8790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 및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t. 복제 서비스 (CPC 87904)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 및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t. 번역 및 통역 서비스 (CPC 87905)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 및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t. 전문디자인 서비스 (CPC 87907)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 및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추가자유화 요소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2.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B. 쿠리어 서비스		1) 서비스의 제공은 항공 및 해로 운송형태로 제한됨.	1) 서비스의 제공은 항공 및 해로 운송형태로 제한됨.	
특급배달 서비스[5]를 포함하는 쿠리어 서비스 (CPC 7512*)		2) 제한 없음. 3) 국내 쿠리어 공급을 위한 화물운송업 면허는 경제적 수요심사를 조건으로 함.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존의 국내 쿠리어 서비스 공급자를 인수하려는 자는 피인수자가 보유한 면허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조건 하에 영업을 영위하는 한, 신규 화물운송업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우편법」에 따라 한국 우정당국이 배타적 권리[6]를 가지는 편지의 수집, 처리 및 배달 서비스 는 제외함.[7]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 및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한국 우정당국의 배타적 권리는 우편망 및 그 운영에 대한 접근권을 포함함.				
이 약속은 자기의 책임 하에 고용하여 운송 서비스를 운영하는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음.				

[5] "특급배달서비스" 란 신속성을 기반으로 하는 문서, 인쇄물, 소포, 상품 또는 그 밖의 품목의 수집, 운송 및 배달로서, 서비스 공급의 전 과정을 통하여 그 품목을 추적하고 그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6]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속하는 차량 총수 결정과 우체국에 대한 차량 배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7] 그러나 「우편법 시행령」 제 3 조는 민간 쿠리어 사업자가 다음을 포함한 상업서류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a)화물에 첨부한 봉하지 않은 서류 또는 송장, b)국제 서류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추가자유화 요소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이 약속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및 항공기를 보유한 배달 사업자에 대한 항공 운항권 부여를 포함하지 않음.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추가자유화 요소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C. 통신 서비스 a. 음성전화 서비스 b. 패킷교환데이터 전송 서비스 c. 회선교환데이터 전송 서비스 d. 텔렉스 서비스 e. 전신 서비스 f. 팩시밀리 서비스 g. 민간전용회선 서비스 o. 기타 디지털 셀룰러 서비스 무선호출 서비스		1) 모든 서비스 공급은 허가받은 한국 서비스 공급자와의 상업적 약정을 조건으로 함. 2) 제한 없음. 3) 기간통신사업 허가 또는 별정통신사업 등록의 대상자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한정함. 외국정부 또는 그 대표자, 또는 외국인은 무선국 허가를 취득하거나 보유할 수 없음. 기간통신사업 허가는 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8] 모두가 합하여 그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9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한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부여되거나 그러한 법인에 의하여 보유되지 않음. 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은 모두가 합하여 기간통신사업자[9]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9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못함. 외국정부, 외국인, 외국법인 또는 의제외국인은 KT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 및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8] "의제외국인" 이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한국의 관련 법에 따른 "특수관계인" 을 포함한다)이 그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80 퍼센트(그 최대 주주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인 경우 15 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9] "기간통신사업자" 란 전송설비를 소유한 공급자를 말한다. "별정통신사업자" 란 전송설비를 소유하지 않고(그러나 스위치, 라우터 또는 멀티플렉서는 소유할 수 있다) 허가 받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송설비를 통하여 기간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를 말한다. "전송설비" 란 송신지점과 수신지점을 연결하는 유선 또는 무선전송설비(회선설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추가자유화 요소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CS(개인통신 서비스) TRS(주파수공용 통신) 서비스 무선 데이터 서비스 IAS(인터넷접속 서비스) PSTN(공중교환 전화망)과 연결된 VoIP(인터넷 전화)서비스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추가자유화 요소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부가 서비스[10] h. 전자메일 i. 음성메일 j. 온라인 정보 및 데이터베이스 검색 k. 전자적 데이터 교환 l. 저장 및 전송, 저장 및 검색을 포함한 고도/부가 가치 팩시밀리 서비스 m. 코드 및 프로토콜 변환 n. 온라인 정보 및/ 또는 데이터 처리 (거래 처리 포함) o. 기타 온라인 데이터 베이스 및 원격 컴퓨팅 서비스[11]	FL MFN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 및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부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데이터 전송 서비스 공급이 허용됨[12]

[10] “부가 서비스” 란 기간통신업자로부터 임차한 통신망 설비를 통하여 제공되며, 이용자의 정보를 저장하여 전송하거나 처리하여 전송하는 통신 서비스를 말한다.

[11]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및 원격 컴퓨팅 서비스는 제 3 자 통신을 매개하는 통신 서비스를 포함하지 않는다.

[12] 형태 또는 내용의 변경 없이 이용자의 데이터를 전송 및/또는 교환하는 통신 서비스(음성전화, 텔렉스, 팩시밀리 서비스 및 전용회선의 단순재판매는 제외한다).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추가자유화 요소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D. 시청각 서비스				
a. 영화 및 비디오테이프 제작 및 배급 서비스 (CPC 96112*, 96113*) 케이블 TV 방송 서비스는 제외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와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e. 음반 제작 및 배급 서비스(녹음)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와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3. 건설 서비스 (CPC 511-518)	FL MFN	1) CPC 5111 을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CPC 5111 을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 *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와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추가자유화 요소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4. 유통 서비스[13] A. 위탁 중개인 서비스 (CPC 621, 다만, 62111, 62112 및 선물계약의 위탁 중개인 서비스는 제외)		1) 의약품 및 의료상품은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와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3] 다음의 서비스는 제외한다.

(a) 총포, 도검 및 화약류의 거래

(b) 예술품 및 골동품, 그리고

(c) 다음의 개설 및 운영과 다음에서의 유통 서비스

(ⅰ) 지방 당국이 공영도매시장으로 공식 지정한 농축수산물 공영도매시장

(ii)「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이 개설 및 운영하는 농수산물공판장, 그리고

(iii)「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축산업협동조합이 개설 및 운영하는 가축 시장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 세계무역기구 관세율할당의 운영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 또는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다.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추가자유화 요소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 도매 서비스 (CPC 61111, 622*, 다만, 62211 중 곡물 도매업, 62223, 인삼 및 홍삼 도매업, 62229 중 곡분 및 62276 중 비료 도매업은 제외)		1) 의약품, 의료상품, 기능성 식품 및 공급형태 3 상 제한 대상인 품목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다음의 서비스는 경제적 수요 심사를 조건으로 함. – 중고자동차 도매업 – 가스 연료 및 관련 제품 도매업 주요 기준: 합리적인 가격의 형성, 수급 균형을 위하여 기존 공급업체의 수와 이들에 미치는 영향,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질서 있는 상행위. 또한 인구밀도, 교통, 환경 오염, 지역적 조건 및 그 밖의 지역적 특징과 공공의 이익. 주류 도매 유통업을 하는 인은 관련 세무서장으로부터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함. 보건복지부장관은 수입된 지정 한약재의 도매 유통에 대한 수급조절을 함.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와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추가자유화 요소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C. 소매 서비스 (CPC 61112, 61130, 61210, 613*(LPG 와 관련된 소매업 및 주유소 사업 제외), 631*(쌀, 인삼, 홍삼 제외), 632)		1) 의약품, 의료상품, 기능성 식품 및 공급형태 3 상 제한 대상인 품목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중고자동차 및 가스 연료에 대한 소매 서비스는 경제적 수요심사를 조건으로 함. 주요 기준: 기존 국내 공급업체의 수와 이들에 미치는 영향, 인구밀도, 교통, 환경 오염, 지역적 조건 및 그 밖의 지역적 특징과 공공의 이익. 전화 또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주류 판매는 금지됨. 안경사(안경사 또는 검안사) 면허를 받은 자연인으로서 한국에 사무소를 개설한 자만이 안경사 또는 검안 영업에 종사할 수 있음. 면허를 받은 안경사(안경사 또는 검안사)만이 영업을 위한 영업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안경사 1 인당 1 개의 영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음. 의약품 소매유통 서비스(한약재 유통 포함)를 공급하는 인은 약국을 1 개소만 설치할 수 있으며, 회사의 형태로 설립할 수 없음. 지정된 담배소매인만이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할 수 있음. 우편 또는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금지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담배소매인의 영업소 간 거리는 최소한 50 미터를 유지해야 함.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와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D. 프랜차이징[14] (CPC 8929*)	FL MFN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와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주석 다음의 설명은 소매 서비스에 적용됨. 일반 공중에 대한 의약품의 직접 공급(약국)은 공중 보건 보호를 위하여 허가 받은 약사에 의해서만 허용됨.				

[14] 프랜차이징 서비스는 이 양허표의 도매 서비스 및 소매 서비스 분야에서 허용된 품목으로 한정한다.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추가자유화 요소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5. 교육 서비스[15]				
C. 고등교육 서비스[16] (CPC 923*) 학위 수여를 목적으로 정부 또는 공인평가 인정 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립 고등교육기관에 의하여 제공되는 고등 교육 서비스. 다음은 제외함. (i)보건 및 의료 관련 고등교육 (ii)유아·초등 및 중등 교원양성 고등교육 서비스 (iii)법학 전문대학원, 그리고 (iv)방송통신 대학 및 사이버 대학		1) 약속 안함. 2) 국내외 기타 고등교육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총 학점의 2 분의 1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됨. 3) –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학교 법인[17]만이 장관의 인가를 받아 교육기관 설립이 가능함(사내대학은 학교법인 설립 불필요). – 첨부 1에 기재된 교육기관의 형태만 가능함. – 기술대학 및 사내대학을 제외하고, 수도권 지역[18]에서의 고등교육기관의 신설, 확장 또는 이전은 제한될 수 있음. – 대학(전문대학)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에서의 전문대학, 대학, 산업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은 외국공인인정기구의 인정을 취득하거나, 외국 정부의 인정 또는 추천을 획득한 외국 대학으로 한정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15] 모든 서비스 공급 형태를 통한 시장접근과 내국민 대우에 관한 구체적인 약속은 한국에서 전문직 활동을 위한 입학, 등록 및 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학위 인정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16] 고등교육기관의 형태는 고등교육 서비스에 관한 첨부 1 에 기재된다.

[17] “학교법인” 이란 교육 관계법령에 따라 정규 교육기관을 설립할 목적으로만 설립되는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18] “수도권 지역” 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말한다.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추가자유화 요소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 국내외 기타 고등교육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총 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됨. – 교육부장관은 총 학생 수와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고등교육기관의 총수를 제한할 수 있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와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추가자유화 요소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D. 성인교육 서비스[19] (CPC 924*) 사립 성인교육기관에 의하여 제공되는 성인교육 서비스 다음을 제외함. (ⅰ)학력을 인정하거나, 국내외 학점, 학위 또는 졸업장을 수여하거나 또는 이와 연계된 교육 서비스 (ii) 「 고용보험법 」,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및 「선원법」에 따라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직업훈련 서비스 (iii) 방송을 통한 교육 서비스, 그리고 (iv) 정부가 위임한 권한에 따라 기관이 제공 하는 직업훈련 서비스		1) 보건 및 의료 관련 성인교육 서비스는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 첨부 1에 기재된 교육기관의 형태만 가능함. – 교육감은 학원수강료를 규율 할 수 있음. – 수도권 지역과 그 주변에서 교육기관의 설립 및/또는 확장은 제한될 수 있음. 4) 부록 6-나-1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보건 및 의료 관련 성인교육 서비스는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와 부록 6-나-1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성인대상 학원에 강사로 고용되는 외국인은 학사 학위 이상 또는 같은 수준의 학력을 취득하고, 한국에 거주해야 함.	

[19] 성인교육기관의 형태는 성인교육 서비스에 관한 첨부 1에 기재된다.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추가자유화 요소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6. 환경 서비스				
A. 폐수 서비스 폐수 처리 서비스 (CPC 9401*)[20]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와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폐기물 처리 서비스 산업폐기물 처리 서비스 (CPC 9402*)[21]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와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D. 기타 배기가스 정화 및 소음 저감 서비스 (CPC 9404, 9405)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와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환경 시험 및 평가 서비스 (CPC 9406*, 9409*)[2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와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20] 9401*: CPC 9401 중 산업폐수의 수집 및 처리 서비스만 해당한다.

[21] 9402*: CPC 9402 중 산업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 서비스만 해당한다.

[22] 9406*, 9409*: CPC 9406 및 9409 중 환경 영향 평가 서비스만 해당한다.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추가자유화 요소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토질개선 및 지하수 정화 서비스 (CPC 9406*)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와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환경자문 서비스 (CPC 940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와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금융 서비스에 대한 주해

1. 금융 분야는 기본적으로 부속서 6-가(금융 서비스)의 카테고리에 따라 재분류됨. 그러므로 하위 분야의 순서는 GATS/SC/48/Suppl.3/Rev.1. 의 약속상의 하위분야와 다름.
2. 하위 분야의 기재사항은 오직 현존하는 국내 금융 서비스에만 적용됨.

7. 금융 서비스

모든 금융 서비스는 다음 규정에 따름.

1. 부속서 6-가(금융 서비스) 제 2 항 가호에 따른 건전성 사유로 한국은 모회사와 관련된 요건, 최소자본금 요건, 최소영업자금 요건, 영업 활동을 위한 영업 직원의 면허 및 승인을 포함한 조치를 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음.
2. 금융기관은 관련 법에서 규정된 오직 한 종류의 사업을 위하여 설립되어야 하며, 따라서 그 밖의 관련 법에 의하여 규제되는 그 밖의 영업활동을 겸할 수 없음.
3. 금융 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 및 소비자 이동을 통한 공급은 원화로 결제되지 않음. 상업적 주재 설립 후 금융기관은 거주자와 원화로 표시되고 결제된 거래만 다룰 수 있음. 외화로 표시 또는 결제된 거래 또는 비거주자와의 거래는 승인이 필요함.
4. 지점소유 자산은 한국의 영역 내에 보유되어야 함. 금융기관의 본점 자본금은 국내 지점의 자금 조달 및 대출활동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인정되지 않음.
5. 요구불예금 금리가 규제됨.
6. 금융기관의 자산 관리 및 운용이 제한됨.
7. 금융기관은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음.
8. 파생상품을 포함한 새로운 금융상품의 도입은 승인을 받아야 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추가자유화 요소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A.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i) 직접보험				
a) 생명보험 서비스 상해보험과 건강보험 서비스를 포함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외국 생명보험회사에 대해서만 상업적 주재가 허용됨. 설립의 최고 책임자는 한국에 주재해야 함.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와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손해보험 서비스		1) 해상수출입 적하보험 및 항공보험을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외국 손해보험회사에 대해서만 상업적 주재가 허용됨. 설립의 최고 책임자는 한국에 주재해야 함.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와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ii)재보험 및 재재보험 서비스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 재보험 및 재재보험 회사에 대해서만 상업적 주재가 허용됨. 설립의 최고 책임자는 한국에 주재해야 함.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와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추가자유화 요소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iii) 보험중개 및 대리 서비스 a) 보험중개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외국 보험중개회사에 대해서만 상업적 주재가 허용됨 설립의 최고 책임자는 한국에 주재해야 함.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와 6-나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보험대리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와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iv) 보험 부수 서비스 : 하위 분야 a) 및 b)에만 적용됨 a) 손해사정 서비스[23] b) 보험계리 서비스		1) 제한 없음. 2) 약속 안함. 3) 외국 손해사정 및 보험계리 회사에 대해서만 상업적 주재가 허용됨. 설립의 최고 책임자는 한국에 주재해야 함.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와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2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에 관한 업무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추가자유화 요소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 은행 및 그 밖의 금융 서비스 다음의 하위 분야에만 적용됨. (i) 예금[24] (ii) 대출[25] (iii) 금융 리스 (iv) 지급 및 송금 (v) 보증 및 약정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본국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영위하는 외국 금융기관(금융리스는 제외)에 대해서만 상업적 주재가 허용됨. 인은 관련 당국의 특별한 인가 없이 은행 지분의 10 퍼센트까지(비금융 서비스 기관의 경우 4 퍼센트까지), 그리고 지방은행 지분의 15 퍼센트까지 취득할 수 있음.[26] 인은 관련 당국의 특별한 인가 하에 은행 및 지방은행의 100 퍼센트까지 취득할 수 있음. 외국환 포지션은 규제됨. 현물환매각 초과 포지션은 미화 500 만 달러 또는 자본금의 3 퍼센트 중 큰 금액임. 주택청약저축과 같이 특정 목적을 위한 예금은 지정된 금융기관에서만 취급 가능함. 증권저축과 신용공여의 경우 한도와 운용상의 제한에 따름. 카드론과 같은 수단을 통한 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대출은 제한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24] 예금의 수취 또는 양도성 상품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발행에 의하여 은행이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인수하는 업무

[25] 융자 또는 어음할인을 통하여 은행이 대중으로부터 이자를 수취하기 위하여 자금을 융자하는 업무

[26] "인" 및 "비금융 서비스 기관"은 「은행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정의된다.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신용카드 서비스에 대하여, 수수료 및 이자율과 같은 각종 요율에 대한 최고한도가 있음.		
(vi) 외환 서비스[27] (vii) 결제 및 청산[28]		양도성예금증서 만기는 30 일을 초과함. 외환거래시 실수요 원칙 및 실수요 증명 요건이 적용됨. 선물 거래의 경우 실수요 증명요건이 면제됨.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의무가 있음. 외환대출에 대한 한도 및 용도가 제한됨. 금융 리스, 신용 공여, 증권저축회사의 최고 책임자는 한국에 주재해야 함.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와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viii) 거래소, 장외시장,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자기계좌 또는 고객계좌로 거래하는 것 다음에 기재된 상품에 대하여만 적용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본국에서도 동일한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외국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상업적 주재가 허용됨. 대표 사무소는 사전 통지로 설립될 수 있음. 설립의 최고 책임자는 한국에 주재해야 함.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와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27] 외환의 발행, 송금 및 추심 행위

[28] 금융결제원의 규약에 따른 은행의 어음 및 수표에 대한 결제 및 청산 행위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a) 화폐시장 상품 (수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를 포함) b) 외환				
c) 금융파생상품 (선물 및 옵션 포함) d) 환율 및 이자율 상품(스왑 및 선도금리계약 포함) e) 양도성 증권 f) 그 밖의 유통증권 및 금융자산 (금괴 포함)				
(ix) 모든 형태의 증권발행에 참여 a) 증권발행 b) 증권인수 c) 증권모집 d) 그 밖의 증권 관련 서비스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모든 종류의 증권을 발행하는 외국금융 기관에 해서만 상업적 주재가 허용됨. 대표 사무소는 사전 통지로 설립될 수 있음. 설립의 최고 책임자는 한국에 주재해야 함.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와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x) 자산 관리 다음에 기재된 서비스에 대하여만 적용됨. a) 현금 또는 포트폴리오 운용 b) 모든 형태의 집합투자 운용 c) 보관 d) 신탁[29] (투자일임업 포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외국 자산운용회사에 대해서만 상업적 주재가 허용됨. 대표 사무소는 사전 통지로 설립될 수 있음. 신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본업인 은행업 외의 업무에 종사 및 신탁업에 종사한다는 금융위원회의 승인(두 종류)이 요구됨. 부동산 신탁 사업은 약속 안함. 설립의 최고 책임자는 한국에 주재해야 함.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와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xi) 신용정보 서비스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기존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50 퍼센트 미만의 지분참여를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와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xii) 자문, 중개 및 그 밖의 부수 금융 서비스 다음에 기재된 서비스에 대하여만 적용됨. a) 투자자문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외국 투자자문회사에 대해서만 상업적 주재가 허용됨. 대표 사무소는 사전 통지로 설립될 수 있음. 설립의 최고 책임자는 한국에 주재해야 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29] 수탁자가 위탁을 받아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금융자산을 운용하는 행위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와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신용평가 및 분석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무보증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발행하고자 하는 회사의 신용평가는 관련 당국이 지정한 신용평가회사가 해야 함.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와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추가자유화 요소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9. 관광 및 여행 관련 서비스 A. 호텔 및 레스토랑 (CPC 641, 642, 6431*) 다만, CPC 6431 중 철도 및 항공 운송 관련 시설은 제외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와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여행 알선 및 여행 대행 서비스 여행 알선 서비스 및 여행 대행 서비스(CPC 747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와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C. 관광객 안내 서비스 (CPC 7472)	FL MFN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와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추가자유화 요소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10. 레크리에이션, 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				
A.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CPC 96191, 96192) 뮤지컬, 연극, 라이브 밴드, 오페라 등과 같이 개인 아티스트나 그룹에 의하여 행해지는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와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뉴스통신 서비스 (CPC 962)		1)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뉴스통신사는 연합뉴스사와 같이 무선국 허가를 받은, 한국법에 따라 설립된 뉴스통신사와의 계약 체결에 의해서만 한국에서 뉴스통신을 공급할 수 있음. 2) 제한 없음. 3) 외국 뉴스통신사의 한국 내 지사 또는 지국의 설립은 기사취재 목적일 경우에만 가능함.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러한 지사 또는 지국은 한국 내에서 뉴스통신을 배포할 수 없음. 다음에 해당하는 인은 한국에서 뉴스통신 서비스를 공급할 수 없음. 가. 외국 정부 나. 외국인 다. 한국 국민이 아니거나 한국에 주소를 두지 않은 인이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최고선임임원)로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다음에 해당하는 인은 뉴스통신사의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최고선임임원)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고, 또한 연합뉴스사나 뉴스통신진흥회의 임원(이사회의 일원)이 될 수 없음. 가. 외국 국민, 또는 나. 한국에 주소를 두지 않은 한국 국민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되어 있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또는 라. 외국인이 25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다음에 해당하는 인은 무선국 면허를 취득할 수 없음. 가. 외국 국민 나. 외국정부 또는 그 대표자, 또는 다.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와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D. 기타 (CPC 964**) 게임 서비스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와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추가자유화 요소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11. 운송 서비스 A. 해운 서비스[30] 국제운송 (CPC 7211*, 7212*) 연안 운송은 제외함.	FL MFN	1) a) 정기선 해운: 제한 없음. b) 벌크선, 부정기선 및 그 밖의 국제해운: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a) 한국 국적 선박을 운영할 목적으로 등록된 회사의 설립 i) 국제여객해운: 약속 안함. ii) 국제화물해운: 「상법」에 명시된 주식회사만이 허용됨. b) 그 밖의 형태의 상업적 주재: 제한 없음. 4) a) 선박승무원: 약속 안함. b) 항만 노무자: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a) 제한 없음. b) 제한 없음. 4) a) 약속 안함. b) 수평적 양허 분야와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항구에서의 다음 서비스는 국제해상운송공급자에게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함. 1. 도선 2. 예선 지원 3. 식량·연료 공급 및 급수 4. 쓰레기 수거 및 밸러스트 폐기물 처리 5. 선석배정 6. 항행원조 7. 통신, 급수 및 전기공급을 포함한 선박 운영에 필수적인 육상기반 운영 서비스 8. 비상보수시설 9. 정박, 접안지 및 선박접안 서비스
주석 관련 국내법상 연안 운송으로 간주될 수 있는 활동 범위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이 양허표는 한반도 전체 및(또는) 그 부속도서에 위치한 항구 또는 지점과 한반도 전체 및(또는) 그 부속도서에 위치한 그 밖의 항구 또는 지점 간의 여객 또는 화물운송에 적용되는 것으로 의제되는 국내 연안 운송을 포함하지 않음. 한반도 전체 및(또는) 그 부속도서에 위치한 항구 또는 지점에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규정된 대륙붕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 및(또는)				

[30] 해운 서비스에 관한 첨부 2 를 참조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그 부속도서상의 항구 또는 지점이 포함되고,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도서에 위치한 동일한 항구 또는 지점에서 시작하여 종료하는 운송도 국내 연안 운송에 포함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추가자유화 요소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해운 부수 서비스 해상화물취급 서비스 (CPC 741*)	FL MFN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와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항만 내 창고업 (CPC 742*)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와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통관 서비스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와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해운대리업 서비스 (CPC 748*)[31]	FL MFN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상법」에 명시된 모든 회사가 허용됨.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와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31] CPC 748 중 해상여객운송사업 또는 해상화물운송사업(외국운송사업을 포함한다)을 주선하는 대리업 서비스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컨테이너 스테이션 서비스 (CPC 741*)[32]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와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해상화물운송주선 서비스 (CPC 748*)[3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상법」에 명시된 모든 회사가 허용됨.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와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해운 중개(CPC 748*, 749*)[34]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상법」에 명시된 모든 회사가 허용됨.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와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선박 유지 및 보수[35]	FL MFN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상법」에 명시된 모든 회사가 허용됨.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와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선원 포함 선박 임대 서비스 (CPC 7213)	FL MFN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와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32] CPC 741 중 항만 지역에서 제공되는 컨테이너 스테이션 서비스

[33] CPC 748 중 주선인의 명의(계약상 외국주선인을 포함한다)로 선박에 의한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서비스

[34] 748*, 749*: CPC 748 및 749 중 해상화물운송중개 또는 선박의 대여, 용대선 또는 매매를 위한 중개 서비스

[35] 해상여객 운송사업, 해상화물 운송사업 또는 선박대여업을 위하여 제공되는 선박 수리 및 관리, 선원 관리 및 해상보험과 같은 서비스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예선 서비스 (CPC 7214)	FL MFN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와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검수, 검량 및 감정 서비스 (CPC 745*)	FL MFN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와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추가자유화 요소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C. 항공 운송 서비스 컴퓨터 예약 시스템 (CRS) 서비스[36]	FL MFN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와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항공 운송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 서비스[37]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와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항공기 유지 및 보수	FL MFN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와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36] 제 6.1 조 컴퓨터 예약 시스템(CRS) 서비스의 정의에 따른다.

[37]「항공사업법」 제 2 조제 30 호(항공운송총대리점업)에 정의된 서비스. “항공운송총대리점업”이란 항공운송사업자를 위하여 유상으로 항공기를 이용한 여객 또는 화물의 국제운송계약 체결을 대리(代理)[사증(査證)을 받는 절차의 대행은 제외한다]하는 사업을 말한다.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추가자유화 요소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E. 철도 운송 서비스 a. 여객 운송 (CPC 7111) b. 화물 운송 (CPC 7112)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현재 운영 중인 노선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 새로운 노선의 설립은 경제적 수요 심사를 조건으로 함. 주요 기준: 철도 산업에서의 질서와 규율의 확립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와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c. 철도 유지 및 보수 (CPC 8868 의 일부)[38]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와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d. 철도 운송 부수 서비스 (CPC 741, CPC 7113 의 일부)[39]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와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38] 철도 유지 및 보수 서비스에 대한 약속은 사유 철도 설비에만 적용된다.

[39] 철도 운송 부수 서비스에 대한 약속은 사유 철도 설비에만 적용된다.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F. 도로 운송 서비스 연안 운송을 제외한 컨테이너 화물 운송 (CPC 71233*)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허가는 국제해운회사에만 부여됨.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화물은 수출 또는 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로 한정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와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G. 파이프라인 운송 (CPC 7131*) 오직 석유제품 운송에 한정. 다만, LPG 운송은 제외함.	FL MFN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와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H. 모든 운송 형태에 대한 부수 서비스 b. 항만구역 외의 보관 및 창고업 (CPC 742*) 농산물, 수산물 및 축산물에 대한 서비스는 제외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와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I. 그 밖의 운송 서비스 **복합 운송 서비스** 철도 화물 주선[40]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와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2. 그 밖의 서비스 b. 이발 및 그 밖의 미용 서비스 (CPC 970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와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0] "철도 화물 주선"이란 철로 운송의 끝 지점에서 수행되는 다음과 같은 보조 서비스를 말한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컨테이너 화물의 수집, 한국철도공사와의 철도화물 운송계약, 화물 하역 및 배달이 포함된다.

첨부 1: 교육 서비스

1. 고등교육기관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가. 전문대학(기능대학은 제외한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2 년부터 3 년까지의 교과과정을 제공하고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고등교육기관

나. 대학: 「고등교육법」에 따라 4 년부터 6 년까지의 교과과정을 제공하고,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고등교육기관

다. 산업대학: 「고등교육법」에 따라 산업 사회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고등교육기관

라. 기술대학: 「고등교육법」에 따라 전문인력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2 년의 교과과정을 제공하고 전문학사학위 및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고등교육기관

마. 사내대학: 「평생교육법」에 따라 근로자를 교육하고 전문대학 또는 대학과 동등한 학위 또는 졸업장을 수여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설립 및 운영하는 고등교육기관

2. 성인교육기관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가. 학원이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 일 이상의 기간 동안 10 명 이상에게 평생교육 또는 직업교육과 관련된 다음의 과목을 교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교육시설을 말한다. 학교, 도서관. 박물관, 직원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의 시설,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및 운전학원은 제외된다.

1) 산업기반기술: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섬유 및 의복,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업 및 임업, 해양 산업, 에너지, 공예, 환경, 교통, 안전관리
2) 산업응용기술: 디자인, 이용 및 미용 관리, 식품 및 음료,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 조율
3) 컴퓨터: 통신기기, 소프트웨어, 데이터 처리, 인터넷, 컴퓨터, 게임
4) 간호보조: 간호조무사
5) 문화 및 관광: 출판, 영상 및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상품, 관광
6) 국제: 성인대상 어학, 번역, 통역
7) 경영 및 사무관리: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회계, 펜글씨, 부기, 주산, 속셈 및 속독
8) 인문사회: 행정, 경영, 회계, 통계, 공무원시험
9) 기예: 국악, 전통무용, 서예, 음악, 회화, 무용, 웅변, 모델, 만화, 바둑, 연극, 꽃꽂이, 꽃공예

나.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에 따라 교육부의 인가, 등록, 또는 신고가 된 시설을 말한다. 평생성인교육시설은 성인을 위하여 설립된 것으로서, 사업장, 비정부기구, 학교, 그리고 언론기관에 부설된 평생교육시설과 지식 및 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첨부 2: 해운 서비스

1. 국제해운, 3.b):

“국제해운 서비스 공급을 위한 그 밖의 형태의 상업적 주재”란 다른 쪽 당사국의 국제해운 서비스 공급자가 지점을 설립하고 그들의 고객에게 해운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과 관련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2. 해상화물취급 서비스

터미널 운영자를 포함한 하역회사에 의하여 수행되는 활동으로서 항만인력단이 하역회사 또는 터미널 회사로부터 독립적으로 조직된 경우 항만노무자의 직접적 활동은 포함하지 않는다. 적용대상이 되는 활동은 다음의 조직 및 관리를 포함한다.

- 선박으로의/선박으로부터의 화물 선적/하역
- 화물의 고정/분리
- 선적 전 또는 하역 후 화물의 인수/인도 및 보호

3. 통관 서비스

이 서비스가 서비스 공급자의 주요 활동 또는 주요 활동의 일상적인 보조 활동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입, 수출 또는 화물의 통운송과 관련하여 다른 자의 통관절차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구성된 활동

4. 컨테이너 스테이션 및 창고 서비스

컨테이너의 적입/적출, 수리 및 선적에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위하여 컨테이너를 항만 지역 내에 보관하는 것으로 구성된 활동

5. 해운대리업 서비스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대리인으로서 일정한 지역 내에서 하나 이상의 해운선사 또는 해운회사의 영업상 이익을 대표하는 것으로 구성된 활동

- 견적부터 송장 작성까지 해상운송 및 관련 서비스의 마케팅 및 판매, 그리고 회사를 대신한 선하증권의 발행, 필요한 관련 서비스 취득 및 재판매, 서류준비, 그리고 사업정보의 제공
- 필요한 때, 선박 기항을 편성하거나 화물을 접수하는 회사를 대신한 업무수행

6. 해상화물운송주선 서비스

해상운송 및 관련 서비스의 취득, 선적서류 준비 및 사업정보 제공을 통하여 선적자를 대신하여 선적업무를 편성 및 점검하는 활동

7. 검수, 검량 및 감정 서비스

- 검수 서비스: 화물을 선적 및 하역하는 경우 그 화물의 개수를 계산하거나 인도 및 인수를 증명하는 것으로 구성된 활동
- 검량 서비스: 화물을 선적 및 하역하는 경우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계산하거나 증명하는 것으로 구성된 활동
- 감정 서비스: 선적화물 및 선박(부선을 포함한다)과 관련된 검증, 검사 및 조사로 구성된 활동

부속서 6-마
인도네시아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주해

1) 아래 약속의 목록(이하 “이 약속에 관한 양허표”라 한다)은 제 6.7 조에 따라 자유화된 서비스 분야와, 그러한 분야에서 한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되는 시장접근 및 내국민 대우 제한을 나타낸다. 이 약속에 관한 양허표는 다음의 요소로 구성된다.

가. 인도네시아가 약속한 분야 또는 하위 분야와 유보가 적용되는 자유화의 범위를 기재하는 첫 번째 열
나. 첫 번째 열에 기재된 분야 또는 하위 분야에서 제 6.5 조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 유보를 기술하는 두 번째 열
다. 첫 번째 열에 기재된 분야 또는 하위 분야에서 제 6.3 조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 유보를 기술하는 세 번째 열, 그리고
라. 제 6.3 조 및 제 6.5 조에 따른 양허표 기재사항은 아니나 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한 추가적 약속을 기술하는 네 번째 열

2) 제 6.7 조에 따라,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고 아래 분야별 열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분야 또는 하위 분야의 공급은 약속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 협정에 따른 어떠한 의무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3) 개별 분야 및 하위 분야를 확인함에 있어서, CPC 란 잠정 중앙상품분류(통계문서시리즈 M No.77, 국제 경제사회국, 유엔 통계사무소, 뉴욕, 1991)에서 사용되는 잠정 CPC 코드를 말한다. CPC 번호에 대하여 특정한 언급이 없는 경우, 해당 기재사항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 분야/하위 분야의 범위는 다음을 포함하여, 관련이 있고 적용 가능한 참조를 따를 것이다.

가. 금융서비스의 경우, 금융서비스에 관한 GATS 부속서를 참조할 것이다.
나. 항공 운송의 경우, 활동의 범위는 제 6.1 조를 따를 것이다. 또는
다. 2015 년 인도네시아표준산업분류(Klasifikasi Baku Lapangan Usaha Indonesia/KBLI).

4) CPC 번호 뒤의 이중 별표(**)는 명시된 서비스의 범위가 CPC 색인이 적용되는 전체 활동범위의 일부만을 구성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5) “FL”이 표기된 분야/하위 분야는 시장접근과 내국민 대우 열 모두, 또는 시장접근이나 내국민 대우 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에 대하여, 제 6.7 조제 7 항의 적용을 받는다. 각 열에 기재된 래칫(FL)은 형태 1, 2 및 3 에만 적용되며, 자연인의 주재(형태 4)에 의한 서비스 공급에 대한 조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6) “MFN”이 표기된 분야/하위 분야는 시장접근과 내국민 대우 열 모두, 또는 시장접근이나 내국민 대우 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에 대하여, 제 6.4 조제 1 항의 적용을 받는다. 각 열에 기재된 MFN 은 형태 1, 2 및 3 에만 적용되며, 자연인의 주재(형태 4)에 의한 서비스 공급에 대한 조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7) 이 양허표상 인도네시아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 국민의 주재를 통한 그 다른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서비스 공급에 대한 약속은 자연인의 범주에 대한 약속과 함께 이해되며, 체류 기간을 포함한 입국 및 일시 체류에 대한 각 조건 및 제한은 부록 6-나-2 와 부록 6-나-3 에 명시된 대로이다. 이러한 경우, 부록 6-나-2 와 부록 6-나-3 에 명시된 모든 조건과 제한도 적용된다.

8) 이 약속에 관한 양허표는 다음을 포함하지 않는다.

가. 제 6.3 조 및 제 6.5 조의 의미에서 시장접근 또는 내국민 대우 제한을 구성하지 않는 경우의 자격 요건 및 절차, 기술 표준, 그리고 면허 요건 및 절차와 관련된 조치. 그러한 조치(예: 면허 취득 필요, 보편적 서비스 의무, 규제 분야에서 자격 인정 취득 필요, 언어 시험을 포함한 특정 시험 통과 필요)는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어떠한 경우이든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된다. 그리고

나. 국경 간 서비스 공급을 위한 인도네시아 영역 내 상업적 주재의 비차별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9) 분야별 약속 및 제한에 대한 기재는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지침(WTO 문서 S/L/92, 2001 년 3 월 28 일)을 따른다. 서비스무역 장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조치들은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따라서 양허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0) 지리적 확장성이란 분야 부분에 명시된 조건의 적용을 받는 약속의 지리적 범위에 대한 제한과 관련된 조치를 말한다.

11) 분야 부분에서 “제한 없음”은 특정 분야에서 제한이나 조건이 없는 상태로 이해되어야 한다. 다만, 적용 가능한 경우 양허표의 수평적 분야 및 일반 조건에 규정된 모든 관련 제한은 여전히 적용될 것이다.

12) 분야 부분에서 “다음의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은 기재사항에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는 한, 수평적 분야에 규정된 수평적 제한 및 조건과 분야별 제한의 조합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13) “약속 안함”은 특정 의무와 관련하여 특정 분야에서의 약속이 없는 상태로 이해되어야 한다.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I. 수평적 양허			
각 약속 분야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양허표에 포함된 모든 분야	3) 달리 언급되어 있지 않는 한, 외국 서비스 공급자의 상업적 주재는 합작투자 및/또는 대표 사무소의 형태임. 합작투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임. a) 유한책임회사(Perseroan Terbatas/PT) 의 형태이어야 할 것임. b) 외국인 파트너는 유한책임회사 (Perseroan Terbatas/PT) 자본지분의 49 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음. 1), 2), 3), 4)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의	3) 비거주 납세자가 특히 다음의 소득을 인도네시아를 출처로 취득하는 경우 20 퍼센트의 원천징수세를 납부해야 할 것임. a) 이자 b) 로열티 c) 배당금, 또는 d) 인도네시아에서 수행되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 토지 취득 1960 년 토지법(Undang-Undang Pokok Agraria) 제 5 호는 외국인(법인 및 자연인)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함. 다만, 합작투자기업은 토지 사용권(Hak Guna Usaha) 및 건축권(Hak Guna Bangunan)을 보유할 수 있으며, 토지 및 자산을 임대/리스할 수 있음. 인도네시아가 GATS 에 따라 약속한 분야 및 하위 분야를 제외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상업적 주재를 통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합작투자는 100 억 인도네시아 루피아[1] 이상의 총 투자 가치를(토지 및 건물 제외) 소유해야 함. 1), 2), 3), 4)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의	

[1] 기재된 가치는 화폐의 시간 가치를 저해하지 않는다.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필수적인 안보 이익의 보호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함. 1), 2), 3), 4) GATS 에서 약속한 수준을 제외하고, 영주권자를 규율하는 모든 조치는 약속 안함.	필수적인 안보 이익의 보호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함. 1), 2), 3), 4) 내국민 대우는 개별 사안별로 고려하되 투자 이행 면허/허가[2] 의 주(provincial) 수준[3] 에서의 발행과 관련된 모든 조치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1), 2), 3), 4) GATS 에서 약속한 수준을 제외하고, 영주권자를 규율하는 모든 조치는 약속 안함.	

[2] 예시적 목적상, 이는 위치 허가 또는 건축 허가를 포함할 수 있다.

[3] 이 수평적 양허의 목적상, '주 수준' 이란 지역 수준의 정부를 말한다.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정의: “공동 운영”: 공동 운영은 인도네시아 법에 따라 새로운 법정 기구를 설립하지 않고 하나 또는 다수의 프로젝트/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나 또는 다수의 외국 및 인도네시아 기업 간에 체결되는 일시적 성격의 약속임. “합작투자기업”: 합작투자기업은 외국 자본과 인도네시아(국내) 자본 간의 협력 형태로, 인도네시아 법에 따라 조직되고 인도네시아에 주소를 둔 법적 실체임. “계약 경영”: 계약 경영은 인도네시아(국내) 자본 및 외국 자본 간의 일시적 성격의 경영 협력 형태로 인도네시아 법에 따라 체결된 계약임. “대표 사무소”: 대표 사무소는 인도네시아 밖에 위치한 외국 기업 또는 합작투자회사에 의하여 대표로 임명된 하나 또는 다수의 외국 또는 인도네시아 시민이 이끄는 사무소로 다음의 목적을 지님. a. 그 기업의 사업 또는 그 계열 기업을 담당함. 및/또는 b. 인도네시아 및/또는 그 밖의 국가들 중 하나에 위치한 외국자본투자기업들의 설립 및 확장을 준비함.					
Ⅱ. 분야별 구체적 약속					
사업 서비스					
A. 전문직 서비스					
법률 서비스(CPC 861) – 외국법(자국법 및/또는 사업 및 중재에 관한 국제법) 자문 서비스로 한정함. – 자문 서비스는 다음을 포함하지 않음. • 모든 상황에서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기술 전문가로서 다음의 외국 변호사 외에는 약속 안함. a) 인도네시아 법무법인의	FL MFN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다음의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기술 전문가로서 다음의 외국 변호사. a) 인도네시아 법무법인의 피고용인 또는 전문가로서만 허용된 외국 변호사.	FL MFN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인도네시아 법정 내 법적 대리인 및/또는 법적 절차 수행함. 그리고 • 공증 활동.	피고용인 또는 외국법 및/또는 사업 및 중재에 관한 국제법 전문가로서만 근무 또는 참여가 허용된 외국 변호사. 그리고 b) 정부로부터의 허가 및 변호사 협회로부터의 추천 대상인 외국 변호사.	b) 법률 지식 및 전문적인 역량을 인도네시아인 변호사에게 전수할 의무가 있는 외국 변호사. 그리고 c) 매월 최소 10 시간 동안 교육 기관, 법률 연구 기관 또는 정부 기관에 무보수로 지식을 전수할 의무가 있는 외국 변호사. – 인도네시아 법무법인에서 외국 변호사의 보유 지분은 20 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법무법인당 외국 변호사의 수는 5 명을 초과할 수 없음.	
건축 서비스 (CPC 867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상업적 주재는 다음의 형태로만 허용된다는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a) 인도네시아 주재 대표 사무소 설립을 통한 공동 운영. 대표 사무소 면허는 3 년간 유효하며 연장 가능함. 또는 b) 외국인 보유 자본지분 비율은 51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합작투자 요건.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및 대표 사무소의 최고 경영인은 인도네시아인이라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다음의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a) 외국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면허 수수료 요건은 인도네시아 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되는 요건과 다를 수 있음. b) 인도네시아 현지 파트너는 빅(Big) 자격을 보유함. c) 외국 서비스 공급자는 고위험, 고기술 및/또는 고자본의 서비스만 공급함. 그리고 d) 대표 사무소 최고 경영인은 인도네시아인임.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및 대표 사무소의 최고 경영인은 인도네시아인이라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엔지니어링 서비스 (CPC 8672, 다만 CPC 86721, 86725, 86726 는 제외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상업적 주재는 다음의 형태로만 허용된다는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a) 인도네시아 주재 대표 사무소 설립을 통한 공동 운영. 대표 사무소 면허는 3 년간 유효하며 연장 가능함. 또는 b) 외국인 보유 자본지분 비율은 51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합작투자 요건.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및 대표 사무소의 최고 경영인은 인도네시아인이라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다음의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a) 외국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면허 수수료 요건은 인도네시아 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되는 요건과 다를 수 있음. b) 인도네시아 현지 파트너는 빅(Big) 자격을 보유함. c) 외국 서비스 공급자는 고위험, 고기술 및/또는 고자본의 서비스만 공급함. 그리고 d) 대표 사무소 최고 경영인은 인도네시아인임.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및 대표 사무소의 최고 경영인은 인도네시아인이라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엔지니어링 관련 상담 및 자문 서비스 (CPC 8672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상업적 주재는 인도네시아 주재 대표 사무소 설립을 통한 공동 운영의 형태로만 허용된다는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및 대표 사무소의 최고 경영인은 인도네시아인이라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공동 운영에 참여한 인도네시아인은 인도네시아 컨설턴트 협회의 회원이어야 한다는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및 대표 사무소의 최고 경영인은 인도네시아인이라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제철, 오일 및 가스, 가스터빈 산업만을 위한 산업 프로세스 및 생산을 위한 엔지니어링 설계 서비스 (CPC 86725**) - 주형 및 형판(압력 주조, 단조, 스탬핑 등), 그리고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합작투자 요건 외에는 제한 없음.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합작투자에 참여한 인도네시아인은 인도네시아 컨설턴트 협회의 회원이어야 한다는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 분말 야금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 (CPC 867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상업적 주재는 다음의 형태로만 허용된다는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a) 인도네시아 주재 대표 사무소 설립을 통한 공동 운영. 대표 사무소 면허는 3 년간 유효하며 연장 가능함. 또는 b) 외국인 보유 자본지분 비율은 51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합작투자 요건.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및 대표 사무소의 최고 경영인은 인도네시아인이라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다음의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a) 외국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면허 수수료 요건은 인도네시아 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되는 요건과 다를 수 있음. b) 인도네시아 현지 파트너는 빅(Big) 자격을 보유함. c) 외국 서비스 공급자는 고위험, 고기술 및/또는 고자본의 서비스만 공급함. 그리고 d) 대표 사무소 최고 경영인은 인도네시아인임.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및 대표 사무소의 최고 경영인은 인도네시아인이라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도시 계획 서비스 (CPC 8674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상업적 주재는 다음의 형태로만 허용된다는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a) 인도네시아 주재 대표 사무소 설립을 통한 공동 운영. 대표 사무소 면허는 3 년간 유효하며 연장 가능함. 또는 b) 외국인 보유 자본지분 비율은 51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합작투자 요건.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및 대표 사무소의 최고 경영인은 인도네시아인이라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다음의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a) 외국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면허 수수료 요건은 인도네시아 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되는 요건과 다를 수 있음. b) 인도네시아 현지 파트너는 빅(Big) 자격을 보유함. c) 외국 서비스 공급자는 고위험, 고기술 및/또는 고자본의 서비스만 공급함. 그리고 d) 대표 사무소 최고 경영인은 인도네시아인임.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및 대표 사무소의 최고 경영인은 인도네시아인이라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경관건축 서비스 (CPC 86742)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상업적 주재는 다음의 형태로만 허용된다는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a) 인도네시아 주재 대표 사무소 설립을 통한 공동 운영. 또는 b) 외국인 보유 자본지분 비율은 51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합작투자 요건. 4)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다음의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a) 외국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면허 수수료 요건은 인도네시아 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되는 요건과 다를 수 있음. b) 인도네시아 현지 파트너는 빅(Big) 자격을 보유함. c) 외국 서비스 공급자는 고위험, 고기술 및/또는 고자본의 서비스만 공급함. 그리고 d) 대표 사무소의 최고 경영인은 인도네시아인임. 4) 약속 안함.	
A 급 및 B 급으로 설립·통합된 등록 의료기관에서의 전문 의료 서비스 클리닉 (CPC 93122)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외국인 보유 자본지분 비율은 51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합작투자 요건 외에는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다음의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a) 자격을 갖춘 인도네시아인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만 외국 보건 전문인력을 고용할 수 있음. b) 전문 의료 서비스의 경우 A 급 또는 B 급 병원 소유의 부지에, 또는 하위 전문 의료 서비스의 경우 B 급 병원 소유의 부지에 설립되어야 함. 그리고 c) 경영은 병원과 통합됨. 4)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A 급 및 B 급으로 설립·통합된 등록 의료기관에서의 전문 치과 서비스 클리닉 (CPC 93123)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외국인 보유 자본지분 비율은 51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합작투자 요건 외에는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다음의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a) 자격을 갖춘 인도네시아인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만 외국 보건 전문인력을 고용할 수 있음. b) 전문 치과 서비스의 경우 A 급 또는 B 급 병원 소유의 부지에, 또는 하위 전문 치과 서비스의 경우 B 급 병원 소유의 부지에 설립되어야 함. 그리고 c) 경영은 병원과 통합됨. 4) 약속 안함.	
A 급 및 B 급으로 설립·통합된 등록 기관에서의 전문 요양 서비스 (CPC 93191)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외국인 보유 자본지분 비율은 51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합작투자 요건 외에는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다음의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a) 보건 전문인력은 인도네시아인임. 그리고 b) 마나도 및 마카사르를 제외한 동인도네시아 지역의 주도(州都)로 설립이 제한됨. 4) 약속 안함.	
B.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컴퓨터 하드웨어 설치와 관련된 자문 서비스 (CPC 841)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인도네시아 주재 대표 사무소를 통한 공동 운영 요건 외에는 제한 없음.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이사, 기술 전문가/자문가 및 상용 방문자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공동 운영에 참여한 인도네시아인은 인도네시아 컨설턴트 협회의 회원이어야 한다는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이사, 기술 전문가/자문가 및 상용 방문자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CPC 84210 만을 위한 소프트웨어 시행 서비스 (CPC 84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다음의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a) 인도네시아인 개인 또는 인도네시아인 지배 회사 또는 그 모두에 의한 유한 책임회사(Perseroan Terbatas/PT)의 형태로 현지 합작투자기업을 통해야만 함. 그리고 b) 자본가치 1 천억 루피아 이상, 그리고 투자가치 150 억 루피아 이상을 보유한 외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됨. 4) 부록 6-나-2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이사, 기술 전문가/자문가 및 상용 방문자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합작투자에 참여한 인도네시아인은 인도네시아 컨설턴트 협회의 회원이어야 한다는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이사, 기술 전문가/자문가 및 상용 방문자 외에는 약속 안함.	
고급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만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CPC 844)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다음의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a) 인도네시아인 개인 또는 인도네시아인 지배 회사 또는 그 모두에 의한 유한 책임회사(Perseroan Terbatas/PT)의 형태로 현지 합작투자기업을 통해야만 함. 그리고 b) 자본가치 1 천억 루피아 이상, 그리고 투자가치 150 억 루피아 이상을 보유한 외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됨.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이사, 기술 전문가/자문가 및 상용 방문자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다음의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a) 합작투자의 현지 참여자는 인도네시아 컨설턴트 협회의 회원이어야 함. 그리고 b) 데이터 현지 소유 형태의 합작투자.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이사, 기술 전문가/자문가 및 상용 방문자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컴퓨터를 포함하는 사무기계류 및 기기에 대한 유지 및 보수 서비스 (CPC 845)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이사, 기술 전문가/자문가 및 상용 방문자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이사, 기술 전문가/자문가 및 상용 방문자 외에는 약속 안함.	
C. 연구개발 서비스			
학제간 연구개발 (CPC 853, 산업 활동으로 한정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합작투자 요건 외에는 제한 없음.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이사, 기술 전문가/자문가 및 상용 방문자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다음의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a) 합작투자에 참여한 인도네시아인은 인도네시아 컨설턴트 협회의 회원이어야 함. b) 외국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면허 수수료 요건은 인도네시아 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되는 요건과 다를 수 있음. c) 인도네시아 측에서는 인도네시아 내 인도네시아 연구기관(고등 교육, 정부, 기업, 비영리 사설) 소속 연구원이 참여해야 함. 그리고 d) 외국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면허 부여시 신청 당시의 적용 가능한 법과 규정에 따라 연구의 목표, 영역 및 기간에 대한 평가의 적용을 받을 것임. 4) 부록 6-나-2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이사, 기술 전문가/자문가 및 상용 방문자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외국어만을 위한 언어학과 언어에 대한 연구 및 실험개발 서비스 (CPC 85204)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인도네시아 주재 대표 사무소를 통한 공동 운영 요건 외에는 제한 없음.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이사, 기술 전문가/자문가 및 상용 방문자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다음의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a) 외국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면허 수수료 요건은 인도네시아 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되는 요건과 다를 수 있음. b) 인도네시아 주재 고등 교육 기관, 특히 PTN-BH(Perguruan Tinggi Negeri Berbadan Hukum)와의 파트너십 수립이 요구됨. 그리고 c) 외국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면허 부여시 신청 당시의 적용 가능한 법과 규정에 따라 연구의 목표, 영역 및 기간에 대한 평가의 적용을 받을 것임.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이사, 기술 전문가/자문가 및 상용 방문자 외에는 약속 안함.	
E. 운영자를 동반하지 않는 임대 및 리스 서비스			
승무원 없는 선박의 임대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인 보유 자본지분 비율은 6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합작투자 요건 외에는 제한 없음.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비디오 테이프와 관련된 임대 서비스(CPC 83202) 만을 위한 그 밖의 서비스 (CPC 832)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외국인 보유 자본지분 비율은 51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합작투자 요건 외에는 제한 없음.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인도네시아 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되는 요건과 다를 수 있는 외국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면허 수수료 요건 외에는 제한 없음.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F. 그 밖의 사업 서비스			
다음에 대한 경영 자문 서비스(CPC 865) – 일반 경영 자문 서비스(CPC 86501) – 마케팅 경영 자문 서비스(CPC 86503), 그리고 – 인적 자원 관리 자문 서비스(CPC 86504)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인 보유 자본지분 비율은 51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합작투자 요건 외에는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건설 분야를 제외한 프로젝트 경영 서비스(CPC 86601)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외국인 보유 자본지분 비율은 51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합작투자 요건 외에는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공동 운영에 참여한 인도네시아인은 인도네시아 컨설턴트 협회의 회원이어야 함. 4) 약속 안함.	
지진 데이터 획득만을 위한 지질학 및 지구물리학 서비스 a. 인도네시아 에너지 서비스 분류 제안서의 다음 조항에 해당함. 지진데이터 획득(1A.1.4.1.1.), 그리고 b. W 120 에 따르면 지진 데이터 획득은 지각조사 서비스에 관한 사업 서비스(CPC 86752)에 해당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인도네시아 주재 대표 사무소를 통한 공동 운영 외에는 제한 없음. 4) 다음의 기능을 제외하고,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이사, 기술 전문가/자문가 및 상용 방문자 외에는 약속 안함. · 보건 및 안전 환경(HSE). · 조달, 물자, 군수품에 대한 공급망 관리. 그리고 · 조사 활동을 포함한 품질 관리.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다음의 기능을 제외하고,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이사, 기술 전문가/자문가 및 상용 방문자 외에는 약속 안함. · 보건 및 안전 환경(HSE). · 조달, 물자, 군수품에 대한 공급망 관리. 그리고 · 조사 활동을 포함한 품질 관리.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기술적 진단 서비스(CPC 86764)만을 위한 기술적 검사 및 분석 서비스 (CPC 8676)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합작투자 요건 외에는 제한 없음.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이사, 기술 전문가/자문가 및 상용 방문자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인도네시아 현지 파트너는 인도네시아 컨설턴트 협회의 회원이어야 한다는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이사, 기술 전문가/자문가 및 상용 방문자 외에는 약속 안함.	
의료기기 검사 기관 (CPC 86769 의료기기 검사 기관에 특정된 그 밖의 기술적 검사 및 분석 서비스)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상업적 주재는 다음의 형태로만 허용된다는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a) 인도네시아 주재 대표 사무소 설립을 통한 공동 운영, 또는 b) 외국인 보유 자본지분 비율은 67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합작투자 요건.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및 대표 사무소의 최고 경영인은 인도네시아인이라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다음의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a) 외국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면허 수수료 요건은 인도네시아 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되는 요건과 다를 수 있음. b) 인도네시아 현지 파트너는 빅(Big) 자격을 보유함. c) 외국 서비스 공급자는 고위험, 고기술 및/또는 고자본의 서비스만 공급함. 그리고 d) 대표 사무소 최고 경영인은 인도네시아인임.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및 대표 사무소의 최고 경영인은 인도네시아인이라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국제회의 서비스(MICE) (CPC 74710)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합작투자 요건 외에는 제한 없음.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합작투자 요건 외에는 제한 없음.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절도 조사 서비스(CPC 87301)만을 위한 조사 및 경비(CPC 873)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외국인 보유 자본지분 비율은 51 퍼센트를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인도네시아 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되는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초과하지 않는다는 합작투자 요건 외에는 제한 없음.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요건과 다를 수 있는 외국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면허 수수료 요건 외에는 제한 없음.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사진의 복원, 복사, 수정 서비스(CPC 87507)만을 위한 사진 서비스(CPC 875)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파푸아 및 몰루카로 한정되는 합작투자 요건 외에는 제한 없음.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합작투자 요건 외에는 제한 없음.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제조업 부수 서비스 (CPC 884, 다만 88411, 88412, 88421, 88422, 88423, 88430, 88442, 88460, 88491, 88492 는 제외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인 보유 자본지분 비율은 33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합작투자 요건 외에는 제한 없음.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이사, 기술 전문가/자문가 및 상용 방문자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공동 운영에 참여한 인도네시아인은 인도네시아 컨설턴트 협회의 회원이어야 한다는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이사, 기술 전문가/자문가 및 상용 방문자 외에는 약속 안함.	
금속 제품, 기계 및 장비 제조 부수 서비스 (CPC 885)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상업적 주재는 다음의 형태로만 허용된다는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a) 인도네시아 주재 대표 사무소를 통한 공동 운영. 그리고 b) 최소투자자본 요건이 적용됨.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이사, 기술 전문가/자문가 및 상용 방문자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공동 운영에 참여한 인도네시아인은 인도네시아 컨설턴트 협회의 회원이어야 한다는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이사, 기술 전문가/자문가 및 상용 방문자 외에는 약속 안함.	
발전소 및 발전망 운영 관련 자문 서비스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 배분 부수 서비스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외국인 보유 자본지분 비율은 51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합작투자 요건 외에는 제한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CPC 887)	없음.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장비의 유지 및 보수(선박, 항공기 또는 그 밖의 운송장비는 포함되지 않음) (CPC 8861+8866)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인 보유 자본지분 비율은 33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합작투자 요건 외에는 제한 없음.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이사, 기술 전문가/자문가 및 상용 방문자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합작투자에 참여한 인도네시아인은 인도네시아 컨설턴트 협회 회원이어야 한다는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이사, 기술 전문가/자문가 및 상용 방문자 외에는 약속 안함.	
포장 서비스 (CPC 876)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외국인 보유 자본지분 비율은 7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합작투자 요건 외에는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합작투자는 동인도네시아로 한정한다는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그 밖의 전화 응대 서비스 (CPC 87903)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외국인 보유 자본지분 비율은 51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합작투자 요건 외에는 제한 없음.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인도네시아 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되는 요건과 다를 수 있는 외국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면허 수수료 요건 외에는 제한 없음.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시장조사 서비스 (CPC 8640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인도네시아 주재 대표 사무소를 통한 공동 운영 요건 외에는 제한 없음.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이사, 기술 전문가/자문가 및 상용 방문자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공동 운영에 참여한 인도네시아인은 인도네시아 컨설턴트 협회 회원이어야 한다는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이사, 기술 전문가/자문가 및 상용 방문자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A. 우편 서비스					
우편 서비스 (CPC 751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합작투자 요건 외에는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FL MFN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국제공항 및/또는 항만을 보유해 온 주도(州都) 내에만 설립이 허용된다는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지분의 대부분을 국내 우편 서비스 공급자가 보유한 합작투자를 통하여 하나의 국내 우편 서비스 공급자와 협력함. 다만, 국내 우편 서비스 공급자의 보유 지분은 외국 자연인 또는 국내 우편 서비스 공급자와 제휴한 외국 법인에 의하여 소유되지 않음. 4) 약속 안함.	FL MFN	
B. 쿠리어 서비스					
쿠리어 서비스 (CPC 751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합작투자 요건 외에는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FL MFN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국제공항 및/또는 항만을 보유해 온 주도(州都) 내에만 설립이 허용된다는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FL MFN	
C. 통신 서비스					
현지 서비스 ◦ 공중교환 전화 서비스(CPC 7521) 및 ◦ 원격 회의 서비스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인 보유 자본지분 비율은 3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합작투자 요건 외에는 제한 없음.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CPC 75292)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장거리 ◦ 공중교환 전화 서비스(CPC 7521) 및 ◦ 원격 회의 서비스 (CPC 7529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인 보유 자본지분 비율은 3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합작투자 요건 외에는 제한 없음.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특정한 주 및/또는 필요한 지역에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국제 서비스 ◦ 공중교환 전화 서비스 (CPC 7521) 및 ◦ 원격 회의 서비스(CPC 7529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인 보유 자본지분 비율은 3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합작투자 요건 외에는 제한 없음.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회선교환 공중 데이터 네트워크 서비스(CPC 7523**) ◦ 현지 ◦ 국제 ◦ 장거리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인 보유 자본지분 비율은 51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합작투자 요건 외에는 제한 없음.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패킷교환 공중 데이터 네트워크 서비스(CPC 7523**) ◦ X. 25 ◦ 프레임 릴레이 ◦ 현지 ◦ 장거리 ◦ 국제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인 보유 자본지분 비율은 51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합작투자 요건 외에는 제한 없음.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텔렉스 서비스	1) 제한 없음.	1) 제한 없음.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CPC 7523**) 전신 서비스 (CPC 7522) 모사전송 (CPC 7521** + 7529**)	2) 제한 없음. 3) 외국인 보유 자본지분 비율은 51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합작투자 요건 외에는 제한 없음.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민간전용회선 서비스 (CPC 7522** + 752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인 보유 자본지분 비율은 51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합작투자 요건 외에는 제한 없음.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관리자, 기술 전문가/자문가 및 상용 방문자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관리자, 기술 전문가/자문가 및 상용 방문자 외에는 약속 안함.	
전용망 서비스 (CPC 7522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인 보유 자본지분 비율은 51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합작투자 요건 외에는 제한 없음.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다음의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a) 서비스는 특정한 주 및/또는 필요한 지역에 제공됨. b) 서비스는 폐쇄 이용자 그룹에만 제공됨. 그리고 c) 망 제공자는 다른 망으로의 연결이 금지됨.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온라인 정보 및 데이터베이스 검색 (CPC 752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인 보유 자본지분 비율은 51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합작투자 요건 외에는 제한 없음.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합작투자 요건 외에는 제한 없음.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관리자, 기술 전문가/자문가 및 상용 방문자 외에는 약속 안함.	하는 관리자, 기술 전문가/자문가 및 상용 방문자 외에는 약속 안함.	
전자적 데이터 교환(EDI) (CPC 752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총 외국인 지분참여가 70 퍼센트까지 허용된다는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다만, 49 퍼센트까지는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하고 나머지 비율은 그 밖의 메커니즘을 통해야 함.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저장 및 전송, 저장 및 검색을 포함한 고도/부가가치 모사전송 서비스 (CPC 752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인 보유 자본지분 비율은 51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합작투자 요건 외에는 제한 없음.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합작투자 요건 외에는 제한 없음.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온라인 정보 및/또는 데이터처리(거래 처리 포함) (CPC 84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인 보유 자본지분 비율은 51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합작투자 요건 외에는 제한 없음.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합작투자 요건 외에는 제한 없음.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국내 서비스 이동 전화 서비스 (CPC 75213) 인터넷 접속 서비스와 지방 및 전국 무선호출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인 보유 자본지분 비율은 3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합작투자 요건 외에는 제한 없음.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합작투자 요건 외에는 제한 없음.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서비스(CPC 75291) 공중전화 서비스/ 음성메일 서비스 (CPC 7523) 전자메일 서비스 (CPC 75232)			
컴퓨터 시간 공유 서비스 (CPC 84330) 비디오텍스트 서비스 (CPC 75229) 전자메일함 (CPC 75232) 파일전송 서비스 (CPC 75299) 가정용 원격측정 경보 (CPC 75299)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CPC 75299) 경영정보 서비스 (CPC 7529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인 보유 자본지분 비율은 3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합작투자 요건 외에는 제한 없음.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다음의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a) 서비스는 특정한 주 및/또는 필요한 지역에 제공됨. b) 서비스는 폐쇄 이용자 그룹에만 제공됨. 그리고 c) 망 제공자는 다른 망으로의 연결이 금지됨.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D. 시청각 서비스			
a) 영화 및 비디오 테이프 제작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CPC 9611)	3) 외국인 보유 자본지분 비율은 51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합작투자 요건 외에는 제한 없음.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3) 합작투자 요건 및 외국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면허 수수료 요건은 인도네시아 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되는 요건과 다를 수 있다는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영화 및 비디오테이프 배급 서비스 (CPC 961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인 보유 자본지분 비율은 51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합작투자 요건 외에는 제한 없음.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다음의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a) 영화의 배급은 자바섬 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해야 할 것임. 그리고 b) 외국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면허 수수료 요건은 인도네시아 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되는 요건과 다를 수 있음.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c) 영화 상영 서비스 (CPC 9612)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외국인 보유 자본지분 비율은 51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합작투자 요건 외에는 제한 없음.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합작투자 요건 및 영화의 배급은 자바섬 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라는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d) 녹음 (KBLI 59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인 보유 자본지분 비율은 51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합작투자 요건 외에는 제한 없음.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다음의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a) 합작투자 요건. 그리고 b) 외국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면허 수수료 요건은 인도네시아 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되는 요건과 다를 수 있음.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A. 빌딩 관련 일반 건설업				
일층 및 이층 주택(CPC 51210)을 제외한 빌딩 건설업 (CPC 512)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상업적 주재는 다음의 형태로만 허용된다는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a) 인도네시아 주재 대표 사무소 설립을 통한 공동 운영. 또는 b) 외국인 보유 자본지분 비율은 67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합작투자 요건.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및 대표 사무소의 최고 경영인은 인도네시아인이라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모든 조건 및 제한은 이 협정의 발효 시점에 존재하는 조치에 근거해야 한다는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4] 적용 가능한 경우 서비스무역 장 제 6.7 조제 7 항은 위에서 언급된 모든 조치의 개정에 적용됨.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및 대표 사무소의 최고 경영인은 인도네시아인이라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FL MFN	
B. 토목 관련 일반 건설업				

[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양허표에 언급된 조치는 건설 서비스에 대한 2017년 법률 제2호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토목 관련 건설업 (CPC 513)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상업적 주재는 다음의 형태로만 허용된다는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a) 인도네시아 주재 대표 사무소 설립을 통한 공동 운영. 또는 b) 외국인 보유 자본지분 비율은 67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합작투자 요건. 4) 부록 6-나-2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및 대표 사무소의 최고 경영인은 인도네시아인이라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모든 조건 및 제한은 이 협정의 발효 시점에 존재하는 조치에 근거해야 한다는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5] 적용 가능한 경우 서비스무역 장 제 6.7 조제 7 항은 위에서 언급된 모든 조치의 개정에 적용됨.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및 대표 사무소의 최고 경영인은 인도네시아인이라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FL MFN	
C. 설치 및 조립				
조립식 건축물의 조립 및 시공 (CPC 514)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상업적 주재는 다음의 형태로만 허용된다는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a) 인도네시아 주재 대표 사무소 설립을 통한 공동 운영. 또는 b) 외국인 보유 자본지분 비율은 67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합작투자 요건.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및 대표 사무소의 최고 경영인은 인도네시아인이라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모든 조건 및 제한은 이 협정의 발효 시점에 존재하는 조치에 근거해야 한다는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6] 적용 가능한 경우 서비스무역 장 제 6.7 조제 7 항은 위에서 언급된 모든 조치의 개정에 적용됨.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및 대표 사무소의 최고 경영인은 인도네시아인이라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FL MFN	

[5]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양허표에 언급된 조치는 건설 서비스에 대한 2017년 법률 제2호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6]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양허표에 언급된 조치는 건설 서비스에 대한 2017년 법률 제2호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설치 작업 (CPC 516)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상업적 주재는 다음의 형태로만 허용된다는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a) 인도네시아 주재 대표 사무소 설립을 통한 공동 운영. 또는 b) 외국인 보유 자본지분 비율은 67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합작투자 요건.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및 대표 사무소의 최고 경영인은 인도네시아인이라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모든 조건 및 제한은 이 협정의 발효 시점에 존재하는 조치에 근거해야 한다는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7] 적용 가능한 경우 서비스무역 장 제 6.7 조제 7 항은 위에서 언급된 모든 조치의 개정에 적용됨.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및 대표 사무소의 최고 경영인은 인도네시아인이라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FL MFN	
D. 빌딩 완성 및 마무리 작업				
빌딩 완성 및 마무리 작업 (CPC 517)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상업적 주재는 다음의 형태로만 허용된다는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a) 인도네시아 주재 대표 사무소 설립을 통한 공동 운영. 또는 b) 외국인 보유 자본지분 비율은 67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합작투자 요건.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및 대표 사무소의 최고 경영인은 인도네시아인이라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모든 조건 및 제한은 이 협정의 발효 시점에 존재하는 조치에 근거해야 한다는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8] 적용 가능한 경우 서비스무역 장 제 6.7 조제 7 항은 위에서 언급된 모든 조치의 개정에 적용됨.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및 대표 사무소의 최고 경영인은 인도네시아인이라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FL MFN	

[7]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양허표에 언급된 조치는 건설 서비스에 대한 2017년 법률 제2호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8]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양허표에 언급된 조치는 건설 서비스에 대한 2017년 법률 제2호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E. 기타				
현장 조사 작업(CPC 51110)과 현장 조성 및 정리 작업(CPC 51113)을 제외한 건설 현장에서의 사전 시공 작업 (CPC 511)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상업적 주재는 다음의 형태로만 허용된다는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a) 인도네시아 주재 대표 사무소 설립을 통한 공동 운영. 또는 b) 외국인 보유 자본지분 비율은 67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합작투자 요건.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및 대표 사무소의 최고 경영인은 인도네시아인이라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모든 조건 및 제한은 이 협정의 발효 시점에 존재하는 조치에 근거해야 한다는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9] 적용 가능한 경우 서비스무역 장 제 6.7 조제 7 항은 위에서 언급된 모든 조치의 개정에 적용됨.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및 대표 사무소의 최고 경영인은 인도네시아인이라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FL MFN	
특별 트레이드 건설 (CPC 515)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상업적 주재는 다음의 형태로만 허용된다는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a) 인도네시아 주재 대표 사무소 설립을 통한 공동 운영. 또는 b) 외국인 보유 자본지분 비율은 67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합작투자 요건.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및 대표 사무소의 최고 경영인은 인도네시아인이라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모든 조건 및 제한은 이 협정의 발효 시점에 존재하는 조치에 근거해야 한다는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10] 적용 가능한 경우 서비스무역 장 제 6.7 조제 7 항은 위에서 언급된 모든 조치의 개정에 적용됨.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및 대표 사무소의 최고 경영인은 인도네시아인이라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FL MFN	

[9]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양허표에 언급된 조치는 건설 서비스에 대한 2017년 법률 제2호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10]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양허표에 언급된 조치는 건설 서비스에 대한 2017년 법률 제2호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운영자를 동반하는 건축이나 토목 공사의 건설 또는 해체용 장비와 관련된 임대 서비스 (CPC 518)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상업적 주재는 다음의 형태로만 허용된다는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a) 인도네시아 주재 대표 사무소 설립을 통한 공동 운영. 또는 b) 외국인 보유 자본지분 비율은 67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합작투자 요건.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및 대표 사무소의 최고 경영인은 인도네시아인이라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모든 조건 및 제한은 이 협정의 발효 시점에 존재하는 조치에 근거해야 한다는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11] 적용 가능한 경우 서비스무역 장 제 6.7 조제 7 항은 위에서 언급된 모든 조치의 개정에 적용됨.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및 대표 사무소의 최고 경영인은 인도네시아인이라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FL MFN	
유통 서비스				
B. 도매 서비스				
최소 면적 5,000m^2 이상에서의 식음료 및 담배 도매 서비스 (CPC 6222) 최소 면적 5,000m^2 이상에서의 섬유, 의류 및 신발 도매 서비스 (CPC 6223)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외국인 보유 자본지분 비율은 67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합작투자 요건 외에는 제한 없음.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다음의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a) 외국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면허 수수료 요건은 인도네시아인 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되는 요건과 다를 수 있음. b) 상호 필요, 상호 강화 및 상호 호혜의 원칙을 적절히 고려하여, 연수 및 개발과 함께 매년 공급자와 소매업자로서 최소 100 개의 인도네시아 중소기업과 협력할 의무를 지님. c) 인도네시아 무역 기업을 대리인, 단독 대리인, 유통업자 또는 단독 유통업자로 지정하도록 요구됨.		

[1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양허표에 언급된 조치는 건설 서비스에 대한 2017년 법률 제2호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d) 칼리만탄, 술라웨시, 누사 탱가라, 말루쿠 및 파푸아 섬에서만 영업이 허용됨. 그리고 e) 주도(州都) 외곽에 위치해야 함.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C. 소매 서비스			
최소 면적 1,200m^2 이상에서의 빵 및 과자류 소매 서비스 (CPC 63105) 최소 면적 2,000m^2 이상에서의 섬유, 의류, 신발 및 가죽 제품 소매 서비스 (CPC 6322)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외국인 보유 자본지분 비율은 67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합작투자 요건 외에는 제한 없음.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다음의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a) 외국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면허 수수료 요건은 인도네시아인 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되는 요건과 다를 수 있음. b) 상호 필요, 상호 강화 및 상호 호혜의 원칙을 적절히 고려하여, 연수 및 개발과 함께 매년 공급자와 소매업자로서 최소 100 개의 인도네시아 중소기업과 협력할 의무를 지님. c) 인도네시아 무역 기업을 대리인, 단독 대리인, 유통업자 또는 단독 유통업자로 지정하도록 요구됨. d) 칼리만탄, 술라웨시, 누사 탱가라, 말루쿠 및 파푸아섬에서만 영업이 허용됨. 그리고 e) 주도(州都) 외곽에 위치해야 함.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D. 프랜차이징			
프랜차이징 - 최소 면적 5,000m^2 이상에서의 식음료 및 담배 도매 서비스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외국인 보유 자본지분 비율은 67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합작투자 요건 외에는 제한 없음.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다음의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a) 외국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면허 수수료 요건은 인도네시아인 서비스 공급자에게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적용되는 요건과 다를 수 있음. b) 상호 필요, 상호 강화 및 상호 호혜의 원칙을 적절히 고려하여, 연수 및 개발과 함께 매년 공급자와 소매업자로서 최소 100 개의 인도네시아 중소기업과 협력할 의무를 지님. c) 인도네시아 무역 기업을 대리인, 단독 대리인, 유통업자 또는 단독 유통업자로 지정하도록 요구됨. d) 칼리만탄, 술라웨시, 누사 탱가라, 말루쿠 및 파푸아 섬에서만 영업이 허용됨. 그리고 e) 주도(州都) 외곽에 위치해야 함.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E. 기타			
직접 판매(다단계 마케팅)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외국인 보유 자본지분 비율은 67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합작투자 요건 외에는 제한 없음.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다음의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a) 외국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면허 수수료 요건은 인도네시아인 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되는 요건과 다를 수 있음. b) 인도네시아산 제품을 제품 목록에 포함시켜야 할 의무를 지님. 그리고 c) 인도네시아 직접 판매 협회에 가입해야만 함.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교육 서비스			
일반 조건 외국 서비스 공급자의 상업적 주재는 인도네시아에 등록된 교육 기관을 통해서만 허용되며 다음의 조건을 준수해야 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1. 학점, 프로그램 및 증명서에 대하여 관련 기관 간 상호 인정 협정이 요구됨. 2.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교육 기관은 현지 파트너와 파트너십을 설립해야 함. 외국어 강사는 인도네시아어를 구사하고 해당 외국어의 원어민이어야 함. 3. 외국 교육 기관은 문화교육부의 인증 외국 교육 기관 목록에 등재되어야 하며 그 현지 파트너는 인증을 받아야 함. 4. 현지 파트너와 협력하는 외국 교육 기관은 자카르타, 수라바야, 반둥, 욕야카르타 및 메단 시에 교육 기관을 개원할 수 있음. 5. 인도네시아에서 교육 활동에 종사하는 자연인의 일시적 입국은 문화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승인은 각 사안별로 허용됨. 6. 수평적 양허에도 불구하고, 상업적 주재는 야야산(재단)의 형태로 설립됨. 7. 교육자의 수는 최소 30 퍼센트의 인도네시아인 교육자를 포함함. 8. 교육자 및 책임자를 제외한 피고용인의 수는 최소 80 퍼센트의 인도네시아인을 포함함.			
B. 중등 교육 서비스			
기술 및 직업 중등 교육 서비스(전자, 자동차) (CPC 92230)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C. 고등 교육 서비스			
기술 및 직업 고등 교육 서비스(폴리테크닉 기계 및 전기) (CPC 92310)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인도네시아인 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되는 요건과 다를 수 있는 외국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면허 수수료 요건 외에는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D. 성인 교육 서비스			
언어 강좌 및 연수 (CPC 924)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E. 그 밖의 교육 서비스			
축구 및 체스에 한정함. (CPC 92900)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약속 안함.	
환경 서비스			
A. 폐수 서비스			
폐수 서비스 (CPC 9401) 폐수 관리	1) 제한 없음. 2) 연수, 기술적 협의, 샘플 시험 외에는 제한 없음. 3) 외국인 보유 자본지분 비율은 51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합작투자 요건 외에는 제한 없음.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합작투자 요건 및 인도네시아인 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되는 요건과 다를 수 있는 외국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면허 수수료 요건 외에는 제한 없음.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폐기물 처리 서비스			
폐기물 처리 서비스 (CPC 9402) 다음으로 한정되는 고체 폐기물 처리 서비스 - 특정 지역에서 오일 슬러지 및 폐기 수은 처리를 위한 통합 위험 폐기물 처리 설비 서비스. 서비스 공급자는 반드시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인 보유 자본지분 비율은 51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합작투자 요건 외에는 제한 없음.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합작투자 요건 및 인도네시아인 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되는 요건과 다를 수 있는 외국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면허 수수료 요건 외에는 제한 없음.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현대화된 고급 기술과 안전한 환경을 갖추어야 함. 제품은 새로운 물질 혹은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것임. 그리고 – 광물 폐기물 및 석탄 비산회 · 저부회 폐기물 처리를 위한 현장 위험 폐기물 처리 설비 서비스			
비유해 쓰레기 및 폐기물로 한정하는 폐기물 처리 서비스 (CPC 94020)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합작투자 요건 외에는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합작투자 요건 및 인도네시아인 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되는 요건과 다를 수 있는 외국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면허 수수료 요건 외에는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C. 위생 및 유사 서비스			
공중 위생설비에 한정하는 위생 및 유사 서비스 (CPC 940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다음의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a) 외국인 보유 자본지분 비율은 51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합작투자 요건. 그리고 b) 경제적 수요 심사의 대상이 되는 신규 면허증. 4)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합작투자 요건 및 외국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면허 수수료 요건은 인도네시아인 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되는 요건과 다를 수 있다는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D. 기타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대기오염 관리에 한정하는 배기가스 정화 서비스 (CPC 9404)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인 보유 자본지분 비율은 51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합작투자 요건 외에는 제한 없음.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합작투자 요건 및 인도네시아인 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되는 요건과 다를 수 있는 외국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면허 수수료 요건 외에는 제한 없음.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환경에 대한 실험실 서비스에 한정하는 그 밖의 환경 보호 서비스 (CPC 9409) (현행 환경법과 규정에 따라 환경 품질 파라미터를 검사 및 시험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을 갖춘 실험실)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인 보유 지분 비율은 51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합작투자 요건 외에는 제한 없음. 4) 부록 6-나-2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합작투자 요건 및 인도네시아인 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되는 요건과 다를 수 있는 외국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면허 수수료 요건 외에는 제한 없음. 4) 부록 6-나-2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식수에 한정하는 물 관리.[12]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합작투자 요건 외에는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인도네시아인 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되는 요건과 다를 수 있는 외국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면허 수수료 요건 외에는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금융 서비스			
A. 비은행 금융 서비스			

[12] 물 관리는 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수원으로부터의 표층수 정화, 물 터미널로부터의 직접 물 공급, 물 탱크 운송과 관련된 일련의 공급 서비스 활동을 포함한다.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비은행 금융 서비스 하위 분야에 관한 일반 조건 1. 수평적 양허에 명시된 합작투자에 대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비은행 금융 서비스에 대한 외국 서비스 공급자의 지분 소유는 이 협정의 발효일에 일반적인 법과 규정에 따름. 소유조건 및 지분소유비율은 비은행 금융 서비스 내 기존의 개별 합작투자 설립시에 작성된 각 주주약정에 명시된 대로 존중됨. 해당 합작투자와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소유권이 양도되지 않음. 2. 외국인 투자자는 증권 거래소의 상장 비은행 금융회사의 지분을 100퍼센트 소유할 수 있음. 3. 모든 합작투자회사는 피고용인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함. 4. 수평적 조치에 추가하여, 기술 전문가/자문가의 일시적 입국은 해당 연도 내 인당 3개월 내의 기간 동안 허용될 것임. 5. 자연인의 주재와 관련하여, 국외 거주자는 이사, 관리자 및 기술 전문가/자문가만 맡을 수 있으며 체류 기간은 최장 3년이고 이는 연장 가능함.			
CPC 81293(해양, 항공 및 그 밖의 운송)을 제외한 손해 보험 서비스 (CPC 8129)	1) 약속 안함. 2) 다음의 경우 외에는 약속 안함. a) 대상 객체의 보험 리스크를 다룰 수 있는 개인 보험 또는 단체 보험 회사가 인도네시아에 존재하지 않음. b) 대상 객체의 보험 적용을 이행하려는 보험 회사가 인도네시아에 존재하지 않음. 3) 제한 없음. 4) 일반 조건을 조건으로 하는 이사, 기술 전문가/자문가 및 부록 6-나-2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상용 방문자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일반 조건을 조건으로 하는 이사, 기술 전문가/자문가 및 부록 6-나-2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상용 방문자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재보험 서비스	1) 다른 쪽 당사국의 재보험 서비스 공급자는 스탠다드 앤드 푸어 사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기관에서 BBB 이상의 등급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2) 다른 쪽 당사국의 재보험 서비스 공급자는 스탠다드 앤드 푸어 사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기관에서 BBB 이상의 등급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일반 조건을 조건으로 하는 이사, 기술 전문가/자문가 및 부록 6-나-2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상용 방문자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일반 조건을 조건으로 하는 이사, 기술 전문가/자문가 및 부록 6-나-2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상용 방문자 외에는 약속 안함.	
생명 보험 서비스 (CPC 81211)	1) 약속 안함. 2) 다음의 경우 외에는 약속 안함. a) 대상 객체의 보험 리스크를 다룰 수 있는 개인 보험 또는 단체 보험 회사가 인도네시아에 존재하지 않음. b) 대상 객체의 보험 적용을 이행하려는 보험 회사가 인도네시아에 존재하지 않음. 3) 제한 없음. 4) 일반 조건을 조건으로 하는 이사, 기술 전문가/자문가 및 부록 6-나-2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상용 방문자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일반 조건을 조건으로 하는 이사, 기술 전문가/자문가 및 부록 6-나-2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상용 방문자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보험 중개 서비스 (CPC 81401)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일반 조건을 조건으로 하는 이사, 기술 전문가/자문가 및 부록 6-나-2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상용 방문자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일반 조건을 조건으로 하는 이사, 기술 전문가/자문가 및 부록 6-나-2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상용 방문자 외에는 약속 안함.	
재보험 중개 서비스 (CPC 8140)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일반 조건을 조건으로 하는 이사, 기술 전문가/자문가 및 부록 6-나-2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상용 방문자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일반 조건을 조건으로 하는 이사, 기술 전문가/자문가 및 부록 6-나-2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상용 방문자 외에는 약속 안함.	
금융 리스 서비스 (CPC 81120)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일반 조건을 조건으로 하고, 부록 6-나-2에 명시되며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일반 조건을 조건으로 하고, 부록 6-나-2 에 명시되며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팩토링 서비스 (CPC 811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일반 조건을 조건으로 하고, 부록 6-나-2에 명시되며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일반 조건을 조건으로 하고, 부록 6-나-2에 명시되며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신용카드 업무(신용카드 발급 및 대행)(CPC 8113) - 소비자 금융 서비스(CPC 811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일반 조건을 조건으로 하고, 부록 6-나-2에 명시되며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일반 조건을 조건으로 하고, 부록 6-나-2에 명시되며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거래소나 장외시장에서 자기 계좌 또는 고객 계좌로 거래하는 증권 업무 ◦ 상장 주식 ◦ 채권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상업적 주재는 증권 중개인으로 면허를 받은 증권사 설립을 통해서만 허용되고 일반 조건을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4) 부록 6-나-2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2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주간사로서 인수 및 모집을 포함한 증권 발행 참여(공모 또는 사모) 및 그러한 발행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상업적 주재는 증권 인수자로 면허를 받은 증권사 설립을 통해서만 허용되고 일반 조건을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4) 부록 6-나-2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2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포트폴리오 운용, 모든 유형의 집합투자운용[13] - 투자펀드 운용[14] 에 한정하는 자산 운용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상업적 주재는 투자 운용자로 면허를 받은 증권사 설립을 통해서만 허용되고 일반 조건을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4) 일반 조건을 조건으로 하는 이사 및 부록 6-나-2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상용 방문자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2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자본시장에서의 투자자문에만 한정하는 투자자문 서비스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상업적 주재는 투자자문 회사의 설립을 통해서만 허용되고 일반 조건을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4) 일반 조건을 조건으로 하는 이사 및 부록 6-나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2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	

[13] 포트폴리오 운용은 시행 중인 자본시장에 관한 법과 규정에 규정된 대로 모든 유형의 집합투자운용이다.

[14] 투자펀드 운용은 시행 중인 자본시장에 관한 법과 규정에 규정된 대로이다.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2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상용 방문자 외에는 약속 안함.	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은행 금융 서비스

은행 금융 서비스 하위 분야에 관한 일반 조건

1. 외국 은행의 기존 지점은 예외로 하고, 외국 서비스 공급자는 다음의 요건에 따라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설립된 합작투자은행의 형태를 갖춤.

   (a) 신규 면허에 대하여 약속 안함.

   (b) 금융 기관에 한정하여 합작투자은행 설립이 허용됨.

2. 소유조건 및 소유지분비율은 외국 서비스 공급자 및 그들 각자의 인도네시아 파트너의 소유권에 대한 근거로서 기존의 개별 합작투자은행 설립시에 작성된 각 주주약정에 명시된 대로 존중됨. 해당 합작투자은행 내 모든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소유권이 양도되지 않음.

3. 기존 현지 은행의 인수는 증권 거래소에서 주식 매수를 통하여 허용되며, 증권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현지 은행 지분의 51퍼센트까지 허용됨.

4. 외국 은행 및 합작투자은행은 자카르타, 수라바야, 세마랑, 반둥, 메단, 마카사르, 덴파사르, 바탐, 파당, 마나도, 암본, 발릭파판, 반다 아체, 자야푸라 시에 사무실을 개업할 수 있음.

5. 인은 하나의 은행에서만 “지배 주주”가 됨.

   정의:

   지배 주주란 은행 지분의 10퍼센트 이상을 수익성 있게 소유한 인 또는 은행 지분의 10퍼센트 미만을 수익성 있게 소유하였으나 그 은행에 대하여 지배권을 갖는 인을 말함. 그러한 은행의 이사 및/또는 감독관을 임명할 권한 및/또는 은행의 행위에 대한 지시 권한을 갖는 인은 은행 지배권이 있는 것으로 간주됨.

6. 자연인의 주재와 관련하여, 경제적 수요 심사는 적용되지 않을 것임. 관리자 또는 기술 전문가로 고용된 비(非)인도네시아인은 재임 기간 중 최소 두 명의 인도네시아 현지 인력을 둠.

7. 수평적 조치에 추가하여, 외국은행 및 합작투자은행 출장소의 기술 전문가/자문가의 일시적 입국은 해당 연도 내 인당 3개월 내의 기간 동안 허용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상업 은행 업무			
(i) 대중으로부터의 예금 및 그 밖의 상환성 자금의 인수 (ii) 소비자대출, 주택담보 대출, 팩토링 및 상업거래 융자를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여신 (iii) 신용, 선불 및 직불 카드, 여행자수표 및 은행수표를 포함하는 모든 지급 및 송금 서비스 (iv) 보증 및 약정 (v) 거래소, 장외시장, 또는 다른 방법으로, 다음을 자기 계좌 또는 고객 계좌로 거래하는 것 ◦ 화폐시장상품 (수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를 포함함) ◦ 외환 ◦ 스왑, 선도금리계약과 같은 상품을 포함하는 환율 및 이자율 상품 ◦ 화폐시장에서 발행되는 양도성 증권 (vi) 현금 운용, 보관 및 예탁 서비스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a) 외국 은행 출장소에는 2개의 영업소와 2개의 보조 사무소만 약속함. b) 합작투자은행에는 2 개의 지점과 2 개의 영업소만 약속함. 4) 일반 조건을 조건으로 하고, 부록 6-나-2에 명시되며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a) 외국 은행 지점의 경우,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임원이 인도네시아 국민이라는 제한을 두고, 국외거주자는 임원직만 맡을 수 있음. b) 국외거주자 이사는 외국 자본지분에 비례하여 합작 투자은행에 취임할 수 있음. 4) 일반 조건을 조건으로 하고, 부록 6-나-2에 명시되며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보건 관련 및 사회 서비스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A. 병원 서비스			
250 개를 초과하는 병상을 제공하는 A 급 및 B 급 병원에서 전문의 및 세부전문의를 갖춘 병원 서비스 (CPC 931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상업적 주재는 다음의 형태로만 허용된다는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a) 인도네시아 주재 대표 사무소를 통한 공동 운영. 또는 b) 외국인 보유 자본지분 비율은 67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합작투자 요건. 4) 부록 6-나-2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및 대표 사무소의 최고 경영인은 인도네시아인이라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다음의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a) 자격을 갖춘 인도네시아인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만 외국 보건 전문인력을 고용할 수 있음. b) 병원은 인도네시아 의사가 의장으로 있는 이사회에 의하여 경영됨. c) 외국 병원은 A 급 또는 B 급 병원의 전문 서비스 및 세부 전문 서비스를 위해서만 설립될 수 있음. 4) 약속 안함.	
B. 그 밖의 보건의료 서비스			
A 급 또는 B 급 병원에서 설립 및 통합된 침술 서비스에 한정하는 그 밖의 보건의료 서비스 (CPC 93191)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외국인 보유 자본지분 비율은 51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합작투자 요건 외에는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다음의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a) 합작투자 요건. b) 구조적 레벨에서의 보건관리는 인도네시아인임. 그리고 c) 자격을 갖춘 인도네시아인이 충분하지 않은 한도에서만 외국 보건 전문인력을 고용할 수 있음. 4) 약속 안함.	
그 밖의 수의료 서비스 (CPC 93209) 가금류 농장 자문 서비스에 대해서만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인 보유 자본지분 비율은 51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합작투자 요건 외에는 제한 없음.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합작투자 요건 및 인도네시아인 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되는 요건과 다를 수 있는 외국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면허 수수료 요건 외에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적용됨.	4) 부록 6-나-2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는 제한 없음. 4) 부록 6-나-2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C. 사회 서비스			
사회 서비스(CPC 933) a) 노인 대상 사회복지 서비스 b) 장애인 대상 사회복지 서비스 그리고 c)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를 위한 사회복지연수 및 교육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합작투자 요건 외에는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자격을 갖춘 인도네시아인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만 외국 보건 전문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는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관광 및 여행 관련 서비스			
A. 호텔 및 레스토랑			
호텔 [15] (3·4·5성급 호텔로 한정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다음의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a) 지리적 확장성은 경제적 수요 심사를 조건으로 함. 그리고 b) 외국 서비스 공급자는 자본지분의 100 퍼센트를 소유할 수 있음. 4) 다음의 특정한 직책으로 한정하여 부록 6-나-2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 서비스 공급자에게는 상향된 납입자본금이 요구된다는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이 조치는 2020 년에 철폐될 것임. 4) 다음의 특정한 직책으로 한정하여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5] 성급 호텔이란 숙박과 식음료 설비 그리고 그 밖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을 의미한다. 공중도덕, 종교, 안정, 공공질서 상의 이유로, 카지노 및 법에서 금지하는 그 밖의 활동은 제외된다.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 이사 및 관리자(호텔업의 최고 경영자층)는 다음과 같이 구성됨. – 총 지배인 – 식음료 관리자 – 투숙객 관리자 – 회계 감사관 – 마케팅 이사 • 기술 전문가(고숙련 전문인력)는 다음과 같이 구성됨. – 총주방장 – 부주방장 – 특별조리장	• 이사 및 관리자(호텔업의 최고 경영자층)는 다음과 같이 구성됨. – 총 지배인 – 식음료 관리자 – 투숙객 관리자 – 회계 감사관 – 마케팅 이사 • 기술 전문가(고도의 기술을 가진 전문인력)는 다음과 같이 구성됨. – 총주방장 – 부주방장 – 특별조리장	
호텔 (CPC 64110) (1 · 2성급 호텔)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합작투자 요건 및 경제적 수요 심사를 조건으로 하는 지리적 확장성 외에는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합작투자 요건 외에는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모텔 숙박 서비스 (CPC 6412/64120)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합작투자 요건 및 경제적 수요 심사를 조건으로 하는 지리적 확장성 외에는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인도네시아 중소기업 (SMEs)과 파트너십 관계이어야 한다는 합작투자 요건 외에는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가구를 갖춘 숙소의 임대 서비스 (CPC 6419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합작투자 요건 및 경제적 수요 심사를 조건으로 하는 지리적 확장성 외에는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인도네시아 중소기업 (SMEs)과 파트너십 관계이어야 한다는 합작투자 요건 외에는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풀 레스토랑 서비스를 동반한 식사제공 서비스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합작투자 요건 및 경제적 수요 심사를 조건으로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합작투자 요건 외에는 제한 없음.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CPC 64210)	하는 지리적 확장성 외에는 제한 없음. 4) 부록 6-나-2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부록 6-나-2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엔터테인먼트를 제외한 음료 제공 서비스 (CPC 64310)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합작투자 요건 및 경제적 수요 심사를 조건으로 하는 지리적 확장성 외에는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합작투자 요건 외에는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엔터테인먼트를 포함하는 음료 제공 서비스 (CPC 6432/64320)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합작투자 요건 및 경제적 수요 심사를 조건으로 하는 지리적 확장성 외에는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합작투자 요건 외에는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B. 여행 알선 및 여행 대행			
여행 대행 (TO) (CPC 74710**)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합작투자 요건 및 여행 대행 서비스 제공자의 최대 수는 30명이라는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4) 부록 6-나-2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기술 전문가/자문가 및 상용 방문자 외에는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합작투자 요건 외에는 제한 없음. 4) 부록 6-나-2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기술 전문가/자문가 및 상용 방문자 외에는 안함.	
C. 관광객 안내 서비스			
관광 가이드 서비스 (CPC 74720)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4) 약속 안함.	4) 약속 안함.	
D. 기타			
다음을 포함하는 관광 리조트[16] ◦ 호텔 (3 · 4 · 5 성급) ◦ (해상 리조트 설비 및 호텔 경영은 제외)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다음의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a) 지리적 확장성은 경제적 수요 심사를 조건으로 함. 그리고 b) 외국 서비스 공급자는 자본지분의 100 퍼센트를 소유할 수 있음 4) 부록 6-나-2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관리자와 상용 방문자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 서비스 공급자에게는 상향된 납입자본금이 요구된다는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이 조치는 2020년에 철폐될 것임. 4) 부록 6-나-2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관리자와 상용 방문자 외에는 약속 안함.	
국제 호텔 운영 (CPC 91135)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다음의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a) 지리적 확장성은 경제적 수요 심사를 조건으로 함. 그리고 b) 외국 서비스 공급자는 자본지분의 100 퍼센트를 소유할 수 있음. 4) 부록 6-나-2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2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관광 자문 서비스 (CPC 91136)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합작투자, 공동 운영 및 계약 경영을 통하여 인도네시아 회사와 협력해야 한다는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4) 부록 6-나-2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및 외국 기술 전문가는 관광 전문 협회의 추천이 요구된다는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부록 6-나-2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및 외국 기술 전문가는 관광 전문 협회의 추천이 요구된다는 사항 외에는 제한 없	

[16] 관광 리조트란 호텔, 해상 리조트, 골프 코스, 문화적 개방 무대와 그 밖의 시설 등 관광객에게 필요한 시설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어진 지역을 의미한다. 공중도덕, 종교, 안정, 공공질서 상의 이유로, 카지노와 법에서 금지하는 그 밖의 활동은 제외된다.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음.	
레크리에이션, 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시청각 서비스는 제외함)			
A.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연극, 라이브밴드 및 서커스 서비스 포함함)			
극장 및 오페라 하우스 (CPC 9619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인 보유 자본지분 비율은 51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합작투자 요건 외에는 제한 없음. 4) 부록 6-나-2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합작투자 요건 외에는 제한 없음. 4) 부록 6-나-2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도서관, 기록 보관소, 박물관 및 그 밖의 문화 서비스 보석 박물관에 한정된 박물관 서비스 (CPC 96321)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외국인 보유 자본지분 비율은 51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합작투자 요건 외에는 제한 없음. 4) 부록 6-나-2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합작투자 요건 및 외국 서비스 공급자는 매 5년마다 면허를 갱신해야 한다는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4) 부록 6-나-2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D. 스포츠 및 그 밖의 레크리에이션 서비스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관광 리조트 내로 한정하는 골프 코스 및 그 밖의 설비 (CPC 9641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다음의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a) 지리적 확장성은 경제적 수요 심사를 조건으로 함. b) 외국 서비스 공급자는 자본지분의 51 퍼센트를 소유할 수 있음.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관리자와 상용 방문자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 서비스 공급자에게는 상향된 납입 자본금이 요구된다는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이 조치는 2020년에 철폐될 것임. 4) 부록 6-나-2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관리자와 상용 방문자 외에는 약속 안함.	
E. 기타			
그 밖의 레크리에이션 서비스/다른 곳에서 분류되지 않은 온라인 게임 KBLI 5820** - 모든 운영 시스템 플랫폼에서 비디오 게임 배급만을 위한 소프트웨어 배급 KBLI62011** - 비디오게임 소프트웨어 개발로 한정함	1) 이 협정[17]의 발효 당시의 국내 법과 규정에서 규정된 요건 외에는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다음의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a) 외국인 지분참여는 최대 51 퍼센트까지 허용된다는 합작투자 요건. 그리고 b) 경제적 수요 심사[18]의 대상이 되는 면허. 4) 부록 6-나-2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이 협정의 발효 당시의 국내 법과 규정에서 규정된 요건 외에는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이 협정의 발효 당시의 국내 법과 규정에서 규정된 요건 외에는 제한 없음. 그러한 요건은 기술 지식 및 사업 노하우의 전수와 연구개발을 포함할 수 있음. 4) 부록 6-나-2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해상 리조트 설비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약속 안함.	

[17] 인도네시아는 대표 사무소 요건을 채택할 권리를 유보한다.

[18]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경제적 수요 심사는 이 분야의 서비스무역을 손상시키거나 저해하지 않는다.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호텔 경영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약속 안함.		
운송 서비스					
A. 해상 운송 서비스 연안운송과 부수 서비스를 제외한 여객 및 화물 운송					
(a) 국제 여객 운송 (CPC 721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합작투자 요건 외에는 제한 없음. 합작투자는 인도네시아 국적의 선원이 승선한 최소 5,000 총톤수인 한 척 이상의 인도네시아 국적 선박을 운영해야만 함.	FL MFN	1) 외국 해운 회사는 인도네시아 해운 회사 또는 합작투자 해운 회사를 총 대리점으로 지정할 의무를 지닌다는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인도네시아에서 총 대리점의 업무는 특히 다음과 같음. i. 인도네시아 항구에서의 체류 동안 해당 외국 선박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모든 항구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준비 ii. 본인을 대리한 화물 선적 및 하역 작업을 위한 하역회사의 지정 iii. 화물 예약과 조사 업무의 처리 iv. 본인을 대리한 화물의 수거 v. 본인을 대리한 선하증권의 발급 vi. 지불 및 청구(있는 경우)의 결제, 그리고 vii. 본인이 요구하는 정보의 제공 2) 제한 없음. 3) 합작투자 요건 외에는 제한 없음.	FL MFN	국제 무역에 개방된 항구도시 또는 특수 항구들은 서비스 공급 시점의 일반적 법과 규정에 따름. 다만, 이 협정의 서명일에 그러한 항구들은 탄중 피리옥(자카르타), 탄중 페락(수라바야), 마카사르, 세마랑, 두마이, 판장, 바탐, 발릭파판, 반자르마신, 비퉁, 폰티아낙, 암본 및 소롱임. (이 항구들은 현재 국제 무역에 개방되어 있으며 향후 추가 또는 감소될 수 있음)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4) 부록 6-나-2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부록 6-나-2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국제 화물 운송 (CPC 721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합작투자 요건 외에는 제한 없음. 합작투자는 인도네시아 국적의 선원이	FL MFN	1) 다음의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a. 외국 해운 회사는 인도네시아 해운 회사 또는 합작투자 해운 회사를 총 대리점으로 지정할 의무를 지님. 인도네시아에서 총 대리점의 업무는 특히 다음과 같음. i. 인도네시아 항구에서의 체류 동안 해당 외국 선박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모든 항구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준비 ii. 본인을 대리한 화물 선적 및 하역 작업을 위한 하역회사의 지정 iii. 화물 예약과 조사 업무의 처리 iv. 본인을 대리한 화물의 수거 v. 본인을 대리한 선하증권의 발급 vi. 지불 및 청구(있는 경우)의 결제, 그리고 vii. 본인이 요구하는 정보의 제공 b. 정부 화물. 정부 화물은 정부 기관의 구입 또는 다른 국가와의 대출/신용거래협정을 바탕으로 다른 국가에서 온 화물임(수입 화물).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FL MFN	국제 무역에 개방된 항구도시 또는 특수 항구들은 서비스 공급 시점의 일반적 법과 규정에 따름. 다만, 이 협정의 서명일에 그러한 항구들은 탄중 피리옥(자카르타), 탄중 페락(수라바야), 마카사르, 세마랑, 두마이, 판장, 바탐, 발릭파판, 반자르마신, 비퉁, 폰티아낙, 암본 및 소롱임.. (이 항구들은 현재 국제 무역에 개방되어 있으며 미래에 추가 또는 감소될 수 있음)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승선한 최소 5,000 총톤수인 한 척 이상의 인도네시아 국적 선박을 운영해야만 함.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부록 6-나-2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선박 유지 및 보수 (CPC 8868**)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합작투자를 통해서만 허용되는 상업적 주재 및 선박분류기준 50,000 재화중량톤수(DWT) 초과인 선박 외에는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인도네시아인 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되는 요건과 다를 수 있는 외국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면허 수수료 요건 외에는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해상 운송을 위한 예선 서비스 (CPC 7214) (연안운송 제외)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합작투자 요건 외에는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합작투자 요건 및 인도네시아인 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되는 요건과 다를 수 있는 외국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면허 수수료 요건 외에는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선박 구조 및 인양 서비스 (CPC 7454)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합작투자 요건 외에는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인도네시아인 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되는 요건과 다를 수 있는 외국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면허 수수료 요건 외에는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B. 내륙 수상 운송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여객운송 (CPC 7221) (연안운송 제외)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합작투자 요건 외에는 제한 없음. 4) 부록 6-나-2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합작투자 요건 외에는 제한 없음. 4) 부록 6-나-2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선박 유지 및 보수 (내륙 수로) (CPC 8868**)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합작투자를 통해서만 허용된 상업적 주재 및 인도네시아 동부 외에는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인도네시아인 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되는 요건과 다를 수 있는 외국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면허 수수료 요건 외에는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해운 부수 서비스			
해상화물취급 서비스	1) 환적(선상에서 선상 또는 부두를 경유하여) 및/또는 선상 화물 취급의 활용에 제한이 없다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19]. 2) 제한 없음. 3) 다음의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a) 합작투자 요건을 통해서만 상업적 주재가 허용됨. b) 합작투자는 탄중 프리옥, 탄중 페락, 벨라완, 세마랑, 마카사르 같은 주요 항구에서만 운영이 허용됨. c) 총 외국인 지분참여는 최대 51 퍼센트까지 허용되며, 49 퍼센트는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하고 나머지 비율은 국내 규정에 따라 그 밖의 메커니즘을 통함. 4) 부록 6-나-2 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환적(선상에서 선상 또는 부두를 경유하여) 및/또는 선상 화물 취급의 활용에 제한이 없다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20]. 2) 제한 없음. 3) 인도네시아 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되는 요건과 다를 수 있는 외국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면허 수수료 요건 외에는 제한 없음. 4) 부록 6-나-2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국제 해운을 위하여 개방된 항구 내 항구시설로의 접근 및 그 사용은 허용됨.

[19] 이 공급형태에 대한 약속은 실현 가능하지 않다.
[20] 이 공급형태에 대한 약속은 실현 가능하지 않다.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C. 항공 운송 서비스			
a. 항공기 유지 및 보수 서비스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합작투자 요건 외에는 제한 없음. 4) 부록 6-나-2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합작투자 요건 외에는 제한 없음. 4) 부록 6-나-2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컴퓨터 예약 시스템 (CRS)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합작투자 요건 외에는 제한 없음. 4) 부록 6-나-2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합작투자 요건 외에는 제한 없음. 4) 부록 6-나-2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c. 판매 및 마케팅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합작투자 요건 외에는 제한 없음. 4) 부록 6-나-2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합작투자 요건 외에는 제한 없음. 4) 부록 6-나-2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F. 도로 운송 서비스			
도로 운송 장비의 유지 및 보수 (CPC 8867, 오토바이 제외)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오직 인도네시아인 또는 인도네시아인이 지배하는 기업 또는 양쪽 모두,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자동차(오토바이는 제외함)의 유지 및 보수 관련 제조 활동을 하는 외국기업(현지 그룹 회사 포함) 간의 현지에서 설립된 합작투자기업을 통해서만 허용된 상업적 주재 및 외국인 보유 자본지분 비율은 3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합작투자 요건 외에는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인도네시아 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되는 요건과 다를 수 있는 외국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면허 수수료 요건 외에는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도로 운송 터미널에 대한 지원 서비스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CPC 744)[21]	3) 합작투자 요건 외에는 제한 없음. 4) 부록 6-나-2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3) 인도네시아 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되는 요건과 다를 수 있는 외국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면허 수수료 요건 외에는 제한 없음. 4) 부록 6-나-2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운송 지원 및 부수 서비스			
해상화물운송주선 서비스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합작투자 요건 외에는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인도네시아 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되는 요건과 다를 수 있는 외국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면허 수수료 요건 외에는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고속도로 서비스에 한정하는 고속도로, 교량 및 터널 운영 서비스(CPC 74420)만을 위한 도로 운송 지원 서비스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합작투자 요건 외에는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인도네시아 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되는 요건과 다를 수 있는 외국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면허 수수료 요건 외에는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항만구역 및 제 1 구역 이외의 저장 및 창고 서비스 - 냉동 및 냉장 제품의 저장 서비스(CPC 7421) - 그 밖의 저장 또는 창고 서비스(CPC 7429)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외국인 보유 자본지분 비율은 3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합작투자 요건 외에는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인도네시아 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되는 요건과 다를 수 있는 외국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면허 수수료 요건 외에는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21] 화장실, 레스토랑, 통신 시설, 자동차 승무원을 위한 휴식 정차 시설, 대기 및 소음 공해 저감 시설, 대기질 및 배출 모니터링 시설, 청소 시설, 일반적 자동차 정비 시설, 교환 시설, 복합쇼핑몰, 일반 숙소 및 화물 터미널에만 한정한다.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그 밖의 서비스			
에너지 서비스			
동위원소 분석에 한정하는 코어 분석 및 그 밖의 연구 실험 a. 인도네시아 에너지 서비스 분류 제안서의 다음 조항에 해당함. 동위원소 분석 (1A.2.7.3.) b. W 120 에 따르면 기술적 검사 및 분석 서비스에 관한 사업 서비스(CPC 8676)에 해당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인도네시아 주재 대표 사무소를 통한 공동 운영 외에는 제한 없음. 4) 부록 6-나-2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다만, 다음의 기능은 제외함. · 보건과 안전 환경(HSE). · 조달, 물자, 군수품에 대한 공급망 관리. 그리고 · 조사 활동을 포함한 품질 관리.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공동 운영 및 인도네시아 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되는 요건과 다를 수 있는 외국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면허 수수료 요건 외에는 제한 없음. 4) 부록 6-나-2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다만, 다음의 기능은 제외함. · 보건과 안전 환경(HSE). · 조달, 물자, 군수품에 대한 공급망 관리. 그리고 · 조사 활동을 포함한 품질 관리.	
석탄에 한정된 액화 및 기화 a. 인도네시아 에너지 서비스 분류 제안서의 다음 조항에 해당함. ◦ 석탄 액화 (2.4.4.4.) ◦ 석탄 기화 (2.4.4.5) b. W 120 에 따르면 제조업 부수 서비스(CPC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인 보유 자본지분 비율은 49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합작투자 요건 외에는 제한 없음. 4) 부록 6-나-2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다만, 다음의 기능은 제외함. · 보건과 안전 환경(HSE). · 조달, 물자, 군수품에 대한 공급망 관리. 그리고 · 조사 활동을 포함한 품질 관리.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인 보유 자본지분 비율은 49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합작투자 요건 외에는 제한 없음. 4) 부록 6-나-2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다만, 다음의 기능은 제외함. · 보건과 안전 환경(HSE). · 조달, 물자, 군수품에 대한 공급망 관리. 그리고 · 조사 활동을 포함한 품질 관리.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884)에 해당함.			
엔지니어링, 조달 및 건설(EPC) 서비스 ◦ 플랫폼 건설에 한정함 a. 인도네시아 에너지 서비스 분류 제안서의 다음 조항에 해당함. 엔지니어링, 조달 및 건설(EPC) 서비스 (1A.3.2.2.) b. W 120 에 따르면 사업적 과정과 생산을 위한 엔지니어링 디자인 서비스(CPC 86725)에 해당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인도네시아 주재 대표 사무소를 통한 공동 운영 외에는 제한 없음. 4) 부록 6-나-2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다만, 다음의 기능은 제외함. · 보건과 안전 환경(HSE). · 조달, 물자, 군수품에 대한 공급망 관리. · 조사 활동을 포함한 품질 관리.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인도네시아 주재 대표 사무소를 통한 공동 운영 외에는 제한 없음. 4) 부록 6-나-2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다만, 다음의 기능은 제외함. · 보건과 안전 환경(HSE). · 조달, 물자, 군수품에 대한 공급망 관리. · 조사 활동을 포함한 품질 관리.	
엔지니어링, 조달 및 건설(EPC) 서비스 ◦ 연안 파이프라인 설치로 한정함. a. 인도네시아 에너지 서비스 분류 제안서의 다음 항목에 해당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인도네시아 주재 대표 사무소를 통한 공동 운영 외에는 제한 없음. 4) 부록 6-나-2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다만, 다음의 기능은 제외함. · 보건과 안전 환경(HSE).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공동 운영 요건 외에는 제한 없음. 4) 부록 6-나-2에 명시되고 그를 조건으로 하는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다만, 다음의 기능은 제외함. · 보건과 안전 환경(HSE).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엔지니어링, 조달 및 건설(EPC) 서비스 (1A.3.2.2.) b. W 120 에 따르면 사업적 과정과 생산을 위한 엔지니어링 디자인 서비스(CPC 86725)에 해당함.	· 조달, 물자, 군수품에 대한 공급망 관리. · 조사 활동을 포함한 품질 관리.	· 조달, 물자 군수품에 대한 공급망 관리. · 조사 활동을 포함한 품질 관리.	
그 밖의 보건의료 서비스(CPC 9319, CPC 93191 은 제외) 스파 서비스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제7장
투자

제 7.1 조
정의

적용대상투자란 한쪽 당사국에 대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에 존재하거나 그 후 설립, 인수 또는 확장되고, 적용 가능한 경우, 그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허용된, 그 당사국 영역에서의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를 말한다.[1]

분쟁당사자들이란 분쟁당사자인 투자자와 분쟁당사국을 말한다.

분쟁당사국이란 제7.19조에 따라 청구가 제기된 당사국을 말한다.

분쟁당사자란 분쟁당사자인 투자자 또는 분쟁당사국을 말한다.

당사국의 기업이란 당사국의 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기업과 그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고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지점을 말한다.[2,3,4]

자유사용가능통화란 국제 거래에 대한 지불을 위하여 널리 사용되며 국제통화기금이 그 협정 및 그에 대한 모든 개정에 따라 결정한 주요 거래소 시장에서 널리 거래되는 모든 통화를 말한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이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사무국에 의한 절차행정을 위한 추가절차를 규율하는 규칙을 말한다.

---

[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의 경우 "그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허용된" 은 서면으로 특별 승인에 대한 요건을 포함할 수 있다.
[2] 기업의 지점은 이 협정에 따라 당사국에 대하여 청구를 제기하지 않는다.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의 기업" 의 정의에 "지점" 을 포함시키는 것은 자국의 법에 따라 지점을 독립적인 법적 존재가 없고 개별적으로 조직되지 않은 실체로서 취급하는 당사국의 능력을 저해하지 않는다.
[4] 비당사국의 법적 실체의 지점은 당사국의 기업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투자[5,6,7]란 투자자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모든 종류의 자산으로서, 자본 또는 그 밖의 자원의 약속, 이득 또는 이윤에 대한 기대, 또는 위험의 감수와 같은 특징을 포함하여, 투자의 특징을 가진 것을 말한다. 투자가 취할 수 있는 형태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기업

나. 주식, 증권과 그 밖의 형태의 기업에 대한 지분 참여

다. 채권, 회사채, 그 밖의 채무증서와 대부[8, 9]

라. 완성품 인도, 건설, 경영, 생산, 양허, 수익배분과 그 밖의 유사한 계약

마. 지식재산권

바. 면허, 인가, 허가와 당사국의 법[10]에 따라 부여되는 유사한 권리, 그리고

사. 그 밖의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 동산 또는 부동산, 그리고 리스, 저당권, 유치권 및 질권 같은 관련 재산권[1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투자는 오직 다음으로부터만 발생하는 금전청구권을 의미하지 않는다.

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한 상업적 계약, 또는

---

[5] 자산이 투자의 특징이 부족한 경우, 그 자산이 취한 형태에 관계없이 그것은 투자가 아니다.
[6] "투자" 라는 용어는 사법적 또는 행정적 행위에 들어있는 명령 또는 판결을 포함하지 않는다.
[7] 이 조의 투자의 정의의 목적상, 투자된 수익은 투자로 취급되어야 하고 투자되거나 재투자된 자산 형태의 어떠한 변경도 그 자산의 투자로서의 특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8] 채권, 회사채 및 장기어음과 같은 일부 형태의 부채는 투자의 특징을 가질 가능성이 보다 높은 반면, 즉각적인 지급만기의 그리고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의 결과인 지급청구권과 같은 그 밖의 형태의 부채는 그러한 특징을 가질 가능성이 보다 낮다.
[9]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 발행한 대출은 투자가 아니다.
[10] 특정한 유형의 면허, 인가, 허가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그러한 수단의 성격을 가지는 한도에서, 양허를 포함한다)이 투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당사국 법에 따라 보유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의 성격과 범위 같은 그러한 요소에 달려 있다. 투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러한 수단 중에는 당사국의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창설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앞 내용은 그러한 수단과 연계된 자산이 투자의 특징을 가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1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시장점유, 시장접근, 기대이득, 그리고 이익획득의 기회는 그 자체만으로는 투자가 아니다.

나. 그러한 상업적 계약과 관련된 신용의 공여

비당사국의 투자자란 한쪽 당사국에 대하여, 그 당사국의 영역에 투자한 투자자로서 어느 한쪽 당사국의 투자자도 아닌 투자자를 말한다.

한쪽 당사국의 투자자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투자하려고 시도하거나[12], 투자 중이거나, 또는 이미 투자한 한쪽 당사국의 자연인 또는 기업을 말한다.

비분쟁당사국이란 투자분쟁의 당사자가 아닌 당사국을 말한다. 그리고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이란 1976 년 4 월 28 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중재규칙을 말한다.

제7.2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다음에 관하여 한쪽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그리고

나. 적용대상투자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장은 이 협정의 발효일 전에 발생한 행위 또는 사실이나 존재하지 않게 된 상황에 관하여 어떠한 당사국도 구속하지 않는다.

3. 이 장의 목적상,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란 다음을 말한다.

가. 중앙, 지역 또는 지방 정부와 당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그리고

[1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투자하려고 "시도하는" 투자자는, 적용 가능한 경우, 투자를 하기 위하여 통보 또는 승인 절차 개시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당사국의 투자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양 당사국은 양해한다.

나. 중앙, 지역 또는 지방 정부나 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여 비정부 기관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4. 이 장은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가. 정부조달

나. 당사국이 제공하는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

다. 제7.11조 및 제7.12조에 따른 것을 제외한 모든 과세조치

라. 법 집행, 교정 서비스, 소득 보장 또는 보험, 사회 보장 또는 보험, 사회 복지, 공교육, 공공 훈련, 보건 및 보육과 같은 정부권한의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 다만, 그러한 서비스가 상업적 기초에서 공급되지 않고 하나 이상의 서비스 공급자와의 경쟁하에 공급되지도 않아야 한다. 또는

마. 제6장(서비스무역)의 적용대상이 되는 한도에서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5. 제 4 항마호에도 불구하고, 제 7.6 조, 제 7.7 조, 제 7.11 조, 제 7.12 조[13], 제 7.13 조 및 제 7.19 조는 그것이 적용대상투자를 구성하는 한도에서만, 제 6 장(서비스무역)의 규정에 따라 한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업적 주재[14]를 통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에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15]

제7.3조
다른 장과의 관계

[1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속서 7-나는 제 7.12 조에 적용된다.
[1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업적 주재는 제 6 장(서비스무역)에서의 의미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15]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항은 제 7.19 조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1. 이 장과 다른 장 간에 불합치가 있는 경우, 그 불합치의 한도에서 다른 장이 우선한다.

2.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국경 간 서비스공급의 조건으로 채권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재정적 담보를 기탁해야 한다는 한쪽 당사국의 요건은, 그 자체만으로 이 장이 그러한 국경 간 서비스의 공급에 관하여 그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장은 기탁된 채권 또는 재정적 담보가 적용대상투자가 되는 한도에서, 그 채권 또는 재정적 담보에 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3. 이 장은 제 6 장(서비스무역)의 적용대상이 되는 한도에서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7.4조
내국민 대우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 투자의 설립, 인수, 확장, 경영, 영업, 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16]에서 자국 투자자 및 투자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및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의 적용대상투자에 부여한다.

2. 제 1 항에 따라 당사국이 부여하는 대우란, 지역 정부에 대해서는, 동종의 상황에서 그 지역 정부가 자신이 일부를 구성하는 당사국의 투자자와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말한다.

제7.5조

[16]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 7.4 조 또는 제 7.5 조에 따라 "동종의 상황" 에서 대우가 부여되는지 여부는 관련 대우가 합법적인 공공복지 목적에 기초하여 투자자 간 또는 투자 간의 구분을 하는지 여부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전체상황에 달려있다.

최혜국 대우[17]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 투자의 설립, 인수, 확장, 경영, 영업, 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어떠한 비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한다.

2. 각 당사국은 투자의 설립, 인수, 확장, 경영, 영업, 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 영역 내 비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적용대상투자에 부여한다.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에 언급된 대우는 제 7.19 조에 포함된 것과 같은 국제 분쟁해결 절차 또는 메커니즘을 포함하지 않는다.

제7.6조
투자의 대우[18]

1. 각 당사국은 외국인의 대우에 대한 국제관습법상 최소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을 적용대상투자에 부여한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가.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는 각 당사국이 모든 법적 또는 행정적 절차에서 정의를 부인하지 않도록 요구한다.

   나.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은 각 당사국이 적용대상투자의 물리적 보호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한다. 그리고

[17]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 7.5 조는 제 7.19 조에 규정된 것과 같은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 절차에 적용되지 않는다.
[18] 제 7.6 조는 부속서 7-가에 따라 해석된다.

다.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 이라는 개념은 외국인의 대우에 대한 국제관습법상 최소기준에 따라 요구되는 것에 추가적인 또는 이를 초과하는 적용대상투자에 대한 대우를 요구하지 않으며, 추가적인 실질적 권리를 창설하지 않는다.

3. 이 협정의 다른 규정 또는 별도의 국제협정에 대한 위반이 있었다는 판정이 이 조에 대한 위반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는 않는다.

제7.7조
손실에 대한 보상

1. 한쪽 당사국은 원상회복, 배상, 보상 또는 그 밖의 모든 형태의 해결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투자자 또는 비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 중에서 더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전쟁 또는 그 밖의 무력충돌, 국가비상사태, 폭동 또는 그 밖의 시민 소요로 인하여 적용대상투자의 손실을 입은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한다.

2. 제 1 항에 언급된 사건에서 다음의 결과로 손실을 입는 당사국의 투자자는

가. 다른 쪽 당사국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투자 또는 그 일부의 징발, 또는

나. 상황의 필요상 요구되지 않았던 다른 쪽 당사국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투자 또는 그 일부의 파괴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 원상회복 또는 보상을 부여받고, 이 중 어떠한 경우든 신속하고 적절하며 효과적이어야 하고, 보상에 관련해서는 제 7.12 조에 따른다.

제7.8조

이행요건[19,20,21]

1. 어떠한 당사국도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 내 투자의 설립, 인수, 확장, 경영, 영업, 운영이나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과 관련하여, 다음의 요건을 부과 또는 강요하지 않는다.

가.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의 국내 재료 사용을 달성할 것

나. 자국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을 구매, 사용, 또는 이에 대하여 선호를 부여할 것, 또는 자국 영역에 있는 인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할 것

다. 수입량 또는 수입액을 수출량이나 수출액, 또는 그 투자자의 투자와 연계된 외화 유입액과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련시킬 것

라. 투자자의 그러한 투자가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자국 영역에서의 상품의 판매를 수출량이나 수출액, 또는 외화획득과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련시킴으로써 그러한 판매를 제한할 것

마.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의 상품을 수출할 것

바. 자국 영역의 인에게 특정한 기술, 생산공정 또는 그 밖의 재산권적 지식을 이전할 것, 또는

사. 그러한 투자가 생산하는 상품을 그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특정한 지역시장 또는 세계시장에 독점적으로 공급할 것

2. 제1항은 어느 한쪽 당사국이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 내 투자의 설립, 인수, 확장, 경영, 영업, 운영이나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과 관련하여, 이익의 수령

---

[19] 이 조는, 당사국이 그러한 요건을 부과하지 않은 경우, 민간 당사자 간 어떠한 요건의 강제도 배제하지 않는다. 이 조의 목적상, 지정된 독점기업 또는 공기업이 위임된 정부 권한을 행사하고 있지 않는 경우, 민간 당사자는 그러한 실체를 포함한다.

[20]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 1 항 및 제 2 항은 그 항에 규정된 것 외의 어떠한 요건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21] 이 조는 제 7.19 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또는 지속적인 수령에 대하여 제1항마호부터 사호까지에 규정된 요건의 준수를 조건으로 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제7.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1. 당사국은 적용대상투자인 자국 기업이 고위 경영직에 특정한 국적의 자연인을 임명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2. 당사국은 적용대상투자인 자국 기업의 이사회나 산하 위원회의 과반수가 특정 국적이거나 자국 영역에 거주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요건은 자신의 투자에 대하여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자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7.10조
비합치 조치

1. 제7.4조, 제7.5조, 제7.8조 및 제7.9조는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가. 당사국이 다음에서 유지하는 기존의 모든 비합치 조치

1) 부속서 I의 자국 유보목록에 그 당사국이 기재한 대로, 중앙 정부

2) 부속서 I의 자국 유보목록에 그 당사국이 기재한 대로, 지역 정부, 또는

3) 지방 정부[22]

나. 가호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지속 또는 신속한 갱신, 또는

[22] 한국의 경우, 지방 정부란「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다. 가호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개정이 제7.4조, 제7.5조, 제7.8조 및 제7.9조에 대하여 부속서 I의 그 당사국의 유보목록의 발효일에 존재하였던 그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않는 한도에서의 그 개정

2. 제7.4조, 제7.5조, 제7.8조 및 제7.9조는 부속서 II의 자국의 유보목록에 규정된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어떠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3. 어떠한 당사국도, 이 협정의 발효일 후에 채택되고 부속서 II의 자국 유보목록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치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그 국적을 이유로 그 조치가 발효되는 시점에 존재하는 투자를, 그리고 적용가능한 경우, 관계 당국의 초기 승인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매각하거나 달리 처분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4.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및 세계지식재산기구의 후원하에 체결된 그 밖의 조약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로부터 이탈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7.11조
송금[23]

1. 각 당사국은 적용대상투자에 관한 모든 송금이 자국 영역 내외로 자유롭고 지체 없이 이루어지도록 허용한다. 그러한 송금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초기 자본 및 투자를 유지하거나 증가시키기 위한 추가액

나. 이윤, 배당금, 이자, 자본이득, 로열티 지불, 권리사용료, 기술지원 수수료, 관리 수수료 및 적용대상투자로부터 비롯되는 그 밖의 경상소득

다. 적용대상투자의 부분적 또는 완전한 매각이나 전부 또는 일부의 청산에 따

[2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속서 7-다는 이 조에 적용된다.

른 대금

라. 대부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지불

마. 제7.7조 및 제7.12조에 따라 이루어진 지불, 그리고

바. 분쟁해결로부터 발생하는 지불

2. 각 당사국은 적용대상투자에 관한 송금이 송금 시점에 일반적인 시장환율에 따라 자유사용가능통화로 이루어지도록 허용한다.

3.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다음에 관한 자국의 법과 규정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선의에 입각한 적용을 통하여 송금을 금지할 수 있다.

가. 파산, 지급불능 또는 채권자의 권리 보호

나. 유가증권, 선물, 옵션 또는 파생상품의 발행, 거래 또는 취급

다. 형사범죄

라. 사법 또는 행정 절차에서의 판결의 준수 보장

마. 법 집행 또는 금융규제당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본 이동과 지불을 포함한 송금에 대한 재무보고 또는 기록보존

바. 과세, 또는

사. 피고용인의 퇴직금

제 7.12 조
수용 및 보상

1. 한쪽 당사국은 다음을 제외하고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의 적용대상투자를 직접적으로 또는 수용이나 국유화와 동등한 조치(이하 "수용"이라 한다)를 통하여 국유화하거나 수용하지 않는다.

가. 공공 목적을 위할 것

나. 적법절차를 따를 것

다. 비차별을 기초로 할 것, 그리고

라. 신속하고 적절하며 효과적인 보상을 지불할 것

2. 제1항라호의 목적상, 보상은

가. 수용이 공개적으로 발표되었을 때 또는 수용이 발생하기 직전이나 수용이 발생했을 때 중 적용 가능한 시점에 수용된 투자의 공정한 시장가격과 동등하다.[24]

나. 수용 의도가 미리 알려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가치의 어떠한 변동도 반영하지 않는다.

다. 과도한 지체 없이 결정되고 지불된다.[25] 그리고

라. 효과적으로 실현가능하고 양 당사국의 영역 간 자유롭게 송금 가능하다.

3. 제1항라호에 언급된 보상은 적절한 이자를 포함한다.

---

[24] 이 조의 의미에서 정부의 행위가 간접수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이 조의 의미에서 그 행위가 간접수용을 구성하는 것으로 이후에 판명되면, 그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 행위를 본질적으로 불법적인 것으로 만들지는 않는다.

[25] 양 당사국은 지불이 이루어지기 전에 준수될 필요가 있는 법적 및 행정적 절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양해한다.

4. 이 조는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따라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부여되는 강제실시권의 발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 7.13 조
대위변제

1. 한쪽 당사국이나 한쪽 당사국의 지정된 기관이 비상업적 위험에 대비하여 적용대상투자에 대하여 부여한 보증, 보험계약 또는 그 밖의 형태의 보장에 따라 그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지불하는 경우, 적용대상투자가 이루어진 영역의 다른 쪽 당사국은 대위변제가 없었더라면 그 투자자가 적용대상투자에 대하여 이 장에 따라 소유하였을 모든 권리의 대위변제 또는 이전을 인정하고, 그 투자자는 대위변제의 한도에서 이러한 권리를 추구하는 것이 배제된다.

2. 대위변제 또는 이전되는 권리 또는 청구는 그 투자자의 원래의 권리 또는 청구보다 크지 않다.[26]

제7.14조
특별형식 및 정보의 취급

1. 제 7.4 조의 어떠한 규정도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 의한 투자의 설립과 관련하여, 그 당사국의 법 또는 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구성될 것을 요구하는 것과 등록요건의 준수와 같은 특별 형식을 규정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형식은 이 협정에 따라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하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2. 제 7.4 조 및 제 7.5 조에도 불구하고, 한쪽 당사국은 정보 또는 통계 목적으로만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또는 그 당사국 영역의 그 투자자의 투자가 그 투자에 관한

[26] 그러나 이는 반드시 후자인 당사국이 모든 사건의 본안이나 그로부터 발생하는 청구의 액수를 인정한다는 것은 아니다.

통상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 당사국은 투자자 및 그 적용대상투자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이나 투자자 또는 그 적용대상투자의 경쟁적 지위를 저해하게 될 모든 공개로부터 제공된 모든 비밀 정보를 보호한다. 이 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자국법의 공평하고 선의에 입각한 적용과 관련하여 정보를 달리 획득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7.15조
혜택의 부인

당사국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인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그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1) 비당사국 또는 혜택부인 당사국의 인이 그 기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경우, 그리고

2) 그 기업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나.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인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그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1) 비당사국의 인이 그 기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경우, 그리고

2) 혜택부인 당사국이 그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 또는 이 장의 혜택이 그 기업이나 그 기업의 투자에 부여될 경우 위반되거나 우회될 조치를 그 비당사국 또는 그 비당사국의 인에 대하여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또는

다.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 대하여, 비당사국의 인이 그 기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혜택부인 당사국이 그 비당사국과 외교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

제7.16조
환경 조치

각 당사국은 자국의 환경 조치를 완화함으로써 투자자에 의한 투자를 장려하는 것은 부적절함을 인정한다. 이러한 취지로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에서의 투자의 설립, 인수 또는 확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그러한 환경 조치를 면제하거나 달리 이탈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제7.17조
투자 증진

양 당사국은 경제성장과 발전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특히 다음을 통한 국경 간 투자와 기술 흐름 증진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가. 투자 기회 확인 및 투자 규정에 대한 정보의 제공

나. 투자 증진에 대한 경험 및 우수 관행의 공유

다. 증가된 투자유입에 도움이 되는 법적 환경의 강화, 그리고

라. 특히 중소기업과의 투자 동반자 관계 개발

제7.18조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그 당사국이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 지침 및 원칙을 내부정책에 자발적으로 통합하도록 장려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제7.19조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

1. 이 조는 제 7.4 조, 제 7.5 조, 제 7.6 조, 제 7.7 조, 제 7.9 조, 제 7.11 조 및 제 7.12 조에 대해 주장되는 위반이 그 위반을 이유로 또는 그 위반으로부터 발생되는 손실 또는 손해를 다음에 대하여 초래하는 것에 관한 한쪽 당사국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간의 투자 분쟁에 적용된다.

가. 적용대상투자와 관련된 투자자, 또는

나. 적용대상투자의 경영, 영업, 운영이나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과 관련하여 그 투자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적용대상투자

2. 투자는 이 조에 따라 청구를 할 수 없다.

3. 적용 가능한 예외, 비합치 조치, 국제법의 원칙 또는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그러한 예외, 비합치 조치 또는 국제법의 원칙에 의존하는 분쟁당사국의 능력의 범위를 저해함이 없이, 이 조에 따라 다음과 관련된 어떠한 청구도 제기될 수 없다.

가. 다른 국제협정이 더 유리한 권리 또는 의무를 포함한다는 것에 근거하여 제 7.5조에 언급된 최혜국 대우 위반 주장과 관련된 것.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는 다른 국제협정에 따라 취해진 조치를 포함한 당사국의 조치가 제 7.5 조를 위반하고 분쟁당사자인 투자자에게 손실 또는 손해를 초래했다는 점에 근거하여 그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청구를 금지하지 않는다.

나. 공중 보건을 보호하거나 증진하기 위하여 고안되고 이행되는 조치와 관련된

것[27]

다. 사기성 허위 진술, 은폐 또는 부패를 포함한 불법 행위를 통하여 설립된 투자와 관련된 것.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제외는 사소하거나 기술적인 법의 위반을 통하여 설립된 투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라. 이 협정의 발효 전에 발생한 투자 분쟁에 관련된 것

마. 청구가 경솔하거나 명백히 근거가 없는 경우

바. 분쟁당사국의 국적 또는 시민권을 보유한 자연인에 의한 것

4. 이 조에 따라 투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원만한 해결에 이르기 위해서, 분쟁당사자들은 가능한 한 협의 및 교섭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그 요청은 서면으로 이루어진다.

5. 협의를 위한 서면 요청은 분쟁당사자인 투자자의 이름 및 주소, 위반되었다고 주장되는 이 협정의 규정, 구하는 구제조치와 청구하는 손해의 예상 금액 및 청구인이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이고 그 투자를 소유 또는 지배하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를 포함한 투자 분쟁의 법적 및 사실적 근거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한다.

6. 이 조에 따라 협의가 개최되는 경우, 분쟁당사자들이 더 긴 기간에 동의하지 않는 한, 협의 요청의 제출부터 60 일 내에 협의가 시작된다. 협의 장소는 분쟁당사국이 한국인 경우 서울, 인도네시아인 경우 자카르타이다.

7. 분쟁당사국의 서면 협의 요청 접수부터 180 일 내에 분쟁이 해결될 수 없는 경우, 분쟁당사국은 원만한 합의에 이르기 위하여 분쟁당사자인 투자자에게 의무적인 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그러한 조정 절차는 분쟁당사국이 분쟁당사자인 투자자에게 전달한 서면 요청에 의하여 개시된다.

---

[27] 인도네시아의 경우, 조치는 인도네시아 보건 서비스 제도를 구성하거나 이와 관련된 것을 포함한다.

8. 이 조에 따른 조정 절차는 분쟁당사국의 서면 협의 요청 접수부터 180 일 내에 분쟁당사국이 전달한 서면 요청에 의해서만 개시될 수 있다.

9. 조정 절차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분쟁당사자들이 동등한 비율로 부담한다. 각 분쟁당사자는 자신의 법적 비용을 부담한다.

10. 제 5 항 및 제 6 항에 따른 협의에 의하여 또는 제 7 항부터 제 9 항까지에 따른 조정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은 모든 그러한 분쟁은 그러한 법원이나 행정재판소가 그러한 청구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분쟁당사국의 법원이나 행정재판소에 제출될 수 있고, 또는 중재에 회부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투자자는 다음 중 선택할 수 있다.

가. 분쟁당사국과 비분쟁당사국이 모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협약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협약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절차의 절차규칙

나. 분쟁당사국 또는 비분쟁당사국 중 하나만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협약의 당사자인 경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

다.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 또는

라. 분쟁당사자들이 그렇게 합의하는 경우, 그 밖의 중재기관 또는 그 밖의 중재규칙

11. 이 조에 의하여 수정되지 않는 한, 적용 가능한 중재규칙이 제 10 항에 규정된 중재를 규율한다.

12. 투자자가 분쟁당사국의 법원 또는 행정재판소나 제 10 항에 규정된 어떠한 중재 메커니즘에 그 분쟁을 제기하면, 그 분쟁해결절차의 선택은 최종적이다.

13. 제 10 항에 따른 분쟁의 중재 회부는 다음을 조건으로 한다.

가. 분쟁당사자인 투자자가 이 협정에 따른 의무 위반 및 적용대상투자와 관련

한 분쟁당사자인 투자자 또는 적용대상투자가 입은 손실 또는 손해를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 수 있었던 시점부터 3년 6개월 내에 발생한 분쟁을 그러한 중재에 회부

나. 분쟁당사자인 투자자는 중재에 청구를 제기하기 최소 90일 전에 분쟁을 그러한 중재에 회부하겠다는 의사에 관한 서면통보를 분쟁당사국에 제공하며, 이는 다음을 포함한다.

1) 분쟁당사자인 투자자와 적용대상투자의 이름 및 주소 기술

2) 제10항가호, 나호, 다호 또는 라호의 포럼 중 하나를 분쟁해결을 위한 분쟁해결절차로 지정

3) 분쟁 중인 사안과 관련하여 제10항에 언급된 그 밖의 분쟁해결절차 전에 모든 다른 절차를 개시할 권리의 포기, 그리고

4) 이 협정에 따른 분쟁당사국의 주장된 위반(위반되었다고 주장되는 조를 포함한다) 및 적용대상투자와 관련한 투자자 또는 적용대상투자에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손실 또는 손해의 간단한 요약, 또는

다. 분쟁당사국이 제7항에 따라 조정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분쟁당사자들은 그 절차에 최소 120일을 소요하고, 분쟁당사자인 투자자는 중재에 청구를 제기하기 최소 60일 전에 분쟁을 그러한 중재에 회부하겠다는 의사에 관한 서면통보를 분쟁당사국에 제공하며 이는 제13항나호에 언급된 정보를 명시한다.

14. 제 13 항나호에도 불구하고 분쟁당사자인 투자자는 분쟁당사국의 법원 또는 행정재판소에서 임시 가처분을 구하고 금전적 손해배상의 지급 또는 분쟁 중인 사안의 실질적인 해결을 수반하지 않는 소송을 개시하거나 계속할 수 있다. 다만, 그 소송은 중재가 계속되는 동안 분쟁당사자인 투자자의 권리 및 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제기되어야 한다.

15. 제 1 항에 따라 위반을 구성한다고 주장되고 동일한 사건이나 상황으로부터 발생하는 동일한 조치 또는 조치들과 관련된 청구가 분쟁당사국과 비당사국 간 합의에 따라 다음에 의하여 개시되거나 지속되는 경우 당사국의 투자자는 이 조에 따라 청구를 시작하거나 계속할 수 없다.

가. 당사국의 투자자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비당사국의 인, 또는

나. 당사국의 투자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비당사국의 인

16. 각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라 이 조에 따른 중재 청구를 제기하는 것에 동의한다. 이 조에 따른 동의와 중재 청구 제기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분쟁당사자들의 서면 동의를 위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협약 제2장(센터의 관할권)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 그리고

나. “서면합의”를 위한 뉴욕협약 제2조

17. 제 10 항에 따라 설립된 중재판정부는 이 협정에 따라 분쟁 중인 쟁점, 양 당사국 간 관계에 적용 가능한 국제법의 관련 규칙 및 적용 가능한 경우, 실제로 청구와 관련이 있을 때, 분쟁당사국의 관련 국내법을 결정한다.

18. 관할권 또는 청구의 허용 가능성에 관한 쟁점이 선결적 항변으로 제기된 경우, 중재판정부는 본안 절차 전에 그 문제를 결정한다. 분쟁당사자들은 중재판정부에 자신들의 견해 및 관찰을 제시할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받는다. 중재판정부는 명백히 근거가 없거나 달리 중재판정부의 관할권 또는 권한 내에 있지 않다고 결정할 경우, 그러한 취지의 판정을 내린다.

19. 분쟁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3 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며, 각 분쟁당사자는 1 명의 중재인을 임명하고, 의장이 되는 세 번째 중재인은 분쟁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임명된다. 이 조에 따라 청구가 중재에 제기된 날부터 75 일 내에

중재판정부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임명권자[28]는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재량으로 아직 임명되지 않은 하나 또는 복수의 중재인을 임명한다. 분쟁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임명권자는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을 의장 중재인으로 임명하지 않는다.

20. 중재인은 국제공법, 국제 무역 또는 국제 투자 규칙에 대한 전문성이나 경험을 보유하고, 분쟁당사국, 비분쟁당사국 또는 분쟁당사자인 투자자로부터 독립적이고, 제휴 관계가 없거나 지시를 받지 않는다.

21.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협약 제 39 조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 제 3 부제 7 조의 목적상, 그리고 국적 외의 근거로 인한 중재인에 대한 이의제기를 저해함이 없이,

가. 분쟁당사국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협약 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의 각 개별 구성원의 임명에 동의한다.

나. 분쟁당사자인 투자자는 중재판정부의 각 개별 구성원의 임명에 서면으로 합의하는 조건에서만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협약 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에 따라 이 조에 따른 중재에 청구를 제기하거나 청구를 계속할 수 있다.

22. 분쟁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가 적용 가능한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지를 결정한다. 다만, 중재지는 뉴욕협약의 당사자인 국가의 영역이어야 한다.

23. 가호 및 나호를 조건으로, 분쟁당사자들은 중재판정부에 의한 모든 판정 및 결정을 공개한다.

가. 비밀정보로 지정된 정보를 심리에서 사용하려는 분쟁당사자는 중재판정부에 이를 알린다. 중재판정부는 그 정보를 공개로부터 보호할 적절한 조치를

[28] 임명권자는 다음을 말한다.
1) 제7.5조에 따른 중재의 경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사무총장
2) 제7.5조에 따른 중재의 경우, 상설중재재판소의 사무총장, 또는
3) 분쟁당사자들 간에 합의된 인

한다.

나. 중재판정부 또는 분쟁당사자들에게 제출된 특별히 비밀로 지정된 모든 정보는 대중에 대한 공개로부터 보호된다.

24. 분쟁당사자는 사건 준비에 필요한 것으로 간주하는 그러한 비밀 정보를 중재절차와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인에게 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분쟁당사자는 그러한 비밀 정보가 보호되도록 요구한다.

25. 중재판정부는 공개되면 법 집행을 저해하거나 당사국의 법에 반하게 되거나 자국의 필수적 안보에 반한다고 당사국이 결정하는 정보를 당사국이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26. 비분쟁당사국은 중재통보가 분쟁당사국에 전달된 날 후 30 일 내에 자국의 비용으로 분쟁당사국으로부터 중재통보 사본을 받을 권리가 있다. 분쟁당사국은 중재통보 접수의 30 일 내에 다른 쪽 당사국에게 그 접수를 통보한다.

27. 분쟁당사국은 제 7.13 조에 규정된 대위변제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분쟁당사자인 투자자가 보험 또는 보증 계약에 따라 주장된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배상 또는 그 밖의 보상을 받았거나 받을 것이라고 항변, 반소, 상계권이나 그 밖의 어떠한 사유로도 주장할 수 없다.

28. 중재판정부가 분쟁당사자들 중 어느 한쪽에 최종적인 패소 판정을 내리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다음만을 별도로 또는 조합하여 판정할 수 있다.

가. 금전적 손해배상과 적용 가능한 이자, 그리고

나. 재산의 원상회복. 이 경우 판정은 분쟁당사국이 원상회복 대신 금전적 손해배상과 적용 가능한 이자를 지불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29. 중재판정부는 또한 이 조와 적용 가능한 중재규칙에 따라 비용 및 변호사 보수를 판정할 수 있다.

30. 한쪽 당사국은 자국 투자자 중 하나 및 다른 쪽 당사국이 이 조에 따라 중재에 제기한 분쟁에 관하여 외교적 보호를 부여하거나 국제 청구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쪽 당사국이 그러한 분쟁에 대하여 내려진 판정을 지키지 못하고 준수하지 못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이 항의 목적상, 외교적 보호는 분쟁해결을 촉진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비공식적인 외교적 의견교환을 포함하지 않는다.

31. 중재판정부에 의하여 내려진 판정은 최종적이고 분쟁당사자들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 판정은 분쟁당사자들 간 그리고 그 특정 사안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32. 제 33 항과 잠정 판정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 재심 절차를 조건으로, 분쟁당사자는 지체 없이 판정을 지키고 준수한다.

33. 분쟁당사자는 다음의 시점까지 최종 판정의 집행을 구하지 않는다.

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협약에 따른 최종 판정의 경우,

1) 판정이 내려진 날부터 120 일이 경과하였고 어떠한 분쟁당사자도 그 판정의 수정 또는 취소를 요청하지 않았을 때, 또는

2) 수정 또는 취소 절차가 완료되었을 때, 또는

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 또는 제10항라호에 따라 선택된 규칙에 따른 최종 판정의 경우,

1) 판정이 내려진 날부터 90 일이 경과하였고 어떠한 분쟁당사자도 그 판정의 수정, 파기 또는 취소를 위한 절차를 개시하지 않았을 때, 또는

2) 법원이 판정에 대한 수정, 파기 또는 취소 신청을 기각하거나 인용하였고 더 이상의 불복청구가 없을 때

34.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서의 판정의 집행을 규정한다.

부속서 7-가

국제관습법

양 당사국은, 국제관습법의 대우의 최소기준과 관련한 것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그리고 제 7.6 조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대로 “국제관습법” 이 국가가 법적 의무감으로부터 따르는 일반적이고 일관된 국가관행으로부터 기인한다는 양 당사국의 공유된 양해를 확인한다.

부속서 7-나

수용

양 당사국은 다음에 대한 양 당사국의 공유된 양해를 확인한다.

1.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는, 그것이 투자에서의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수용을 구성할 수 없다.

2. 제7.12조제1항은 두 가지 상황을 다룬다. 첫 번째는 직접수용으로서, 명의의 공식적 이전 또는 명백한 몰수를 통하여 투자가 국유화되거나 달리 직접적으로 수용되는 경우이다.

3. 제7.12조제1항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두 번째 상황은 간접수용으로서,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명의의 공식적 이전 또는 명백한 몰수 없이 직접수용에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경우이다.

가.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특정한 사실 상황하에서 간접수용을 구성하는지 여부의 결정은 여러 요소 중에서 다음을 고려하는 사안별, 사실에 기초한 조사를 요구한다.

1) 정부 행위의 경제적 영향. 그러나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투자의 경제적 가치에 대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간접수용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지 않는다.

2) 정부 행위가 투자에 근거한 분명하고 합리적인 기대[29]를 침해하는 정도, 그리고

3) 그 목적, 맥락 및 그 행위가 공공의 목적에 불균형한지 여부를 포함한 정부 행위의 성격[30]

---

[29]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투자자의 투자에 근거한 기대가 합리적인지 여부는 관련되는 한도에서의, 정부가 구속력이 있는 서면 보증을 투자자에게 제공했는지 여부와 정부 규제의 성격 및 정도나 관련 요소에서 정부 규제의 가능성과 같은 요소에 달려있다.

[30] 한국의 경우, 관련 고려사항은 공익을 위하여 투자자 또는 투자가 감수할 것으로 기대되어야 할 것을 넘어선 특별한 희생과 같은 불균형적인 부담을 투자자가 지는지 여부를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공중보건, 안전, 환경 및 부동산 가격안정화와 같은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안되고 적용되는 당사국의 비차별적인 규제 행위는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31]

[3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 3 항나호의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 목록은 한정적이지 않다.

부속서 7-다
임시 긴급수입제한조치

1. 이 장, 제6장(서비스무역) 또는 부속서 6-가(금융 서비스)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다음의 경우 지급 및 자본 이동이나 자국이 구체적 약속을 한 서비스무역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 송금에 대하여 임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가. 심각한 국제수지 및 대외적 금융상 어려움이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나. 예외적인 상황에서, 지급 및 자본 이동이 관련 당사국의 통화정책 또는 환율정책의 운영에 심각한 경제적 또는 금융적 혼란이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32]

2. 제1항에 언급된 조치는,

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유효하다. 그리고 제1항의 조건이 존속하는 경우 갱신될 수 있다.

나. 몰수적이지 않다.

다. 이중 또는 다중 환율 관행을 구성하지 않는다.

라.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시장 수익률을 획득할 수 있는 투자자의 능력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만 채택되거나 유지되지 않는다.[33]

마. 「국제통화기금협정」 이 개정되는 경우, 그 개정된 협정에 합치한다.

---

[3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투기성 자본 유출 방지를 포함한 환율 안정성 보장을 위하여 취해지는 어떠한 조치도 특정 분야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되거나 유지되지 않는다.

[3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투자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제 1 항에 언급된 조치의 의도하지 않은 영향 그 자체만으로는 시장수익률을 획득할 수 있는 투자자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바. 다른 쪽 당사국의 상업적, 경제적 그리고 재정상의 이익에 대한 불필요한 손해를 피한다.

사.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및 적용대상투자에 대한 불필요한 손해를 피한다.

아. 제1항에 기술된 상황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초과하지 않는다.

자. 일시적이며 제1항에 기술된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해제된다.

차. 어떠한 당사국도 비당사국보다 불리하게 대우받지 않는 비차별적인 기준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그리고 내국민 대우에 기초하여 적용된다. 그리고

카. 다른 쪽 당사국에 신속하게 통보된다.

이 장, 제6장(서비스무역) 또는 부속서 6-가(금융 서비스)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통화기금협정」의 당사자로서 당사국이 향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를 변경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8장
경제협력

제8.1조
기본원칙

1. 이 협정에 따른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의 상이한 발전 수준과 역량을 고려하여 상호 관심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한다. 지역 및 세계 가치사슬에서의 양 당사국의 역할을 심화하고 확장하기 위하여 경제적 상보성을 향상시킬 역량 강화에 특별히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2. 이 협정에 따른 경제협력의 이행을 증진하고 원활히 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각 정부 간의 조정을 수행하며,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 어느 한쪽 또는 양쪽 상대방이 양 당사국의 정부가 아닌 기관 간의 협력을 장려하고 촉진한다. 양 당사국이 상호 관심을 가지는 협력 분야에 대한 양 당사국의 상호 이익에 기초하여, 양 당사국은 적절한 형태의 활동으로 협력할 것이다.

3. 양 당사국 간에 진행 중인 경제협력 이니셔티브의 가치를 재확인하면서, 양 당사국은 이 협정 외의 틀에 따른 기존의 경제협력을 존중하고 지속하며, 업무나 활동의 중복이 없을 것임을 보장한다.

4. 양 당사국은 각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이 협정에 규정된 경제협력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규정들을 인정한다.

제8.2조
협력 분야

1. 양 당사국은 상호 이익에 기초하여 협력활동을 발굴하고 수행한다.

2. 산업 관련 분야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자동차

나. 철강 및 금속

다. 화학제품

라. 정보통신기술

마. 전자제품

바. 기계

사. 의류, 섬유 및 의복

아. 선박

자. 항공기

차. 식품 및 음료, 그리고

카.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협력 분야

3. 농업, 수산업 및 임업 관련 분야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축산 및 작물 생산

나. 수산업 및 임업 분야에서의 투자여건 개선

다. 각 당사국의 관련 국내 법과 규정에 따른 수산업 및 임업 분야 투자자의 수요 충족

라. 산림 관리

마. 농업 기반 및 식품 가공, 그리고

바.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협력 분야

4. 무역 규칙 및 절차 관련 분야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나. 위생 및 식물위생

다. 통관절차

라. 원산지 규정 및 그 밖의 관세양허 이행의 측면

마. 지식재산, 그리고

바.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협력 분야

5. 자연인의 이동 관련 분야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전문가, 그리고

나. 연수생

6. 그 밖의 협력 분야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중소기업 지원 정책

나. 통계

다. 공정 경쟁

라. 사회기반시설

마. 투자

바. 과학, 기술 및 혁신

사. 문화 및 그 밖의 창의적인 분야

아. 에너지 및 광물 자원

자. 보건의료

차. 환경

카. 건설 서비스, 그리고

타.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협력 분야

제8.3조

협력 형태

경제협력의 형태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가. 기술 지원

나. 인적자원 훈련

다. 데이터 및 정보 교환

라. 전문가 교류

마. 주제 세미나 및 워크숍

바. 제도의 설계 및 개선

사. 분야별 종합추진계획 수립

아. 발전전략 수립

자. 모범사례 공유

차. 기초연구

카. 공동연구 및 개발

타. 공동의 무역 및 투자 증진 활동

파. 모델 및 기술 이전, 그리고

하.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협력 형태

제8.4조

이행

1. 협력은 각 당사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이행된다.

2. 이 장의 효과적인 이행 및 운영을 위하여, 양 당사국은 경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기능 및 절차를 규정하며 기존의 양자 경제협력 사업, 계획 및 활동을 강화하고 보완하는 이행약정을 체결한다.

3. 양 당사국은 상호 합의된 기간에 양국의 우선순위에 따라 협력사업을 수행한다. 그 사업은 의도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의하여 감독 및 검토된다.

4. 양 당사국은 상이한 발전 수준과 역량을 고려하며, 상호 이해 또는 합의에 기초하여 적절하게 이행 비용을 부담한다.

5. 협력 분야의 이행을 위한 자금조달은 이행약정에 상세하게 규정된다.

제8.5조
경제협력 자원

1. 양 당사국은 이 장의 이행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채택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2. 양 당사국은 각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이 장의 경제협력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자원 및 그 밖의 자원이 이용 가능하도록 노력한다.

3. 이 장에 따른 경제협력을 위한 자금조달은 양 당사국의 상이한 발전수준을 고려하여 상호 합의에 따라 부담된다.

제8.6조
분쟁해결

어떠한 당사국도 이 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 제10장(분쟁해결)을 이용하지 않는다. 이 이행약정의 해석 및 이행과 관련된 양 당사국 간의 모든 분쟁은 협의를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제 9 장
투명성

제 9.1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판정이란 그 범위에 일반적으로 해당하는 모든 인과 사실 상황에 적용되고 행위규범을 형성하는 행정판정 또는 해석을 말하나, 다음을 포함하지 않는다.

가.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특정한 인, 상품 또는 서비스에 적용되는 행정절차에서 내려진 결정이나 판정, 또는

나. 특정 행위 또는 관행에 대하여 내려진 판정

제 9.2 조
공표

1.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에 관한 국내 법, 규정, 절차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판정을 신속하게 공표하거나, 달리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2. 가능한 한도에서,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가. 자국이 채택을 제안하는 제1항에 언급된 조치를 사전에 공표한다. 그리고

나. 이해관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에 그러한 제안된 조치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제 9.3 조
정보의 제공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은 그 요청 당사국이 이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제 9.2 조에 언급된 실제 또는 제안된 조치와 관련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이에 대한 질의에 응답한다.

제 9.4 조
행정절차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에 관한 국내 법, 규정, 절차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판정을 일관되고 공평하며 합리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특정한 인,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이 조치를 적용하는 자국의 행정절차에서 다음을 보장한다.

가.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절차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게, 그 절차의 성격에 대한 기술, 절차가 개시되는 법적 권한에 대한 진술 및 쟁점에 대한 일반적 기술을 포함한 합리적인 통지를 절차가 개시될 때에 적용 가능한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제공할 것

나. 시간, 절차의 성격, 그리고 공익이 허용할 때에는, 절차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게 최종 행정처분 전에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는 사실과 주장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 그리고

다. 자국의 절차는 자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따를 것

제 9.5 조
재심 및 불복청구

1.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에 관하여 행정처분의 신속한 재심을 목적으로, 그리고 정당한 경우 그 정정을 목적으로, 사법, 준사법 또는 행정재판소나 절차를 수립하거나 유지한다. 그러한 재판소는 공평하고, 행정 집행을 맡은 부서 또는 당국으로부터 독립적이며, 사안의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실질적 이해관계도 가지지 않는다.

2. 각 당사국은 그러한 재판소나 절차에서 그 절차의 당사자에게 다음의 권리가 제공되도록 보장한다.

가. 각자의 입장을 지지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합리적 기회, 그리고

나. 증거와 기록된 제출자료, 또는 국내 법과 규정에서 요구되는 경우 행정 당국에 의하여 취합된 기록에 기초한 결정

3. 제 2 항나호의 결정은, 국내 법과 규정에 규정된 불복청구 또는 추가 재심을 조건으로, 행정 집행을 맡은 당국에 의하여 이행된다.

제 10 장
분쟁해결

제10.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중재패널이란 제10.7조에 따라 설치된 패널을 말한다.

중재인이란 제10.7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패널의 구성원을 말한다.

후보자란 제 10.9 조에 따라 제 3 의 중재인으로 임명되는 것이 고려되는 개인을 말한다.

제소 당사국이란 제10.7조에 따라 중재패널의 설치를 요청하는 당사국을 말한다.

피소 당사국이란 제10.3조에 언급된 대로 이 협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되는 당사국을 말한다. 그리고

절차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이 장에 따른 중재패널 절차를 말한다.

제10.2조
목적

1. 이 장은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의 회피 또는 해결을 위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하여 합의하도록 항상 노력하며, 이 장에 따라 제기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협력 및 협의를 통한 모든 시도를 한다.

제 10.3 조
적용범위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되거나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은 다음에 대하여 적용된다.

가. 이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양 당사국 간의 모든 분쟁의 회피 또는 해결에 대하여, 또는

나. 한쪽 당사국이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1) 다른 쪽 당사국의 조치가 이 협정상의 자국의 의무와 불합치한다. 또는

2) 다른 쪽 당사국이 이 협정상의 자국의 의무를 달리 이행하지 못했다.

제 10.4 조
분쟁해결절차의 선택

1. 어떠한 사안에 대한 분쟁이 이 협정과 세계무역기구협정 또는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그 밖의 협정에서 발생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해결절차를 선택할 수 있다.

2. 제소 당사국이 제 1 항에 언급된 협정 중의 하나에 따라 분쟁해결패널의 설치를 요청하였거나 사안을 분쟁해결패널에 회부하였으면, 선택된 분쟁해결절차가 절차적 또는 관할적인 이유로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선택된 분쟁해결절차는 다른 절차를 배제하고 이용된다.

제 10.5 조
협의

1. 각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 10.3 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협의 요청은 서면으로 제출되고, 문제가 되는 특정 조치 또는 그 밖의 사안에 대한 적시와 제소의 법적 근거에 대한 표시를 포함하여 그 요청의 사유를 제시한다.

3. 협의 요청이 이루어진 경우, 피소 당사국은 그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내에 응답한다. 양 당사국은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에 도달하기 위하여 그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내에 선의로 협의를 개시한다.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협의는 피소 당사국의 영역에서 개최된다.

4. 부패성 상품에 관한 경우를 포함하여 긴급한 경우, 양 당사국은 피소 당사국이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15일 내에 협의를 개시한다.

5. 협의가 개시되면 양 당사국은 문제가 되는 조치가 이 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며, 협의 과정에서 교환된 정보는 비밀로 취급한다.

6. 이 조항에 따른 협의는 비밀이며 이 협정상의 어떠한 추가적인 절차 또는 그 밖의 절차에서도 어느 한쪽 당사국의 권리를 저해하지 않는다.

제 10.6 조
주선, 화해 또는 조정

1. 주선, 화해 또는 조정은 어느 한쪽 당사국에 의하여 언제든지 요청될 수 있다. 이들은 양 당사국의 합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개시될 수 있고,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언제든지 종료될 수 있다.

2.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이 장에 규정된 중재패널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주선, 화해 또는 조정은 계속될 수 있다.

3. 주선, 화해 또는 조정과 관련된 절차와 특히 그 절차에서 양 당사국이 취한 입장은 비밀이며, 이 협정상의 어떠한 추가적인 절차 또는 그 밖의 절차에서도 어느 한쪽 당사국의 권리를 저해하지 않는다.

제 10.7 조
중재패널의 설치

1. 제10.5조에 따라 협의 요청을 한 제소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서면으로 피소 당사국에 중재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가. 피소 당사국이 제 10.5 조제 3 항 및 제 4 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30 일 내에 또는 부패성 상품에 관한 경우를 포함하여 긴급한 경우 15 일 내에 그러한 협의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나. 양 당사국이 협의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0 일 내에 또는 부패성 상품에 관한 경우를 포함하여 긴급한 경우 30 일 내에 그러한 협의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

2. 중재패널의 설치에 대한 요청은 피소 당사국에 서면으로 한다. 제소 당사국은 자국의 요청에서, 문제가 되는 조치 또는 그 밖의 사안, 그리고 그 문제를 분명하게 제시하기에 충분한 제소의 사실적 및 법적 근거를 적시한다.

제 10.8 조
중재패널의 위임사항

1. 양 당사국이 중재패널 설치일 후 5일 내에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패널의 위임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 협정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제 10.7 조에 따른 중재패널 설치의 요청에 언급된 사안을 조사하고,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그 사유와 함께 법 및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결정 및 권고를 하는 것"

2. 양 당사국이 그 밖의 위임사항에 합의하는 경우,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패널에 합의된 위임사항을 통보한다.

제 10.9 조
중재패널의 구성

1.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패널은 3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된다.

2. 각 당사국은 중재패널의 설치에 관한 요청의 접수일부터 30 일 내에, 자국의 국민일 수 있는 중재인을 한 명씩 임명하고, 중재패널의 의장이 되는 세 번째 중재인 역할을 할 최대 3 명의 후보자를 제안한다. 양 당사국은 중재패널의 설치에 관한 요청의 접수일부터 45 일 내에, 제안된 후보자를 고려하여, 중재패널의 의장 역할을 할 세 번째 중재인을 합의하여 임명하도록 노력한다. 양 당사국이 45 일 내에 세 번째 중재인을 합의하여 임명하지 못하는 경우, 양 당사국은 7 일 내 회합하여 양 당사국에 의하여 제안된 후보자 명부에서 추첨으로 의장을 선정한다.

3. 제2항에 언급된 세 번째 중재인 후보자는 어느 당사국의 국민도 아니고, 어느 당사국에도 통상적인 거주지가 없으며, 어느 당사국에 의하여도 고용되어 있지 않고, 어떠한 자격으로도 그 분쟁을 다루지 않았어야 한다.

4. 중재패널의 설치일은 세 번째 중재인이 임명되는 날이다.

5. 모든 중재인은 이 협정과 관련된 법, 국제무역 또는 그 밖의 사안, 또는 국제무역협정상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대한 전문성이나 경험을 보유한다. 각 중재인은 독립적이고, 개인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그 분쟁과 관련된 어느 한쪽 당사국이나 기관과 연계되거나 이들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고, 부속서 10-나를 준수한다.

6. 한쪽 당사국이 중재인이 부속서 10-나의 요건들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양 당사국은 협의하고 합의하에 그 중재인을 제7항에 따라 교체한다.

7. 이 조에 따라 임명된 중재인이 사임하거나 절차에 참석할 수 없게 되거나, 또는 제6항에 따라 교체되어야 하는 경우, 후임자는 15일 내에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임명 방식에 따라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선정된다. 후임자는 원 중재인의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중재패널의 업무는 중재인이 사임하거나 절차에 참석할 수 없게 되거나, 또는 제6항에 따라 교체되어야 하는 날부터 정지된다. 중재패널의 업무는 후임자가 임명되는 날 재개된다.

제 10.10 조
중재패널 절차

1. 중재패널은 비공개 회의로 회합한다. 양 당사국은 중재패널의 초청을 받는 경우에 한정하여 회의에 참석한다.

2. 양 당사국은 적어도 하나의 서면입장을 제출하고, 절차상 발표, 진술 또는 반박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잠정보고서에 대한 의견과 중재패널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포함하여, 한쪽 당사국이 중재패널에 제출한 모든 정보 또는 서면입장은 다른 쪽 당사국이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3. 다른 쪽 당사국의 조치가 이 협정과 불합치하다고 주장하는 한쪽 당사국은 그러한 불합치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어떠한 조치가 이 협정상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당사국은 그 예외의 적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4. 중재패널은 적절한 경우 양 당사국과 협의하고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개발하기 위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5. 중재패널은 국제공법에 관한 관습적인 해석규칙에 따라, 양 당사국이 채택한 해석을 적절히 고려하여, 이 협정을 해석한다.

6. 중재패널은 보고서를 포함하여 컨센서스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보고서를 포함하여 과반수 투표로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7. 중재패널은 양 당사국에 관련 정보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획득한 모든 조언이나 의견의 사본, 그리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제공한다.

8. 중재패널의 심의 및 중재패널에 제출된 문서는 비밀로 취급된다.

9. 제 8 항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 당사국은 분쟁에 관한 자국의 견해에 대하여 공식 발표를 할 수 있으나, 다른 쪽 당사국이 비밀로 지정하여 중재패널에 제출한 정보와 서면입장은 비밀로 취급한다. 한쪽 당사국이 비밀로 지정된 정보 또는 서면입장을 제공한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는 비밀이 아닌 정보 또는 서면입장의 요약본을 제공한다.

10. 중재패널의 보고서는 양 당사국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초안이 작성된다. 중재패널은 이 협정의 관련 규정과 양 당사국의 입장 및 주장에 기초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며, 중재패널에 제공된 그 밖의 모든 관련 정보를 고려할 수 있다.

11. 중재패널의 보고서는 양 당사국의 입장 또는 주장을 요약하는 서술적 부분과 중재패널의 조사결과 및 판정을 모두 포함한다.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중재패널은 분쟁의 해결을 위한 권고를 보고서에 포함할 수 있다. 중재패널의 조사결과 및 판정,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어떠한 권고도 이 협정에 규정된 양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증가시키거나 축소시킬 수 없다.

12. 중재패널 절차의 장소는 양 당사국 간 상호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합의하지 않은 경우, 장소는 양 당사국의 수도가 교대로 되며 중재패널절차의 첫 번째 회의는 피소 당사국의 수도에서 개최된다.

제 10.11 조
절차의 정지 또는 종료

1.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중재패널은 그렇게 합의한 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언제라도 자신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지된 중재패널 절차는 재개된다. 그러한 정지의 경우, 중재패널의 업무와 관련된 기간은 업무가 정지된 기간만큼 연장된다. 어떠한 경우라도, 중재패널 업무의 정지의 각각의 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패널의 권한은 실효된다. 이 실효는 제소 당사국이 향후 동일한 사안에 대한 중재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권리를 저해하지 않는다.

2. 양 당사국은 최종 보고서가 양 당사국에 제출되기 전 언제든지 중재패널의 의장에게 공동으로 통지함으로써 중재패널 절차를 종료하도록 합의할 수 있다.

3. 중재패널은 판정을 내리기 전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도 분쟁이 우호적으로 해결되도록 양 당사국에 제안할 수 있다.

제 10.12 조
잠정보고서

1.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패널은 중재패널의 설치일부터 90 일 내에 관련 규정의 적용 가능성과 모든 조사결과에 대한 기본 근거뿐만 아니라, 다음에 대한 서술적 부분, 조사결과 및 판정,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권고를 포함하는 잠정보고서를 양 당사국에 제출한다.

가. 문제가 되는 조치가 이 협정상의 의무와 불합치하는지 여부, 또는

나. 당사국이 이 협정상의 자국의 의무를 달리 이행하지 못했는지 여부

2. 중재패널이 잠정보고서의 기한을 맞출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재패널은 양 당사국의 동의하에 지연의 이유와 패널이 잠정보고서를 제출하기로 계획한 날을 적시한 서면 통보로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잠정보고서는 중재패널의 설치일 후 120 일 내에 제출되어야 할 것이다.

3. 어느 한쪽 당사국은 잠정보고서의 제출로부터 15 일 내에 그 보고서에 대한 서면 의견을 중재패널에 제출할 수 있다. 잠정보고서에 대한 양 당사국의 서면 의견을 고려한 후, 중재패널은 보고서를 수정할 수 있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검토를 할 수 있다.

제 10.13 조
최종보고서

1.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패널은 잠정보고서의 제출일부터 30 일 내에 양 당사국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한다.

2. 중재패널이 최종보고서의 기한을 맞출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재패널은 양 당사국의 동의하에 지연의 이유와 패널이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기로 계획한 날을 적시한 서면 통보로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최종보고서는 중재패널의 설치일 후 150 일 내에 제출되어야 할 것이다.

3. 부패성 상품에 관한 경우를 포함하여 긴급한 경우, 중재패널은 제 10.12 조제 1 항 및 제 10.13 조제 1 항에 따른 각 기간의 절반 내에 잠정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모든 노력을 한다.

제 10.14 조
최종보고서의 이행

1. 최종보고서의 중재패널의 판정은 최종적이고 양 당사국을 구속하며,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중재패널이 최종보고서에서 피소 당사국이 이 협정의 관련 규정에 따른 자국의 의무에 합치하지 않았다고 판정하는 경우,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피소

당사국은 그 불합치를 즉시, 또는 그것이 실행 불가능한 경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제거한다.

3. 제2항에 언급된 합리적인 기간은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한다. 양 당사국이 중재패널 최종보고서의 제출일부터 45일 내에 합리적인 기간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어느 한쪽 당사국은 이 사안을 원 중재패널에 회부할 수 있으며, 해당 중재패널은 합리적인 기간을 결정한다.

4. 피소 당사국은 중재패널의 판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자국이 한 이행 조치를 양 당사국이 합의하거나 제3항에 따라 원 중재패널이 결정한 합리적인 기간의 종료 전에 제소 당사국에 통보한다. 피소 당사국이 제3항에 따라 결정된 합리적인 기간 내에 중재패널 최종보고서에서 판정된 대로 불합치를 제거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양 당사국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어느 한쪽 당사국은 이 사안을 원 중재패널에 회부할 수 있다.

5. 이 조의 목적상 설치된 중재패널은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원 중재패널의 중재인들을 중재인으로 가진다.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이 조의 목적상 설치된 중재패널의 중재인들은 제10.9조에 따라 임명된다. 중재패널은 그 사안이 중재패널에 회부된 날 후 합리적인 기간에 대해서는 20일 내에, 그 밖의 문제에 대해서는 45일 내에 보고서를 양 당사국에 제출한다. 중재패널이 위에서 언급된 기간 내에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간은 양 당사국의 동의하에 최대 30일까지 중재패널에 의하여 연장될 수 있다. 그 보고서는 양 당사국을 구속한다.

제 10.15 조
불이행, 보상과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

1. 피소 당사국이 합리적인 기간의 만료 전에 이행 조치를 통보하지 못하거나 제소 당사국에 이행이 실행 불가능하다고 통보하는 경우, 또는 제10.14조제4항에 따라 사안이 회부된 중재패널이 피소 당사국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불합치를 제거하지 못했다고 판정하는 경우, 피소 당사국은 그렇게 요청받는 경우 상호 만족할 만한 보상에 도달하기 위하여 제소 당사국과 교섭을 개시한다.

2. 제1항에 언급된 요청의 접수일부터 20일 내에 만족할 만한 보상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언제든지 피소 당사국에 대한 이 협정상의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적용을 정지하려고 한다는 서면 통보를 피소 당사국에 할 수 있다. 제소 당사국은 그러한 정지의 통보로부터 30일 후에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를 개시할 수 있다.

3. 제1항에 언급된 보상과 제2항에 언급된 정지는 임시적인 조치이다. 보상과 정지 모두 중재패널 보고서에서 판정된 대로 불합치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보다 선호되지 않는다. 정지는 불합치가 완전히 제거되거나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책에 도달하는 때까지만 적용된다.

4. 제2항에 따라 어떠한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할 것인지를 검토할 때,

가. 제소 당사국은 제10.13조에 언급된 중재패널 보고서가 이 협정상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확인한 그 동일 분야에서의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를 우선 구해야 할 것이다.

나. 제소 당사국이 동일 분야에 대한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하는 것이 실행 가능하지 않거나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그 밖의 분야에 대한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그러한 정지에 대한 통보는 그 기초가 되는 근거를 적시한다. 그리고

다. 제2항에 언급된 정지의 수준은 무효화 또는 침해의 수준과 동등하다.

5. 제소 당사국에 의한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를 위한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된 요건들이 충족되지 못했다고 피소 당사국이 판단하는 경우, 피소 당사국은 그 사안을 중재패널에 회부할 수 있다.

6. 이 조의 목적상 설치된 중재패널은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원 중재패널의 중재인들을 중재인으로 가진다.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이 조의 목적상 설치된 중재패널의 중재인들은 제10.9조에 따라 임명된다. 이 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패널은 그

사안이 중재패널에 회부된 날 후 45일 내에 보고서를 양 당사국에 제출한다. 중재패널이 위에서 언급된 기간 내에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간은 양 당사국의 동의하에 최대 30일까지 중재패널에 의하여 연장될 수 있다. 그 보고서는 양 당사국을 구속한다.

제 10.16 조
절차 규칙

1. 이 장에 따른 분쟁해결절차는 부속서 10-가에 규정된 중재절차 규칙의 규율을 받는다. 양 당사국은 중재패널과 협의하여, 이 부속서의 규정과 불합치하지 않는 추가적인 절차 규칙을 채택하기 위하여 합의할 수 있다.

2. 이 장과 부속서 10-가에 규정된 모든 기간 또는 그 밖의 중재패널 절차 규칙은 양 당사국의 상호 동의에 의하여 수정될 수 있다. 양 당사국은 또한 언제라도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할 수 있다.

제 10.17 조
경비

1.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각 당사국은 자국이 임명한 중재인의 비용과 자국의 경비 및 법률 비용을 부담한다.

2.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패널 의장의 비용과 절차 수행에 관련된 그 밖의 경비는 양 당사국이 동등하게 부담한다.

제 10.18 조
부속서

부속서 10-가와 10-나는 이 장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부속서 10-가
중재절차 규칙

정의

1. 이 장의 목적상,

자문인이란 당사국이 고용한 인으로서 중재패널 절차와 관련하여 그 당사국에게 자문하거나 당사국을 보조하는 인을 말한다.

보조인이란 중재인의 임명 조건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거나 그 중재인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인을 말한다. 그리고

당사국의 대표자란 당사국이 자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임명한 모든 인을 말한다.

행정 운영

2.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중재패널 절차가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개최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중재절차의 행정 운영, 특히 심리의 행정사항을 담당한다.

통보

3. 어느 한쪽 당사국 또는 중재패널에 의하여 전달되는 모든 요청, 통보, 서면입장 또는 그 밖의 문서는 영수증을 받는 송달, 등기우편, 쿠리어, 모사전송, 텔렉스, 전신 또는 발송기록을 제공하는 그 밖의 모든 통신수단으로 전송된다.

4.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과 각 중재인에게 자국의 각 서면입장의 사본을 제공한다. 문서의 사본은 전자적 형식으로도 제공된다.

5. 모든 통보는 작성되어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통상부에 각각 전달된다.

6. 중재패널 절차와 관련된 모든 요청, 통보, 서면입장 또는 그 밖의 문서에서 사무적 성격의 사소한 오류는 그 변경사항을 명확히 나타내는 새로운 문서의 전달로 시정될 수 있다.

7. 문서 전달 마감일[1]이 어느 한쪽 당사국의 법정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문서는 다음 영업일에 전달될 수 있다.

최초 입장

8. 제소 당사국은 중재패널의 설치일 후 30일 내에 자국의 최초 서면입장을 전달한다. 피소 당사국은 제소 당사국의 최초 서면입장의 접수일 후 30일 내에 자국의 반박 서면입장을 전달한다.

중재패널의 운영

9. 중재패널의 의장은 중재패널의 모든 회의를 주재한다. 중재패널은 행정적 및 절차적인 결정을 내릴 권한을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0. 이 장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중재패널은 전화,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연결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통하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1. 중재인만이 중재패널의 심의에 참여할 수 있으나, 중재패널은 그러한 심의에 중재인의 보조인의 참석을 허락할 수 있다.

[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부속서의 목적상 전달일이란 제출된 문서가 목적지에 도달한 날이다.

12. 모든 결정 및 판정의 초안 작성은 중재패널이 전적으로 담당하며, 위임되지 않는다.

13. 이 장이 다루지 않는 절차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중재패널은 양 당사국과 협의 후, 이 장과 불합치하지 않는 적절한 절차를 채택할 수 있다.

14. 중재패널이 절차에 적용 가능한 이 장에 규정된 기한을 수정하거나, 절차에 그 밖의 절차적 또는 행정적 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재패널은 수정 또는 조정에 대한 이유를 필요한 기한 또는 조정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서면으로 양 당사국에게 알린다.

15.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중재인에게 지급되는 보수와 비용은 통상적으로 세계무역기구의 기준에 따를 것이다.

심리

16.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최소한 한 번의 심리가 개최된다. 의장은 양 당사국 및 중재패널의 나머지 구성원들과 협의하여 심리 일시를 정한다. 중재패널의 의장은 심리의 날짜, 시간 및 장소를 서면으로 양 당사국에 통보한다. 이 부속서 제21항에 따라 양 당사국이 심리를 공중에 공개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절차의 행정 운영을 담당하는 당사국은 그 정보를 또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17. 중재패널은 양 당사국이 그렇게 합의하는 경우 추가 심리를 열 수 있다.

18. 모든 중재인은 모든 심리의 전 과정에 참석한다.

19. 당사국의 대표자, 당사국의 자문인, 전문가, 행정 인력, 통역사, 번역사, 법원서기, 그리고 중재인의 보조인은 심리가 공중에게 공개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심리에 참석할 수 있다. 중재패널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당사국의 대표자와 자문인만이 중재패널에게 발언할 수 있다.

20. 각 당사국은 심리일의 최소 5일 전에 그 당사국을 대신하여 심리에서 구두 변론이나 발언을 할 인과 심리에 참석할 그 당사국의 대표자, 자문인, 통역사 및 번역사의 명부를 중재패널에 전달한다.

21. 중재패널의 심리는 공중에게 비공개된다. 양 당사국은 심리를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공중에게 공개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22. 중재패널은 제소 당사국과 피소 당사국에게 동일한 시간이 부여되도록 보장하면서 다음의 방식으로 심리를 수행한다.

주장

가. 제소 당사국의 주장, 그리고

나. 피소 당사국의 주장

반박 주장

가. 제소 당사국의 답변, 그리고

나. 피소 당사국의 반박 답변

23. 중재패널은 심리 동안 언제라도 어느 한쪽 당사국 또는 전문가에게 질문할 수 있다.

24. 중재패널은 각 심리의 속기록이 준비되도록 주선하고, 속기록이 준비된 후 가능한 한 조속히 속기록 사본을 양 당사국에 전달한다. 양 당사국은 속기록에 대하여 의견을 밝힐 수 있으며, 중재패널은 그 의견의 반영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25. 각 당사국은 심리일부터 10일 내에 심리 동안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응답하는 보충적 서면입장을 전달할 수 있다.

서면 질문

26. 중재패널은 절차 동안 언제라도 한쪽 당사국 또는 양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질문을 제시할 수 있다. 중재패널은 질문이 제시된 당사국에 질문서를 전달하고 다른 쪽 당사국에게 질문서 사본을 보낸다.

27. 중재패널이 질문서를 제시한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 및 중재패널에 모든 서면 답변서 사본을 전달한다. 각 당사국은 접수일부터 7일 내에 답변에 대한 서면 의견을 제공할 기회를 가진다.

일방적 의사소통

28. 중재패널이 고려 중인 사안에 관하여 중재패널과의 의사소통은 일방적이지 않다.

29. 어떠한 중재인도 나머지 중재인의 참석 없이 한쪽 당사국 또는 양 당사국과 그 절차의 대상이 되는 사안의 어떠한 측면도 논의할 수 없다.

기술적 조언 요청에 의한 기한 정지

30. 중재패널은 양 당사국 및 전문가와 협의하여 전문가가 자신의 의견 또는 조언을 제출할 기한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가가 이 항의 첫 번째 문장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자신의 의견 또는 조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중재패널은 양 당사국과 협의하여 전문가에게 추가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 추가 기간이 이 항의 첫 번째 문장에 따라 정해진 기간의 절반을 넘지 않는다.

31. 전문가의 서면 보고서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이 전달된 날부터 보고서가 중재패널에게 전달되는 날까지 중재패널 절차에 적용 가능한 모든 기한은 정지된다.

외부조언자의 입장

32. 중재패널의 설치일부터 3일 내에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중재패널은 양 당사국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자발적인 서면입장을 접수할 수 있다. 다만, 그 서면입장은 중재패널의 설치일부터 10일 내에 제출되고, 간결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부속서를 포함하여 15쪽보다 더 길지 않아야 하고, 중재패널이 고려 중인 사실적 및 법적인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야 한다.

33. 제32항에 언급된 입장은 자연인 또는 법인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활동 성격 및 자금조달 출처를 포함하여 그 입장을 제출하는 인에 대한 기술을 포함하고, 그 인의 국적 또는 설립 장소 및 그 인이 중재절차에서 가지는 이해관계의 성격을 명시한다. 그 서면입장은 제35항에 따른 공동 작업언어로 작성된다.

34. 중재패널은 자신이 접수했던 제32항 및 제33항에 부합하는 모든 입장을 자신의 판정에 목록화한다. 중재패널은 그러한 입장에서 제기된 주장을 자신의 판정에서 다루도록 강제되지 않는다. 제32항부터 제34항까지에 따라 중재패널이 획득한 모든 입장은 의견을 구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에 제출된다.

번역 및 통역

35. 제10.5조에 언급된 협의 동안, 그리고 이 부속서 제9항에서 언급된 회의 전에,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중재패널 절차의 공동 작업언어는 영어이다. 당사국이 절차 중에 통역을 사용하기로 결정한다면, 준비 및 비용 부담은 그 당사국이 진다.

36. 이 장에 따라 절차에서의 사용을 위하여 제출되는 모든 문서는 영어로 작성된다. 어떠한 원본 문서가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 절차에서의 사용을 위하여 그 문서를 제출하는 당사국은 그 문서의 영어 번역본을 제공한다.

기한 계산

37. 이 장에 규정된 모든 기한은 달력상의 일로 계산되고, 첫째 날은 그 기한이 관련되는 행위 또는 사실의 다음 날이 된다.

38. 제7항의 이행을 이유로,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이 문서를 접수한 날과 다른 날 동일한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 그러한 접수에 의존하여 기산되는 모든 기한은 그러한 문서를 접수한 마지막 날부터 기산된다.

그 밖의 절차

39. 제10.14조 제3항 및 제4항 그리고 제10.15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사안을 회부하는 당사국은 자국의 최초의 서면입장을 사안의 회부일부터 15일 내에 전달하고, 피소 당사국은 최초로 서면입장을 접수한 날부터 15일 내에 자국의 반박 서면입장을 전달한다.

40. 제10.14조 및 제10.15조와 이 부속서에 규정된 중재패널 절차의 기한에 따라 각 당사국에 같은 수의 서면입장 작성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 중재패널은 반박 서면입장을 포함한 추가 서면입장 전달 기한을 정한다.

41.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이 부속서는 제10.14조 및 제10.15조에 따라 정해진 절차에 또한 적용 가능하다.

부속서 10-나
중재인에 대한 행동 규범

정의

1. 이 장의 목적상,

직원이란, 중재인에 대하여, 보조인을 제외하고 그 중재인의 지시와 통제 하에 있는 인을 말한다.

절차에 대한 책임

2. 모든 후보자와 중재인은 분쟁해결 절차의 완전 무결성과 공평성이 보존될 수 있도록 부정과 부정의 인상을 피하고, 독립적이고 공평하며, 직접적 및 간접적인 이해의 상충을 피하고, 고도의 행위 규범을 준수하며, 이 행동 규범을 숙지한다. 전임 중재인들은 제 15 항부터 제 18 항까지에 확립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공개 의무

3. 제 10.9 조에 따라 중재인으로서 자신의 선정이 확정되기 전에, 후보자는 자신의 독립성 또는 공평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절차에서 합리적 기준으로 볼 때 부정 또는 편견의 인상을 야기할 수도 있는 모든 이해, 관계 또는 사안을 공개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후보자는 그러한 모든 이해, 관계 및 사안을 인지하도록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한다.

4. 일단 선정되면, 중재인은 제 3 항에 언급된 모든 이해, 관계 또는 사안을 인지하도록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이를 공개한다. 공개 의무는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이해, 관계 또는 사안을 중재인이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지속적인 의무이다. 중재인은 그러한 이해, 관계 또는 사안을 양 당사국의 검토를 위하여 서면으로 공동위원회에 전달함으로써 공개한다.

임무

5. 선정되는 경우, 중재인은 절차의 과정 내내 자신의 임무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행한다.

6. 중재인은 모든 임무를 공정하고 근면하게 수행한다.

7. 중재인은 절차에서 제기되고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문제만을 검토하며, 결정할 임무를 그 밖의 어떠한 인에게도 위임하지 않는다.

8. 중재인은 자신의 보조인 및 직원이 제 2 항, 제 3 항, 제 4 항, 제 16 항, 제 17 항 및 제 18 항을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한다.

9. 중재인은 부속서 10-가의 제 28 항 및 제 29 항에 따라 절차에 관한 일방적 의사소통을 하지 않는다.

중재패널 구성원의 독립성 및 공평성

10. 중재인은 독립적이고 공평하다. 중재인은 공평한 태도로 행동하며, 부정 또는 편견의 인상을 야기하는 것을 피하고, 자신의 이익, 외부 압력, 정치적 고려, 공중의 요구, 당사국에 대한 충성, 또는 비판에 대한 두려움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11. 중재인은 자신의 임무에 대한 적절한 수행을 어떠한 식으로든 방해하거나 방해할 인상을 주는 모든 의무나 혜택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부담하거나 수용하지 않는다.

12. 중재인은 모든 개인적 또는 사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중재패널에서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다. 중재인은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지위에 있다는 인상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피한다.

13. 중재인은 과거 또는 기존의 재정적, 사업적, 직업적, 가족 또는 사회적 관계나 책임이 자신의 행위나 판단에 영향을 미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14. 중재인은 자신의 공평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합리적 기준으로 볼 때 부정 또는 편견의 인상을 야기할 수도 있는 어떠한 관계를 맺거나 어떠한 재정적 이익을 획득하는 것을 피한다.

전임 중재인의 의무

15. 모든 전임 중재인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편파적이었거나 중재패널의 결정 또는 판정으로부터 이익을 도출하였다는 인상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피해야 한다.

비밀 유지

16. 중재인이나 전임 중재인은 절차의 목적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절차에 관한 모든 비공개 정보 또는 절차 과정에서 획득된 모든 비공개 정보를 어느 때에도 공개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 이익이나 다른 사람을 위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그러한 모든 정보를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17. 중재인은 공표에 앞서 중재패널 판정 또는 그 일부를 공개하지 않는다.

18. 중재인이나 전임 중재인은 중재패널의 심의 또는 중재인의 견해를 어느 때에도 공개하지 않는다.

제 11 장
예외

제 11.1 조
일반적 예외

1. 제 2 장(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제 3 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제 4 장(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및 제 5 장(무역구제)의 목적상, 1994 년도 GATT 제 20 조 및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2. 제 6 장(서비스무역) 및 제 7 장(투자)의 목적상, GATS 제 14 조(그 각주를 포함한다)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제 11.2 조
안보 예외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가. 공개되면 자국의 필수적 안보 이익에 반한다고 당사국이 판단하는 모든 정보를 그 당사국이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

나. 당사국이 자국의 필수적인 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의 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1) 무기, 총포탄 및 전쟁 도구들의 거래와 그 밖의 제품 및 재료의 거래에 관련된 조치, 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군대 시설에 공급하거나 조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조치

2) 핵분열성 및 핵융합성 물질 또는 이들의 원료가 되는 물질과 관련된 조치

3) 통신, 전력 및 수도 시설을 포함하는 중요한 공공 사회기반시설을 불능화 또는 기능 저하를 시키고자 하는 계획적인 시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취해지는 조치, 또는

4) 국내적 비상시, 또는 전시 또는 그 밖의 국제관계에서의 비상시에 취해지는 조치, 또는

다. 당사국이 국제평화 및 안보 유지를 위한 「국제연합 헌장」에 따른 자국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제 11.3 조
과세조치

1. 이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과세조치에 적용되지 않는다.

2. 이 협정은 다음의 경우에만 과세 조치와 관련하여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과한다.

가. 그에 상응하는 권리 및 의무가 1994 년도 GATT 제 3 조에 따라 또한 부여되거나 부과되는 경우

나. 제 7.11 조(송금)에 따라 권리 및 의무가 부여되거나 부과되는 경우, 또는

다. 제 7.12 조(수용 및 보상)에 따라 권리 및 의무가 부여되거나 부과되는 경우

3. 제 2 항나호 또는 다호가 적용되는 경우, 제 7.19 조(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는 과세조치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4. 가. 투자자가 분쟁당사국이 과세조치를 채택 또는 집행함으로써 제 7.11 조(송금) 또는 제 7.12 조(수용 및 보상)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분쟁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제 7.19 조(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에 따라 분쟁당사국이 투자자의 의사통보를 접수한 때, 비분쟁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의 협의를 요청한다.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제 7.11 조(송금)에 위반되었는지 또는 해당 과세조치가 수용에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협의를 개최한다. 제 7.19 조(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에 따라 설치될 수 있는 모든 판정부는 이 항에 따른 권한 있는 당국의 결정을 구속력 있는 것으로 수용한다.

나.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제 7.11 조(송금)에 위반되었는지 또는 과세조치가 수용에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지 여부를 비분쟁당사국의 협의 요청의 접수일부터 180 일 내에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 투자자는 제 7.19 조(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에 따라 중재에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다. 이 항의 목적상, 권한 있는 당국이란 다음을 말한다.

1) 한국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그리고

2) 인도네시아에 대하여, 재무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부여 받은 대리인

또는 그 각각의 승계인

5. 과세 관련 조치가 수용을 구성하는지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 다음 고려사항들이 고려된다.

가. 조세의 부과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 새로운 과세조치의 단순한 도입이나 하나의 투자에 대하여 둘 이상의 관할권에서의 조세의 부과는 일반적으로 그 자체로는 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

나. 조세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의 압류를 포함한 세법의 집행 활동은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

다. 국제적으로 인정된 조세정책, 원칙 및 관행에 합치되는 과세조치는 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 특히, 조세의 기피 또는 회피를 막기 위한 과세조치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

라. 특정 국적의 투자자 또는 특정 개별 납세자[1]를 겨냥하는 것과는 반대로, 비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과세조치는 수용을 구성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마. 투자가 이루어진 때에 과세조치가 이미 시행 중이었고 그 조치에 대한 정보가 대중에 공개되었거나 달리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였다면, 그 과세조치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

6.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조세협약상의 어느 한쪽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협정과 그러한 조세협약 간에 과세조치와 관련된 불합치가 있는 경우, 그 불합치의 한도에서 그 조세협약이 우선한다. 그 협약에 따른 권한 있는 당국이 이 협정과 그 협약 간 불합치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공동으로 결정하는 전적인 책임을 진다.

7.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한쪽 당사국이 구속되는 조세협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대우, 특혜 또는 특권의 혜택을 그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 부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

[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별 납세자” 라는 용어는 자연인, 법인 그리고 기업을 포함한다.

8. 이 조의 목적상,

가. 조세협약이란 이중 과세의 방지를 위한 협약이나 그 밖의 국제조세협정 또는 약정을 말한다. 그리고

나. 조세 및 과세 조치는 제 1.1 조(일반 정의)에 정의된 관세, 그리고 그 정의 중 나호, 다호, 라호 및 마호에 예외로 기재된 조치를 포함하지 않는다.

제 11.4 조
정보의 비밀유지

1.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자국의 법에 반하거나 법 집행을 저해하거나 달리 공익에 반하거나 특정 공기업 또는 민간 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저해하게 될 정보를 당사국이 제공하거나 그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2.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 협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를 비밀로 지정하는 경우, 정보를 받는 당사국은 그 정보를 비밀로 유지한다. 그 정보는 그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국이 명시한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당사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기 위하여 정보 공개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국의 명시적 서면 허가 없이는 그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제12장
제도 규정

제12.1조
공동위원회의 설치

1. 양 당사국은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2. 공동위원회는 각 당사국의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되고,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인도네시아 통상부의 장관급 공무원, 또는 그들 각각의 지명자들이 공동위원회의 공동의장이 된다. 공동위원회는 회합 일정에 대하여 합의하고 그 의제를 정한다.

제12.2조
공동위원회의 기능

1. 공동위원회는

   가. 이 협정의 이행과 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안을 검토한다.

   나. 이 협정의 이행과 운영을 검토한다.

   다.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모든 위원회와 부속기관의 업무를 감독하고 조율한다.

   라. 양 당사국 간 무역 및 투자 관계를 보다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마.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관한 불일치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한다. 그리고

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대로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에 관련된 그 밖의 모든 기능을 수행한다.

2. 공동위원회는

가. 위원회 또는 부속기관을 설치하고 이에 책임을 위임할 수 있다.

나. 첫 번째 회합에서 자신의 절차 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다.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견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할 수 있다. 그리고

라. 권고할 수 있다.

제12.3조
공동위원회의 절차

1. 공동위원회는 이 협정의 발효로부터 1년 내에 회합한다. 공동위원회의 회합은 양 당사국이 공동으로 주재한다.

2.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그 이후에 공동위원회는

가. 각 당사국의 영역에서 교대로 개최되는 것으로 하여 정기 회기로 매년 회합한다. 그리고

나.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개최되거나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장소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하여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 회기로 회합한다.

3. 공동위원회의 회합은 대면으로,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할 경우 이용 가능한 모든 기술적 수단을 통하여 개최될 수 있다.

4. 공동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제12.4조
위원회 및 부속기관

1. 이 협정에 따라 다음의 위원회들이 설치된다.

   가. 제2.15조(상품무역위원회)에 따른 상품무역위원회,

   나. 서비스무역 및 투자 위원회

   다. 제8.4조(이행)에 따른 경제협력위원회

   라. 제4.12조(관세 및 무역원활화 위원회)에 따른 관세 및 무역원활화 위원회

2. 공동위원회는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사안들을 다루고 이 협정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임시 기관을 포함한 부속기관을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3.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모든 부속기관은

   가. 양 당사국의 대표들로 구성된다.

   나. 양 당사국이 공동으로 주재한다.

   다. 그 기능 내에서 모든 사안에 관하여 합의로 결정을 내린다.

4. 위원회 또는 부속기관은 자신의 회합에 앞서 충분히 자신의 일정 및 의제를 공동위원회에 알린다. 그들은 공동위원회의 각 정기 회합에서 자신의 활동을 공동위원회에

보고한다. 위원회 또는 부속기관의 창설 또는 존재는 어느 한쪽 당사국이 어떠한 사안을 공동위원회에 직접 제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5. 공동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부속기관에 할당된 임무를 변경 또는 수행하기로 결정하거나 위원회 또는 부속기관을 해산할 수 있다.

제12.5조
접촉선

1. 이 협정이 적용되는 모든 무역 관련 사안에 관한 양 당사국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다음 접촉선을 수립한다.

가. 한국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나. 인도네시아의 경우, 통상부

또는 그 각각의 승계기관

2.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접촉선은 이 협정의 이행과 관계된 사안을 담당하는 기관 또는 공무원을 적시하고 요청 당사국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각 당사국은 자국의 접촉선에 변동이 있는 경우, 시의 적절하게 다른 쪽 당사국에 이를 통보한다.

제 13 장
최종규정

제 13.1 조
부속서, 부록 및 각주

이 협정의 부속서, 부록 및 각주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 13.2 조
개정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개정에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다. 모든 개정은 양 당사국이 필요한 모든 국내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외교 경로를 통하여 교환한 후,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날에 발효한다. 개정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 13.3 조
세계무역기구협정의 개정

양 당사국이 이 협정에 통합한 세계무역기구협정의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 양 당사국은 요청이 있을 경우 이 협정의 관련 규정의 개정을 고려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제 13.4 조
발효

1. 이 협정의 발효는 각 당사국의 필요한 국내 법적 절차의 완료를 조건으로 한다.

2. 이 협정은 양 당사국이 그들 각자의 필요한 국내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다는 서면 통보를 외교 경로를 통하여 교환한 날 후 60일째 되는 날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발효한다.

제13.5조
협정의 검토

1. 제12.2조(공동위원회의 기능)에 따라 적절하게, 이 협정은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정의 발효 후 1년 후에는 언제라도, 이 협정의 목적을 증진하기 위한 협정의 갱신 및 개선을 목적으로, 협상을 통해서 검토의 대상이 된다. 검토는 자유화의 심화, 잔존하는 차별의 감소 또는 제거 및 시장 접근의 추가 확대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2. 이 조에 따라 검토를 수행함에 있어, 공동위원회는 다음을 고려한다.

가.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모든 위원회와 부속기관의 업무

나. 국제 포럼에서의 관련 진전사항, 그리고

다. 적절한 경우, 전문가의 의견

제 13.6 조
존속 및 종료

1. 이 협정은 제2항에 따라 종료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유지된다.

2. 어느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 협정의 종료 의사를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3.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그러한 종료는 제2항에 언급된 통보를 접수한 후 6개월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20년 12월 18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인도네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부속서 I

한국의 유보목록

주해

1. 이 부속서의 한국의 유보목록은 제7.10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한국의 기존의 조치를 규정한다.

   가. 제 7.4 조(내국민 대우)

   나. 제 7.5 조(최혜국 대우)

   다. 제 7.8 조(이행요건), 또는

   라. 제 7.9 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2. 각 유보항목은 다음 요소를 규정한다.

   가. **분야**는 유보된 분야를 지칭한다.

   나. **관련의무**는 제3항에 규정된 대로, 제7.10조(비합치 조치) 제1항가호에 따라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의 비합치 측면에 적용되지 않는, 제1항에서 언급된 조(들)를 명시한다.

   다. **정부수준**[1]은 유보된 조치(들)를 유지하는 정부수준을 나타낸다.

   라. **조치**[2]는 유보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적시한다. **조치** 요소에서 인용된 조치는

      1) 이 협정의 발효일에 개정, 지속 또는 갱신된 대로의 조치를 말한다. 그리고

      2) 그 조치의 권한에 따라 그리고 그 조치에 합치되게 채택되거나 유지되

[1]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경우, 그 조치는 중앙정부 수준에서 유지되는 것이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치가 운영되거나 시행되는 정부수준의 변경은 그 자체로는 제7.10조제1항에 언급된 의무에 대하여 그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는 모든 하위조치를 포함한다. 그리고

마. **유보내용**은, 이 협정 발효일에 자유화에 대한 약속이 있다면 이를, 그리고 유보된 조치의 잔존 비합치 측면을 규정한다.

3. 유보항목의 해석에서, 그 유보항목의 모든 요소가 고려된다. 유보항목은 유보가 이루어진 장의 관련 조에 비추어 해석된다.

가. **조치** 요소가 **유보내용** 요소상의 자유화 약속에 의하여 한정되는 한도에서 그와 같이 한정된 **조치** 요소가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그리고

나. **조치** 요소가 그렇게 한정되지 않는 한도에서, **조치** 요소와 종합적으로 고려된 그 밖의 요소 간의 불일치가 실질적이고 중대하여 **조치** 요소가 우선한다고 결론 내리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가 아니면, **조치** 요소가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그렇게 결론 내리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불일치의 한도에서 그 밖의 요소가 우선한다.

4. 제7.10조(비합치 조치) 제1항가호에 따라, 그리고 제7.10조(비합치 조치) 제1항다호를 조건으로, 유보항목의 **관련의무**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들은 그 유보항목의 **조치** 요소에 적시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의 비합치 측면에 적용되지 않는다.

5. **외국인**이란 외국 국민 또는 다른 나라의 법에 따라 조직된 기업을 말한다.

1. 분야	농축산업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7.4 조)
조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 4 조(법률 제 16479 호, 2019. 8. 20.)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5조(대통령령 제30170호, 2019. 10. 29.)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별표2(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8-137호, 2018. 7. 6.)
유보내용	외국인은 1) 벼 또는 보리 재배업에 종사하는 기업에는 투자할 수 없다. 또는 2) 육우사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지분 50퍼센트 이상을 보유할 수 없다.

2. 분야	생물학적 제제 제조
관련의무	이행요건(제 7.8 조)
조치	약사법 제 42 조(법률 제 16250 호, 2019. 1. 15.)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1조(총리령 제1544호, 2019. 6. 12.)
유보내용	혈액제제 제조자는 한국의 혈액관리기구로부터 원료혈액 물질을 조달해야 한다.

3. 분야	에너지 산업 – 원자력발전을 제외한 발전, 송전, 배전 및 전력 판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7.4 조)
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8조(법률 제16191호, 2018. 12. 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7조(대통령령 제30118호, 2019. 10. 8.)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 및 제5조(법률 제16479호, 2019. 8. 20.)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5조(대통령령 제30170호, 2019. 10. 29.)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별표 1 및 별표 2(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37호, 2018. 7. 6.) 공공적법인의지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00-17호, 2000. 9. 28.) 금융투자업규정 제6-2조(금융위원회 고시 제2019-8호, 2019. 3. 20.)
유보내용	한국전력공사 발행주식의 외국소유지분비율의 총합은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외국인은 한국전력공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지역난방용 열병합발전 설비를 포함한 발전설비에 대한 외국소유지분비율의 총합은 한국 영역 내 전체 발전설비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송전, 배전 및 전력 판매사업에 대한 외국소유지분비율의 총합은 50퍼센트 미만이어야 할 것이다. 외국인은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4. 분야	에너지 산업 – 가스 산업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7.4 조)
조치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 19 조(법률 제 11845 호, 2013. 5. 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8 조(법률 제 16191 호, 2018. 12. 3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 4 조 및 제 5 조(법률 제 16479 호, 2019. 8. 20.) 한국가스공사 정관 제 11 조(2019. 3. 27.)
유보내용	외국인은 총합하여 한국가스공사 지분의 30 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부속서 I

인도네시아의 유보목록

주해

1. 제 7.4조(내국민 대우), 제 7.5조(최혜국 대우), 제 7.8조(이행요건) 및 제7.9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는 다음의 분야에만 적용된다.

가. 제조업

나. 농업

다. 어업

라. 임업

마. 광업 및 채석업

2. 이 부속서는 제7.10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적용 대상이 아닌, 제1항에 열거된 분야의 인도네시아의 기존의 조치를 규정한다.

가. 제 7.4조(내국민 대우)

나. 제7.5조(최혜국 대우)

다. 제 7.8조(이행요건), 또는

라. 제 7.9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1. 분야 : **모든 분야**

하위 분야 : 토지의 취득 임대

산업 분류 : **–**

정부 수준 : 중앙 및 지역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7.4조)

조치내용 : 토지 소유권(hak milik)은 인도네시아 국민으로 제한된다.

주: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설립되고 주소를 둔 외국 국민 및 외국기업은 다음의 권리에 근거하여 토지 및 재산을 취득할 수 있다.

a. 임차권(hak guna milik)은 외국기업에 최대 35(삼십오)년의 기간 동안 부여되며 추가로 25(이십오)년의 기간 동안 연장될 수 있다.

b. 건축권(hak guna bangunan)은 외국기업에 최대 30(삼십)년의 기간 동안 부여되며 추가로 20(이십)년의 기간 동안 연장될 수 있다.

c. 사용권(hak pakai)은 (1) 외국 국민에 최대 30(삼십)년의 기간 동안 부여되며 추가로 20(이십)년의 기간 동안 연장될 수 있고, (2) 외국기업에 최대 25(이십오)년의 기간 동안 부여되며

추가로 20(이십)년의 기간 동안 연장될 수 있다.

d. 임대권(hak sewa)은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일정한 기간 동안 외국 국민 및 외국기업에 대하여 부여된다.

그러한 토지 및 재산의 취득은 관련 당국에 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당국이 부과할 수 있는 조건과 제한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조치근거 : 인도네시아공화국 1945년 헌법 제33조

농민 원칙의 기본 규정에 관한 1960년 법률 제5호

토지경작권, 구조물이용권 및 토지이용권에 관한 1996년 정부령 제40호,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주소를 둔 외국인을 위한 거주 또는 주거 소유에 관한 2015년 정부령 제103호

2. 분야 : **모든 분야**

하위 분야 : 외국인 투자 설립의 등록 요건

산업 분류 : **–**

정부 수준 : 중앙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7.4조)

조치내용 : 인도네시아의 법과 규정에 따라 특정 분야에 의하여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외국인 투자[1]는 투자금액이 100억 인도네시아 루피아 초과(토지 및 건물은 제외한다)이다.

조치근거 : 투자에 관한 2007년 법률 제25호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관한 2008년 법률 제20호

산업 업종 분류를 위한 근로자수 및 투자가치에 관한 산업부 장관령 제64/M-IND/PER/7/2016호, 그리고

투자 면허 및 설비를 위한 지침 및 절차에 관한 2018년 투자조정위원회 의장령 제6호

[1] 이 유보의 목적상, "외국인 투자"라는 용어는 투자에 관한 2007년 법률 제25호에 따라 확립된다.

3. 분야 : **모든 분야**

하위 분야 : **–**

산업 분류 : **–**

정부 수준 : 중앙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7.4조)

조치내용 : 외국인 투자[2] 는 인도네시아공화국의 법에 근거한 유한책임회사의 형태이다.

다른 쪽 당사국의 법에 따라 조직되고 인도네시아에서 직접투자를 하려는 외국인 투자자[3] 는 투자에 관한 법률 2007년 제25호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유한책임회사(Perseroan Terbatas)로서 설립해야 한다.

조치근거 : 투자에 관한 2007년 법률 제25호, 그리고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2007년 법률 제40호

[2] 이 유보의 목적상, "외국인 투자" 라는 용어는 투자에 관한 2007년 법률 제25호에 따라 확립된다.
[3] 이 유보의 목적상, "외국인 투자자" 라는 용어는 투자에 관한 2007년 법률 제25호에서 찾을 수 있다.

4. 분야 : **모든 분야**

하위 분야 : **–**

산업 분류 : **–**

정부 수준 : 중앙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7.4조)

조치내용 : 외국인 투자는 인도네시아 내 최종이용자에게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현지 유통 대리인을 임명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란 유보항목 3번에 따라 열거된 조치근거에 따라 '유한책임회사(Perseroan Terbatas)'로서 설립된 외국인 투자자 또는 법적 실체를 말한다.

조치근거 :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관한 2008년 법률 제20호

상품 유통의 일반 규정에 관한 2016년 통상부령 제22호

상품 및/또는 서비스 대리인 또는 유통업자 등록 발행 규정 및 절차에 관한 2006년 통상부령 제11호, 그리고

투자 면허 및 설비를 위한 지침 및 절차에 관한 2018년 투자조정위원회 의장령 제6호

5. 분야 : **모든 분야**

하위 분야 : **–**

산업 분류 : **–**

정부 수준 : 중앙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7.4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7.9조)

조치내용 : 인도네시아의 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인 투자는 인도네시아 국민이 인사 관련 직책을 맡도록 요구된다.

조치근거 : 인력에 관한 2003년 법률 제13호

외국인 고용 및 근로 동반자 교육 및 훈련 실시에 관한 2014년 대통령령 제74호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한된 특정 직책에 관한 2012년 인력 및 이주부 장관령 제40호, 그리고

외국인 고용에 관한 2018년 대통령령 제20호

6. 분야 : **어업**

하위 분야 : **포획어업**

산업 분류 : ISIC 0500

정부 수준 : 중앙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7.4조)

조치내용 : 외국인 투자자는 인도네시아에서 포획어업이 금지된다.

조치근거 : 어업에 관한 2009년 법률 제45호에 의하여 개정된 2004년 법률 제31호

인도네시아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1983년 법률 제5호

투자 금지 사업 분야 및 조건부 투자 개방 사업 분야 목록에 관한 2016년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령 제44호

포획어업사업에 관한 해양수산부 장관령 PER.12/MEN/2009호에 의하여 개정된 해양수산부 장관령 PER.05/MEN/2008호, 그리고

정부 정책

7. 분야 : **광업 및 채석업**

하위 분야 : **–**

산업 분류 : ISIC(하기 참조)

정부 수준 : 중앙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7.4조)

조치내용 : 외국인 투자자는 바다 모래 채취(ISIC 1429)에서의 외국인 투자 설립 및 운영이 금지된다.

조치근거 : 광물 및 석탄 광업에 관한 2009년 법률 제4호, 그리고

투자금지 사업 분야 및 조건부 투자 개방 사업 분야 목록에 관한 2016년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령 제44호

8. 분야 : **모든 분야**

하위 분야 : **공기업**

산업 분류 : **–**

정부 수준 : 중앙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7.4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7.9조)

조치내용 : 지정기업[4] 으로 제한된 활동이 지정기관 외의 활동으로 자유화되거나 그러한 지정기업이 더 이상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 내국민 대우와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는 적용될 수 없다.

조치근거 : 공기업에 관한 1998년 정부령 제13호

[4] 설명의 목적상, 이는 Perum PERHUTANI 로 표시되는 국영영림공사와 Perum PERURI로 표시되는 인도네시아 조폐공사를 포함할 수 있다.

9. 분야	:	**모든 분야**
하위 분야	:	**–**
산업 분류	:	**–**
정부 수준	:	중앙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7.4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7.9조)
조치내용	:	이 협정의 발효 전 존재하는 기업/프로젝트의 경우, 면허/허가를 위한 승인에 부과된 조건이 지속적으로 적용된다. 이러한 조건에 대한 모든 변경사항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치근거	:	투자 금지 사업 분야 및 조건부 투자 개방 사업 분야 목록에 관한 2016년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령 제44호

10. 분야 : **제조업**

하위 분야 : **–**

산업 분류 : ISIC(하기 참조)

정부 수준 : 중앙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7.4조)

조치내용 : 외국인 투자자는 인도네시아에서 다음의 사업 분야를 설립하는 것이 금지된다.

a.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유보

- 농장 사업 면허 지침에 관한 2013년 농업부 장관령 제98호 및 2013년 농업부 장관령 제98호의 개정에 관한 2016년 농업부 장관령 제29호에 규정된 대로 특정 생산 능력과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생산 능력을 가진 다음 농산물의 제조업자
  - 건조 정향꽃, 동식물 원유, 코프라, 섬유, 코코넛 껍질 숯, 가루, 나타데코코, 코코넛 오일, 야자유, 면 섬유, 목화 종자, 농장 생산물(코코아콩 및 커피콩)의 탈피·세정·건조 및 선별, 건조 캐슈넛 및 캐슈넛 쉘 액용 캐슈넛, 건조 백후추 및

건조 흑후추용 후추, 사탕수수· 사탕수수 상단 및 사탕수수 찌꺼기, 홍차/녹차, 건조 담뱃잎, 시트용 고무· 농축 라텍스, 자트로파 원유(ISIC 0111, 0140, 1513, 1514, 1531, 1542, 1549, 1600, 2429, 2519)

- 어류 가공: 어류 삶기(ISIC 1512)
- 떰뻬 및 두부 형태의 대두 가공식품의 제조(ISIC 1513, 1514, 1549)
- 간장, 떰뻬 및 두부 외 대두 및 콩 식품의 제조(ISIC 1513, 1549)
- 부패성 조제케이크 제조(ISIC 1513, 1514, 1549)
- 크래커(krupuk), 플레이크(keripik), 튀기고 조미된 비스킷(peyek) 및 동종식품의 제조(ISIC 1513, 1514, 1549)
- 팜 슈가/자바설탕/적설탕의 제조(ISIC 1542)
- 뿌리 및 괴경 마일링(탈피 및 세정)(ISIC 0140, 1531)
- 패턴이 있는/담근/묶인 원사용 천연 및 인공 섬유 수공구 원사 염색(ISIC 1711)
- 직물 인쇄 산업(ISIC 1712, 1729)
- 수공 바틱 산업(ISIC 1712, 1729)
- 니트직물, 특히 레이스 산업(ISIC 1730)
- 무슬림 여성의 기도복, 스카프, 머리 스카프 및 그 밖의 전통 산업(ISIC 1810)
- 자수 산업(ISIC 1729)
- 수공업: 등나무 및 대나무 조물 산업, 등나무 및 대나무 외 식물 조물 산업, 가구 산업 외 나무

수공예 조각산업, 나무·등나무 및 대나무 가정용 주방 산업, 따로 분류되지 않은 나무·등나무·코르크 제품 산업(ISIC 2029, 3699)

- 전통 악기(ISIC 3692)
- 고무 경화 산업(ISIC 2519)
- 점토 가정용품, 특히 도자기 산업(ISIC 2691)
- 괭이와 삽 외 토지 준비, 생산 가공, 수확 후 가공용 농작 수공구 산업(ISIC 2893)
- 수공 및 절단용 수동 또는 반자동 수공구 산업(ISIC 2893)
- 모터사이클 정비 및 수리, 다만 모터사이클 판매와 통합된 경우는 제외(대리인/유통업자)(ISIC 5040)
- 개인 및 가정 물품 수리(ISIC 3610, 5260)
- 임산물 가공 1차 산업: 소나무 수액(올레오 송진) 및 대나무(ISIC 0200)
- 생산능력 연간 2,000m^3 이하 제재소 또는 제재업
- 등나무 가공 1차 산업(ISIC 2010)

b. 100퍼센트 국내지분 참여

- 방위 및 안보를 위한 주요 장비 산업(ISIC 2520, 2893, 2927, 2929, 3530, 3610)
- 전통 의약품 및 천연 추출물 가공 산업(ISIC 2423)

조치근거 : 투자에 관한 2007년 법률 제25호

농장에 관한 2014년 법률 제39호

투자 금지 사업 분야 및 조건부 투자 개방 사업 분야 목록에 관한 2016년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령 제44호

윤활유 공급 및 서비스에 관한 2001년 대통령령 제21호

농장사업 면허 지침에 관한 2013년 농업부 장관령 제98호 j.o. 2013년 농업부 장관령 제98호 개정에 관한 2016년 농업부 장관령 제29호, 그리고

정부 정책

11. 분야 : **농업**

하위 분야 : **–**

산업 분류 : ISIC(하기 참조)

정부 수준 : 중앙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7.4조)

조치내용 : 외국인 투자자는 인도네시아에서 다음의 사업 분야를 설립하는 것이 금지된다.

a.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유보

- 면적 25헥타르 미만 각 개별 작물 재배에 대하여
  - 주식 작물(쌀, 옥수수, 대두, 땅콩, 강낭콩, 카사바 및 고구마) 그리고 따로 분류되지 않는 그 밖의 식량 작물(ISIC 0111, 0112, 0113, 0200)

- 면적 25헥타르 미만 각 개별 농장종묘사업에 대하여
  - 자트로파 작물, 그 밖의 감미료 작물, 사탕수수, 담배, 섬유원료 및 면화, 따로 분류되지 않는 그 밖의 작물, 캐슈, 코코넛 야자나무, 기름 야자나무, 음료

작물(차, 커피 및 코코아), 후추, 정향, 에센셜 오일 작물, 의약 제약 작물(원예 외의 것), 그 밖의 향신작물, 수액 추출용 고무 및 그 밖의 나무(ISIC 0111, 0112, 0113, 0200)

- 면적 25헥타르 미만 각 개별 농장사업에 대하여
  - 그 밖의 감미료 작물, 사탕수수, 담배, 섬유 원료 및 면화, 캐슈, 코코넛 야자나무, 기름 야자나무, 음료 작물(차, 커피 및 코코아), 후추, 정향, 에센셜 오일 작물, 원예 외의 의약 제약 작물, 그 밖의 향신 작물, 수액 추출용 고무 및 그 밖의 나무, 그 밖의 농장(ISIC 0111, 0112, 0113, 0200)

- 125마리 이하의 수의 돼지 사육 및 농장(ISIC 0122)

- "토종닭(ayam buras)" 사육 및 농장과 그 이종교배 및 농장(ISIC 0122)

조치근거 : 농장에 관한 2014년 법률 제39호

2014년 법률 제41호에 의하여 개정된 가축 및 동물 건강에 관한 2009년 법률 제18호

임업에 관한 1999년 법률 제41호

천연자원 및 생태계 보존에 관한 1990년 법률 제5호

산림 관리 계획 및 산림 이용에 대한 산림 행정 및 편찬에 관한 2008년 정부령 제3호에 의하여 개정된 2007년 정부령 제6호

식물 및 야생동물종의 이용에 관한 1999년 정부령 제8호

식물 재배사업에 관한 2010년 정부령 제18호

투자 금지 사업 분야 및 조건부 투자 개방 사업 분야 목록에 관한 2016년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령 제44호

농장종묘에 관한 1995년 정부령 제44호

농장 사업 면허 지침에 관한 2013년 농업부 장관령 제98호 j.o. 2013년 농업부 장관령 제98호의 제2차 개정에 관한 2017년 농업부 장관령 제21호

축산 분야 면허 및 등록 지침에 관한 2002년 농업부 장관령 제404/Kpts/OT.210/6/2002호

원예작물 재배 면허 지침에 관한 농업부 장관령 제70/Permentan/PD.200/6/2014호

수의 서비스 지침에 관한 2009년 농업부 장관령 제2호

주요 작물 재배 사업 면허 지침에 관한 농업부 장관령 제39/Permentan/OT.140/6/2010호, 그리고

정부 정책

12. 분야 : **임업**

하위 분야 : **–**

산업 분류 : ISIC(하기 참조)

정부 수준 : 중앙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7.4조)

조치내용 : 외국인 투자자는 인도네시아에서 다음의 사업 분야를 설립하는 것이 금지된다.

a.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유보
- 그 밖의 산림 식물(종려당, 캔들넛, 타마린드 종자, 숯 원료, 계피) 개발(ISIC 0200)
- 천연 제비둥지 개발(ISIC 0122)

b. 100퍼센트 국내 지분 참여
- 천연림에서의 산림목재 제품 개발(ISIC 0200)
- 산림수/식물의 품종 및 종자 재배 및 거래(산림수/식물의 품종 및 종자의 수출입)(ISIC 5121)
- 산림지역 수자원 개발(ISIC 0200)
- 천연 야생동식물 서식지에서의 야생동식물 포획 및 거래(ISIC 0150)

조치근거 : 임업에 관한 1999년 법률 제41호

천연자원 및 생태계 보존에 관한 1990년 법률 제5호

산림 관리 계획 및 산림 활용에 대한 산림 행정 및 편찬에 관한 2008년 정부령 제3호에 의하여 개정된 2007년 정부령 제6호

국립공원 활용지역, 산림대공원, 자연관광공원 내 자연관광 허가에 관한 2010년 정부령 제36호

식물 및 야생동물종의 이용에 관한 1999년 정부령 제8호

투자 금지 사업 분야 및 조건부 투자 개방 사업 분야 목록에 관한 2016년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령 제44호, 그리고

정부 정책

13. 분야 : **모든 분야**

하위 분야 : –

산업 분류 : –

정부 수준 : 중앙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7.4조)

조치내용 :

1. 관련 규제당국에 의하여 요구될 수 있는 바와 같이, 외국인 투자자[5]가 100퍼센트 지분을 소유하는 기업은, 면허 부여 전 사전 통보를 조건으로, 상업 생산을 개시한지 일정 기간 후, 해당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투자자[6]에게 기업지분의 일부를 매각해야 할 것이다.

2. 광물 및 석탄 하위분야[7]의 경우, 외국인 투자[8]를 위한 광업사업면허(Izin Usaha Pertambangan)는 인도네시아공화국의 에너지 및 광물자원부 장관에 의하여 부여된다. 생산 개시 5(오)년 후, 광업사업면허(Izin Usaha Pertambangan) 부여 전 사전 통보를 조건으로, 외국인 투자의 외국인 주주[9]는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5] 이 유보의 목적상, "외국인 투자자" 라는 용어는 투자에 관한 2007년 법률 제25호에서 찾을 수 있다.
[6] 이 유보의 목적상, "국내 투자자" 라는 용어는 투자에 관한 2007년 법률 제25호에서 찾을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유보의 제1항에 규정된 요건은 외국인 자본 투자에 따라 설립된 회사의 지분 소유에 관한 1994년 정부령 제20호에 근거하고 투자에 관한 2007년 법률 제25호의 명문화 후 이루어진 투자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7] 이 유보의 목적상, 광물 및 석탄 광업 하위 분야의 범위는 광물 및 석탄 광업에 관한 2009년 법률 제4호와 광물 및 석탄 광업 활동 이행에 관한 2010년 정부령 제23호 j.o. 광물 및 석탄 광업 활동 이행에 관한 2010년 정부령 제23호의 제4차 개정에 관한 2017년 정부령 제1호에 정의된다.
[8] 이 유보의 목적상, "외국인 투자" 라는 용어는 투자에 관한 2007년 법률 제25호에서 찾을 수 있다.
[9] 이 유보의 목적상, "외국인 주주" 라는 용어는 광물 및 석탄 광업 활동 이행에 관한 2010년 정부령 제23호의 개정

점진적으로 인도네시아인 주주[10]에게 주식을 매각해야 할 것이다.

1) 중앙정부
2) 지방정부
3) 구/지방자치당국
4) 국영기업(Badan Usaha Milik Negara 및 Badan Usaha Milik Daerah)
5) 국가민간사업체[11]

해당 인도네시아인 주주의 지분은 생산 개시 후 10(십)년 후에 과반수에 도달한다.

에 관한 2012년 정부령 제24호에서 찾을 수 있다.

[10] 이 유보의 목적상, "인도네시아인 주주" 라는 용어는 광물 및 석탄 광업 활동의 이행에 관한 2010년 정부령 제23호 j.o. 광물 및 석탄 광업 활동 이행에 관한 2010년 정부령 제23호의 개정에 관한 2012년 정부령 제24호에서 찾을 수 있다.

[11] 이 유보의 목적상, "국가민간사업체" 라는 용어는 광물 및 석탄 광업 활동 이행에 관한 2010년 정부령 제23호에서 찾을 수 있다.

조치근거 : 투자에 관한 2007년 법률 제25호

광물 및 석탄 광업에 관한 2009년 법률 제4호

해안지역과 작은 섬 관리에 관한 2014년 법률 제1호

외국자본투자에 따라 설립된 기업에서의 지분 소유에 관한 1994년 정부령 제20호

광물 및 석탄 광업 활동 이행에 관한 2010년 정부령 제23호 j.o. 제3차 개정에 관한 2014년 정부령 제77호 j.o. 제4차 개정에 관한 2017년 정부령 제1호

지분매각 절차 및 주식매각 가격책정 메커니즘에 관한 2017년 에너지 및 광물자원부 장관령 제9호, 그리고

광물 및 석탄 광업 사업에 관한 2018년 에너지 및 광물자원부 장관령 제25호

14. 분야 : **광업 및 채석업**

하위 분야 : **–**

산업 분류 : ISIC 1010, 1020, 1030, 1310, 1320

정부 수준 : 중앙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7.4조)

조치내용 : 광업사업면허지역(이하 "WIUP"라 한다)는 광업사업면허 보유자에게 제공되는 지역을 지칭한다.

다른 쪽 당사국의 법에 따라 조직되고 인도네시아에서 투자하려는 외국인 투자자 또는 법적 실체는 500헥타르 미만 면적의 금속광물 및 석탄 WIUP의 경매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된다.

조치근거 : 광물 및 석탄 광업에 관한 2009년 법률 제4호

광물 및 석탄 광업 활동 이행에 관한 2010년 정부령 제23호 j.o. 2010년 정부령 제23호의 제4차 개정에 관한 2017년 정부령 제1호, 그리고

광물 및 석탄 광업 활동 보고와 지역 면허 부여 절차에 관한 2018년 에너지 및 광물자원부 장관령 제11호

15. 분야 : **모든 분야**

하위 분야 : **–**

산업 분류 : –

정부 수준 : 중앙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7.4조)

조치내용 : 비거주 납세자가 인도네시아 원천에서 다음 소득을 얻는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20퍼센트가 될 것이다.

a. 이자
b. 로열티
c. 배당금
d. 인도네시아에서 행해진 서비스 수수료

조치근거 : 소득세에 관한 1983년 법률 제7호의 제4차 개정에 관한 2008년 법률 제36호

16. 분야 : **모든 분야**

하위 분야 : **–**

산업 분류 : –

정부 수준 : 중앙

의무의 유형 : 이행요건(제7.8조)

조치내용 : 제7.8조(이행요건)에 따른 의무는 모든 기존의 비합치 조치에 적용되지 않으며, 이는 이러한 요건과 관련된 조치를 포함한다.

a. 현지 콘텐츠
b. 무역균형
c. 기업으로 인한 외환 유입과 관련된 외환 제한
d. 수출 통제, 그리고
e. 기술의 이전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2007년 법률 제40호에 따라 '유한책임회사(Perseroan Terbatas)'로서 설립되고, 외국인 전문가를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 또는 법적 실체는 법규에 따라 인도네시아인 근로자에게 훈련 및 기술 이전을 제공하도록 요구된다.

조치근거 : 투자에 관한 2007년 법률 제25호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2007년 법률 제40호, 그리고

정부 정책

17. 분야 : **농업, 제조업**

하위 분야 : 원예

산업 분류 : ISIC 0111, 0112, 0113, 0140, 1513, 1514, 1531, 1549, 2423

정부 수준 : 중앙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7.4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7.9조)

조치내용 : 내국민 대우와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는 인도네시아에서의 원예 사업 활동의 설립 및 운영에 적용될 수 없으며, 이는 다음의 활동을 포함한다.

a. 발아
b. 재배
c. 수확 및 수확 후
d. 가공
e. 유통, 거래 및 마케팅
f. 연구, 그리고
g. 농업 관광

원예와 그 이행규정에 관한 2010년 법률 제13호에 명시된 조치를 준수하기 위한 조정을 목적으로 원예 하위분야의 기존의 투자자[12]에게 4년의 과도기간이 주어진다.

원예 하위분야의 정의는 원예에 관한 2010년 법률

[12] 기존의 투자자는 원예에 관한 2010년 법률 제13호 제정 전의 기존의 투자자를 지칭한다.

제13호에서 찾을 수 있다.

조치근거 : 원예에 관한 2010년 법률 제13호, 그리고

정부 정책

18. 분야 : **에너지**

하위 분야 : 재생 에너지 소규모 발전소(1메가와트−10메가와트)

산업 분류 : ISIC 4010

정부 수준 : 중앙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7.4조)

조치내용 : 재생 에너지 소규모 발전소(1메가와트−10메가와트)에 대한 외국인 지분 참여는 49퍼센트의 지분 이하로 제한된다.

조치근거 : 투자 금지 사업 분야 및 조건부 투자 개방 사업 분야 목록에 관한 2016년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령 제44호

부속서 II
한국의 유보목록

주해

1. 이 부속서의 한국의 유보목록은 제7.10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한국이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와 합치하지 않는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또는 더 제한적인 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특정 분야, 하위 분야 또는 행위를 규정한다.

가. 제 7.4 조(내국민 대우)

나. 제 7.5 조(최혜국 대우)

다. 제 7.8 조(이행요건), 또는

라. 제 7.9 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2. 각 유보항목은 다음 요소를 규정한다.

가. **분야**는 유보된 분야를 지칭한다.

나. **관련의무**는 제7.10조(비합치 조치) 제2항에 따라 그 유보항목에 기재된 분야, 하위 분야 또는 행위에 적용되지 않는 제1항에서 언급된 조(들)를 명시한다.

다. **유보내용**은 그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의 범위를 규정한다. 그리고,

라. **기존의 조치**는, 투명성의 목적상, 그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적용되는 기존의 조치를 적시한다.

3. 제7.10조(비합치 조치) 제2항에 따라, 유보항목의 **관련의무**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들은 그 유보항목의 **유보내용** 요소에 적시된 분야, 하위분야 및 행위에 적용되지 않

는다.

4. **외국인**이란 외국 국민 또는 다른 나라의 법에 따라 조직된 기업을 말한다.

1.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4조) 이행요건(제7.8조)
유보내용	한국은 투자의 설립 또는 인수와 관련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2018) 제4조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2018) 제5조에 따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할 권리를 유보한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2018),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2018) 및 그 밖의 적용 가능한 법에 규정된 절차적 요건에 따라 적용된다. 나. 그 투자가 사회의 근본적 이익에 대하여 진정하고 충분히 심각한 위협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채택되거나 유지된다. 다.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라. 투자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비례한다.
기존의 조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 4 조(법률 제 16479 호, 2019. 8. 20.)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 5 조(대통령령 제 30170 호, 2019. 10. 29.)

2.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7.4 조) 이행요건(제 7.8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7.9 조)
유보내용	한국은 공기업 또는 정부 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또는 자산의 이전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유보항목은 과거 민간기업이었으나 기업구조조정 과정의 결과로 국가가 소유하게 된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공기업에는 공기업 또는 정부 당국의 지분 또는 자산의 매각 또는 처분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도 포함된다.
기존의 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8조(법률 제16191호, 2018. 12. 31.)

3.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7.4 조) 최혜국 대우(제 7.5 조) 이행요건(제 7.8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7.9 조)
유보내용	한국은 방위산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외국인투자 촉진법 방위사업법

4.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7.4 조) 최혜국 대우(제 7.5 조)
유보내용	한국은「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정의되는 중요기술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인투자 촉진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5. 분야	모든 분야(인정되지 않거나 기술적으로 실행할 수 없는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7.4 조) 최혜국 대우(제 7.5 조) 이행요건(제 7.8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7.9 조)
유보내용	한국은 이 협정의 발효 시 상황으로 인하여 한국 정부에 의하여 인정되었거나 인정되었어야 하는 것 외의 서비스의 공급 또는 투자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협정의 발효시점에 「한국표준산업분류」 또는 중심생산물 분류에 명확하고 명시적으로 분류된 모든 서비스는 당시 한국 정부에 의하여 인정되었어야 한다. 한국은 이 협정 발효시점에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았던 서비스 공급 또는 투자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6. 분야	토지 취득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7.4 조)
유보내용	한국은 외국인의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은 토지 취득이 계속 허용된다.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국법인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2. 아래의 정당한 사업목적을 위하여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법인으로 간주되는 경우나 외국법인의 지점인 경우.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나. 고위경영진의 주거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그리고 다. 해당 법에 규정된 토지보유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한국은 외국인에 의한 농지취득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11조(법률 제14569호, 2017. 2. 8.) 농지법 제 6 조(법률 제 16652 호, 2019. 11. 26.)

7. 분야	총포, 도검, 화약류 및 유사 물품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7.4 조) 이행요건(제 7.8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7.9 조)
유보내용	한국은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기충격기 및 석궁의 제조, 사용, 판매, 보관, 운반, 수입, 수출 그리고 소지를 포함하여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기충격기 및 석궁 분야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8. 분야	취약집단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7.4 조) 최혜국 대우(제 7.5 조) 이행요건(제 7.8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7.9 조)
유보내용	한국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소수 민족과 같은 사회적 또는 경제적 취약집단에게 권리를 부여하거나 우대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9. 분야	국가소유의 국가전자/정보시스템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7.4 조) 이행요건(제 7.8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7.9 조)
유보내용	한국은 정부 고유의 비밀정보 또는 정부의 규제기능 및 권한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수록한 모든 국가소유의 전자정보시스템의 관리와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10.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제 7.5 조)
유보내용	한국은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 발효일 전에 서명된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1] 한국은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 발효일 후 서명되는 다음에 관한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항공 나. 수산 다. 해난구조를 포함한 해상 사안 라. 철도운송, 또는 마. 통신

[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권리는 관련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국제협정의 후속 검토 또는 개정에 따라 부여되는 차등 대우로 확대된다.

11. 분야	원자력 에너지 – 원자력 발전, 핵연료의 제조 및 공급, 핵물질, 방사성 폐기물 처리 및 처분(사용 및 조사된 핵연료 처리 및 처분을 포함한다),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방사선 모니터링 서비스, 핵에너지 관련 서비스, 설계·유지 및 보수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7.4 조) 이행요건(제 7.8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7.9 조)
유보내용	한국은 원자력에너지 산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12. 분야	에너지 산업 – 원자력 발전을 제외한 발전, 송전, 배전 및 전력 판매, 전력사업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7.4 조) 이행요건(제 7.8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7.9 조)
유보내용	한국은 발전, 송전, 배전 및 전력 판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그러한 조치는 부속서 I 한국의 유보목록의 에너지산업(전력)과 관련된 유보항목에 의하여 허용되는 전력산업에서의 외국 소유 수준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이 유보항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제7.8조제1항바호(이행요건–기술 이전)와 불합치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않는다.

13. 분야	에너지 산업 – 가스 산업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7.4 조) 이행요건(제 7.8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7.9 조)
유보내용	한국은 천연가스의 수입과 도매 유통, 그리고 인수기지와 전국 고압 주배관망의 운영과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그러한 조치는 부속서 I 한국의 유보목록의 에너지산업(가스 산업)과 관련된 유보항목에 의하여 허용되는 가스 산업에서의 외국소유 수준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14. 분야	어업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7.4 조)
유보내용	한국은 한국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행위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15. 분야	문화재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7.4 조) 최혜국 대우(제 7.5 조) 이행요건(제 7.8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7.9 조)
유보내용	한국은 문화재의 발굴, 감정 또는 매매를 포함한 문화재의 보존, 재건 및 복원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16. 분야	주류 제조
관련의무	이행요건(제 7.8 조)
유보내용	한국은 주류 제조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17. 분야	모든 서비스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7.4 조) 최혜국 대우(제 7.5 조) 이행요건(제 7.8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7.9 조)
유보내용	한국은 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가 서비스무역에 관한 장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다는 조건에 따라 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부속서 II
인도네시아의 유보목록

주해

1. 제 7.4조(내국민 대우), 제 7.5조(최혜국 대우), 제 7.8조(이행요건) 및 제 7.9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는 다음의 분야에만 적용된다.

가. 제조업

나. 농업

다. 어업

라. 임업

마. 광업 및 채석업

2. 이 부속서는 인도네시아가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 기존 조치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또는 더 제한적인 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제1항에 열거된 분야 내에 특정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를 제7.10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규정한다.

가. 제 7.4조(내국민 대우)

나. 제7.5조(최혜국 대우)

다. 제 7.8조(이행요건), 또는

라. 제 7.9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1. 분야	:	**모든 분야**
하위 분야	:	토지 및 재산에 대한 관습적 권리
산업 분류	:	–
정부 수준	:	중앙 및 지역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7.4조)
조치내용	:	인도네시아는 소수 부족 집단의 토지 및 재산의 관습적 권리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조치근거	:	인도네시아공화국 1945년 헌법 제33조, 그리고 정부 정책

2. 분야 : **제조업**

하위 분야 : –

산업 분류 : ISIC(하기 참조)

정부 수준 : 중앙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7.4조)

조치내용 : 인도네시아는 다음 하위분야에서 외국인 투자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a. 외국인 지분 참여에 대한 제한
- 차량 정비 및 수리(ISIC 5020)
- 특허 의약품 산업(ISIC 2423)

b. 파트너십 요건
- 코프라 제조업체(ISIC 10421)
- 가당 및 염장 과일과 채소 산업(ISIC 1513)
- 간장 제조업체(ISIC 10771)
- 분유 및 농축우유 가공 및 산업 (ISIC 1520)
- 바틱 인쇄 산업 (ISIC 1712)
- 등나무 가공 산업(ISIC 2010)
- 등나무, 대나무 및 이와 유사한 것의 보존 산업(ISIC 2010)
- 목재 제품의 제조업체(몰딩 및 건축 자재 부품 산업)(ISIC 16221)
- 에센셜 오일 산업(ISIC 2429)
- 담배 건조 및 예비 가공 산업 (ISIC 1600)

- 벽돌 및 점토/세라믹 산업(ISIC 2691, 2692, 2693)
- 점토/세라믹제품 산업(ISIC 2691, ISIC 2693)
- 석회산업(ISIC 2694)
- 시멘트제품 산업(ISIC 2695)
- 석회제품 산업(ISIC 2695)
- 그 밖의 시멘트 및 석회 제품 산업(ISIC 2695)
- 못, 너트 및 볼트 산업, 엔진/터빈(원동기)의 부품 및 예비부품 산업, 펌프 및 압축기 산업, 부품과 이륜 및 삼륜 차량 부속품 산업, 자전거 및 페디캡/베짝 부속품 산업(ISIC 2899, 2911, 2912, 3591, 3592)
- 벼·옥수수 탈곡기 및 수동 트랙터와 같은 중간 기술을 사용하는 농업 기계 산업(ISIC 2921)
- 해양 관광 및 낚시용 목재 선박 제조업체(ISIC 3511, 3512)
- 해양 관광 및 낚시용 목재 선박의 장치 및 부속품 제조업체(ISIC 3511)
- 개인용 귀금속 장식품 제조업체(ISIC 3330, 3691)
- 비개인용 귀금속 장식품 제조업체(ISIC 3330, 3691)
- 비개인용 비귀금속 장식품 제조업체(ISIC 3330, 3699)
- 보석 제조(ISIC 3691)
- 따로 분류되지 않은 공예품 제조(ISIC 3699)
- 비금속 폐기물 재활용(ISIC 3720)

- 사탕수수로부터의 설탕산업(백설탕, 정제설탕 및 원당)(ISIC 1542)
- 수산물가공산업: 다른 해역으로부터의 어류와 수산물의 염장 및 건조(ISIC 1512), 다른 해역으로부터의 어류와 수산물의 훈제(ISIC 1512), 어류 효모/발효 및 추출과 생선 젤리용 그 밖의 조리된 제품(ISIC 1512, 1549), 다진 어류와 연육 가공(ISIC 1512)

c. 관련 당국에 의한 추천 또는 특정요건

- 담배 산업
  - 정향 담배 산업(ISIC 1600)
  - 일반 비정향 담배 산업(ISIC 1600)
  - 그 밖의 담배 산업(ISIC 1600)
- 특수 제지 제조업체(특히 지폐용지, 수표용지, 워터마크용지)(ISIC 2101)
- 화폐 인쇄 및 특수 인쇄 산업/ 우표, 인지, 지폐 용지·수표 용지·워터마크 용지와 같은 귀중한 용지, 여권, 인구 통계 문서 및 홀로그램과 같은 보안 문서. 산업부 장관 및 국가정보기관의 특별허가 필요(ISIC 2221)
- 시클라메이트 및 사카린 산업(ISIC 2411)
- 특수잉크산업(ISIC 2429)
- 납 제련 산업(ISIC 2720)
- 생산/산출 능력이 연간 2,000M^3를 초과하는 제재소 또는 제재업(ISIC 2010)
- 베니어판 산업, 합판 산업, 단판적층재 산업(ISIC 2021)
- 우드 칩 산업 및 우드 펠릿 산업(ISIC 2029)
- 제약산업용 마취제(제약산업)(ISIC 2423)

- 의료장비산업:
  - B등급(수술용 마스크, 주사기, 환자 모니터, 콘돔, 수술용 장갑, 혈액 투석액, PACS, 수술용 칼)(ISIC 2423)
  - C등급(IV 카테터, X선, ECG, 환자 모니터, 정형외과 임플란트, 콘택트 렌즈, 산소 농도계, 농도계)(ISIC 2423)
  - D등급(CT스캔, MRI, 심장 카테터, 심장 혈관 스텐트, HIV 테스트, 심박 조율기, 피부필러, 절제 카테터)(ISIC 2423)

d. 원자재 공급원에 대한 요건
- 펄프산업(나무로부터)(ISIC 2101)

e. 위 요건들의 조합
- 조각 고무 산업(ISIC 2519)
- 폭발물용 원자재 산업(ISIC 2411)
- 폭발성 자재 산업 및 그것의 산업용 부속품(ISIC 2429)
- 의료장비 산업
  - A등급(면, 붕대, 스틱, IV 폴, 생리대, 성인용 기저귀, 환자 침대, 휠체어)(ISIC 2423)
- 농장 사업 면허 지침에 관한 2013년 농업부 장관령 제98호 및 2013년 농업부 장관령 제98호의 개정에 관한 2016년 농업부 장관령 제29호에 규정된 대로 25헥타르 이상 면적에서 특정 면적까지 다음 작물을 위한 작물 농장 종묘 사업 산업
  - 자트로파 커카스, 그 밖의 감미료 작물, 사탕 수수, 담배, 섬유 원료 및 면화, 캐슈,

코코넛 야자나무, 기름 야자나무, 음료 작물(차, 커피 및 코코아), 후추, 정향, 에센셜 오일 작물, 의약 제약 작물, 그 밖의 향신 작물, 수액 추출용 고무와 그 밖의 나무 및 따로 분류되지 않은 그 밖의 작물(ISIC 0111, 0112, 0113, 0200)

- 농장 사업 면허 지침에 관한 2013년 농업부 장관령 제98호 및 2013년 농업부 장관령 제98호의 개정에 관한 2016년 농업부 장관령 제29호에 규정된 대로, 특정 한도와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생산능력으로 25 헥타르 이상 면적에서 가공산업을 갖춘 다음 작물을 위한 농장 사업
  - 캐슈 농장 및 건조 캐슈 너트와 캐슈 너트 쉘 액의 제조(ISIC 0113, 1513, 1549)
  - 후추 농장 및 건조한 백후추와 건조한 흑후추의 제조(ISIC 0112, 1513, 1549)
  - 자트로파 농장 및 자트로파 오일의 제조(ISIC 0111, 0112, 2429)
  - 사탕 수수 및 사탕 수수 설탕, 사탕 수수 상단 및 사탕 수수 찌꺼기의 제조(ISIC 0111, 1542)
  - 담배 및 건조한 담뱃잎의 제조(ISIC 0111, 1600)
  - 면화 농장과 면화 섬유의 제조(ISIC 0111)
  - 코코넛 야자나무 농장 및 코코넛 오일 제조(ISIC 0113, 1514)
  - 코코넛 야자나무 농장 및 코프라, 섬유, 코코넛 껍질 숯, 가루 및 나타데코코의 제조(ISIC 0113, 1514, 1549)

- 기름 야자나무 농장 및 야자유의 제조(CPO)(ISIC 0113, 1514, 1549)
- 커피 농장 및 커피콩 탈피, 세정 및 선별 제조(ISIC 0113, 1513)
- 코코아 농장 및 코코아 콩 탈피, 세정 및 건조 제조(ISIC 0113, 1513, 1549)
- 차 및 홍차/녹차의 제조(ISIC 0113, 1513, 1549)
- 정향 농장 및 건조한 정향 꽃의 제조(ISIC 0113, 0140, 1549)
- 에센셜 오일 작물 농장 및 에센셜 오일의 제조(ISIC 0111, 0112, 0113, 2429)
- 고무 농장 및 시트 제조, 농축 라텍스(ISIC 0111, 2519)
- 커피 및 코코아 콩 이외의 곡물 농장과 커피 콩 및 코코아 콩 이외의 곡물 탈피 및 세정 제조(ISIC 1513, 1549)

• 농장 사업 면허 지침에 관한 2013년 농업부 장관령 제98호 및 2013년 농업부 장관령 제98호의 개정에 관한 2016년 농업부 장관령 제29호에 규정된 대로 특정 한도와 같거나 이를 초과한 다음 농산물의 제조자
  - 미가공의 식물성 및 동물성 오일 (식용유), 코프라·섬유·코코넛 껍질 숯·가루·나타데코코, 코코넛 오일, 야자유, 코코아 콩 및 커피 콩 생산물의 탈피·세정·건조 및 선별, 사탕 수수 설탕·사탕 수수 상단 및 사탕 수수 찌꺼기, 홍차/녹차, 건조한 담뱃잎, 가공하지 않은 자트로파 오일, 면화 섬유 및 면화 종자, 시트용 고무·농축 라텍스, 건조한 캐슈너트

및 캐슈너트 쉘 액용 캐슈, 건조한 백후추와 건조한 흑후추용 후추, 건조한 정향 꽃(ISIC 0111, 0140, 1513, 1514, 1531, 1542, 1549, 1600, 2429, 2519)

조치근거 : 투자에 관한 2007년 법률 제25호

농장에 관한 2014년 법률 제39호

투자 금지 사업 분야 및 조건부 투자 개방 사업 분야 목록에 관한 2016년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령 제44호

윤활유 공급 및 서비스에 관한 2001년 대통령령 제21호

농장 사업 면허 지침에 관한 2013년 농업부 장관령 제98호 j.o. 2013년 농업부 장관령 제98호의 개정에 관한 2016년 농업부 장관령 제29호

의료기기 및 가정용 건강 제품 유통 인가에 관한 2017년 보건부 장관령 제62호, 그리고

정부 정책

3. 분야 : **농업**

하위 분야 : –

산업 분류 : ISIC(하기 참조)

정부 수준 : 중앙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7.4조)

조치내용 : 인도네시아는 다음 하위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a. 외국인 지분 참여에 대한 제한

- 25헥타르를 초과하는 면적에서 각 개별적 작물 종묘 또는 육성 사업에 대하여:
  - 주식 작물[쌀, 옥수수, 대두, 땅콩, 껍질콩(카사바 및 고구마 포함)] 및 따로 분류되지 않은 그 밖의 식량 작물(ISIC 0111, 0112, 0113, 0200)
  - 계절 과일 작물, 포도, 열대 과일 작물, 감귤류, 사과, 인과류 및 핵과류, 장과류, 한해 야채, 다년생 야채, 약용 작물, 버섯, 원예 작물(ISIC 0111, 0112, 0113, 0200)
- 25헥타르를 초과하는 면적에서 각 개별적 작물 재배 사업에 대하여:
  - 주식 작물(쌀, 옥수수, 대두, 땅콩, 껍질콩 및 카사바와 고구마를 포함한 그 밖의 식량 작물)(ISIC 0111, 0112, 0113, 0200)

- 계절 과일 작물, 포도, 열대 과일 작물, 감귤류, 사과, 인과류 및 핵과류, 장과류, 엽채류(양배추, 겨자, 파, 셀러리), 뿌리 채소(샬롯, 마늘, 감자, 당근), 열매가 열리는 채소(토마토, 오이), 칠리 페퍼, 파프리카, 버섯, 관상용 식물, 꽃이 아닌 관상용 식물(ISIC 0111, 0112, 0113, 0200, 1513)

• 다음의 각 농업 관련 활동:

- 원예 연구 및 품질 테스트 실험실, 원예 농업 관광 활동, 원예 수확 후 서비스, 꽃 소매 판매, 원예 개발 컨설턴트, 원예 조경 및 원예 과정 서비스(ISIC 0140, 2022, 7310, 9219, 9241, 9249, 5239, 7414, 7421, 8090, 9241)
- 농업 및 개발 자원과 공학에 대한 연구 및 개발, 그리고 유전자 변형 생물체 제품 과학 및 공학(유전 공학)에 대한 연구 및 개발(ISIC 7310)

b. 입지 요건

• 125 마리가 넘는 수의 돼지 사육 및 농장(ISIC 0122)

c. 위 요건의 조합

• 농장 사업 면허 지침에 관한 2013년 농업부 장관령 제98호 j.o. 2013년 농업부 장관령 제98호의 개정에 관한 2016년 농업부 장관령 제29호에 규정된 대로 25헥타르 이상 면적에서 특정 면적까지 어떠한 가공 장치도 없는 다음 작물에 대한 농장 사업

- 자트로파 커카스, 그 밖의 감미료 작물, 사탕 수수, 담배, 섬유 원료 및 면화, 캐슈, 코코넛 야자나무, 기름 야자나무, 음료 작물(차, 커피 및 코코아), 후추, 정향, 에센셜 오일 작물, 의약 제약 작물, 그 밖의 향신 작물, 수액 추출용 고무 및 그 밖의 나무와 따로 분류되지 않은 그 밖의 작물(ISIC 0111, 0112, 0113, 0200)

조치근거 : 농장에 관한 2014년 법률 제39호

가축 및 동물 보건에 관한 2009년 법률 제18호 및 2009년 법률 제18호 개정에 관한 2014년 법률 제41호

임업에 관한 1999년 법률 제41호

천연 자원과 그 생태계 보존에 관한 1990년 법률 제5호

산림 관리 계획 및 산림 활용에 대한 산림 행정 및 편찬에 관한 2008년 정부령 제3호에 의하여 개정된 2007년 정부령 제6호

식물 및 야생 동물 종의 이용에 관한 1999년 정부령 제8호

식물 재배 사업에 관한 2010년 정부령 제18호

농장의 종묘에 관한 1995년 정부령 제44호

투자 금지 사업 분야 및 조건부 투자 개방 사업 분야 목록에 관한 2016년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령

제44호

농장 사업 면허 지침에 관한 2013년 농업부 장관령 제98호 j.o. 2013년 농업부 장관령 제98호의 개정에 관한 2016년 농업부 장관령 제29호

가축 분야에 대한 면허 및 등록 지침에 관한 2002년 농업부 장관령 제404호

원예 분야에 대한 면허 지침에 관한 2003년 농업부 장관령 제348호

수의서비스 지침에 관한 2009년 농업부 장관령 제2호

주요 작물 재배 사업 면허에 대한 지침에 관한 2010년 농업부 장관령 제39호, 그리고

정부 정책

4. 분야 : **임업**

하위 분야 : –

산업 분류 : ISIC(하기 참조)

정부 수준 : 중앙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7.4조)

조치내용 : 인도네시아는 다음 하위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a. 외국인 지분 참여에 대한 제한

- 수렵 공원 및 수렵 구역에서의 수렵 사업(ISIC 0150, 9219, 9241, 9249)
- 동식물 포획 번식 및 보존 기관(ISIC 0150)

b. 파트너십 요건

- 산림 식물의 개발: 등나무(ISIC 2010), 소나무 수액(올레오 송진)(ISIC 0200), 대나무(ISIC 0200), 우드 로진/쇼레아 자바니카(다마르)(ISIC 0200), 이글우드/아퀼라리아 말라카 첸시스(가하루)(ISIC 0200)
- 셀락, 대체 식량 작물(사구), 수지 및 양봉의 개발(ISIC 0200)
- 누에 고치 생산(천연견사 농사)(ISIC 0122)

c. 관련 당국에 의한 추천 또는 특정요건

- 식물 및 야생생물 유전학에 사용되는 기술의 개발(ISIC 0200)

조치근거 : 임업에 관한 1999년 법률 제41호

천연자원과 그 생태계 보존에 관한 1990년 법률 제5호

산림 관리 계획 및 산림 활용에 대한 산림 행정 및 편찬에 관한 2008년 정부령 제3호에 의하여 개정된 2007년 정부령 제6호

국립공원 활용지역, 삼림대공원, 자연관광공원 내 자연관광 허가에 관한 2010년 정부령 제36호

식물 및 야생 동물 종의 이용에 관한 1999년 정부령 제8호

투자 금지 사업분야 및 조건부 투자 개방 사업 분야 목록에 관한 2016년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령 제44호, 그리고

정부 정책

5. 분야 : **모든 분야**

하위 분야 : –

산업 분류 : –

정부 수준 : 중앙 및 지역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7.4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7.9조)

조치내용 : 인도네시아는 다음을 포함하는 정부 자산, 기관 또는 단체의 민영화, 기업화, 상업화 또는 주식 매각에 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a) 자산 소유권에 대한 제한
(b) 지분 또는 그 자산의 이전 또는 처분
(c) 자산을 통제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자 또는 그들의 투자의 권리, 그리고
(d) 고위 경영진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국적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a) 인도네시아가 기존 공기업에 대한 지분을 다른 공기업에 이전하는 경우, 그러한 이전은 이 유보의 목적상 지분의 초기 이전 또는 처분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리고,

(b) 인도네시아가 여러 단계에서 기존 공기업에 대한 지분을 이전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a)호는 그러한 각 단계에 별도로 적용된다.

조치근거 : 국영기업에 관한 2003년 법률 제19호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2007년 법률 제40호, 그리고

정부 정책

6. 분야	:	**모든 분야**
하위 분야	:	–
산업 분류	:	–
정부 수준	:	중앙 및 지역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7.4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7.9조)
조치내용	: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 내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Usaha Mikro, Kecil, Menengah dan Koperasi 또는 UMKMK)[1]에 주어지는 특별 선호에 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조치근거	:	소상공인·중소기업에 관한 2008년 법률 제20호 협동조합에 관한 1992년 법률 제25호, 그리고 정부 정책

[1] 이 유보의 목적상, 소상공인·중소기업(UMKM)의 정의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관한 2008년 법률 제20호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협동조합의 정의는 협동조합에 관한 1992년 법률 제25호에서 찾을 수 있다. 설명의 목적상,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기준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관한 2008년 법률 제20호에 규정된 대로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토지 및 빌딩 제외 최대 5천만 인도네시아 루피아의 순자산을 보유할 것, 또는
나. 최대3억 루피아의 연간 매출액을 보유할 것
(2) 소기업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토지 및 빌딩 제외 5천만 초과 최대 5억 루피아의 순자산을 보유할 것, 또는
나. 3억 초과 최대 25억 루피아의 연간 매출액을 보유할 것
(3) 중기업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토지 및 빌딩 제외 5억 초과 최대 100억 루피아의 순자산을 보유할 것, 또는
나. 25억 초과 최대 500억 루피아의 연간 매출액을 보유할 것
(4) 위의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결정된 대로의 명목상 액수는 경제적 상황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7. 분야 : **어업**

하위 분야 : –

산업 분류 : –

정부 수준 : 중앙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7.4조)

조치내용 : 인도네시아는 다음 하위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a. 파트너십 요건
- 어류 부화장 및 양식: 바다 물고기, 기수 물고기, 민물고기(ISIC 0502)

b. 관련 당국에 의한 추천 또는 특정요건
- 산호/장식용 산호초의 재배(ISIC 0150)

조치근거 : 어업에 관한 2009년 법률 제45호에 의하여 개정된 2004년 법률 제31호

인도네시아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관한 1983년 법률 제5호

투자 금지 사업분야 및 조건부 투자 개방 사업 분야 목록에 관한 2016년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령 제44호

포획 어업 사업 관련 PER.12/MEN/2009호에 의하여 개정된 해양수산부 장관령 PER.05/MEN/2008호

양식업 면허 관련 해양수산부 장관령
PER.12/MEN/2007호

양식업 규모 관련 해양수산부 장관령
PER.05/MEN/2009호

야생 식물 및 동물의 이용 또는 포획 및 유통에 대한 절차에 관한 산림부 장관령 447/Kpts-II/2003호, 그리고

정부 정책

8. 분야	:	**모든 분야**
하위 분야	:	–
산업 분류	:	–
정부 수준	:	중앙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7.4조) 최혜국 대우(제7.5조) 이행요건(제7.8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7.9조)
조치내용	:	인도네시아는 투자 장의 발효 시점에 사정으로 인하여 인도네시아 정부에 의하여 인지되었거나 인지되었어야 하는 것을 제외한 분야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협정의 발효일에 ISIC Rev. 3에 명시적으로 분류되는 어떠한 분야도 그 당시에 인도네시아 정부에 의하여 인지되었어야 한다.
조치근거	:	정부 정책

9. 분야	:	**모든 분야**
하위 분야	:	–
산업 분류	:	–
정부 수준	:	중앙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7.4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7.9조)
조치내용	:	인도네시아는 간과되었던 외국인 투자자나 투자에 대하여 어떠한 기존 조치도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다만 관련된 조치는 이 협정의 발효일에 이미 시행중이어야 한다. 간과된 조치가 확인되는 경우, 부속서 I 인도네시아의 유보목록에 신속하게 삽입될 것이다. 첫 번째 단락에 언급된 간과된 조치가 확인되는 경우, 인도네시아는 그 조치를 자국의 유보 목록에 포함하기 최소 90일 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 조치의 세부 정보와 협의를 위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유보목록에 간과된 조치의 추가를 통하여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투자를 한 투자자로부터 권리 또는 혜택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다.
조치근거	:	정부 정책

10. 분야	:	**모든 분야**
하위 분야	:	–
산업 분류	:	–
정부 수준	:	지역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7.4조)
조치내용	:	내국민 대우는 지방정부 차원[2] 에서 투자 이행 면허/허가[3]의 절차적 측면에 관련된 조치에 적용될 수 없다.
조치근거	:	지방정부에 관한 2014년 법률 제23호 지방 규정, 그리고 정부 정책

[2] 이 유보의 목적상, 지방 정부 차원이란 지역 정부 수준을 말한다.
[3] 설명의 목적상, 이는 위치 허가 및 건축 허가를 포함할 수 있다.

11. 분야	:	**제조업·농업·어업·임업**
하위 분야	:	–
산업 분류	:	–
정부 수준	:	중앙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7.4조) 이행요건(제7.8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7.9조)
조치내용	:	인도네시아는 관련 법률에 따라 선언된 식량 안보 긴급상황의 기간 동안에만 식량안보 긴급상황을 다루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조치근거	:	인도네시아공화국 1945년 헌법 제33조 식량에 관한 2012년 법률 제18호 식량 안보 및 영양에 관한 2015년 정부령 제17호, 그리고 정부 정책

12. 분야	:	**모든 분야**
하위 분야	:	–
산업 분류	:	–
정부 수준	:	중앙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7.4조) 최혜국 대우(제7.5조) 이행요건(제7.8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7.9조)
조치내용	:	인도네시아는 서비스 모드 3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조치근거	:	정부 정책

13. 분야 : **모든 분야**

하위 분야 : –

산업 분류 : –

정부 수준 : 중앙 및 지역

의무의 유형 : 최혜국 대우(제7.5조)

조치내용 : 인도네시아는 다음의 결과로 비당사자의 투자자와 그들의 투자에 부여되는 더 유리한 대우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a)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 간의 기존의 또는 미래의 특혜 협정이나 약정

b)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의 발효일 전에 서명된 기존의 협정, 그리고

c)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의 발효일 후에 서명되는 다음에 관한 국제협정

i. 항공

ii. 수산, 또는

iii. 해난구조를 포함한 해상 사안

조치근거 : 정부 정책

14. 분야 : **제조업·농업·어업·임업**

하위 분야 : –

산업 분류 : –

정부 수준 : 중앙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7.4조)
최혜국 대우(제7.5조)
이행요건(제7.8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7.9조)

조치내용 : 인도네시아는 다음의 사업 분야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 마리화나 재배(ISIC 0111)
-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부록 I에 열거된 어종의 포획(ISIC 0500)
- 침몰 선박에서 유가품 인양(ISIC 6303)
- 건축자재/석회/칼슘, 수족관 및 기념품/보석을 위한 천연 산호와 천연의 살아있는 산호 또는 죽은 산호(최근에 죽은 산호)의 활용(채집)(ISIC 0500)
- 수은 가공에 따른 클로랄 알칼리 제조 산업(ISIC 2411)
- 살충제 활성 물질 산업: 디클로로 디페닐 트리클로로 에탄(DDT), 알드린, 엔드린, 디엘드린, 클로르데인, 헵타클로르, 미렉스 및 톡사펜(ISIC 2421)
- 산업용 화학물질 산업과 오존 파괴 물질(BPO):

폴리 염화 비페닐(PCB), 헥사클로로벤젠 및 사염화탄소(CTC), 메틸 클로로포름, 메틸 브로마이드, 트리클로로 플루오로 메탄(CFC-11), 디클로로 트리플루오로 에탄(CFC-12), 트리클로로 트리플루오로 에탄(CFC-113), 디클로로 테트라 플루오로 에탄(CFC-114), 클로로 펜타플루오로 에탄(CFC-115), 클로로 트리플루오로 메탄(CFC-13), 테트라클로로 디플루오로 에탄(CFC-112), 펜타클로로 플루오로 에탄(CFC-111), 클로로 헵타플루오로 프로판(CFC-217), 디클로로 헥사플루오로 프로판(CFC-216), 트리클로로 펜타플루오로 프로판(CFC-215), 테트라클로로 테트라플루오로 프로판(CFC-214), 펜타클로로 트리플루오로 프로판(CFC-213), 헥사클로로 디플루오로 프로판(CFC-211), 브로모 클로로 디 플루오로 메탄(Halon-1211), 브로모 트리플루오로 메탄(Halon-1301), 디브로모 테트라플루오로 에탄(Halon-2402), R-500, R-502(ISIC 2411)

- 화학무기로서의 화학물질 이용에 관한 2008년 법률 제9호 부록 I에 통합된 화학무기금지협약 목록 I에 열거된 화학물질 산업(ISIC 2411)
- 알코올 성분 함유 증류주 산업(ISIC 1551)
- 알코올 성분 함유 음료 산업: 와인(ISIC 1552)
- 맥아 음료 산업(ISIC 1553)

조치근거 : 투자 금지 사업분야 및 조건부 투자 개방 사업분야 목록에 관한 2016년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령 제44호, 그리고

정부 정책

15. 분야 : **에너지**

하위 분야 : 10메가와트 이하 소규모 발전소(부속서 I의 유보항목 18번에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산업 분류 : ISIC 4010

정부 수준 : 중앙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7.4조)

조치내용 : 인도네시아는 10메가와트 이하 소규모 발전소에 대한 투자에 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조치근거 : 정부 정책